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Ⅰ) －

2009. 10.

장 근 호

서 언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파산, 금융자산 가치 폭락, 금융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상당 규모의 경제침체를 유발하였고 일부 국가의 부도위험까지 촉발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연쇄적 경제 불황을 가져왔고 세계 각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세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자발적 신고와 성실납부에 있다. 미국 국민으로서 조세납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의무이다.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미국이 다양한 인종이 모인 연방국가로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가 중요하며 미국 국민이 되려면 납세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사회적 합의로서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성실납부 정신이 안착하게 된 것은 미국정부가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행정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였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의 공조, 특혜조항의 폐지 그리고 유산세와 증여세의 연계가 합리적 조세정책의 예이며 현금거래나 거래정보에 대한 신고 의무나 포상금제도 등이 엄격한 법 집행의 예이다.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로서 건국 초기에는 주정부의 과세권이 강조되었으나 점차 연방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방정부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와 유산 및 증여세 그리고 일부 제한된 소비세를 과세하며 지방정부는 소비세와 재산세를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기타 항목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조세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처럼 복잡한 미국의 조세제도를 한 권에 요약 정리함으로써 국내 독

자들이 미국 조세제도의 큰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에 발간된 내용을 최근 자료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세제 및 세법체계 전반에 걸쳐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선 총론에 이어 소득세제, 소비세제, 재산세제 분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제도 및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워낙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이다보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편을 발간할 계획이다.

미국 조세제도의 소개서인 본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해를 시도하는 시발점이 되고 또한 정책 담당자들은 국내 조세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보고서는 홍익대학교 장근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저자는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본원의 김진수 박사와 홍범교 박사, 그리고 초고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 را 드리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

2009년 10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목 차

제1편 총론	23
I. 정치·경제 및 사회 환경	23
1. 미국의 정치·사회적 환경	23
가. 정치·사회환경	23
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	27
2. 미국 경제의 변천	28
3. 미국경제 현황	32
가. 경제 현황	32
나. 2007~2009년 금융위기	39
다. 미국 경제 평가와 전망	41
II. 조세체계	44
1. 연방세법	44
가. 일반원칙	44
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46
다. 세법의 제정	49
라.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	50
마. 국세청 행정공고(Administrative pronouncement)	51
바. 미국 사법절차	52
2. 미국 조세체계 연혁	56
가. 연방세의 연혁	56
나. 지방세의 기원	62

3. 미국 조세체계	63
가. 연방정부의 조세체계	63
나. 지방정부의 조세체계	66
4. 세무행정체계	69
가. 미국 국세청 조직체계	69
나. 과세행정	70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1. 정부 수입과 세입구조	72
가. 행정부 총수입과 구성비	72
나. 연방정부 수입	78
다. 소득분배와 연방정부 실효세율(1979~2005년)	96
2. 연방세 신고유형과 추이	112
3. 개인소득세	117
가. 개인소득세 세수와 주요 변수의 변화	117
나. 연도별 공제	123
다. 소득세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128
4. 기업의 형태와 법인세	134
가. 기업 유형과 법인세 세수	134
나. 기업의 소득신고 동향	136
5. 연방소비세	143
가. 미국 소비세의 구성과 세수	143
나. 연방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수입	147
6. 유산·증여세	151
가. 유산·증여세 세수규모 및 비중	151
나. 유산세 신고	153
다. 증여세 신고	158
7. 지방세 세수	160

가. 미국 지방정부 세수	160
IV.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165
1. 부시 행정부의 조세개혁	165
가.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	165
나. 2007년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167
2. 대통령 자문위원회 연방세 개혁안	168
가. 조세개혁의 필요성	168
나. 조세개혁 권고안의 주요 내용	169
다. 조세개혁 권고안의 세부내용: 공통안	173
라. 조세개혁 권고안의 세부내용: 저축과 투자 증대를 위한 두 가지 방안	175
마. 부가가치세(Partial Replacement VAT)와 연방판매세	182
3. 오바마 행정부의 조세개혁안	183
가. 오바마 행정부의 선거공약	183
나. 2009년 경기회복과 재투자법(ARRA)	186
4. 일몰 법령	193
제2편 소득세제	195
I. 개인소득세	195
1. 서론	195
가. 배경	195
나. 연방소득세의 발전 과정	196
다. 연도별 세율과 과세구간 그리고 신고소득의 변화	200
라. 연방소득세의 주요 특징	209
2. 납세의무자	215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215

나. 소득의 배정: 부부와 자식	216
다. 사업형태에 따른 납세자	218
라. 과세시점	220
3. 비과세소득	222
가. 비과세소득의 개념	222
나. 주요 법정 비과세 소득	223
4. 과세소득	235
가. 과세소득의 개념과 산정	235
나. 총소득(Gross Income)	243
다. 피용자 보수	247
라. 투자소득	252
마. 기타 소득	259
바. 양도(자본)소득	267
5. 각종 공제제도	304
가. 비용(손실)공제: 조정된 총소득 사전 공제(deduction for AGI)	304
나. 비용공제: 조정된 총소득 사후 공제(deduction from AGI)	353
다. 손실과 대손금 공제	380
6. 소득세 세율과 과세액	390
가. 납세자 신분	390
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394
다. 자영업자 고용세(Self-Employment Tax)	398
7. 소득세 과세행정	399
가. 소득세 신고 추이	399
나. 신고와 납부	401
다. 조세기일	412
라. 세무조사	413
마. 조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419
바. 조세 징수	420

사. 조세 관련 벌금과 처벌	424
8. 원천징수제도	430
가. 기본원칙	430
나. 원천징수를 위한 피용자 의무	432
다. 고용주의 원천징수 신고	434
라. 연방세 예탁기금(Federal Tax Deposit)	434
마. 추정세액 납부제도(estimated tax payment)	436
9. 기타	438
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438
나. 연방실업세	439
다. 지방정부 소득세	440
II. 법인소득세	443
1. 서론	443
가. 배경	443
나. 기업 유형의 변화와 소득신고	444
2. 납세의무자	450
가. 법인세 납세의무	450
나. 과세연도와 회계방식	450
다. 사업체 형태에 따른 과세 성격	453
라. 법인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459
3. 법인소득	466
가. 총칙규정	466
나. 비과세소득	468
다. 과세소득	470
4. 자본소득	497
가. 기본원칙	497
나. 감가상각 환수규정(recapture)	499

다.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산 양도	500
라. 주식회사 자본구조	505
5. 손실	511
가. 일반손실	511
나. 기타 손실의 제한	512
6. 법인세 세율	513
가. 법인세 산정방식	513
나. 법인세 세율	514
다. 최저한세(AMT)	516
라. 지배그룹(controlled group)과 연결납세제도	523
7. 조세특례	527
가. 비청산 배당(non-liquidating distribution)	527
나. 청산배당(liquidating distribution)	540
8. 법인세 과세행정	545
가. 법인세 신고	545
나. 추정세액의 납부	548
다. 면세단체와 자료 신고	549
9. 기타	550
가. 과세대상 기업인수(Taxable Acquisition)	551
나. 비과세대상 기업재편(Non-taxable Reorganization)	556
다. 이중과세 방지제도	572
 Ⅲ. 국제조세	 575
1. 서론	575
가. 국제조세 일반원칙	575
나. 미국정부의 과세권	576
2. 소득 원천지 규정(sourcing rule)	579
가. 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의 개념	579

나. 소득유형별 원천지	581
3. 외국인(외국업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	587
가. 미국 사업(거래)과의 실질적 연관성(effective connection)	587
나. 외국인에 대한 과세	592
다. 외국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	595
라.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주주에 대한 과세	598
4.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602
가. 해외근로소득	602
나. 해외거주비용 공·면제	603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605
5. 기타	608
가. 외국환 거래	608
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609
다. 국제조세협약	616
라.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	623
마. 역외소득에 대한 특혜규정	624

IV. 파트너십과 S 법인 주식회사

1. 파트너십(Partnership)	628
가. 파트너십의 유형과 특성	628
나. 파트너십 결성	631
다. 파트너십 지분의 장부가액(Tax basis)	638
라. 파트너십 소득과세방식	643
마. 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	655
바. 소득신고	662
2. S 법인 주식회사	663
가. S 법인의 특성과 설립	663
나. 과세소득 신고	669

다. 장부가액 조정과 배당	678
라. 세금신고와 과세행정	681
V. 연결납세제도	683
1. 개요	683
가. 연결납세제도 연혁	683
나.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684
다. 연결납세신고 자격	685
라. 연결납세신고 신청	686
2. 연결납세 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	687
가. 과세소득 산정방식	687
나. 계열사 사이의 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	691
다. 신고 및 납부	704
제3편 소비세제	706
I. 개별소비세	706
1. 서론	706
가. 연방소비세 규정	706
나. 주요 연방소비세와 세율	709
다. 지방정부 소비세	711
2. 과세행정	713
가. 세금 신고 및 납부	713
나. 공제·환급 및 감면	715
다. 세금 징수 및 조사	719
라. 처벌과 과징금	721
3. 소매세(Retail taxes)	722
가. 사치세(Luxury Taxes)	722

나. 특정 유류세(Special Fuels Tax)	724
다. 대형 자동차, 트레일러, 트랙터	729
4. 제조업자세 (Manufacturers taxes)	731
가. 과세대상과 과표	731
나. 자동차 관련 품목	737
다. 기타 제조업자세 품목	749
5. 시설 및 서비스(Facilities and Services)	751
가. 통신(communications)	752
나.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	753
다. 수상운송(Water Transportation)	755
라.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	756
6. 주류 및 담배세(Alcohol and Tobacco taxes)	757
가. 주세	757
나. 담배세	761
7.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762
가. 유해물질기금(Hazardous Substance Superfund)	763
나. 오존파괴 화학품세(Ozone-depleting chemicals excise tax)	764
8. 기타 소비세	765
가. 외국 보험상품	765
나. 도박 및 게임세(Tax on Wagering and Games)	766
다. 트럭/버스 도로사용세(Truck and Bus Highway Use Tax)	768
라. 미등록채권세(obligation not in registered form)	769
9. 폐지된 연방소비세	770

제4편 재산세제 772

I. 유산·증여세 772

1. 서론 772

가. 연방 이전세제(transfer tax)의 연혁	772
나. 연방 이전세제의 주요 내용	777
다. 통합세액공제제도(Unified Tax Credit)	781
2. 유산세(Estate Tax)	782
가. 유산세의 산정방식	782
나. 유산세 과세대상	784
다. 총유산공제	792
라. 과세방식 및 세율	797
마. 자산의 평가	805
바. 유산의 장부가액	811
사. 신고와 납부	811
3. 증여세(Gift Tax)	813
가. 증여세 산정방식	814
나. 자산의 평가와 장부가액	819
다. 증여자산의 장부가액	821
라. 공·면제 항목	823
마. 증여세 과세방식 및 세율	828
바. 증여세 신고납부	831
4. 세대 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ax)	833
가. 개요	833
나. 세대 생략세의 과세	834
다. 세대 생략세 세율	837
5. 유산과 신탁기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838
가. 개요	838
나. 과세방식과 대상	841
다. 유산/신탁기금 소득세 세율	849
라. 유산과 조건부 신탁기금	850
마. 신고 및 납부	854

바. 유산과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한 세금 회피	855
참고문헌	856

표목차

제1편

〈표 I-1〉 인구 관련 주요통계의 국제비교	25
〈표 I-2〉 주요 경제지표의 연도별 변화(1930~2007년)	31
〈표 I-3〉 2007년 국내총생산(GDP)과 연도별 실질성장률의 변화	33
〈표 I-4〉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과 연도별 변화(1947~2007년)	34
〈표 I-5〉 고용구조의 변화(1948~1997년)	36
〈표 I-6〉 국내 총생산, 국민소득과 항목별 구성(2001~2007년)	37
〈표 I-7〉 2007년 미국 교역 현황	38
〈표 I-8〉 국내총생산과 교역의 변화(1960~2007년)	38
〈표 I-9〉 연도별 가계 총소득의 배분구조(1947~2005년)	43
〈표 II-1〉 연방세법의 근거와 권위	45
〈표 II-2〉 연방세 법령의 권위	46
〈표 II-3〉 내국세법 주요 세목별 목차	47
〈표 II-4〉 미국 법원체제	53
〈표 II-5〉 미국 연방세 유형과 과표	64
〈표 II-6〉 미국 지방세 유형과 과표	68
〈표 III-1〉 국내총생산과 단위 정부별 총수입(1948~2006년)	74
〈표 III-2〉 행정부 총수입과 부문별 수입(1950~2007년)	75
〈표 III-3〉 연방과 지방정부 수입구조 비교(1950~2007년)	77
〈표 III-4〉 연방정부 수입과 지출 및 GDP 대비 비중(1940~2007년)	79
〈표 III-5〉 연방정부 수입의 구성비(1934~2007년)	81

〈표 Ⅲ-6〉 연방정부 재정수입 내역(1929~2007년)	82
〈표 Ⅲ-7〉 연방정부 부문별 수입(1980~2007년)	87
〈표 Ⅲ-8〉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1972~2007년)	90
〈표 Ⅲ-9〉 IRS 내국세 징수내역 (2000~2007년)	92
〈표 Ⅲ-10〉 기능별 조세지출예산 추계	93
〈표 Ⅲ-11〉 소득계층별 실효세율과 세부담(2005년)	97
〈표 Ⅲ-12〉 실질 평균소득의 변화(1979~2005년)	101
〈표 Ⅲ-13〉 소득분배의 변화(1979~2005년)	102
〈표 Ⅲ-14〉 계층별 연방세 분포의 변화(1979~2005년)	103
〈표 Ⅲ-15〉 계층별 소득세 분포의 변화(1979~2005년)	104
〈표 Ⅲ-16〉 계층별 연방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107
〈표 Ⅲ-17〉 계층별 연방소득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108
〈표 Ⅲ-18〉 계층별 연방법인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109
〈표 Ⅲ-19〉 계층별 사회보장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110
〈표 Ⅲ-20〉 계층별 연방소비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111
〈표 Ⅲ-21〉 유형별 소득세 신고건수(1997~2007년)	114
〈표 Ⅲ-22〉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 수 (1975~2007년)	116
〈표 Ⅲ-23〉 개인소득세 전자신고 유형별 건수(1998~2007년)	117
〈표 Ⅲ-24〉 개인소득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1972~2007년)	118
〈표 Ⅲ-25〉 조정된 총소득(AGI), 소득세 및 평균세율의 추이(1986~2000년)	120
〈표 Ⅲ-26〉 신고소득, 조정된 총소득(AGI), 과세소득 및 세율 비교(1950~2005년) ..	122
〈표 Ⅲ-27〉 개인소득세 표준·항목별 공제신고 건수 및 금액의 변화(1950~2005년) ..	125
〈표 Ⅲ-28〉 소득구간별 조정된 총소득, 소득세 비중 및 평균세율(1986~2000년) ..	130
〈표 Ⅲ-29〉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05년) ...	133
〈표 Ⅲ-30〉 기업 유형의 변천 추이	134
〈표 Ⅲ-31〉 법인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Fiscal Years 1972~2007년)	135
〈표 Ⅲ-32〉 총수입 규모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서(1980~2005년)	137
〈표 Ⅲ-33〉 법인세 대차대조표와 소득세 내역(1980~2005년)	138

〈표 Ⅲ-34〉 S 법인 주식회사 자료신고 주요 내용(2005년)	141
〈표 Ⅲ-35〉 파트너십(partnership) 자료신고 주요 내용(2006년)	142
〈표 Ⅲ-36〉 정부단위별 간접세 내역(1930~2007년)	145
〈표 Ⅲ-37〉 연방정부 소비세 세수실적과 대표세율	151
〈표 Ⅲ-38〉 유산·증여세 신고 및 양식 수(1975~2007년)	152
〈표 Ⅲ-39〉 유산증여세의 세수와 내국세 비중(1972~2007년)	153
〈표 Ⅲ-40〉 유산세 신고인, 신고건수 및 납세의무액과 비중(1987~2007년)	154
〈표 Ⅲ-41〉 유산세 과세대상 신고인 비율과 실효세율(1934~2004년)	155
〈표 Ⅲ-42〉 유산세 과세 결정 내역(2007년)	156
〈표 Ⅲ-43〉 유산형태별 신고건수와 금액(2007년)	157
〈표 Ⅲ-44〉 연도별 증여세 신고 및 징수액	158
〈표 Ⅲ-45〉 증여세 과세 결정 내역(2007년)	159
〈표 Ⅲ-46〉 미국 지방정부 세목별 수입 추이(1930~2007년)	161
〈표 Ⅲ-47〉 미국 주정부 세목별 수입 추이(1902~2007년)	162
〈표 Ⅲ-48〉 미국 기초자치단체 세목별 수입 추이(1902~2005년)	164
〈표 Ⅳ- 1〉 2005년 연방소득세 주요 내용	169
〈표 Ⅳ- 2〉 대통령 자문위원회 연방세 개혁안의 주요 내용	169
〈표 Ⅳ- 3〉 오바마 행정부 선거공약 : 중산층 감세	185
〈표 Ⅳ- 4〉 2009년 경기회복과 재투자법 주요 내용	188
〈표 Ⅳ- 5〉 2010년 정부예산안 주요 조세항목에 대한 소요예산 추정	189
〈표 Ⅳ- 6〉 주요 법률 법령의 내용과 철폐시한(2009년 이후)	194

제2편

〈표 I - 1〉 개인소득세법의 주요 변화(1943~2005년)	198
〈표 I - 2〉 연방소득세 인적공제액과 최고·저 한계세율 및 구간 (1913~2006년) ...	202
〈표 I - 3〉 연방소득세 신고와 소득의 변화(1913~2005년)	207
〈표 I - 4〉 양도(자본)소득세율	215

〈표 I - 5〉 주요 비과세소득	224
〈표 I - 6〉 과세소득과 소득세의 산정방식	238
〈표 I - 7〉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유형(예)	244
〈표 I - 8〉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	279
〈표 I - 9〉 양도(자본)소득세율	287
〈표 I -10〉 조정된 총소득(AGI) 산정을 위한 공제항목	307
〈표 I -11〉 이자비용의 공제 여부	320
〈표 I -12〉 조기원가 회수제도에서의 자산유형에 따른 상각방식	346
〈표 I -13〉 유형개인자산의 조기원가회수 비율	347
〈표 I -14〉 표준공제 금액과 노령자와 맹인을 위한 추가공제(2001~2007년)	355
〈표 I -15〉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주요 경비	356
〈표 I -16〉 공제가 가능한 개인용 이자비용	359
〈표 I -17〉 주요 세액공제 항목	371
〈표 I -18〉 근로장려공제 환산표(2007~2009년)	373
〈표 I -19〉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장려 세액공제의 감축(2007~2008년)	374
〈표 I -20〉 납세자 신분에 따른 세율 및 과세구간(2000~2008년)	391
〈표 I -21〉 최저한세(AMT) 산정방식	396
〈표 I -22〉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 수(1975~2007년)	400
〈표 I -23〉 납세자 신분별 소득신고가 필요한 기준 소득(2007~2008년)	402
〈표 I -24〉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가 필요한 기준 소득(2007~2008년)	404
〈표 I -25〉 사업체 유형별 신고대상 세금	408
〈표 I -26〉 신고가 필요한 소득지급 유형과 양식	409
〈표 I -27〉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항목	411
〈표 I -28〉 내국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금과 형벌	425
〈표 I -30〉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예탁 지연시 벌금	435
〈표 I -31〉 주정부 소득세 주요 지표(2008년)	441
〈표 II - 1〉 기업 유형의 변천 추이	445

〈표 II- 2〉 미국 법인세 세율과 과세구간(1909~2007년)	447
〈표 II- 3〉 기업조직 유형과 과세상의 장·단점	458
〈표 II- 4〉 법인세 납부 의무액의 일반적 결정방식	467
〈표 II- 5〉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주요 차이점	472
〈표 II- 6〉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방식	476
〈표 II- 7〉 1245조 자산의 감가상각 환수 예제	500
〈표 II- 8〉 일반법인세 산정방식	514
〈표 II- 9〉 미국 법인세 세율(2007년)	515
〈표 II-10〉 C 법인 주식회사 최저한세 산정방식	518
〈표 II-11〉 당해연도 수익(E&P)의 산정에 필요한 과세소득의 조정	529
〈표 III- 1〉 1996년 미국 소득세 모델협약에 따른 과세국 결정	578
〈표 III- 2〉 소득 성격에 따른 원천지 규정	580
〈표 III- 3〉 미국에서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소득세와 원천징수 면세 요건	619
〈표 III- 4〉 개인서비스를 제외한 미국소득의 조세협약 (원천징수)세율(2009년) ...	622
〈표 IV- 1〉 파트너십 지분 장부가액의 결정방식	641
〈표 IV- 2〉 S 법인 주식회사 별도 기재항목 및 사유(목적)	672
〈표 V- 1〉 연결납세신고를 위한 과세소득 산정방식	689

제3편

〈표 I- 1〉 연방정부 소비세 분류 및 관련 법규정	708
〈표 I- 2〉 연방정부 소비세 연도별 세율의 변화	710
〈표 I- 3〉 미국 사치세(Luxury Taxes) 연도별 과세액	723
〈표 I- 4〉 거래유형별 대형 자동차, 트레일러, 트랙터의 과표	730
〈표 I- 5〉 연방정부 소비세 면세단체·용도 및 면세 제외 품목	733

〈표 I - 6〉 제조업자세 과세대상 연료, 세율 및 특성	738
〈표 I - 7〉 휘발유 소비세 세수와 세율(1933~2007년)	740
〈표 I - 8〉 Gas Guzzler Tax 세율(Sec. 4064)	748
〈표 I - 9〉 미국 연방소비세 주세율	759
〈표 I -10〉 주류 관련 영업세(2005년 7월 이전)	760
〈표 I -11〉 각종 담배 관련 제품 연방소비세 세율	762
〈표 I -12〉 트럭 및 버스 도로사용세	769
〈표 I -13〉 연방소비세 세수(1993년)와 2001년 당시 존폐 여부	771

제4편

〈표 I - 1〉 유산세 면세액과 세율의 변천 추이	774
〈표 I - 2〉 양도연도에 따른 연방 이전세 최고 세율과 면세액(2001~2011년)	780
〈표 I - 3〉 유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	784
〈표 I - 4〉 미국 유산·증여세 통합 세율구조(1984~2001년 이전자산)	799
〈표 I - 5〉 미국 유산·증여세 최고 세율(2001년 이후 양도자산)	800
〈표 I - 6〉 미국 유산·증여세의 연도별 통합세액공제 및 면세액	802
〈표 I - 7〉 유산 내역과 유산세 결정의 한 예	803
〈표 I - 8〉 미국 유산·증여세 통합 세율구조(1984~2001년 이전자산)	830
〈표 I - 9〉 양도연도에 따른 연방 이전세 최고 세율과 면세액(2001~2011년)	831
〈표 I -10〉 유산/신탁기금 소득세 세율구조(2008년)	850

그림 목차

제1편

[그림 Ⅲ-1] 공제신고 건수의 연도별 변화추이 (1950~2000년)	124
[그림 Ⅲ-2] 총소득(AGI) 대비 공제액의 연도별 변화추이 (1950~2000년)	125

제4편

[그림 I-1] 유산세 산출방식	798

제1편 총 론

I. 정치·경제 및 사회 환경

1. 미국의 정치·사회적 환경

가. 정치·사회환경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1776년 13개주로 구성된 독립국가로 출발하여 19~20세기에 37개주를 추가하여 오늘날의 정치·경제 대국이 되었다. 미국은 1789년 발효된 헌법에 기초한 연방공화제 국가로서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 사모아, 괌,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 다수의 자치령이 있다.

미국은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 등의 뉴 잉글랜드 지역과 기업투자 형식(charter company)으로 정착한 버지니아 등의 남부사회로 나뉘어지고 이러한 사회체제가 남북전쟁 등을 통하여 서로 혼합 혹은 대립하면서 미국 정치와 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건국 당시 높은 관세와 보조금을 통한 유치산업 보호와 중앙은행 설립 등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상주의 정책을 원했던 알렉산더 해밀턴과 정치 경제적 탄압에 맞선 분권적인 농경 민주주의를 원했던 버지니아 출신의 토머스 제퍼슨과의 치열했던 논쟁은 1801년 제퍼슨이 대통령(재임 1801~1809)이 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북부가 남북전쟁(1861~1865)에서 승리함에 따라서 미국의 진로와 경제체제는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사회로 그 중심이 이동하게 되었다.

미국 중앙정부는 대통령제의 행정, 상하 양원의 의회, 그리고 대법원의 사법권이라

는 삼권분립체제로 구성된다. 대통령¹⁾은 4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의회는 100명과 435명으로 구성된 상·하원이 있고 대법원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는다. 상원은 각 주(state)에서 2명씩 6년 임기로 매년 3분의 1이 선거로 선출되며 인구 수에 따라 선출되는 하원의 임기는 2년이다. 종신제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하 양원의 동의 아래 임명된다.

한편 연방주의 국가(federalism)인 미국의 지방정부는 50개와 수도인 워싱턴 D.C. 주정부 그리고 각 주에 약 8만 7,525개에 이르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지방정부는 대체로 50개의 주(state), 3,034개의 카운티(county), 1만 9,429개의 시(municipality) 혹은 1만 6,504개의 타운(township)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외 교육자치구, 자연보호나 소방 혹은 주택개발을 위한 특별 자치구들이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에서 각자 나름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대신 교육, 보건, 경찰, 상하수도, 도로 등 일반적인 공공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한다.

미국의 면적은 북미대륙과 하와이 등을 포함한 약 9,826.7천 km²에 달하여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넓은데 이 가운데 토지는 약 93.2%이고 강과 호수를 포함한 수역이 6.8%이다. 전체 면적 가운데 약 5.6%가 개발된 지역이며 71.1%가 시골 전원(rural area)으로 분류된다. 전원 가운데 작물지는 19.0%, 목초지 6.0%, 그리고 방목지와 삼림이 각각 20.9%이다. 이러한 방대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5대호를 중심으로 한 강과 운하 그리고 철도는 체계적인 교통망을 형성하여 50개 주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인구는 약 3억 3,824만명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역시 세계 3위이다. 1790년 당시 약 393만명에 불과하던 인구는 1880년 5,019만명, 1920년 1억 602만명, 1970년 2억 33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율은 2008년 기준 연 0.88%이며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1명에 달한다. 평균수명은 78.1세(남 75.3세, 여 81.1세)이며 결혼율과 이혼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1) 2004년 부시 대통령 재선 당시 대통령과 상원의원 투표율은 각각 55.5%, 51.4%이며 2000년은 각각 50.3%, 47.1%였다.

〈표 1-1〉 인구 관련 주요통계의 국제비교

(단위: %, 명, 세)

	출산율	출산율 (여성1인당)	사망률	평균수명	결혼비율	이혼율
미국	14.1	2.1	8.3	77.9	11.2	5.4
한국	10.0	1.3	5.9	77.0	—	—
캐나다	10.8	1.6	7.8	80.2	6.8	—
일본	8.3	1.2	8.7	82.0	8.4	3.1
프랑스	13.1	2.0	8.4	80.7	7.1	3.5
독일	8.3	1.4	10.6	78.8	7.0	4.0
이탈리아	8.7	1.3	10.4	79.8	6.5	1.2
스페인	10.1	1.3	9.7	79.7	7.0	1.7
영국	10.7	1.7	10.1	78.5	8.0	3.9

주: 1. 여성 1인당 출산율을 제외하면 인구 1,000명당 비율을 의미함.

2. 결혼율과 이혼율(2005년)을 제외하면 2006년 기준.

자료: <http://www.census.gov/ipc/www/idb>

미국은 0~14세가 20.1%, 15~64세가 67.1%에 이르는 젊은 국가로서 인구 1,000명당 평균 2.9명이 이민으로 유입된다²⁾. 백인 80.0%, 흑인 12.9%, 아시안 4.4% 등의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이며 백인 중 라틴계열의 인구는 15.1%로 추정된다. 지속적인 이민에 기초한 특이한 사회적 환경으로 미국 노동시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상당히 유연하고 생산성도 높아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였다. 즉 장기 고용도 다른 국가에 비하여 익숙하지 않고 노동조합 참여율도 약 50년 전 35%에서 많이 줄어들어 2006년 현재 12%에 불과하다.

미국 성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노동인구로서 여성과 남성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약 15%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20세기에는 남미와 아시아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다. 미국은 종교박해를 피해 이민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로서 기독교가 절대적이다. 기독

2) 2000~2004년 사이에도 연평균 약 90만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교 인구는 51.3%, 가톨릭은 23.9%이며 이외 몰몬교가 1.7%, 유대교가 1.7%이다.

의무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구 비중은 85.5%(흑인 80.7%)이고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은 28.0%이다³⁾.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비율은 1960년 당시에는 7.7%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 16.2%, 1990년 21.3%, 2000년 2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사립학교 재학률은 약 14.4%인데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9~12학년은 8.5%, 전체 대학생의 24.8%가 사립교육을 받는다.

미국은 다인종 국가로서 헌법에 기초한 국가 운영을 통하여 정치적 안정과 자유를 향유한다. 미국 헌법은 세계 최초의 성문화된 헌법으로 소위 ‘법에 의한 지배’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을 이해할 수 없다. 한 예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듯이 미국 대법원은 연방헌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모든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독립 이후 13개 주가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헌법을 만들고 연방 차원에서는 느슨한 체제의 연합체를 구성하였다. 즉, 미국 헌법에 따라 각 주는 하나의 국가로 서의 필요성에 상충하지 않는 한 교육, 보건, 일반적 공공질서, 경제활동, 노동환경 그리고 결혼과 이혼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국 초기에는 법을 이행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구가 없었고 연방의회가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적 역할을 모두 수행하였다. 납세, 국방, 외교, 화폐, 상업거래 등에 있어서 각 주가 종종 독립적으로 행동하여 혼란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787년 대륙의회가 소집되어 소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55명의 대의원이 연방헌정(연합과 영구 연방에 관한 규약)⁴⁾ 대신 연방정부가 주간의 관계를 규제할 수 있고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연방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헌법은 처음 비준되고 난 이후 21차례 수정되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고 있다.

3) 백인 28.4%, 흑인 18.5%, 동양인 49.7% 그리고 스페인 계통은 12.4%.

4) 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l Union.

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

미국 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에 기초한 시장경제체제로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고전적 의미의 자본주의에 가까운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 볼 때 ‘성공은 신의 가호이고 실패는 신의 노여움’ 이기 때문에 굳이 제3자가 이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에서 기인한다⁵⁾. 또한 미국은 자유시장을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을 신장하고 권력의 집중을 저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청교도 정신과 보수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저항⁶⁾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역할은 19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미국경제가 혼합경제라고 지칭되기도 한다. 한 예로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 3.3%에 불과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1944년에는 44%에 달하게 된다. 이후 정부지출 비중이 1948년 11.6%까지 하락하였으나 2007년에는 18.7%까지 상승하였다.

미국에서 정부 역할이 팽창한 시기를 나누어 보면 독과점 폐지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근로안전 등 각종 규제가 도입된 1900년대 전후와 대공황 극복, 금융질서 확립 및 사회보장을 위한 1930년대 그리고 의료보험 등 저소득층 지원과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1960년대가 있다. 이후 1996년 노동을 전제조건으로 한 복지 혜택 부여로 사회보장제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시기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하면서 군사력 팽창의 필요성, 교외로의 인구이동, 베이비 붐 이후 교육·의료·연금 수요의 증대 등이 정부 확대에 기여하였다.

미국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법질서 유지와 국방 이외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4개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안정과 성장, 규제와 통제, 서비스 직접 공급과 직접 지원이 그것이다. 우선 연방정부는 물가안정과 고용 증대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그리고 통상정책을 수행한다. 대공황 이후 정부가 안정을 위하여 시장 개입을 할 수 있다는 통념이 확산되면서

5) 물론 19세기 미국의 산업정책은 보호주의적이었고 아직도 미국 농업에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 예로 미국 철도는 정부의 토지 기부와 보조금을 건설되었다.

6) 보수주의자들은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역할의 증대를 비판하지만 사실 1960~1990년 사이에 연방공무원은 약 2.4백만명에서 3백만명, 지방공무원은 6.4백만명에서 15.2백만명으로 증대하였다.

경제 안정화가 연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규제는 주로 시장실패에 대비한 금융 건전성과 독과점 등의 산업규제 그리고 환경, 노동, 복지 차원의 사회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집행되는데 1990년대에 연방규제기관은 100여개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산업규제는 트럭과 항공부문의 교통, 정보통신, 금융 등의 분야에서 기술발전과 경쟁 강화라는 명목 아래 점차 완화되고 있다⁷⁾.

연방정부는 국방과 기초연구에서 직접적인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교육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또한 경찰과 소방 등의 공공재를 공급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기업 등에게 금융과 보조금 등 직간접 지원을 하고 의료 및 실업보험과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운영한다.

2. 미국 경제의 변천

미국은 원래 소규모의 독립적인 식민지 농업경제에서 출발하여 230여년간 전 세계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거대하고 통합된 산업경제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의 배경에는 통일된 거대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 자본주의를 뒷받침하는 정치 법적 체계, 석유와 방대한 토지로 대표되는 다양한 천연자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과 인적 자본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 등이 있다. 특히 주주로 대표되는 주식시장과 포드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의 대량생산체제는 20세기 소비사회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⁸⁾.

물론 19세기 중반과 20세기 초 사이에 독과점, 노동쟁의, 주식시장 붕괴, 대공황 등으로 미국 경제가 한 때 위기에 직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미국이 내부적으로는 경제위기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질서의 혼란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7) 교통 분야의 경우 기업들이 항공, 도로, 철도노선을 마음대로 활용하여 가격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보통신에서는 AT&T 회사를 분할하여 전화시장의 독점을 종료하였고 1996년 정보통신법은 장거리 회사와 케이블 그리고 인터넷 창업회사 등이 지역 전화노선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 금융 분야에서는 1999년 금융서비스 현대화법을 통하여 은행과 증권 그리고 보험업무의 겸업을 금지하는 대공황 시절에 도입된 Glass-Steagall법을 폐지하였다.

8) 포드는 대량생산체제 아래서 노동자에게 상당히 고임금(일당 \$5)을 지급하여 근로의욕과 소비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 임금가설(efficient wage hypothesis)을 실행하였다.

로 부상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⁹⁾.

19세기 후반은 경제 확장과 금권정치가 횡행하여 기업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면서 시장에서는 독점권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는 시대였지만 정부는 자유방임주의로 일관하였다(Gilded Age, 1870~1898)¹⁰⁾.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등 그리고 중산층이 중심이 된 진보세력(The Progressives)이 기업규제와 자유영업 등의 경쟁 강화 그리고 반부패를 외치면서 1887년 주간거래법(Interstate Commerce Act)과 1890년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 제정되었다. 나아가 1901년 이후 진보세력에 동정적인 테디 루즈벨트(재임 1901~1909)와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재임 1913~1921)이 식품안전청(FDA)과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일련의 규제기관을 창설하여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였다. 또한 연방은행도 1913년에 설립되었다.

미국은 그 이후 대공황(1929~1940)을 겪으면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케인즈 이론에 기초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즉, 뉴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승리하게 된다¹¹⁾. 또한 이 때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3권 인정 등 복지와 금융부문에서 미국경제를 규정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1950년대는 마셜 플랜으로 유럽을 복구하면서 자유진영의 종주국으로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기순환, 특히 실업률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한 예로 1946년 고용법은 정부정책을 “최대한의 고용, 생산과 구매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IMF와 World Bank의 창립을 주창한 브레튼우드 체제의 출범(1944) 그리고 GATT 체제(1947)의 설립을 통하여 국제정치 질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및 금융 질서를 확립하였다.

그러나 1960~1990년대 사이에 경제정책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케인즈 이론에 기

9) 한 예로 1930~2007년 사이에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17.5배 증대되었다.

10) 록펠러 석유, 포드 자동차, 골드 기차, 모건 은행, 카네기 철강 등.

11) 이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1930년 스무트-허리법(Smoot-Hawley Act) 대신 1934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의 통과로 관세를 인하하였다.

초한 적극적인 경기순환의 안정을 꾀하던 미국은 다른 한편 존슨 대통령(재임 1963~1969)의 ‘Great Society’ 라는 구호 아래 의료보험(Medicare), 저소득층 지원(Food stamps), 교육과 인종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이행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월남전쟁과 유가급등을 겪으면서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였고 무역적자도 상당 수준에 이르게 되어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인 브레튼우드 체제가 1971년에 붕괴되었다.

한 예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1940~1960년의 20년 사이에 14에서 29.6로 약 2배 상승하였지만 1981년에는 90.9로 20년간 3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1979년부터는 미국 역사에서 유례가 거의 없는 3년간 연속 10% 이상의 물가상승을 경험하였다. 이는 미국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하여 물가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을 오랜 기간 시행하여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도 1970년대에는 6~8%로 증가하였고 1982년에는 10.8%까지 증가하였다.

높은 인플레이션¹²⁾에 직면한 미국은 결국 연방은행 폴 볼커 의장¹³⁾을 중심으로 경제안정을 위하여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하게 된다. 그 결과 1980~1982년 사이에 경기불황을 거치면서 물가는 4% 이하로 하락하였고 1990년대에는 더욱 낮아져 2%대로 추락하였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물가는 특히 1990년대 신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었다.

12) 1940년 이후 2년 연속 미국 물가상승률이 10%를 넘는 적이 없었으나 1979~1981년 사이의 물가상승률은 11.3%, 13.5%, 10.3%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연방은행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물가상승률은 1982년 6.2%, 1983년 3.2%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13) 1913년 설립된 연방은행은 “The Fed” 으로 지칭되며 미국 경제 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설립 이후 재무성 부채 발행에 종속적인 역할을 하던 연방은행은 1951년 연방은행 정책의 독립성에 대한 재무성과의 합의를 거쳐서 1980년대 Paul Volcker 의장의 지도 아래 물가안정을 이룩하면서 경제 대통령이라는 위명을 얻게 된다. 197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운영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퇴조한 것도 연방은행의 위상에 일조하였다.

〈표 1-2〉 주요 경제지표의 연도별 변화(1930~2007년)

(단위: 십억달러, %)

	국내 총생산(GDP) ¹⁾			소비자물가		실업률
	실질 GDP	증가율	1인당	물가지수 ¹⁾	상승률	
1930	790.7	-8.6	6,418	16.7	-2.3	8.7 ²⁾
1935	766.9	8.9	6,021	13.7	-9.9	20.1 ²⁾
1940	1,034.1	8.8	7,827	14.0	0.7	14.6 ²⁾
1945	1,786.3	-1.1	12,766	18.0	2.3	1.9 ²⁾
1950	1,777.3	8.7	11,717	24.1	1.3	4.3
1955	2,212.8	7.1	13,389	26.8	-0.4	4.2
1960	2,501.8	2.5	13,840	29.6	1.7	6.6
1965	3,191.1	6.4	16,420	31.5	1.6	4.0
1970	3,771.9	0.2	18,391	38.8	5.7	6.1
1975	4,311.2	-0.2	19,961	53.8	9.1	8.2
1980	5,161.7	-0.2	22,666	82.4	13.5	7.2
1985	6,053.7	4.1	25,382	107.6	3.6	7.0
1990	7,112.5	1.9	28,492	130.7	5.4	6.3
1995	8,031.7	2.5	30,128	152.4	2.8	5.6
2000	9,817.0	3.7	34,759	172.2	3.4	3.9
2005	10,989.5	2.9	37,082	195.3	3.4	4.8
2007	13,807.5	2.0	38,148	207.3	2.9	5.0

주: 1) 국내총생산은 2000년 달러 기준이며 물가지수는 1982~1984년이 100임.

2) 14세 이상의 민간 실업률이며 이외 실업률은 16세 이상 전체 실업률.

자료: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

한편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재임 1981~1989)이 집권하면서 감세와 함께 노동, 소비, 환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출과 이에 따른 공적부채 증대가 물가안정을 해칠 염려가 있었으나 전술한 대로 연방은행이 이자율 조정을 통하여 물가를 통제하였다.

1991~1999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낮은 금리와 정보통신기술 등에 기초한 신경제로 금융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을 중심으로 소위 '신경제(New Economy)' 라는

부흥기를 맞았다. 한 예로 1999년 실업률은 30년간 최저인 4.1%, 인플레이션율은 2.4% 그리고 다우존스 주식시장 지수는 1970년대 말 1,000에서 1999년 11,000대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재임 2001~2009) 취임 이후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면서 재정적자¹⁴⁾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사회보장기금의 부실화 그리고 대외무역 적자로 인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게 된다.

3. 미국경제 현황

가. 경제 현황

미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2007년 약 13.8조달러에 달하여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며 1인당 GDP는 4만 5,800달러로서 세계 10위이다. 미국은 특히 약 5%의 인구로 세계 총생산의 대략 25% 정도를 생산한다. 2007년 당시 민간소비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70.3%, 민간투자 15.4%이고 무역적자는 7,078억달러(5.1%)에 달한다. 정부지출은 총 2조 6,748억달러로 전체 GDP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연방정부 지출은 9,793억달러(7.1%) 그리고 지방정부 지출은 1조 6,955억달러(12.3%)에 달한다.

14) 연방정부 부채는 2008년 1월 30일 기준으로 9.2조달러로 1억 1,700만명의 납세자 1인당 약 7만 9,000달러이다.

〈표 1-3〉 2007년 국내총생산(GDP)과 연도별 실질성장률의 변화

(단위: 십억달러, %)

	2007 GDP		2007	2006	2005	2000	1995	1990
국내총생산	13,807.5		2.0	2.8	2.9	3.7	2.5	1.9
민간소비	9,710.2	(70.3)	2.8	3.0	3.0	4.7	2.7	2.0
민간 총투자	2,130.4	(15.4)	-5.4	2.1	5.8	5.7	3.1	-3.4
수출	1,662.4	(12.0)	8.4	9.1	7.0	8.7	10.1	9.0
수입	2,370.2	(17.2)	1.7	6.0	6.8	13.1	8.0	3.6
순수입	707.8	(5.1)						
정부지출	2,674.8	(19.4)	2.1	1.7	0.4	2.1	0.5	3.2
연방정부	979.3	(7.1)	1.6	2.3	1.2	0.9	-2.7	2.0
지방정부	1,695.5	(12.3)	2.3	1.3	-0.1	2.7	-2.6	4.1

주: () 안은 비중임.

자료: Historical Abstract of United States(2008).

미국 경제의 특징은 소비가 전체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 경제라는 것이며 대외의존도¹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9%에 달한다.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실업률 4.6%, 실질성장률은 2.2%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2.9%에 이른다. 또한 2007년 예산과 정부지출¹⁶⁾은 각각 2.57조달러, 2.73조달러이며 정부부채는 GDP의 60.8%에 달한다.

15) 수출 + 수입/국내총생산

16)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여 9월 30일에 종료된다.

〈표 1-4〉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비중과 연도별 변화(1947~2007년)

(단위: 십억달러, %)

	1947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국내총생산	244.1	293.8	526.4	1,038.5	2,789.5	5,803.1	9,817.0	13,841.3
민간	87.5	89.2	86.8	84.8	86.2	86.1	87.7	87.4
재화	39.8	40.8	35.5	31.6	30.1	23.7	21.2	18.9
서비스	47.8	48.5	51.4	53.2	56.1	62.4	66.5	68.6
정부	12.5	10.8	13.2	15.2	13.8	13.9	12.3	12.6
연방	8.4	6.2	6.9	6.9	5.4	5.2	3.9	4.0
지방	4.1	4.6	6.3	8.4	8.4	8.7	8.4	8.6
농림어업	8.2	6.8	3.8	2.6	2.2	1.7	1.0	1.2
광산	2.3	2.6	1.9	1.4	3.3	1.5	1.2	2.0
건설	3.7	4.4	4.5	4.8	4.7	4.3	4.4	4.1
제조업	25.6	27.0	25.3	22.7	20.0	16.3	14.5	11.7
내구재	13.0	14.8	14.8	13.4	12.0	9.4	8.8	6.7
비내구재	12.6	12.2	10.6	9.3	8.0	7.0	5.7	5.0
도소매	15.7	15.1	14.5	14.5	14.0	12.9	12.7	12.3
교통창고	6.0	5.9	4.5	3.9	3.7	2.9	3.1	2.9
정보통신영화	2.5	2.7	3.0	3.4	3.6	3.9	4.7	4.7
금융보험부동산	10.4	11.4	14.1	14.6	15.9	18.0	19.7	20.7
전문사무직	3.7	3.9	4.7	5.4	6.8	9.8	11.6	12.2
교육보건	1.9	2.0	2.7	3.9	5.0	6.7	6.9	7.9
숙박음식오락	3.2	3.0	2.8	2.8	3.0	3.4	3.6	3.7

주: 고용은 상근 및 비상근 노동자 고용을 의미함.

자료: <http://www.bea.gov/industry/>

미국 경제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대개 약 87%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조업의 비중은 2007년 현재 약 11.7%에 불과하다¹⁷⁾. 그 대신 서

17) 물론 절대 금액으로 보면 제조업 생산은 약 1.61조달러로 제조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일본의 약 1.5배에 이른다.

비스업 생산이 전체 GDP의 약 69%를 차지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서비스산업이 대단히 비중이 높다. 서비스업에서는 금융보험산업의 비중이 20.7%로 제조업의 거의 2배에 달하며 전문사무직도 12.2%로 제조업 비중보다 높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사실 1970년 초반만 해도 50%대 초반 혹은 그 이하였으나 꾸준히 증가해 왔고 특히 1990년을 전후하여 60%를 넘어서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제조업의 경우 1950년 당시 27%를 차지하였지만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약 12%로 195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같은 시기(1950~2007년)에 금융보험·부동산과 전문사무직은 각각 2배와 4배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의 비중은 6.8%에서 1.2%로 감소하였지만 농업의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

고용구조 측면에서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만명이 고용되어 있는데 민간과 정부부문에서 일하는 사람은 각각 83.0%와 17.0%이다(비상근 포함). 정부의 GDP 비중은 12.6%이지만 고용 비중은 이보다 높다. 한편 서비스부문의 고용은 63.5%로 재화부문의 19.5%에 비하여 3배 이상 많다. 특히 도소매업(15.6%), 전문사무직(12.0%), 교육보건(11.1%)의 순으로 고용창출이 많다. 반면 금융보험·부동산은 GDP 비중(20.7%)에 비하여 고용 비중은 5.7%로 낮다.

〈표 1-5〉 고용구조의 변화(1948~1997년)

(단위: 백만명, %)

	1948	1955	1960	1970	1980	1990	1995	1997
고용규모	51.3	59.2	62.8	79.8	98.4	118.1	124.8	129.9
민간	84.6	81.1	80.5	78.6	80.4	81.5	82.3	83.0
재화	40.1	37.1	34.4	30.3	26.8	21.2	19.7	19.5
서비스	44.6	44.0	46.1	48.3	53.6	60.3	62.6	63.5
정부	15.4	18.9	19.5	21.4	19.6	18.5	17.7	17.0
연방	7.8	10.5	9.7	8.9	6.1	5.5	4.5	4.1
지방	7.6	8.4	9.8	12.5	13.5	12.9	13.2	13.0
농림어업	4.9	3.8	3.3	1.8	1.7	1.2	1.1	1.1
광산	1.9	1.3	1.1	0.7	1.0	0.6	0.4	0.4
건설	4.5	4.9	4.8	4.6	4.6	4.6	4.4	4.6
제조업	28.7	27.1	25.3	23.0	19.5	14.9	13.7	13.3
내구재	15.7	15.6	14.5	13.6	12.0	9.0	8.3	8.2
비내구재	13.9	11.5	10.8	9.4	7.5	5.9	5.5	5.1
도소매	14.0	13.7	14.1	14.7	15.7	15.8	15.6	15.6
교통창고	5.9	4.8	4.2	3.5	3.1	2.9	3.1	3.1
정보통신영화	2.7	2.6	2.5	2.5	2.4	2.3	2.3	2.4
금융보험부동산	3.5	3.9	4.2	4.6	5.4	5.9	5.6	5.7
전문사무직	3.3	3.6	4.1	5.2	7.0	10.1	11.3	12.0
교육보건	2.8	3.4	4.1	5.5	7.8	9.8	11.0	11.1
숙박음식오락	5.0	4.8	5.0	5.4	6.5	7.7	8.4	8.4

주: 고용은 상근 및 비상근 노동자 고용을 의미함.

자료: http://www.bea.gov/industry/NAICSemployment_datarelease.htm

국내총생산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의 고용 비중은 1950년 27.1%에서 2007년 13.3%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에 전문사무직과 교육보건부문의 고용은 각각 3.3%, 2.8%에서 12.0%와 11.1%로 거의 4배 정도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연방 정부의 고용은 10.5%에서 4.1%로 감소한 반면 지방정부의 고용은 7.6%에서 13.0%로

증가하였다. 이는 1950~2007년 사이에 연방정부의 GDP 비중이 감소하였지만 지방정부의 GDP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용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13조 8,075억달러에 달하는 2007년 국내총생산에서 해외 이전지급을 합하여 조정하고 1조 2,886억달러의 고정자본 소모를 제하면 국민소득은 12조 2,709억달러에 이른다. 국민소득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보면 노동자 보수가 63.7%(7조 8,123억달러), 사업자 소득 8.6%(1조 562억달러), 주식회사 이윤 1조 6,423억달러(13.4%), 이자 등의 지급금 6,644억달러(5.4%) 그리고 간접세 세금 9,632억달러(7.8%) 등에 이른다. 이를 2001년과 비교해보면 여타 보수는 약간씩 감소한 반면 주식회사 이윤은 9.7%에서 약 3.7%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1-6〉 국내 총생산, 국민소득과 항목별 구성(2001~2007년)

(단위: 십억달러)

	2007	2004	2001
GDP	13,807.5	11,685.9	10,100.8
+ 해외소득	861.7	437.5	319.0
- 해외지급	759.3	361.3	283.8
= 국민총생산	13,910.0	11,762.1	10,135.9
국민소득	12,270.9	10,306.8	8,981.2
노동자 보수	7,812.3	6,656.4	5,940.4
임금	6,355.7	5,379.5	4,942.9
기타수당	1,456.6	1,276.9	997.6
개인사업자 소득 ¹⁾	1,056.2	911.6	770.6
임대소득 ¹⁾	40.0	118.4	163.1
주식회사 이윤 ¹⁾	1,642.3	1,231.2	770.4
이자 및 기타 지급	664.4	491.2	568.4
간접세 세금-보조금	963.2	819.2	674.5

주: 1) 감가상각으로 인한 조정 포함.

자료: <http://www.census.gov/compendia/statab/>

2007년 당시 재화와 서비스 수출 1조 6,457억달러, 수입 1조 1,485억달러로 경상적자가 7,002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술한 대로 국내총생산의 약 5%에 이르는 적자 규

모이다. 서비스에서는 교역흑자는 1,191억달러로 재화만 보면 무역적자는 8,194억달러에 이른다. 서비스수지에서 로열티 등 수출이 826억달러로 흑자규모는 576억달러이고 개인서비스 수출은 2,235억달러로 791억달러가 흑자이다. 재화 수입에서는 자동차와 부품(2,589억달러) 그리고 원유 수입의 비중(2,372억달러)이 가장 크다.

〈표 1-7〉 2007년 미국 교역 현황

(단위: 억달러)

재화									서비스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총합	소비재	자본재	공업재	총합	소비재	자본재	공업재			
-8,194	11,485	1,461	4,474	3,163	19,679	4,789	4,445	6,347	1,191	4,972	3,781

주: 공업재는 원유 등 산업원료와 중간재 포함.

자료: <http://www.bea.gov/industry/>

전술한 대로 미국의 교역의존도는 2007년 29%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1960년 당시 9.5%에 비하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1980년을 전후하여 20%로 증가한 이래 특히 1990년대 이후 많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 예로 2000~2006년 사이에 수출은 33% 그리고 수입은 52% 증가하였고 그 결과 무역적자가 거의 2배로 증가하였다.

〈표 1-8〉 국내총생산과 교역의 변화(1960~2007년)

(단위: 십억달러, %)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2005	2007
국내총생산	526	1,039	2,790	5,803	7,398	9,817	12,456	13,807
수출	5.1	5.6	10.1	9.5	11.0	11.2	10.5	12.0
수입	4.4	5.4	10.5	10.9	12.2	15.0	16.2	17.2
순수입	0.7	0.2	0.4	1.4	1.2	4.8	5.7	5.1

주: 수출입 등은 재화와 서비스 포함.

자료: <http://www.bea.gov/national/nipaweb>

물론 우리나라에 비하면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아직도 낮지만 미국 경제도 외부충격에서 점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 수치가 나타낸다. 특히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의 유입이 없이는 지속될 수 없으므로 교역적자가 미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전망이다¹⁸⁾.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는 수출의 경우 캐나다(21.4%), 멕시코(11.4%), 중국(5.6%), 일본(5.4%), 영국(4.3%), 독일(4.3%) 등이며 수입에서는 중국(16.9%), 캐나다(15.7%), 멕시코(10.6%), 일본(7.4%), 독일(4.8%) 등이다.

나. 2007~2009년 금융위기

2007~2009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파산, 금융자산 가치 폭락¹⁹⁾, 금융구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²⁰⁾ 그리고 상당 규모의 경제침체를 유발하였고 심지어 일부 국가의 부도 위험까지 촉발하였다²¹⁾. 이러한 경제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경제위기로서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연쇄적 경제 불황²²⁾을 가져왔고 국제적 정책 공조와 함께 달러를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하는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에서 진행된 소비 활황과 낮은 저축률은 아시아와 중동지역으로부터 자금 유입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96~2004년 사이에 미국 무역적자는 약 6,500억달러, 국내총생산의 1.5%에서 5.8%로 확대되었고 이러한 무역적자를 감당하기 위하여 미국은 자본수지에서 흑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국제자본 유입과 2002~2004년 미국 정책당국이 시작한 저금리정책²³⁾은

18) 한 예로 2006년 외국인은 약 1.8조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였다. 이 가운데 약 1,840억달러만이 직접투자이고 나머지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였다.

19) 2008년 11월 주가지수인 S&P 500은 2007년 최고점에서 45%나 하락하였고 미국 주택자산 규모는 2006년 13조달러에서 2008년 중반 8.8조달러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 2008년 9월 미국은 7천억달러에 이르는 금융구제를 발표하였고 10월 위험자산 구제 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을 포함한 경제위기 안정법을 제정하였다.

21)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은 2008년 4분기와 2009년 1분기에 연 6% 감소하였고 2009년 6월 실업률은 9.5%로 1983년 이후 최고점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2배 증가하였다.

22) 2008년 11월 유럽위원회는 2009년 유럽국가 경제성장률을 0%(영국 -1.0%)로 추정하였고 11월 IMF는 2009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0.3%로 추정하였다.

23) 2000~2003년 사이에 미국 연방은행은 IT 거품과 9.11 사태에 의한 충격을 완화한다는 명

손쉬운 신용 창출에 따른 주택시장과 신용카드, 자동차 등 다른 금융시장의 거품을 촉발하였다. 즉, 주택담보증권(Mortgage Backed Security) 등 금융상품 개발로 전 세계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미국 주택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용이한 대출과 주택가격의 상승²⁴⁾은 한동안 채무자로 하여금 변동금리를 활용한 주택구입과 매각으로 자산을 증대하고 소비를 확대하여 경기가 잘 돌아가는 활황을 가져왔지만 2006년 이후 이자율이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주택담보증권에 투자한 많은 투자자들이 수조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입게 되었고 부도 위험은 주택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주택담보 등 신용버블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자은행과 헤지 펀드와 같은 음성적 금융시스템이 일반 상업은행만큼 그 역할이 증대되었지만 정책당국은 이들 금융업체가 전반적 금융체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상업은행과 대등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 업체의 로비에 의하여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하지 못하고 과도한 규제완화를 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²⁵⁾. 한 예로 1997년 그린스펀 연방은행 위원장은 파생금융상품 규제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²⁶⁾은 자발적인 금융규제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 특정 신용위험을 회피하거나 반대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Credit Default Swaps)의 규모는 1998년 이후 2008년까지 10년간 100배 증대하였고 같은 기간에 그 금액은 33억달러에서 47조달러로 증가하였다²⁷⁾.

목 아래 금리(federal fund rate)를 6.5%에서 1.0%로 인하하였다.

24) 1997~2006년 사이에 미국 평균주택가격은 124% 증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1년 이전 20년간 미국 중간 주택가격(median housing price)은 중간소득의 2.9~3.1배에 달하였지만 이 비율이 2004년에는 4.0배, 2006년에는 4.6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 가정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1990년 77%였으나 2007년에는 그 비율이 127%로 증가하였다.

25) 한 예로 2004년 4월 미국 증권감독원(Security Exchange Commission)은 순자본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투자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주택담보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Fannie Mae나 Freddie Mac와 같은 정부지원기관이 경쟁적으로 서브프라임 주택대출을 확대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1999년 의회에서 통과된 Gramm-Leach-Bliley Act가 1933년 대 공황 당시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Glass-Steagall Act를 파기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것이 근원적 이유이다.

26) Commodity Futures Modernization Act of 2000

27) 2003년 Warren Buffet은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을 대량살상 금융무기(financial weapon of mass destruction)로 지칭한 바 있다.

금융위기를 촉발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 미국에서 주택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서브 프라임 주택채권의 채납 증대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막대한 손실과 투자자의 신뢰 상실이다. 하지만 서브 프라임 사태는 금융위기의 한 측면에 불과하며 금융시장의 거품은 신용기준의 저하, 투자자와 신용평가기관의 감독 태만, 불투명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몰 그리고 정부의 규제감독 완화 등으로 발생하였다. 물론 그린스펀 미국 연방은행 총재의 느슨한 저금리 정책도 주택시장 거품을 촉발한 중요한 원인이 된다.

요컨대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적정한 위험관리나 건전한 임무 수행(due diligence)에 대한 책임감 없이 고수익 상품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던 투자은행은 파산하거나 매각되었고 일반 상업은행으로 전환되었다²⁸⁾. 2009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일련의 금융 규제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폴 크루그만이나 조셉 스티글리츠 등의 학자들은 1933년 Glass-Steagall Act와 같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하는 규제안, 대형은행을 분할하는 방안, 최소자본비율 강화나 파생금융상품 규제 혹은 파산 위험이 있는 은행을 국유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와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 거품이 확실한 국내 주택가격 상승과 향후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 미국 경제 평가와 전망

미국은 소위 '기회의 땅'으로 불린다. 즉,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실제로 보면 미국에는 1995년 현재 약 2,250만개 기업(비농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영업체 1,640만개, 파트너십 1,600만개 그리고 주식회사 450만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99%의 독립기업이 500명 이하의 노동자로 구성된 소기업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52%를 고용하고 있다³⁰⁾.

28) Lehman Brothers는 파산, Bear Stearns와 Merrill Lynch은 매각 그리고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는 상업은행으로 전환하였다.

29) 한 예로 2005년 당시 약 67.2만개 기업이 탄생하였고 54.5만개 기업이 퇴출하였다.

30) 또한 97.5%의 기업이 2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나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생산하

미국에서는 사업에 실패해도 사회적 오명으로 치부되지 않고 다음번의 성공을 위한 경험과정으로 간주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실패해도 그로 인하여 파산 등 경제적 몰락을 가져오지 않는 사법·경제제도 그리고 또한 독과점 등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체제가 미국 경제의 장점이다.

미국은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하여 시장경제에 더 충실한 국가이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소위 양극화된 노동시장(two-tier labor market)이 발달하여 저소득층이 임금과 의료보험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발전과 세계화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정부정책으로 1980년대 이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실제로 미국 정부에 의하면 1986~2005년 사이에 하위 60% 계층의 실질소득은 10% 증가한 반면 최상위 10%와 5% 계층의 소득은 각각 32.5%, 4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³¹⁾ 이에 따라 최하위 계층 10%의 소득 점유비는 2%인 데 비하여 최상위 계층 10%는 30%의 소득 점유비를 보인다³²⁾.

1994~2000년 사이에 미국 경제는 소위 IT산업의 성장에 따른 신경제³³⁾를 경험하여 경상 GDP가 7조 543억달러에서 9조 8,246억달러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5% 이내로 하락하는 장기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또한 1998년에는 만성적인 적자에서 재정흑자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2001년 신경제가 퇴조하면서 유가상승³⁴⁾과 금융 불안이 미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는 낮은 금리와 부동산 거품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으로 소득을 능가하는 소비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경제가 경험하고 있다.

고 지난 10년간 60~80%의 고용을 창출하였다(USA Economy in Brief, p. 19).

31) The World Fact Book: United State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32) 2005년을 기준할 때 소득이 25,000달러 이하인 가구는 26.8%, 25,000~50,000달러는 26.6%, 50,000~100,000달러 30.3%, 100,000~150,000달러 10.1%, 150,000만달러 이상인 가구는 0.06%이다.

33) 1990년대 노동인구의 증가율이 1% 그리고 생산성 증가율이 최대 1.5%로 추정되면서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2.5%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효율성이 증대하면서 장기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그린스핀 등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가 구조적인 전환점을 경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말 노동 생산성의 증가는 3%까지 육박하였다.

34) 미국 유통소비의 3분의 2가 수입품이다.

〈표 1-9〉 연도별 가계 총소득의 배분구조(1947~2005년)

(단위: %)

	최하위 20%	두번째 20%	세번째 20%	네번째 20%	최상위 20%	최상위 5%
1947	5.0	11.9	17.0	23.1	43.0	17.5
1950	4.5	12.0	17.4	23.4	42.7	17.3
1960	4.8	12.2	17.8	24.0	41.3	15.9
1970	5.4	12.2	17.6	23.8	40.9	15.6
1980	5.3	11.6	17.6	24.4	41.1	14.6
1990	4.6	10.8	16.6	23.8	44.3	17.4
2000	4.3	9.8	15.4	22.7	47.7	21.1
2005	3.4	8.6	14.6	23.0	50.4	22.2

주: 2005년은 센서스 자료가 다름.

자료: 1980년 이전은 <http://www.census.gov/prod/2002pubs> 그 이후는 <http://www.census.gov/prod/2006pubs>.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제조업의 퇴조, 감세와 이라크 등 전쟁비용 지출에 따른 대규모 정부적자³⁵⁾, 무역적자,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 대외 의존적인 에너지 소비³⁶⁾,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 지출 증가 그리고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소득 재분배 악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금융질서 개편과 이에 따른 달러체제의 향방이 미국 이외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향후 국제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5) 2006년 재정적자는 4,350억달러, 연방정부의 부채는 약 9조달러로 국내총생산의 65%를 차지한다.

36) 미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85%를 원유와 석탄 등 화석원료가 공급한다.

Ⅱ. 조세체계

1. 연방세법

가. 일반원칙

미국 헌법 제1조 8항 1절은 미국의 일반 복지와 국방 그리고 채권을 지불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또한 9항 5절은 수출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래 9항 4절은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직접세를 금지하였지만 1913년 제16차 수정헌법은 인구비례조항에 근거하지 않은 소득세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연방세법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물론 조세의 기본적 규정을 담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다. 그러나 의회가 법을 만들 때 다양한 거래 형태를 모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은 일반적 언어로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실제 상황에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규정과 법원의 판례가 중요하다. 실제로 법을 집행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내국세법에서 일정 권한을 이양한 재무성 시행규칙(Treasury Regulation)이 있다. 한편 미국 국세청도 법의 해석과 정의 등을 위하여 상당수 국세청 통칙(IRS rulings)을 만들고 있다. 다만 통칙은 재무성 규정 수준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친 결정이 아니므로 재무성 시행규칙보다 법적 비중이 떨어진다.

〈표 II-1〉 연방세법의 근거와 권위

법적 근거	핵심내용	권위
입법: 내국세법	소득, 유산, 고용, 소비세법	세법상의 최고 권위
행정: 재무성 시행규칙	재무장관의 내국세법 해석 제안, 해석, 입법적 규정으로 구분	입법규정은 해석 규정보다 상위
국세청 통칙	규칙, 행정절차, 공고, 기술적 메모	IRS의 법해석, 재무부 규정의 하위
사법: 사법원칙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원칙	IRS, 납세자, 하위법원이 준수
사법해석	하위법원 등의 판례	항소법원 판정은 하위법원이 준수

세법과 관련된 대부분의 분쟁은 미국 국세청(IRS) 내부의 이의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그 결과는 전례(precedent)가 된다. 하위 법원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등법원(US Circuit Court of Appeals) 그리고 이후 대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합헌성 여부 등 매우 중요한 사안과 상충되는 판례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의회는 내국세법(I.R.C.)을 제정하고 이를 미국 재무성과 국세청은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과 국세청 통칙(IRS rulings)을 통하여 이행 및 해석한다. 그러나 세법이 실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법원이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미국 조세법은 첫째, 의회의 내국세법(I.R.C.), 둘째, 행정부의 시행규칙과 통칙(Regulation and rulings), 마지막으로 연방법원의 판례(decision)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 소득세법의 권위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는 군(tier)이 더 권위가 있다. 또한 같은 군에서 상충되는 법령은 가장 늦게 도입된 법령이 우선순위가 있다(last-in-time rule). 이 가운데 규정과 판례는 법령의 해석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예규는 법령이 주어진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석하는 역할을 한다.

〈표 II-2〉 연방세 법령의 권위

1군(Tier 1)	2군(Tier 2)	3군(Tier 3)
연방헌법	해석 법령(재무성과 국세청)	입법연혁
내국세법(I.R.C.)	최종, 잠정, 제안규정(IRC § 7805)	국세청 서면회신(letter Ruling)
재무성 시행규칙	재무성 고시와 고지	
연방법원 판결	국세청 예규(Revenue Ruling)	
국제협약		

나.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개별 예산법에 산재되어 있던 세금 징수에 관한 법적 규정은 1939년 의회에서 내국 세법으로 일관되게 정리되어 연방법의 일부가 되었다(Title 26 of the United State Code: 26 U.S.C.). 이후 1954년과 1986년에 다시 정리된 현재의 내국세법은 약 6,000쪽에 이르는데 세목별로 편(subtitle)으로 나뉘어져 있다. 한 예로 〈표 II-3〉에서 보듯이 소득세(Subtitle A), 유산·증여세(Subtitle B), 고용세(Subtitle C), 연방 기타 소비세(Subtitle D), 주류와 담배 그리고 총기류에 대한 특정 소비세(Subtitle 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과세절차와 행정은 Subtitle F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3〉 내국세법 주요 세목별 목차

Subtitle	Chapter	Section
Subtitle A. 소득세	1. 일반세와 부가세	1
	2. 자영업자세	1401
	3. 외국인과 외국기업 세금 원천징수	1441
	4. 공공계약 과다이윤 환수에 대한 규정(폐지)	1471
	5. 소득세 회피를 위한 소득 이전시 과세(폐지)	1491
	6. 연결납세	1501
Subtitle B. 유산·증여세	11. 유산세	2001
	12. 증여세	2501
	13. 세대생략세	2601
	14. 특별 평가규정	2701
Subtitle C. 고용세	21. 연방사회보장법	3101
	22. 철도은퇴연금세법	3201
	23. 연방실업세법	3301
	23A. 철도 실업 재지급세	3321
	24. 임금 원천징수(개인소득세)	3401
	25 고용세 관련 일반규정	3501
Subtitle D. 기타 소비세	31. 소매세	4001
	32. 제조업자세	4061
	33. 시설 및 서비스세	4231
	34. 외국회사 발행 보험계약	4371
	35. 도박세	4401
	36. 기타 소비세	4461
	37. 폐지	4501
	38. 환경세	4611
	39. 등록의무	4701
	40. 직업세 관련 일반규정	4901
	41. 공공 자선기부	4911
	42. 민간단체와 면세기관	4940
	43. 자격이 있는 연금 등	4972
	44. 자격이 있는 투자실체	4981
	45. 폐지	4986
	46. Golden Parachute Payments	4999
	47. 특정 단체의료보험	5000
Subtitle E. 주류·담배·기타 특정 소비세	51. 주류(증류주·포도주·맥주)	5001
	52. 담배제품(담배·시가·담배제지·튜브)	5701
	53. 총기류(기관총·파괴장치·소화기)	5801
	54. 주식매점(Greenmail)	5881

〈표 II-3〉의 계속

Subtitle	Chapter	Section
Subtitle F. 과세절차 및 행정	61. 과세자료 및 신고	6001
	62. 납세기한과 장소	6161
	63. 부과	6211
	64. 징수	6301
	65. 감면·공제·환급	6401
	66. 제한	6501
	67. 이자	6601
	68. 가산세·가산금·부과벌금	6651
	69. 인지 관련 일반규정	6801
	70. Jeopardy and Receivership	6851
	71. Transferee and Fiduciary	6901
	72. 면허 및 등록	7001
	73. 보증채권	7101
	74. 결산합의 및 화해	7121
	75. 형사범·기타 범죄·몰수	7201
	76. 사법절차	7401
	77. 기타 규정	7502
	78. 내국세법상 의무와 집행 확인	7601
	79. 정의	7701
	80. 일반규정	7805
Subtitle G. 조세합동위원회	91. 의회 합동위원회 구성 및 위원	8001
	92. 합동위원회 권한과 의무	8021
Subtitle H. 대통령선거 유세 재원	95. 대통령 선거 유세기금	9001
	96. 대통령 선거 matching payment account	9031
Subtitle L. 신탁기금	98. 신탁기금	9500
Subtitle J. 석탄산업 의료혜택	99. 석탄산업 의료혜택	9701

각 세목은 다시 장(chapter)과 부장(subchapter), 부장 속에는 편(part)과 부편(subpart), 그 아래는 다시 조(section)와 부조(subsection), 항(paragraph)과 부항(subparagraph), 호(clause)의 순으로 구분된다³⁷⁾. 법인세 등 사업 관련 규정은 소득

37) 즉, 세목에 해당하는 subtitle(§) 안에 chapter, subchapter, part, section, subsection, paragraph, subparagraph, subsubparagraph, clause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Sec. 6501 (a) (2) (H) (i)에서 6501은 조, (a)는 부조, (2)는 항, (H)는 부항, (i)는 호에 해당한다.

세편에서도 제1장 일반세와 부가세 속의 subchapter C~K에 제정되어 있다. 이처럼 내국세법은 복잡하지만 조(section)에 해당하는 부분은 운영규정으로서 전체 내국세법에서 한번만 사용되므로 조를 인용하는 것이 편리하다(한 예로 section 2(a)).

다. 세법의 제정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법안(bill)이 발의되면 이는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로 넘겨져서 의원과 행정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심의한다³⁸⁾. 세입·세출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하원 전체회의를 거치는데 이 때 부분 개정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고 통과되면 상원 전체회의에 넘겨지는데 상원에서는 의원이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상하원의 법안이 상이하면 하원과 상원의원 동수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한 후 최종안을 각자 상원과 하원에서 표결에 부친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하 양원의 3분의 2가 다시 동의하면 거부권은 무효가 된다.

행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대통령이 속한 당의 의원에 의하여 의회에 소개된다. 이 외에도 예외적으로 상원에서도 다른 법령의 부칙으로 세법이 발의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먼저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다시 상원 재무위원회를 거쳐 상원 전체회의로 넘겨진다³⁹⁾.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하원 위원회 보좌관들은 위원회 보고서(Committee Report)를 만들어 제출한다. 동 보고서는 해당 세법에 관한 의회의 의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며 재무성 시행규칙 작성에 일종의 지침이 된다. 또한 법원에서 판정을 할 때 위원회 보고서를 참고한다.

38) 미국 헌법에 의하면 세금 징수 관련법은 하원에서 발의되어야 한다.

39) 1982년 상원에서 발의된 조세 형평성과 예산 책임성에 관한 법률(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82)이 법정에서 합헌으로 판정받음으로써 상원의 발의권이 인정되었다.

라. 재무성 규정(Treasury Regulation)

재무성은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세법 이행을 위한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다(내국세법 7805(a)조). 이는 납세자에게 내국세법을 쉽게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지침 혹은 해석적인 시행세칙(Interpretative regul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도의 기술적 사안에 대하여 의회가 재무성에게 명시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여 만들어진 규정 즉, 입법적 규정(Legislative regulation)도 있다. 한 예로 내국세법 1502조상의 연결납세제도는 재무성 장관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과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무성 시행규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며 내국세법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법원은 입법적 규칙은 물론이고 해석적 시행세칙도 불합리하고 내국세법과 모순되지 않는 한 위법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규정이 재무성에 위임된 권한을 넘거나 세법에 위반되거나 혹은 불합리한 경우 법원이 위법 판정을 한다. 특히 재무성 시행규칙이 귀속되는 내국세법 규정을 의회가 수정 없이 개정하면 법원은 해당 규정을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legislative reenactment doctrine).

재무성 규정은 공식적으로 잠정규칙, 임시규칙 그리고 최종규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잠정규칙이나 임시규칙이 최종규칙이 되면 그 효력은 각각의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잠정규칙(Proposed Regulation)은 연방관보에 게재되어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규칙으로 만들어진다. 잠정규칙은 재무성의 공식적인 내국세법 해석이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최종규칙(Permanent Regulation)은 재무성 결정으로 관보에 공포되며 연방규칙법⁴⁰⁾에 포함되어 법문화되며 내국세법과 거의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즉, 최종규칙은 의회가 규정을 만들 권한을 재무성에게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40) Title 26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26 CFR): 재무성 규정은 26 cfr 1.217-2(C)(1) 혹은 Treas. Reg. § 1.217-2(c)(1)으로 지칭되는데 여기서 소수점 이전의 숫자는 관련 세목(part), 그 이후 숫자는 내국세법의 조문(section)과 규정의 항목(subdivision)을 의미한다. 한 예로, 1은 소득세, 217은 내국세법의 조문 그리고 2(C)(1)은 규정의 세부항목인데 다만 항목은 내국세법과 관련이 없다. 세목은 소득세 part 1, 유산세 part 20, 증여세 part 25, 고용세 part 31, 소비세 part 48, 49 과세행정, part 301, 절차적 규정은 part 601이다.

법원에서 불합리하거나 법과 배치되는 내용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밖에 법안의 의회 통과 후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공포되는 임시규칙(Temporary Regulation)은 새로운 법안에 대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준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임시규칙은 법 제7805조에 따라 공포 후 3년간만 유효하다.

마. 국세청 행정공고(Administrative pronouncement)

한편 미국 국세청(IRS)도 행정공고를 통하여 내국세법을 해석한다. 이 가운데 국세청 예규(revenue ruling)는 국세청장이 공포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공식 견해로 해석된다. 예규는 재무성 시행규칙이나 판례와 같은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가산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다만 이는 국세청 공식 견해로서 납세자가 예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세청 심사관은 납세자에게 예규에 따라 신고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예규는 특정 거래에 대한 납세자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재무성 시행규칙에 비하여 주어진 사실관계에 제한된다. 납세자의 질의회신(letter ruling) 가운데 국세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회신을 세입규칙으로 결정하고 국세청 회보(Internal Revenue Bulletin)에 고시한다. 이후 1년에 두 번씩 출판되는 통합회보(Cumulative Bulletin)에 국세청 예규가 다시 고지된다⁴¹⁾.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고 어떤 특정 거래에 대하여 국세청 판단을 질의하면 국세청 지역청장은 해당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서면 회신(letter ruling)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질의는 납세자가 어떤 거래를 하기 이전에 납세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질의자에게만 서면회신 내용이 적용되지만 회신이 국세청 입장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납세자에게도 참고가 될 수 있다.

41) 국세청 회보는 Rev. Rul. 2001-15, 2001-22 I.R.B. 125.는 2004년 15번째로 공포된 규칙으로 2001년 22번째 주 국세청 회보의 125쪽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 이전에 연도는 두 자리 수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통합회보 Rev. Rul. 99-4, 1999-2 C.B. 7.는 1999년에 네 번째로 공포된 규칙으로 축적회보 2편 7쪽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을 말한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회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원래 질의 회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1976년 내국세법 제6110조의 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반에게 공개된다(Private Letter Rulings)⁴²⁾. 이 밖에 국세청은 과세행정에 있어서 절차적 이슈에 대하여 국세청 훈령(Revenue Procedure)를 고지할 수 있다. 통합회보에는 서면회신과 훈령 이외에도 위원회 보고서, 잠정규정, 국제협약, 대법원 판결문도 고지된다.

지역부서장은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면 의견을 낼 수 있다(Determination letter). 동 결정은 그러나 서면회신과 달리 해당 납세자에게만 공개된다. 또한 국세청 행정에 관한 내부의 다양한 의견메모가 법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데 다만 이를 납세자가 준거로 인용할 수는 없다. 한 예로 국세청 본청은 지방청이 세무조사에 있어서 자문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기술적인 답변(Technical Advice Memorandum)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공개되어도 인용되거나 전례가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공표(Announcement)나 고지(Notice)를 하기도 하는데 일부는 기술적인 내용이며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 재무성이 잠정규정을 공포하기 이전에 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공표하기도 한다.

바. 미국 사법절차

법령에 관한 최종적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판정을 함으로써 법적 해석에 있어서 그 자체가 전례(precedent)로서 법적 권한을 성립하기도 한다. 즉, 영국법과 마찬가지로 사법 판정(holding)이 미국법의 일부가 되기도 하여 같은 사실관계에 있는 향후 사례에 있어서 전범이 된다(stare decisis).

납세자는 국세청 분쟁절차를 일부 혹은 전부 소진한 후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세쟁송은 미국 조세법원, 지역법원 혹은 연방청원법원 세 곳 중에 한 법원에서 시작하여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⁴³⁾. 조세법원은 세수

42) 서면회신 Ltr. Rul. 200535015(May 12, 2005)은 2005년 35번째 주에 15번째로 내려진 회신으로 2005년 5월 12일에 회신답변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결손에 대해서만 관할권이 있고 청구나 환급은 일반 지역법원에서 관할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국세청의 세금 납부 요구를 거절하고 조세법원으로 가거나⁴⁴⁾ 혹은 납부를 하고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등 선택이 가능하다(forum shopping).

〈표 II-4〉 미국 법원체제

(단위: 개, 명)

	지역법원	조세법원	연방청원법원	순회(항소)법원	대법원
법원 수	95	1	1	13	1
재판관 수	1~28	19	16	약 20	9
지역 관할권	지역	미국 전역	미국 전역	지역	미국 전역
심의대상	일반	조세	행정부 대상 소송	일반	일반
사실관계 심의	○	○	○	×	×
배심원	○	×	×	×	×
귀속적 전례	과거 판정 관할 순회법원 대법원	과거 판정 납세자거주 순회법원 대법원	과거 판정 연방순회법원 대법원	과거 판정 대법원	과거 판정

자료: Prentice Hall(2008).

수도인 워싱턴 D.C.에 소재한 조세법원은 조세청원위원회(Board of Tax Appeals)

43) 1심은 Tax Court(조세법원), District Court(지역법원), Court of Federal Claims(연방청원 법원)로 trial courts로 불리며 2심은 US Court of Appeals로 11개의 Regional Circuit, District of Columbia Circuit과 Federal Circuit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최종심은 US Supreme Court에서 진행되는데 2심과 최종심은 appellate court라고 불린다. 조세법원과 지역법원의 판결을 항소하려면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항소법원에 제기한다. 다만 Court of Federal Claims에서 시작된 소송은 원래 대법원에만 항소가 가능하였으나 1982년부터 연방순회법원(Federal Circuit)을 거쳐서 대법원으로 간다. 연방청원법원(Court of Federal Claims)은 미국 헌법과 의회 및 행정부 규정에 대한 청구소송을 관할하여 정부 관련 청원이면 조세 이외에도 일반적 사항을 모두 다룬다.

44) 일반 법원과 달리 조세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논란 대상인 세금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납세자에게 조세법원은 세액과 이자에 상당한 현금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서 질 경우 이자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의 후신으로 1942년에 설립되었고 납세자의 거주지나 사업장과 관계없이 조세 관련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원의 동의 아래 대통령이 지명하는 15년 임기의 19명 판사로 구성이 되며 배심원은 없다. 조세법원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중요한 조세 관련 이슈가 아니면 대개 지역을 순회하는 1명의 판사가 심의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정해진 법적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결정하는 조세법원 판정은 메모 혹은 일반결정의 형식을 띠며 전례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세법원에는 납세자나 회계사가 변호사 대신 스스로 변론을 할 수 있는 5만달러 이하의 소액심판절차도 있다(small case procedure). 그러나 소액심판에서는 판사가 아닌 커미셔너가 주재하며 판정 결과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다.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쟁송이 이루어지는 일반 지역법원의 경우 배심원이 있지만 배심원은 사실관계에만 판정을 하고 법적 이슈에 대해서는 판정할 수 없다. 일반 법원의 판정은 연방판결집(Federal Supplement)에 공표된다. 지역법원은 각 주에 최소한 1개가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더 있을 수 있다. 지역법원은 서로 독립적이며 해당 지역법원이 내린 이전 판례나 해당 법원을 관할하는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판례에만 종속된다.

항소 순회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실관계의 결정이 아닌 법의 적용만을 다룬다. 즉, 하위법원이 판정에 도달함에 있어서 법을 적절히 적용하였는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항소심은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지역법원과 조세법원은 관할권, 즉 자신의 판정이 항소되는 순회법원의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 물론 지역별로 다른 항소심(순회법원)은 서로의 판정에 대하여 준수할 필요는 없다. 순회법원의 판결은 연방회보(F.3d, Federal Reporter, Third Series)에 게재된다.

대법원이 조세에 대하여 심의를 하는 경우는 연간 10사례 이내로 매우 드물다. 대개 순회법원의 결정이 지역별로 충돌할 때 혹은 위헌적 요소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의한다. 대법원 결정은 미국 법에 대한 최종 해석(the law of land)으로서 하위법원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이전 판정에도 전례가 된다. 대법원 판정은 내국세법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며 만약 의회가 대법원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위헌판정을 내리면 해당 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판정은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에 공표된다. 마지막으로

외국과의 조세협약과 세법과의 관계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으면 가장 최근의 협약 혹은 법이 효력을 갖는다.

미국 국세청은 모든 판결은 아니고 일부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향후 국세청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Acquiescence Policy). 즉, 국세청이 패소하고 난 후 유사한 사실과 이슈가 걸린 향후 사례에 있어서 연방법원의 판정을 따라갈지 아니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지를 국세청 회보(I.R.B.)와 통합회보(C.B.)에 기재한다. 1991년 이전에는 조세법원의 판정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는 연방 지역법원과 청원법원 그리고 순회법원의 판정에 대해서도 국세청 입장을 공개한다. 다만 추후에 국세청의 입장을 번복할 수 있다. 국세청 조사관은 이러한 국세청 입장을 준수해야 하므로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국세청의 법원 판정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미국 법원은 판정에 있어서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한다. 한 예로 외형은 임대일지라도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주로서의 부담과 혜택을 누리면 연방조세 차원에서는 임대를 판매로 간주한다. 즉, 어떤 거래가 단순히 연방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하였다면 해당 거래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Gregory v. Helvering, 293 US 465(1935)).

이와 관련하여 의회도 상업적 거래가 상업적 목적을 결핍할 경우 이를 재구성(recharacterize)할 수 있도록 법을 도입하였다(Sec. 269). 한 예로 다른 기업을 합병하였을 때 주된 목적이 공제 등을 이용하여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용공제와 세액감면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1993년에는 재무성이 다자간의 거래가 세금 회피의 목적일 경우 이를 도관(conduit entity)으로 보아 양자거래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의회가 지침을 내렸다(§7701(1), §1.881-3(b)(1))⁴⁵⁾.

법원의 판례가 어느 선에서 전례(precedent)로서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가는 법원에 따라 다르다. 우선 조세법원은 대법원과 조세법원이 과거에 내린 판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또한 조세법원의 관할권은 미국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거주지나 사업장과 관계없이 균일한 판정이 가능하다. 즉, 납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권이 있는 지역법원이나 청원법원의 판례가 조세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45) Hugh J. Ault and Brian J. Arnold(2004).

다만 1970년 조세법원은 납세자가 거주 혹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순회법원이 내린 항소 판정과 일관되게 심의할 것임을 천명하였다(Golsen rule). 조세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순회법원에 항소하게 되면 어차피 순회법원의 판례가 해당 사례를 귀속하기 때문에 조세법원이 이러한 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법원은 다른 지역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므로 각 법원의 판정은 해당지역에서만 전례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대법원과 해당 지역법원을 관할하는 순회법원 그리고 유사한 사례와 이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법원의 과거 판정이 준수되어야 한다. 한편 연방청원법원은 대법원과 연방순회법원 그리고 연방청원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정에 귀속된다. 그 이외 지역법원이나 조세법원 그리고 여타 순회법원 등의 판정은 전례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순회법원은 대법원과 해당 순회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정에 근거하여 결정을 하며 만약 대법원이나 해당 순회법원이 과거에 판정한 사례가 없다면 다른 순회법원이 유사한 판정을 했어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미국 조세체계 연혁

가. 연방세의 연혁

지난 100년 사이에 미국 조세제도는 정부의 역할과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상당히 변모해 왔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연방소득세는 재정수요로 인해 1913년에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조세제도가 갖추어졌으며 그 이전에는 관세와 소비세가 연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독립전쟁 이전 식민지 시대에는 개별 식민지가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였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른 세목을 활용하였다. 즉, 남부에서는 수출입품에 대한 소비세, 중부에서는 청년 이상 남성에 대한 인두세와 재산세 그리고 북부 지역은 부동산세, 소비세 그리고 직업세가 세원으로 도입된 바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관세와 소비세가 주된 세원이었다.

1765년 프랑스와의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영국 의회는 미국 식민지에 처음으로 인지세를 도입하였고 이후 차를 비롯한 수입품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일련의 식민지 세금은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구호 아래 독립전쟁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⁴⁶⁾.

독립 이후 1781년에 제정된 연방헌정(the Article of Confederation)은 중앙정부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주정부가 정치·경제 권력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부여할 권한이 없었고 연방의회는 주정부 기여금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특히 연방헌정은 각 주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립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789년 연방헌법이 제정되면서 의회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고 다만 세금 징수는 주정부가 하도록 하여 연방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즉, 연방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미국 부채와 국방 그리고 복지를 위하여 세금과 관세 등을 부과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다만 이러한 조세 등은 미국 전역에 걸쳐서 균등(uniform)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Tax and Spending Clause). 이 밖에도 인구비율에 의한 직접세 배분(apportionment of direct taxes), 수출세 금지⁴⁷⁾ 그리고 (주간의) 균등한 간접세를 당시 헌법은 명시하고 있었다.

연방의회는 독립전쟁으로 인한 부채 상환을 위하여 1791년에 위스키세를 위시하여 담배, 설탕, 경매로 판 재산 그리고 인지세를 처음 부과하였다. 이후 1790년대에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연방정부는 주택, 토지 그리고 노예 등의 자산 소유주가 그 가치에 따라 직접 세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러한 ‘직접세’에 대한 저항으로 1802년 이 세금은 폐지되었다. 또한 1812년 전쟁 당시 의회가 추가적인 소비세를 제정하고 채권을 발행하였으나 이 또한 1817년에 폐지되면서 그 후 44년간은 연방정부 재정은 관세와 공적 토지 매매에 따른 수입으로 충당되었다⁴⁸⁾. 이처럼 소비세도 1812년

46) 1767년 Townshend Revenue Act: 차, 유리, 납, 종이 등 미국으로 유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이다. 그 이전에도 영국 의회는 미국 식민지에 대하여 인지세(1765년)와 설탕세(1764년)를 부과하였다.

47) 헌법 제9조 1항 5절은 당시 해외교역에 관한 연방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우려한 남부 주의 주장으로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97년 대법원은 화물가치의 0.125%를 과세하는 항구유지세(26 U.S.C. § 4461)가 항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 아래 위헌으로 판정하였다.

전쟁을 제외하고는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본격적으로 부과되지 않았고 남북전쟁 이후에도 담배와 주류세를 제외하면 각종 소비세는 폐지된다.

소비세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기존의 담배와 주류세에 추가하여 1902년까지 오락, 전화, 전보, 운임료, 증권 발행과 이전, 보험, 특허약품과 껌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자동차, 귀금속, 음악기구, 스포츠 용품, 약품, 껌, 화장실 기구의 판매에 대한 소위 사치세가 적용되었다. 이외 보험과 오락시설 입장과 클럽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었다.

소득세는 남북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186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즉, 1861년 재정법에 의하여 이전의 소비세가 부활되고 일시적으로 연 8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한 3%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연방소득세 규정이 처음 도입된다. 하지만 정작 소득세가 부과되는 않았고 그 이듬해인 1862년에 1만달러 이하 소득에 3%, 그 이상의 소득에는 5%의 세금이 정식으로 부과되었다. 600달러의 표준공제 이외 임대주택, 손실, 여타 세금에 대한 공제와 원천징수제도도 마련되었고 국세청 조직도 처음 마련되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종료되면서 소득세는 1872년에 폐지되었다.

1894년 단일세율의 소득세⁴⁸⁾가 다시 도입되었을 때 대법원은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는 직접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13년까지 연방정부 재원의 약 90%가 관세를 포함한 주류와 담배세로 충당되었다. 헌법 제1조 9항 4절은 개별 주의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직접세를 금지하였다(apportionment of direct taxes). 당시 직접세는 인두세나 개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로 이해되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이자, 배당, 지대 등을 과세하는 1895년 소득세법을 직접세로 간주하면서 주별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소득세는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1913년 연방헌법 16차 수정안(16th Amendment)으로 소득세가 인구비례의무로부터 면제되면서 인구비율이나 지역할당에 의존하지 않고 임금 등에 비례한 소득세가 영구적으로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1916년 재정법(the Revenue Act of 1916)이 이행되었다. 원래 위헌 판정으로 재산 관련 소득세는 주별 인구비례에 의한 과세가 거의 불가

48)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s, *United States Tax Guide*.

49) Wilson-Gorman Tariff Act in 1894의 일부로 소득세가 채택되었다.

능하였다. 하지만 의회가 재산을 제외한 노동소득에만 의존한 소득세를 정치적으로 고집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스페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관세와 소비세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대체 세원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우려한 남부와 서부 지역의 지지로 헌법 개정이 성공하면서 인구에 비례한 직접세 규정이 폐지된 결과 기업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1% 세금과 1~7%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었다⁵⁰⁾. 그러나 3,000달러에 이르는 인적공제(부부는 4,000달러)로 인하여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0.5%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 때 개인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이 도입되었다. 그 이후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17년 과세구간이 2~15%에서 2~67%로 확대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세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되었다⁵¹⁾.

상속·증여세의 경우 19세기 말 많은 주정부가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16년 의회가 유산의 이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증여세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자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1932년 처음 도입되었다.

한편 대공황을 겪으면서 1935년에 사회보장세가 도입되었다(Social Security Act). 동법은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장애인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재원은 종업원 임금의 3,000달러에 대하여 2%의 세금으로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세의 원천징수가 도입되면서 소득세 행정의 납부 기반이 강화되었다.

1956년에는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이 추가되면서 사회보장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험세(Medicare tax)가 제정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Medicaid)도 추가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보장세는 1962년 2%에서 1965년 6% 그

50) 소득세 도입 이후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고 세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77%(1918년)까지 인상되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1929년 2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32년 대공황 당시 63%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94%(20만달러 이상 소득)로 상승하였다가 1964년 70%, 1982년 50% 그리고 1988년 28%까지 인하되었고 1993년 다시 39.6%로 상승하였다가 35%로 인하되었다. 임금의 원천징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입되었다.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8년 당시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구비율은 5%에 불과하였다.

리고 1980년 12.3%로 인상되었고 1990년에는 15.3%에 달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체 인구의 7%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의 세수비중도 국내총생산(GDP)의 2% 이내이었으나 전쟁으로 미국 소득세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즉, 1941년 인적공제와 함께 2,000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 그리고 500만달러 이상 과세소득에는 최고 세율 81.1%를 적용하면서 연방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1년 8%에서 전쟁이 종료되는 1945년에는 20.4%로 상승하는 등 대중화되었다. 1943년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남북전쟁 이후 다시 시작되었고 1945년에는 인구의 약 74%가 소득세를 납부하였다(mass tax).

한편 1939년 그동안 개별 법안(Revenue Act)으로 산재되어 있던 각종 연방세가 하나의 법으로 처음 조문화되었다⁵²⁾. 그 이후 1952년 국세청 이름⁵³⁾이 바뀌면서 내국 세법도 1954년 다시 정리, 조문화되었다. 이 때 파트너십 등 기업 관련 소득세 규정이 대폭 바뀌었다. 이후 재정법 혹은 조세개혁법 등 개별 법안으로 수정되었던 내국세법은 1986년 세율 인하와 세원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 정비 등 큰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이 명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등을 제외하면 연방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세율의 꾸준한 인하에도 불구하고 8%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즉, 1944~1945년 사이에 94%에 이르던 최고 세율은 2003년 38.6%까지 하락하였으나 소득세 비중은 GDP 대비 8% 내외로 2000년대에는 오히려 9%로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연방세는 정부재원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점차 동기 유발과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회적 정책목표를 위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감면제도가 남발함에 따라서 1974년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974년 개인은퇴 저축계좌(IRA), 1975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 세액공제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 1978년 401(k) 은퇴저축계좌가 신설되었다.

한편 법인세도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남북전쟁 당시 잠깐 부과된 바 있으나 영구적으로 국세의 일부가 된 것은 1909년이다. 1909년 연방정부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이익에 대하여 1% 세율을 과세하였다. 물론 당시 이를 법인세라고 지칭하지 않고 사

52) Internal Revenue Code of 1939.

53) 1953년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서 Internal Revenue Service로 변경되었다.

업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특별소비세로 소개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간접세로 간주하였다. 1913년 제16차 수정헌법으로 동 세금은 정식으로 법인세로 지칭되었고 1939년 GDP 대비 비중이 1.4%에서 1943년 7.1%로 대폭 증가하여 중요한 세목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 내외로 감소하는데 이는 세율 인하보다는 과세대상인 법인세 소득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즉 공제가 허용되는 이자비용과 관대한 감가상각 허용 그리고 투자세액 공제가 법인세를 줄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81년에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가 시도되었다(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즉, 3년에 걸쳐서 개인소득세 세율이 25% 인하되어 최고 세율은 50%로 하락하였고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구간 조정이 단행되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경제적 감가상각 대신 가속화된 비용상각이 허용되었고 10%의 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되었다. 이외 물가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의 자동적 증대(bracket creep)를 통제하기 위하여 소득구간을 물가와 연동하기로 하였다. 1981년 세제개혁은 조세제도를 경기순환을 조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보다 고전적 의미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행위를 유발하기 위한 도구로 다시금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다양한 이익단체의 로비로 인한 조세상의 허점(tax loophole)으로 불만이 고조되자 1986년 미국 정부는 공정하고 단순한 세제를 위하여 내국세법을 대폭 개정한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공제·면제를 폐지 혹은 제한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법을 간소화하였다. 특히 1986년 조세개혁은 1913~1985년 사이에 폐지된 조세상의 우대조항보다 더 많은 조항을 폐지하였다⁵⁴⁾.

우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28%로 인하되었고 과세구간도 15%와 28%의 2개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법인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34%로 인하되었다. 그 대신 양도세 세율은 20%에서 28%로 인상되었고 최저한세(AMT)가 강화되었다. 또한 장기 양도차익 면제와 지방세와 주택 이외 신용카드 등 이자비용 공제가 폐지되었고

54)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2005).

IRA, 의료비와 접대비 공제에도 한도를 두는 대신 표준공제를 늘렸다. 법인세 차원에서도 감가상각 공제에 제한이 가해지고 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이 31%로 인상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93년에는 36% 세율에 10%가 가산되면서 최고 세율은 39.6%에 이르게 되었고 법인세율도 35%로 인상되었다. 또한 1996~1997년 사이에는 저축 증진을 위하여 처음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저축계좌가 신설되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Roth IRA)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 2001~2010년까지 약 1.35조달러에 달하는 소득세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밖에도 2010년까지 상속세가 점차 감소 및 폐지되고 다만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1년 상속세가 다시 부활하는 일시적인 상속세 철폐안이 도입되었다.

나. 지방세의 기원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당시 지방세는 각 지방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졌다. 뉴잉글랜드의 경우 대부분의 주민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인두세(poll tax) 이외에도 토지의 양과 질에 따라 토지로부터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이 밖에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직업 종류에 따라 일종의 인두세인 직업세(faculty tax)도 도입되었다.

반면 귀족적 계층이 대규모 토지를 보유한 남부에서는 토지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노예제로 인하여 인두세도 유지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남부에서는 수출입품에 대한 소비세가 주요 세목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독립 이후 19세기에 이르면 연방헌법에 따라 교역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연방정부의 세목으로 지정되면서 남부 지역은 토지세와 함께 농업 이외 각종 직업에 대한 등록세 및 사업세가 재정 수요를 담당하였다. 반면 북부의 경우 재산세 이외에 산업 발전에 따라 사업체의 순소득에 부과되는 영업세(franchise tax)가 도입되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자산에 대하여 일반 재산세를 대체하는 세목이 개발되었다. 우선

전기나 철도 등 여러 지방에 걸쳐 자산이 분산된 업체에게는 공공서비스세(public utilities), 천연자원이 많은 지방은 자원세(severance tax)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세 혹은 일부 지방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다.

3. 미국 조세체계

가. 연방정부의 조세체계

미국의 조세체계를 소개하기 이전에 세율구조에 따라 세금을 구분해보면 우선 누진 과세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연방소득세가 있다. 이 가운데 개인 소득세는 과세소득(과표)에 따라 10~35%의 6단계 세율이 차례로 적용된다. 한편 법인세는 15~39%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다만 개인소득세와 달리 과표(법인의 과세소득)에 따라 335,000달러 이하의 소득에는 15~39%의 세율이, 335,000~18,333,333달러 사이의 소득에는 34~38%의 세율이 그리고 18,333,333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5% 세율이 적용되어 개인소득세보다 좀 복잡하다.

이에 비하면 과표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세목에는 지방정부의 판매세, 재산세, 연방소비세 등이 있다(flat tax). 마지막으로 과표가 증가할수록 세율이 감소하는 역진적 세금으로는 소득 97,500달러에 대해서만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료를 합하여 총 15.3%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2.9%의 의료보험료가 적용되는 사회보장세가 있다.

〈표 II-5〉 미국 연방세 유형과 과표

세목	세율구조	과표
개인소득세	누진	세법상 예외를 제외한 전체 소득에 공·면제한 금액(AGI)
법인소득세	누진	개인소득세와 유사
유산세	누진	사망 시점 유산의 공정가격(FMV)과 1976년 이후 과세대상 증여
증여세	누진	연간 과세대상 증여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소비세 및 관세	일률	국산 및 수입품의 판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FICA/자영업세	역진	임금 및 자영업소득(FICA: $6.2\% \text{ on } \$97,500 + 1.45\% \times 2 = 15.3\%$)
실업세	역진	임금의 7,000달러

주: FMV는 Fair Market Value를 그리고 FICA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를 말함.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하는 소득세, 유산·증여세, 소비세와 관세 이외에도 사회복지적 성격을 지닌 사회보장세와 실업세가 있다. 이 가운데 소득세는 납세자 본인에 의한 신고와 자발적인 법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미국 C 법인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C 법인을 제외한 S 법인이나 파트너십, 자영업자 등의 사업체는 도관업체(flow-through entity)로서 세금신고를 하지만 이는 자료신고에 해당하고 실제 세금은 이들 업체의 소유주(주주)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한다.

개인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유산·증여세는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과세소득을 환산하려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합한 전체 소득(total income)에서 비과세되는 소득(exclusion)을 제외한 총소득(Gross Income)을 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이나 항목별 공제 등 공제(deduction)와 면제(Exemption)를 제외하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된다. 과세소득과 세율을 곱하면 납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세액공제(tax credit)를 제외하면 납세의무액(tax liability)이 된다. 납세의무액에서 사전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고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거나 혹은 환급을 받는다. 개인납세자나 C 주식회사 등 모든 납세자는 대체로 이러

한 과정을 거쳐서 세금을 납부한다.

한편 재산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기증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유산세(estate tax)와 기증자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이전하여 부과되는 증여세(gift tax)가 있다. 유산과 증여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산의 이전 당시 공정한 시장가격이 과표가 된다. 유산세와 증여세에서 배우자에 대한 기증은 무제한으로 공제되어 비과세되고 증여세에서도 기증을 받는 사람 1인당 연간 12,000달러가 공제된다.

기증자에게 증여세에 대한 우선적인 납세의무가 있으며 만약 기증자가 살아 있는 동안 기증한 금액을 다 합쳐서 잠정적인 납부세액을 결정한 후 만약 이 금액이 기증자에게 허용되는 100만달러의 세액공제(unified credit)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유산세의 경우 유산세 과표에서 1976년 이후 기증한 증여세 과표를 합하여 잠정세액을 결정한 후 이 금액이 200만달러의 세액공제와 1976년 이후 납부한 증여세를 합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유산·증여세의 경우 상당한 면세금액으로 인하여 그 비중이 GDP 대비 0.3%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유산세는 2010년에 잠정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일몰규정에 의하여 미국 의회가 이때까지 영구폐지 등 구체적인 입법행위를 취하지 않으면 2011년에 자동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증여세는 유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기증자가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1932년에 도입되었는데 현재는 재산의 증여를 통하여 부모의 높은 한계세율을 자녀의 낮은 한계세율로 대체하는 등 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외 연방정부는 소비세를 징수하는데 대상 품목에는 주류, 담배, 유류 등의 기호제품 외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학품, 항공 및 항만 시설, 도박, 총기류, 타이어 그리고 보험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그러나 연방소비세 비중은 GDP의 0.6%에 불과하여 연방세의 주요 세목은 아니며 대신 소비세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로 사용된다. 연방소비세 가운데 공항세, 도로 유류세, 유해물질 부담금, 석유누출 그리고 폐병 관련 석탄세 등은 목적세로서 기금에 포함된다. 이외 관세는 2002년 당시 세수가 199억달러로 여타 연방소비세(677억달러)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사회보장세(FICA tax)는 개인소득세 다음으로 세수가 많으며 연금 형식의 세금(OASDI,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과 의료보험료 형식의 세금

(HI, hospital insurance)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고용주와 사용인에게 각각 6.2%의 세율이, 후자는 각각 1.4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이 97,5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금 세금이 더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세는 목적세로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일반세가 아니라 사회보장성기금에 가깝다. 임금 7,000달러에 대하여 세율 6.2%가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연방 실업세도 사회보장성 기금에 가깝다. 또한 고용주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실업세의 일부(임금의 5.4%)를 연방정부가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0.8%에 불과하다.

나. 지방정부의 조세체계

현재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 주정부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소득세 그리고 일반판매세⁵⁵⁾를 위주로 유류세, 자동차 등록세 이외 주류, 담배 등 기호식품에 대한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위주로 하여 담배 및 주류 등에 대한 개별판매세와 함께 등록세, 호텔숙박, 경마, 공공서비스, 보험업 등 다양한 상품과 사업에 대한 세금 혹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미국 연방헌법과 주헌법이 금지하지 않는 한 주정부는 어떠한 세목도 부과할 권리가 있다. 1930~1940년대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많은 주에서 소득세와 판매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된 지방세는 재산세로서 1646년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에서 재산을 소유한 주민에게 처음 부과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구가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정부는 재산세를 활용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인소득세⁵⁶⁾와 법인세가 다양한 양식과 세율로 부과된다. 우선 7개 주⁵⁷⁾를 제외한 주정부가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대부분의 주가 연방소득세상

55) 일부 주에서는 'vendor tax' 라고도 하는데 이는 영업을 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세금으로 매출규모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한편 미국 헌법은 주정부의 과세권을 자신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주간의 교역에 대한 과세권은 연방정부에 있다. 그러나 일부 주는 주민들이 판매세가 없는 주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개 판매세와 동일한 세율의 사용세(user tax)를 부과하기도 한다.

56) 근대적 의미의 주정부 소득세는 1911년 위스콘신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57)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주에는 개인소득세가 없다. 이외 뉴햄프셔주에서는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테네시주에서는 주식과

의 조정된 소득이나 과세소득을 과표로 삼는다. 이외 지방소득세도 연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와 납세기한이 있다.

6개 주가 균일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누진과세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최고 세율은 5~7%인데 버몬트(9.5%), 캘리포니아(9.3%)와 오리건(9.0%)주의 최고 세율이 높다. 많은 주가 누진과세를 하지만 콜로라도(4.63%), 일리노이(3.0%), 인디애나(3.4%), 매사추세츠(5.3%), 미시간(4.35%), 펜실베이니아(3.07%)와 유타(5.0%)주는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로드 아일랜드는 연방소득세의 25%를 소득세로 징수하는 단순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⁵⁸⁾. 이밖에도 13개 주의 지방정부(주로 시정부)가 소득세를 부과한다. 한 예로 뉴욕시의 경우 주정부 소득세 8.14%에 더하여 시정부 소득세가 4%의 최고 세율로 부과될 수 있다.

미국에서 네바다와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며 워싱턴, 미시간과 텍사스주는 이와 유사한 사업세를 부과한다. 법인세를 부과하는 48개주 가운데 13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가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누진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은 1개 주를 제외하면 25만달러 이하이다. 주정부의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주에서 6~9% 사이에 있고 10% 이상은 2개 주에서 부과된다. 하위 지방정부의 경우 법인세가 허용되는 주는 켄터키, 미시간, 미주리, 뉴욕, 오키오, 오리건 6개주이며 세율은 0.5%(미주리)에서 8%(뉴욕시)에 이른다.

채권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58) 이전에는 노스 다코타(14%), 로드 아일랜드(25%) 그리고 버몬트(24%)주가 연방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주소소득세로 징수하는 단순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표 II-6〉 미국 지방세 유형과 과표

세목	세율구조	과표
일반판매세	일률	유형 개인자산이나 서비스의 소매가격
개별판매세	일률	소매가격(제품별 차등화된 세율)
개인소득세	누진	연방정부 조정된 총소득(AGI)이나 과세소득을 과표로 일부 조정
주영업세	일률	순가치, 소득 혹은 판매가액의 가중치(franchise tax)
재산세	일률	개인자산 혹은 부동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MV)
법인세	일률/누진	연방정부 법인세 과세소득을 과표로 일부 조정
유류세	일률	종량세
담배세	일률	종가세(판매가격) 및 종량세
주세	알코올도수	종량세
기타		상속세, 보험세, 공공서비스(public utility), 경마, 유흥, 등록세

주정부 법인세 과표는 연방정부 법인세상의 총소득 혹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정책적으로 일정한 항목을 추가 내지는 제외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의회가 정하는 연방세법이 주정부 법인세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알라바마, 아칸사스 그리고 미시시피주를 제외한 주정부는 주법인세 산정을 연방정부의 과세소득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정부는 법인세 대신 영업세(franchise tax)를 부과하는데 이 세금은 대개 자산, 소득과 판매액을 평균하여 이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나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주이며 이외 주는 법인세나 영업세 등을 부과한다. 이 밖에 주식의 양도나 증권 등의 서류 등록 그리고 유흥세와 광산 및 목재에 과세하는 주도 많다.

일반적으로 재산보유와 소비행위에 대한 과세는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진다. 지방세는 다시 주정부가 부과하는 일반판매세와 주류 등 특정 제품에 대한 개별판매세로 나뉘고 일반판매세는 외형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영업권리에 대하여 부과되는 노점세(vendor tax)와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다만 판매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는 소비세로 나눌 수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판매액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동일하다⁵⁹⁾.

판매세는 대체로 유형 재화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과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전문 서비스 등 개인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세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외 음식이나 의료품과 같은 필수품은 판매세에서 면제되기도 한다. 판매세 세율은 주와 지방정부에 따라 다양하며 1987년 이후에는 사업거래와 관련이 있어야만 판매세가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된다.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뉴햄프셔 그리고 오리건주에서는 일반판매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그 대신 지방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며 주정부 승인을 받아 판매세를 사용하기도 한다. 재산세는 대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일부 주에서는 보트, 자동차, 귀금속, 비행기, 컴퓨터, 가구, 장비기구 등에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각 주는 자신이 처한 정치 및 경제적 환경에 따라 유류·주류·담배 등에 관한 개별판매세, 상속·증여세, 자원세, 등록·취득세, 관광 관련 세금 등을 부과하기도 한다. 다만 유류나 담배 등 기호식품은 모든 주에서 과세를 한다. 이 밖에도 주정부는 고용주에 대하여 실업보험세를 부과하기도 하는데 고용주의 실업보험료 신청 실적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4. 세무행정체계

가. 미국 국세청 조직체계

미국 국세청은 재무성 소속으로 연방세법의 이행을 관장한다. 국세청은 본청 이외 지역, 구역 그리고 서비스센터로 조직이 구성된다. 국세청 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납세분쟁이 발생하면 행정부를 대표하여 청장 직속의 법률 자문관(Chief Counsel)이 이를 담당한다. 본청의 주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규칙 제정과 납세자의 법 이행을 위한 과세행정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능적으로는 임금과 투자소득, 영세기업과 자

59) 이 밖에도 일부 주에서는 개인재산의 구입과 사용에 대한 사용세(user tax)가 부과되기도 한다. 한 예로 임대거래에 대한 과세나 자동차 등 주 역외 지역에서 구입한 주요 물품에 대한 과세가 이에 해당한다.

영업자, 중대형 기업 그리고 면세를 담당하는 4개국이 있다.

33개 구역의 국장은 주로 국세업무 심사와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담당한다. 또한 10개의 서비스센터에서는 신고서 수리와 함께 심사 선정 작업을 수행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국세청 직원은 9만 9,000명에 이르고 예산은 101.85억달러에 달한다.

나. 과세행정

미국 조세제도는 자발적 신고와 납세를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센터가 세금신고서를 받으면 우선 원천징수신고서(Form W-2) 등을 기반으로 산술적이거나 항목 오류에 대하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납세자에서 설명서와 조정된 납세의무액을 보내 오류를 수정한다. 이후 신고서에 대한 조사는 먼저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DIF)⁶⁰⁾를 거쳐서 경력이 있는 국세청 직원이 선정한다. 컴퓨터 조사는 추가로 세금을 징수할 여지가 있는 신고서를 대상으로 점수로 환산하여 추출되며 국세청 직원은 이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신고서를 선정한다. 매년 조사가 이루어지는 신고서는 전체 신고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신고서 심사는 국세청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면접심사와 납세자의 사업장이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심사가 있다. 면접심사는 대개 신고서의 일부 항목에 대한 조사이며 현장심사는 이보다 포괄적이다. 대부분의 대기업에 대하여 연례 심사를 진행하며 조사연도도 해당 과세연도가 아닌 다수의 과세연도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이 체납고지를 하면 납세자는 국세청 심사청구국(appeal division)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법원의 판례가 상이한 등 회색지대에 속하는 분쟁의 경우 납세자는 체납세금과 벌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 국세청과 합의할 수 있다.

신고서가 국세청에 제출된 이후에도 국세청과 납세자는 신고서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정이 가능한 기한 즉,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세금신고서가 제출된 시점이나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다(Sec. 6501(a)). 따라서 대개의 경우 납세신고

60) Discriminant Function System.

를 한 시점에서 3년 이후에는 국세청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항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기간은 6년이다. 또한 사기적 신고나 신고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다.

세금을 과다 혹은 과소 납부하면 그 차액에 이자가 가산된다(Sec. 6621(a)). 다만 납세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되는 과다납부액은 이자가 없다. 이자율은 단기 정부채권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1년에 4번 재무성이 조정을 하는데 과다납부의 경우 이자율은 단기 정부채권 이자율에 2%포인트를 합친 수치이며 과소납부로 인한 이자는 채권 이자율에 3%포인트가 가산된다.

세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순납세의무액에 대하여 월 5%(최대 25%)의 벌금이 부과된다(Sec. 6651(a)).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벌금은 월 0.5%(최대 25%)이다. 납부세액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세법에 대한 과실(negligence)이나 무시(disregard) 혹은 세금이나 재산에 대한 실질적 과소납부나 허위 평가에 대한 벌금은 그 차액의 20%이다. 이 밖에 사기행위(fraud)에 대한 벌금은 75%이다.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1. 정부 수입과 세입구조

가. 행정부 총수입과 구성비

〈표 Ⅲ-1〉은 1948년 이후 정부 총수입과 정부단위별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0년간 20%대에 있는데 1948년 21.7%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60년이 되면 25%를 넘어서고 1998~2000년 사이에는 30%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2001년 이후에는 26~28% 사이에서 오르내리며 그 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정부 수입의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정부 수입이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에는 정부 수입의 GDP 비중이 20% 초반에서 후반으로 증가하였는데 연방 정부 수입은 16% 전후에서 18% 전후로 증가하였고 특히 2000년에는 최고 20.9%로 상승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면 지방정부 수입은 1950년을 전후한 5~6%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예외없이 10%를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정부가 팽창하게 된 이유는 연방정부 수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 그 보다 많은 비중은 지방정부의 몫으로 볼 수 있다. 즉, 존슨 대통령 당시 ‘위대한 사회’라는 구호 아래 사회복지제도가 크게 팽창하면서 연방정부 세수도 증가하였지만 교육과 도로 등 전통적인 공공재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소리 없이 증가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정부 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28%에 달하여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잿은 감세 논쟁에도 불구하고 GDP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연방정부 수입은 1960년 이전에는 거의 3배에 이르렀지만 그 후 지방정부 수입이 점차 증가하면서 약 2배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수입이 세목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2007년 기준으로 약 4조 1,778억달러로 국내 총생산(GDP) 대비 30.3%에 달한다⁶¹⁾. 이 가운데 조세수입은 약 2조 9,485억달러로 국내총생산의 21.4% 그리고 정부 총수입의 70.6%에 이른다. 또한 약 1조 4,928억달러에 이르는 개인(소득)세 세수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6%로 가장 많고 상품세 34.4%, 사회보장세 32.7% 그리고 법인세 세수가 14.5%이다.

61) 자료에 따라 기준이 달라 <표 III-1>과 <표 III-2>의 총수입과 GDP 비중이 다를 수 있다.

〈표 III-1〉 국내총생산과 단위 정부별 총수입(1948~2006년)

(단위: 십억달러, %)

	국내총생산	총정부수입	연방정부 수입	지방정부 수입
1948	256.0	55.7(21.7)	41.6(16.2)	14.1(5.5)
1950	273.0	56.4(20.7)	39.4(14.4)	17.0(6.2)
1952	348.6	86.6(24.9)	66.2(19.0)	20.5(5.9)
1955	394.6	90.8(23.0)	65.5(16.6)	25.3(6.4)
1957	450.3	110.7(24.6)	80.0(17.8)	30.7(6.8)
1959	491.5	114.2(23.2)	79.2(16.1)	35.0(7.1)
1960	517.9	130.7(25.2)	92.5(17.9)	38.2(7.4)
1961	530.8	135.8(25.6)	94.4(17.8)	41.4(7.8)
1962	567.6	144.4(25.4)	99.7(17.6)	44.7(7.9)
1963	598.7	154.5(25.8)	106.6(17.8)	48.0(8.0)
1964	640.4	164.5(25.7)	112.6(17.6)	51.9(8.1)
1965	687.1	172.6(25.1)	116.8(17.0)	55.8(8.1)
1966	752.9	192.2(25.5)	130.8(17.4)	61.4(8.2)
1967	811.8	214.4(26.4)	148.8(18.3)	65.6(8.1)
1968	866.6	227.4(26.2)	153.0(17.7)	74.4(8.6)
1969	948.6	270.0(28.5)	186.9(19.7)	83.1(8.8)
1970	1,012.2	286.5(28.3)	192.8(19.0)	93.7(9.3)
1971	1,079.9	288.1(26.7)	187.1(17.3)	101.0(9.4)
1972	1,178.3	323.8(27.5)	207.3(17.6)	116.5(9.9)
1973	1,307.6	359.5(27.5)	230.8(17.7)	128.7(9.8)
1974	1,439.3	402.4(28.0)	263.2(18.3)	139.2(9.7)
1975	1,560.3	428.9(27.5)	279.1(17.9)	149.8(9.6)
1976	1,736.5	463.5(26.7)	298.1(17.2)	165.4(9.5)
1977	1,974.3	545.1(27.6)	355.6(18.0)	189.6(9.6)
1978	2,217.0	608.8(27.5)	399.6(18.0)	209.3(9.4)
1979	2,500.7	683.7(27.3)	463.3(18.5)	220.3(8.8)
1980	2,726.7	756.7(27.8)	517.1(19.0)	239.6(8.8)
1981	3,054.7	863.3(28.3)	599.3(19.6)	264.0(8.6)
1982	3,227.6	904.8(28.0)	617.8(19.1)	287.0(8.9)
1983	3,440.7	913.6(26.6)	600.6(17.5)	313.0(9.1)
1984	3,840.2	1,021.6(26.6)	666.5(17.4)	355.1(9.2)
1985	4,141.5	1,117.9(27.0)	734.1(17.7)	383.8(9.3)
1986	4,412.4	1,183.7(26.8)	769.2(17.4)	414.5(9.4)
1987	4,647.1	1,305.5(28.1)	854.4(18.4)	451.1(9.7)
1988	5,008.6	1,393.7(27.8)	909.3(18.2)	484.4(9.7)
1989	5,400.5	1,513.5(28.0)	991.2(18.4)	522.3(9.7)
1990	5,735.4	1,585.7(27.6)	1,032.1(18.0)	553.6(9.7)
1991	5,935.1	1,643.3(27.7)	1,055.1(17.8)	588.2(9.9)
1992	6,239.9	1,718.5(27.5)	1,091.3(17.5)	627.2(10.1)
1993	6,575.5	1,820.0(27.7)	1,154.5(17.6)	665.5(10.1)
1994	6,961.3	1,962.2(28.2)	1,258.7(18.1)	703.5(10.1)
1995	7,325.8	2,092.7(28.6)	1,351.9(18.5)	740.8(10.1)
1996	7,694.1	2,233.4(29.0)	1,453.2(18.9)	780.2(10.1)
1997	8,182.4	2,402.7(29.4)	1,579.4(19.3)	823.3(10.1)
1998	8,627.9	2,587.3(30.0)	1,722.0(20.0)	865.3(10.0)
1999	9,125.3	2,742.7(30.1)	1,827.6(20.0)	915.0(10.0)
2000	9,709.8	3,000.6(31.0)	2,025.5(20.9)	980.8(10.1)
2001	10,057.9	3,012.2(29.9)	1,991.4(19.8)	1,020.8(10.1)
2002	10,377.4	2,887.1(27.8)	1,853.4(17.9)	1,033.7(10.0)
2003	10,808.6	2,860.2(26.5)	1,782.5(16.5)	1,077.6(10.0)
2004	11,517.5	3,042.0(26.4)	1,880.3(16.3)	1,161.8(10.1)
2005	12,265.8	3,415.5(27.8)	2,153.9(17.6)	1,261.7(10.3)
2006	13,061.1	3,757.4(28.8)	2,407.3(18.4)	1,350.2(10.3)

주: () 안은 GDP 대비 비중(재정연도 기준).

자료: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istorical Table*, US Printing Office, 2008.

이에 비하면 1950년 당시 조세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5%로 거의 절대적이었다. 또한 상품세가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5%로 개인세 비중 31.6%보다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법인세 비중이 29.9%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Medicare 등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사회보장세의 비중은 8.2%에 불과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 비로소 개인세 비중이 45% 그리고 사회보장세 비중이 20%를 넘게 되고 그 대신 법인세 비중은 15%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 이후에도 개인세 비중은 약 5% 더 증가하였고 사회보장세는 10% 이상 증가하였다.

〈표 III-2〉 행정부 총수입과 부문별 수입(1950~2007년)

(단위: 십억달러, %)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GDP	293.8	526.4	1,038.5	2,789.5	5,803.1	9,817.0	12,421.9	13,178.4	13,807.5
총수입	66.1	134.4	286.7	798.0	1,707.8	3,125.9	3,620.4	3,963.8	4,177.8
GDP 비중	(22.5)	(25.5)	(27.6)	(28.6)	(29.4)	(31.8)	(29.1)	(30.1)	(30.3)
조세세입	59.8	113.4	229.3	586.0	1,161.9	2,206.8	2,545.3	2,792.4	2,948.5
GDP 비중	(20.4)	(21.5)	(22.1)	(21.0)	(20.0)	(22.5)	(20.5)	(21.2)	(21.4)
개인세 등	18.9	42.3	103.1	298.9	592.8	1,235.7	1,207.8	1,353.2	1,492.8
세입 비중	(31.6)	(37.3)	(45.0)	(51.0)	(51.0)	(56.0)	(47.5)	(48.5)	(50.6)
법인세	17.9	23.6	34.4	84.8	140.6	255.0	397.2	449.7	426.3
세입 비중	(29.9)	(20.8)	(15.0)	(14.5)	(12.1)	(11.6)	(15.6)	(16.1)	(14.5)
상품세	23.0	41.1	91.5	200.7	425.5	708.9	928.2	976.2	1,015.5
세입 비중	(38.5)	(36.2)	(39.9)	(34.2)	(36.6)	(32.1)	(36.5)	(35.0)	(34.4)
사회보장세	4.9	13.8	46.4	166.2	410.1	702.7	874.3	925.5	965.1
세입 비중	(8.2)	(12.2)	(20.2)	(28.4)	(35.3)	(31.9)	(34.3)	(33.1)	(32.7)

주: 1. 조세세입 이외 수입은 이자소득과 이전 수입 등을 포함.

2. 사회보장세는 조세세입으로 분류되지 않음.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Current Receipts and Expenditure (www.bea.gov/national//nipaweb).

한편 정부 총수입을 정부단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5%, 45.5%이다⁶²⁾. 이에 비하면 1950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비중은 각각 73.8%, 30.3%로 지난 57년간 지방정부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연방정부 세수 1조 6,445억달러 가운데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1%로 대부분이고 이외 법인세 22.2% 그리고 상품세 5.9%이다. 이에 비하면 지방정부 세수 1조 3,041억달러 가운데 상품세의 비중이 70.4%에 달하는 반면 개인세는 25%에 불과하다. 또한 법인세의 비중도 5%에 미치지 못한다. 1950년과 비교해보면 우선 연방세의 경우 개인세 비중은 40.2%에서 71%로 약 30% 이상 증가하였지만 그 대신 법인세와 상품세 비중은 39.7%, 18.9%에서 각각 22.2%, 5.9%로 감소하였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 상품세 비중이 86.1%에서 70.4%로 감소하는 대신 개인세가 9.1%에서 25%로 증가하였고 법인세는 큰 변화가 없었다.

62) 정부간의 이전수입 등으로 총수입보다 개별 정부 수입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표 III-3〉 연방과 지방정부 수입구조 비교(1950~2007년)

(단위: 십억달러, %)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6	2007
정부총수입 GDP 비중	66.1 (22.5)	134.4 (25.5)	286.7 (27.6)	798.0 (28.6)	1,707.8 (29.4)	3,125.9 (31.8)	3,620.4 (29.1)	3,963.8 (30.1)	4,177.8 (30.3)
연방정부 수입 총수입 비중	48.8 (73.8)	93.9 (69.9)	186.0 (64.9)	532.1 (66.7)	1,081.5 (63.3)	2,053.8 (65.7)	2,269.9 (62.7)	2,510.4 (63.3)	2,651.2 (63.5)
조세세입	43.3	76.5	138.0	355.9	642.8	1,213.6	1,383.0	1,550.2	1,644.5
개인세 세입 비중	17.4 (40.2)	41.8 (54.6)	88.9 (64.4)	250.0 (70.2)	470.2 (73.1)	999.1 (82.3)	930.7 (67.3)	1,049.9 (67.7)	1,167.3 (71.0)
법인세 세입 비중	17.2 (39.7)	21.4 (28.0)	30.6 (22.2)	70.3 (19.8)	118.1 (18.4)	219.4 (18.1)	341.0 (24.7)	388.9 (25.1)	365.4 (22.2)
상품세 ¹⁾ 세입 비중	8.2 (18.9)	13.1 (17.1)	18.2 (13.2)	34.0 (9.6)	51.4 (8.0)	87.8 (7.2)	99.2 (7.2)	98.0 (6.3)	97.7 (5.9)
지방정부 수입 총수입 비중	20.0 (30.3)	44.5 (33.1)	120.1 (41.9)	338.2 (42.4)	737.8 (43.3)	1,319.5 (42.2)	1,714.4 (47.4)	1,811.4 (45.7)	1,902.8 (45.5)
조세세입	16.5	37.0	91.3	230.0	519.1	893.2	1,162.3	1,242.2	1,304.1
개인세 세입 비중	1.5 (9.1)	4.2 (11.4)	14.2 (15.6)	48.9 (21.3)	122.6 (23.6)	236.6 (26.5)	277.1 (23.8)	303.3 (24.4)	325.4 (25.0)
법인세 세입 비중	0.8 (4.8)	1.2 (3.2)	3.7 (4.1)	14.5 (6.2)	22.5 (4.3)	35.5 (4.0)	56.3 (4.8)	60.7 (4.9)	60.9 (4.7)
상품세 ¹⁾ 세입 비중	14.2 (86.1)	31.5 (85.1)	73.3 (80.3)	166.7 (72.5)	374.1 (72.1)	621.1 (69.5)	829.0 (71.3)	878.2 (70.7)	917.8 (70.4)

주: 1) 상품세는 연방정부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관세, 지방정부는 판매세와 재산세를 의미.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Current Receipts and Expenditure (www.bea.gov/national//nipaweb).

나. 연방정부 수입

1) 연방정부 수입 · 지출

국내총생산에서 연방정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0년 당시 6.8%에서 2006년 18.4%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면 지출 비중은 같은 시기에 9.8%에서 20.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1940~2007년 사이에 12개 연도를 제외하면 연방정부 지출은 수입보다 더 많아 재정적자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던 1945년에는 그 비중이 무려 21.5%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1998~2001년에 재정흑자를 달성하여 2001년 당시 국내총생산의 2.4%가 흑자였으나 이외 1970~1997년 사이에는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경험하여 1983년 당시 최고 6.0%를 경험하였다. 이외 시기에는 대개 재정적자가 GDP의 2~3%에 달하였다⁶³⁾.

63) 전쟁 시기를 제외한 레이건과 부시 2세 대통령 행정부 당시 재정적자는 조세감면과 함께 국방예산 증액으로 발생하였다.

〈표 III-4〉 연방정부 수입과 지출 및 GDP 대비 비중(1940~2007년)

(단위: 십억달러, %)

	수입		지출		흑(적)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40	6.5	6.8	9.5	9.8	-2.9	-3.0
1945	45.2	20.4	92.7	41.9	-47.6	-21.5
1950	39.4	14.4	42.5	15.6	-3.1	-1.1
1955	65.5	16.6	68.4	17.3	-3.0	-0.8
1960	92.4	17.9	92.2	17.8	0.3	0.1
1965	116.8	17.0	118.2	17.2	-1.4	-0.2
1970	192.8	19.0	195.6	19.3	-2.8	-0.3
1975	279.1	17.9	332.3	21.3	-53.2	-3.4
1980	517.1	19.0	590.9	21.7	-73.8	-2.7
1985	734.1	17.7	946.4	22.9	-212.3	-5.1
1990	1,032.1	18.0	1,253.1	21.8	-221.0	-3.9
1995	1,351.9	18.5	1,515.9	20.7	-164.0	-2.2
2000	2,025.5	20.9	1,789.2	18.4	236.2	2.4
2001	1,991.4	19.8	1,863.2	18.5	128.2	1.3
2002	1,853.4	17.9	2,011.2	19.4	-157.8	-1.5
2003	1,782.5	16.5	2,160.1	20.0	-377.6	-3.5
2004	1,880.3	16.3	2,293.0	19.9	-412.7	-3.6
2005	2,153.9	17.6	2,472.2	20.2	-318.3	-2.6
2006	2,047.3	18.4	2,655.4	20.3	-248.2	-1.9

주: () 안은 GDP 대비 비중(재정연도 기준).

자료: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istorical Table*, US Printing Office, 2008.

2) 부문별 연방정부 수입과 변천

〈표 III-5〉와 〈표 III-6〉은 1930년대 이후 연방정부의 수입 동향을 정리한 표이다⁶⁴⁾. 우선 2007년을 기준하면 연방정부 총수입은 2조 5,401억달러로 GDP의 18.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일반 세수가 1조 9,255억달러(GDP 18.4%)로 총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연방정부 수입에서 주요 세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소득세 1조 1,688억달러(46.0%), 사회보장세 8,734억달러(34.4%), 법인세 3,421억달러(13.5%)

64) 자료 출처에 따라 정부 수입의 규모는 약간씩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소비세 571억달러(2.2%)이다⁶⁵⁾.

사회보장세는 고용 및 생존 배우자 연금과 의료보험(Medicare) 이외에도 실업보험, 철도연금 그리고 연방 공무원 연금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데 물론 이 가운데 일반 은퇴 연금과 의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연방소비세는 크게 보면 소매세, 제조업 자세, 환경세 그리고 시설 및 서비스세 등이 있는데 대부분의 세수는 유류와 담배 및 주류 그리고 도로 및 항공운송 등으로부터 나온다.

연방정부 수입이 1934년 국내총생산 대비 4.8%에서 2007년 18.5%로 증가하는 사이에 각 세목이 정부 수입에 기여하는 비중도 큰 변화를 겪었다. 우선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같은 시기에 14.2%에서 4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는 1945년을 전후하여 크게 증가한 후 45%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법인세의 비중은 1934년 12.3%에서 1955년 27.3%까지 증가하였다가 1982년 6.2%까지 감소하였으나 다시 2006년 14.7%로 증가하는 등 시대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데 대개의 경우 그 비중은 10%를 전후하여 움직인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그 비중이 일관되게 증가해 왔다. 1934년 1%에 불과하던 사회보장세 수입은 1975년 30%대를 돌파한 후 2003년 40%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그 비중이 약간 감소하여 2007년 현재 34.4%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연방소비세는 일관되게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1934년 연방정부 수입의 45.8%를 차지하던 소비세는 1945년 13.9%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다만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 19.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70년을 전후하여 그 비중이 10%대 이하로 떨어진 연방소비세는 1990년대 초를 제외하면 계속 감소하면서 2007년에는 겨우 2.2%를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나 관세 등도 1940년까지만 해도 정부 수입의 5%를 차지하였으나 1945년이 되면 1%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사실 19세기에는 관세가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남북전쟁 이전에는 정부 수입의 90%를 차지하였다. 또한 1860년대 이후에는 연방소비세가 점차 중요해졌고 상속·증여세는 186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가끔 징수하였으나 세수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았다. 소득세는 남북전쟁을 제외하고는 1913년 이전까지 부과되지 않았

65) 세목별 수입은 <표 Ⅲ-7>를 참조.

다. 그러나 1913년 소득세 도입 이후 1930년이 되면 법인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연방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연방정부 수입은 GDP의 5% 내외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1944년 20.9%, 그 이후 16~20%를 유지하였다.

〈표 III-5〉 연방정부 수입의 구성비(1934~2007년)

(단위: 십억달러, %)

	총수입		개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기여금	연방 소비세	기타		
	금액	GDP 대비					합계	상속 증여세	관세· 사용료
1934	2.9	4.8	14.2	12.3	1.0	45.8	26.7	—	—
1935	3.6	5.2	14.6	14.7	0.9	39.9	30.0	—	—
1940	6.5	6.8	13.6	18.3	27.3	30.2	10.7	5.4	5.1
1945	45.2	20.4	40.7	35.4	7.6	13.9	2.4	1.4	0.8
1950	39.4	14.4	39.9	26.5	11.0	19.1	3.4	1.8	1.0
1955	65.5	16.6	43.9	27.3	12.0	14.0	2.8	1.4	0.9
1960	92.5	17.9	44.0	23.2	15.9	12.6	4.2	1.7	1.2
1965	116.8	17.0	41.8	21.8	19.0	12.5	4.9	2.3	1.2
1970	192.8	19.0	46.9	17.0	23.0	8.1	4.9	1.9	1.3
1975	279.1	17.9	43.9	14.6	30.3	5.9	5.4	1.7	1.4
1980	517.1	19.0	47.2	12.5	30.5	4.7	5.1	1.2	1.4
1981	599.3	19.6	47.7	10.2	30.5	6.8	4.8	1.1	1.4
1982	617.8	19.1	48.2	8.0	32.6	5.9	5.3	1.3	1.4
1983	600.6	17.5	48.1	6.2	34.8	5.9	5.0	1.0	1.4
1984	666.5	17.4	44.8	8.5	35.9	5.6	5.2	0.9	1.7
1985	734.1	17.7	45.6	8.4	36.1	4.9	5.1	0.9	1.7
1986	769.2	17.4	45.4	8.2	36.9	4.3	5.2	0.9	1.7
1987	854.4	18.4	45.9	9.8	35.5	3.8	4.9	0.9	1.8
1988	909.3	18.2	44.1	10.4	36.8	3.9	4.8	0.8	1.8
1989	991.2	18.4	45.0	10.4	36.3	3.5	4.9	0.9	1.7
1990	1,032.1	18.0	45.2	9.1	36.8	3.4	5.5	1.1	1.6

〈표 III-5〉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

	총수입		개인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 기여금	연방 소비세	기타		
	금액	GDP 대비					합계	상속 증여세	관세· 사용료
1991	1,055.1	17.8	44.3	9.3	37.5	4.0	4.8	1.1	1.5
1992	1,091.3	17.5	43.6	9.2	37.9	4.2	5.1	1.0	1.6
1993	1,154.5	17.6	44.1	10.2	37.1	4.2	4.4	1.1	1.6
1994	1,258.7	18.1	43.1	11.2	36.7	4.4	4.7	1.2	1.6
1995	1,351.9	18.5	43.7	11.6	35.8	4.3	4.6	1.1	1.4
1996	1,453.2	18.9	45.2	11.8	35.1	3.7	4.2	1.2	1.3
1997	1,579.4	19.3	46.7	11.5	34.1	3.6	4.0	1.3	1.1
1998	1,722.0	20.0	48.1	11.0	33.2	3.3	4.4	1.4	1.1
1999	1,827.6	20.0	48.1	10.1	33.5	3.9	4.4	1.5	1.0
2000	2,025.5	20.9	49.6	10.2	32.2	3.4	4.5	1.4	1.0
2001	1,991.4	19.8	49.9	7.6	34.8	3.3	4.3	1.4	1.0
2002	1,853.4	17.9	46.3	8.0	37.8	3.6	4.3	1.4	1.0
2003	1,782.5	16.5	44.5	7.4	40.0	3.8	4.3	1.2	1.1
2004	1,880.3	16.3	43.0	10.1	39.0	3.7	4.2	1.3	1.1
2005	2,153.9	17.6	43.0	12.9	36.9	3.4	3.8	1.2	1.0
2006	2,407.3	18.4	43.4	14.7	34.8	3.1	4.1	1.2	1.0
2007	2,540.1	18.5	46.0	13.5	34.4	2.2	3.9	1.0	1.1

주: 1. 각 세목이 정부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2. 기타 수입은 상속증여세, 관세와 연방은행 예탁금으로부터의 수입 등을 포함.

자료: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istorical Tables, 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8/

〈표 III-6〉 연방정부 재정수입 내역(1929~2007년)

(단위: 십억달러)

	총수입	세금	개인세	상품세			법인세	연방은행	기타
				소비세	관세				
1929	3.7	3.5	1.2	1.1	0.6	0.6	1.2	0.0	1.2
1930	2.9	2.8	1.0	1.0	0.5	0.5	0.7	0.0	0.7
1935	3.7	3.5	0.6	2.1	1.7	0.4	0.8	0.0	0.8
1940	8.2	6.2	1.0	2.6	2.1	0.3	2.6	0.0	2.6
1945	41.5	35.8	18.6	6.9	6.2	0.4	10.2	0.0	10.2
1950	48.8	43.3	17.4	8.7	8.2	0.5	17.2	0.2	17.0
1955	71.1	62.0	30.5	10.4	9.8	0.7	21.1	0.3	20.8
1960	93.9	76.5	41.8	13.1	12.0	1.1	21.4	0.9	20.6
1965	120.9	95.7	51.1	15.5	13.9	1.6	28.9	1.3	27.6
1970	186.0	138.0	88.9	18.2	15.7	2.5	30.6	3.5	27.1
1975	277.2	187.0	120.7	22.2	16.4	5.9	43.6	5.4	38.2
1980	532.1	355.9	250.0	34.0	26.9	7.2	70.3	11.7	57.6
1981	619.4	408.1	290.6	50.3	41.7	8.6	65.7	14.0	51.7
1982	616.6	386.8	295.0	41.4	32.8	8.6	49.0	15.2	33.8
1983	642.3	393.6	286.2	44.8	35.7	9.1	61.3	14.2	47.1
1984	709.0	425.7	301.4	47.8	35.9	11.9	75.2	16.1	59.2
1985	773.3	460.6	336.0	46.4	34.3	12.2	76.3	17.8	58.5
1986	815.2	479.6	350.1	44.0	30.3	13.7	83.8	17.8	66.0
1987	896.6	544.0	392.5	46.3	30.7	15.5	103.2	17.7	85.4
1988	958.2	566.7	402.9	50.3	33.9	16.4	111.1	17.4	93.8
1989	1,037.4	621.7	451.5	50.2	32.7	17.5	117.2	21.6	95.6
1990	1,081.5	642.8	470.2	51.4	33.9	17.5	118.1	23.6	94.5
1991	1,101.3	636.1	461.3	62.2	45.3	16.8	109.9	20.8	89.2
1992	1,147.2	660.4	475.3	63.7	45.4	18.3	118.8	16.8	102.0
1993	1,222.5	713.4	505.5	66.7	46.9	19.8	138.5	16.0	122.5
1994	1,320.8	781.9	542.7	79.4	57.9	21.4	156.7	20.5	136.3
1995	1,406.5	845.1	586.0	75.9	56.1	19.8	179.3	23.4	155.9
1996	1,524.0	932.4	663.4	73.2	54.0	19.2	190.6	20.1	170.5
1997	1,653.1	1,030.6	744.3	78.2	58.6	19.6	203.0	20.7	182.3
1998	1,773.8	1,116.8	825.8	81.1	61.5	19.6	204.2	26.6	177.7
1999	1,891.2	1,195.7	893.0	83.9	64.7	19.2	213.0	25.4	187.6
2000	2,053.8	1,313.6	991.1	87.8	66.7	21.1	219.4	25.3	194.1
2001	2,016.2	1,252.2	994.5	85.8	65.2	20.6	164.7	27.1	137.6
2002	1,853.2	1,075.5	830.5	87.3	67.4	19.9	150.5	24.5	126.0
2003	1879.9	1,070.8	774.5	89.7	68.2	21.4	197.8	22.0	175.8
2004	2,008.9	1,152.3	797.4	94.6	71.4	23.3	250.3	18.1	232.2
2005	2,266.9	1,383.0	930.7	99.2	73.9	25.3	341.0	21.5	319.5
2006	2,510.4	1,550.2	1,049.9	98.0	71.3	26.7	388.9	29.1	359.9
2007	2,651.2	1,644.5	1,167.3	97.7	68.9	28.8	365.4	34.6	330.8

〈표 III-6〉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해외 세금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자산 소득	이자 수입	임대료 로열티	이전 수입	사업이전 수입	개인이전 수입	공기업 잉여
1929	-	0.1	-	-	-	0.1	0.1	0.0	-
1930	-	0.1	-	-	-	0.1	0.1	0.0	-
1935	-	0.1	-	-	-	0.1	0.1	0.0	-
1940	-	1.9	-	-	-	0.1	0.1	0.0	-
1945	-	5.3	-	-	-	0.4	0.3	0.1	-
1950	-	5.3	-	-	-	0.2	0.2	0.0	-
1955	-	8.8	-	-	-	0.3	0.3	0.1	-
1960	0.1	16.0	1.4	1.3	0.0	0.4	0.4	0.0	-0.3
1965	0.2	22.7	1.9	1.8	0.1	1.1	1.0	0.1	-0.3
1970	0.4	45.3	3.1	2.8	0.2	1.1	1.0	-1.1	-1.5
1975	0.5	87.5	4.9	4.3	0.6	1.5	1.4	0.1	-3.6
1980	1.6	162.6	13.7	11.3	2.3	3.5	3.3	0.2	-3.6
1981	1.5	191.8	18.3	14.8	3.5	3.8	3.5	0.3	-2.5
1982	1.4	204.9	22.2	18.3	3.8	5.2	4.5	0.7	-2.4
1983	1.2	221.8	23.8	20.4	3.5	6.0	5.0	1.0	-2.9
1984	1.3	252.8	26.6	22.8	3.9	7.3	6.2	1.0	-3.4
1985	1.9	276.5	29.1	25.7	3.5	9.4	8.2	1.2	-2.4
1986	1.7	297.5	31.4	29.0	2.4	8.2	6.9	1.3	-1.5
1987	2.0	315.6	27.9	25.6	2.3	10.7	8.7	2.0	-2.0
1988	2.4	353.1	30.0	28.0	2.0	10.8	8.0	2.8	-2.3
1989	2.7	376.3	28.6	26.5	2.1	12.4	9.3	3.1	-1.6
1990	3.0	400.1	30.2	27.6	2.6	13.5	10.1	3.4	-5.1
1991	2.6	418.6	30.1	27.4	2.8	17.9	14.1	3.9	-1.4
1992	2.6	441.8	25.7	23.1	2.6	19.4	15.3	4.1	-0.1
1993	2.7	463.6	26.2	23.5	2.7	21.1	16.1	5.0	-1.8
1994	3.1	493.7	23.4	20.6	2.7	22.3	16.7	5.6	-0.4
1995	3.9	519.2	23.7	21.2	2.5	19.1	13.0	6.1	-0.6
1996	5.2	542.8	26.9	23.0	4.0	23.1	16.0	7.1	-1.2
1997	5.1	576.4	25.9	21.4	4.5	19.9	12.0	7.9	0.3
1998	5.7	613.8	21.5	17.7	3.8	21.5	12.9	8.6	0.1
1999	5.9	651.6	21.5	18.0	3.5	22.7	12.9	9.8	-0.3
2000	7.3	691.7	25.2	20.1	5.1	25.7	14.9	10.8	-2.3
2001	7.1	717.5	24.9	18.4	6.5	27.1	16.2	10.9	-5.5
2002	7.3	734.3	20.2	15.4	4.9	24.8	14.0	10.8	-1.6
2003	8.9	758.9	22.9	16.4	6.5	25.0	14.3	10.7	2.3
2004	10.0	805.2	23.8	17.2	6.6	28.8	15.9	12.9	-1.2
2005	12.1	850.0	24.0	16.9	7.1	15.0	0.1	14.9	-5.0
2006	13.4	902.4	25.7	18.0	7.7	35.7	19.6	16.0	-3.6
2007	14.0	942.3	29.2	21.9	7.2	37.5	20.5	17.1	-2.2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s Table: Federal Current Receipts and Expenditure (www.bea.gov/national//nipaweb).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합친 소득세 비중은 정부 지출의 증가와 맥락을 같이하여 1944년 80%까지 증가하였다가 1960년대 64%로 하락하였고 그 대신 사회보장세가 증가하였다. 1983년 소득세 비중은 전체 수입의 54%를 차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비중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다시 1994년 이후 증가하여 2000년 60%로 상승한 이래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6년 이후에도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쟁 이후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법인세가 소득세 비중 감소의 주된 원인이다. 법인세의 정부 수입 비중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중이던 1945년 35.4%로 증가하는 등 30%대를 유지하다가 1950~70년까지는 20%대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꾸준히 감소하였던 법인세 비중은 1983년 6.2%로 저점을 기록하였고 그 후 다시 10%를 전후한 움직임을 보인다. 2001년 8%대로 하락한 법인세 비중은 2004년 10.1%를 회복하였고 2006년 14.7%까지로 증가하게 되었다.

〈표 Ⅲ-6〉은 연방정부 재정 수입을 주요 세목 이외 여타 수입을 모두 합하여 그 변화를 추적한 표이다. 2007년을 기준할 때 재정 수입 2조 6,512억달러에서 사회보장금을 포함한 총세입은 2조 5,868억달러로 총재정 수입의 97.6%에 이르고 여기서 사회보장금을 제외한 순세입은 1조 1,673억달러로 재정 수입의 62%에 이른다. 1950~1970년 사이에 80%대를 차지하던 순세입은 1970년대에는 70%대를 전후하면서 하락한다. 이후 1990년 59.4%까지 떨어진 순세입은 최근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요 세목의 수입은 아래에서 자세히 논의하고 세입 이외 수입을 보면 연방은행으로부터의 수입이 346억달러, 주로 이자수입으로 구성된 자산소득 292억달러, 이전수입이 375억달러이고 공기업 잉여는 대부분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2007년 22억달러 손실). 이 밖에도 해외로부터의 세입은 14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3) 연방정부 수입내역

〈표 Ⅲ-7〉은 1980년 이후 연방정부 수입을 일반세입과 사회보장세 그리고 소비세 혹은 기금으로 구분한 표이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 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보기술 발달로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2000년(20.6%)을 제외하면 대체로

18%를 유지하고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일반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전까지 대략 17%에 달하였으나 2000년 당시 20%까지 올랐다가 그 후 14%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 이후 부시 대통령이 단행한 일련의 감세법안의 여파 때문으로 보인다.

〈표 III-7〉 연방정부 부문별 수입(1980~2007년)

(단위: 십억달러, %)

	1980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¹⁾
국내총생산(GDP)	2,795.6	5,803.2	7,400.5	9,824.6	12,421.9	13,178.4	13,807.5
연방정부 총수입	517.1	1032	1,351.8	2,025.2	2,153.9	2,407.3	2,540.1
(GDP 대비 비중)	18.50	17.78	18.27	20.61	17.34	18.27	18.40
일반세수	490.8	975.7	1,289.2	1,933.6	1,933.6	1905.5	1,925.5
(GDP 대비 비중)	17.56	16.81	17.42	19.68	15.57	14.46	13.95
소득세	244.1	466.9	590.2	1,004.5	927.2	1,043.9	1,168.8
법인세	64.6	93.5	157	207.3	278.3	353.9	342.1
사회보장세	157.8	380	484.5	652.9	794.1	837.8	873.4
소비세	24.3	35.3	57.5	68.9	73.1	74.0	57.1
사회보장세	157.8	380	484.5	652.9	794.1	837.8	873.4
고용및일반연금	138.7	353.9	451	620.5	747.7	790.0	823.7
노령자및생존자	96.6	255	284.1	411.7	493.6	520.1	542.1
장애	16.6	26.6	67	68.9	83.8	88.3	92.0
의료보험	23.2	68.6	96	135.5	166.1	177.4	185.2
철도연금	2.3	2.3	2.4	2.7	2.3	2.3	2.4
실업보험	15.3	21.6	28.9	27.6	42.0	43.4	45.0
기타 연금	3.7	4.5	4.6	4.8	4.5	4.4	4.7
연방공무원연금	3.7	4.4	4.5	4.7	4.4	4.3	4.7
소비세	24.3	35.3	57.5	68.9	73.1	74.0	57.1
연방기금 ⁴⁾	15.6	15.6	26.9	22.7	22.5	22.5	3.1
주류	5.6	5.7	7.2	8.1	8.1	8.5	8.6
담배	2.4	4.1	5.9	7.2	7.9	7.7	7.6
전화	b	3.0	3.8	5.7	6.0	4.9	-11.6
오존파괴물질	b	0.4	0.6	0.1	0	0	0
교통연료	b	b	8.5	0.8	-0.8	-2.4	-3.0
기금(Trust fund) ⁴⁾	8.8	19.8	30.5	46.2	50.5	51.5	53.9
도로	6.6	13.9	22.6	35.0	37.9	38.4	39.7
공항	1.9	3.7	5.5	9.7	10.3	10.6	11.4
폐병(석탄)	0.3	0.7	0.6	0.5	0.6	0.6	0.6
내국운하	³⁾	0.1	0.1	0.1	0.1	0.1	0.1
유해물질 ²⁾	³⁾	0.8	0.9	0	0.9	0.9	1.0
석유누출 부담금	³⁾	0.1	0.2	0.2	0	0.1	0.2
수산자원	³⁾	0.2	0.3	0.3	0.4	0.5	0.5
백신포해 보상	³⁾	0.2	0.1	0.1	0.1	0.2	0.2

주: 1) 2007년은 추정치.

2) 2005년 이후는 담배 관련 기금.

3) 적용 대상이 아님.

4) 제시되지 않은 여타 소규모 기금 포함.

자료: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istorical Tables, 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8/

사회보장세는 일반적인 연금 형태의 기금과 의료보험이 세입의 주종을 이루고 있고 소비세는 1990년대 초 사치세 도입 등으로 일시적인 비중 증대가 있었지만 부시 행정부 때 일부 정비되면서 세수가 절대금액으로도 감소하고 있다. 이외 많은 경우 연방소비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기금에는 도로, 운하와 항만유지, 광산 노동자 치료를 위한 기금, 원유 등 화학제품 누출에 따른 환경보존기금 등이 있다. 일반세수에서 이들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8%에서 2007년 2.8%로 증가하였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기금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4) 연방정부 세목별 세수 동향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연방정부의 내국세 징수 동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방세의 GDP 대비 비중은 그간 꾸준히 증가하여 1972년 16.9%에서 2007년 19.5%에 달한다. 특히 이러한 증가 추세는 1994년 이후 두드러진 현상인데 이는 미국이 신경제 환경을 경험하면서 세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소득세의 추이에서 보듯이 누진과세적 성격이 세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균일 과세되는 자영업자 고용세의 GDP 대비 비중이 1990년대에 크게 변화하지 않은 사실에서 입증된다(〈표 Ⅲ-8〉 참조).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자영업자 고용세의 비중은 1972년 3.5%에서 2007년 6.2%로 증가하여 개인소득세를 제외한 여타 세목과 달리 GDP 대비 비중이 2.7% 정도 증가하였다. 개인소득세는 같은 기간에 8.8%에서 9.9%로 1.1%포인트 증가한 바 있다. 따라서 내국세 비중이 약 2.6% 증가한 것은 자영업자 고용세가 증가한 비율 2.7%와 거의 비슷하다. 특히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소득세 비중은 1972년 11.6%에서 2007년 12.8%로 1.1%포인트 증가하였다. 반면 연방소비세 비중은 1972년 1.4%에서 그 동안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7년 0.4%로 하락하면서 이러한 개인세 비중의 증가를 상쇄한 결과 자영업자 고용세의 증대가 결국 내국세 징수 증대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소득세 변화의 내역을 살펴보면 전술한 대로 1972~2007년 사이에 8.8%에서 9.9%로 약 1.1%포인트 증가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같은 기간에 2.8%와 2.9%로 큰 변화가 없는 듯 하지만 사실 2003년까지는 1.3%로 부침을 거듭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해 왔다. 법인세가 증가한 시기도 신경제가 활황을 누리던 1990년대 중반으로 소득세의 비

중도 최고 11.3%까지 증가하였다.

자영업자 고용세가 1972년 3.5%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말로서 6%대를 초과하게 된다. 이에 비하면 유산·증여세 비중은 0.2~0.3%로 과거 3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점진적 세율인하와 폐지 입법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상속·증여세의 GDP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제세의 동향은 같은 세목을 과세하는 지방정부의 세부담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 III-8〉 내국세 세목별 징수액(1972~2007년)

(단위: 억달러, %)

	전체 내국세 징수액	소득세			자영업 고용세	유산증여세	연방소비세
		총징수액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1972	2,098.6(16.9)	1,438.0(11.6)	349.3(2.8)	1,088.8(8.8)	437.1(3.5)	54.7(0.4)	168.5(1.4)
1973	2,377.9(17.2)	1,641.6(11.8)	390.5(2.8)	1,251.1(9.0)	520.8(3.8)	49.8(0.4)	165.7(1.2)
1974	2,689.5(17.9)	1,846.5(12.3)	417.4(2.8)	1,429.0(9.5)	620.9(4.1)	51.0(0.3)	171.1(1.1)
1975	2,938.2(18.0)	2,021.5(12.4)	457.5(2.8)	1,564.0(9.6)	701.4(4.3)	46.9(0.3)	168.5(1.0)
1976	3,025.2(16.6)	2,057.5(11.3)	467.8(2.6)	1,589.7(8.7)	742.0(4.1)	53.1(0.3)	174.0(1.0)
1977	3,581.4(15.6)	2,468.1(10.7)	600.5(2.6)	1,867.6(8.1)	860.8(3.7)	74.3(0.3)	178.3(0.8)
1978	3,997.8(15.6)	2,784.4(10.8)	653.8(2.5)	2,130.6(8.3)	972.9(3.8)	53.8(0.2)	186.6(0.7)
1979	4,604.1(16.5)	3,229.9(11.6)	714.5(2.6)	2,515.5(9.0)	1,128.5(4.0)	55.2(0.2)	190.5(0.7)
1980	5,193.8(16.6)	3,599.3(11.5)	723.8(2.3)	2,875.5(9.2)	1,283.3(4.1)	65.0(0.2)	246.2(0.8)
1981	6,068.0(18.6)	4,065.8(12.5)	737.3(2.3)	3,328.5(10.2)	1,528.9(4.7)	69.1(0.2)	404.2(1.2)
1982	6,322.4(17.9)	4,186.0(11.8)	659.9(1.9)	3,526.1(10.0)	1,687.2(4.8)	81.4(0.2)	367.8(1.0)
1983	6,272.5(15.9)	4,114.1(10.5)	617.8(1.6)	3,496.3(8.9)	1,738.5(4.4)	62.3(0.2)	357.7(0.9)
1984	6,804.8(16.2)	4,370.7(10.4)	741.8(1.8)	3,628.9(8.6)	1,992.1(4.7)	61.8(0.1)	380.2(0.9)
1985	7,428.7(16.7)	4,740.7(10.6)	774.1(1.7)	3,966.6(8.9)	2,252.1(5.1)	65.8(0.1)	370.0(0.8)
1986	7,822.5(16.5)	4,974.1(10.5)	804.4(1.7)	4,169.6(8.8)	2,439.8(5.1)	71.9(0.2)	336.7(0.7)
1987	8,862.9(17.3)	5,683.1(11.1)	1,028.6(2.0)	4,654.5(9.1)	2,770.0(5.4)	76.7(0.2)	333.1(0.7)
1988	9,351.1(17.0)	5,833.5(10.6)	1,096.8(2.0)	4,736.7(8.6)	3,180.4(5.8)	77.8(0.1)	259.3(0.5)
1989	10,133.2(17.5)	6,327.5(10.9)	1,170.1(2.0)	5,157.3(8.9)	3,456.3(6.0)	89.7(0.2)	259.8(0.4)
1990	10,563.7(17.6)	6,502.4(10.9)	1,100.2(1.8)	5,402.3(9.0)	3,672.2(6.1)	117.6(0.2)	271.4(0.5)
1991	10,868.5(17.2)	6,604.8(10.5)	1,136.0(1.8)	5,468.8(8.7)	3,844.5(6.1)	114.7(0.2)	304.5(0.5)
1992	11,208.0(16.9)	6,756.7(10.2)	1,179.5(1.8)	5,577.2(8.4)	4,000.8(6.0)	114.8(0.2)	335.7(0.5)
1993	11,766.9(16.7)	7,173.2(10.2)	1,315.5(1.9)	5,857.7(8.3)	4,115.1(5.8)	128.9(0.2)	349.6(0.5)
1994	12,764.7(17.2)	7,740.2(10.5)	1,542.0(2.1)	6,198.2(8.4)	4,438.3(6.0)	156.1(0.2)	430.0(0.6)
1995	13,757.3(17.6)	8502(10.8)	1,744.2(2.2)	6,757.8(8.6)	4,654.1(6.0)	151.4(0.2)	449.8(0.6)
1996	14,865.5(17.9)	9,343.7(11.2)	1,890.5(2.3)	7,453.1(9.0)	4,923.7(5.9)	175.9(0.2)	422.2(0.5)
1997	16,232.7(18.5)	10295.1(11.7)	2,044.9(2.3)	8,250.2(9.4)	5,286.0(6.0)	203.6(0.2)	448.1(0.5)
1998	17,694.1(19.1)	11,413.4(12.3)	2,132.7(2.3)	9,280.7(10.0)	5,578.0(6.0)	246.3(0.3)	456.4(0.5)
1999	19,041.5(19.4)	12,185.1(12.4)	2,163.2(2.2)	10,021.9(10.2)	5,986.7(6.1)	283.9(0.3)	585.9(0.6)
2000	20,969.2(20.8)	13,727.3(13.6)	2,356.5(2.3)	11,370.8(11.3)	6,396.5(6.3)	297.2(0.3)	548.1(0.5)
2001	21,288.3(20.4)	13,649.4(13.1)	1,867.3(1.8)	11,782.1(11.3)	6,822.2(6.5)	292.5(0.3)	524.2(0.5)
2002	20,166.3(19.3)	12491.7(12.0)	2,114.4(1.8)	10,377.3(11.3)	6,880.8(6.5)	272.4(0.3)	521.4(0.5)
2003	19,529.3(17.8)	11,813.6(10.8)	1,941.5(1.3)	9,872.1(9.0)	6,959.8(6.3)	228.3(0.2)	527.7(0.5)
2004	20,185.0(17.3)	12,208.7(10.4)	2,306.7(2.0)	9,902.5(8.5)	7,172.5(6.1)	255.8(0.2)	548.1(0.5)
2005	22,689.0(18.3)	14,146.0(11.4)	3,070.9(2.5)	11,075.0(8.9)	7,714.4(6.2)	256.1(0.2)	572.5(0.5)
2006	25,186.8(19.1)	16,171.8(12.3)	3,809.2(2.9)	12,362.6(9.4)	8,148.2(6.2)	286.9(0.2)	579.9(0.4)
2007	26,915.4(19.5)	17,617.8(12.8)	3,955.4(2.9)	13,662.4(9.9)	8,497.3(6.2)	269.8(0.3)	530.5(0.4)

주: 1. () 안의 수치는 GDP 대비 비율임.

2. IRS가 징수를 더 이상 맡지 않는 알코올 및 담배세(1988년 이후)와 총기류세(1991년 이후)는 제외.

3. 법인소득세에서 면세 대상 영업소득세 포함.

4. 개인소득세는 유산 및 기금 소득세 포함.

5. 고용세는 노년자, 생존 배우자, 상해 및 의료보험(OSADHI) 세금과 실업보험세, 철도연금세 등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7, Publication 55b.

한편 <표 Ⅲ-9>는 국세청 징수 상황을 세목별로 보여준다. 2007년 당시 2조 6,915억달러를 징수하여 2,953억달러(11.0%)를 환급하고 순징수액은 2조 3,963억달러에 달한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환급 비중은 각각 6.9%, 18.0%에 이른다. 이외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 비중은 2007년 당시 68.0%로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다.

〈표 III-9〉 IRS 내국세 징수내역 (2000~2007년)

(단위: 십억달러, %)

	2000				2005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세수	2096.9	196.6	1900.3	100.0	2018.5	270.0	1998.9	100.0
법인세	235.7	30.4	205.3	10.8	307.1	34.3	272.8	13.7
일반	235.0	-	-	-	306.5	-	-	-
면세기관 사업소득세	0.7	-	-	-	0.6	-	-	-
개인소득세	1137.1	158.7	978.4	51.5	1107.5	227.6	879.9	44.0
사용자 원천징수	780.5	n.a.	n.a.	n.a.	786.6	n.a.	n.a.	n.a.
기타	356.5	n.a.	n.a.	n.a.	320.9	n.a.	n.a.	n.a.
고용세	639.7	4.9	634.7	33.3	771.4	5.1	766.3	38.3
고령, 생존자, 장애보험(OASDHI)	627.9	4.8	623.1	32.8	760.0	5.0	755.0	37.8
연방보험기여법(FICA)	593.3	-	-	-	716.9	-	-	-
자영업 보험기여법(SECA)	34.6	-	-	-	43.1	-	-	-
실업보험	7.0	0.1	6.9	0.3	6.9	0.1	6.8	0.3
철도은퇴	4.8	0.0	4.8	0.2	4.5	0.0	4.5	0.2
유산·증여세	29.7	0.7	28.9	1.5	25.6	0.9	24.7	1.2
유산세	25.6	0.7	24.9	1.3	23.6	0.8	22.7	1.1
증여세	4.1	0.1	4.0	0.2	2.0	0.0	2.0	0.1
소비세	54.8	1.8	53.0	2.8	57.3	2.1	55.1	2.8
	2006				2007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징수	환급	순징수	구성비
총세수	2518.7	280.4	2238.1	100.0	2691.5	295.3	2396.3	100.0
법인세	380.9	29.8	351.1	15.7	395.5	27.1	368.5	15.4
일반	380.0	-	-	-	394.7	-	-	-
면세기관 사업소득세	0.1	-	-	-	0.9	-	-	-
개인소득세	1236.3	242.6	993.6	44.4	1366.2	248.6	1117.6	46.6
사용자 원천징수	849.0	n.a.	n.a.	n.a.	928.6	n.a.	n.a.	n.a.
기타	387.3	n.a.	n.a.	n.a.	437.6	n.a.	n.a.	n.a.
고용세	814.8	4.9	809.9	36.2	849.7	11.7	838.0	35.0
고령, 생존자, 장애보험(OASDHI)	802.6	4.8	797.8	35.7	837.6	11.6	826.0	34.5
연방보험기여법(FICA)	757.5	-	-	-	787.8	-	-	-
자영업 보험기여법(SECA)	45.1	-	-	-	49.8	-	-	-
실업보험	7.5	0.1	7.4	0.3	7.4	0.1	7.3	0.3
철도은퇴	4.7	0.0	4.7	0.2	4.7	0.0	4.7	0.2
유산·증여세	28.7	0.9	27.8	1.2	27.0	1.0	26.0	1.1
유산세	26.7	0.8	25.9	1.1	24.6	0.9	23.6	1.0
증여세	2.0	0.0	1.9	0.1	2.4	0.0	2.4	0.1
소비세	58.0	2.2	55.8	2.5	53.0	6.7 ²⁾	46.2	2.0

주: 1. 관세와 연방 알코올 및 담배세 징수액은 불포함.

2. 전화세 환급을 포함.

자료: IRS Data Book, 각 연도, Publication 55b.

이 밖에도 <표 Ⅲ-10>은 연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을 보여준다. 약 2008년 기준으로 9,870억달러에 달하는 조세지출예산에서 비중이 큰 항목은 주택 2,014억달러(20.4%), 의료비 1,780억달러(18.0%), 사업 1,759억달러(17.8%), 지방정부 지원 1,292억달러(13.1%), 소득보장 1,197억달러(12.1%), 교육 946억달러(9.6%) 등의 순이다. 또한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수혜자에 따라 구분해보면 개인 4,895억달러(49.6%), 기업 3,685억달러(37.3%), 지방정부 1,292억달러(13.1%)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미국 조세지출예산에서 기업을 위한 조세감면은 많지 않다. 그 대신 다양한 사회적 책적 목표를 위하여 개인에 대한 감면이 많은데 특히 주택보유, 교육, 의료, 연금 등의 사회보장에 다수의 감면항목이 있고 지방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연방세 차원의 조세감면이 시행되고 있다. 다양한 조세지출 예산항목 가운데 흥미로운 항목은 국내생산을 유지하는 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으로 약 138억달러가 지출되었다. 이는 사실 WTO 협정상 금지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귀속 임대소득에 대한 공제로 인한 감면이 약 357억달러가 있다.

〈표 III-10〉 기능별 조세지출예산 추계

(단위: 억달러, %)

	2006	2007	2008	2009
군 종사자에 대한 혜택과 공제의 면제	31.0	32.2	33.5	34.8
국제관계				
미국국민 해외소득 면제	25.9	26.3	27.6	29.0
역외소득 면제 ¹⁾	44.0	16.3	—	—
CFC(피지배 외국주식회사) 이연소득	111.6	119.4	127.7	136.5
금융업 역외소득에 대한 이연	22.6	23.7	24.9	10.6
과학항공기술				
연구실험경비	79.2	56.8	52.8	40.6
연구활동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	21.8	103.2	49.6	21.0
에너지				
대체연료생산공제	29.8	23.7	0.8	0.0
주택 및 사업활동				
생명보험 저축 면제	193.8	201.5	219.3	250.1
주택				
소유자 거주 대출이자 공제	683.3	799.4	894.3	962.5
소유자 거주 재산세 공제	212.6	155.4	126.2	129.5
귀속임대 순소득 공제(imputed rent)	287.8	321.1	356.8	394.4
주택매매 양도차익 면제	352.7	370.3	388.9	408.3
25,000\$ 임대손실(passive loss rule) 예외	65.9	71.5	75.2	77.9
저소득주택 투자공제	44.2	46.6	49.4	52.5
임대주택(조기 감가상각)	103.4	112.4	123.0	134.8
사업				
양도소득(농업, 목재 및 광산 제외)	486.1	517.7	519.6	522.3
사망시 양도소득(step-up basis)	296.0	326.0	359.0	367.5
국내생산 활동 공제	99.5	107.0	138.1	145.0
기계설비(조기 감가상각)	364.7	510.3	646.7	783.9
소액투자 경비처리	50.0	53.3	53.3	47.4
누진 법인세율	40.5	42.7	42.4	43.2
교통				
종업원 주차비용 보상 면제	27.4	28.9	30.4	31.9
교육, 고용, 사회서비스				
교육				
HOPE(고용) 세액공제	39.0	33.3	33.5	36.0
민간 비영리시설 채권이자 면제	21.4	23.8	25.3	26.1
평생교육 세액공제	24.9	21.9	22.0	23.1
19세 이하 학생자녀 인적공제	40.3	25.0	15.9	14.8
교육기부금 공제	42.0	45.5	51.2	55.2
고용 및 사회서비스				
자녀 공제	303.8	325.6	323.4	321.0
자녀 및 부양자 부양비용 공제	31.8	28.1	17.4	16.5
기부금 소득공제(교육/보건 제외)	371.2	404.0	457.6	493.6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고용주 부담금 면제	1,250.0	1,412.7	1,601.9	1,795.8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39.7	43.7	37.3	41.8

〈표 III-10〉의 계속

(단위: 억달러, %)

	2006	2007	2008	2009
의료비용 공제	37.7	42.4	49.2	58.2
병원건설 채권 이자소득 면제 ²⁾	34.2	37.7	40.1	41.3
의료기부금 소득공제	41.9	45.6	51.6	55.7
소득보장				
종업원 보상혜택 면제	56.6	57.4	58.3	59.2
연금기여 순면제				
고용자 연금	490.4	495.1	484.8	480.3
401(k) 연금	407.6	424.1	439.7	459.8
개인은퇴기금	39.7	57.0	66.5	71.3
저소득층 소득 저축신용		0	5.5	
Keogh 연금	39.3	61.6	65.2	
기타 종업원 혜택 면제				
단체생명 보험료	22.8	23.1	23.5	23.8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	50.5	53.6	53.4	54.9
사회보장				
은퇴자 사회보장 혜택	178.9	181.0	189.3	191.1
장애인 사회보장 혜택	47.3	51.2	56.2	58.9
부양자/생존자 사회보장 혜택	33.6	33.4	34.0	33.3
퇴역군인 사망혜택 · 불구보상 면제	35.8	37.7	38.9	40.3
일반재정지원				
지방정부 채권 이자소득 면제	229.8	254.3	271.5	279.6
비사업 지방세 소득공제(자가주택 제외)	431.2	336.8	279.0	277.9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자가주택 재산세 공제	212.6	155.4	126.2	125.9
비사업 지방세 소득공제(자가주택 제외)	431.2	336.8	279.0	277.9
지방정부 채권 이자소득 면제				
공공목적	229.8	254.3	271.5	279.6
민간 교육시설	21.4	23.8	25.3	26.1
병원건설	34.2	37.7	40.1	41.3

주: 1) foreign sales corporation 소득.

2) 비영리보건시설을 위한 지방정부 부채 이자소득.

자료: US OMB(www.whitehouse.gov/omb/budget/fy2008).

다. 소득분배와 연방정부 실효세율(1979~2005년)

1) 소득과 실효세율의 계층별 분포(2005년)

미국 의회예산처⁶⁶⁾는 1979~2005년 사이에 소득분배와 세부담 그리고 주요 세목별 실효세율을 추정한 바 있다. 실효세율은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을 포함하여 임금, 이자, 배당, 임대 등 소득세 세금을 개인이 부담하고 소비세는 소비 규모에 따라 부담하며 법인세는 이자, 배당, 양도 그리고 임대소득 비율에 따라 자본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되었다. 한편 소득은 임금이외에도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대신 부담하는 연금, 부가급부 등을 포함한다.

〈표 Ⅲ-11〉를 바탕으로 2005년 당시 소득 5분위별 소득 점유비와 세율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세전소득 점유 비율을 보면 소득 최하위 계층 20%가 전체 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최상위 계층 20%는 전체 소득의 55.1%를 차지하여 최하위 계층 소득의 13.8배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차상위 계층은 전체 소득의 19.8%를 차지하고 있어 역시 최상위 계층 소득이 차상위 계층 소득의 2.8배에 달한다. 반면 세후소득으로 보면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각각 4.8%, 51.6%로 최상위 계층 소득이 최하위 계층의 10.8배로 누진과세로 인해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66) Congressional Budget Office.

〈표 III-11〉 소득계층별 실효세율과 세부담(2005년)

(단위: 백만가구, 달러, %)

소득계층	가구수	평균소득		실효세율				
		세전	세후	전체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세	법인세	연방 소비세
최하위	24.1	15,900	15,300	4.3	-6.5	8.3	0.4	2.1
2분위	22.0	37,400	33,700	9.9	-1.0	9.2	0.5	1.3
3분위	22.2	58,500	50,200	14.2	3.0	9.5	0.7	1.0
4분위	22.6	85,200	70,300	17.4	6.0	9.7	2.0	0.8
최상위	23.1	231,300	172,200	25.5	14.1	6.0	4.9	0.5
합계	114.5	84,800	67,400	20.5	9.0	7.6	3.1	0.8
최상위 10%	11.7	339,100	246,300	27.4	16.0	4.8	6.1	0.4
최상위 5%	5.8	520,200	369,800	28.9	17.6	3.5	7.4	0.3
최상위 1%	1.1	1,558,500	1,071,500	31.2	19.4	1.7	9.9	0.2

소득계층	가구 점유비	소득 점유비		조세부담률				
		세전	세후	전체	개인 소득세	사회 보장세	법인세	연방 소비세
최하위	21.1	4.0	4.8	0.8	-2.9	4.3	0.6	11.1
2분위	19.2	8.5	9.6	4.1	-0.9	10.1	1.4	14.4
3분위	19.3	13.3	14.4	9.3	4.4	16.7	3.0	18.1
4분위	19.7	19.8	20.6	16.9	13.1	25.1	6.2	21.9
최상위	20.2	55.1	51.6	68.7	86.3	43.6	87.8	34.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최상위 10%	10.2	40.9	37.4	54.7	72.7	25.8	81.6	21.2
최상위 5%	5.2	31.1	27.8	43.8	60.7	14.4	74.9	13.5
최상위 1%	1.0	18.1	15.6	27.6	38.8	4.0	58.6	5.5

주: 1.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2. 소득은 현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한 것으로 전자는 임금, 자영업자 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 양도소득, 연금지급, 이전지출, 기업이 지급한 각종 세금과 연금지원금을 합한 금액이며 기타 소득은 의료보험료, 주택지원비 등 현물지원을 말함.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한편 전체 연방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2005년 20.5%로 2004년에 비하여 실효세율이 0.4% 상승하였는데 이는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고세율 소득구간으로 일부 납세자가 이동하였기 때문이다(bracket creep).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의 평균세율이 각각 0.3%, 0.5% 증가한 데 비하여 사회보장세율은 0.4%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최상위 20%의 실효세율은 25.5%로 차상위 계층(17.4%)보다 실효세율이 8.1%포인트 높다. 또한 최하위 계층(4.3%)에 비하면 최상위 계층의 실효세율이 약 5.9배나 높다.

연방세 평균세율 20.5%는 개인소득세 9.0%, 사회보장세 7.6%, 법인세 3.1% 그리고 연방소비세 평균세율 0.8%의 순으로 구성된다. 개별 세목별 소득계층의 실효세율을 보면 우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상위 계층의 평균 소득세율은 14.1%로 차상위 계층 세율 6.0%의 2.4배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최하위 계층의 실효세율(-6.5%)은 마이너스 값을 보여 EITC 등 조세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법인세 평균세율 3.1%를 기준으로 소득계층별 세율분포를 보면 최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그리고 최하위 계층이 각각 4.9%, 2.0%, 0.4%의 순으로 법인세도 개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실효세 부담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사회보장세의 계층별 실효세율은 일률과세를 반영하여 소득과 관계가 없거나 약간 역진적으로 나타나 평균세율 7.6% 대비 최상위 계층 6.0%와 최하위 계층 8.3%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간소득 계층의 사회보장세 세율은 모두 9%를 초과하고 있다. 또한 연방소비세의 실효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은 낮아지는 역진적 모습을 나타낸다. 즉, 최하위 계층 2.1%부터 시작하여 실효세율이 점차 낮아져 3분위 계층 1.0% 그리고 최상위 계층 0.5%로 감소하고 있고 평균세율은 0.8%이다.

세금을 각 소득계층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즉, 계층별 조세부담률을 보면 최상위 계층이 전체 세금의 68.7%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차상위 계층은 16.9% 그리고 최하위 계층은 전체 세금의 0.8%만 부담한다. 즉, 최상위 계층의 세금 부담은 차상위 계층의 4.1배 그리고 최하위 계층의 86배에 달한다. 이를 세전소득과 비교해보면 전술한 대로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차상위와 최하위 계층의 2.8배, 13.8배로서 세금부담이 소득보다 최상위 계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최상위 계층의 부담률은 각각 86.3%, 87.8%에 이르러 전체 소득세의 대부분을 이들 최상위 20%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차상

위 계층의 부담률은 각각 13.1%, 6.2%에 불과하다. 개인소득세는 누진과세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법인세는 물론 소득의 많은 부분이 최상위 계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회보장세와 연방소비세에서 최상위 계층이 부담하는 세금의 비중은 각각 43.6%, 34.1%에 이른다. 사회보장세가 대체로 소득에 대한 일률과세이고 소비세는 소득보다도 소비에 기초한 일률과세라는 사실이 이와 같이 조세부담률에 반영되어 있다. 한편 차상위 계층의 세금 비중은 각각 25.1%, 21.9%로 소득 비중과 유사하게 부담하고 있고 최하위 계층의 사회보장세와 연방소비세 부담률은 각각 4.3%, 11.1%에 이른다. 따라서 여기서도 연방소비세가 가장 역진적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2) 계층별 소득과 실효세율의 변천(1979~2005년)

〈표 III-12〉는 1979~2005년 사이에 소득 5분위별 실질소득⁶⁷⁾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2005년달러 기준). 우선 평균소득을 보면 1979년 당시 59,700달러에서 2005년 소득은 84,800달러로 약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소득과 계층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평균소득은 소득 3분위보다는 4분위(차상위) 계층의 소득에 가깝게 위치하여 미국의 소득분포가 상위층에 편중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계층별로 보면 소득 변화는 평균소득의 변화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최하위 계층의 경우 평균 실질소득은 1979년 15,700달러에서 2005년 15,900달러로 26년간 큰 변화가 없다. 2분위 계층도 같은 기간에 소득이 34,000달러에서 37,400달러로 10% 증가하였다. 물론 1999년에 최하위 계층과 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각각 17,400달러와 38,400달러로 증가한 바 있지만 IT 거품이 빠지면서 그 후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간소득에 해당하는 3분위 계층의 소득은 1979~2005년 사이에 51,000달러에서 58,500달러로 14.7%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에는 3분위 계층의 소득도 약간 감소하는 듯 하였지만 2004년부터는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4분위(차상위) 계층의 소

67) 여기서 소득은 임금, 배당, 이자, 임대소득 이외에도 각종 부가급부와 고용주가 대신 지급하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득은 같은 기간에 69,000달러에서 85,200달러로 23.5% 증가하였다.

한편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132,100달러에서 231,300달러로 무려 75.1% 증가하여 최근 26년간 미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수혜를 고소득 계층이 가장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79년부터 1995년까지 16년간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약 29.5% 증가하였지만 그 후 10년간 35.2%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면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에 각각 17.9%, 20.5% 증가하였다. 참고로 최상위 10%와 5% 소득계층의 경우 1979~2005년 사이에 각각 96.9%, 122.0% 증가하였고 최상위 1%는 20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계층별 평균소득의 변화를 배경으로 계층별 소득점유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Ⅲ-13〉 참조). 우선 전술한 대로 2005년 당시 최하위 계층과 2분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각각 4.0%, 8.5% 인데 4분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은 각각 19.8%, 55.1%이다. 반면 1979년을 보면 하위 2개 계층의 소득 점유율은 각각 5.8%, 11.1%이고 상위 2개 계층의 소득점유율은 22.0%, 45.5%였다. 따라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 비중이 9.6% 증가한 데 비하여 다른 계층의 소득 비중은 모두 2% 내외로 감소하였다. 나아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9.3%에서 18.1%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1995년부터 그 추세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2〉 실질 평균소득의 변화(1979~2005년)

(단위: 2005년 달러 기준)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평균소득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15,700	34,000	51,000	69,000	132,100	59,700	172,200	234,200	517,800
1980	15,100	32,600	49,300	66,900	127,800	57,700	166,400	223,100	488,200
1981	14,700	32,300	48,600	67,200	126,800	57,600	164,300	219,100	484,800
1982	14,300	31,500	47,600	66,400	126,800	57,300	165,800	224,000	505,700
1983	13,800	30,300	46,800	66,000	131,100	57,700	173,600	236,000	553,600
1984	14,200	32,100	48,800	68,700	140,200	60,300	188,000	258,700	609,400
1985	14,300	32,200	49,600	69,400	143,900	61,700	194,300	269,200	654,400
1986	14,300	33,000	50,800	72,000	162,400	66,300	224,700	324,200	851,900
1987	14,100	31,800	50,400	72,100	153,000	64,000	207,100	287,400	688,600
1988	14,300	32,400	51,200	72,900	164,600	66,900	227,500	326,300	867,300
1989	14,900	33,000	51,800	73,800	163,700	67,400	225,100	318,400	807,100
1990	15,300	33,800	51,600	72,900	159,000	66,700	217,000	305,500	774,500
1991	15,300	33,300	50,800	72,100	153,400	64,900	207,200	286,900	698,200
1992	15,000	33,100	51,100	72,800	160,100	66,700	219,400	311,000	791,700
1993	15,300	33,300	51,400	73,400	160,200	67,000	217,800	304,900	760,700
1994	15,200	33,600	51,800	74,600	163,400	67,800	223,700	314,700	784,300
1995	16,000	35,200	53,200	75,800	171,100	70,400	235,200	337,800	864,400
1996	15,700	35,000	53,900	77,100	179,700	72,700	251,400	362,000	953,400
1997	16,100	35,800	54,700	78,500	190,500	75,600	270,700	398,900	1,093,400
1998	16,900	37,400	56,100	81,600	202,100	79,300	290,400	434,900	1,228,000
1999	17,400	38,400	57,300	83,700	214,200	82,700	309,200	463,500	1,336,600
2000	16,600	37,700	57,000	84,500	222,600	84,000	324,300	491,800	1,460,600
2001	16,400	38,000	57,700	83,200	201,400	79,300	285,400	418,400	1,156,000
2002	15,900	36,800	56,400	81,300	191,400	75,900	267,100	383,100	1,024,100
2003	15,700	36,400	56,100	82,000	197,800	77,000	278,600	405,200	1,092,800
2004	15,800	37,200	58,000	84,500	214,500	81,300	307,800	457,400	1,299,300
2005	15,900	37,400	58,500	85,200	231,300	84,800	339,100	520,200	1,558,500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표 III-13〉 소득분배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5.8	11.1	15.8	22.0	45.5	100	30.5	20.7	9.3
1980	5.7	11.0	15.7	22.1	45.8	100	30.6	20.7	9.1
1981	5.5	10.9	15.9	22.2	46.0	100	30.7	20.7	9.1
1982	5.2	10.6	15.7	22.2	46.7	100	31.1	21.1	9.6
1983	4.9	10.3	15.5	22.2	47.7	100	32.2	22.2	10.3
1984	5.0	10.3	15.4	22.0	48.0	100	32.6	22.6	10.9
1985	4.8	10.1	15.2	21.9	48.6	100	33.4	23.4	11.5
1986	4.5	9.6	14.7	21.2	50.6	100	35.8	26.0	14.0
1987	4.4	10.0	15.3	22.1	48.9	100	33.5	23.4	11.2
1988	4.3	9.7	14.9	21.6	50.3	100	35.3	25.4	13.3
1989	4.3	9.8	15.1	21.6	49.9	100	34.8	24.8	12.5
1990	4.7	10.0	15.1	21.6	49.5	100	34.4	24.3	12.1
1991	4.7	10.0	15.4	21.8	49.0	100	33.7	23.6	11.2
1992	4.4	9.7	15.1	21.5	50.0	100	34.9	24.7	12.3
1993	4.5	9.8	15.0	21.6	49.8	100	34.6	24.4	11.9
1994	4.4	9.8	15.2	21.6	49.8	100	34.6	24.5	12.1
1995	4.6	9.7	14.9	21.3	50.2	100	35.2	25.1	12.5
1996	4.3	9.4	14.5	21.0	51.5	100	36.5	26.5	13.8
1997	4.3	9.1	14.2	20.4	52.6	100	37.8	27.8	14.9
1998	4.3	9.0	14.1	20.2	53.0	100	38.4	28.5	15.7
1999	4.2	8.9	13.8	19.9	53.8	100	39.4	29.6	16.7
2000	4.0	8.6	13.5	19.6	54.8	100	40.6	30.7	17.8
2001	4.3	9.2	14.2	20.8	52.3	100	37.5	27.4	14.7
2002	4.3	9.3	14.5	21.2	51.5	100	36.5	26.3	13.5
2003	4.2	9.1	14.3	21.0	52.1	100	37.2	27.0	14.3
2004	4.1	8.9	13.9	20.4	53.5	100	38.9	29.0	16.3
2005	4.0	8.5	13.3	19.8	55.1	100	40.9	31.1	18.1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이와 같은 소득분포의 변화는 세금 부담의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최상위 계층의 연방세 부담 비중은 1979년 56.4%에서 2005년 68.7%로 약 12.3% 증가한데 비하여 다른 분위의 세금 비중은 모두 감소하였다. 즉, 2~4분위 소득계층이 납부한 연방세 비중은 3~4% 감소하였고 최하위 계층의 비중은 2.1%에서 0.8%로 1.3% 감소하였다.

〈표 III-14〉 계층별 연방세 분포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2.1	7.2	13.2	21.0	56.4	100	40.7	29.6	15.4
1980	2.0	7.0	13.3	21.3	56.3	100	40.0	28.7	14.2
1981	2.0	7.1	13.6	21.9	55.2	100	38.6	27.2	12.9
1982	2.1	7.1	13.6	22.1	55.0	100	38.0	26.5	12.8
1983	2.2	6.9	13.3	21.8	55.7	100	39.0	27.7	14.0
1984	2.4	7.2	13.2	21.4	55.6	100	39.3	28.2	14.7
1985	2.3	7.2	13.2	21.3	55.8	100	39.5	28.4	14.8
1986	2.1	6.8	12.7	20.8	57.5	100	41.6	30.7	17.1
1987	1.8	6.5	12.4	20.7	58.4	100	42.2	30.8	16.2
1988	1.7	6.4	12.2	20.4	59.1	100	43.2	32.3	18.1
1989	1.6	6.4	12.6	20.6	58.7	100	42.5	31.3	16.7
1990	1.9	6.8	12.6	20.7	57.9	100	41.7	30.6	16.2
1991	1.9	6.6	12.6	20.9	57.9	100	41.7	30.3	15.7
1992	1.7	6.2	12.2	20.2	59.5	100	43.6	32.3	17.5
1993	1.6	6.0	11.8	19.8	60.5	100	44.9	33.8	18.7
1994	1.3	5.8	11.8	19.8	61.1	100	45.6	34.4	19.4
1995	1.3	5.8	11.4	19.3	61.9	100	46.6	35.4	20.1
1996	1.1	5.5	11.1	18.8	63.4	100	48.3	37.3	21.8
1997	1.1	5.4	10.8	18.3	64.2	100	49.3	38.3	22.7
1998	1.1	5.2	10.5	18.2	64.9	100	49.9	38.9	23.3
1999	1.1	5.2	10.2	17.8	65.6	100	51.0	40.2	24.3
2000	1.1	4.8	9.8	17.5	66.6	100	52.2	41.4	25.5
2001	1.0	4.9	10.1	18.4	65.3	100	50.0	38.5	22.7
2002	1.0	4.9	10.4	18.8	64.8	100	49.2	37.6	21.4
2003	1.0	4.5	10.0	18.4	65.8	100	54.4	39.0	22.9
2004	0.9	4.4	9.7	17.6	67.2	100	52.5	41.4	25.4
2005	0.8	4.1	9.3	16.9	68.7	100	54.7	43.8	27.6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표 III-15〉 계층별 소득세 분포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0.0	4.1	10.7	20.2	64.9	100.0	48.1	35.6	18.3
1980	0.1	4.2	10.8	20.2	64.8	100.0	47.6	34.9	17.4
1981	0.2	4.4	10.9	20.6	63.9	100.0	46.6	33.9	16.3
1982	0.2	4.0	10.6	20.2	64.9	100.0	47.6	35.0	17.7
1983	0.2	3.8	10.2	19.7	66.1	100.0	49.1	36.6	19.6
1984	0.3	4.1	10.1	19.2	66.3	100.0	49.9	37.7	20.7
1985	0.2	4.0	9.9	19.0	66.9	100.0	50.5	38.3	21.2
1986	0.2	3.7	9.2	18.0	68.9	100.0	53.4	41.6	24.6
1987	-0.3	3.1	8.7	17.5	70.9	100.0	54.7	42.1	23.5
1988	-0.4	2.9	8.5	17.2	71.9	100.0	56.3	44.5	26.6
1989	-0.7	2.8	8.9	17.6	71.4	100.0	55.3	42.9	24.3
1990	-0.4	3.3	8.9	17.8	70.4	100.0	54.3	42.1	23.8
1991	-0.8	2.9	9.0	18.0	70.8	100.0	54.5	42.1	23.4
1992	-0.9	2.5	8.4	17.1	73.0	100.0	57.2	44.9	26.2
1993	-1.0	2.3	8.1	16.8	73.8	100.0	58.4	46.4	27.6
1994	-1.7	1.8	8.1	16.9	74.9	100.0	59.3	46.9	27.8
1995	-2.0	1.9	7.7	16.2	76.1	100.0	60.8	48.5	29.0
1996	-2.1	1.6	7.3	15.5	77.6	100.0	62.9	50.9	31.4
1997	-2.0	1.7	7.2	14.9	78.2	100.0	63.7	51.8	32.3
1998	-2.1	1.3	6.4	14.6	79.8	100.0	65.4	53.4	33.5
1999	-1.9	1.3	6.1	14.0	80.6	100.0	66.7	55.1	35.0
2000	-1.6	1.1	5.7	13.5	81.2	100.0	67.7	56.2	36.5
2001	-2.3	0.3	5.3	14.3	82.4	100.0	67.7	55.2	34.4
2002	-2.7	-0.2	5.4	14.7	82.7	100.0	67.5	54.5	33.0
2003	-3.0	-1.1	4.7	14.6	84.8	100.0	69.6	56.6	34.6
2004	-2.9	-0.9	4.7	13.8	85.3	100.0	70.8	58.5	36.7
2005	-2.9	-0.9	4.4	13.1	86.3	100.0	72.7	60.7	38.8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개인소득세에서도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 납부 비중은 64.9%에서 86.3%로 증가하였다. 연방세 전체 차원에서 2005년 당시 최상위 계층이 전체 세금의 68.7%를 납부한 것에 비하여 개인소득세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86.8%를 부담한 것이다. 최상위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70%, 80% 수준을 넘긴 연도는 각각 1987년과 1999년이다. 반면 최하위 계층은 1987년부터 소득세를 환급받는 상황이 되었고 2분위 계층도 2002년부터 그러하다. 한편 3분위와 4분위 계층의 소득세 납세 부담률은 1979~2005년 사이에 각각 10.7%에서 4.4% 그리고 20.2%에서 13.1%로 감소하였다.

3) 연방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표 III-16〉부터 〈표 III-20〉까지는 연방정부 세금의 실효세율을 전체와 세목별로 추정한 것이다. 여기서 실효세율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납세의무액으로 나눈 평균세율과 달리 전체 소득(total income)⁶⁸⁾을 납세의무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전체 소득은 납세자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즉, 생명보험 지급금 그리고 비과세 채권 이자소득 등 면세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전체 소득은 과세소득에 비하여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선 〈표 III-16〉을 대상으로 보면 1979~2005년 사이에 연방세 실효세율은 22.2%에서 20.5%로 감소하였다. 1983년 20.4%까지 줄어들었던 실효세율은 레이건 행정부 시절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1.5%까지 상승하였다. 그 이후에도 1993년부터 실효세율은 점차 늘어나 2000년이 되면 실효세율은 23%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일련의 감세조치를 시행하면서 실효세율은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19.8%로 20%대 이하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실효세율은 2분위(14.3% → 9.9%)와 3분위(18.6% → 14.2%)에서 4.4%포인트 하락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최상위 계층의 실효세율(27.5% → 25.5%)은 2%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면 최하위 계층(8.0% → 4.3%)과 4분위 계층(21.2% → 17.4%)의 실효세율은 비슷하게 3.7% 정도 인하되었다. 2005년 당시 최상위 계층의 실효세율은

68) 일반적으로 전체 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과 비과세소득을 모두 합한 뒤 생명보험료와 벌금 등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25.5%로 최하위 계층 4.3%의 5.9배에 이르고 차상위 계층인 4분위의 실효세율 17.4%보다 약 절반 정도 높다. 한편 최상위 1%의 실효세율은 37.0%에서 31.2%로 감소하여 약 5.8%포인트 인하되어 가장 많이 혜택을 보았다. 이에 비하면 상위 5%나 10% 계층의 세율 감소분은 3%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개인소득세를 보면 평균세율은 1979~2005년 사이에 11.0%에서 9.0%로 2%포인트 하락하였다. 전술한 대로 최하위 계층과 2분위 계층은 1979년 당시 소득세를 납부하였지만 각각 1987년과 2002년부터는 세금을 환급받아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특히 최하위 계층의 실효세율은 -6.5%에 달하고 2분위 계층의 실효세율은 1979년 당시 4.1%에서 -1.0%로 전환되었다.

한편 3분위와 4분위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은 각각 7.5%에서 3.0% 그리고 10.1%에서 6.0%로 대략 4%포인트 이상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면 최상위 계층의 실효세율은 15.7%에서 14.1%로 약 1.6%포인트 감소하였다. 또한 최상위 1%의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21.8%에서 19.4%로 약 2.4%포인트 감소하였다. 최상위 계층의 실효세율 14.1%는 4분위(6.0%)와 3분위(3.0%) 실효세율의 약 2.4배, 4.7배에 이른다.

〈표 III-16〉 계층별 연방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8.0	14.3	18.6	21.2	27.5	22.2	29.6	31.8	37.0
1980	7.7	14.1	18.7	21.5	27.3	22.2	29.0	30.8	34.6
1981	8.3	14.7	19.2	22.1	26.9	22.4	28.2	29.4	31.8
1982	8.2	13.8	17.9	20.6	24.4	20.7	25.3	26.0	27.7
1983	9.1	13.7	17.5	20.1	23.9	20.4	24.8	25.6	27.7
1984	10.2	14.6	18.0	20.4	24.3	21.0	25.2	26.1	28.2
1985	9.8	14.8	18.1	20.4	24.0	20.9	24.7	25.4	27.0
1986	9.6	14.8	18.0	20.5	23.8	20.9	24.3	24.6	25.5
1987	8.7	14.0	17.6	20.2	25.8	21.6	27.2	28.5	31.2
1988	8.5	14.3	17.9	20.6	25.6	21.8	26.7	27.8	29.7
1989	7.9	13.9	17.9	20.5	25.2	21.5	26.3	27.2	28.9
1990	8.9	14.6	17.9	20.6	25.1	21.5	26.1	27.0	28.8
1991	8.4	14.2	17.6	20.5	25.3	21.5	26.6	27.6	29.9
1992	8.2	13.7	17.4	20.2	25.6	21.5	26.9	28.1	30.6
1993	8.0	13.5	17.3	20.2	26.8	22.0	28.6	30.5	34.5
1994	6.6	13.1	17.3	20.4	27.4	22.3	29.4	31.3	35.8
1995	6.3	13.4	17.3	20.5	27.8	22.6	29.8	31.8	36.1
1996	5.6	13.2	17.3	20.3	28.0	22.7	30.1	32.0	36.0
1997	5.8	13.6	17.4	20.5	28.0	22.9	29.9	31.6	34.9
1998	5.8	13.0	16.8	20.4	27.6	22.6	29.3	30.8	33.4
1999	6.1	13.3	16.9	20.5	28.0	22.9	29.7	31.2	33.4
2000	6.4	13.0	16.6	20.5	28.0	23.0	29.6	31.0	33.0
2001	5.1	11.5	15.4	18.9	26.7	21.4	28.5	30.0	32.8
2002	4.7	10.8	14.8	18.3	26.0	20.7	27.9	29.5	32.8
2003	4.6	9.8	13.8	17.4	25.0	19.8	26.8	28.5	31.7
2004	4.3	9.9	14.1	17.3	25.2	20.1	27.1	28.7	31.4
2005	4.3	9.9	14.2	17.4	25.5	20.5	27.4	28.9	31.2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표 III-17〉 계층별 연방소득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0.0	4.1	7.5	10.1	15.7	11.0	17.4	19.0	21.8
1980	0.2	4.5	8.0	10.7	16.5	11.7	18.2	19.7	22.3
1981	0.5	4.8	8.3	11.1	16.7	12.0	18.2	19.6	21.5
1982	0.4	4.2	7.4	10.0	15.3	11.0	16.9	18.3	20.4
1983	0.4	3.8	6.7	9.1	14.2	10.2	15.6	16.9	19.4
1984	0.7	4.0	6.7	8.9	14.1	10.2	15.6	17.0	19.3
1985	0.5	4.0	6.6	8.8	14.0	10.2	15.4	16.7	18.9
1986	0.4	4.0	6.5	8.8	14.2	10.4	15.5	16.6	18.3
1987	-0.6	3.2	5.8	8.1	14.9	10.3	16.8	18.5	21.5
1988	-1.1	3.1	5.9	8.3	14.9	10.4	16.6	18.2	20.7
1989	-1.6	2.9	6.0	8.3	14.6	10.2	16.3	17.7	19.9
1990	-1.0	3.4	6.0	8.3	14.4	10.1	16.0	17.5	19.9
1991	-1.6	2.9	5.8	8.1	14.3	9.9	16.0	17.6	20.6
1992	-2.1	2.5	5.5	7.9	14.5	9.9	16.3	18.0	21.2
1993	-2.3	2.3	5.4	7.8	14.9	10.0	17.0	19.1	23.2
1994	-3.9	1.9	5.3	7.8	15.0	10.0	17.1	19.2	23.0
1995	-4.4	2.0	5.3	7.8	15.5	10.2	17.7	19.8	23.7
1996	-5.1	1.8	5.4	7.9	16.1	10.7	18.3	20.5	24.2
1997	-5.2	2.1	5.6	8.0	16.4	11.0	18.5	20.6	23.8
1998	-5.4	1.5	5.0	7.9	16.5	11.0	18.7	20.6	23.4
1999	-5.2	1.7	5.0	8.0	17.1	11.4	19.3	21.3	24.0
2000	-4.6	1.5	5.0	8.1	17.5	11.8	19.7	21.6	24.2
2001	-5.6	0.3	3.9	7.1	16.3	10.3	18.7	20.8	24.1
2002	-6.0	-0.2	3.6	6.7	15.5	9.7	17.9	20.0	23.7
2003	-6.0	-1.1	2.8	5.9	13.7	8.4	15.8	17.7	20.4
2004	-6.2	-0.9	3.0	5.9	13.9	8.7	15.9	17.6	19.7
2005	-6.5	-1.0	3.0	6.0	14.1	9.0	16.0	17.6	19.4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법인세의 경우 1979~2005년 사이에 평균 실효세율이 3.4%에서 3.1%로 하락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물론 그 사이에 부침이 있어서 2002년에는 1.6%까지 인하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기간에 법인세 실효세율은 2%대에서 움직였다. 또한 최상

위 20%의 법인세 세율은 같은 기간에 5.7%에서 4.9%로 감소하였고 대개 3%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였다. 이에 비하면 최상위 1%의 경우 실효세율이 13.8%에서 9.9%로 하락하였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기간에 실효세율이 8%를 전후한다. 이외 다른 계층의 법인세 세율은 1% 내외로서 법인세가 사실상 상위 20%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부과되고 있다. 특히 최하위 계층의 세율은 1.1%에서 0.4%로 하락하였다.

〈표 III-18〉 계층별 연방법인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1.1	1.2	1.4	1.6	5.7	3.4	7.4	9.5	13.8
1980	0.9	1.0	1.2	1.4	4.6	2.8	5.9	7.4	10.8
1981	0.7	0.8	1.0	1.2	3.6	2.2	4.6	5.9	8.7
1982	0.5	0.5	0.7	0.7	2.1	1.4	2.8	3.5	5.4
1983	0.6	0.7	0.9	1.0	2.8	1.8	3.5	4.4	6.4
1984	0.8	0.7	1.0	1.2	3.1	2.0	3.9	4.9	7.1
1985	0.6	0.7	0.9	1.0	2.8	1.8	3.6	4.5	6.4
1986	0.6	0.7	0.9	1.0	2.8	1.9	3.5	4.3	5.8
1987	0.7	0.9	1.2	1.4	3.6	2.4	4.6	5.7	7.8
1988	0.7	0.8	1.2	1.3	3.6	2.4	4.5	5.5	7.3
1989	0.6	0.8	1.1	1.2	3.5	2.3	4.4	5.3	7.2
1990	0.6	0.7	1.0	1.2	3.3	2.2	4.2	5.1	7.2
1991	0.6	0.7	1.0	1.1	3.0	2.0	3.8	4.8	6.8
1992	0.6	0.7	1.0	1.1	3.3	2.2	4.2	5.2	7.2
1993	0.6	0.8	1.0	1.2	3.9	2.5	5.0	6.2	8.8
1994	0.6	0.7	1.1	1.2	4.2	2.6	5.4	6.7	9.7
1995	0.7	0.8	1.1	1.3	4.4	2.8	5.6	6.9	9.7
1996	0.6	0.7	1.1	1.3	4.5	2.9	5.6	6.8	9.3
1997	0.5	0.7	1.1	1.3	4.4	2.9	5.5	6.6	8.7
1998	0.5	0.6	1.0	1.1	4.0	2.6	4.9	5.9	7.8
1999	0.5	0.6	1.0	1.1	3.9	2.5	4.7	5.6	7.3
2000	0.5	0.6	0.9	1.0	3.7	2.4	4.4	5.2	6.7
2001	0.3	0.4	0.6	0.7	2.8	1.7	3.5	4.3	6.2
2002	0.2	0.3	0.5	0.6	2.6	1.6	3.4	4.3	6.4
2003	0.3	0.4	0.6	0.7	3.6	2.2	4.6	5.9	8.7
2004	0.4	0.4	0.6	0.8	4.2	2.6	5.5	6.7	9.5
2005	0.4	0.5	0.7	1.0	4.9	3.1	6.1	7.4	9.9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개인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사회보장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1979~2005년 사이에 6.9%에서 7.6%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4년에는 8.6%로 최고점을 기록한 바 있고 대부분의 시기에 8%를 전후하였다. 사회보장세율은 최하위 계층에서 5.3%에서 8.3%로 상승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면 최상위 계층의 세율은 같은 기간에 5.4%에서 6.0%로 상승하였다. 이 밖에도 4분위 계층의 세율이 1988~2002년까지 10%를 초과하여 소득 대비 부담이 가장 컸고 3분위도 9% 후반대의 세율을 보인다.

〈표 III-19〉 계층별 사회보장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5.3	7.7	8.6	8.5	5.4	6.9	4.2	2.8	0.9
1980	5.3	7.6	8.5	8.5	5.5	6.9	4.3	3.0	1.0
1981	5.9	8.1	9.1	9.1	6.1	7.5	4.8	3.4	1.3
1982	5.9	8.0	8.9	9.1	6.3	7.5	5.1	3.7	1.6
1983	6.1	7.9	8.9	9.1	6.3	7.5	5.1	3.7	1.5
1984	6.5	8.4	9.2	9.3	6.4	7.8	5.1	3.7	1.4
1985	6.6	8.8	9.5	9.6	6.5	7.9	5.1	3.7	1.3
1986	6.7	8.6	9.5	9.7	6.1	7.7	4.6	3.2	1.0
1987	6.4	9.0	9.4	9.8	6.7	8.0	5.3	3.8	1.5
1988	6.9	8.9	9.7	10.2	6.6	8.1	5.1	3.6	1.3
1989	7.1	9.3	9.8	10.0	6.6	8.1	5.1	3.7	1.4
1990	7.3	9.2	9.9	10.3	6.9	8.4	5.4	4.0	1.5
1991	7.2	8.9	9.6	10.3	7.4	8.6	6.1	4.7	2.2
1992	7.3	8.8	9.7	10.2	7.2	8.4	5.8	4.4	1.9
1993	7.2	8.8	9.6	10.2	7.3	8.5	6.0	4.7	2.1
1994	7.2	8.9	9.5	10.2	7.5	8.6	6.3	4.9	2.6
1995	7.6	9.1	9.6	10.3	7.2	8.4	6.0	4.6	2.3
1996	7.8	9.2	9.6	10.2	6.9	8.3	5.6	4.3	2.2
1997	8.1	9.4	9.6	10.3	6.6	8.2	5.4	4.0	2.0
1998	8.4	9.4	9.6	10.4	6.5	8.1	5.2	3.9	1.9
1999	8.4	9.5	9.6	10.4	6.4	8.0	5.1	3.8	1.9
2000	8.2	9.4	9.6	10.4	6.3	7.9	5.0	3.8	1.9
2001	8.3	9.4	9.7	10.2	7.1	8.4	5.8	4.5	2.3
2002	8.2	9.3	9.6	10.1	7.3	8.5	6.2	4.8	2.5
2003	8.1	9.1	9.4	9.9	7.1	8.3	6.0	4.6	2.3
2004	8.0	9.1	9.5	9.7	6.6	8.0	5.4	4.1	1.9
2005	8.3	9.2	9.5	9.7	6.0	7.6	4.8	3.5	1.7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표 III-20〉 계층별 연방소비세 실효세율의 변화(1979~2005년)

(단위: %)

	최하위	2분위	3분위	4분위	최상위	총합	상위 10%	상위 5%	상위 1%
1979	1.6	1.3	1.1	0.9	0.7	1.0	0.7	0.6	0.5
1980	1.4	1.1	0.9	0.8	0.6	0.8	0.6	0.5	0.4
1981	1.3	1.0	0.9	0.7	0.6	0.8	0.5	0.5	0.4
1982	1.4	1.1	0.9	0.8	0.6	0.8	0.5	0.5	0.4
1983	2.0	1.3	1.1	0.9	0.7	0.9	0.6	0.5	0.4
1984	2.3	1.4	1.1	1.0	0.7	1.0	0.6	0.5	0.4
1985	2.2	1.4	1.1	0.9	0.7	0.9	0.6	0.5	0.4
1986	2.0	1.3	1.1	0.9	0.6	0.9	0.6	0.5	0.4
1987	2.1	1.4	1.1	0.9	0.7	0.9	0.6	0.5	0.4
1988	2.0	1.4	1.1	0.9	0.6	0.9	0.5	0.5	0.4
1989	1.8	1.2	1.0	0.9	0.6	0.8	0.5	0.4	0.3
1990	2.0	1.3	1.0	0.9	0.6	0.9	0.5	0.4	0.3
1991	2.2	1.4	1.2	1.0	0.7	1.0	0.6	0.5	0.4
1992	2.3	1.5	1.2	1.0	0.7	1.0	0.6	0.5	0.3
1993	2.5	1.6	1.2	1.0	0.7	1.0	0.6	0.5	0.4
1994	2.6	1.7	1.3	1.1	0.7	1.1	0.6	0.5	0.4
1995	2.4	1.6	1.3	1.1	0.7	1.0	0.6	0.5	0.3
1996	2.3	1.5	1.2	1.0	0.6	0.9	0.5	0.4	0.3
1997	2.3	1.5	1.1	0.9	0.6	0.9	0.5	0.4	0.3
1998	2.2	1.4	1.1	0.9	0.6	0.9	0.5	0.4	0.3
1999	2.4	1.6	1.2	1.1	0.6	0.9	0.5	0.4	0.3
2000	2.3	1.4	1.1	0.9	0.5	0.9	0.4	0.4	0.2
2001	2.2	1.4	1.1	0.9	0.5	0.8	0.5	0.4	0.2
2002	2.2	1.4	1.1	0.9	0.5	0.9	0.5	0.4	0.3
2003	2.3	1.4	1.1	0.9	0.5	0.8	0.4	0.4	0.3
2004	2.2	1.3	1.1	0.9	0.5	0.8	0.4	0.3	0.2
2005	2.1	1.3	1.0	0.8	0.5	0.8	0.4	0.3	0.2

주: 미국 국세청의 자료 등을 이용한 추정치임.

자료: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Federal Tax Rates: 1975 to 2005(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taxdistribution.cfm).

사회보장세는 최상위 20%를 제외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실효세율도 증가한다. 즉 2005년을 기준으로 최하위 계층부터 시작하여 4분위까지 세율이 8.3%, 9.2%, 9.5%, 9.7%로 증가하고 다만 최상위 계층의 세율은 6.0%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1979년부터 대부분의 연도에 적용된다. 사회보장세는 소득 대비 일률과세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실효세율이 낮는데 특히 상위 1%의 세율은 2% 내외이다.

마지막으로 연방소비세의 평균세율은 사치세가 도입되었던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과표가 소비이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즉,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시작하여 최상층인 5분위까지 실효세율이 2.1%, 1.3%, 1.0%, 0.8%, 0.5%로 하락한다. 특히 최하위 계층이 최상위 계층에 비하여 소득 대비 세금이 4배에 달하고 있다.

2. 연방세 신고유형과 추이

소득세를 비롯한 전체 세목별 신고건수는 <표 Ⅲ-21>과 <표 Ⅲ-22>에 제시되어 있다. 2007년 당시 총신고건수는 약 2억 3,543만건에 이르는데 이 중 소득세 신고가 약 1억 8,309만건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소득세에서도 개인소득세 신고가 약 1억 3,889만건으로 전체 소득세 신고 가운데 59.0%를 차지한다. 이외 유산(372만건, 1.6%)과 파트너십(310만건, 1.3%) 등의 신고를 포함하면 법인 이외 소득세 신고에서 건당 약 9,837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법인세 신고는 2007년 당시 약 661만건(2.8%)에 달한다. 법인세의 경우 건당 세금은 59,867달러이다. 이외 소득세 관련 신고에는 소득세를 분기별로 추정 신고하거나 유산과 상속에서 분배된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 있다.

한편 2007년을 기준할 때 상속 및 증여세 신고는 각각 약 5만건, 25.6만건으로 전체 신고 비중은 0.02%, 0.12%에 불과하다. 한편 유산이나 상속기탁기금(trust)⁶⁹⁾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그 빈도는 약 372만건으로 전체 신고의 1.6%에 달한다. 특

69) 기금(trust)은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양도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기금은 양도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기금이 종료되면 주된 수증자(principal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한다.

히 상속세의 경우 2001년 법 개정으로 면세점이 1999년 65만달러에서 2007년 200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상속·증여세의 내국세 세수비중은 1.0%로 신고건수에 비하여 금액 비중은 크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건당 납부세액은 약 88,170달러에 달한다.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의 신고는 약 3,074만건으로 전체 소득세 신고건수의 13.6%에 달하는데 세수 비중은 약 31.6%로서 자영업자의 신고건당 세수 부담이 약 27,642달러로 일반 개인소득세에 비하여 큰 편이다. 이외 연방소비세의 신고건수는 약 91만건에 달하여 전체 신고의 0.4%에 불과하지만 내국세 비중은 2.0%에 이르며 건당 58,49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표 III-21〉 유형별 소득세 신고건수(1997~2007년)

(단위: 천건)

	1997	1999	2000	2003	2005	2007
미국 전체	216,510	224,305	226,130	222,271	226,677	235,438
소득세 ¹⁾	170,431	176,128	178,747	171,909	174,494	183,091
개인소득세	120,745	125,227	127,590	130,728	132,845	138,894
Forms 1040, 1040A, 1040EZ, 1040PC	11,9656	118,194	127,041	130,043	132,105	138,131
1040	68,345	74,878				
1040A	22,715	23,078				
1040EZ	20,896	20,238				
Forms 1040NR, 1040SS, 1040PR, C ²⁾			550	685	740	763
1040 other ²⁾	8,789	7,032				
개인소득세 추계신고서	38,634	39,228	39,230	28,588	28,669	29,996
유산 및 상속 신탁기금	3,310	3,390	3,530	3,688	3,684	3,718
유산 및 상속 추정세	815	914	892	633	503	780
파트너십 (Form 1065, 1065-B)	1,770	1,966	2,048	2,381	2,665	3,097
주식회사 (Form 1066, 1120)	5,158	5,403	5,458	5,891	6,128	6,607
상속세	97	117	121	92	66	50
증여세	251	286	305	287	277	256
자영업 고용세 (Form 940)	28,918	29,048	28,911	29,916	30,872	30,740
면세기관 ³⁾	607	677	707	789	815	901
근로자 수혜 프로그램 ⁶⁾	1,337	1,414	1,164	-	-	-
연방소비세 ⁴⁾	821	762	916	812	1,064	907
추가 자료 ⁵⁾	14,048	15,873	15,260	18,465	19,090	19,496

주: 1) 비과세사업단체는 제외.

2) Form 1040NR와 C는 비영주권자, PR, SS는 푸에르토리코 등의 자영업 고용세 신고임.

3) Form 990, 990EZ, 990C, 4720, 5227, 5500, 포함.

4) Form 720, 730, 2290, 11C, 관세청과 알코올·담배·총기국(이후 알코올·담배 거래청)에 제출한 신고서는 제외.

5) Form 1040X(수정신고, 개인) 1041A(기금 기부), 1120X(수정신고: 주식회사), 4868 2688, 7004(신고연장 신청서), 8752(파트너십 환급) 포함.

6)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근로자플랜 신고서는 제외.

자료: IRS Data Book, FY 2007 Publication 55b.

〈표 Ⅲ-22〉는 신고건수를 보다 유형별로 제시한 표이다. 한 예로 개인소득세에서 1040은 일반적인 소득세 신고서이나 1040A나 1040EZ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⁷⁰⁾가 필요 없는 등 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신고서이다. 주식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1120 신고서를 사용하지만 총수입 등이 50만달러 이하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1120A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S 법인의 경우 1120S 신고서를 사용하여 영업결과를 자료 신고하는데 이러한 S 법인의 신고 비중이 1975년 주식회사 신고에서 17.2%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이 되면 그 비중이 62.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면 일반 주식회사인 C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1120 신고서 등의 비중은 같은 시기에 약 82.7%에서 33.1%로 많이 감소하였다.

70) 상세공제라고도 불린다.

〈표 III-22〉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 수 (1975~2007년)

(단위: 천개, %)

신고서/양식 유형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5	2007
개인소득세	84,027	93,196	99,704	112,596	116,467	123,050	125,390	127,657	133,023	138,471
Forms 1040, 1040A 1040EZ, and 1040PC	(99.86)	(99.85)	(99.82)	(99.74)	(99.65)	(99.59)	(99.60)	(99.56)	(99.44)	(99.46)
서면신고	(99.86)	(99.85)	(99.82)	(96.01)	(89.51)	(79.62)	(76.21)	(71.83)	(47.97)	(41.79)
전자신고	n.a.	n.a.	n.a.	(3.73)	(10.14)	(19.98)	(23.39)	(27.73)	(51.47)	(57.67)
영업 신고	(11.99)	(12.24)	(14.18)	(14.36)	(15.51)	(15.47)	(15.29)	(15.16)	(16.78)	(17.22)
Schedule C or C-EZ	(8.85)	(9.60)	(11.80)	(12.57)	(13.87)	(13.96)	(13.86)	(13.76)	(15.52)	(16.02)
Schedule F	(3.13)	(2.64)	(2.38)	(1.80)	(1.63)	(1.50)	(1.43)	(1.39)	(1.27)	(1.21)
비영업신고	(87.88)	(87.61)	(85.65)	(85.38)	(84.15)	(84.13)	(84.31)	(84.40)	(82.66)	(82.24)
Forms 1040C, 1040NR, 1040PR, and 1040SS	(0.14)	(0.15)	(0.18)	(0.26)	(0.35)	(0.41)	(0.40)	(0.44)	(0.56)	(0.54)
법인소득세	2,133	2,676	3,437	4,320	4,818	5,241	5,398	5,470	6,165	6,624
Form 1120	(82.66)	(79.06)	(70.76)	(54.05)	(45.60)	(42.12)	(40.80)	(39.52)	(32.64)	(30.45)
Form 1120A	n.a.	n.a.	(5.81)	(7.69)	(6.62)	(5.20)	(4.83)	(4.49)	(3.42)	(2.82)
Form 1120S	(17.22)	(19.74)	(21.44)	(35.56)	(44.85)	(49.60)	(51.26)	(52.78)	(60.26)	(62.74)
기타	(0.12)	(1.20)	(1.99)	(2.70)	(2.92)	(3.08)	(3.11)	(3.20)	(3.67)	(3.99)
파트너십 Forms 1065 and 1065B	1,133	1,402	1,755	1,751	1,580	1,861	1,975	2,067	2,720	2,935
유산 및 신탁기금 소득세, Forms 1041 and 1041S	1,564	1,882	2,125	2,681	3,191	3,398	3,403	3,529	3,699	3,730
유산세										
Forms 706, 706NA, 706GS(D), and 706GS(T)	226	147	81	61	81	110	116	124	55	47
증여세, Form 709	273	215	98	148	216	261	292	309	266	255
면세단체	404	443	454	487	572	618	731	699	819	879
Forms 990 and 990EZ	(85.83)	(81.92)	(80.49)	(73.80)	(70.97)	(66.63)	(62.69)	(66.04)	(65.57)	(61.09)
Form 990-PF	(7.33)	(7.48)	(7.05)	(9.17)	(8.96)	(10.00)	(8.88)	(10.01)	(10.74)	(10.01)
Form 990-T	(4.88)	(5.31)	(5.77)	(8.02)	(8.70)	(8.12)	(8.59)	(7.52)	(7.69)	(7.17)
Forms 990C, 4720, and 5227	(1.96)	(5.29)	(6.69)	(9.01)	(11.37)	(15.25)	(14.60)	(16.44)	(16.00)	(14.90)
고용세	24,738	26,387	27,409	28,911	28,655	29,106	28,974	28,841	31,058	30,717
Forms 940, 940EZ, 940PR	(16.78)	(17.82)	(17.56)	(18.57)	(19.13)	(18.84)	(18.91)	(18.94)	(19.12)	(19.33)
Forms 941, 941PR/SS/M	(68.82)	(71.45)	(74.08)	(74.82)	(77.54)	(79.36)	(79.33)	(79.37)	(79.55)	(80.43)
Forms 943, 943PR	(1.85)	(1.60)	(1.46)	(1.33)	(1.24)	(1.14)	(1.09)	(1.06)	(0.85)	(0.86)
기타	(12.55)	(9.13)	(6.91)	(5.28)	(2.09)	(0.67)	(0.67)	(0.63)	(0.49)	(0.50)
소비세	865	875	1,161	852	789	822	822	853	839	895
Form 2290	(50.59)	(50.74)	(61.11)	(51.73)	(62.17)	(68.44)	(70.27)	(71.65)	(80.93)	(75.87)
Form 720	(36.27)	(41.83)	(35.86)	(39.80)	(28.57)	(23.60)	(22.35)	(20.49)	(12.75)	(11.96)
기타	(13.14)	(7.43)	(3.02)	(8.47)	(9.26)	(7.96)	(7.38)	(7.87)	(6.32)	(5.92)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7, Pub. 1136.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자신고로서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가 처음 도입된 1990년부터 전자신고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그 당시 전체 신고에서 3.7%만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2007년에는 약 56.9%가 전자신고를 하였다. 또한 <표 III-23>에서 보듯이 전화신고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회계사가 전자적 방식을 통한 대리신고도 많이 증가하였다.

<표 III-23> 개인소득세 전자신고 유형별 건수(1998~2007년)

(단위: 천건, %)

	1998	2000	2003	2005	2007
전화신고(TeleFile) ¹⁾	—	5,161.3	4,176.5	3,294.3	—
인터넷신고 ²⁾	—	5,026.4	9,428.0	17,100.4	22,413.4
대리인 전자신고 ³⁾	—	25,235.8	33,286.3	48,081.6	56,315.1
총 전자신고(A)	24,599.9	35,423.6	46,890.8	68,476.3	78,728.5
전체 신고(B)	123,049.6	127,657.4	130,836.7	133,023.1	138,471.4
전자신고 비중(A/B)	20.0	27.7	35.8	51.5	56.9

주: 1) 전화신고는 연방 및 주정부 TeleFile System을 이용한 건수.

2) 인터넷신고는 인터넷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로그램을 구입 및 작성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신고를 의미.

3) 대리인 신고는 회계사 등 인증된 전자신고인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료: IRS Data Book, FY 2007, Publication 55b.

3. 개인소득세

가. 개인소득세 세수와 주요 변수의 변화

<표 III-24>에서 보듯이 연방정부가 내국세로 걷은 세금은 2005년 당시 약 2조 6,915억달러로 GDP의 19.5%에 달한다. 이 중 개인소득세는 약 1조 3,662억달러로 전체 내국세에서 50.8%에 달하며 GDP에서는 9.9%를 차지한다. 이외 개인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고용세가 약 8,497억달러(31.6%)로 GDP 대비 6.2%에 이른다.

내국세 비중은 1970년대 이후 17%를 전후하였으나 1998년 19.1%를 기록하면서 2000년 20.8% 등 1990년대 말 이후 증가해 왔다. 마찬가지로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를 전후하였지만 2000년부터 11.3%를 차지하였고 그 후 감세정책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는 물론 개인소득세의 누진과세적 특성과 1990년대 경기호황에 기인한다. 이에 비하면 자영업자 고용세도 GDP 대비 약 3~4%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여 6%까지 증가하였고 그 대신 법인세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III-24〉 개인소득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1972~2007년)

(단위: 억달러, %)

	내국세 총징수액	개인소득세 ¹⁾	자영업 고용세 ²⁾		내국세 총징수액	개인소득세	자영업 고용세
1972	2,098.6 (16.9)	1,088.8 (8.8)	437.1 (3.5)	1990	10,563.7 (17.6)	5,402.3 (9.0)	3,672.2 (6.1)
1973	2,377.9 (17.2)	1,251.1 (9.0)	520.8 (3.8)	1991	10,868.5 (17.2)	5,468.8 (8.7)	3,844.5 (6.1)
1974	2,689.5 (17.9)	1,429.0 (9.5)	620.9 (4.1)	1992	11,208.0 (16.9)	5,577.2 (8.4)	4,000.8 (6.0)
1975	2,938.2 (18.0)	1,564.0 (9.6)	701.4 (4.3)	1993	11,766.9 (16.7)	5,857.7 (8.3)	4,115.1 (5.8)
1976	3,025.2 (16.6)	1,589.7 (8.7)	742.0 (4.1)	1994	12,764.7 (17.2)	6,198.2 (8.4)	4,438.3 (6.0)
1976[5]	754.6 (3.7)	397.6 (2.0)	198.9 (1.0)	1995	13,757.3 (17.6)	6,757.8 (8.6)	4,654.1 (6.0)
1977	3,581.4 (15.6)	1,867.6 (8.1)	860.8 (3.7)	1996	14,865.5 (17.9)	7,453.1 (9.0)	4,923.7 (5.9)
1978	3,997.8 (15.6)	2,130.6 (8.3)	972.9 (3.8)	1997	16,232.7 (18.5)	8,250.2 (9.4)	5,286.0 (6.0)
1979	4,604.1 (16.5)	2,515.5 (9.0)	1,128.5 (4.0)	1998	17,694.1 (19.1)	9,280.7 (10.0)	5,578.0 (6.0)
1980	5,193.8 (16.6)	2,875.5 (9.2)	1,283.3 (4.1)	1999	19,041.5 (19.4)	10,021.9 (10.2)	5,986.7 (6.1)
1981	6,068.0 (18.6)	3,328.5 (10.2)	1,528.9 (4.7)	2000	20,969.2 (20.8)	11,370.8 (11.3)	6,396.5 (6.3)
1982	6,322.4 (17.9)	3,526.1 (10.0)	1,687.2 (4.8)	2001	21,288.3 (20.4)	11,782.1 (11.3)	6,822.2 (6.5)
1983	6,272.5 (15.9)	3,496.3 (8.9)	1,738.5 (4.4)	2002	20,166.3 (19.3)	10,377.3 (11.3)	6,880.8 (6.5)
1984	6,804.8 (16.2)	3,628.9 (8.6)	1,992.1 (4.7)	2003	19,529.3 (18.1)	9,987.2 (9.2)	6,959.8 (6.4)
1985	7,428.7 (16.7)	3,966.6 (8.9)	2,252.1 (5.1)	2004	20,185.0 (17.5)	9,902.5 (8.6)	7,172.5 (6.2)
1986	7,822.5 (16.5)	4,169.6 (8.8)	2,439.8 (5.1)	2005	22,689.0 (18.3)	11,075.0 (8.9)	7,714.4 (6.2)
1987	8,862.9 (17.3)	4,654.5 (9.1)	2,770.0 (5.4)	2006	25,186.8 (19.1)	12,362.6 (9.4)	8,148.2 (6.2)
1988	9,351.1 (17.0)	4,736.7 (8.6)	3,180.4 (5.8)	2007	26,915.4 (19.5)	13,662.4 (9.9)	8,497.3 (6.2)
1989	10,133.2 (17.5)	5,157.3 (8.9)	3,456.3 (6.0)	2008	- -	- -	- -

주: 1) 개인소득세는 유산 및 신탁기금 소득세 포함.

2) 고용세는 노년자, 생존 배우자, 상해 및 의료험(OSADHI) 세금과 실업보험세, 철도연금세 등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7, Publication 55b.

소득세 신고서의 수는 1986~2005년 사이에 30.4% 증가하였지만 소득세 신고에서 과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신고서의 비율은 1986년 당시 81.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5년 67.4%가 된다(〈표 Ⅲ-25〉).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비율은 약 32.6%에 이른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신고서 비율은 197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특히 2001년부터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다.

두 번째로, 사업용 경비 등 소득 창출을 위한 비용 등을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조정된 총소득(AGI)⁷¹⁾은 1986~2005년 사이에 약 2조 4,400억달러에서 6조 8,57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조정된 총소득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즉, AGI 기준 평균세율은 1986년 당시 15.1%에서 2005년 13.6%로 하락하였다. 또한 조정된 총소득의 기준이 연도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1979년 세법 기준으로 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환산하여 보면 평균세율은 1986년 13.6%에서 2005년 13.3%로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정된 총소득의 정의 변화에 따른 세율 인하효과가 큼을 알 수 있다.

71)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은 총소득(total income)에서 법정 조정액(statutory adjustment)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정 조정액은 기업, 투자 관련 비용 혹은 자영업자 은퇴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 공제 등 여타 공제를 말한다.

〈표 III-25〉 조정된 총소득(AGI), 소득세 및 평균세율의 추이(1986~2000년)

과세연도	총신고	과세대상 신고서								
		과세 신고서	과세 신고 비율	AGI	소득세	평균 세율	평균수치			
							경상금액		불변금액	
							AGI	소득세	AGI	소득세
십만건	십만건	%	십억달러	십억달러	%	달러	달러	달러	달러	
각 연도 조정된 총소득(AGI) 기준										
1986	1,030.5	839.7	81.5	2,440	367	15.1	29,062	4,374	26,516	3,991
1987	1,070.0	867.2	81.1	2,701	369	13.7	31,142	4,257	27,414	3,747
1988	1,097.1	871.4	79.4	2,990	413	13.8	34,313	4,738	29,005	4,005
1989	1,121.4	891.8	79.5	3,158	433	13.7	35,415	4,855	28,560	3,915
1990	1,137.2	898.6	79.0	3,299	447	13.6	36,711	4,976	28,088	3,807
1991	1,147.3	887.3	77.3	3,337	448	13.4	37,603	5,054	27,609	3,711
1992	1,136.0	867.3	76.3	3,484	476	13.7	40,168	5,491	28,603	3,914
1993	1,146.0	864.4	75.4	3,564	503	14.1	41,233	5,817	28,535	4,026
1994	1,159.4	876.2	75.6	3,737	535	14.3	42,646	6,104	28,776	4,119
1995	1,182.2	892.5	75.5	4,008	588	14.7	44,901	6,593	29,463	4,326
1996	1,203.5	909.3	75.6	4,342	658	15.2	47,750	7,239	30,433	4,614
1997	1,224.2	934.7	76.4	4,765	731	15.3	50,980	7,824	31,763	4,875
1998	1,247.7	930.5	74.6	5,160	789	15.3	55,458	8,475	33,836	5,171
1999	1,270.8	945.5	74.4	5,581	877	15.7	59,028	9,280	35,431	5,570
2000	1,293.7	968.2	74.8	6,083	981	16.1	62,832	10,129	36,488	5,882
2001	1,302.6	947.6	72.8	5,847	888	15.2	61,702	9,370	34,840	5,291
2002	1,300.8	909.6	69.9	5,641	797	14.1	62,015	8,762	34,472	4,870
2003	1,304.2	889.2	68.2	5,747	748	13.0	64,625	8,412	35,122	4,572
2004	1,322.3	891.0	67.4	6,266	832	13.3	70,318	9,337	37,225	4,943
2005	1,343.7	905.9	67.4	6,857	935	13.6	75,687	10,319	38,754	5,284
1979년 조정된 총소득(AGI) 정의 기준										
1986	1,030.5	839.7	81.5	2,703	367	13.6	32,194	4,374	29,374	3,991
1987	1,070.0	867.2	81.1	2,736	369	13.5	31,551	4,357	27,774	3,747
1988	1,097.1	871.4	79.4	3,011	413	13.7	34,556	4,738	29,210	4,005
1989	1,121.4	891.8	79.5	3,188	433	13.6	35,752	4,855	28,832	3,915
1990	1,137.2	898.6	79.0	3,335	447	13.4	37,108	4,976	28,392	3,807
1991	1,147.3	887.3	77.3	3,387	448	13.2	38,169	5,054	28,024	3,711
1992	1,136.0	867.3	76.3	3,553	476	13.4	40,964	5,491	29,198	3,914
1993	1,146.0	864.4	75.4	3,625	503	13.9	41,938	5,817	29,023	4,026
1994	1,159.4	876.2	75.6	3,796	535	14.1	43,322	6,104	29,232	4,119
1995	1,182.2	892.5	75.5	4,075	588	14.4	45,655	6,593	29,957	4,326
1996	1,203.5	909.3	75.6	4,418	658	14.9	48,582	7,239	30,964	4,614
1997	1,224.2	934.7	76.4	4,849	731	15.1	51,875	7,824	32,321	4,875
1998	1,247.7	930.5	74.6	5,299	789	14.9	56,947	8,475	34,745	5,171
1999	1,270.8	945.5	74.4	5,736	877	15.3	60,666	9,280	36,414	5,570
2000	1,293.7	968.2	74.8	6,294	981	15.6	65,012	10,129	37,754	5,882
2001	1,302.6	947.6	72.8	5,943	888	14.9	62,716	9,370	35,413	5,291
2002	1,300.8	909.6	69.9	5,758	797	13.8	63,297	8,762	35,184	4,870
2003	1,304.2	889.2	68.2	5,849	748	12.8	65,777	8,412	35,749	4,572
2004	1,322.3	891.0	67.4	6,399	832	13.0	71,817	9,337	38,019	4,943
2005	1,343.7	905.9	67.4	7,016	935	13.3	77,448	10,319	39,656	5,284

주: 1. 신고비율은 과세대상 신고서/총신고서 비율.

2. 평균세율은 소득세를 조정된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임.

3. 불변금액은 노동통계청(BLS)의 도시 소비자 가격지수를 이용함(CPI-U, 1982-84=100).

4. 조정된 총소득(AGI)의 정의는 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1979년 기준으로 재환산함.

자료: K. Mudry and J. Bryan,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Shares, 2005*, IRS SOI Buletin, winter 2007.

세 번째로, 신고 1건당 총소득은 1986년 29,062달러에서 2005년 75,687달러로 약 2.6배 증가하였는데 소득세는 같은 기간에 평균 4,374달러에서 10,319달러로 약 2.4배 증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불변가격을 기준하면 총소득은 같은 기간에 1.5배 증가하였고 소득세는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 동안에 수차례 걸친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소득증대에 따른 고세율 구간으로의 소득 이동(bracket creep)이 세부담 증대에 많이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III-26>은 1950~2005년 사이에 소득을 신고소득과 조정된 총소득 그리고 실제 과세대상인 과세소득으로 구분하여 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05년 당시 신고소득은 10조 301억달러로 이 가운데 소득 창출을 위한 각종 비용을 제외한 조정된 총소득(AGI)은 8조 708억달러로 신고소득의 84.5%에 달한다. 조정된 총소득이 신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88.4%로서 지난 55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85년이 되면 그 비중이 74.6%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말 84% 수준까지 회복하여 2002~2003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80% 이상이다.

조정된 총소득에서 각종 공·면제를 제외하고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은 2005년 당시 약 5조 137억달러로 전체 소득의 50%에 달한다. 과세소득이 신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조정된 총소득과 반대로 1950년 37%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여 1955년 40%를 넘어서 2000년에는 53.9%까지 상승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이 점차 감소하였음을 시사한다.

소득세가 신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현재 9.1%로 1950년 8.0%에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 비중은 대체로 9~10%에서 움직이는데 다만 1990년대 말 과세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신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여 2000년에 11.6%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과세소득 대비 세금 즉, 세부담률은 그동안 꾸준한 세율인하 등으로 인하여 1950년 21.8%에서 2005년 18.2%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표 III-26〉 신고소득, 조정된 총소득(AGI), 과세소득 및 세율 비교(1950~2005년)

(단위: 십억달러, %)

	개인소득	조정된 총소득(AGI)		과세소득		소득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부담률
1950	229.0	202.5	88.4	84.3	36.8	18.4	8.0	21.8
1951	258.0	229.3	88.9	99.2	38.4	24.2	9.4	24.4
1952	275.4	241.6	87.7	107.2	38.9	27.8	10.1	25.9
1953	291.9	256.1	87.7	114.3	39.2	29.4	10.1	25.7
1954	294.5	257.3	87.4	115.3	39.2	26.7	9.1	23.2
1955	316.1	278.7	88.2	128.0	40.5	29.6	9.3	23.1
1956	339.6	299.4	88.2	141.5	41.7	32.7	9.6	23.1
1957	358.7	312.6	87.1	149.4	41.7	34.4	9.6	23.0
1958	369.0	315.8	85.6	149.3	40.5	34.3	9.3	23.0
1959	392.8	341.8	87.0	166.5	42.4	38.6	9.8	23.2
1960	411.5	354.0	86.0	171.6	41.7	39.5	9.6	23.0
1961	429.0	368.0	85.8	181.8	42.4	42.2	9.8	23.2
1962	456.7	390.0	85.4	195.3	42.8	44.9	9.8	23.0
1963	479.6	441.0	85.7	209.1	43.6	48.2	10.1	23.1
1964	514.6	443.9	86.3	229.9	44.7	47.2	9.2	20.5
1965	555.7	480.6	86.5	255.1	45.9	49.6	8.9	19.4
1966	603.9	521.2	86.3	286.3	47.4	56.1	9.3	19.6
1967	648.3	551.3	85.0	315.1	48.6	63.0	9.7	20.0
1968	712.0	605.6	85.1	352.8	49.6	76.7	10.8	21.7
1969	778.5	659.8	84.8	388.8	49.9	86.6	11.1	22.3
1970	838.8	696.4	83.0	401.2	47.8	83.9	10.0	20.9
1971	903.5	742.8	82.8	414.0	45.8	85.4	9.5	20.6
1972	992.7	824.5	83.1	447.6	45.1	93.6	9.4	20.9
1973	1,110.7	925.0	83.3	511.6	46.1	108.1	9.7	21.1
1974	1,222.6	1,003.5	82.1	573.6	46.9	123.6	10.1	21.5
1975	1,335.0	1,046.8	78.4	595.5	44.6	124.5	9.3	20.9
1976	1,474.8	1,168.0	79.2	674.9	45.8	141.8	9.6	21.0
1977	1,633.2	1,296.1	79.4	733.8	44.9	159.8	9.8	21.8
1978	1,837.7	1,466.4	79.8	846.4	46.1	188.2	10.2	22.2
1979	2,062.2	1,654.1	80.2	926.6	44.9	214.5	10.4	23.1
1980	2,307.9	1,830.3	79.3	1,045.2	45.3	250.3	10.8	23.9
1981	2,591.3	2,016.3	77.8	1,170.1	45.2	284.1	11.0	24.3
1982	2,775.3	2,098.6	75.6	1,231.9	44.4	277.6	10.0	22.5
1983	2,960.7	2,225.6	75.2	1,300.2	43.9	274.2	9.3	21.1
1984	3,289.5	2,472.6	75.2	1,447.0	44.0	301.9	9.2	20.9
1985	3,526.7	2,631.6	74.6	1,550.5	44.0	325.7	9.2	21.0
1986	3,722.4	2,853.2	76.6	1,665.6	44.7	367.3	9.9	22.1
1987	3,947.4	3,121.1	79.1	1,850.6	46.9	369.2	9.4	20.0
1988	4,253.7	3,411.9	80.2	2,070.0	48.7	412.9	9.7	19.9
1989	4,587.8	3,649.7	79.6	2,173.3	47.4	432.9	9.4	19.9
1990	4,878.6	3,798.4	77.9	2,263.7	46.4	447.1	9.2	19.8
1991	5,051.0	3,856.8	76.4	2,284.1	45.2	448.4	8.9	19.6
1992	5,362.0	4,092.0	76.3	2,395.7	44.7	476.2	8.9	19.9
1993	5,568.5	4,245.4	76.4	2,453.5	44.1	502.8	9.0	20.5
1994	5,842.5	4,473.7	76.6	2,598.0	44.5	534.9	9.2	20.6
1995	6,152.3	4,759.8	77.4	2,813.8	45.7	588.4	9.6	20.9
1996	6,520.6	5,144.5	78.9	3,089.7	47.4	658.2	10.1	21.3

〈표 III-26〉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

	개인소득	조정된 총소득(AGI)		과세소득		소득세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세부담률
1997	6,915.1	5,578.0	80.7	3,429.1	49.6	731.3	10.6	21.3
1998	7,423.0	6,120.2	83.4	3,780.8	50.9	788.5	10.6	20.9
1999	7,802.4	6,553.5	84.0	4,136.1	53.0	877.4	11.2	21.2
2000	8,429.7	7,125.4	84.5	4,544.2	53.9	980.6	11.6	21.6
2001	8,724.1	7,005.0	80.3	4,268.5	48.9	888.0	10.2	20.8
2002	8,881.9	6,976.8	78.6	4,096.1	46.1	797.0	9.0	19.5
2003	9,163.6	7,234.9	79.0	4,200.2	45.8	748.0	8.2	17.8
2004	9,727.2	7,886.4	81.1	4,670.2	48.0	832.0	8.6	17.8
2005	10,301.1	8,708.4	84.5	5,137.2	50.0	934.9	9.1	18.2

주: 1. 비중은 개인소득 대비 각 항목의 비율이며 세부담률은 과세소득 대비 소득세 세수를 의미함.

자료: IRS, Historical Tables and Appendix(www.irs.gov/taxstats/arti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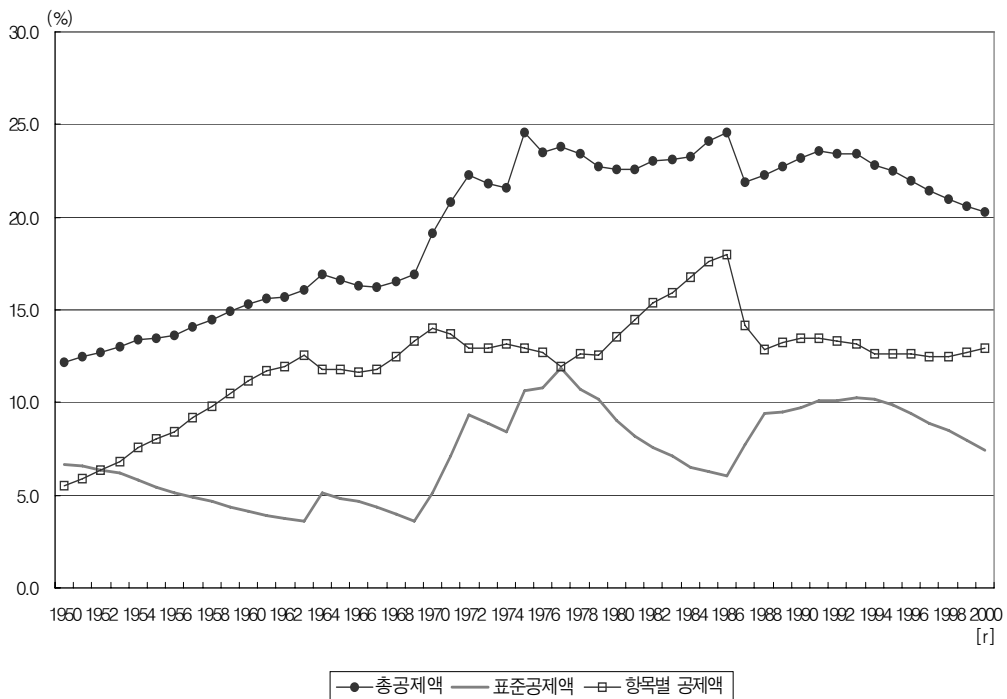
나. 연도별 공제

주지하다시피 조정된 총소득에서 각종 감면과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공제의 경우 독신이나 부부 등의 납세자 지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납세자가 항목별로 공제를 신청하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가 있다. 〈표 III-27〉은 공제유형별 신고건수와 공제액을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림 III-1]과 [그림 III-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신고건수로 보면 표준공제 신고가 항목별 공제 신고보다 더 많다. 1970년 당시 항목별 공제신고가 35.4백만건으로 표준공제 신고 38.4백만건에 근접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표준공제가 항목별 공제를 훨씬 초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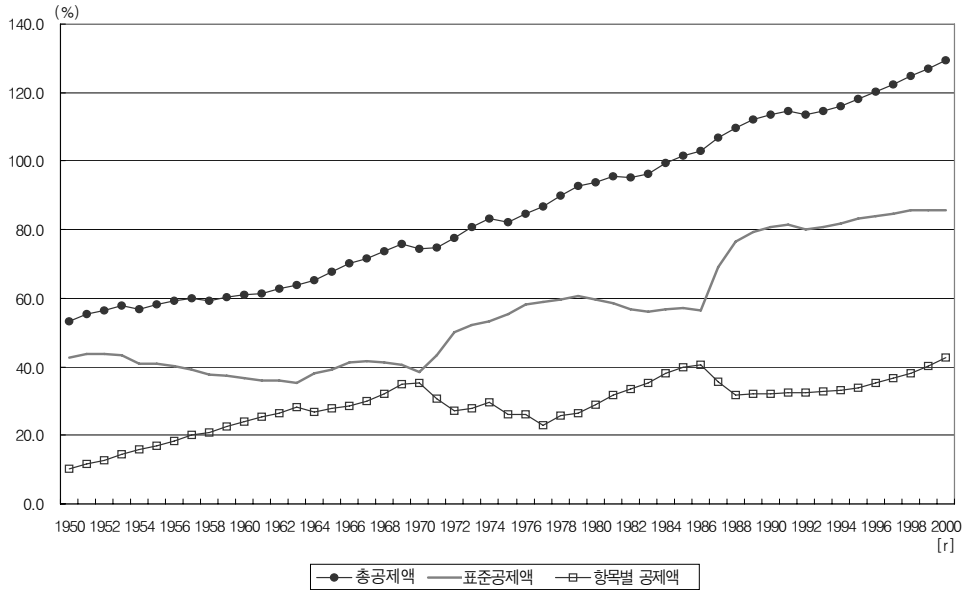
2005년을 기준하면 표준공제 신고는 84.8백만건, 항목별 공제신고는 47.8백만건으로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3.1%와 35.6%이다. 이에 비하면 1950년 당시 이들 공제 비중은 각각 80.4%와 19.4%로 표준공제가 4배 이상 많았다. 1950년

약 42.7백만건에 이르던 표준공제는 1963년까지 35.4백만건으로 줄어들다가 그 후 다시 증가하였고 특히 1987년 69.1백만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 추세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항목별 신고는 1950년 10.3백만건에서 출발하여 1970년 35.4백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1977년 22.9백만건, 1988년 31.9백만건을 기점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1986년의 경우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비중은 각각 54.9%와 39.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의 공제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느 유형의 신고가 더 납세자에게 유리한가에 따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림 III-1] 공제신고 건수의 연도별 변화추이(1950~2000년)



[그림 III-1] 총소득(AGI) 대비 공제액의 연도별 변화추이(1950~2000년)



[그림 III-2]는 조정된 총소득(AGI) 대비 공제금액을 비교한 그림이다. 여기서 보듯이 소득 대비 공제 비중은 1950년 12.2%에서 출발하여 1986년 24.6%까지 증가하다가 1987년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및 공제제한 정책으로 공제비중이 21.9%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약간 증가하여 1991년 23.6%까지 올라갔으나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5년에는 소득 대비 공제 비중은 22.9%에 이르게 된다.

〈표 III-27〉 개인소득세 표준·항목별 공제신고 건수 및 금액의 변화(1950~2005년)

(단위: 백만건, 십억달러)

과세연도	총신고 건수	총공제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금액	총소득(AGI) 대비 비율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1950	53.1	21.9	12.2	42.7	12.0	10.3	9.9
1951	55.4	25.2	12.5	43.9	13.3	11.6	11.9
1952	56.5	27.3	12.7	43.7	13.7	12.8	13.6
1953	57.8	29.8	13.0	43.4	14.2	14.4	15.6
1954	56.7	30.7	13.4	41.0	13.3	15.7	17.4
1955	58.3	33.6	13.5	40.9	13.6	16.9	20.0
1956	59.2	36.4	13.6	40.3	13.8	18.5	22.6
1957	59.8	39.5	14.1	39.3	13.8	20.2	25.7
1958	59.1	40.7	14.5	37.9	13.2	20.8	27.5
1959	60.3	45.4	14.9	37.3	13.4	22.5	32.0
1960	61.0	48.4	15.3	36.5	13.1	24.1	35.3
1961	61.5	51.3	15.6	35.8	12.9	25.3	38.4
1962	62.7	54.8	15.7	35.8	13.1	26.5	41.7
1963	63.9	59.2	16.1	35.4	13.1	28.2	46.1
1964	65.4	67.0	16.9	38.0	20.2	26.9	46.8
1965	67.6	71.4	16.6	39.3	20.6	27.9	50.7
1966	70.2	76.4	16.3	41.2	21.8	28.6	54.6
1967	71.7	81.7	16.2	41.5	22.1	29.8	59.6
1968	73.7	91.3	16.5	41.3	22.1	32.0	69.2
1969	75.8	101.8	16.9	40.5	21.6	34.9	80.2
1970	74.3	120.5	19.1	38.4	32.4	35.4	88.2
1971	74.6	139.9	20.8	43.5	48.1	30.7	91.9
1972	77.6	166.4	22.3	50.2	69.8	27.0	96.7
1973	80.7	180.6	21.8	52.2	73.6	28.0	107.0
1974	83.3	195.5	21.6	53.2	76.1	29.6	119.4
1975	82.2	233.2	24.6	55.5	100.9	26.1	122.3
1976	84.7	247.6	23.5	58.2	113.8	26.0	133.9
1977	86.6	276.2	23.8	58.8	137.7	22.9	138.5
1978	89.8	304.3	23.4	59.5	139.8	25.8	164.4
1979	92.7	333.0	22.7	60.7	148.8	26.5	184.2
1980	93.9	364.0	22.6	59.5	146.0	29.0	218.0
1981	95.4	401.2	22.6	58.7	144.7	31.6	256.4
1982	95.3	425.2	23.0	56.9	140.2	33.4	284.5
1983	96.3	448.7	23.1	56.2	138.5	35.2	309.6
1984	99.4	499.6	23.3	56.7	139.5	38.2	358.9
1985	101.7	554.7	24.1	57.0	145.0	39.8	405.0
1986	103.0	611.3	24.6	56.5	151.0	40.7	447.1
1987	107.0	607.2	21.9	69.1	215.2	35.6	392.0
1988	109.7	686.0	22.3	76.5	289.6	31.9	395.2
1989	112.1	740.4	22.7	79.3	309.4	32.0	431.0
1990	113.7	789.9	23.2	80.6	331.5	32.2	458.5
1991	114.7	818.8	23.6	81.3	351.1	32.5	467.7
1992	113.6	848.5	23.4	80.1	366.5	32.5	481.9
1993	114.6	872.5	23.4	80.8	382.1	32.8	490.4
1994	115.9	890.8	22.8	81.9	397.1	33.0	493.7

〈표 III-27〉의 계속

(단위: 백만건, 십억달러)

과세연도	총신고 건수	총공제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금액	총소득(AGI) 대비 비율	신고건수	금액	신고건수	금액
1995	118.2	941.0	22.5	83.2	413.6	34.0	527.4
1996	120.4	998.6	22.0	84.0	426.1	35.4	572.5
1997	122.4	1,062.5	21.4	84.8	441.7	36.6	620.8
1998	124.8	1,135.9	21.0	85.6	459.5	38.2	676.5
1999	127.1	1,205.3	20.6	85.8	464.0	40.2	741.4
2000	129.4	1,293.2	20.3	85.7	470.8	42.5	822.4
2001	130.3	1,366.4	22.1	84.2	481.9	44.6	884.5
2002	130.1	1,390.1	23.0	82.7	492.1	45.6	898.0
2003	130.4	1,457.6	23.5	84.6	555.8	43.9	901.9
2004	132.2	1,559.2	23.0	84.0	560.9	46.3	998.2
2005	134.4	1,702.6	22.9	84.8	580.7	47.8	1,121.8

주: 1. 총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를 합한 수치(1982~86년 사이에는 표준공제에 신고된 기부금 포함)이며 1957년 이전 자료는 추정치임.

2. 조정된 총소득(AGI)의 정의는 1987년 변경됨.

3. 1977~1986년 사이에 항목별 공제는 zero bracket amount를 제외하기 이전 금액이며 1991년 이후에는 제한금액으로 환산한 공제금액임.

자료: IRS, Historical Tables and Appendix(www.irs.gov/taxstats/article).

한편 이 그림에서 보듯이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소득 대비 비중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즉, 항목별 공제가 증가하면 표준공제는 감소하는 등의 양상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항목별 공제는 약간의 등락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총소득 대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1980년대에 비약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소득 대비 약 18%까지 증가하다가 198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항목별 공제는 1950년 당시 소득 대비 비중이 5.5%로 표준공제 비중 6.7%보다 낮았으나 1960년대 초반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그 후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197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 18.0%를 기록한 후 1988년 14.3%까지 떨어지면서 그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여 2005년 15.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표준공제의 비중은 1950년대에는 5%를 초과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1969년 3.6%까지 추락하였으나 그 후 1977년 11.9%를 기록하는 등 증가하다가 다시 1990년까지 10% 이

하로 떨어졌다. 1990년대 전반에는 표준공제 비중이 10%를 유지하다가 최근 감소하여 2005년 7.8%에 달하고 있다.

1986년 이후 공제 비중이 감소한 부문은 항목별 공제로서 대신 총소득 대비 표준공제가 증가하였다. 이는 1986년 세법개정으로 일부 유형의 개인경비가 공제를 더 이상 허용받지 못하면서 발생하였다. 그 결과 1986년 총소득(AGI) 대비 공제액은 24.6%로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5년에는 그 비중이 22.9%에 달하게 된다. 또한 이 당시 약 1조 7,206억달러에 이르는 총공제액에서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상대적 비중은 각각 34.1%와 65.9%로 항목별 공제가 신고건수로는 표준공제의 약 56%에 불과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그 반대로 표준공제금액의 1.9배에 이르렀다. 이에 비하면 1950년 당시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의 신고비중은 각각 80.4%, 19.4%이고 금액 비중은 각각 54.8%, 45.2%였다.

다. 소득세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

한편 <표 Ⅲ-28>은 소득구간별로 조정된 총소득과 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세율을 비교한 표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2005년 당시 조정된 총소득은 상위 1% 계층이 전체 소득의 약 21.2% 그리고 상위 5% 계층은 35.8%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46.4%)을 차지한다.

이를 1986년과 비교해보면 그 당시 상위 1%, 5%, 10%의 소득은 각각 11.3%, 24.1%, 35.1%로 상위 10% 계층의 소득 비중이 20년간 약 1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는데 2000년을 정점으로 상위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2005년이 되면 2000년과 비슷한 소득 점유율이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상위 50% 계층이 조정된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83.3%에서 2000년 87.2%로 약 3.9%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소득의 편재로 인하여 상위 1% 계층이 1986년 약 25.8%의 소득세를 부담하였으나 2005년에는 39.4%를 부담하였고 상위 5% 계층은 42.6%에서 59.7%로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이 밖에 상위 10% 계층의 부담은 54.7%에서 70.3%로 증가하였다. 한편 상위 50% 계층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2000년 당시 96.9%로 그 이하 계층은 소득

세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층별 소득세 납부 비중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2000년 정점에 도달한 뒤 납부 비중이 좀 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5년에 상위층으로 소득세가 다시 집중되는 상황을 보인다.

1986~2005년 사이에 평균세율은 14.5%에서 12.5%로 감소하였다. 평균세율은 1995년 이전까지 12~13%대를 유지하였으나 1996년 14.3%를 회복한 뒤 2000년 15.3%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후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2년 11.9%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논의된 소득집중 현상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총소득 대비 상위 1% 고소득층의 평균세율은 1986~2005년 사이에 33.1%에서 23.1%로 추락하였다. 같은 시기에 평균세율이 14.5%에서 12.5%로 2%포인트 감소한 데 비하여 상위 1% 계층의 평균세율은 10%포인트 하락하여 평균세율보다 5배 이상 감소한 것이다.

〈표 III-28〉 소득구간별 조정된 총소득, 소득세 비중 및 평균세율(1986~2005년)

(단위: 천달러, 십억달러, %)

	AGI floor						AGI(조정된 총소득)					
	총합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총합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1986	-	118.8	62.4	48.7	32.2	17.3	2524.1	11.30	24.11	35.12	59.04	83.34
1987	-	139.3	68.4	52.9	34.0	17.8	2813.7	12.32	25.67	36.90	60.75	84.37
1988	-	157.1	72.7	55.4	35.4	18.4	3124.2	15.16	28.51	39.45	62.44	85.07
1989	-	163.9	79.1	58.3	36.8	19.0	3298.9	14.19	27.84	39.00	62.28	85.04
1990	-	167.4	82.7	60.3	38.1	19.8	3451.2	14.00	27.62	38.77	62.13	84.97
1991	-	170.1	82.7	61.9	38.9	20.1	3516.1	12.99	26.83	38.20	61.85	84.87
1992	-	181.9	85.1	64.5	40.4	20.8	3680.6	14.23	28.01	39.23	62.47	85.08
1993	-	185.7	87.4	66.1	41.2	21.2	3775.6	13.79	27.76	39.05	62.45	85.08
1994	-	195.7	91.2	68.8	42.7	21.8	3961.1	13.80	27.85	39.19	62.64	85.11
1995	-	209.4	96.2	72.1	44.2	22.3	4244.6	14.60	28.81	40.16	63.37	85.46
1996	-	227.5	101.4	75.0	45.8	23.2	4590.5	16.04	30.36	41.59	64.32	85.92
1995	-	250.7	108.0	79.2	48.2	24.4	5023.5	17.38	31.79	42.83	65.05	86.16
1998	-	269.5	114.7	83.2	50.6	25.5	5469.2	18.47	32.85	43.77	65.63	86.33
1999	-	293.4	120.8	87.7	53.0	26.4	5909.3	19.51	34.04	44.89	66.46	86.75
2000	-	313.5	128.3	92.1	55.2	27.7	6424.0	20.81	35.30	46.01	67.15	87.01
2001	-	292.9	127.9	92.8	56.1	28.5	6241.0	17.53	31.99	43.11	65.23	86.19
2002	-	285.4	126.5	92.7	56.4	28.7	6113.8	16.12	30.55	41.77	64.37	85.77
2003	-	295.5	130.1	94.9	57.3	29.0	6287.6	16.77	31.18	42.36	64.86	86.01
2004	-	328.0	137.1	99.1	60.0	30.1	6875.1	19.00	33.45	44.35	66.13	86.58
2005	-	364.7	145.3	103.9	62.1	30.9	7058.0	21.20	35.75	46.44	67.52	87.17
	소득세						평균 세율					
	총합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총합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25%	상위 50%
1986	367.0	25.75	42.57	54.69	76.02	93.54	14.54	33.13	25.68	22.64	18.72	16.32
1987	369.0	24.81	43.26	55.61	76.92	93.93	13.12	26.41	22.10	19.77	16.61	14.60
1988	412.8	27.58	45.62	57.28	77.84	94.28	13.21	24.04	21.14	19.18	16.47	14.64
1989	432.8	25.24	43.94	55.78	77.22	94.17	13.12	23.34	20.71	18.77	16.27	14.53
1990	447.1	25.13	43.64	55.36	77.02	94.19	12.95	23.25	20.46	18.50	16.06	14.36
1991	448.3	24.82	43.38	55.82	77.29	94.52	12.75	24.37	20.62	18.63	15.93	14.20
1992	476.2	27.54	45.88	58.01	78.48	94.94	12.94	25.05	21.19	19.13	16.25	14.44
1993	502.7	29.01	47.36	59.24	79.27	95.19	13.32	28.01	22.71	20.20	16.90	14.90
1994	534.8	28.86	47.52	59.45	79.55	95.23	13.50	28.23	23.04	20.48	17.15	15.11
1995	588.3	30.26	48.91	60.75	80.36	95.39	13.86	28.73	25.53	20.97	17.58	15.47
1996	658.1	32.31	50.97	62.51	81.32	95.68	14.34	28.87	24.07	21.55	18.12	15.96
1995	727.3	33.17	51.87	63.20	81.67	95.72	14.48	27.64	23.62	21.36	18.18	16.09
1998	788.5	34.75	53.84	65.04	82.69	95.79	14.42	27.12	23.63	21.42	21.98	22.34
1999	877.3	36.18	55.45	66.45	83.54	96.00	14.85	27.53	24.18	21.98	18.66	16.43
2000	980.5	37.42	56.47	67.33	84.01	96.09	15.26	27.45	24.42	22.34	19.09	16.86
2001	887.9	33.89	53.25	64.89	82.90	96.03	14.23	27.50	23.68	21.41	18.08	15.85
2002	796.9	33.71	53.80	65.73	83.90	96.50	13.03	27.25	22.95	20.51	16.99	14.66
2003	747.9	34.27	54.36	65.84	83.88	96.54	11.90	24.31	20.74	18.49	15.38	13.35
2004	831.9	36.89	57.13	68.19	84.86	96.70	12.10	23.49	20.67	18.60	15.53	13.51
2005	934.7	39.38	59.67	70.30	85.99	96.93	12.45	23.13	20.78	18.84	15.86	13.84

자료: K. Mudry and J. Bryan,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Shares, 2005*, SOI Buletin, winter 2007.

이에 비하면 상위 5%의 평균세율은 25.7%에서 20.8%로 약 5%포인트 인하되었고 상위 10% 계층의 세율은 22.6%에서 18.8%로 약 3.8%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혜택이 더 많아 감세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위 25%와 50% 소득계층의 세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위 25%의 세율은 18.7%에서 15.9%로 2.8%포인트 감소하였고 상위 50% 계층의 세율은 16.3%에서 13.8%로 2.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처럼 상위 50% 계층까지는 평균세율의 인하폭인 2%포인트보다 더 많이 세율이 인하되었고 인하 비율은 상위 1%부터 10%, 5%, 3.8%, 2.5%포인트로 점차 줄어든다.

그 결과 1986년에는 상위 1%의 평균세율이 상위 50%의 세율보다 2배 이상 더 높았지만 2005년에는 약 0.7배 높게 된다. 즉 이들 계층의 세율 격차가 1986년 16.8%에서 2005년 9.8%로 감소한 것이다. 한편 상위 10%와 상위 50% 세율을 비교하면 1986년 당시 세율은 각각 22.6%, 16.3%이었으나 2005년에는 각각 18.8%와 13.8%로 세율 격차가 10.3%에서 5%로 줄어들었다.

1986~2005년 사이에 세율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소득세법의 개정이 있다.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1981년 소득구간과 공제를 물가상승률과 연계하고 최고 세율을 50%로 제한한 법안(ERTA81), 1987년 최고 세율 38.5%를 포함한 5개 세율구간의 잠정 도입(TRA86), 1988년 3개 세율구간 적용(15, 28, 33%), 1993년 최고 세율 39.6%와 일부 항목별 공제에 대한 금액 제한을 포함한 5개 세율구간 도입 그리고 2001년 이후 10% 소득구간 도입과 세율이 15% 이상인 소득구간에 대한 한계세율 인하와 장기보유 양도소득 세율인하(20% → 15%) 등이 있다(EGTRRA, JGTRRA).

이 밖에 <표 Ⅲ-29>는 소득구간별로 2005년 총소득, 감면, 소득세 그리고 평균세율을 제시하고 있어 소득세를 통한 세부담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알 수 있다. 2005년 당시 평균세율은 13.6%이다. 조정된 총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계층의 세율(조정된 총소득 대비)은 24.6%를 초과하지만 200만달러 이상 계층의 세율은 오히려 이보다 낮다. 조정된 총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계층의 세율은 평균세율이 10%를 넘지 않으며 1.5만달러 이하 계층의 세율은 5% 이하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된 총소득 7조 4,225억달러 가운데 면제·공제액은 2조 5,425억달러로 면·공제 비중이 총소득의 34.3%에 달한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공제 비중은

소득이 낮을수록 커서 한 예로 조정된 총소득이 2,5000달러인 사람의 경우 감면 비중이 약 54%에 이르지만 소득이 10만달러인 납세자와 1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그 비중이 각각 26.4%, 10.7%에 불과하다.

한편 총소득 대비 과세소득의 비중은 약 69.2%인데 100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 과세소득 비중은 89.6%에 달한다. 이에 비하면 소득이 5만~10만달러인 계층의 총소득 대비 과세소득은 66.7%이고 2.5만~5만달러 계층의 과세소득 비중은 55.1%이다. 나아가 2.5만달러 이하 계층의 경우 그 비중은 26.2%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소득 대비 과세소득은 고소득층일수록 높다.

〈표 III-29〉 개인소득세 소득구간별 공·면제, 세액비중 및 평균세율(2005년)

(단위: 백만건, 십억달러, 달러, %)

소득구간 (AGI)	신고 건수	총소득 (AGI) (a)	면·공제	과세소득	소득세	면세점 이하 소득(비율)	평균소득세 납부액 (b)	평균세율 (b/a)
전체금액	134,37	7,422,50	2,542,46	5,137,17	934,84	32,6	10,319	13,6
(구성비)								
~0	1,76	- 85,5	9,18	0	0,13	99,7	27,319	-
1~1,000	1,74	0,97	11,17	0,06	0,00	95,8	7	0,7
1,000~3,000	4,85	9,72	31,97	0,38	0,03	90,8	77	5,6
3,000~5,000	4,89	19,51	40,39	0,45	0,04	94,0	129	1,0
5,000~7,000	4,88	29,20	46,72	1,69	0,16	70,5	112	1,3
7,000~9,000	4,85	38,72	52,99	3,08	0,29	73,5	228	2,0
9,000~11,000	4,75	47,45	55,47	6,34	0,52	54,1	241	2,7
11,000~13,000	4,74	56,89	59,18	10,12	0,90	51,0	390	3,7
13,000~15,000	4,53	63,52	58,09	14,12	1,21	50,6	539	4,7
15,000~17,000	4,61	73,84	61,92	19,17	1,67	49,4	715	5,8
17,000~19,000	4,37	78,62	59,88	23,48	2,06	45,3	863	6,0
19,000~22,000	6,29	128,78	88,50	45,01	4,01	40,9	1,080	5,0
22,000~25,000	5,64	132,41	81,17	54,23	4,88	39,2	1,423	2,3
25,000~30,000	8,74	239,95	130,11	113,23	10,71	33,0	1,828	6,9
30,000~40,000	13,94	483,98	224,43	263,35	27,28	20,3	2,457	7,1
40,000~50,000	10,62	475,52	192,34	285,01	32,88	12,2	3,526	7,9
50,000~75,000	18,35	1127,67	400,42	730,30	92,82	4,7	5,307	8,6
75,000~100,000	10,45	900,48	279,44	621,93	85,99	1,2	8,324	9,7
100,000~200,000	10,81	1430,58	377,42	1,054,73	189,47	0,4	17,597	13,3
200,000~500,000	2,74	788,89	132,82	657,16	159,40	0,2	58,339	20,0
500,000~1,000,000	0,52	355,22	42,11	313,45	84,70	0,2	162,826	23,9
1,000,000~1,500,000	0,13	154,80	16,52	138,34	38,05	0,2	298,155	24,6
1,500,000~2,000,000	0,06	97,51	9,78	87,81	23,94	0,2	423,783	24,6
2,000,000~5,000,000	0,08	250,61	24,29	226,49	60,87	0,2	725,829	24,4
5,000,000~10,000,000	0,02	146,85	14,07	132,90	34,53	0,2	1,615,166	23,6
10,000,000 or more	0,01	376,27	42,11	334,36	78,27	0,3	5,695,999	20,9

주: 공·면제액이 조정된 총소득(AGI)보다 클 수 있으므로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면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소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IRS, Historical Tables and Appendix(www.irs.gov/taxstats/article).

4. 기업의 형태와 법인세

가. 기업 유형과 법인세 세수

미국에서 법인세는 C 법인 주식회사가 납부하고 이외 파트너십과 S 법인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자료 신고만 하고 소득세는 파트너나 주주가 개인 차원에서 납부한다. 법인세에 대하여 논의하기 앞서서 미국에서 기업의 조직 형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53년 이전에는 C 법인을 중심으로 주식회사가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3%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기업의 유형이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주식회사의 비중이 64.3%로 감소하였다. 1950년대 이후 약 50년이 흐르면서 파트너십이 많이 설립되어 그 비중이 12.7%에서 30.6%로 증가한 반면 주식회사의 비중은 87.3%에서 69.5%로 감소하였다. 특히 S 법인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C 법인의 비중은 같은 시기에 59.2%에서 26.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III-30〉 기업 유형의 변천 추이

(단위: 천개, %)

	총 업체수 ¹⁾	주식회사		S 법인		C 법인		파트너십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총합	7,776.1	5,401.2	69.5	3,341.6	43.0	2,059.6	26.5	2,375.4	30.6
신규기업	678.0	389.2	57.4	266.8	39.4	122.4	18.1	288.8	42.6
2000~2002	1,936.2	1,207.1	62.3	850.3	43.9	356.8	18.4	729.1	37.7
1997~1999	1,380.0	888.2	64.3	639.4	46.3	248.7	18.0	491.8	35.6
1994~1996	932.7	663.0	71.1	447.9	48.0	215.1	23.1	269.6	28.9
1984~1993	1,589.8	1,258.4	79.2	776.5	48.8	481.9	30.3	331.3	20.8
1974~1983	776.5	612.7	78.9	233.1	30.0	379.6	48.9	153.8	21.1
1964~1973	248.7	207.0	83.2	74.4	29.9	132.5	53.3	41.7	16.8
1954~1963	108.7	89.5	82.3	33.3	30.6	56.2	51.7	19.2	17.7
1953 이전	70.7	61.8	87.3	19.9	28.1	41.9	59.2	9.0	12.7
불명	55.4	24.5	44.1	0	0	24.5	44.1	31.0	55.9

주: 1.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는 제외.

자료: Integrated Business Data, IRS, 2003.

1972년 당시 GDP의 2.8%에 이르던 법인세 징수액은 부침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2003년 당시 1.3%까지 하락하였지만 그 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7년 2.9%까지 육박하게 된다. 한편 내국세 비중으로 보면 1972년 법인세는 내국세의 24.3%를 차지하였지만 2003년 7.3%까지 감소하였다가 2007년 다시 14.9%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는 GDP 비중이 2%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소득세의 GDP 비중이 10% 이하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III-31〉 법인세 징수액과 GDP 대비 비중(Fiscal Years 1972~2007년)

(단위: 억달러, %)

	내국세	총 소득세	법인세		내국세	총 소득세	법인세
1972	2,098.6 (16.9)	1,438.0 (11.6)	349.3 (2.8)	1990	10,563.7 (17.6)	6,502.4 (10.9)	1,100.2 (1.8)
1973	2,377.9 (17.2)	1,641.6 (11.8)	390.5 (2.8)	1991	10,868.5 (17.2)	6,604.8 (10.5)	1,136.0 (1.8)
1974	2,689.5 (17.9)	1,846.5 (12.3)	417.4 (2.8)	1992	11,208.0 (16.9)	6,756.7 (10.2)	1,179.5 (1.8)
1975	2,938.2 (18.0)	2,021.5 (12.4)	457.5 (2.8)	1993	11,766.9 (16.7)	7,173.2 (10.2)	1,315.5 (1.9)
1976	3,025.2 (16.6)	2,057.5 (11.3)	467.8 (2.6)	1994	12,764.7 (17.2)	7,740.2 (10.5)	1,542.0 (2.1)
1977	3,581.4 (15.6)	2,468.1 (10.7)	600.5 (2.6)	1995	13,757.3 (17.6)	8502 (10.8)	1,744.2 (2.2)
1978	3,997.8 (15.6)	2,784.4 (10.8)	653.8 (2.5)	1996	14,865.5 (17.9)	9,343.7 (11.2)	1,890.5 (2.3)
1979	4,604.1 (16.5)	3,229.9 (11.6)	714.5 (2.6)	1997	16,232.7 (18.5)	10295.1 (11.7)	2,044.9 (2.3)
1980	5,193.8 (16.6)	3,599.3 (11.5)	723.8 (2.3)	1998	17,694.1 (19.1)	11,413.4 (12.3)	2,132.7 (2.3)
1981	6,068.0 (18.6)	4,065.8 (12.5)	737.3 (2.3)	1999	19,041.5 (19.4)	12,185.1 (12.4)	2,163.2 (2.2)
1982	6,322.4 (17.9)	4,186.0 (11.8)	659.9 (1.9)	2000	20,969.2 (20.8)	13,727.3 (13.6)	2,356.5 (2.3)
1983	6,272.5 (15.9)	4,114.1 (10.5)	617.8 (1.6)	2001	21,288.3 (20.4)	13,649.4 (13.1)	1,867.3 (1.8)
1984	6,804.8 (16.2)	4,370.7 (10.4)	741.8 (1.8)	2002	20,166.3 (19.3)	12491.7 (12.0)	2,114.4 (1.8)
1985	7,428.7 (16.7)	4,740.7 (10.6)	774.1 (1.7)	2003	19,529.3 (17.8)	11,813.6 (10.8)	1,941.5 (1.3)
1986	7,822.5 (16.5)	4,974.1 (10.5)	804.4 (1.7)	2004	20,185.0 (17.3)	12,208.7 (10.4)	2,306.7 (2.0)
1987	8,862.9 (17.3)	5,683.1 (11.1)	1,028.6 (2.0)	2005	22,689.0 (18.3)	14,146.0 (11.4)	3,070.9 (2.5)
1988	9,351.1 (17.0)	5,833.5 (10.6)	1,096.8 (2.0)	2006	25,186.8 (19.1)	16,171.8 (12.3)	3,809.2 (2.9)
1989	10,133.2 (17.5)	6,327.5 (10.9)	1,170.1 (2.0)	2007	26,915.4 (19.5)	17,617.8 (12.8)	3,955.4 (2.9)

주: 법인소득세에서 면세대상 영업소득세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7, Publication 55b.

나. 기업의 소득신고 동향

주식회사 사업소득 신고건수는 1980~200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파트너십의 신고건수도 대략 비슷하다. 같은 시기에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 신고건수는 2.2배로 증가하였다. 파트너십의 경우 사업소득이 25,000달러 이하인 업체가 전체의 약 53%를 차지한다. 또한 개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그 비중이 67%를 상회한다. 이에 비하면 S 법인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소득이 25,000달러 이하인 업체는 22%에 불과하고 100만달러 이상인 주식회사는 19.2%에 달한다. 사업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파트너십은 전체 업체의 8.2%에 이른다. 반면 같은 규모의 개인 사업체는 0.5%에 불과하다.

한편 <표 Ⅲ-33>은 1980년 이후 S 법인을 포함한 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소득신고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도 보듯이 1980년 당시 S 법인 신고 비중은 전체 주식회사 신고의 약 20%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그 비중이 64.9%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기간에 순소득을 신고한 주식회사의 비중은 약 59%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과세소득을 신고한 업체 비중은 41.8%에서 12.3%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주식회사의 실질세율(법인세/순소득)은 1980년 35.4%에서 2005년 18.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수입 대비 세금은 약 1.6%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비하면 전체 수입 대비 공제액은 1980년 96.3%에서 2005년 92.3%로 감소하였다. 한편 세액공제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외국납부세액의 비중이 전체 공제의 약 77%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일반사업비 공제와 연구개발 공제가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표 III-32〉 총수입 규모에 따른 사업소득 신고서(1980~2005년)

(단위: 천건, 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5
주식회사	2,710.5	3,277.2	3,716.7	4,474.2	4,848.9	4,935.9	5,045.3	5,671.3
~25,000	557.0	710.8	878.7	1,030.0	1,168.1	1,188.7	1,220.0	1,299.7
25,000~50,000	207.7	236.6	252.0	288.4	289.0	296.9	305.4	340.3
50,000~100,000	322.7	330.2	358.9	446.8	459.9	486.5	477.4	543.7
100,000~250,000	558.4	620.5	661.7	736.1	839.7	823.9	837.1	997.3
250,000~500,000	367.3	489.2	500.0	623.6	645.5	676.1	677.5	757.8
500,000~ 1,000,000	279.8	352.4	416.0	512.7	553.1	546.2	581.9	644.2
1,000,000~	414.7	537.6	649.4	803.3	893.5	917.5	946.0	1,088.3
파트너십	1,379.7	1,713.6	1,553.5	1,580.9	1,855.3	1,936.9	2,057.5	2,763.6
~25,000	638.0	840.1	962.6	931.3	1,037.6	1,036.3	1,105.1	1,465.2
25,000~50,000	181.8	195.5	126.0	133.5	157.3	183.0	183.0	218.4
50,000~100,000	183.6	199.5	133.4	142.3	156.8	187.3	187.3	232.8
100,000~250,000	155.2	190.1	139.9	158.6	206.4	212.4	225.8	307.2
250,000~500,000	135.6	165.5	82.5	86.5	113.6	125.8	127.0	182.0
500,000~ 1,000,000	48.1	66.9	52.1	59.4	76.6	83.8	92.4	130.6
1,000,000~	37.4	56.0	57.1	69.3	106.8	121.6	136.9	227.3
개인회사(농업 제외)	9,730.0	11,928.6	14,782.7	16,423.9	17,408.8	17,575.6	17,902.8	21,467.6
~2,500	2,783.1	3,067.5	3,750.1	4,139.5	4,246.4	4,295.6	4,333.1	5,069.4
2,500~5,000	1,158.6	1,444.6	1,714.5	1,954.1	2,055.6	1,972.6	1,933.9	2,372.8
5,000~10,000	1,262.9	1,633.6	2,011.7	2,254.4	2,407.0	2,350.2	2,395.7	2,967.1
10,000~25,000	1,711.8	2,104.6	2,719.8	2,969.3	3,058.3	3,202.2	3,334.0	4,047.0
25,000~50,000	1,079.1	1,393.9	1,660.2	1,982.7	2,111.9	2,227.0	2,246.7	2,587.4
50,000~ 100,000	835.6	1,094.1	1,282.1	1,392.6	1,590.1	1,558.5	1,644.8	1,980.7
100,000~500,000	795.8	1,060.2	1,444.2	1,514.0	1,686.3	1,701.7	1,733.3	2,091.3
500,000~1,000,000	73.9	89.3	142.7	147.4	175.1	182.2	189.5	234.5
1,000,000~	29.2	40.7	57.3	69.9	78.1	85.7	91.7	117.3

자료: www.irs.gov/taxstats/article, IRS.

〈표 III-33〉 법인세 대차대조표와 소득세 내역(1980~2005년)

(단위: 천건,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2000	2005
총신고건수	2,710.5	3,277.2	3,716.7	4,474.2	4,848.9	5,045.3	5,671.3
순소득 건수	1,596.6	1,820.1	1,910.7	2,455.5	2,760.8	2,819.2	3,324.3
연결납세신고	57.9	79.6	71.7	65.6	60.8	56.6	46.3
S 법인	545.4	724.7	1,575.1	2,153.1	2,588.1	2,860.5	3,684.1
DISC 신고 ¹⁾	8.7	1.4	-	-	-	-	-
FSC 신고 ²⁾	n.a.	2.3	-	-	-	-	-
총자산	76,172.4	127,730.9	181,900.6	260,136.9	373,473.5	470,268.7	664,454.3
현금	5,289.1	6,832.0	7,710.9	9,620.8	13,364.2	18,197.9	28,234.2
어음및매출채권	19,846.0	33,176.4	41,980.2	53,065.7	70,615.5	87,544.3	119,621.0
-(대손금공제)	500.6	615.8	1,100.6	1,213.5	1,281.3	1,482.9	1,704.7
재고	5,348.1	7,147.2	8,935.9	10,450.1	11,392.1	12,719.7	15,054.5
정부채권	2,655.4	9,165.5	9,211.9	13,634.5	13,656.5	12,362.3	16,133.7
면세증권	2,065.2	-	3,803.2	8,397.8	9,586.5	9,733.2	14,680.2
기타 유동자산	3,101.8	6,291.4	11,645.8	18,350.5	27,384.4	32,066.9	53,092.0
주주대여금	298.7	567.6	948.7	927.7	1,350.5	1,570.3	4,452.4
부동산 채권	8,943.2	12,586.7	15,378.9	17,133.1	24,149.0	28,215.1	47,769.6
기타 투자채권	1,214.0	24,135.5	41,368.9	74,293.7	132,011.2	178,738.5	251,616.3
감가상각자산	21,070.3	31,741.9	43,177.8	55,711.4	65,412.8	72,920.0	84,157.6
-(상각누적액)	7,678.4	12,320.7	18,480.2	26,005.5	30,316.3	33,692.1	40,963.5
감모상각자산	719.0	1,123.4	1,293.7	1,535.4	1,926.7	1,913.5	3,102.2
-(상각누적액)	195.7	372.0	550.8	709.6	923.1	874.4	1,283.7
토지	929.3	1,414.5	2,095.8	2,423.4	2,714.9	3,028.3	4,068.3
무형자산	454.8	1,452.9	4,912.5	7,491.7	13,763.0	22,465.1	30,553.0
-(상각누적액)	183.9	425.1	957.5	1,650.2	2,327.4	3,643.6	5,324.5
기타 자산	1,870.2	5,829.5	10,525.4	16,679.5	20,994.3	28,486.7	41,195.6
총부채	76,172.4	127,730.9	181,900.6	260,136.9	373,473.5	470,268.7	664,445.3
매입채권	5,421.7	8,915.7	10,940.0	17,495.7	25,012.9	37,581.8	60,286.2
1년 미만 부채	5,948.0	10,013.4	18,027.3	20,336.0	32,155.2	40,197.0	41,920.7
기타 유동부채	27,068.0	42,349.8	51,976.8	67,827.0	88,100.0	103,073.6	165,106.4
주주대출금	857.2	1,743.2	2,685.6	3,116.8	3,612.3	4,514.6	5,436.2
1년 이상 고정부채	9,866.6	16,992.7	26,651.0	33,354.3	48,132.5	61,840.0	83,315.0
기타 부채	8,467.0	14,679.1	24,230.7	36,687.7	45,377.8	49,575.1	73,240.7
순자산	19,443.9	33,037.0	47,389.2	81,319.4	131,082.8	173,486.5	235,249.1
주식	4,171.5	9,201.8	15,848.4	21,943.7	32,440.2	39,662.8	24,822.8
자본잉여금	5,320.4	14,209.9	28,142.1	54,460.0	86,101.7	122,648.2	178,282.1
처분이익잉여금	414.6	540.7	609.8	1,056.8	1,851.6	1,818.4	2,426.9
미처분이익잉여금	10,279.0	13,115.1	13,490.3	20,857.1	31,874.0	34,453.5	40,887.7
주주자본조정	n.a.	n.a.	n.a.	n.a.	-30.1	-33.8	-422.7
-(자사주비용)	741.7	4,030.7	10,701.4	16,998.2	21,184.8	25,062.5	11,171.4

〈표 III-33〉의 계속

(단위: 천전,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2000	2005
총수입	63,612.8	83,982.8	114,095.2	145,390.5	173,239.6	206,058.1	255,047.9
사업수입	57,316.2	73,695.4	98,604.4	127,858.0	150,102.6	176,365.5	218,002.9
지방정부채권이자	126.2	201.6	351.6	463.2	491.3	519.4	611.7
기타 이자	3,542.4	6,176.2	9,422.4	9,931.7	12,276.4	15,761.0	17,122.7
국내회사배당수입	186.5	169.7	134.1	228.4	200.1	208.7	214.0
외국회사배당수입	145.6	207.7	332.6	354.2	492.3	602.0	3,629.5
임대수입	413.7	897.0	1,006.4	871.2	1,066.0	1,313.0	1,360.7
로열티수입	124.5	152.4	321.4	579.8	936.0	1,225.1	1,536.1
단기자본 수익	20.1	70.3	41.1	400.8	373.0	850.0	386.9
장기자본 수익	249.1	527.7	509.4	608.5	1,250.1	1,737.6	1,617.0
자본자산 이외 수익	201.2	335.4	322.8	429.9	695.2	700.4	782.7
기타 수입	1,287.2	1,529.3	3,048.9	138212.8	5,355.6	6,775.3	9,783.7
총공제	61,253.4	81,581.4	110,325.7	138,212.8	164,894.3	196,915.9	236,127.7
판매비용	42,049.1	48,942.5	66,107.7	82,060.7	93,623.9	111,352.9	138,164.6
임원보상	1,089.7	1,707.4	2,054.0	3,036.4	3,568.5	4,014.2	4,449.7
고장수리	424.1	815.0	958.9	1,186.0	1,303.0	1,395.9	1,543.3
대손금	187.7	433.3	836.9	677.7	863.7	1,076.8	1,190.4
임대료	719.9	1,346.6	1,847.7	2,321.0	3,083.2	3,800.8	4,385.1
납부세금	1,630.0	2,010.0	2,509.3	3,258.4	3,545.8	3,900.7	4,729.5
이자지급	3,446.1	5,686.5	8,253.7	7,447.6	9,666.6	12,716.8	12,871.0
기부	23.6	44.7	47.5	74.3	86.8	106.6	165.9
감가상각(amortized)	13.7	61.3	315.0	460.0	743.4	983.3	1,408.7
감가상각	1,573.5	3,943.8	3,327.8	4,365.8	524.9	6,143.7	5,309.3
감모상각	77.7	77.8	96.5	100.0	96.9	102.4	154.2
광고비	526.7	919.2	1,264.2	1,627.8	1,982.1	2,340.0	2,531.9
연금, 보너스 등	515.3	495.9	422.3	817.9	716.9	857.9	1,468.2
비용인 부가급부	401.8	716.0	1,133.2	1,651.1	1,954.5	2,313.3	3,031.4
자본자산 이외 손실	59.0	78.9	223.3	280.3	213.1	313.1	380.0
기타 공제	8,508.7	15,202.7	20,927.6	28,847.8	38,021.1	45,497.5	30,974.1
총수입 - 공제	2,359.2	2,401.3	3,769.5	7,177.7	8,345.3	9,142.2	18,920.2
외국업체 인정소득	157.1	203.0	367.8	427.4	528.2	652.5	1,178.1
순소득 - 적자	2,390.1	2,401.2	3,706.3	7,141.9	8,382.2	9,275.3	19,486.6
순소득	2,967.9	3,638.7	5,525.3	8,806.5	10,911.5	13,366.2	22,348.8
결손	577.8	1,237.5	1,818.9	1,664.6	2,529.3	4,090.9	2,862.3
과세소득							
신고서수	1,131.9	1,219.4	846.1	912.9	894.4	828.5	698.5
금액	2,466.0	2,660.6	3,663.5	5,647.3	6,633.9	7,604.0	12,013.3
소득세	1,051.4	1,113.4	1,281.9	1,987.9	2,314.0	2,662.8	4,192.1
일반세	1,038.3	1,091.1	1,194.3	1,935.6	2,280.2	2,622.3	4,163.2

〈표 III-33〉의 계속

(단위: 천건, 억달러)

	1980	1985	1990	1995	1998	2000	2005
전년도투자공제환수	8.7	15.0	1.3	0.1	0.03	0.1	0.07
전년도WIN 공제환수	0.05	n.a.	n.a.	n.a.	n.a.	n.a.	n.a.
최저한세							
신고서수	9.2	7.8	32.5	25.8	18.4	13.1	13.6
금액	4.4	7.3	81.0	42.8	33.2	38.7	33.4
환경세 ³⁾	n.a.	n.a.	5.2	7.1	n.a.	n.a.	n.a.
세액공제	421.9	479.9	317.8	423.6	498.0	622.4	1,071.3
외국세액공제							
신고서수	6.2	5.1	5.0	6.7	5.9	5.9	6.0
금액	248.8	242.6	249.9	304.2	383.4	485.1	820.5
국내세액공제	15.7	24.5	31.9	30.8	23.9	14.4	8.8
투자세액공제	151.0	-	-	-	-	3.6	5.0
WIN 공제 ⁴⁾	0.4	n.a.	n.a.	n.a.	n.a.	n.a.	n.a.
고용기회공제	6.0	-	-	-	n.a.	-	-
특수연료공제	0.0	0.4	0.8	7.3	10.3	15.2	34.2
전기차공제	n.a.	n.a.	n.a.	0.0	0.0	0.01	n.a.
알코올연료공제	0.0	-	-	-	-	0.1	0.1
연구활동공제	n.a.	16.3	-	-	-	72.4	66.4
종업원주주공제	n.a.	-	n.a.	n.a.	n.a.	n.a.	n.a.
회귀 약 개발 공제	n.a.	0.0	0.2	-	-	-	-
일반사업공제	n.a.	196.1	28.3	33.9	56.0	55.9	135.0
전년도최저한세공제	n.a.	n.a.	60.7	48.0	34.3	51.7	71.3
학교구역채권공제	n.a.	n.a.	n.a.	n.a.	n.a.	0.1	1.4
공제후 소득세	629.5	633.5	964.1	1,563.7	1816.0	2,040.4	3,120.9
세율⁵⁾	35.4	30.6	23.2	22.6	21.2	19.9	18.8
실질세율⁵⁾	21.2	17.4	17.4	17.8	16.6	15.3	14.0

주: 1) 수출을 장려할 목적으로 자회사(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의 이익이 모 회사에 배당된 경우에만 과세.

2) 외국 자회사의 소득 중 일부만 과세하며 1984년 DISC를 대체.

3) 1996년 법인세에 포함된 환경소비세 폐지.

4) Work Incentive Program.

5) 세율은 순소득 대비 소득세를 실질세율은 순소득 대비 공제 후 소득세를 의미함.

자료: www.irs.gov/taxstats/article, IRS.

이 밖에 <표 III-34>와 <표 III-35>는 각각 도관업체(tax reporting entity)에 해당하는 S 법인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의 자료 신고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S 법인의 업계 당 주주는 1.7명으로 2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S 법인이 전체 주식회사 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65%에 달하지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 불과하다. 또한 순소득으로 보면 그 비중은 15.6%로 더욱 감소한다.

S 법인이 처음 허용된 당시 도소매업의 S 법인 신고가 전체 신고의 44.4%, 수입의 58.1%를 차지하였다. 그 후 2004년이 되면 도소매업의 신고건수와 총수입 비중은 각각 17.0%, 41.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들 업종이 S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이후 건설업, 제조업과 전문직종이 그 뒤를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III-34> S 법인 주식회사 자료신고 주요 내용(2005년)

(단위: 천건, 천명, 십억달러)

항목	건수(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S주식회사 수	3,684.1	총수입	5,252.5	사업순소득	282.9
주주	6,331.2	사업수입	5,147.0	순소득	348.1
		이자수입(정부채권)	1.8	손실	65.2
총자산	2,737.0	비자본자산 이익	12.0	투자소득 배당	69.6
현금	294.9	기타 수입	91.7	이자소득	4.9
매출채권	639.4	공제	4,967.8	배당소득	12.9
재고	386.3	판매비	3,225.1	로열티소득	1.1
정부채권투자	52.3	임원보수	191.4	단기자본손익	2.1
유동자산	182.6	임금	538.9	장기자본손익	48.7
주주 대여	49.5	보수	31.9	순임대소득(부동산)	7.3
부동산 대출	68.9	대손금	9.0	순소득	10.8
상각자산	1,216.0	임대료	128.8	손실	3.5
토지	101.1	세금	105.1	기타임대소득	1.3
총부채	2,737.0	이자	50.5	순소득	2.0
매입채권	337.0	감가상각(amort.)	6.8	손실	0.7
어음 등 단기부채	546.5	감가상각	66.8	총 순소득	361.0
기타유동부채	468.6	감모상각	0.6	순소득	421.3
주주대출금	217.0	광고	47.6	손실	60.3
장기부채	546.5	연금, 이익공유	20.9		
기타	91.6	근로자부가급부	47.2		
주식	76.2	비자본자산 손실	1.0		
추가납입자본금	267.2	기타 공제	496.2		
유보이익	461.6	총수입-공제	284.7		

주: www.irs.gov/taxstats/article, IRS.

한편 파트너십의 경우 업체당 파트너의 수는 5.7명에 이른다. S 법인에 비하여 업체 수나 총수입이 많지 않다. 한 예로 사업수입은 주식회사 수입의 15.3%에 불과하다. 그러나 순소득은 주식회사 순소득의 23.1%로 S 법인의 15.6%보다 많다. 특히 투자소득의 배당이 S 법인보다 10배 이상 많다.

〈표 III-35〉 파트너십(partnership) 자료신고 주요내용(2006년)

(단위: 천건, 천명, 십억달러)

항목	건수(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파트너십 수	2,947.1	공제	3,555.8	일반사업소득	357.1
파트너	16,727.8	판매비	2,109.0	순소득	516.3
유한책임회사	1,630.2	재고(연초)	215.7	손실	159.2
파트너	6,362.0	매입	1,412.0	투자소득 배당	722.4
		노임	91.5	이자소득	193.5
총자산	17,146.3	추가 재고비용	19.7	배당소득	83.9
상각자산	2,490.2	기타비용	626.8	로열티소득	14.2
재고(연말)	445.6	-재고(연말)	259.1	단기자본손익	54.6
토지	730.9	임금	331.9	장기자본손익	376.2
총부채	9,350.1	파트너보장지급금	41.8	순임대소득(부동산)	15.1
매입채권	505.2	임대료	62.4	순소득	89.5
단기부채	455.6	이자	136.8	손실	74.4
장기부채	2,227.0	세금	53.0	기타임대소득	2.9
유한부채 ¹⁾	1,102.6	대손금	12.3	순소득	6.8
자본금계정	7,796.2	보수유지	19.4	손실	3.9
		감가상각	78.6	총 순소득	666.7
총소득	3,912.9	감모상각	0.8	순소득	871.1
사업수입	3,571.3	퇴직연금	9.7	손실	204.3
일반소득(여타 회사)	87.0	근로자 부가급부	22.9		
농장이익	4.9	손실(여타 회사)	31.3		
비자본자산 이익	15.2	농장 순손실	5.7		
기타 소득	234.5	비자본자산 손실	2.8		
		기타 공제	637.6		

주: 1) 담보부 부채이지만 채무자가 개인적으로 상환 책임이 없는 부채(nonrecourse debt).

5. 연방소비세

가. 미국 소비세의 구성과 세수

소비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경우 미국에서는 주로 지방정부가 일반 판매세(G.S.T.)와 개별판매세(S.S.T.)⁷²⁾ 혹은 재산세 등으로 과세하고 연방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일정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혹은 기금을 위한 목적세 형식으로 과세를 한다. 이는 2007년 당시 총간접세 세입 1조 155억달러 중에서 연방정부의 간접세 세수는 977억달러로 간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에 불과한 데서 알 수 있다. 약 3,909억달러에 이르는 지방정부 재산세를 제외하고 연방정부 간접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소비세만을 고려하면 연방정부의 간접세 비중은 11.6%로 늘어난다.

977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간접세는 특히 소비세가 주종으로 약 70.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휘발유, 주류, 담배 및 경유세가 대부분이고 공항세도 일부를 차지한다. 반면 관세 세입은 288억달러로 휘발유세(261억달러)보다 약간 많다. 보석 등의 사치품에 대한 세금은 1993년 폐지되기 이전까지 기타세로서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 간접세 9,178억달러 중에서 판매세(4,365억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6%이고 재산세가 42.6%(3,909억달러)에 이른다. 판매세는 일반 판매세(2,394억달러)와 담배와 주류 등 기호품에 부과되는 개별판매세가 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인 주정부에서 징수하는 판매세는 3,511억달러로 전체 판매세의 80.4%에 달하고 나머지 854억달러(19.6%)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기초자치단체 판매세는 대부분 일반 판매세(607억달러)의 형태로 징수된다.

연방정부의 간접세가 전체 간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 당시 14.3%에 불과하였으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재정 수입을 위하여 증가하면서 1945년에는 그 비중이 45.7%까지 증가하였다. 이 당시에는 주류와 담배 이외에도 타이어, 석탄, 전화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하여 소비세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후 연방간접세의 비중은 1950년 37.8% 그리고 1965년 25.4%로 떨어진데 이어 1970년을 전후하여 20%

72) General sales Taxes and Selective Sales Taxes.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후 1990년이 되면 12% 수준으로 더욱 하락하게 된다.

한편 지방정부 판매세는 1930년 당시 재산세 세수의 9%에 불과하였으나 1940년 약 41%, 1950년 68%, 1960년 69%, 1970년 86%로 증가한 데 이어서 드디어 1980년이 되면 판매세 세수는 약 829억달러로 재산세 세수 688억달러를 추월하게 된다. 그 후에는 판매세가 지방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자리잡아 2007년 당시 판매세 세수는 재산세의 약 1.12배에 달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1930년대에는 재산세를 위주로 지방세를 과세하고 판매세에는 의존하지 않다가 1935년을 전후하여 주정부가 일반판매세를 과세하고 기초자치단체도 1950년대 말 일반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외 지방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기업, 보험수입 혹은 자원 등에 대해서도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표 III-36〉 정부단위별 간접세 내역(1930~2007년)

(단위: 십억달러)

	1930	1935	1940	1945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총간접세	7.0	8.0	9.8	15.1	23.0	31.5	44.6	60.8	91.5	135.5	200.7
연방정부	1.0	2.1	2.6	6.9	8.7	10.4	13.1	15.5	18.2	22.2	34.0
소비세	0.5	1.7	2.1	6.2	8.2	9.8	12.0	13.9	15.7	16.4	26.9
휘발유	0.0	0.0	0.0	0.0	0.0	0.0	2.4	2.8	3.5	4.1	4.1
주류	0.5	0.7	0.0	2.3	2.4	2.8	3.1	3.7	4.7	5.3	5.5
담배류	0.5	0.6	0.4	1.0	1.3	1.6	1.9	2.1	2.2	2.4	2.5
경유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5
공항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5
원유이윤 ⁴⁾	—	—	—	—	—	—	—	—	—	—	9.3
기타 ¹⁾	0.1	0.8	0.7	2.8	4.5	5.4	4.6	5.3	5.3	4.6	3.4
관세	0.6	0.4	0.3	0.4	0.5	0.7	1.1	1.6	2.5	5.9	7.2
기타 ²⁾	0.0	0.1	0.2	0.4	0.0	0.0	0.0	0.0	0.0	0.0	0.0
지방정부	5.7	5.8	7.2	8.2	14.2	21.0	31.5	45.3	73.3	113.2	166.7
판매세	0.4	1.2	1.8	2.3	4.8	7.1	12.2	18.2	31.6	51.7	82.9
주정부	0.4	1.1	1.7	2.1	4.3	6.3	10.8	16.1	28.2	44.7	70.0
일반	—	0.3	0.5	0.8	1.8	2.8	4.4	7.3	14.8	25.8	44.8
휘발유	0.4	0.6	0.9	0.8	1.6	2.5	3.4	4.5	6.4	8.4	9.6
주류	—	0.1	0.2	0.4	0.4	0.5	0.7	0.9	1.5	2.0	2.5
담배류	—	0.0	0.1	0.2	0.4	0.5	1.0	1.4	2.4	3.3	3.8
공기업	—	—	—	—	—	—	0.4	0.5	0.9	1.9	3.7
보험수입	—	—	—	—	—	—	0.6	0.8	1.1	1.7	3.2
기타	—	—	—	—	—	—	0.4	0.6	1.0	1.6	2.4
자치단체	0.0	0.1	0.1	0.2	0.5	0.8	1.4	2.1	3.5	7.0	12.8
일반	—	—	—	—	—	—	0.9	1.3	2.2	4.6	8.8
공기업	—	—	—	—	—	—	0.3	0.4	0.7	1.5	2.6
기타	—	—	—	—	—	—	0.2	0.4	0.5	0.9	1.6
재산세	4.5	4.0	4.4	4.8	7.1	10.4	17.6	23.2	36.7	53.4	68.8
자동차등록	0.1	0.1	0.2	0.2	0.4	0.6	0.8	1.0	1.1	1.4	2.0
자원세	—	—	—	—	—	—	0.5	0.5	0.7	1.8	5.0
특별평가	—	—	—	—	—	—	0.4	0.5	0.6	0.9	1.3
기타세 ³⁾	0.5	0.4	0.7	1.0	1.6	2.5	1.6	1.9	2.6	4.0	6.8

〈표 III-36〉의 계속

(단위: 십억달러)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간접세	308.5	425.5	558.2	708.9	728.6	762.8	807.2	863.8	928.2	976.2	1,015.5
연방정부	46.4	51.4	75.9	87.8	85.8	87.3	89.7	94.6	99.2	98.0	97.7
소비세	34.3	33.9	56.1	66.7	65.2	67.4	68.2	71.4	73.9	71.3	68.9
휘발유	8.9	10.0	21.2	23.4	23.3	23.3	24.0	24.2	25.8	25.8	26.1
주류	5.1	5.7	7.3	7.8	7.9	8.1	8.2	8.4	8.6	8.9	8.7
담배류	4.5	4.2	5.9	6.7	7.1	7.4	7.1	7.1	8.3	7.9	7.8
경유	2.6	3.3	6.6	8.6	8.6	8.9	9.0	9.2	9.8	9.5	9.5
공항	2.4	3.5	5.7	9.9	9.1	10.4	10.5	12.1	12.6	12.9	13.9
원유이윤 ⁴⁾	5.2	-	-	-	-	-	-	-	-	-	-
기타 ¹⁾	5.5	7.1	9.4	10.2	9.3	9.3	9.4	10.4	8.9	6.3	3.0
관세	12.2	17.5	19.8	21.1	20.6	19.9	21.4	23.3	25.3	26.7	28.8
기타 ²⁾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지방정부	262.1	374.1	482.4	621.1	642.8	675.5	717.5	769.2	829.0	878.2	917.8
판매세	131.1	184.3	242.7	316.6	321.1	330.2	347.7	370.0	399.1	421.5	436.5
주정부	109.0	152.5	200.5	255.5	259.6	267.3	281.8	300.1	322.7	339.7	351.1
일반	72.3	103.4	135.1	177.8	179.5	181.7	189.9	204.8	220.0	232.3	239.4
휘발유	14.0	20.1	25.7	30.4	31.5	32.3	32.6	33.8	35.0	36.2	36.8
주류	3.1	3.3	3.6	4.1	4.2	4.2	4.5	4.6	4.9	5.1	5.3
담배류	4.4	5.8	7.3	8.5	8.6	10.4	11.7	12.6	13.6	14.6	15.9
공기업	6.2	6.7	7.9	8.8	9.5	10.1	10.3	10.5	10.9	11.5	11.7
보험수입	4.8	7.5	9.0	9.8	10.3	11.5	13.1	14.4	15.0	15.1	15.3
기타	4.3	5.7	11.9	16.0	15.9	17.0	19.7	19.2	23.3	24.9	26.7
자치단체	22.1	31.8	42.2	61.1	61.6	62.8	65.9	69.9	76.4	81.8	85.4
일반	15.5	22.2	29.3	43.5	43.5	44.0	46.1	49.0	53.9	58.1	60.7
공기업	4.0	5.1	7.2	9.2	9.9	10.3	10.6	11.3	12.1	12.7	13.3
기타	2.6	4.4	5.7	8.4	8.2	8.4	9.2	9.6	10.4	11.0	11.4
재산세	107.5	161.5	202.6	254.6	269.3	290.1	307.9	327.5	347.5	369.6	390.9
자동차등록	2.6	3.6	5.5	6.7	6.6	6.9	7.1	7.6	7.9	8.2	8.4
자원세	7.0	5.2	4.0	5.3	5.6	4.2	5.8	6.9	9.0	10.4	11.5
특별평가	2.1	2.4	3.1	3.9	4.5	5.4	6.1	6.2	6.7	7.3	8.0
기타세 ³⁾	11.8	17.1	24.4	34.0	35.7	38.7	42.9	50.9	58.8	61.1	62.5

주: 1) 전화, 타이어, 석탄, 핵원료 트럭 등에 부과되는 세금.

2) 1933~45년 사이에 자본스톡에 대한 과세.

3) 사업면허와 인지세 포함.

4) Crude oil windfall profit tax.

자료: Tax on Products and Imports(www.bea.gov/national/nipaweb).

나. 연방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수입

〈표 Ⅲ-37〉은 보다 구체적으로 1995~2007년 사이에 연방소비세 세수를 세목별로 나타내고 있다. 세수가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는 과다 징수나 면세용 사용으로 인한 공제 혹은 환급으로 인한 부족분을 의미한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방소비세 세수는 약 713.1억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연방세수의 약 3%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제조업자세가 381억달러(휘발유 258.2억달러)로 연방소비세의 53.4%를 차지한다. 이외 시설 및 서비스 부담금이 115.1억달러, 소매세가 약 29.5억달러, 보험상품세 4.3억달러, 트럭/버스도로세가 10.8억달러, 환경세 3.4억달러, 주류 및 담배세가 182.6억달러, 총기류세가 2.9억달러 등이다.

연방소비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자세는 주로 휘발유, 경유, 등유와 항공유 등 연료에 대한 세금이 주종을 이루고 이외 연비세(Gas Guzzler Tax), 타이어, 석탄, 백신, 낚시용구, 활과 화살 등에 대한 세금이 있다. 연료의 경우 상업용과 비상업용을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한다. 시설 및 서비스세에서는 항공 승객 및 화물운송(107.7억달러)이 대부분의 세수를 차지하고 이외 통신서비스와 항만과 공항시설 이용에 따른 세금이 있다.

소매세에서는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트럭 등의 판매에서 징수한 세금이 28.7억달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2002년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이미 폐지된 사치세 이외 천연가스와 경유 등 연료에 대해서도 소매세가 부과된다. 소매세에서 연료의 경우 제조업자세가 부과되지 않은 연료에 과세하므로 세수가 많지 않다. 제조업자세와 소매세에서 연료에 대한 소비세는 시한을 두고 과세되지만 철폐시기가 연장되면서 영구세화되고 있다. 이외 원유에 대해서는 원유 유출이나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초과이득세(windfall tax)의 형식으로 이따금 과세되기도 한다.

주류 및 담배에서 징수한 세금은 각각 93.5억달러와 147.4억달러이다. 또한 원유 누출 등에 따른 환경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세가 있고 해외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보험에 대한 세금, 도박세 그리고 총기류에 대한 과세도 있다. 주류와 담배 그리고 총기에 대한 과세는 국세청이 아니라 2003년 국토안보법에 따라 신설된 재무부 산하의

알코올·담배 거래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이 따로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대법원은 일련의 연방소비세에 대하여 수출품에 대한 과세가 위헌임을 판정하고 있다.

〈표 III-37〉 연방정부 소비세 세수실적과 대표세율

(단위: 백만달러)

	1995	2000	2005	2006	2007	대표세율
총세수 ¹⁾	59,298.0	70,648.0	75,194.0	76,080.0	71,310.0	
총세수	44,980.6	54,810.0	57,252.1	57,989.5	53,049.6	
소매세						
사치세						초과 금액의 9%(가격)
승용차	519.1	407.2	1.5	0.0	0.1	\$40,000 (2003년 폐지)
보트	0.6	--	--	0.0	0.0	\$100,000 (1993년 폐지)
비행기	0.0	0.0	--	0.0	0.0	\$250,000 (1993년 폐지)
귀금속	-0.2	0.0	--	0.0	0.0	\$10,000 (1993년 폐지)
모피	0.0	0.0	0.0	0.0	0.0	\$10,000 (1993년 폐지)
염색 경유(기차용)	207.8	170.1	93.0	61.1	-21.1	\$0.024/갤런
재고	0.8	0.0	0.0	0.0	0.0	
염색 경유(버스용)	-2.3	2.3	-1.1	-3.4	-1.3	\$0.074/갤런(2005년 폐지)
특수 자동차연료	33.9	19.5	12.7	10.8	0.6	\$0.136/갤런
재고	0.0	0.0	0.0	0.0	0.0	
압축 천연가스	0.9	1.1	1.4	1.0	0.4	\$0.183/갤런상당
알코올연료 ²⁾	0.2	0.9	2.7	2.1	6.9	다양
내륙수용 연료	128.7	118.7	103.4	99.1	90.3	\$0.224/갤런(2007년 폐지)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등	2,039.6	2,775.8	3,008.5	3,549.8	2,871.2	12%(가격)
제조업자 소비세						
Gas guzzlers세(연비세) ²⁾	73.5	70.8	163.8	201.7	178.7	다양
도로용 타이어 ²⁾	389.9	420.3	471.1	44.8	-89.8	다양
항공용 휘발유 ³⁾	2.4	58.5	39.8	40.7	44.2	\$0.194/갤런
개스홀용 이외 휘발유						
총세수(재고 제외)	19,918.5	21,040.8	23,725.8	25,517.8	25,772.3	\$0.184/갤런
재고	3.1	0.0	0.1	0.0	0.0	
등유(버스/기차용 제외)	6,733.1	8,229.8	9,376.6	9,595.3	9,766.8	\$0.244/갤런
재고	0.9	-0.1	0.0	0.0	0.0	
개스홀용 휘발유¹⁾						
총세수						
알코올 5.7~7.7%	13.8	0.0	3.6	-0.0	0.0	\$0.16369/갤런(2005년 폐지)
알코올 7.7~10%	20.6	4.3	0.0	0.0	0.0	\$0.15596/갤런(2005년 폐지)
알코올 10%~	271.7	265.3	73.2	43.1	0.0	\$0.14666/갤런(2005년 폐지)
재고						
개스홀(Gasohol)¹⁾						
총세수						
알코올 5.7~7.7%	203.5	25.9	608.8	0.7	-16.5	\$0.15436/갤런(2005년 폐지)
알코올 7.7~10%	359.6	59.1	35.5	0.0	-2.6	\$0.14369/갤런(2005년 폐지)
알코올 10%~	740.5	2039.4	833.0	-1.1	-0.4	\$0.132/갤런(2005년 폐지)
재고	0.0	0.0	0.0	0.0	0.0	

〈표 III-37〉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1995	2000	2005	2006	2007	대표세율
비상업용 항공연료 (휘발유 제외)						
총세수	176.5	159.3	1027.9	-520.5	-103.8	\$0.219/갤런
재고	0.0	0.0	0.0	0.0	0.0	\$0.175/갤런
상업용 항공연료 (휘발유 제외)	12.8	667.6	-98.2	451.9	450.7	\$0.044/갤런
등유 (1998. 7. 이후)	n.a.	79.6	52.8	1064.5	992.4	\$0.244/갤런
석탄						
지하석탄						
4.4% 판매가격	138.9	197.5	85.8	54.2	38.3	4.4%(가격)
\$1.10/톤	246.5	113.2	261.1	275.6	299.7	\$1.10/톤(<4.4%)
지상석탄						
4.4% 판매가격	64.7	79.8	134.1	136.1	159.6	4.4%
\$0.55/톤	151.7	132.5	131.5	141.9	153.8	\$0.55/톤(<4.4%)
백신 ²⁾	176.8	163.5	196.4	254.8	336.7	\$0.75/개
낙시용구	96.8	100.5	101.6	79.1	84.9	10% 판매가격
선외엔진, 음파탐지기	2.8	2.0	2.4	2.7	3.1	3% 판매가격
활화살	20.5	20.5	23.9	26.5	28.0	11~12.4% 판매가격
시설 및 서비스세						
전화 등 통신 서비스	3,825.7	5,645.2	5,851.5	4,607.9	739.8	3%
승객 항공운송 서비스	4,928.0	6,963.6	7,047.8	7,696.5	8,017.6	7.5%+\$3.3/인
국제관광항공시설	256.0	1,323.6	1,881.4	1,997.2	2,229.1	\$15.1/인
						\$7.5(AL, HA)
화물항공운송 서비스	334.7	520.6	477.8	517.0	528.0	6.25%
외국 보험상품세	140.3	131.7	373.6	403.1	427.6	보험료의 1% 혹은 4%
도박관련세						
일부 도박 ²⁾	15.1	10.7	⁹⁾	⁹⁾	⁹⁾	\$0.25 혹은 도박금 2%
도박업자세(영업세) ²⁾	1.4	⁹⁾	⁹⁾	⁹⁾	⁹⁾	\$50 혹은 \$500/1인/년
기타 소비세						
수상승객운송	17.1	24.9	36.1	36.4	36.8	\$3.00/1인
트럭/버스 도로 사용세 ¹⁰²⁾	694.6	893.5	1,327.3	1,083.9	1,076.3	\$75-\$550/년
수입원유(Superfund)	291.7	n.a.	n.a.	n.a.	n.a.	\$0.097/B(1996 폐지)
환경세						
국내원유(Superfund)	291.7	0.0	0.0	0.0	0.0	\$0.097/B(1996년 폐지)
수입원유(Superfund)	325.3	2.7	0.0	-0.6	0.0	\$0.097/B(1996년 폐지)
국내원유(기름방출기금)	1.0	0.0	0.0	74.7	129.1	\$0.05/B(2006년 부활)
수입원유(기름방출기금)	--	0.3	0.0	100.0	210.6	\$0.05/B(2006년 부활)
일부 화학제품 ²⁾	267.5	2.4	0.0	0.7	0.0	\$0.22-4.87/톤(1996 폐지)
일부수입재(Superfund) ²⁾	19.0	0.3	0.0	0.0	0.0	(1996 폐지)
오존파괴 화학품 ²⁾						
총세수	434.2	42.6	1.8	0.7	1.9	다양
재고	61.9	2.3	0.5	0.2	-0.2	
오존파괴물 함유 수입품 ²⁾	74.6	17.6	9.3	6.9	5.8	다양

〈표 III-37〉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1995	2000	2005	2006	2007	대표세율
개인재단 부과세						
순투자소득 ⁴⁾	191.7	503.5	384.6	505.6	650.3	1 혹은 2%
추가 소비세 ⁵⁾	0.9	2.4	7.4	4.2	3.6	다양
폐병(Black Lung) 기금 ²⁾	0.3	0.0	0.0	0.0	0.0	다양
연금 등						
최소 자금기준 이하	6.4	0.4	0.0	0.0	0.0	5 혹은 10%
비공제 기여	2.7	0.0	0.0	0.0	0.0	10%
개인은퇴연금 초과기여	8.5	10.2	⁹⁾	⁹⁾	⁹⁾	6%
금지된 거래	9.0	0.4	0.0	0.0	0.0	5%
일부 초과기여	1.7	⁹⁾	⁹⁾	⁹⁾	⁹⁾	10%
연금자산 고용인 이전	46.4	0.0	0.0	0.0	0.0	20%
벌금 ²⁾	1.9	0.0	0.0	0.0	0.0	다양
미지급 투자금						
부동산투자기금	0.0	0.0	0.0	0.0	0.0	4%
규제투자회사	0.0	0.0	0.0	0.0	0.0	4%
국내원유 초과이익세¹⁾	- 117.5	0.0	0.0	0.0	0.0	1988 폐지
기타 IRS 세금 ²⁾	20.1	40.2	0.0	0.0	0.0	다양
분류불명 ⁶⁾	n. a.	1,191.9	-359.3	3,601.8	16,522.2	
관세청,						
알코올·담배·총기청						
총징수액	14,317.4	15,830.0	17,941.9	18,090.5	18,260.4	
총납부의무세액 ⁷⁾	13,809.6	15,636.4	16,974.5	17,129.5	17,168.1	
증류주						
국산주	2,995.0	3,043.4	3,316.0	3,394.6	3,444.2	\$13.5/proof 갤런
수입주	652.3	816.9	1,135.4	1,235.3	1,284.4	\$13.5/proof 갤런
포도주						
국산주	469.1	517.8	566.8	574.7	589.4	\$1.07~13.50/갤런
수입주	119.9	174.3	240.0	258.9	284.8	\$1.07~3.4/proof갤런
맥주						
국산주	3,174.8	3,216.4	3,192.4	3,213.0	3,198.2	\$7 혹은 \$18/B
수입주	192.3	350.9	450.7	500.0	546.8	\$18/Barrel
담배제품						
국산품 ⁸⁾	5,865.9	7,019.9	7,408.2	7,350.7	7,194.0	
일반담배 ⁸⁾	5,868.2	6,684.4	7,166.9	7,086.2	6,924.5	\$19.5~40.95/천개
시가 ⁸⁾	39.1	94.0	189.7	198.2	204.2	\$1,828~48.75/천개
종아뷰브용 ⁸⁾	1.0	1.3	3.6	0.2	0.0	\$0.0122~0.0244/50개
씹는코담배 ⁸⁾	28.6	40.6	54.1	56.3	58.4	\$0.195~0.585/파운드
파이프용담배 ⁸⁾	5.1	12.5	20.1	21.7	22.1	\$1.0969/파운드
재고 ⁹⁾	-	261.9	0.0	0.6	0.0	
수입품	44.9	196.1	429.1	351.5	336.5	
총기 및 탄약	184.3	187.8	225.8	248.7	287.1	10 혹은 11% 가격
영업세	111.0	102.8	10.2	2.8	2.1	\$250~\$1,000/업자

- 주: 1) 마이너스 값은 정산후 환급을 의미함.
 2) IRS 기준의 총 부과세액.
 3) 총징수액.
 4) 휘발유세에 부가되는 세금임.
 5) 비과세 자선기금 및 해외민간 기금 제외.
 6) 자영거래, 법정 지급금, jeopardizing investment, 과세대상 지출 등에 대한 세금임.
 7) 1998년 이후 특정 소비세로 분류되지 않고 Federal Tax Deposit System을 통하여 징수한 세금 포함.
 8) 관세청이 징수한 수입품에 대한 세금 포함.
 9) 과세 조정 이전의 통계임.
 10) 알코올연료(개스홀)는 2005년 이후 감면세율을 폐지하고 휘발유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세액공제 허용.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Pub. 1136 and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 Tax Collections.

6. 유산·증여세

가. 유산·증여세 세수규모 및 비중

각 세목별 신고건수와 세금 납부액 규모는 <표 Ⅲ-38>과 <표 Ⅲ-39>에 제시되어 있다⁷³⁾. 우선 <표 Ⅲ-38>에서 보면 유산세의 경우 신고건수가 1975년 약 22만 6천건에서 2007년 4만 7천건으로 줄었다. 이는 물론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EGTRRA)⁷⁴⁾으로 면세금액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신고 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유산신탁기금 등을 통하여 상속을 피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이들 기금을 설립하여 그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신고하는 건수는 1975년 156만 4천건에서 2007년 373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73) 통계가 역년(calendar year) 기준인지 혹은 재정연도(fiscal year) 기준인가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 2001년 fiscal year는 2000년 calendar year로 볼 수 있다.

74)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표 III-38〉 유산·증여세 신고 및 양식 수(1975~2007년)

(단위: 천개, %)

신고서 및 양식 종류	신고서 및 양식 개수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유산/유산신탁기금 소득세, Forms 1041 and 1041S	1,564	1,882	2,125	2,681	3,191	3,529	3,722	3,699	3,751	3,730
유산세, Forms 706, 706NA, 706GS(D), and 706GS(T)	226	147	81	61	81	124	74	55	60	47
증여세, Form 709	273	215	98	148	216	309	262	266	264	255

자료: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Fall 2002 Pub, 1136.

또한 2001년을 기준으로 볼 때 면세액이 67만 5천달러에 달하므로 신고를 해도 그 중에서 유산세를 실제 납부하는 비율은 적었다. 이에 비하면 면세액이 2001년 이후 변화가 없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신고건수가 1975년 27만 3천건에서 1980년대 약 10만건으로 36%까지 줄어들었으나 그 이후 증가하여 약 25~26만건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 증여세 신고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통합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등 1976년 유산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이 통합되면서 증여를 할 동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표 III-39〉에서 보듯이 유산·증여세의 GDP 대비 비중은 0.2~0.3%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면 전체 소득세의 GDP 비중은 2007년 당시 약 11%에 달한다. 따라서 세수를 기준으로 하면 유산·증여세는 그다지 중요한 세목이 아니다. 즉, 유산·증여세가 총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 당시 2.6%에 달하였으나 그 후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1982년 1.4% 그리고 2007년 1.0%로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전체 내국세 대비 세수 비중이 1%를 약간 상회할 뿐이다. 한편 이 중에서도 증여세가 차지하는 규모는 매우 작아서 2007년의 경우 그 세수규모는 약 21억달러로 유산세 225억달러의 9.3%에 달한다.

〈표 III-39〉 유산·증여세의 세수와 내국세 비중(1972~2007년)

(단위: 억달러, %)

	내국세	총소득세	유산상속세		내국세	총 소득세	유산상속세
1972	2,098.6 (16.9)	1,438.0 (11.6)	54.7 (0.4)	1990	10,563.7 (17.6)	6,502.4 (10.9)	117.6 (0.2)
1973	2,377.9 (17.2)	1,641.6 (11.8)	49.8 (0.4)	1991	10,868.5 (17.2)	6,604.8 (10.5)	114.7 (0.2)
1974	2,689.5 (17.9)	1,846.5 (12.3)	51.0 (0.3)	1992	11,208.0 (16.9)	6,756.7 (10.2)	114.8 (0.2)
1975	2,938.2 (18.0)	2,021.5 (12.4)	46.9 (0.3)	1993	11,766.9 (16.7)	7,173.2 (10.2)	128.9 (0.2)
1976	3,025.2 (16.6)	2,057.5 (11.3)	53.1 (0.3)	1994	12,764.7 (17.2)	7,740.2 (10.5)	156.1 (0.2)
1977	3,581.4 (15.6)	2,468.1 (10.7)	74.3 (0.3)	1995	13,757.3 (17.6)	8502 (10.8)	151.4 (0.2)
1978	3,997.8 (15.6)	2,784.4 (10.8)	53.8 (0.2)	1996	14,865.5 (17.9)	9,343.7 (11.2)	175.9 (0.2)
1979	4,604.1 (16.5)	3,229.9 (11.6)	55.2 (0.2)	1997	16,232.7 (18.5)	10295.1 (11.7)	203.6 (0.2)
1980	5,193.8 (16.6)	3,599.3 (11.5)	65.0 (0.2)	1998	17,694.1 (19.1)	11,413.4 (12.3)	246.3 (0.3)
1981	6,068.0 (18.6)	4,065.8 (12.5)	69.1 (0.2)	1999	19,041.5 (19.4)	12,185.1 (12.4)	283.9 (0.3)
1982	6,322.4 (17.9)	4,186.0 (11.8)	81.4 (0.2)	2000	20,969.2 (20.8)	13,727.3 (13.6)	297.2 (0.3)
1983	6,272.5 (15.9)	4,114.1 (10.5)	62.3 (0.2)	2001	21,288.3 (20.4)	13,649.4 (13.1)	292.5 (0.3)
1984	6,804.8 (16.2)	4,370.7 (10.4)	61.8 (0.1)	2002	20,166.3 (19.3)	12491.7 (12.0)	272.4 (0.3)
1985	7,428.7 (16.7)	4,740.7 (10.6)	65.8 (0.1)	2003	19,529.3 (17.8)	11,813.6 (10.8)	228.3 (0.2)
1986	7,822.5 (16.5)	4,974.1 (10.5)	71.9 (0.2)	2004	20,185.0 (17.3)	12,208.7 (10.4)	255.8 (0.2)
1987	8,862.9 (17.3)	5,683.1 (11.1)	76.7 (0.2)	2005	22,689.0 (18.3)	14,146.0 (11.4)	256.1 (0.2)
1988	9,351.1 (17.0)	5,833.5 (10.6)	77.8 (0.1)	2006	25,186.8 (19.1)	16,171.8 (12.3)	286.9 (0.2)
1989	10,133.2 (17.5)	6,327.5 (10.9)	89.7 (0.2)	2007	26,915.4 (19.5)	17,617.8 (12.8)	269.8 (0.3)

주: 법인소득세에서 면세 대상 영업소득세 포함.

자료: IRS Data Book, FY 2007, Publication 55b.

나. 유산세 신고

지난 20년간 유산세의 변동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자 수와 과세대상 신고건수가 지난 약 2000년까지 약 2배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7년보다 2007년의 신고건수가 오히려 적다. 유산세 납세의무액도 1987년 63.6억달러에서 2000년 당시 244억달러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200억 달러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건당 납세액은 1987년 약 30만달러에서 2007년 약 129만달러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물론 2001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유산을 상속하는 납세자의 신고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III-40〉 유산세 신고인, 신고건수 및 납세의무액과 비중(1987~2007년)

(단위: 건, 백만달러, %)

	신고자수	과세대상 신고건수	유산세 납세의무액	건당 납세액	연방 총수입	유산세 비중
1987	45,113	21,335	6,358	0.298	854,353	0.74
1988	43,683	18,948	6,299	0.332	909,303	0.69
1989	45,695	20,695	7,487	0.362	991,190	0.75
1990	50,367	23,104	8,999	0.389	1,031,969	0.87
1991	53,575	24,781	9,100	0.367	1,055,041	0.86
1992	59,176	27,397	10,109	0.369	1,091,279	0.93
1993	60,207	27,506	10,335	0.376	1,154,401	0.90
1994	68,595	31,918	12,391	0.388	1,258,627	0.98
1995	69,755	31,563	11,841	0.375	1,351,830	0.88
1996	79,321	37,711	14,456	0.383	1,453,062	0.99
1997	90,006	42,902	16,637	0.388	1,579,292	1.05
1998	97,856	47,475	20,350	0.429	1,721,798	1.18
1999	103,979	49,863	22,915	0.460	1,827,454	1.25
2000	108,322	52,000	24,399	0.469	2,025,218	1.20
2001	108,071	51,736	23,531	0.455	1,992,426	1.18
2002	99,603	45,018	21,394	0.475	1,853,395	1.15
2003	73,128	33,302	20,794	0.624	1,782,532	1.17
2004	65,039	31,329	21,612	0.690	1,880,279	1.15
2005	45,070	20,250	21,672	1.070	2,153,859	1.01
2006	49,050	22,798	24,653	1.081	2,407,254	1.02
2007	38,031	17,416	22,508	1.292	2,540,096	0.89

자료: Federal Estate Tax Return(1998~2007), SOI, IRS.

1934년 이후를 보면 우선 사망자 가운데 유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은 1934년 약 0.9%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9년 당시 약 2.3%의 사망자가 유산세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04년 당시 0.8%만 유산세를 납부한다. 총유산(gross estate)에서 유산세가 차지하는 비중 즉 유산세의 실질 평균세율은 1934년 7%에서 점차 증가하여 1970년대 12%, 1980년대 17% 수준에서 1998년 19.2%까지 증가하였고 그 후 2004년에는 21.8%에 달하게 된다. 이는 면세액 증대로 소액 신고는 줄어들고 그 대신 고액 유산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41〉 유산세 과세대상 신고인 비율과 실효세율(1934~2004년)

(단위: 천명, 명, 백만달러, %)

	사망자수	과세대상 신고				
		신고자수	신고자 비율	총유산	유산세	실효세율
1934	984.0	8,655	0.88	2,197.9	153.8	7.00
1936	1,257.3	12,010	0.96	2,561.9	305.8	11.9
1940	1,237.2	13,336	1.08	2,578.3	291.8	11.3
1946	1,239.7	18,232	1.47	3,993.3	622.0	15.6
1950	1,304.3	18,941	1.45	4,655.9	577.4	12.4
1956	1,289.2	32,131	2.49	8,903.6	1,176.7	13.2
1960	1,426.1	45,439	3.19	12,733.5	1,618.5	12.7
1965	1,578.8	67,404	4.27	18,820.1	2,414.3	12.8
1969	1,796.1	93,424	5.20	23,459.5	3,000.0	12.8
1972	1,854.1	120,761	6.51	33,293.6	4,153.3	12.5
1976	1,819.1	139,115	7.65	40,578.4	4,979.1	12.3
1982	1,897.8	34,426	1.81	31,903.8	4,937.2	15.5
1983	1,945.9	34,899	1.79	33,434.5	5,073.8	15.2
1984	1,968.1	30,436	1.55	34,201.6	5,012.8	14.7
1985	2,015.1	22,326	1.11	35,168.8	6,044.3	17.2
1986	2,033.9	21,923	1.08	37,799.3	6,276.8	16.6
1987	2,053.1	18,157	0.88	40,907.2	6,393.0	15.6
1988	2,096.7	20,864	1.00	43,413.1	7,432.4	17.1
1989	2,079.0	23,096	1.11	51,063.0	8,953.2	17.5
1990	2,079.0	24,647	1.19	53,698.0	9,217.5	17.2
1991	2,101.7	26,680	1.27	55,363.7	9,617.3	17.4
1992	2,111.6	27,235	1.29	59,707.1	10,474.9	17.5
1993	2,204.4	32,062	1.45	72,047.4	12,559.8	17.4
1994	2,216.7	32,565	1.47	69,492.8	12,312.4	17.7
1995	2,252.5	36,651	1.63	78,756.3	14,259.0	18.1
1996	2,314.3	41,714	1.80	95,003.3	16,336.3	17.2
1997	2,258.4	47,800	2.12	104,860.6	19,957.7	19.0
1998	2,282.1	49,913	2.19	117,965.3	22,676.2	19.2
1999	2,336.8	53,819	2.30	135,076.4	24,809.8	18.4
2000	2,349.4	51,159	2.18	126,095.8	24,032.6	19.1
2001	2,363.1	50,469	2.14	129,638.5	23,744.2	18.3
2002	2,389.5	28,074	1.17	105,339.4	18,841.1	17.9
2003	2,394.7	27,309	1.14	90,429.0	18,709.0	20.7
2004	2,344.4	19,294	0.82	102,078.0	22,219.7	21.8

자료: Table 17(<http://www.irs.gov/taxstats/article/0,,id=188060,00.html>).

2007년 기준으로 유산세 신고의 항목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38만건 신고 가운데 45.8%가 과세대상이었고 나머지는 면세되었다. 금액으로 보면 전체 유산 2,031억 달러에서 과세대상 유산의 비중은 55.2%에 달하며 나머지 44.8%가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특히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으로 비과세된 경우가 약 621억달러로 전체 비과세분의 68.3%에 이른다. 총유산에서 장례비와 부채와 각종 세액공제를 제하고 난 순유산세는 약 225억달러로 총유산 대비 실효세율은 11.1%에 이른다(과세대상 유산 대비 실효세율은 20.1%). 한편 배우자 상속 이외 기부와 세액공제가 유산세 면세의 주된 이유가 된다.

〈표 III-42〉 유산세 과세 결정 내역(2007년)

(단위: 건, 백만달러)

	총신고		과세대상 신고		비과세대상 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유산	38,031	203,095	17,416	112,165	20,615	90,931
장례비용	32,960	341	16,618	168	16,342	173
유산 집행인 커미션	13,042	1,273	10,388	1,100	2,654	173
변호사비	23,175	915	14,880	704	8,295	211
기타비용	23,336	1,140	14,894	976	8,442	164
부채	27,874	7,624	15,352	3,758	12,521	3,866
생존배우자상속	17,422	62,060	1,585	11,176	15,837	50,881
기부금	7,672	19,702	4,254	12,230	3,419	7,472
총공제	37,997	93,246	17,406	30,273	20,591	62,973
과세대상유산	36,458	106,701	17,415	78,796	19,043	27,904
조정된 증여	10,059	7,704	5,881	5,748	4,178	1,956
조정된 유산	36,550	114,405	17,416	84,544	19,134	29,861
잠정유산세	36,550	47,878	17,416	36,515	19,134	11,363
증여세 기납부액	2,624	1,442	1,906	1,216	718	226
세액공제	36,518	46,438	17,416	35,299	19,102	11,139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	38,031	27,366	17,416	12,685	20,615	14,681
주상속세 공제	11,608	3,394	7,841	3,095	3,767	299
기타공제	709	135	622	105	87	29
순유산세	17,416	22,508	17,416	22,508	-	-
세대생략세	184	122	-	-	-	-
공동자산(common property)	4,946	39,873	347	3,677	4,599	36,196
합동자산(joint property)	18,210	9,576	5,483	1,962	12,727	7,614
상호기금(mutual fund)	31,718	20,042	14,945	12,157	16,772	7,885
qualified terminal interest	7,810	30,831	654	7,486	7,157	23,343
생애이전	17,121	67,789	8,011	38,456	9,110	29,333

자료: <http://www.irs.gov/taxstats/article/0,,id=188060,00.html>.

유산이 상속되는 자산의 형태를 보면 주식이 전체 금액의 34.1%로 가장 많고 개인 주택을 제외한 사업용 등의 부동산(16.3%), 개인주택(8.1%), 지방정부 채권(9.1%), 현금(11.4%), 보험(9.4%), 현금(8.8%) 등이다. 이 밖에 연방정부채권, 회사채, 예술품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한편 면세되는 유산의 유형을 보면 역시 주식이 29.3%로 가장 많고 기타 부동산 19.3% 그리고 주택 9.4%로 과세대상 신고와 큰 차이가 없다.

〈표 III-43〉 유산형태별 신고건수와 금액(2007년)

(단위: 건, 백만달러)

	총신고		과세대상 신고		비과세대상 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유산	38,031	203,095	17,416	112,165	20,615	90,931
개인주택	25,172	16,394	10,693	7,874	14,479	8,520
부동산	26,023	28,251	11,586	13,261	14,437	14,990
부동산(파트너십)	3,149	4,917	1,279	2,358	1,870	2,559
비공개주식	6,767	16,790	2,517	10,068	4,250	6,692
공개주식	30,909	52,397	14,497	32,406	16,412	19,990
지방정부채권	20,261	18,389	10,492	11,529	9,769	6,860
연방정부저축채권	4,000	300	2,138	167	1,863	133
기타연방정부채권	9,537	4,488	4,987	2,907	4,549	1,581
회사 및 외국채권	11,828	2,412	5,933	1,410	5,985	1,002
채권기금	4,838	461	2,732	277	2,106	184
분류불명	9,952	1,361	4,413	743	5,539	617
현금	37,360	17,905	17,285	10,912	20,075	6,993
보험: 액면금액	19,038	4,250	7,353	1,158	11,686	3,091
보험상품대출	1,784	101	592	43	1,192	58
농업자산	2,826	1,713	1,137	774	1,689	940
개인지분, 헤지펀드	740	1,432	333	1,079	408	353
기타 유한파트너십	6,420	5,159	2,819	3,157	3,601	2,003
주식회사 이외 사업	4,538	3,534	1,676	1,931	2,862	1,603
주택담보채권	8,983	4,343	4,214	2,590	4,768	1,753
연금	23,230	13,993	9,457	5,185	13,773	8,808
무형자산	2,942	871	1,574	439	1,368	433
예술품	3,168	1,510	1,832	761	1,335	750
기타 자산	32,977	2,326	15,007	1,214	17,970	1,112

자료: <http://www.irs.gov/taxstats/article/0,,id=188060,00.html>

다. 증여세 신고

1997년 이후 증여세 신고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1997년 18만 4천건에 이르는 신고가 2007년 약 24만 4천건으로 증가하였다. 과세대상 증여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다만 전체 증여 신고에서 과세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76%에서 2007년 64%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과세대상 증여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즉 실질세율은 1997년 17.3%에서 2007년 8.6%로 감소한 바 있다(전체 증여 대비 증여세는 10.0%에서 5.3%로 하락).

〈표 Ⅲ-44〉 연도별 증여세 신고 및 징수액

(단위: 백만달러, 건, %)

	총 증여	과세대상 증여	순세금	세대생략세	세금 합	세율 ²⁾
1997	32,296.2 (184,075) ¹⁾	19,045.2 (139,982)	3,224.7 (15,714)	65.2 (269)	3,290.0 (15,717)	17.3
2003	40,726.3 (235,782)	25,445.1 (174,108)	1,609.9 (6,662)	71.8 (461)	1,681.9 (6,985)	6.6
2004	34,525.4 (224,987)	20,185.7 (158,657)	1,201.9 (5,426)	22.8 (135)	1,244.8 (5,468)	6.2
2005	36,680.7 (261,370)	23,016.5 (167,335)	1,605.3 (7,018)	15.9 (60)	1,621.1 (7,026)	7.0
2006	38,474.2 (261,104)	24,344.5 (172,429)	1,628.3 (7,663)	26.0 (226)	1,653.8 (7,790)	6.8
2007	39,675.1 (243,686)	24,690.1 (156,537)	2,089.0 (8,384)	33.4 (090)	2,122.4 (8,629)	8.6

주: 1) () 안은 신고건수를 의미.

2) 세율은 세금 합을 금년도 과세대상 증여로 나눈 수치.

자료: <http://www.irs.gov/taxstats/article/0,,id=188060,00.html>.

마지막으로 2007년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Ⅲ-45〉와 같다. 우선 전체 증여액 397억달러에서 부부(14억달러)와 기부(47억달러)로 인한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는 247억달러에 달한다. 증여세는 평생 면세가 가

능한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에 증여한 금액과 금년도 증여를 합하고 또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감안해야 한다. 즉, 이전의 증여액 253.8억달러를 금년 증여와 합한 금액이 929.3억달러이다. 이후 과거 납부한 증여세와 사용 가능한 통합세액 공제를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 결과 금년도에 납부한 증여세는 약 83.7억달러이지만 금년도 증여에 대한 세금 즉, 순세금은 20.9억달러이다.

〈표 III-45〉 증여세 과세 결정 내역(2007년)

(단위: 건, 백만달러)

	총신고		비과세대상 신고		과세대상 신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증여	243,686	39,675	235,302	31,382	8,384	8,293
총연간공제	231,216	8,868	223,192	8,126	8,024	741
부부공제	2,179	1,440	2,085	1,192	94	248
기부공제	4,831	4,710	4,266	2,991	565	1,718
과세대상 증여(금년도)	156,537	24,690	148,152	19,074	8,384	5,616
과세대상 증여(이전)	118,825	68,239	110,852	44,829	7,973	23,410
과세대상 증여(총합)	195,654	92,929	187,270	63,903	8,384	29,026
증여세(이전 증여)	118,498	25,379	110,525	15,563	7,973	9,816
증여세(금년도)	156,297	8,369	147,912	5,901	8,384	2,469
최대 통합세액공제	243,499	83,303	235,166	80,456	8,332	2,846
사용한 통합세액공제	119,813	13,317	111,833	10,850	7,980	2,467
사용가능 통합세액공제	236,190	69,999	232,790	69,618	3,401	381
특별 면제	1,659	7	1,358	6	300	1
적용된 통합세액공제	151,084	6,280	147,912	5,901	3,172	379
순세금(금년도 증여)	8,384	2,089	0	0	8,384	2,089
세대생략세	290	33	244	2	46	31
총세금	8,629	2,122	244	2	8,384	2,120

주: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란 유산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납세자가 생존한 동안 증여를 하고 공제받은 금액은 사망 이후 유산세에서 공제될 수 없음.

자료: <http://www.irs.gov/taxstats/article/0,,id=188060,00.html>.

7. 지방세 세수

가. 미국 지방정부 세수

참고로 미국 지방세 세수 규모와 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정부 총수입은 1930년 75억달러로 국내총생산 대비 8.2%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이 되면 총수입은 1조 9,165달러로 GDP의 약 14.2%를 차지하게 된다. 총수입 가운데 세입 규모는 1930년과 2007년 각각 66억달러와 1조 3,041억달러로 GDP 대비 7.2%, 9.4%를 차지한다. 2007년 당시 총수입과 조세수입의 격차에서 상당 부분은 연방정부의 이전에 의한 것이다. 즉,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지원은 1930년 당시 2억달러로 GDP의 0.2%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이 되면 그 규모는 2.7%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조세수입만을 보면 1930년 당시 약 47억달러에 이르는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세입 66억달러의 71.2%로 거의 대부분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합친 금액은 6억달러로 그 비중은 9.0%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7년이 되면 재산세의 세입 비중은 30.0%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 대신 판매세 33.5%, 소득세 22.9%, 법인세 4.7% 등으로 판매세와 개인세의 세입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1930~2007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재산세의 GDP 대비 비중은 1950년 43.0%로 감소하고 그 대신 판매세의 비중이 29.1% 그리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은 각각 4.8%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1970년 11.9%, 1980년 18.5%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법인세의 비중은 1980년 6.3%를 정점으로 그 후에는 감소하게 된다. 이에 비하면 판매세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33.0%로 증가한 이래 대개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외 지방정부가 보유한 자산으로부터의 배당, 이자, 로열티 등 수입이 2007년 당시 세입의 7.7%에 달하며 실업세 등 사회보장성 수입은 1.7%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III-46〉 미국 지방정부 세목별 수입 추이(1930~2007년)

(단위: 십억달러)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7
총수입	7.5	9.6	20.6	47.5	126.3	356.8	762.8	1,363.2	1,961.5
자산이전수입	0.2	0.2	0.6	3.0	6.2	18.6	25.0	43.7	58.7
재정수입	7.3	9.4	20.0	44.5	120.1	338.2	737.8	1,319.5	1,902.8
총세입	6.6	8.1	16.5	37.0	91.3	230.0	519.1	893.2	1,304.1
개인세	0.5	0.7	1.5	4.2	14.2	48.9	122.6	236.6	325.4
소득세	0.1	0.2	0.8	2.5	10.9	42.6	109.6	217.3	298.3
기타	0.4	0.4	0.7	1.7	3.3	6.3	13.0	19.4	27.1
판매세	0.5	1.8	4.8	12.2	31.6	82.9	184.3	316.6	436.5
재산세	4.7	4.4	7.1	16.2	36.7	68.8	161.5	254.6	390.9
판매 기타세	0.7	1.0	2.3	3.1	5.0	15.0	28.3	49.9	90.3
법인소득세	0.1	0.2	0.8	1.2	3.7	14.5	22.5	35.5	60.9
사회보장기여	0	0	0.2	0.5	1.1	3.6	10.0	11	22.8
자산소득	0.1	0.1	0.5	1.3	5.2	26.3	68.4	92.2	100.3
이전수입	0.5	0.9	2.3	4.5	21.1	79.5	133.5	315.4	481.3
연방정부	0.1	0.7	1.9	4.0	19.3	72.3	111.4	247.3	376.3
사업자	0.1	0.1	0.1	0.2	0.6	2.5	7.1	28.8	40.9
개인	0.3	0.1	0.3	0.3	1.2	4.7	14.9	39.2	64.1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http://www.bea.gov/national/nipaweb/TableView>).

지방정부 수입을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 보면 우선 주정부의 경우 재산세는 1902년 당시 전체 세입의 50%를 차지하였지만 1940년대에 이르면 그 비중이 8% 이내로 떨어지고 2007년에는 겨우 1.6%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 대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이 된다. 재산세를 대체하는 세목으로 주정부는 소득세(위스콘신, 1911), 자동차세(뉴욕, 1901), 유류세(1919) 그리고 1930년대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담배, 주류와 일반판매세를 이용하게 되었다.

주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세목은 개인소득세와 일반판매세이다. 우선 개인소득세는 1932년 당시 전체 세수의 3.9%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그 비중이 35.4%로 늘어났다. 이에 비하면 법인세 비중은 1932년 4.2%에서 2007년 7.1%로 증가하였다. 소득세의 납세 대상은 거주지 원칙으로 거주가 확정되면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과 관

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⁷⁵⁾. 일반판매세는 개인소득세와 비슷하게 중요하여 그 비중이 1932년 0.4%에서 2007년 31.5%로 늘어났다.

이외 유류, 담배 그리고 주세 등 개별판매세는 1990년대 초부터 1960년까지 전체 주정부 세수의 29%를 차지하여 재산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목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유류세는 1930~1950년대에 전체 세수의 2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개별판매세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2007년 현재 전체 세수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 상속증여세도 1920~1930년대 도입 당시에는 전체 세수의 약 7%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한 세원이었으나 2007년 세입 비중은 0.7%에 불과하여 점차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표 III-47〉 미국 주정부 세목별 수입 추이(1902~2007년)

(단위: 억달러)

	1902	1913	1922	1932	1945	1955	1975	1995	2000	2007
총세입	1.6	3.0	9.5	18.9	43.5	116.0	801.4	3,991.5	5,396.6	7,502.9
일반판매세	—	—	—	0.07	7.8	26.4	247.8	1,322.4	1,744.6	2,363.3
유류세	—	—	0.1	5.3	7.0	23.5	82.6	254.4	299.7	365.2
담배류세	—	—	—	0.2	1.5	4.6	32.9	73.5	83.9	152.6
주세	—	0.02	—	0.01	3.7	5.5	21.1	36.0	41.0	51.6
자동차세	—	0.05	1.5	3.4	4.1	11.8	39.4	124.1	151.0	193.6
개인소득세	—	—	0.4	0.7	3.6	10.9	188.2	1,256.1	1,945.7	2,659.1
법인세	—	—	0.6	0.8	4.5	7.4	66.4	290.8	325.2	533.8
재산세	0.8	1.4	3.5	3.3	2.8	4.1	14.5	95.2	110.0	121.6
상속증여세	—	—	0.7	1.5	1.4	2.5	14.2	49.0	80.0	49.0
천연자원세	—	—	—	0.2	0.8	3.1	17.4	44.7	43.7	107.3
기타	0.7	1.5	2.1	3.5	6.4	0.2	77.1	445.4	571.8	905.8

주: 1. 기타는 등록세, 보험료, 전기 등 공공서비스, 경주세, 주식회사 등록세 등을 포함.

자료: *State and Local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J.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West Group, 2001; U.S. Census Bureau(www.census.gov/govs/statetax).

75) *Compania Gen. de Tabacos v. Collector*, 275 U.S. 87, 100, 48 S.Ct. 100.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산세가 변함없이 주요한 세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1902년 당시 재산세의 세수 비중은 77.5%였는데 그 비중은 1950년대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1965년이 되면 재산세 비중은 41.1%로 떨어지게 되고 대략 40~50%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5년 미국 부동산 거품으로 재산세의 비중은 71.7%까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재산세 비중이 1950년대에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재정 수요에 비하여 자치단체 세수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자 자치단체들은 재원 발굴에 나서 소득세와 소비제품에 대해 판매세를 부과하였기 때문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판매세 도입이 활발해져 그 이전에는 뉴욕시(1934)와 뉴올리언스(1941)만이 부과하던 판매세가 이제는 7,500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판매세를 부과한다.

한 예로 개별판매세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 6.0%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증가하여 2005년이 되면 그 비중은 16.3%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외 소득세의 비중도 같은 기간에 0.6%에서 4.7%까지 증가한 바 있다. 이외 지방자치단체들은 호텔 숙박, 음식점, 담배, 휘발유, 유흥업소 등의 다양한 제품과 사업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 세금과 수수료 등이 전체 세수의 3분의 1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표 III-48〉 미국 기초자치단체 세목별 수입 추이(1902~2005년)

(단위: 억달러)

	1902	1913	1922	1932	1950	1965	1980	1996	2005
재정수입	9.1	17.6	41.5	61.9	161.0	538.2	2,583.0	8,037.4	12,437.5
고유수입	8.6	16.6	38.3	53.8	116.7	385.8	1,558.7	5,332.6	7,675.5
총세입	8.0	15.4	35.5	48.8	95.9	327.0	1,300.3	4,387.4	4,843.9
재산세	6.2	11.9	29.7	41.6	70.4	221.5	656.1	1,994.7	3,473.2
개별판매세	—	0.03	0.2	0.3	4.8	20.6	81.6	428.3	791.4
소득세	—	—	—	—	0.6	4.3	49.9	159.9	227.2
등록세	0.8	1.1	0.8	0.9	3.9	8.1	76.3	123.1	n.a.
기타	0.9	2.3	4.8	6.1	16.0	72.5	436.4	1,681.4	2,831.6
공공서비스	0.6	1.2	2.7	4.6	18.1	49.1	210.6	676.7	1,094.5
주류업세	—	—	—	—	0.9	1.8	4.4	5.7	9.5
보험 관련	—	0.02	0.2	0.4	1.9	8.0	43.6	262.7	523.0
주정부	0.5	0.9	3.1	8.0	42.2	140.8	812.9	2,435.7	4,215.6
연방정부	0.04	0.06	0.09	10	2.1	11.6	211.4	269.1	546.4

주: 1. 재정수입은 주 및 연방정부 이전금 포함.

2. 보험관련 수입은 실업세와 은퇴연금 등을 포함.

자료: *State and Local taxation: Cases and materials*, J. Hellerstein and W. Hellerstein, West Group, 2001; Bureau of Economic Analysis(<http://www.bea.gov/national/nipaweb/TableView>).

Ⅳ.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1. 부시 행정부의 조세개혁

가. 부시 행정부의 조세감면⁷⁶⁾

2001~2003년 사이에 부시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위하여 소득세 감면과 상속세 폐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일련의 조세감면을 단행하였다. 우선 2001년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구조조정법(2001 EGTRRA)⁷⁷⁾을 시행하였고 2003년에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2003 JGTRRA)⁷⁸⁾을 제정하였다. 조세감면의 규모는 2010년까지 약 1.35조 달러에 달하여 과거 2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세금감면이었다. 다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몰조항을 두어 2011년까지 의회가 이를 영구조항으로 입법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되도록 하였다⁷⁹⁾.

일련의 조세감면법은 우선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인하하였다. 우선 최저 세율에 해당하는 15% 구간을 나누어 10% 구간(독신 6,000달러, 부부합산 12,000달러)이 새로 도입되었고 28%, 31%, 36%, 39.6% 세율이 2003년부터 25%, 28%, 33%, 35%로 인하되었다⁸⁰⁾. 또한 부부합산의 15% 세율구간과 표준공제⁸¹⁾를 독신의 두 배로 인상하여 결혼에 관한 조세상의 차별을 철폐하였다⁸²⁾. 자녀 세액공제(자녀 1인당 500 →

76) Joint Committee on Taxation(2001, 2003)과 Gale W.G. and Orszag(2004).

77)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78) The Job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2003 JGTRRA).

79) 10년 이상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상원에서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Byrd Rule)

80) 원래 세율인하는 점진적으로 이행되어 2003년에는 27~38.6%가 적용되고 2006년부터 상기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03 JGTRRA로 앞당겨졌다.

81) 부부의 표준공제는 2003 JGTRRA로 원래 2003~2004년 사이에 독신(4,750달러)의 두 배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2005년에는 174%로 줄어들고 2010년까지 다시 두 배로 늘어난다. 그러나 2004년 근로자 가족 조세감면법으로 2005년에도 표준공제가 두 배로 유지되었다.

82) 다만 최저한세(AMT)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조세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중산층의 경우에도

1,000달러)와 자녀 부양을 위한 공제한도(2,400 → 3,000달러)를 늘리고 상세공제에 대한 금액 한도도 철폐하였다⁸³⁾.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녀 보육비용의 25%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과세저축 한도가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되었고 초중등교육도 대상에 포함되었다(educational IRA). 또한 최대 4,000달러까지 대학 학비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학비대출에 대한 이자공제 기한(60개월)도 철폐하였다.

한편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10%, 20% 세율이 2003년부터 각각 5%(2008년 0%), 15%로 인하되는데 이는 최저한세에도 적용된다⁸⁴⁾. 또한 국내기업과 일부 해외기업(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배당소득도 과세 목적상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인화된 양도소득 세율로 과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8%와 18%의 종전 5년 이상 보유 특별양도세율은 철폐되었다. 다만 소장품과 일부 소기업 주식의 세율(최대 28%)과 MACRS 감가상각을 적용받는 자산의 세율(25%)은 변함이 없다. 또한 60일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배당, 외국기업과 면세 기관의 배당 그리고 이자로 간주되는 상호저축은행의 배당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감면조항은 2009년이 되면 폐지되고 현행법이 다시 적용된다.

유산세의 경우 증여세와 세대생략세의 최고 세율(60%)을 2002년 50%부터 점진적으로 인하여 2007년 45%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공제면제 한도(unified credit)도 2002년 100만달러, 2004년 150만달러, 2006년 200만달러, 2009년 350만달러로 인상하고 2010년 유산세와 세대생략세가 폐지되도록 입법화하였다. 물론 2011년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산세는 자동적으로 200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유산세와 달리 폐지되지 않은 증여세의 면세한도(lifetime gift limit)는 1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최고 세율이 소득세 최고 세율인 35%로 인하된다.

일부 제한적으로 작용하여 이후 조정된 바 있다.

83) 자녀 세액공제도 2001년 600달러로 인상되고 이후 2005년 다시 700달러, 2010년 1천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2003 JGTRRA로 2003~4년 사이에 1천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가 2005년 다시 700달러로 인화된 후 2010년까지 1천달러로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2004년 근로자 가족 조세감면법으로 1천달러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84)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개인은퇴연금제도(IRA)와 (401(k)) 등 확정연금 등에 대한 세전 기여금 한도를 각각 5천달러와 1만 5천달러로 확대하였고 물가상승과 연동되었다. 연금 규정을 간소화하여 면세대상 연금(401(k), IRA)과 그렇지 않은 연금(401(a), 403(b), 457(b)) 사이의 자금 이전과 통합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50세 이상의 종업원은 5천달러까지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catch up provision). 중소기업이 종업원에게 연금플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세지원을 하고 개인사업자, 파트너십과 S 법인이 회사연금플랜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다.

주식회사의 초과유보세(accumulated earning tax)와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의 세율도 15%로 인하되었다. 중소기업이 2006년까지 새로 투자하면 10만달러를 한도로 즉시 감가상각이 가능하다(종전 2만 5천달러, Sec. 179). 또한 20년 이상 상각되는 자산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첫 해에 30% 대신 50%의 보너스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이외 2002~2006년 사이에 납세자가 원하면 어떤 자산이든 감가상각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 다만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004년 미국 고용창출법(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에서는 해외소득(Extra territorial Income) 예외조항 철폐에 따른 일시적 조정을 위하여 해외소득의 80%(2005년)와 60%(2006년)의 면제를 허용하였다. 2006년까지 연료에 대한 4.3% 일반기금 소비세를 철폐하였고 주류에 대한 세금도 폐지하였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공제 등 기업공제의 연장과 함께 재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소득 세액공제와 전기 자동차 구입에 관한 10% 세액공제(4천달러 한도)도 도입되었다⁸⁵⁾.

나. 2007년 경기부양법(Economic Stimulus Act of 2008)

부시 대통령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부양하기 위하여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하기로 하였다. 2007년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1인

85) 2004년 근로자 가족 조세구제법(The Working Families Tax relief Act of 2004)은 또한 10% 소득세율과 자녀소득 공제와 부부합산 표준공제 등을 2004년 수준에서 2010년까지 계속 유지되도록 연장하였다.

당 최대 600달러(부부합산 1,200달러)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17세 이하 자녀 1인당 300달러를 환급해 준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연금 수혜자도 소득(연금 혜택)이 3,000달러 이상이면 최소한 1인당 300달러(부부합산 6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2007년 연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 철도퇴직연금과 군인연금 대상자도 환급 대상이 된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없고 소득이 3,000달러 이하이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액은 소득에 따라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소득세 환급을 하지 않는다. 즉, 조정된 총소득(AGI)이 75,000달러(부부합산 150,000달러) 이상이면 조정된 총소득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5%만큼 감소한다. 한 예로 조정된 총소득이 80,000달러이고 납세세액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250달러(초과소득 5,000달러 $\times$ 0.05)를 제외한 350달러가 환급된다.

2. 대통령 자문위원회 연방세 개혁안⁸⁶⁾

가. 조세개혁의 필요성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의하면 미국 조세제도가 납세자의 결정을 왜곡하고 비생산적인 투자를 유발하며 근로와 저축의욕을 저해함으로써 약 1조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낭비하고 있다. 정확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미국 국민과 연방정부가 1,500억달러(가족당 1,000달러)를 지출하며 잘못된 공제제도의 이용으로 10억달러가 추가로 납부되고 있다. 세법 간소화를 시도한 1986년 조세개혁 이후 미국 의회는 100개의 법안을 통하여 세법을 15,000 차례 수정하였다. 세금 회피로 인하여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 납부액 사이에는 약 2,810억~3,200억달러의 차이(tax gap)가 난다. 또한 비슷한 처지의 납세자를 달리 대우하고 유사한 소득도 다르게 과세한다.

결론적으로 미국 조세제도는 불투명하고 복잡하며 자의적이고 경제성장을 저하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국제화, 복잡한 금융상품 개발, 세계화에 따른 경쟁 강화 그리고

86)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2005).

지적재산권의 소득 창출 등으로 납세환경이 빠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납세액을 정확하고 정당하게 부과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나. 조세개혁 권고안의 주요 내용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개인과 사업자를 위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간이한 세금신고를 권하고 있다. 우선, 누진세율을 유지하되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저축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두 번째로, 각종 인별 공제와 표준공제를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로 통합하고 EITC 등 근로 관련 세금혜택은 근로세액공제(Work Credit)로 통합한다. 특히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되는 소득공제(deduction) 대신 모든 납세자를 위한 세액공제(tax credit)를 활용한다.

세 번째로, 자가 주택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상세공제를 하는 35% 납세자뿐만 아니라 전체 납세자에게 확대하고 마찬가지로 의료보험비의 공제를 모든 납세자에게 허용한다. 상세공제를 하는 35%의 일부 납세자가 아닌 모두에게 공제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네 번째로, 소득구간과 부부 관련 납세조항을 독신자의 두 배로 조정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세금부담 증대를 막는다. 마지막으로, 2006년 약 2,100만명에게 적용되는 개인소득 최저한세와 법인 최저한세를 폐지한다.

〈표 IV-1〉 2005년 연방소득세 주요 내용

대상		
가족 관련		
세율	6개 구간: 10%, 15%, 25%, 28%, 33%, 35%	
최저한세	2006년 21백만명이 최저한세 대상, 2015년 52백만명 대상 추정	
인적공제	가족 1인당 \$3,200: 소득에 따라 단계적 감소	
표준공제	부부합산 \$10,000, 독신 \$5,000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1,000: 부부합산 소득 \$110,000~\$130,000까지 단계적 감소	
EITC	1인 자녀 최대 \$ 2,747 공제, 2인 \$4,536	
결혼세	같은 소득의 독신 남녀보다 결혼시 납부세액 증대	
세액공제/공제		
주택이자공제	주택대출 1.1백만달러까지 상세공제 허용	
기부금	상세공제 납세자에게만 허용	
건강보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제한 없는 면세 허용	
지방세	상세공제 납세자에게만 허용	
교육	HOPE와 평생교육 세액공제, 등록금, 교육대출 이자비용 공제: 소득에 따라 혜택 축소	
저축 및 은퇴		
확정기여연금	401(k), 403(b), 457 기타 고용주 연금	
확정혜택연금	고용주 기여금은 비과세	
퇴직저축	IRA, Roth IRA, 배우자 IRA - 기여금과 연금소득 한도	
교육비저축	Sec. 529와 Cowedell account	
의료비저축	MSA, HSA, Flexible Spending Arrangement	
배당소득	15% 혹은 이하 세율로 과세(2008년 이후 일반세율)	
양도소득	15% 혹은 이하 세율로 과세(2008년 이후 고세율)	
이자소득	일반소득세율 과세	
사회보장연금	여타 소득에 따라 3 tier 과세	
중소기업		
세율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율 과세	
기록보존	다수의 전문적인 회계방식	
투자	조기 감가상각, 2005년 중소기업 투자비용 \$102,000까지 경비처리	
대기업		
세율	8개 구간: 15%, 25%, 34%, 39%, 34% 35%, 38%, 35%	
투자	조기 감가상각	
이자지출	공제 허용	
이자소득	과세	
국제조세	역내외 소득 과세(사업이윤 이연과 외국세액공제)	
최저한세	사업소득에 대한 2차 과세제도 적용	
가족 관련		
세율	4개 구간: 15%, 25%, 30%, 33%	3개 구간: 15%, 25%, 30%
최저한세	폐지	
인적·표준	모든 납세자에 대한 가족 세액공제로 대체: \$3,300 부부합산, \$1,650 독신자	
자녀세액공제	(피부양자 납세자는 \$1,150), \$1,500 자녀 추가공제(여타 부양자 \$500)	
EITC	근로자공제로 대체하고 가족공제와 조율: 1자녀 가족 최대 세액공제: \$3,750(2자녀 이상 최대 \$5,800)	
결혼세	부부합산 세율구간과 여타 조항을 독신자의 두 배로 조정	

〈표 IV-2〉 대통령 자문위원회 연방세 개혁안의 주요 내용

대상	소득세 간소화 방안	성장과 투자를 위한 조세방안
주요 세액공제 및 공제 주택이자공제 기부금 건강보험 지방세 교육	세액공제: 이자지출의 15%, 주택담보대출은 지역 평균주택가격으로 제한 소득 1% 이상 기부자에게 공제 허용: 평가가액에 대한 규정 정리 평균 보험료(개인 \$5,000, 가족 \$11,500)까지 세전소득으로 보험 구입 허용 공제 불허 학생에 대한 가족 세액공제 포함, 교육비 저축조항 간소화	
저축 및 은퇴 확정기여연금 확정혜택연금 퇴직저축 교육비저축 의료비저축 배당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사회보장연금	현행 401(k) 기여금 한도 내에 간소화된 규정의 근로자 저축플랜으로 통합; 성장과 투자를 위한 조세방안에서는 근로자 저축제도를 “사전지급” 방식 이나 Roth 방식(세후소득 기여, 인출 비과세)으로 설정 변화 없음 근로자 저축제도로 대체(연 \$10,000 한도) 가족저축계로 대체(연 \$10,000 한도): 교육, 의료비, 퇴직저축, 주택구입비 대상, 저소득층은 저축금 세액공제 환급 국내소득으로 지급되는 미국회사 배당은 100% 비과세 미국회사로부터의 양도차익 75% 비과세(세율 3.75~8.25%) 일반소득세 세율 과세 공제조항 간소화로 대체: \$44,000 이하 부부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연금 비과세하고 물가상승률에 연동	
중소기업 세율 기록보존 투자	개인소득세로 과세(최대 33%) 간소화된 현금주의 비용 처리(간소화된 소득세 방안: 토지와 건물은 예외)	자영업자는 개인소득세 과세(최대30%) 이외 30% 일률 과세 기업 현금 과세
대기업 세율 투자 이자지출 이자소득 국제조세 최저한세	31.5% 간소화된 조기 감가상각 변화 없음 과세 속지주의(territorial tax)	30% 새로운 투자는 경비처리 공제 불가(금융기관은 예외) 비과세(금융기관은 예외) 도착지주의(destination, 국경세 조정) 폐지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간소화하여 기존 신고서(Form 1040)의 절반으로 줄이고 근로저축, 의료비와 교육비 저축 그리고 퇴직저축에 관한 15개 항목을 통합하여 3개 항목으로 축소하고자 하였다. 각종 공제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복잡한 단계적 혜택 축소조항(phase out)을 폐지하고 사회보장연금 소득신고를 간이하게 만든다. 근로장려세액공제제도(EITC)와 저축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에게 보다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공정한 세금 납부를 위하여 조세상의 특별 혜택과 허점(loop-hole)을 폐지한다.

기업이윤과 자본소득에 관한 과세에서는 소득세 간소화 방안과 성장과 투자를 위한 조세방안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세 간소화 방안은 현행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성장과 투자를 위한 방안은 납세부담의 재분배 없이 저축과 투자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조세체계를 좀 더 소비세 과세방식에 가깝게 전환하고 자본소득에 대하여 균일한 세율을 적용하였다⁸⁷⁾. 두 가지 방식 모두 가급적이면 주식회사 이윤의 이중과세를 축소하고 다른 유형의 투자에 대하여 유사한 세제상의 대우를 하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왜곡된 국제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료보존 의무도 업주가 이미 보존하는 기록에만 기초한 제도로 전환한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현행 납세행정절차에 기초한 누진적인 소비세도 고려하였지만 위원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없어 권고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외 부가가치세와 연방 판매세도 고려하였지만 이를 권고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조세개혁을 통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이윤의 이중과세를 축소하고 개인 차원의 저축을 증대한다. 부채보다는 자본 증대를 통한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에 있어서 과세상의 대우를 보다 균등하게 한다. 최고 한계세율을 인하하고 신규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비 처리를 허용함으로써 성장을 도모하고 국제조세제도를 경신한다. 마지막으로 과세우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행위를 왜곡하지 않는다.

87) 개인의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15% 균일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소비세는 아니다.

다. 조세개혁 권고안의 세부내용: 공통안

1) 누진과세방식의 개선: 가족과 근로세액공제

위원회는 다양한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그리고 납세자의 세제상 위상을 통합하여 가족세액공제(Family Credit)로 통합하고 EITC와 자녀 세액공제 등 저소득층을 위한 혜택은 근로세액공제(Work Credit)로 통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들 각종 공제는 중복되고 복잡하며 일관적이지 못한 문제가 있으므로 일관적이고 확실적인 공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가는 상세공제제도 등을 폐지하고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균일한 가족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복잡한 EITC와 자녀세액공제 대신 간이한 근로세액공제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세액공제에 있어서 부부합산의 경우 3,300달러(독신 1,650달러)에 달하는 공제를 도입하고 자녀 1인당 추가로 1,500달러(여타 부양자는 500달러)에 상당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들 공제금액은 물론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한편 근로세액공제는 현행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증대되는데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최대 412달러, 자녀 1인은 최대 3,570달러, 2인 이상은 최대 5,800달러에 달하는 공제를 제공한다.

2) 간편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제도

가급적이면 각종 면제,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가 없는 조세체계가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책도 필요하다. 위원회는 주택 보유와 기부금 그리고 건강 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상세공제를 하는 고소득층 - 전체 납세자의 35%- 만이 이들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에서 모든 납세자가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우선 주택대출의 경우 현행 제도 아래서는 최대 100만달러의 대출금까지 이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재산세 공제와 함께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전부 혹은 일부를 세금 면제 받는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 대신 첫째, 자가 주택의 이자비용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납세자에게 주택세액공제(Home Credit)로 제공하되 과도한 주택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의 한도를 지역 평균주택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한 예로 카운티 주택의 중간가격의 125%(2004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약 220,000~410,000달러)를 공제한도로 정하면 전체 납세자의 85~95%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 자가주택 이외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공제를 허용하지 말고 최대 50만달러까지 양도차익 면세가 허용되는 거주주택에 대한 5년 보유 및 2년 사용기간을 5년 중 3년 사용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기부금의 경우 모든 납세자에게 기부금 공제를 허용하고 소득의 1%까지만 공제를 허용하는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600달러 이상의 고액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받은 기관이 국세청과 납세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현물 기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평가액 신고와 관련하여 현물을 감정하는 사람이 국세청과 기부자 그리고 피기부자에게 그 평가액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자선단체 등 기부받는 기관의 면세 지위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자선단체의 지위와 자격 유지에 관한 기준을 검토하여 좀 더 실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경우 정부가 그 혜택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과세하지 않는다. 2003년 기준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비율이 64%에 이르고 노동자가 직접 의료보험을 구입하는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의료보험을 직접 구입하는 납세자에게 공제를 허용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험혜택에 대한 면세한도를 평균 보험료(가족 11,500달러, 독신 5,000달러)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3) 이해가 쉽고 효과적인 조세체계

위원회는 간편한 조세체계와 과세기반 확충을 위하여 소수의 납세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조항들의 폐지를 권고한다. 특히 조세감면조항을 정부지출과 같이 취급하여 비용과 혜택의 분배, 효율성 그리고 조세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에 기초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위원회가 다양한 각종 감면조항을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권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방세의 소득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HOPE 세액공

제, 평생교육 공제와 등록금 공제 등 복잡한 교육비용 공제항목을 폐지하고 20세 이하의 자녀학생에 대한 1,500달러의 가족세액공제로 대체한다. 이외 교육비용에 대비한 저축은 비과세한다. 세 번째로 음식 등 직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현물 부가급부를 제외한 여타 부가급부에 대한 면세조항을 철폐한다. 위원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 교육 및 육아지원과 생명보험 등 다양한 부가급부가 면세되는 현행 제도는 이를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면세함으로써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저한세는 자신만의 정의, 면제, 공제와 세율을 갖는 낭비적인 조세체계로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원래 조세감면조항을 악용하여 납세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최저한세는 너무 복잡하고 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2006년을 기준하면 2,160만명이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의 조세개혁방안이 도입되면 과세기반이 확충되어 최저한세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현재 소득에 따라 0%, 50%, 85%를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등 복잡하다. 따라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부부합산의 경우 44,000달러(독신자 22,000달러)까지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50%만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부부의 경우 과세 소득구간과 여타 조세상의 기준을 독신자의 두 배로 조정함으로써 결혼에 따른 세제상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라. 조세개혁 권고안의 세부내용: 저축과 투자 증대를 위한 두 가지 방안

1) 기본원칙

앞에서 논의된 공통의 조세개혁방안 이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저축과 투자를 증대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저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례조항이 도입되었지만 이들 특례는 매우 복잡하고 일관적이지 못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혼동을 야기한다. 한 예로 퇴직에 대비한 저축을 위하여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최소한 12개가 있고 의료비 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도 3개가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복잡다기한 저축 관련 세제조항을 퇴직, 교육과 의

료비의 3개 항목으로 통합, 단순화하고 이들 항목 대비 생명보험과 연금저축 등에 대한 투자 중립성을 위하여 생명보험 등과 같은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⁸⁸⁾.

한편, 저축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 간소화 방안에서는 주식회사 배당을 비과세하여 이중과세를 폐지하고 미국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75%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성장과 투자를 위한 조세방안에서는 세제상 우대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15%의 일률과세를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은 단순히 세금신고를 위하여 복잡한 기장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표제도에 기초한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장부의무를 간소화하고 연 매출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를 즉시 경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 간소화 방안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자산 매입 그리고 성장과 투자를 위한 조세방안에서는 현금 과세에 기초하여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신규투자에 대하여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미국의 기업 과세는 너무나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다양한 우대세율과 공제가 있고 사업자 소득을 비과세하는가 하면 한 번 혹은 중복과세⁸⁹⁾하기도 하여 기업들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⁹⁰⁾. 위원회는 신규투자로 얻는 이윤에 대한 과세행정을 간소화하고 법인세 등 세금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가상각방식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업형태와 투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폐지하는 등 배당과 채권이자 소득 사이의 차별(법인세와 소득세 포함)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88) 즉, 현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생명보험과 연금플랜 등(deferred compensation)의 경우 기여금의 한도가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외 지방정부 채권에 대한 연방세 면제조항도 폐지되어야 한다.

89) 기업이윤이 법인세로 과세되는 한편 배당소득이나 주식 양도차익은 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되는 반면 이자비용은 경비로 공제되고 소득세 단계에서도 IRA 등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90) 한 예로 1980년 이후 2002년까지 일반 주식회사의 수는 211.5만개에서 약 219.8만개로 큰 변화가 없지만 S 법인의 수는 약 52.8만개에서 361.2만개로 크게 늘어났다.

소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비과세 등 세계화를 반영한 국제조세의 정비와 법인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

2) 소득세 간소화 방안(The simplified income tax plan)

부시 대통령은 위원회에 현행 소득세 제도에 기초한 세제개혁방안도 함께 제출할 것을 주문하였다. 소득세 간소화 방안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행 소득세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감면조항과 저축우대조항을 통합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납세자가 간단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1쪽의 소득세 신고서(Form 1040)만 작성하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기업이윤의 중복과세를 폐지하고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현행 소득세와 유사한 수준의 누진과세를 유지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한 회계방식과 개선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였다.

전술한바, 조세개혁을 위한 공통안 이외 소득세 간소화 방안에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6단계 세율구조를 15%, 25%, 28%, 33%의 4단계로 축소한다⁹¹⁾. 저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우대조치를 통합하여 근로(Save at Work), 퇴직 (Save for Retirement) 그리고 가족저축제도(Save for Family accounts)를 신설하여 교육, 의료비, 은퇴 그리고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비과세한다. 그러나 이들 규정 이외 다른 이자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똑같이 취급된다.

근로저축은 현행 기여금 제한과 401(k)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을 대체한다. 퇴직저축은 기존의 IRA 등을 통합하여 1만달러를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저축을 보완한다. 특히 Roth IRA와 같이 세후소득을 저축하고 그 대신 인출할 때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pre-paid plan)⁹²⁾. 또한 은퇴 후 사용을 유인하기 위하여 58세 이전에 인출하면 과세할 뿐만 아니라 10% 가산금도 부과한다.

가족저축은 기존의 세제우대조치를 대신하여 교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주택구입을

91) 소득구간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78,000달러, 150,000달러, 200,000달러 이상으로 독신자는 이의 절반이다.

92) 일반 IRA는 소득 기여시 비과세(공제)하고 인출할 때 과세한다.

위한 저축으로 매년 1만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세후소득을 저축하며 교육이나 의료비 혹은 거주 주택을 구입할 때 인출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58세 이상이 되면 조건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매년 1천달러까지는 교육 등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그 이상을 인출하면 퇴직저축과 마찬가지로 과세하고 가산금도 부과된다.

한편 저소득층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저축공제제도(Saver's Credit)를 확대하여 소득이 3만달러 이하(부부합산)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2천달러까지 가족 저축이나 은퇴저축제도에 저축하면 25%에 해당하는 세금(즉, 500달러)을 환급해줌으로써 정부가 저소득층 저축의 33%를 세금으로 지원한다. 소득이 3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5%씩 환급액을 줄임으로써 4만달러까지 지원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첫째, 전년도에 미국 연방세 납부대상이었던 주식회사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둘째, 1년 이상 보유한 미국 회사의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의 75%를 비과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 등 역외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은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과세한다. 양도차익의 25%만 과세하면 현행 양도세 세율을 기준해도 최고 세율은 사실상 8.25%(33%×0.25)로 하락하게 된다. 주식 이외 여타 자산의 경우 현재 최대 15% 세율로 과세하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주택의 경우 지난 5년간 3년을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60만달러를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들 금액은 물론 물가에 연동되어야 한다.

기업은 소기업(연간 매출액 100만달러 이하), 중간규모 기업(매출 100만~1천만달러) 그리고 대기업으로 나누어 과세상의 대우를 달리 한다. 소기업의 경우 기장과 장부보존 의무를 폐지하고 현금수입과 현금지출에 근거한 소득을 신고한다⁹³⁾. 이와 함께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신규 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비 처리로 전체 사업자의 95%를 차지하는 소규모 기업은 납세행정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다. 중간 규모의 기업도 현금주의에 기초한 회계가 허용되지만 토지 등에 추가하여 자본투자는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세법 준수를 위하여 중소기업은 그 대신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

93) 미국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수표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실제로는 수표에 기초한 소득신고를 의미한다.

합한 사업상의 은행계좌를 지정하고 개인자금과 기업자금을 섞어서는 안된다. 이외 자영업, 유한회사 및 파트너십 그리고 S 법인으로 구분된 사업형태에 각각 따로 적용되는 세법규정을 합리화 및 간소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 감가상각을 제외한 여타 40개 항목의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대신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31.5%로 인하하여 일률 과세한다. 중소기업도 이처럼 법인세를 납부하고 그 대신 배당소득의 면제와 양도차익 75% 비과세를 적용받아도 된다. 조정된 조기 원가회수방식(MACRS) 아래서는 자산과 산업유형에 따라 현재 9개의 회수기간을 정하고 각각 3개의 회수방식과 서비스 시점을 적용한다. 위원회는 자산 유형을 네 종류로 구분하고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간소화된 감가상각을 권고하고 있다(일반 자산 30%, 에너지산업 자산 7.5%, 거주빌딩 4%, 비거주 빌딩 및 부동산 3%).

이 밖에도 국제조세에서는 주요국의 현행 과세제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역외소득도 과세하는 현행 규정 대신 해외 영업행위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해외지점과 자회사 등이 지급하는 배당은 법인세 과세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로열티와 이자소득 등 해외에서 공제되는 지급금은 과세한다. 다만 속지주의 아래서는 해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지출된 경비가 국내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이전가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외 금융소득과 같이 해외에 있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적 거주지가 미국인 기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관리와 통제가 미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미국 세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미국 재무성에 의하면 소득세 간소화 방안은 세수 중립적이지만 세율 인하와 저축 및 투자 증대 그리고 이중과세 철폐 등을 통한 효율성 증진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최고 1.2% 그리고 자본규모를 0.9~2.3%까지 증대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3) 성장과 투자를 위한 조세방안(The 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

위원회는 누진과세를 유지하여 연방세 부담의 배분을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저축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 소득세 체계를 좀 더 소비세 체계에 가깝게 전환하는

개혁방안을 제안하였다. 물론 저축, 주택보유, 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 간소화 방안과 동일한 조항이 적용되며 각종 특혜조치도 철폐 내지는 통합하여 투명하고 단순한 납세신고를 추구하였다.

이 방안은 임금에 대한 누진과세(15%, 25%, 30% 3단계),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관한 15% 일률과세 그리고 30% 단일의 기업과세를 핵심축으로 한다. 개인의 경우 이 방안은 소득세 간소화 방안과 거의 비슷하고 다만 소득구간이 1단계 줄어들고 세율이 더 낮다. 또한 배당과 양도소득이 최대 15% 과세되는 현행 제도에 이자소득을 추가하여 같은 비율로 과세한다. 이에 비하면 소득세 간소화 방안에서는 국내기업의 배당(100%)과 양도소득(75%) 대부분을 비과세하고 다만 이자는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하였다. 이외 각종 저축우대조치 중에서 근로저축계정은 소득세 간소화 방안의 퇴직저축계정과 같이 기여금 소득은 과세하고 인출시 비과세한다(pre-paid plan).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법인세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 우선, 신규투자도 즉각 비용 처리함으로써 매출액에서 각종 재화와 서비스 지출경비와 임금을 제외한 현금흐름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배당과 이자소득을 비과세 하는 대신 이자비용 등 금융지출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지도 않는다. 세 번째로, 손실은 이월하여 향후 납세액과 상쇄할 수 있으며 이월시 이자가 붙는다. 마지막으로, 국제거래에서는 도착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준용하여 수출비용은 환급하되 수입은 공제하지 않는다.

한편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회사의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30% 단일세율을 부과받는다. 30% 세율은 소득세의 최고 세율과 동일하다. 이는 소득세 간소화 방안에서 주식회사가 3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이외 기업은 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차이가 난다. 현금 흐름에 집중함으로써 소득과 공제를 일치시키기 위한 복잡한 회계방식이 필요 없다. 이러한 기업과세는 부가가치세의 공제방식과 유사하며 다만 임금 등이 공제되는 차이점이 있다.

투자경비에 대한 즉각적인 공제와 세금 과표에서 이자 수입과 지출 등 금융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차입에 의한 투자를 우대하여 발생하는 부채 위주의 자본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 이자율에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경비와 자금 차입에 따른 비용을 구별하

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제외할 발생하는 왜곡이 크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도 과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원리금 수입에서 원리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과표로 하되 자금 매개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융기관이 기업에 통보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서비스 구입에 따른 과다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

기업이 손실을 입으면 과거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혹은 미래에 납부할 세금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환급을 제한하고 있다. 위원회는 손실을 환급받을 수 없도록 하되 미래 세금과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상쇄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손실을 이월할 경우 이자금액까지 가산하여 미래 세금에 상쇄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손실을 기업간에 거래할 수 없으며 기업합병 등을 통하여 이를 악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과 금융거래 등 국제거래에 있어서 위원회는 도착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⁹⁵⁾을 도입하여 국경세 조정 즉, 수출시 생산비용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주고 수입시 수입업체에게 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수입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⁹⁶⁾. 과세원칙에서는 과표에 포함되어야 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즉, 생산지 과세원칙에 비하여 도착지(소비지) 과세원칙 아래서는 과표가 국내소비(국내매출-국내매입)이기 때문에 국경간의 거래에서 설정되는 가격, 즉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⁹⁷⁾. 한편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로열티는 수출로 간주되어 비과세되고 그 대신 로열티 소득을 소비 지출할 때 과세된다. 반면 외국에 지급되는 로열티는 수입이기 때문에 공제에서 제외된다.

투자의 즉각적인 공제를 도입하게 되면 외국투자가 더 용이해진다. 또한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생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소비되어야 과세되기 때문에 미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려는 동기가 약해진다. 다만 도착지 과세원칙에서는 국내 공급

94) 이런 이유로 부가가치세에서도 금융서비스는 비과세하는 경향이 있다.

95) 도착지 원칙은 소비지 과세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어디에서 생산이 되었든지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과세하고 수출은 과표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말한다.

96) 도착지 과세원칙이 수출을 우대하고 수입은 차별한다는 주장은 환율과 국내가격의 조정을 통한 교역수지의 조정(혹은 불변)을 간과하고 있다.

97) 이에 비하면 생산지 과세원칙에서는 수출은 과세되고 수입은 공제되므로 수입을 과다 평가하고 수출은 과소평가함으로써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하고 외국인에 대한 매출이 면세되기 때문에 공제와 면세를 잘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세제를 위원회가 제안하는 투자 친화적인 방안으로 대체한다면 자산과 부채 그리고 국경세 조정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한 예로 4년간에 걸쳐서 수입업체는 수입과표의 90%, 60%, 30%, 0%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업체는 같은 비율로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 간소화 방안보다 훨씬 더 소비세에 가까운 위원회의 조세개혁안이 도입될 경우 재무성은 세수 중립성과 함께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최고 4.8% 그리고 자본규모를 5.6~20.4%까지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Partial Replacement VAT)와 연방판매세

위원회는 효율성 증진과 소득세로 인한 왜곡 축소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로 소득세 일부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하였다. 즉, 세율 15%의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소득세 세수의 65%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간소화 방안에서 개인과 법인세 최고 세율을 15%로 인하할 수 있다. 일부 위원들은 자동적인 세수 증대(money machine)로 말미암아 정부가 비대해진다고 반대하였고 일부 의원은 부가가치세가 고용 관련 세금을 줄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위원회가 합의의 이를 수는 없었지만 동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15% 세율)가 도입되면 소득세 세율구간은 4개(15, 25, 28, 33%)에서 2개(5%, 15%)로 단순화되고 최고 세율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되는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소득세율과 인적세액공제의 조정을 통하여 적절한 소득분배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음식료품 면세 대신 가족과 근로세액공제를 사용한다. 우선 가족공제에서 부부합산 공제와 자녀공제를 각각 1,000달러와 500달러씩 증대하고 근로세액공제는 1자녀와 2자녀 가족에 대하여 각각 6,820달러, 9,750달러를 공제한다. 근로세액공제는 물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혜택규모를 줄인다(phase out).

부가가치세의 기본 골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의 채택 ② 국경세

조정 ③ 단일세율 ④ 실질적인 소득세 인하를 위한 포괄적인 과세기반 구축. 부가가치세 과세기반은 공공서비스, 고등학교를 포함한 의무교육 서비스, 현존하는 주택 그리고 자선 및 종교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국내소비이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전기 공급과 같은 상업적 활동은 과세기반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경세 조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연 매출액 10만달러 이하 영세업자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상당하므로 면세를 허용해야 한다. 면세를 허용하더라도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분 과세되므로 세수에는 큰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판매세도 연방 부가가치세의 징수체계와 조율하면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지방 판매세를 지방 부가가치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

한편 위원회는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판매에 부과되는 판매세도 고려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방소득세를 판매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권고하지 않기로 하였다. 우선 판매세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하는 적절한 누진과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이들 계층에 대한 현금보조를 통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지원금액의 규모가 6,000억~7,800억달러로 미국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보조금이 되고 미국 국민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든다.

또한 이상적인 가정 아래서도 현금보조금을 감안한 판매세 세율은 34%가 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과표기반이 약화되면 세율이 인상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판매세 행정부담도 현행 세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지방정부가 소득세를 별도로 징수하는 연방소득세의 판매세 전환으로 인한 부담에는 큰 차이가 없다.

3. 오바마 행정부의 조세개혁안

가. 오바마 행정부의 선거공약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유세 시절 중산층에 대한 폭넓은 감세와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공정한 조세행정,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고 의료보험, 청정연료, 교육과 기술개발 등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물론 금융

위기로 인하여 오바마의 선거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지만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95%의 근로자에 대하여 1인당 500달러의 소득세 경감(부부합산 1,000달러)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층과 중산층, 주택 보유자, 보험이 없는 사람,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는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두 번째로 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철폐하고 미국 국내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또한 기술혁신과 건강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이외 현행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하여 조세제도를 간소화하며 은퇴한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최대 4,00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회계사 도움 없이 5분 이내에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오바마 선거공약을 크게 나누면 중산층에 대한 세제 감면, 미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신장을 위한 감세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에 준하는 세금 수준과 재정 건전성 확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중산층에 대한 세제 감면

우선 95%의 근로자 약 1억 5,0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500달러(부부합산 1,000달러)의 소득세를 경감한다(Making Work Pay Tax Credit). 두 번째로,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4천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주택 대출금 이자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추진하여 현재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약 1천만명의 납세자에게 평균 500달러의 감세를 허용한다. 또한 소득이 5만달러 이하인 노인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철폐하여 약 2,700만명의 노인계층이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한다. 또한 연금 저축에 대하여 현행 저축공제(Savers Credit)을 확대하여 75,000달러 이하의 소득계층이 저축하는 연금 1,000달러의 50%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한다.

한편 건강보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를 확대하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결혼에 따른 혜택 축소를 철폐한다. 한편 자녀부양 공제는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6,000달러까지 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현행 소비자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는 전기제품 구매를

촉진하며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구입에 대하여 최대 7,0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밖에도 각종 세액공제제도를 통합하고 사전 작성된 세금신고서를 제공하며 표준공제제도를 개선하여 약 4,000만명의 납세자가 회계사 도움 없이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잡한 조세제도를 개혁한다.

〈표 IV-3〉 오바마 행정부 선거공약 : 중산층 감세

대상	감세안
소득이 \$75,000 이하인 부부	\$3,700(\$1,000: 소득세 경감, \$500 주택대출공제, \$4,000 대학 등록금 공제)
소득이 \$90,000 이하인 부부	\$1,000
소득이 \$40,000 이하인 편부(편모)	\$2,100(\$500: 소득세 경감, \$500 주택대출공제, \$1,100 자녀부양공제)
소득이 \$35,000인 노인	\$1,900

2) 미국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 신장을 위한 감세

소기업 지원과 고용 창출을 위하여 오바마 정부는 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부담 감축을 약속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해외에 소득을 유보하는 기업에 대한 기존의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하한다. 또한 소기업에 고품질의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제공하는 근로자 보험료에 대하여 50%까지 환급이 가능한 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기술개발 세액공제를 영구화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실하게 한다.

3) 재정 건전성과 소득세 세율

오바마 정부는 상기한 일련의 감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을 축소하고 해외 조세피난처에 대한 개혁 그리고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기

존의 조세감면을 철폐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이라크에서의 철군, 고소득 농부에 대한 지원 축소, 노인 의료보험(Medicare)에서 개인 플랜에 대한 지원 감축 이외에 목적세를 1994년 수준으로 축소하고 등록금 용자금제도도 개혁한다.

특히 법인세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특혜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한 예로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기피와 고용의 해외 이전을 축소하고 경제적 실질원칙에 근거한 과세를 추진한다. 이외 석유회사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철폐하고 최고경영자에 대한 과세상 허점을 철폐한다.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에게 제공되었던 부시 행정부의 세금 감면을 철폐하여 1990년대 초의 세금부담 수준을 회복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세율 39.6%를 존치하고 개인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조정하되 25만달러 이하 납세자는 피해가 없도록 한다. 양도소득세는 최고 세율 20%를 도입하고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배당소득 세율도 20%로 한다. 다만 배당소득은 부시 행정부 이전처럼 일반소득과 합하여 과세하지 않고 최고 세율을 20%로 한다. 유산세는 약 99.7%의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폐지된 바 있다. 나머지 0.3%의 유산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45%를 유지한다. 이를 통하여 1%의 고소득층(평균소득 160만달러)의 평균세율이 21%에서 24%로 인상되도록 한다.

나. 2009년 경기회복과 재투자법(ARRA)⁹⁸⁾

1) 법의 주요 내용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5년간 7,870억달러를 투입하여 경기부양을 하는데 특히 5,010억달러의 정부지출과 2,860억달러의 조세감면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 집행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구⁹⁹⁾를 설립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98)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ARRA).

99) Recovery Ac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 1인당 400달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Making Work Pay), 최저한세 (AMT) 조정, 사회간접자본 투자, 건강보험과 교육지출 확대, 지방정부 지원 등이 있다. 7,870억달러의 재정지원은 2009년 약 23%, 2010년 51%, 2011년 17% 그리고 2012년 5% 등으로 지출, 사용된다. 가급적 짧은 기간에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부양 지체(inside lag)를 줄이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인 지출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처한 신중한 재정을 위한 것이다. 특히 개인에 대한 조세감면과 재정지원은 처음 1년 반 동안 대부분 사용되지만 사회간접자본 지출과 기타 조세감면은 보다 장기간 사용된다.

이와 같은 경기부양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논란이 있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를 통하여 국내총생산이 3.7% 증대하고 2010년까지 약 370만명에 달하는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13년까지 국내총생산이 1.1~3.3% 증가하고 2010년 말까지 고용이 120만~360만명 증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실업률은 2009년 7.7~8.5%, 2010년 6.8~8.1%로 하락하고 2015년에는 자연 실업률인 4.8%로 인하된다. 다만 의회예산처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하여 민간투자에 대한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효과가 사회간접자본의 생산성 향상으로 서로 상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부양에 따라 정부부채는 2018년이 되면 약 500억 달러 이하로 증대될 것으로 추정한다.

〈표 IV-4〉 2009년 경기회복과 재투자법 주요 내용

(단위: 십억달러)

주요 내용	금액
근로소득 세액공제(Making Work Pay)	116.2
최저한세 (AMT)	69.8
기타 개인 조세감면	46.5
법인세 감면	6.2
기타 조세조항	47.9
교육지출	49.7
건강보험지출	153.8
주정부 추가지원	56.3
사회간접자본	121.2
실업 등 기타 지원	58.1
Food Stamp(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20.0
기타 지출	41.5
합계	787.2

자료: www.usbudgetgetwatch.org/stimulus

2) 조세감면

오바마 행정부가 제안한 2010년 예산안에서 조세부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하여 각종 세액공제를 유지 혹은 확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감세를 철회하거나 항목별 공제 등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전자의 경우 2009년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 (ARRA)에서 도입된 근로소득 세액공제(Making Work Pay)를 영구화하여 사회보장세 소득의 6.2%(최대 1인당 400달러, 부부 800달러)까지 환급이 가능한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부부 납세자는 1.6% 비율로 점진적으로 공제를 제한한다. 또한 동법에 도입된 3자녀 이상의 납세자에 대한 근로장려 세액공제비율 45%와 부부합산에서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금액을 독신자에 비하여 5천달러로 상향 조정한 규정을 영구화한다.

〈표 IV-5〉 2010년 정부예산안 주요 조세항목에 대한 소요예산 추정

(단위: 십억달러)

주요 내용	금액 ¹⁰⁰⁾	주요 내용	금액
개인 관련 세금			
중산층과 저소득층		고소득층 ¹⁾	
Making Work Pay 세액공제	- 535	고소득층에 대한 최고 세율 적용(39.6%)	320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	- 21	인적공제 제한 재도입과 항목별 공제제한	178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 71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20% 세율 적용	118
저축공제와 IRA/401k 자동 참여	- 60	항목별 공제를 최대 세율 28%로 제한	267
American Opportunity 세액공제	- 49		
기업 관련 세금			
소기업 양도세 철폐	- 6	carried interest ³⁾ 를 일반소득으로 간주	23
연구개발공제의 영구화	- 74	경제적 실질거래 원칙규정의 도입	5
순영업손실 소급 확대	- 19	국제조세체계 개선	210
Superfund 세금 ⁴⁾ 재도입	17	후입선출법(LIFO) 폐지	61
기타			
현행 일몰규정을 2010년까지 지속	- 17	tax gap 감축 및 개혁	11
		tax loophole 폐지	48
합계			363
환경 관련 세입			624
개별 가정에 준한 세입의 변화 ²⁾			
최저한세의 물가연동	- 576	2001년과 2003년 감세 지속	-2,484
2009년 유산세 영구화	- 172		

주: 1) 부부합산소득이 \$250,000 이상인 납세자 대상(독신자는 \$200,000).

2) 정부기준은 2001년과 2003년 감세를 유지하고 2009년 최저한세를 물가에 연동하는 기준 사용(유산세는 2009년 기준).

3) carried interest는 투자회사 직원이 보수 대신 회사지분을 받아 나중에 파트너십 소득의 일정 부분을 양도소득으로 향유함.

4) 원유와 유해한 화학제품에 대한 과세로서 오염지역을 복구하는데 사용됨.

자료: <http://www.taxpolicycenter.org/taxtopics>.

100) 진보성향의 미국 조세정책 연구소(Tax Policy Center)가 추정한 금액임.

세 번째로 자녀세액공제에서 17세 이하 자녀의 경우 1인당 1천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공제금액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으면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의 15%로 제한되는데 그 기준을 2009년 3천달러로 한 것을 영구화한다. 네 번째로 현재 저소득층 납세자가 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2천달러(부부)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비율은 소득과 납세자 신분에 따라 10%, 20% 그리고 50%로 구분되는데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공제를 50%, 최대 500달러까지 환급하고 이를 자동적으로 연금에 기여하도록 한다(65,000달러 이하 소득). 이 경우 납세자의 연금 기여금 1천달러 중 절반은 정부가 사실상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2009년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서 Hope 공제 대신 도입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을 영구화하여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된 경비 중 2천달러와 2천달러 초과금액의 25%를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제는 부부합산 소득이 160,000달러 이상인 납세자부터 부분적으로 제한되며 소득이 180,000달러 이상이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부시 행정부에서 고소득층에게 제공되었던 다양한 감세정책을 철폐한다. 우선 2001년과 2003년에 도입된 감세안이 2011년 폐지되는데 이를 영구화하되 고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2011년부터 2011년 세율 수준 즉, 36%(232,950~375,700달러)와 39.6%(375,700달러 이상)로 과세한다. 또한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한다. 현재 1년 이상 보유한 양도소득과 일부 배당소득은 15% 세율(한계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는 0%)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2011년이 되면 양도세율은 2003년 수준(20%, 10%)으로 다시 돌아가고 배당소득은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15% 세율을 계속 유지하되 36% 이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에 대한 양도세율은 20%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인적공제와 항목별 공제에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는 2001년부터 이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다만 2010년 재도입하기로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인적공제 제한을 2011년부터 부부합산소득이 25만달러(2009년 달러 기준)를 초과하는 납세자부터 다시 적용하고 항목별 공제는 203,85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의 3%만큼 감축하도록 하였다(80% 제한 규정은 유지). 또한 항목별 공제의 혜택은 해당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다른데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항

목별 공제 적용세율을 최대 28%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 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 중 75%는 비과세되고 나머지 25%는 최대 28% 세율로 과세된다. 따라서 소기업 주식 양도차익의 실효세율은 최대 7%에 이르며 2010년이 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 양도차익은 50%로 감소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성격의 양도차익을 모두 비과세하고 최저한세에서도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연구개발비는 잠정규정으로 최대 20% 공제가 가능한데 이 규정은 1981년 이후 13번 조정되어 유지된 바 있다. 오바마 정부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영구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경기회복법에서는 매출이 1,500만달러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 운영업손실을 2년이 아닌 5년간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한다.

오바마 정부는 납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의미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경제적 실질거래 원칙(economic substance doctrine)을 법으로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거래행위로 인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하면 3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적 실질거래란 거래가 의미 있는 경제적 목적이 있거나 투자자가 합법적인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거래로 인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위치가 의미 있게 변하고 납세자가 과세회피 목적 이외 해당 거래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국제조세의 경우 해외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제한하고 미국 사업체가 해외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업체는 경비를 즉시 공제할 수 있고 투자이윤은 본국에 송환될 때 과세된다. 오바마 정부를 해외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해외 투자경비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결정할 때 모든 해외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고려하도록 하여 교차공제(cross credit)를 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한다.

즉, 현재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해외소득에 미국 국내에서 창출되었다면 국내 세율로 과세될 세금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공제받지 못하는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초과 납부세액을 이용하여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과 합하여 미국

정부에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교차공제).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해외 이윤의 송환 시점을 조작함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소득을 국내로 송환할 때까지 이연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외에도 1996년 도입된 기업과세방식('check-in-the-box rule')을 제한하여 다국적기업이 해외소득을 세금이 많은 국가에서 적은 국가로 이전하는 관행을 방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⁰¹⁾.

최저한세(AMT)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만약 의회에서 잠정적 조정이 없이 1993년 기준으로 과세되었다면 미국 납세자 중 3분의 1이 최저한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소득에 적용되는 최저한세 기준(면세금액, 세율, 기준소득 등)을 영구화하고 이를 물가에 연동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산세는 2001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2010년에 폐지되었다가 2011년 원상 복귀된다. 이 경우 유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누진세율체제로 최대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기준으로 유산세를 영구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경우 350만달러 이상의 유산은 최대 45% 세율을 적용받고 부부의 경우 적절한 계획으로 최대 700만달러까지 유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오바마 행정부는 에너지 생산업체가 CO₂ 등 오염 물질을 방출할 때 이를 허가하는 권한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법안(cap and trade)을 준비중이다. 오염 방출권은 세금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과 유사하며 결국 제품가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2012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한 전기 생산, 휘발유,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비롯한 에너지 집약상품에 대하여 미국 행정부는 연간 800억달러에 달하는 오염 방출권을 매각하여 이 가운데 15%는 청정연료기술 개발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 등의 공제에 이용할 계획이다.

101) 현재에는 해외사업이 자회사 형태(subsidiary)로 간주되면 이윤이 본국에 송환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는 반면 지점(branch)으로 간주되면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된다. 물론 모든 형태의 소득이 이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나 해외 회사 서비스 혹은 판매소득(foreign base company sales or service income)은 즉시 과세된다.

4. 일몰 법령

다음 <표 IV-6>은 연도별로 폐지되는 주요 법령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2010년이 되면 2001~2003년 사이에 부시 행정부에서 도입된 대부분의 감세안이 일몰이 되어 철폐된다¹⁰²⁾. 이는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35%로 인하한 소득세 경감, 공제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자녀세액공제, 유산세의 점진적 감축과 폐지 그리고 양도세율의 경감과 배당소득에 대한 양도세율 적용을 포함한다. 의회가 이러한 일몰규정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일몰규정을 존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하는 중산층 감세는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술한 대로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ARRA)에 도입된 최저한세 과표기준의 영구화 이외에도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1~2003년 부시 감세법안이 2011년이 되면 종료되지만 오바마 정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에 대한 감세를 지속할 것을 가정하고 2010년 예산안을 작성한 바 있다. 이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소득이 172,800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15~31%가 아닌 10~28%로 과세된다. 물론 2010년 예산안과 오바마 감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에 따라 2009년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102)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표 IV-6〉 주요 일몰 법령의 내용과 철폐시한(2009년 이후)

	일몰법령	철폐시한
1	환경친화적 건축물과 지속 가능한 디자인 채권 (Sec. 142(l)(8))	2009/9/30
2	대체연료 연방소비세 공제 및 지출액 (Sec. 6426(d),(e))	2009/9/30
3	하이브리드 자동차 대체 공제(승용차와 경트럭 제외) (Sec. 30B(j)(3))	2009/12/31
4	주택 채권 탕감의 총소득 제외 (Sec. 108(a)(1)(E))	2009/12/31
5	Sec. 179 비용공제 확대 (Sec. 179(b)(1), (2) (c)(2), (d)(1))	2009/12/31
6	Empowerment zone 세제지원 (Sec. 1202(a), 1391, 1394(d), 1396, 1397)	2009/12/31
7	Renewal community 세제지원 (Sec. 1400F, 1400H, 1391(d), 1400I, 1400J)	2009/12/31
8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2010/12/31
9	양도소득세 경감 (Sec. 1(h), 1445(e)(6), 102)	2010/12/31
10	양도세율에 준한 배당소득 과세 (Sec. 1(h), 102)	2010/12/31
11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액공제(승용차와 경트럭) (Sec. 30B(j)(2))	2010/12/31
12	대체연료 자동차 세액공제 (Sec. 30B(j)(4))	2010/12/31
13	알코올연료 지원 (Sec. 40(e), 6426(b), 6427(e))	2010/12/31
14	음악 및 음악 저작권의 5년 감가상각 (Sec. 167(g)(8))	2010/12/31
15	근로기회 세액공제 (Sec. 51(c)(4))	2011/8/31
16	Leaking Underground Storage Trust Fund (Sec. 4041(d), 4081(d))	2011/9/30
17	고속도로 기금 연방소비세(Highway Trust Fund): 휘발유, 등유, 경유, 메탄올, 에탄올, 타이어, heavy highway vehicles (Sec. 4041(a), 4081(d), 4041(m), 4051(c), 4071(d), 4481(f))	2011/9/30
18	수소연료 연방소비세 공제 (Sec. 6426(d), 6427(e))	2014/9/30
19	전기자동차 공제 (Sec. 30B(j)(1), 30C(g)(1))	2011/12/31

자료: <http://www.taxpolicycenter.org>.

제2편 소득세제

I. 개인소득세

1. 서론

가. 배경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미국 독립 이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리되면서 정착되어 왔다. 우선 미국 헌법은 의회에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연방소득세는 1894년 소득세가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재정수요의 필요성으로 헌법의 수정을 통하여 1913년에 처음 부과되었다. 그 이전에는 관세와 소비세가 연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이후 1930년대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소득세가 오늘날과 같은 보통세(mass tax)가 된 시기는 1940년대이다.

미국에서 소득세는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포함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미국 C 법인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C 법인을 제외한 S 법인이나 파트너십, 자영업자 등의 사업체는 도관업체(flow-through entity)로서 세금신고를 하지만 이는 자료신고에 해당하고 실제 세금은 이들 업체의 소유주(주주)가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한다. 소득세 납부는 납세자 본인에 의한 신고와 자발적인 법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소득세 이외에도 다수의 지방정부가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주는 7개주에 불과하다. 이들 지방정부의 소득세는 연방정부 소득세 과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부분의 주가 소득세를 누진과세하는데 최고 세율은 대개 5~7% 사이에 있고 과세구간은 2~10개로 주에 따라 다양하다. 이 밖에

매사추세츠와 일리노이주 등 7개 주에서는 3~5.3%의 단일세율로 일률과세를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면 연방정부는 과세소득을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에 따라 10~35%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연방소득세의 발전 과정

1861년 남북전쟁을 수행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 도입된 소득세는 1862년 1만달러 이하 소득에 3%, 그 이상의 소득에는 5%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600달러의 표준공제 이외 임대주택, 손실, 여타 세금에 대한 공제와 원천징수제도도 마련되었고 국세청 조직도 처음 마련되었다. 하지만 남북전쟁이 종료되면서 1872년 소득세는 폐지되었다.

1894년 대법원은 단일세율의 소득세가 재도입되었을 때 이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는 직접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¹⁰³⁾. 그 이후 연이은 전쟁으로 재원이 절실해진 미국은 지역간 타협의 산물로서 1913년 연방헌법 16차 수정안(16th Amendment)을 제정하여 소득세가 인구비례 의무로부터 면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16년 기업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1% 세금과 1~7%의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었다. 이때 개인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고액의 인적공제(부부 4,000달러)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0.5%만이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1917년 과세구간이 2~15%에서 2~67%로 확대되고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세가 어느 정도 작동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8년 당시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인구비율은 5%에 불과하였다.

미국 소득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1941년 인적공제와 함께 2,000달러 이하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10%의 세율 그리고 500만달러 이상 과세소득에는 최고 세율 81.1%를 적용하면서 연방세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41년 8%에서 1945년에는 20.4%로 상승하였다. 1943년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남북전쟁 이후 다시 도입되었고 1945년이 되면 인구의 약 74%가 소득세를 납부하

103) 미국 헌법 제정 당시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을 우려한 주 대표들은 개별 주의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직접세를 금지하였다(헌법 제1조 9항 4절, apportionment of direct taxes).

는 등 대중화되었다(mass tax).

1939년 그동안 재정법(Revenue Act) 등 개별 법안으로 산재되어 있던 각종 연방세가 하나의 법으로 처음 조문화되었다¹⁰⁴⁾. 그 이후 1952년 국세청의 명칭¹⁰⁵⁾이 바뀌면서 내국세법도 1954년 다시 정리, 조문화되었다. 이 때 파트너십 등 기업 관련 소득세 규정이 대폭 바뀌었다. 이후 재정법 혹은 조세개혁법 등으로 가끔 수정되었던 내국세법은 1986년 세율 인하와 세원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 정비 등 큰 변화를 겪으면서 ‘1986년 내국세법’으로 새로이 명명되었다.

개인소득세는 원래 정부 재원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점차 경제적 동기 유발과 경제안정을 위한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특정 행위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가 남발함에 따라서 1970년에는 최저한세가 그리고 1974년에 조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되었다. 또한 1974년 당시 개인은퇴 저축계좌(IRA)와 함께 1975년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 세액공제제도(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그리고 1978년 401(k) 은퇴저축계좌가 신설되었다.

104) Internal Revenue Code of 1939.

105) 1953년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서 Internal Revenue Service로 변경되었다.

〈표 1-1〉 개인소득세법의 주요 변화(1943~2005)

1943	소득세 원천징수 재도입(1913년 도입후 1916년 폐지)
1944	표준공제와 인적공제(\$600) 도입
1948	부부합산시 소득 분할(income splitting) 도입
1954	내국세법의 완전 개정: 세율조정, 퇴직소득 공제, 배당공제, 부분 면세이자소득 공제, 상세공제와 조정된 총소득(AGI)의 정의 개정
1960	의료 및 치과비용 공제 자유화
1963	자영업자 퇴직플랜 기여금 공제 허용
1964	피고용인 이사비용과 사업비용조정제도, 평균소득과세제도, 비과세 배당소득 한도 인상, 최소 표준공제 도입
1965	세율 인하
1966	원천징수 임금에 대한 누진율 도입
1967	의료보험료 일부 공제,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불허(약품비 조정 총소득의 1%, 의료 및 치과비 조정 총소득의 3%)
1968	10% 추가 소득세율 부과(surcharge), 자영업자 퇴직플랜 기여금 공제제도 자유화
1969	개인에 대한 최소세 도입, 10% 추가세율 연장
1970	세금신고 요건 완화, 원천징수제도 개정, 특정 과세상 우대조항(tax preference)에 대한 세금 도입, 양도소득세 인상과 양도손실 공제 제한
1971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한도 설정, 인적 공제한도 인상(\$675)
1972	인적공제 한도 인상(\$750), 근로유인공제(WIN)제도, 대선기금 기여제도 도입
1974	연금과 근로자 혜택플랜규정 완전 개정 및 세금 환급
1975	표준공제 인상, 인적공제의 세액공제, 근로장려 세액공제, 주택구입공제, 개인은퇴 연금(IRA) 기여금 공제 도입
1976	표준공제 변경, 자녀부양, 노인, 일반 세액공제 도입, 근로장려공제 연장
1977	영세율 구간 도입, 신규고용 공제, 신체장애 지급금 면세
1978	양도소득세 과세조정, 주택 및 사업에너지 투자세액공제, 해외 근로소득 과세제도 변경
1979	정치 기부금과 비사업용 지방정부 휘발유세 공제 폐지, 인적공제, 영세율 구간 및 정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증대, 과세구간 확대 및 일부세율 인하, 일부 실업수당 과세, 일반 세액공제제도 종료, 사전 근로소득공제 및 최저한세 도입
1981	3년에 걸쳐서 한계세율 23% 인하, 양도소득에 대한 최저한세 도입, 맞벌이 부부에 대한 공제 허용
1982	가속상각제도에 대한 상향 조정 폐지, 개인에 대한 배당 및 이자소득 10% 원천징수 도입, 의료비 공제 허용기준을 조정된 총소득의 3%에서 5%로 인상
1983	일부 사회보장 및 철도연금 소득 과세(1984년 이후)
1984	장기보유 양도소득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축소
1986	최고 세율 28%로 인하, 부부합산 표준공제(\$5,000)와 인적공제(\$2,000)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인상, 맞벌이부부공제, 장기보유 양도소득 면제, 지방정부 판매세 공제, 실업수당 면제 및 평균소득제도 폐지, 이자비용, 은퇴연금(IRA), 의료비, 사업용

〈표 1-1〉 계속

1986	식비 및 접대비, 연금 기여, 기타 비용공제 제한
1990	최고 한계세율(31%)과 최저한세 세율(24%) 인상, 양도소득세율 28% 제한, 고소득층 상세공제금액 제한, 근로장려공제 확대, 저소득층 의료보험비 세액공제
1993	최고 세율 인상(36%, 39.6%), 인적 공제와 최저한세 세율 인상, 소득 \$9,000 이하 무자녀 독신자 근로장려 세액공제 확대
1997	자녀 세액공제(\$500), HOPE와 평생교육 공제 도입,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20%, 10%), 최초 주택구입자금 인출 비과세 허용, 신규 Roth와 교육 IRA 제도 도입
2001	세율 인하 및 10% 세율 도입, 자녀세액공제 확대(\$1,000), 부부 표준공제와 15% 세율 구간을 독신자 2배로 확대
2003	2001년 세법 개정안 조기 시행: 2006년 세율인하계획을 2003년 이행, 부부합산시 표준공제 인상을 2009년까지 점진 시행하지 않고 2003년 조기 시행, 최저한세 면제 확대, 조정된 순양도소득세율 인하 및 배당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2005	최저한세 면제 확대

자료: Hollenbeck S and Kahr M.K.(2007).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81년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가 시도되었다(The Economic Recovery Tax Act of 1981). 즉, 3년에 걸쳐서 개인소득세 세율이 25% 인하되어 최고 세율은 50%로 하락하였고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구간 조정이 단행되었다. 또한 기업 차원에서는 가속화된 비용 상각이 허용되었고 10%의 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되었다. 이외 소득구간을 물가와 연동하기로 하였다. 또한 1986년 레이건 행정부는 공정하고 단순한 세제를 위하여 내국세법을 대폭 개정한 조세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공·면제를 폐지 혹은 제한함으로써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세법을 간소화하였다. 특히 1986년 조세개혁은 1913~1985년 사이에 폐지된 조세상의 우대조항보다 더 많은 조항을 폐지하였다¹⁰⁶⁾.

우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50%에서 28%로 인하되었고 과세구간도 15%와 28%의 2개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법인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34%로 인하되었다. 그 대신 양도세 세율은 20%에서 28%로 인상되었고 최저한세(AMT)가 강화되었다. 또한 장

106)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2005).

기 양도차익 면제와 지방세와 주택 이외 신용카드 등 이자비용 공제가 폐지되었고 IRA, 의료비와 접대비 공제에도 한도를 두는 대신 표준공제를 늘렸다. 법인세 차원에서 감가상각 공제에 제한이 가해지고 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이 31%로 인상되었고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1993년에는 36% 세율에 10%가 가산되면서 최고 세율은 39.6%에 이르게 되었고 법인세율도 35%로 인상되었다. 또한 1996~1997년 사이에는 저축 증진을 위하여 처음으로 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저축계좌가 신설되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Roth IRA)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1년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 2001~2010년까지 약 1.35조달러에 달하는 소득세 감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이 밖에도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회보장세가 1935년에 도입되어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노인, 장애인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재원은 종업원 임금의 3,000달러에 대하여 2%의 세금으로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세의 원천징수가 도입되면서 소득세 행정의 납부 기반이 강화되었다. 1956년에는 상해보험(Disability Insurance)이 추가되면서 사회보장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1965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보험세(Medicare tax)가 제정되었고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Medicaid)도 추가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보장세의 총세율은 1962년 2%에서 1965년 6% 그리고 1980년 12.3%로 인상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15.3%에 달하게 되었다.

다. 연도별 세율과 과세구간 그리고 신고소득의 변화

1) 연도별 법정세율과 과세구간(1913~2005년)

앞서 지정한 대로 미국에서 개인소득세가 보통세(mass tax)가 된 것은 1940년대로 이 때 소득세가 일반적 의미에서 대부분의 국민에게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하면 현대적 의미의 연방 개인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1913년 당시에는 세율(1~7%)이 낮

고 과표(2만~50만달러)는 높아 소득세가 주로 고소득층에 부과되었고 일반 국민과는 거리가 있는 세금이었다.

그러나 1941년 이후 소득세 세율은 재정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면서 큰 변화를 겪는다. 1913년 당시 최고 세율은 개인 6%, 법인 1%였으나 이후 1950년대 후반에 개인 최고 세율은 91% 그리고 법인은 52%까지 상승하였다(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다 이윤세를 포함하면 법인세는 세율은 80%). 다만 그 이후 최고 세율이 점차 감소하면서 드디어 1986년 조세개혁으로 개인과 법인의 최고 세율이 각각 28%, 34%로 인하되는 등 소득세 수준과 누진과세 정도는 많이 낮추어졌다. 1993년 세율이 각각 39.6%, 35%로 인상되었으나 2001년 부시 대통령 집권으로 최고 세율이 다시 35%로 인하되었다.

이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1913년 1~7%의 소득세율이 도입된 이후 1940년까지 최저 세율은 대체로 4%대 이내에 있었지만 최고 세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77%까지 상승하였고 전쟁 후 24%로 하락하였던 최고 세율은 대공황이 시작된 1932년 다시 63%로 증가하였다. 또한 1913년 도입 당시 각각 3,000달러(독신), 4,000달러(부부)에 달하던 인적공제도 각각 1,000달러와 2,500달러로 하락하기도 하였다.

〈표 1-2〉 연방소득세 인적공제액과 최고·최저 한계세율 및 구간(1913~2006년)

(단위: 달러, %)

과세 연도	인적공제액			한계세율			
				최저구간		최고구간	
	독신	부부	부양가족	세율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1913	3,000	4,000	n.a.	1.0	20,000	7.0	500,000
1914	3,000	4,000	n.a.	1.0	20,000	7.0	500,000
1915	3,000	4,000	n.a.	1.0	20,000	7.0	500,000
1916	3,000	4,000	n.a.	2.0	20,000	15.0	2,000,000
1917	1,000	2,000	200	2.0	2,000	67.0	2,000,000
1918	1,000	2,000	200	6.0	4,000	77.0	1,000,000
1919	1,000	2,000	200	4.0	4,000	73.0	1,000,000
1920	1,000	2,000	200	4.0	4,000	73.0	1,000,000
1921	1,000	2,500	400	4.0	4,000	73.0	1,000,000
1922	1,000	2,500	400	4.0	4,000	58.0	200,000
1923	1,000	2,500	400	3.0	4,000	43.5	200,000
1924	1,000	2,500	400	1.5	4,000	46.0	500,000
1925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6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7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8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29	1,500	3,500	400	0.375	4,000	24.0	100,000
1930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31	1,500	3,500	400	1.125	4,000	25.0	100,000
1932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3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4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5	1,000	2,500	400	4.0	4,000	63.0	1,000,000
1936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37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38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39	1,000	2,500	400	4.0	4,000	79.0	5,000,000
1940	800	2,000	400	4.4	4,000	81.1	5,000,000
1941	750	1,500	400	10.0	2,000	81.1	5,000,000
1942	500	1,200	350	19.0	2,000	88.0	200,000
1943	500	1,200	350	19.0	2,000	88.0	200,000
1944	500	1,000	500	23.0	2,000	94.0	200,000
1945	500	1,000	500	23.0	2,000	94.0	200,000
1946	500	1,000	500	19.0	2,000	86.5	200,000
1947	500	1,000	500	19.0	2,000	86.5	200,000
1948	600	1,200	600	16.6	4,000	82.1	400,000
1949	600	1,200	600	16.6	4,000	82.1	400,000
1950	600	1,200	600	17.4	4,000	84.4	400,000
1951	600	1,200	600	20.4	4,000	91.0	400,000
1952	600	1,200	600	22.2	4,000	92.0	400,000
1953	600	1,200	600	22.2	4,000	92.0	400,000
1954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5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6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7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8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59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0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표 1-2〉의 계속

(단위: 달러, %)

과세 연도	인적공제액			한계세율			
				최저구간		최고구간	
	독신	부부	부양자	세율	~과세소득	세율	과세소득~
1961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2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3	600	1,200	600	20.0	4,000	91.0	400,000
1964	600	1,200	600	14.0	1,000	77.0	400,000
1965	600	1,200	600	14.0	1,000	70.0	200,000
1966	600	1,200	600	14.0	1,000	70.0	200,000
1967	600	1,200	600	14.0	1,000	70.0	200,000
1968	600	1,200	600	14.0	1,000	75.25	200,000
1969	600	1,200	600	14.0	1,000	77.0	200,000
1970	625	1,250	625	14.0	1,000	71.75	200,000
1971	675	1,350	675	14.0	1,000	70.0	200,000
1972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3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4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5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6	750	1,500	750	14.0	1,000	70.0	200,000
1977	750	1,500	750	14.0	3,200	70.0	203,200
1978	750	1,500	750	14.0	3,200	70.0	203,200
1979	1,000	2,000	1,000	14.0	3,400	70.0	215,400
1980	1,000	2,000	1,000	14.0	3,400	70.0	215,400
1981	1,000	2,000	1,000	13.825	3,400	69.125	215,400
1982	1,000	2,000	1,000	12.0	3,400	50.0	85,600
1983	1,000	2,000	1,000	11.0	3,400	50.0	109,400
1984	1,000	2,000	1,000	11.0	3,400	50.0	162,400
1985	1,040	2,080	1,040	11.0	3,540	50.0	169,020
1986	1,080	2,160	1,080	11.0	3,670	50.0	175,250
1987	1,900	3,800	1,900	11.0	3,000	38.5	90,000
1988	1,950	3,900	1,950	15.0	29,750	28.0	29,750
1989	2,000	4,000	2,000	15.0	30,950	28.0	30,950
1990	2,050	4,100	2,050	15.0	32,450	28.0	32,450
1991	2,150	4,300	2,150	15.0	34,000	31.0	82,150
1992	2,300	4,600	2,300	15.0	35,800	31.0	86,500
1993	2,350	4,700	2,350	15.0	36,900	39.6	89,150
1994	2,450	4,900	2,450	15.0	38,000	39.6	250,000
1995	2,500	5,000	2,500	15.0	39,000	39.6	256,500
1996	2,550	5,100	2,550	15.0	40,100	39.6	263,750
1997	2,650	5,300	2,650	15.0	41,200	39.6	271,050
1998	2,700	5,400	2,700	15.0	42,350	39.6	278,450
1999	2,750	5,500	2,750	15.0	43,050	39.6	283,150
2000	2,800	5,600	2,800	15.0	43,850	39.6	288,350
2001	2,900	5,800	2,900	10.0	12,000	39.1	297,350
2002	3,000	6,000	3,000	10.0	12,000	38.6	307,050
2003	3,050	6,100	3,050	10.0	14,000	35.0	311,950
2004	3,100	6,200	3,100	10.0	14,300	35.0	319,100
2005	3,200	6,400	3,200	10.0	14,600	35.0	326,450
2006	3,300	6,600	3,300	10.0	15,100	35.0	336,550
2007	3,400	6,800	3,400	10.0	15,650	35.0	349,700
2008	3,500	7,000	3,500	10.0	16,050	35.0	357,700

주: 1985년 이후 인적공제와 소득구간은 물가상승률(CPI)에 연동.

자료: IRS, Historical Tables and Appendix(www.irs.gov/taxstats/article).

소득세가 보통세로 자리잡은 1941년 당시 인적공제(독신, 750달러)와 함께 2,000달러 이하 과세소득에는 10% 그리고 500만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에는 81.1%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기 시작한 1944~1945년 사이에 최저 세율은 23% 그리고 최고 세율은 94%까지 상승하였고 인적공제도 500달러(독신)와 1,000달러(부부)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전쟁 이후 점차 감소하던 세율은 그러나 1951년 한국전쟁의 여파로 다시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이 20.4%와 91%로 증가하였다.

이후 세율은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다가 1964년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이 각각 14%와 77%로 하락하였고 그 후에도 1987년까지 각각 11%와 38.5%로 계속 하락하였다. 레이건 행정부 당시 1988~1990년 사이에 29,75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구간을 단 2개로 한정하고 15%와 28%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하면 1987년 당시 11~38.5%의 세율을 3,000~90,000달러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과세구간 수가 늘고 최고 세율도 39.6%로 증가하였다가 2003년 부시 행정부 시절 최고 세율이 35%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하면 최저 세율은 2000년 15%(43,850달러)에서 2001년 10% 과세구간(12,000달러)을 새로 도입하면서 감소하였다.

요컨대 1913년 소득세가 다시 도입되고 난 이후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고 세율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77%(1918년)까지 인상되었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1929년 24%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32년 대공황 당시 63%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94%(20만달러 이상 소득)로 상승하였다가 1964년 70%, 1982년 50% 그리고 1988년 28%까지 인하되었고 1993년 다시 39.6%로 상승하였다가 35%로 인하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1960년대 초반부터 지난 50년간 소득세 세율은 점차 하락하여 2008년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이 15,650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 최저 세율인 10%가 부과되며 과세소득이 357,700달러를 초과하면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 세율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등을 제외하면 연방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즉, 1944~1945년 사이에 94%에 이르던 최고 세율은 2007년 35%까지 하락하였으나 소득세 비중은 GDP 대비 8% 내외로 2000년대에는 그 비중이 오히려 9%대로 증가한 적도 있다. 또한 소득세를 전체 소득으로 나눈 실효세율은 1979~2002년 사이에 대체로 큰 변화가 없이 10% 수준에 불과하였고 2003년 8.3%로 하락한 바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에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79년 약 65% 수준에서 1987년 약 71% 그리고 2005년 86%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물론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이 1979~2005년 사이에 45.5%에서 55.1%로 증가하면서 세부담 비중도 증가한 것이다.

2) 소득세법과 연도별 신고소득(1916~2005)¹⁰⁷⁾

1913년 현대적 의미의 소득세가 도입되고 난 직후 제 1,2차 세계대전 등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법도 자주 변경을 겪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916년 소득세의 원천징수가 폐지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기부금 공제와 자녀공제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1921년에는 장기 보유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상의 우대조항이 도입되고 1939년에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이 만들어지면서 산재해 있던 재정법이 내국세법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변화는 전술한 대로 1940년대 초에 소득세 납부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적용되면서 발생하였다. 그 이전에는 면세대상 소득이 높아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할 만큼 소득이 많지 않았다. 1960년대가 되면 다수의 소득세법 개정이 재정 수요보다는 사회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행되었다. 근로소득공제나 교육공제 그리고 의료저축이 그 예이다.

먼저 1913년 당시 약 36만건에 불과하던 소득세 신고건수는 1917년 세법 개정으로 약 350만건으로 증가하였고 1940년 포괄적 과세를 위한 세법 개정으로 신고건수가 1,470만건에 달하게 된다. 1946년 처음으로 약 5천만건에 이르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는 1억 3,400만건이 신고되었다.

1913년에 신고된 총소득은 39억달러인데 그 후 2005년에는 약 7.5조달러를 소득세 납부를 위해 신고하였다. 대공황으로 1929~1932년 사이에 신고된 소득이 감소한 바 있지만 그 이후에 신고된 총소득이 감소한 연도는 1938년, 1949년, 2001년 그리고 2002년 4번뿐이었다. 2001년과 2002년에는 양도소득의 급격한 하락으로 신고소득이

107) Hollenbeck S. and Kahr M.K.(2007) 참조.

감소하였다.

신고소득의 구성비를 보면 1916년¹⁰⁸⁾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1917년 당시 전체 신고소득의 26.7%에 불과하던 근로소득¹⁰⁹⁾은 1970년 83.2%를 차지하게 된다. 1950~1980년대 초까지 근로소득은 총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지난 20년간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05년이 되면 68.4%에 달하게 된다¹¹⁰⁾. 이에 비하면 양도, 사업 그리고 기타소득의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1995~2005년 사이에 양도소득 비중은 2.8%에서 8.9% 그리고 사업소득 비중은 3.2%에서 8.9%로 증가하였다.

한편 신고소득의 정의와 세율 등에 따라 변하는 평균세율(공제전 소득세/신고소득)은 1940년대 이전까지 1.0~7.2%에 달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 일련의 세법 개정으로 평균세율이 1942년 처음으로 10%를 올라서고 1945년에는 14.2%에 이르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로 1949년 잠시 9.1%로 하락했던 평균세율은 한국전쟁으로 10%를 초과하면서 1963년 13.3%에 달하게 된다.

108) 이는 물론 소득세의 면세점이 높아져 발생한 결과이다.

109) 1917년 당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26.7%, 배당소득 20.9% 그리고 이자소득은 6.9%를 차지하였다.

110) 2005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68.4%,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 각각 8.9% 그리고 배당과 이자소득이 각각 2.2% 이다.

〈표 1-3〉 연방소득세 신고와 소득의 변화(1913~2005년)

(단위: 천건, 백만달러)

	신고수	총소득	소득종류						소득세 (공제전)	납세 의무액	최저 한세
			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 ¹⁾	양도	기타			
1913	358	3,900	-	-	-	-	-	-	28	28	-
1914	358	4,000	-	-	-	-	-	-	41	41	-
1915	347	4,600	-	-	-	-	-	-	68	68	-
1916	437	6,299	1,851	667	2,136	2,637	-	-992	173	173	-
1917	3,473	13,652	3,648	936	2,849	3,640	-	2,579	795	795	-
1918	4,425	15,925	8,267	1,403	2,469	4,339	-	-553	1,128	1,128	-
1919	5,333	19,859	10,756	1,500	2,454	5,709	-	-560	1,270	1,270	-
1920	7,260	23,736	15,323	1,709	2,736	4,922	-	-954	1,075	1,075	-
1921	6,662	19,577	13,813	1,690	2,477	3,707	462	-2,572	719	719	-
1922	6,787	21,761	13,694	1,738	2,664	4,267	742	-1,344	861	861	-
1923	7,698	25,313	14,193	2,183	3,120	6,399	866	-1,448	662	662	-
1924	7,370	26,189	13,618	2,281	3,251	6,565	1,124	-650	735	704	-
1925	4,171	22,337	9,742	1,814	3,465	5,516	940	860	759	735	-
1926	4,138	22,442	9,994	1,936	4,012	5,306	1,287	-93	757	732	-
1927	4,102	23,854	10,218	2,026	4,255	5,043	1,585	727	856	830	-
1928	4,144	27,338	10,945	2,143	4,440	5,223	1,708	2,879	1,199	1,164	-
1929	4,133	26,692	11,373	2,210	5,081	5,282	1,341	1,405	1,024	1,002	-
1930	3,852	17,047	10,206	1,940	4,632	3,101	676	-3,508	502	477	-
1931	3,411	12,221	8,631	1,337	3,600	2,016	990	-4,353	264	246	-
1932	4,083	10,671	8,356	1,307	2,189	1,229	325	-2,735	330	330	-
1933	3,892	11,473	7,565	1,106	1,711	1,746	232	-887	374	374	-
1934	4,198	14,957	8,681	995	2,041	2,125	18	1,097	511	511	-
1935	4,670	17,193	9,972	98	2,288	2,387	363	2,085	657	657	-
1936	5,486	21,773	11,718	955	3,228	3,210	853	1,810	1,214	1,214	-
1937	6,350	24,120	14,206	856	3,248	3,359	158	2,293	1,142	1,142	-
1938	6,251	21,436	13,307	823	2,212	3,120	-176	2,150	766	766	-
1939	7,652	25,363	16,491	832	2,544	3,674	321	1,501	929	929	-
1940	14,711	40,155	27,707	1,003	2,999	5,407	332	2,707	1,496	1,496	-
1941	25,870	63,433	47,140	1,029	3,299	8,455	430	3,080	3,908	3,908	-
1942	36,619	85,780	65,617	982	2,833	12,833	112	3,403	8,927	8,927	-
1943	43,722	106,555	82,755	886	2,780	15,717	595	3,822	14,590	14,590	-
1944	47,111	116,465	91,125	- ²⁾	3,924 ²⁾	17,250	917	3,249	16,224	16,216	-
1945	49,932	120,009	91,700	- ²⁾	3,925 ²⁾	19,003	2,114	3,267	17,061	17,050	-
1946	52,817	134,083	99,174	1,057	3,674	23,267	3,068	3,833	16,091	16,076	-
1947	55,099	149,736	114,804	1,125	4,295	23,295	2,154	4,063	18,092	18,076	-
1948	52,072	163,516	125,881	1,293	4,971	24,506	2,201	4,664	15,442	15,442	-
1949	51,814	160,574	124,883	1,528	5,246	21,705	1,604	5,608	14,538	14,538	-
1950	53,060	179,148	139,073	1,595	6,157	23,429	2,927	5,967	18,375	18,375	-
1951	55,447	202,337	160,482	1,702	6,056	24,878	2,997	6,222	24,439	24,439	-
1952	56,529	215,290	174,339	1,847	5,860	24,754	2,470	6,020	27,822	28,020	-
1953	58,838	228,708	187,734	2,043	5,828	24,951	2,075	6,077	29,450	29,657	-
1954	56,747	229,573	185,953	2,370	7,048	25,452	3,352	5,398	26,873	26,967	-
1955	58,250	248,974	200,712	2,584	7,851	27,454	4,751	5,622	29,982	30,077	-
1956	59,197	268,368	215,618	2,872	8,606	30,137	4,553	6,482	33,134	33,265	-
1957	59,825	280,895	228,077	3,319	9,124	29,698	3,485	7,192	34,816	34,975	-
1958	59,085	281,777	227,551	3,659	9,741	29,906	4,330	6,590	34,755	34,925	-
1959	60,271	305,772	247,370	4,395	9,356	30,994	6,275	7,382	39,092	39,347	-
1960	61,028	316,141	257,918	5,057	9,530	30,038	5,300	8,298	39,909	40,298	-
1961	61,499	330,617	266,902	5,683	9,890	31,578	7,621	8,943	42,714	43,066	-
1962	62,712	349,484	283,373	7,155	10,640	33,269	5,771	9,276	45,691	45,790	-

〈표 1-3〉의 계속

(단위: 천건, 백만달러)

	신고수	총소득	소득종류						소득세 (공제전)	납세 의무액	최저 한세
			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 ¹⁾	양도	기타			
1963	63,943	369,675	299,443	9,212	11,452	33,184	6,449	9,935	49,117	49,216	-
1964	65,376	399,539	323,266	10,125	11,917	35,358	7,939	10,934	47,896	48,185	-
1965	67,596	432,344	347,150	11,296	12,961	38,559	10,180	12,198	50,144	50,632	-
1966	70,160	472,132	381,967	13,225	13,998	40,984	9,941	12,917	56,773	51,627	-
1967	71,651	509,151	411,646	14,899	14,202	42,280	13,682	12,442	63,655	64,525	-
1968	73,729	559,760	451,505	16,782	15,222	45,503	17,990	12,758	77,440	78,419	-
1969	75,834	603,546	498,865	19,626	15,740	45,842	14,853	8,620	87,336	88,524	-
1970	74,280	639,358	531,884	22,021	15,807	44,242	9,007	16,397	84,156	85,767	122
1971	74,576	682,467	564,967	24,731	15,671	45,029	13,155	18,914	85,942	87,469	169
1972	77,573	755,540	622,599	27,400	16,794	49,616	17,076	22,055	94,442	95,949	216
1973	80,693	837,813	687,179	32,174	18,734	56,489	16,672	26,565	109,394	111,175	182
1974	83,340	918,626	758,628	39,543	20,887	55,055	13,470	31,043	125,079	127,003	143
1975	82,229	962,887	795,399	43,434	21,892	53,736	14,072	34,354	127,432	127,939	144
1976	84,670	1,070,180	880,998	48,588	24,461	59,637	18,562	37,934	144,186	145,749	1,000
1977	86,635	1,177,821	969,403	54,603	27,020	63,271	20,777	42,747	162,587	164,024	1,323
1978	89,772	1,324,811	1,090,292	61,223	30,206	75,156	23,231	44,703	193,555	193,185	1,514
1979	92,694	1,490,173	1,229,251	73,875	33,483	69,013	28,448	56,103	220,099	220,100	1,175
1980	93,902	1,642,346	1,349,843	102,009	38,761	64,558	29,660	57,515	256,294	256,251	1,263
1981	95,396	1,804,046	1,486,100	140,559	48,161	52,934	30,819	45,473	290,207	291,127	1,827
1982	95,337	1,917,023	1,564,995	157,021	54,045	48,815	34,404	57,743	283,932	284,708	1,069
1983	96,321	2,023,983	1,644,573	153,805	48,557	58,832	49,408	67,808	279,842	282,318	2,521
1984	99,439	2,229,649	1,807,138	176,369	48,641	68,498	54,519	74,484	306,686	312,534	4,490
1985	101,660	2,401,034	1,928,201	182,109	55,046	76,246	68,278	91,154	332,165	338,765	3,792
1986	103,045	2,580,689	2,031,026	167,640	61,623	84,564	132,842	102,994	367,592	381,224	6,713
1987	106,996	2,803,941	2,163,906	168,966	66,791	129,775	137,399	137,104	373,857	384,538	1,675
1988	109,708	3,111,222	2,337,984	186,982	77,330	183,403	152,841	172,682	418,889	430,733	1,028
1989	112,136	3,280,931	2,449,531	220,016	81,309	195,830	145,631	188,614	438,240	451,873	831
1990	113,717	3,439,402	2,599,401	227,084	80,169	208,452	113,159	211,137	453,128	468,631	830
1991	114,730	3,499,250	2,674,261	209,411	77,284	205,054	102,776	230,464	454,503	471,083	1,213
1992	113,605	3,664,594	2,805,703	162,343	77,926	241,654	118,230	258,738	482,631	500,020	1,357
1993	114,602	3,759,964	2,892,120	131,141	79,729	248,573	144,172	264,229	508,894	526,819	2,053
1994	115,943	3,946,621	3,026,778	126,169	82,410	280,589	142,288	288,387	541,571	561,042	2,212
1995	118,218	4,230,493	3,201,457	154,781	94,592	295,096	170,415	314,152	596,169	615,806	2,291
1996	120,351	4,578,621	3,376,872	165,673	104,255	323,684	251,817	356,320	666,724	687,332	2,813
1997	122,422	5,016,905	3,613,918	171,700	120,493	355,064	356,083	399,647	739,482	762,258	4,005
1998	124,771	5,467,504	3,879,762	178,334	118,480	389,755	446,084	455,089	813,569	821,899	5,015
1999	127,075	5,912,167	4,132,473	175,675	132,466	419,486	542,758	509,309	906,812	912,464	6,478
2000	129,374	6,423,986	4,456,167	199,322	146,988	426,779	630,542	564,188	1,108,219	1,017,471	9,601
2001	130,255	6,231,177	4,565,229	198,178	119,533	441,883	326,527	579,827	933,567	925,435	6,757
2002	130,076	6,110,747	4,559,691	149,025	103,241	458,751	238,789	601,250	836,843	834,915	6,854
2003	130,424	6,294,684	4,649,900	127,160	115,241	483,712	294,354	624,417	790,006	787,584	9,470
2004	132,226	6,886,852	4,921,806	125,474	146,839	563,210	473,662	655,861	884,343	874,010	13,029
2005	134,373	7,531,892	5,155,407	162,433	166,482	672,028	668,015	707,527	990,152	980,259	17,421

주: 1) 사업소득은 파트너십과 S 법인 순소득.

2) 1944년과 1945년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쳐서 배당소득으로 표시.

자료: Hollenbeck S. and Kahr M.K.(2007).

또한 1964년 세법 개정으로 세율 인하와 최소 표준공제가 시행되면서 세율이 1965년 11.6%로 하락하였지만 월남전쟁으로 인한 10% 가산세(tax surcharge)가 부과되면서 1969년 14.5%로 증가하였다. 이후 1970년대에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평균 세율이 1981년 16.1%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금 부담이 늘어 2000년 당시 평균세율은 15.9%에 이르게 된다. 그 이후 부시 행정부가 시행한 일련의 감세법안으로 평균세율은 2005년 13.1%로 하락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소득층이 세제상의 우대조항을 이용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0년 도입된 최저한세(AMT)는 처음에는 그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76년 세제개혁으로 조세상의 우대조항 정의가 확대되고 세율이 인상되면서 그 후 10년간 약 7배 정도 증가하여 1986년 67억달러에 이르게 된다. 1986년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는 17억달러로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2001년 이후 67억달러에서 2005년이 되면 174억달러로 증가하게 되었다.

라. 연방소득세의 주요 특징

1) 기본원칙

연방소득세는 미국의 세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2007년 현재 전체 세금 징수액의 50.8%를 차지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세¹¹¹⁾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약 82.4%에 이르게 된다. 소득세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근로소득세 이외에 파트너십, 개인회사, S 법인 그리고 유산신탁기금¹¹²⁾ 등의 소득이 업체 차원이 아닌 소유주 차원의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세의 단순화와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은 미국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과제이다.

연방소득세의 결정은 포괄적 의미의 종합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

111) 자영업자도 합계 15.3%의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자영업 고용세라고 한다.

112) 기금(trust)은 전술한 대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양도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기금은 양도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기금이 종료되면 주된 수증자(principal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한다.

하고 난 총소득의 산정에서 출발한다. 총소득(gross income)에서 면세소득 이외 사업 경비(손실) 공제(혹은 투자경비 중 일부)¹¹³⁾를 제하면 조정된 총소득(AGI)이 되는데 조정된 총소득이 일반적인 개념의 소득이다.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인적공제와 개인경비(손실)에 해당하는 항목별 공제(혹은 표준공제) 등의 개인공제(personal deduction)를 제하면 과세소득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공제 전 소득세가 된다.

미국에서는 부부가 소득신고를 별도로 혹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또한 18세 이하 자녀의 불로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부모의 세율이 자녀의 불로소득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자녀의 소득신고에서 표준공제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소득세 명목세율은 2007년을 기준으로 10~35%의 6단계로 구성된다. 하지만 2011년이 되면 세율이 15~39.6%의 5단계로 환원될 예정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도 현재 5%, 15%이지만 2011년에는 10%, 20%로 돌아갈 예정이다.

2007년 당시 과세소득 대비 평균세율은 대략 18.2%에 달한다. 또한 전체 개인소득 대비 실질세율은 9.1%로 각종 사업 및 개인공제가 실질세율을 절반 정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비중은 부시 행정부의 감세로 일반적 수치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1990년 이후 경향은 대개 과세소득 대비 평균세율은 21% 그리고 총소득 대비 평균세율을 11%를 전후한다.

개인소득에서 조정된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5%에 이르고 과세소득의 비중은 50%를 전후한다. 따라서 전술한 대로 각종 이유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전체 소득의 절반에 이른다. 이외 각종 세법의 변화를 감안한 조정된 총소득(AGI)의 분포를 보면 1986년 당시 상위 10%(1%) 계층이 전체 조정된 총소득의 35.1%(11.3%)를 차지하였으나 2005년이 되면 그 비중이 40.9%(18.1%)에 이르러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위 10%(1%)가 납부하는 소득세 비중은 72.7%(38.8%)에 달한다.

113) 사전공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개인경비로는 학자금 대출이자(2,500달러 한도), 위자료, 이 사비용, 의료저축 불입금이 있다.

2) 소득신고

미국에서 총소득(gross income)은 내국세법 제61조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면세 소득¹¹⁴⁾을 제외한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을 포함한다. 어떤 납세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현금 혹은 자산¹¹⁵⁾ 등은 해당 납세자의 소득이며 불법소득도 실현된 소득이라면 총소득에 포함된다.

또한 소득을 창출하는 재원을 보유한 납세자가 자식에게 이로 인한 소득을 주거나 채무의 대납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위장 처분하여도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불로소득은 부모의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외 시장이자율 이하로 대출된 부채에 대해서도 금리의 차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1930년 미국 대법원은 각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신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판정하였다¹¹⁶⁾. 이 판정의 중요성은 개인이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shift)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1,800달러 이상의 불로소득이 얻으면 불로소득 가운데 일부(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kiddie tax). 또한 채권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다면 채권의 이자소득을 자녀에게 주었다(assign)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모가 납부해야 한다.

총소득은 포괄적 개념으로 근로소득, 사업비용을 제외한 사업소득, 투자소득 혹은 불로소득, 보험금과 연금, 유산신탁기금 지급금 그리고 위자료, 실업수당, 상금 등 이전소득을 포함한다. 어떤 소득이 법에서 정한 면세소득인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현금이 아닌 보상은 공정한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자본소득(capital gain)은 분리과세되어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일반 배당소득도 자본소득과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율로 과세된다.

자본금의 회수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 소득이 아닌 자금

114) 미실현소득, 자택의 양도소득(50만달러 한도), 연금불입금, 생명보험금, 위자료, 장학금, 피해보상금, 고용주 보험료, 종업원 할인, 자녀부양비 등의 부가급부, 포상금 등이 있다.

115) 서비스 대가로 조건부 자산을 제공받을 경우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때 소득으로 인정된다.

116) Lucas vs Earl, 8 AFR 10287, 2 USTC ¶ 496(USSC, 1930).

의 배당은 원금 회수이며 연금에서도 이연과세가 아니면 원금이 아닌 이익만이 과세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손상 보험금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된다. 그러나 공제받은 비용이 나중에 환수되면 과세 신고해야 한다.

공제항목에는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공제(for)와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사후공제(from)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사업성 경비, 소득창출 경비 그리고 극히 제한된 개인경비이다. 대부분의 투자 등 소득창출 경비와 개인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의 공제이다. 전자의 경우 공제의 제한이 없는 반면 후자는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중요하다.

사업비용은 제한없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고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특히 사업경비는 납세자의 사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투자 혹은 개인경비의 사전공제는 제한된다. 한 예로 주식투자 경비는 사업경비가 아닌 투자행위로 간주되어 조정된 소득으로부터 공제된다. 이처럼 임대와 로열티를 제외한 이자비용 등 개인 차원에서 투자경비는 사후공제에 해당한다. 개인경비는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위자료, 이사비용, 일부 의료보험저축 이외 2,500달러 이하의 교육대출금 이자 등 극히 일부만이 사전 공제된다.

실현된 사업손실은 일반소득에서 제한없이 공제가 허용된다(ordinary loss). 그러나 투자손실은 양도손실(capital loss)로 간주되어 공제가 제한되고 개인용 자산의 손실은 천연재해에 의한 손상을 제외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이외 납세자가 세금 회피를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투자/사업 활동으로 입은 손실은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passive loss). 운영업손실은 2년 소급과 20년 이월이 가능하며 대손금은 장부가액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자본지출 비용은 일반 공제가 아닌 감가상각 공제되며 면세소득이나 불법소득 관련 경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 목적의 경비도 마찬가지이다. 이외 정치자금과 일부 로비성 경비 그리고 위장된 주식매매(wash sales)는 공제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 거래(related parties)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경비도 공제가 제한되고 특히 이 경우 위장 소유와 거래를 막기 위하여 실질적 소유권(constructive ownership)을 고려한 공제를 한다. 접대비는 엄격한 통제를 받고 사치스럽지 않아야 한다. 즉, 선물은 1인당 25달러 이내에서 공제되며 출장비 등은 특히 충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접대

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비용의 50%가 공제된다. 이외 75달러 이상 지출한 접대비는 영수증을 포함,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조정된 총소득 사후 공제항목(from)에는 인적공제와 비용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인적공제로서 납세자와 부양가족 1인당 3,400달러가 공제된다. 따라서 3인 가족의 경우 표준공제를 포함하면 총 20,900달러에 이르는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단, 총소득이 234,600달러를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제한되며 357,100달러에 이르면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개인비용의 공제를 위하여 소득과 관련 없이 공제되는 표준공제(2007년 부부 10,700달러)와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의 제한이 있는 항목별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개인경비는 의료비, 지방세, 주택대출이자, 기부금, 손상(절도)손실 등 정책적 목적의 일부 경비로 제한된다. 또한 임대와 로열티 경비를 제외한 투자경비도 항목별 공제에서 기타공제에 해당한다. 항목별 공제는 소득의 일부로 제한되거나 혹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어야 공제되기도 하고 소득이 156,400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항목별 공제 금액을 제한하기도 한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상쇄되므로 일반 공제에 비하여 혜택이 크다. 고용증대, 환경, 에너지 절약, 연구개발, 자녀공제, 자녀부양, 노인과 장애인, 교육비 그리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외국세액공제가 있다.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근로장려 세액공제(EITC)이다. 근로장려 세액공제는 일종의 소득 지원금(negative income tax)으로 비생산적인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이 변한다.

미국에서는 고소득층이 각종 공제나 감면세를 통하여 세금을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경비만 총소득을 위한 공제로 하고 또한 한도금액도 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이 적정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최저한세 제도(AMT)를 도입하고 있다. 납세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소득세와 과세소득과 일부 세금우대 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그 중 많은 쪽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층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연방소득세는 과세소득에 따라 10~35%의 6개 구간으로 나뉘어 과세된다. 미국에서는 과세구간과 공제금액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되며 자영업이나 사업소득은 분기별로 추정세액을 신고하며 나중에 정산된다.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면 신고가 필요없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대상자, 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인 납세자, 불로소득이 750달러 이상이거나 총소득이 표준공제를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미국내 소득이 30%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된다. 이외 10,000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비록 분할되어 지급되더라도 이를 받은 납세자가 신고해야 한다.

고용주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연방실업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분기별로 예납을 해야 한다. 만약 예탁금이 2,500달러를 초과하면 더 자주 예납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투자, 임대, 로열티, 자영업 소득이나 원천징수한 금액이 세금보다 1,000달러 이상으로 적은 납세자는 분기별로 이를 예납해야 한다.

3) 자본소득과 분리과세

1922년부터 미국에서 자본소득은 일반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등 과세상 특별대우를 받았다¹¹⁷⁾. 이 때 자본손익은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처분으로 인하여 실현된 매각대금에서 조정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자본자산에는 주식, 채권 등의 투자자산과 주택, 자동차, 수집품 등 개인용 자산 이외 일정 조건하에 특허권과 영업권이 포함된다. 다만 개인자산의 매각 차익은 자본소득이지만 손상과 절도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면 양도손실로 간주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자본자산과 달리 사업자산(1221조 자산)의 소득은 사업행위로부터 파생된 이익을 말하며 이에 따라 자본의 가치상승(capital appreciation)이 아닌 사업이익(business profit)으로 간주된다. 다만 감가상각되는 사업용 자산과 토지는 장기보유 자본소득이나 일반 손실로 취급된다(Sec. 1231)¹¹⁸⁾. 사업자산은 재고, 매출채권, 예술품 등 납세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창출한 자산 등이 있다¹¹⁹⁾. 한편 모든 자본이득이 특별대우를

117) 다만 1988~1990년 사이에는 자본소득도 일반소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118) 임대 사업자가 아닌 납세자의 임대손실은 수동적 손실로 간주되어 임대소득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이외 감가상각의 혜택과 양도세율 적용을 동시에 받는 상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있다(1245, 1250조).

119) 예술가 본인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납세자가 소장한 예술품의 매매에 따른 이익은 물론 자

받는 것은 아니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최소한의 보유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본이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은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 신고자의 경우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5%와 1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우대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순양도소득은 장기 순양도이익에서 단기 순양도손실을 제한 금액이다. 반면 1년 이하로 보유한 자본이득은 일반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우대세율은 2011년부터 각각 10%, 20%로 환원될 예정이다. 또한 일반 배당소득도 자본소득과 마찬가지로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율로 과세된다.

〈표 1-4〉 양도(자본)소득 세율

(단위: %)

일반소득세 한계세율		10	15	25	28	33	35
자본소득	1년 이하 보유	10	15	25	25	33	35
	1년 이상 보유	5	5	15	15	15	15

한편 순양도손실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즉, 근로소득이나 투자소득 등)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3,000달러로 제한된다. 그 이상의 손실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그 당시 양도이익과 상쇄가 가능하다. 순양도손실이란 단기(장기)양도 순손실이 장기(단기)양도 순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

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는 외국인(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과

본이득으로 간주된다.

세된다. 이에 비하면 영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창출한 소득, 즉 미국 국내원천소득(US source income)과 제한적으로 외국소득에 대하여 과세되고 30%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등 과세방식이 상당히 다르다.

영주권자나 미국에 실질적으로 거주한 자는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된다. 특정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있는 등 3년간 183일 이상 미국에 있었으면 과세 목적상 거주 외국인으로 간주된다(substantial presence test).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외국인 중에서 당해연도에 최소 31일간 미국에 계속 있었던 사람은 거주 외국인 자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183일 이하로 미국에 있었고 외국을 세금 납부 목적상 거주지(tax home)로 하며 미국보다 납세 거주지인 외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¹²⁰⁾ 유지하면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된다. 또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거주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나. 소득의 배정: 부부와 자식

1930년 미국 대법원은 납세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따른 보수에 대해서는 납세자 본인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¹²¹⁾. 이에 따라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자신의 소득을 배당하는 계약을 맺었어도 소득세는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한편 1940년 대법원은 이러한 소득배정의 원칙을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자산의 소유자가 그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책임져야 한다고 판정하였다¹²²⁾. 즉, 이자소득을 자녀가 받더라도 채권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으면 부모가 그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자가 된다.

1948년 이전에는 부부합산신고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부부는 각각 따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연방소득세법상 부부간의 소득 배정원칙은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42개 주에서는 일반법에 따라 소득을 실제로 창출한 근로자 혹은 자산의 소유자에게

120) 더 긴밀한 관계(closer connection)란 거주지로 지정한 장소와 W-9 등의 신고서 그리고 가족, 개인물품, 사회적 교제, 사업활동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판단되며 납세 거주지(tax home)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고용활동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21) *Lucas v. Earl*, 8 AFTR 10287, 2 USTC ¶496(USSC, 1930).

122) *Helvering v. Horst*, 24 AFTR 1058, 40-2 USTC ¶9787(USSC, 1940).

세금을 신고할 책임이 있다(common law). 이러한 일반법 체계에서는 공동소유 자산에서 창출되는 소득만이 공동소득(joint income)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등 나머지 8개 주는 공동자산법(communitary property law)에 따라 소득이 배분된다. 이들 주에서는 누가 소득을 창출했건 상관없이 부부가 임금을 포함하여 똑같이 소득을 나눈다. 다만 결혼 전의 재산과 결혼 후 증여·유산으로 받은 소득은 별도 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별도 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공동소득으로 간주할지 아니면 개별 소득으로 간주할지는 주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이다호, 루지애나, 텍사스주는 이러한 소득도 공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반면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네바다, 워싱턴주는 이를 개인소득으로 간주한다.

소득세는 누진과세되므로 일반법을 채택한 주에 거주하는 부부는 공동자산법을 채택한 주에 사는 부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48년 의회가 부부합산신고를 허용하고 이에 따른 과세구간을 달리 정하게 되었다. 이후 미혼의 납세자가 가족을 꾸려가는 가장인 경우에도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인식 아래 1957년 가정에 대한 과세구간이 따로 결정되었다.

한편 부부가 합산신고를 하면 양 배우자에게 세금과 벌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Sec. 6015). 그러나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소득을 감출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첫째, 상대방 배우자의 오류로 인한 결손이 발생하고 둘째, 이를 다른 배우자가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가 없으며 셋째, 주변 상황과 사실을 고려할 때 연대책임이 불공평하면 다른 배우자의 책임이 전부 혹은 일부 면제될 수 있다(innocent spouse relief).

단, 해당 배우자는 국세청의 세금 징수가 개시된 후 2년 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g, Sec. 1.6012-1(a)(5)). 만약 세금 결손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부부별도 신고의 경우 공동소득은 부부가 절반씩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한 쪽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존재를 모를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가 이를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Sec. 66).

부부의 경우 누구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는 전술한 대로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비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등 소득의 형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18세 이하의 자녀가 불로소득(earned income)¹²³⁾을 창출할 경우 부모의 한계세율이 자녀의 한계세율보다 높으면 이러한 불로소득 중 일부가 부모의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kiddie tax). 이와 반대로 만약 부모가 선택하면 자녀의 불로소득을 자신의 신고서에 포함하고 자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사업형태에 따른 납세자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주체와 납세자는 사업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파트너십의 경우 회사가 소득과 경비 등을 신고하면 개별 파트너는 개인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자신에게 배정된 소득 등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납세주체(taxable entity)와 신고(도관)주체(conduit or flow through entity)를 구분할 수 있다.

납세주체는 납세의무가 있는 주체로 개인과 C 법인(Form 1120) 그리고 상속(estate) 혹은 유산신탁기금(trust, Form 1041)¹²⁴⁾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자영업자¹²⁵⁾는 소득세 신고서(Form 1140)에 있는 별도의 신고서(Schedule C)에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한다¹²⁶⁾.

이에 비하면 신고주체는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 등을 다른 납세주체에게 넘기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소득 관련 자료에 대한 신고의무만 있다. 이와 같은 예에는 파트너십(Sec. 701, Form 1065), S 법인(Sec. 1366, Form 1120S)¹²⁷⁾, 유한회사와

123) 불로소득은 배당, 이자, 임대, 양도, 로열티 등 근로소득 이외 소득을 말한다.

124) 신탁기금 관리자(trustee)가 수증자(beneficiary)를 위하여 자산을 운영하는 제도

125) 자영업자란 개인사업자나 독립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란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변호사, 회계사, 의사, 도급업자, 계약업자 등 대중에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파용인(employee)과 달리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대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

126) 농부는 Form 1040상의 Schedule F를 이용한다.

127) Subchapter S 법인은 주식회사이지만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 소득세상으로는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파트너십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Form 1065). 따라서 이들 회사는 정규 C 법인과 달리 이중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산신탁기금이 있다. S 법인과 유산신탁기금은 중복된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 예컨대 유산신탁기금은 기금이 보유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한다.

주식회사는 C 법인과 S 법인이 있는데 C 법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로서 과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또한 주주는 C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다른 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C 법인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은 과세되지 않는다¹²⁸⁾. S 법인은 과세목적상 별도의 개체로 간주되지 않고 그 대신 S 법인의 주주가 자신에게 할당된 S 법인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C 법인과 달리 S 법인의 주주는 회사소득을 지급받지 않아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S 법인은 총수입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경상소득(ordinary income)과 양도손익 등 특별항목을 국세청에 신고한다. 이후 주주들은 각자 자신에게 할당된 S 법인의 소득과 특별항목을 개인소득세에서 다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 한 예로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S 법인의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손실을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십도 S 법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도관업체로서 파트너들이 파트너십의 소득과 특별항목을 자신의 개인소득세로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한편 납세자가 피용인(employee)인지 아니면 자영업자(self-employed)인지에 따라 사회보장세 등 고용세(employment tax)의 납부의무가 달라진다. 또한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비용은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피용인이 지출한 비용은 고용주의 변상 여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특히 자영업자는 본인에게 부과되는 몫 이외에 고용주의 몫인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총 15.3%의 세금을 납부하며 이를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납세자가 피용인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재무성은 고용주 피용인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결과물과 결과를 성취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있

128) 법인세 세율은 소득에 따라 15%, 25%, 34%, 39%, 35%, 38%, 35%가 부과되는데 세율이 39%로 상승하였다가 35%로 감소하고 다시 38%로 증가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ontrol and direct). 미국 국세청은 피용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지시 내용, 근로시간, 작업장소, 보수 지급방식 등 약 20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¹²⁹⁾.

라. 과세시점

소득세가 부과되는 시점은 납세자의 회계방식에 따라 다르다. 회계방식은 대체로 현금주의(cash method), 발생주의(accrual method) 그리고 혼합주의(hybrid method)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납세자는 이들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단 한 방식을 선택하면 국세청의 허가 없이 회계방식을 바꿀 수 없다. 또한 납세자가 선택한 방식이 국세청이 보기에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회계방식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는 장부기록을 위하여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한다(Sec. 446(a)).

납세자가 재고를 유지하면 매입과 매출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는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¹³⁰⁾. 다만 이전 3년간 총수입이 연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있다(납세자의 주된 영업이 재고판매가 아니면 1천만달러). C 법인, 주식회사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조세 피난처(tax shelter), 일부 기금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개인서비스 주식회사와 농장 그리고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하 단체는 이러한 요건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와 영세업체는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한다.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납세자가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닌 소득을 실제 혹은 실질적으로 수령했을 때 이를 신고한다(actual or constructive receipt). 실질적 수령이란 납세자가 상당한 제약없이 아무 때나 소득을 인출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소득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상환하지 않은 만기 채권이자, 수령이 거부된 임금 등이 있을 수 있다.

소득의 수령은 납세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현금, 자산 혹은 서비스의 형태로 받을

129) Rev. Rul. 87-41, 1987-1 CB 296.

130) Reg. Sec. 1.446-1(c)(2)(i).

수 있다. 따라서 매출채권은 현금주의 아래서 의미가 없고 실제 채권이 반환될 때 인정된다. 소득 발생 시점이 아닌 수령 시점에 과세가 되면 소득과 경비 사이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고 선급금의 경우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제조항을 운용하고 있다¹³¹⁾.

물론 현금주의 아래서는 실제 경비지출이 이루어질 때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세자가 상황에 따라 공제시기를 조정하여 납세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수입이 있을 때 세금을 납부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하면 발생주의에서는 실제 수입을 수령하지 않아도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경비를 조정해야 하므로 회계방식이 복잡하다.

소득을 실제로 수령했을 때 신고하는 원칙에서 예외가 되는 소득 항목이 있다. 우선 Series E와 Series EE 연방정부 채권의 이자소득은 채권 만기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만기 기한이 최대 40년인 동 채권은 채권 소지자가 은퇴한 이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작물이나 가축 판매수입도 가뭄 등 천연재해로 어쩔 수 없이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신고를 1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대로 연간 총수입이 100만달러 이하인 영세업자는 재고를 관리할 필요없이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비용이 지불되는 연도에 공제를 하려면 당해연도에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급되고 재고가 매각되어야 한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에서는 소득이 창출된 시점이 신고연도가 된다. 그 시점은 거래요건이 모두 발생하여 소득을 수령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고 합리적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를 말한다(all-events test)¹³²⁾. 이는 자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당시 그리고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가 수행된 시점을 말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사전 지급된 수입(prepaid income)은 이를 수령한 연도에 과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가 과세와 재무회계 목적상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를 처리하면 일부 선급금의 경우 신고 연기가 가능하다. 한 예로 미래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1년 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31) 한 예로 현금주의를 채택한 납세자도 자본장비, 대량 구입한 물품의 경비, 사전에 지출된 이자나 임대료는 발생주의 원칙 아래서 공제할 수도 있다.

132) Reg. Sec. 1.451-19(a).

한편 현금 지급과 관계없이 경비는 발생되고 확정될 때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경비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발생한다(Reg. sec. 1.461-1(a)(2)). 이를 위해서는 소득의 발생 시점과 마찬가지로 경비를 지불할 의무가 확정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은 자산 혹은 서비스가 납세자에게 실제로 제공된 시점, 납세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점, 납세자가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시점 혹은 납세자가 지급약속을 하였으면 실제로 금액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Sec. 461(h)).

마지막으로 혼합주의 회계방식이란 현금과 발생주의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한 예로 재고를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고 탄력적인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에 따라 제품의 매매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이용한다. 이러한 영세업자는 여타 소득과 경비는 현금주의로 신고하지만 제품의 판매와 매입에 대해서는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신고한다.

3. 비과세소득

가. 비과세소득의 개념

내국세법 61(a)항에 의하면 법에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모두 총소득에 포함되어 일반소득세로 과세된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해당 수입이 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특정 면세규정이 적용됨을 입증해야 한다. 대부분의 비과세 소득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되지만 국세청이나 법원이 내국세법의 해석을 통하여 면세소득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¹³³⁾. 한 예로 내국세법이나 재무성 규정에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사회복지 혜택을 국세청은 규칙 해석을 통하여 면제한다.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수입에는 대출금, 실현되지 않은 소득, 주택 등 개인용 자산의 임대가치(귀속소득) 그리고 자산 매매에 따른 수입이 있고 납세자 본인의 노력으

133) 이를 각각 administrative exclusion과 judicial exclusion이라고 한다.

로 창출된 소득(self help income)이 있다. 주식가격이 상승하였어도 납세자가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실현된 소득이 없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없다¹³⁴⁾. 어떤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 자동차를 고치면 이로 인하여 혜택이 발생하지만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납세자들끼리 어떤 서비스를 교환하면 각자 제공받은 서비스의 가치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¹³⁵⁾. 납세자가 자산을 매매할 때 판매가액이 아닌 이득(gain)에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판매가격의 일부가 자본에 대한 보수로 간주되기 때문이다(recovery of capital principle).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비과세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예외적으로 소득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과 사회보장 지급금은 신고해야 한다. 면세가 허용되는 복리후생 혜택은 원천징수가 없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과세되는 복리후생 혜택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고용주는 이를 W-2 form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생명보험과 의료비 보험금은 과세대상일지라도 원천징수의 대상이 아니다. 임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50달러의 벌금과 함께 원천징수되어야 할 금액의 100%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 주요 법정 비과세소득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소득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기도 한다. 내국세법 101조에서 139조까지 명기된 주요 면세소득은 <표 I-5>에 예시되어 있다. 물론 이들 비과세소득 가운데 유산, 증여나 개인주택의 양도 소득은 유산, 증여세나 자본 양도세로 따로 과세된다. 의회는 1913년부터 유산과 증여를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았고 자산의 양도 이후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기증자가 소득세를 납부한다.

134) 미국 대법원은 Eisner v. Macomber에서 납세자가 헌법 제16조의 의미에 포함되는 소득을 받은 바가 없다고 판정하여 미실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USSC, 1920).

135) 한 예로 컴퓨터업자와 자동차업자가 서로의 컴퓨터와 자동차를 수리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표 1-5〉 주요 비과세소득

증여 및 유산(Sec. 102)	의료비 지급금
생명보험 지급금(Sec. 101)	부양자 경비(Sec. 129)
사회복지 및 이전지급금(Sec. 86)	일부 해외소득(Sec. 911)
회사자본 기여금(Sec. 118)	지방정부 채권 이자(Sec. 103)
부상, 사고 및 개인 상해보상금(Sec. 104, 5)	일부 Series EE 채권 이자
일부 임차인에 의한 임대부동산 개축(Sec. 109)	근로자 수당
일정 한도내 자택 양도소득(Sec. 121)	음식·숙박비 지원(Sec. 119)
일부 근로자 부가급부(Sec. 132)	자녀부양 지원금(Sec. 129)
단체 건강 및 생명보험 보험료(Sec. 106)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에 의한 취득
종업원 할인(Sec. 132)	채무의 소멸과 탕감(Sec. 108)
고등교육비를 위한 연방채권 이자소득(Sec. 135)	일부 군인에 대한 수혜금(Sec. 134)
선택적 복지후생(cafeteria plan, Sec. 125)	교육지원금 및 장학금(Sec. 117, 127)
입양비용(Sec. Sec. 137)	일부 업적 포상금(Sec. 74(b))

주: 부가급부는 Sec. 79, 105, 106, 124, 125, 129, 132에서 규정됨.

금전 등의 이전이 증여인지 아닌지는 기증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 딜러가 도박을 하는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은 비록 감사의 표시로 준 것일지라도 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어떤 가게 주인이 어린 자식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때 자식의 일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가 임금이며 그 초과분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표에 제시된 주요 면세항목 이외에도 납세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 중에서 25만달러(부부합산 50만달러)는 면세가 허용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 불입금은 그 방식에 따라 불입 당시 비과세되고 인출할 때 과세하거나 반대의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로 의료저축계정에 불입하고 나중에 의료비용으로 인출하면 일정 금액이 면세될 수 있다(Archer MSA). 한편 개별적인 개인거래에서 외환 처분에 의한 차익도 200달러 범위 내에서 면세된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망한 경찰이나 소방서 직원의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총소득에서 제외되며 군인의 신체장애나 전투보수 그리고 주택수당도 비과세된다.

1) 생명보험 지급금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여 보험금이 일시불 혹은 분할금으로 지급되면 비과세된다. 그러나 보험증권의 액면가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이자로 간주되어 과세된다¹³⁶⁾. 보험금을 유산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보험료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³⁷⁾. 그러나 만약 생명보험증권이 제3자(한 예로 다른 형제)에게 대가(valuable consideration)를 지불하고 매매된 경우 보험금의 일부가 과세될 수 있다(Sec. 101(a)(2)). 과세되는 부분은 보험금에서 보험증권의 매입 당시 지급한 대가와 그 후 매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부분이다. 하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보험증권이라면 보험금 전부가 면세된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 즉 가입자나 가입자의 파트너,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 혹은 가입자가 주주나 임원인 회사에게 보험증권이 양도되어도 면세된다.

면세는 가입자의 사망에 의한 보험금 지급 당시 허용된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생명보험이 일시불로 매각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하지만 만기 이전에 처분되고 납부한 보험료가 처분 당시 처분대금을 초과해도 손실로 간주될 수 없다(Sec. 72(e)(2), 137). 만기 증상을 보이는 보험 가입자나 고질적인 병을 앓고 있는 보험 가입자¹³⁸⁾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면세가 가능하다(accelerated death benefits). 고질적인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면세한도는 실제 의료비용과 260달러/1일 중 큰 금액이다.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보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총배당금이 총보험료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배당이 보험회사에 유보되어 이자수익이 있으면 그 이자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136) 즉, 50,000달러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10년간 5,500달러씩 분할하여 받기로 하였다면 매년 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137) 생명보험 지급금은 소득세가 면세될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소유권에 대한 부대조건을 달지 않으면 연방유산세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138) 24개월 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와 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의미한다.

2) 피해 보상금(compensatory damage)

일반적으로 사고나 건강보험으로 받은 의료비용 보험금의 경우 납세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면세되지만 만약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급하였다면 과세된다¹³⁹⁾. 이외 의료비를 공제한 이후 보험회사에서 이를 보상받으면 일정 조건 아래서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보상금의 경우 자동차 사고 등으로 인한 병이나 신체부상 때문에 지급된 보상금은 면세된다(Sec. 104(a)). 단, 명예훼손에 따른 보상금이나 징벌적 보상금(punitive damage) 등 신체적 피해가 없는 보상금은 과세된다. 그러나 명예훼손 등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는 면세되는데 가해자를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보상금은 신체부상 때문에 지급되어도 과세된다.

한편 상해 및 건강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소득 보전적 보상금은 예외적으로 면세된다(Sec. 104(a)(3)). 이외 내국세법 101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는 혜택도 면세하고 있는데 다만 면세금액을 1일 260달러와 실제 치료비용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고비나 치료비는 비과세되었던 복리후생비(fringe benefit)로서 과세되고 다만 불구자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공제가 일부 가능하다.

업무와 관련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는 일정금액을 지불하도록 각 주가 노동자 보상법(worker's compensation law)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금은 비록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장래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일지라도 면세가 허용된다. 내국세법 제104조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치료비는 면세되므로 이를 납세자가 다시 공제받을 수 없다.

139) 그러나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도 납세자가 이를 소득에 포함하였다면 의료비 보험금은 면세된다. 또한 보험료를 고용주와 피용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지불하였다면 보험금의 절반만 과세된다.

3) 부가급부(복리후생 혜택)

법정 부가급부를 제외하면 피용자의 노동과 관련하여 받은 보수는 그 형태와 관련 없이 이에 대한 대가를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된다¹⁴⁰⁾.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도 파트너, 이사, 독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가 받는 부가급부 혹은 고용주 이외 고객이 지급하는 부가급부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대신 지급받는 부가급부는 피용자가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금 보수 대신 복리후생이 갖는 이점은 근로자가 세후소득으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리후생비는 고용주 입장에서 공제가 가능한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면세되므로 정책적 목적에서 이용되기도 한다. 고용주의 경우 현금 지급과 복리후생비가 모두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세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또한 공제와 달리 면세는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2% 이상의 S 법인 주식을 가진 피용인과 고임금근로자(highly compensated employee)¹⁴¹⁾의 복리후생비는 소득세 면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에 따라 일부 부가급부는 명시적으로 면세되는데 이러한 부가급부에는 근로자 보험, 내국세법 132조 복리후생, 숙박비, 부양자를 돌보는 비용과 선택적 복지계정(cafeteria plan)¹⁴²⁾ 등이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의료, 사고 및 부상 보험료는 면세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Sec. 106)¹⁴³⁾.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납부한 생명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

140) 고용주는 W-2 form box 1 임금 등에 부가급부를 포함하여 신고하는데 이외 box 14에 부가급부 총액을 명기하기도 한다.

141) 고임금 피용자의 정의는 복리후생항목에 따라 다르다. 즉, 의료보험의 경우 고임금 피용인은 임금이 가장 높은 5명의 임원과 10% 이상의 회사주식을 보유한 피용인 등으로 정의되지만 자녀부양 지원비의 경우 5% 이상의 회사주식을 보유한 피용인과 이전연도 임금이 10만달러 이상인 피용인으로 정의된다.

142) 피용인이 비과세되는 복리후생 대신 현금이나 과세되는 복리후생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을 말한다.

143) 한편 단체 의료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근로자의 소득에서 면제되지만 장애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과세가 원칙이며 다만 65세 이상 노인과 불구자에 대한 공제가 허용된다.

에 포함된다. 그러나 단체생명보험¹⁴⁴⁾의 경우 보험금 5만달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면세가 허용되지만 나머지 보험료는 국세청이 정한 방식¹⁴⁵⁾에 따라 과세된다(Sec. 79(a)). 따라서 5만달러 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료에서 근로자가 지불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외 근로자 연금기금 등을 통하여 고용주가 부담하는 단체보험료나 중요 근로자(key employee)¹⁴⁶⁾에게만 제공되는 보험료도 전액 과세된다.

복리후생의 면세조항은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자영업자나 파트너십 파트너 그리고 주주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은퇴연금 기여금의 경우 소유주가 이를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보험료 등에 자영업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주에게는 복리후생의 면세가 가능하지 않지만 근로자인 주주는 예외이다. 다만 S 법인의 경우 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근로자는 파트너나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S 법인의 주주이자 근로자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건강보험료나 연금 기여금은 소득세 과세상 임금으로 간주된다. 당해 주주는 이를 조정된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다만 자영업자와 달리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피용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산이나 서비스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working condition benefit). 다만 이를 위해서는 피용인 본인이 이를 구입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어야 한다. 특정 혹은 사전에 결정된 업무를 이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위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현금에도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피용인이 실제 경비를 지출하고 증빙서류를 남기며 남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고용주나 법에 의해 직업 혹은 임금 유지를 위하여 받는 교육도 이에 해당한다.

이외 내국세법 132조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비용은 고용주의 경비로 공제가 허용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혜택

144) 10명 이상의 정규직 피용인에게 제공되는 보험을 단체보험으로 간주한다.

145)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 Publication 17, IRS, 2008, p. 47.

146) 임금이 \$150,000을 초과하거나 회사주식을 5% 이상 보유한 피용자를 말한다.

(항공기 종업원이 빈 좌석을 이용) ② 근로자 할인(자사 제품을 근로자에게 할인 판매) ③ 근로조건 혜택(무료 잡지나 전문단체 가입료 제공) ④ 무료 음료, 추수감사절 칠면조나 회사식당 사용 등 소액 혜택(de minimis benefit)¹⁴⁷⁾ ⑤ 교통비용 제공(대중교통 110달러/월¹⁴⁸⁾, 주차비 215달러/월 이하)¹⁴⁹⁾ ⑥ 주로 피용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사용되는 오락 및 운동시설. 이들 부가급부는 비차별적이어야 하고 특히 임원이나 주주에게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혜택이란 서비스 형태이어야 하며 고용주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는 서비스를 근로자에게 무상 혹은 할인으로 지급하면 면세된다(Reg. Sec. 1.132.2).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고객에게 판매를 거절하는 등 수입이 줄어들거나 실질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러한 성격의 혜택은 주로 항공권, 버스, 기차 탑승권이나 호텔 투숙권 등이 있다. 근로자의 배우자, 자녀 그리고 은퇴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호혜적인 원칙 아래 동일 직종의 타 회사 직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reciprocal basis).

고용주가 근로자(혹은 그 배우자와 부양자 그리고 은퇴 근로자)에게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면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과 채권 등 투자자산을 할인해주면 이는 과세된다. 할인대상이 서비스이면 정상가격 20% 이하로 할인이 가능하며 그 대상이 상품 등 재화이면 재화의 판매가격을 총이윤(이전 연도 총이윤/총판매량)로 곱한 금액으로 할인금액이 제한된다. 할인은 무차별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특정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 안 된다.

근로자 1인당 400달러 이하 소액의 기념품이나 포상도 면세가 허용되며 고용주는 이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현금을 제외한 상품의 형태로 안전이나 근무연수 등 성취도에 기준한 포상이어야 하며 보수를 위장하여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Sec. 74(c)). 이밖에도 사전에 문서화된 규정에 따라 고임금 근로자에 집중하지 않고 무차

147) 추수감사절 등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현물 선물은 비과세되지만 현금이나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상품권 등을 제공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간헐적인 오락 혹은 스포츠 행사 입장권 제공도 소액의 부가급부로 간주된다.

148) 6인 이상 좌석을 가진 승용차로서 사업장과 근로자 자택 사이를 오가며 근로자를 운송하여야 한다. 이외 대중교통 이용권도 면세된다.

149) 2008년 기준 면세금액은 각각 115달러, 220달러.

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비록 개인별 포상은 1,600달러까지 허용되지만 1인당 평균 비용은 4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연수는 최대 5년을 초과해야 하며 안전 등의 성취에 의한 포상은 근로자의 10% 이상이 수여받을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증여는 132(e)조에 따라 소액 혜택으로 간주되어야만 면세가 가능하다.

무상 또는 할인으로 제공되는 숙식(meals and lodging)은 고용주의 편의를¹⁵⁰⁾ 위하여 사업장 혹은 그 부근에서 제공되며 특히 숙박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고용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면세될 수 있다(Sec. 119, Reg. Sec. 1.119-11(c)(1)). 무상으로 제공되는 숙박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숙박 서비스는 면세 대상이 아니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음식비용은 과세된다. 다만 소액혜택 조항에 따라 고용주가 초과 근무를 위하여 이따금씩 지급하는 저녁 식사비는 면세가 가능하다.

이외 회사 직원이 고객과 함께 식사를 한 경우 식사비(접대비)의 50%가 공제된다. 한편 회사 직원에 해당하는 접대비도 금액이 과도하지 않으면 공제가 허용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직원은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Rev. Rul. 63-144). 고용주가 대신 지급하는 근로자 등록금과 교재비 등 학비 지원도 5,250달러까지 면세될 수 있다(Sec. 127). 다만 학교 과목이 사업과 합리적인 연관이 있어야 한다. 또한 5,250달러를 초과하는 지원금액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교육이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이라면 모든 비용이 면세된다(working condition benefit).

근로자가 사망하면 고용주가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를 증여로 간주하면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사망한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보수로 간주하면 그 가족에게 소득세가 적용되고 고용주는 공제가 허용된다. 고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과 보너스 등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즉, 고용주가 기부의 의도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고용주의 경비로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대신 수증자에게는 면세가 허용되지만 나중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자녀나 여타 부양자를 직접 혹은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150) 한 예로 사업체 성격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도 사업장 부근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돌보는 프로그램이 있다(dependent care benefits). 이러한 부양자지원 프로그램이 비차별적이면 그 혜택은 근로자 1인당 5천달러 이내에서 면세된다(Sec. 129). 다만 이러한 혜택은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보다 적어야 한다. 또한 만약 근로자에게 부양 비용이 직접 지급되었다면 부양자 공제조건을 충족하는 성격이어야 한다.

의료비 지출을 위하여 저축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에 불입되는 고용주 기여금은 가족보험의 경우 5,800달러 그리고 개인보험은 2,900달러를 한도로 비과세가 가능하다(Health Saving Account). 다만 이를 위해서는 피용인이 보험공제가 큰 의료보험(HDHP)에 가입하고 법이 정한 의료보험 이외 다른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저축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선택적 복지방안(cafeteria plan)¹⁵¹⁾이란 근로자가 현금을 포함하여 단체생명보험, 의료보험, 부양지원, 입양 등 법정 면세 복리후생조항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현금을 선택하면 과세되지만 이외 복리후생을 선택하면 면세가 가능하다(Sec. 125). 동 계정은 일반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치과비나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는데 다만 계정의 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서 근로자가 저축한 금액 이하로 지출해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고 또한 반대로 근로자가 충분한 금액을 저축하지 않아도 이를 초과하여 사전에 약정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대출은 1984년 법 개정으로 더 이상 면세되지 않고 귀속이자를 산출하여 과세한다.

4) 장학금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일정 한도 이내에서 면세된다. 장학금이란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면세가 허용되는 장학금 금액은 등록금과 관련 비용으로서 교육단체가 제공하는 강의에 필요한 책, 기구, 등록금과 수수료를 포함한다. 숙식과 세탁비 등에 사용되는 장학금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151) 독신 근로자나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생명보험이나 부양지원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가운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방안을 선호할 수 있다.

117). 사직하였지만 졸업 후 다시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고용주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면세대상 장학금이 아니라 보수로 간주된다¹⁵²⁾.

납세자가 부담하는 고등교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는 주정부나 사립 대학교가 운영하는 등록금 저축기금(qualified tuition plan, QTP)을 도입하였다(Sec. 529 Plans). 납세자가 지정된 수증자를 위하여 불입한 저축금과 그 이자는 면세되며 수증자가 면세 상태에서 인출하여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된 저축은 수증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또한 10%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고등교육비용 이상의 자금이 인출되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육비용은 상기 등록금과 관련 비용 이외 숙식비용을 포함하며 납세자가 저축예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납세자는 수증자를 바꿀 수 있으며 대상 수증자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피부양자 모두를 포함하며 사촌도 포함될 수 있다. 등록금 저축기금에 기여되는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다른 증여와 함께 연간 수증자 1인당 12,000달러 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기증자가 지급한 일시불 금액을 5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529조에 따라 허용되는 면세금액은 HOPE나 평생교육에 의한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등록금 저축기금은 주정부나 사립 대학교에 의하여 운영될 수 있는데 예금은 장래 등록금을 현재 지급하는 데 사용되거나 개방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되어 나중에 수증자의 교육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립대학교는 후자만 운영할 수 있다.

5) 상금과 포상

일반적으로 각종 상금이나 포상은 총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종교, 자선, 연구, 교육, 예술 등의 성취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로서 면세된다(Sec. 74). 그 조건은 상금의 수증자가 경쟁에 들기 위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

152) 그러나 비영리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낮은 보수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혹은 보조금은 국세청이 소득이 아닌 장학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며 상금의 조건으로 장래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 않으며 상금을 정부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이다. 물론 납세자는 일단 상금을 받아 기부하면 면세가 아닌 공제를 허용받을 수 있다.

6) 입양비용

입양비용은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입양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입양비용으로 간주되어 입양아 1인당 11,390달러까지 면세된다(Sec. 137). 다만 입양하는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이 170,82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되는 금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총소득이 210,820달러에 이르면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¹⁵³⁾.

7) 해외소득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국 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신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세액공제된다(foreign tax credit). 그러나 외국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은 85,700달러까지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세액공제 대신 이러한 면제조항을 사용할 수도 있다(Sec. 911(b)(2)). 부부가 동시에 해외에서 근무하면 각자 이를 신청해도 된다. 물론 면세된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85,7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비가 공제된다.

만약 납세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이익의 30% 이상 면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임금과 연금 등의 보수는 해당되지 않는다(Sec. 911(d)). 이 밖에도 주택가격이 높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주택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즉, 주택비용이 최대 면세액의 16%(13,712달러)를 초과하면 주택비용으로 최대 면세액의 14% 즉, 11,998달러를 면세받을 수 있다.

단, 전액 면제가 가능하려면 외국에서 연속 12개월간 최소 330일 이상 거주하였거

153) 즉, 소득이 \$A라면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11,390 \times (A - 170,820) / (210,820 - 170,820)$ 이다.

나 실질적으로 외국의 거주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해당 납세연도에 거주한 기간을 근거로 비율적으로 산정된 부분만 면제된다. 면세조항을 선택한 후 그 다음 해에 외국세액공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면세조항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6년이 되기까지는 국세청의 허가가 없으면 세액공제에서 다시 면세조항으로 바꿀 수 없다.

8) 소규모 사업체의 주식 양도차익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가 1993년 8월 이후 발행된 일부 소규모 사업체의 주식(small business stock)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할 때 양도차익의 50%를 면제받을 수 있다(Sec. 1202(a))¹⁵⁴⁾. 이외 나머지 양도소득도 최고 28%로 과세되므로 실제 최고 세율은 14%이다. 양도차익이 면세되는 소규모 사업체가 되려면 C 법인으로서는 총자산의 조정된 평가액(aggregate adjusted basis of gross asset)이 5천만달러 이하이며 최소한 80% 이상의 자산이 일정 분야의 사업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법률 등 전문서비스와 금융, 병원, 광산과 원유산업은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Sec. 1202(d)).

단, 소규모 사업체별로 면세되는 양도차익은 1천만달러에서 이전에 면세받은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액과 납세자가 해당 연도에 처분한 총주식평가액(aggregate adjusted basis of the stock)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큰 금액보다 많을 수 없다. 면세 목적상 주식 평가액은 납세자가 사업체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만약 납세자가 주식 처분 이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소규모 업체의 주식을 매입하면 양도차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주식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재투자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익을 인정하면 된다.

9) 채무의 취소(소멸)

납세자의 채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면 취소된 채무액을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 증여나 유산에 의한 채무 탕감인지 아니면 매입가격의 재협상에

154) 2000년 12월 이후 취득한 empowerment zone stock의 양도차익은 60%가 면세된다.

의한 채무 탕감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증여로 처리되면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도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매입자산의 평가액도 조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액면가보다 낮게 구입하거나 협상을 통하여 은행 채무를 재조정하면 그 차액은 소득이 된다.

내국세법 61(a)(2)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채무 소멸(탕감)로 발생하는 이득을 소득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외로서 파산이나 지급 불능에 의한 채무 해제는 법 108조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소멸에 따른 이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월된 순영업손실도 제외된 채무만큼 삭감되어야 한다. 정부나 교육기관이 제공한 학생 대출금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일정기간 교육, 종교, 자선, 과학, 체육단체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채무가 소멸되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Sec. 108(f)(2)).

4. 과세소득

가. 과세소득의 개념과 산정

1) 총소득(Gross Income)의 정의

미국 수정헌법 제16조에 따라 미국에서 총소득이란 법에서 명시된 면세소득을 제외한 그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을 의미한다(Sec. 61(a)).

미국 대법원은 '소득은 노동, 자본 혹은 양자가 혼합되어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으로 자산의 매매나 전환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포함한다(Income may be defined as the gain derived from capital, labor, or from both combined, provided it be understood to include profit gained through sale or conversion of capital asset)' 고 정의하고 있다¹⁵⁵⁾. 따라서 자산가치의 증가나 투자가치의 증대는 소득이

155) Eisner v. Macomber, US 189, 40 S. Ct, 189(1920).

아니며 자산으로부터 받은 혹은 인출한, 교환가치가 있는 이익 혹은 그 무엇을 의미한다. 나아가 대법원은 소득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아 ‘납세자의 통제 아래 있는.....명백히 현실화된 부정할 수 없는 부의 증대(undeniable accessions to wealth, clearly realized.....over which taxpayers have complete dominion)’로 정의하고 있다¹⁵⁶⁾.

내국세법 제61조(a)에는 소득의 예로 다양한 소득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이며 세법에 명백히 제시된 과세되지 않는 소득 즉, 면세소득을 제외하면 불법소득을 포함한 그 어떠한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또한 미국 세법에 의하면 현찰, 재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교환 형태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루어지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Reg. Sec. 1.61-1(a)). 한편 소득은 경제적 이익의 발생으로 거래과정에서 얻은 순이익(net gain)에만 과세된다. 이 밖에 피용자(근로자)를 위한 경비일지라도 그러한 지출의 중요한 목적이 사업상 필요에 따라 지출되었고 부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면 이는 부가급부(복리후생)이지만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소득에 포함되는 보수와 그렇지 않은 증여의 차이가 간혹 불분명한데 미국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주변 상황과 관계자들의 의도를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다(Bogardus). 특히 보답이나 보상의 목적이 아닌 개인적 호의나 관심 또는 자선적 의도로 지급된 자산은 증여로 본다. 또한 고용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실 자체가 증여를 의미하지 않으며 과거 혹은 장래의 서비스를 기대하며 지급한 자산도 보수에 해당한다(Sec. 102(c)).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하여 소득이 창출되었을 때 소득이 인정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수입이 있어야 소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현금주의 방식에서는 수입 시점의 조정을 통하여 소득신고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소위 실질적 수입원칙(constructive receipt doctrine)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원칙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고 납세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보수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납세자 계좌에 지급되거나 납세자를 위하여 따로 준비되거나 납세자가 언제라도 인

156) Glenshaw Glass v. Comm., 348 U.S. 426 at 430-431(1955). 이는 순자산이나 소비의 증대를 통한 부의 증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제적 소득의 정의와 가깝다.

출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수입을 통제(control)하는데 제한이 있으면 이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Reg. Sec. 1.451-2).

이러한 원칙은 소득이 실현되어야 과세할 수 있다는 회계 원칙과도 상관이 있다. 소득의 실현을 통하여 객관적인 소득의 측정이 가능하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의 가치가 등락할 때 실현주의가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을 매각하고 할부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선급금(prepaid income)의 경우 소득이 창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한편 소득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 즉,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내국세법에서 소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면세소득 등의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로, 소득배정 원칙(assignment of income doctrine)에 의하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서비스 등 재원(source)을 소유 혹은 통제하고 있는 납세자가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수입을 다른 3자에게 넘기면 이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의 채무를 대신 갚는 행위는 해당 근로자가 그 임금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소득의 재원이 제3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로부터 얻은 소득은 소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재원의 소유자에게 배정된다.

경제적 개념에서 소득은 어떤 개인에게 이전되는 자산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의 변동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득은 소비와 자산가치의 변화를 합한 개념이다. 그러나 회계적 개념의 소득이란 거래를 통하여 실현된 소득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소득의 실현은 납세자의 자산 형태가 변질되고 상대방과 거래가 있어야 발생한다. 즉, 단순한 자산가치의 변화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내국세법에서 소득은 대체로 회계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일부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쨌든 세법상 경제적 혜택이 발생하고 실현되며 또한 인정(신고)되어야 일반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2) 과세소득의 산정체계

(a) 과세소득 산정방식

개인소득세는 모든 사람의 과세대상 소득에 부과된다(Sec. 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는 <표 I-6>에 요약된 방식에 의하여 Form 1040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자 이외 사업하는 사람들도 Form 1040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신고하기 위하여 여러 신고서식이 이용된다. 한 예로 자영업자의 경우 총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신고서식 C를 개인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고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Form 1040에 명시한다.

<표 I-6> 과세소득과 소득세의 산정방식

종합소득(포괄적 정의)

– 면세소득(exclusion)

총소득(gross income)

– AGI 산정을 위한 공제(deduction for AGI)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

AGI로부터의 공제(deduction from AGI):

– 항목별 공제나 표준공제 중 최대금액

– 인적공제: 개인 및 부양자(individual and dependency exemption)

과세소득(taxable income)

소득세 = 과세소득 × 세율(세율스케줄)

– 면세액(tax credit)

– 사전 납세액

납세액

자료: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K. Murphy and M. Higgins, Thomson Co., 2003, US.

미국에서 소득(income)은 종합소득으로 과세 및 비과세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데 비록 세법이 소득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출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Sec. 61(a)). 즉, 소득은 근로소득, 실업수당, 팁과 감사료, 이자, 배당, 연부금, 연금, 임대, 로열티, 자본 혹은 양도소득(capital gains), 위자료, 사회보장 혜택 중 일부(수혜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85%까지) 그리고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종합소득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득은 총수입(revenue)과 유사한 개념이며 다만 자산의 양도에서는 양도가액이 아닌 순이익만을 소득으로 본다.

면세소득(exclusion)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장학금, 위자료, 일부 복지 수혜금, 상해보상금, 숙식비 등 일부 복리후생비, 지방정부 채권 이자소득, 재산분할 등이 있다. 면세소득은 세금이 면제되는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신고가 필요없다.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총소득(gross income)이 된다. 총소득이 과세를 위하여 처음 고려되는 소득의 개념이다. 총소득은 전술한 대로 포괄적으로 정의되며 단지 예시되지 않았다고 제외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 예로 불법소득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이다(Sec. 61(a)).

(b) 조정된 총소득(AGI)의 결정과 공제

① 조정 전 공제: 비용 공제

소득세는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과세소득을 결정하려면 먼저 총소득에서 사업상의 비용을 제외하고 조정된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구해야 한다. 즉, 조정된 총소득은 총소득에서 각종 사업비용 등을 배제한 순수한 의미의 소득, 즉 순소득(net income)과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 일부 항목의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미국에서 공제항목은 조정된 총소득(AGI)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에서 먼저 제외되는 비용항목(조정된 총소득 전 공제, deduction for AGI)과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되는 항목(조정된 총소득 후 공제, deduction from AGI)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배제되는 항목(deduction for AGI)은 세법상 허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항목은 공제될 수 없다(Sec. 62). 이렇게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주로 영업/거래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등 소득창출을 위한 경비로서 사

업 및 투자비용과 손실이 있고 이외에도 개인비용으로 위자료 등의 면제가 있다. 총소득을 위한 공제는 대체로 사업상의 경비를 의미하며 개인비용은 제외되는데 위자료, 교육대출금 이자와 의료저축기여금 등은 그 예외에 속한다. 총소득을 위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공제와 달리 신고자의 소득이나 공제금액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조정 후 공제: 일반공제와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개인적 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기부금이나 의료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진다(Sec. 262). 이러한 공제는 주로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제외되는 조정 후 공제(deduction from AGI)가 된다(Sec. 63). 조정 후 공제가 일반적 개념의 기본공제로서 표준 혹은 항목별 공제와 납세자 개인 및 피부양자의 인적공제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는 의회가 허용하는 공제로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련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데 2007년의 경우 미혼자 5,350달러, 가장 7,850달러, 부부와 생존 배우자는 10,700달러이다. 이외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 혹은 맹인(1,050~1,300달러)에 대하여 추가 공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표준공제는 소득배분의 형평성 제고와 납세 이행비용 및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부부가 따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면 다른 배우자는 표준공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표준공제는 자신의 근로소득+300달러와 850달러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Sec. 63(c)(6))¹⁵⁷⁾.

만약 주택대출 이자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목별 공제에서 공제 가능한 개인비용은 법(Sec. 211)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과 의료비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 이자비용 이외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의 창출과 관련된 비용, 손상 및 도난손실, 소득창

157) 단, 피부양자의 근로소득이 많아도 최대한 표준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독신자의 표준공제 한도인 5,350달러이다.

출을 위한 재산관리비용, 세금 관련 경비도 공제가 허용된다(Sec. 263).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는 조정된 총소득(AGI)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 해주기 때문에 소득에 비하여 지출된 금액이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¹⁵⁸⁾. 나아가 조정된 총소득이 156,400달러(부부 별도신고시 78,2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소득의 2%를 공제할 수 없다¹⁵⁹⁾. 항목별 공제를 제한하는 비율은 원래 3%였으나 2007년 2%, 2008년 1%로 감소하고 2010년부터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가 허용되는 마지막 유형은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로 표준공제와 마찬가지로 물가와 연동된다. 인적공제는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피부양자에게 적용이 되며 1인당 3,40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조정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Sec. 151). 인적공제는 1인당 한 번씩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어떤 납세자가 자녀를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그 자녀가 소득신고를 할 때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고소득층에게 허용되는 인적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축소된다(Sec. 151(d)).

부양자 공제는 신고자에게 생활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자녀, 부모, 형제, 손자녀 등 친척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1년 내내 납세자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납세자 신원번호(사회보장번호)를 소지하고 본인이 소득을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인적공제는 일부 항목만을 제외하고 개인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인하여 납세자가 필요한 최소 경비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19세 이하(학생은 24세 이하)이고 납세자의 주택에 거주하며 절반 이상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할 수 없어야 한다. 부모 등 친척의 경우 납세자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로 신고

158) 즉, 의료비와 손상 및 도난손실은 각각 조정된 총소득의 7.5%와 1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공제해준다. 또한 고용주가 환불해주지 않는 업무 관련 비용 등 기타 공제(miscellaneous deduction)도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준다.

159) 대상이 되는 항목은 지방정부 납세액, 이자비용, 기부금, 기타 공제인데 다만 공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합계액 80%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자녀 이외의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총소득(gross income)이 3,4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납세자가 피부양자의 생활자금을 절반 이상 지원해야 한다. 총소득은 앞에서 논의된 법정 총소득으로 장학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자금은 음식료품 이외 거주·교육·의복·의료비 등을 포함하며 현찰 이외 지원은 시장가격 기준으로 환산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피부양자에게 제공한 개인적 서비스는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c) 과세소득과 소득세

과세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과세소득에 10~35%의 6개 한계세율¹⁶⁰⁾을 차례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이 총세금인데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즉, 납세의무액은 총세금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 공제에 비하여 혜택이 큰 세액공제(tax credit)는 사전납세와 같이 간주된다. 세액공제는 주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나 사회보장세 등이 있고 근로장려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자녀, 노인 세액공제, 사업용 에너지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특정한 정책 목표를 위하여 허용되는 항목이 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100% 환급 가능한 공제(refundable credit)와 그렇지 않은 공제로 구분된다¹⁶¹⁾.

한편 다양한 감면 및 공제로 인하여 일부 고소득층이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향에 맞서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AMT, alternative minimum tax).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소득세가 일부 면세와 공제를 포함한 산정체계하에서 산출된 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최저한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최저한세는 면세점이 부부합산의 경우 49,000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0) 2007년 기준으로 소득세의 한계세율은 10%, 15%, 25%, 28%, 33%, 35%이며 2011년 이후에는 15%, 28%, 31%, 36%, 39.6%로 조정될 예정이다.

161)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사전 납부한 세금과 근로장려공제(EIC) 등이 있고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제항목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전기차 공제, 저소득층 주택공제, 평생 교육공제, 노인·불구공제 등이 있다. 17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일부 환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본인과 회사 부담의 사회보장성 세금을 자영업 고용세(self-employment tax)라는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Sec. 6017). 자영업자의 순소득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순소득의 15.3%가 자영업 고용세가 된다. 이 중 12.4%는 최고 87,000달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OASDI)이며 나머지 2.9%는 소득규모에 제한없이 부과되는 의료 보장성 세금이다(Medicare taxes).

나. 총소득(Gross Income)

1) 총소득의 개념

총소득(gross income)은 납세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 이용되는 소득 개념이다. 전술한 대로 총소득의 개념은 미국 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서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즉, 총소득(gross income)은 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으로서 그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으로 정의된다¹⁶²⁾.

다만 과세 목적상 실현되지 않는 단순한 가치의 변화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alization principle)¹⁶³⁾. 회계상 소득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이 변형되거나 변질되고 다른 사람과 거래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a severance of economic interest in the property)¹⁶⁴⁾. 특히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의 거래가 종료될 때 소득이 실현된다. 즉, 소득이 실현되려면 그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이 금액이 수령되어야 한다(claim of right doctrine). 또한 소득이 납세자 계좌에 입금되거나 제한 없이 주어질 때 납세자가 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construct receipt principle, Reg. Sec. 1.446-1).

미국 세법 제61조는 다음의 수입을 소득의 예로서 제시하고 있다. ① 사용료, 수수

162)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subtitle, gross income means 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tems:..... (Sec. 61).

163) Eisner v. Macomber 252 U.S. 189(1920).

164) 그러나 전술한 대로 과세 목적을 위한 소득은 회계상의 소득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료 등 유사한 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보상 ② 사업활동으로 파생되는 총소득 ③ 재산 거래로 얻은 이득 ④ 이자 ⑤ 임대료 ⑥ 로열티 ⑦ 배당 ⑧ 위자료와 별거료 ⑨ 연부금(annuities) ⑩ 생명보험과 기부금으로부터의 소득 ⑪ 양로연금(pensions) ⑫ 부채소멸이나 탕감으로 인한 혜택 ⑬ 지분에 해당하는 파트너십 소득 ⑭ 고인에 대한 소득 ⑮ 유산과 신탁기금(trust) 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Sec. 61(a)).

〈표 1-7〉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유형(예)

수수료, 커미션, 복리후생 등 서비스에 대한 보수	생명보험에서 지급되는 소득
사업활동에 의한 소득	파트너십 소득의 지분
재산의 거래로 발생한 이득	사망자 소득
이자 및 임대료	유산·상속 신탁기금 지분에 의한 소득
로열티, 임대소득	부채 면제 탕감에 따른 소득
배당	실업수당
위자료와 별거 생활비	사회보장 지급금 85%
연부금(annuities)과 연금	병가 임금(sick pay)
기타: 상금, 주식옵션, 해고 보상금	일부 보험지급금, 불법소득

자료: *Concepts in Federal Taxation*, 2003 eds, K. Murphy and M. Higgins, Thomson Co., 2003, US.

세법 제61조(a)에 제시된 소득의 사례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포괄한 것이 아니다. 즉, 세법에 명백히 제시된 면세항목을 제외하면 어떠한 소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except as otherwise provided). 따라서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아닌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국세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 한 예로 도박으로 판 돈이나 뇌물과 절도 등의 불법소득도 면세 항목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어야 한다¹⁶⁵⁾.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말농장 등 취미나 오락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¹⁶⁶⁾. 다만 취미활동을 위해 지불한 경비는 그로 인한 소득을 한

165) Reg. Sec. 161-15

166) 우표나 동전 수집으로 얻은 이익은 자본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도로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여나 유산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과세된다. 그러나 증여 혹은 유산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과세된다. 또한 유산기금에 소속된 자산이 분배되고 과세된다. 유산기금은 파트너십과 달리 별도로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유산기금이 수증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증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통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 경우 유산기금이 신고한 대로 지급금을 수증자가 신고한다. 즉, 유산기금이 배당 혹은 자본소득으로 신고하면 수증자도 이를 배당이나 자본소득으로 신고한다(Form 1041). 다만 유산기금의 손실을 수증자가 공제할 수는 없다.

현금, 자산 그리고 서비스 등의 형태와 관계없이 보상이 실현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Reg. Sec. 1.61-1(a))¹⁶⁷⁾. 중요한 것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이며 자산이나 서비스 교환에 따른 거래도 교환된 자산이나 서비스의 시장가치에 따라 비용을 제외한 순가액에 과세한다(cash-equivalent approach). 다만 사업상 필요성에 의해 지출된 복리후생비와 법정 부가급부는 면세가 가능하다.

2) 총소득의 유형

세법 제61조(a)항에 명기된 소득의 유형을 구분해보면 소득은 근로소득 등 개인서비스에 대한 보수(compensation), 사업소득(business income), 불로소득(unearned income), 타인으로부터의 이전소득(transfer income) 그리고 암묵적인 귀속소득(imputed incom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행위로 창출된 소득은 소유주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다만 매매를 위한 경비나 자본 원금의 회수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수입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이다.

보수는 개인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고용인이 피용인(근로자)에게 혹은 피용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 즉, 임금, 월급, 팁, 보너스, 커미션, 수수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보수로서 법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한 보수를 제외하면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167) realized in any form, whether in money, property, or services.

한다. 만약 납세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으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즉, 전술한 대로 복지후생 혜택과 해외 근로소득 등은 일부 면세가 가능하다. 단체생명보험, 건강과 상해보험, 연금 가입료 그리고 종업원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용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고용조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숙박도 면세된다.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경우 총수입이, 그리고 제조업이나 광산업의 경우 총매출에서 매출원가¹⁶⁸⁾를 제외한 금액이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이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판매대금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하고 투자 및 기타 소득을 합한 이윤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판매비용이나 손실 등은 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납세자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근거하여 경비의 공제 시점이 결정된다(Reg. Sec. 1.61-3(a)). 파트너십과 S 법인 소득은 회사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고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파트너나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불로소득은 자산의 거래로부터 실현된 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 소득과 연부금, S 법인이나 파트너십 소득 그리고 이러한 소득을 창출한 투자자산의 매매나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 재고와 마찬가지로 자산 거래에서도 순이익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미국 세법에는 약 30개 항목에 달하는 특정한 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에 대한 인정(신고)을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한 이들 예외조항에는 거주주택 판매에 따른 양도수익처럼 영구히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도 있다(Sec. 121). 이를 제외한 불로소득은 모두 총소득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은 자본의 회수를 제외한 소득이며 회수되지 않은 자본원금은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basis: 혹은 기초가액)¹⁶⁹⁾의 근거가 된다(Sec. (Sec. 1001, 1016)). 자산의 매매에서 발생한 손실은 매매 이익과 서로 상쇄하지 않고 조정된 총소득을 위하여 공제된다. 또한 개인이 다른 유형의 소득에서 양도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3,000달러로 제한된다. 또한 투자가 아닌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한

168) 판매된 제품의 비용은 자본의 회수(return of capital)로서 이는 소득이 아니며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69) property's adjusted basis는 우리나라 장부가액과 유사한 개념이나 미국에서는 그 의미가 더 포괄적이다.

자산의 처분이나 매매에 따른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산이나 서비스의 교환에서는 교환받은 자산/서비스의 공정시장가격이 총소득에 포함된다.

3) 이양된 소득신고(pass through of income)

일반적으로는 각 소득주체는 자신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주체에 세금이 직접 부과되지 않고 소득주체의 소유주 혹은 수증자에게 소득이 이전(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세금이 소유주/수증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소득주체는 도관개체로 불리기도 한다(flow-through entities).

내국세법 제61조에 의하면 파트너십의 소득지분(파트너십), 사망한 자의 소득 그리고 유산이나 기금의 지분에서 얻은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우선 파트너십의 소득과 비용은 회사 소득이 파트너에게 배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에 따라 파트너는 회사소득과 손실, 공제 등의 비용을 개인소득세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파트너십은 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파트너십의 영업 결과와 파트너 배당을 국세청에 자료로서 신고한다(Form 1065). 61조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S 법인도 Form 1120S를 통하여 회사 소득, 손실, 공제 등을 신고하고 이는 개별 주주의 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개인소득세로서 과세된다. 파트너와 S 법인의 주주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신에게 할당된 소득과 비용 등을 통보받는다(Schedule K-1).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의 소득도 배우자가 그 소득을 받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유산 및 신탁기금에서 창출된 소득은 유산이나 기금이 신고한다. 다만 수증자에게 지급된 소득은 기금이 공제하는 대신 수증자가 이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한다.

다. 피용자 보수

1) 과세원칙

납세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보수는 그 형태가 어떠하든 총소득에 포함된다(economic benefit doctrine). 따라서 보수가 현금, 보너스, 이익의 공유, 물

질적 보상 혹은 여타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모두 포함한다(Sec. 61조(a)). 전술한 대로 보수는 개인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고용인이 피용인(근로자)에게 혹은 피용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 즉, 임금, 월급, 해고 위로금, 팁, 보너스, 커미션, 수수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보수로서 법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한 보수를 제외하면 모두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지급한 경비성 보수는 경비의 성격과 인적 관계에 따라 소득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즉 제3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3자가 지급하는 경비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납세자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받으면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주가 지급하는 연금 기여금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상황에 따라 신고 시점을 이연할 수 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면세가 가능하다. 정부가 실업수당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고용주가 부담하는 기금에서 받은 실업수당도 임금으로 간주된다.

부가급부(복리후생비)는 서비스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피용인일 필요는 없으며 독립사업자, 파트너, 이사도 포함된다. 수증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부가급부는 원칙적으로 보수에 포함되어 과세되어야 한다. 다만 비과세소득 항목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면세가 가능하다. 단체생명보험, 사고와 건강보험료, 일부 의료저축플랜(Archer MSA와 Health Saving Account 등), 자녀부양지원금, 학비지원금, 이사비용, 일부 교통과 음식숙박비 그리고 종업원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피용인을 위한 경비일지라도 그러한 지출의 중요한 목적이 사업상 필요성에 따라 지출되었고 부차적 혹은 부수적으로 피용자에게 혜택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를 피용자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기 때문이다¹⁷⁰⁾. 또한 의회는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더라도 면세되는 복리후생 혜택항목을 지정한 바 있다.

170) 부가급부에 대한 과세 및 비과세 여부는 비과세소득의 복리후생항목을 참조.

2) 연금 기여금, 주식옵션 및 조건부 자산양도

(a) 연금 불입금의 소득인정(elective deferrals)

자격이 되는 은퇴연금에 고용주가 불입하는 기여금은 기여 당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¹⁷¹⁾. 근로자가 원하면 이에 추가하여 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은퇴연금에 불입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elective deferral). 그러나 다른 성격의 은퇴연금은 고용주가 불입할 때 근로자는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거나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으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이 해소된 시점에 소득으로 신고한다. 이연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기여할 수 있는 연금 불입금은 근로자 임금과 46,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소득신고를 이연할 수 있는 연금 기여금에는 대표적으로 401(K) 연금을 비롯하여 연방공무원을 위한 절약저축, 간이 근로자연금(SARSEP), 저축연금(SIMPLE), 세금우대 403(b), 내국세법 457조 연금 등이 있다. 401(K), 연방공무원 그리고 간이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15,500달러(2008년 기준)를 한도로 소득 인정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충분한 연금저축을 위하여 추가 기여할 경우도 이연이 가능하다(catch up contribution, Pub. 571).

한편 납세자가 원하면 Roth 연금에 불입하고 이를 소득에 포함하고 세금을 지금 납부하는 대신 연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법정 한도 이상의 금액을 연금에 불입된 경우 납세자는 연금에 이를 통보하고 초과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입 시점과 지급 시점에 두 번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금 기여금은 이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의 평균 기여금의 125%로 제한될 수 있다(highly compensated employee).

171) 이에 따라 소득세는 이연되지만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는 불입 시점에서 납부되어야 한다.

(b) 주식옵션¹⁷²⁾

서비스 대가로서 주식이나 여타 자산을 매매할 권리를 제공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선 주식장려옵션(Incentive Stock Option)과 근로자 자사주 매입에 따라 제공되는 옵션 중에서 만약 사망을 제외하고 양도가 불가능하며 옵션 제공 시점과 행사 시점 3개월 이전까지 납세자가 해당 기업에서 일하면 법정 주식옵션으로 분류된다.

법정 옵션의 경우 옵션이 허용된 시점이나 행사된 시점에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구입한 주식 등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소득이나 공제손실로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손익은 자본(양도)손익에 해당하지만 옵션을 제공받고 2년 그리고 주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옵션을 행사한 시점에 주식 공정시장가격이 옵션가격(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한편 법정 옵션을 제외한 다른 일반 주식옵션 등은 옵션이 제공된 시점에 그 시장가치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과 소득인정 시점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격을 쉽게 알 수 있는 주식옵션 등은 자본소득이 아닌 일반적 보수(compensation)로 간주되어 옵션 취득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되며 조건부 자산양도규정(restricted property)이 적용된다. 그러나 옵션을 제공받을 당시 시장가치가 불확실하면 옵션 취득 시점에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주식옵션을 행사 혹은 양도하면 소득을 신고하고 조건부 자산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납세자가 지불한 구입가격과 해당 자산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의 차액이 된다. 만약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도 자산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귀속 시점이 될 때까지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substantially vested).

만약 가치를 확정할 수 없는 일반 주식옵션을 독립거래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 당시 옵션을 행사한 것처럼 매각대금을 소득으로 신고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172)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Publication 525, IRS, 2008.

사이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식 양도를 옵션행사로 간주되지 않고 나중에 옵션이 실제로 행사될 당시 양도인이 차액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즉, 양도 시점에 받은 매각대금을 보수로 신고한 이후 양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면 그 시점에서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에서 주식구입비용과 양도 당시 받은 대금(즉 보수로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한다. 양수인은 옵션 행사 당시 소득(보수)을 인정하지 않고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이 장부가액이 된다.

일반 주식옵션을 행사한 이후 매각 시점의 취급방식은 일반 자본자산과 같다. 자산의 장부가액은 주식매입가격과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한편 보유기간의 경우 옵션 취득 시점에 가치가 확실한 옵션은 취득 시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옵션은 옵션 행사 혹은 양도 시점에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c) 조건부 자산(restricted property)

일반적으로 서비스 대가로 자산을 제공받으면 그 시점에 공정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만 자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아래 주식 등을 제공받으면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될 때까지 소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납세자에게 부여된다(substantially vested)¹⁷³⁾. 그 이전까지는 자산의 소유권이 고용주에게 있는데 다만 그 동안 해당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여 지급되거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 그 시점에 이를 보수로 신고한다. 이후 자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시점에 공정시장가격과 납세자가 지급한 구입금액의 차액을 소득으로 신고하며 보유기간도 귀속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 밖에도 자산이 실질적으로 귀속되기 이전에 자산을 매각 등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수입과 자산 구입비용의 차액을 보수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 이후 조건부 자산의 귀속에 따른 가치 상승은 보수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진 자산 양도는 양도인이 자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조건부 주식으로부터 창출된 배당도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

173)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거나 몰수 위험 혹은 자산가치를 상실할 위험이 없을 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이 아닌 일반 보수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 투자소득

1) 이자소득

이자란 현금 이용에 관한 대가이다. 은행예금, 주식회사 채권, 주택대출, 생명보험 증권, 세금 환급금, 대부분 연방정부 정부채권, 외국정부 채권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과세된다¹⁷⁴⁾. 이들 소득은 납세자에게 1099-INT 통지서로 통보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자소득, 한 예로 파트너십 등으로부터 지급된 이자 지분도 과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용조합, 건설대부협회, 저축대부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도 실질적으로는 이자이므로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생명보험으로부터 분할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금 중 일부는 이자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 혹은 어음은 대개 액면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제공된다. 따라서 가격 차이는 추가적 이자에 해당하며 이자가 발생하는 동안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¹⁷⁵⁾. 발행회사로부터 구입한 할인채권(original issue discount)의 경우 발행회사가 1099-OID를 제공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¹⁷⁶⁾. 보험회사나 투자회사의 유증증서(Face Amount certificate), 만기가 1년 이상인 양도성 정기예금(certificate of deposit)도 할인채권과 마찬가지로 간주된다. 물가상승률과 연계하여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도 물가상승분을 이자로 신고해야 한다.

채권 발행 이후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여 시장할인채권이 된다(Market Discount Bond). 유통시장(secondary market)¹⁷⁷⁾에서 구입하면 이러한 현

174) 이자지급일 이전에 채권을 판매 혹은 매입하면 판매가격 중 일부는 이자소득인데 판매의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고 매입의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투자금의 회수로 간주하여 장부가액을 그만큼 감축한다.

175) 반대로 액면가격을 초과하는 채권을 구입하면 초과금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서 지급되는 이자의 일부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176) 그러나 할인금액이 만기 상환가격의 0.25%와 상환연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이는 미소(微少) 이자로 간주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상이 발생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채권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시장할인¹⁷⁷⁾을 해당 과세연도 이자로 신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는 채권을 처분할 때 얻은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상환된 원금의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받아 이러한 채권을 구입한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채권의 경우 할인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이자소득으로 신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권 매각이나 처분 당시 이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한다.

과세가 면제되는 이자소득은 지방정부¹⁷⁹⁾를 포함하여 지방 교육자치단체나 항구 기관, 통행료 도로위원회와 소방자치구역의 채권이 있다(Sec. 103(a)(1))¹⁸⁰⁾. 이외 2억 2,500만달러를 한도로 사립대학교, 병원, 종교 등 비영리단체도 이자가 면제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Sec. 501(c)(3)). 그러나 대부분 연방정부 채권 이자소득이나 지방정부 채권 매개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이외 개인은퇴연금(IRA)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가 이연된다.

납세자가 연방정부 채권 가운데 Series EE 채권¹⁸¹⁾을 상각하여 본인, 배우자 혹은 자녀의 고등교육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이자소득이 면세된다(Sec. 135(c))¹⁸²⁾.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증여가 아닌 납세자 본인이 구입한 채권으로 구입 당시 24세 이상인 사람이 1989년 이후 구입했어야 한다. 상환된 수입은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의 등록금과 수수료 등에 사용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거주하면 부부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숙식비는 제외).

177) 투자자가 발행회사가 아닌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입하는 시장

178) 만기 상환금액이 채권을 취득한 시점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구입자의 장부가액이 발행회사로부터 구입한 투자자의 장부가액에 따라 결정되면 시장할인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채권과 연방정부 저축채권도 시장할인 채권이 아니다.

179) 그 대신 연방정부 채권 이자는 지방정부 소득세로부터 면제된다. 한편 연방정부가 지급 보증한 지방정부 채권 이자는 과세된다.

180) 그러나 스포츠 시설, 컨벤션 센터 건설 등 사적 활동을 위하여 발행된 지방정부 채권의 이자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비행장 건설, 재개발 그리고 학생 대출금과 같은 일부 사적 활동에 대해서는 연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 채권의 규모는 주민 1인당 50달러나 225백만달러 중 많은 금액으로 제한된다(Sec. 146(d)). 한편 후자의 경우 일반소득세에서는 면세되지만 최저한세에서는 과세될 수도 있다.

181) 원래 Series EE 채권은 만기 혹은 상각될 때까지 이자소득이 면세된다.

182) Education Saving Bond Program

교육비가 채권의 원금과 이자보다 많아야 하며 상환 당시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AGI)이 65,600달러(부부합산 98,400달러) 이하이어야 이자소득의 100%가 면세된다. 납세자의 소득이 이보다 많으면 면세가 허용되는 이자소득은 납세자 소득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조정된 총소득이 80,600달러(부부합산 128,700달러) 이상이면 더 이상 면세가 가능하지 않다. 한편 교육비용이 채권금액보다 적으면 이자소득에서 면세가 허용되는 금액은 그 비율(교육비용/원금과 이자)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이자율 이하로 대여된 부채의 경우 거래 내용에 따라 증여가 아닌 경우 이자율 차이가 소득에 포함된다(below market loan). 이자율 차이(forgone interest)는 연방 정부의 단기 채권 이자율과 해당 부채 이자율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연방 금리는 국세청이 매월 조정하여 발표한다(Sec. 7872). 따라서 이러한 금리 차이는 채권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채무자는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증여성 부채의 경우 이자율 차이는 과세대상인 증여가 된다. 이 밖에도 거래 내용에 따라 저금리 부채는 배당, 보수, 자본금 출연으로 간주되기도 한다(Pub. 550).

2) 배당소득(dividends)

배당은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현금과 주식과 주식 매입권 등의 자산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파트너십이나 유산(기금) 등으로부터 배당이 지급되기도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Form 1099-DIV를 통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을 통보한다(파트너십은 Form 1065, S 법인은 Form 1120S). 주주들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배당을 소득으로 신고한다. 배당 지급이 공표되었지만 실제 지급되기 이전에 주식을 매각하면 기록상의 소유주(주로 배당소득 명의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주 등에게 분배되는 지급금에는 일반적 배당소득과 양도차익 배당금, 그리고 기타 배당금이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반 배당(ordinary dividends)은 주식회사의 소득/이익¹⁸³⁾으로부터 지급되며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183) 당해연도 소득/이익(earning/profit)은 재무회계상의 순소득과 유사하며 누적된 소득/이익은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한 차이는 법인세에서 논의된다.

(Sec. 316(a)). 그러나 전술한 대로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에서 지급되는 배당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이나 면세기관이 지급한 배당 혹은 종업원 자사주 소유플랜(ESOP)¹⁸⁴⁾에 따라 보유한 주식에 대한 배당도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배당 형식으로 지급되었지만 배당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납세자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된다. 대개 주식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할 때 일반 배당인지 여부를 주주에게 통보한다.

미국 주식회사 등¹⁸⁵⁾이 지급하는 일반 배당소득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자본(양도)소득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25% 이하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개인 납세자가 2003~2010년 사이에 지급받는 일반 배당소득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율이 25% 이하(10% 혹은 15%)인 저소득층 납세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배당소득도 일반소득과 마찬가지로 개별 납세자의 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 다만 이러한 저율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보유기간이 이전 배당시점(ex-dividend date)의 60일 이전부터 시작하여 121일이 경과되는 기간 동안 최소한 60일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¹⁸⁶⁾.

자금의 출처가 주식회사의 소득 혹은 이익(누적분 포함)이 아닌 지급금은 배당소득이 아닌 배당금(non-dividend distribution)으로 간주된다. 회사 이익(소득)보다 많은 배당금도 이와 같이 분류된다. 이러한 배당금은 투자자본의 상환(return to capital)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 대신 주식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property basis)을 초과하는 배당금은 자본소득으로 분류되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 혹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¹⁸⁷⁾. 회사의 청산에 따른 배당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다만 청산에 따른 배당금이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자본손실이 발생한다.

상호투자회사(Mutual Fund)나 부동산투자회사(REIT)¹⁸⁸⁾가 투자자산의 매매로 양

184) Employees Stock Ownership Plan

185) 외국회사의 경우 미국에 법인으로 등록되었거나 미국 재무성이 인정하는 조세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회사 혹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이에 해당한다.

186) 우선주의 경우 181일 기간에 있어서 최소 90일 동안 보유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187) 한 예로 A가 주식회사 B로부터 20만달러를 지급받았는데 A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10만달러이고 B주식회사의 이익 등이 9만달러라면 9만달러는 소득세 신고를 하고 10만달러는 자본의 회수로서 A의 장부가액이 0이 되며 나머지 1만달러는 자본소득으로 처리된다.

도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양도차익 배당금(capital gain dividends)은 주식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장기 보유 양도차익으로 신고해야 한다(Sec. 852(b)). 이들 회사가 장기 보유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양도소득도 배당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주주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Form 2439).

자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배당(stock dividend)은 소득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은 1920년 이에 대한 과세를 금지한 바 있다(Reg. Sec. 1.305-1). 따라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주식배당을 소득신고할 필요가 없다. 공정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 매입권(stock right)도 마찬가지로 취급된다(Sec. 307(b)(1)). 과세되지 않는 주식배당은 주주의 장부가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주식 1주당 장부가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주주가 현금과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매입권)을 받으면 주식배당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현금배당과 같이 과세된다(constructive receipt of cash). 이처럼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식배당이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Sec. 1.305-4). 한 예로 일반 주주에게 우선주가 지급되고 다른 일반 주주에게는 일반주가 지급되면 이도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의 기존 지분율을 변화시키는 주식배당도 마찬가지이다. 과세되는 주식배당의 경우 납세자는 지급받은 주식가액(공정시장가격)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그 대신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만큼 증액한다. 마지막으로 주주의 지분을 증가시키는 여타 거래도 상기한 바 효과가 있으면 주식(매입권)의 지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s)은 대체로 주주이자 피용자인 사람이 받은 보수가 실질적으로는 위장된 배당인 경우로서 보수 금액이 비합리적인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Sec. 162(a)(1)). 의제배당을 받는 당사자가 피용인이 아닐지라도 임대건물의 소유주나 채권자 등이 의제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의제배당은 대개 기업 입장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소득이 된다. 과도한 로열티나 임대료 지급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배당은 수증자에게 비과세소득이나 소득이 아닌

형태로 지급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예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자산을 판매하거나 개인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주식의 상각, 수증자가 사용할 용도의 자산 매입 혹은 실제로는 배당인 대출을 해주는 경우 등이다.

고용주가 서비스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부 주식¹⁸⁹⁾이 있다(restricted stock). 이러한 주식은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취소가 가능한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주식을 지급받으면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조건부 주식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닌 임금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가 지급받은 조건부 주식을 소득으로 신고하면 그로부터 받는 배당은 일반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그 부담을 줄이고 있다. 우선 C 법인이 다른 C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으면 배당수입 공제를 통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공제규모는 전자가 보유한 주식 비중에 따라 다른데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면 100% 공제가 가능하며 주식 비중이 20~80%이면 80% 그리고 주식 비중이 20% 이하이면 70%가 공제된다.

S 법인은 도관업체로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소득과 경비를 주주에게 이전하여 이들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는 S 법인이 실제로 배당한 사실과 상관없이 주주가 회사의 소득과 경비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 신고하며 그 대신 S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이 손익에 따라 변동한다. 일반적으로 S 법인의 배당금은 배당소득을 제외하면 투자자본의 상환으로 간주되며 주식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은 자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

3) 임대소득

임대소득이나 로열티 수입은 총소득에 포함된다¹⁸⁹⁾. 임대료는 자산의 사용 혹은 점

189) 설비기구나 자동차 등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의 임대료에 따른 소득은 납세자가 사업 목적(투자 목적)으로 임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양식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이나 이윤 창출활동이 아닌 임대소득은 비사업용 소득으로 비용 및 손실공제가 제한된다.

유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임대료는 대체로 사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선급금은 지급 당시 과세된다. 보증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만약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으면 과세된다. 대신 임대자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상적이고 필요한 경비와 감가상각비용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즉, 공공요금, 세금, 광고료, 보험료, 임대료 징수를 위한 출장 교통비용, 설비 임대료에 따른 지급금 등이 공제된다¹⁹⁰⁾. 한편 후술하겠지만 임대는 수동적 사업(passive activities)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임대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임대소득으로 제한되고 다른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자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대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저렴한 임대료를 지급하면 이를 임대인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 즉, 임대인은 자산가격의 증대를 공정한 시장가치로 환산하여 총소득에 포함한다(Reg. Sec. 1.109-1). 자산가치가 개선되더라도 이를 임대료에서 반영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도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허용되지 않는다. 자산 가치의 변화에 따른 손익은 자산이 처분될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Reg. Sec. 1.1019-1). 임대료 대신 자산가치의 향상이 이루어졌는지는 당사자들의 의도에 달려 있지만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조건 등 해당 상황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4) 로열티 소득

예술품 등의 저작권이나 발명권, 원유, 가스 그리고 광산권으로부터 나오는 로열티 소득도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¹⁹¹⁾. 다만 석탄과 철광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소득이 아닌 자본의 양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원유나 광산권을 완전히 매각하면 수입은 내국세법 1231조상의 판매로 처리되지만 일부 지분만을 매각하면 남은 로열티(지분)은 임대로 간주되어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소유주는 감모상각을 통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90) 그러나 주변 도로나 상수도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자산가치를 향상하는 수수료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상각된다.

191) 로열티는 제3자가 소유자에게 소속된 권리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데 따른 보수를 말한다.

마. 기타 소득

1) 연금과 연부금¹⁹²⁾(pensions and annuities)

일반적으로 연부금을 지급하는 기관은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연부금을 지급받는 납세자는 그 대신 연부금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투자금액으로 납세자가 지출한 연금 불입금과 고용주가 기여하였지만 그 당시 과세된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가 소득 공제 혹은 면제를 받은 금액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처럼 투자자본의 회수는 과세되지 않고 그 이익을 과세하므로 연부금의 비용과 이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금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¹⁹³⁾.

이를 위하여 먼저 예상 지급빈도(expected return multiple)를 연 단위로 추정하고 이를 연부금 지급금액으로 곱한다. 지급빈도가 사전에 정해 있지 않고 납세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는 연부금은 규정상의 지급빈도를¹⁹⁴⁾ 인용하면 된다. 연후 투자비용을 앞에서 추정한 지급금액으로 나누면 연부금 배제비율(annuity exclusion ratio)이 된다. 금년도 지급금액을 배제비율로 곱하면 자본의 회수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이 결정된다(Sec. 72). 보험회사는 과세되는 연부금을 산정하여 수혜자에게 통지한다(Form 1099). 연부금 가입에 따른 비용이 모두 회수되면 전체 연부금 지급금이 과세되며 기여금을 모두 회수하기 이전에 납세자가 사망하면 마지막 소득신고에서 회수되지 않은 기여금을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과 퇴직기금은 일반적으로 연부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대개의 경우 고용인과 근로자가 동시에 연금에 기여한다¹⁹⁵⁾. 이 중 근로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고 기여한 금액은 비용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고용인이 기여한 금액은 미리 과세하지 않았으면 비

192) 연부금(annuity)이란 일정 기한 혹은 수령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정액으로 지급받는 연금으로 대개 퇴직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말한다.

193) Loans Treated as Distributions in 「Pension and Annuity Income」, Publication 575, IRS, 2008.

194) 납세자 나이와 기대수명에 따라 지불횟수가 정해진다(Reg. Sec. 1.72-9 Table V).

195) 장애를 이유로 퇴직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금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은퇴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완전하고 영구한 장애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용으로 회수할 수 없고 연금 지급 당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연금비용은 피용인의 기여금을 예상 지급빈도로 나눈 금액이 된다. 한편 내국세법에서 허용하는 연금 등의 경우 납세자가 처음 연부금을 지급받는 나이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지급빈도¹⁹⁶⁾로 피용인의 기여금을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부금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¹⁹⁷⁾.

연부금 지급이 시작되기 이전에 연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출된 금액 중 일부는 근로자 불입금이고 나머지는 고용주 기여금인데 근로자의 불입금이 모두 인출되고 난 후 추가적인 인출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세가 부과되며 1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Sec. 72(e)). 다만 납세자가 59.5세에 도달한 다음에 인출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 납세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사전 인출되는 경우 그리고 공제 가능한 의료비¹⁹⁸⁾ 지출을 위하여 인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2) 생명보험

보험자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생명보험의 액면금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단 보험사에 보험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된다. 한 예로 보험금이 일시불로 지급된 경우 고인의 사망 당시 수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보험금이 많으면 초과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분할 지급되는 보험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보험금을 분할 지급횟수로 나누어 환산한 금액보다 실제 분할 지급금이 많으면 초과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한다. 또한 보험지급기간이 정해 있지 않고 수혜자가 생존하는 동안만 지급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지급횟수 대신 수혜자의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면세금액을 환산하면 된다. 만약 보험을 현금을 받고 포기하면 판매대금에서 보험구입비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된다.

196) 연부금을 처음 지급받는 납세자 나이에 따라 기대 지급빈도가 다른데 55세 이하 360회, 56~60세 310회, 61~65세 260회, 66~70세 210회, 71세 이상 160회이다.

197) 한 예로 67세부터 매달 1200달러의 연금을 지급받는 납세자의 경우 만약 84,000달러를 연금에 기여하였다면 400달러(84,000/210)를 제외한 800달러를 소득 신고하면 된다.

198) 공제가 가능하려면 의료비 중에서도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 7.5%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채무상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탕감된 채무금액은 소득의 발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cancelled debt). 그러나 파산이나 증여를 목적으로 취소된 채무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 자선, 교육, 과학, 체육, 문학단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 면제되면 이 또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만약 이자도 탕감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이자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개인부채의 경우 이자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용 부채의 경우 탕감된 이자를 원금에서 제외한다. 한편 주주의 부채를 회사가 탕감해주면 이는 배당(constructive distribution)으로 간주되며 반대로 주주가 회사 부채를 취소하면 이는 증자로 취급된다.

3) 위자료와 별거비용

이혼이나 별거로 인하여 (이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이전소득(transfer)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과세 여부는 분류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급금이 자녀부양을 위해 지급될 수 있고 단순히 소득의 공유, 즉 위자료(alimony)이거나 아니면 이혼에 따른 재산의 정리(property settlement)로 간주될 수도 있다. 재산 정리(분배)는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자녀 부양금은 제공자가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도 소득으로 간주할 필요가 없다(Reg. Sec. 1.71-1). 그러나 위자료는 제공자 입장에서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공제가 허용되며 지급받은 사람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법상 위자료로 간주되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배우자 사이의 이혼, 별거 혹은 서면합의서에 따라 의무가 발생하고 ② 재산이 아닌 현금이 지급되며 ③ 위자료 이외 다른 명목으로 명기되지 않고 ④ 별도의 가족으로 생활하는 사이에 지급되며 ⑤ 수혜자가 사망하면 지급 의무가 종료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의에 따른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자격요건에 합치되고 (이전) 배우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거주비, 등록금 등은 위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이혼에 따라 재산을 분배할 때 각 배우자는 결혼 이전에 자신의 소유이던 재산과 결혼 후 축적

된 자산에 대한 일부를 소유할 권한이 있다. 결혼 후 습득한 자산의 배분은 양자의 합의나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위자료 지급에 따른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실상 재산 정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자료로 가장할 수 있다. 만약 이혼 첫 해 이후 위자료가 감소하는 경우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위자료를 재산 정리로 다시 신고해야 한다(recapture rule). 구체적으로는 처음 3년 동안 위자료를 지급하는 납세자가 초과 공제금을 소득에 포함하고 배우자는 소득으로 신고한 위자료를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한편 공제를 받기 위하여 자녀 부양금을 위자료로 가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 지원과 관련하여 자녀의 성년 등 상황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자료의 삭감은 자녀 부양금으로 간주된다(Reg. Sec. 1.71-IT).

4) (포)상금과 불법소득

상금, 실업수당, 사회보장금, 보험금 등 내국세법 제61(a)조에 명기되지 않은 소득도 이전소득(transfer)으로 간주되어 그 수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학금과 일부 과학, 종교, 자선단체 포상을 제외한 각종 경기, 콘테스트, 도박으로 받은 상금과 경품, 근로업적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지급하는 상금은 대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Sec. 74, Reg. Sec. 1.74-1). 상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공정한 시장가치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금 가운데 학문 관련 수상과 같이 상금을 타기 위하여 납세자가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고 미래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경우, 이에 한하여 정부나 자선단체에 상금이 기부되면 면세된다(Sec. 74). 두 번째로, 도박에서 얻은 상금은 모두 과세되며 다만 현 과세연도의 상금금액 한도 내에서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 항목별 공제될 수 있다(Sec. 165(d)). 세 번째로, 고용기간이나 안전한 노동환경에 대한 기여한 업적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수상되는 상품(현금 제외)의 경우 면세가 가능하다. 다만 이는 서면으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상품이 지급되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며 개인별 수상 한도는 1,600달러로서 근로자 1인당 상품가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¹⁹⁹⁾.

불법행위로 얻은 불법소득도 과세되어야 한다(Reg. 1.61-14(a)). 대부분의 범법자들이 불법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이 조항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이 불법소득을 얻었다고 증빙할 필요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사실로 충분하다. 따라서 사기, 도둑, 강도, 마약 매매, 뇌물 그리고 횡령 등으로부터 창출된 소득도 모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5) 실업수당(unemployment compensation)

1978년 이전에는 실업수당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8년 의회는 실업수당이 근로소득의 대체소득이므로 수혜자가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법을 개정하였다(Sec. 85). 법이 개정되고 난 후 처음에는 조정된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실업수당을 과세하였지만 1987년 이후에는 정부나 고용주가 제공하는 실업보험 모두에 대하여 실업수당 전액을 과세한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기금에서 받은 실업수당도 임금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사적으로 가입한 실업보험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납세자가 보험에 불입한 금액보다 많을 때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된다.

6) 사회보장 지급금(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과 부상지급금 그리고 1급 철도퇴직연금에 해당하며 의료수혜(Medicare)는 포함되지 않는다. 1984년 이전까지 사회보장금은 과세행정 편의상 면세되었다. 그러나 1984~1993년 사이에 최대 사회보장금의 50%가 과세되었고 이후 1994년부터는 최소금액 방식(lesser-of formula)에 따라 최대 85%가 과세된다(Sec. 86).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납세자 신분과 기준소득(provisional income)에 따라 다르다. 기준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에 사회보장금의 50% 등 일부 항목을 추가한 금액

199) 이에 대해서는 면세소득 참조.

이다²⁰⁰⁾.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보장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고소득층의 사회보장금은 최대 85%까지 과세된다. 다만 면세되지 않는 기준이 물가상승과 연동되지 않은 이유로 점점 많은 은퇴자들이 사회보장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합산의 경우 기준소득이 32,000달러 이하면 사회보장금은 비과세되고 기준소득이 32,000~44,000달러 사이이면 사회보장금의 50%와 기준금액에서 32,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기준소득이 44,00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조금 복잡하다. 우선 6,000달러와 사회보장금의 50% 중 적은 금액을 기준소득에서 44,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85%와 합친다. 연후 이 금액과 사회보장금의 85%를 비교하여 이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이에 비하여 독신의 경우 기준소득이 25,000달러 이하면 사회보장금이 면세되고 기준소득이 25,000~34,000달러 사이이면 사회보장금의 50%와 기준소득에서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기준소득이 34,00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되는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금의 85%와 기준금액에서 34,0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의 85%+(4,500달러와 사회보장금의 50% 중 적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이 과세된다.

7) 보상금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재판결과에 따른 보상금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사고 및 건강보험의 지급금과 생명보험의 액면금액이다(Sec. 104(a)(2))²⁰¹⁾. 한편 재산의 파손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은 자산의 조정된 장부가액(property's adjusted basis)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총소득에 포함된다. 반대로 보상금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손실로서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보상금을 자격이 되는 대체자산에 투자하면 이를 의도하지 않은 자산 전환(involuntary conversion)으로 간

200) 기준소득 = 사회보장금을 제외한 조정된 총소득(AGI)+사회보장금 50%+면세 해외소득+면세 이자소득

201) 이에 대해서는 면세소득 참조.

주하여 보상금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신체적 부상이나 병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 보상금은 면세가 허용되며 다만 징벌적 피해 보상금(punitive damage)은 과세된다(Sec. 104(a)(2)). 한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전술한 대로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채무, 타인이 대신 지불한 비용 그리고 염가 구매 등도 소득으로 간주되는 귀속적 보상에 해당한다(imputed income).

한편 납세자에게 논쟁중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객이 항의중인 판매대금이나 재판 중간에 지급된 보상금이 이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이러한 수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면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claim of right doctrine). 물론 소득세를 납부한 후 재판에서 패하여 이를 돌려주면 추후 소득신고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반환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납세자는 이 금액을 그냥 소득공제하거나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를 세액공제받는 선택이 가능하다.

8) 부채탕감

일반적으로 채무상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탕감된 채무금액은 소득의 발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cancelled debt). 그러나 파산이나 증여를 이유로 취소된 채무는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 자선, 교육, 과학, 체육, 문학단체를 위하여 일정 기간 일을 하는 조건으로 학자금 대출 상황이 면제되면 이 또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편 만약 이자도 탕감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이자의 공제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개인부채의 경우 이자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용 부채의 경우 탕감된 이자를 원금에서 제외한다. 한편 주주의 부채를 회사가 탕감해주면 이는 배당(constructive distribution)으로 간주되며 반대로 주주가 회사 부채를 취소하면 이는 소득이 아닌 증자로 취급된다. 만약 나중에 취소된 부채를 갚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Form 1040-X).

9) 공제비용의 환수(recapture)

납세자가 어떤 과세연도에 공제한 항목을 다음해에 돌려받을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예에는 의료비를 공제하고 난 후에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외 보상금, 대손금 환수, 혹은 세금 환급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수된 비용 등 항목은 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공제로 인하여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을 입었을 때 그리고 혜택을 입은 금액에 한하여 이를 소득으로 신고한다(tax benefit rule, Sec. 111). 항목별 공제가 표준공제보다 적은 경우 혹은 항목별 공제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여 세금을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공제를 신고할 당시 어떤 유형으로 공제를 하였는지에 따라 회수한 소득을 어떤 유형으로 신고할지를 결정한다. 한 예로 단기 양도손실로 공제된 항목은 단기 양도소득으로 신고한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논쟁이 붙은 제품 등으로부터의 판매대금은 사용 제한이 없는 한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claim of right). 물론 이듬해 보상 지급된 금액은 공제 처리될 수 있는데 다만 소득으로 간주되어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로 인한 절약된 세금이 더 적어야 한다(Sec. 1341).

10) 기타

자산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면 이를 지급받을 당시 공정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만약 서비스를 교환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그 가치에 대하여 합의의 보편 합의된 가격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잃어버리거나 방치된 자산으로 본인 소유가 아닌 자산을 취득하면 공정시장가격으로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지급하는 현금이나 자산은 노동조합이 증여를 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 양도(자본)소득

총소득은 자산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포함한다(Sec. 61(a)(3)). 그 대신 자산의 교환이나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이전에 공제할 수 있다(Sec. 62(a)(3)). 여기서 자산의 매각이란 납세자가 현금이나 납세자 부채의 이전 등 현금과 동일한 금액을 대신 받은 거래를 의미한다. 또한 교환은 현금 등이 아닌 기타 재산을 이전 받은 경우를 말한다²⁰²⁾.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친척 등 관련자 사이의 거래는 매각을 위장한 증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산의 거래차익은 자본자산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과 여타 자산의 거래에 의한 일반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²⁰³⁾. 이 가운데 장기 양도소득(순이익)²⁰⁴⁾은 일반소득과 달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1988~1990년을 제외하면 자본자산의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장기 양도소득은 1921년 이후 일반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1980년대 초반 개인 납세자는 양도소득의 60%를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고 1988년 이러한 우대조항이 폐지²⁰⁵⁾되었다가 1991년부터 일반소득의 최고 세율은 31%로 증가하였지만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을 28%를 유지하였다.

이후 1997년 양도소득 세율은 8~20%로 하락하여 소득세 최고 세율 39.6%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²⁰⁶⁾. 특히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최대 20%(일반소득세 세율 15% 이하인 납세자는 10%를 적용받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추가로 세율 2%를 각각 감면받았다. 나아가 2003년에는 장기보유 양도소득 세율이 5%와 15%로 인하되었고 배당소득도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반면 1년 이하로 단기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2011년이 되면 이러한 우

202) Reg. Sec. 1.1002-1(d)

203) 예외적으로 사업용 자산 중 부동산과 감가상각되는 사업자산 즉, 1231조 자산의 거래차익은 장기보유 양도이익으로 그리고 그 손실은 일반손실로 취급된다.

204) Long Term Capital Gain(LTCG)

205) 1986년 조세개혁법으로 이윤,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율이 인하되면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우대세율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1987~1990년까지 일반소득의 최고 세율과 양도소득 세율은 28%로 같았다.

206) Taxpayer Relief Act of 1997: 다만 후술하겠지만 예외적으로 수집품과 일부 중소기업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1202조)은 최대 28% 그리고 상각자산 미환수 양도소득(Un-recaptured gain: 1250조)은 최대 25%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세율은 다시 10%와 20%로 인상될 예정이다.

1) 양도소득의 결정

(a) 양도소득의 실현과 인정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산매각, 교환, 폐기 등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손익을 자본손익과 일반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익의 실현(realized gain or loss)과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유형 그리고 보유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양도 순이익으로 장기 양도 순이익에서 단기 양도 순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순이익(차익)은 양도이익에서 양도손실을 제외한 이익을 말한다. 그러나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발생하는 양도 순손실은 공제에 한도가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본손실보다 일반손실을 선호한다.

이익 혹은 손실의 실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교환이나 매각에 따라 실현된 수입(amount realized)을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basis)과 비교해야 한다. 만약 매각대금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처리되며 반대의 경우 손실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된다(Sec. 1001(a))²⁰⁷⁾. 반면 판매수수료나 광고비 등 매각비용은 공제된다. 실현되지 않은 양도손익은 과세되지 않으며 납세의무는 매각 혹은 처분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발생한다(Reg. Sec. 1.1001-1(c)(1)).

손익의 실현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매각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자산의 교환, 손상, 도난, 주식회사 자본금 분배, 몰수 등의 처분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다만 자산의 증여는 실현된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g. Sec. 1.1001-1(c)). 주식, 파트너, 채권 등의 지분을 처분하면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하거나 선물거래를 하면 공정시장가격으로 이익을 인정해야 할 수 있다(Constructive Sales)²⁰⁸⁾. 또한 과세연도 종료 시점에 내국세법 1256조의 계약²⁰⁹⁾을 보유한 납세자는 그 시점에 공정시장가격

207) 이를 통하여 납세자는 자산에 투자된 자본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covery of basis doctrine, Sec. 1001, 2).

208) 이 경우 보유기간도 의제판매 시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209) 규제가 적용되는 일부 선물계약, 외환계약, 비주식옵션(non equity option), 증개인 주식

으로 이를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손익을 인정해야 된다.

자산의 처분으로 실현된 수입은 처분된 자산 대신 받은 것을 모두 포함한다(amount realized). 이는 현금 지급과 대신 받은 자산과 서비스의 공정시장가격²¹⁰⁾ 그리고 부채 등을 포함한다. 만약 매입자가 판매인에게 채권을 대신 지급하면 실현된 수입은 발행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제3자가 발행한 채권을 지급하면 공정시장가격이 실현된 수입이 된다. 이외 매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이는 일반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매각으로 실현된 수입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한편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자산에 투자된 원금의 증감을 포함한, 회수되지 않은 원금을 의미한다(Sec. 1016). 그런데 기초 장부가액(initial basis)이 결정되는 방식은 자산의 취득방식에 따라 다르다. 즉, 기초 장부가액은 대개 납세자의 투자원금으로서 매입비용을 의미하지만 증여나 유산의 경우 공정시장가격 혹은 대체 장부가액(substituted basis)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예로 유산의 경우 고인 사망 당시 혹은 사망 후 6개월이 되는 날의 공정시장가격이 기초 장부가액이 된다.

기초 장부가액에서 자본의 증액(capital addition)이나 회수(recoveries)에 따른 금액 증감을 하면 조정된 장부가액이 된다. 즉, 자산의 가치를 향상하거나 생명을 연장하거나 용도에 도움이 되는 자본지출(자본증액)²¹¹⁾은 장부가액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손상에 의한 손실, 자본비용 회수 혹은 감가상각 공제는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자본지출은 자산의 유지를 위한 일반 사업비용과 구분되어야 한다. 한 예로 건물보수 비용은 즉각 공제가 가능한 비용이지만 신축비용은 자본의 증액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감가(모) 상각, 비과세 배당, 손실공제와 비용회수 등 자본의 회수는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1980~1986년 사이에 구입한 자산은 조기원가 회수제도(ACRS,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에 의하여 비용 공제가 되지만 그 후 구입한 대부분의 유형 상각자산은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²¹²⁾를 적용해야 한다. 만약

옵션 등을 의미한다.

210) fair market value: 관련 사실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지하고 있는 판매자와 매입자 사이에서 자산이 자발적으로 교환되는 가격을 말한다. 근접한 시점 혹은 유사한 자산거래가격이 공정가격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

211) capital expenditure: Reg. Sec. 1.461-1은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가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면 허용되는 감가상각은 정액법²¹³⁾을 따른다(Sec. 1016). 납세자가 자산에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covery of basis doctrine, Sec. 1001, 2). 투자원금의 회수는 감가상각 공제 이외에도 주식회사 자본금 배분, 손상에 따른 손실 인정과 비자발적인 전환에 따른 보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자산의 처분에 따라 실현된 수입과 조정된 장부가액의 차이가 실현된 손익이다. 그러나 세법상 손익이 이연되거나 일부 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현된 손익과 소득신고에서 인정되는 손익(recognized gain or loss)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이나 이윤추구활동에서 발생한 손실과 손상 혹은 도난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용도로 보유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인정되지만 그 손실은 인정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손상이나 절도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개인용 자산이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인정되는 데 비하여 공익적 목적의 강제 보상물수에 의한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b)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정의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자산이 어떤 성격의 자산을 의미하는지를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내국세법 1221조는 자본자산이 아닌 재산(properties)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자산은 1221조에 제시되지 않은 재산을 의미한다. 자본자산이 아닌 재산은 첫째, 일반적 상거래에서 주로 고객 판매용으로 보유한 재고자산 둘째, 사업용 자산으로 내국세법 167조에 따른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자산이나 사업용 부동산²¹⁴⁾ 셋째,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서비스 제공이나 물품 판매에 따라 취득한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이나 어음 넷째, 납세자를 위하여 제작되고 납세자가 보유한 편지, 메모나 기타 유사 자산, 납세자가 직접 제작하고 보유한 예술품²¹⁵⁾과 문학작품,

212)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213) 혹은 균등상각법(straight line method)

214) 사업용 부동산을 납세자가 1년 이상 보유하면 1231조 자산으로 분류된다.

215) 그러나 납세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악 관련 저작권을 2006년 5월 이후 매각하면 이를 자본자산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 등 일반 대중에게 허용된 판매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은 정부 간행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²¹⁶⁾. 이외 헤지거래(hedge transaction)²¹⁷⁾, 파생상품 중 개인이 보유한 파생 금융상품과 일반적 상거래에서 주기적으로 사용 혹은 소비하는 공급품도 자본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 투자자산은 자본자산²¹⁸⁾이며 개인용 자산은 사용 용도에 따라 자본자산 여부가 결정된다. 투자자산(investment property)이란 투자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주식, 채권, 어음 등을 의미한다. 사업용 자산은 투자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²¹⁹⁾, 채권, 기타 투자용 자산과 주택, 토지, 보석, 금은, 우표, 가구, 자동차 등 개인용 자산은 자본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인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면 이는 개인 소득이며 투자나 개인용으로 판매한 예술품으로부터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이 된다. 이 밖에 특허권, 가맹권 혹은 상표권은 법에서 일정한 거래조건에 따라 자본자산으로 분류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환율 차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거래한 외국환 교환으로 200달러 이하의 이익이 발생하면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익이 200달러 이상이면 자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 공장, 사무실, 기계설비 등 사업용 자산과 재고자산은 자본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사업용 자산과 토지(1231조 자산)는 비록 자본자산이 아니지만 자산 매각이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²²⁰⁾은 내국세법

216) 이 밖에도 제작자가 보유한 자산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장부가액을 산정할 때 제작자의 장부가액을 기준할 경우 자본자산에 포함될 수 없다.

217) 상품선물계약 중 헤지거래는 일반 손익으로 취급된다. 헤지거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이자율이나 환율 그리고 가격변동을 관리하기 위하여 맺은 계약을 말한다.

218) 그러나 1955년 대법원은 옥수수 회사가 옥수수 선물을 계약하고 추후 일부 불필요한 계약을 매매함에 따라서 발생한 손익은 자본자산의 거래에 따른 손익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정을 하였다. 옥수수 회사는 원재료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선물계약은 회사 제조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행위로서 양도손익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간주하였다(Corn Products Refining Co. v. CIR, 47 AFTR 1789, 55-2 USTC ¶ 9746 USSC 1955). 한편 1988년 대법원은 거래의 동기와 관련 없이 해당 거래가 1221조에 포괄적으로 정의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이를 자본손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정한 경우도 있다(Arkansas Best Corporation v. CIR, 61 AFTR 2d 88-655, 88-1 USTC ¶ 9210 USSC 1988). 1988년 판정으로 투자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매입한 자산도 구입 목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자본자산에 해당하면 더 이상 이들 자산의 거래로 인한 손실을 일반손실로 인정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19) 중개인이 판매용으로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금은, 우표 등은 자본자산이 아니다.

1231조에 따라 결국 장기보유 양도소득(LTCG)으로 간주되고 손실은 일반적인 손실로 간주되어 과세된다²²¹⁾. 한편 투자용 자산과 개인용 자산은 손실의 처리에서 세법상 달리 취급된다. 투자용 자산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양도손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개인용 자산 판매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손실은 절도나 손상이 아니면 손실로 간주되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정 자산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주식 등 증권 매매에 따른 중개인의 이득은 일반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중개인이 명백하게 투자용으로 선언한 증권 판매로 발생하는 손익은 양도손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²²²⁾. 이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판매하는 납세자는 중개업자로 간주되어 손실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아닌 납세자(주식회사 제외)가 부동산을 분할 판매하면 그 이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Sec. 1237).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연도에 납세자가 다른 부동산을 일반적 상거래에서 판매용으로 보유하지 않고 5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어야 한다(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보유기간 예외). 또한 납세자는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만큼 해당 부동산을 개발할 수 없다²²³⁾.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규모(5 lots) 이하의 부동산 판매는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를 초과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면 판매가격의 5%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양도소득이 간주된다. 1237조는 손실에는 적용되지 않아 투자용으로 보유한 자산의 판매에 따른 손실은 자본손실이지만 납세자가 중개업자이면 이는 일반손실로 간주

220) 이러한 대우를 받는 1231조 차익은 1231조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1231조 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외한 순이익을 말한다(Sec. 1231(c)(4), (a)(2)). 한편 감가상각의 환수규정과 5년 소급규정에 의하여 1231조에 따른 혜택이 감소하고 있다.

221) 1930년대 중반까지 사업용 자산은 자본자산으로 간주되었지만 자산매각에 따른 손실을 제한적으로 공제할 수 있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감가상각이 더 유리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1938년 의회는 사업용 자산을 자본자산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일반세율 적용으로 높은 세금 부담을 꺼려 전쟁 중 자산매각 혹은 군사용 자산으로의 전환이 부진하자 1942년 의회는 사업용 자산 매각에 따른 차익을 일반 차익이 아닌 양도차익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222) 이를 위해서는 취득시점에 중개인이 투자용으로 선언하고 그 이후 고객 판매용으로 보유하면 안된다(Sec. 1236).

223) 그러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부 부동산의 개선은 실질적 향상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Sec. 1237(b)(3)).

된다.

또한 비사업용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대손금(bad debt)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시점에 단기 양도손실로 처리된다(Sec. 166(d)(1)). 세 번째로 자본자산인 증권이 휴지조각이 되면 이는 자본자산의 매각 혹은 교환으로 간주되어 해당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발생한 양도손실로 인정된다²²⁴⁾. 이러한 증권은 주식, 주식 옵션, 주식회사나 정부가 발행한 채권, 어음과 기타 부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다만 증권이 가치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한편 모회사인 주식회사²²⁵⁾가 보유한 자회사의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면 이를 양도손실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손실은 주식회사에 제한된 이익만 있기 때문에 일반손실로 간주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징수는 자본의 매각이나 교환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권 상환(retirement) 당시 채권 보유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를 양도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Sec. 1271(a))²²⁶⁾. 의회는 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하여 사실상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할인금액이 만기 당시 상환가격의 0.25%와 보유연도 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초과하면 할인금액은 원본 할인²²⁷⁾으로 간주되어 상각되고 납세자의 회계방식과 관계없이 할인금액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Sec. 1273(a)(3))²²⁸⁾.

224) 따라서 과세연도 중간에 증권이 휴지조각이 되어도 보유기간이 연장되어 단기손실도 장기손실로 취급될 수 있다(Sec. 165(g)(1)).

225) 모회사로 간주되려면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최소 80% 이상 소유하고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8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자회사는 총수입의 90% 이상이 로열티, 배당 혹은 이자소득인 수동적 투자회사일 수 없다(Sec. 165(g)(3)).

226)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채, 무담보 채권, 어음, 증명서와 기타 부채를 입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227) OID(Original Issue Discount): 할인채권으로 만기 상환가격이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Sec. 1273(a)(1)).

228) 한 예로 5년 만기로 상환가격이 \$100,000인 채권을 채권 발행 당시 \$90,000에 구입하였는데 매년 \$1,600을 이자로서 지급한다고 하자. 이 경우 실효 이자율은 대략 20%에 가깝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실효 이자율×조정된 발행가격($0.2 \times \$90,000$)에서 이자 지급액(\$1,600)을 제외한 금액(\$200)을 추가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이자 지급액과 함께 이자소

한편 채권이 발행되고 난 이후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market discount bond). 시장할인채권도 원본할인(OID)과 마찬가지로 만약 할인 금액이 만기 상환가격의 0.25%와 보유연도 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금액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Sec. 1278(a)(2)(C)). 할인 금액은 채권의 만기 상환가격에서 구입 당시 납세자의 채권 장부가가격(구입가격)이 된다. 시장할인채권을 처분하여 얻은 이득 중 시장할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로 간주되므로 일반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Sec. 1276(a)(1))²²⁹⁾.

옵션(option) 즉,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이 행사되면 옵션의 매입가격이 자산의 구입가격에 포함되어 장부가격을 형성한다. 또한 옵션을 매각하거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옵션이 만료되면 자산의 판매나 교환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따른 손익이 인정되어야 한다(Sec. 1234(a)). 다만 손익을 양도소득과 일반소득 가운데 어느 것으로 처리할지는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즉, 옵션의 대상자산이 자본자산이면 손익은 양도손익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500달러에 구입한 이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옵션의 구입자와 판매자는 각각 500달러를 양도손실과 양도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허권의 경우 모든 실질적 권리의 이전으로 발생한 소득을 보유기간이나 권리의 성격과 관계없이 소유권자가 장기보유 양도소득(LTCG)으로 신고할 수 있다(Sec. 1235). 특허권의 처분, 사용 혹은 활용도에 따라 특허권의 양도자가 주기적인 보수를 받아도 이와 상관없이 장기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이는 문학과 예술품 등 저작권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는 것과 달리 특허권이 임대세율을 적용받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권

득(\$1,800)으로 신고한다. 조정된 발행가격은 채권 구입가격에 간주이자를 합한 금액(\$90,200)으로 만기 이전에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판매하면 양도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장부가액이 된다(constant interest rate method, Sec. 1272(a)(3)).

- 229) 한 예로 5년 만기로 상환가격이 \$100,000인 채권을 발행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94,000에 구입하였다고 하자. 만약 구입가격이 \$99,250 이하이면 할인금액은 \$750($\$100,000 \times 0.0025 \times 3$)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 1년 후 이 채권을 \$97,000에 판매하였다면 차익 \$3,000($\$97,000 - \$94,000$) 중에서 \$2,000($\$6,000 \times 1/3$)은 일반소득이며 나머지 금액이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만약 채권이 \$94,000~\$96,000 사이에 매매되었으면 모든 차익(\$0~\$2,000)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또한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면 모든 차익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은 특허권을 발명한 사람이나 특허권이 응용된 상품이 사용 혹은 작동되기 이전에 발명권자로부터 특허권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주식회사는 특허권자의 소유권자가 될 수 없으며 파트너십도 마찬가지이지만 개별 파트너는 파트너십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하여 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특허권을 소유한 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허권이 부여된 국가에서 지역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거나 혹은 특허권의 효력기간보다 적은 기간으로 권리가 제한되면 실질적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Reg. Sec. 1.1235-2(b)).

이외 가맹권(franchise)이나 상표권(trademark)의 경우 양도자가 이전된 권리와 관련하여 상당 수준의 권리, 지분이나 조건²³⁰⁾ 등을 계속 유지하지 않아야 자본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Sec. 1253). 그러나 권리의 처분, 사용 혹은 활용도에 따라 보수를 받는 계약을 할 경우 이는 자본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일반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만약 권리 이전이 자본자산으로 간주되면 양도자는 자본소득을 신고하고 매입자는 그 경비를 15년간 상각해야 한다(Sec. 197(a)). 반대로 이들 거래가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면 양도자는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매입자는 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맹권을 양도할 때 실질적 권리를 유지하거나 상당한 조건이 전제되므로 대개 일반자산으로 과세되며 양수대금 또한 사업용 경비로 공제된다(Sec. 197(g)).

임대기간의 종료 이전에 한 쪽이 원해서 계약이 취소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방식은 어느 쪽이 대가를 받는가에 따라 다르다(Sec. 1241). 대법원은 만약 임대인에게 수입이 발생하면 이는 임대료에 상당하므로 일반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임대인이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수입은 지급받은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계약 취소를 대가로 임차인이 받은 수입은 임대 계약의 교환으로 인한 수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만약 계약이 자본자산이면 그로 인한 손익은 자본의 양도손익에 해당한다. 한 예로 감가상각되지 않는 계약(개인 주택용)은 자본자산으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은 계약(사업용)은 일반 자산이나 사업용 자산

230) 지분 배정을 사전 승인제로 하거나 임의로 권리를 취소할 수 있거나 혹은 양도자 제품이나 설비만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양도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만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도록 하는 행위, 제품 품질, 시설, 서비스 기준을 지정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Sec. 1253(b)(2)).

(Sec. 1231 자산)으로 간주된다²³¹⁾.

개인 납세자는 일부 중소기업 주식(Sec. 1244 stock)의 매매나 교환 혹은 가치가 없어져 발생한 손실을 일정한도 내에서 일반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Sec. 1244(a)). 독신은 매년 5만달러 그리고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10만달러까지 일반손실로 공제가 허용된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손실로 간주되어야 한다(Form 4797). 하지만 1244조 주식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양도이익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국내 회사로서 지난 5년간 총수입의 50% 이상을 이자, 배당, 로열티 등 투자소득과 증권의 매매로 창출해서는 안된다. 만약 중소기업이 5년 이내 창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50% 규정이 적용된다(Sec. 1244(c)). 또한 원소유자나 취득 당시 파트너십 파트너인 납세자가 주식을 현금 혹은 증권 이외 다른 자산과 교환을 했어야 한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밖에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를 파는 경우 사업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고 사업상의 개별 자산이 각각 일반자산 혹은 자본자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파트너십 지분의 매매도 자본자산으로 간주되며 다만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account receivable)이나 가격이 상당히 오른 재고물품과 관련된 손익만이 일반소득으로 대우받는다(Sec. 741, 751(a)). 한편 주식은 판매자에게 자본자산으로 존재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다.

(c) 보유기간

장기 보유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Sec. 1222).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처분날짜를 포함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간주한다. 한편 비과세되는 자산의 교환에 있어서 대상 자산이 자본자산이거나 내국세법 1231조의 사업용 자산이면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대신 인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231) A가 거주용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고 그 대신 A에게 \$2,000을 지급하면 A가 임대계약에 장부가액이 없는 한 계약은 자본자산으로 \$2,000은 양도소득으로 인정된다.

(Sec. 1223(1)). 자산의 비자발적인 전환(involuntary conversion)도 같은 방식으로 취급된다. 또한 비과세되는 주식의 배당이나 주식 옵션의 보유기간은 주주가 보유한 기존 주식의 보유기간이 된다. 다만 매입권을 행사하면 매입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매입 시점부터 시작한다(Sec. 1223(5)).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소유 권리증서(title)를 받은 시점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소유에 따른 부담과 특권을 향유하게 된 시점 중 빠른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증여자가 증여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을 결정할 때 피증여자 즉, 자산을 증여한 사람의 장부가액을 사용하면 피증여자의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보유기간에 포함된다(Sec. 1223(1)). 그러나 증여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이 장부가액이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증여 시점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은 증여 당시 자산의 공정가격이 피증여자의 장부가액보다 낮고 자산 매각으로 손실을 입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유산 매각에 따른 손익은 보유기간 혹은 매각시점과 상관없이 장기 보유자산으로 간주된다(Sec. 1223(11)).

(d)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property basis)²³²⁾

① 기본 개념

장부가액은 과세목적상 납세자가 해당 자산에 투자한 금액을 의미한다. 장부가액은 감가상각 금액이나 손상손실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며 자산 처분에 따른 자본손익을 환산하는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장부가액은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매입비용이며 자산의 취득과 이용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²³³⁾도 자본화, 즉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Sec. 1012).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발생한 세금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며 자산 처분과 관련된 세금은 실현된 수입에서 제외된다.

연후 자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지출이 발생하면 장부가액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이 되

232) 미국에서 조정된 장부가액은 일반 장부가액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조정된 기초가액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233) 판매세와 소비세, 운반비용, 장치료, 등록비 등이 구입비용이며 변호사나 회계사 수수료도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면 장부가액은 감소하는데 이를 조정된 장부가액(adjusted property basis)이라고 한다. 자산 가치를 향상하는 투자로서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건축물 개량이나 재건에서 만약 경비를 공제할 수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수가 발생하면 장부가액이 증가한다. 한편 감가상각²³⁴⁾ 이외 179조 공제나 손상공제 혹은 보험회사의 보상 등은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증여나 유산 등 매입이 아닌 방식으로 자산을 취득하면 대개 이전 소유자의 장부가액이 납세자의 장부가액이 된다. 또한 다른 자산과 교환하면 그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장부가액이 된다. 자산 구입을 위한 차입금도 장부가액에 포함되고 구입자가 매각자의 채무를 대신 책임지면 그 금액도 장부가액에 포함된다. 반대로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는데 연방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계약하면 장부가액은 매입가격에서 이자율 차이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자산을 지급받으면 교환 당시 공정시장가격이 장부가액이 된다. 만약 사전에 양해된 가격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면 반대되는 정황이 없는 한 계약금액이 장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할인된 교환거래에서 할인된 금액은 장부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른 이유로 포함된 금액은 장부가액에서 제외된다. 이외 조건부 자산(restricted Property)의 경우 납세자가 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시점의 시장공정가격이 장부가액으로 인정된다(substantially vested).

234) 납세자가 실제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법에서 허용된 상각금액만큼 장부가액이 감소해야 한다.

〈표 1-8〉 자산의 장부가액 기준

자산	취득 자산의 장부가액
구입자산	매입비용+자산이용 준비비용+구입자가 대신 부담한 판매자의 부채+자산의 담보채무
증여자산 공정시장가격≥장부가액 ¹⁾ 공정시장가격< 장부가액 ¹⁾	증여자의 장부가액=피증여자의 장부가액+증여 시점 증여자산의 미실현 가격 증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 이익: 피증여자의 장부가액 손실: 공정시장가격
유산 사망시점 대체평가일(AVD) 선택	사망 당시 공정시장 가격 배분 이전: 대체평가일의 공정시장가격 대체평가일 이전 배분(매각): 배분(매각)시점의 공정가격
개인용에서 사업용으로 전환한 자산	이익: 장부가액은 전환시점의 조정된 장부가액 손실(감가상각): 전환시점의 조정된 장부가액과 공정시장가격 중 적은 금액
비과세주식배당	기존 보유 주식의 조정된 장부가액을 비율적으로 재배분
비과세주식매입권	매입권의 공정가격(15% 기존주식의 공정가격: 매입권의 장부가액=0 이외: 기존 보유주식 장부가액을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비율적으로 주식 매입권과 기존 주식에 재배분

주: 1) 증여자의 장부가액을 의미.

일부 사례에서는 납세자가 경비를 자본화 즉, 장부가액에 포함하거나 즉각 비용 공제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Sec. 266). 그러나 재고자산과 관련된 경비는 자본화하여야 한다. 또한 재고자산 이외에도 사업이나 이윤추구를 위하여 사용된 다른 자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uniform capitalization rule)²³⁵⁾. 즉, 납세자가 사업 혹은 투자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이나 유형 개인자산²³⁶⁾을 직접 생산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생산하거나 혹은 재판매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면 자산의 생산과 관련된 직접 경비와 분배가 가능한 간접 경비를 현재 비용으로 공제하지 않고 생산된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연후 해당 자산을 판매 혹은 사용하면 경비를 판매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감가상각한다.

235) Sec. 263(A)

236) 필름, 책, 영상 테이프, 음성기록물 등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입비용을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체 건물의 공정가격을 전체 부동산 공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매입 비용과 곱해도 되고 아니면 감정 평가액을 사용해도 된다. 부동산과 유형개인자산의 건설, 제조, 개선, 건축 등의 지출 때문에 발생한 채무의 이자경비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자본화되어야 한다(Sec. 263A(f)). 부동산을 제외한 대상 자산은 내용연수가 20년 이상이며 생산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이거나 혹은 1년 이상의 생산기간으로 비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 증여·유산의 장부가액

1921년 이후에 기증 받은 자산의 경우 납세자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장부가액과 같다(Sec. 1015(a)). 그러나 증여받은 사람의 장부가액은 기증한 사람의 장부가액과 기증 당시 증여자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만약 자산의 공정가격이 기증자의 장부가액보다 높으면 증여자와 피증여자의 장부가액은 동일하다. 하지만 증여 당시 시장가격이 기증자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추후자산 처분 당시 발생하는 손익에 따라 장부가액이 달라진다. 즉, 수증자가 자산을 처분할 때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장부가액은 증여 당시 공정가격이 된다(basis for loss). 반대로 처분시 이익을 보면 기증자의 장부가액이 수증자의 장부가액이 된다(basis for gain)²³⁷⁾.

이러한 이중적 장치는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 예로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고소득 납세자에게 증여를 하면 이를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장부가액과 증여 당시 공정가격 중 낮은 금액이 수증자(기증받은 고소득 납세자)의 장부가액이 되므로 손실 매각으로 공제를 받으려는 유인이 적어진다²³⁸⁾. 따라서 구입비

237) 한 예로 A가 장부가액이 \$1,000인 자산을 B에게 기증하였는데 그 당시 증여자자산의 시장가격이 \$800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B가 나중에 기증받은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남기면(즉, \$1000 이상으로 매각하면) B의 장부가액은 \$1,000이 된다. 반대로 B가 \$800 이하로 매각하여 손실을 입으면 B의 장부가액은 \$800이 된다. 만약 \$800~\$1,000 사이의 가격으로 매각하면 이익과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용 이하로 하락한 자산을 기증하면 증여받은 사람의 장부가액은 증여 당시 공정가격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손실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기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면 증여세 일부가 수증자의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증여 당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기증자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증여 당시 공정가격에서 기증자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증여세에 곱한 금액이 기증받은 납세자의 장부가액에 추가된다(Sec. 1015(d)(6)). 여기서 증여금액은 공정가격에서 비과세 증여금액(2006년 12,000달러)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²³⁹⁾.

한편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이나 대체평가일(AVD) 당시 공정시장가격 중 하나가 유산의 장부가액이 된다(Sec. 1014(a)).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산 평가액의 상승을 유발하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한 자산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유발한다(step-up basis). 대체 평가일은 일반적으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데 만약 대체 평가일을 선택하면 모든 유산이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대체평가일 이전에 분배된 유산이나 매각된 유산은 처분 당시 공정가격이 장부가액이 된다(Sec. 2032(a)). 사망 시점이 아닌 대체 평가일은 유산과 유산세 금액이 모두 감소할 때만 선택할 수 있다.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한 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체 자산 중에서 고인(피상속인)의 유산으로 간주되는 절반은 생존 배우자가 고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유산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사망(대체 평가일) 시점의 공정가격으로 평가된다(common law, Sec 1014(a)). 이에 비하면 공동재산법(communitary property law)을 적용하는 주에서는 전체 자산이 생존 배우자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어 사망 당시 공정가격이 장부가액으로 평가된다(Sec. 1014(b)(6)). 마지막으로 고

238) 보유기간도 일반적으로는 기증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하지만 공정가격이 기증자의 장부가액보다 적으며 자산 처분시 손실이 발생하면 보유기간은 증여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Sec. 1223).

239) Sec. 1015(d)(2), 2503(b). 한 예로 A가 B에게 장부가액이 \$32,000인 자산을 기증하였는데 그 당시 자산의 시장가격은 \$52,000이며 증여세는 \$10,000이라도 가정하자. 이 경우 증여금액은 $\$52,000 - \$12,000$ (비과세 증여금액) = $\$40,000$ 이 된다. 따라서 $(\$52,000 - \$32,000) / \$40,000 = 50\%$ 가 기준비율로서 증여세 \$10,000의 50%인 \$5,000이 추가되어 B의 장부가액은 \$37,000이 된다.

인으로부터 받은 자산은 고인이나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과 관계없이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장기 보유로 간주된다.

③ 사업·투자자산으로 전환된 개인자산

개인자산이 사업용이나 소득창출용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자산의 장부가액은 추후 자산의 매각으로 손실을 입는 상황과 이익을 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개인자산을 매각 이전에 사업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원래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을 사업손실로 포장하여 공제받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우선 자산의 매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은 용도 전환 당시 공정시장가격과 조정된 장부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자산이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된 부분은 상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공정시장가격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에 따라 손실을 환산할 때 장부가액은 공정시장가격에서 처분 이전까지 상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²⁴⁰⁾. 그러나 만약 사업용으로 전환된 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장부가액은 전환 당시 해당 자산의 조정된 장부가액에서 처분 이전까지 감가상각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²⁴¹⁾.

④ 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독점판매권 등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매입비용이나 창안비용이다. 일부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특허

240) Reg. sec. 1.165-9(b)(2).

241) A가 2000년에 부동산을 \$100,000에 구입한 후 2002년에 임대용으로 전환할 당시 시장가격이 \$90,000이라고 가정하자. 그 후 A가 \$30,000에 달하는 감가상각을 하였고 2007년에 임대자산을 \$55,000에 매각하였다면 장부가액은 \$60,000(\$90,000-\$30,000)이며 손실은 \$5,000(\$55,000-\$60,000)이 된다. 반면에 A가 이 자산을 \$80,000에 매각하였다면 자산의 장부가액은 \$70,000(\$100,000-\$30,000)이며 양도소득은 \$10,000 (\$80,000-\$70,000)이 된다.

권의 장부가액은 연구개발비, 모형비, 변호사비, 특허수수료 등을 포함한 개발비용이다. 물론 연구개발비를 소득에서 공제하였으면 장부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며 발명자의 시간비용도 제외된다. 저작권자의 장부가액은 저작권 취득비용으로 저작권자의 시간비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용은 제외된다. 이외 상표권이나 독점 판매권 등의 장부가액은 사업비용으로 공제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비용이 된다.

⑤ 과세대상 자산교환

교환되는 자산과 유사하지 않거나 사용 용도가 관련 없는 자산의 교환은 과세되는 자산 교환으로서 이로 인한 이익과 손실이 즉시 인정된다. 이 경우 교환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시장가격이 된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자산 교환의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이 과세되지 않고 손실도 공제되지 않는다. 이 때 교환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교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된다. 유사 자산의 교환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추가로 현금 등을 지급하면 교환받은 자산의 장부가액도 그만큼 증가한다.

⑥ 장부가액의 배분방식

한 번에 취득한 자산을 각각 다른 시점에 분할 매각하면 장부가액의 배분을 통하여 처분 당시 손익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여러 종류의 자산을 동시에 매입하였다면 각 자산의 공정시장가격(FMV)에 따라 매입비용이 각 자산의 장부가액에 분산되어 감가상각과 손익을 결정한다(Reg. Sec. 1.167(a)-5).

장부가액의 배분은 일부 자산이 감가상각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 예로 토지의 경우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고 자산이 처분될 때 장부가액이 회수된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매입비용을 상각되는 건물에 배분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입비용을 장부가액에 분배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정가격을 평가하여 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또한 자산 매입시 발생한 공동비용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별 자산의 공정가격에 따라 분배되어 장부가액에 포함된다. 이외 영업권(goodwill)을 인수한 경우에도 특별한 장부가액 분배방식이 적용된다(Sec. 1060).

그러나 주식 등 동일한 자산을 각각 다른 날짜와 가격에 매입하고 난후 그 중 일부를 나중에 매각할 경우 장부가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어느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납세자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FIFO)에 따라 판매한 주식은 납세자가 가장 먼저 매입한 주식으로 간주된(Reg. Sec. 1.1012-1(c)(1)). 예외적으로 상호투자기금의 경우 이에 추가하여 평균비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Reg. Sec. 1.1012-1(e)).

한편 사업체를 일괄 인수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결정이 문제된다. 만약 판매자와 매입자가 서면으로 개별 사업자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분방식에 합의하거나 혹은 개별 자산의 공정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국세청이 배분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 판매 당사자들은 매각대금이 197조 무형자산과 기타 사업자산에 분배된 방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Form 8594). 이외 매입자는 매입비용에서 판매자로부터 받은 현금과 예금을 제외한 금액을 여타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에 비율적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다만 배분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성예금증서, 정부채권, 외환, 주식과 증권 등 개인자산 ②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 ③ 재고자산 등 일반적 상거래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는 자산 ④ 197조 자산, 영업권과 계속기업가치 이외 여타 자산 ⑤ 영업권과 계속기업가치 이외 197조 자산 ⑥ 영업권과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

납세자가 비과세되는 주식을 배당받을 경우²⁴²⁾ 원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존 주식과 제공된 주식 사이에 똑같이 분배되어야 한다(Sec. 307(a)). 만약 기존 주식과 동일한 주식을 받았다면 전체 주식의 합계에서 새로 받은 주식 수에 해당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이 분산, 조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은 기존 주식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시작한다. 한편 기존 주식과 다른 유형의 주식을 배당받으면 공정시장가격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이 분배되어야 한다.

비과세되는 주식매입권을²⁴³⁾ 배당받을 경우 주식매입권의 가치에 따라 원래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주식매입권과 기존 주식에 분할될 수도 있다(Sec. 307(b)(1)).

242) non-taxable stock dividend.

243) non-taxable stock right: 주식 매입권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특정가격(exercise price)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매입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으며 주식회사의 근로자나 주주에게 제공된다.

이 경우 주식매입권을 매각 혹은 처분할 때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주식매입권의 공정시장가격이 원래 보유한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주식매입권의 장부가액을 영(0)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원하거나 혹은 주식매입권의 시장가격이 주식가격의 15%를 초과하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식매입권과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장부가액은 주식매입권이 제공되는 시점의 주식매입권과 기존 주식의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분배된다²⁴⁴⁾. 만약 납세자가 주식매입권의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매입가격과 주식매입권의 장부가액을 포함한 금액이 된다²⁴⁵⁾. 주식 매입권을 매각할 때 보유기간은 기존 주식의 취득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권리가 행사된 주식의 보유기간은 권리의 행사, 즉 새로운 주식의 매입 시점이다(Sec. 1233(5)).

이에 비하면 과세되는 주식의 배당에서는 제공 당시 공정시장가격이 과세소득이 되고 보유기간도 제공 당시 시점으로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제공받은 주식의 장부가액도 공정가격이며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의 장부가액은 변함이 없다. 이외 과세되는 주식매입권이 배당될 때 적용되는 장부가액의 배분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2) 양도소득 과세방식

(a) 주식회사 이외 납세자

주식회사를 제외한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서 1040의 Schedule D에 양도소득을 신고한다.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에 따른 양도손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이 단기인지 아니면 장기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자가 자본자산을 1년 이하로 보유하면 손익은 단기손익이며 1년 이상 보유하였으면 손익은 장기손익에 해당한

244) 즉, 주식매입권의 장부가액은 $\text{기존주식 장부가액} \times \text{주식매입권의 시장가격} / (\text{주식매입권의 시장가격} + \text{기존 주식의 시장가격})$ 이며 조정된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은 $\text{기존주식 장부가액} \times \text{기존주식 시장가격} / (\text{주식매입권의 시장가격} + \text{기존 주식의 시장가격})$ 이 된다.

245) 만약 주식매입권이 행사되지 않고 매각 등 처분되지도 않으면 손실이 인정되지 않고 주식매입권의 장부가액도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이전된다.

다. 1921년 이후 장기보유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1986년 의회는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인하하여 28%의 장기보유 양도세율에 맞춘 적이 있으나 1991년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31%로 인상되면서 자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조항이 다시 살아났고 이에 따라 주식의 배당소득보다는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에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배당소득도 조정된 장기보유 양도소득(ANCG)과 마찬가지로 최대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① 양도소득(capital gains)

자본자산의 처분에 따라 손익이 실현 및 인정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 소득으로 간주된다. 1년 이하 보유한 자산의 처분으로 얻은 양도이익은 일반소득세 세율로 과세된다. 즉, 순양도소득은 5~35%의 여섯 가지 세율 중 하나를 적용받게 된다²⁴⁶⁾. 우대세율을 적용받는 순양도소득(NCG)²⁴⁷⁾은 장기 양도소득에서 단기 양도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Sec. 1222(11)). 이 가운데 대부분의 양도소득 즉, “조정된 순양도소득(ANCG)”은 납세자 일반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에 따라 5%와 15% 세율 중 한 가지를 적용받을 수 있다²⁴⁸⁾. 따라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해서 일반소득에 비하여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 수집품과 예술품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 일부에 대하여 최대 28% 그리고 내국세법 1250조에 따라 환수되지 않는 양도소득에는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 순양도소득 그리고 조정된 순양도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우선 단기 순양도소득(NSTCG)²⁴⁹⁾은 단기 총양도이익에서 단기 총양도손실을 제외한 금액으로 장기 순양도손실(NLTCL)²⁵⁰⁾과 상쇄될 수 있다. 장기 순

246) 납세자의 소득세 세율이 양도세율을 결정한다.

247) Net capital Gain.

248) 2001~2003년 5월 사이 조정된 순양도소득의 세율은 납세자의 일반소득세 세율이 15% 이하면 10% 그 이상은 20%를 적용받았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가 자산을 5년 이상 보유하면 8%의 우대세율이 적용되었다. 2011년부터는 양도세율이 다시 10%와 20%로 환원될 예정이다.

249) Net Short Term Capital Gain.

250) Net Long Term Capital Loss.

양도소득(NLTCG)은 장기 총양도이익에서 장기 총양도손실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은 장기 순양도소득이 단기 순양도손실(NSTCL)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한편 조정된 순양도소득(ANCG)²⁵¹⁾은 만약 납세자의 소득세 세율이 15% 미만이면 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으며 납세자 세율이 15% 이상이면 1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Sec. 1(h)).

〈표 1-9〉 양도(자본)소득세율

(단위: %)

일반소득세 한계세율		10	15	25	28	33	35
자본소득	1년 이하 보유	10	15	25	25	33	35
	1년 이상 보유	5	5	15	15	15	15

조정된 순양도소득은 장기보유 양도소득 가운데 일부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양도소득을 말한다. 즉, 1년 이상 보유한 자산 가운데 수집품(내국세법 408(m)조)과 일부 중소기업 주식(1202조) 그리고 미환수 상각자산(1250조 un-recaptured gain)²⁵²⁾을 제외한 여타 대부분의 자본자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5% 혹은 15%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비하면 수집품²⁵³⁾과 일부 중소기업 주식의 매매 등을 통하여 창출한 소득은 최대 28% 세율을 적용받는다. 반면 건물 등 상각자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에는 최대 25% 세율이 적용된다(Sec. 1(h)(4)).

중소기업 주식과 상각자산 매매에 따른 우대 규정은 양도소득에만 적용된다. 만약 중소기업 주식 매각으로 순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일반적인 장기보유 손실로 간주되며 상각자산 매각에 의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1993년 10월 이후 발행된 일부 중소기업 주식(QSBS)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매각하면 이익의 50%²⁵⁴⁾는 비과세

251) Adjusted Net Capital Gain.

252) 이는 내국세법 1250조의 상각자산이 1245조 자산으로 취급되었다면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었을 양도이익을 의미한다.

253) 1년 이상 보유한 수집품의 매매로 발생한 양도이익에서 양도손실을 제외한 금액에 최대 28%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Collectible gain). 대상이 되는 수집품은 예술품, 우표, 동전, 골동품과 양탄자 등이다.

되고 나머지 50%는 최대 28%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C 법인으로서는 80% 이상의 자산이 자격이 있는 사업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Sec. 1202).

대부분의 납세자는 전술한 바 15%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 가지 부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정된 순양도소득(ANCG)은 순양도소득(NCG)과 같다. 또한 이들 세 가지 부류의 자산 매각으로 양도이익을 창출해도 양도손실과 배당소득이 없으면 조정된 양도소득은 양도이익과 같다. 그러나 장단기 손실이 있을 경우 먼저 이를 같은 부류의 이익과 상쇄하고 초과 손실이 남으면 이를 다시 다른 부류의 이익과 공제하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한 이후 남은 초과손실은 먼저 세율이 가장 높은 28% 양도이익과 연계하여 공제하고 그 다음 25%, 15% 양도이익과 상쇄해야 한다²⁵⁵⁾.

② 양도손실(capital losses)

양도손실이 발생하려면 납세자가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²⁵⁶⁾. 양도이익과 마찬가지로 양도손실은 1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장단기로 분류된다. 단기 양도손실이 단기 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은 단기 순양도손실(NSTCL)로서 먼저 장기 순양도이익(NLTCG)과 상쇄되어 순양도소득(NCG)을 결정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손실이 장기 순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순양도이익을 상쇄하고 남은 초과 손실은 일반 납세자의 일반소득과 일대일로 최대 3,000달러까지 공제될 수

254) 다만 비과세가 허용되는 최대 이익은 \$10,000,000의 50%와 전체 주식의 장부가액 10배 중 큰 금액이 된다.

255) 한 예로 A가 다음과 같은 양도이익을 창출하였다고 가정하자. 단기 양도이익 \$20,000 이외 장기 보유한 미술품 \$10,000, 주식 \$30,000, 중소기업 주식(QSBS) \$40,000. 이 경우 단기 양도이익에는 A의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미술품과 중소기업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의 절반 \$20,000은 28% 세율을 적용받는다. 나머지 이익의 절반 \$20,000은 비과세된다. 한편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30,000)은 조정된 순양도소득(ANCG)으로 5%와 15% 세율 중 A의 소득세율이 15% 이상이면 후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A의 순양도소득은 \$60,000 (\$10,000+\$30,000+\$20,000)이다.

256) 일반적으로 거래로 발생하는 손실은 개인, 영업, 양도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본손실은 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제한적인 금액만이 공제가 허용된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발생하는 대로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상황에 따라 손실의 이후연도 이월과 이전연도 소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있다(Sec. 1211(b)). 만약 초과손실이 3,000달러보다 많으면 남은 손실은 연도 제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carry over) 단기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²⁵⁷⁾. 그러나 개인 납세자의 경우 손실을 이전 과세연도로 소급하여(carry back) 공제할 수 없다.

단기와 마찬가지로 장기 양도손실이 장기 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장기 순 양도손실(NLTCL)이 된다. 만약 단기 순양도이익(NSTCG)과 장기 순 양도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장기 순양도손실은 먼저 단기 순양도이익과 상쇄된다. 만약 장기 순양도 손실이 장기 순양도이익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3,000달러를 한도로 일반소득과 일대일로 상쇄된다. 만약 단기 순양도손실과 장기 순양도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단기 손실은 먼저 일반소득에서 공제된다²⁵⁸⁾. 한편 양도세율(28%, 25%, 15%)이 각기 다른 자산의 매각으로 장기 양도이익과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개별 부류에서 순양도이익(손실)을 먼저 결정한다. 이후 각 자산에서 단기 순양도손실 (NSTCL)과 장기 순양도이익(NLTCL)이 동시에 발생하면 손실은 28%, 25%, 15%(5%) 자산의 순양도이익과 차례로 상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주식회사

자본자산의 정의, 보유기간 그리고 양도손실의 처리방식은 개인 납세자와 주식회사 납세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한 15%, 25%, 28%의 우대 세율은 주식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일반소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에 따라 최대 35% 세율이 적용된다(Sec. 1201).

또한 개인 납세자는 3,000달러를 한도로 양도손실을 일반소득과 상쇄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양도손실을 양도이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그 대신 주식회사는 손실을 이전 3개년 동안 소급하거나 이후 5개년 동안 이월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이익에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Sec. 1212(a))²⁵⁹⁾. 소급할 경우 3개년 가운데 가장 빠른 연

257) 즉, 이월된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에 장기 양도이익과 상쇄되고 그래도 남은 금액은 일반소득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258) 한 예로 장단기 순양도손실이 각각 \$1,500과 \$2,000가 발생하면 먼저 일반소득의 \$2,000가 공제되고 장기 순양도손실 중 \$1,000가 다시 일반소득과 상쇄된다. 나머지 \$500은 다음 해로 이월된다.

도를 먼저 사용하여 법인세를 환급을 받아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된 손실은 단기손실로 취급된다. 이에 비하면 개인 납세자는 손실의 소급공제가 불가능하며 그 대신 이월은 연도의 제한 없이 허용된다.

3) 양도소득(손실)의 불인정(인정 유예)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크거나 적은 금액으로 납세자가 자산을 처분하면 이익 또는 손실이 실현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손실)이 실현되면 세법에 따라 이를 인정해야 하지만 일부 양도소득(손실)은 인정이 이연되거나 신고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예에는 유사자산의 교환에 따른 양도손익 인정 유예(1031조), 비자발적 자산 전환에 의한 양도소득 인정 이연(1033조) 그리고 자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 면세(121조)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세 과세를 면제받으려면 대개의 경우 납세자는 유사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 또한 자산의 교환에 있어서 현금이나 유사하지 않은 자산을 교환받을 경우 실현된 차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a) 자택의 매각

1997년 5월 이후 납세자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²⁶⁰⁾ 즉 자택을 매각 혹은 교환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부부의 경우 50만달러, 독신은 25만달러까지 면세된다(Sec. 121(b))²⁶¹⁾. 주택은 개인용 자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50만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은 일반소득이 아닌 양도차익으로 과세되며 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²⁶²⁾. 면세가

259) 이에 비하면 개인 납세자는 손실을 소급할 수 없으며 이월이 가능한데 다만 이월기한이 없다.

260) principal residence: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주택으로 사용 요건 이외 직장, 우편이나 청구서 주소, 선거 등록지, 가족의 거주지 등이 판정 요건이 될 수 있다(Reg. Sec. 1.121-1(b)(2)). 주거용 보트, 이동주택, 콘도 등도 자택에 포함된다.

261) 법개정 이전에는 주택 매매 후 2년 안에 조정된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차익 신고가 이연되었고 또한 55세 이상의 납세자는 평생 동안 12.5만달러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Taxpayer Relief Act of 1997).

262) 물론 1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Reg. Sec. 1.165-9(a)와 1.262-1(b)(4)

허용되는 자택은 처분 이전 5년 중에서 최소 2년²⁶³⁾은 납세자가 소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양쪽 배우자 중 한 쪽이 집을 소유하고 배우자 모두가 주택을 실제 사용하였고 어느 한 쪽도 지난 2년간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어야 한다²⁶⁴⁾. 이러한 규정으로 50만달러 이하 자택을 매매하는 부부의 경우 관련 자료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²⁶⁵⁾.

자택 매각에 다른 양도차익은 실현된 매각대금에서 주택의 조정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실현된 매각대금은 판매가격²⁶⁶⁾에서 판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후자는 자택 매각과 관련된 중개, 광고, 등록,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다. 조정된 장부가액은 구입이나 증여 등 자택의 취득형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택비용은 자택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비용으로 하며 유지보수비 이외 자택의 개축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포함한다. 증여 유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자의 장부가액이 납세자의 장부가액이 된다²⁶⁷⁾. 만약 납세자가 1997년 이전에 자택을 판매하고 이 때 발생한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었다면 이를 장부가액에서 삭감해야 한다. 즉, 그 당시 주택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금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 공제받은 손상손실이나 도난 등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그리고 주택 중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여 상각 공제받은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줄어든다.

263) 지난 5년 동안 2년간만 거주하였으면 매각 당시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2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개인별로 \$250,000까지 면세가 가능하므로 자택과 임대용 주택을 2년을 기간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면 각각에 대한 \$250,000 면세가 가능하다. 사망이나 이혼으로 주택을 양도받은 경우 배우자의 소유기간이 인정된다.

264) 1997년 이전에는 만약 납세자가 자택 매각 이후 2년 이내에 조정된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주택을 매입하면 과세가 이연되었다. 또한 55세 이상 납세자는 자택 매각에 따른 차익 중 \$125,000을 면세받았다. 1997년 의회는 이러한 과세이연조항(1034조)을 폐지하는 대신 면세범위를 \$250,000(부부 \$500,000)로 인상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125,000에 상당한 면세를 한번만 신청할 수 있었고 만약 한 배우자가 이를 이용하였다면 다른 배우자는 면세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는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여 2년 이내에 배우자가 면세를 받아도 다른 배우자가 \$250,000을 한도로 면세 신청이 가능하다.

265) 면세를 허용받기 위하여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면세되지 않는 자택의 매각이나 일부 과세되는 이익이 있으면 Schedule D에 따라 신고한다(Publication 523, Selling Your Home).

266) 납세자가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 어음, 여타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정시장가격 그리고 구입자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부채를 포함한다.

267) 만약 1977년 이전에 기증되고 증여자의 장부가액이 공정시장가격보다 낮으면 공정시장가격이 납세자의 장부가액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면세가 가능하지만 직장 변경, 건강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동²⁶⁸⁾이 있으면 2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차익의 일부가 면세될 수도 있다(safe harbor, Sec. 121(c)). 우선 자택 소유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자택을 처분해야 하면 소유와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을 730일(24개월)로 나눈 비율에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로 곱한 금액이 면세금액이 된다. 이외 이전 자택을 매각하고 난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직장 이전 등의 이유로 현재 주택을 매각해야 하면 다음의 기간 중 적은 기간을 730일(24개월)로 나눈 비율을 25만달러(부부 50만달러)로 곱한 금액이 면세금액이 된다. ① 매각 시점 이전 5년간 소유권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② 면세를 적용받았던 자택 매각 시점에서 현재 자택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기간.

마지막으로 주택의 수용이나 손상 등에 따른 비자발적 전환은 내국세법 1033조에 따라 그 이익이 이연된다. 그러나 내국세법 121조에 따라 자택의 절도, 압류, 수용, 징발로 인한 처분은 판매로 간주되며 다만 자산 전환에 따른 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부 합산의 경우 50만달러까지 과세 이연이 아닌 면세가 허용된다. 또한 자산의 비자발적 전환에서 지정한 기한 이내에 대체 자택을 취득하면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은 과세가 이연된다(Sec. 121(d)(5)(B))²⁶⁹⁾. 이외에도 만약 임대 혹은 사업용으로 주택이 전환되면 납세자는 감가상각을 위하여 주택의 장부가액을 산정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감가상각으로 인한 이익은 면제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이 면세된다²⁷⁰⁾.

268) 직장 이전은 납세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며 건강 또한 납세자와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란 천연 재해 등에 의한 자택 손상,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사망, 실업, 이혼과 자택유지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수가 줄어드는 직업 이전 등이 있다(Reg. Sec. 1.121-3T(e)). 결혼이나 자녀 입양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269) 그러나 손상손실 이외 자택의 비자발적 전환으로 인한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70) 한 예로 납세자가 \$100,000에 구입한 자택의 일부를 사무용으로만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10,000의 감가상각을 한 후 \$200,000에 주택을 매각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실현된 이익은 \$110,000(\$200,000-\$90,000)로 면세받을 수 있지만 \$10,000은 인정해야 한다.

(b) 유사자산의 교환(like kind exchange)

사업 혹은 투자에 있어서 생산적 사용을 위하여 보유한 자산을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고려 없이 유사한 자산과 교환하면 이 때 발생한 손익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Sec. 1031(a))²⁷¹⁾. 이를 위해서는 맞교환한 자산 둘 다 사업 혹은 투자용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이익의 불인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자산 교환으로 현금이나 유사하지 않은 자산이 추가 대금(boot)²⁷²⁾으로 지불되면 이 부분은 이익의 실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산의 교환이 발생해야 한다(Sec. 1031(a)). 따라서 납세자가 자산을 매각한 이후 유사자산을 구입하면 손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중개인에게 자산을 매각하고 같은 중개인으로부터 유사자산을 구입하는 상호 의존적인 거래(interdependent transaction)의 경우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의 필요에 충족하는 자산을 상대방이 구입하여 교환하도록 할 수도 있고 자산의 양도 이후 일정 시한 이내에 유사자산을 지정, 인수받으면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²⁷³⁾.

지급한 자산이 자본자산이거나 사업용 자산(1231조 자산)이면 취득한 자산의 보유기간은 지급한 자산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즉, 교환한 자산끼리는 보유기간이 이월된다²⁷⁴⁾. 그러나 추가로 보상받은 자산은 교환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은 비자발적인 자산의 대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Sec. 1033).

비과세되는 교환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산이 유사해야 하는데 재무성 규정에 의하면 유사자산은 자산의 품질이나 등급이 아닌 자산의 성격과 성질에 따라 정의된다²⁷⁵⁾.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자산이 유사하지 않아도 유사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과 개인자산과 같이 동일하지 않은 부류의 자산 교환은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볼

271) 개인용과 사업용이 혼재되어 있는 자산은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만이 과세 이연된다.

272) boot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현금과 유사하지 않은 자산을 의미한다.

273) 자산의 이전 이후 45일 이전에 인도받을 자산을 지정하고 자산 이전으로부터 180일 이전과 신고기한 중 빠른 날짜까지 지정된 자산을 인도받으면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인정된다(Sec. 1031(a)(3) (A), (B), Non-simultaneous exchange).

274) Sec. 1223(1)과 Reg. Sec. 1.1223-1(a).

275) Reg. Sec. 1.1031(a)-1(b).

수 없다²⁷⁶⁾.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 혹은 국내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개인 자산과 해외에서 사용되는 개인자산의 교환은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감가상각이 되는 유형 개인자산을 분류하여 유사자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²⁷⁷⁾. 한 예로 컴퓨터와 사무용품, 승용차와 버스 혹은 버스와 트럭은 자산분류가 다르므로 면세되는 유사자산의 교환이 아니다.

한편 무형 개인자산,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개인자산 그리고 투자용으로 보유한 개인자산에 대한 분류는 없다. 따라서 이들 자산의 경우 자산과 권리의 성격에 따라 유사자산 여부가 결정된다²⁷⁸⁾.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이 거의 동일해야 한다. 한 예로 투자용 금은괴의 교환, 외국 화폐의 교환, 파트너십 지분의 교환 그리고 성이 다른 가축의 교환은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볼 수 없다(Sec. 1031(e)). 채권과 증권의 교환은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1031(a)(2)). 즉, 주식, 채권과 어음에 대해서는 손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식회사의 일반 주식을 서로 교환하거나 우선주를 교환하는 행위는 일정 조건²⁷⁹⁾ 아래서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간주된다(Sec. 1036).

교환된 자산이 동일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교환된 유사자산 이외 현금이나 유사하지 않은 자산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 보상금(boot)은 과세대상이므로 신고하여야 한다. 물론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그러한 이익이 인정되며 실현된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Sec. 1031(b), (c)). 한 예로 장부가액이 50,000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현금 25,000달러와 35,000달러의 유사자산과 교환하면 현금수입은 25,000달러이지만 납세자는 실현된 이익에 해당하는 10,000달러만 신고하면 된다. 현금 이외 자산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보상금은 교환 당시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된다. 이외에도 만약 부채를 맡기거나 채권이 설정된 자산을

276) 토지와 토지에 거의 영구히 부착된 재산은 부동산으로 분류되며 부동산이나 고정상태가 아닌 자산은 모두 개인자산이다.

277) Rev. Proc. 87-56(1987-2 CB 674) 또한 만약 교환된 두 자산이 국세청이 분류하는 자산 체계에 속해 있지 않고 OMB의 복미상품분류에 따라 같은 상품군에 속하면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간주된다(Reg. Sec. 1.1031(a)-2(b)(3)).

278) 예컨대 문학작품과 음악 저작권의 교환은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볼 수 없다(Reg. Sec. 1.1031(a)-2(c)(1)).

279) 합병, 파산, 자본재구성(recapitalization), 주식회사 분할이나 취득의 경우에 해당한다.

교환하면 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 수령과 지급으로 간주된다.

교환받은 자산의 새로운 장부가액은 교환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정된 이익에서 추가 보상금(boot)과 인정된 손실을 제외한 금액이다(Sec. 1031(d)). 여기서 손실은 납세자가 장부가액이 공정시장가격보다 큰 추가 보상금을 이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²⁸⁰⁾. 또 다른 방법은 수령한 자산의 공정가격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익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손실을 더하면 장부가액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추가 보상금으로 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격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²⁸¹⁾. 이러한 장부가액 조정을 통하여 손익에 대한 과세는 이연이 된다.

그러나 만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자산의 교환이 이루지고 그 후 2년 이내에 어느 한 쪽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처분 시점에서 교환으로 발생한 자산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Sec. 1031(f)(2)). 이는 교환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교환된 자산의 장부가액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추후 매각을 통하여 이익을 관련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관련 당사자의 사망이나 비자발적 교환으로 인한 처분이면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c) 자산의 비자발적인 전환(Involuntary conversion)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산이 손상되거나 강제 수용²⁸²⁾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는 대체자산을 구입함으로써 이익의 실현을 이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실현된 이익보다 높은 가격의 자산을 일정 기간(대개 2년)²⁸³⁾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280) 한 예로 장부가액이 \$10,000인 자산을 현금 \$5,000과 공정가격이 \$20,000인 자산과 교환하면 실현된 이익은 \$15,000이며 추가 보상금인 현금 \$5,000은 실현된 이익보다 적으므로 이익으로 인정된다. 지급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장부가액 \$10,000+\$5,000-\$5,000=\$10,000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장부가액 \$40,000이었다면 납세자는 \$15,000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고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자산의 장부가액은 \$40,000-\$5,000=\$35,000이 된다. 추후 납세자가 자산을 \$25,000에 매각하면 \$15,000의 손실이 그 때 인정된다.

281) 그러나 양도한 자산이 개인자산이면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82) 자산의 수용(condemnation)은 공익적 목적으로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자산을 강제 몰수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283) 일반적으로 자산의 처분 이후 실현된 이익 중 일부를 신고해야 하는 연도로부터 2년 이내

(Sec. 1033(a))²⁸⁴⁾. 또한 대체하는 자산은 이전 자산과 사용 용도에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야 한다. 대체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입비용에서 이연된 이익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비자발적인 자산의 과세방식은 유사자산의 교환과 비슷하다. 다만 유사자산의 교환과 달리 납세자가 원하면 과세 이연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사업용이나 투자용 자산이 아니더라도 과세의 이연이 가능하다. 이외 자산의 비자발적 전환으로 발생한 손실은 이연되지 않는다.

과세의 이연을 위해서는 자산이 강제 혹은 비자발적으로 다른 자산이나 현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절도, 압류, 손상, 파괴, 징발을 포함하며 납세자의 동의 없이 정부가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자산의 수용이나 징발의 위협으로 인한 정부 이외 제3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혹은 전염병이나 가뭄으로 인한 가축의 처분도 포함한다(Sec. 1033(d)).

대체하는 자산은 이전 자산과 사용 용도에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체하는 자산은 사용 용도에 있어서 동일해야 하므로 유사자산의 교환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한 예로 사업용 건물과 토지의 교환은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간주되지만 여기서는 건물이 처분되면 대체자산도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용이나 투자용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대체자산은 유사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과세 이연이 허용된다²⁸⁵⁾. 한편 임대자산의 경우 납세자가 대체자산을 다시 임대하면 되며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실현된 이익은 자산의 전환에 따른 수입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산 전환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은 제외되며 보상금 지급이 늦어져 이자가 지급되면 이자는 실현된 이익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소득으로 과세된다. 실현된 이익에 대한 납세를 연기하려면 그 이상의 대체자산을 구입해야 한다. 반대로 구입비용이 실현된 이익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인정되어야 한다(Sec. 1033(a)(2)(A))²⁸⁶⁾. 한편 대체자산의

에 대체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기한은 3년이다(Sec. 1033(a)-2(B)).

284) 대체자산을 직접 구입해야 하지만 대체자산을 소유한 주식회사의 경영권(주식의 80% 이상)을 취득해도 된다(Sec. 1033(a)-2(A)).

285) 그러나 1994년 이후 대통령이 선포하는 재해의 경우 사업용이나 투자용 자산의 대체는 같은 용도의 유형자산이면 된다.

286) 즉, 화재로 손실된 점포의 장부가액이 \$100,000인 상황에서 보험금으로 \$150,000을 받았

장부가액은 구입비용에서 이연된 이익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대체된 자산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Sec. 1223(1)(A)).

한편 자산의 일부를 수용당한 상태에서 나머지 자산이 수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하락하여 추가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severance damage). 이 경우 피해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머지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제외해야 하며 만약 장부가액보다 큰 금액을 보상받으면 초과분은 이익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보상금을 나머지 자산의 가치 상승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

4) 사업용 자산(Sec. 1231 자산)의 과세

자본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용 혹은 거래용 자산 중 부동산과 감가상각되는 자산은 특별대우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혹은 거래용으로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매로 얻은 순이익(Sec. 1231 net gain)은 장기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순손실(Sec. 1231 net loss)은 일반 손실로 처리되어 양도손실처럼 손실의 공제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²⁸⁷⁾. 투자용 자산은 1231조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다만 수용이나 손상에 따른 손익이면 예외가 적용된다.

주식회사가 아닌 납세자는 1231조의 적용을 받아 5%, 15% 혹은 25%(부동산)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우대세율이 없기 때문에 1231조의 적용 여부와 상관없다. 다만 이월된 자본손실이 있을 경우 양도이익이 1231조 혹은 1245조의 적용을 받는가에 따라 자본손실과의 상쇄 여부가 결정된다.

다고 가정하자. 만약 납세자가 \$120,000의 점포를 새로 구입하면 실현된 이익을 모두 재투자하지 않았으므로 \$50,000 중에서 \$20,000은 과세 이연하고 \$30,000은 신고해야 한다.

287) Sec. 1231(c)(4)와 (a)(2): 1231조는 1942년 처음 도입되었다.

(a) Sec. 1231 자산

1231조 자산은 기계설비, 사업용 자동차, 토지 그리고 빌딩 등 1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부동산과 감가상각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목재, 석탄, 국산 철광, 가축, 추수하지 않은 작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전술한 대로 재고와 판매용 자산, 저작권, 예술품, 개인서류, 일반 판매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은 정부 출판물 등은 1231조 자산이 아니며 1년 이내로 보유한 사업용 자산도 마찬가지로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Sec. 1231(b)(1)).

납세자는 1년 이상 보유한 목재를 벌채하고 이를 목재의 판매 등으로 간주되어 1231조 자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목재를 투자용으로 보유하였는지, 일반 사업활동에서 판매용으로 보유하였는지 아니면 사업용으로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손익의 성격이 결정된다(Sec. 631(a)). 석탄과 국내 철광을 경제적 지분²⁸⁸⁾을 보유한 채 처분하면 이 또한 1231조 자산으로 간주된다²⁸⁹⁾. 견인, 번식, 낙농, 스포츠용 가축도 1년 이상 보유하면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말과 소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수하지 않은 작물을 토지와 함께 동일인에게 동시에 매각하면 1231조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다. 단 토지는 1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재구입 조건 등이 없어야 한다.

한편 사업용 자산의 비자발적인 전환으로 인한 손익도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이면 1231조 자산의 매각에 의한 손익으로 간주된다.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이익을 위하여 보유한 자본자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자산의 전환일지라도 수용이나 손상 등 성격에 따라 과세내용이 다르다. 즉, 수용의 경우 일반적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화재, 폭풍, 난파, 도난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자산을 불가피하게 전환할 때에는 인정된 손실이 인정된 이익보다 많으면 이들 손익은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인정된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야 1231조 자산으로 간주된다²⁹⁰⁾.

288) 경제적 지분이란 투자용으로 지분을 취득하고 채광을 통한 이익으로 원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말한다.

289) Sec. 631(c)와 1231(b)(2).

290) 손익의 인정(recognition)이란 자산의 장부가액과 보상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Section 1231(a)(4)(C)).

(b) 과세 및 산정방식

만약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1231조 자산의 거래에 따른 순이익이 발생하면(즉, 1231조 이익이 1231조 손실을 초과하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은 장기 양도손익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1231조 자산 거래로 순손실이 발생하면(즉, 1231조 손실이 1231조 이익을 초과하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은 일반손익(소득)으로 간주된다. 후자의 경우 따라서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만약 1231조 손실이 양도손실로 간주되었다면 양도소득을 제외한 일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3,00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손실로 간주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이와 같은 손실이 추후 1231조 양도차익을 장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즉, 이전 5개 연도 동안 1231조 순손실²⁹¹⁾을 경험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1231조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²⁹²⁾. 한 예로 2009년 1231조 자산 거래로 25,000달러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납세자가 만약 2004~2008년 사이에 30,000달러의 1231조 누계 손실을 신고하였다면 25,000달러는 일반소득으로 처리되어 과세된다. 또한 나머지 5,000달러는 환수되지 않은 1231조 손실로 남아 5년을 기한으로 추후 이익과 상계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자산으로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 1231조 자산은 일반적으로 납세자 소득세율에 따라 장기 양도소득(ANCG 즉, 조정된 순양도소득)²⁹³⁾과 마찬가지로 15%(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감가상각이 되는 부동산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1231조 이익으로 1250조에 따른 미환수 이익²⁹⁴⁾에 해당하는 이익은 전부 혹은 일부가 최대 25%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1231조 자산의 손익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우선 대금으로 지급받은

291) nonrecaptured net Sec. 1231 loss.

292) 이러한 규정은 납세자가 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손실과 이익실현 시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되었다.(5 year look back rule, Sec. 1231(c)(1)).

293) 전술한 대로 조정된 순양도소득(ANCG)은 최대 28% 세율이 적용되는 수집품 등과 최대 25% 세율이 적용되는 1250조상의 미환수 감가상각 자산을 제외한 자본자산의 양도소득을 말한다.

294) un-recaptured Sec. 1250 gain.

자산의 공정가격을 조정된 장부가액으로 차감하여 실현된 이익(혹은 손실)을 가장 먼저 결정한다. 이후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1245조나 1250조에 따라 매매 이익을 감가상각의 환수(recapture)로 간주하여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이후 1년 이상 소유한 1231조 자산과 개인용이 아닌 자본자산의 손상이나 절도로 인한 손익을 서로 비교하여 순손익을 결정한다. 만약 이익이 손실보다 많으면 순이익은 1231조 이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손실이 이익보다 많으면 손실과 이익은 일반손익으로 간주되어 1231조의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앞서 환산한 손상 혹은 절도로 인한 순이익과 1231조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에 따른 손익 그리고 1231조 자산(개인용이 아닌 자본자산 포함)의 수용에 따른 손익을 모두 합하여 순이익 혹은 순손실을 결정한다. 만약 순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은 일반소득과 손실로 간주되어 과세 혹은 공제된다. 반면 순이익이 발생하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은 장기 양도소득(LTCG)과 손실(LTCL)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물론 이익의 일부는 5년 환수규정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 즉, 지난 5년간 발생한 1231조 순손실의 합계액에서 그 동안 환수규정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신고한 손실을 제외한 미환수 금액을 1231조 순이익과 비교하여 순이익에서 미환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순이익은 장기 양도소득으로 신고한다.

(c)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depreciation recapture)²⁹⁵⁾

① Sec. 1245 자산

내국세법 1245조는 납세자가 감가상각 공제규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줄이고 그 이후 1231조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다시 양도소득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하여 1962년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245조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은 그동안 납세자가 공제받은 감가상각 금액²⁹⁶⁾의 한도 내에서 일반소득으

295) 환수란 감가상각 등의 공제가 없었다면 양도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처분이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 신고되어야 한다²⁹⁷⁾. 물론 실현된 매각(교환)이익이 감가상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1231조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손실이 실현되면 감가상각의 환수는 발생하지 않는다.

1245조 자산은 감가상각되는 자산을 말한다. 가장 일반적인 1245조 자산은 기계, 자동차, 가축, 철도설비와 단일 목적의 농업 및 원예구조물 등 감가상각되는 개인자산(개인용 자산이 아님)과 특허권 등 197조에 의한 상각이 적용되는 무형자산 등이 있다(Sec. 1245(a)(3)). 또한 에너지, 수도, 교통과 통신 등의 생산과 추출 등을 위한 부동산도 1245조 자산에 해당한다. 이외 내국세법 179조에 따라 경비 처리된 자산과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설비, 환경오염 설비로 조기 원가 회수가 허용되는 자산(169조) 등 감가상각에서 우대를 받는 자산도 포함된다²⁹⁸⁾.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1245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1981~1986년 사이에 사용하기 시작한 비거주용 부동산으로서 납세자가 가속상각(ACRS)을 사용하였으면 1245조의 대상이 된다²⁹⁹⁾.

② Sec. 1250조 자산

1964년에 도입된 1250조는 감가상각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교환)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다만 1250조는 1245조와 달리 전체 상각금액을 환수하지 않고 가속 감가상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공제를 환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1250조가 적용되는 초과공제(additional depreciation)는 실제로 조기 상각한 금

296) 감가상각 이외 비용 환수도 포함된다. 또한 감가상각방식과 관계없이 1245조 자산에 대하여 허용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감가상각금액에 대하여 1245조에 따른 환수규정이 적용된다.

297) 한 예로 A기업이 1245조 자산을 \$100,000에 매입한 이후 그 동안 \$60,000을 감가상각하여 장부가액이 \$40,000인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70,000에 매각하였다면 실현된 이익 \$30,000 (\$70,000-\$40,000)은 감가상각금액(\$60,000)보다 적기 때문에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매매 차익은 A기업이 다른 자산의 매각으로 양도손실을 입어도 서로 상쇄할 수 없다.

298) 169조, 179조, 185조, 188조, 190조, 193조, 194조 등에 따라 조기 상각이나 비용으로 우대받아 처리된 부동산의 처분 이익도 1245조에 따라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299) 정액법이 아니라 조기원가 회수제도(ACRS) 등 가속 상각법에 의하여 법정 비율로 경비가 환수되는 부동산을 말한다(Sec. 1245(a)(5)).

액에서 정액상각 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초과상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은 1250조상의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금액은 1231조상의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다만 상각 부동산의 경우 1231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로 2개의 다른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un-recaptured Sec. 1250 gain).

즉, 1997년 조세감면법에 따라 1998년부터 장기보유 양도소득의 최대 세율은 28%에서 20%로 인하되었지만 감가상각되는 부동산의 경우 최대 세율은 25%로 제한받았고 그 이후 양도세율이 15%로 추가 하락하였지만 부동산 세율은 25%에서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1250조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은 최대 3가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초과상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고 나머지 부분은 1231조의 장기보유 양도소득이지만 이 중 1250조가 초과상각이 아닌 모든 상각금액에 적용되었다면 일반소득세율이 적용되었을 매각이익에는 최대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나머지 매각이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최대 15%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³⁰⁰⁾.

1250조 자산은 1245조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감가상각 부동산을 포함한다(Sec. 1250(c)). 또한 토지와 1250조 자산의 임차권 등 무형 부동산도 포함한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부동산은 정액상각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1250조를 적용받지 않는다³⁰¹⁾. 이외 전술한 대로 1981~1986년 사이에 사용하기 시작한 비거주용 부동산으로서 납세자가 정액상각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1245조의 적용을 받는다.

요컨대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대체로 일반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혹은 자본자산의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소득세율보다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1231조에 따라 사업용 상각자산과 감가상각되지 않는 부동산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하면 1231조 자산 처분에 따른 순양도이익은 장기보유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만약 순양도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일반손실로서 공제가 허용된다(Sec.

300) 예를 들면 \$700,000에 매입한 건물을 \$900,000에 매각하였는데 그동안 가속상각된 금액은 \$300,000이며 만약 정액상각법을 사용하였다면 \$150,000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장부가액은 \$400,000이 되며 따라서 매각이익은 \$500,000이 된다. 이 경우 \$100,000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되며 나머지 \$400,000이 1231조 이익인데 이 중 \$150,000은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250,000에 대하여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301) 예외적으로 291(a)조에 따라 일부 주식회사 부동산은 정액방식을 적용받아도 상각비용의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

1231(c)(4)). 다만 직전 5년간 환수되지 않아 공제받은 1231조 순손실이 있으면 순양도 이익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처럼 1231조는 자본자산 이외 일부 자산에 대하여 우대조항을 두고 있는데 전술한 바 5년 환수규정과 감가상각 공제의 환수규정으로 그 혜택이 제한을 받고 있다.

즉, 1245조에 따르면 감가상각되는 개인 자산과 무형자산 등의 경우 공제받은 감가상각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각이익이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한편 감가상각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 1250조에 따라 정액법을 초과하여 상각공제받은 금액도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사용이 개시된 부동산에는 정액법에 따라 상각이 되므로 주식회사 이외 납세자에게는 1250조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997년 법 개정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15% 양도세율이 아닌 최대 25% 세율이 적용된다. 1245조와 1250조는 다른 세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세법에서 이익을 불인정하더라도 1245조에 예외조항으로 명기되지 않는 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³⁰²⁾.

③ 기타 환수규정

주식회사가 감가상각되는 1250조 부동산을 매각 혹은 처분하면 내국세법 291조에 따라 1250조상의 환수 이외 추가적인 환수규정이 적용되어 처분이익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일반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291조에서 환수되는 이익은 만약 주식회사 부동산이 1245조 자산이었다면 환수되었을 금액과 1250조에 따른 실제 환수금액의 차액 중 20%이다(Sec. 291(a)(1))³⁰³⁾.

이러한 예외조항 중에서 우선 증여의 경우 상각공제의 환수는 증여 당시 발생하지 않고 증여받은 납세자에게 전가되어 자산 처분 당시 이전에 증여자가 공제한 감가상각이 환수된다³⁰⁴⁾. 두 번째로, 유사자산을 교환할 경우 일반적으로 손익을 인정하지 않

302) Sec. 1245(d)와 1250(i).

303) 즉, 위의 예에서 납세자가 주식회사라면 \$100,000은 변함없이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고 나머지 이익 \$400,000 중 $0.2 \times (\$300,000 - \$100,000)$, \$40,000이 추가로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외 \$360,000은 1231조 이익으로 간주된다.

304) Sec. 1245(b)(1), 1250(d)(1).

지만 만약 교환 당시 유사하지 않은 자산(boot)을 같이 받으면 실현된 이익과 유사하지 않은 자산가치 중 적은 금액은 이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교환대상 자산이 1245조나 1250조 자산이면 환수규정의 대상이 되는 이익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세 번째로, 1245조나 1250조 자산을 기부하면 환수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이 제한이 될 수 있다(Sec. 1245(b)(4)). 구체적으로는 만약 자산이 기부되지 않고 공정가격으로 매각되었다면 환수규정에 의하여 일반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금액은 기부에 의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자산의 양도 당시 환수가 발생하지 않고 또한 장부가액도 고인의 사망 당시 공정시장가격이 되기 때문에 증여와 달리 상속에서는 환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Sec. 170(e)(1)).

네 번째로, 매각대금이 분할 지급되는 경우 원래 대금이 지급될 당시 이익이 인정되지만 이익의 환수는 판매연도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Sec. 453(i)). 즉, 실현된 양도이익 중에서 1245조나 1250조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이익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도 판매연도에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이익은 분할 신고한다. 이외 농업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토양이나 수질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도 공제되지만 만약 취득 후 9년의 보유기간 이전에 토지를 처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공제금액을 일반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Sec. 1252(a)). 마지막으로 관계인 사이에 상각자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매매 혹은 교환하여 얻은 이익은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Sec. 1239(a)).

5. 각종 공제제도

가. 비용(손실)공제: 조정된 총소득 사전 공제(deduction for AGI)

1) 비용(손실)공제의 기본원칙

(a) 기본개념

소득의 경우 전술한 대로 내국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도 면세소득을 제외하

면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비하면 경비와 손실의 경우 내국세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항목만이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법이 모든 공제항목을 열거할 수 없으므로 법에 특별히 명기된 비용과 손실항목 이외에는 공제 여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미국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거래(trade) 혹은 사업(business)과 관련이 있는 비용(Sec. 162)이거나 둘째, 소득의 창출(production of income)과 관련하여 개인이 지출한 비용(Sec. 212)이거나 마지막으로 내국세법에 따로 명기된 이자비용, 세금, 대손금과 개인적 용도로 개인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³⁰⁵⁾. 이 가운데 처음 두 가지 부류는 이윤을 추구하는 활동과 관련된 경비로서 세법이 정한 일반적 원칙에 부합하고 법에서 특별히 제외되지 않으면 사업/거래경비와 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는 공제가 허용된다. 한 예로 사업 경비는 주식회사, 파트너십이나 개인회사 등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항목이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개인의 경우 소득 창출이나 수금, 소득 창출에 사용되는 자산의 관리·유지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가 허용된다. 개인에 있어서는 사업 경비인가 아니면 소득 창출 경비인가에 따라 공제 유형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비 구분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경비와 소득 창출 경비 모두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ordinary, necessary and reasonable expense)³⁰⁶⁾. 반면 손실은 추가적인 조건 없이 공제가 허용된다(Sec. 165)³⁰⁷⁾. 한편 개인과 가족 경비나 생활비는 공제할 수 없다(Sec. 262). 다만 개인자산의 손실 등 특정 개인 경비 혹은 손실은 세법에서 일정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경비

305) 이들은 각각 거래 혹은 사업공제(trade or business deduction), 투자 또는 소득창출 공제(investment or production of income deduction) 그리고 개인 공제(personal deduction)로 지칭되기도 한다.

306) 국세청에 의하면 통상적 경비란 해당 산업에서 일반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하며 필요한 경비란 사업상 도움이 되고 적정한 경비를 의미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경비일 필요는 없다.

307) 다만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소득 창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이러한 수동적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소득으로부터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passive activity loss: 부동산 임대는 제외). 다른 소득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취득하지 않은 배당, 이자, 로열티 그리고 연금 등 포트폴리오 소득(portfolio income)을 포함한다.

중 이자, 세금, 의료비, 위자료나 퇴직연금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b) 조정된 총소득(AGI)과 공제

개인 납세자의 경우 앞서 제시된 세 가지 공제를 조정된 총소득(AGI, Adjusted Gross Income)을 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제(deduction for AGI)와 조정된 총소득을 결정하고 난 뒤 과세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정된 총소득에서 배제되는 공제(deduction from AGI)로 구분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자를 조정된 총소득 사전공제로 그리고 후자를 사후공제로 지칭한다. 사전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은 내국세법 62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들 항목을 제외한 다른 공제는 모두 사후공제에 해당한다. 사후공제는 항목별 공제의 합계액이 표준공제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실제 공제가 불가능한 반면 사전공제는 표준공제와 관계없이 조정된 총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소득 개념인 조정된 총소득(AGI)은 각종 항목의 공제 가능성을 결정하고 공제금액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 개인소득세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즉, 의료비와 잡비는 각각 조정된 총소득의 2%와 7.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다(개인자산의 손실은 10%). 또는 조정된 총소득의 50%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등 조정된 총소득이 공제가 가능한 금액의 기준이 된다. 이 밖에도 조정된 총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항목별 공제 합계액의 일부(2007년 2%)³⁰⁸⁾가 삭감될 수 있다(Sec. 68(f)).

308) 2008~2009년은 1%이며 2010년에 이 제도는 폐지된다.

〈표 I-10〉 조정된 총소득(AGI) 산정을 위한 공제항목

거래 및 사업용 경비	자영업세(1/2)와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¹⁾
고용주가 변제하는 피용자 사업경비 ²⁾	위자료
사업/투자자산 매매나 교환으로 인한 손실	이사비용
임대료 및 로열티 소득에 따른 비용	보충 실업보험금의 반납금(일부)
감가(모)상각: life tenant, income beneficiary	사용인에게 지급된 배심원 수당
이윤공유, 퇴직연금(Keoghs, IRAs) 납부금	환경 관련 비용(식목과 청정연료차 등)
정기예금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	교육 대출금 이자
일부 연금의 일시금	의료저축 납입금(Archer medical savings)

주: 1) Sec. 62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Sec. 164(f)와 162(l)에 의하여 사업용 비용으로 간주됨.

2) 고용주가 변제해주지 않는 피용자 사업경비(출장, 교통경비, 사무실용품, 특수의복, 조합비 등)는 항목별 공제로서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사후 공제됨.

조정된 총소득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공제 즉, 사전공제의 주요 항목은 〈표 I-10〉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보듯이 사전공제는 주로 사업 혹은 거래 관련 경비로서 이사비용, 위자료와 교육 대출금 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인경비는 사후공제에 해당한다. 임대료와 로열티 경비를 제외한 소득 창출 공제도 항목별 공제로서 사후공제에 속한다. 법에서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사업공제는 공제금액의 전부가 총소득에서 배제되어 조정된 총소득(AGI)이 된다. 손실은 개인 손상손실³⁰⁹⁾을 제외하면 사전공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사업과 소득 창출의 구분은 공제 유형과 그 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309) casualty loss for personal use property.

2) 비용공제 기준

(a) 사업·투자비용의 공제 기준

원칙적으로 거래나 사업상 납세자가 필요한 통상 경비를 지출하거나 소요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원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업 형태나 신고양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상의 경비란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납세자의 이윤추구행위 즉, 개인적 지출이 아닌 사업/거래활동과 관련 있고 ② 통상적이며(ordinary) ③ 필요하며(necessary) ④ 합리적 수준의 금액(reasonable in amount)으로 ⑤ 장부 기록을 적절하게 하고 ⑥ 제3자의 비용이 아닌 납세자 본인의 비용이어야 한다. 한편 모든 기준을 충족해도 다른 요건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비가 있다. 이들 항목에는 자본지출, 면세소득 관련 경비, 불법활동 경비와 법에서 금지한 경비가 있을 수 있다.

내국세법 162조에 따라 이윤추구행위와 관련된 모든 납세자의 사업비용과 손실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법 212조에 의하여 개인이 소득 창출이나 혹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도 공제된다(투자행위). 그러나 개인적 취미활동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Reg. Sec. 1.183-2(b)). 또한 개인 생활이나 가족을 위한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유흥비의 경우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사업용과 개인용 유흥비의 구분이 쉽지 않다(Sec. 274).

납세자의 행위가 사업상 이윤추구행위인지 아니면 개인 취미활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둘러싼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5년 연속된 기간에서 3년간 이윤을 창출하면 내국세법에서는 이를 사업행위로 간주한다(Sec. 183(d)). 만약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활동이 사업행위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개인적 취미활동에 따른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의 사후공제 즉, 그러한 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으로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도 조정된 총소득의 2%로 제한된다.

사업행위와 투자행위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른 경비가 다른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사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개인의 경우 사

업경비와 투자경비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다. 즉,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손실은 일반손실(1231조 손실)로 처리되는 반면 투자행위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양도손실로 따로 과세된다. 두 번째로, 사업행위와 관련된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 이전 공제인 반면 임대와 로열티 경비를 제외한 투자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 이후 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후공제가 적용되는 투자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의 2%를 넘는 금액만이 항목별로 공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용으로 매입한 유형 개인자산은 112,000달러를 공제받는다. 반면 투자용으로 매입한 자산은 수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업활동은 일반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며 납세자의 사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지만 사업적 노력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업이 아닌 투자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과세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업행위와 투자행위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은 사업행위를 상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대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활동일지라도 단기이익을 위하여 자주 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사업행위로 간주한다.

한편 사업경비일지라도 공제가 허용되려면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ordinary expense). 통상적 비용이란 금액이 합리적이며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나 자산과 합리적이고 근접한 관계((reasonable and proximate relationship)가 성립해야 한다. 이는 비용과 장래 소득 사이에 간접적인 연관 이상의 관계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해당 자산이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은 충분하지 않다.

대법원은 또한 해당 산업 혹은 사업계에서 관례적이고 평상적인 비용(customary and usual expense)으로 간주될 때 통상적 비용이라고 판정하였다³¹⁰⁾. 따라서 어떤 사업에서는 통상적인 경비일지라도 다른 사업에서는 아닐 수 있다. 이 밖에도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업활동에서 지출된 경비는 단 한 번만 지출하여도 통상적인 경비이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자본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지금 공제해야 하는 경비를 통상적 경비로 정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필요경비(necessary expense)만이 공제가 허용된다. 필요한 경비란 납세

310) Thomas H Welch v. Helvering, 12 AFTR 1456, 3 USTC ¶1164(USSC, 1933) and Pierre S. Dupont, 23 AFTR 808, 40-1 USTC ¶9161(USSC, 1940).

자 사업에서 적절하고 도움이 되는 경비(appropriate and helpful expense)라고 대법원은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기준에 합치되려면 반드시 필수적인 경비일 필요는 없으며 합리적이거나 신중한 사업자가 유사한 상황에서 똑같은 경비를 지출할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³¹¹⁾.

마지막으로 합리적 경비(reasonable expense)이어야 공제가 허용된다.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피용자인 주주에게 지불되는 보수가 너무 많으면 제공된 서비스에 따라 보수가 합리적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상장회사 사장 등에 대하여 커미션이나 실적에 연계된 보수가 아니면 연간 100만달러 이상의 보수에 대하여 공제를 금지하고 있다(Sec. 162(m)).

(b) 비용공제의 제한

이자비용을 감안할 때 투자자본의 감가상각보다는 공제가 더 우월하다. 하지만 자본지출 경비는 당해 과세연도에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대하거나 자산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혹은 자산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비를 말한다. 즉, 건물, 기계, 기구, 가구 등 내용연수가 1년을 상당히 초과하는 자산의 매입이나 생산에 따른 경비는 자본지출에 해당한다³¹²⁾. 또한 주된 사업의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한 영업권도 자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건물이나 기계 등의 자산 매입경비는 자본으로 처리되어 수년에 걸쳐서 감가상각되지만 토지, 주식, 지분 등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자산을 처분할 때 매입경비를 처리한다.

일부 항목의 경우 그 성격상 투자 자본에 가깝지만 당해연도에 공제되는 경비도 있다. 이러한 예에는 일부 광산개발비용, 연구실험비, 원유광구 개발비, 농부의 토양 및 수질보존비 등이 있다. 이외 전술한 대로 마지막으로 사업용으로 매입한 일부 유형 개인자산도 납세자가 원하면 매년 112,0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반대로 공제성 경비이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경비도 있다(Sec. 266). 재산세,

311) Thomas H Welch v. Helvering, 12 AFTR 1456, 3 USTC ¶1164(USSC, 1933).

312) 자산의 가치나 내용연수를 향상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는 상각하지 않고 공제한다.

주택담보이자, 개발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경비, 부동산 개발을 위해 지출한 이자비용, 고용세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그리고 동산의 운반과 장치를 위해 사용된 이자비용과 고용세가 이에 해당한다. 순영업손실이 많은 납세자나 장래에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을 납세자는 이들 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나중에 상각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면세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당연히 공제할 수 없다(Sec. 265). 한 예로 면세채권을 구입 혹은 보유하기 위해 차입한 채무의 이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면세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나중에 대금을 차입할 경우 차입금이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이자비용은 공제되지 않고 투자 용도로 지출되어도 그 일부가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즉, 면세채권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이자경비가 아니라도 공제를 제한받는다. 이외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채무의 이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윤 추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일지라도 대금 지급이 불법이거나 벌금 납부를 위한 것이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³¹³⁾. 공무원에 대한 불법 뇌물이나 중개료 등 불법대금 지급, 법 위반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벌금 그리고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2/3) 등이 이에 해당한다(Sec. 162).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은 해당 국가에서 뇌물이 정상적 사업활동의 일부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민간인에게 제공된 뇌물이나 중개료 지급도 연방법에 따라 형사 처벌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권리가 박탈되는 불법행위이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는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개료(kickback)란 고객이나 환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을 의미한다³¹⁴⁾.

정치적 기부금, 로비성 경비와 개업비용 즉, 사업개시비용(startup cost)은 사업경비 요건을 충족해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로비성 경비에는 법안뿐만 아니라 선거 등과 관련하여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출한 경비가 포함된다. 정당이나

313) 그러나 불법활동에서 지출된 여타 경비는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이면 소득신고시 공제가 허용된다. 여기서 예외는 마약거래에서 지출된 경비로서 공제되지 않는다(Sec. 280E).

314) 사업자가 구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중개료는 할인으로 불법이 아니며 공제가 아닌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한편 사회보장성 의료보험제도에서 발생하는 뇌물이나 중개료는 연방법의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Sec. 162(c)(3)).

정치가가 관련된 파티나 음악회 혹은 식사를 위한 입장권 구입과 로비활동을 하는 면 세기관에 지급된 기부금도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정치 차원에서 자신과 직접 관련된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회원인 단체를 위한 가입비나 이 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이 경우 세무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연간 2,000달러 이하로 납세자가 로비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는 정치기부금이나 로비성 경비는 공제가 가능하다(in house expenditure).

개업비용의 경우 납세자가 원하면 개업비용과 5,000달러³¹⁵⁾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Sec. 195). 이외 개업비는 그러나 자본으로 처리되어 180개월 간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개업비용은 사업을 하려는 결정에 앞서서 지출하는 조사비, 사업결정 후 영업을 하기 이전에 지출하는 개업비와 사업으로 전환될 투자행위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지출하는 개업비용에는 피용인 교육, 광고, 공급, 유통 그리고 고객 확보를 위한 비용이 있을 수 있다. 개업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관련이 없는 사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제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규정 이외에도 특정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약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납세자가 실제로는 투자자산을 줄이지 않으면서 가공의 손실을 생성하는 경우 공제가 제한된다(wash sales). 즉, 주식이나 채권의 매각으로 손실을 실현한 납세자가 매각 날짜로부터 30일 이전 혹은 이후가 되는 시점(61일) 사이에 매각한 투자자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³¹⁶⁾ 혹은 채권을 취득³¹⁷⁾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1091)³¹⁸⁾. 배우자나 납세자가 통제하는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취득해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주식 등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전부 혹은 그 일부를 단순히 매각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이면계약이나 배우자 등 관련자 이름으로 매입 혹은 매각하는

315) 단, 개업비용이 \$50,000을 초과하면 \$5,000에서 초과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316) 세법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 등(substantially identical stocks or securitie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 판정에 의하면 같은 회사가 발행하였어도 채무요건(이자율과 만기)이 다른 채권들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주식의 경우 일반주와 우선주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으로 보지 않는다.

317)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을 매입할 계약이나 옵션을 해도 wash sales로 간주된다. 그러나 상품선물계약이나 외환계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18) 주식 중개인이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실현한 손실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경우에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61일 기한을 초과하여 매입하는 주식 등도 매각 당시 재매입 계약을 하였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손실은 납세자가 매입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들 주식을 처분할 때 손실이 인정된다. 특히 새로 매입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처분한 주식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두 번째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transaction between related parties)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세법은 이들 거래내역의 공제를 규제하고 있다(Sec. 267).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손실과 과세연도 종료 당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한 예로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사업경비와 이자는 납세자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도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특수관계자가 이를 총소득에 포함할 때까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은 관련자간의 거래를 동일한 과세연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특수관계자는 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① 개인과 그 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자녀, 손 자녀, 부모, 조부모) ② 개인과 그 개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③ 개인(법인)이 지분 50% 이상 소유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④ 신탁기금 수증자, 시혜자, 피신탁자 혹은 신탁기금과 주식회사 ⑤ 기타 기금, 회사, 개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

납세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사 주식을 가족 사이에 분산, 보유하면 실질적(간주) 소유권(constructive ownership)이 적용되어 제3자가 소유한 주식도 납세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ec. 267). 또한 회사, 파트너십, 신탁기금이 소유한 주식을 비율적으로 당해 기관의 주주나 파트너에게 속한 주식으로 본다. 또한 파트너십의 파트너 A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 다른 파트너들이 소유한 그 회사의 주식도 A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주주나 파트너에게 귀속된 지분이 다른 납세자에게 다시 귀속되어 동일한 주식이 다수의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관계인 사이에 자산의 매매가 발생하면 판매자는 손실을 공제할 수 없고 매입자는

그러한 손실을 무시하고 매입가격을 장부가액으로 처리한다. 다만 추후 관계되는 매입자가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공제받지 못한 손실을 매각 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관계되는 매입자가 판매인이 공제받지 손실을 일부 혹은 전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매 차익이 손실보다 적거나 손해를 입고 매매하면 공제하지 못한 손실은 사용할 수 없다.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한 납세자는 현금주의를 채택한 특수관계인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할 때까지 미지급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미지급 경비에 대한 공제 금지에 앞서 정의한 특수관계인 이외 개인서비스 회사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피용자까지 포함한다(Sec. 267(a)(2)).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비나 손실은 공제할 수 없다. 취미활동과 투자행위의 구분이 어려울 때는 활동내역과 전문성, 투입 시간과 노력, 과거 실적, 납세자의 경제적 상황, 개인적 취향 등을 고려한다(Reg. Sec. 1.183-2(b)).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불분명할 경우 지난 5년 동안 3년간 이윤³¹⁹⁾을 창출하면 투자행위로 추정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려면 취미활동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투자행위로 간주되면 손실을 포함하여 모든 경비를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취미활동으로 간주되면 경비는 항목별 공제에서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가 허용되는 기타 경비로 취급될 뿐만 아니라 취미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된다(Sec. 183). 또한 손실은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물론 비록 취미활동에 사용된 경비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세나 일부 이자경비 등의 항목은 여전히 공제가 가능하다.

거주 자택 이외 다른 주택, 보트, 이동식 주택 등³²⁰⁾을 휴가기간 동안 개인용도³²¹⁾로 사용하고 이외 기간에는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임대경비의 공제가 일부 제한된다(vacation home rules, Sec. 280A). 납세자가 1년 중 14일 혹은 공정한 임대료로 임대한 기간의 10% 중에서 더 많은 날짜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개인용

319) 말의 번식, 교육이나 경마 관련 취미활동은 7년 중 2년간 이윤을 내면 된다.

320) 식사와 숙박이 가능한 거처는 모두 휴가용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

321) 개인용도란 납세자의 가족이나 형제자매 혹은 직계존속이 사용하거나 교환조건으로 제3자가 이용하거나 혹은 공정한 임대료를 물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족일지라도 적절한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면 개인용도가 아니다.

도로 사용하면 그러한 주택은 거주지가 간주되어 공제가 제한된다. 즉, 이 경우 주택 비용은 개인용과 임대용으로 구분되어 개인용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³²²⁾. 임대경비는 임대소득의 한도 내에서 공제되며 비용이 임대소득을 초과하면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허용된다. 그러나 임대손실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외 자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이용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택 경비를 사무실 비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소로 이용되거나 납세자가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고객을 만나는 장소로서 자택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다른 고정된 근무처가 없이 자택만을 활용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택 사무실이 마련된 이유가 고용주의 편의 때문이어야 공제가 허용된다.

(c) 공제 여부의 입증

납세자 자신의 경비나 손실이어야 공제가 허용되며 제3자를 위한 경비나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는 본인이나 제3자 둘 다 공제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부양자를 위한 의료비나 총소득의 제한으로 부양자로 간주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의료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Sec. 213).

공제나 손실의 존재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가끔 법원은 영수증 등 자료가 없어도 경비가 지출된 것이 확실하면 공제를 허용하는데 이 때 공제 금액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Cohan rule). 그러나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비도 있다. 즉, 여행과 접대비, 사업용 선물, 컴퓨터, 교통수단 등에 지출된 경비의 경우 적절한 기록이 있거나 납세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Sec. 274, 280F). 사실 확인에서 필요한 정보는 지출금액, 시간과 장소, 날짜, 사업목적과 사업관계 등이다.

322) 이 때 임대경비로 간주되는 비율은 임대기간을 사용기간으로 나눈 수치로서 해당 주택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비율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d) 회계방식과 공제시기

납세자는 장부기록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Sec. 446(a)).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 재무회계방식과 일치하지만 재고 처리를 위하여 후입선출법(LIFO)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세법은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술한 대로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경비가 실제로 지출될 때 공제된다. 수표나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아닌 지불 청구 당시 지출로 간주된다. 그러나 단순한 지불약속이나 어음(note) 제공은 현금주의에서는 지출로 간주되지 않고 대금이 지급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현행 과세연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효력이 있는 자산을 창출하는 자본지출이나 선급비용(prepaid expense)의 경우 당해연도에 공제를 하지 못할 수 있다. 즉, 현금주의를 채택한 납세자도 자본장비나 대량 물품 구입에 따른 경비, 사전 지급된 이자나 임대료를 발생주의 원칙 아래서 공제해야 할 수 있다. 다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료는 계약상 사전 지급이 명시되면 지금 공제할 수 있다.

사전 지급된 이자경비는 해당 부채의 상환기간에 걸쳐서 공제되어야 한다(Sec. 461(g)). 다만 이자비용을 제외하고 제공된 부채는 이자를 사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부채가 상환될 때 이자가 지불되는 것으로 처리된다. 또한 포인트 형식(point)으로 지급된 이자 중 예외적으로 거주주택의 매입이나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에 사전 지급된 이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당시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선급비용을 제외하면 현금주의 아래서는 지출 시점이 공제 시점이므로 납세자가 상황에 따라 공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출항목에서는 법이 이러한 탄력성이 제한하고 있다. 한 예로 소규모 사업자³²³⁾를 제외하면 재고를 유지하는 사업자는 발생주의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반 주식회사(C 법인)와 일반 주식회사가 파트너인 파트너십 그리고 조세피난처(tax shelter)는 현금주의를 이용해서는 안된다(Sec. 448). 다만 개인서비스 주식회사, 농장과 목재 사업자 그리고

323) 연평균 매출이 \$100만 이하인 사업자는 현금주의를 이용하고 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연평균 매출이 500만달러 이하인 사업자는 예외적으로 현금주의를 이용할 수 있다.

발생주의 회계(accrual method)에서는 현금 지급과 상관없이 비용이 발생, 확정될 때 공제한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지급의무가 확립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정확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all-events test; 거래발생 요건)³²⁴⁾. 따라서 보증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쌓아둔 적립금은 당장 공제할 수 없고 실제로 보증 서비스가 제공될 때 경비처리된다. 두 번째로, 경비가 공제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행위가 실제 발생하여야 한다(economic performance test: 거래행위 요건). 경제적 행위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Sec. 461(h)).

즉, 내국세법은 거래유형에 따라 경제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납세자에게 자산이나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된 시점, 납세자가 이를 사용한 시점 혹은 납세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점, 지급의무가 있으면 납세자가 대금을 지불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 두 가지 유형의 거래에 있어서 경비가 지급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자산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리라고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면 납세자가 서비스 등을 제공받거나 사용한 시점이 아닌 대금이 지급된 시점이 거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된다³²⁵⁾. 또한 납세자가 제3자에게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시점이 거래행위가 실현된 시점으로 간주된다³²⁶⁾.

이 밖에도 재발하는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거래발생 요건이 만족되고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경우 당해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recurring liability). 첫째, 과세연도의 종료 이후 8½개월 혹은 합리적 기간 이내에 실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재발되는 경비로서 매년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과 경비를 대조하는 관점에서 볼 때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경비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금액의 거래도 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예외규정은 위약이나 위법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

324) Reg. sec. 1.461-1(a)(2).

325) Reg. Sec. 1.461-4(d)(6)(ii).

326) Reg. Sec. 1.461-4(d)(4)(i).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3) 일반 사업경비 공제³²⁷⁾

전술한 대로 공제가 가능한 사업경비는 통상적이고 필요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즉시 공제되는 사업경비 중 물품판매비용은 생산 혹은 원자재 비용, 창고운반비용, 노동비용 그리고 제조 간접비를 포함한다³²⁸⁾. 그러나 사업경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를 위한 현금 지출 이외 노임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창업비용³²⁹⁾과 부동산, 기계설비, 자동차, 가구, 특허권, 독점 판매권 등 사업자산³³⁰⁾ 및 사업자산의 개량비용은 자본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을 환수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동산과 유형 개인자산을 생산(제조, 설치, 건설, 향상)하거나 재판매를 위해 취득³³¹⁾한 경우 생산(취득)에 소요된 직접 그리고 일부 간접비용³³²⁾을 자본경비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균일 자본화 규정, uniform capitalization rule). 이후 이들 자산을 사용 혹은 처분할 때 그 비용을 감가상각하거나 판매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한 예로 납세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저장창고 등 부동산 혹은 유형자산을 생산, 사용하면 건설기계의 임차비용은 해당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상각된다. 혹은 시설을 임대하여 도구를 생산 판매하면 시설 임차료는 도구의 생산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이들 자산을 생산하기 위한 간접비용이 20만달러 이하이거나 현금주의를 사용하면서 재고자산을 회계 처리하지 않는 납세자는 제외된다³³³⁾.

327) 사업경비 중 기부금 등 일부는 항목별 공제를 참조하기 바람.

328) *Business Expenses*, Publication 535, IRS, 2008.

329) 그러나 사업 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지출한 조사비용 등은 개인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330) 수명이 1년 이하인 저가의 도구 연장이나 기계설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부품 등은 각각 공제된다.

331) 이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천만달러 이하인 사업자가 재판매를 위해 개인자산을 취득하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32) 임대료, 이자, 세금, 저장, 매입, 재포장과 행정비용 등.

333) Reg. Sec. 1.123A-2(b)(3)(iv).

(a) 이자비용(Sec. 163)

이자란 금전의 사용이나 보류에 대한 보수를 말하며 금융수수료, 채무할인, 부채 개시료, 선급이자에 해당하는 포인트 등 금전의 사용을 위한 경비는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 이자 이외에도 자금 대출을 위하여 납세자는 평가수수료, 등록비, 은행이나 신용카드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들 항목은 사업경비가 아닌 이상 개인경비로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여부는 담보자산의 성격이 아닌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달려 있다³³⁴⁾. 사업이나 투자행위와 관련된 이자경비는 위장된 채무관계가 아닌 이상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사전공제가 허용되지만 개인용도의 자동차 할부나 신용카드 이자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이자비용 가운데 주택³³⁵⁾과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은 사후공제(항목별 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수동적 사업 혹은 투자활동³³⁶⁾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공제가 제한된다.

앞서 지적한 대로 납세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이자비용은 사전공제로서 사업소득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다³³⁷⁾. 그러나 개인, 상속기금, 기금 그리고 일부 주식회사의 경우 납세자가 사업이나 거래과정에서 이자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로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사전공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y)으로 간주되어 이로 인한 손실과 이자경비의 공제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수동적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은 다른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수동적 활동에 따른 이자경비는 이에 따른 소득과 손실을 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 이자비용의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334) Temp. Reg. Sec. 1.163-8T. 다만 주택자산 대출(Home equity loan)의 경우 사용처와 관계없다.

335) 주택을 임대하면 그 경비를 본인 사용과 임대용으로 구분하고 임대용 경비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Sec. 280A). 즉,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사업활동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336) 소유주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 혹은 투자행위로 부동산 임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337)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균일자본화규정이 적용되는 이자경비는 즉시 공제하지 않고 자본경비로 취급되어 감가상각된다.

〈표 1-11〉 이자비용의 공제 여부

이자경비 유형	공제규정
사업	전액 조정된 총소득 사전공제(deduction for AGI)
수동적 활동 ¹⁾	수동적 손실규모에 따라 제한
투자	투자소득의 한도 내에서 항목별 공제: 공제되지 못한 이자비용은 이월
개인경비	공제 불허
주택담보	주택과 또 다른 주택 한 채에 한정된 주택담보 취득(매입, 건설, 개조) \$1,000,000 한도의 취득 담보금액 내에서 항목별 공제 주택 순자산 담보대출(home equity loan) \$100,000(혹은 주택가격에서 취득가액 제외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공제
학자금 대출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2,500를 한도로 총소득 사전공제(deduction for AGI) ²⁾

주: 1) 납세자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투자에 가까운 사업활동.

2) 부부합산 소득이 \$110,000을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조정된 총소득에 비율적으로 감소.

자료: Prentice Hall(2008).

대출금을 은행에 잠시 보관할 경우 실제로 언제 이자비용을 지급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이자비용은 대출금을 인출할 때까지 투자비용으로 간주된다. 또한 대출금과 개인자금을 함께 같은 계좌에 보관하는 상황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자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용도에 따라 이자비용을 배당한다. 이 밖에도 부채 상환금이 대출금의 지출과 연계되는 순서는 개인비용, 투자비용과 수동적 경비(부동산 임대 제외), 임대 부동산에서의 수동적 경비 그리고 사업용 경비이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가 투자자산³³⁸⁾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금을 빌리고 이후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제한된다(investment interest). 다만 주택대출이자에는 이러한 규정에서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은 이자, 배당, 연금 혹은 로열티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일반 상거래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의미한다. 양도손익이 발생하는 자산도 투자자산에 해당한다.

338) 투자자산은 이자, 배당, 연부금과 로열티 등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수동적 활동과 연관된 이자소득은 제외된다(Sec. 469). 임대는 수동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이자비용이 따로 규제되며 면세채권의 구입에 사용된 이자도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소득세 세율보다 양도세 세율이 낮기 때문에 고소득 납세자가 자금 차입을 통한 투자와 이에 따른 이자 공제를 통하여 과세소득을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자대출금 이자에 대한 공제가 제한이 된다. 구체적으로 투자대출금 이자비용은 당해 과세연도 납세자의 순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Sec. 163(d)). 순투자소득은 투자소득에서 이자 외에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투자소득은 투자자산으로부터 얻은 총소득으로 배당, 이자, 연부금, 로열티, 단기 양도순익을 포함하며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배당소득과 장기 양도순익은 제외된다. 납세자가 원하면 배당과 장기 양도차익도 투자소득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15%가 아닌 일반소득세율로 과세된다.

이자경비를 제외한 투자비용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로서 투자소득의 창출이나 투자자산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어야 한다. 즉, 투자소득의 창출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에는 변호사비와 회계사비와 전문잡지 구독료도 포함된다³³⁹⁾. 그러나 투자자산의 매매를 위한 수수료는 투자경비로 간주되지 않고 자본지출로서 장부가액에 추가된다. 대부분의 투자경비는 항목별 공제에서 기타 경비로 분류되어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된다. 이 밖에도 액면 가격을 초과하는 채권을 구입하면 초과금액을 장부가액에 포함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다(Bond Premium Amortization). 이 경우 채권에서 지급되는 이자의 일부는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사업용이나 매각용으로 부동산과 유형자산³⁴⁰⁾을 생산(건설) 혹은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빌리고 이자비용을 지출하면 이를 생산된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상각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해당 자산을 사용 혹은 처분할 때 상각비용으로 공제된다. 해당 자산이 재고자산이면 이자비용은 물품판매비용으로 처리되어 공제된다.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회계방식에 따라 공제 시점이 결정된다.

339) 자산 매입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고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된다.

340) 수명이 20년 이상이거나 생산공정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유형 개인자산 혹은 생산공정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0,000 이상 제조비용이 소요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련자 사이의 이자비용은 회계방식과 관련 없이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신고할 때까지 이자비용의 공제를 이연해야 한다. 또한 현금주의 납세자가 선급이자를 지출하면 이는 지급 당시 공제할 수 없고 선급이자에 해당하는 대출기간 동안 상각되어야 한다(Sec. 461(g)).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자택 구입을 위한 선급이자(포인트)는 당장 공제된다. 면세 채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자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Sec. 265).

적정한 수준 이하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below market loan, Sec. 7872). 다만 이를 위해서는 부채가 증여성이나 상환성 부채로서 독립거래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적정 연방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의 지급이 요구되는 어음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 보류이자(forgone interest)에 상당한 금액³⁴¹⁾이 채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증여, 배당, 증자, 보수 혹은 다른 지급금으로 볼지 여부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채권자가 요청하면 상환해야 하는 부채(demand loan)의 경우 납세자가 보류이자에 상당한 금액을 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매년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사업용 이자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채권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대중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하거나 외국인으로부터의 대출, 혹은 비용인 재배치를 위한 대출은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목적으로 동일한 대부자로부터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차입자가 대출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으면 이자를 공제받지 못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금을 상환할 때 실질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할인어음(discount note)의 경우 현금주의 납세자는 어음 상환시 이자를 공제하며 발생주의 납세자는 대출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공제한다.

(b) 임차료

소유하지 않은 업무용 자산의 임차료는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소유권 혹은 지분

341) 연방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에서 실제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있거나 있을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그렇지 않다. 불합리한 임차료는 주로 납세자와 임대인이 특수관계에 있을 때인데 이 경우 제3자에게 동일한 임차료를 지급하였을 것이라면 합리적인 임차료로 간주된다. 사전 지급된 임차료는 실제로 임대자산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Sec. 162(a)(3)).

만약 임대인 대신 세금을 납부하면 이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임대계약을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면 계약 잔여기간 동안의 임차료는 상각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앞서 지적한 대로 사업자가 부동산이나 유형 개인자산을 사업자가 생산 혹은 건설하면 그 비용을 즉시 공제하지 않고 균일자본화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에 임차료를 포함하여 감가상각해야 할 수도 있다(uniform capitalization rule).

(c) 납부세금(Sec. 164)

납세자의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납부한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내국세법 164조는 공제가 허용되는 지방세와 외국정부 세금을 적시하고 있는데 벌금이나 가산금 또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 중에는 소득세³⁴²⁾, 부동산세 그리고 사업 혹은 투자를 하면서 지출한 세금이 공제된다.

공제가 허용되는 지방세는 소득세, 부동산세와 재산 그리고 사업활동이나 투자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이다. 소득세의 경우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은 사업경비로 공제하고 개인 사업자는 항목별 공제를 통하여 공제한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소득세를 사업경비로 공제할 수도 있다. 이외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가 허용되는 부동산세는 일반 공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균일하게 적용되는 세금이어야 한다. 즉, 특정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나 인지세 등 양도 관련 세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과세연도 중간에 매매된 부동산의 경우 판매자와 매입자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동산세를 공제

342) 물론 해외소득 비과세규정에 따라 미국 소득세가 면제되는 해외소득은 대상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러한 배분방식은 의무사항으로 실제로 누가 부동산세를 납부하는가와 관계없다. 만약 판매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가격과 매입자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인상되며 매입자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가격과 장부가액이 그만큼 하락한다. 개인용 부동산세는 사후공제인 항목별 공제이지만 사업이나 투자과정에서 지출한 부동산세는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사전공제에 해당한다.

세대생략세를 제외하면 연방정부 세금³⁴³⁾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사업활동이나 투자과정에서 납부한 관세와 소비세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경비로서 공제가 허용된다.(Sec. 162, 212). 고용주가 납부한 사회보장세와 실업세도 통상적인 경비로 공제될 수 있다. 이외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의 경우 50%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상속세, 증여세와 판매세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d) 보험료

사업용 혹은 전문직용으로 통상적이고 필요한 보험료는 공제가 허용된다. 이러한 보험에는 화재, 도난, 사고, 신용(대손금융), 책임, 과실, 노동사고, 자동차, 생명보험과 단체의료보험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가 수혜자인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264). 이는 보험으로 인한 손해가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외 균일자본화규정이 적용되는 보험은 자본비용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한다.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납세자도 보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실제 지급한 과세연도에 이를 공제한다.

(e) 지출시점 공제와 감가상각의 선택이 가능한 비용

납세자는 연구실험비, 광산개발 및 탐사비, 창업비, 환경정화비, 국내 유전과 지열

343) 그러나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의 경우 50%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천 착암비, 신문과 잡지 등의 보급비, 조립비, 장애물 제거비, 필름과 TV 생산비 등의 비용을 지출할 당시에 공제하거나 자본으로 처리하여 나중에 상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비용을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점진적으로 경비 처리한다. 부동산 개발을 위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개인자산 설치와 운반비도 이에 해당하는데 다만 균일자본화규정이 적용되는 비용은 그렇지 않다. 각종 기업과 기금은 탐사비용과 광산을 제외한 비용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은 이 두 가지 비용도 선택할 수 있다.

연구실험비는 일반적으로 자본경비이지만 납세자가 선택하면 즉각 공제할 수 있다. 외국광산 개발과 탐사비의 경우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자본경비로 취급하거나 10년간 공제해야 한다.

창업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경비로 처리해야 하지만 2004년 10월 이후 지출한 창업비용은 5,000달러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창업비용이 50,0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비율적으로 감소한다. 조립비도 마찬가지로 자본경비지만 10,0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사업자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비용은 자본경비이지만 부동산, 도로, 건축물, 전화, 화장실, 주차장, 문, 층계 등에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노인과 장애인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는 15,000달러를 한도로 공제가 허용되며 나머지 금액은 장부가액에 포함된다.

(f) 기타 비용

이외 공제가 가능한 기타 사업경비에는 광고, 대손금, 뇌물, 등록비, 인터넷 사용비, 변호사·회계사비가 있다. 납세자가 사업이나 소득 창출과 관련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지출한 광고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법안에 대한 영향력을 목적으로 하는 로비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Reg. Sec. 1.162-20). 어떤 단체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사업경비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기부금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C 법인은 일정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외 납세자는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항목별 공제를 이용해야 한다. 독점 영업권이나 상표권을 구입하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사용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다만 다음의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 해당 권리의 사용이나 처분을 조건으로 계약기간 동안 최소한 매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불

해야 한다.

자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 중 통상적인 유지비는 지출 시점에 공제가 되지만 자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보수비는 상각되어야 한다. 피용인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지원하는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계약 지연에 따른 사적인 벌금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위법사항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벌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에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공제된다. 이외 변호사비 등도 공제가 되지만 자본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법정경비는 자본경비로 취급해야 한다. 정치 지원금은 직접 지원금뿐만 아니라 정치적 식사모임의 입장비 등 간접적 지원금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4) 피용인 비용(employee expense)

사업경비로서 공제가 허용되는 피용인 보수는 합리적이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어야 한다. 유사한 사업체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이면 합리적이며 이는 계약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고려한다. 만약 주주인 피용자에게 과다한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금액은 실질적 이윤 지급(constructive distribution)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서비스를 담보로 사전 지급되는 임금은 현재 공제되지 않는다. 개인 사업자는 자신에게 지급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는데 다만 친척이나 미성년 자녀 등의 특수관계인(related party)³⁴⁴⁾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공제된다. 부가급부의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추면 종업원 연금, 보험, 교육지원, 건강 관련 경비는 공제된다.

피용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보너스 그리고 부가급부는 공제된다. 또한 상품이나 상금의 형태로 지급된 보수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전술한 대로 근로기간이나 안전 등 업적을 기준한 포상은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보너스, 교육지원금, 부가급부³⁴⁵⁾ 등도

344) 특수관계인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 element of self dealing through a set of related party(Sec. 267):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공제는 제한되는데 관련자는 ① 개인과 그 가족: 가족은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가족(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② 개인과 개인이 50%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③ 한 쪽이 양 조직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을 포함한다.

345) 사업주가 보험금의 수혜자인 생명보험 보험료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제가 가능하다. 이외 피용인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하는 선불금은 임금으로 간주되지만 이를 반환해야 하면 이는 채권으로 간주된다. 시장금리 이하로 대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이자 차액이 보수나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피용인은 교통, 출장³⁴⁶⁾, 이사, 접대비 혹은 교육훈련비 등 자신의 직업 혹은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한다. 이러한 피용자 비용은 내국세법 162조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만 비용 성격에 따라 다양한 규정과 제한이 적용된다³⁴⁷⁾. 우선 고용주가 변상해주는 비용의 경우 증빙이 가능한 비용(accountable plan)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있다. 즉, 피용자가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증명되지 않는 비용은 합리적 기간 이내에 고용주에게 반환하면 이는 공제가 허용된다(사전공제, Sec. 62(a)(2)). 만약 반환되지 않은 초과금액이 있으면 피용인은 이를 자신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증빙이 가능하지 않은 변상금은 임금에 포함되어 피용자 보수로 공제된다. 이 경우 변상금에 대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물론 고용주는 임금에 포함한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용자는 변상금을 항목별 공제에서 제비용으로 신고하고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변상하지 않는 비용은 사후공제로서 일부 다른 공제항목과 합하여 그 금액이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이처럼 공제금액이 제한되는 항목별 공제는 고용주가 변상하지만 증빙이 되지 않아 임금에 포함된 비용과 고용주가 변상하지 않는 피용자 비용³⁴⁸⁾ 이외 투자비용과 기타 항목별 공제가 있으며 이들 항목을 제비용(miscellaneous expense)으로 지칭하기도 한다(Sec. 67). 따라서 납세자는 이들 네 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이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

346) 아래에서 보듯이 출장비와 피용인이 사용한 자동차 비용의 경우 연방정부가 제공한 요율에 따라 공제된다. 우선 출장경비의 경우 연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최대 일일 출장비용(per diem)을 기준하거나 국내출장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246, 최저 \$145을 공제할 수 있다. 이외 자동차 비용기준은 마일당 48.5¢이다. 연방기준을 초과하는 경비는 증빙되지 않는 경비로 취급되어 피용자의 소득에 포함되며 이를 피용자는 항목별 공제할 수 있다.

347) 피용인 사업비용은 Form 2106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이사비용은 Form 3903을 사용한다.

348) 고용주가 변상하지 않는 고용자 비용 중에는 교통과 출장비 등 여기에 논의된 항목 이외 전문서적 구입비, 회원비, 작업도구, 소모품, 구직비용, 특수의학비 등이 있을 수 있다.

는 부분만 공제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 등 자산의 형태로 제공된 보수도 공제가 가능한데 공제금액은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 공정시장가격에서 피용인이 지불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된다. 피용인이 양도받은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할 때 공제가 가능한데 사업자는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자산처분에 따른 손익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의 경우 손익은 공정시장가격에서 양도 시점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이는 피용인뿐만 아니라 독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조건부 자산 양도(restricted property)에 있어서는 대개 양도 시점이 아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피용인에게 귀속될 때 공제가 허용된다(substantially vested).

(a) 교통과 출장비용

택시비, 승용차비, 항공료, 통행 및 주차비 등 교통비용은 숙박이 결부되지 않는 이동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출장비용과 다르다(Reg. Sec. 1.62-1(g)). 직장으로부터의 출퇴근 교통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고객과의 접촉 등을 위하여 납세자가 자택에서 직장이 아닌 일시적인 근무 장소로 이동하는 비용은 고용주가 보상하지 않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2개 이상 직업이 있는 납세자가 근무처를 오가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 내국세법 212조에 따른 임대소득이나 로열티 소득을 위하여 투자자가 지출한 교통비용은 사전공제에 해당하고 이외 투자 관련 교통비용은 사후공제에 해당한다. 이외 치료나 기부와 관련된 교통비용은 해당 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가 허용되는 승용차 비용은 자동차의 유류, 보수, 감가상각, 이자, 재산세와 보험비로서 전체 주행거리에서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거리를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실제 운행에 따른 경비를 공제하려면 자세한 장부기록이 필요한데 그 대신 기준경비인 1마일당 48.5센트를 사용해도 된다. 통행료와 주차비, 이자경비와 재산세는 기준경비에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용으로 2대 이상의 승용차를 동시에 사용하면 기준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경비에 따른 공제를 하던 납세자가 기준경비로 공제방식을 변경할 때에는 기준경비가 달라진다.

사업 혹은 고용과 관련된 활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³⁴⁹⁾ 자택에서 멀리 나와 일박 이

상을 지내면서 지출한 교통, 음식, 숙박비 등 합리적이고 필요한 경비는 출장비용으로 공제된다(Sec. 162(a)(2)). 출장의 주요 목적은 사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출장의 주된 목적이 개인적 용도인 경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출장 당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시간이 출장 목적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 목적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공제가 거부되지는 않는다. 가족이 동행하는 출장은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가족이 피용인이고 사업 목적의 출장(bona fide business purpose)인 경우에만 가족의 출장비도 공제가 허용된다.

외국 출장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회의나 세미나 출장 등의 경우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외국에서 회의가 열리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출장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혹은 출장 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이 25% 이내인 경우에만 해외출장 경비가 모두 공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사용한 시간에 따라 비용을 배분해야 한다(Reg. Sec. 1.274-4). 이 밖에도 크루즈 선박 등을 이용한 고액 수상여행의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행정부 공무원이 국내출장을 갈 때 지급되는 숙박비의 2배로 제한된다. 회의나 세미나 출장이 내국세법 212조에 따라 소득 창출을 위하여 투자자가 벌이는 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전술한 대로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장부의무의 간소화 등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는 실제 지출한 음식과 숙박비용 대신 국세청이 제공하는 표준경비(per diem allowance)를 공제할 수 있다. 표준경비³⁵⁰⁾는 외국을 포함한 출장지역에 따라 다르며 사업목적과 출장시간 및 장소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다만 표준경비를 사용하려면 소명이 가능한 출장이어야 하며 지출 금액도 합리적이어야 한다(accountable plan).

(b) 음식 및 접대비

사업용 음식 및 접대비는 사업상 일반적이고 필요한 경비로 간주되어 내국세법 162

349) 1년 이상 자택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출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년 이내 기간 동안 외출한 경우에도 개별 사례에 있어서 관련 사실과 정황을 기초로 국세청이 출장 여부를 결정한다.

350) 국내출장의 경우 지역에 따라 표준경비는 최대 \$246, 최저 \$145이다.

조나 212조에 따라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접대비 조항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회는 접대비에 관한 엄격한 제한규정과 장부기록을 요구하는 274조를 제정한 바 있다. 접대비는 납세자의 사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혹은 연속성이 있어야 공제가 허용된다(directly related to or associated with). 접대행위가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제한규정도 달라진다.

직접적인 연관성이란 사업상의 혜택이 기대되고 명백히 사업적인 환경에서 경비가 지출되어야 한다. 접대를 하는 동기가 사업용임을 접대받는 사람이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직접적 연관성이 충족된다. 사업적 환경이란 상당히 산만하지 않은 환경으로 운동경기, 극장이나 나이트클럽과 같은 장소에서의 접대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³⁵¹⁾. 다만 상당 수준의 사업적 논의가 있기 직전 혹은 직후의 접대는 연속성이 있는 접대로 간주되어 공제가 허용된다(Reg. Sec. 1.274-2(d)).

납세자가 접대비를 공제하려면 각각의 접대비에 대하여 시간, 장소, 금액, 참여자, 논의된 사업 등 적절하고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75달러 이상 지출한 경비는 영수증 등을 포함한 문서 자료와 함께 납세자가 회계장부나 경비문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사업용 식사와 접대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³⁵²⁾. 단, 접대비는 사치스럽지 않고 낭비적이지 않아야 한다³⁵³⁾. 다만 피용인에 대한 보수로 볼 수 있는 식사, 소품, 주로 피용인을 위한 사교모임 혹은 복지후생에 해당하는 간헐적인 소액의 식사비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제공된 견본이나 판촉제품은 전액 공제가 허용된다³⁵⁴⁾. 고용주가 변상하지 않는 접대비는 사후공제로서 제비용의 항목별 공

351) Reg. sec. 1.274-2(f)(2)(i)(b). 그러나 다음의 상황에서 피용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한 음식유흥비는 적극적인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50% 공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수혜자의 소득에 신고되는 비용 ② \$600 이상 지출하고 자료신고(Form 1099-MISC)하는 비용 ③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음식, 유흥, 상품, 설비 ④ 광고용 음식유흥비.

352) 1994년 이전에는 접대비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다(Sec. 274(n)).

353) 입장권의 경우 액면가액의 50%가 공제금액이 된다. 또한 스카이 박스 같은 경우 실제 매입가격이 아니라 사치스럽지 않은 좌석의 최고가격과 스카이 박스의 좌석수를 곱한 금액이 공제가 허용되는 최대금액이 된다.

354) 즉, 예외적으로 다음의 상황에서는 비용의 100%가 공제된다. ① 임금에 포함된 식비 ②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음식(de minimus) ③ 사업자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 ④ 사내 오락이나 사교활동에서 제공되는 음식 등.

제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주나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는 사전공제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접대비의 50%를 공제할 수 있고 피용인은 이를 소득에 포함하거나 비용공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요트, 운동, 낚시, 사냥이나 해변시설 등 접대·유흥 혹은 오락에 사용하는 시설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감가상각, 유지보수비 등의 경비는 접대비로 공제될 수 없다. 또한 사업, 사고, 운동, 점심, 항공사, 호텔 등의 클럽 회원경비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클럽 가입시 지불하는 가입비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자본경비이다. 다만 상업적 협회의 성격을 지닌 전문인 협회나 공익적 단체의 가입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용 선물의 경우 그 금액이 수령자 1인당 연간 25달러 이하이면 공제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Sec. 274(b)). 수령자는 이를 총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여러 선물은 합산되어야 하며 직계가족은 과세 목적상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또한 선물을 제공하는 부부도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선물 포장이나 송달비용 그리고 4달러 이하의 인쇄비용은 금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c) 교육비용

일반적으로 교육비용은 개인비용으로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교육비용은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³⁵⁵⁾이 부여되고 교육비용 중에서 고용 혹은 사업과 관련된 교육비용은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이므로 공제가 허용된다. 고용 혹은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유지 혹은 향상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교육비나 고용, 직급 혹은 보수의 유지를 위하여 고용주나 법이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용인이나 자영업자가 지출하는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고용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비나 새

355) 일반 교육비용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 납세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HOPE 및 평생교육 세액공제 ② 장학금의 소득 배제(Sec. 117) ③ 고용주의 교육비 지원금(Sec. 127) ④ 교육대출금 이자의 사전공제(Sec. 221) ⑤ 2004~2007년까지 최대 \$4,000의 고등 교육비용에 대한 사전공제(Sec. 222). 다만 고등교육비와 학자금 대출 이자비용은 소득에 따라 공제액이 제한(부부합산 소득 \$160,000 이상은 공제 불허) ⑥ 교육비 지출을 위한 투자와 투자소득에 관한 비과세(Sec. 529) ⑦ 최대 \$2,000 IRA 불입금에 대한 과세이연(Coverdell Education IRA).

로운 사업 가능성을 제공하는 교육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고용 상태에 있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교육비의 공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법원은 1년 이내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납세자에게 공제를 허용하기도 한다.

(d) 주택 내 사무실

피용인이나 자영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자기 주택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사무실로 활용할 때 일정 조건 아래서 공제가 허용된다(exclusive use on a regular basis). 특히 사무실이 주된 사업장소이거나 정상적인 사업행위에서 고객과의 회동 장소로 사용되거나 만약 사무실이 거주공간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납세자가 그 사무실을 사업과 관련하여 전부 혹은 일부 사용해야 한다(Sec. 280A(c)(1)). 또한 납세자가 아닌 고용주의 편의를 위하여 주택이 사무실로 이용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납세자가 주택을 사업관리업무의 목적으로 활용하면 이를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주택의 일부를 공제받는 납세자는 주로 자영업자이며 고용주가 업무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피용인도 공제가 허용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무실용 주택경비에 대하여 사전공제가 허용되며 피용인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하는 제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납세자가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사업활동으로부터 창출한 소득보다 많을 수 없으며 나머지 비용은 이월이 가능하다(Sec. 280A(c)(5)). 공제가 허용되는 비용은 사무실 유지에 소요되는 직접비용과 전체 주택비용 가운데 사무실이 차지하는 부분(건평 기준)을 비율적으로 산정한 주택대출이자, 재산세, 보험 및 유지관리비 등 간접비용이다.

(e) 이사비용

이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개인비용이다. 다만 고용 혹은 사업과 관련하여 피용인이나 자영업자가 지출한 이사비용은 제한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Sec. 217)³⁵⁶⁾.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이전 거주지와

새로운 직장 사이의 거리가 이전 직장과 거주지 사이의 거리보다 최소한 50마일 이상 더 멀어야 한다. 또한 이사 직후 최소한 39주를 새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이사 직후 2년간 78주 이상을 새 직장에서 일해야 한다. 이러한 시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이듬해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면 공제가 가능하고 그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은퇴하는 납세자가 상기 고용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비용은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공제에 해당한다(Sec. 62(a)). 이사비용은 직접 이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합리적인 금액이며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다. 즉, 주택 구입, 판매 혹은 탐색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적인 이사비용이 아니므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 거주지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개인용품과 가족의 이전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가족의 이전비용은 숙박비와 교통비로 구성되며 식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30일 이내의 개인용품 보관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

5) 이연 보수(deferred compensation)

피용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고용주가 나중에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연된 보수 가운데 연금이나 주식공유 플랜과 같은 법정 항목은 엄격한 자격조건을 갖추는 대신 세제상 특별대우를 받는다(qualified plan)³⁵⁷⁾. 한편 법에 명기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제상 우대를 받지는 못하지만 고임금의 임원 등에게 보수 지급을 늦추는 플랜도 있다(non-qualified plan). 이외 자영업자의 은퇴연금 플랜도 있다.

356) 고용주가 이사비용을 부담 혹은 변상하는 상황에서는 그 비용이 내국세법 132조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이사비용이라면 피용인이 이를 총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피용인이 이전연도에 이사비용을 공제하였거나 법 217조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이사비용이라면 이를 총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357) 세제상의 혜택은 연금 불입금에 대한 과세 이연 혹은 공제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이 있다.

(a) 법정 연금 및 이윤공유 플랜(qualified plan)³⁵⁸⁾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연금이나 이윤공유 플랜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피용자(종업원)에게 세제상 혜택이 있다. 특히 고용주가 피용자를 위해 납입한 금액은 즉각 공제가 허용되며 고용주와 피용인이 납입한 불입금과 연금에서 창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은퇴 후 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세 과세가 이연된다. 다만 사회보장세와 지방소득세는 이연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세제상 우대가 주어지는 플랜에는 연금³⁵⁹⁾, 이윤공유 플랜(Sec. 401(k) 포함)³⁶⁰⁾ 그리고 종업원 자사주 매입(ESOP) 등의 주식보너스 플랜³⁶¹⁾이 있다. 이들 플랜은 복잡한 요건과 규정을 충족해야 혜택이 부여되는데 우선 이들 플랜은 피용인을 위한 것으로 불입금과 그 혜택이 참여한 고용자의 보수와 균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고임금의 피용인³⁶²⁾에게 혜택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Sec. 401(a)). 또한 플랜 가입대상이 피용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야 한다. 일정 기간이나 고용기간이 지나면 고용주의 불입금에 대한 피용인의 권리가 상실되지 않고 확정되어야 한다(vesting requirement). 일반적으로 5년 이상 고용되면 고용주 불입금 전부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다(Sec. 411(a)(2)(A)).

358) Sec. 401~416.

359) 연금은 공식이나 보험방식(actuarial method)에 근거하여 연금에 일정 금액을 체계적으로 납부하고 사망, 신체불구, 치료 등 사고 발생시 일정한 보험성 금액을 지급하는 플랜을 말한다. 연금에는 확정불입 플랜과 확정지급 플랜이 있을 수 있다.

360) 이윤공유 플랜에서는 사전에 확정된 방식으로 고용주의 기여금이 피용인(종업원) 사이에 배분되고 혜택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가 매년 기여할 필요는 없지만 플랜이 영구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또한 종업원 사직 등으로 인한 계약 몰수금은 다른 참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소유권 귀속(vesting)에 대한 시한이 지난 후에는 은퇴 이전에 종업원에게 일시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Sec. 401(k) 플랜에서는 종업원이 현금을 소득의 형태로 지급받거나 혹은 이윤공유 플랜에 불입하는 대신 과세 이연의 혜택을 받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또한 연금과 마찬가지로 사고 발생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적 성격도 있다.

361) 고용주가 현금 혹은 주식의 형태로 기여한 자산으로 고용주의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주식을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플랜으로 요건은 이윤공유 플랜과 유사하다. 자사주 매입 플랜은 고용주와 피용인 둘 다 불입하여 주로 자사주를 매입하며 피용인을 위하여 사용된다.

362)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전 연도에 \$100,000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피용자를 말한다(Sec. 414(q)). 혹은 보수가 \$100,000 이상으로서 보수순위를 기준할 때 전체 피용자의 20%에 속하는 사람으로 고용주가 정의할 수 있다.

고용주가 이들 플랜에 불입하는 금액은 플랜 성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즉각 공제가 허용되며 투자소득은 비과세된다. 즉, 확정 불입금 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의 경우 고용주가 공제할 수 있는 기여금은 피용자 보수 100%와 45,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되며 확정 지급금 플랜의 경우 피용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연 180,000달러와 피용인의 보수가 가장 높은 3개 연도의 평균보수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어느 경우에도 고용주는 피용인 보수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Sec. 415(c)).

피용인이 불입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가 되는 연금 지급 당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한편 피용인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불입한 금액은 은퇴 후 지급 당시 면세되는 투자 자본금의 회수³⁶³⁾로 간주된다. 즉, 피용인이 은퇴를 한 이후 지급받는 연금에서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불입한 금액에 상당한 연금 지급금은 비과세되는데 다만 이러한 면세금액은 피용인이 불입한 금액으로 한정되며³⁶⁴⁾ 납세자 사망 등으로 환수되지 못한 불입금 사망 당시 항목별 공제가 허용된다.

(b) 세제상 혜택이 없는 보수이연 플랜(non-qualified plan)

회사 중역에게 인센티브로서 보조적인 은퇴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형태는 미래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그러나 재원이 적립되지 않고 철회할 수 없는 약속이거나 주식과 같은 자산의 양도로서 다만 지급받은 자산을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실질수입원칙(constructive receipt doctrine)에 따라 즉각 과세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재원적립, 인출 혹은 양도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소될 때 피용인이 소득을 인정하고 고용주도 공제를 할 수 있다.

보너스를 지급받는 운동선수나 회사 임원은 나중에 보너스를 신고하길 원할 수 있

363) Sec. 72상의 annuities.

364) 한 예로 64세의 납세자가 매월 \$1,000의 연금을 받고 세후소득으로 불입한 연금비용이 \$52,000인 경우 다음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우선 \$52,000을 Sec. 72상의 생존기간인 260개월로 나눈 금액 즉, \$200이 매월 면세 가능한 금액이다(연간 \$2,400). 따라서 연금 지급금 \$12,000에서 \$2,400을 제외한 \$9,600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 일반적으로 지급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는 계약인 경우 재원이 적립되지 않거나 양도어음으로 담보되지 않아야 이연이 가능하다³⁶⁵⁾. 다만 고용주가 기탁금(escrow account)을 설립하여 이연된 보수를 적립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보수를 실제 지급할 당시 피용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고용주도 공제를 받는다³⁶⁶⁾. 2005년 이후에는 적립되지 않은 이연 보수에 대한 요건이 강화되었다(Sec. 409(A)). 특히 이들 플랜에서 정한 시한, 사망, 혹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서비스의 종료 이전에 보수가 지급될 수 없으며 역외기금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만약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연된 보수에 대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핵심적인 회사임원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주식 등 자산을 조건부로 제공할 수 있다³⁶⁷⁾. 만약 자산의 처분이 허용되지 않고 소유권 박탈 위험이 실질적일 경우 내국세법 83조에 따라 자산의 제공 시점 이후로 소득 인정을 연기할 수 있다³⁶⁸⁾. 특히 박탈 위험이 사라지거나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시점에 납세자는 자산의 공정가격에 근거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고용주도 공제를 허용받는다. 그러나 납세자가 조건부 자산을 양도받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소득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다(Sec. 83(b)). 자산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러한 선택이 가능한데 다만 추후에 자산을 박탈당하면 이로 인한 손실을 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³⁶⁹⁾.

(c) 피용인 주식매입 옵션 플랜(employee stock option plan)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식 매입옵션 플랜에는 주식 처분 당시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

365) unfunded deferred compensation.

366) Reg. Sec. 1.451-2(a)).

367) restricted property plan: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미래 상황이나 수령자의 장래 서비스와 연계되어 상황에 따라 소유권이 박탈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한 예로 기업 수익이 증가하지 않거나 성공적인 주식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을 반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다(Sec. 83(c)).

368) 제공받은 주식 등 자산을 납세자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거나 상실 위험성이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은 여타 부여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소득으로 과세되고 소유권이 확보된 이후 이를 박탈당하면 일반 손실로 간주된다(substantially vested stock, Sec. 83(a)(1)).

369) 또한 일반소득으로 선언하면 번복할 수 없다. 선택 당시 주식가격이 장부가액으로 보유기간도 이때부터 시작된다.

소득으로 저율과세가 가능한 장려성 플랜(incentive stock option: ISO)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일반소득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서 고용주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일반 플랜(non-qualified plan)으로 나뉜다(Reg. Sec. 1.83-7(a)). 장려성 주식옵션은 일정 조건³⁷⁰⁾을 충족하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플랜을 말한다(Sec. 422A(d)). 즉, 피용인은 주식 매입권을 제공받은 시점으로부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 직전 3개월까지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매입권을 제공받고 난 이후 최소 2년 그리고 매입권을 행사하고 난 후 최소 1년간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이들 조건이 충족되면 납세자는 매입옵션을 제공받거나 이를 행사한 시점에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에 소득신고를 하며 특히 장기보유 양도차익에 대한 저율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주는 주식 매입권 제공에 따른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세제상 우대가 허용되지 않는 플랜으로 간주된다. 특히 세법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주식을 판매하면 매입 당시 할인금액(행사가격-매입(옵션)가격)³⁷¹⁾은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할인금액을 공제받는다. 주식매매가격에서 행사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세율이나 장기보유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 매매는 판매가격에서 매입가격을 제외한 장기 양도소득을 실현하여 저율과세된다. 이외에도 옵션가격이 매입권 제공 당시 해당 주식의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안 되는 등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Sec. 422a(c)(8)).

장려성 플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 주식매입 옵션 플랜은 옵션(매입권) 권리의 시장가격(FMV)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³⁷²⁾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따라 과세 시점

370) 옵션가격, 즉 주식 매입가격은 매입 옵션이 제공된 시점의 주식가격보다 저렴할 수 없고 플랜이 도입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매입권이 허용되어야 하며 피용인은 권리가 제공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주식 매입권은 납세자의 사망을 제외하면 양도될 수 없으며 주주가 장려성 주식옵션 플랜을 허가해야 한다. 매입 옵션이 제공되는 시점 직전에 10% 이상의 주식 투표권을 보유할 수 없고 1년에 총 \$100,000 이상의 주식 매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Sec. 422).

371) 행사가격이란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행사한 시점, 즉 주식을 매입한 당시 공정시장가격을 말하며 매입가격은 고용주가 허용한 실제 주식 매입가격을 말한다.

372) 옵션권리가 확립된 옵션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황을 말한다.

과 방식이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피용인 납세자는 매입 옵션을 제공받는 시점에 주식 가격(FMV)과 옵션가격(주식매입가격)의 차액을 일반소득으로 인정해야 하고 고용주는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³⁷³⁾. 따라서 매입권이 행사된 시점에 과세되지 않고 납세자는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손실을 신고한다. 한편 옵션가격을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매입옵션을 제공받은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에 주식가격과 옵션가격의 차액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주는 이를 공제받는다. 연후 납세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나 손실이 인정된다.

(d) 자영업자 은퇴연금

개인 사업자와 파트너를 포함한 자영업자는 피용인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은퇴 연금에 대한 특별규정을 적용받는다(Keogh plan)³⁷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의 연금도 법정 주식회사 연금 플랜(qualified plan)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자영업자가 Keogh plan에 가입할 경우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도 이 연금에 포함해야 한다. 확정 불입금 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의 경우 자영업 소득의 25%와 45,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Sec. 415(c)(1)). 여기서 자영업 소득이란 물론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으로 은퇴연금 불입금과 자영업자 세금의 50%를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³⁷⁵⁾. 자영업자가 자신과 피용인을 위하여 Keogh plan에 불입한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에서 사전 공제가 가능하다.

(e) 개인은퇴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개인은퇴연금은 원래 법정 은퇴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납세자가 은퇴를 위하여 저축을 할 때 세제상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74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1982년 저축 증대를 위하여 적용 대상을 모든 납세자로 확대하였으나 1986년 적용 대상이 다시 축

373) 따라서 주식의 장부가액은 옵션가격과 일반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374) H.R. 10 plan

375) 따라서 Keogh plan에 자금을 불입하기 이전 소득을 기준하면 최대 소득의 20%를 기여할 수 있다.

소된 바 있다. 현재 개인은퇴연금의 유형에는 전통적인 개인은퇴연금(IRAs), Roth 연금 그리고 Coverdell 교육저축연금³⁷⁶⁾ 세 종류가 있다.

전통적인 개인은퇴연금(IRAs)은 기여금 불입시 공제를 받고 은퇴하고 난 후 연금을 인출할 때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식과 반대로 세후소득을 불입하고 인출 당시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Sec. 219(b)(5)). 그러나 연금에서 창출된 소득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상관없이 인출 당시 과세된다. 납세자가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 불입금은 2007년 기준으로 4,000달러이다³⁷⁷⁾. 다만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주가 도입한 은퇴연금³⁷⁸⁾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자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83,0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부부합산 기준)³⁷⁹⁾. 조정된 총소득이 83,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조정된 총소득이 93,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공제금액이 비율적으로 감소한다. 연금 불입은 1인당 계좌 금액이므로 부부의 경우 공제가 허용되는 연금 불입금은 최대 8,000달러이다. 특히 고용주의 법정 연금에 포함되지 않은 배우자는 개인은퇴연금에 가입하여 별도로 4,000달러까지 기여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³⁸⁰⁾.

소득이 이러한 수준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도 은퇴연금에 최대 4,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³⁸¹⁾. 개인은퇴연금에서 창출되는 소득은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지연되는 혜택이 있으므로 공제받지 않아도 연금으로 저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은퇴연금의 지급금은 내국세법 72조에 의한 연부금 규정에 따라 과세된다. 또한 납세자가 70.5세에 도달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해 4월 1일까지 연금 지급이

376)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

377) 공제가 허용되는 최대금액은 2008년 \$5,000로 상향 조정되며 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50세 이상의 납세자는 \$1,000을 추가로 불입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catch up contribution).

378) 정부연금, 간이 은퇴연금, HR 10 plan 혹은 세금 기피적인 연부금(tax sheltered annuities)도 포함된다.

379) 독신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52,000 이하이어야 한다.

380) 이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156,000을 초과하면 소득이 \$166,000에 도달할 때까지 공제금액이 비율적으로 감소한다. 한 예로 조정된 총소득이 \$160,000이면 \$4,000의 40% (\$4,000/\$10,000)인 \$1,600이 공제되지 않는다. 조정된 총소득이 \$166,000을 초과하면 물론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381) 이를 초과하여 불입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6%의 벌금이 부과된다(sec. 4973(b)).

개시되어야 하며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하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Sec. 72(t)). 다만 사망, 신체장애 그리고 일부 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와 손자녀의 고등교육비용을 위한 조기 인출과 납세자가 처음 자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은퇴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Roth 개인은퇴연금(Roth IRA)은 세금을 납부한 소득을 불입하는 대신 연금 지급 당시 연금에서 창출된 소득을 포함한 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으로서 젊은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이다. 전통적인 개인은퇴연금과 Roth 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4,000달러로 제한된다. 조정된 총소득이 156,000~166,000달러에 이르는 부부의 경우 불입이 가능한 금액은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Roth 연금은 연금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고 납세자가 59.5세에 도달한 이후 지급되어야 한다³⁸²⁾. 조정된 총소득이 100,000달러³⁸³⁾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전통적인 연금을 금액 제한 없이 Roth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rollover).

Coverdell 교육저축연금(CESA)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교육비 지원으로 위하여 설립된 특수 연금으로 세후소득을 납입하고 그 대신 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동 연금은 수혜자가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2,000달러를 불입할 수 있으며 기초교육을 포함한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Sec. 530). 납세자와 수혜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교육비용은 등록금, 교과서, 숙식비용 등을 포함하며 교육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연금 지급은 수혜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이 190,000~220,000달러 사이에 있으면 교육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은 소득에 따라 비율적으로 감소한다.

(f) 의료저축 플랜(Health Savings Account)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과세로 저축할 수 있는 제도가 2003년 도입되었

382) 이외 납세자 사망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지급이나 처음 자택을 구입하기 위한 인출(\$10,000 한도)도 예외이다.

383) 2010년 이후에는 소득 제한 없이 연금의 전환이 가능하다.

다(Sec. 223). 보험공제가 큰 의료보험(HDHP)³⁸⁴⁾에 가입한 납세자가 의료저축에 불입하는 일정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의 사전공제로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한 저축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되는 의료비는 여타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 인출한 저축금을 의료비로 사용한 후 이를 공제받으면 안된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보험(HDHP)과 내국세법 223(c)(3)에서 허가한 의료와 치과보험 이외 다른 보험에 가입하면 안된다. 비과세되는 불입금은 가족보험의 경우 5,800달러이다(개인 2,900달러).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저축금은 과세될 뿐만 아니라 10% 벌금이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65세 이상이면 벌금이 면제된다.

(g) 간이 은퇴연금

세제상 우대를 받는 법정 연금과 이윤공유 플랜이 행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간단한 근로자 연금제도(Simplified Employee Pensions)를 도입할 수 있다(Sec. 408(k)). 이 제도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개인은퇴연금(IRAs)에 보수³⁸⁵⁾의 25%와 확정 지급금 연금 플랜의 제한금액 중 적은 금액(최대 45,000달러)을 불입하고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 개인은퇴연금 규정이 연금 지급금에 적용되며 자영업자도 Keogh plan 대신 간이은퇴연금을 설립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간이 은퇴연금제도(simple retirement plan)는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근로자를 위한 개인은퇴연금(IRAs)나 401(k)와 같은 법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500달러를 불입하는 대신 고용주도 이에 상응한 금액을 불입하는 제도를 말한다(Sec. 408(p)). 동 제도에서는 모든 기여금의 소유권이 완전히 귀속되어야 하며 다른 법정 연금제도와 달리 일정 비율의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되지 않는다.

384) Highly Deductible Health Plan: 개인의 경우 연간 보험공제가 \$1,100 이상이며 본인이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가 \$5,500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가족보험의 경우 이 금액은 각각 \$2,200과 \$11,000이다.

385) 기준이 되는 보수는 최대 \$225,000로 제한된다.

6)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과 감가상각

자본지출은 경비의 지출이 이루어진 연도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법정 사용연수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경비 처리하여 비용(혹은 장부가액)을 회수한다(Sec. 263). 즉, 사업용 혹은 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이나 투자를 위해 보유한 자산이 소모, 고갈 혹은 노후화 되면 이를 Form 4562를 작성하여 공제할 수 있다(Sec. 167(a)). 이를 통하여 납세자는 자본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가상각 공제는 자산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본지출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경비가 자산의 효율성을 향상하거나 수명을 연장하면 그러한 경비는 일반적으로 자본경비로 간주되어야 하며 자산의 유지를 위한 비용은 그렇지 않다. 자산의 비용 혹은 장부가액을 완전히 환수하면 감가상각이 종료된다.

상각이 가능하려면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하여 사용되며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되 내용연수가 확정적이어야 한다. 자산의 임차인은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감가상각을 할 수 없다. 또한 자산을 개인용도와 사업용도로 동시에 사용하면 사업용도로 이용된 부분만이 상각 대상이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도 1년 이내에 자산을 사용 및 처분하면 감가상각할 수 없고 또한 자산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설비는 사용기간 동안의 상각비용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자본화해야 한다(uniform capitalization rule).

자산의 장부가액은 비용과 세금, 설치 운반비, 결산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비용이란 현금과 부채, 서비스, 여타 자산 등의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가격은 장부가액에서 제외된다. 증여, 교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감가상각을 위한 장부가액(adjusted basis, 조정된 장부가액)은 실제로 상각한 금액과 상각이 허용된 금액 중 큰 금액만큼 감소해야 한다. 한편 자산을 보수하여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내용연수가 증가하면 보수비용은 자본경비로 처리하여 상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의 상각공제는 감가상각(depreciation), 무형자산의 상각공제는 감채상각(amortization) 그리고 천연자원의 공제는 감모상각(depletion)으로 불린다. 유형자산(tangible property)은 토지³⁸⁶⁾, 빌딩, 천연자원, 기계설비 등 물리적 실

체를 갖춘 자산이며 영업권, 특허권, 주식과 채권 등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은 무형 자산이다. 만약 이들 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할 경우 1060조에 따라 판매자와 매입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정서와 협상 증빙서류 등 서면으로 유형 상각자산과 상각되지 않는 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의 개별 구입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한편 유형자산은 부동산과 개인자산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토지와 토지에 부착된 빌딩 등 건축물을 말하며 후자는 기계, 가구, 자동차 등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인자산(personal property)은 개인용 자산(personal use property)과 다르다. 개인용 자산이란 자산의 유·무형이나 부동산 혹은 개인자산 등 그 성격과 관계 없이 납세자가 사업 혹은 투자용이 아니라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만약 개인용 자산이 사업 혹은 투자자산으로 전환되면 감가상각의 목적상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전환시점의 공정시장가격과 조정된 장부가액(구입비용) 중 적은 금액이 된다³⁸⁷⁾.

감가상각 방식은 자산의 사용³⁸⁸⁾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다르다. 1987년부터 사용이 개시된 자산은 내국세법 168조에 따라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³⁸⁹⁾이 적용되어야 하며 1981~1986년에 사용이 시작된 자산은 조기원가 회수제도(ACRS)이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조정된 조기원가회수제도에 의하여 감가상각된다³⁹⁰⁾. 1981년 이전의 자산에는 167조에 명기된 일반적 재무회계원칙을 따른 상각방식이 적용된다. 1981년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기원가 회수제도(ACRS)는 자산의 경제적 수명에 비하여 초기에 자본경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depreciation)보다는 비용회수방식(cost recovery)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러나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는 자산의 수명에 따라 상각을 하므로 일반적 감가상각에 가깝다.

특정 감가상각 방식과 관계없이 다음의 원칙이 감가상각에 적용된다. 우선 사업(거

386) 다만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387) 개인용 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을 상각 공제하려는 유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88) 여기서 사용 시점(placed in service)이란 해당 자산이 특정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389)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390) 무형자산은 일반적으로 정액법에 따라 상각된다. 납세자가 원하면 연도를 기준한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단위방식을 선택하여 상각할 수도 있다.

래)용 자산과 투자용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따라서 개인용으로 보유한 자산 상각은 금지된다. 두 번째로, 토지와 예술품 등 수명이 영구한 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³⁹¹⁾. 세 번째, 감가상각은 사용이 개시된 시점부터 허용되며 감가상각방식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국세청이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사용이 개시된 시점의 상각방식이 계속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산의 장부가액(basis)은 각 과세연도에 감가상각이 허용될 수 있는 금액(allowable depreciation)만큼 삭감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실제로 상각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각할 수 있는 금액³⁹²⁾만큼 줄어든다.

(a) 유형자산의 감가상각(depreciation)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사업 혹은 투자용 유형자산은 부동산과 기계설비, 컴퓨터, 가구 등 개인 자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수명이 영구하므로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술한 대로 감가상각 방식은 자산의 사용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다르다. 1986년 이후 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에서는 대상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감가상각 방식과 상각기간을 적용한다. 감가상각되는 장부가액은 자본비용에서 법이 허용한 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잔존가액(salvage-value)은 무시된다³⁹³⁾.

유형 개인자산의 경우 법이 정한 상각기간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6가지 부류의 자산으로 분류되어 조기원가 회수방식의 가속상각이 적용된다³⁹⁴⁾. 연도를 기준으로 상각

391) 토지, 주식, 파트너십 지분은 매각될 때까지 기다려서 비용을 회수한다.

392) 허용된 감가상각(allowed depreciation)은 납세자가 실제로 상각한 금액을 말하며 허용될 수 있는 감가상각(allowable depreciation)은 세법에 따라 가장 장기로 감가상각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393) 조기원가 회수제도에서는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시점을 실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과세연도의 중간시점으로 간주한다(mid-year convention). 따라서 취득 혹은 처분연도의 감가상각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외 일부 자산은 분기 중간시점을 사용하기도 하고 부동산은 월 중간시점이 기준이 된다. 특히 지난 3개월간 취득한 자산의 총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산의 40%를 초과하면 분기별 상각을 사용해야 한다(Sec. 168(d)(3)).

394) 10년 이하의 상각기간 자산은 200% 정률법(double declining balance), 10~20년 자산은 150% 정률법을 이용하여 비용을 환수한다. 이를 이용한 연도별 상각비율은 국세청이 표로

되지 않는 자산은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필름, 비디오 테이프 등은 조기원가 회수제도가 아닌 정액법³⁹⁵⁾이나 소득추계방식³⁹⁶⁾을 사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자가 기계설비 등을 과다 사용하여 법정 상각기간보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훨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연수가 아닌 기계 운영시간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Sec. 168(f)). 즉,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 대신 생산량 상각방식(unit of production method)을 이용할 수 있다.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가 적용되는 자산은 법이 정한 수명(asset life)에 따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는데 ① 법정 수명이 4년 이하로 분류되는 트랙터 부품과 소형 도구는 상각기간이 3년 ② 4~10년 사이의 자동차, 트럭, 컴퓨터, 연구실험품은 5년 ③ 10~16년 사이의 대부분 기계 및 사무실 가구, 말과 법에 따로 상각기간을 명세되지 않은 자산 7년 ④ 16~20년 사이의 선박, 원유, 식료품 기계설비는 10년 ⑤ 20~25년 사이의 광고판, 농장 등 토지 건조물, 유류 서비스 건축물은 15년 ⑥ 법정 수명이 25년 이상인 전기, 하수도 등 공공자산은 상각기간이 20년이다(Sec. 168(e)(1)). 이처럼 상각기간은 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에서는 <표 I-12>에서 보듯이 자산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일반상각방식과 한 가지 대체상각방식이 사용된다. 일반상각방식에서는 200% 정률법과 150% 정률법 그리고 정액법이 사용되며 대체상각방식에서도 정액법이 이용된다. 대체로 상각기간이 10년 이하인 자산은 200% 정률법, 상각기간이 그 이상인 자산과 농업자산은 150% 정률법 그리고 비거주용 부동산과 거주용 임대자산 등은 정액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조기에 비용 환수가 가능한 정률법 대신 정액법을 사용해도 된다. 마찬가지로 납세자가 원하면 200% 대신 150% 정률법을 이용할 수 있다.

서 제시하고 있다(MACRS depreciation table).

395) straight line method: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하고 내용연수로 나누면 감가상각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396) income forecast method: 비용에서 잔존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곱한 금액이 감가상각 금액이 되는데 그 비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자산 순소득을 자산의 사용이 개시된 연도 다음 10년간 기대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수치이다.

〈표 1-12〉 조기원가 회수제도에서의 자산유형에 따른 상각방식

상각방식	자산유형
200% 정률법	3, 5, 7, 10년 상각기간 자산(비농업)
150% 정률법	농업자산(부동산 제외) 15년, 20년 상각기간 자산 3, 5, 7, 10년 상각기간 자산(비농업)
일반상각 정액법	비거주용 부동산, 거주용 임대자산 과일나무, 수도공공시설, 일부 음식점 자산(2008년 이후 사용) 3, 5, 7, 10년, 15년, 20년 상각기간 자산(납세자가 선택 가능)
대체상각 정액법	해외에서 사용하는 자산 비사업용도가 50% 이상인 자산, 일부 음식점 자산(2008년 이후 사용) Sec. 168(g)(6)상의 수입자산, 면세자산 납세자가 선택하면 사용 가능

주: 일반적으로 조기에 상각이 많이 되는 정률법을 사용하더라도 정액법에서 더 많은 공제가 허용하면 정액법 사용 가능.

자료: *How to Depreciate Property*, Publication 946, IRS, 2008.

실제로 감가상각을 하려면 우선 납세자는 자산의 분류, 사용 개시연도, 장부가액, 상각기간과 상각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비율표를 참고하여 해당 비율을 구하고 이를 장부가액에 곱하면 감가상각 금액이 결정된다(MACRS percentage table). 물론 비율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상각방식을 가지고 금액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기존에 상각한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별 자산을 각각 따로 상각하기가 복잡하면 동일 연도에 사용이 개시된 자산을 함께 합쳐서 하나의 자산인 것처럼 감가상각할 수도 있다(General Asset Account).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유형 개인자산 등의 경우 그 비용을 상각하는 대신 납세자는 사용이 개시된 과세연도의 취득비용 일부를 즉각 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Sec. 179 자산). 유형 개인자산이란 부동산(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으로 기계설비, 냉장고, 사무용구 등 건축물 내부 자산, 가축, 휘발유 저장시설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입하지 않고 증여로 받은 사업용 자산, 투자용 자산, 임대자산(임대업 이외) 그리고 로열티 자산은 즉각 공제할 수 없다. 공제가 가능한 비용은 2003년 고용창출법으로

125,000달러(2007년)까지 허용되는데 이 금액은 물가에 연동되어 있다³⁹⁷⁾.

〈표 1-13〉 유형 개인자산의 조기원가 회수 비율

비용회수연도	상각기간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1	0.3333	0.2000	0.1429	0.1000	0.0500	0.03750
2	0.4445	0.3200	0.2449	0.1800	0.0950	0.07219
3	0.1481	0.1920	0.1749	0.1440	0.0855	0.06677
4	0.0741	0.1152	0.1249	0.1152	0.0770	0.06177
5		0.1152	0.0893	0.0922	0.0693	0.05713
6		0.0576	0.0892	0.0737	0.0623	0.05285
7			0.0893	0.0655	0.0590	0.04888
8			0.0446	0.0655	0.0590	0.04522
9				0.0656	0.0591	0.04462
10				0.0655	0.0590	0.04461
11				0.0328	0.0591	0.04462
12					0.0590	0.04461
13					0.0591	0.04462
14					0.0590	0.04461
15					0.0591	0.04462
16					0.0295	0.04461
17						0.04462
18						0.04461
19						0.04462
20						0.04461
21						0.02231

주: 200% 정률법(declining balance method)을 사용하였고 잔존가액은 없이 연중 시점을 서비스 이용개시 시점으로 가정함(mid-year convention).

자료: *How to Depreciate Property*, Publication 946, IRS, 2008.

397) 다만 179조 자산의 비용이 \$500,000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625,00 이상의 자산은 상각해야 한다. 또한 178조 공제는 사업 과세소득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득의 제한으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이월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자산을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50% 이하이면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 즉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recapture).

부동산은 즉각적인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용 자산, 증여, 상속 혹은 관계인으로 부터 취득한 자산도 마찬가지이다. 사업용으로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비용으로 공제한 금액은 소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 한편 450,000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1:1로 줄어들어 562,000달러 이상의 자산은 그 비용을 즉각 공제할 수 없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사업활동을 통한 과세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과세소득의 제한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Sec. 179(b)(3)).

부동산은 주거용 임대자산과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상각기간은 27.5년이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39년 그리고 철도와 터널은 50년의 상각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이들 부동산은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에 따라 상각되어야 하며 자산의 취득과 처분시점은 매월 중간 시점이 된다.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향상시키는 투자는 해당 부동산의 잔여 법정 상각연수가 아니라 상기한 바 상각기간에 걸쳐서 비용이 회수되어야 한다.

유형 개인자산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원하면 가속상각이 허용되는 조기원가 회수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정액법에 따라 상각을 해도 된다.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50% 이하인 자산, 해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자산, 면세자산 등은 위에서 논의된 일반 상각방식이 아니라 대체상각방식(ADS)에 따라 상각기간이 정해지는데 이들 자산의 상각기간은 조기원가 회수제도에 비하여 약간 더 긴 편³⁹⁸⁾이고 또한 정액법에 따라 상각해야 한다. 이들 자산이 아니더라도 납세자가 원하면 대체상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 결정하면 계속 이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이외 자동차, 컴퓨터, 이동전화, 접대나 레저용 자산의 경우 이들 자산을 50% 이상 사업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대체상각제도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Sec. 168(g))³⁹⁹⁾⁴⁰⁰⁾. 이와 반대로 50%

398) 대체상각제도에서 자동차와 컴퓨터 등의 상각기간은 동일한 5년이지만 사무실 가구와 분류되지 않는 자산은 10년(조기원가 회수제도 7년), 부동산의 상각기간은 40년(주거용 임대 부동산 27.5년, 기타 부동산 39년)이다.

399) 오락 혹은 유흥용 자산, 이동전화, 그리고 사치성 승용차(6,000파운드 이하 사륜 자동차)의 경우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각이 허용되지 않는다(listed property, Sec. 280F).

400) 피용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도 50% 규정 이외 고용조건으로 취득하였고 고용주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감가상각이 허용된다(Sec. 280F(d)(3)).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물론 조기원가 회수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b) 무형자산의 감가상각(amortization)

무형자산의 취득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액법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만 저작권과 특허권은 소득추계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주요 무형자산에는 영업권과 사업장부와 기술적 매뉴얼 그리고 고객정보, 계속기업가치(going concern value)⁴⁰¹⁾, 영업권(goodwill) 등 내국세법 197조 무형자산, 연구개발비(Sec. 174), 임대(lease), 창업비용(Sec. 195) 그리고 오염통제설비(Sec. 169) 등이 있다.

Sec. 197에 제시된 무형자산은 영업권⁴⁰²⁾, 정부기관이 허가한 등록 및 면허권, 특허권, 매매인 계약(covenant)⁴⁰³⁾, 상표권, 저작권, 일부 컴퓨터 소프트웨어⁴⁰⁴⁾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혹은 투자용 197조 자산은 취득 시점과 사업개시 시점 중 늦은 시점부터 15년간 상각한다. 반면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납세자 자신이 창출한 특허권과 저작권은 법정 연한에 따라 상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전자는 17년, 후자는 28년이 법정 연한이다(Reg. Sec. 1.167(a)-3). 197조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하면 1231조에 따라 양도이익은 장기보유 자본(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손실은 일반손실로 처리된다. 그러나 1245조에 따라 그동안 감가상각한 부분은 장기 양도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환수되어야 한다(Sec. 1245 gain)⁴⁰⁵⁾.

401) 197조 자산 이외 사업자산에 부착된 사업가치로서 소유권이 변동되어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영업권은 물론 명성 등에 따른 고객의 로열티 등을 말한다.

402) 어떤 자산을 구입하면서 영업권이 매각될 경우 영업권의 가치는 매입가격에서 자산의 시가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Sec. 1060).

403) 판매인이 구입자와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지역에서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을 말한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감가상각은 15년간 이루어져야 한다.

404) 일반대중이 구입할 수 있고 배타적인 면허 대상이 아닌 소프트웨어와 사업취득과 관련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197조 자산이 아니다.

405) 한 예로 \$30,000의 비용으로 구입한 영업권을 3년 후 \$40,000에 매각하면 그동안 상각한 비용 \$6,000($\$2,000 \times 3$)을 제외한 장부가액은 \$24,000이 되므로 \$16,000의 매각 이익이 인정된다. 이 중 \$6,000은 일반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금액 \$10,000이 장기보유 양도 소득으로 최대 15%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동시에 구입한 무형자산 중 일부를 매각하여 손실을 입으면 즉각 공제되지 않고 매각하지 않은 다른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이 손실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지출한 창업비용은 자본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창업비용이란 조사, 개업광고, 직원훈련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정리 혹은 처분하기 이전까지는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⁴⁰⁶⁾. 다만 2004년 10월 이후 지출한 창업비용과 조직비용은 각각 5,000달러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만약 창업비용이 50,0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비율적으로 감소한다. 이 밖의 창업비용은 15년(180개월) 동안 균등하게 감가상각할 수 있다. 조립비도 마찬가지로 10,000달러를 즉각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84개월 동안 자본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사업비용의 공제에서 납세자가 상각하거나 혹은 현재 비용으로 즉각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연구실험비는 일반적으로 자본경비이지만 납세자가 선택하면 즉각 공제할 수 있고 아니면 10년간 상각하거나 또는 무형자산으로 간주하여 60개월 동안 상각 처리할 수 있다. 이외 다른 자산의 경우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각기간은 다음과 같다. 오염통제설비, 국내 유전과 지열온천 착암비(60개월), 신문 잡지 보급비(3년), 광산탐사 개발비(10년).

(c) 천연자원의 감모상각(depletion)

천연자원의 소유주(지분 보유자)는 매장량의 감소를 반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외한 천연자원을 감모상각할 수 있다(Reg. Sec. 1.611-1(b)).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운영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과세상 대우가 다르다. 우선 광산 지분 구입비는 자본경비로 처리되어 감가상각할 때 비용이 회수되며 임금과 천공 등 개발비용은 자본 처리하거나 즉각 공제할 수 있다⁴⁰⁷⁾. 이에 비하면 기계설비나 파이프 등의 자산은 조기원가회수 방식에 따라 상각 처리되며 천연자원이 채굴된 이후 운영비용은 162조상의 일반 사업비용에 해당한다.

감모상각방식은 천연자원의 성격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자

만큼 각각의 시기에 따라 비율적으로 상향 조정된다(Sec. 174).

406) 물론 유형의 사업자산은 자산의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된다.

407) 다만 비용 감모상각을 사용할 때에는 개발비용이 장부가액에 포함되어 상각되지만 비율 감모상각시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후자를 이용하게 되면 개발비용은 자본경비로 처리하지 않고 즉시 경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비용상각(cost depletion)과 비율상각(percentage depletion)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매년 다른 상각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⁴⁰⁸⁾. 비용감모상각은 생산단위 감가상각방식과 유사하다(Sec. 612). 즉, 천연자원의 장부가액을 채굴 가능한 자원의 양으로 나누어 단위당 감모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판매량(채굴한 천연자원에서 채고는 제외)과 곱하여 감모상각비용을 산출한다. 물론 예상 채굴량이 바뀌면 단위당 감모비용을 재조정하여 추후에는 새로운 감모비용을 사용한다.

비율감모상각은 해당 과세연도에 창출한 자산의 총소득⁴⁰⁹⁾을 감모비율과 곱하여 결정된다. 다만 감모상각 금액은 상각 이전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원유와 천연가스는 100%, Sec. 613(a)). 감모비율은 천연자원마다 다른데 원유와 가스 그리고 금은동과 철광은 15%, 석탄 10%, 유황과 우라늄 22%, 자갈 5% 그리고 이외 광석은 14%이다.

일반적으로 비용상각에 비하여 비율상각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데 이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국익에 절대적인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상각방식과 관계없이 천연자원의 장부가액은 상각금액만큼 감소한다. 그러나 비율상각의 경우 비용상각과 달리 장부가액이 영(0)으로 줄어들어도 계속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각 받은 금액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을 수 있다⁴¹⁰⁾.

(d) 연구실험비용(R&E)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설비, 임금, 임대료와 소모품 등 연구실험비는 특허, 기술, 모형, 발명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상품 개발을 위한 실험 및 실습비로서 상품 개선, 특허 취득비용, 용역비, 연구실험 설비의 감가상각을 포함한다. 그러나 상품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비나 검사비, 광고와 판촉경비 그리고 제3자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Reg. Sec. 1.174-2(a)). 물론 이들 비용은 162조에 따라 사업비용

408) 예외적으로 대형유전 생산자(독립생산자와 로열티 보유자 제외)와 목재의 경우 비율감모상각을 사용할 수 없다.

409) 해당 자산의 임대료나 로열티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410) 즉,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모상각으로 세금우대조항이다(Sec. 57(a)(1)).

이나 195조에 따라 창업비용으로 공제될 수도 있다.

내국세법 174조에 따라 납세자는 연구실험비를 지출 혹은 발생한 연도에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아니면 연구개발로 인한 혜택이 처음 발생하는 연도에 6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상각하여 공제할 수 있다(Sec 174(a), (c))⁴¹¹⁾. 납세자는 연구개발비가 발생한 연도에 두 가지 방식 중 한 방식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감가상각 방식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연구개발비에는 실험설비나 건물 등의 상각자산 비용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들 자산비용 중에서 연구실험비를 자본지출로 간주하여 감가상각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상각비용은 연구실험비로 최소 60개월 이상 상각되며 그 이후 이들 자산비용은 해당 자산의 상각기간에 따라 조정된 조기원가 회수제도 등에 의하여 경비 처리된다.

납세자가 직접 개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연구실험비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공제하거나 60개월간 감가상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험단계가 아닌 소프트웨어의 개발비용은 사용이 시작된 연도부터 3년간 감가상각한다(Sec. 167(f)(1)). 한편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 같이 취득한 경우 조기원가 회수제도에 따라 5년간 상각되며 컴퓨터와 별도로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3년간 경비 처리된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의 자산과 함께 같이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무형자산에 대한 197조 조항에 따라 15년간 감가상각해야 한다. 이외 임대한 소프트웨어의 경비는 경비를 지출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7) 재지급금(repayment)

사업 혹은 이윤 창출행위에서 이전 연도에 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돌려줄 경우 이를 경비 혹은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⁴¹²⁾. 특히 지급금액이 3,000달러 이하이면 재지급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이를 경비 처리하고 그 이상이며 세액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면 납세자가 세액공제를 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대손금 공제와 고객 판매 이

411) 대개의 경우 즉각적인 경비 공제를 선호하지만 납세자가 사업 초기 손실을 입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될 때는 감가상각방식이 유리하다. 만약 연구실험이 실패하거나 포기하면 이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412)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Publication 525, IRS, 2008.

후 환불 등에 의한 공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를 할 때 납세자는 이전에 소득으로 신고한 양식에 따라 공제한다. 즉, 그 당시 이를 임금으로 신고하였으면 공제는 항목별 공제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면 이는 손실로 신고되며, 자영업 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면 이는 사업경비에 해당된다.

재지급 금액이 3,000달러를 초과하면 다음의 방식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을 환산하고 이를 일반공제하였을 때보다 금액이 많으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이전연도 소득에 재지급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산한 세금을 당시 실제 납부한 세금으로부터 공제하면 세액공제 금액이 나온다. 연후 이를 현행 연도에 일반 공제할 때 절약할 수 있는 세금 차액과 비교하여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나. 비용공제: 조정된 총소득 사후 공제(deduction from AGI)

전술한 대로 사업용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 그리고 일부 특정한 개인 경비가 총소득에서 공제된다. 개인적 비용의 공제는 법에서 허용된 경비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 밖에 일부 손실(Sec. 165)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된다(Sec. 262). 개인적공제는 위자료나 의료비처럼 비자발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또는 기부금처럼 특정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이외 지방정부 세금은 이중과세 문제로 공제가 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조정된 총소득(AGI) 산정을 위한 사전공제에는 위자료, 개인 은퇴연금(IRA), 이사비용, 교육용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저축예금 조기인출에 따른 벌금 등이 있고 총소득으로부터 제외되는 사후공제(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에는 기부금, 일반 이자비용, 손상손실, 지방세, 취미성 경비 등이 있다.

한편 소득 창출을 위한 공제는 소득 창출이나 소득 수금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하여 보유한 자산의 관리 유지나 보수 혹은 세금 납부 등과 관련된 항목이어야 한다(Sec. 212). 소득 창출용 경비는 사업용 경비가 아니지만 공제가 가능한 경비를 말하며 이는 투자경비를 포함한다. 투자경비는 투자 자문비나 사무실 임대비 등으로 연간 투자 관련비용 공제는 순투자소득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ec. 163(d)).

이들 경비는 사업경비와 마찬가지로 앞서 논의된 공제 가능한 조건이 똑같이 부과되어 합리적 수준의 필요한 일반경비 등이어야 한다. 소득 창출용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

을 위한 경비(사전 공제)로 간주되는 임대료와 로열티 비용을 제외하면 항목별 공제의 기타공제에 해당하여 공제금액이 조정된 총소득(AGI)의 2%로 제한된다(Sec. 62(a)(4)).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목별 공제의 합계액이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이를 조정된 총소득에서 공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표준공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AGI)의 금액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AGI floor). 표준공제는 소득과 관련 없이 개인 납세자의 기본경비를 감안하기 위한 혜택이다.

1) 표준공제

표준공제는 의회가 결정하는 공제금액으로 납세자의 신고신분, 나이, 맹인 여부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이 다르다. 표준공제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한 소득으로 생활비용을 감안한 소득배분의 형평성 제고와 납세 이행비용 및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은 주택 대출금의 이자비용과 재산세를 항목별로 공제받으면 이러한 혜택이 표준공제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을 위하여 표준공제가 제공된다.

표준공제는 물가상승률과 연동되는데 2008년의 경우 독신자는 5,450달러, 부부는 10,900달러 그리고 가장은 8,00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경우 납세자가 맹인이거나 65세 이상이면 1,050달러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맹인 노인은 총 2,100달러의 추가공제를 받는다. 만약 미혼자가 맹인이거나 노인이면 1,350달러를 추가공제를 받는다.

〈표 1-14〉 표준공제 금액과 노령자와 맹인을 위한 추가공제(2001~2008년)

(단위: 달러)

	표준공제			추가 표준공제		
	2001	2003	2008	2001	2003	2008
독신	4,550	4,750	5,450	1,100	1,150	1,350
부부합산(생존배우자)	7,600	7,950	10,900	900	950	1,050 ¹⁾
가장	6,650	7,000	8,000	1,100	1,150	1,350 ²⁾
부부별도	3,800	3,975	5,450	900	950	1,050

주: 1) 다른 납세자의 부양자로 신고된 사람의 표준공제액은 \$800로 제한.

2) 노령자임과 동시에 맹인이면 금액이 각각 \$2,100, \$2,700임.

일부 납세자의 경우 이러한 표준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Sec. 63(c)(6)). 이러한 부류의 납세자는 회계방식의 변경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사람과 부부 별도의 신고에서 다른 배우자가 상세공제를 하는 사람 그리고 비영주 외국인이다. 또한 다른 납세자에 의하여 부양자로 신고된 사람의 표준공제 금액은 부양자의 근로소득⁴¹³⁾과 350달러를 합한 금액(다만 표준공제액 이하)과 850달러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부모가 자식에게 이자나 배당소득을 이전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2) 항목별 공제⁴¹⁴⁾

(a) 주요 내용

공제가 허용되는 일부 개인비용에는 의료비나 지방정부에 납부한 세금, 주택대출금의 이자비용, 상해 및 절도손실 그리고 피고용인으로 지출하는 경비 등 개인적 비용(Sec. 211)이 있고 비사업용 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Sec. 263) 그리고 소득세 신고비용도 있다. 그러나 항목에 따라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고 또는 조정된 총소

413) 임금과 팁 등 노동을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장학금도 포함된다.

414) 상세공제라고도 불린다.

득(AGI)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공제가 한정될 수 있고 나아가 전체 공제금액이 소득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표 1-15〉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주요 경비

총소득 ¹⁾ 7.5% 이상의 의료비용(치과 포함)	기타 공제(총소득의 2% 이상)
지방정부와 외국정부 소득세와 재산세 ²⁾	피고용자 경비 -
지방정부 개인 부동산세	노동조합가입비, 출판, 여행
주택 대출금과 투자 이자비용(일정 한도)	교통, 특수의복, 거주지 사무, 교육,
자선기부금(일정 한도)	직업탐색, 협회가입비, 접대비의 $\frac{1}{2}$
손상 및 도난손실(총소득의 10% 이상)	투자소득 경비 -
기타 공제:	회계·법률 자문, 금고임대료 등
피상속인 소득에 귀속되는 연방 유산세	세금 자문 및 세금신고비용
도박으로 인한 손실(이긴 금액의 한도)	
채권 프리미엄의 감가상각	
권리소송에 의하여 돌려받은 보상금	

주: 1) 여기서 총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을 의미.

2)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일반 공제와 세액 공제 중에 납세자가 선택을 할 수 있음.

즉, 조정된 총소득이 156,4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 부부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주택대출 등 개인 이자비용⁴¹⁵⁾, 기부금 그리고 기타 공제의 합계액 중 일정 금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비(7.5%), 손상손실(10%) 그리고 대부분의 기타 공제(2%)는 총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해야 초과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들 항목의 경우 합계금액에서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부합산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156,400달러(별도신고 78,2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2%(2008년 1%)가 공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Sec. 68)⁴¹⁶⁾. 다만 공제를 제한받지 않는 의

415) 예외적으로 이자비용 중 투자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지출한 이자비용은 총소득과 관련한 공제의 한도가 없지만 투자소득의 한도 내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투자소득보다 많은 초과 이자는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된다.

416) 2006년에는 그 비율이 3%였고 2009년에는 이러한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료비, 투자이자비용, 상해 및 도박손실을 제외한 여타 공제항목 합계액 80%의 3분의 2가 공제를 할 수 없는 최대 금액이 된다.

한 예로 기부금과 세금 등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의 합계액이 30,000달러라면 16,000달러($0.8 \times 30,000 \text{달러} \times 2/3$)가 공제되지 않는 최대 금액이 된다. 만약 조정된 총소득이 356,400달러라면 200,000달러($356,400 - 156,400 \text{달러}$)의 2%인 4,000달러를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26,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된 총소득이 2,156,400달러라면 2,000,000달러의 2%인 40,000달러가 아니라 16,000달러를 공제금액에서 제외하고 14,000달러를 실제로 공제한다.

(b) 주요 항목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는 주요 경비에는 의료비, 지방정부나 외국정부 납세액, 이자비용, 자선단체 기부금, 손상 및 도난손실, 기타 공제 등이 있다. 이외 고용주가 변상하여 주지 않은 피용인의 사업비용, 투자비용, 소득신고와 관련된 비용이 공제된다. 이들 경비 중 일부는 사업이나 투자에 의한 경비로서 항목별 공제가 아닌 사후공제가 허용되며 또한 학자금 대출이자 등은 개인경비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사후공제되기도 한다.

① 의료비(Sec. 213)

의료비(치과비)는 개인경비이지만 사후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의료보험에서 변제되지 않아 개인이 지불한 의료비 중 조정된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다(Sec. 213). 납세자가 선택한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의료비는 경비가 소요된 연도에 공제되어야 한다. 만약 의료비를 미리 지급하면 선급금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치료가 수행된 연도에 공제한다. 또한 추후 보험회사나 법원 판결로 의료비가 변제되면 공제하였던 변제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제되는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병의 예방, 치료, 검진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신체 기능 혹은 구조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이며

야 한다. 납세자가 불입한 의료보험료, 검진비, 치료비, 처방약비, 의료보험료, 안경, 장기요양비, 교통비 등 기타 다양한 항목이 이러한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신체검사나 치아검사와 같은 일상적인 비용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금연이나 체중 감량 등 일반적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외 의사가 권하여 시작한 댄스 교습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병이 없어도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물리치료, 안경, 청력 도구 등은 공제가 허용된다. 성형수술비나 의사의 처방이 없는 약품 혹은 건강식품도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치료를 위하여 지출한 교통비도 20센트/마일에 해당하는 표준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통행료나 주차비도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면허가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가는 과정에서 지출한 식비의 50% 그리고 숙박비는 환자와 동반자 1인당 5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요양비는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처방이 있는 치료에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이란 식사, 화장실 출입, 목욕, 의복 정장 등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필요한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하지 못하는 병을 말한다. 또한 납세자 본인과 부양자를 위한 장기요양 보험료도 납세자의 나이⁴¹⁷⁾에 따라 일정 금액의 공제가 가능하다. 병원 입원비는 모두 공제되지만 병원 이외 장애인이나 노인 요양소 입원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기관의 치료가 필요하여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숙박비 등 모든 비용이 공제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자본경비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자본경비로서 금액이 합리적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환자만을 위한 경비로서 개인자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출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주택을 개조한 경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영장 등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 추가하여 개인자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투자는 그러한 경비가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제외한 금액만이 공제 가능하다.

납세자가 불입한 의료보험료도 공제가 허용된다. 그런데 치료뿐만 아니라 소득손실의 보전 혹은 생명이나 장기 등 신체 손실에 따른 보험성 경비가 모두 포함되는 보험도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나 보험회사가 각각의 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명시하

417) 40세 이하 \$290, 40~49세 \$550, 50~59세 \$1,110, 60~69세 \$2,950, 70세 이상 \$3,680.

는 경우에 한하여 의료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자영업자가 지출한 의료보험료는 항목별 공제가 아닌 조정된 총소득 산정을 위한 사전공제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그 중 일부가 이전에 공제한 의료비를 위한 보상이라면 그리고 의료비 공제로 과세소득이 그 당시 줄어들었다면 해당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이자비용(Sec. 163)

비용공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여부는 담보자산의 성격이 아닌 대출금의 사용 용도에 달려 있다. 사업이나 투자행위와 관련된 이자경비는 공제가 허용되지만 개인용도의 자동차 할부나 신용카드 이자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이자비용 가운데 주택과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비용은 공제가 허용되는데 전자는 사전공제인 항목별 공제이고 후자는 사후공제이다.

〈표 1-16〉 공제가 가능한 개인용 이자비용

	공제규정
주택담보	자택과 또 다른 주택 한 채에 한정된 주택담보 취득(매입, 건설, 개조) \$1,000,000 한도의 취득 담보금액 내에서 항목별 공제 주택 순자산 담보대출(home equity loan) \$100,000(혹은 주택가격에서 취득가액 제외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별 공제
학자금 대출	고등교육 학자금 대출: \$2,500를 한도로 총소득 사전공제(deduction for AGI)

전술한 대로 개인경비는 주택이자와 학자금 대출이자를 제외하고는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비용⁴¹⁸⁾은 공제가 허용된다. 여기서 주택은 납세자의 자택과 또 다른

418) 주택 대출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지불하는 포인트와 주택 보험료도 이자비용으로 간주된다. 이외 이자를 늦게 지급하여 부과되는 가산금이나 기한보다 빨리 대출금을 갚아서 내는

주택 한 채(second residence)⁴¹⁹⁾를 말한다. 주택의 취득을 위한 대출은 주택 매입, 건설과 개조를 포함한다⁴²⁰⁾. 대출을 받고 90일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면 공제가 허용되며 주택 건설을 완료한 날짜로부터 이전 혹은 이후 90일 사이에 대출을 받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제가 허용되는 취득 대출금은 100만달러(부부 별도신고 50만달러)로 제한된다⁴²¹⁾.

주택(primary residence)이 아닌, 한 예로 휴가용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얻은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경비도 납세자가 해당 주택을 14일 이상 사용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주택을 임대도 한다면 경비를 본인 사용과 임대용으로 구분하고 임대용 경비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Sec. 280A). 본인 사용에 따른 경비 중에서는 이자와 세금만이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며 임대에 따른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한편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휴가용 주택에 관한 담보대출 이자는 개인 이자비용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수동적 사업활동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소득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이외 일부 납세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로 발생하는 손실 중 25,0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되기도 한다.

주택의 순자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100,000달러를 한도로 대출금의 사용 용도와 상관없이 공제가 허용된다(Home equity loan). 다만 공제가 허용되는 대출금이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순자산 보다는 적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주택 구입 당시 사전에 지급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포인트도 대출금이 아닌 납세자의 개인자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구입계약 당시 명시하면 공제가 허용된다(Sec. 461(g)). 이외 자택이 아닌 부동산의 구입이나 자택 개조를 위한 대출 포인트는 채무기간 동안 상각되어야 한다.

별금도 이자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419) 납세자가 개인적으로 14일과 임대기간의 10%를 초과하는 기일 동안 해당 주택을 사용해야 공제의 자격요건이 충족된다(Sec. 280A(d)(1)). 다만 임대를 전혀 하지 않은 주택은 이러한 조건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허용된다.

420) 따라서 주택대출계약을 재조정(refinance)하는 경우 조정 직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가 허용된다.

421) 1987년 10월 13일 이전에 발생한 대출금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이 없다. 다만 1987년 이후 주택을 취득할 때 \$1,000,000의 제한금액에서 이러한 대출금이 제외되어야 한다.

대학교 이상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2,500달러까지 이자경비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전 공제할 수 있다(deduction for AGI). 다만 조정된 총소득이 110,000달러(부부합산)를 초과하면 공제가 허용되는 대출이자 소득에 따라 감소하여 140,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출금은 등록금과 도서구입비 그리고 하숙비를 포함한 학자금에만 지출되어야 하며 납세자와 부양자가 최소한 1년에 절반은 등록을 해야 한다.

이자비용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회계방식에 따라 공제시점이 결정된다. 다만 관련자 사이의 이자비용은 회계방식과 관련 없이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채권자가 이자소득을 신고할 때까지 이자비용의 공제를 이연해야 한다. 또한 현금주의 납세자가 선급이자를 지출하면 이는 지급 당시 공제할 수 없고 선급이자에 해당하는 대출기간 동안 상각되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자택 구입을 위한 선급이자(포인트)는 당장 공제된다.

③ 납부세금(Sec. 164)

내국세법 164조는 공제가 허용되는 지방세와 외국정부 세금을 적시하고 있다. 세대생략세를 제외하면 연방정부 세금⁴²²⁾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지방정부의 상속세, 증여세와 판매세 등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소득세, 부동산세 그리고 개인자산세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 중 소득세, 부동산세 그리고 사업 혹은 투자를 하면서 지출한 세금이 공제된다.

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2003~2007년의 경우 소득세 대신 일반판매세를 공제할 수도 있다. 공제할 수 있는 판매세는 실제 납부세액이나 지방정부의 일반판매세 표(Form 1040 Schedule A)⁴²³⁾를 사용하여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자동차, 비행기, 보트, 주택 등에 부과된 일반판매세를 추가하여 공제

422) 그러나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의 경우 50%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공제를 받을 수 있다.

423) 거주지역과 소득 그리고 인적공제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를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면 항목별 공제에 포함된 금액만큼 총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개인자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도 자산가액에 따라 결정되고 1년을 기준으로 부과되면 등록비처럼 특정 권리를 위한 세금이라도 공제가 허용된다⁴²⁴⁾.

공제가 허용되는 부동산세는 일반 공익을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균일하게 적용되는 세금이어야 한다. 즉, 특정 서비스를 위한 수수료나 인지세 등 양도 관련 세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밖에도 인접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을 건설하기 위한 수수료로서 부동산의 가치를 향상하는 세금은 장부가액에 포함되며 즉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과세연도 중간에 매매된 부동산의 경우 판매자와 매입자가 보유한 기간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배분방식은 의무사항으로 실제로 누가 부동산세를 납부하는가와 관계없다. 만약 판매자가 자신에게 할당된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가격과 매입자의 장부가액이 그만큼 인상되며 매입자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으면 판매가격과 장부가액이 그만큼 하락한다. 개인용 부동산세는 사후공제인 항목별 공제이지만 사업이나 투자과정에서 지출한 부동산세는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사전공제에 해당한다.

④ 기부자산(Sec. 170)

기업과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가 자격 있는 국내 자선단체(Sec. 501)에 기부하는 현금, 물품 자산은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선단체를 통하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제공된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기부 당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기부금을 받은 자선단체의 성격과 기부자산에 따라 다르고 한도가 있을 수도 있다.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하면 일반적으로 기부 당시 공정시장가격이 공제금액이 되며 서비스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424) 즉, 자산의 무게나 규모에 따른 종량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가격과 다른 지표가 혼합된 재산세의 경우 종가세 부분만 공제된다. 개인의 경우 사업이나 투자와 연관된 재산세가 아니면 항목별 공제대상이다.

자격이 있는 자선단체는 미국 연방 및 지방정부, 미국법에 따라 종교, 자선, 교육, 운동, 아동과 동물 학대 예방, 학문적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주식회사, 기금, 재단, 친선협회 등으로 이들 단체에게 혹은 이들 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자산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공제가 가능하려면 제공된 자산이 종교 등 앞서 제시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공제금액은 기부받은 단체가 공공자선단체인지 아니면 민간관리재단⁴²⁵⁾에 따라 다른데 교회, 병원, 교육기관, 정부기관 혹은 정부 지원을 받는 재단과 일부 민간관리재단은 공공자선단체로 간주된다. 교회와 정부를 제외한 자선단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외 캐나다, 이스라엘 그리고 멕시코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이들 국가의 자선단체에 기부한 자산도 납세자가 이들 국가에서 소득을 창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기관에 제공한 기부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목사 등에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기부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특히 자격이 있는 기관에 제공하되 특정 개인을 지명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외 상공회의소 등 사업단체, 사교클럽, 정치적 단체나 후보 그리고 노동조합에 기부한 자산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외 자격이 되는 기관일지라도 기부 결과 납세자가 경제적 이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 기부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기부자산과 기부를 받은 자선단체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우선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양도소득 자산⁴²⁶⁾(capital gain property)의 경우 공정한 시장가격⁴²⁷⁾이 기부금액이 된다. 그러나 만약 자산의 매매에 따라 손실을 입거나 단기 차익을 실현하면 이는 일반소득 자산⁴²⁸⁾(ordinary income property)으로 간주되어

425) 민간관리재단(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이란 포드재단과 같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기부를 받지 않고 실제로 자선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기부하는 단체를 말한다.

426) 양도소득 자산이란 기부 당시 공정시장가격으로 판매하면 장기보유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이나 사업용으로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상각자산이 있다.

427) 공정한 시장가격이란 판매자와 매입자가 관련 사실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지하고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거래할 때 발생하는 금액을 말한다(Reg. Sec. 1.170A-1(c)(2)).

428) 일반소득 자산은 납세자가 기부 당시 판매하면 일반소득이나 단기 자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한 예로 재고, 납세자가 창작한 예술품, 1년 이하로 단기 보유한 자본자산 등이 있다.

기부금액이 결정된다.

양도소득 자산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격이 공제금액이 된다. 그러나 민간관리재단에게 제공하는 양도자산은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에서 기부 당시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판매하면 실현할 수 있는 장기 자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기부금액이 된다. 따라서 기부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시장가격 중 낮은 금액이 공제 금액이다.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유형 개인자산⁴²⁹⁾도 만약 그 단체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기부자산을 사용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공제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특허와 상표권, 구입한 저작권 그리고 일부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이다(Sec. 170(1)(B)).

납세자가 일반소득 자산을 기부하면 기부받은 자선단체와 상관없이 기부금액은 공정시장가격에서 이를 매각하면 일반소득이나 단기 자본(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한 예로 납세자가 800달러에 매입하여 6개월 보유한 주식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고 그 당시 공정가격이 1,000달러라면 200달러는 단기 양도소득이므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800달러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공제금액은 자산의 장부가액이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첫째, 주식회사가 기부한 재고가 병자나 유아의 간호 등에 사용되거나 둘째, 납세자가 만든 과학기구가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용으로 사용되거나 셋째, 공공도서관과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부하면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자산의 매매가 공정시장가격으로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는 소득의 50%만을 제외한 금액이 기부금액이 된다. 다만, 기부금액은 장부가액의 두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의복과 전자제품, 가구 등 가정용품은 유지 보수가 잘되어 사용할 수 있어야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가정용품이라도 총기부금액이 500달러 이상이며 감정평가서를 동반하면 공제된다. 자동차, 보트나 비행기를 기부하고 공제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면 기부자산의 매각대금과 기부 당시 공정시장가격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⁴³⁰⁾. 하지만 전술한 대로 일반소득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장부가액(구입비용)보

429) 개인자산은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이며 유형자산은 주식, 채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한 예로 교육기관에 기부한 골동품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면 장부가액이 기부금액이 된다.

430) 이 경우 별도의 증빙요건이 적용된다. 특히 자선단체가 기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납세자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서류의 신고내용은 자선단

다 많아 그 가치가 상승한 자산에 대해서는 공제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현물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봉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있고 자선단체가 보상하지 않는 경비는 만약 개인적 혹은 가족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공제가 허용된다. 이러한 예에는 봉사 과정에서 지출한 현금, 교통비(14센트/마일), 숙박비, 외출 당시 식비의 50% 그리고 평상복으로 적합하지 않는 의류비 등이다(out-of-pocket expense). 한편 자선단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음식과 숙박 등 일비(per diem)를 지급받으면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출장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조정된 소득이 156,400달러(부부합산)를 초과하면 항목별 공제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교회, 교육기관, 병원, 정부지원 자선단체 등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AGI)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된다. 공제 받지 못한 기부금은 그 이후 5년간에 걸쳐서 이월이 가능하다. 한편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장기보유 양도소득자산은 공정시장가격으로 기부금액이 결정되는 반면 조정된 총소득의 30% 이상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앞서 지적한 대로 공정가격에서 양도차익 만큼 기부금액이 삭감되는 양도자산은 50%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민간관리재단에 기부한 양도소득자산 이외 현금이나 일반소득자산 등도 조정된 총소득의 30%를 한도로 공제가 허용된다. 나아가 이들 민간재단에 기부한 양도소득자산은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의 20%와 조정된 총소득 30%에서 공공자선단체에 기부한 양도소득자산을 제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공공자선단체와 민간관리재단에 각각 기부를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우선 50% 규정을 적용하고 난 후 30%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쨌든 전체 공제금액은 조정된 총소득의 50%로 제한된다. 이러한 한도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기부금은 향후 5년간 이월되어 공제된다.

전술한 대로 납세자의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기부금은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한 주식회사의 경우 기부 의사를 밝힌 과세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기부를 하면 이전 연도에 공제를 할 수 있다. 주식

체가 기부자산을 판매할 때와 사용할 때 각각 다르다(Form 1098-C).

회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액은 사전 과세소득⁴³¹⁾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이외 기부에 관한 규정은 개인 납세자나 주식회사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부금의 공제조항을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엄격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현금 등의 기부금이 250달러 이하인 경우 기부받은 기관 이름, 기부금액과 날짜가 포함하는 은행기록이나 자선단체의 영수증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기부금이 2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선단체의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한 자산의 기부에 있어서도 제공된 자산 평가액이 공정시장가격임을 납세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우선 자산 기부액이 250달러 이하이면 자선단체 이름, 날짜, 내역이 있는 자선단체 영수증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자산 기부금이 250~500달러면 자선단체의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자산의 기부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즉, C 법인을 제외한 여타 납세자가 기부하는 자산이 500달러를 초과하면 소득세 신고시 기부자산의 장부가액, 보유기간, 유형, 장소 등을 같이 신고해야 한다(Form 8283). 만약 5,000달러를 초과하면 모든 납세자는 기부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야 하며 국세청이 요구하는 자료를 소득신고시 포함해야 한다. 500,000달러 이상의 경우 감정 평가서를 세금신고에 동봉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자선단체에 자산을 분산 기부하는 경우 신고 기준금액은 이들 자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현금, 일부 무형자산, 재고 그리고 상장 거래되는 증권은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손상 및 도난손실(Sec. 165)

일반적으로 개인자산에서 발생한 비사업용 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재해나 사고로 인한 손상⁴³²⁾ 및 절도손실은 입증이 가능하면 항목별 공제가 허

431) 기부금의 공제 목적상 과세소득은 배당, 순영업손실, 양도손실 이월금, 기부금을 공제하기 이전 소득을 말한다.

432) 손상손실이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자산이 파괴되는 등 손상을 입는 경우로서 지진, 화재, 태풍, 홍수나 자동차 사고 등을 말한다.

용된다(Form 4684). 다만, 이러한 성격의 공제는 일반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은행 등 신용기관에 예치한 예금 등이 은행 파산으로 잃어버리면 이를 손상손실이나 일반손실 혹은 비사업용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손실은 기타 공제에 포함하여 신고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00달러에서 주정부의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편 사업이나 임대 혹은 로열티 소득 창출을 위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사전공제에 해당한다. 이외 투자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은 항목별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 가능한 액수는 자산의 손상 직전 시점의 조정된 장부가액과 손상이나 도난으로 인한 공정시장가격의 감소분 중에서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격은 감정을 통하여 결정되지만 자산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보수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과도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기준하여도 된다. 개인의 경우 손상손실에서 100달러를 제외한 후 이렇게 산정한 모든 순손실의 합이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만약 보험금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초과 보상금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⑥ 기타 공제(Sec. 67)

기타 공제(miscellaneous expense)는 포괄적인 분류로서 피용자의 고용 관련 비용과 일부 투자비용 등인데 다만 이들 항목의 합계액이 조정된 총소득의 2%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가 허용된다(Sec. 67). 투자비용은 소득 창출을 위한 자산의 유지, 관리, 보수비용 이외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Sec. 212). 투자비용 중에서 임대와 로열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는 조정된 총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사전공제에 해당한다(Sec. 62(a)(4))⁴³³⁾. 이외 이자, 배당 등의 투자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항목별 공제에 해당한다. 이들 경비는 투자 관련 자문비, 은행계좌 수수료, 잡지 구독료 등을 포함한다. 이외 기타 공제가 허용되는 경비는 고용주가 변상하지 않은 피

433) 즉,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임대 또는 저작권, 특허권 혹은 천연자원과 관련된 로열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감가상각, 보수, 관리, 이자, 보험비용은 항목별 공제가 아닌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되는 항목이다.

용자의 고용관련 비용으로 교통, 출장⁴³⁴⁾, 특수의학비, 구직비, 회원 가입비, 잡지 구독료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연방 및 지방정부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금 신고의 준비, 계획, 조사와 관련된 비용도 기타 공제가 가능하다.

3)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개인 납세자는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납세자의 기본적 생활 비용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의 납세자와 배우자에게는 1인당 3,400달러(2006년 3,300달러)의 소득이 공제된다(Sec. 151). 공제금액은 전년도 물가에 연동된다. 개인 공제는 한 번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피부양자로 신고가 되면 자신의 소득신고에서는 개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인 공제 이외에도 납세자는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 부양공제를 할 수 있다. 부양에 의한 인적공제는 자녀(qualifying children)와 친척(qualifying relatives)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명칭과 상관없이 자녀공제에는 자녀와 그 자손 이외 형제와 형제의 자손이 포함되며 친척공제도 반드시 친척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1년 내내 거주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다. 공제가 가능한 피부양자 자격은 공통의 자격조건이 있고 이에 추가하여 자녀공제와 친척공제에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따로 있다(Sec. 152). 우선 공통조건은 ① 다른 납세자가 피부양자로 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는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하며 ② 결혼한 사람이 부부합산신고를 하면 이들을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없으며⁴³⁵⁾ ③ 피부양자는 미국 시민/영주권자이어야 한다.

한편 자녀공제에 추가로 적용되는 조건은 ① 납세자의 자녀, 형제 그리고 그 자손이어야 하며 ② 나이가 19세 이하(학생은 24세 이하) 이고⁴³⁶⁾ ③ 6개월 이상 납세자와

434) 전술한 대로 출장비는 교통비 이외 숙박 및 기타 비용과 음식비 50%를 포함하며 이 가운데 숙박과 음식비는 상황에 비추어 호화스럽지 않아야 한다. 출장 및 교통비는 금액, 장소, 시기, 사업목적 그리고 납세자와의 사업상 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나 기록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교통비를 제외하면 \$75 이상의 숙박비나 여타 비용은 문서화된 자료가 필요하다.

435) 다만 납부할 소득세가 없고 단지 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할 때에는 부부합산 신고가 허용된다.

같이 거주하며⁴³⁷⁾ ④ 피부양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감당할 수 없어야 한다. 친척공제와 달리 자녀공제에서는 납세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 절반 이상을 지원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며 다만 앞서 지정한 대로 피부양자의 생활능력이 완전하지 않아야 한다⁴³⁸⁾.

친척공제의 경우 ① 납세자와 친척관계이거나 납세자의 가정에서 1년 내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② 피부양자의 총소득이 인적공제 금액(3,400달러)을 초과하지 않고 ③ 납세자가 피부양자의 생활비 50% 이상 지원하면 납세자가 그 사람을 부양 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법에 따라 친척관계가 성립하면 납세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납세자의 부모, 조부모, 백숙부(모)와 그 자녀, 사위, 며느리, 장인(모) 등과 배우자 형제 등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척도 피부양자의 자격이 있다(Sec. 152(b)(5))⁴³⁹⁾. 또한 나이가 많아 자녀공제의 혜택에서 제외된 자녀도 친척공제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통하여 피부양자로서 인적 부양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의 총소득(gross income)은 현금, 자산 등 과세대상 소득을 모두 포함하며 장학금,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그리고 면세 대상인 사회보장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납세자와 피부양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출한 경비를 모두 포함한다. 생활비 지원은 음식 주거비와 의료, 의류, 교통 및 교육비 등을 의미한다(Reg. Sec. 1-152-1(a)(2)(i)). 이외에도 판례에 따라 생활비는 TV, 휴가비, 장난감, 전화, 의료보험료, 자녀위탁 등을 포함하며 세금, 장례비용, 생명보험료 등은 제외된다⁴⁴⁰⁾. 이 밖에 납세자가 피부양자를 위하여 제공한 개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공된 생활비의 가치는 구입비용과 같지만 주거 제공과 같은 서비스나 물

436)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다.

437) 납세자가 질병, 교육, 사업, 관광 등의 사유로 자녀와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면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혼 혹은 별거중인 납세자도 부모로부터 생활비용의 절반을 지원받고 부모 중 한명에게 양육권이 있으면 거주요건을 면제받는다.

438) 이는 이혼한 부부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다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하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다.

439) 또한 부부합산 신고를 통하여 이러한 친척관계가 성립하면 사망이나 이혼으로 그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440) 피부양자를 위하여만 사용되는 TV나 가구 등은 생활비 지원으로 간주되지만 가족이 모두 사용하는 생활용품 구입은 피부양자를 위한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품 제공 등 비금전적인 지원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결정된다.

한 사람의 피부양자에 대하여 다수가 부양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자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가 친척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다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가 우선권이 있으며 이 두 가지 우선권이 없을 때에는 조정된 총소득이 많은 납세자가 부양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 다수의 납세자가 단체로 다른 사람의 생활비 즉, 부양경비 50% 이상을 부담하지만 개인별로는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부양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이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서면(Form 2120)으로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면 해당 납세자가 부양경비를 최소 10% 이상 지출하였고 생활비 지원조건 이외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multiple support declaration, Sec 152(c)).

한편 이혼 혹은 별거한 부부의 경우 50% 이상의 부양경비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더 오랜 기간 자녀와 같이 지내는 사람이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Sec. 152(a)). 단 이 경우 부부가 최근 반년 이상 동안 이혼 혹은 별거하면서 50% 이상의 부양비용을 부담하였고 부부가 합쳐서 최소한 반년 이상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등의 자격이 필요하다(Sec. 152(e)). 이외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도 양육권이 있는 배우자가 서면으로 허용하면 부양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Form 8332).

인적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점진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 축소된다(Sec. 151(d)). 즉, 조정된 총소득(AGI)이 일정 기준⁴⁴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2,500달러 단위로 나누고 그 결과와 2%를 곱한 수치가 인적공제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이 된다⁴⁴²⁾. 그러나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금액은 3,400달러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다. 즉, 고소득층도 최소한 1,133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441) 독신자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156,400을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78,900에서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부부합산의 경우 \$234,600~\$357,100 사이의 소득(AGI)에서 같은 상황이 적용된다.

442) 한 예로 조정된 총소득이 \$300,000인 부부(자녀 1명)의 경우 원래 인적공제가 \$10,200 (\$3,400×3)이다. 그러나 \$65,400(\$300,000-\$234,600)을 \$2,500로 나눈 수치 27(26.16)에 2%를 곱하면 54%가 되는데 이 수치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가 줄어드는 기준이었다. 즉, \$10,200×0.54=\$5,508이 공제되지 않는 금액이다.

4) 세액공제(tax credit)

(a) 개요

세액공제는 고용 증대, 환경보전, 연구 장려, 저소득층 지원 등 형평성 제고와 이중 과세 방지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사용된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1:1로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율에 따라 세금감액의 정도가 변하는 일반 공제에 비하여 혜택이 훨씬 크다.

〈표 1-17〉 주요 세액공제 항목

	개인공제	사업공제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세액공제	입양비(Sec. 23) 노령자·장애인 공제 (Sec. 22) HOPE·평생교육 공제(Sec. 25A) 자녀·부양자 위탁공제(Sec. 21) 자녀세액공제(Sec. 24) 일부 주거용 대출(Sec. 25) 일부 은퇴저축 기여금(Sec. 25B) 에너지 절약 주거용 자산(Sec. 25C, D)	사업용 연료 및 태양·지열세(Sec. 48) 에너지 절약 제조업(Sec. 38) 전기 자동차(Sec. 30) 연구 및 실험개발(Sec. 41) 저소득층 주택건설 및 소유(Sec. 42) 재개발(Sec. 47) Empowerment zone 고용(Sec. 1396) 근로자 자녀위탁 지원(Sec. 45F) 취업기회 제공(Sec. 51)
환급이 허용된 세액공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Sec. 31) 전년도 과다 납부세액(사회보장세 포함) 신고 연기시 납부한 세액 추계 납부세액 납부 연기요청시 지급한 세금 근로장려공제(EIC, Sec. 32) 자녀세액공제의 일부(Sec. 24)	해외소득세 공제(Sec. 27)

세액공제는 환급이 가능한 공제와 그렇지 않은 공제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공제액이 과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반면 후자는 공제액이 과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환급이 가능한 항목은 극히 일부로 기

납부한 세금과 근로장려공제(EIC)⁴⁴³⁾가 이에 해당하며 나머지 항목은 환급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또한 개인공제와 사업공제로 구분될 수 있다. 개인공제는 다른 공제에 앞서서 과세액에서 제외되는데 이들은 주로 복지 차원에서 도입된 공제항목이다. 근로장려공제를 제외한 개인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는 공제로서 일반소득세 이외 최저한 세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Sec. 26).

(b) 환급되는 세액공제

① 환급 공제 유형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과 환급대상 세액공제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환급이 가능한 항목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그리고 근로장려 세액공제(EIC)가 있다⁴⁴⁴⁾.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을 창출하는 납세자는 분기별로 자영업 고용세 등을 추정하여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러한 추정세액도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된다. 또한 휘발유 및 기타 특정 유류에 부과되는 소비세도 도로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환급이 가능하다(Sec. 34). 사업용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한 휘발유 구입 또는 농업용 유류가 이에 해당한다.

② 근로장려 세액공제(Earned Income Credit, EIC)

근로장려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공제금이 환급될 수 있다(negative income tax). 공제액은 임금, 팁과 자영업 소득 등을 포함한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기초하여 산정되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보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제 혜택은 근로소득과 조정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개인과 일부 독신자에게 주어진다(Sec. 32(c)).

443) Earned Income Credit.

444) 이외 상호기금(mutual fund)과 부동산투자기금(REIT)이 주주의 자본소득 배당으로 분류한 금액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아도 납세자가 이를 소득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이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자 입장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녀나 손자녀로 납세자와 반년 이상 같이 거주하며 19세 이하이어야 한다. 학생의 경우 나이가 24세까지 허용되며 불구자 자녀는 나이 제한이 없다. 자녀가 없는 납세자는 25~64세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배당, 이자, 임대 혹은 양도소득 등 납세자의 투자소득이 2,900달러를 초과하면 근로장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규모는 일정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의 일정 비율이 되는데 자녀 수와 납세자의 신분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자녀가 1명인 납세자의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에서 최대 8,950달러의 34% 즉 3,043달러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이 8,950달러를 초과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소득에 따라 점차 줄어든다. 공제가 가능한 근로소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있다. 한편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⁴⁴⁵⁾과 근로소득 가운데 상대적으로 더 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공제금액의 일정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Sec. 32(b)(1)). 2009년 세액공제 기준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기준이 2명과 3명 초과로 나뉘어 후자의 경우 40%가 아닌 45% 비율을 적용받으며 부부합산의 경우 다른 납세자보다 감축이 시작되는 기준이 5,000달러 더 많다.

〈표 1-18〉 근로장려공제 환산표(2007~2009년)

(단위: 달러, %)

자녀수	2007			2009		
	기준비율	공제 가능한 최대근로소득	잠정 세액공제	기준비율	공제 가능한 최대근로소득	잠정 세액공제
0	7.65	5,590	428	7.65	5,970	457
1	34.0	8,390	2,853	34.0	8,950	3,043
2~ ¹⁾	40.0	11,790	4,716	40.0	12,570	5,028
3~ ¹⁾	—	—	—	45.0	12,570	5,657

주: 1) 2009년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45% 비율로 추가 공제를 해줌.

자료: *Federal Taxation 2007 Comprehensive*, Thomas Pope eds., Prentice Hall, 2008.

445) 수정된 조정 총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을 순양도손실, 순비사업용 임대손실, 사업 순손실의 75%, 면세 이자소득과 연부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한 예로 부부인 납세자에게 18,000달러의 근로소득과 21,000달러의 조정된 총소득이 있고 자녀가 2명이면 잠정 세액공제는 4,716달러($0.40 \times 11,790$)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760.3달러($0.2106 \times (21,000 - 17,390)$)는 납세자의 소득이 많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머지 3,955.7달러($4,716 - 760.3$)를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표 1-19〉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장려 세액공제의 감축(2007~2009년)

(단위: 달러, %)

자녀수	2007			2009		
	감축 출발점	감축비율	감축 종료점	감축 출발점	감축비율	감축 종료점
부부합산						
0	9,000	7.65	14,590	12,470	7.65	18,440
1	17,390	15.98	35,241	21,420	15.98	40,463
2~	17,390	21.06	39,783	21,420	21.06	45,295
기타 납세자						
0	7,000	7.65	12,590	7,470	7.65	13,440
1	15,390	15.98	33,241	16,420	15.98	35,463
2~	15,390	21.06	37,783	16,420	21.06	40,295

주: 1. 부부합산 감축기준은 기타 납세자에 비하여 2007년 \$2,000 많고 2009년은 \$5,000 많음.

2. 초과소득에 따른 출발 및 종료점은 근로소득과 조정된 총소득 중 큰 금액임.

자료: *Federal Taxation 2007 Comprehensive*, Thomas Pope eds., Prentice Hall, 2008.

(c)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

① 일반사업공제(General Business Credit)

특정 사업경비를 세액공제할 때 공제금액의 균등한 한도와 이월 기준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경비가 일반사업공제로 통합되어 총합계액이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취업 기회, 연구실험, 저소득층 주택건설, 에너지 절약, 장애인 출입용 설비, 근로자 자녀 부양 지원, 재개발, 낙후지역 개발투자(Empowerment zone). 사업공제가 허용되는

최고 금액은 순소득세에서 잠정 최저한세나 25,000달러를 초과하는 정상적인 순납세의무액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Sec. 38(c)).

순소득세는 정상적인 소득세와 최저한세를 합한 금액에서 환급되지 않는 개인 세액공제와 해외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며 정상적인 순납세의무액은 정상적인 납세의무액에서 환급되지 않는 개인 세액공제와 해외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한도를 초과하는 일반 사업공제는 과세연도 이전 1년 소급되고 난 후 그 이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 세액공제는 이월된 공제부터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해당연도 공제를 사용한다(FIFO, Sec. 39).

일반 사업공제에서 먼저 인적 경비를 보면 중소기업이 근로자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2002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금액은 중소기업이 탁아소 설비를 취득, 건설, 운영 혹은 증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25%와 계약을 맺어 자녀를 돌보는 경비의 10%를 합한 금액이다(Sec. 45F). 공제금액은 한 과세연도에 1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지원을 시작한 지 3년 이내 이를 중단하면 100% 회수되며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회수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고용하면 처음 1년간 연봉의 일정금액(최대 6천달러)의 40%⁴⁴⁶⁾를 공제받을 수 있다(Work Opportunity Tax Credit). 해당 계층은 재취업 대상자, 전과자, 퇴역군인, 보조 사회보장연금(SSI) 등의 수혜자, 불량 청소년 등으로 주 정부가 사전에 해당 근로자가 취약 계층임을 인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이 소형업체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 교통, 연락설비를 고칠 때 소요된 비용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250달러를 초과한 금액의 50%이며 최대 10,250달러의 50%까지 공제가 허용된다(Sec. 44).

내국세법 41조에 따라 다양한 연구실험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이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174조에 따른 일반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연구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일반 연구개발비의 20%, 대학교 등 연구기관에 지급한 기초연구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20% 그리고 에너지 연구비

446) 따라서 피고용인 1인당 최대 공제액은 \$2,400이다. 만약 고용시간이 400시간 이하면 공제 비율은 25%이다. 한편 방학기간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최대 \$3,000 임금의 40%를 공제할 수 있다.

의 20%를 합한 금액이 된다. 이 가운데 일반 연구공제를 살펴보면 재무성 규정(Reg. Sec. 1.41-2)에 따라 지정된 상품의 개발이나 개선 연구비로서 상업적 생산이 개시된 이후 연구비나 광고비 등은 제외된다. 기준금액은 해당 납세자의 기준율⁴⁴⁷⁾을 이전 4개 연도 평균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서 기준금액은 연구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납세자가 원하면 이러한 산정방식 대신 보다 간단한 방식에 따라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전 4개 연도 평균매출액의 1%, 1.5%, 2%를 초과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각각 3~5%까지 공제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2006년부터는 이전 3개 연도 평균 연구비의 50%를 초과하는 연구비에 대하여 12%를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만약 이전 3개 연도에 연구비를 지출하지 않았으면 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태양이나 지열 등의 설비에 투자하는 사업체는 그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05~2008년 사이에 태양광 설비나 연료전지 설비에 투자하면 30%의 공제비율을 적용받는다. 재개발공제는 역사적 건물이나 1936년 이전에 건립된 오래된 산업 및 상업건물의 재건축이나 복구 등 재개발 비용에 대하여 각각 20%와 10%를 공제해준다(Sec. 47). 다만 해당 건물은 사업 혹은 투자용 건물로서 거주용 임대건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를 받으려면 재개발비용이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5,000달러 중 큰 금액보다 많아야 하며 만약 이를 일찍 처분하면 세액공제가 연간 20% 비율로 회수될 수 있다.

② 개인 세액공제(personal tax credit)

개인 세액공제 가운데 우선 자녀세액공제가 있다(child tax credit). 납세자는 17세 이하의 미국 시민 자녀 1인당 최고 1,000달러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ec. 24). 자녀 세액공제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조정된 총소득⁴⁴⁸⁾에 대하여 총소득 1,000달러

447) 한 예로 창업기업의 경우 5년간 기준율은 3%이며 그 이후 기준율이 조정된다.

448) 기준이 되는 소득은 조정된 총소득(AGI)에서 해외근로소득 등과 관련하여 Sec. 911, 931 그리고 933에 따라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제외된 소득 즉, 면세소득을 조정된 총소득과 합한 수정된 조정소득(Modified AGI)이다. 부부합산의 경우 수정된 조정소득이 \$110,000(독신 \$75,000)을 초과하면 공제가 줄어든다.

(혹은 그 일부분)당 50달러씩 혜택이 감소한다⁴⁴⁹⁾. 과거 자녀세액공제는 환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근로소득이 11,75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15%⁴⁵⁰⁾까지 환급을 해준다⁴⁵¹⁾. 이 금액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다. 자녀는 17세 이하의 납세자 자녀로서 인적공제에서 부양자녀 기준에 합치되는 자녀(qualifying child)이어야 하며 납세자와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두 번째로,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은 소득세 세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elderly and disabled persons credit). 다만 공제가 허용되는 최대 금액은 부부합산의 경우 7,500달러(독신 5,000달러)로 제한된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한 최대 금액은 5,000달러로 줄어든다. 공제 가능 금액은 사회보장금과 연금 등 비과세연금이 있으면 해당 연금만큼 감소한다(Sec. 22(c)). 또한 조정된 총소득이 일정금액(부부합산 10,000달러, 독신 7,500달러)을 초과하면 조정된 총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한편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녀나 부양자를 위하여 지불하는 보육비 등 위탁비용 중 일부(20~3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Sec. 21).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에게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13세 이하의 자녀나 일할 능력이 없는 부양자가 납세자와 함께 최소한 일년 중 절반을 같이 살아야 한다. 일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양비용은 납세자의 주택에서 이루어진 가사, 간호, 요리, 탁아비용 등을 포함하며 외부에 위탁할 경우 6명 이상을 돌보는 탁아소에 위탁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조정된 총소득이 15,000달러 이하인 경우 위탁비용의 35%

449) 기준 금액은 부부합산 \$110,000이고 독신자는 \$75,000이다. 한 예로 자녀가 3명인 부부의 조정된 총소득이 \$150,000이면 초과금액이 \$40,000(\$150,000-\$110,000)이고 따라서 공제가 가능한 자녀세액공제는 \$1,000($3 \times \$1,000 - 40 \times \$50$)이다.

450) 한 예로 4명의 자녀가 있는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4,000의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납세자의 근로소득이 \$26,000이고 소득세가 \$2,000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가 소득세보다 \$2,000 더 많다. 이 경우 \$2,137.5에 해당하는 금액이 허용되는 자녀세액공제이다($0.15 \times (26,000 - 11,750)$).

451) 만약 납세자의 자녀가 3명을 초과하면 사회보장세가 근로장려세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15%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환급해준다.

로서 최대 허용금액은 부양가족 1인 3,000달러, 2인 이상은 6,000달러이다. 이 비율은 조정된 총소득이 1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소득의 2,000달러당 1%씩 감소한다. 그러나 최소 공제비율은 20%로서 조정된 총소득이 43,000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위탁비용의 20%를 공제받는다. 하지만 고용주가 자녀위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 총소득에서 사전공제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용주의 지원금액을 위탁비용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Sec. 129). 납세자의 자식이나 부양가족이 아니면 자녀를 친척에게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공제가 허용된다(Sec. 21(e)(6)). 또한 공제가 허용되는 위탁비용은 근로소득보다 많을 수 없는데 부부의 경우 이 제한은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중산층 이하 납세자나 그 가족이 부담하는 고등교육 등록금(숙식비와 교통비 등 개인비용은 제외)에 대하여 2년간 학생 1인당 최대 1,650달러⁴⁵²⁾의 세금을 공제할 수 있다(HOPE, Sec. 25(A))⁴⁵³⁾. 다만 장학금, 고용주가 지원하는 교육비용, 교육은퇴연금의 금액만큼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한편 평생교육 공제제도(Lifetime Learning Credit)도 고등교육 등록금과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HOPE 프로그램과 달리 공제연도의 기한이 없으며 그 대신 학생이 아닌 납세자 차원에서 공제금액이 제한된다. 즉,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학비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00달러의 20%에 해당한다.

평생교육 공제와 HOPE 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2007년의 경우 교육비가 8,250달러 이하이면 HOPE 공제가 더 유리하다. 그러나 학생이 2명 이상이면 한 학생에 대해서 HOPE 공제를 신청하고 다른 학생에 대해서 평생교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HOPE과 평생교육 공제금액은 비율적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9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20,000달러로 나눈 비율을 HOPE과 평생교육 공제를 합한 금액과 곱하여 나온 금액만큼 줄어든다. 독신의 경우 해당 금액은 각각 47,000달러와 10,000달러이다. 따라서 부부의 수정된 총소득이 114,000달러(독신 57,0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452) 학비 \$1,100에 대해서는 100% 공제되고 그 다음 \$1,100 학비에 대해서는 50%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학비가 \$1,200이면 HOPE 공제금액은 \$1,150이 된다.

453) HOPE Scholarship credit

없다.

IRA나 401(k) 등 은퇴저축예금에 저축을 하면 부부합산의 경우 조정된 총소득이 52,000달러 이하인 납세자에 대하여 저축금액의 10~50%⁴⁵⁴⁾까지 공제가 허용된다(saver's credit). 공제가 허용되는 저축금액은 IRA, 401(K), 403(b) 등의 불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그 한도는 2,000달러이며 이와 같은 세액공제는 여타 은퇴연금의 공·면제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납세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최대 11,390달러까지 자녀 입양경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Sec. 23).

미국 의회는 2005년 개인 납세자의 에너지 절약과 생산을 위하여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⁴⁵⁵⁾. 이는 주거용 에너지 자산공제와 주거용 에너지 절약자산공제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2006~2008년 사이에 납세자 거주 주택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주택을 개조하거나 기구설비를 설치하면 500달러를 한도로 개축비용의 10%와 설비 설치비용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Sec. 25C). 주택 개조는 에너지 효율요건을 충족하는 이중창문과 대문의 단열재 설치 등을 포함하며 설비는 전기나 지열 펌프, 중앙냉방장치, 물을 이용한 전열기 등을 포함한다. 그대신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제금액만큼 감소하며 창문 200달러 등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는 최대 공제금액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

주거용 에너지 절약자산공제란 납세자 주택에 태양열을 이용한 전열기나 발전기를 설치하면 개별 설비에 대하여 최대 2,000달러를 한도로 구입비용의 30%를 공제하여 준다. 이외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산을 설치하면 금액의 제한 없이 용량 0.5 kW당 5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만약 주택의 80% 이하를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용을 제외한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대체연료 자동차를 구입하는 납세자의 경우 자동차 모델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에 60,000대 이상의 하이브리드 차를 제조한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면 공제금액이 줄어든다.

454) Sec. 25(B) 소득이 \$30,000 이하이면 공제비율은 50%, \$30,000~\$32,500은 20%, \$32,500~\$52,000은 10%이다.

455) The Energy Tax Incentive Act of 2005.

이외 대체연료를 저장하거나 자동차에 대체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빌딩 제외)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설비비용의 30%와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사업자 30,000달러).

한편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소득의 발생지와 관계없이 총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다만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foreign tax credit, Sec. 27(a)). 다만 개인 납세자의 경우 해외에서 창출한 소득의 80,00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므로 이를 선택할 경우 외국 소득세 납부로 인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Sec. 911). 따라서 개인 납세자는 외국세액 공제와 해외소득 면제를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정부 세율이 높으면 외국세액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외국정부에 실제 납부한 세금과 해외소득에 대한 미국정부 소득세 중 적은 금액이다. 후자의 경우 전체 과세소득 대비 해외 과세소득 비율을 미국에서 과세되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곱한 금액이 한도금액이다(Sec. 904(a)). 다만 이러한 한도에 걸려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외국세액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이전 1년 소급되거나 이후 10년간 이월될 수 있다.

다. 손실과 대손금 공제

1) 개요

납세자가 사업용이나 투자용으로 보유한 자산의 처분으로 손실을 입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식회사를 제외한 납세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산이 도난 혹은 손상을 입으면 제한적으로나마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손상 외에 자택 등 개인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⁴⁵⁶⁾. 이 밖에도 회수가 어려운 부채는 사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손실과 투자손실은 조정된 총소득

456) 개인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손실에는 ① 상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② 상거래는 아니지만 이윤 창출을 위한 거래에서 입은 손실 ③ 사업용 자산의 손실은 아니지만 재해로 인한 손상이나 횡령 혹은 절도로 인한 손실이 있다(Sec. 165(c)).

을 위한 공제(사전공제)이며 손상이나 절도 등 개인용 자산으로부터 입은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된다(사후공제).

공제가 허용되려면 손실이 실현되고 인정되어야 한다.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완전한 거래를 통하여 손실이 발생해야 손실이 실현된다(closed transaction doctrine).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법이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실현된 손실을 인정한다. 자산손실은 자산의 매각, 교환, 수용, 압류, 포기와 증권의 가치 상실, 도난, 화재 등 재해에 의한 소실, 사업비용이 사업소득을 초과하는 순영업손실 등이 있을 수 있다.

처분 자산의 성격에 따라 손실의 공제 여부와 공제의 성격이 다르다. 우선 개인적 목적의 자산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투자용이나 사업용 자산의 손실만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산이 자본자산이면 손실은 자본(양도)손실로 간주되지만 사업 혹은 거래용 자산 즉 1231조 자산이 처분될 때 발생한 손실은 모든 1231조 자산의 처분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손실의 성격이 결정된다⁴⁵⁷⁾. 만약 해당자산이 재고면 손실은 일반손실로 간주된다.

자산의 매각 등에 의한 손실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자산 처분에 의하여 실현된 수입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Sec. 1001). 판매대금 이외 다른 자산을 보상받으면 해당 자산의 공정가격이 포함되며 구입자가 대신 부담하는 대출금이나 부채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커미션 등 매각비용은 매각자산의 성격에 따라 공제 시점이 다른데 사업적 목적의 판매용이 아닌 자산의 매각비용은 실현된 매각대금에서 제외되지만 재고자산의 경우 매각비용이 발생하거나 지급된 연도에 공제가 허용된다.

가치가 완전히 없어진 증권은⁴⁵⁸⁾ 공제가 허용된다. 이러한 성격의 손실은 과세연도 마지막 날 자본자산의 매각에 따른 손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양도(자본)손실이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한편 국내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증권이 가치를 상실하면 이를 자본자산이 아닌 일반자산의 손실로 간주하여 일반손실로 사용할 수 있다⁴⁵⁹⁾.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양도손실의 사용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457) 1231조 자산이란 전술한 대로 자본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업용 자산 중 부동산과 감가상각되는 자산으로 자산 처분에 따라 순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고 순손실은 일반손실로 간주된다.

458) 증권은 주식, 주식매입권, 채권, 어음, 주식회사나 정부가 발행한 채무 증명서를 포함하며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Sec. 165(g)(2)).

일반손실이 더 유리하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양도(자본)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양도(자본)이익과 상쇄되며 남은 손실은 이월(5년)이나 혹은 소급(3년)만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경우에도 일반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양도손실은 3,000달러로 제한되며 남은 손실은 연도의 제한없이 이월만이 가능하다.

정부가 자산을 몰수, 수용 혹은 압류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은 손상이 아니라 자산의 매각이나 교환과 같은 성격으로 간주된다. 이는 개인용 자산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⁴⁶⁰⁾. 수용된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은 금액을 보상받으면 이익이 실현된다. 자산을 포기 즉, 버리는 경우 해당 자산이 개인용이 아니고 사업 혹은 투자용 이면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손실이 발생하는데 자산의 방기는 교환이나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손실로 간주된다. 이외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해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공제나 손실이 허용되지 않는 대신 토지의 장부가액에 포함된다(Sec. 280B).

2) 손실의 성격과 구분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일반손실과 자본(양도)손실로 구분하고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 공제인지 아니면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사전공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자본손실은 자본자산의 매각이나 교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은 재고, 어음, 매출채권과 사업 혹은 거래용 감가상각 자산(공장과 기계설비 등)과 토지를 제외한 자산을 의미한다. 자산의 손상이나 방기는 자산의 교환이나 매매가 아니므로 자본손실이 아니라 일반손실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수용과 가치를 상실한 증권 등은 자산의 교환 등으로 간주되어 자본손실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사업용 부동산과 상각자산 등 1231조 자산은 자본자산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손실)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1년 이상 보유한 1231조

459) 이를 위해서는 국내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과 모든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자회사의 수입 90% 이상이 수동적 소득(즉, 로열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주식 등 증권의 매각소득 등)이 아니어야 한다.

460) 자산이 실제로 차압당한 시점에 공제가 허용되며 공식적 수용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산의 비자발적 전환에 따라 이익의 인정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순손실이 발생하면 각각의 이익과 손실은 일반소득(손실)로 간주된다. 개인 납세자는 일부 중소기업 주식회사의 주식 매각(Sec. 1244 stock)으로 인한 손실도 일반손실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일정 조건⁴⁶¹⁾을 충족해야 하며 일반손실로 인정되는 금액은 연간 5만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로 제한되며 나머지 손실은 양도손실로 간주된다.

한편 일부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공제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연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에는 주식과 교환하기 위하여 지배 주식회사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유사자산의 교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자산, 위장된 주식매각(wash sales), 그리고 개인과 일부 주식회사의 수동적 손실 등이 있다.

3) 재해(손상) 및 절도손실

납세자는 사업용 손실과 투자용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용 자산의 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천연재해나 절도 등으로 발생한 손실만을 공제받을 수 있다(Sec. 165). 납세자의 고의적 행위 등으로 인한 손실을 제외하면 사업 또는 투자용 자산의 손상이나 절도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공제가 가능한 반면 개인용 자산의 손실금액은 제한된다⁴⁶²⁾. 즉, 개인용 자산의 경우 전체 손실에서 100달러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추가로 손실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손실이 납세자의 조정된 총소득의 10%+100달러를 넘지 않으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 사업용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사전공제인 반면 투자용(임대 및 로열티 손실은 사전공제)과 개인용 손실은 조정된 총소득으로부터의 공제에 해당한다.

461) 해당 기업은 국내기업으로 현금이나 자산의 대가로 개인이나 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직접 발행한 주식으로 역외시장(secondary market), 증여, 상속 혹은 교환을 통하여 얻은 주식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 5년간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이 전체 수입의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62)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연도에 손실을 공제하는데 횡령이나 절도는 그런 행위가 발견된 연도에 공제된다.

손상으로 인한 손실은 손상으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줄어든 금액을 의미한다⁴⁶³⁾. 이는 손상을 전후한 자산의 공정가격의 차이를 의미한다. 부분적으로 손상된 자산은 자산의 성격과 관계없이 장부가액과 손상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 하락분 중에서 적은 금액이 손실로 인정된다. 즉, 가치가 상승한 자산의 경우 장부가액이 이보다 낮으면 손실은 장부가액으로 제한된다. 반면 완전히 파괴된 자산의 경우 자산의 성격에 따라 손실금액이 차이가 난다. 특히 사업용과 투자용 자산은 공정시장가격보다 장부가액이 커도 장부가액이 손실로 인정되는 반면 개인용 자산은 공정시장가격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이 손실로 인정된다.

보험회사에서 자산 손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손실금액은 보험금만큼 줄어든다. 만약 장부가액보다 보험금이 더 많으면 납세자는 이익을 실현하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자산의 비자발적 전환으로 간주하여 납세자는 그러한 이익을 불인정하거나 이연할 수 있다. 만약 재해로 다수의 개인용 자산이 손상을 입으면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시장가격을 비교하여 손실 혹은 이익을 환산해야 한다. 이후 순이익이 발생하면 개별 손실(이익)은 자본손실(이익)로 간주된다. 한편 사업용이나 투자용 자산은 보유기간이 1년 이하면 일반손실(소득)로 간주되지만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순이익(손실)을 환산하고 이를 1231조 자산과 비교하여 과세된다.

4) 조세 회피와 수동적 손실(tax shelter and passive loss)

납세자는 조세 회피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반공제나 세액공제를 창출하고 이를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한 예로 유한 파트너십의 손실은 파트너의 소득세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파트너십을 통하여 비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1976년 의회는 납세자가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로 인하여 실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

463) 일반적으로 감정을 통하여 손실을 측정하지만 감정이 불가능할 경우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손실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보수하는 이상의 비용일 수 없으며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자산의 공정시장가격보다 더 많이 자산가치를 향상하는 보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용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at risk rule, Sec. 465). 이후 1986년 조세개혁법에서는 손실공제의 남용을 줄이기 위하여 임대나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 혹은 연루되지 않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passive loss)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Sec. 469).

소득신고시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을 일반 소득(임금과 사업소득), 투자소득(배당, 이자, 연금, 로열티 소득,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자산의 처분으로 얻은 이익⁴⁶⁴) 그리고 수동적 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납세자는 각각의 수동적 투자행위로부터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확정한다⁴⁶⁵. 수동적 손실은 수동적 소득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며 다른 일반소득이나 투자소득(portfolio income)과 상쇄할 수는 없다⁴⁶⁶. 그러나 수동적 손실이 소득을 초과하면 이는 이월이 가능한데 이월되는 개별 손실금액은 전체 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라 비율적으로 환산한다.

예외적으로 수동적 자산을 완전히 처분하면 (이월된) 손실을 일반소득 등 다른 성격의 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즉, 자산 처분으로 이익(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먼저 해당 투자의 이월손실과 연계한 후 일반소득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일반소득에서 공제하기 앞서서 처분된 수동적 자산의 전체 손실을 다른 수동적 소득과 상쇄되고 난 이후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⁴⁶⁷.

수동적 사업 행위는 임대사업과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Sec. 469(c))⁴⁶⁸. 실질적 참여(material participation)란 납세자가 주기적이고 지속

464) 일반적 상거래에서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은 납세자의 참여도에 따라 일반 소득과 수동적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

465) 이자, 배당, 로열티, 연금소득 등 투자소득(portfolio income)과 수동적 소득은 구분이 되므로 투자소득에 명백하게 할당되는 비용은 수동적 소득을 위해 공제할 수 없다.

466) 수동적 세액공제도 수동적 소득으로 발생한 세금을 공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467) 한 예로 A, B, C, D라는 수동적 투자로부터 각각 소득 \$3,000, 소득 \$5,000, 소득 \$1,000, 손실 \$1,500이 발생한 이후 A를 \$10,000의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였다고 가정하자. 한편 A로부터 이월된 손실은 \$20,000라면 우선 \$20,000에서 A의 총이익 \$13,000(\$3,000+\$10,000)이 공제되고 나머지 이월손실 \$7,000은 여타 투자 순익 \$4,500(\$5,000+\$1,000-\$1,500)과 상쇄된다. 이후 남은 \$2,500이 투자자의 일반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468) 212조의 투자행위도 수동적 사업이며 임대사업이란 유형자산의 사용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는 행위를 말한다. 임대기간이 7일 이하인 사업과 30일 이하 임대기간으로 자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유주가 상당 수준의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업 등 수동적 행위가 아

적인 그리고 상당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Sec. 469(h)(1))⁴⁶⁹⁾.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은 수동적 사업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업용 임대부동산의 경우 일반사업(active business)으로 간주되어 수동적 손실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750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자신의 사업활동에서 절반 이상을 부동산 임대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면 수동적 사업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한 파트너십의 유한 파트너가 받은 소득과 공제는 일반적으로 수동적 사업의 결과로 간주된다.

수동적 손실의 공제가 제한되는 대상은 개인, (유산)기금, 미공개 C 법인(closely held C Corporation)⁴⁷⁰⁾, 개인서비스 회사⁴⁷¹⁾, 일부 상장 파트너십⁴⁷²⁾ 등이 있다. 일반 파트너십과 S 법인 주식회사의 소득(공제)은 소유주에게 이전되어 과세되므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C 법인은 수동적 손실의 대상이 아니지만 납세자가 C 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공개 C 법인과 개인서비스 회사가 포함되었다. 미공개 C 법인에서 수동적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투자소득으로부터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 서비스 회사는 이러한 예외가 허용되지 않고 수동적 손실과 소득만 서로 연계될 수 있다.

많은 부동산 임대행위는 예외를 적용받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수동적 손실규정의 적용을 받는다(Sec. 469(c)(2)).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는 연간 25,000달러의 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임대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임대부동산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실질적 참여요건(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상당 수준의 참여)을 충족하지 않아도 임차인 승인, 임대조건 결정 등 사업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면 적극적 참여요건(active participation)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러

닌 임대사업은 Reg. Sec. 1.469-1(e)(3)(iii) 참조.

469) 연간 500시간 이상 참여하거나 100시간 이상 참여하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한 경우 혹은 과거 10년 동안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470) 지난 6개월 간 5명 이하의 개인들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Sec. 469(i)(1)).

471) 개인서비스 회사는 C 주식회사이지만 소유주이자 종업원인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로서 동 납세자는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개인서비스 회사로 규정된다.

472) 파트너십 지분이 증권시장이나 역외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래되는 파트너십을 말한다.

한 조건을 만족하는 납세자가 임대부동산 손실을 입으면 이를 먼저 다른 종류의 수동적 소득과 연계하고 남은 손실을 일반소득 혹은 투자소득에서 공제한다. 조정된 총소득이 100,000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⁴⁷³⁾는 초과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5,000달러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조정된 총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는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5) 순영업손실(NOL: Net Operating Loss)

특정 과세연도에 사업소득이 사업비용(공제)보다 적으면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내국세법 172조에 따라 소급 혹은 이월되어 다른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우선 이전 2년 전부터 소급하여 환급을 받고 남은 손실은 순차적으로 이월되어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⁴⁷⁴⁾. 이 기간이 넘으면 더 이상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원하면 소급하지 않고 이월만 해도 되며 다수의 과세연도에 손실이 발생하면 먼저 발생한 영업손실부터 공제를 해야 한다. 한편 소급하여 수정신고할 때 영업손실이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사전공제를 하기 때문에 조정된 소득이 변하면 의료비와 손상손실 등 조정된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바탕으로 하는 항목별 공제도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기부금은 이러한 수정 작업에서 제외된다(Sec. 170(b)).

순영업손실은 전술한 대로 사업소득을 초과하여 사업경비를 지출할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러나 순영업손실을 환산할 때 허용되지 않는 공제가 있으므로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공제되는 각종 사업·투자경비, 개인경비 그리고 다양한 공제 중에서 다음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 우선 이중 환산을 피하기 위하여 이월받은 영업손실이 해당 과세연도 순영업손실을 결정할 때 제외된다. 두 번째로, 인적공제도 사업용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세 번째로, 항목별 공제 등 비사업용 공제가 비사업용 소득에서 공제되고 남은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에 추가되어야 한다⁴⁷⁵⁾. 만약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이용하

473) 부부합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474) 다만 손상이나 도난으로 인한 손실과 농업에서 발생한 일부 손실은 각각 3년과 5년 소급할 수 있다.

475) 애초에 과세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고 비사업용 공제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역순

였다면 표준공제가 제외된다. 여기서 비사업용 소득이란 이자, 배당, 비사업용 순양도 소득 등을 의미하며 임금은 사업용 소득에 포함된다. 네 번째로, 1202조상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차익(50%)도 과세소득에 추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양도) 손실도 연간 3,000달러를 한도로 공제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되므로 과세소득에 이와 같은 자본손실을 추가해야 영업손실이 환산된다.

6) 대손금(Bad debt)

부실채권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공제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일정한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정당하고 강제적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채권자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증여가 아닌 선의의 채무거래이어야 하며 납세자의 의도가 증여인지 아니면 채무인지를 결정한다. 이 때 어음 등 채무 상환 확인서의 존재 여부, 상환계획, 합리적인 이자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대손금은 고객, 피용인, 공급자 등에게 대출금을 제공하여 발생한다. 또는 납세자가 보증을 한 대출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성립해야 대손금이 발생한다. 사업상 보증하고 합리적인 사례를 받았으며 채권이 가치를 상실하기 이전에 보증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어야 한다. 납세자가 채무를 대신 반환하면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로부터 부채를 상환받을 권리가 승계되면 이러한 권리가 가치를 상실할 때까지 공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또한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에 제공된 대출금이 증자로 판단되면 대손금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만약 고객에 대한 신용판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채권의 액면가액이 아니라 채권을 받았을 때 공정시장가격만 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구입하면 공제가 가능한 최대금액은 구입가격이다. 발생주의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이전에 이를 소득에 포함하였을 때만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주의 납세자는 외상 매출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대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한편 제3자의 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제3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부채를 상환해

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손상손실은 추가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공제는 위자료, 연금 불입금, 의료저축공제 등이 있다.

야 한다면 보증인은 이를 대손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증의 대가로 보증인이 현금이나 자산의 형태로 보수를 받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선의의 사업상 목적이나 정상적인 사업 관행으로 보증을 하면 이러한 조건이 면제된다.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공제하려면 채권자는 이를 장부가액으로 확정해야 한다. 대손금은 장부가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허용된다(Sec. 166(a)). 현금채무는 빌려준 금액이 장부가액이 된다. 하지만 전술한 대로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매출채권은 이를 공정시장가액으로 소득에 포함하였을 때 장부가액이 확립된다.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자산(서비스) 제공 시점에 매출채권으로 기록하므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금주의 납세자가 어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이를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상황이 어렵다는 증빙은 채무자의 파산, 사망, 반복적인 징수 실패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Reg. Sec. 1.166-2(b)).

사업용과 비사업용 대손금은 과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업용 채무는 납세자의 사업 혹은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 혹은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부채가 성립할 당시 혹은 부채가 상황이 불가능한 시점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이는 비사업용 대손금에 해당한다. 사업용 대손금은 일반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사업용 대손금은 단기 자본(양도)손실로 간주된다. 또한 비사업용 대손금은 채권이 완전히 가치를 상실해야 공제가 가능한 반면 사업용 대손금은 일부 금액만이 상황이 어려운 채권에 대해서도 공제가 허용된다.

즉, 개인 납세자는 비사업용 채권이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시점에 이를 채권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단기 자본손실로 인정해야 한다. 단기 양도손실에 대한 공제는 연간 3,000달러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되기 때문에 일반 공제에 비하여 혜택이 적다. 또한 일부 상황이 가능한 한 비사업용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사업용 채권에 대해서는 손실이 모두 조정된 총소득을 위하여 공제되고 부분적인 손실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공제 이후 대손금이 회수되면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6. 소득세 세율과 과세액

가. 납세자 신분

과세소득이 결정되면 과세표(tax table)에서 총세금(gross tax)을 찾을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연방소득세 과세구간은 6개로 10%, 15%, 25%, 28%, 33%, 35%의 한계세율이 각각 누진적으로 적용된다⁴⁷⁶⁾.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납세자의 신분(filing status)에 따라 다르다. 납세자 신분은 부부합산, 부부별도, 독신, 가장 그리고 생존 배우자의 5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존 배우자(surviving spouse)는 부부합산과 같은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dependent)는 독신자로 처리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빠르게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 신분은 부부별도⁴⁷⁷⁾, 독신, 가장 그리고 부부합산과 생존 배우자이다. 즉, 부부합산은 부부 소득을 합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476) 한계세율은 2011년 이후 15%, 28%, 31%, 36%, 39.6%로 조정될 예정이다. 또한 전술한 대로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세 세율이 15%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5% 그리고 그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15%가 적용되는데 이 또한 2011년에 각각 10%와 20%로 환원될 예정이다.

477) 부부합산신고와 비교할 때 만약 한 배우자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보다 크게 많으면 별도신고가 불리하고 공제가 한 배우자에게 치우쳐 있으면 별도신고가 유리하다.

〈표 1-20〉 납세자 신분에 따른 세율 및 과세구간(2000~2008년)

(단위: 달러, %)

한계세율	독신자	부부별도	부부합산	가장
2000:				
15	0~26,250	0~21,925	0~43,850	0~35,150
28	26,250~63,550	21,925~52,975	43,850~105,950	35,150~90,800
31	63,550~132,600	52,975~80,725	105,950~161,450	90,800~147,050
36	132,600~288,350	80,725~144,175	161,450~288,350	147,050~288,350
39.6	288,350 이상	144,175 이상	288,350 이상	288,350 이상
2001:				
15	0~27,050	0~22,600	0~45,200	0~35,250
27.5	27,050~65,550	22,600~54,625	45,200~109,250	36,250~93,650
30.5	65,550~136,750	54,625~83,250	109,250~166,500	93,650~151,650
35.5	136,750~297,350	83,250~148,675	166,500~297,350	151,650~297,350
39.1	297,350 이상	148,675 이상	297,350 이상	297,350 이상
2003:				
10	0~7,000	0~7,000	0~14,000	0~10,000
15	7,000~28,400	7,000~28,400	14,000~56,800	10,000~38,050
25	28,400~68,800	28,400~57,325	56,800~114,650	38,050~98,250
28	68,800~143,500	57,325~87,350	114,650~174,700	98,250~159,100
33	143,500~311,950	87,350~155,975	174,700~311,950	159,100~311,950
35	311,950 이상	155,975 이상	311,950 이상	311,950 이상
2007:				
10	0~7,825	0~7,825	0~15,650	0~11,200
15	7,825~31,850	7,825~31,850	15,650~63,700	11,200~42,650
25	31,850~77,100	31,850~64,250	63,700~128,500	42,650~110,100
28	77,100~160,850	64,250~97,925	128,500~195,850	110,100~178,350
33	160,850~349,700	97,925~174,850	195,850~349,700	178,350~349,700
35	349,700 이상	174,850 이상	349,700 이상	349,700 이상
2008:				
10	0~8,025	0~8,025	0~16,050	0~11,450
15	7,825~32,550	8,025~32,550	16,050~65,100	11,450~43,650
25	32,550~78,850	32,550~65,725	65,100~131,450	43,650~112,650
28	78,850~164,550	65,725~100,150	131,450~200,300	112,650~182,400
33	164,550~357,700	100,150~178,850	200,300~357,700	182,400~357,700
35	357,700 이상	178,850 이상	357,700 이상	357,700 이상

자료: IRS 1040 Return, 각 연도.

부부합산 신고(joint return)를 하려면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에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이어야 하며 양쪽이 모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소득을 미국측 배우자 신고서에 신고한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부합산이 가능하다(Sec. 6013(g)).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한편 부부일지라도 절세가 가능하다면 부부별도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미망인 등 생존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에는 부부합산 신고가 허용된다. 이후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부터 2년간은 생존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Sec. 2(a)). 그러나 이와 같은 자격을 유지하려면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이외 최소 1명의 피부양자가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고 주택비용의 절반 이상을 신고자가 부담했어야 한다.

가장으로서의 신고(head of household)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미혼 상태로 생존 배우자가 아니며 피부양자인 가족이 절반 이상의 기간을 같이 사는 주택의 가장으로서 최소한 가족유지비용⁴⁷⁸⁾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Sec. 2(b)). 단 피부양자인 부모는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혹은 같이 거주하는 미혼 직계 자녀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피부양자일 필요가 없다. 가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은 부부합산이나 생존 배우자보다 빠르게 증가하지만 독신자보다는 느리게 증가한다.

별거중인 배우자(abandoned spouse)는 최근 6개월간 상대 배우자와 별거 상태로서 반년 이상 같이 사는 피부양자와의 가족유지비용 중 절반 이상을 납세자가 부담하였으면 가장으로서 신고가 허용된다(Sec. 152(e)).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별거 납세자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부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생존 배우자가 아니며 가장도 아닌 미혼자는 독신의 자격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독신자는 다른 미혼 납세자보다 더 빠르게 누진과세된다.

불로소득⁴⁷⁹⁾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세상 특별관리를 받는다⁴⁸⁰⁾. 과거 고소득층이

478) 가족유지비용은 임대료, 주택대출이자과 보험료, 재산세, 유지관리비, 보험료, 주택에서의 식사비용, 전기료 등을 포함하며 교육, 의복, 의료,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Reg. Sec. 1.2-2(d)).

479) 불로소득은 배당, 과세대상 이자, 자본이득, 임대료, 로열티 등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을 의미한다(Sec. 1(g)(4)).

자녀나 기타 피부양자에게 자신의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피부양자가 납세자로 소득신고를 할 때 표준공제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부모보다 낮은 한계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네 가지 조항이 피부양자의 소득세 신고에 적용된다. 첫째로, 피부양자는 자신의 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피부양자가 신고할 때 허용되는 표준공제는 900달러와 피부양자의 근로소득+300달러 중에서 더 많은 금액으로 제한된다⁴⁸¹⁾. 세 번째로, 19세 이하 자녀가 이자와 배당 그리고 자본소득 배당금 이외 다른 소득은 없는 가운데 총소득이 9,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자녀의 불로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자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Form 8814, Sec. 1(g)(7)). 그러려면 자녀의 납세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18세 이하 자녀⁴⁸²⁾의 불로소득이 1,800달러 이상이며 이를 부모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불로소득에 대하여 부모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순불로소득(net unearned income) 중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소득은 부모의 한계세율을 적용받아 소득세가 결정되고 나머지 불로소득은 자녀인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소득세가 결정된다(Form 8615, kiddie tax). 이 때 자녀의 세금은 다음 3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① 일반적인 자녀의 과세소득 산정(표준공제는 근로소득+300달러) ② 순불로소득 = 불로소득 - 1,800달러(법정공제) 혹은 (900달러+불로소득 창출과 직접 관련된 항목별 공제액) 중 큰 금액 ③ 자녀의 총세금 = 순불로소득×부모의 한계세율 + (과세소득 - 순불로소득)×자녀의 한계세율⁴⁸³⁾.

한 예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550달러를 벌고 배당소득이 2,800달러면 총소득은 4,350달러이며 따라서 표준공제 1,850달러(근로소득+300달러)를 제외한 과세소득은 2,500달러이다. 두 번째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순불로소득은 배

480)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Pub. 929, IRS 참고.

481) 물론 이러한 자녀의 표준공제가 일반적 표준공제액인 \$5,450보다 많을 수는 없다.

482) 학생의 경우 24세 이하를 의미한다. 2006년 이전에는 1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되었다.

483) 따라서 법정 및 표준공제로 인하여 자녀의 불로소득이 \$1,700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모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소득 2,800달러에서 법정공제 1,800달러를 제외한 1,000달러이다. 여기서 순불로 소득 1,000달러는 부모의 양도세율 10%가 적용되어 세금이 100달러⁴⁸⁴⁾가 되고 자녀의 과세소득에서 순불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자녀의 한계세율을 곱한 150달러 ($0.1 \times (2,500 - 1,000\text{달러})$)를 합하면 과세금액 250달러가 결정된다.

현재 배당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하여 저율과세되고 있다. 즉, 장기보유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해당 납세자가 25% 이상의 과세구간에 속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10%나 15%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낮은 세율은 앞서 논의된 자녀세금(kiddie tax)에도 적용된다.

세율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물가(cost of living)와 연계되어 있다(Sec. 1).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어도 명목소득이 부풀려져 세금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부 소득에 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소득세는 재정 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지만 소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과거 다양한 소득세 면제와 공제조항(tax shelter)으로 인하여 상당수 고소득층의 납세자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발생함에 따라서 1969년 미국 의회는 모든 납세자가 최소한의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게 되었다. 최저한세는 면제소득이 부부합산의 경우 62,550달러(독신 42,000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대다수 납세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최저한세가 물가상승률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상당수 중산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최저한세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처음 도입될 당시 최저한세는 정상적인 납세의무액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였다(add on minimum tax system). 이후 1978년 현대적 개념의 최저한세(AMT, alternative minimum tax)가 도입되었다. 현행 최저한세는 정상 소득세에 추가되는

484) 물론 실제로는 순양도소득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산정은 복잡하다.

세금이 아닌 별도로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납세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소득세 납부액과 최저한세 체계하에서 산출된 잠정 소득세(TMT)와 비교하여 그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최저한세는 개인 납세자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파트너십 그리고 각종 유산 및 신탁기금에 적용된다. 개인 납세자는 Form 6251, 주식회사는 Form 4626을 이용하여 최저한세를 산정한다.

1) 최저한세 산정방식

최저한세를 산정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한다(Sec. 55(b)(1)): 우선 정상적으로 산출된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내국세법 57조상의 과세상 우대항목(tax preference)과 부양자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합한다. 여기에다가 항목별 공제 중 정상 과세소득과 달리 최저한세에서 제한되는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최저한 과세소득(AMTI)을 구한다⁴⁸⁵⁾. 이는 최저한세에서는 인적공제와 표준공제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연후 최저한 과세소득에서 법이 허용하는 면제소득을 제외하고 나면 최저한 과세표준(AMT tax base)이 된다. 이러한 과세표준에 최저한세 세율을 곱하면 잠정 최저한세(TMT)⁴⁸⁶⁾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인적 세액공제와 정상 소득세 납부세액을 제하면 최저한세(AMT)가 된다⁴⁸⁷⁾.

485) 표준공제를 하는 납세자는 표준공제액을 추가한다.

486) Temporary Minimum Tax.

487) 물론 이렇게 산출된 잠정 최저한세가 일반소득세보다 적으면 일반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표 1-21〉 최저한세(AMT) 산정방식

정상적 과세소득(taxable income)
+ 과세상 우대항목(tax preference items)
+ 인적, 부양자공제(personal, dependency exemption)
+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
<u>± 조정항목(항목별 공제항목에 대한 최저한세상의 제한 등)</u>
최저한 과세소득(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u>- 면제소득(부부합산: \$62,550, 독신 \$42,000, 부부별도신고 \$31,275)</u>
최저한 과세표준액(Alternative Minimum Tax Base)
 잠정 최저한세 = 과세표준액 × 최저한세 세율(\$175,000 이하 26%, 초과분 28%)
<u>- 정상 소득세</u>
최저한세(AMT)

주: 면제소득은 부부합산의 경우 최저한 과세소득이 \$150,000(독신 \$112,500)을 초과하는 금액의 25%만큼 감소.

면제소득은 신고자의 신분에 따라 다른데 부부합산 62,550달러, 독신자 42,000달러 그리고 부부별도 신고는 31,275달러이다⁴⁸⁸⁾. 그러나 최저한 과세소득(AMTI)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상기 면제소득은 일정금액 줄어든다. 즉, 부부합산의 경우 최저한 과세소득이 150,000달러(독신 112,5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5%를 면제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 최저한세 과세표준이 17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26%, 175,000달러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 28%의 한계세율이 적용된다⁴⁸⁹⁾.

원래는 면세되지만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내국세법 57조상의 과세상 우대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 이전에 사용이 개시된 부동산 감가상각에서 조기원가 회수제도의 사용으로 정액 감

488) 이는 2006년 기준으로 2007년에는 2003년 이전 면제소득 기준(부부합산 \$45,000, 독신자 \$33,750 그리고 부부별도 신고 \$22,500)으로 환원될 예정이지만 의회가 이를 연장하고 있다.

489) 순양도소득 최저한 세율은 원래 20%, 10%였지만 부시 행정부에서는 일반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15%, 5%가 적용된다.

가방식에 따른 상각금액을 초과하는 상각금액 둘째,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이 아닌 민영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면세 이자소득 셋째,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모상각, 일부 중소기업 주식(small business stock) 상각에 따른 양도소득 면세액(7% 양도소득, Sec. 1202).

2) 최저한세 조항목

정상적인 과세소득에서는 제외되지만 최저한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에는 항목별 공제, 이연된 소득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조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최소한 과세표준은 정상적인 과세소득보다 많다. 우선 항목별 공제로서 최저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타 공제, 지방정부 소득세와 재산세 등이 있다. 또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 납세자는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최저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상해손실과 의료비(조정된 총소득의 10% 이상금액), 기부금(조정된 총소득의 20% 이상은 적용되지 않음)과 일부 자격이 있는 주택대출이자와 일부 이자비용(최저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투자소득 금액의 한도), 도박손실 등이 있다.

소득과 경비의 인정 시점이 회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과세가 이연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여 소득인정과 공제를 정상적인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보다 빨리 해야 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사용이 시작된 개인자산의 경우 조기원가 회수제도상의 상각금액과 150% 정률상각법에 따른 상각 금액의 차이를 그리고 1986~1998년 사이에 사용이 개시된 부동산의 경우 정액상각법에 따른 상각 금액의 차이를 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연구실험비도 비용 처리된 금액과 10년간 상각했을 때 금액의 차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Sec. 56(b)(2)). 한편 최저한세에서 인정되는 세액공제는 해외소득 세액공제와 자녀 부양, 노령자, 장애인, 입양비용, HOPE과 평생교육, 자녀세액공제 등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인적공제로 한정된다.

납세자가 최저한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때 최저한세를 공제받을 수도 있다(AMT Credit). 이는 과세소득의 조정으로 최저한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그 이후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과거에 납부한 최저한세를 일반소득세에서 감해주는 것이다(Sec. 53).

다. 자영업자⁴⁹⁰⁾ 고용세(Self-Employment Tax)

대부분의 개인 납세자는 근로자로서 고용세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는 연방 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중 근로자 부담을 임금소득에서 원천징수하고 동일한 금액을 고용주 부담으로 납부한다. 반면 자영업자는 사회보장세가 적용되지 않는 대신 자영업 고용세가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순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Schedule SE, Form 1040). 자영업 고용세는 개인 사업이나 독립 사업을 하는 사람⁴⁹¹⁾으로 고용되지 않고 자기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위한 사회보장세이다.

자영업자는 자가 고용으로 인한 순소득(net earnings)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Sec. 6017). 자영업이란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 등 독립 계약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⁹²⁾. 이외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정상적인(원천징수된) 사회보장세 이외에 사업소득에 대하여 고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은 개인 사업을 통한 순소득 이외에도 과세 연구보조금과 파트너십 배당소득 등이 포함된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 등도 자영업 고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들 중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에 납부한 사회보장세로 자영업 고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영업 고용세 세율은 총 15.3%인데 이 중 12.4%는 노령·불구 등에 대비한 사회보험세(OASDI,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로서 최대 97,500달러의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나머지 2.9%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의료보험세(Medi-care taxes)에 해당한다. 이에 비하면 근로자는 회사가 사회보장세의 절반을 대신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

490) 자영업자란 개인 사업자나 독립 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91)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란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을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도급업자, 계약업자 등 대중에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피용인(employee)과 달리 서비스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대금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 방법에 대해서는 통제받을 필요가 없다.

492) 미국과 사회보장협약을 맺지 않은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미국 시민도 고용세를 납부한다. 이외에도 외국정부나 국제단체에 고용된 미국시민이 미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는 7.65%로 제한된다. 그 대신 자영업자는 고용세 절반 즉 순소득의 7.65%를 조정된 총소득을 산정할 때 사전공제할 수 있다(Sec. 164(f)).

고용세의 과세소득인 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활동을 통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개인사업자, 파트너, 농부 등 사업 영역에 따라 Form 1040에 제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총소득을 결정한다. 연후 순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 방식과 농업용 방식 그리고 농업용이 아닌 선택방식의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후자는 사회보장이나 부양자 등의 공제를 받고 싶을 때 이용한다. 일반 방식은 자영업 고용세 절반을 공제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을 0.9235로 곱하여 순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7. 소득세 과세행정

가. 소득세 신고 추이

2007년 현재 개인소득세 신고건수는 약 1억 3,847만건에 달한다. Form 1040은 주로 항목별 공제를 위한 표준적인 소득세 신고서이고 Form 1040A나 Form 1040EZ는 표준공제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신고서이다.

〈표 1-22〉 소득세 유형과 양식별 신고서 수(1975~2007년)

(단위: 천개, %)

신고서/양식 유형	연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2005	2006	2007
개인소득세	84,027	93,196	99,704	112,596	116,467	127,657	131,298	133,023	135,197	138,471
Forms 1040, 1040A 1040EZ, and 1040PC	(99.86)	(99.85)	(99.82)	(99.74)	(99.65)	(99.56)	(99.45)	(99.44)	(99.43)	(99.46)
서면신고	(99.86)	(99.85)	(99.82)	(96.01)	(89.51)	(71.83)	(52.67)	(47.97)	(45.25)	(41.79)
전자신고	N/A	N/A	N/A	(3.73)	(10.14)	(27.73)	(46.79)	(51.47)	(54.17)	(57.67)
영업신고	(11.99)	(12.24)	(14.18)	(14.36)	(15.51)	(15.16)	(16.36)	(16.78)	(17.16)	(17.22)
Schedule C or C-EZ	(8.85)	(9.60)	(11.80)	(12.57)	(13.87)	(13.76)	(15.06)	(15.51)	(15.92)	(16.02)
Schedule F	(3.13)	(2.64)	(2.38)	(1.80)	(1.63)	(1.39)	(1.30)	(1.27)	(1.02)	(1.21)
비영업신고	(87.88)	(87.61)	(85.65)	(85.38)	(84.15)	(84.40)	(83.09)	(82.66)	(82.26)	(82.24)
Forms 1040C, 1040NR, 1040PR, and 1040SS	(0.14)	(0.15)	(0.18)	(0.26)	(0.35)	(0.44)	(0.55)	(0.56)	(0.57)	(0.54)
법인소득세	2,133	2,676	3,437	4,320	4,818	5,470	6,018	6,165	6,358	6,624
Form 1120	(82.66)	(79.06)	(70.76)	(54.05)	(45.60)	(39.52)	(34.35)	(32.65)	(31.61)	(30.04)
Form 1120A	N/A	N/A	(5.81)	(7.69)	(6.62)	(4.49)	(3.57)	(3.42)	(3.08)	(2.82)
Form 1120S	(17.22)	(19.74)	(21.44)	(35.56)	(44.85)	(52.78)	(41.94)	(60.26)	(61.50)	(62.74)
기타	(0.12)	(1.20)	(1.99)	(2.70)	(2.92)	(3.20)	(3.54)	(3.67)	(3.82)	(3.99)
파트너십 Forms 1065 and 1065B	1,133	1,402	1,755	1,751	1,580	2,067	2,546	2,720	2,935	3,147
유산 및 신탁기금 소득세, Forms 1041 and 1041S	1,564	1,882	2,125	2,681	3,191	3,529	3,722	3,699	3,751	3,730
면세단체	404	443	454	487	572	699	807	819	839	879
Forms 990 and 990EZ	(85.83)	(81.92)	(80.49)	(73.80)	(70.97)	(66.04)	(66.02)	(65.59)	(65.20)	(64.39)
Form 990-PF	(7.33)	(7.48)	(7.05)	(9.17)	(8.96)	(10.01)	(10.62)	(10.70)	(10.61)	(10.24)
Form 990-T	(4.88)	(5.31)	(5.77)	(8.02)	(8.70)	(7.52)	(7.15)	(7.74)	(8.46)	(10.69)
Forms 990C, 4720, and 5227	(1.96)	(5.29)	(6.69)	(9.01)	(11.37)	(16.44)	(16.23)	(15.95)	(15.73)	(14.79)
고용세	24,738	26,387	27,409	28,911	28,655	28,841	30,464	31,058	30,804	30,717
Forms 940, 940EZ, 940PR	(16.78)	(17.82)	(17.56)	(18.57)	(19.13)	(18.94)	(18.90)	(19.11)	(19.63)	(19.99)
Forms 941, 941PR/SS/M	(68.82)	(71.45)	(74.08)	(74.82)	(77.54)	(79.37)	(79.69)	(79.55)	(79.05)	(78.76)
Forms 943, 943PR	(1.85)	(1.60)	(1.46)	(1.33)	(1.24)	(1.06)	(0.88)	(0.85)	(0.84)	(0.81)
기타	(12.55)	(9.13)	(6.91)	(5.28)	(2.09)	(0.63)	(0.52)	(0.49)	(0.48)	(0.44)

자료: IRS Data Book, FY 2007, Publication 55b.

이외 법인세 신고는 2007년 기준으로 660만건, 유산 관련 소득신고는 370만건 그리고 고용세 3,070만 건에 달한다. 한편 파트너십의 소득신고는 310만건이다. 미국의 경우 전자신고가 처음 도입된 1990년 이래 전자신고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

다. 2007년 당시 전체 신고에서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7.7%로 서면신고의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나. 신고와 납부

1) 소득세 신고와 납부

(a) 신고납부원칙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미국 국내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소득도 신고해야 한다. 이 외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독신자로서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elf assessment). 그러나 전술한 대로 근로소득, 연금 등은 원천징수되고 자영업자 소득, 거래 및 영업소득, 이자 그리고 배당 등은 추정 세금을 매 분기에 납부하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산이 이루어진다(Sec. 3403).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며 추정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된다(Sec. 6654).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고용주가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고용주에게 있다. 그러나 이외 소득의 경우 개인 납세자가 세금을 추정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특히 임금 이외 상당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분기별로 같은 금액의 추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납세자는 전년도 조정된 총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사람과 총소득이 그 이상인 납세자로 구분되어 이전연도 납부세액의 100%(110%)와 금년 납세의무액의 90%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추정한다(Sec. 6654).

이와 반대로 일정 수준 이하의 총소득⁴⁹³⁾을 창출한 사람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는데 그 기준은 납세자 신분(filing status)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보면 65세 이하 독신

493)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거주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현금, 재산, 상품, 서비스, 해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과세되는 총소득(gross income)을 말한다(Sec. 6012(c)). 해외소득은 납세자가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 이외 동거하면서 부부별도 신고를 하는 납세자를 제외하면 사회보장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자의 경우 소득이 8,750달러 이상이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65세 이하 부부의 경우 소득이 17,5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부부별도 신고에 있어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이 3,400달러를 넘으면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총소득이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총소득이 낮아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가 있다. 이러한 납세자는 사전에 고용주로부터 근로장려 세액공제(EIC)를 받은 사람과 순자영업 소득이 400달러 이상인 사람 그리고 사회보장세와 최저한세 신고나 소득세 환수가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표 1-23〉 납세자 신분별 소득신고가 필요한 기준 소득(2007~2008년)

(단위: 달러)

신분	나이	총소득	총소득
독신	65세 이하	8,750	8,950
	65세 이상	10,050	10,300
부부합산	65세 이하(양 배우자)	17,500	17,900
	65세 이상(한 배우자)	18,550	18,950
	65세 이상(양 배우자)	19,600	20,000
부부별도	나이 상관 없음	3,400	3,500
가장	65세 이하	11,250	11,500
	65세 이상	12,550	12,850
자녀가 있는 미망인	65세 이하	14,100	14,400
	65세 이상	15,150	15,450

자료: *Your Federal Income Tax*, Pub. 17, IRS, US.

소득규모와 신고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가에 따라 납세자는 1040, 1040A 그리고 1040EZ 신고서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납세자가 Form 1040을 이용하지만 과세소득이 10만달러 이하인 독신자나 부부가 부양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가장 간소화된 신고서식인 Form 1040EZ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Form 1040EZ를 사

용하는 납세자는 표준공제 이외 다른 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고 소득도 근로 소득과 장학금 그리고 1,500달러 이하의 이자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없다. 이외 개인은퇴연금(IRA) 공제 등 소득 조정이 없어야 하며 근로장려 세액공제 이외 다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Form 1040A는 Form 1040EZ보다 더 복잡한데 이 서식을 활용하여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Form 1040A을 이용하려면 과세소득이 10만달러 이하로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고 소득은 임금, 이자, 일반 주식배당, 양도차익 배당금, 실업급여, 연금 등 이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안된다. 또한 소득의 조정은 교육비, 개인은퇴연금, 학자금 대출과 학비 공제 외에 할 수가 없다. 이 밖에 전술한 간소화된 양식을 사용할 수 없는 납세자는 Form 1040을 사용하여 소득신고를 한다. 특히 과세소득이 10만달러 이상이거나 항목별 공제를 할 납세자는 Form 1040을 이용해야 한다. 고용주가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납세자도 Form 1040을 사용하여 신고한다.

한편 소득세 신고를 수정하거나 납부세액을 변경할 때에는 Form 1040X를 이용한다. 수정신고는 소득세 신고를 한 후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하고 2년 가운데 늦은 날짜지 할 수 있다(Sec. 6501(a), (b)). 따라서 초과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신청도 이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단, 대손금이나 증권이 휴지화된 경우에는 7년이 기한이다. 이외 순영업손실과 일반 사업공제 이월과 관련된 수정신고는 당해 항목의 과세연도로부터 3년이 기한이다.

(b)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

부모의 소득신고시 피부양자로 신고될 수 있는 자녀 등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의 나이와 근로 및 불로소득 규모에 달려 있다. 한 예로 <표 I-24>에서 보듯이 만약 어떤 부양자가 65세 이하이고 불로소득은 없는 가운데 근로소득이 5,450달러 이하면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이를 초과하면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⁴⁹⁴).

〈표 1-24〉 자녀 및 부양자의 소득신고가 필요한 기준 소득(2007~2008년)

(단위: 달러)

근로소득		불로소득	
독신		독신	
65세 이하	5,450	65세 이하	900
65세 이상 또는 맹인	6,800	65세 이상 또는 맹인	2,250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8,150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3,600
혼인		혼인	
65세 이하	5,450	65세 이하	900
65세 이상 또는 맹인	6,500	65세 이상 또는 맹인	1,950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7,550	65세 이상 그리고 맹인	3,000

자료: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Pub. 929, IRS, US.

구체적으로 보면 다른 납세자가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사람의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65세 이하 독신자로서 불로소득이 900달러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표준 공제액(5,450달러)을 초과하는 사람 혹은 총소득이 900달러 그리고 근로소득을 300달러와 합한 금액 중 큰 금액보다 많은 사람은 소득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65세 이상 독신자로서 불로소득이 2,250달러보다 많거나 근로소득이 6,800달러보다 많거나 혹은 2,250달러와 근로소득을 1,650달러와 합한 금액보다 총소득이 더 많으면 신고해야 한다. 만약 독신이 아니고 결혼을 한 피부양자라면 65세 이하의 경우 상기한 것처럼 세 가지 경우 이외 총소득이 5달러 이상이고 배우자가 별도 신고를 하면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피부양자도 신고해야 한다. 이외 65세 이상 결혼한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는 소득금액이 약간 조정된다⁴⁹⁵⁾.

494) 이 밖에 전술한 대로 소득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거나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거나 등의 이유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신고를 할 수도 있다.

495) 즉, 불로소득이 \$1,900보다 많거나 근로소득이 \$6,400보다 많거나 혹은 \$850과 근로소득 \$5,350 중 더 큰 금액과 \$1,050을 합한 금액보다 총소득이 더 많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총소득이 \$5 이상이고 배우자가 별도 신고를 하면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면 피부양자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보듯이 근로소득은 없지만 불로소득이 900달러 이상이면 피부양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9세 이하의 자녀⁴⁹⁶⁾가 근로소득 없이 9,000달러 이하의 배당 및 이자소득(양도소득 포함)이 있으며 원천징수한 세금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모는 자녀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신고할 수 있다(Form 8814)⁴⁹⁷⁾. 이 밖에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공식에 의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어린 자녀 등의 경우 부모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어도 된다. 만약 자녀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모가 이에 대한 책임을 있을 수 있다.

피부양자로 신고될 수 있는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신고시 900달러 혹은 근로소득에 300달러를 합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표준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단, 후자의 경우 신청금액이 일반 표준공제(2007년 5,450달러)보다 많을 수는 없다. 부모 등 다른 납세자가 피부양자로 신고할 수 있으면 해당 피부양자는 실제로 부모가 피부양자로 신청하는 사실과 관계없이 본인이 소득신고를 할 때 자신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결혼한 피부양자의 경우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하면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고 외국인 신고자도 마찬가지이다.

(c) 납세의무

원래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배우자나 양수인(transferee)이 이차적인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배우자가 모든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이 있으며 따라서 각각의 배우자가 잠재적으로 납세의무액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다(Sec. 6015). 그러나 만약 한 배우자가 강제적으로 다른 배우자로 하여금 합산신고를 서명하게 만들면 합산신고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부부합산 신고에서 한 배우자의 오류신고로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 배우자가

496) 학생의 경우 24세 이하임.

497) 18세 이하의 자녀가 \$1,800 이상의 불로소득이 있고 이를 부모가 자신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자녀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불로소득의 일부가 자녀 본인이 아닌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Form 8615). 2006년 이전에는 그 기준이 각각 14세와 \$1,700이었다.

이러한 결손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주변 상황과 사실을 고려할 때 연대책임이 불공평하면 무고한 배우자의 책임이 전부 혹은 일부 면제될 수 있다(*innocent spouse relief*). 단, 해당 배우자는 국세청의 세금 징수가 개시된 후 2년 내에 이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Reg. Sec. 1.6012-1(a)(5)). 경감세액의 규모는 무고한 배우자의 인지 정도에 달려 있다. 무고한 배우자가 세금 결손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액의 일부만 경감된다.

또한 부부합산의 경우 납세자 각각의 과세항목에 따른 결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비례책임(*proportional liability*)도 가능한데 이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부부합산 신고자가 국세청의 세금 징수가 개시된 후 2년 이내에 비례책임을 선택하고 이를 신청한 당시 이혼 혹은 별거중이며 부부가 그 이전 12개월간 같이 거주하지 않았으며 비례책임을 선택한 배우자는 결손 사안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어야 한다. 해당 배우자는 자신이 비례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신청하기 직전에 배우자 사이에 고의적인 자산양도가 발생하면 비례책임은 무효화된다.

이외 내국세법 6901조는 납세자 이외에 납세의무가 있는 개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산의 양수인(*transferee*)과 대리인(*fiduciaries*)이다. 양수인은 피증여자, 상속인, 유산 수령인, 부동산 수증자(*devisee*), 상속권자, 해산된 주식회사의 주주, 재조직 당사자 등이다⁴⁹⁸). 대리인은 유산의 집행인이나 관리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들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소득을 창출한 사람이나 증여를 한 사람 등의 양도인에게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다.

(d) 개인의 자료보존 의무

사업체를 영위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는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국세청이 정확한 세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하면 된다. 따라서 소득과 경비에 대한 기록으로 수표장부를 이용하여 금액, 비용 유형 등을 기록하고 매입과 판매 영수증 등으로 공제사

498) Reg. Sec. 301.6901-1(b).

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된다. 장부기록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개인 납세자도 소득신고서에 신고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 영수증과 기타 서류를 따로 유지해야 한다.

이들 자료는 해당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3년이지만 총소득의 25% 이상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은 6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신고나 미신고에 대해서는 조세시효가 없다. 이외 가치가 사라진 증권에 대하여 손실을 신청하면 시효는 7년이다.

장부기록 중 기본 자료는 소득, 경비, 투자와 관련된 자료로서 면세소득 자료를 포함하며 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도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투자에 대해서는 장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자료와 자산 처분시 손익자료가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명세표나 결제된 수표 등이 대금 지급의 증빙서류가 될 수 있지만 이외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 이름과 거래 일자 등도 보관해야 한다. 기초자료 외에 위자료, 손상손실, 자녀 세액공제, 기부금, 교육비, 주택대출금, 피용인 사업비용, 의료비, 연금 등에 대해서도 특정 자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소득 신고납부

(a) 신고납부

사업소득이 신고되는 방식은 소득주체에 따라 다르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을 Form 1040 양식 C에 다른 소득과 함께 개인소득세로 신고한다. 주식회사는 일반적인 유형인 C 법인과 도관업체(flow through entity)인 S 법인 주식회사로 구분된다⁴⁹⁹. S 법인은 과세 목적상 독립된 주체로 간주되지 않고 그 대신 주주가 소유 주식비율에 따라 회사 사업소득을 자신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S 법인의 양도손익과 기부금 등도 마찬가지로 개별 주주의 소득신고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S 법인은 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지만 비용을 제외한 잔여소득(일반소득)을 Form

499) S 법인으로서 간주되려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여야 하며 주주의 수가 7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120S에 신고하고 이외 각종 양도소득, 손실, 그리고 기부금도 보고해야 한다. 파트너십(Form 1065)도 소득신고에 있어서는 S 법인과 같이 간주되어 세금이 파트너에게 전가된다. 매년 약 300만개에 이르는 S 법인이 소득신고를 하며 파트너십은 200만개에 이른다.

주식회사와 파트너십은 개인 납세자와 달리 소득이 없어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S 법인의 신고기한은 개인이나 파트너십과 달리 매년 3월 15일이다. 그 이전에 연기를 신청하면 신고기한이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된다(Form 7004). 그러나 세금 납부는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세액에서 예납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연기 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자료신고가 필요한 지급유형과 최소금액은 <표 I-25>에 나타나 있다.

<표 I-25> 사업체 유형별 신고대상 세금

사업유형	세목	신고서 유형
개인 사업자	소득세	1040과 Schedule C, EZ(F: 농장사업체)
	자영업세	1040과 Schedule SE
	추정세액	1040-ES
	고용세	
	사회보장(의료보험)세와 원천징수	941(943: 농장 피용자)
	연방실업세	940
파트너십	고용세 예탁	8109(전자예탁시 사용하지 않음)
	연방소비세	다수
	소득신고	1065
	고용세	개인사업자와 동일
파트너십	연방소비세	다수
파트너	소득세	1040과 Schedule E
주식회사	자영업세	1040과 Schedule SE
	추정세액	1040-ES
		1120 혹은 1120-A
	소득세	1120S(S 법인)
	추정세액	1120-W와 8109
S 법인 주주	고용세	개인 사업자와 동일
	연방소비세	다수
	소득세	1040과 Schedule E
	추정세액	1040-ES

자료: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Form 583, IRS, 2008.

(b) 자료신고(information return)

사업을 하면서 대금을 지불하거나 지급받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료 신고상의 정보와 납세자의 소득신고를 비교하여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자는 자료신고서 복사본을 대금 지급자 등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가 다음의 기타 소득을 지급하면 Form 1099-Misc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① 변호사 등 피용인이 아닌 독립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600달러 이상을 지급한 경우 ② 부동산 업체 이외 사람에게 지불한 600달러 이상 임대료 ③ 600달러 이상의 상금 ④ 10달러 이상 로열티 사용료 ⑤ 어업용 보트 승무원에게 지급한 수수료. 이외 고정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5,000달러 이상의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물품을 제공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10달러 이상의 이자나 배당 등의 지급, 연금과 일부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다.

〈표 1-26〉 신고가 필요한 소득지급 유형과 양식

(단위: 달러)

지급유형	최소 신고의무금액	신고양식
연금	600	1099-R
급여	600	W-2
배당	10	1099-DIV
이자	600 ¹⁾	1099-INT
유가증권 매매	전부	1099-B
실업보험과 세금환급 등	10	1099-G
임대소득과 로열티 소득	600	1099-MISC
퇴직보험에서의 일괄지급	600 ²⁾	1099-R

주: 1) 은행과 주식회사는 \$10 이상 지급하면 신고해야 함.

2) 개인은퇴연금(IRA) 지급은 모두 신고해야 함.

(c) 개인 사업자 신고

법인화하지 않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는 중소기업체 소유주로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사업비용을 공제받는다(Form 1040, Schedule C). 이 밖에도 개인 사업자는 피용인과 자신의 고용 관련 세금 등 일련의 사업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 혹은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SSN)가 납세인명번호이지만 피용인이 있거나 연방소비세를 납부하면 고용주 인명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도 국세청(IRS)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개인소득세로 신고하는 것 이외에 소득이 400달러 이상이면 고용세(Self-Employment Tax)를 납부해야 한다(Form 1040 Schedule SE). 고용세는 고용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세이다⁵⁰⁰⁾. 만약 이들 세금이 1,00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추정세액을 연중에 분기별로 납부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한편 피용자와 관련해서는 임금 등에 대한 소득세 이외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원천징수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신고해야 한다(Form W-2). 또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방실업세(FUTA)도 신고 납부해야 한다.

500) 고용세 세율은 사회보장성 12.4%와 의료보장성 세금 2.9%를 포함한 총 15.3%이다. 단 사회보장세는 사업소득 중 \$97,500(2008년 \$102,000)에만 적용된다.

〈표 1-27〉 개인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 항목

세목	신고양식(Form)	신고기한
개인소득세	1040 및 Schedule C	4월 15일
자영업 고용세	Schedule SE	Form 1040과 함께 신고
추정세액	1040-ES	분기별 신고(과세연도별)
사회보장세(FICA)/의료보험세(Medicare)	941, 8109	분기별 신고(4월 30일)
종업원 소득세 원천징수	W-2	1월 31일
사회보장세 원천징수	W-3	2월 마지막 일
연방실업세(FUTA)	940, 940-EZ, 8109	1월 31일(분기별 납부: 월 30일 개시)
거래 관련 자료 신고	자료신고(1099, 5498)	신고서별
연방소비세	720, 2290	분기별

자료: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Form 334, IRS, 2008.

(d) 고액 현금거래의 신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12개월 이내에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이를 국세청과 금융범죄추적기관(FinCEN)에 신고해야 한다(Form 8300). 금융기관과 카지노 업체의 경우 다른 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한다⁵⁰¹⁾. 신고의 무자는 개인, 회사, 파트너십, 기금과 면세기관이며 한 번의 거래 혹은 관련거래에서 지급된 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서 거래란 재화, 서비스, 자산의 판매, 임대, 대출 등을 포함하며 현금은 미국달러화 이외 외국의 화폐, 머니오더, 여행자 수표 등을 포함한다⁵⁰²⁾. 분할 지급하더라도 1년 이내 총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신고대상이 된다. 그러나 거래가 미국 영토 이외에서 발생하면 신고의무가 없다. 보석금으로 1만달러 이상을 받는 법원서기도 신고의무가 있다.

501)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금융기관의 경우 FinCEN Form 104(이전 Form 4789), 카지노는 FinCEN Form 103(이전 Form 8362)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502) 다만 지정된 신고거래(내구소비재, 수집품과 유흥 및 관광)에 있어서 받은 현금과 머니오더 등은 대출이나 일반적 상거래 관행에 따라 분할납부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급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신고 의무자는 현금을 지급한 사람의 사회보장번호나 고용주신원번호(EIN) 등 납세자 신원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서 미국에서 수행하는 상거래와 관련된 소득이 없고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현금을 지급받고 난후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2만 5천달러 혹은 지급받은 현금 중 많은 금액(최대 10만달러)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악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왜곡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25만달러(주식회사 50만달러) 혹은(그리고) 5년 이내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⁵⁰³⁾.

다. 조세기일

1) 신고기일

주식회사 이외 개인과 기금 대리인은 총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신고할 의무가 발생한다(Sec. 6012(a)(2), 6031(a)). 개인, 유산신탁기금 대리인(fiduciaries) 그리고 파트너십의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이다(Sec. 6072(a))⁵⁰⁴⁾. 그러나 정규 C 법인 혹은 S 법인의 신고기한은 3월 15일이다. 납세자가 사전에 신청하면 최대 6개월간 신고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⁵⁰⁵⁾(Sec. 6081(a)). 2006년 이전에는 개인의 경우 Form 4688을 제출하면 사유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신고가 4개월 연기된다. 또한 Form 2688을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신고 연장이 가능한데, 다만 그 사유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06~2008년 사이에는 개인 납세자도 6개월 자동 연장이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Form 7004를 제출하여 자동적으로 연기를 받을 수 있는데 재무부 규정에 의하면 6개월간 신고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신고연기는 없다(Reg. Sec. 1.6081-3(a)).

503) Sec. 3571 of Title 18 of the U.S. Code.

504) 외국인의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15일까지 연장된다(Sec. 6072(C)).

505)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신고기일은 6월 16일이다.

2) 납세기일

신고기일의 연기가 납세기일의 연장을 의미하지 않는다(Sec. 6151(a)). 즉, 세금납부는 연기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최선으로 추정된 세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예납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연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Reg. Sec. 1.6081-4(a)(1)-(5)).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가산되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이 세금을 산정하도록 선택한 납세자⁵⁰⁶⁾는 국세청이 금액을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ec. 6151(b)(1)).

라. 세무조사

1) 심사기준과 심사유형

자발적인 신고에 따른 법규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은 먼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컴퓨터 추출방식(DiF, Discriminant Function System)⁵⁰⁷⁾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심사한다. 이 시스템의 주요 목적은 추가적인 과세를 할 수 있는 심사를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DiF 체제에서 추출된 신고를 국세청 요원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⁵⁰⁸⁾.

컴퓨터 통계방식은 국세청이 신고서 중 일부를 확률적으로 추출하여 신고항목을 모두 자세히 조사하여 해당 산업이나 직업에 대한 일종의 표준(norm)을 개발한 후 표준에 어긋나는 신고를 포착하는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super audit)⁵⁰⁹⁾. 이러한 특별 심사는 3년에 한 번씩 약 50,000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1995년 이

506) C 법인 혹은 S 법인 주식회사와 유산 및 그 신탁기금에 해당한다.

507) 동 시스템은 통계분석의 일종으로 오류 예측에 도움이 되는 신고서 항목을 대상으로 심사가 필요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분류하고 다수의 항목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 후 이를 하나의 수치로 통합하여 특정 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정에 대한 주요 고려요인으로 사용한다.

508) 최근에는 IRS가 산업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

509) 공식적으로는 Taxpayer Compliance Measurement Program으로 지칭된다.

후 예산 문제로 이를 중단한 바 있다. 그 대신 국세청은 2002년 특정 항목에 대한 심사 결과와 일반 심사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류가 있을 만한 신고서를 추출하는 새로운 통계모형을 도입하였다(National Research Program).

이외 신고자료의 누락 여부를 조사하기도 하며(Document Perfection Program) 납세자의 생활 수준과 신고소득을 비교하여 심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최근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 심사기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소득세 신고서와 대조해 보는 것이다(Information Matching Program). 한편 주기적으로 바뀌는 기준에 따라 특별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Special Audit Program). 이 밖에도 제3자가 제공한 정보 등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조사에 따른 추가 세금과 벌금의 최대 10%까지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Reg. Sec. 301.7623-1(c)). 평균적으로 보면 조사가 이루어진 신고서는 전체 신고의 약 0.5% 이하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사전에 세무조사 방식을 통보한다. 심사방식은 첫째, 우편을 통한 소득누락 사유, 증빙자료 요청 등 문답형식의 일상적인 조사(Correspondence examination)가 있다. 둘째, IRS 지역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실 조사(Office examination)는 중산층, 비사업소득과 소규모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를 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개시전 서면으로 조사날짜와 시간 그리고 준비해야 할 증빙서류가 통보되는데 사무실 조사는 대개 비공식적이며 세무 공무원이 법과 규정 테두리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 이러한 심사는 대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조사하기보다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종결된다.

현장조사(Field examination)는 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심사는 납세자의 주택, 사업장소 혹은 납세자의 담당 회계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지고 신고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후 세무요원은 보고서(revenue agent's report RAR)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 동의서(Form 870; a waiver of restrictions on assessment)를 작성한다. 이들 문서와 함께 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세청 문서가 납세자에게 보내진다(30-day letters). 납세자는 Form 870에 서명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등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는데 동의 사실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에 법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한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과거 2년 동안 최

소한 한 번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고 둘째, 이러한 조사가 납세액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special relief rule).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조사요원의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속한 합의중개 절차(Fast Track Mediation)⁵¹⁰⁾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와 상급자가 결과에 대하여 동의하면 Form 870에 서명을 한다. 동 신고서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 징수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효과가 있는데 다만 납세자는 추후 세금 환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Form 870에 서명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⁵¹¹⁾.

조사관이 전문성이 없는 상세한 분야의 경우 납세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국세청 본청에 자문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답변은 서면 형식(letter ruling)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Technical Advice Memorandum). 만약 그 내용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조사관은 이를 따라야 하며 국세청에 유리하더라도 조사관은 소송의 복잡함을 고려하여 납세자와 화해할 수 있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사안에 따라 150~50,000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고 납세자의 특정 거래(사안)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국세청 의견을 서면으로 구할 수 있다(letter ruling). 이러한 서면 판정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나 세금신고를 하기 이전에 납세자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자문메모(Technical Advice Memorandum)와 다르다. 또한 서면 판정은 일반에 공개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전례가 되지 않는다. 서면 판정은 어떤 거래의 잠재적 세금부담이 상당하고 확립된 규정이 없거나 법이 불명확할 때 유용하다. 국세청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10) 신속합의 절차는 제3자인 중개인이 납세자와 조사관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양측이 중개인의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다.

511) 조사 이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납세자는 이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납부 형태는 현금 예약이나 세금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납세자가 Form 870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당국은 납세액에 대한 국세청 의견과 납세자의 권리를 담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30-day letter). 조사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납세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Appeals Divi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세무조사가 현장조사이고 추가 세금, 벌금 및 이자가 25,000달러를 초과하면 이 기간에 정식으로 항의서(protest letter)를 제출해야 한다. 항의서에는 이의 내용과 근거자료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해당 법이나 판례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항의서 내용은 위증에 따른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3자가 대신 작성할 경우 대리인은 그 내용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25,000달러 이하면 간단한 서면 진술서로 족하다(small case request). 사무실 조사의 경우 추가 세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구두항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파트너십, S 법인 혹은 면세단체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서면으로 항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항소관(appeal officer)은 세무 조사요원과 달리 소송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나 법 해석이 애매하면 조사 보고서에 문제점이 없더라도 이의를 수용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은 사실관계와 법적 이슈에도 적용되어 한 예로 소송시 40%의 승소 확률이 있으면 해당 세액의 40%로 타협을 할 수 있다. 단, 중요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안(appeals coordinated issue)은 국세청의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상급자로부터 자문이나 동의를 받아 타협하여야 한다(Internal Revenue Manual 8776(14)). 항소관의 의견에 납세자가 동의하면 Form 870에 서명하며 만약 화해를 통하여 기존 부과금보다 세금이 감소하면 Form-AD를 작성한다. 후자의 경우 Form 870과 달리 추후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항소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또는 세무당국이 처음 통지한 이후 30일 이내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결손고지서를 보낸다(Statutory Notice of Deficiency, 90-day letter). 결손고지서에는 결손액과 그 사유가 명시되고 납세자가 발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체납액을 과세한다(Sec. 6213(a)).

3) 심판 소송

국세청 조사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결손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90일 이내에 조세법원(U.S. Tax Court), 지방법원(district court) 혹은 연방배상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납세자가 각 법원의 판례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납세자가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의 결정과 관련된 사실적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게 있다(Sec. 7491). 첫째, 납세자가 재판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credible evidence)를 제시하였고 둘째, 납세자가 내국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장부기록 보존과 사실증명에 충실하였고 셋째, 국세청의 증인, 자료, 회의나 면회 등에 관한 합리적 요구에 납세자가 협조하였고 넷째, 납세자가 자연인이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 법인이라면 순자산이 700만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협력이란 납세자가 통제하고 있는 자료와 사람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포함한다. 또한 납세자에게 열려 있는 모든 행정적 구제절차를 소진하였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세법원의 경우 소득세, 유산·증여세 그리고 연금과 자선단체 등의 소비세에 대하여 심의한다. 체납고지서가 사전에 발부되어야 조세법원 소송이 가능하며 체납고지서 발부 이후 9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조세법원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국세청과 계속 협의할 수 있다. 납세자가 제때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국세청은 부족세액을 과세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조세법원 대신 납세자가 선택한 지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일단 결손액을 납부해야 하고 법원에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세법원의 또 다른 장점은 연간 결손액이 5만달러 이하면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다만 소액심판 결정은 최종적이므로 항소할 수 없다.

지역법원이나 연방배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이전에 결손액을 먼저 납부하고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환급을 거부하면 거부통지서를 받은 이후 혹은 환급을 요청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짜 중 빠른 날짜에 납세자는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환급이 거부되고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두 법원 중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는 납세자가 결정하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적

게 신고하거나 벌금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연방배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누가 패소를 하든지 당사자는 순회법원(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조세법원이나 지역법원의 결정은 납세자의 관할 순회법원이 담당한다. 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주거지가 관할 기준이며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의 주된 사업장(혹은 본사)이 그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연방배상법원의 판정에 대한 항소는 납세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소와 관계없이 연방 항소순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서 납세자나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법원의 판정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조세소송을 심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4) 미납세액에 대한 이자율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록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어도 체납세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다. 다음의 네 가지 상황에 이에 해당한다(Sec. 6601(a), (b)(1)). 첫째, 소득세 신고와 세금납부를 기한이 경과된 후 하는 경우 둘째, 소득세 신고 연기를 신청하였지만 실제 세액보다 추정세액이 적어 추가납부가 필요한 경우 셋째, 제때 신고를 하였지만 세금을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넷째, 세무조사 후 납부할 세금이 추가된 경우.

내국세법 6621조에 따라 세금 미납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은 분기별로 연방 단기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주식회사가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방 단기금리에 3%포인트가 추가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1만달러 이상 미납액에 대하여 단기 연방금리에 0.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가 적용되지만 10만달러 이상의 과소납부액에는 만약 미납액을 일정 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방금리에 5%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러한 금리는 매일 복리로 계산된다.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 신고기일로부터 세금 납부일까지 계속 발생한다. 다만, 신고기일과 납세자가 기한 이내 신고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국세청이 미납 사실을 납세자에게 고지하지 못할 경우 이자가 유예된다⁵¹²⁾. 유예기간은

512) Sec. 6404(g).

18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시작하여 국세청이 미납 사실을 고지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까지 지속된다⁵¹³⁾. 두 번째로, 납세자가 Form 870을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이 세금 납부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납부 고지일까지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Sec. 6601(c)).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탁하면 이에 상당한 추가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면제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오류나 지체가 발생하면 이러한 오류 등이 비합리적인 경우에만 이자를 탕감해준다.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월별로 납부할 금액은 납세의무액과 납세자의 납세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분할납부는 그러나 잔존 납세의무액에 대하여 이자가 가산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세청이 세금을 모두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납세자와 협의하여 관련 세금과 이자를 탕감해줄 수 있다(Offer-in-Compromise).

마. 조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징수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납세자가 정부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신고를 늦게 한 사실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다⁵¹⁴⁾. 만약 신고기한보다 일찍 신고를 해도 그 시효는 신고기한으로부터 시작된다(Sec. 6501(a), (b)(1)). 따라서 3년이 경과하면 국세청이 추가로 세금 혹은 벌금을 부과할 수 없고 납세자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상당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경우 신고기한과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6년이 지나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substantial omission). 소득세의 경우 상당한 소득 누락이란 납세자 총소득의 25% 이상을 생략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Sec. 6501(e)). 만약 납세자가 사업을 영위하면 총소득은 총이윤이 아니라 총수입을

513) 이러한 유예는 세금신고를 정시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이외 신고서상의 벌금, 가산금이나 추가 세금이 있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위적 신고 또는 형사처벌 벌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14)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하여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은 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 혹은 (추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늦은 날이다(Sec. 6511(a)).

의미한다⁵¹⁵⁾. 시효 연장은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과다 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과 납세자가 합의하여 조세시효를 결정할 수도 있다(Sec. 6501(c)(4)). 만약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이의 신청을 원하거나 혹은 환급을 받으려면 시효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과 납세자가 합의하는 시효 연장은 유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에 적용된다. 시효가 다가오면 납세자는 시효 연장을 거부하거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시효 연장을 할 수 있다. 또는 시효 연장을 특정 시점에 한정할 수도 있다.

사기행위에 의한 신고(fraud)나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즉, 납세자가 세금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허위나 사기로 신고하거나 세금 회피를 위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하면 시효가 없다. 한편 형사처벌에 있어서 기소시효는 신고일이 아닌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며 따라서 그 동안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Sec. 6531).

바. 조세 징수

1) 체납 고지와 분할 납부 등

만약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 통지서(Notice of Tax Due and Demand for Payment)를 고지한다. 통지서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자 및 벌금과 과세 사유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국세청은 세금이 부과된 날로부터 10년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기한은 국세청이나 조세법원에 항소하는 동안 유예되며 국세청이 분할 납부를 고려하는 기간이나 납세자가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유예된다.

만약 체납액을 전부 납부할 수 없으면 납부 가능한 금액과 그 사실을 국세청에 알려야 한다. 납세자는 징수 정보 진술서(Collection Information Statement)를 작성하

515) Reg. Sec. 1.61-3(a).

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납세자 소득과 경비를 감안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의를 거쳐 분할 납부나 납세액 탕감(Offer-in-Compromise) 혹은 납세 연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분할 납부는 주로 월별로 동일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직장 임금이나 은행으로부터 매월 자동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매월 납부하는 금액은 체납액과 10년의 징수기간 동안 납세자가 갚을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 납세자는 또한 국세청과 합의하여 다른 분할 납부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잔액은 매일 이자가 적용되며 1개월마다 벌금이 부과된다. 체납액이 2,5000달러 이하이면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면 국세청에 Form 9465를 작성하고 신청해야 한다. 분할 납부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로부터 정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취특권 고지서(Notice of Federal Tax Lien)가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분할 납부에 동의하면 압류는 실행되지 않는다.

분할 납부를 할 수 없는 납세자는 국세청과 벌금을 포함한 세금에 대하여 탕감이 가능한지 협의할 수 있다(Offer-in-Compromise). 국세청은 일정 조건 아래 체납액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Pub.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 이러한 권한은 첫째, 부과세액의 정확성이 의문시 될 때 둘째, 체납세액이 납세자의 자산과 미래 소득보다 많아 징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셋째, 비록 미래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현재 경제적 곤란을 겪는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는 등 과세 행정의 효율성을 참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된 납세액은 징수 가능한 최소 금액(RCP, reasonable collection potential)⁵¹⁶⁾보다는 많아야 한다.

국세청과 체납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5번 이내의 분할 납부방식이나 2년 이내 납부방식 혹은 10년의 징수기간 동안 25개월 이상에 걸쳐서 납부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일시적으로 세금 징수를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분할 납부와 마찬가지로 가산금과 벌금은 계속 추가되며 압류 고지가 통보될 수 있다.

516) RCP는 실현 가능한 납세자의 부동산, 개인 자산과 미래 소득의 합을 의미한다.

2) 조세채무의 강제 징수

국세청이 체납 통지서를 보낸 이후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를 할 수 없는 이유나 강제 징수조치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이유를 통보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납세자의 은행계좌나 임금 혹은 재산 등에 대하여 담보 설정을 하거나 압류하는 등 강제 징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체납 고지서가 발부되고 납세자가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90일)이나 항소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강제 징수를 할 수 없다.

체납액의 강제 징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 담보권 설정 고지(Notice of Federal Tax Lien)는 체납액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 자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Sec. 6325). 즉, 정부가 채무자로서 납세자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행위로서 부동산 매매나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다른 채무자보다 먼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담보 설정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 통지서를 보낸 후 10일 이내에 납세자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담보권 설정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국세청이 납세자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음이 통보된다. 국세청은 담보 설정을 고지한 후 5일 이내에 이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는 재심이나 국세청 항고심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collection due process). 항고심에서 고지가 취소되지 않으면 항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조세법원 등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단 담보 설정이 통보되면 취소되지 않는 한 세금을 포함한 벌금 등 관련 금액이 모두 납부될 때까지 고지가 해제되지 않는다. 담보 고지는 납세자가 세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세금 납부를 위한 보증채권(bond)을 제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된다(Certificate of Release of Federal Tax Lien). 세금 부과 후 10년이 경과하고 국세청이 다시 제기하지 않으면 고지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담보가 설정된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고 해당 자산으로 담보된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자산에 관한 부분적인 담보설정 고지가 해제될 수 있다(Certificate of Discharge). 이 밖에도 고지를 취소할 때 세금을 더 빨리 납부할 수 있거나 납세자와 정부에게 모두 이익이 되면 담보 고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압류 고지가 나갈 수도 있다. 압류는 세금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 재산을 압류 및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Notice of Levy). 압류는 대개 체납 고지서 발부 이후에도 체납액 납부를 무시할 경우 최종 압류 고지서를 통보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시작될 수 있다. 압류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국세청 항소심에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항소심 심의 이후 30일 이내에 조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동차, 보트, 주택을 압류하여 처분하거나 납세자가 소유하였지만 제3자가 보유한 임금, 예금, 배당, 임대소득, 매출채권, 보험금 그리고 사회보장금 등도 압류 대상이 된다. 은행계좌의 경우 납세자가 압류 후 21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은행이 예금을 국세청에 보낸다. 매각 후 남은 잔금이 없어 체납액을 상환할 수 없는 자산의 경우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외 총자산가치가 7,720달러 이하인 가구와 가정용 개인용품, 일부 의류와 교육용 책, 총자산가치가 3,860달러 이하인 사업용 용구, 실업수당, 일부 연부금, 법원이 자녀부양경비로 지정한 임금, 임금 중 최소 면제액 등은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에 합의하거나 국세청이 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때 압류가 해제된다. 이외 보증채권(bond)을 제출하거나 압류 해제가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압류된 재산의 가치가 체납액을 상회하여 자산의 일부를 해제해도 세금 징수에 문제가 없으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압류자산의 판매는 그 사실을 신문 등에 공지하고 납세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10일이 지나면 개시된다. 경매금액은 해당 자산의 판매가격의 80%로 체납세액보다 상환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 채무를 제외한 금액이다. 압류자산의 판매대금은 우선 매출 원가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이 체납액에 적용된다. 체납액이 판매대금보다 많으면 잔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납세자에게 계속 부과된다. 부동산의 경우 매각된 이후 180일 이내에 납세자가 매각대금과 20% 이자를 매입자에게 지불하면 재매입할 수 있다.

사. 조세 관련 벌금과 처벌

조세 관련 처벌은 납세자와 세무사 등 신고서 작성자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내국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민사와 형사처벌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납세자가 회계나 신고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였을 때, 후자는 계획적 혹은 악의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된다.

민사상 처벌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⁵¹⁷⁾나 자신의 입장에 대한 신의 성실(good faith)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일부 사안의 경우 이를 소득세 신고서에서 미리 명기해야 한다(disclosure requirement). 납세자에게는 벌금 외에 이자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각종 벌금의 유형과 내용은 다음 <표 I-28>에 정리되어 있다. 벌금 외에도 세금 미납 등에 대하여 이자가 가산될 수 있다(Sec. 6621(a)). 또한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경우 국세청이 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면 이자를 가산해주지 않지만 이외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해주어야 한다(Sec. 6611(e)).

1) 미신고·미납 과실 벌금

(a) 미신고

신고기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하여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5%의 벌금이 부과된다(Sec. 6651(a))⁵¹⁸⁾. 벌금이 적용되는 세금은 납세의무액에서 원천징수금액과 기일까지 납부한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Sec. 6651(b)(1)). 만약 사기 등의 부정한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은 월 15%, 최대 75%로 증가한다⁵¹⁹⁾. 벌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해야 할

517) Reg. sec. 301.6651-1(c)(1)

518) 1개월 중 일부는 단 1일이라도 1개월로 간주되어 벌금이 부과된다.

519) 사기는 의도적인 미신고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목적으로 취한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합리적 이유로 인한 미신고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리적 이유는 납세자가 사업 관행상 정상적인 관심과 조심을 기울였으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Reg. Sec.

세금의 함수이지만 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minimum penalty).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는 납세자는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없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면 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고기일로부터 납부기일까지 이자가 붙는다(Sec. 6601(e)(2)(B)).

〈표 1-28〉 내국세법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금과 형벌

처벌사유	법조항	규정	번호 · 면제
납세자: 민사			
미신고	6651(a)	월 5%(최대 25%), 60일 이상 미신고: \$100, 100% 중 소액, 사기의 미신고: 15%/월, 75% 한도	합리적 사유
미납	6651(a)	월 0.5%(최대 25%)	합리적 사유
추정세액 미납(개인)	6654	결손에 적용되는 금리 부과(Sec. 6621)	비정상적 상황
추정세액 미납(회사)	6655	결손에 적용되는 금리 부과(Sec. 6621)	-
과실	6662(c)	과실에 의한 결손분에 20%	합리적 사유, 신의 성실
상당한 과소납부	6662(d)	상당한 과소납부분에 대한 20%	합리적 사유, 성실, 공표
민사 사위행위	6663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분의 75%	합리적 사유, 신의 성실
납세자: 형사			
고의적 납세기피 시도	7201	\$100,000(주식회사, \$500,000) 그리고/또는 최고 5년형	-
고의적 징세 등 기피	7202	\$10,000 그리고/또는 최고 5년형	-
고의적 납세/신고기피	7203	\$25,000(주식회사, \$100,000) 그리고/또는 최고 5년형	-
고의적 허위진술	7206	\$25,000(주식회사, \$100,000) 그리고/또는 최고 1년형	-
신고서 작성자: 민사			
축소 신고	6694(a)	\$250	합리적 사유, 성실, 공표
고의적 축소신고	6694(b)	\$1,000	-
신고사본 미제공 등	6695(a)	\$50(최대 \$25,000)	합리적 사유
수정신고 미제출	6695(e)	항목별 \$50(최대 \$25,000)	합리적 사유
고의적 부정확한 신고	6695(e)	항목별 \$50(최대 \$25,000)	-
과소신고 지원, 교사	6701(b)	\$1,000(주식회사, \$10,000)	-

주: 합리적 사유는 대개의 경우 고의적 과실이 아니어야 하며 신의 성실은 good faith를 의미함.
 자료: *Federal taxation 2008, Comprehensive*, Rhomas R. Pope eds, Prentice Hall 2008.

(b) 미납부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은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0.5%가 부과된다(Sec. 6651(a)). 일반적으로 납세의무는 신고기일에 발생하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기일을 연장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소득세 신고를 연기한 납세자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총납세의무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벌금이 면제된다(Reg. Sec. 301.6651-1(c)(3)). 월 0.5%로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의 경우 중 빠른 날짜부터 1%로 벌금이 증가한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고지하고 10일이 경과한 날과 국세청이 세금징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납부를 요청한 날.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 세금 미납에 따른 벌금보다 10배 더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경우 미신고와 미납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에 따른 벌금이 매월 5%를 초과하지 않도록 미신고에 의한 벌금에서 미납에 의한 벌금을 제외하고 미신고 4.5% 그리고 미납 0.5%의 벌금을 부과한다(Sec. 6651(c)(1)).

(c) 추정세액 과소 신고

임금 이외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분기별로 추정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정세액 과소신고에 따른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C 법인과 수동적 투자소득과 세액공제 환수를 신고해야 하는 S 법인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한 금액 등에 비하여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벌금이 없다. 이외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서 전년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Sec. 6654(e)).

벌금은 내국세법 6621조에 따라 연체 세금에 대한 이자와 같으며 분기별로 부과된다(Form 2210). 그러나 추정세액의 분기별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으며 그 대신 신고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이자가 붙는다(Sec. 6601(h)). 가산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각 분기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추정세액과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금액이다.

(d) 과실(negligence)

부정확한 신고나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더 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확성 관련 벌금에는 과실,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 혹은 심각한 오류 등에 대하여 20%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Sec. 6662(a), (b)). 우선 의도적인 사기는 아니지만 법적 의무에 관한 태만이나 경시 등으로 세금을 과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이러한 과실⁵²⁰⁾로 인한 결손세액에 대하여 2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과소 납부에 적용되는 이자가 과실에 따른 벌금에도 적용된다(Sec. 6601(e)(2)(B)).

미국 법에 의하면 과실은 납세자가 조심을 하지 않거나 무모하거나 고의적인 무시를 할 때 발생한다(Sec. 6662(c)).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careless). 무모함이란 법령이 존재하는지 납세자가 확인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며 고의적 무시란 법령이 존재하는지 알지만 이를 무시할 때 발생한다(reckless and intentional disregard). 만약 납세자가 자신이 취한 행동에 대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고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행동을 하였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Sec. 6664(c)).

(e)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substantial understatement)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중한 벌금이 부과된다. 내국세법에 의하면 신고세액의 10%나 5,000달러(C 법인 10,000달러) 중에서 더 큰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의 중대한 누락으로 간주한다(Sec. 6662(d)(1)). 이에 대한 가산금은 결손액의 20%이다. 또한 과실과 마찬가지로 과소 납부에 적용되는 이자가 신고기일부터 발생한다.

일부 신고 항목의 경우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실제 과소 납부한 세액과 누락한 소득세 신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납세자(담당 회계사)가 해당 항목의 세법상 대우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고 관련

520) any failure to make a reasonable attempt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RC.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세청에 통지하며 납세자가 취한 행위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세 누락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Form 8275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부착하면 국세청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조세법 처벌

(a) 민법상의 사기행위(civil fraud)

사기행위는 단순한 오류나 과실이 아닌 고의적인 기만행위로서 체계적이고 상당한 소득 누락, 가공의 공제 신청 그리고 이에 수반한 자료의 위조나 파손 등이 있을 때 국세청은 이를 사기행위(fraud)로 간주한다. 또한 조사요원에게 허위나 모순된 진술을 하면 고의성을 드러낸 것으로 취급된다. 납세자의 학력 혹은 사업 경험도 고의성 여부 판단에 기준이 된다.

사기행위에 대한 벌금은 사기행위로 인한 결손액의 75%이며 이자도 적용된다(Sec. 6663). 결손액의 일부가 사기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납세자가 사실과 다름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는 한⁵²¹⁾ 결손액 전부가 사기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벌금은 소득, 유산 및 증여세에 부과될 수 있고 이 경우 과실 등에 의한 다른 가벼운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b) 형법상 사기행위(criminal fraud)

민사 및 형사 사위행위는 사실을 오도하려는 납세자의 의도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책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민사상의 사기행위는 증거의 우열(preponderance of evidence)로 가려지지만 형사상의 사기행위는 합리적 수준의 의혹을 초월하는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가 필요하다(Sec. 7201~7216).

형사상 처벌에는 크게 세 종류의 처벌이 있는데 우선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고

521) preponderance of evidence.

노력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만달러(주식회사 50만달러)의 벌금과 혹은/그리고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Sec. 7201). 두 번째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고 2만 5천달러(주식회사 10만달러)의 벌금과 혹은/그리고 1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Sec. 7203). 세 번째로, 세금신고 등의 작성이나 제출에서 악의적으로 허위나 부정행위를 교사 혹은 지원하는 자에게는 최고 10만달러(주식회사 50만달러)의 벌금과 혹은/그리고 3년의 징역형이 적용된다(Sec. 7206).

3) 신고서 작성자 처벌

내국세법 6694~6696조는 회계사 등 세금신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시하고 있다. 6695조에 의하면 납세자에게 신고서 복사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신원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입장에서 세금을 과소 납부하면 250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신고서 작성자가 이와 같은 입장이 경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면 이에 해당한다. 만약 작성자가 무모하게 혹은 고의적으로 과소 신고하거나 법령을 무시하면 벌금은 1,000달러로 증가한다. 이 밖에도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이로 인하여 과소 신고를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 1,000달러의 벌금(주식회사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Sec. 6701).

재무성 회람 230은 국세청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을 대표하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⁵²²⁾. 동 규범을 위반하는 사람은 국세청 업무를 할 수 없거나 벌금 혹은 견책을 당할 수 있다. 이들은 고객이 연방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신고 오류 혹은 누락을 할 경우 즉시 고객에게 이를 수정할 방안을 제시하고 법 위반 시 그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고객과 국세청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확한 입장을 제공할 성실성 의무가 있다.

522) Treasury Department Circular 230.

8. 원천징수제도

가. 기본원칙

세금 신고는 자발적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그 당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한다(Sec. 3402)⁵²³⁾.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에는 고용주에 의한 원천징수제도(tax withholding)와 추정세액 납부제도(estimated tax payment)가 있다.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와 충분한 세금을 원천징수로 신고 이전에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추정세액을 납부한다⁵²⁴⁾. 특히 배당, 이자, 양도 그리고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추정세액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이들 제도를 통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록 환급을 받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용주는 임금 등에 대하여 소득세와 사회보장세⁵²⁵⁾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도 포함된다. 고용주가 원천징수업무를 외부에 계약해도 세금 신고 및 납부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피용자가 아닌 독립계약자 등에게 600달러 이상을 지급하면 이를 자료 신고해야 한다(Form 1099-MISC).

국세청이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⁵²⁶⁾에게 지급되는 임금, 보너스, 커미션, 해고 보상금, 연부금, 사회보장 지급금, 과세대상 부가급부 등 모든 보수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보너스, 커미션, 포상금, 초과근무수당, 해고보상금 등을 정상 임금과 함

523) pay-as-you-go system: 다만 농장 노동자, 가정부, 성직자, 18세 이하 신문 배달자, 1개월 보수가 \$20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원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농장의 경우 연간 현금 임금이 \$150 이상이거나 농장 총노임이 \$2,500 이상이면 원천징수해야 한다.

524) 후술하겠지만 원천징수된 세금과 세액공제를 제외한 세금이 최소 \$1,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을 증가했지만 이전 연도 납부세금보다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 혹은 추정세액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525) 연방소득세와 FICA 및 Medicare 사회보장세를 말하며 이외 고용주가 부담하는 연방 실업세(FUTA)도 신고 납부한다. FICA 세율은 \$102,000(2009년 \$106,800)을 한도로 피용자와 고용주에게 각각 6.2%가 부과되며 Medicare 세율은 소득제한 없이 1.45%가 각각 부과된다. 연방실업세는 \$7,000 임금의 6.2%이다. 다만 주정부 실업세를 납부하는 고용주는 5.4%를 연방실업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526) 시간제 근로자도 원천징수해야 한다.

께 지급하면 이를 합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들 보수를 따로 명시하여 지급하면 보조임금으로 간주하여 보수의 25%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임금 지급은 현금일수도 있고 재화, 숙박, 음식, 의복, 서비스 등 다른 형태일 수도 있다(비과세되는 부가급부는 제외). 일반적으로 현물로 지급된 임금도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 과세대상이 되지만 가사, 농장 그리고 고용주 사업 이외의 업무로 지급받는 현물 보수는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용자에게 지급한 사업경비는 그 성격에 따라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한 예로 피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서 명확한 계획(accountable plan)⁵²⁷⁾에 따라 집행된 비용은 사업경비로서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사업경비의 지급은 보조임금으로 간주된다. 과세되는 부가급부는 전술한 대로 고용주가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정상임금에 포함하거나 보조임금으로 간주하여 25% 비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부가급부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여기서 공정시장가격이란 고용주의 실제 비용이 아닌 피용인이 독립거래에서 제3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부가급부를 임금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할 세금을 환산하거나 혹은 보조임금으로 간주하여 25% 일률로 원천징수할 수 있다⁵²⁸⁾.

부가급부 이외에도 보너스, 커미션, 해고 보상금, 상금, 병가 보수, 초과근무수당 등 정규임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보조임금(supplemental wage)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00만달러 이하의 보조임금을 지급하면 고용주는 이를 정상임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아니면 25%의 원천징수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100만달러 이상의 보조임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원천징수 비율이 적용된다.

투자, 임대, 자영업, 로열티,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소득으로부터 발생하는 추정세액이 1,000달러 이상이며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가 (예

527) 합리적 기간 이내에 지출내역을 입증하고 미지출금액은 고용주에게 다시 반환되면 이에 해당한다(Pub. 15, 10쪽).

528) 임금이 \$1,000,000을 초과하면 35%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 이외 사회보장세 등에 대해서도 원천징수한다(Pub. 15).

상) 납부세액보다 일정 수준⁵²⁹⁾ 적으면 분기별로 추정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6654). 추정세액은 납세자의 납세의무액에서 원천징수금액, 세액공제, 과다 사회보장세 납부금을 제외한 금액인데 이전 연도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면 된다.

21세 이하 자녀가 가사일을 돕고 지급받는 보수나 자영업이나 파트너십의 파트너(양자 모두가 부모인 경우)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사업상 고용하고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를 사업 목적으로 고용하고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부과된다. 이외 주식회사의 경우 자녀나 배우자를 고용하면 제반 세금이 적용된다. 은행이나 사업체가 이자나 배당, 임대료, 로열티, 커미션을 지급할 때 사회보장번호 등 납세자 신원이 불확실하면 28%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backup withholding).

5,000달러 이상의 도박 소득도 이를 지불하는 측이 소득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납세자 대신 국세청에 납부한다. 이는 현금 이외 재화나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도 원천징수된다. 빙고나 슬롯머신으로 인한 도박금은 원천징수되지 않는 대신 사회보장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비거주 외국인은 임대소득, 로열티, 커미션, 월급, 임금, 연부금, 보상,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30% 원천징수된다. 다만 미국과 소득세협약을 맺은 나라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를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원천징수를 위한 피용자 의무

정확한 원천징수를 위하여 고용주는 피용자에게 관련 서류(W-4 Form)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피용자⁵³⁰⁾는 피용자의 신원과 신분 그리고 원천징수 예외비율(withholding allowance)을 명기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전 연도에 모든 원천징수금액을 환급받고 금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원천

529) 즉, 원천징수금액과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이 이전 연도 납세의무액의 100%에 미치지 못하거나 금년도 납세의무액의 9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530)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을 무엇을 어떻게 할지 통제할 수 있을 때 고용주-피용자(employee) 관계가 성립한다. 의사, 변호사, 건설계약에 의한 사업자는 피용자가 아니다. 하지만 일반 법에 의하여 피용자가 아니더라도 내국세법과 사회보장법에 의하여 피용자가 규정될 수도 있다.

징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⁵³¹⁾. 이외 시간제로 일하는 학생, 65세 이상의 저소득 납세자 등도 원천징수에서 면제된다. 다만 사회보장세는 그 성격상 원천징수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비교적 정확하게 W-4 Form을 작성하면 원천징수금액과 납세액이 근접할 수 있다(Pub. 919). 만약 합리적 근거가 없이 W-4 Form를 잘못 작성하여 원천징수금액이 줄어들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고의적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하면 형사 처벌되어 1,000달러의 벌금 혹은/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원천징수 예외비율이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의 수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납세자의 공제, 손실 등의 항목이 많으면 추가할 수 있다(Sec. 3402(f)(1)(E)). 이와 반대로 임금 이외 다른 소득이 많은 피용자는 추정된 원천징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이들 공제항목은 부부가 모두 사용할 수 없고 나누어 작성되어야 한다. 공제항목 가운데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에 따라 결정되고 일반공제는 이전 연도의 공제금액 이하로 납세자가 작성한다.

비영주권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들 납세자의 임대, 로열티 소득, 임금, 연부금, 보상, 이자 그리고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외국인 피용자가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이를 신고한다(Form 8233). 이들은 본인 이외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천징수 비율은 일반 원천징수표(withholding table)에 일정 금액(397.5달러)을 합하여 결정한다. 사회보장세 등도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미국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가들과 국제사회보장협약⁵³²⁾을 체결한 바 있다.

531) 한편 근로장려 세액공제(EIC)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Form W-5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면 소득세 신고 이전에 이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다.

532) www.socialsecurity.gov/international

다. 고용주의 원천징수 신고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임금 등 피용인 보수에 대하여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를 신고 및 예탁해야 한다. 이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와 연방실업세도 신고해야 한다(Pub 15). 이를 위하여 고용주는 W-4 Form을 바탕으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원천징수표(Income Tax Withholding Table)나 비율방식표(Table for Percentage Method)를 참작하여 원천징수 금액을 결정한다. 공제항목이 10개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매주 200달러 이상인 종업원이 원천징수에서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 고용주는 W-4를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원천징수 예외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lock-in letter).

고용주는 4월 3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분기 종료 익월 마지막 날까지 Form 941(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한다⁵³³). 고용주는 Form 941에 종업원 수와 지급 임금 등 전체 보수를 신고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리고 의료보험세에 대하여 신고금액을 조정하여 예탁금과 비교한다. 만약 예탁한 금액이 신고금액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환급된다.

라. 연방세 예탁기금(Federal Tax Deposit)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이 분기별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세금을 미리 정해진 기한 이내에 재무성 신탁기금(Trust Fund Tax)에 기탁하여야 한다(Federal Tax Deposit). 만약 분기별로 원천징수한 세금이 2,500달러 이하이면 원천징수 신고서(Form 941)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분기별 금액이 2,500달러를 초과하는 고용주의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월별 혹은 1주당 두 번 예탁을 해야 한다. 즉, 전년도 6월 30일 이전부터 1년을 기준(lookback period)으로 총원천징수 세액이 5만달러 이하이면 월별로 예탁하며 5만달러를 초과하면 1주일에 두 번씩 예탁한다⁵³⁴). 나아가

533) 연방실업세 신고(Employer's Annual Federal Tax Return, Form 940)는 1월 31일이다. 가사를 위하여 피용인을 고용한 납세자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Form 1040(Schedule H)에 신고한다.

534) 즉, 월별로 예탁하는 고용주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재무성 기금에 예

원천징수한 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그 다음 날 바로 예탁을 하고 다시 1주당 2번 예탁으로 돌아간다.

〈표 1-30〉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예탁 지연시 벌금

(단위: %, 달러)

지연기간	예탁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3,000당 벌금
1~5	2	60
6~15	5	150
16~	10	300
납부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후까지 미납	15	450

자료: The ABCs of FTDs: Resource Guide for Understanding Federal Tax Deposits, IRS, 2008(www.irs.gov).

한편 연방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의 경우 다른 분기를 포함하여 예탁하지 않은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면 분기 종료 후 다음 달의 마지막 날에 예탁하여야 한다. 실업세는 피고용자가 아닌 고용주에게 부과된다. 예탁해야 하는 실업세는 피용자 1인당 임금 7,000달러의 0.8%이다. 만약 축적된 세금이 5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실업세 신고서(Form 941)와 함께 예탁하면 된다. 또한 임금 급료가 아닌 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관은 연도별로 신고를 해야 한다(Form 945). 그 대상에는 28%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불로소득(backup withholding) 이외에도 연금, 군인퇴직연금, 도박상금 등이 있다.

연방세 예탁은 예탁쿠폰(Form 8109)과 함께 정부 지정 금융기관에 기탁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거래 은행으로부터 자동 예탁하는 방식(전자연방납세시스템, EFTPS)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혹은 그 이전에 전자연방납세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된 고용주나 2007년 총예탁금이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2009년에 전자연방납세시스템(EFTPS)을 이용해야 한다. 고용주가 고용주 신원번호(EIN)를

탁하고 1주에 두 번 예탁하는 고용주는 그 다음 수요일과 금요일에 예탁을 한다. 후자의 경우 임금을 1주에 두 번 이상 지급하는 고용주의 경우에 한하여 두 번 기탁한다.

신청하면 전자납부시스템에 자동적으로 해당 고용주 계좌가 만들어진다. 고용주는 예탁 기한일의 납부 의무액 100%를 예탁해야 하지만 그 차이가 100달러와 납부 의무액의 2%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그 다음 신고기한까지 차액을 예탁하면 벌금이 없다.

이들 세금을 기한 이내에 예탁하지 않으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미납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결정되는데 예탁하지 않은 기간이 늘어날수록 2~15%의 누진 비율이 적용된다. 또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2.5%를 한도로 매월 미납금액의 4.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금으로 25%를 한도로 매월 미납부금액의 0.5%(압류 고지 후에는 월 1%)가 부과된다. 나아가 미납금액에 대해서 분기별로 정해지는 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

마. 추정세액 납부제도(estimated tax payment)

추정세액은 원천징수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때 또는 원천징수한 세금이 적을 때 즉, 과소납부를 피하려고 할 때 적용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는 자영업, 이자, 배당, 위자료, 임대소득, 자산매매 소득, 상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C 법인 이외에도 S 법인⁵³⁵⁾, 유산(estate)과 신탁기금(trust)⁵³⁶⁾도 추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Form 1041-ES).

개인의 경우 임금 이외 상당한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납세자는 분기별로 같은 금액의 추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모든 소득이 원천징수되거나 이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또는 원천징수액을 늘리면 추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추정납부하려면 이전 연도 금액을 참고로 조정된 소득, 과세소득, 공제 등을 추정하여야 한다(Form 1040-ES).

특히 전년도 조정된 총소득이 15만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다음 방식으로 분기별 추정세액을 산정하여 이를 4월 15일부터 1년에 4회 똑같이 납부한다(Sec. 6654). ① 금년

535) S 법인은 도관업체이지만 양도이익 일부, 수동적 투자소득, 세액공제 환수에 대하여 분기별로 추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536) 유산기금은 상속인의 사망 이후 2년이 경과하면 기금의 소득에 대하여 추정세액을 납부한다.

도 일반소득세(고용세)의 90%⁵³⁷⁾와 작년도 일반소득세(고용세)의 100% 중 적은 금액 ② 금년도 세액공제, 임금 원천징수 세액 그리고 작년도 과다 납부세액 중 금년도 세금 공제를 위하여 유보한 금액의 합 ③ $(\text{①번 금액} - \text{②번 금액}) \times 0.25$. 작년도 조정된 총소득이 15만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부부별도 신고는 7만 5천달러)는 금년도 세금의 90%나 작년도 세금의 110% 이상을 납부하면 추정세액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safe harbour).

추정세액은 1년에 네 번 4월, 6월, 9월과 이듬해 1월 15일에 납부하며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지 않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4번째 달 15일(즉, 4월, 6월, 9월 12월 15일)에 네 번에 걸쳐서 납부한다. 대개 1년 세금을 4등분하여 분할 납부하지만 1년 동안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는 납세자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액이 원천징수금액(세액 공제 포함)을 1천달러 이상 초과하지 않으면 추정 금액의 과소납부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납세자가 전년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추정세액을 납부시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충분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비록 정식 세금신고 당시 환급을 받더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추정세액의 과소납부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Sec. 6601(h)).

벌금은 내국세법 6621조에 따라 미납세액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같다(Form 2210). 벌금이 부과되는 금액은 분기별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벌금은 분기별 기한이 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추정세액이 납부된 날이나 소득세 신고기한(4월 15일) 중 빠른 날까지 적용된다. 전술한 대로 추정세액의 과소납부에 대해서는 이자가 가산되지 않지만 소득세 신고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 가산금 외에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537) 농부와 어부의 경우 90%가 아닌 $66\frac{2}{3}\%$ 가 적용된다.

9. 기타

가.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종업원 부담 그리고 고용주 부담의 사회 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예탁하여야 한다. 연방보험기여법(FICA)⁵³⁸⁾에 따라 정부는 노인, 생존 배우자,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을 제공한다. 연금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그리고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세(Medicare tax)로 총당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 payroll)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며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들 세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달리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사회보장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국가와 조세협약을 맺고 대상 임금에는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⁵³⁹⁾.

사회보장세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부담이 각각 6.2%로 총 12.4%인데 2007년의 경우 임금의 97,500달러(2008년 102,000달러)까지만 사회보장세가 적용된다⁵⁴⁰⁾. 의료보험세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고용주 각각 1.45%로 총 2.9%이며 사회보장세와 달리 금액의 한도 없이 전체 급여에 적용된다. 따라서 97,500달러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자 7.65%의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기 때문에 전체 부담은 15.3%에 달한다. 그러나 임금이 97,5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2.9%를 세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세는 역진적이다. 이들 세금은 종업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되기 때문에 급여세 payroll tax)로 간주된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고용주분 급여세를 모두 혼자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 대신 절반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⁵⁴¹⁾. 이에 따라 15.3%의 급여세는 자영업자 소득의 92.35%에 부과된다. 이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납부하는 급여세에 대하여

538)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in 26 U.S.C. Chapter 21(I.R.C. §3101~3200).

539) www.socialsecurity.gov/international.

540) 따라서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세는 2007년 기준으로 최대 \$6,045이다($97,500 \times 0.062$).

541) Self-Employment Contributions Act of 1954(Chapter 2 of Subtitle A of the I.R.C. §1401~1403).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대우를 위하여 자영업자 소득의 7.65%를 제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연방실업세⁵⁴²⁾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실업세로부터 실업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한 실업세는 고용주 부담이므로 피용인 임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아니며 고용주는 Form 940을 작성하여 신고 납부한다.

지난 2년간 연간 1,5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20주일 이상 한 명 이상의 피용인을 고용한 납세자는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세로 납부한다⁵⁴³⁾. 다만 면세기관과 지방정부는 실업세 대상이 아니다. 공제전 연방실업세 세율은 6.2%이다⁵⁴⁴⁾. 단, 연방실업세는 피용인 1인당 임금의 7,000달러에만 적용되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주정부 실업기금에 실업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과세소득의 5.4%까지 공제된다. 따라서 5.4%를 공제할 수 있다면 연방소득세는 0.8%가 된다.

고용주는 Form 940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실업세를 신고한다. 단, 실업세를 적기에 예탁하는 고용주는 2월 1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연방실업세는 4월 30일부터 분기별로 예탁한다. 만약 분기별 실업세가 500달러 이하이면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500달러를 초과될 때 예탁한다. 분기 종료 후 익월 마지막 날까지 예탁을 하는데 4분기의 예탁금이 500달러를 초과하면 실업세 신고기일까지 예탁하고 500달러 이하이면 실업세를 신고할 때 Form 940과 같이 납부해도 된다. 연방 전자예탁기금(EFTPS)이나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다만 고용 관련 세금과 법인세 그리고 연방소비세 총액이 2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반드시 연방 전자예탁기금을 이용해야 한다.

542) Federal Unemployment Tax Act(FUTA) in 26 U.S.C. Chapter 23(I.R.C. §3301~3320).

543) 농장의 경우 연 \$20,000 이상의 현금 임금을 지급하거나 20주 이상 10명 이상 고용한 농장주가 대상이며 가사 노동의 경우 과거 2년간 한 분기에 \$1,000 이상 지급한 고용주가 대상이다.

544) 2008년에 실업세는 6%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현재 이에 반대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중이다.

다. 지방정부 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연방정부 이외 41개 주에 달하는 주정부에서도 부과한다. 그러나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텍사스, 워싱턴과 와이오밍주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뉴햄프셔와 테네시주는 배당과 이자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41개주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체 소득세 부담은 주정부의 세부담을 합쳐서 생각하여야 한다. 주소득세의 납세대상은 거주지 원칙으로 거주가 확정되면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과 관계없이 과세가 가능하다⁵⁴⁵⁾.

〈표 I-31〉는 주별 소득세의 세율과 소득구간 및 인적공제를 나타낸 것이다. 많은 주에서 누진과세를 하지만 콜로라도(4.63%), 일리노이(3.0%), 인디애나(3.4%), 매사추세츠(5.3%), 미시건(4.35%), 펜실베이니아주(3.07%)와 유타주(5.0%)에서는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최고 세율이 가장 높은 주는 버몬트(9.5%)이며 이외 캘리포니아(9.3%)와 오리건주(9.0%)의 최고 세율이 높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최고 세율은 5~7% 사이에 있다. 다만 일률과세하는 주를 제외하면 과세구간은 2개(코네티컷)를 비롯하여 10개(미주리)에 이르는 등 주별로 다양하다.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 가운데 대부분의 주는 연방소득세에서 조정된 총소득(AGI)를 과표로 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콜로라도, 하와이, 미네소타, 뉴욕, 노스 캐롤라이나, 오리건,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타와 버몬트주는 연방소득세에서 과세소득을 과표로 한다. 또한 로드 아일랜드는 연방소득세의 25%를 소득세로 징수하는 단순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다⁵⁴⁶⁾. 일률과세를 하는 주를 제외하면 모든 주에서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일부 주에서는 연방소득세도 공제해준다. 인적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하는 방식 외에 아칸사스와 캘리포니아주 등 7개 주에서는 세액공제를 하는 주도 있다. 이외 연방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는 공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Sec. 3124).

545) *Compania Gen. de Tabacos v. Collector*, 275 U.S. 87, 100, 48 S.Ct. 100

546) 이전에는 노스 다코다(14%), 로드 아일랜드(25%) 그리고 버몬트(24%)주가 연방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주소득세로 징수하는 단순한 과세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표 1-31〉 주정부 소득세 주요 지표(2008년)

(단위: %, 개, 달러)

	세율		구간수	소득구간		인적공제			연방세 공제
	최저	최고		최저	최대	독신	부부	자녀	
알라바마	2	5	3	500 ²⁾	3,000 ²⁾	1,500	3,000	300	×
알래스카	소득세 없음								
아리조나	2.87	4.54	5	10,000 ²⁾	150,000 ²⁾	2,100	4,200	2,300	
아칸사스 ¹⁾	1	7.0 ⁵⁾	6	3,699 ²⁾	31,000 ²⁾	23 ³⁾	46 ³⁾	23 ³⁾	
캘리포니아 ¹⁾	1	9.3 ²³⁾	6	6,827 ²⁾	44,815 ²⁾	94 ³⁾	188 ³⁾	294 ³⁾	
콜로라도	4.63		1	-----일률과세-----		-----없음-----			
코네티컷	3	5	2	10,000 ²⁾	10,000 ²⁾	12,750 ⁶⁾	24,500 ⁶⁾	0	
델라웨어	2.2	5.95	6	5,000	60,000	110 ³⁾	220 ³⁾	110 ³⁾	
플로리다	소득세 없음								
조지아	1	6	6	750 ⁷⁾	7,000 ⁷⁾	2,700	5,400	3,000	
하와이	1.4	8.25	9	2,400 ²⁾	48,000 ²⁾	1,040	2,080	1,040	
아이다호 ¹⁾	1.6	7.8	8	1,237 ⁸⁾	24,736 ⁸⁾	3,500 ⁴⁾	7,000 ⁴⁾	3,500 ⁴⁾	
일리노이	3		1	-----일률과세-----		2,000	4,000	2,000	
인디애나	3.4		1	-----일률과세-----		1,000	2,000	1,000	
아이오와 ¹⁾	0.36	8.98	9	1,379	62,055	40 ³⁾	80 ³⁾	40 ³⁾	×
캔자스	3.5	6.45	3	15,000 ²⁾	30,000 ²⁾	2,250	4,500	2,250	
켄터키	2	6	6	3,000	75,000	20 ³⁾	40 ³⁾	20 ³⁾	
루지애나	2	6	3	12,500 ²⁾	25,000 ²⁾	4,500 ⁹⁾	9,000 ⁹⁾	1,000 ⁹⁾	×
메인 ¹⁾	2	8.5	4	4,849 ²⁾	19,450 ²⁾	2,850	5,750	2,850	
매릴랜드	2	5.5	7	1,000	500,000	2,400	4,800	2,400	
매사추세츠 ¹⁾	5.3		1	-----일률과세-----		4,125	8,250	1,000	
미시건 ¹⁾	4.35		1	-----일률과세-----		3,300	6,600	3,000	
미네소타 ¹⁾	5.35	7.85	3	21,800 ¹⁰⁾	71,591 ¹⁰⁾	3,500 ⁴⁾	7,000 ⁴⁾	3,500 ⁴⁾	
미시시피	3	5	3	5,000	10,000	6,000	12,000	1,500	
미주리	1.5	6	10	1,000	9,000	2,100	4,200	2,100	× ¹⁸⁾
몬태나 ¹⁾	1	6.9	7	2,500	14,900	2,040	4,080	2,040	× ¹⁸⁾
네브라스카 ¹⁾	2.56	6.84	4	2,400 ¹¹⁾	27,001 ¹¹⁾	113 ³⁾	226 ³⁾	113 ³⁾	
네바다	소득세 없음								
뉴햄프셔	이자 및 배당소득에만 적용								
뉴저지	1.4	8.97	6	20,000 ¹²⁾	500,000 ¹²⁾	1,000	2,000	1,500	
뉴멕시코	1.7	5.3	4	5,500 ¹³⁾	16,000 ¹³⁾	3,500 ⁴⁾	7,000 ⁴⁾	3,500 ⁴⁾	

〈표 1-31〉의 계속

(단위: %, 개, 달러)

	세율		구간수	소득구간		인적공제			연방세 공제
	최저	최고		최저	최대	독신	부부	자녀	
뉴욕	4	6.85	5	8,000 ²⁾	20,000 ²⁾	0	0	1,000	
노스캐롤라이나 ¹⁴⁾	6	7.75	3	12,750 ¹⁴⁾	60,000 ¹⁴⁾	2,000	4,000	2,000	
노스다코다 ¹⁾	2.1	5.54 ¹⁵⁾	5	31,850 ¹⁵⁾	349,701 ¹⁵⁾	3,500	7,000	3,500	
오하이오 ¹⁾	0.618	6.24	9	5,000	200,000	1,450 ¹⁶⁾	2,900 ¹⁶⁾	1,450 ¹⁶⁾	
오클라호마	0.5	5.5 ¹⁷⁾	7	1,000 ¹⁷⁾	8,701 ¹⁷⁾	1,000	2,000	1,000	× ¹⁸⁾
오리건 ¹⁾	5	9	3	2,900 ²⁾	7,300 ²⁾	169 ³⁾	338 ³⁾	169 ³⁾	
펜실베이니아	3.07		1	-----일률과세-----		-----없음-----			
로드아일랜드	연방소득세의 25.0% ¹⁹⁾			----		----	----	----	
사우스캐롤라이나 ¹⁾	0.0	7	6	2,670	13,350	3,500 ⁴⁾	7,000 ⁴⁾	3,500 ⁴⁾	
사우스다코다	소득세 없음								
테네시	배당 및 이자소득에만 적용								
텍사스	소득세 없음								
유타	5.0		1	-----일률과세-----		20)	20)	20)	
버몬트 ¹⁾	3.6	9.5	5	32,550 ²¹⁾	357,700 ²¹⁾	3,500 ⁴⁾	7,000 ⁴⁾	3,500 ⁴⁾	
버지니아	2	5.75	4	3,000	17,000	930	1,860	930	
워싱턴	소득세 없음								
웨스트버지니아	3	6.5	5	10,000	60,000	2,000	4,000	2,000	
위스컨신 ¹⁾	4.6	6.75	4	9,700 ²²⁾	145,460 ²²⁾	700	1,400	400	
와이오밍	소득세 없음								
워싱턴 D.C.	4.5	8.5	3	10,000	40,000	1,675	3,350	1,675	

주: 1) 16개 주는 과세구간과 공면제를 물가와 연동하며 매사추세츠, 미시건, 네브라스카, 오하이오는 인적공제만 연동.

2) 부부합산은 세율이 소득의 절반에 부과되는 세율의 두 배.

3) 세액공제.

4) 국세청의 인적공제와 표준공제 사용.

5) 저소득층에는 세금 감면.

6)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의 합: 추가 세액공제 허용: 고소득층에 대한 면제 점진 감소(소득 \$56,500부터는 면제 불허).

7) 독신자에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의 경우 \$10,000까지 독신자 세율 적용.

8) 부부합산은 세율이 소득의 절반에 부과되는 세율의 두 배.

9) 인적공제와 표준공제의 합.

10)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31,860~\$126,581에 같은 세율 적용: 6.4% 최저한세 적용.

11)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4,800~\$54,000에 같은 세율 적용.

12) 독신자 적용세율: 부부합산은 1.4~8.97%(7개 구간)의 세율이 \$20,000~\$500,000 소득에 적용.

13)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8,000~\$24,000에 같은 세율 적용.

14)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21,250~\$100,000에 같은 세율 적용: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면제 축소.

15)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53,200~\$349,701에 같은 세율 적용: 부부합산에는 \$300 공제 추가

16) 개인 세액공제에 \$20 추가.

17)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2,000~\$15,000에 같은 세율 적용: 최고 세율은 2008년 5.25%로 인하

18) 공제한도가 적용: 미주리와 몬타나에서는 개인 \$5,000, 부부합산 \$10,000(오래전 \$5,600).

19) 2001년 경제성장과 감세법 이전의 연방소득세 납세의무액이나 총소득의 7% 일률과세 중 선택(2009년 6.5%).

20) 연방소득세 표준 혹은 항목별 공제의 6%를 세액공제하고 연방소득세 인적공제의 75%를 세액공제: 공제금액은 소득 \$12,000(부부합산 \$24,000)부터 점차 감소.

21)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54,400~\$357,700에 같은 세율 적용.

22) 독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부부합산에는 \$12,930~\$193,950에 같은 세율 적용: 65세 이상인 경우 납세자와 배우자 각각 \$250 추가 공제.

23) 과세소득 1백만\$ 이상에 대하여 1% 추가 세율 적용.

자료: The Federation of Tax Administrators(www.taxadmin.org).

Ⅱ. 법인소득세

1. 서론

가. 배경

미국에서 현대적 의미의 연방법인세는 1909년 5,000달러 이상의 법인소득에 대하여 1% 세율이 부과되면서 도입되었다. 남북전쟁 당시 소유주에게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세로 과세한 적이 있지만 법인을 독립적인 과세주체로 간주한 것은 1909년부터다. 그러나 그 당시 법인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특별세로 간주되면서 과세구간과 소득의 정의가 지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래 1894년 재정법에 의하여 소득세와 법인세가 입법화되었지만 인구비례에 의한 직접세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정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는 직접세로 간주되지 않아 1909년에 도입될 수 있었다. 이후 1913년 16차 수정헌법에 따라 소득세가 도입되면서 법인세도 계속 유지되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본(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 등을 통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한편 일반소득세보다 법인세 세율이 낮으면 주주들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급적 배당을 받지 않으려는 동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인 이윤의 과도한 사내 유보나 개인 소득의 법인화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한편 법인의 형태에 따라 과세의 적정 여부가 문제시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은 면세가 허용되었지만 1950년부터는 면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호공제조합(mutual)이나 협동조합(cooperative)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간주해야 할지가 불명확하다. 1951년 상호저축조합(Mutual savings)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신용대부조합은 아직도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호보험 공제회사는 항상 과세되었지만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외 특별 규제가 적용되는 상호공제기금(mutual fund) 등 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기금(real estate investment fund)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이를 공제할 수 있다.

물론 법인세에 따른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법인의 형태는 S 법인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S 법인의 형태로 소득신고를 한다. 이외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company)⁵⁴⁷⁾도 모든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함으로써 법인세를 기피할 수 있다. 한편 소유권 혹은 통제권이 같은 계열회사들에 대한 과세도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1917~1921년 사이에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를 연결납세규정에 따라 통합 신고(consolidated return)하도록 했는가 하면 1934~1941년 사이에는 일부 기업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되 높은 세율을 적용하던 시기(1932~1933년, 1942~1963년)도 있고 현재와 같이 벌칙 없는 선택권을 부여하던 시기도 있다(1922~1931년, 1964년 이후).

법인세 세율에 따른 연도별 부담을 추정할 때 다양한 공제도 문제가 된다. 한 예로 1918년 이전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일반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960년대에 다양한 투자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가 이윤세(excess profit tax) 등 법인세에 추가하여 특별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소유기업(personal holding company)이나 개인서비스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⁵⁴⁸⁾처럼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나. 기업 유형의 변화와 소득신고

미국에서 기업의 조직 형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면 1953년 이전에는 C

547) 소유집중기업은 개인서비스회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이전 반년간 5명 이하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548) 피용인이 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한 건축, 자문, 변호사, 회계, 엔지니어, 의료, 예술 등 개인서비스 회사는 비록 주식회사일지라도 35% 일률과세된다.

법인을 중심으로 주식회사가 전체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3%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기업 유형이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 이르면 주식회사의 비중이 64.3%로 감소하였다. 1950년대 이후 50년이 흐르면서 파트너십이 많이 설립되어 그 비중이 12.7%에서 30.6%로 증가한 반면 주식회사의 비중은 87.3%에서 69.5%로 감소하였다. 특히 S 법인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된 반면 C 법인의 비중은 같은 시기에 59.2%에서 26.5%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II-1〉 기업 유형의 변천 추이

(단위: 천개, %)

	총업체수 ¹⁾	주식회사		S 법인		C 법인		파트너십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총합	7,776.1	5,401.2	69.5	3,341.6	43.0	2,059.6	26.5	2,375.4	30.6
신규기업	678.0	389.2	57.4	266.8	39.4	122.4	18.1	288.8	42.6
2000~2002	1,936.2	1,207.1	62.3	850.3	43.9	356.8	18.4	729.1	37.7
1997~1999	1,380.0	888.2	64.3	639.4	46.3	248.7	18.0	491.8	35.6
1994~1996	932.7	663.0	71.1	447.9	48.0	215.1	23.1	269.6	28.9
1984~1993	1,589.8	1,258.4	79.2	776.5	48.8	481.9	30.3	331.3	20.8
1974~1983	776.5	612.7	78.9	233.1	30.0	379.6	48.9	153.8	21.1
1964~1973	248.7	207.0	83.2	74.4	29.9	132.5	53.3	41.7	16.8
1954~1963	108.7	89.5	82.3	33.3	30.6	56.2	51.7	19.2	17.7
1953 이전	70.7	61.8	87.3	19.9	28.1	41.9	59.2	9.0	12.7
불명	55.4	24.5	44.1	0	0	24.5	44.1	31.0	55.9

주: 1)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은 제외.

자료: Integrated Business Data, IRS, 2003.

주식회사 신고건수도 1980~2007년 사이에 약 85%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면 파트너십⁵⁴⁹⁾ 신고는 약 54%, 그리고 개인회사 신고건수는 82% 증가하였다. 물론 파트너십과 개인회사의 소득은 법인세가 아닌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S 법인이 전체 주

549) 우리나라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한다.

식회사 신고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을 기준으로 약 65%에 달하지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에 불과하다. 또한 순소득으로 보면 그 비중은 15.6%로 더욱 감소한다.

1972년 당시 GDP의 2.8%에 이르던 법인세 징수액은 부침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어 2003년 당시 1.3%까지 하락하였지만 그 후 증가하면서 2007년 2.9%에 도달하였다. 한편 내국세 비중으로 보면 1972년 법인세는 내국세의 24.3%를 차지하였지만 2003년 7.3%까지 감소하였다가 2007년 다시 14.9%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는 GDP 비중이 2%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는 소득세의 GDP 비중이 10% 이하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법인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2008년 현재 법인세 세율은 8개 구간에 걸쳐서 15~35%의 세율로 과세된다. <표 II-2>는 1909년 법인세가 정식으로 도입된 이후 세율구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2〉 미국 법인세 세율과 과세구간(1909~2008년)

(단위: 달러, %)

연도	과세소득구간	세율
1909~1913	~5,000	—
	5,000~	1.00
1913~1915	모든 과세소득	1.00
1916	모든 과세소득	2.00
1917	모든 과세소득	6.00
1918	~2,000	—
	2,000~	12.00
1919~1921	~2,000	—
	2,000~	10.00
1922~1924	~2,000	—
	2,000~	12.50
1925	~2,000	—
	2,000~	13.00
1926~1927	~2,000	—
	2,000~	13.50
1928	~3,000	—
	3,000~	12.00
1929	~3,000	—
	3,000~	11.00
1930~1931	~3,000	—
	3,000~	12.00
1932~1935	모든 과세소득	13.75
1936~1937	~2,000	8.00
	2,000~15,000	11.00
	15,000~40,000	13.00
	40,000	15.00
1938~1939	25,000 이하	—
	~5,000	12.50
	다음 15,000	14.00
	다음 5,000	16.00
	25,000 이상	19.00
1940	31,964.30 이하	—
	~5,000	14.85
	다음 15,000	16.50
	다음 5,000	18.70
	다음 6,964.30	38.30
	31,964.30~38,565.84	—
	~5,000	15.40
	다음 15,000	16.90
	다음 5,000	18.90
	다음 13,565.84	36.90
	38,565.84 이상	24.00

〈표 II-2〉의 계속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세율	한계세율 적용소득
1941	38,461.54 이하 ~5,000	21.00
	다음 15,000	23.00
	다음 5,000	25.00
	다음 13,461.54	44.00
	3,461.54 이상	31.00
1942~1945	50,000 이하 ~5,000	25.00
	다음 15,000	27.00
	다음 5,000	29.00
	다음 25,000	53.00
	50,000 이상	40.00
1946~1949	50,000 이하 ~5,000	21.00
	다음 15,000	23.00
	다음 5,000	25.00
	다음 25,000	53.00
	50,000 이상	38.00
1950	~25,000	23.00
	25,000~	42.00
1951	~25,000	28.75
	25,000~	50.75
1952~1963	~25,000	30.00
	25,000~	52.00
1964	~25,000	22.00
	25,000~	50.00
1965~1967	~25,000	22.00
	25,000~	48.00
1968~1969	~25,000	24.20
	25,000~	52.80
1970	~25,000	22.55
	25,000~	49.20
1971~1974	~25,000	22.00
	25,000~	48.00
1975~1978	~25,000	20.00
	2,5000~50,000	22.00
	50,000~	48.00
1979~1981	~25,000	17.00
	25,000~50,000	20.00
	50,000~75,000	30.00
	75,000~100,000	40.00
	10,0000~	46.00

〈표 II-2〉의 계속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세율	한계세율 적용소득
1982	~25,000	16.00
	25,000~50,000	19.00
	50,000~75,000	30.00
	75,000~100,000	40.00
	10,0000~	46.00
1983	~25,000	15.00
	25,000~50,000	18.00
	50,000~75,000	30.00
	75,000~100,000	40.00
	10,0000~	46.00
1984~1986	~25,000	15.00
	25,000~50,000	18.00
	50,000~75,000	30.00
	75,000~100,000	40.00
	10,0000~1,000,000	46.00
	1,000,000~1,405,000	51.00
	1,405,000~	46.00
1987	~25,000	15.00
	25,000~50,000	16.50
	50,000~75,000	27.50
	75,000~100,000	37.00
	10,0000~335,000	42.50
	335,000~1,000,000	40.00
	1,000,000~1,405,000	42.50
	1,405,000~	40.00
1984~1986	~50,000	15.00
	50,000~75,000	25.00
	75,000~100,000	34.00
	100,000~335,000	39.00
	335,000~	34.00
1993~2008	~50,000	15.00
	50,000~75,000	25.00
	75,000~100,000	34.00
	100,000~335,000	39.00
	335,000~10,000,000	34.00
	10,000,000~15,000,000	35.00
	15,000,000~18,333,333	38.00
	18,333,333 이상	35.00

주: 주식회사 소득에 부과되는 정상세율이며 연도에 따라서는 주식회사 유형과 소득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과세가 적용되기도 함.

자료: Jack Taylor, *Corporation Income Tax Brackets and Rates, 1909~2002*,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IRS, Fall 2003. 등

2. 납세의무자

가. 법인세 납세의무

미국에서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내국세법(Subchapter C)에 따라 소득(손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Sec. 6012(a)(2)). 일반 주식회사 이외에도 1996년 이후 설립된 사업체로서 합동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 보험회사, 일부 은행과 외국 사업체, 지방정부가 소유한 사업체, 상장된 파트너십 등 내국세법에 따라 주식회사로 과세되는 업체 등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국세법 C장은 미국 50개 주에 법인으로 등록한 국내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내국세법은 국적 구분이 없으며 외국회사도 미국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국내회사처럼 간주되며 주식회사처럼 과세되기를 선택한 여타 사업체도 마찬가지로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Check-in Box rule, Sec. 7701(a)(4)). 내국세법 501조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된 법인(자선 및 교육 등 공공단체)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료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주식회사가 사업을 종료하고 해체되어 자산을 보유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된다.

법인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Form 1120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수입과 소득 그리고 자산이 모두 50만달러 이하인 주식회사는 간소화된 신고서(Form 1120-A)를 이용할 수 있다⁵⁵⁰⁾. 또한 농업협동조합(Form 990-C), 외국기업(Form 1120-F), 외국판매회사(Form 1120-FSC), 생명보험회사(Form 1120-L), S 법인(Form 1120-S) 등 일부 주식회사는 다른 양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과세연도와 회계방식

일반 주식회사(C 법인)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를 일반 역년이 아닌 다른 과

550) 이 밖에도 간소화된 신고서 Form 1120-A를 사용하려면 최저한세에서 면제된 기업이거나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어야 하며 일반사업공제와 전년도 최저한세 세액공제 이외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없고 외국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

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장점은 개인과 달리 주주의 과세연도와 다른 회계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다른 유형의 업체는 이러한 자유가 없다. 한 예로 S 법인과 개인 서비스 회사는 정당한 사업적 목적이 있지 않으면 일반 역년을 과세연도로 해야 한다(Sec. 441(i)). 또한 파트너십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파트너의 과세연도를 따라야 한다.

일반 주식회사가 창립되고 처음 세금신고할 때 과세연도(tax year)와 회계방식(accounting method)을 선택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국세청의 허가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과세연도는 재무회계 목적의 회계연도⁵⁵¹⁾와 같아야 하는데 주식회사는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일반 역년(calendar year)이나 그렇지 않으면 매월 말일에 종료되는 12개월 주기의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Sec. 441).

반면 S 법인과 파트너십(과반수 지분 파트너의 과세연도)의 과세연도는 원칙적으로 일반 역년이며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계열회사(affiliated group)⁵⁵²⁾들은 그룹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따라야 한다. 이외 개인 서비스 회사⁵⁵³⁾도 사업 목적상 다른 과세연도가 적절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 역년이 과세연도이다. 이는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함으로써 이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이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유주에게 최소 기준의 배당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역년 이외 9, 10, 11월 말일에 종료되는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Sec. 444).

과세연도와 마찬가지로 처음 세금신고할 때 주식회사는 회계방식을 지정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발생주의, 현금주의 그리고 혼합방식(hybrid)을 선택할 수 있다(Sec. 446). 국세청은 장부상의 회계방식과 과세 목적의 회계방식이 같기를 원하지만 법원은 적절한 자료를 유지하면 두 회계방식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주식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① 가족농장 주식회사(총수입 2,500만달러 이하) ② 의료, 법, 엔지니어, 건축, 회계, 보험, 예

551) 상당한 사업 목적이 있을 경우 주식회사는 국세청의 사전허가를 받고 회계연도를 바꿀 수 있다(Reg. Sec. 1.442-1(b)(1)).

552) 계열회사는 모회사가 최소한 한 자회사 주식의 80%(금액과 투표권) 이상을 보유하고 다른 계열회사가 소유한 각 회사의 주식을 80% 이상을 보유한 그룹을 의미한다.

553) 개인서비스 회사(PSC)는 10% 이상의 주식가액을 보유한 종업원-소유주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인 서비스가 주된 사업인 주식회사를 의미한다(Sec. 441(i)).

술과 자문분야 개인서비스 회사 ③ 1986년 이후 500만달러 이전연도 총수입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이전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평균 수입이 매년 항상 500만달러 이하인 업체 ④ S 법인. 이들 업체들은 발생주의나 혹은 현금주의 회계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발생주의 원칙에서는 소득이 창출되고 경비가 발생한 시점에 이를 인정한다. 즉,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모든 사건이 발생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소득규모가 정해지면 소득에 포함한다. 사건 발생 시점은 필요한 작업이 수행된 시점, 보수 지급이 기한인 시점 그리고 지급받은 시점 중 먼저 도달하는 날이다. 지불의무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지급금액이 비교적 정확하게 알려지고 경비와 관련된 작업이 수행되면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의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주의에서는 주식회사가 소득을 실제로 받거나 혹은 의제 인정할 때, 경비는 실제로 지출할 때 이를 인정, 신고한다(constructive receipt). 소득 이연을 위하여 개인 서비스 회사들이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고자산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면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 혼합방식에서는 판매, 매출원가, 재고, 매출 및 매입채권에 대해서는 발생주의를 사용하고 그 이외 소득과 경비에 대해서는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고객 판매용으로 재고를 유지하는 사업체는 판매 관련 소득과 경비에 대하여 발생주의를 이용해야 하며 이외 공공요금, 임금, 임대료나 세금은 현금주의 회계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

회계방식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성이 용인하거나 국세청 규정에 따라 자동적인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Form 3115). 상당한 사업적 필요성이 있고 소득의 실질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회계방식의 변경을 허용한다. 주식회사가 이전 회계주기와 새로운 회계주기 사이 기간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지난 48개월간 회계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허가 없이도 회계 방식을 바꿀 수 있다⁵⁵⁴⁾.

554) Reg. Sec. 1.442-1(b)(3).

다. 사업체 형태에 따른 과세 성격

사업자는 기업을 조직할 때 개인사업체, 파트너십(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LLC), 유한책임 파트너십(LLP)을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사업형태에 따라 과세상의 특성은 다르며 법적 책임도 상이할 수 있다.

우선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는 한 개인이 소유한 업체를 말한다. 개인 사업체는 별개의 납세주체가 아니며 모든 사업자산과 부채를 소유하고 사업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세에 직접 신고한다. 특히 사업주는 Form 1040의 Schedule C나 C-EZ를 작성하여 소득과 경비를 신고한다. 사업주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사업 이윤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면 되고 사업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사업주의 다른 과세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개인 사업체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과세상 의미 있는 결과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업체에 자금 등을 투입 혹은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이익은 인출하지 않고 재투자 목적으로 회사에 적립해도 과세된다. 이에 비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해야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물론 법인세 세율과 사업주 개인소득세 세율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자산을 자기 사업에 투입 혹은 인출할 수 있다. 사업 손실은 이자, 배당, 임금 등 사업주나 그 배우자의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있는데 다만 수동적 활동손실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회사 소유주는 사업체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유주에게 지급한 보수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세 등을 전액 납부해야 하며 의료 및 생명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fringe benefit)도 과세된다. 이에 비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이며 피용자인 사람은 이들 보험료를 면세받을 수 있고 사회보장제도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사업주는 사업체를 위한 장부와 예금 등을 별도로 관리하지만 모든 사업자금은 사업주에게 속한다. 또한 개인소득세 과세연도와 다른 사업연도를 선택하여 소득을 이연할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과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이 같은 일반 역년이다.

파트너십(partnership)은 이윤 공유 등의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법 인화하지 않고 자산이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업체이다. 대부분의 주는 파트너십을 규정한 법(Uniform Partnership Act)을 도입하고 있다. 파트너십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신고하는 개체로서 소유주를 위한 도관업체의 역할을 한다(conduit entity). 즉, 파트너십의 소득, 경비, 손실, 공제 등은 업체를 소유한 파트너에게 전달되어 파트너가 개인 차원에서 이들 항목을 소득신고한다.

파트너십은 매년 Form 1065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Form 1065를 통하여 파트너십은 해당 과세연도 거래내역과 영업결과를 보고한다(자료신고). 파트너십은 동시에 파트너에게 할당된 소득, 경비, 손실 등의 내역(Schedule K-1, Form 1065)을 개별 파트너에게 통보한다. 개인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파트너들은 사업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하여 신고한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과 상쇄를 할 수 있지만 수동적 손실의 경우 손실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으로 나뉠 수 있다.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일반 파트너로서 이들 일반 파트너는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 이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유한 파트너십에서는 최소한 한 명이 일반 파트너이며 또한 최소한 한 명이 유한책임 파트너이어야 한다. 유한책임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회사 부채에 대해서도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요구하면 기여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파트너십의 과세 목적상 특성은 개인회사와 비슷하여 회사 자체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 사업이익은 배당을 하든지 혹은 회사에 적립 하든지 상관없이 파트너 단계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로부터 자산과 현금을 과세 목적상 제한 없이 투입 혹은 인출할 수 있고 이 때 자본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파트너의 지분에 대한 장부가액은 파트너에게 할당된 업체 이윤만큼 증가한다. 따라서 파트너가 지분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파트너는 회사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일부 부가급부도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업상 필요가 아니면 대주주인 파트너의 과세연도와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을 이연할 수 없다.

주식회사(corporation)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법적 주체로서 주주와 별개의 개체로 취급된다. 주식회사는 과세 목적상 두 개의 주식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이윤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과세하고 배당수익에 대해서는 주주를 과세하는 일반 주식회

사 즉, C 법인이 있다. 또한 기업이윤이 회사 차원에서 산정되지만 파트너십처럼 과세되지 않고 주주단계에서 과세되는 특수법인 주식회사(S corporation)가 있을 수 있다. 이전에는 법적으로 C 법인 주식회사일지라도 주식회사 특성을 보이지 않으면 연방소득세에서 주식회사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반대로 법인화되지 않은 기업도 주식회사 특성이 많으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1997년 내국세법 7701조에서는 주식회사로 분류되는 업체를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체도 신청하면 주식회사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check-in-box system).

C 법인은 15~35%의 법인세 세율이 별도로 과세되는 납세주체이다⁵⁵⁵⁾. 이러한 일반 주식회사는 Form 1120(Corporation Income Tax Return)에 모든 소득과 경비를 신고하며 회사 수익은 배당으로 분배되지 않으면 주주들은 과세되지 않는다⁵⁵⁶⁾. 그러나 배당된 이윤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주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C 법인은 회사 차원과 주주 차원에서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⁵⁵⁷⁾. 다만 배당소득은 2010년까지 자본소득과 마찬가지로 15% 세율로 과세된다(개인소득세 한계세율이 15% 이하이면 5%). 또한 배당이 되지 않아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회사가 청산되면 과세되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물론 개인 서비스 주식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의 최저 법인세율은 15%이므로 회사에 유보된 이익 잉여금(retained earning)을 통하여 절세가 가능하다⁵⁵⁸⁾. 또한 주주는 회사의 피용인으로 배당 대신 임금과 부가급부를 지급받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개인 서비스 회사(Sec. 441)를 제외한 주식회사는 일반 역년(calendar year)과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을 이연할 수 있다. 또한 주식회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매매나

555) 법인 과세소득 \$100,000~\$335,000과 \$15,000,000~\$18,333,333의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이 각각 39%, 38%이다.

556) 다만 종교, 자선, 연구, 예술, 교육 등 특수 목적의 비영리 주식회사는 비과세되는데 만약 비영리단체가 면세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을 하면 이로 인한 과세소득은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Sec. 501(b)).

557) 배당되지 않은 수익도 주주들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므로 이중과세될 수 있다.

558) 이러한 절세는 이윤 적립세(accumulated earnings tax)나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교환시 50%의 양도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러나 소득 실현을 인정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의 현금이나 자산을 양도받을 수 없다. 즉, 주식회사가 충분한 이윤을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이나 자산의 지급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운영업손실은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아닌 이전 연도나 이후 연도로 이전되어 그 당시 이윤과 상쇄될 수 있다(carry back or forward). 또한 자본손실도 발생한 연도에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회사의 이윤과 상쇄될 수 있는 여타 손실과 달리 다른 연도에 발생한 자본이익과 상쇄되어야 한다.

한편 S 법인은 내국세법 S장(Subchapter S)에 따라 정규 C 법인 주식회사와 달리 납세주체가 아닌 도관(전달)주체(conduit entity)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S장 규정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한 일반적 주식회사 규정이 S 법인에도 적용된다. S 법인은 파트너십 처럼 모든 소득, 경비, 손실과 공제를 회사 차원에서 결정하고 자료신고를 한 다음 이를 주주에게 전달하여 회사소득을 주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한다(Form 1120S). S 법인은 그러나 파트너십에 비하여 제한이 있다. 우선 주주의 수와 유형이 제한되고 주주는 회사지분과 다르게 소득과 경비를 할당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신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유한 책임을 진다. 이외 파트너십과 달리 특별한 경우 S 법인 차원에서 과세될 수도 있다.

S 법인 주식회사로 간주하려면 주주가 동의해야 한다. S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손실도 주주의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수동적 손실 제외). 특히 양도소득 등의 성격이 주주 차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주는 양도소득을 다른 양도손실과 상쇄할 수 있다. 주주는 양도소득 실현을 인정하지 않고 현금을 회사에서 투입 혹은 인출할 수 있다. S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업 소득만큼 증가하므로 주식 매각시 양도소득의 실현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 이윤은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 차원에서 소득세로 과세된다. 또한 비과세되는 부가급부가 피용인으로 고용된 주주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즉, 이들에게 지급된 부가급부는 회사 차원에서 공제되지만 주주 차원에서는 과세된다. 정당한 사업적 목적이 없으면 S 법인은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손실이 예상되는 창업 초기에 S 법인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주주에게 손실을 이월하고 그 이후 이윤이 발

생활 때 일반 주식회사로 전환하면 이윤의 적립을 통한 기업 성장이 가능하다.

1977년 와이오밍주에서 처음 도입된 유한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장점을 합친 형태의 기업 조직이다. 즉, 소유주가 1인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처럼 기업의 부채 등에 대하여 소유주에게 유한책임이 있지만 파트너십처럼 간주된다. 유한회사는 S 법인과 달리 주주의 수가 제한이 없고 일반 파트너가 없는 유한 파트너십과 유사하다. 유한회사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지만 주식회사로 취급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은 회계법인과 같이 개인 전문서비스 회사가 법적 책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조직할 수 있다. 즉, 일반 파트너십의 경우 자신의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너의 행위에 대해서도 무한적인 책임이 있지만 유한책임 파트너십 파트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고 다른 파트너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들도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 유한책임 파트너십도 유한책임 회사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로 신고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파트너십으로 과세된다(Form1065).

법인화되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로 과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Check-the-box regulation). 소유주가 2인 이상인 사업체는 주식회사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세 목적상 파트너십으로 간주된다. 소유주가 1인인 사업체는 소유주가 주식회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과세 목적상 별개의 주체가 아닌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로서 취급된다. 이들 업체들은 Form 8832를 작성하여 과세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일단 결정을 하면 60개월 동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 만약 파트너십이 주식회사로 과세되기를 원하면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에게 자산을 배분하고 난 이후 파트너들이 비과세 주식교환의 형태로 새롭게 조직된 주식회사에 자산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다양한 유형의 사업조직 형태는 장단점이 서로 있다. 우선 주식회사에게는 유한책임이 허용된다. 주주는 투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개인자산은 채무자에게 구속되지 않는다. 물론 작은 주식회사 소유주는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보장해야 할 수 있다. 파트너와 개인 사업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한 무한책임이 있다. 두 번째로 파트너와 개인 사업자는 회사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는 비과세 부가급부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사회보장세 전액(15.3%)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비하면 주주는 피용인으로 간주되어 보수와 부가급부가 공제되고 비과세 부가급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 절반만 책임을 진다.

〈표 II-3〉 기업조직 유형과 과세상의 장·단점

기업형태	장·단점
개인사업체 Sole Proprietor ship	기업이 아닌 사업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재) 기업투자는 과세상 사업주 자산으로 간주(회사내 유보된 이윤도 과세) 손실은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공제 가능(수동적 손실 제외) 사업주는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세 부과 기업과 사업주 과세연도 동일, 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 과세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 소득은 파트너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재) 회사로부터 현금 등 자산 투입이나 환수가 제한적으로 가능(비과세) 손실은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제한적으로 공제 가능 파트너십 소유지분이 회사소득 지분만큼 증가: 지분의 양도소득에 영향 사업주는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세 부과 기업과 대주주의 과세연도 동일, 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 과세 유한책임의 파트너 가능
일반 주식회사 (C 법인)	회사소득은 법인 차원에서 15~39%로 과세되고 배당은 주주 차원에서 과세 (이중과세: 배당은 기업수익이 충분한 경우) 유보된 소득은 주주의 소득세에서 비과세(이윤적립세 등은 예외) 회사에 고용된 주주는 피용인 대우, 부가급부 비과세 과세연도 선택 가능(개인서비스 회사 제외) 5년 이상 보유주식 양도소득은 50% 비과세 양도손실은 소득과 상쇄되지 않고 이월되어 다른 연도 양도소득과 상쇄 순 영업손실은 다른 연도 소득과 상쇄 법인 양도소득은 일반법인세율로 과세(15% 우대세율 부재)
S 주식회사	회사 소득은 주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재) 손실은 주주 차원에서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공제(수동적 손실 제외) 양도차익은 개인소득세에서 우대세율(20%) 적용, 다른 양도손실과 상쇄 현금 등 자산을 투자하거나 배분 받으면 지분 한도 내에서 비과세 파트너십 소유지분이 회사소득 지분만큼 증가: 주식 양도소득에 영향 배당과 관계없이 회사소득 과세 주주인 피용인에 대한 부가급부 과세(회사 차원에서 공제) 일반 역년이 과세연도(사업상의 이유가 없는 경우)

주식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인소득이 과세되는 반면 배당소득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하면 파트너십, 개인사업체와 S 법인은 도관업체로서 소득 등을 신고만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으며 사업소득이 소유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으로 과세된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 손실은 주주에게 양도되지 않고 배당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형태(비과세 혹은 양도소득)와 관계없이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비하면 파트너십, 개인사업체와 S 법인은 모든 소득, 이익, 손실, 공제 등을 소유주에게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달한다. 예컨대 기업손실과 개인소득 사이에 상쇄가 가능하고 비과세소득을 개인 차원이라고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의 양도손실은 개인의 양도소득과 상쇄할 수 있고 역으로도 가능하다.

라. 법인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주식회사 소득에 부과되는 연방세금은 법인세 이외에 최저한세(AMT), 이윤 적립세(accumulated earning tax) 그리고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HC)가 있다. 또한 지방정부, 특히 주정부 단위에서 따로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 가운데 최저한세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법인세의 일부이므로 이를 제외한 세목에 대하여 논의한다.

(a)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 PHC)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법인세 세율보다 높았던 2003년 이전에는 고소득 납세자가 배당을 지급받는 대신 회사 이윤을 회사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높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었다. 물론 최고 세율이 35%로 동일한 현 상황에서도 주식회사의 실효세율이 35%보다 낮으면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수 있다.

개인지주회사세는 이처럼 납세자가 특히 소유가 집중된 주식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를 이용, 수동적인 소득에 대하여 높은 개인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식소유 요건과 수동적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개인지주회사로 분류되어 2003~2010년 사이에는 배당되지

않은 개인지주회사 소득에 대하여 15% 세율이 적용된다. 2010년 이후에는 2003년 이전처럼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35%)을 적용받는다. 이와 같은 개인지주회사 세금은 일반법인세와 최저한세에 가산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아래 설명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회사 소득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된다.

주식소유와 수동적 소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는 모두 개인지주회사로 분류된다(Sec. 542(a)). 우선 주식 소유에 있어서는 5명 혹은 그 이하의 주주들이 과세연도의 마지막 6개월 동안 한 때라도 전체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조정된 일반소득의 60% 이상이 개인지주회사 소득으로 구성된 주식회사는 개인지주회사(PHC)로 간주된다. 다만 S 법인과 세금이 면제되는 기관은 개인주식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⁵⁵⁹⁾.

직·간접적 소유는 해당 주주에 의하거나 그를 위한 소유로서 직계 가족이 소유한 주식, 주식회사, 파트너십, 유산(기금)⁵⁶⁰⁾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⁵⁶¹⁾, 다른 파트너가 소유한 주식 혹은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등도 개인지주회사의 정의상 해당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Sec. 544).

주식소유 요건을 충족해도 주식회사의 소득이 대부분 수동적 소득이 아니면 개인지주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passive income test). 특히 최소한 주식회사의 조정된 일반소득 60% 이상이 개인지주회사의 소득이어야 한다. 여기서 조정된 일반소득(AOGI)⁵⁶²⁾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소득⁵⁶³⁾에서 자본소득과 내국세법 1231조 자산(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사업용 자산과 토지)의 매각 이익을 제외한 일반소득(OGI)을 구해야 한다. 연후 임대소득 비용, 광산, 원유와 가스 로열티, 일부 이자수입 등을 제외하

559) 따라서 S 법인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도 피할 수 있다. 이는 유한책임회사(LLC)도 마찬가지이다.

560) 기금(trust)은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양도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기금은 양도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기금이 종료되면 주된 수혜자(principal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한다.

561) 이들 단체가 보유한 주식은 물론 개별 주주나 파트너 등의 지분에 따라 비율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환산된다.

562) Adjusted Ordinary Gross Income.

563) 조정된 일반소득은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따라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제외되며 총수입에서 판매비용도 제외된다.

면 조정된 일반소득이 된다(Sec. 543(b)). 임대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감가상각, 재산세, 이자경비 및 임대료가 공제될 수 있는데 임대소득에서 이들 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은 조정된 임대소득(AIR)이라고 한다. 이외 임대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지주회사 소득(PHIC)은 배당, 이자, 필름 임대료, 연금, 일부 경비를 제외한 임대소득(AIR), 로열티, 25% 이상의 주주가 수행한 개인서비스 계약으로부터의 소득과 25% 이상의 주주가 사용한 회사 자산의 임대소득 그리고 유산/신탁기금으로부터의 배당수입 등을 포함한다(Sec. 543(b)). 이들 소득은 한 예로 자본금에 해당하는 지급금으로 면세가 허용되어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개인지주회사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청산 배당 등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소득도 제외된다⁵⁶⁴⁾. 로열티의 경우 특허, 상표나 저작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소득만 포함된다. 로열티 소득 중에서 저작권, 필름 임대, 광산, 원유와 가스, 사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지주회사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⁵⁶⁵⁾.

또한 대부분 수입이 임대료인 주식회사의 임대소득도 마찬가지로 개인지주회사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다(Sec. 543(a)(2)). 이외 개인 서비스의 경우 전문사업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이 자신의 소득을 주식회사에 유보하고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25% 이상의 주식을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이외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수행할 사람을 지명할 수 있으면 이러한 서비스 계약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은 개인지주회사 소득(PHIC)으로 간주된다(Sec. 543(a)(7)).

개인지주회사 세금은 우선 배당되지 않은 소득(UPHIC)⁵⁶⁶⁾을 산정하여 여기에 15% 세율(2003~2010년)을 곱하여 결정한다. 즉, 세금은 전체 소득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은 소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적시에 배당을 하면 개인지주회사 세금을 피할 수 있다(deficiency dividend 등). 배당되지 않은 소득을 환산하려면 회사 과세소득에서 다양한 항목을 가감해야 한다(Sec. 543(b)(3)). 특히 연방소득세 등은 과세소득을 줄이지는 않지만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될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564) Reg. Sec. 1.543-(1)(b)(1)

565) Reg. Sec. 1.543-(1)(b)(3)

566) undistributed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제외하고 배당되지 않은 개인지주회사 소득을 구한다. 이에 비하면 배당수입공제는 주주에 배당으로 지급될 수입을 줄이는 효과가 없으므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지주회사 소득을 구한다.

과세소득에 추가되는 항목으로는 배당수입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와 순영업손실공제, 전년도로부터 이월하여 사용한 기부공제, 임대소득을 초과하는 임대비용 등이 있다. 연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미국과 외국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 초과 자선기부금(10%), 전년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NOL), 자본소득(장기차익-단기손실), 배당지급공제 등이다(dividend paid deduction). 자본소득의 조정은 주식회사가 거액의 장기보유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개인지주회사로 분류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지주회사 세금은 세수 확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기업, 특히 소유가 집중된 회사가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이를 개인소득세 차원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개인지주회사는 현재와 이전에 적립된 이윤을 주주에게 지급하면 배당지급공제(dividend paid deduction)를 받을 수 있다(Sec. 561(a)). 배당지급공제 규정의 탄력적 운영에서 알 수 있듯이 나중에라도 개인지주회사가 배당을 하면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선배당(preferential dividend)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배당은 주주가 소유한 주식 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거나 주식 종류보다 더 많은 혹은 적은 배당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Sec. 562(c)). 이 경우 초과금액이 아닌 모든 배당금을 공제할 수 없다.

우선, 과세연도 종료 이후 2½개월 이전에 배당을 지급하면 전년도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공제가 가능하다(Throwback dividends). 다만 사후 배당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회사소득과 전년도 배당의 2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전년도 배당이 없으면 이 규정을 활용할 수 없다. 두 번째로, 개인지주회사가 현금 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아도 배당지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Sec. 565). 주주와의 합의하에 주식회사가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가상의 배당을 하면 주주는 이를 즉각 다시 돌려주어 회사 자본금에 기여한 것으로 처리한다(Consent dividend). 그 결과 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가상의 합의배당은 회사가 배당할 현금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유용하다. 또한 이전 2개 연도에 지급된 배당을 이월하여 현 과세

연도의 개인지주회사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Dividend carryover). 다만 개별 과세 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 (Sec. 564).

마지막으로 개인지주회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은 세금 납부 대신에 부족한 배당(deficiency dividend)을 하면 이전 과세연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Sec. 547).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확정하고 90일 이내에 배당을 지급하고 난후 세금 확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하여 개인지주회사는 주주 차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로 회사 차원의 개인지주회사 세금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배당을 지급해도 개인지주회사 세금으로 인한 벌금이나 이자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지주회사 세금은 주식회사가 개인지주회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 첨부된 Schedule PH를 작성하여 신고한다. 주식회사가 납부할 세금이 없을지라도 만약 개인지주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세시효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⁵⁶⁷⁾.

(b) 이윤 적립세(accumulated earning tax)

개인지주회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기업은 이윤 적립세가 적용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사업 확장 등 선의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내부에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사업상 필요 이상으로 수익을 축적하면 주주 배당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이윤 적립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윤 적립세는 명칭과 달리 회사 내부에 축적된 전체 이윤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에 추가로 유보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며 세율은 개인지주회사 세금과 마찬가지로 2003년 이후 15%로 인하된 바 있다.

이윤 적립세는 ‘주주의 소득세 납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윤을 배당하기보다는 회사에 적립하기 위하여 설립 혹은 이용되는 주식회사에 적용’ 된다(Sec.

567) Reg. Sec. 301.6501(f)-1.

532(a)). 개인지주회사, 법인세 면세 회사(Sec. 501~505) 그리고 S 법인에 대해서는 이윤 적립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세금과 달리 이윤 적립세는 기업이 신고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이 조사하여 부과한다⁵⁶⁸⁾. 이론적으로는 이윤 적립세가 면제 업체를 제외한 모든 기업에게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주주를 위하여 배당 결정을 하는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에게 주로 적용된다.

합리적인 사업상의 필요를 넘어서 이윤을 유보하는 주식회사가 세금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윤 적립세 대상이 될 수 있다(Sec. 533(a))⁵⁶⁹⁾. 다만 제한적인 경우 입증 부담은 주식회사가 아닌 국세청에 있다(Sec. 534). 세금 기피 여부는 개별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법에 의하면 배당실적이 미미하거나 사내 유보금이 상당한 경우, 주식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주주나 친척 등에게 제공된 대부금이나 개인비용⁵⁷⁰⁾) 그리고 해당 업체의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 투자 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⁵⁷¹⁾. 지주회사(holding company)나 투자회사는 이러한 기준과 달리 일단 납세 기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우선 가정한다(Sec. 533(b))⁵⁷²⁾.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은 신중한 사업자가 현재와 미래 사업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 수준의 이윤 유보를 의미한다. 사업상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적립한 필요한 준비금으로 고객에 대한 대출, 부채 상환, 상품 손상 준비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공장 대체 그리고 일반 운영자금(working capital)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립된 이윤도 합당한 이유로 간주된다(Sec. 537). 일반 운영자금은 기업의 운영주기와 판매비용 그리고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정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Bardahl formula).

주주가 사망할 때 유산신탁기금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태환, 즉 다시 매입

568) 기업이 법인세 신고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만약 이윤 적립세가 부과되면 법인세 신고기일로부터 이윤 적립세 납부일까지 이자가 가산된다(Sec. 6601(b)).

569) 국세청이 사내에 누적된 유보금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면 이러한 판단이 맞다는 가정을 한다. 이에 대하여 기업은 우월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를 통하여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570) 즉, 주주의 개인적 혜택을 위해 지출된 경비를 말한다. 이외 동일한 주주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제공된 대출금도 세금을 기피하기 위하여 배당 대신 지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571) Reg. Sec. 1. 533-1(a)(2).

572) 소유회사나 투자회사는 자산을 소유하고 소득을 징수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 이외 다른 활동이 없는 회사를 말한다(Reg. Sec. 1. 533-1(c)).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윤을 배당하지 않고 적립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의 적립금 규모는 법에 정해져 있다(Sec. 303). 또한 어떤 민간단체가 법이 정한 규모 이상으로 주식을 소유했을 때 이를 태환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쌓을 수 있다(Sec. 4943). 법에 따로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 축소나 특정 손실에 대비한 보험성 자금, 파업이나 피용인 은퇴를 대비한 준비금도 필요 자금으로 해석한다. 다만 이러한 준비금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실행 가능한 계획 등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윤 적립세 세율은 개인지주회사 세율과 같다. 즉, 2003~2010년 사이에는 15% 세율이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2003년 이전처럼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부과된다. 기업은 개인지주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함으로써 이윤 적립세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업이 법인소득 신고를 한 후 국세청이 신고서를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신고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문제가 제기 때문에 사후배당이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윤 적립세에서는 결손배당(deficiency dividend)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윤 적립세의 과세표준(accumulated taxable income)은 일반 과세소득에서 일부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다. 특히 이윤 적립세의 과세소득은 일반 과세소득에 비하여 경제적 개념의 소득에 더 가깝다. 우선 개인지주회사와 마찬가지로 배당수입공제가 일반 과세소득에 추가되어야 한다(Sec. 535(b)). 다만 미국 국내생산 공제는 추가되지 않는다. 연후 순영업손실 공제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개인지주회사 세금과 달리 이전 연도 순영업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전 연도로부터 이월되어 공제된 기부금과 자본손실 이월공제가 추가된다.

여기에 소득세와 외국 소득세 납부액, 과세소득 10% 이상의 기부금, 순자본소득(양도손실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분 제외), 금년도 순자본손실, 배당지급공제 그리고 이윤 적립공제(accumulated earnings credit)를 제외하면 이윤 적립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이윤 적립세에 적용되는 배당지급공제(dividend paid deduction)는 개인지주회사와 비슷하다. 다만 공제가 허용되는 배당은 일반 배당, 사후 배당(throwback dividend), 가상의 합의배당(consent dividend), 청산 지급금(liquidating distribution)이다. 그러나 우선 배당은 이윤 적립세를 위하여 공제될 수 없다.

이윤 적립공제는 기업들이 이윤 적립세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내부에 유보할 수 있

는 최대 이익금을 의미한다. C 법인의 경우 최소 25만달러에서 이전 연도까지의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이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유보한 금년도 이익 잉여금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계, 설계, 자문, 법률 등 개인 서비스회사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15만달러이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기업이 적립한 금액은 25만달러를 초과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은 기업은 이 금액(최소기준)이 큰 의미는 없다. 이윤적립공제는 여타 세액공제와 달리 이윤 적립세에 대하여 상쇄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소득에서 공제된다. 또한 소유회사나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익 잉여금 기준(최대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최소 기준(25만달러 - 이전연도 적립금)만 적용될 수 있다. 이윤 적립세는 개인지주회사 세금과 달리 국세청이 부과 고지한다.

3. 법인소득

가. 총칙규정

개인과 마찬가지로 C 법인(이하 일반 주식회사)도 소득과 공제에 대한 납세주체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과세소득은 개인소득세에서 논의된 과세 사업소득과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매년 주식회사는 법인세를 산정, 납부해야 하며 이외 법인세 최저한세(AMT) 그리고 주주들에게 충분한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윤 적립세(accumulated earning tax)나 개인지주회사세(PHC tax)를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표 II-4〉 법인세 납부 의무액의 일반적 결정방식

법인세	최저한세(AMT)
총소득 - 공제 및 손실 특별 공제 이전 과세소득 - 특별 공제	순영업손실 공제 이전 과세소득(A) (± 과세소득 조정항목) + 세금우대항목 - 대체세 순영업손실 공제
과세소득 × 법인세 세율	최저한세 과세소득 - 법정 면제액
일반 납세의무액 - 외국세액공제 및 보유 세액공제 일반법인세액(A) - 기타 세액공제 + 이전에 신청한 세액공제 환수	과세표준 × 0.2 공제 이전 잠정 최저한세 - 최저한세 외국세액공제 잠정 최저한세 - 최저한세 투자세액공제 - 일반법인세(B)
일반법인세 납부 의무액(B)	최저한세 납부의무액(0보다 클 경우)(C)
일반법인세 납부 의무액(B) + 최저한세 납부의무액(C) + 이윤 적립세 + 개인지주회사세 - 추정 납부세액	
순납부세액(혹은 환급세액)	

주: 이윤 적립세 등은 배당이 불충분한 등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세금임.

자료: Prentice Hall(2008).

〈표 II-4〉에서 보듯이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에 법인세 세율을 곱하면 일반적인 법인세를 구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총소득은 총이윤과 기타 소득으로 구성된다. 즉, 총이윤은 주식회사의 총수입에서 각종 매출원가를 제외하고 난 이윤을 말하며 기타 소득은 양도소득 이외 배당, 임대료, 이자수입 등 여타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재고자산 처분에 따른 소득은 이윤에 포함). 연후 개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를 제외하는데 주식회사는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공제는 사업용 경비로 우선 간주된다.

일반적인 법인세가 주식회사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닐 수 있다. 즉,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을 거쳐서 산출된 과세표준에 20% 세율을 곱한 잠정 최저한세를 구하고 만약 이 금액이 일반법인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법인세 납세의무액에 포함해야 할 수 있다. 이 금액에서 법인이 그 동안 납부한 추정세액 등을 제외하면 소득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할 순납세의무액을 구할 수 있다.

미국 주식회사는 이윤의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연방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 자회사(subsidiary)가 주식배당을 하거나 청산될 때까지 이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납세 이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외국 자회사의 소득 일부 혹은 전부가 미국법에 따라 과세되기도 한다. 이외 외국 주식회사의 지사는 미국의 상거래나 영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하여 대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 회사가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에 있는 경우 미국에 있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미국에서 과세한다.

나. 비과세소득

1) 일반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은 일반소득세에서 논의된 바 있다. 우선, 지방정부 채권(bond)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Sec. 103). 그러나 이러한 채권의 매각으로 실현된 이익은 과세되며 연방정부채권 이자소득도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의 경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상당 부분(70~10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당수입공제는 비록 공제의 형식으로 주식회사 총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지출경비가 아닌 소득에 해당한다. 특히 계열회사 즉,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주식 80% 이상을 소유한 경우 배당소득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배당수입공제는 주식회사 공제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세 번째로, 임차인이 임대받은 부동산 등의 자산에 대하여 신축 등 자산가치를 향상하는 행위를 하면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즉각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임대

계약 종료로 자산이 반환되면 해당 신축 부분에 대한 장부가액이 영(0)으로 기록되고 추후 자산을 매각할 때 이익을 인정한다. 그러나 임대료 대신 신축 행위가 발생하면 이는 임대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Sec. 109).

네 번째로, 피보험자 사망으로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된다(Sec. 101(a)). 그러나 2006년 8월 이후 발행되고 고용회사가 소유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고용 회사가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보험금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Sec. 101(j)). 다만 피보험인 사망 이전 12개월간 피보험인이 해당 고용회사에 고용되어 있었거나 보험계약이 발행되는 시점에 회사 임원이었다면 모든 보험금을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key-person life insurance). 이와 같은 임원 생명보험의 경우 그 대신 주식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부채를 탕감받으면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부채를 탕감받으면 지급불능(insolvency)에 해당하는 탕감금액은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Sec. 108(a)(3)). 여기서 지급불능이란 납세자의 전체 부채가 전체 자산의 공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지급불능 상태의 납세자가 부채 탕감으로 실현한 소득은 취소된 부채가액과 부채상환의무 면제 이후 회사 자산가액이 부채를 상회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⁵⁷³⁾. 한편 납세자가 파산 상태인 경우에는 지급불능 여부와 상관없이 탕감받은 모든 부채가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2) 해외소득 성격의 비과세소득

형식은 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미국 국내생산 공제(U.S.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가 있다. 이는 사업체 형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하여 창출되는 순수입의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573) 즉, 갑의 부채는 \$600,000이고 자산은 \$540,000이라고 하자. 이 때 을이 \$120,000에 해당하는 채무를 \$50,000을 받고 면제해주면 탕감액은 \$70,000이다. 이 경우 지급불능으로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은 기업 차원의 지급불능상태 \$60,000($600,000 - 540,00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갑은 \$60,000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0,000은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규정은 공제에서 논의한다.

오랫 동안 미국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즉, 1971년 국제 판매 미국회사(DISC,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에 대하여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세법조항을 도입하였고 GATT에서 이러한 제도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있자 1984년 해외 판매회사(FSC, Foreign Sales Corporation) 조항을 신설하였다. 연후 2002년과 2004년 해외 판매회사와 역외소득 면제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emption)가 다시 WTO에서 수출보조금으로 판명되자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내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내생산 공제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폐지된 역외소득 면제제도는 일부 자산의 판매, 임대 혹은 일부 서비스의 제공으로 창출된 소득을 일정 부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 혹은 소비되어야 한다. 해당 자산은 50% 이상의 공정가격이 미국에서 생산되고 50% 이상이 노동비용이어야 한다. 또한 판매의 주요 과정이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면제되는 해외무역소득은 외국무역소득의 15%, 해외무역 총수입의 1.2% 혹은 외국 판매 및 임대소득의 30%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다(Form 8873).

다. 과세소득

1)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산정방식의 차이

C 법인은 개인과 같은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소득과 공제의 개념이 법인세에도 대부분 적용된다. 즉 내국세법 61조에 정의된 총소득이 개인과 주식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물론 이혼 위자료 등 내국세법 101~139조에 명기된 법정 비과세소득이 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지방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에서도 비과세된다. 이처럼 과세상 소득과 공제의 개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아래 <표 II-5>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자산 처분(교환과 매각)에 있어서 개인이나 주식회사가 유사하게 과세된다. 실현된 손익의 결정과 손익의 성격(양도 혹은 일반소득) 그리고 내국세법 1231조는 유사

하게 적용된다. 이외 비자발적 자산 전환(1031조)이나 유사자산 교환(1033조)에 따른 이연 규정도 같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손익의 처우가 다를 수 있고 또한 주식회사는 내국세법 1250조 자산의 매각에 따른 감가상각 환수(291조)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 인정을 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순자본소득(장기 순양도소득-단기 순양도손실)에 대하여 일반소득세 대신 15%(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지만 주식회사는 다른 법인소득과 똑같이 일반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순자본손실이 발생하면 개인은 3,000달러까지 다른 소득과 상쇄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의 다른 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없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만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은 자본손실을 이전 연도로 소급할 수 없지만 이후 연도로는 연도 제한 없이 계속 이월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자본손실은 단기 순손실로 간주되어 이전 연도 3년간 소급할 수 있고 그래도 소진되지 않은 자본손실은 이후 연도 5년까지만 이월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손실은 과세 목적상 소멸된다.

두 번째로, 1250조 자산(부동산 건축물 등)을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개인은 정액법을 이용하였다면 감가상각이 허용되지 않았을 금액에 대하여 이를 일반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Sec. 1250 depreciation recapture). 이를 제외한 양도이익은 1250조와 1231조 이익의 합으로 간주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자산을 1250조 자산이 아닌 1245조 자산이었을 경우 일반소득으로 인정하였을 금액의 20%를 추가로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Sec. 291). 이외 상장된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을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중소기업 주식(SSBIC) 등에 모두 투자하면 실현된 이익 인정을 이연할 수 있다(Sec. 1044(c)(3)).

〈표 II-5〉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주요 차이점

항목	차이점
총소득	일반적으로 동일(차이-개인 : 부가급부 면세, 주식회사: 자본기여금 면제)
공제	개인은 표준 및 인적공제와 함께 조정된 총소득 산정을 위한 사전·사후공제로 구분 주식회사는 조정된 총소득 개념이 없고 비용 공제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비용
자선기부금	개인 : AGI의 50%로 제한(자본소득자산은 30%), 실제 기부 제공한 연도에 공제 주식회사는 배당수입공제(DRD) 등을 무시하고 과세소득의 10%로 제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이듬해 3월 15일 이전까지 제공하는 기부금도 금년에 공제
감가상각의 환수 (Sec. 1250 자산)	개인 : 부동산의 경우 정액법 사용으로 MACRS 규정에서는 환수가 불가능 Sec. 1245에서의 환수금액이 Sec. 1250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20% 환수 가능
배당수입공제	개인 : 공제 불허, 주식회사는 주식소유권에 따라 70, 80, 100% 특별공제 가능
순 양도소득	개인 : 5% ¹⁾ , 15% 세율로 과세(10, 20, 28% 가능), 주식회사는 일반법인세율로 과세
양도손실	개인 : 손실의 \$3,000까지 일반소득과 상쇄, 이후 연도 이월은 제한 없이 가능 주식회사 : 일반소득과 상쇄 불허, 양도소득에 대한 상쇄는 3년 소급, 5년 이월 가능
순영업손실 (NOLs)	개인 : 이월(소급)시 NOL에 대한 많은 조정 필요, 주식회사 : NOL은 조정 없이 소득을 초과하는 공제 전액, 개인과 주식회사 공히 이 전 연도 2년 소급과 이후 연도 20년 이월
국내생산 공제	개인 : 공제액은 자격이 있는 국내생산 소득과 조정된 총소득 중 적은 금액 주식회사 : 자격이 있는 국내생산 소득과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이 공제
세율	개인 10~35%, 주식회사: 15~39% (2008년)
최저한세	개인 26, 28%, 주식회사: 20% (2008), 주식회사는 AMTI 조정대상(ACE) ²⁾
수동적 손실	passive loss : 개인, 파트너, S 법인, 개인 서비스, 소유집중 주식회사 주주에게 적 용 그러나 소유가 집중되지 않은 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해손실	개인 : 비사업용 손상손실은 10% AGI 초과금액로 제한(\$100 비공제), 주식회사는 사업경비로서 전액 공제

주: 1) 개인소득세 세율이 15%보다 낮은 납세자에게 적용.

2) Adjusted current earnings.

자료: Prentice Hall(2008).

이외 사업 혹은 투자자산을 매각하고 난 이후 대금을 분할 지급받을 때 다음 연도에 최소한 1번 이상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installment sales). 이 경우 자산 처분 당시 손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익은 매각대금을 지급받을 때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재고와 같이 정기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년 납세자가 인정해야 하는 이익은 납세자가 지급받은 금액을 총이익비율(gross profit percentage)⁵⁷⁴⁾로 곱한 금액이다(Sec. 453(c)).

주식회사는 임금, 임대료, 보험료, 이자비용, 광고비, 세금, 재고자산 등의 매각에 따른 손실, 대손금, 감가상각비용 등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경비’를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다(Sec. 162). 다만 면세증권을 매입하기 위하여 빌린 대출이자, 뇌물, 벌금이나 주식회사가 수혜자인 임직원에 관한 생명보험료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경비는 개인소득세에서는 조정된 총소득을 위한 사전공제(deduction for AGI)와 성격이 유사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 성격을 갖지만 인적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비는 공제가 허용되든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이며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 결과 사후공제(deduction from AGI), 항목별 공제, 표준 혹은 인적공제가 법인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배당수입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등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지만 주식회사를 위한 특별공제도 있다. 이외 창업비용, 기부금, 순영업손실에 대한 공제가 개인과 다를 수 있다. 특히 회사의 조직비용(organizational expense)⁵⁷⁵⁾은 내용연수가 영구한 무형자산으로 간주되어 자본비용으로 처리된다. 다만 주식회사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선택하면 최대 조직비용의 5,000달러⁵⁷⁶⁾를 먼저 공제하고 그 이후 180개월 동안 공제할 수 있다(Sec. 248).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청산하는 시점에 손실로서 공제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 창업비용(start-up expense)이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업을 창설하거나 사업체를 취득하기 위한 조사비나 창립비용 등으로 조직비용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Sec. 195). 이들 비용은 시장조사비, 사업개시와 관련된 광고비, 직원 교육비, 고객과 공급자 등을 확보하기 위한 출장비, 외부 자문비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비용은 기존의 사업체가 지출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 사업비용이

574) 총이윤비용은 매각으로 인한 총이윤을 총계약금액으로 나눈 수치를 말한다. 여기서 총이윤은 총매각대금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총계약금액은 판매가격에서 매입자가 대신 부담하는 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Reg. sec. 15A.453-1(b)(2)).

575) 조직비용은 주로 자문료나 수수료 등이며 주식 등 증권 발생 혹은 매매와 관련된 비용이나 자산을 회사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제외된다.

576) 이러한 공제가 허용되는 조직비용은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주식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지출한 조직비용이다. 조직비용이 \$50,000을 초과하면 초과비용만큼 \$5,000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55,000 이상의 조직비용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2004년 이전에는 사업 개시 후 60개월간 감가상각할 수 있었고 \$5,000 공제는 허용되지 않았다.

어야 한다. 조직비용과 창업비용을 감가상각할지 아니면 자본비용으로 간주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은 소득신고를 처음 할 때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비용으로 간주되어 회사를 청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 과세연도의 종료 후 2½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Sec 404(b)).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보수를 지급해야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이연된 보수규정 때문으로 주식회사가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지급받은 사람이 소득에 포함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주주이며 피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한 번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는 데 비하여 배당은 이중과세된다. 이는 주식회사가 지급한 배당을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만 2010년까지 배당소득은 일반소득 세율이 아닌 양도소득과 같은 세율(5%와 15%)로 과세된다. 따라서 소유집중기업의 경우 S 법인을 선택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도 한다.

피용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부가급부는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하며 피용인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국세청은 주식회사가 지급하는 보수가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배당인지를 점검한다(substance over form doctrine). 만약 금액이 불합리하면 국세청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피용인에게 이를 모두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상장 주식회사는 5명의 최고 경영인 이사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공제할 수 없는데 다만 성과에 기초한 수당은 예외이다(Sec 162(m)). 이외 고용주와 피용인은 총 15.3%에 달하는 사회보장 관련 세금(12.4% 사회보장세와 2.9% 의료보험세)을 납부해야 하며 일부 임금에 대하여 실업세도 납부한다.

물론 C 법인 형태를 유지하면서 피용인 입장에서 비과세되지만 공제가 허용되는 부가급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부가급부는 그 성격에 따라 소득 이연 혹은 면세 혜택이 있다. 우선 연금, 이윤공유 플랜, 주식 보너스 등은 주식회사가 이를 지급할 때 과세하지 않고 피용인이 그 혜택을 누릴 때 과세된다. 더욱이 생명, 의료, 사고 및 손해보험 등은 아예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비과세된다. 부가급부의 단점은 이러한 혜택이 모든 피용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회사는 소득에 따라 15~39%의 누진적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세율이 순차적으

로 증가하지 않고 38%와 39% 세율은 중간에 부과되며 18,333,333달러를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된다. 이외 주식회사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20%의 최저한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과세소득은 일반 과세소득을 조정한 금액으로 잠정 최저한세가 일반법인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일반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외 주지하다시피 배당은 세후소득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주주들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

2) 과세소득의 결정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법인세는 일반과세 방식과 최저한세 방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우선 총소득은 총이윤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득의 원천과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포함한다. 특히 개인소득과 마찬가지로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소득은 현금 외에 제공받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정가격을 포함한다.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업체도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소득이 실현되지 않지만 할인된 매입금액도의 제배당이나 의제보수로 간주될 수 있다.

기업 경영에서 총이윤은 총수입에서 매출원가(COGS)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매출원가는 판매한 항목들의 비용을 합하여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세연도 개시 시점의 재고⁵⁷⁷⁾에 그간 매입 혹은 생산된 물품비용을 합한 후 과세연도 종료 시점의 재고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⁵⁷⁸⁾.

총수입은 모든 사업 활동으로부터 얻은 판매대금 혹은 수입대금이며 선수금은 지급받을 당시 신고해야 한다. 장기계약에 의한 선금금이나 분할 판매⁵⁷⁹⁾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Sec. 460)⁵⁸⁰⁾. 총소득은 이렇게 산정된 총이윤에 자본(양도)차

577) 재고는 구입비용 혹은 구입비용과 시장가격 중 낮은 금액 혹은 국세청이 인정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다만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채택한 기업은 구입비용으로 평가해야 한다 (IRS Pub. 538)

578) 재고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Schedule A를 참조.

579) 분할판매방식에 의한 수입은 납세자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가 아닌 실제로 현금이 들어올 때 이를 인정한다.

580) Reg. Sec. 1.451-5.

익과 배당, 임대료, 이자수입 등 여타 소득을 합한 것이다(〈표 Ⅲ-6〉 참조). 이러한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과세소득이 되며 이를 해당 법인세율과 곱하면 납세 의무액이 된다. 연후 세액공제와 이미 납부한 추정세액을 빼고 가산금을 합하면 일반 법인세 납세액이 결정된다.

소득에 포함되는 배당수입은 국내회사로부터 지급된 배당소득으로 부채로 구입한 주식 아닌 주식배당이어야 하는데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특별공제된다. 이외 특별 공제항목에는 국내생산공제가 있다. 임대료 수입은 총수입이며 이에 대한 고장수리, 세금, 감가상각은 해당 공제항목에서 제외된다. 이외 이자수입과 양도차익(capital gain), 사업자산으로부터의 양도차익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데 기타 소득에는 이전에 공제된 항목이 더 이상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 이를 기타 소득에 포함한다. 이러한 예에는 대손금으로 처리된 부채의 환수와 공제된 세금의 환급 등이 있을 수 있다.

〈표 Ⅱ-6〉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방식

분류	항목
소득	총(판매)수입 - 반환 및 면제(return and allowance) <u>- 판매비(재고+매입경비+노동비용+기타비용-연말재고)</u> 총이윤 <u>+ 배당¹⁾ + 이자 + 임대료 + 로열티수입 + 양도수익 + 기타소득</u> 총소득
공제	임원보상+임금+보상유지비+대손금+임대료+세금 +이자비용+자선기부금+감가상각비+감모상각비+광고비 <u>+ 연금, 이익배분+비용인 부가급부+기타공제</u> 순영업손실(NOL) 및 특별공제 이전의 과세소득 <u>- 순영업손실(NOL) - 특별공제²⁾</u>
	과세소득

주: 1) 일반 배당수입은 일부만 공제될 수 있고 계열회사나 일부 외국기업,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은 100% 공제됨.

2) 특별공제는 배당수입공제와 국내생산공제를 의미함.

자료: Form 1120, 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IRS.

3) 공제항목

(a) 공제의 기본원칙

미국 소득세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원칙과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공제는 사업비용 등 일반공제 이외에도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다. 사업용 세액공제는 크게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된 일반사업공제, 외국세액공제 그리고 최저한세 공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일반공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에서 공제항목은 크게 사업용 공제, 비사업용 공제⁵⁸¹⁾ 그리고 개인 공제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한 공제제도가 적용된다. 다만 주식회사와 자영업자는 과세소득을 줄이기 위해 비용공제를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파트너십 등 도관업체는 일부 비용을 총소득과 상쇄하고 난 이후 순이익을 파트너에게 이전하기도 하며 일부 공제는 파트너에게 직접 이전된다.

납세자 비용은 소득과 달리 법에서 허용하는 항목만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세법 162(a)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서 필요하고 일상적인 경비는 모두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대부분 사업비용이 공제 가능하다. 특히 사업 혹은 거래용 지출공제(business or trade deduction)는 일반적이고 필요한 경비로서 금액이 합리적이고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⁵⁸²⁾와 관련된 경비이어야 한다(Sec. 162(a)). 또한 자본경비가 아니며 비과세소득 창출을 위한 지출도 아니며 공공정책에 위반되는 비용이 아니어야 한다. 즉, 벌금이나 뇌물은 공제가 가능하지 않고 반독점 피해 보상금도 금액의 3분의 2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적 경비란 자본경비가 아닌 상습적인 경비를, 그리고 필요한 경비란 적절하고

581) 비사업용 공제는 비사업용 소득 창출과 관련된 공제로서 소득 창출(징수)에 지출되고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한 자산 관리, 유지, 경영을 위하여 사용되며 세금 납부와 관련된 경비이어야 한다.

582) 사업 혹은 거래는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납세자가 사업자로서 노력을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투자행위는 사업가적 노력이 결핍되어 사업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어떤 활동이 5년 연속기간 동안 3년간 이윤을 창출하면 취미활동이 아닌 사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도움이 되는 경비를 말한다. 합리적 금액은 특정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즉,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이 주주인 피용인에게 지급한 보수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본경비는 즉각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다만 내국세법 179조에 따라 일부 자본경비는 112,000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다양한 공제항목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래 제시된 특별공제를 제외한 일반공제 항목을 공제하고 난 후 자선기부금, 배당수입공제, 순영업손실(NOL) 그리고 미국 국내생산 공제의 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기부금 공제는 과세소득의 10%로 제한이 되는데 이때 기부금, 해당 과세연도 이후 연도로부터 소급받은 순영업손실과 자본손실(carryback), 배당수입공제 그리고 미국 국내생산 공제를 하기 이전의 과세소득이 기준이 된다(그러나 이전 연도로부터 이월된 순영업손실 공제는 포함: carryover). 기부금 공제가 결정되면 이월된 순영업손실을 추가하고 기부금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 기준으로 배당수입공제를 산정한다. 그 다음 미국 국내생산 공제를 결정할 때는 순영업손실을 제외하고 과세소득을 구한다.

(b) 공제방식의 제약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재판매를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이러한 생산 혹은 재판매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다(uniform capitalization rule). 즉, 일부 비용은 즉각 비용 공제하지 않고 생산된 자산의 장부가액이나 재고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 연후 해당 물품을 매각하면 매출원가로 공제된다. 혹은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사업에서 사용하면 감가상각하고 만약 매각하면 실현된 이익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Sec. 263A).

이러한 자산에는 부동산과 판매를 위한 유형 개인자산이 있다. 자본화되는 비용은 직접비용(재료비와 임금)과 배정이 가능한 대부분의 간접비용이다⁵⁸³⁾. 즉, 이들 자산 생산에 직접 소요된 재료비와 임금도 자본경비로 간주해야 한다. 이자비용은 일부 자

583) Reg. Sec. 1.263A(1)(e)(3).

산에 한정하여 자본 처리한다. 그러나 개인용 자산과 장기계약에 의하여 생산된 자산, 연구개발비⁵⁸⁴⁾, 탐사비용 그리고 예술품 창작비용은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고비용에서 판매된 물품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선입선출법(FIFO)과 후입선출법(LIFO)이 있다.

두 번째로, 특수관계인(related persons) 사이의 거래로 인한 경비는 만약 납세자가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사용하면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거래 상대방이 수입을 소득에 포함하는 연도에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Sec. 163(e)(3)). 이외 감모상각, 금융기관의 일부 공제, 오염관리시설, 원유 등의 탐사비용 등도 공제액을 조정해야 한다(Sec. 291). 회사 임원 등에게 지급한 비정상적인 보수도 공제되지 않는다(Sec. 280G).

한편 일반 사업경비와 달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출한 조직비용과 초기비용(start-up cost)에서 일정 한도 이외 금액(5,000달러)은 자본경비에 포함된다. 수동적 사업행위(passive activities)⁵⁸⁵⁾에 따른 손실과 공제에 대한 제한은 개인서비스 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Sec. 469). 이외 선금금(prepaid expense)은 일반적으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 자본경비로 상각해야 한다.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과세항목에 대하여 지출한 경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이자는 모두 공제가 허용된다⁵⁸⁶⁾. 그러나 과세소득을 창출하지 않는 이자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부동산 등 사용연도가 장기인 자산이며 생산기한이 2년 이상인 자산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이자비용은 자본비용으로 처리된다. 또한 다른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 이자는 500만달러까지 공제된다(Sec. 279). 이외 원금에서 미리 제외된 이자 등 사전 납부한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도 제한된다.

특히 납세자는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할인채권(OID)⁵⁸⁷⁾을 매입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584) 연구개발비는 납세자가 원하면 즉각 공제할 수 있고 아니면 감가상각할 수 있다.

585) 기업이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업행위와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행위가 있다.

586) 개인의 경우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투자소득에 한하여 공제가 허용되지만 주식회사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587) Original Issue Discount: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발행 당시 원금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채권을 말한다.

채권 발행자는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지만 현금주의 원칙을 사용하는 채권자는 만기까지 이자소득 실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할인채권의 경우 현금주의 채권자도 이자소득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ec. 1272(a)(2)).

개인 납세자와 달리 주식회사는 자본손실 공제에서 제약을 받는다. 특히 총소득에 포함된 자본소득이 있어야 자본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자본소득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이전 3년간 소급되어 당시 자본소득과 공제할 수 있고 그 다음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가 일반적 사업 과정에서 납부한 연방세와 지방세 세금은 대부분 공제가 허용된다. 재산세, 판매세, 고용세와 실업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납부세액도 납세자가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일반 공제된다. 그러나 연방소득세와 유산증여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c) 일반공제

① 일반 항목

피용인 임금과 부가급부는 금액이 합리적⁵⁸⁸⁾이면 모두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상장기업이 특정 임원에게 100만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특정 임원은 최고 경영자와 보수가 가장 많은 4명의 임원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는 기금 혹은 연금 등으로부터의 소득이나 부가급부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적에 기초한 보수나 커미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보수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 과세연도의 종료 후 2½개월 이내에 보수를 지급해야 의무가 발생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Sec 404(b)).

한편 피용인에게 제공하는 부가급부나 연금 등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에서 자세하게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일부 부가급부의 경우 피용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식회사는 여전히 공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제항목에는 사고 및 건강보험료, 선

588) 특히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에서 주주이자 고용인에게 지급한 보수가 비합리적이면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의 지급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합리적 금액은 기업에서 피용인의 역할, 업무, 성과, 기업 상황, 유사한 피용인의 보수 비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택적 복지제도(cafeteria plan), 교통비용, 이사비용, 교육지원비용 등이 있다. 이외 피용인 연금에 제공되는 고용주 기여분도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실제로 기여하는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과세 이연의 속성 때문에 고용주가 연금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은 가입자의 보수와 일정 금액(2008년 46,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된다(Sec. 415(c)(1)(A)).

주식회사의 대손금은 모두 사업용 손금으로 특별 제외방식(specific charge-off method)으로 발생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특정 채권이 부분적으로나 전부 가치를 상실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개인 납세자 대손금은 일반적으로 가치를 상실한 과세연도에 공제한다. 대손금 공제를 위해서는 정당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전에 소득에 포함되었거나 자본손실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즉,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미지급 수수료, 임대료나 이자를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이를 매각할 경우 손실 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부채의 장부가액이다.

이자경비는 사업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사업용, 비사업용 혹은 개인용 이자의 성격을 결정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자 지급금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납세자 본인의 부채에 대한 이자이어야 한다. 비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이자경비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미리 지급된 이자경비는 이자 지급금이 적용되는 전체 기간에 걸쳐 공제를 해야 한다. 임대료는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이며 자산 매입가격의 일부가 아니면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용 자산에 관한 화재나 손상 보험료는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피용인을 위한 생명보험료는 그 수혜자가 고용인이면 공제될 수 없다.

납세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광고비는 공제가 허용되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광고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행위에서 발생한 대부분 세금은 세금 공제(부동산세)나 사업경비(취발유 비용에 포함된 취발유세 등)로 공제된다. 그러나 연방소득세, 유산상속세, 증여세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 도로개선용 세금 등 자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지방세금도 공제될 수 없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에 따른 부동산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매입자와 매각자가 분할 납부한다. 사업과 관련된 회계 및 변호사 비용도 공제되며 사업 유지, 기업 명망 혹은 영업권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공

제된다.

교통비, 출장비, 식비 그리고 접대비에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Sec. 274). 사업 목적으로 납세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밤을 지내면서 지출한 식비, 교통비, 숙박료, 그리고 출장으로 발생한 세탁비 등 일반적이고 필요한 출장비는 공제할 수 있다. 국내출장은 개인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모두 공제된다. 그러나 출장에서 지출한 사업용 식비와 접대비는 50%만 공제할 수 있다. 부인과 자녀 등 종업원을 동반한 자에 대한 출장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용 식비와 접대비는 납세자 사업의 실질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실질적 사업 논의에 참여해야 직접적 연관성이 있으며 실질적 사업 논의를 전후하여 음식이나 유흥이 제공되어야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Sec. 274(n)(3)). 경비는 적절한 기록(대상자, 시점, 장소, 이유)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75달러 이상의 경비는 교통비용을 제외하면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사업이나 접대를 위해 개인 돈으로 지급한 경비(out-of-pocket cost)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용 식비와 접대비는 경비의 50%만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경비의 전액이 수혜자의 소득에 포함되거나 부가급부로서 제외되면 50% 제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⁵⁸⁹⁾. 또한 크리스마스 파티 등 전통적으로 고용인이 피용인의 사교나 오락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도 마찬가지로 50% 제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대중을 위한 샘플이나 판촉용 비용도 제외된다. 그러나 요트, 사냥이나 수영장 등 유흥이나 오락시설과 관련된 경비는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다. 또한 다양한 사교클럽 가입비도 공제될 수 없다. 다만 전문인 협회, 상공회의소, 무역협회나 시민봉사단체 가입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즉, 민간 혹은 공공서비스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회비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단체의 목적이 오락, 유흥, 사업 등으로 회원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면 공제할 수 없다.

자산기부금도 공제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 기부금은 개인 기부금과 차이점이 많으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외 종업원 연금과 이윤 공유 그리고 기타 보상 플랜과 보험 등에 지급한 경비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는 기

589) 즉, 이들 비용이 보수의 일부로서 피용인이나 수혜자 소득으로 보고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타 공제에 포함한다. 이들 경비에는 보험료, 일회용품, 전기료 등과 종업원 주식보유 플랜에 따라 지급된 현금배당 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기부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과 관련하여 입법부 활동에 참석하기 위한 경비 이외 투표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로비성 경비는 공제되지 않는다⁵⁹⁰⁾. 또한 신규사업을 위한 창업비용(start-up cost)은 납세자가 유사한 사업을 이미 영위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공제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사업용 선물의 경우 매년 선물을 받는 사람 1인당 25달러까지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4달러 이하의 광고용 혹은 판촉용 선물은 제한이 없고 고용기간이나 안전 확보를 이유로 피용인에게 지급하는 400달러 이하의 유형 개인자산도 공제된다. 또한 서면의 비차별적 계획에 따라 고용기간, 생산성 혹은 안전 확보를 이유로 피용인에게 지급되는 1,600달러 이하의 상여금도 모든 상여금의 평균비용이 400달러 이하면 공제가 허용된다.

② 감가상각

개인소득세에서 논의되었지만 자본경비는 이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분산 처리되어야 한다. 그 대신 자산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이 허용된 금액만큼 감소한다. 장부가액 조정을 통하여 해당 자산이 처분될 때 처분에 따른 손익이 결정된다. 자본경비를 감가상각할 때 이를 지칭하는 명칭은 자산별로 다르다. 유형자산(depreciation), 무형자산(amortization), 천연자원(depletion). 유형자산은 다시 부동산과 개인자산으로 구분되어 상각된다.

1986년 이후 사용이 개시된 대부분의 자산에 대해서는 조기원가 회수제도(MACRS)를 이용하여 상각해야 한다. 혹은 이러한 일반상각방식 대신 납세자는 대체상각방식(ADS)을 선택할 수도 있다. 두 상각방식의 차이는 얼마나 빨리 상각비용으로 처리하는가에 있다. 특히 조기원가 회수제도에서는 납세자가 정률법에 따라 상각을 하다가 정액법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대체상각제도에서는 자산에 따라 좀 더 오랜 기간에 걸

590) Reg. Sec. 1.162-29.

쳐서 정액법으로 상각해야 한다⁵⁹¹⁾. 이외 상각방식과 상관없이 자산의 서비스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자산에 따라 월, 분기 혹은 연도 중간시점을 기준으로 한다(averaging convention).

조기원가 회수제도에서 개인자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3년~20년의 6개 자산(3, 5, 7, 10, 15, 20년)으로 구분되고 부동산은 거주용 임대자산과 비거주용 부동산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조기원가 회수제도에서 자산의 잔존가치는 무시된다.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은 대체로 5년이나 7년을 기준으로 상각된다⁵⁹²⁾. 이들 8개 부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상각기간과 상각방식이 적용된다. 한 예로 납세자는 정액법과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자산은 정률법(declining balance method)에 따라 상각된다⁵⁹³⁾. 그러나 15년과 20년 자산은 150% 정률법을 이용해야 한다.

거주용 임대자산은 27.5년간 정액법(straight line method)에 따라 그리고 이외 부동산은 39년 정액법에 따라 상각된다. 호텔 등은 거주용 임대자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한편 납세자가 원하면 자산 종류와 상관없이 정액법에 따른 대체상각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방식을 선택하면 계속 이용해야 한다. 해외자산, 50% 이상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자산 그리고 최저한세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상각방식이 이용된다.

납세자는 자본경비의 일정 금액을 상각하지 않고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산은 실제 사업용으로 매입한 유형 개인자산이다⁵⁹⁴⁾(Sec. 179 property). 해외자산이나 부동산은 이러한 즉각 경비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12,000달러(2007년 기준)인데 만약 자산비용이 450,000달러를 초과하

591) 한 예로 대체상각제도에서 컴퓨터와 자동차 상각기간은 조기원가회수방식과 마찬가지로 5년이지만 대부분 기계설비 상각기간은 7년이 아니라 12년이고 사무실 기구도 7년이 아니라 12년이다. 이외 토지 설비는 15년이 아닌 20년간 상각해야 한다.

592) 한 예로 일반 승용차, 버스, 비상업용 비행기, 컴퓨터, 연구개발설비나 사무설비는 5년 자산이며 가구, 대부분의 기계설비, 상업용 비행기는 7년 자산이다. 선박은 10년 동안 상각되며 도로, 운하, 하수도 등 토지 설비는 15년간 상각된다. 이외 TV나 가구 등 임대용 개인자산은 3년, 농장설비는 20년을 기준으로 상각된다.

593) 납세자는 정률법 대신 정액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내용연수가 3~10년인 4종류의 개인자산은 200% 정률법 대신 150% 정률법을 사용할 수 있다.

594) 즉,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이나 손익이 이연되는 자산 교환이나 비자발적 전환은 해당되지 않는다.

면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1 : 1 기준으로 감소한다. 또한 납세자의 사업에서 창출된 과세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비용은 이월할 수 있다. 이외 고가 승용차와 SUV 차량에 대한 공제도 제한이 된다.

스스로 개발을 하지 않고 매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취득 시점부터 15년이다(Sec. 197). 이에 해당하는 자산은 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한 자산으로 영업권, 영업비밀, 기술, 비경쟁 약정, 정부 면허 등을 포함한다. 사업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표권, 복사권, 특허권, 프랜차이즈, 영화 등도 이에 해당한다. 2개 이상의 무형자산을 동시에 취득하고 그 이후 1개의 무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은 공제할 수 없고 그 대신 잔여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상각공제한다. 본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은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197조에 따라 감가상각할 수 없다.

한편 197조 상각자산 이외 연구개발비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경비 처리하거나 자본경비로서 60개월간 상각될 수 있다(Sec. 174(b))⁵⁹⁵⁾. 또한 납세자가 원하면 자본경비로 처리하고 상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초기비용(start-up cost)이나 조직비용을 상각하면 그 기간은 180개월이다. 한편 오염통제시설이나 탁아시설도 60개월간 상각한다. 197조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도 구입이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36개월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따라 상각하지 않고 컴퓨터와 같이 상각한다. 임대계약(지분)은 임대존속기간 동안 상각한다(leasehold).

한편 삼림, 원유, 광산 등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감모상각이 허용된다. 감모상각방식은 비용상각(cost depletion)과 비율상각(percentage depletion)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장부가액을 매각된 자원 비중(실제 판매한 자원 규모를 채굴 가능한 자원 규모로 나눈 비율)⁵⁹⁶⁾으로 곱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이다. 삼림은 비용상각으로 공제를 해야 하며 이 때 삼림과 관련하여 구입한 토지는 감모상각을 할 수 없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595)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특허권의 경우 나중에 특허를 취득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개발비를 즉시 공제할 수 있다. 또는 60개월간 감가상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나중에 특허를 취득하면 남은 비용은 특허권의 사용기간 동안 상각해야 한다(Reg. Sec. 1.174-4(a)(4)).

596) 측정단위는 일반적으로 톤이며 석유 등은 배럴이다.

상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비율감모상각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산출되는 총소득을 특정 자원에 대하여 따로 명시된 법정 비율⁵⁹⁷⁾로 나눈 금액이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상각금액은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원유와 가스는 100%). 비율상각은 비용이 모두 환수되고 장부가액이 영(0)으로 하락해도 계속 상각공제할 수 있다.

③ 자선 기부금

개인과 주식회사 자선 기부금은 공제시점, 현금 이외 자산의 공제 허용금액 그리고 한 과세연도에 허용되는 최대 공제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약속한 연도가 아닌 실제로 제공한 연도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자선 기부가 기부 의무가 발생한 연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부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데 단, 이사회가 기부를 추인하고 해당 연도의 종료 이후 세 번째 달 15일까지 기부해야 한다(Sec. 170(a)).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자산 유형과 주식회사 과세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재고자산과 일부 제한된 자산을 제외하고 주식회사는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총소득에 포함하여 인정하지 않고 자산의 공정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 대신 가격이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손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자산을 매각하여 손실을 실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회사가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할 경우 공제금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FMV)이지만 가격이 오른 자산의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된다(Sec. 170(e)). 우선 매각하면 장기보유 양도이익(자본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간주되는 일반소득 자산⁵⁹⁸⁾의 경우 공제금액은 이들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치에서 자산을 매각하였다면 인

597) 감모비율은 납, 니켈, 우라늄 등이 22%, 금·은·동과 철광 15%, 석탄 10%, 모래 5% 등이다. 원유의 감모비율은 22%이다.

598) ordinary income property: 일반소득 자산은 이를 매각하였다면 일반소득으로 인정하였을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에는 1년 이내로 보유한 투자자산이나 재고자산, 내국세법 1245조, 1250조나 291조에 의거하여 감가상각 환수(recapture)가 적용되는 자산이 있다.

정되는 일반소득 혹은 단기 양도이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정시장 가격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이 일반적으로 공제된다. 만약 자선단체 목적에 맞지 않는 유형 개인자산을 기부하면 공제금액은 공정가격에서 자산을 매각하였다면 인정되었을 단기 차익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밖에 환자나 유아 혹은 대학교나 면세 연구단체를 위하여 제공된 기부자산은 공정한 시장가치 이상으로 평가되어 공제될 수 있다(Sec. 170(e)). 즉, 현금이나 서비스 등과 교환되지 않고 자산의 사용이 이를 제공받은 단체의 면세 목적과 관련이 있으면 주식회사는 기증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가격 상승분(공정시장 가격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합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단 장부가액의 2배 이하가 최대 공제). 교육기관의 경우 주식회사가 기증자산을 제조하고 제조한 후 2년 이내에 기부해야 한다. 교육적 목적으로 기부된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도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 양도이익이 발생하는 자산(capital gain property)⁵⁹⁹을 기부하면 일반적으로 자산의 공정한 시장가격을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인상된 부분도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일정한 상황에서는 공정가격에서 기증자산을 매각하였다면 실현할 수 있었던 양도이익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될 수 있다(Sec. 170(e)(1)). 이러한 경우는 첫째, 주식회사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사업비밀이나 기술 등과 유사한 자산을 기부하거나 둘째, 유형 개인자산을 기부하고 자선단체가 이를 면세 목적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셋째,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일부 민간기금(Sec. 509(a))에 기증한 경우이다. 두 번째 상황은 병원에 미술품을 기증한 경우이다.

두 번째 상황 즉, 주식회사가 특허권 등을 기부한 다음 이를 기부받은 자선단체가 기부자산을 통하여 일정 소득을 창출하면 주식회사가 이에 대하여 추가로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Sec. 170(m)(4)). 추가로 기부공제를 할 수 있는 금액은 기준금액의 합계액이 기부 시점에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첫 2년간 기준금액은 자산 소득의 100%이며 그 후에는 매년 10%씩 감소한다.

주식회사가 한 해에 기부하고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조정된 과세소득의 10%로 제한된다. 여기서 조정된 과세소득은 기부금과 운영업손실(NOL) 및 자본(양

599) 내국세법 1231조 자산도 장기보유 자산으로 간주된다. 다만 1245조, 1250조나 291조에 의거하여 감가상각 환수(recapture)가 적용되면 일반소득자산으로 취급된다.

도)손실 이월금, 미국 국내생산 공제(U.S.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그리고 배당수입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과세소득이다. 10%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부가 이루어진 연도에 공제되지 않고 이후 5년간 이월되어 선입선출방식(FIFO)으로 공제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며 조정된 총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기부 이월금과 당해 과세연도 기부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170(b)(2)).

5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기증자산에 대한 자료를 소득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한다(Sec. 170(f)(11)). 만약 기부금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주식회사는 감정평가서를 취득하고 이에 대한 감정 요약문을 소득신고에 포함해야 한다. 50만달러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서를 소득신고서에 동봉해야 한다. 현금을 기부하거나 자산을 기증받은 단체가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주식, 재고자산, 자동차, 보트나 비행기 등에 대해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수단의 경우 매각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증한 주식회사가 공제할 수 있다. 기부한 자산이 5,000달러를 초과하면 주식회사는 Form 8283을 작성해야 한다.

(d)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

주식회사에게 허용되는 특별공제에는 미국 국내생산 공제, 배당수입공제 그리고 순영업손실(NOL)에 대한 공제가 있다.

① 미국 국내생산 공제(U.S.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

오랫 동안 미국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즉, 1971년 국제 판매 미국회사(DISC,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에 대하여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세법조항을 도입하였고 GATT에서 이러한 보조금이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있자 1984년 해외판매회사(FSC, Foreign Sales Corporation) 조항을 신설하였다. 연후 2002년과 2004년 해외판매회사와 역외소득제도가 WTO에서 수출보조금으로 판명되자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내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내생산 공제조항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자격이 있는 국내소득과 국내생산 공제 이전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비율은 2005~2006년 사이에 3%에서 2007~2009년 사이에 6%로 인상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9%로 증가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주식회사 W-2 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국내소득은 납세자의 국내생산 총수입(domestic gross receipt)에서 이들 수입에 대한 판매비용과 이들 수입에 직접 배정되는 공제, 손실, 여타 비용 그리고 이들 수입에 간접적으로 배정되는 각종 공제, 비용, 손실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내생산 공제를 통하여 기업이 받는 혜택은 금액기준으로 공제비율 $\times$ 과세소득 $\times$ 기업의 한계세율이다. 또는 이 공제를 통하여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은 공제비율 $\times$ 한계세율만큼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2008년 35% 최고 세율의 경우 약 2.1%).

국내생산 총수입은 다음과 같은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말한다. 첫째, 미국에서 전체 혹은 중요한 부분이 생산, 제조, 추출 혹은 재배된 생산자산(유형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성녹음)의 처분, 판매, 교환, 임대활동 둘째, 미국 국내 전기, 천연가스, 수도 생산 셋째, 필름 생산 넷째, 미국에서 이루어진 건설활동 다섯째, 미국에서 제공된 엔지니어나 건축 서비스. 그러나 소매단계의 음식료품 매매나 전기 등의 유통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배당수입공제(dividend received deduction, DRD)

C 법인이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총소득에 포함되는데 배당받은 주식회사가 나중에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삼중의 과세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주식회사와 일부 외국 주식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중 일정 비율은 법인 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된다(배당수입공제). 공제가 허용되려면 C 법인 주식회사 소득과 이윤에서 지급되며 또한 45일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배당을 하는 주식회사 주식의 20% 이하를 소유한 일반 주식회사는 배당받은 금액의 70%를 공제할 수 있고 20%~80%(주식가격과 투표권 포함)을 소유한 주식회사는 배당금의 80%를 공제할 수 있다(Sec. 243(a), (c))⁶⁰⁰. 그 결과 배당소득의 30% 혹은 20%

만 배당받은 주식회사 총소득에 포함된다. 이외 8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100% 공제가 가능하다. 같은 계열그룹(affiliated group)에 속한 주식회사 사이의 배당도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실제 공제금액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한 예로 2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제비율 70%를 배당수입금과 조정된 주식회사 과세소득 중에서 적은 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조정된 과세소득이란 배당수입공제 외에 이월 혹은 소급된 순영업손실, 이전년도 양도손실 이월금, 미국 국내생산 공제 그리고 배당지급공제를 무시하고 산정된 과세소득⁶⁰¹⁾을 말한다(Sec. 246(b)). 그러나 주식회사가 당해연도에 순영업손실을 경험하거나 조정된 과세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배당수입공제로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이러한 제한이 없는 배당수입공제를 할 수 있다.

한 예로 15% 주식을 보유한 회사로부터 100,000달러를 배당받은 기업의 총수입이 200,000달러이고 영업비용은 150,000달러라고 하면 배당수입공제 이전 과세소득은 150,000달러이다. 이 경우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70,000달러($100,000\text{달러} \times 0.7$)이다. 그러나 총수입이 200,000달러가 아닌 140,000달러라면 배당수입공제 이전 과세소득은 90,000달러이다($140,000 - 150,000 + 100,000\text{달러}$). 이 경우 공제가 허용되는 배당수입은 100,000달러 가운데 63,000달러($90,000\text{달러} \times 0.7$)이다. 마지막으로 총수입이 110,000달러라면 배당수입공제 이전 과세소득은 60,000달러이다. 만약 금액 제한이 없이 70% 공제를 모두 할 수 있다면 70,000달러를 제하고 10,000달러의 순영업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회사는 42,000달러($60,000\text{달러} \times 0.7$)이 아닌 70,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요컨대 기업이 순영업손실을 경험하거나 금액 제한이 없는 배당수입공제를 하면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허용된 금액 모두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조정된 과세소득이 배당수입보다 많으면 완전한 공제(배당수입의 70%)가 가능하다. 한편 80% 공제비율이 적용되는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한다⁶⁰²⁾. 70%와 80% 공

600) 그러나 순영업손실이 있으면 70%(80%)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601) 즉, 공제 이전 과세소득을 말한다.

602) 그러나 배당수입공제를 하고 난 이후 주식회사가 순영업손실이 있으면 이러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70%와 80%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기업은 우선 80% 규정으로 과세소득을 산정(감소)한 후 70% 규정을 적용한다.

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회사는 80% 공제를 먼저 산정하고 이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한 다음 70% 공제를 산정한다.

45일 이내로 단기간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옵션(option)이나 short sale 조건 없이 주식을 45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부동산투자기금(REIT)과 면세 주식회사(Sec. 501, 521) 배당도 마찬가지이다. 단기보유 주식이란 배당권을 상실하는 날⁶⁰³⁾ 45일 이전부터 시작되는 91일 기간 동안 46일보다 적은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말한다(Sec. 246(c)(1)). 이는 배당 선언이 있기 직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소득 배당권을 받고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주식배당이 실행되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한 주식을 팔아 배당공제와 양도손실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대출금을 받아 구입한 주식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소득도 총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Sec. 246(A)). 이는 주식 취득을 위한 대출금 이자는 공제받으면서 그러한 주식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tax arbitrage). 다만 대출금이 주식 취득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를 국세청이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은 큰 효과가 없다. 이 밖에도 일반주식 장부가액의 10%⁶⁰⁴⁾를 초과하는 예외적 배당(extraordinary dividend)의 경우 주식을 소유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배당공제를 받아 비과세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삭감해야 한다(Sec. 1059(a))⁶⁰⁵⁾.

계열회사는 같은 그룹 다른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주식 배당금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Sec. 243(a)(3)). 즉, 이러한 성격의 배당은 과세소득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또한 70%(80%) 배당수입규정을 적용하기 이전에 공제된다. 계열그룹은 모회사가 최소한 한 자회사의 주식⁶⁰⁶⁾ 80% 이상(주식가격과 투표권 기준)을 소유하고 개

603) ex-dividend date: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이전에 선언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최초 일자를 말한다.

604) 우선주는 5% 기준.

605) 배당을 한 후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장부가액도 같이 떨어지므로 주식 매각을 통한 손실 신고분이 감소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의 매입을 이용하여 배당을 받고 손실을 신고하는 이중 혜택을 줄일 수 있다. 만약 공제가 허용되어 비과세되는 배당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배당을 받은 연도에 소득에 포함된다.

606)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는 주식에서 제외된다.

별 자회사 주식의 80%를 다른 계열회사들이 서로 보유한 기업군을 말한다(affiliated group). 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미국 법인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배당 수입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 영업을 하는 외국회사소득에는 미국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공제가 허용된다(Sec. 245). 즉, 배당수입공제는 국내회사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배당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 NOL)

주식회사의 총공제가 소득보다 많으면 주식회사는 초과분에 대하여 순영업손실(NOL)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Sec. 172(c))⁶⁰⁷⁾. 순영업손실을 산정하기 위하여 복잡한 항목조정이 있는 개인 납세자와 달리 주식회사는 자본손익, 비사업용 비용과 인적 면제에 대하여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없이 순영업손실을 그대로 공제할 수 있다. 즉, 주식회사 순영업손실은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다만 순영업손실 공제는 매년 별개의 항목으로 간주되므로 특정 연도의 순영업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연도의 순영업손실 이월금은 생략하고 계산한다. 이외 배당수입은 과세소득의 70%까지 제한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만약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미국 국내생산에 따른 공제는 할 수 없다.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연도 이전 2년 소급과 이후 2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⁶⁰⁸⁾. 이월하는 순서는 우선 2년 이전, 그 다음 전년 그리고 이후 20년이 연대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⁶⁰⁹⁾. 그러나 주식회사는 이전 연도 소급을 하지 않고 이후 연도로만 손실을 이월할 수도 있다(Sec. 172(b)).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이러한 선택

607) 특정 연도의 순영업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이전 연도나 이후 연도 순영업손실 이월금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608) 1997년 8월 이후 발생한 순영업손실에 대하여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다.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3년 소급, 15년 이월이 가능하다. 한편 2001~2002년에 발생한 영업손실은 5년간 소급이 가능하다.

609) 만약 순영업손실이 주식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거래(CERTs)를 위하여 사용한 대출금 이자 경비 때문에 발생하였으면 그 부분에 대한 소급은 제한될 수 있다(Sec. 172(b)(1)(E)). 이외 일부 책임손실(liability loss)은 10년 전까지, 은행 대손금 손실을 10년 이전 그리고 5년 후까지, 부동산투자신탁회사(REIT)는 당해 기관이 운영을 개시한 연도 이전으로 순영업손실을 소급할 수 없다. 영농 손실은 5년 이전까지 소급이 가능하다.

을 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가 없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경과한 영업손실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

이전 연도로 소급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으려면 Form 1120X(법인세 수정신고)나 Form 1139(환급 요청신고)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도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를 Form 1120에 명기해야 한다.

④ 소유 집중 주식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에 대한 예외

소유가 집중된 주식회사와 관련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거래에는 제한이 가해진다. 우선 주식회사와 지배주주⁶¹⁰⁾ 사이에 감가상각 자산을 매각하여 실현한 자본소득은 매입자 입장에서 감가상각이 허용되면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Sec. 1239(a)). 또한 이들 사이에 자산 판매로 실현된 손실도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을 매입한 측이 나중에 제3자에게 이를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러한 이익이 이전에 허용되지 않았던 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Sec. 267(d)). 만약 손실을 입고 매각하면 이전에 허용되지 않은 손실은 영원히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지배주주와 주식회사 사이의 일부 거래에서 발생한 경비와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가 이연될 수 있다. 이는 지배주주와 주식회사가 다른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주식회사가 지배주주에게 갚아야 할 경비나 이자(혹은 반대로 지배주주가 회사에게 지급할 이자나 경비)에 대하여 수취인이 이를 총소득에 포함할 때까지 지급인이 경비나 이자를 공제할 수 없다(Sec. 267(a)(2)).

이 밖에도 5인 혹은 그 이하의 주주가 주식회사의 과세연도 후반기 반년 동안 한 때라도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특정 행위로부터의 손실은 해당 행위가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회사가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at-risk rule). 이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손실은 이월되어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610) 지배주주는 가격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Sec. 267(b)(2)). 50%는 직계가족과 해당 주주가 소유하거나 수혜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 등의 기관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할 수 있다(constructive stock ownership, Sec. 267(e)(3)).

회사의 위험도가 증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Sec. 465(a)).

마지막으로 개인서비스 회사와 소유가 집중된 C 법인 주식회사는 수동적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passive activity limitation). 특히 개인 서비스 회사에서 실질적 참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동적 손실과 세액공제는 수동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이월되어 사용해야 한다(Sec. 469(a)). 이에 비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수동적 손실과 세액공제를 다른 일반소득과 상쇄할 수 있지만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Sec. 469(e)(2)).

(e) 세액공제

납세자는 법인세 납부 의무액으로부터 일반사업공제, 최저한세 공제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소득을 창출한 국내기업이 납부한 외국세액을 일정 부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⁶¹¹⁾. 한편 최저한세 공제는 납세자가 이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사업공제(general business credit)는 다양한 사업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각 항목이 개별 규정에 의하여 자격과 한도금액이 산정된다(Sec. 38). 연후 이들 항목은 일반사업공제라는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납세의무액에서 제외되는데 다만 과세소득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한 일정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공제금액은 이전 연도 1년 소급 그리고 이후 연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다(Sec. 39(a)).

일반사업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은 특정 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취업 기회, 재개발 고용공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제도(대체 자동차 연료(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효율적 주택 건설, 제조업자 설비공제),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 경제개발을 위한 제도(empowerment zone, 재개발고용, 신규시장공제)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공제, 중소기업 연금공제 등 특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있다.

611) 이에 대해서는 국제조세편에서 자세히 논의한다.

한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한 일반 사업공제는 금년도와 이월 혹은 소급받은 사업공제를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납세자의 순 법인세가 잠정 최저한세와 순납세 의무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여기서 순법인세는 납세자의 순납세의무액과 최저한세를 합한 금액에서 외국세액 등 일부 세액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순납세의무액은 납세자의 일반법인세에서 외국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소급 혹은 이월된 일반사업공제를 사용하는 순서는 선입선출방식을 따른다. 이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여러 개의 공제가 있으면 Form 3800을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항목이 상황 변경에 따라 국세청이 다시 환수할 수도 있다(recapture taxes). 이와 같은 예에는 고용주가 제공한 택아소 공제, 투자세액공제, 저소득층 주택공제, 전기자동차 공제 등이 있다. 한 예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환수기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사용 용도를 바꾸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일반사업공제에 포함되는 세부 항목은 개인소득세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에 대한 일반공제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납세자 선택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전액 일반공제를 하고 그 대신 연구개발 세액공제 금액의 65%만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아니면 전액을 세액공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일반공제(혹은 감가상각)에서 제외할 수 있다(Sec. 280C(c)). 해당되는 연구개발비는 추가 연구비, 대학 기본연구비 그리고 에너지 연구비를 합한 금액으로 에너지 연구비를 제외하면 기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연구에 투자해야 공제가 가능하다(Sec. 41(a)). 구체적으로는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연구비의 20%를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그 대신에 총수입 혹은 이전 3년간 연구비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도 있다(Sec. 41(c)).

4) 준비금/충당금

이윤 적립세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기업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유보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주의 사망시 유산신탁기금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회수할 목적

으로 기업의 수익을 유보할 수 있다(death tax redemption, Sec. 303). 두 번째로 민간단체가 법이 정한 한도 이상으로 보유한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서도 준비금을 쌓을 수 있다(Sec. 4943). 이외 불량상품 책임 보상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5) 특수관계인 거래

주식회사가 아닌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되어 이들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자산이 매매 혹은 교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267(a)(1)). 세금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고 공정가격에 거래되어도 손실이 공제되지 않는다. 자산을 매각한 측은 영원히 손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매입자의 장부가격은 매입가격(공정시장가격)이다.

다만 매입자는 추후에 자산을 매각할 때 이전에 인정하지 못한 손실만큼을 매각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 예로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을 매입하고 주식회사가 손실을 입었다면 그러한 손실은 추후 자산을 매입한 주주가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지 않으면 자산을 매입한 납세자는 손실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추후 자산가격이 상승할 때에만 유용하며 그 자체가 손실을 만들거나 늘리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주식회사와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 사이에 자산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이 발생하고 해당 자산이 매입자가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이면 그 이익은 자본소득이나 1231조 이익이 아니라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Sec. 1239(a)). 여기서 지배주주는 자본손실과 마찬가지로 50% 주식 소유권을 말하며 배우자나 다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도 지배주주가 직접 보유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외 이러한 거래는 분할방식이 적용될 수 없다(Sec. 453(g)).

또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한 경비가 실제 지급되지 않으면 주식회사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을 수 있다. 즉,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특수관계인(related person)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비용과 이자를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공제가 이연된다(Sec.

267). 즉,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과세 목적으로 가상의 손실을 인정하고 공제를 창출할 수 없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동일한 회계방식을 사용하거나 발생주의 특수관계인이 현금주의 관계인에게 실제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가족 이외 같은 지배그룹에 속한 다른 회원사(Sec. 267(f)), 주식회사를 50% 이상 직·간접적⁶¹²⁾으로 보유한 자, 동일한 사람이 50% 이상의 주식가액을 소유한 두 주식회사, 기금이나 기금 설립자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식회사와 기금 관리인 등을 포함한다. 가족은 배우자, 형제자매, (손)자녀 그리고 (조)부모를 포함한다.

소유권을 결정할 때 의제소유권(constructive ownership)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Sec. 267(b)). 의제소유권이란 납세자가 소유 지분을 보유한 단체나 다른 사람이 소유한 주식을 납세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을 말한다. 한 예로 주식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단체가 소유한 주식은 이들 단체의 주주가 지분에 따라 비율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취급된다. 소득과 공제의 대조에 있어서는 개인 서비스 회사의 경우 회사 주식을 조금이라도 소유한 피용인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된다.

4. 자본소득

가. 기본원칙

주식회사가 자본(양도)소득과 손실을 결정하는 방식은 개인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자산의 정의, 보유기간, 순자본소득과 손실의 산정방식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우선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본자산의 처분(매각과 교환)에 따른 손익은 장기와 단기로 구분된다. 연후 단기와 장기 순손익을 결정한다. 그 이후 주식회사는 전체적인 자본자산 상황을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장기와 단기 상황이 다르면 즉, 순손실과 순이익이 발생하면 둘을 합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이 같으면 즉, 둘 다 순이익이 있거나 순손실이 발생하면 단기와 장기를 따로 유지해야 한다.

612) 직계가족 혹은 파트너가 보유한 주식도 직·간접적인 보유로 간주된다(constructive ownership).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개별 상황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르다. ① 장기 순자본(양도)이익이 단기 순자본(양도)손실보다 많으면 이를 합친 금액은 순자본소득(net capital gain)으로 간주된다. ② 장기 순자본이익이 단기 순자본손실보다 적으면 이를 합친 금액은 순자본손실(net capital loss)로 간주된다. ③ 단기 순자본이익이 장기 순자본손실보다 크면 이를 합쳐서 순양도이익소득(capital gain net income)으로 간주한다. ④ 단기 순자본이익이 장기 순자본손실보다 적으면 이를 합쳐서 순자본손실(net capital loss)로 간주한다. ⑤ 단기 순자본이익과 장기 순자본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분리하여 전자는 순자본소득(net capital gain)으로 처리하고 후자는 순양도이익소득(capital gain net income)으로 간주한다. ⑥ 단기 순자본손실과 장기 순자본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분리하여 처리한다.

과거에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장기 보유 자본소득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1986년 이후에는 주식회사에 대한 우대세율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주식회사의 경우 순자본소득(net capital gain)에 대하여 개인소득처럼 15%(5%)우대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순 양도소득 ①, ③, ⑤는 주식회사 총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사업소득과 함께 통합되어 동일한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요컨대 주식회사 자본소득은 장기와 단기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법인세 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개인⁶¹³⁾과 달리 주식회사 순자본손실(net capital loss)은 다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상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연도에 모두 공제를 하지 못할 수 있다. 그 대신 순자본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Sec. 1211(a)). ②, ④, ⑥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순자본손실은 이전 3년간 소급되어 (carryback) 당시 순자본소득과 상쇄되며 그래도 남은 손실은 이후 5년간 이월될 수 있다(carryover)⁶¹⁴⁾. 이렇게 소급 혹은 이월된 손실은 원래 성격과 상관없이 단기 손실로 간주된다⁶¹⁵⁾. 소급 혹은 이월하여 공제되는 순서는 순자본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가장 가까운 연도부터 시작한다. 8년간 소

613) 즉, 개인의 경우 매년 \$3,000을 한도로 자본손실은 일반소득과 상쇄할 수 있다. 만약 단기 순손실과 장기 순손실이 동시에 발생하면 단기 순손실을 이용하여 일반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손실은 이후 연도로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하며 장기와 단기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전 연도로의 소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614) Sec. 1212(a)

615) 장기보유 자본소득에 대한 우대세율이 주식회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현재로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

급 혹은 이월하여 사용하지 않은 손실은 영구히 폐기된다.

나. 감가상각 환수규정(recapture)

주식회사는 내국세법 1245조와 1250조 자산⁶¹⁶⁾을 처분하였을 때 개인과 마찬가지로 원래 감가상각한 금액을 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ordinary income recapture). 1245조 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일반소득으로 신고한다. 1981년 이전에 취득한 1250조 자산은 실제로 감가상각을 한 금액(대개 가속상각법)과 정액상각법(straight line method)을 사용하였을 때 허용되는 금액의 차이를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주용 부동산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1986년 이후 취득한 빌딩은 이미 정액법을 적용받는다. 한편 1981~1986년 사이에 사용이 개시된 비거주용 부동산은 가속상각을 사용하였다면 감가상각 전액이 환수 대상이 된다⁶¹⁷⁾.

주식회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은 내국세법 291⁶¹⁸⁾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는 1250조 자산(빌딩)에 대하여 다른 사업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일반소득으로 환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식회사는 1250조가 아니고 1245조가 적용되었다면 일반소득으로 환수되었을 1231조상의 이익 중 20%를 추가적으로 일반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우선 1245조가 적용되었을 때 일반소득으로 간주될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1250조가 적용되었을 때 일반소득으로 간주될 금액을 제외한다. 연후 그 차액에 대하여 0.2를 곱하면 이 금액이 추가로 일반소득으로 간주될 금액이 된다. 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된다. 자산 처분으로 실현된 이익이 1245조, 1250

616) 1245조 자산은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일반자산을, 1250조 자산은 감가상각이 허용되는 부동산을 말한다.

617) 1987년 이전에는 거주용 임대빌딩과 상업용 빌딩은 가속상각법에 따라 감가상각되었다. 상업빌딩은 1245조에 따라 상각금액이 환수되고 거주용 자산은 가속상각과 정액상각의 차이 이 1250조에 따라 환수된다. 1981~1986년 사이에 구입한 임대용 빌딩은 19년간 상각되기 때문에 2008년에는 이미 모두 상각되어 1250조의 환수가 적용될 수 없다.

618) 1982년 의회는 빌딩에 대한 가속상각으로 인한 세제상의 혜택을 줄이기 위하여 291조를 도입하였다.

조나 291조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인정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이러한 초과금액은 1231조 차익으로 자본소득에 부과되는 우대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291조는 자본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자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표 II-7〉 1245조 자산의 감가상각 환수 예제

가정	주식회사 갑이 \$450,000에 건물을 취득하고 정액법에 따라 9년간 \$270,000을 감가상각하고 \$240,000에 매각 장부가액은 \$180,000(\$450,000-\$270,000)이므로 갑의 매각이익은 \$60,000
산정	갑이 정액법을 사용하였으므로 1245조나 1250조에 따른 상각 환수는 없음 그러나 291조에 따라 \$12,000은 일반소득으로 신고: 1245조 양도이익일 때 일반소득으로 신고할 금액: \$60,000 - 1250조 양도이익일 때 일반소득으로 신고할 금액: 0 1245조 양도이익 초과액: \$60,000 291조 비율 0.2 291조 양도이익으로 일반소득으로 신고할 금액 \$12,000 (나머지 \$48,000은 1231조 소득)

자료: CCH Federal Taxation, Comprehensive Topics, CCH, 2008.

다. 주식회사 설립에 따른 자산 양도

(a) 자산 양도와 손익 인정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산을 양도할 때 어떤 형태로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현금 이외 자산을 교환할 때 납세자는 수입대금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국세법 351조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대신 현금을 포함한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⁶¹⁹⁾. 이외 358~362조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이월할 수 있고 1223조에서는 해

619) 351조에 의한 자산 교환의 당사자인 주주와 주식회사는 소득신고를 할 때 교환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명시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g. Sec. 1.351-3(a)).

당 자산이 자본자산이나 1231조 자산이면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을 양도받은 주식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351조에 따라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 양도가 주식을 교환하는 목적이어야 하며 주식과 자산의 교환 직후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주식회사를 지배해야 한다. 351조는 그러나 투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채권을 제외한 회사 부채를 받는 대신 주식을 양도받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손익 불인정을 위한 자산의 정의는 포괄적이어서 현금, 매출채권, 재고, 특허권, 할부금, 건물과 기계설비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내국세법 351(d)조에 의하면 서비스, 주식회사의 일부 부채나 대출금 이자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자는 그 대신 반드시 주식을 받아야 한다. 자산 대신 다른 채권을 받으면 이는 351조 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주식가격에 비하여 자산 가치가 10% 이하이면 자산 양도가 손익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되어 자산 양도로 취급되지 않는다. 반대로 양도한 자산 가치가 주식가격을 상회하면 초과금액은 양도 성격에 따라 증여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로 간주될 수 있다.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을 받으면 해당 자산은 추가대금(boot)으로 간주되어 손익을 인정해야 할 수 있다. 주식의 경우 보통주, 우선주,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351조 양도로 간주된다. 다만 자격이 없는 우선주가 있는데 이러한 주식은 주식 소유주가 주식 발행자나 관련자에게 매입 또는 다시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거꾸로 주식 발행자나 관련자가 주식을 매입 혹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발생 시점에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배당물이 전부 혹은 일부 이자율, 주식가격 등에 연동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non-qualified preferred stock)⁶²⁰⁾.

자산의 양도자는 양도 직후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보유해야 한다(Sec. 368(c)). 여기서 지배권은 양도자가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주식 80% 이상을 소유할 때 충족된다. 자산의 양도자는 개인일 수 있고 다수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지배권은 전체 주식을 합하여 산정된다. 개인은 자연인, 유산, 기

620) 다만 이러한 권리를 20년간 행사할 수 없거나 사망 시점에 행사할 수 있으면 351조가 적용될 수 있다. stock right나 stock warrant는 주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Reg. Sec. 1.351-1(a)(1)(i)).

금, 파트너십, 주식회사, 협회 등을 포함한다. 교환받은 주식은 양도한 자산가액에 비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자세히 조사하여 거래의 성격을 재규정할 수 있다. 즉, 비례하지 않은 자산 교환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여, 보수 지급 혹은 채무관계의 충족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자산의 교환 이후 얼마되지 않아 지배권을 상실하면 351조 자산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전에 주식을 처분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지배권을 상실하면 그러하다.

351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의 양도자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주식의 장부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조정된) 장부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주식 이외 대금으로 지급받은 자산은 추가대금 자산(boot)으로 취급된다. 추가대금이 제한적이면 351조 자산 양도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추가대금의 공정가격과 실현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Sec. 351(b)). 실현된 이익의 성격은 양도한 자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351조 거래에서는 손실이 영구히 인정되지 않는다. 한 예로 값이 장부가액이 20,000달러에 이르는 건물을 양도하는 대신 25,000달러에 달하는 주식과 5,000달러의 현금을 지급받으면 5,000달러의 현금은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값이 10,000달러에 이르는 주식과 5,000달러에 이르는 현금을 받았으면 5,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첫 번째 경우 건물의 장부가액이 26,000달러라면 실현된 이익은 4,000달러로 제한된다.

다수의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추가대금(boot)으로 자산을 지급받으면 이를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격 기준으로 분배해야 한다⁶²¹⁾. 이는 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이 개별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 때 손실을 입고 양도한 자산이 있으면 추가대금의 일정 부분이 그러한 자산에 분배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이익이 발생하는 자산에 대하여 추가대금이 분배된 결과 인정해야 하는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양도한 자산의 성격에 따라 배분된 추가대금의 성격도 결정된다. 한 예로 가격이 상승하여 이익을 인정하는 자산이 자본자산이면 여기에 배분된 추가대금은 자본 소득으로 인정한다.

기존 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 양도하는 자산에 대한 부채를 함께 양도하고

621) Reg. Sec. 1.358-2(b)

주식회사는 이를 인수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가 351조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회사의 부채 인수는 추가대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자산의 양도자는 이로 인한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Sec. 357(a)⁶²²). 다만 부채의 양도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있거나 부채금액이 양도된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그렇지 않다(Sec. 357(b)). 즉, 주식회사가 인수한 부채가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산교환에 따른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⁶²³). 그렇지 않으면 주식의 장부가액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이익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영(0)이 된다(Sec. 357(c)). 다수의 자산을 부채와 함께 인도하고 부채금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하면 부채를 털어냄으로써 발생한 이익 인정은 개별 자산의 공정가격에 따라 분배된다.

(b) 장부가액과 보유기간

351조에 의한 자산 교환에서 우선 주주 입장에서 대신 지급받은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 결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산을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그 대신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 당시 인정한 이익을 추가하고 추가대금으로 받은 자산(boot)의 공정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Sec. 358). 또한 주식회사가 부채를 자산 양도자로부터 인수하면 357조상의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장부가액을 결정할 때는 추가대금으로 간주된다. 만약 종류가 다른 주식을 받으면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장부가액이 배분된다.

한 예로 갑이 장부가액과 공정가격이 각각 40,000달러, 50,000달러인 토지를 주식 그리고 12,000달러 현금과 교환하며 갑은 10,000달러의 이익을 실현하였다. 비록 갑이 12,000달러의 현금을 지급받았지만 갑의 이익 인정은 실현된 이익 10,000달러로 한정된다. 그 대신 갑이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38,000달러(40,000+10,000

622)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산의 장부가액은 영향을 받는다.

623) 한 예로 갑이 공정가격 \$100,000, 장부가액 \$30,000 그리고 저당 대출금이 \$50,000에 달하는 건물을 주식과 교환하면 \$20,000(대출금-장부가액)은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즉,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부채를 주식회사에게 털어내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12,000달러)이다.

한편 351조에 의하여 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은 만약 양도한 자산이 자본자산이나 1231조 자산이면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Sec. 1223(1)). 만약 양도한 자산이 자본자산과 일반소득 자산을 포함하면 일반소득 자산의 보유기간은 이를 양도받은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식의 보유기간은 이중으로 결정된다. 추가대금의 보유기간은 거래 시점부터 시작되는데 이로 인하여 실현된 이익을 인정해도 보유기간은 양도한 자산으로부터 이월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을 양도한 측의 장부가액에 양도자가 인정한 이익을 추가한 금액과 같다(Sec. 362). 351조 교환에서는 주식회사가 인수한 부채가 주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부채금액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양도자가 이익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한 예로 갑이 을 주식회사에게 장부가액과 공정가격이 각각 3,000달러와 5,000달러이고 1,000달러의 대출이 담보로 잡혀있는 자산을 양도하면 갑의 실현된 이익은 2,000달러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갑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2,000달러($3,000 - 1,000$ 달러)이며 을 주식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은 3,000달러이다. 그러나 만약 담보금액이 3,500달러라면 갑은 실현된 이익 2,000달러 중 500달러를 인정해야 한다(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갑의 주식 장부가액은 영($3,000 + 500 - 3,500$ 달러)이며 을이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3,500달러이다($3,000 + 500$ 달러).

한편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시장가격을 초과하면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적인 손실(built-in-loss)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세법 362(e)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측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격으로 대체하면 주식회사는 공정가격이 아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양도받은 자산이 회사 입장에서 자본자산이나 1231조 자산이면 주주의 보유기간을 주식회사가 이전받을 수 있다.

내국세법 351조는 강제 규정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공정가격이 장부가액

보다 낮을 때 손실을 인정하고 싶겠지만 351조 자산 교환에서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나 단기채무의 교환은 351조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267조(50% 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관계)에 따른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반대로 납세자가 자산교환에서 실현된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주식회사는 증액된 장부가액을 받고 싶은 경우도 있다. 납세자의 한계세율이 법인세 세율보다 낮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양도한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고 주주와 주식회사가 특수 관계에 있으면 자산교환으로 실현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일반소득으로 처리된다(Sec. 1239). 따라서 납세자는 자산 교환에 있어서 351조에 따른 자산 양도가 더 이득인지를 검토하여 교환 형식을 결정해야 한다.

(c) 환수 규정(recapture)

351조 교환에서 추가대금(boot)을 받지 않으면 이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환수할 필요가 없고 자산을 양도받은 주식회사가 이를 물려받아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Sec. 1245(b)(3)). 추가대금을 받아서 이익을 인정하면 감가상각을 환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소득으로 간주하고 환수하지 못한 부분은 주식회사가 물려받는다.

그러나 일반사업 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자산을 미리 처분하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금액을 환수해야 한다(Sec. 38 property). 다만 납세자가 사업의 형태만 변경하고 상당한 사업 지분을 계속 유지하면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 '상당한' 사업지분에 대한 규정이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주식회사 30% 지분 정도는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환수하지 않은 일반사업 세액공제는 주주(자산을 양도한 측)에게 남게 되고 나중에 주식회사가 자산을 처분하거나 주주가 사업지분을 처분할 때 환수 규정이 작동한다.

라. 주식회사 자본구조

주식회사 자본구조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부채로 구성된다. 주주에게 발행한

주식을 통하여 자본을 조달하는데 주식은 보통주와 일반주 혹은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가 아닌 자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 이외 주식이나 채권의 교환 없이 주주 혹은 제3자가 다양한 목적으로 자본을 출연할 수도 있다.

(a) 자기자본(equity)

주식과 교환하여 받은 현금이나 기타 자산에 대하여 주식회사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Sec. 1032). 또한 자본 출연금(contribution to capital)으로 받은 현금 등 자산에 대해서도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Sec. 118). 자본 출연금은 제공된 자산 대신 주식, 현금, 채권 혹은 기타 자산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나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식회사가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거래 내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자산을 양도받는 대신 주식을 지급하면 351조가 적용되어 주식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은 자산을 제공한 측의 장부가액에 양도자가 인정한 이익을 추가하여 결정된다. 주식회사가 주식을 제공하는 대신 토지를 매입하는 등 거래가 과세대상인 교환인 경우에는 자산 장부가액은 주식의 공정시장가격이 된다. 한편 전술한 대로 351조에 따라 주주가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주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인정된 이익을 추가하고 제공받은 추가대금(boot)의 공정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과세대상인 거래를 통하여 제공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공정가격과 같다.

주주로부터 주식을 받지 않고 자본출연금으로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주주의 장부가액에 주주가 인정한 이익을 포함한 금액이 된다(Sec. 362). 주주는 주식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존에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양도한 현금,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 그리고 주주가 자산 양도 당시 인정한 이익만큼 증가한다. 주주가 회사 부채를 탕감해주면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채가 취소되면 채무자는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갚아야 하는 채권을 탕감해주면 부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본 출연금으로 간주된다.

한편 주주가 아닌 측이 자본을 출연하여도 해당 자산이 재화나 서비스가 아니면 주

식회사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영(0)이다. 만약 현금을 제공받으면 그 이후 12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현금만큼 감액해야 한다. 그 순서는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부터 먼저 감액하고 감모상각 자산 그리고 이외 자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종류의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감액은 개별 자산의 상대적 장부가액에 따라 이루어진다(Sec. 362(c)(1)). 주식회사는 제공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장부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혜택이 없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산이 매각될 때 소득으로 인정하게 된다.

(b) 부채(debt)

주식회사는 주식 외에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은 주식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금은 공제가 허용되지만 주식배당 지급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부채를 갚기 위한 소득 유보는 이윤 적립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 상환을 위한 이윤 유보는 이윤 적립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Sec. 531). 채권의 원금 상환은 채무자 입장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주식 명목으로 주주에게 제공되는 지급금은 배당이나 과세대상인 상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외 사업 관련 채권이 휴지화되면 일반 손실로 간주될 수 있다. 비사업용 대손금은 단기 자본손실로 취급된다. 물론 채권 발행에 따른 단점도 있다. 채권자는 이자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주식회사면 지급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만 이자소득은 그렇지 않다.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이점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형식보다는 내용이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국세청이 이를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Sec. 385). 이 경우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채권이 사전에 약정된 이자율에 따라 특정 날짜에 지급되는지 주식과 채권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

(c) 특례

① 1244조 주식

일부 소규모 주식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우대 조항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내국세법 1244조 주식의 매각, 상환, 청산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일반손실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주식의 처분에 의한 이익은 자본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주주들은 주식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회사가 경영에 실패하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실을 다른 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혜택은 개인과 파트너십에게 주식을 처음 발행하였을 때 적용된다(주주 주식회사는 제외). 주식이 추후에 다른 자에게 양도되면 1244조 혜택이 소멸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주식 발행 당시 파트너였던 사람에게 손실이 이전된다⁶²⁴). 개인의 경우 1244조에 따라 일반손실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주주 1인당 5만달러로 제한된다(부부합산신고 10만달러). 손실이 5만달러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자본손실로 간주된다. 또한 1244조 손실은 사업경비로 취급되어 영업손실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실이 주주의 과세소득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영업손실 규정에 따라 이월된다.

주식 발행 당시 국내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주식이나 자본 출연금 대신 양도받은 자산의 총금액이 100만달러보다 적어야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다. 이 때 자산은 공정가격이 아닌 장부가액에서 주식회사가 인수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서비스를 대가로 발행한 주식은 1244조 주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발행한 주식의 형태는 보통주나 우선주일 수 있고 또한 투표권이 없어도 된다. 발행한 주식가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어느 주식이 1244조 혜택을 받는지 내국세법에 규정되어 있다(Reg. Sec. 1.1244-(c)-2).

만약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시장가격보다 많으면 1244조 손실을 산정하기 위해서 주식의 장부가액이 손실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자산의 공정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반손실로 인정된다. 이는 자산의 자본손실을 1244조 주식 일

624) Reg. Sec. 1.1244(a)-1(b)(2).

반손실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자본 출연금을 통하여 장부가액이 증액되고 난 이후 손실이 발생하면 이는 일반손실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1244(d)(1)(B)).

이 밖에도 주식 발행 당시 주식회사가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operating company). 최근 5년간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 그리고 채권 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 수입이 총수입의 50%를 넘어야 사업중인 회사로 간주된다. 다만 지난 5년간 배당수입공제와 순영업손실을 제외한 총공제금액이 총소득보다 많으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는 손실이 1244조에 의한 손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② 1202조 주식

1202조는 소규모 기업이 용이하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특히 주식회사가 아닌 납세자가 자격이 있는 소규모 기업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처분(매각 혹은 교환)하면 이익의 50%가 면세될 수 있다(Sec. 1202(a)(1)). 또한 1202조 이익은 장기보유 자본소득으로 납세자의 세율보다 낮으면 28% 세율을 적용받으며 면세되는 이익 중 7%는 세금 우대로 간주된다.

1202조 적용을 위한 소규모 기업의 정의는 1244조와 다르다. 이러한 혜택은 주식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주식을 소유한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개인은 현금이나 여타 자산을 대신 지급해야 하며 주식, 서비스나 보수로 제공한 주식은 1202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파트너십, S 법인이나 일반 투자기금 등 도관업체(conduit entity)도 1202조 주식을 보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익은 도관업체의 소유주에게 양도된다. 따라서 1244조와 마찬가지로 1202조는 주주가 개인이 아니라 주식회사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을 양도하면 1202조 혜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 사망을 이유로 양도되거나 주식 교환 혹은 파트너십에서 파트너로 양도되어 비과세되는 주식 양도는 1202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20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익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 기준으로 누적적인 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이 한도가 된다. ① 100만달러에서 과거에

주식 매각 등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② 소규모 기업이 발행하고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처분한 주식 장부가액의 10배(주식 발행 이후 증액된 장부가액은 제외). 1202조 이익을 결정할 때 현금이나 주식이 아닌 다른 자산과 1202조 주식을 교환하였으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교환 당시 자산의 공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자산을 1202조 자산으로 전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202조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소규모 일반 주식회사(국내 C 법인)로서 주식 발행 이전과 발행 직후 총자산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현금과 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1202조 혜택을 위하여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으로 산정된다. 또한 납세자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operating company). 여기서 사업운영요건은 자산의 80% 이상이 내국세법에 명기된 사업 분야(Sec. 1202(e)(3))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충족된다. 금융, 건축, 의료, 회계, 엔지니어 등 서비스 분야는 해당되지 않으며 전체 자산의 10% 이상이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부동산으로 구성되면 1202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외 임대, 농장, 음식점 등도 해당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이외 납세자가 자격이 있는 소규모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여 남긴 이익을 주식 매각 이후 60일 이내에 다른 1202조 주식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Sec. 1045 rollover). 새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인정하지 않은 이익만큼 줄어들며 보유기간도 이월이 가능하다.

③ 1044조 rollover

개인과 C 법인 주식회사는 상장된 증권(주식과 채권)의 매각에 따른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특별 소기업 투자회사(SSBIC)⁶²⁵⁾로 투자할 수 있다. 납세자가 증권을 매각하고 60일 이내에 투자하면 매각대금이 SSBIC 지분 매입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익을 인정하면 된다. 만약 납세자가 매각대금의 일부만 SSBIC에 투자하면 실

625) 이들 회사는 1958년 소기업 투자법 301(d)조에 따라 등록된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이다(The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

현된 이익과 매각대금이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적은 금액만 인정하면 된다 (Sec. 1044(a)). 추후 이익 인정을 위하여 SSBIC 주식의 장부가액은 이연된 이익만큼 감액해야 한다. 한 과세연도에 이렇게 자금 이동이 가능한 금액은 개인의 경우 5만달러와 50만달러에서 과거에 이렇게 자금을 이동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즉, 개인의 경우 평생 이익 인정을 이연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달러이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금액 기준은 각각 25만달러와 100만달러이다.

5. 손실

가. 일반손실

주식회사는 다양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지만 공제방식에는 제약이 있다. 특히 주식회사 손실에서 중요한 두 가지 손실은 운영업손실(NOL's)과 자본손실(capital loss)이다. 자본손실의 경우 전술한 대로 일반 주식회사는 자본소득이 있을 때에만 한정하여 자본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만약 초과 자본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이전 3년 소급 그리고 이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다. 이월 순서는 우선 3년 전부터 소급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운영업손실에 대해서는 특별 공제항목으로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추가하여 논의를 한다면 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운영업손실을 산정하여 공제한다. 또한 개인과 똑같이 2년 소급과 20년 이월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운영업손실을 이월할 때 적용되는 규정도 같다. 그러나 운영업손실을 산정할 때 다른 공제항목을 사용하며 소급 혹은 이월시 과세소득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복잡한 항목조정이 있는 개인 납세자와 달리 주식회사는 자본손익, 비사업용 비용과 인적 면제에 대하여 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 없이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운영업손실을 결정한다. 즉, 운영업손실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공제가 총소득보다 많으면 운영업손실이 발생한다. 다만 운영업손실 공제는 매년 별개의 항목으로 간주되므로 특정 연도의 운영업손실을 산정할 때에는 다른 연도의 운영업손실 이월금은 생략하고 계

산한다. 이외 배당수입은 과세소득의 70%까지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만약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과세소득이 없으므로 미국 국내생산에 따른 공제는 할 수 없다.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과세연도 이전 2년 소급과 이후 20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⁶²⁶⁾. 이월하는 순서는 우선 2년 이전, 그 다음 전년 그리고 이후 20년이 연대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이전 연도 소급을 하지 않고 이후 연도로만 손실을 이월할 수도 있다(Sec. 172(b)).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연도에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며 한 번 선택하면 취소할 수가 없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경과한 영업손실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월 혹은 소급할 수 있는 순영업손실이 해당 과세연도 소득을 초과하면 순영업손실 중 다시 다음 연도를 이월하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세소득 조정은 이월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수치이며 법인세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 조정된 과세소득은 일반 방식으로 산정하되 다만 해당 과세연도 이전 순영업손실만을 공제하며 순영업손실 소급을 고려하지 않고 자선기부금 공제를 산정해야 한다.

나. 기타 손실의 제한

특수관계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다만 자산을 매입한 측이 추후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실현할 때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손실을 공제할 수 없다(Sccec 267(d)). 두 번째로, 납세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매각하고 난 이후 61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매입하면 이러한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사용할 수 없다(wash sales). 이 경우 특수관계인 사이의 손실과 달리 손실이 영원히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이연하는 결과가 있다. 즉, 납세자가 나중에 증권을 매각하고 동일한 증권을 구입하지 않으면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의 콜 옵션(call option)이나 풋

626) 1997년 8월 이후 발생한 순영업손실에 대하여 이러한 공제가 가능하다. 이전에 발생한 손실은 3년 소급, 15년 이월이 가능하다. 한편 2001~2002년에 발생한 영업손실은 5년간 소급이 가능하다.

옵션(put option)도 증권거래로 간주된다(Sec. 1091(a)). wash sales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다음의 두 가지 경우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소유집중기업의 경우 공제금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위험에 노출된 사업행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at risk rule). 이로 인하여 공제되지 못한 손실은 이월되어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위험도가 증가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Sec. 465(a)). 이외 수동적 활동의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passive activity). 수동적 활동이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나 임대사업을 말한다. 이 규정은 개인 서비스 회사와 S 법인을 제외한 소유집중기업에 적용된다. 한편 유사자산 교환에 따른 손익의 경우에도 손익 인정이 이연될 수 있다(Sec. 1031(a)).

6. 법인세 세율

가. 법인세 산정방식

C 법인 주식회사는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상황에 따라 법인세 이외에도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이윤 적립세(accumulated earnings tax)나 개인지주회사세(personal holding company tax)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우선 일반법인세를 산정한 다음 외국세액공제와 일반사업경비 세액공제를 통해 납세의무액을 정한다. 연후 최저한세를 추가하고 이전에 신청한 세액공제 환수가 필요하면 이를 포함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한다. 이 가운데 최저한세는 법인세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을 거쳐 계산된 잠정 대체세가 일반 법인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일반 법인세와 함께 최저한세(AMT)로 납부하고 아니면 일반 법인세만 납부한다.

〈표 II-8〉 일반 법인세 산정방식

과세소득

× 법인세 세율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액

– 외국세액공제(Sec. 27)

일반 법인세

– 일반 사업경비 세액공제(Sec. 38), 최저한세 세액공제(Sec. 53), 기타 세액공제

+ 이전에 신청한 세액공제의 환수(취소)

납세의무액

자료: Prentice Hall(2008).

전술한 대로 총수입에서 각종 판매비용을 제외하고 양도소득과 배당, 임대료, 이자 수입 등 여타 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여타 경비와 각종 공제를 제하면 과세소득이 된다. 과세소득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납세의무액에서 외국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일반 법인세를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일반 사업공제와 최저한세 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제하고 나면 법인세 납세의무액을 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금액이 실제로 주식회사가 납부하는 금액은 아니며 최저한세 등을 고려하고 이미 납부한 추정세액을 제외하고 가산금을 합하면 주식회사가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된다.

나. 법인세 세율

개인 서비스 회사와 지배그룹의 계열회사를 제외한 일반 주식회사의 법인세 세율은 〈표 III-9〉과 같다. 미국 국내에서 거래나 영업을 하는 외국 회사에도 이러한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15~3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되는데 중간 부분에서 추가세율이 부과되기도 한다. 즉, 7.5만~10만달러까지의 과세소득은 3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소득이 10만달러를 넘으면 33.5만달러까지 초과분에 대하여 5%의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11,750달러($0.05 \times 225,000$ 달러)까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이러한 추가세율은 결국 과세소득 50,000달러와 25,000달러에 각각

15%와 25%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상쇄하고 과세소득 335,000달러에 34%의 일률과세가 적용되는 결과를 낳는다.

〈표 II-9〉 미국 법인세 세율(2007~2008년)

(단위: 달러, %)

과세소득	세율	한계세율 적용소득
0~50,000	15%	0
50,000~75,000	7,500+25%	50,000
75,000~100,000	13,750+34%	75,000
100,000~335,000	22,250+39%	100,000
335,000~10,000,000	113,900+34%	335,000
100,000,000~15,000,000	3,400,000+35%	10,000,000
15,000,000~18,333,333	5,150,000+38%	15,000,000
18,333,333~	6,416,667+35%	18,333,333

주: Internal Revenue Code Sec. 11.

자료: *Corporations*, Pub. 542, IRS, 2008.

과세소득이 33.5만~1천만달러 사이에 있으면 전체 과세소득에 다시 34%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면 추가분 500만달러까지 한계세율은 35%가 된다. 연후 소득이 1,500만달러를 넘으면 추가분에 38%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중세액은 최대 100,000(3,333,333달러×0.03)달러에 달할 수 있다. 3% 추가세율은 앞서 5% 추가세율과 마찬가지로 전체 소득에 35% 일률과세가 되는 효과를 낳는다. 이후 주식회사 과세소득이 18,333,333달러를 넘는 부분부터는 세율이 다시 감소하여 35%로 일률과세된다.

개인 서비스회사(personal service corporation)는 누진과세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3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피용인 등이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한 개인 서비스 회사는 고소득 납세자가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개인 서비스 회사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 1987년부터 의회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부과하기로 하였다(Sec. 11(b)(2)). 이로 인하여 개인 서비스 회사는 S 법인으로 등록하여 법인세보다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35%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서비스회사는 실질적인 모든 서비스 업무가 의료, 법, 엔지니어, 건축, 회계, 보험, 예술 그리고 자문 분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용인이나 이전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퇴직 피용인 혹은 지난 2년간 이들이 사망한 이유로 유산(신탁)기금 등이 대부분의 주식(95%, 가격기준)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다. 최저한세(AMT)

(a) 최저한세 개념과 도입 목적

주식회사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는 개인소득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소득이 있는 주식회사가 각종 공·면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 납세자가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독자적인 감면 및 공제 규정이 있는 제도이다. 최저한세는 일반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최저한세는 그러나 이전 3년간 연평균 총수입⁶²⁷⁾이 7,50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Sec. 55(e))⁶²⁸⁾. 또한 주주 차원에서 이윤이 과세되는 S 법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도 과세 소득에 대하여 40,000달러의 법정 면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저한세 과세소득(AMTI)이 310,000달러를 초과하면 최저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ec. 55(d)(2)).

627) 총수입 기준이므로 과세소득이 많지 않아도 수입과 경비가 상당한 기업은 최저한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993년 이후부터 시작하여 최저한세 면제를 신청하기 이전까지 처음 3년간 총수입이 \$5,000,000 이하면 소기업으로 최저한세 면세가 가능하며 그 이후 3년간 평균 수입이 \$7,500,000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면세가 허용된다. 1997년 이후 설립된 주식회사는 첫 해에 총수입과 관계없이 최저한세가 면제되고 두 번째 해에는 총수입이 \$5,000,000을 넘지 않으면 된다. 이후에는 기준이 \$7,500,000로 상향 조정된다.

628) 창립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식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이 기준이며 지배 그룹에 속한 주식회사는 하나의 회사로 간주된다(Sec. 448(c)). 1997년 이후 창립된 주식회사는 처음 3년간 금액 기준이 일정 수준 완화된다.

(b) 최저한세 산정방식

최저한세 산정방식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반 과세소득(순영업손실 공제 이전)을 세금우대 항목과 합한 뒤 일부 금액을 조정한 최저한세 과세소득(AMTI)을 구한다. 여기서 법정 면세액(40,000달러)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을 최저한세 세율인 20%로 곱하여 잠정 최저한세를 산정한다. 만약 일반 법인세가 잠정 최저한세 보다 많으면 일반 법인세를 납부하면 되며 최저한세는 없다. 그러나 잠정 최저한세가 일반 법인세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일반 법인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저한세는 일부 사업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최저한세 과세소득(AMTI)은 주식회사 과세소득을 일부 항목에 대하여 가감한 개념이다. 우선 일반 과세소득에 세금우대 항목을 추가한 다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각종 소득, 공제와 손실을 추가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과세소득 조정)⁶²⁹⁾. 세 번째로, 조정 전 최저한세 과세소득과 조정된 당해연도 소득(CE)의 차액 중 75%를 추가 혹은 감액한 다음 최저한세 순영업손실 공제를 제외하면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된다.

최저한세 과세소득에서 법정 면세액에 해당하는 40,0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150,000달러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의 25%를 법정 면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⁶³⁰⁾. 법정 면제를 적용한 다음 과세표준액에 최저한세 세율 20%를 곱하면 외국세액⁶³¹⁾을 공제하기 이전의 잠정 최저한세(TMT)를 구할 수 있다. 잠정 최저한세와 일반 법인세(regular tax)⁶³²⁾를 비교하여 전자가 크면 그 차액이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가 된다⁶³³⁾. 만약 일반 법인세가 잠정 최저한세보다 더 많으면 납부해야 할 최저한세는 없다.

629) 최저한세에서는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Sec. 56(a)). 따라서 자산의 양도손익도 일반 법인세 산정 때 계산된 금액과 달라진다. 이 밖에 최저한세에서는 순영업손실 등의 계산방식이 다르다.

630) 따라서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310,000(31-15) \times 0.25$ 이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631) Sec. 55(b)

632) 일반 법인세는 법인세 목적의 납세의무액에서 외국세액공제와 possession tax credit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633) 이 밖에도 일반 사업공제(general business tax)도 법인세와 최저한세의 전액을 상쇄하는데 사용할 수 없고 이윤 적립세와 개인지주회사세에서는 전혀 상쇄되지 않는다(Sec. 38(c)).

〈표 II-10〉 C 법인 주식회사 최저한세 산정방식

일반 과세소득 혹은 손실 (순영업손실 공제 이전)
+ 과세상 우대항목
<u>±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Adjusted Current Earnings(ACE) 조정, 미국 국내생산 공제)</u>
조정전 최저한세 과세소득(AMTI) ¹⁾
± 조정전 AMTI와 조정된 당해연도 소득(ACE) 차액의 75%
<u>- 최저한세 순영업손실 공제(90% 한도)</u>
미국 국내생산 공제전 최저한세 과세소득
<u>- 미국 국내생산 공제</u>
최저한세 과세소득(AMTI)
<u>- 법정 면세액(\$40,000)</u>
과세표준(Gross Alternative Minimum Tax)
<u>× 최저한세 세율(0.2)</u>
공제전 잠정 최저한세
<u>- 최저한세 외국세액공제</u>
잠정 최저한세(TMT)
<u>- 일반 법인세(세액공제 이전: 단 외국납부세액과 possession tax credit은 공제)</u>
최저한세

주: Alternative Minimum Taxable Income.

자료: CCH(2008).

최저한세는 다양한 공제항목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저한세를 결정할 때 일반 법인세에서 허용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주식회사 일반 과세소득에 추가해야 하는 세금우대조항(tax preference)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Sec. 57(a)). 우선 과세연도 종료시점의 감모상각 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모상각 허용분(percentage depletion)이 추가된다. 즉, 비율 감모상각에서 상각금액이 과세연도 종료시점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이 부분은 최저한세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두 번째로, 석유, 천연가스, 지열광구 개발비용이 이들 자산으로부터 해당 과세연도에 창출된 순소득의 65%를 초과하는 금액도 세금우대항목으로 간주된다(Sec. 263(c)). 과세소득에 추가되어야 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실제 공제한 금액이 자본경비

로 처리되어 10년간 상각되거나 혹은 비용 감모상각으로 처리되었을 때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로, 1986년 이후 발행된 비과세 민간채권⁶³⁴⁾의 이자소득이 추가되며 마지막으로, 1987년 이전에 서비스가 개시된 부동산의 경우 정액법에 의한 상각금액을 초과하는 가속상각 금액이 추가되어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설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감가상각 대신 60개월 동안 상각하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었던 초과분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비과세 채권은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최저한세 과세 목적으로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

세금우대항목은 최저한세 과세소득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최저한세 조정 항목은 일부 소득과 공제를 다시 환산하기 때문에 최저한세 과세소득을 늘릴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다(Sec. 56(a)). 일부 항목은 또한 최저한세와 일반 법인세 목적상 과세신고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과세소득이 처음에는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과세연도에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과세소득 조정 항목(Adjustment to taxable income)은 매우 다양한데 우선 최저한세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일반 소득세와 다른 감가상각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감가상각방식(ADS)⁶³⁵⁾은 자산의 종류와 서비스 개시시점에 따라 다르다. 특히 1998년 이후 서비스가 개시된 부동산에 관한 최저한세 상각방식은 일반 소득세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자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없다. 그러나 1986~1999년 사이에 서비스가 개시된 부동산은 내국세법 168(g)조에 따른 대체상각방식을 사용하고 만약 일반 감가상각방식에 의한 금액이 대체상각방식에 의한 금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을 과세소득에 더하고 반대의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새로운 자산의 경우 일반 감가상각이 최저한세 감가상각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산이 오래 되면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1986~1999년 사이에 서비스가 개시된 개인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일반 상각기간⁶³⁶⁾ 동안 200%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데 비하여 최저한세에서

634) 축구 스타디움 건설 등 정부 사용과 관련이 없는 민간 업무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생한 면세 채권을 말한다.

635)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부동산의 경우 40년간 정액법을 적용한다.

636) general depreciation recovery period.

는 내국세법 168(g)(3)에 명기된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150% 정률법에 따라 상각을 한다. 그러나 일반 소득세 산정을 목적으로 정액법이나 대체상각법을 사용하였으면 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다. 1998~2001년 그리고 2004년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개인자산의 경우 일반 소득세나 최저한세나 동일하게 해당 자산의 일반 상각기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다만 상각방식은 각각 200%와 150% 정률법을 이용한다. 물론 주식회사가 일반 소득세 산정시 정액법이나 150% 정률법을 이용하였으면 조정이 필요없다. 마지막으로 2001~2005년 사이에 서비스가 개시된 개인자산의 경우 MACRS 내용연수가 20년 이하인 신규 자산은 200% 정률법으로 상각을 하고 상각기간은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조정이 요구된다.

일반 소득세와 최저한세를 산정하기 위한 감가상각방식이 다르게 때문에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실현되는 양도손익도 다르게 된다. 이는 자산의 장부가액이 허용된 감가상각금액만큼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와 최저한세 장부가액이 다르므로 실현된 양도차익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후 자산 처분에 따른 최저한세 이익이나 손실은 최저한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 밖에도 현행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하였던 광산 탐사 혹은 개발비용은 최저한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되어야 한다.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한 5년 상각방식도 최저한세 상각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986년 이후 계약이 시작된 장기건설계약(long-term contract)은 최저한세 산정을 위한 과세소득 환산시 완성비율기준(percentage of completion)을 이용해야 한다. 1990년 이후 주택건설계약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미국 국내생산 공제도 제외하고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제가 허용되는 국내생산 소득과 일반 과세소득 그리고 최저한세 과세소득의 상대적 규모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Sec. 199(d)(3)).

최저한세에서 사용되는 순영업손실 공제는 일반 법인세와 차이가 있다. 일단 최저한세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순영업손실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순영업손실에 세금우대항목을 추가하고 조정을 하며 수동적 활동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손실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된 최저한세 순영업손실

도 이전 2년간 소급되고 향후 20년간 이월될 수 있다. 순영업손실 공제는 공제 이전 최저한세 과세소득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규정으로 주식회사는 세액공제나 법정 면세액이 없다면 매년 최저한세 과세소득의 2%($0.1 \times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는 당해연도 소득⁶³⁷⁾에 따라 최저한세 과세소득을 조정해야 한다. 의회는 주식회사가 재무 목적으로는 소득을 보고하면서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부상의 소득에 대하여 최소한의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항을 도입하였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장부소득과 과세소득을 비교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장부상의 소득 일부를 ACE 조정은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술적으로는 당해연도 소득(ACE)을 장부소득의 추정치로 간주하여 당해연도 소득(ACE)과 최저한세 과세소득(AMTI) 차이의 75%를 과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된 당해연도 소득이 최저한세 과세소득(순영업손실 공제 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의 75%를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반대로 조정 전 최저한세 과세소득이 당해연도 소득보다 많으면 원칙적으로 그 차액의 75%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⁶³⁸⁾. 당해연도 소득 조정은 최저한세 과세소득을 주식회사 경제적 소득 개념에 보다 가깝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그 산정방식이 매우 복잡하다⁶³⁹⁾.

당해연도 소득(ACE)은 조정 전 과세소득에 다양한 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되며 주식회사 배당금이 이윤 배당인지 아니면 자본의 반환인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 이윤(E&P)의 개념에 가깝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Sec. 312). 한 예로 과세소득 산정에 제외되는 면세소득이 당해연도 소득에는 포함이 되며 과세소득 산정시 공제되는 경비와 손실이 당해연도 소득 산정시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업경비 등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일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최저한세나 이윤 적립세 등을 줄이는 데 이용될 수 없다. 나아가 주식회사는 사업경비 세액공제를 사용하여 일반 법인세를 잠정 최저한세(TMT)보

637) Adjusted Current Earnings.

638) 다만 최저한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과거에 ACE 조정에 따라 최저한세 과세소득에 포함된 금액의 합에서 과거에 최저한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으로 제한된다(Sec. 56(g)(2)).

639) Reg. Sec. 1.56(g)-1에 자세한 당해연도 소득(ACE)의 산정방식이 제시되어 있다.

다 적게 줄일 수가 없다(Sec. 38(c)). 즉, 한 과세연도에 사용이 가능한 일반 사업경비 공제는 주식회사의 순소득세(일반 법인세+최저한세-외국세액공제-*possession tax credit*)가 잠정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만약 일반 법인세의 25%에서 25,0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이 잠정 최저한세보다 많으면 잠정 최저한세가 아니라 이 금액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일반 사업공제는 일반 법인세 전액이 아닌 잠정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일반 법인세 금액에 대해서만 상쇄가 가능하다.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는 일반 사업경비 세액공제는 1년 소급되고 20년간 이월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외국세액공제는 금액의 한도 없이 잠정 최저한세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지 않은 세액공제는 2년간 이전 연도로 소급하거나 5년간 이후 연도에 이월하여 잠정 최저한세에서 공제한다(Sec. 59(a)(2)).

요컨대 잠정 최저한세 납세의무액이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액(세액공제 중 외국세액과 *possession tax credit* 제외)을 초과하면 주식회사는 일반 법인세와 초과액을 잠정 최저한세로 납부한다. 반대로 잠정 최저한세가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액보다 작으면 일반 법인세에서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수행하되 이로 인하여 산출된 금액이 잠정 최저한세보다 적으면 안 된다. 즉,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최소한 잠정 최저한세보다 많아야 한다.

주식회사가 최저한세를 납부하면 향후 일반 법인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되는 최저한세 세액공제(*minimum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동일한 소득항목이 먼저 최저한세로 과세되고 그 이후 일반 법인세로 다시 과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Sec. 53). 그 결과 최저한세는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최저한세는 전액을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한 과세연도에 주식회사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1986년 이후 납부한 최저한세 전체 금액에서 이미 세액공제로 활용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물론 당해연도의 일반 법인세가 잠정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⁶⁴⁰⁾. 최저한세 세액공제는 소급이 되지 않는 대신 다음 연도로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법인세와 잠정 최저한세의 차액을 상쇄하고 남은 최저한세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640) 즉, 이후 연도 최저한세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일반 법인세를 줄이는 데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만약 주식회사가 선택을 하면 법인세 산정을 위한 일부 공제를 이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법인세는 증가하지만 최저한세는 줄일 수 있다. 한 예로 일부 항목에 대한 결손처분(writeoff)을 이연함으로써 이를 세금 우대항목이나 최저한세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Sec. 59(e)). 이와 같은 항목으로는 연구개발비와 천연자원 개발 및 탐사비 등이 있다. 이외 최저한세에 적용되는 감가상각방식을 일반 법인세 산정에도 사용함으로써 감가상각과 장부가액 조정을 피할 수 있다(Sec. 59(g)(6)). 일반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도 추정되어 분기별로 예납해야 한다.

라. 지배그룹(controlled group)과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

법인세는 소득에 따라 15~35%로 누진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여러 주식회사에 분산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이처럼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한 지배그룹⁶⁴¹⁾에 속한 주식회사들에 대하여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controlled group of corporations).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들 회사들은 소득과 경비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Sec. 1563).

의회는 동일한 주주들이 두 개 이상의 주식회사를 지배할 경우 과세상 특별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Sec. 1561). 이 규정에 따라 지배그룹에 속한 주식회사는 마치 하나의 주식회사인 것처럼 일부 세법상 혜택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에는 저세율, 최저한세 법정 면세액(40,000달러), 179조 감가상각자산 경비처리, 이윤적립 세액공제(250,000달러)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규정은 한 지배그룹에 속한 회사들이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따로 신고할 경우 그룹 전체로서 누진과세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그룹 전체 과세소득에 대하여 11,750달러를 한도로 5%의 추가세율이 적용되며 1,500만달러를 초과하는 그룹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10만달러를 한도로 3%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즉, 개별 회사가 아닌 그룹 전체 소득에 대하여 하나의 주식회사처럼

641) 지배그룹은 주식보유 정도에 따라 모·자회사, 형제회사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대부분의 모자회사가 속한 계열그룹(affiliated group)은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지만 형제회사는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없다.

과세되도록 한다. 한 예로 한 지배그룹에 속한 4개 회사가 각각 10만달러의 과세소득을 신고하면 그룹 전체 소득이 335,000달러를 초과하므로 개별 회사들은 11,750달러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각각 10만달러 소득에 대한 기존 법인세 22,250달러에 11,750달러를 합한 34,000달러를 납부하는데 이는 하나의 주식회사가 40만달러 소득에 대하여 136,0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같다.

지배그룹(controlled group)은 동일한 주주나 주주집단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두 개 이상의 주식회사로 구성된다. 지배그룹은 주식보유 정도에 따라 모·자회사 지배그룹(parent-subsidiary), 형제·자매회사 지배그룹(brother-sister), 통합 지배그룹(combined controlled group)의 세 가지 부류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제약규정을 적용받는다. 우선 모자회사 지배그룹에서는 주식 소유권을 통하여 그룹 회사들이 동일한 모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모회사가 가격 혹은 투표권을 기준으로 자회사의 모든 종류 주식의 8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⁶⁴²⁾. 자회사나 지배그룹에 속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80% 이상을 보유하면 그 회사도 모·자회사 지배그룹에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

형제·자매 그룹은 5명 이하의 주주, 유산(기금)이 모든 종류의 주식 80% 이상을 소유하고 또한 주주들이 개별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모든 종류의 주식을 합하여 50% 이상을 초과하는 그룹을 말한다. 50% 기준을 산정할 때 개별 주주가 소유한 최소 주식비율이 중요하다. 즉, 갑이 A와 B 주식을 80%, 25% 소유하고 을이 A와 B 주식을 20%, 75% 소유하면 공동 소유 주식은 25%와 20%를 합한 45%가 된다. 이들은 각각 80% 규정과 50% 규정으로 지칭된다⁶⁴³⁾. 주주의 주식 소유권은 지배그룹에 속한 모든 개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야 80% 규정에 포함된다⁶⁴⁴⁾. 통합 지배그룹은 세 개 이상의 주식회사로 구성되어 모·자회사와 형제·자매회사 속성을 같이 보유한 그룹으로 개별 회사가 모자나 형제·자매 그룹의 일원이며 최소한 한 회사가 모기업이거나 형제·자매회사의 일원인 그룹을 말한다⁶⁴⁵⁾.

642) Sec. 1563(a)(1), (d)(1): 또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그러한 옵션을 보유한 사람이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attribution rule). 1563(c)은 지배그룹에서 제외되는 주식을 정의하고 있다.

643) 1561조에 따른 과세 목적을 위해서는 50% 기준만 충족하면 형제자매회사로 간주된다.

644) Reg. Sec. 1.1563-1(a)(3).

전술한 대로 지배그룹에 속한 주식회사들은 그룹 전체 과세소득 50,000달러에 15%, 25,000달러에 25% 그리고 9,925,000달러에 대하여 34%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지배 그룹은 회원사 중 누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하지 아니면 회원사 사이에 동일하게 배분된다. 추가 세금 이외에도 일정 항목을 그룹 회사에 배분을 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에는 최저한세 법정 면세액(40,000달러), 이윤적립금 세액공제(250,000달러), 내국세법 179조에 따라 감가상각 자산에서 연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금액(125,000달러), 일반 사업비 세액공제(25,000달러) 등이 있다. 또한 회원사 사이의 자산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은 당장 공제되지 않고 이연되어 그룹 이외의 제3자에게 매매할 때 처음 자산을 매각한 회사가 공제할 수 있다(Sec. 267(a)(1))⁶⁴⁵).

국세청은 내국세법 482조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지배그룹에 속한 회원사들 사이에서 소득, 공제나 세액공제를 양도할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밖에도 회원사들이 각기 다른 회계방식을 사용하여 지급금이 다른 연도에 신고되는 상황에서는 한 회원사가 다른 회원사에게 지급해야 할 경비나 이자비용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Sec. 267(a)(2)). 특수관계자 사이의 감가상각 자산 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적용된다(Sec. 1239). 이와 같은 제약규정은 다만 지금까지 논의된 지배그룹 요건에 더 상세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계열그룹(affiliated group)에 속한 주식회사들은 연결납세신고서(consolidated tax return)를 통하여 통합 법인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Sec. 1504(a)). 계열회사는 공통의 모회사 주식소유권을 통하여 같은 그룹에 포함될 수 있는 주식회사로서 모회사가 최소한 한 개의 자회사 주식 80%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또한 하나 이상의 그룹 회원사가 다른 계열사 주식 80% 이상을 직접 소유한 그룹을 의미한다(공정시장가격과 투표권 기준)⁶⁴⁷. 모자회사는 지배그룹이며 동시에 계열그룹에 속하지만 형제자매 회사는 지배그룹이지만 계열그룹에 속하지 않는다.

645) Sec. 1563(a)(3).

646) 이에 비하면 지배주주와 주식회사 사이의 자산 거래에 따른 손실은 아예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647) 지배그룹의 모자회사는 주식 투표권과 주식가격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지만 계열회사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연결납세신고를 하려면 계열그룹의 회사들이 모두 동의하고 새로운 회원사도 연결납세신고에 동참해야 한다. 자회사들은 모회사의 회계방식과 회계연도를 따라야 한다. 면세 주식회사, 생명보험과 상호보험 주식회사, 외국회사, 규제대상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기금, 해외판매 주식회사(FSC)는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없다. 연결납세신고는 Form 1120에 개별 회원 계열사의 모든 소득과 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한다. 만약 계열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면 그 이후에는 국세청이 신고방식의 변경을 허락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결납세신고는 모든 계열사의 소득에 대하여 통합 신고함으로써 한 회원사의 소득과 다른 회원사의 손실을 서로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개별 회사의 자본소득과 자본손실도 서로 연계하여 상쇄할 수 있다. 또한 회원사 간의 거래에 따른 이익은 그룹 이외 제3자에게 매각할 때까지 인정이 이연된다. 다만 다른 계열사의 순영업손실을 매입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행위나 이윤이 나는 주식회사를 매입하여 순영업손실을 사용(공제)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는다. 또한 양도세율을 적용받는 1231조 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은 일반손실로 인정되지 않고 다른 계열사의 1231조 이익과 서로 상쇄되어야 한다.

이익이 나지 않은 다른 계열사의 손실은 만약 별도의 신고를 하였다면 허용되었을 공제금액의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계열회사의 일부 공제는 연결납세신고에서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built-in- deduction). 이와 같은 공제는 자회사가 별도의 신고(SRLY)⁶⁴⁸⁾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공제는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계열그룹이 자산을 취득한 지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취득한 자회사의 모든 자산(현금, 채권, 영업권 제외) 장부가액이 그러한 자산 공정가격을 15% 이상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하다⁶⁴⁹⁾. 또한 연결납세신고를 위한 서류 기록 유지 등 복잡한 행정비용을 발생한다.

648) 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649) Reg. Sec. 1.1502-15.

7. 조세특례

가. 비청산 배당(non-liquidating distribution)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현금, 자산이나 주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때 주주는 지급받은 자산에 대하여 자산의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이를 일반소득이나 자본(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고 또는 면세받을 수도 있다. 또한 주식회사도 배당에 따른 손익을 신고해야 할지도 모른다. 자산 배당은 크게 주식회사가 청산되는 상황에서의 배당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배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는 다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을 하는 회사 주식이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 그리고 해당 주식회사 주식을 자산과 교환하는 배당(stock redemp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원칙

내국세법 301조에 의하면 주주는 배당소득(dividend)으로 간주되는 주식회사 배당금을 총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배당소득이란 주식회사 소득과 이윤 즉, 수익(earning and profit, E&P)으로부터 지급되는 금전, 채권 그리고 이외 다른 자산을 말하며 다만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식 취득권리(stock option)는 제외된다(Sec. 316(a)). 주식회사 수익(E&P)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은 출자금의 반환으로 간주되어 주식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있다(단, 장부가액이 영(0)보다는 많아야 함). 또한 장부가액보다 많은 배당은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으로 취급된다⁶⁵⁰⁾.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주식이 자본자산이면 이익은 자본(양도)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청산 배당이 아닌 경우 주주는 배당금액과 배당이 배당소득인지 여부 그리고 배당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을 알아야 한다. 주식회사는 그 대신 배당 당시 회사가 인정해야 할 손익의 금액과 성격을 결정하고 배당이 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

650) 즉, 배당이 주식회사 수익과 주식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주식매각에 따른 자본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을 파악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Form 5452).

주식회사 수익(E&P)은 내국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법 판례와 국세청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수익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주식회사가 수익이 없음을 신고하지 않는 한 배당은 기업 수익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식회사 수익은 당해연도 수익(current E&P)과 이전에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축적한 유보 수익(accumulated E&P)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보 수익은 기업이 이전에 배당하지 않은 당해연도 수익에서 당해연도 손실과 유보 수익에서 제공된 배당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배당소득은 먼저 당해연도 수익에서 지급되고 부족한 부분이 유보 수익에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주식회사는 매년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당해연도 수익(current E&P)을 산정해야 한다. 당해연도 수익은 과세소득(혹은 순영업손실)에서 시작하여 <표 II-11>의 방식으로 결정된다(Sec. 312). 특히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는 당해연도 수익을 산정할 때 과세소득(혹은 순영업손실)에 법인세 환급금, 면세소득 그리고 과세상 혜택이 없었던 이전 연도 공제항목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배당수입공제, 순영업손실이나 기부금 이월금도 기업 수익에 포함된다. 이외 연방법인세와 벌금 그리고 과세소득 산정시 공제가 허용되지 않지만 배당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연도 수익을 줄이는 여러 공제 및 손실을 제외해야 한다. 이러한 항목에는 면세소득과 관련된 경비, 초과 기부금, 초과 자본손실 등이 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손익은 일반적으로 손익을 인정할 때 당해연도 수익(E&P)에 포함되지만 분할판매는 매각 시점에 수익으로 간주한다. 또한 감가상각방식은 내국세법 168(g)조의 대체상각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179조 비용상각법에 의한 감가상각도 5년에 걸쳐서 조정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40년을 기준으로 한 정액법이 적용되며 기타 개인자산은 자산 종류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되어야 한다. 이외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는 제외되지만 당해연도 수익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배당수입공제와 순영업손실, 기부금, 자본손실 이월금이 있다.

〈표 II-11〉 당해연도 수익(E&P)의 산정에 필요한 과세소득의 조정

차감	내용
	과세소득
+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지만 기업 수익에 포함되는 항목 비과세 이자소득, 회사가 수혜자인 생명보험 수혜금 세금공제를 받지 못한 대손금이나 세제혜택이 없었던 공제항목 연방법인세 환급금
+	과세소득 산정을 위하여 이연된 소득 분할판매(installment sales)로 이연된 이득
±	소득 및 공제항목의 조정 장기계약으로 인한 소득(% 공정율 방식) 개인 및 부동산 자산 감가상각 조정 조기원가회수방식(MACRS) 자산 이외에는 정액법 사용 조기원가회수방식(MACRS) 자산에 대체 감가상각방식 사용 비율 감모상각이 비용 감모상각을 초과하는 부분
+	과세소득 산정을 위한 공제 배당수입공제, 국내생산공제, 순영업손실, 기부금, 손실 이월금
-	과세소득 산정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손실과 비용 연방법인세, 기업이 수혜자인 보험료, 초과 양도손실 초과 기부금, 면세소득 창출경비, 특수관계인 판매로 인한 손실 벌금 및 가산금, 정치자금 및 로비성 경비
=	당해연도 수익(혹은 손실)

자료: *Federal Taxation 2008, Comprehensive*, Prentice Hall, 2008.

전술한 대로 배당소득은 먼저 당해연도 수익에서 지급되고 부족한 부분이 유보 수익에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해연도 수익이나 유보 수익에서 지급된 배당은 배당소득(dividend)으로 과세되며 이러한 수익을 초과하는 배당은 출자금의 환원으로 주식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분을 초과하는 배당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손실이 발생해야 당해연도 적자가 발생하며 배당은 이와 무관하다. 주식회사 수익이 없고 적자가 있는 상태에서 배당은 배당소득이 아닌 출자금의 반환으로 간주되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배당은 자본소득으로 취급된다.

한편 당해연도에는 결손금이 발생하고 유보 수익은 흑자인 경우 배당의 과세 성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먼저 배당 시점의 당해연도 결손금은 유보 수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⁶⁵¹⁾. 만약 유보 수익의 잔액이 흑자이면 수익 잔액과 배당금액 중 적은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유보 수익 잔액이 결손이면 배당은 출자금 반환으로 간주된다. 당해연도 수익을 환산할 수 없으면 배당 시점 이전을 기준으로 날짜별로 수익을 결정한다.

2) 자산 배당

배당에 있어서 자산은 금전, 채권 그리고 이외 다른 자산을 포함하며 다만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식 취득권리는 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주식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때 어디까지가 배당소득인지를 알아야 한다. 현금의 경우 기업의 (유보)수익으로부터 지급되면 이는 배당소득(dividend)으로 과세된다. 현금 배당은 액면금액만큼 기업 수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배당을 한 주식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토지 혹은 재고 등 자산을 지급하면 배당금액과 주주가 보유하게 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이익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업 수익 조정 그리고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주식회사는 자산 배당에 따른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자산을 배당하면 배당금액은 배당 시점의 공정시장가격(FMV)에 따라 결정된다. 주주가 자산 배당으로 대신 책임지는 부채는 배당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 다만 배당금액이 부채로 인하여 영(0)보다 작을 수는 없다(Sec. 301(b)). 자산배당도 기업 수익으로부터 지급되면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주주가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시장가격이며 다만 주주가 대신 책임지는 부채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holding period)은 배당 시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한편 자산을 양도한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으로 인한 손익의 성격과 금액을 결정하고

651) Reg. Sec. 1,316-2(b).

이로 인하여 회사 수익이 받는 효과를 알아야 한다. 특히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주주에게 제공하면 해당 자산을 마치 공정가격에 매각한 것처럼 양도소득을 인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배당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Sec. 311(a)). 만약 주주가 자산을 배당받으면서 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거나 채무가 있는 자산을 받으면 자본(양도)소득을 결정할 때 자산의 공정가격은 이러한 채무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Sec. 311(b)(2))⁶⁵²⁾.

한편 자산을 배당한 주식회사의 수익(E&P)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야 한다. 우선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배당하면 회사 수익은 자산의 공정가격이 기업 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의 자산 장부가액(E&P basis)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E&P gain). 기업 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가액은 과세목적에 위한 장부가액과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로, 배당자산의 공정가격이 수익 장부가액(E&P basis)보다 크면 기업 수익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격만큼 하향 조정된다. 반대로 공정가격보다 수익 장부가액이 크면 기업 수익은 수익 장부가액만큼 하향 조정된다. 이 때 주주가 대신 인수한 부채금액과 회사가 인정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액은 기업 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Sec. 312(a)). 만약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어음 등 부채를 배당하면 기업 수익은 공정가격이 아닌 원금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주주에게 지급된 과도한 배당은 기업 수익(E&P)의 지급 즉,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으로 간주되어 주식회사는 공제를 할 수 없고 주주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다⁶⁵³⁾. 한 예로 시장가격 이하로 주식회사가 자산을 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는 피용인인 주주에게 비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이사회가 주주에게 직접 비율적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이지만 의제배당은 이러한 특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의제배당은 주주나 그 친척이 기업 경영진인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자세한 검증을 받는다.

652) 한 예로 장부가액이 \$10,000이지만 이를 담보로 한 부채가 \$50,000인 자산을 인수하면 비록 공정가격이 \$30,000일지라도 주식회사는 \$40,000(부채액 \$50,000-장부가액 \$10,000)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즉, 이익을 산정할 때 부채액이 공정가격을 대신한다. 그 대신 만약 공정가격이 \$60,000이라면 주식회사는 인정할 이익이 \$10,000(\$60,000-\$40,000-\$10,000)이다.

653) 이외 시장 이자율 이하의 이자율로 주주에게 대출을 해주면 의제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외 주식회사가 주주 채무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즉, 배당소득이 기업 수익에서 지급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주주는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면 주주 차원에서는 과세되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공제가 허용된다. 또는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이 대출로 포장되면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고 공제도 가능하다. 특히 주주에게 제공된 대출금은 신의 성실 원칙(bona fide)에 입각한 부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는 서면에 의하여 기록된 부채로서 합리적인 이자가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증명이 되어야 한다.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 지급, 사전에 결정된 일정에 의한 원금 반환이 결여된 부채(open account)나 지배주주에 대한 선급금 등은 위장된 배당으로 과세된다(Sec. 7872).

이밖에도 주주이자 피용인인 사람에게 지급된 보수나 부가급부는 통상적이고 필요한 사업경비로서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고 과도하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주주는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이러한 보수는 일반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또한 주주가 소유한 자산을 임대하고 지급한 사용료나 임대료도 합리적이면 주식회사는 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독립된 거래에서 지급하는 사용료보다 많으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주 개인적 채무나 경비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행위도 위장된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으로 간주되어 주주가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회사가 지급한 접대비 등도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주주는 이를 소득에 포함해야 할 수 있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회사 자산이나 회사 자산을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주식배당(stock dividend)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주식배당이라고 한다. 혹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stock right or option)를 허용하기도 한다. 주식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나 주주에게 자산을 추가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비과세된다. 즉, 기존에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common stock)의 비율에 따라 제공된 추가적인 보통주 배당은 회사지분 비율을 변경하지 않으며 면세가 허용된다(Sec. 305(a)).

그러나 주주의 회사지분 비율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주식배당은 금전 등의 자산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즉 주주가 주식이나 주식 매입권 이외 현금 등 다른 자

산을 배당받을 선택권이 있거나 주주 중 일부는 자산을 분배받고 다른 주주는 회사 자산이나 수익에 대한 지분율을 증대하는 권리를 분배받으면 이는 과세대상 배당이 된다. 혹은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배당해도 과세된다. 이외 보통주의 주주 중 일부가 우선주를 제공받거나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어도 과세된다. 주식 매입권(stock right)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만약 주식배당이 비과세되는 성격의 배당이라면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은 기존 주식과 새로 제공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분할되며 보유기간도 기존 주식의 보유기간과 동일하다(Sec. 1223(5)). 만약 이들 주식이 동일하다면 기존 주식들의 장부가액을 전체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이 개별 주식의 장부가액이 된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주식이 배당되면 배당 시점에 기존 주식과 새로운 주식의 상대적 공정가격에 따라 장부가액이 비율적으로 배정된다.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주식 매입권(stock right)의 가격이 기존 주식의 15% 이하이면 주주는 이러한 권리의 장부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을 배분할 수 있다(Sec. 307(b)(1)). 주식 매입권을 매각할 생각이라면 후자가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신고를 할 때 장부가액 배분을 신고해야 하며 배분방식은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유기간은 기존 주식의 보유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만약 매입권 가격이 15% 이상이면 반드시 장부가액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주식 매입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손실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대신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매입권을 행사하면 매입권에 할당된 장부가액이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며 새로운 주식의 보유기간은 매입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시작된다(Sec. 1223(6)).

한편 주식(혹은 매입권)을 배당한 회사의 경우 배당이 비과세되는 성격이라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되는 주식배당이 있으면 배당금액은 배당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되어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즉 기업 수익(E&P)으로부터 제공되는 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주는 배당받은 주식(매입권)의 공정가격을 장부가액으로 한다⁶⁵⁴⁾. 보유기간도 배당일로부터 시작하며 기존 주식의 장부가

654) Reg. Sec. 1.301-1(h)(2)(i).

액은 변경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도 배당에 따라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기업 수익(E&P)을 제공한 주식(매입권)의 공정가격만큼 감액한다.

4) 주식상환(stock redemption)

주식회사가 회사 자산⁶⁵⁵⁾을 제공하고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주식상환이라고 한다(Sec. 317). 주식회사는 취득한 주식을 취소하거나 폐기하거나 혹은 자사 주식(금고주, treasury stock)으로 보유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잔여 주주가 회사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주주가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어서 회사가 이를 매입할 수 있다. 이외 주식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식상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주 입장에서 볼 때 주주가 주식을 매각 혹은 교환하면 이로 인한 손익은 대개 자본손익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주식상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주식 매각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Sec. 302(b)). 주식상환을 배당으로 볼지 아니면 주식 매각을 간주할지는 관련 정황에 따라 배당소득적인 성격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내국세법에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례에서는 주식상환을 주식 매각으로 취급하며 이외 다른 경우는 자산 배당으로 간주하여 기업 수익에서 지급되는 자산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① 주식 지분을 실질적으로 처분하는 상환 ② 주주의 지분을 완전히 종식하는 상환 ③ 본질적으로 배당이 아닌 상환 ④ 주식회사 사업 일부를 종식하는 부분 청산적 상환, 혹은 ⑤ 유산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유산기금에 재원을 제공하는 상환.

주식상환을 주식 매각으로 간주하는 다섯 가지 사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상환을 전후한 주식 소유이다. 특히 주주의 지분이 충분히 감소하면 주식상환은 일반적으로 매각으로 취급된다. 반대로 지분이 변함이 없거나 증가하면 주식상환은 배당소득으로 처리된다. 여기서 주식 소유 여부는 내국세법 318조상의 의제 소유권이나 귀속주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Sec. 302(c)). 이 규정에 따르면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이외 배우자와 직계존속⁶⁵⁶⁾ 그리고 관련 단체가 보유한 주식도 해당 주주가 소유한 것

655) 자산은 현금, 다른 회사 채권 혹은 주식 취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보수가 될 수 있다.

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식회사, 파트너십, 기금의 주주, 파트너 혹은 수혜자가 보유한 주식도 이들 단체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파트너십이 보유한 주식은 파트너가 비율적으로 소유하고 반대로 파트너가 보유한 주식은 파트너십이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C 법인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주식은 주주 중에서도 전체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주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attribution rule).

만약 주식상황이 매각으로 간주되면 주주는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한 것처럼 주주가 반대급부로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가격에서 양도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손익으로 처리한다. 주주 입장에서 주식은 자본자산이므로 손익도 양도손익으로 취급된다. 주주가 대신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과 같고 보유기간도 교환시점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상기한 바 다섯 가지 사례 중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주식상황은 내국세법 301조의 자산 배당으로 처리되어 기업 수익에서 지급되는 자산으로 간주되는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dividend)으로 과세된다. 주주가 주식회사에 제공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주주가 처분하지 않은 주식의 장부가액에 추가되어 포함된다⁶⁵⁷⁾.

주식상황이 매각으로 간주되면 자본소득과 손실을 서로 상쇄할 수 있고 과세되는 양도이익은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비하면 배당소득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할 수 없으며 그 대신 장부가액이 잔여 주식에 할당되어 추후 이들 주식을 매각할 때 과세되는 이익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주식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주주에게 공여한 자산을 공정가격에 매각한 것처럼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손실은 인정할 수 없다. 한편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일반 배당소득 지급과 같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격만큼 기업의 수익을 감액 조정해야 한다. 매각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상환된 주식에 귀속되는 기업 수익만큼 감액하고 이를 초과하는 배당금은 회사의 불입자본금(paid-in-capital)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주식 매각으로 인정되는 다섯 가지 사례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식 매각이 상당한 경우는 첫째, 주식상황 이후 투표권이 있는 전체

656) 배우자, 자녀, 손자녀와 부모가 318조상의 직계존속이며 267조상의 형제자매나 조부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657) 만약 주주가 모든 주식을 교환하면 의제 주식 소유권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주의 장부가액에 처분된 주식의 장부가액이 추가된다(Reg. Sec. 1.302-2(c)).

주식의 50% 이하의 주식을 보유하고 둘째, 주식상환 전후를 비교할 때 그 이후에는 투표권이 있는 주식 80% 이하의 보유하며 마지막으로, 주식상환 이후에는 그 이전 보다 보통주 8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해야 한다(Sec. 302(b)(2)). 요컨대 주식상환으로 주주가 더 이상 지배적 지분을 보유할 수 없으며 주주가 소유한 보통주(투표권 주식) 20% 이상을 상환해야 주식 매각으로 간주된다(disproportionate redemption). 주식 소유권 여부를 판단할 때 귀속원칙에 따른 의제 소유권 규정이 적용된다.

두 번째로, 주주가 회사 지분을 완전히 청산하는 주식상환은 주식 매각으로 간주된다. 첫 번째 사례에 포함되지 않는 투표권이 없는 주식의 상환이나 다른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주주가 주식을 완전히 상환하면 이 규정에 따라 주식 매각으로 간주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귀속원칙에 의한 의제 소유권 규정이 면제됨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 매각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는 될 수 있지만 직원 등으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고 상속을 제외하면 10년 동안 회사 지분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만약 금지된 지분을 취득하면 이를 신고한다는 약정을 국세청과 맺어야 한다⁶⁵⁸⁾. 10년 이내에 회사 지분을 취득하면 주식상환은 통상적으로 주식매각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재규정되며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 번째, 주식상환은 근본적으로 배당소득이 아니면 주식 매각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앞서 논의된 두 가지 사례처럼 세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개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Sec. 302(b)(1)). 다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내국세법 318(a)조에 따라 의제 소유권 규정을 고려하여 주주의 지분이 의미 있게 감소하면 주식 매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⁶⁵⁹⁾. 법적 불투명성 때문에 세 번째 규정은 대개 주주가 보통주를 소유하지 않고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를 상환할 때 적용된다. 또한 투표권과 회사 경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주식상환에 적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지배주주가 지분을 낮추어 지배권을 상실하거나 소액 주주(minority interest)가 지분을 추가로 줄일 때 이 규정이 발동한다.

네 번째, 주식회사가 아닌 주주가 주식상환으로 회사의 일부 사업이 청산하게 되면

658) 따라서 10년의 기간 동안에 주주가 318조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환된 주식을 취득하면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659) U.S. v. *Maclin P. Davis*, 25 AFTR 2d 70-827, 70-1 USTC 9298, 1970.

주식 매각으로 간주된다(partial liquidation). 부분적 청산은 주식회사가 일부 사업을 정리하거나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지만 최소한 다른 한 개 사업을 지속할 때 발생한다. 만약 부분적 청산에서 배당이 근본적으로 배당소득이 아니면 이 때 주식상환은 주식 매각으로 인정된다. 다만 부분 청산 계획이 채택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 사례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은 주식회사 차원에서 결정된다. 사실상 사업 축소나 전환으로 인한 사업 청산 등에 이에 해당하며 여러 내국세 규정에 구체적 사례가 적시되어 있다(Sec. 302(b)(4))⁶⁶⁰. 한편 내국세법에는 부분적 청산으로 간주되는 안전규정(safe harbor rule)이 제시되어 있다(Sec. 302(e)(2)). 즉, 주식회사가 자격이 있는 사업을 종식하면서 이를 위해 배당하고 다른 사업은 지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격이 있는 사업이란 주식상환 이전 5년간 진행해 왔던 사업으로 그 기간 동안 과세대상 거래로 취득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주가 부분 청산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으면 이에 대한 주식상환은 매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회사이고 다섯 가지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 배당은 배당 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우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수입배당은 70%나 80%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당소득을 선호할 수 있다. 이 때 파트너십이나 (유산)기금이 소유한 주식은 각각 파트너와 그 수혜자가 비율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취급한다.

마지막으로,株式이 고인 유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내국세법 303조에 따라 주식상환을 매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소유가 집중된 기업의 상속인이 유산세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주식을 쉽게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으면 주식상환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상속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고인 사망시점(혹은 대체 평가일)의 공정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상환하면 신고할 자본소득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303조를 적용받아 주식 매각으로 인정받으려면 조정된 유산⁶⁶¹의 35% 이상이 상환

660) Reg. Sec.1.346-1.

661) 조정된 유산이란 사망 시점 유산의 공정가격에서 각종 부채와 손실 및 유산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대상인 주식이어야 한다⁶⁶²⁾. 다만 주식 매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방 및 주정부 유산세와 유산세법상 공제가 허용되는 장례비 등 관련비용이다. 이외 연방유산세 과세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식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산세 조세시효가 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 이후 4년 이내에 주식상환을 해야 한다.

주식상환으로 자산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는 주식상환이 아닌 경우와 동일하게 311조에 따라 손익을 처리한다. 즉, 주식회사는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배당할 때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이익을 인정한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한 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주식을 상환함에 따라 회사 수익(E&P)은 두 번 영향을 받는다. 우선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지급하면 자산의 공정가격이 회사 수익 기준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익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회사가 현금이나 자산을 지급하면 회사 수익은 배당금액만큼 감소한다. 이 경우 배당금액은 주식 매각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만약 주식상환이 배당소득이라면 주식상환이 아닌 배당과 같이 회사 수익은 현금의 액면금액, 부채 원금 그리고 배당한 자산의 장부가액과 공정가격 중 큰 금액만큼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주식상환이 주식 매각이라면 상환된 주식에 귀속되는 현재 및 유보 수익만큼 회사 수익을 감액한다. 즉, 전체 주식에서 상환된 주식에 상당한 비율만큼 회사 수익을 하향 조정한다(단 실제 배당금액 이하). 만약 실제 배당금액이 이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회사의 과세 목적상 불입자본(paid-in-capital)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Sec. 312(n)(7)).

5) 우선주 상환 구제(preferred stock bailout)

주식상환이 주식 매각으로 인정되면 배당금액에서 장부가액을 공제할 수 있고 대개 자본소득으로 처리되므로 손실과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주주들은 주식 매각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상환방식을 창안해 왔는데 그 중 하나가 투표권이 없는 우

662) 다수의 주식회사 주식을 합쳐서 35%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다만 개별 주식회사 주식의 20% 이상이 유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선주를 보통주 주주에게 주식배당으로 지급하면 주주는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자본소득으로 보고 주식회사는 제3자로부터 약간의 프리미엄을 제공하고 우선주를 상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주주는 지분의 변경 없이 회사 수익을 배당소득에서 자본이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에 의회는 주식회사가 우선주 등 특정 주식을 주주로부터 직접 상환하면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주주가 특정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이를 일반소득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도입한 바 있다(Sec. 306). 동 조항에 따라 규제되는 주식은 과세되지 않는 주식배당, 주식회사 재조직, 분할 등으로 받은 주식으로서 보통주는 제외된다. 또한 현재 혹은 유보수익이 없는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나 유산으로 받은 주식도 제외된다. 그러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처분하거나 주식회사가 주주의 모든 보통주와 우선주를 상환하면 30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내국세법 302(b)(4)항에 의한 부분 청산 혹은 증여인 경우 주주가 306조 주식 처분이 납세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국세청에 입증하면 30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06조는 주주가 배당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와 주식회사가 이를 상환하는 경우 다르게 처리된다. 우선 주주가 배당받은 306조 주식을 처분하면 주주가 306조 주식 대신 그러한 주식의 공정가격에 해당하는 현금을 배당받았다면 인정해야 할 배당소득만큼 의제배당(deemed dividend)으로 간주되어 신고해야 한다(주식상환 제외). 의제배당으로 받은 금액은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연도의 회사 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즉, 306조 주식을 배당받은 연도의 회사수익과 동 주식의 공정가격⁶⁶³⁾ 중 적은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인정한다⁶⁶⁴⁾. 만약 매각대금이 의제배당소득보다 많으면 잔여 매각대금은 자본의 환수로 간주된다. 또한 잔여 대금이 배당받은 306조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자본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로 인정되지 않고 잔여 장부가액은 기존 보통주의 장부가액에 추가된다.

한편 주식회사가 306조 주식을 상환하면 주주가 실현한 금액은 301조 배당소득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으로 간주된다. 즉, 상환 시점의 회사 현재 수익과 유보수익 한도내

663) 배당받은 신규 주식(306조 주식)의 장부가액은 신규 주식과 기존 주식의 공정가격에 따라 기존 주식의 장부가액을 배분한 금액이 된다.

664) 하지만 이 경우 아래 주식상환과 달리 회사의 수익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

에서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회사 수익이 하향 조정된다. 회사 수익을 초과하여 실현된 금액은 306조 주식 장부가액의 환수로 간주되고 장부가액보다 많은 금액은 자본소득으로 취급된다. 만약 상환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전부 환수할 수 없다면 잔여 장부가액은 기존 보통주의 장부가액에 포함된다.

배당소득 이외 자산을 지급하는 주식회사는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Form 5452(Corporate Report of Non-dividend Distribution)를 작성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는 국세청 과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업 수익도 함께 산정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외 주주가 회사 지분을 완전히 청산하면 내국세법 318(a)(1)항의 친족귀속조항이 면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주식상환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금지된 회사 지분을 취득하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

나. 청산배당(liquidating distribution)

1) 일반원칙

주식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고 청산하게 되면 회사 자산을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매각하게 된다. 주식회사가 청산하는 이유는 사업상의 이유도 있지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주주 차원에서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손실자산에 대하여 주주 차원에서 공제받기 위한 과세상의 이유도 있다. 기업이 완전히 청산을 한다는 의미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회사 주식을 완전히 소각 혹은 상환받는 것을 의미한다(complete liquidation)⁶⁶⁵⁾. 이는 회사 이름을 유지하는 등 법인 허가를 반납하는 주식회사 해체(dissolution)와 차이가 있다.

청산배당을 통하여 회사가 정리되면 주식회사는 마치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과세되고 주주는 마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즉, 일반 주식회사가 파트너십 등 다른 사업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산하지 않고 S 법인으로 전환해도 기업 내재이윤에 대한 과세(built-in tax)가 적용될

665) Reg. Sec. 1.332-2(c).

수 있다. 모기업이 없는 주식회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일반 청산규정이 적용되는데 자회사의 청산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 청산규정이 적용된다.

우선 주주는 일반적으로 청산배당을 주식 교환에 따른 수입으로 간주하여 현금과 제공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에서 주식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양도)소득 혹은 손실로 인정한다.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으로 조정되며 보유기간도 배당 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만약 모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주주인 모회사는 이에 따른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자회사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을 그대로 이전받는다.

한편 청산하는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제공한 자산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이를 매각한 것처럼 손익을 인정해야 하며 다만 일부 손실에 대해서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실 인정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외 순영업손실 이월과 이윤의 성격이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청산되는 회사가 모기업이 80% 통제하는 자회사이면 손실 인정을 하지 않고 모회사가 자산을 그대로 이전받는다.

2) 일반적 청산규정

청산배당에서 현금 등의 자산을 제공받은 주주는 이를 주식의 교환에 따른 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자본소득(손실)을 인정해야 한다(Sec. 331(a)). 양도차익은 전술한 대로 현금과 지급받은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에서 주식의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만약 주주가 청산하는 회사의 부채를 대신 양도받으면 그 금액은 실현된 차익에서 제외된다. 만약 주주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따라서 매입가격)이 다르면 개별 주식에 대하여 따로 장·단기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⁶⁶⁶).

다만 주주가 개인으로 내국세법 1244조의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일반 손실로 처리되며 자회사의 주식이 휴지화되어 이를 보유한 기업이 입은 손실은 일반 손실로 처리된다(Sec. 165(g)). 모자회사가 연루되지 않은 일반 청산에서 주주가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으로 조정되며 보유기간도 배당시점부터 다시 시작된다(Sec. 334(a)).

666) Reg. Sec. 1.331-1(e).

한편 회사를 청산하면서 자산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기업의 경우 마치 주주에게 해당 자산을 공정가격에 매각한 것처럼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Sec. 336(a)). 즉, 배당 시점 자산의 공정가격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양도소득(손실)이 된다. 이처럼 청산 배당과 비청산배당 모두 주주와 회사에게 두 번 과세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소득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한편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회사는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주주에게 지급할 때 손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굳이 손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주가 회사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지급받은 자산의 공정가격은 대신 부담하는 부채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Sec. 336(b)). 이는 주식회사가 부채를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일반 규정에서 모자회사 청산을 제외하고 내국세법 336(a)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배당과 손실 가공 등 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있다. 이외에도 2004년 10월 이후 주주가 모기업에게 출자한 자산의 경우 전체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격을 초과하면 장부가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Sec. 362(e)(2)). 먼저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주식을 소유한 모든 주주에게 비율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해당 자산이 자격이 없는 자산이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배당하여 발생한 손실은 회사가 인정받을 수 없다(Sec. 336(d)(1)(A)). 손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산은 351조가 적용되는 거래에서 회사가 취득한 자산이나 배당 시점 이전 5년 이내에 출자된 자산 등을 말한다.

이 밖에도 세금 기피를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 배당, 혹은 출자하고 이를 청산배당하면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Sec. 336(d)(2)). 한 예로 351조 거래로 취득한 자산이나 청산되기 2년 전 이내에 출자한 자산의 청산배당에 따른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 청산이 되는 기업이 원래 손실을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된 기업이면 손실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자회사가 모회사로 청산되면 이는 사실상 모회사의 일부로 편입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회사가 제공받은 자회사 자산에 대하여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회사도 손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Sec. 332(a)). 다만 이는 모회사에게만 적용되며 자회사의 소액주주들은 331조상의 청산배당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청산자산을 배당하는 자회사는 이에 대하여 이익을 인정해야 하며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Sec. 337) 이외 자회사의 순영업손실과 수익, 자본손실과 세액공제 이월금도 청산이 종료된 시점의 금액으로 모회사로 양도되어 과세항목의 성격이 보존된다(Sec. 381(a)).

모기업이 제공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청산 시점 자회사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따라서 모기업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무시되며 주식상환으로 소멸되고 만다. 이에 비하면 소액 주주가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과 같다. 또한 2004년 이후 외국 자회사를 청산함으로써 국내 모기업이 자회사의 내재 손실을 양도받는 관행이 금지되었다. 특히 양도받은 자산의 총장부가액이 총자산의 공정가격을 초과하면 모기업은 개별 자산의 공정가격을 장부가액으로 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규정(332조)이 적용되려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모회사는 청산이 결정된 시점에서 자산을 배당받는 시점까지 자회사의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전체 주식이액(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⁶⁶⁷⁾. 두 번째로 자회사의 모든 주식이 완전히 소각 혹은 상환되며 청산배당이 1년 이내에 완료되거나 혹은 공식적인 계획에 따라 3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Sec. 332(b)(3)).

332조는 소액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실 자회사를 청산하면서 모기업이 받은 자산 혹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진 부채를 갚기 위하여 제공되는 자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⁶⁶⁸⁾. 부실기업이란 회사 채무가 자산을 상회하는 기업을 말한다. 만약 자회사가 부실하면 계열회사 채권에 대한 165(g)(3)항 혹은 대손금에 대한 166조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투자한 채권이나 주식에 따른 손실을 일반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특별 항목

궁극적으로 완전 청산에 해당하는 부분 청산배당을 지급받는 주주는 302조의 주식 환수 규정이 아닌 33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Sec. 346(a)). 이러한 일련의 배당을 지급받을 때 주주는 배당을 주식 장부가액의 환수로 간주하고 그 이후 장부가액

667) 주식 소유권에 대한 318상의 귀속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68) Reg. Sec. 1.332-2(b).

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소득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손실은 최종 배당까지 인정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배당이 종료된 이후 청산 당시 예상하지 못한 회사 채무가 발생하거나 불확정 채무로 인하여 주주가 이를 변상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하는 금액의 성격은 주식회사가 이와 같은 채무를 지급하였다면 인정되는 손실이나 공제의 성격이 아닌 주주 차원에서 그 성격이 결정된다.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이용하는 주주는 이를 지급할 때 자본손실로 인정하고 발생주의 주주는 이러한 의무가 발생한 연도에 자본손실로 인정한다.

세 번째로, 예외적으로 청산으로 지급받은 자산의 평가액이 불확실하고 미래 사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불확정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open transaction doctrine). 이 경우 주주가 실현한 손익은 해당 자산이 매각되거나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가능할 때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의 공정가격은 영(0)으로 환산된다. 또한 분할 상환되는 채권을 지급받은 주주는 일반적으로 채권의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손익을 산정한다. 다만 청산계획이 발표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자산을 매각 등 처분하여 회사가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만약 청산이 12개월 이내에 종료되면 주주는 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청산비용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변호사비, 청산수립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산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는 판매 수익금에서 상쇄되므로 자산의 손익이 영향을 받는다. 감가상각되지 않은 자본비용도 가치가 없으면 공제되지만 사전에 지급한 임대료나 보험료 등은 이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주주에게 할당된다⁶⁶⁹⁾. 만약 청산하는 연도에 소득이 없으면 이러한 경비 공제로 순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소급되어 과거 납부한 법인세 환급에 사용될 수 있다. 혹은 청산하는 연도에 S 법인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이러한 손실은 주주로 양도되어 개인소득세 차원에서 공제될 수 있다. 나아가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청산으로 배당할 때 발생하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이들 비용이나 순영업손실로 상쇄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빌린 무담보 채권을 변상하면 주주는 이에 대한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주의 장부가액과 다른 금액을 지급하면 그 차액

669) Reg. Sec. 1.248-1(b)(3).

을 손익으로 인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주식회사가 현금으로 변상하면 이에 대한 손익을 인정하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지급하면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가격이 하락한 자산의 경우 손실이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빌린 부채를 변상하고 그 금액이 모회사 채권의 장부가액과 다르면 모회사는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Sec. 1001(c)). 그러나 자산이 동일한 계열회사 그룹에 존재하므로 부채를 변상하는 자회사는 이에 따른 손익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자회사의 완전한 청산에만 적용되며 나아가 만약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변상하면 소득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4) 신고

청산배당을 결정한 주식회사는 계획의 채택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서 Form 966을 제출해야 한다(Sec. 6043(a)). 또한 결정내용이 수정되면 30일 이내에 같은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한다. 이외 회사 자본의 일부 혹은 전부 청산으로 600달러 이상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회사도 신고해야 한다(Form 1099-DIV). 사업을 종료하고 해체되며 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비록 주법에서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도 연방과세 목적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된다.

한편 332조의 청산으로 자산을 지급받은 주식회사는 관련 자료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특히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청산을 공식적으로 계획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331조에 따라 주주가 배당소득이 아닌 주식 매각으로 대우를 받으려면 청산을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회사를 청산할 때 이를 공식화하면 1년이 아닌 3년간 청산을 지속할 수 있다.

8. 법인세 과세행정

가. 법인세 신고

내국세법 501조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된 법인(자선 및 교육 등 공공단체)을 제외

한 국내 C 법인 주식회사는 해당 과세연도에 과세소득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⁶⁷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Form 1120을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다. 만약 총수입, 소득 그리고 총자산이 모두 50만달러 이하면 간소화된 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Form 1120-A)⁶⁷¹⁾. S 법인(Form 1120-S), 농업협동조합(Form 990-C), 외국기업(Form 1120-F), 외국판매회사(Form 1120-FSC), 생명보험회사(Form 1120-L) 등 일부 주식회사는 다른 양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시 기업의 대차대조표(Schedule L) 그리고 장부상의 소득과 법인세 신고상의 소득을 조정한 표(Schedule M-1)⁶⁷²⁾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총수입과 총자산이 25만달러 이하인 주식회사는 이들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주식회사의 과세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3번째 달의 15일 이전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추정세액과 함께 Form 7004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6개월간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Sec. 6072(b)). 따라서 일반 역년을 과세연도로 사용하는 주식회사는 3월 15일까지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10일 전 통지하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⁶⁷³⁾. 한편 신고를 연기하더라도 추정세금은 정시에 납부해야 한다. 이외 청산된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청산 후 3개월 15일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정 신고는 Form 1120X를 이용한다.

법인 신고와 관련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필요한 만큼의 기한 동안 보관해야 한다. 소득, 경비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기록은 신고기일이나 실제 신고일 중 나중 날짜로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자산 관련 서류는 구입비용이나 대체비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 과세연도의 시작과 종료 시점 당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첨부한다(Schedule L). 또한 장부상의 소득(재무회계)과 과세소득(특별공제 이전)을 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신고해야 한다(Schedule

670) Sec. 6012(a)(2).

671) 이 밖에도 최저한세에서 면제된 기업이나 이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며 일반사업공제와 전년도 최저한세 세액공제 이외 환급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없고 외국회사를 소유하지 않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

672) Reconciliation of Income(Loss) per Books With Income per Return.

673) Reg. Sec. 1.6081-3.

M-1). 만약 회사 자산이 1천만달러⁶⁷⁴⁾를 초과하면 Schedule M-1 대신 Schedule M-3을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신고서를 통하여 법인세 신고의 정확성을 검사한다. 이외 지급하지 않은 이익 잉여금도 신고해야 한다(Schedule M-2)⁶⁷⁵⁾. 장부상의 소득은 통상 일반회계원칙(GAAP)에 따라 작성되고 과세소득은 내국세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장부소득에서 추가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방 소득세 ② 순자본손실 ③ 과세대상 소득이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소득: 사전에 납부한 임대료나 이자수입 ④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경비: 과세소득 10% 이상의 기여금, 허용되지 않는 장부상의 감가상각, 출장 및 접대비 50%(사치성 접대비는 전액, Sec. 274), 회사가 수혜자인 보험료, 면세 채권 구입에 사용된 대출금 이자, 보증 서비스 추정비용, 정당 기부금, 25달러 이상의 사업선물, 400달러 이상 피용인 포상금, 교육용 출장 경비.

이와 반대로 장부상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금년 과세소득이 아닌 소득: 사전 납부된 임대료나 이자 수입 중 이미 신고된 금액, 보험금 수입, 면세 이자 ② 세금 신고에서 공제된 비용과 손실이지만 장부상의 소득을 줄이지 않는 항목: 장부상 감가상각을 초과하는 감가상각, 비용환수 공제, 경비 처리된 자본비용 (Sec. 179), 이월받은 기부금 중 금년에 공제된 금액, 이월받은 자본손실 중 공제된 금액 등.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Schedule M-1은 법인세 신고서(Form 1120)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동 자료를 통하여 주식회사의 장부상의 금액과 과세 금액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엔론 사태 등으로 1964년에 처음 도입된 M-1 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한 국세청은 2004년 Schedule M-3를 이용하여 좀 더 투명한 소득신고를 추구하고 있다. M-3 신고서는 M-1와 같이 장부상의 소득과 과세소득의 조

674) 연결납세신고의 경우 기준소득은 계열회사 소득을 합한 금액이 10,000,000달러를 초과하면 Schedule M-3를 작성해야 한다.

675) Schedule M-2(Analysis of 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s per Books)는 과세연도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이익잉여금(unappropriated retained earning)의 변화를 보여준다. 특히 시작 시점에 순소득과 법인세 환급 등 기타 수입이 추가되고 배당과 이익잉여금 분배는 제외된다. 이를 통하여 국세청은 주식회사와 주주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한다.

정을 위한 것이지만 ¼쪽에 불과한 M-1에 비하여 3쪽에 걸쳐서 재무제표 등 회사의 다양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추정세액의 납부

한 과세연도에 500달러 이상의 법인세 납부를 예상하는 주식회사는 추정세액의 25%를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고 연말에 법인세 신고시 정산해야 한다(Sec. 6655). 추정세액은 법인소득세와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대체소득세를 합친 금액으로 Schedule 1120-W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일반 역년을 과세연도로 하는 주식회사는 연방 은행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에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추정세액을 납부한다⁶⁷⁶⁾. 다른 과세연도를 사용하는 주식회사는 과세연도의 네 번째 달 15일부터 네 번에 걸쳐서 분할 납부한다.

대기업⁶⁷⁷⁾을 제외한 주식회사가 납부해야 할 추정세액은 당해연도 납세액의 100%와 이전 연도 납세 신고액의 100% 중 적은 금액이다⁶⁷⁸⁾. 대기업의 추정세액은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에 있는 세금의 100%이며 첫 분기를 제외하면 이전 연도의 납세액을 기준으로 추정세액을 산정할 수 없고 금년도 과세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예납해야 한다⁶⁷⁹⁾. 첫 분기 추정세액은 이전 연도를 기초로 납부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분기에 그 차액이 조정되어야 한다.

추정세액을 기일까지 예납하지 않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은 내국세법 6621조에 따라 과소납부 금리(underpayment rate)⁶⁸⁰⁾와 예납하지 않은 추정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기간은 추정세액 납부기일

676) Form 8109를 작성, 추정세액을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탁하며 2002년 당시 예탁금이 20만달러 이상인 업체 등은 법인세와 원천징수 세금을 연방전자납부시스템(EFTPS)을 이용해야 한다.

677) large corporation: 당해 과세연도 바로 이전 3년간 어느 한 해라도 조정된 과세소득(순영업손실이나 이월된 양도손실이 없는 소득)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대기업으로 간주된다.

678) 단, 이전 연도에 납세의무액이 없었으면 이를 기준으로 추정세액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679) 추정세액의 산정은 annualized income method이나 adjusted seasonal income method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680) 일반적으로 재무성 장관이 정하는 단기 연방금리에 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이지만 대기업의 경우 5%포인트를 가산한다. 이렇게 높은 금리는 30일 혹은 90일 체납 통지 이후 30일

로부터 추정세액이 납부된 날과 법인세 신고기일 중 먼저 도달하는 날까지다. 주식회사는 Form 2220을 작성하여 추정세액 과소납부를 신고하고 가산금을 납부한다.

법인세 신고를 할 당시 잔여 납세의무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를 연기하였다고 법인세 납부를 연기할 수 없다. 만약 신고기일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합리적 사유를 증명할 수 없으면 가산금 이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 연기 신청서(Form 7004)에 명기된 납세액이나 원래 기일까지 납부한 법인세 금액이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에 신고된 금액의 90%를 초과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⁶⁸¹⁾.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정세액을 늦게 납부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그리고 의료보험세(Medicare tax) 등 기업이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지정 기관에 예납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기금 회수를 위한 벌금(trust fund recovery penalty)이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100%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기피하였을 때 적용된다.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최대 25%를 한도로 잔여 세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월 부과된다. 만약 세금을 늦게 납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신고가 늦어져서 부과되는 벌금은 체납 과징금만큼 감소한다. 60일 이상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과징금은 납부세액과 100달러 중 적은 금액이 된다. 그러한 합리적 이유로 신고를 늦게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주식회사는 최대 25%를 한도로 잔여 세액의 0.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매월 적용된다(Sec. 6662). 체납세액에 대한 벌금도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다. 면세단체와 자료 신고

자선, 교육, 종교, 연구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연방소득세에서 면제된다(Sec. 501(c)(3)). 면세를 받으려면 해당 단체는 주식회사, 신탁기금 또는 재단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Form 1023을 작성, 면세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면세단체에 기부금을

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금리는 매 3개월마다 변동한다.
681) Reg. Sec. 301.6651-1(c)(4)

증여하는 납세자는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지 단체, 노동, 농업, 사업단체, 사회 및 오락단체 등도 면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Sec. 501(a)에 의거하여 연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단체도 매년 납세 관련 자료 신고(Form 990)를 하여야 한다(information return). 다만 종교단체, 종교단체의 초·중등 교육기관, 폐병기금(Sec. 501(c)(21), 주식 보너스, 연금 및 이윤공유기금(Sec. 401, 501(c)(1)), 외국기관(Sec. 501(a)), 민간기관(Sec. 501(c)(3), 509) 등이다. 정당을 제외한 정치단체도 총수입이 25,000달러를 넘으면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기한은 이들 단체의 회계연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달 15일이다. Form 990의 복사본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고도 대체할 수 있다.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면 매일 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대 벌금은 총수입의 5%와 10,000달러 중에서 적은 금액이며 총수입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단체는 최대 50,000달러를 한도로 매일 100달러가 부과된다.

해당 단체가 비록 면세단체일지라도 자선, 교육 등의 면세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1,000달러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unrelated business income, Form 990-T).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면 분기별로 납부하고 신고일에 확인 신고해야 한다.

9. 기타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혹은 반대로 사업 자산이나 자회사 주식을 매각(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인수 혹은 매각은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과세대상 거래이면 실현된 손익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내국세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는 거래 시점에 전체 혹은 일부 이익이 비과세되고 자산을 나중에 매각 혹은 처분할 때 손익을 인정한다⁶⁸²⁾. 원칙적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기업이 자사 주식을 매입대금으로 제공하면 회사 재편(reorganization)으로 간주되어 이러한 거래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식이나 채권 이외 현금 등 다른 자산을

682) 지급수단에 대한 원칙(wherewithal to pay concept).

지급받으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과세대상 기업인수(Taxable Acquisition)

우선 주식회사가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면 해당 기업으로부터 직접 자산을 매입하거나 주식 매입을 통하여 지배적 지분(50%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 매입을 통하여 회사를 취득하면 별도의 자회사로 유지하거나 이 회사를 청산하고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 혹은 회사를 인수한 기업은 취득한 회사 주식과 부채를 매입하는 데 지급한 가격으로 자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을 대체할 수 있다(Sec. 338, deemed sales election).

1) 자산 매입

(a) 과세대상 인수

자산을 매각한 기업은 매각으로 인한 손익을 인정해야 하는데 내국세법 1245조나 1250조상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상각공제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자산을 매입한 주식회사는 매입자산의 장부가액을 구입비용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Sec. 1012). 이 때 자금을 차입하여 자산을 매입하였다면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회사 인수에서는 차입금을 이용한 회사 매수가 제한 혹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인 자산 구입에서는 매매계약에 명기된 특정 자산과 부채만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주식을 통한 인수나 과세되는 자산 인수에서는 대상 회사의 자산을 전부 혹은 거의 모두 매입해야 한다. 한 예로 불확정 채무 등은 자산을 매각한 측의 책임이 된다.

인수된 기업은 자산 매각에 따라 손익을 인정하고 청산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청산되면 남은 주식은 주주들에게 제공되며 회사는 이를 매각한 것처럼 손익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 또한 청산배당받은 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손실)을 신고한다. 한편 회사가 청산을 먼저 하고 자산을 배당하면 주주가 이를 매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납부세액은 동일하다.

(b) 과세/비과세 요건의 비교

자산을 취득하여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과세대상 여부는 자산 매입에 사용된 지급수단에 따라 다르다. 만약 인수기업이 회사 자산과 부채를 모두 매입하고 취득 직후 인수된 회사를 청산한다면 과세 여부가 간단하다. 이 경우 인수기업이 현금이나 여타 자산을 지급하였다면 인수된 기업은 자산 매각에 따라 손익을 인정하고 주주는 회사 청산에 따라 과세된다. 그러나 인수한 기업이 자사 주식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회사 재편(reorganization)으로 간주되어 인수된 기업과 주주가 소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인수대금이 자사 주식 이외 현금 등을 포함해도 회사 재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과세될 수 있다.

우선 인수되어 청산되는 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 매각에 따른 모든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Sec. 1001(c)). 예외적으로 인수하는 기업의 주식을 받는 대신 회사자산을 매각하는 주식회사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회사를 인수한 기업의 주식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도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예외자산(boot property)⁶⁸³⁾을 제공받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거나 또는 공정가격이 장부가액보다 높은 자산을 모기업에게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 손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업 인수가 과세대상으로 인수된 기업이 청산되면 해당 기업의 주주는 주식양도에 따른 손익을 신고한다. 이때 주주에게 제공된 자산이 있으면 장부가액은 공정가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비과세되는 거래인 경우 주주는 만약 예외자산(boot property)을 배분받는 한도 이내에서만 양도차익을 신고하며 예외적인 경우 배당소득을 인정해야 할 수 있다. 회사를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은 그 대신 양도한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대체되어 평가한다.

한편 회사를 인수한 주식회사는 과세 여부와 상관 없이 자산 교환을 위하여 주식을

683) 면세되는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받아야 하는 현금과 부채 등의 자산을 말한다. 한 예로 분할 및 합병에서 서로 교환한 채권의 액면가액이 같으면 비과세되지만 다르면 차액은 과세된다.

발행하고 교환할 때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자산 취득에서는 자산 매입비용이 장부가액이 되며 자산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 그러나 기업 재편으로 간주되어 면세되는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인수된 기업의 자산 장부가액이 인수한 기업으로 이전되고 자산의 보유기간도 양도된다⁶⁸⁴⁾. 다만 만약 인수대상인 기업이 주주에게 예외자산을 배당하지 않아 소득을 인정하면 인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만큼 상향 조정된다. 이외 순영업손실 등 자산의 과세 성격도 인수한 기업에게 이월된다. 반면 과세대상 인수인 경우 매입된 자산의 과세 성격은 기업 청산으로 소멸된다.

2) 주식 매입

(a) 과세대상 인수

전술한 대로 자산 매입을 통한 회사 인수는 대상 회사와 주주 둘 다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 매입을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면 인수된 회사 주주만 이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금이 한번만 부과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매입대금이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많아도 인수된 회사의 자산 장부가액은 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입자 입장에서 볼 때 내국세법 338조에 따른 의제매각조항을 선택하지 않으면 주식 매입에서는 자산 장부가액 상향 조정을 통한 과세상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주식 매입을 통하여 인수된 회사를 그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다를 수 있다. 우선 회사를 청산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 즉, 인수대상 회사 주주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주식의 자본자산일 경우 주식 매매에 따른 자본손익을 신고한다. 만약 일부 대금이 나중에 지급되면 분할 회계방식(installment method)에 따라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Sec. 453(a)). 또한 대금 중 일부가 조건부 매각인 경우 이 부분은 일반소득으로 신고한다(Sec. 197).

한편 주식을 구입한 모기업의 주식 장부가액(stock basis)은 구입비용이며 인수된

684) 주식 교환을 통한 비과세 거래에서 인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취득가격이 아닌 인수된 기업의 장부가액이면 이를 인수한 기업은 불리하지만 상당한 영업손실 등을 양도받으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의 자산 장부가액은 주식 매각으로 바뀌지 않는다. 감가상각을 환수하게 되면 이는 매입자인 모기업이 실행하는데 다만 손실이나 세액공제 이월에 있어서 모기업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주식 80% 이상을 매입한 기업이 계열그룹의 일원으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면 인수대상 기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회사(자회사) 주식 80%를 매입하여 자회사를 청산하고 회사 자산을 인수한 회사(모회사)에 편입할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⁶⁸⁵⁾. 인수된 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은 인수한 회사로 양도된다. 따라서 자회사 자산 장부가액보다 많은 비용으로 주식을 구입하였으면 자회사 청산으로 주식 장부가액은 사라지고 이로 인한 손실은 공제되지 않는다. 반대로 자산 장부가액이 매입대금보다 많으면 이로 인하여 과세상 혜택이 있다.

한편 다른 회사를 주식 매입을 통하여 인수한 회사는 매입한 주식에 대하여 의제자산매각(deemed sales election)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판매한 회사(old target)는 새로운 회사(new target)에게 의제매각가격(ADSP)⁶⁸⁶⁾에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인수된 회사는 이에 따른 손익을 최종 신고에서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338조를 신청하면 인수된 회사의 납세의무액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는 대신 자산을 인수한 두 번째 자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은 주식매입대금(부채와 가상의 매각에 따른 연방소득세 포함)으로 상향 조정되는 장점이 있다⁶⁸⁷⁾. 338조를 적용받으려면 모기업은 12개월의 취득기간 이내에 처음 인수되는 자회사의 투표권 주식과 전체 주식가액 8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Sec. 332)⁶⁸⁸⁾. 모기업은 80%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개월 15일 이내에 338조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동 조항이 발동될 경우 과세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수된 회사(old target)는 의제가격에 모든 자산을 새로운 자회사(new target)에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685) Sec. 332와 Sec. 337: 다만 소액 주주에 대한 청산은 소액 주주와 회사 입장에서 과세될 수 있다.

686) Adjusted Deemed Sales Price: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인수된 기업의 부채, 연방소득세율과 매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혼합한 공식으로 결정된다.

687)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계열그룹에 인수된 자회사는 한 번의 거래를 한 것처럼 손익을 인정하고 주식을 매각하는 모회사는 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한 번만 과세하는 조항이 도입된 바 있다(Sec. 338(h)(10)).

688) 그러나 주식의 장부가액 전부 혹은 일부가 주식을 양도한 사람의 주식 장부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식 취득은 80%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회사 설립, 증여, 상속, 특수관계인 사이의 교환, 비과세되는 조직 개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 따라 인수된 회사는 양도손익을 인정한다. 새로운 자회사는 주식을 인수한 모기업의 주식 장부가액(주식매입대금과 인수한 부채금액 등)을 자기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자산 장부가액은 잔존가치방식(residual method)에 따라 7개 부류의 개별 자산에 차례로 분배된다. 이 방식은 장부가액을 먼저 현금과 예금 등 현금과 유사자산에 배분하고 이후 유·무형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권 등에 배분된다. 이 때 현금 등 유사자산에 대해서는 달러 금액만큼 장부가액이 배정되고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격만큼 배정된다. 이들 자산에 배정된 이후 남은 장부가액은 마지막으로 영업권 등에 배정된다⁶⁸⁹⁾.

338조 의제매각 이후 새로운 자회사는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회사와 별도의 납세신고를 한다. 과세 목적상 자회사는 새로운 기업으로 과세연도와 회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Sec. 338(b)). 새로운 기업의 자산 보유기간은 취득기일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인수된 기업의 보유기간은 종료된다. 즉, 과세 목적상 새로운 기업은 인수된 기업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자산의 과세 성격이 영구히 사라지고 이월되지 않는다.

전술한 대로 338조는 일반적으로 주식 취득가격이 자산 장부가액보다 훨씬 많은 거래에 적용된다. 즉, 338조가 적용되면 인수된 회사의 장부가액이 주식 매입가격만큼 상향 조정되는 대신에 법인세를 먼저 납부해야 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수되는 주식회사의 순영업손실이 상당하여 의제 매각에 따른 이익을 많은 부분 상쇄할 수 있어야 338조가 유리하다.

(b) 과세/비과세 요건의 비교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고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통제할 경우 만약 매입대금으로 현금 혹은/그리고 다른 자산을 인수하는 기업의 주식과 함께 사용하였다면 이는 자산 매입과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인수하는 기업이나 모기업의 주식(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비과세되는 회사 개편(reorganization)으로 간주될 수 있다.

689) Reg. Sec. 1.338-6(a).

이 경우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모기업이 338조를 선택하지 않으면 인수되는 자회사 자산의 장부가액은 변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환수 등 자산의 과세 성격도 그대로 유지되어 인수기업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손실과 세액공제 이월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주식을 80% 이상 매입하고 인수기업(모기업)이 계열그룹의 일부로 연결납세 신고를 하면 자회사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과세대상인 주식 매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교환을 통하여 기업을 인수한 회사, 즉 모기업도 손실을 인정하지 않는다⁶⁹⁰⁾. 과세대상인 거래에서는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이 매입비용으로 평가하며 비과세 거래에서는 모기업이 자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해당 기업의 주주 장부가액을 그대로 사용한다.

한편 자회사의 주주는 자본자산으로 주식을 처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인 인수거래로 발생한 양도손익을 신고해야 하며 인수기업과 일정 기간 경쟁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등 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은 일반소득으로 신고한다. 이 때 매각대금이 분할 지급되고 주식이 일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이익 인정을 연기할 수 있다. 비과세되는 인수거래가 되려면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대신 받기 때문에 자회사 주주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제공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모기업에게 양도한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된다.

나. 비과세대상 기업재편(Non-taxable Reorganization)

1) 기본원칙

(a) 비과세원칙

대법원은 외양보다 내용을 중요시하는 원칙에 따라 단순히 법적 요건만을 따지지 않고 기업 합병이나 분할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대법원이 기업재편에 대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주

690) 인수되는 기업 주식을 받고 현금 이외 예외자산(boot)을 제공해도 모기업은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문하고 있다. 첫째, 합병/분할을 전후하여 변경된 형태로 회사 사업이 지속되고 기업 재편 이전에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주의 지분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가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이나 단기 채권을 제공받는 거래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⁶⁹¹⁾.

내국세법에는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가 인수대금으로 받은 금액의 50% 이상을 회사를 인수한 기업 주식으로 받으면 국세청은 면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전 판정을 하고 있다(continuity of proprietary interest). 또한 법원에서는 50% 이하를 주식으로 받는 기업 재편도 비과세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주주가 주식을 청산하지 않고 투자 형태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도입된 규정이다. 기업합병(삼각합병)의 경우 이와 같은 인수대금의 지급수단만을 규제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비과세 기업재편에서는 좀 더 까다로운 제약규정이 적용된다.

둘째, 자산을 취득한 주식회사는 인수대상 기업의 기존 사업을 지속하거나 인수 자산의 상당 부분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continuity of business interest)⁶⁹²⁾. 따라서 기업을 인수한 주식회사가 기존 사업을 지속할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자산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인수대상 기업에서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된다. 또한 기업을 인수한 회사는 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 자회사나 파트너십 등에 넘겨 유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합병 등의 거래가 기업 재편으로 인정받으려면 선의적인 사업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bona fide business purpose)⁶⁹³⁾. 기업 재편의 본래 목적이나 성격을 숨기는 재편은 선의성이 결여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독립적인 거래가 단순히 세금 회피를 위한 거래이면 이를 하나의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step transaction doctrine).

691) Reg. Sec. 1.368-1(b).

692) Reg. Sec. 1.368-1(d).

693) Reg. Sec. 1.368-1(c).

(b) 기업 재편의 분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 인수, 분할 혹은 재조직에 해당하는 사업 재편은 내국세법 368(a)(1)항에 일곱 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368조에 제시된 조항에 따라 기업 합병(merger)은 A형 재편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크게 보면 기업 재편은 상대방 기업⁶⁹⁴⁾의 자산이나 주식을 매입하는 인수적 성격의 거래로서 A, B, C 유형의 기업 재편이 있고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이 기업은 자산을 양도한 기업이나 그 주주가 통제하는 분할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 재편의 일환으로 자산을 인수한 기업(transferee)이 대신 제공하는 자사주 주식이나 채권은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주주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이후 자산을 양도한 기업(transferor) 즉, 인수대상 기업은 영업을 계속하거나 청산되기도 한다. 만약 인수대상 기업이 계속 존재하면 해당 기업의 자산은 두 개 회사로 분할된다. D와 G 유형의 재편은 인수적 거래이거나 분할적 거래일 수 있다. 이외 인수 혹은 분할도 아니어서 기업간 자산교환을 유발하지 않는 재편은 E와 F유형이 있는데 E유형은 재출자 등 자본구조의 변화와 연루된 재편이며 F유형은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성격이나 형태 등을 변경하되 주주 지분에는 영향이 없는 기업 재편을 말한다. 기업 재편이 이와 같은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혹은 여러 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사업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과세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c) 기업 재편에 따른 효과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기업 재편의 일원인 상대방 기업의 주식만을 제공받는 거래에서는 인수대상 기업(transferor)이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전이나 현금 이외 예외 자산(boot property)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주주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손익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Sec. 361(a)). 그러나 자산을 양도한 기업이 금전이나 비현

694) 자산을 양도하는 주식회사는 양도기업(transferor) 혹은 대상기업(target)이라고 한다.

금성 예외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지 않으면 실현된 이익과 이들 자산의 공정가격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현금을 제공받으면 이는 비과세되는 기업 재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나 분할이 발생할 때 양도자산은 청산되거나 보유 자산을 모두 배당하기 때문에 예외자산을 사내에 유보하지 않는다.

한편 내국세법 1245조와 1250조에 따른 감가상각 환수규정은 기업 재편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자산을 이전받은 기업이 나중에 과세대상 거래를 통하여 처분할 때 이전에 공제받은 감가상각이 환수될 수 있다⁶⁹⁵⁾. 한편 기업 재편에서는 인수대상 기업은 상대방 기업에게 부채나 자산담보 부채를 양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D유형 거래가 분할적 성격이고 부채금액이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양도기업은 이익을 인정한다(Sec. 357(c)).

전술한 대로 인수대상 기업이 기업 재편계획에 따라 주주나 채권자에게 자사주 주식이나 주식 매입권 혹은 채권을 제공하거나 기업재편의 일원인 다른 기업 주식, 주식매입권 혹은 채권을 지급하면 과세되지 않는다(Sec. 361(c)). 그러나 현금을 제외한 예외 자산이나 상대방 기업에게 양도하지 않은 자산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면 공정가격에서 이들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인수대상 기업은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산을 취득한 기업으로부터 예외자산을 받고 이를 주주에게 지급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인수대상 기업이 인정하는 이익은 크지 않다.

자산을 양도받은 주식회사(transferee)도 주식을 제공하는 대신 받은 현금이나 기타 자산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Sec. 1032). 그러나 주식회사가 인수대상 기업이나 그 주주에게 현금이 아닌 예외자산을 지급하면 신고해야 한다(Sec. 1001). 기업 재편으로 이전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자산 공정가액은 자산을 취득한 기업에게 그대로 이월되는데 만약 인수대상 기업이 자산 교환 당시 이익을 인정하면 자산 공정가액은 그만큼 조정되어야 한다(Sec. 362(b)).

한편 기업 재편의 일환으로 주주나 채권 소유자가 상대방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과 자신이 보유한 주식 혹은 채권을 교환하면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Sec. 354(a)). 또한 주식과 채권 이외 자산(disqualifying property)의 경우에도 실제 실현

695) Sec. 1245(b)(3), 1250(d)(3).

된 양도이익 혹은 제공받은 현금과 자산의 공정가격 중에서 적은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Sec. 356(a)). 즉, 주주는 지분의 계속성을 의미하지 않는 여타 자산의 수입에 대해서만 이익을 인정한다. 한 예로 갑이 을 주식회사 주식(장부가액 10,000달러)을 포기하는 대신 병으로부터 공정가격이 20,000달러인 주식을 교환받았다면 갑은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갑이 공정가격이 15,000달러인 주식과 함께 현금 5,000달러를 제공받으면 실현된 이익 10,000달러 중 5,000달러를 인정하면 된다.

이 밖에도 주식을 채권과 교환해도 제한적으로 면세받을 수 있다. 즉, 포기한 채권의 액면금액이 제공받은 채권의 액면금액보다 많으면 비과세된다. 하지만 반대로 포기한 채권보다 제공받은 채권의 액면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은 예외자산(boot)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Sec. 354(a)(2)). 또한 양도한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채권 전액이 예외자산이며 발행자가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도 예외자산에 해당한다.

내국세법 356(a)(2)항에 따르면 예외자산의 취득이 배당소득의 지급과 같은 효과가 있으면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신고해야 한다. 배당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주주의 인정되는 이익과 양도 기업의 당해연도 및 유보 수익(E&P)의 주주 지분 중에서 적은 금액이며 이외 금액은 자본(양도)소득으로 신고된다(Sec. 302(b)). 이러한 성격의 교환이 배당소득으로 지급으로 간주될지 여부는 302(b)조상의 주식상환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즉, 기업 재편은 일반적으로 인수대상 기업 주식의 상환을 유발하지 않지만 356조 목적상 자산을 인수한 기업 주식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제공받은 예외자산이 302(b)조의 주식 매각에 해당되는 상환이면 주주는 이를 자본소득으로 처리한다.

기업 재편에서 채권을 제공받아도 302(b)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때 예외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주나 채권자가 지급받은 채권 액면가액 초과분의 공정가격이다. 만약 자산을 제공받은 기업의 규모가 인수대상 기업의 규모보다 크면 302(b)조 1항이나 2항을 적용받아 예외자산의 지급이 자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의 경우 인수대상 기업 주주는 배당소득 혹은 예외자산이 기업 수익보다 많으면 배당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주주는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손실 공제 때문에 자본소득으로 취급되기를 원하지만 주식회사가 주주인 경우 배당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를 원할 수 있다.

한편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나 채무자가 주식과 채권을 제공받으면 이에 대한 과세는 이연되므로 이들 자산의 장부가액은 내국세법 358조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장부가액은 교환된 주식(채권) 장부가액에서 교환 당시 인정한 이익을 합하고 그 과정에서 받은 금전과 현금 이외 자산의 공정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새로운 장부가액이 된다. 즉, 주주 등이 예외자산을 제공받지 못하면 포기한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제공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이 된다. 예외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이 된다.

양도한 주식은 한 종류인 데 비하여 제공받은 주식은 두 종류 이상일 경우 장부가액은 위에서 논의된 대로 결정되고 이를 개별 주식의 공정가격에 따라 배분하여 새로운 주식들의 장부가액을 결정한다.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공받은 주식(채권)의 보유기간은 포기한 주식(채권)의 보유기간을 포함하며 예외자산은 교환시점부터 보유기간이 시작된다(Sec. 1223(1)).

(d) 과세 성격의 변동

원칙적으로 기업 재편에 있어서 기업이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과세 속성은 이를 인수하는 기업에게 그대로 이월된다(Sec. 381(a)). 그러나 순영업손실 등 특정 항목의 경우 인수기업이 이월받은 공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먼저 기업 인수적 재편에서 자산을 취득한 기업에게 양도되는 과세 항목에는 순영업손실, 자본손실, 기업 수익(E&P), 일반 사업공제 그리고 재고산정방식이 있다(Sec. 381(c)). 한 예로 순영업손실을 양도받은 기업은 취득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사 이익에 대하여 손실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잔여 손실은 그 이듬해로 이월된다. 또한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영업손실을 그 이전에 발생한 인수대상 기업의 이익과 소급 공제할 수 없다.

한편 내국세법에서는 순영업손실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loss corporation)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Sec. 382, 269). 또한 반대로 손실 기업이 순영업손실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윤이 발생한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해서도 안된다. 이밖에도 같은 목적으로 자본 손실이나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기업 인수도 제한을 받는다(Sec. 383). 또한 기업 인수 이전 손실을 내

재적 이윤(built-in gain)과 상쇄하는 행위도 제한을 받는다(Sec. 384).

382조에 따라 운영업손실 공제가 제한이 되려면 주식 소유권의 실질적 변동이 발생해야 한다. 이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소유권에 변화가 있거나 혹은 기업 재편이 발생하고 또한 새로 손실공제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이전 3년 동안 원래 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소유한 주식에 비하여 50% 포인트 이상 새로 손실공제를 할 수 있는 기업 주식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Sec. 382(g)).

이와 같은 소유권 변동이 있으면 변동 시점에 공제받을 수 있는 손실 규모는 원래 손실이 발생한 인수대상 기업 주식가액(소유권 변동 직전에 평가된 금액)에 장기 비과세 연방채권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Sec. 382(b)(1)). 다만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인수대상 기업의 손실이 382조에 따라 제한된 손실금액보다 많으면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20년 이월한도를 조건으로 다음 해로 이월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식 소유권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수된 기업의 사업을 종료하면 인수된 기업의 영업손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Sec. 382(c)).

한편 382조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면 운영업손실에 적용되는 동일한 규정이 일반사업공제, 최저한세 세액공제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Sec. 383). 또한 이월받은 자본손실의 사용도 제한될 수 있다. 이외 취득 시점으로부터 5년간 인수대상 기업이나 인수한 기업의 손실을 다른 기업의 이윤과 상쇄할 수 없다(Sec. 384). 마지막으로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원래 사용 가능하지 않은 공제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기업의 지배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Sec. 269). 국세청은 269조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투표권이 있는 주식이나 전체 주식가액 50% 이상을 취득하면 지배권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기업인수적 재편

(a) A유형

A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재편은 합병(merger), 통합(consolidation),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혹은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인수방식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처음 두 가지 인수방식은 미국 주식회사법에 의한 합병이며 삼각합병 등 나머지 두 유형은 내국세법에서 허용된 합병이다.

우선 일반 합병(merger)은 합병되는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 채권 그리고 예외자산(boot)과 교환하고 양도기업은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과 채권 등은 합병되는 회사 주주나 채권자에게 주식교환 방식으로 양도된다. 따라서 합병된 회사 주주는 합병한 회사의 주주가 된다. 또는 합병하는 회사가 합병되는 회사 주주와 채권 소유자로부터 직접 주식 등을 매입한 후 양도기업을 청산하고 기업 자산과 부채를 인수할 수 있다. 이외 두 개 이상의 기업자산 등을 양도받고 이들 기업을 청산하는 대신 합병을 한 기업 주식 등을 기존 주주와 채권 보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consolidation)⁶⁹⁶⁾.

A유형의 기업인수는 합병을 위해 지급하는 대금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탄력성을 부여한다(Sec. 368(a)(1)(A)). 즉, 지분의 연속성 원칙(continuity of interest)에 따라 지급하는 인수대금(보수)의 50% 이상이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이면 국세청이 비과세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약속한다. 제공되는 주식의 성격은 투표권 혹은 보통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에 허용된다. 사전 허가가 필요 없으면 인수대금의 50% 이하를 인수하는 기업 주식으로 지급해도 된다. 다만 합병과 관련된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외국정부 관련 회사법을 지키지 않거나 양도기업이 폐업하지 않으면 A유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합병되는 기업이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주주도 이 회사 주식을 계속 유지하면 A유형으로 간주되지 않고 과세될 수 있다.

696) 합병이나 통합에서는 다른 기업을 인수한 모기업이 회사 자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회사에게 양도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장부가액도 그대로 이월된다(Sec. 351).

합병과 관련된 법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병과 관련된 회사 주주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이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은 독립적으로 평가되어 현금으로 매입해야 한다.

A유형의 기업 재편은 다른 유형과 달리 인수대금을 반드시 투표권이 있는 주식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즉, 인수대금의 50% 이상을 현금, 채권, 기타 자산이나 인수대상 기업의 부채를 대신 책임지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C유형과 같이 반드시 인수대상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합병계획의 일환으로 인수대상 기업이 자산을 처분해도 된다. 그러나 관련 회사법을 준수하고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며 불확정 채무(contingent liability)를 포함하여 인수대상 회사의 모든 채무를 대신 책임져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외 인수대상 기업의 권리, 계약이나 여타 특권이 양도되지 않는 성격이면 역삼각합병 등 다른 방식의 기업 재편이 필요하다.

한편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이란 A유형의 일반 합병방식과 동일한데 다만 모기업이 아닌 지배그룹의 자회사가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합병을 말한다(Sec. 368(a)(2)(D)). 삼각합병은 일반합병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교환되는 주식은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이어야 하며 자회사의 현금과 채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채도 자회사가 대신 책임질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려면 자회사는 합병되는 회사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 국세청의 사전 허가를 위하여 인수대상 기업 총자산의 70% 이상 그리고 순자산의 90% 이상이 실질적인 모든 자산으로 정의된다. 삼각합병은 일반합병과 동일한 장단점이 있고 추가로 모회사 대신 자회사가 불확정 채무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점이 있다. 이외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는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 주식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더 용이하다.

이외 역삼각 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이란 계열그룹 자회사가 인수대상 기업에 합병이 되고 난 이후 그 기업을 모회사가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의 합병을 말한다. 따라서 계열그룹 자회사는 청산이 된다. 이는 인수대상 기업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소유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합병방식이다. 이처럼 역삼각 합병은 B유형과 마찬가지로 인수대상 기업이 존속하게 되는데 B유형과 달리 예외자산(boot property)

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b) 기타 인수 재편

B유형은 기업 인수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의 합병이다. B유형에서는 인수대상 기업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는 기업의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교환하고 이 기업의 자회사로 계속 남아 있고 청산되지 않는다(Sec. 368(a)(1)(B))⁶⁹⁷⁾. 따라서 자산을 인수하는 모기업은 인수대상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주식을 확보해야 한다.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과 과세 성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고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 직후 인수대상 기업이 모기업에 통합되면 C유형의 자산 대비 주식 교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B유형에서는 주식 대 주식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른 자산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⁶⁹⁸⁾. 다만 투표권이 있으면 보통주가 아닌 우선주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를 제공하면 B유형으로 간주되지 않아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가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액면가액이 동일하면 손익에 대한 인정 없이 인수대상 기업 주주가 보유한 채권을 인수하는 기업의 채권과 교환할 수 있다.

모기업이 충분한 지배권을 행사하려면 인수대상 회사 즉, 자회사의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전체 주식가액의 8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나머지 20% 주식은 주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 자회사가 기업 재편을 전후로 이들 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모기업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현금으로 구입할 수 없다. 만약 모기업이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하면 기업 재편은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 재편이 B유형으로 판정받으면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식 일부가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인수대상 기업이 주식을 상환하면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 한편 새로 받은 모기업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은 인수대상 기업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을 이월받는다. 자산을 인수한 모기업도 손익을

697) B유형의 기업 재편에서도 삼각합병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한 예로 계열그룹의 자회사가 모기업 주식을 지급하고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기업을 또 다른 자회사로 존치할 수 있다.

698)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인수하는 기업이 B유형의 기업 재편에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정하지 않으며 새로 보유하게 된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도 자회사 주주가 보유했던 당시와 같다.

B유형의 기업 재편은 주주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인수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합병을 반대하면 주주들로부터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자회사로 존속할 경우 회사 자산 등의 과세 성격이 그대로 보존되고 다만 내국세법 382조에 따라 순영업 손실의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 한편 일부 다른 유형의 기업 재편과 달리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인수대금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모회사의 지배권이 약화될 수 있다. 이외 과세대상 기업 인수와 달리 주식과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시장가격으로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

C유형의 기업 재편은 인수대상 회사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일정 한도의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합병을 말한다(Sec. 368(a)(1)(C)). 실질적인 모든 자산의 개념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세청 해석상 A유형과 유사하다. 인수되는 기업은 기업 재편의 일환으로 제공받은 주식, 채권과 여타 자산 이외에도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해야 한다. C유형에서는 합병되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해체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청산된다. 즉, 회사 이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명의를 존속하려고 주법에 따른 최소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C유형의 기업 재편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수대금은 합병하는 회사(혹은 모기업)의 투표권 주식이어야 한다. 이 때 인수대상 기업의 부채를 대신 책임지는 부분은 인수대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 80% 이상을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교환하면 C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Sec. 368(a)(2)(B)).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인수대상 회사 자산의 20% 이하를 현금, 채권, 혹은 투표권이 없는 주식이나 기타 자산으로 구입해도 된다. 그러나 만약 전체 자산의 20% 이상을 부채인수로 감당하면 현금 등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물론 합병하는 회사가 인수대상 기업의 모든 부채를 인수하지 않고 인수대상 기업이 양도하지 않은 자산이나 제공받은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

C유형의 경우 합병하는 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자산만 취득하지만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 인수하는 기업이 원하지 않는 자산

은 인수대상 기업이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합병 직전에 인수대상 기업이 자산을 처분하면 실질적 모든 자산을 인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하면 A유형에서는 이러한 제한 요건이 없어 편리하다. 그러나 C유형에서는 인수계약에 따른 부채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와 A유형과 달리 C유형에서는 기업 인수와 관련하여 주주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 다만 A유형과 마찬가지로 인수에 반대하는 주주 주식은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며 삼각합병 방식을 C유형에도 적용할 수 있다.

D유형은 기업을 합병 혹은 분할하는 기업 재편일 수 있다. 우선 기업 인수에 해당하는 D유형을 살펴보면 재편 계획에 따라 인수대상 기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상대방 기업에게 양도하고 대신 주식과 채권 등을 제공받는 합병으로 연후 인수대상 기업은 주주와 채권자에게 주식 등의 자산을 모두 배분하고 완전히 청산한다(Sec. 368(a)(1)(D)). D유형의 특성은 자산의 양도 직후 인수대상 기업의 주주가 자산을 취득한 기업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Sec. 368(a)(2)(H))⁶⁹⁹⁾. 한 예로 갑이라는 기업이 대기업의 자산을 인수한 이후 대기업의 주주가 갑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 상황이면 D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D유형에서는 자산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형태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을 양도한 회사 주주는 이를 인수한 기업에 대하여 자본 지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D유형으로 미리 판정받으려면 자산을 양도한 회사 주주는 최소한 주식가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산을 인수한 회사 주식으로 받아야 한다. D유형의 기업 재편에 따른 과세 효과는 C유형과 동일하다. 만약 기업 재편이 C유형과 D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D유형으로 간주된다. D유형은 파산 등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실질적인 모든 자산을 다른 기업에 인도하는 대신 받은 주식 등의 자산을 주주와 채무자에게 배분하는 데 이용된다.

내국세법 368(a)(1)(G)항에 따르면 기업 파산(Title 11)으로 법원이 허용하는 기업 재편일 경우 G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G유형에서는 부실기업이 법원의 파산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을 다른 기업

699) 주주가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 혹은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보유할 때 지배주주로 간주된다.

에게 양도하고 이를 대가로 받은 주식, 채권 혹은 기타 자산을 주주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이와 같은 자산 배분은 내국세법 354~356조에 부합되는 거래이어야 한다.

3) 기업 분할적 재편

기업 분할에서도 기업의 자산 일부를 피지배 주식회사(controlled corporation)에게 양도하는 대신 해당 주식회사의 주식, 채권 혹은 예외자산(boot)을 제공받는다. 이후 자산을 양도한 기업은 제공받은 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분할은 D유형에 해당하지만 일부 부실기업은 G유형을 적용받기도 한다. 분할적인 D유형의 기업 재편에서 지배권은 투표권 여부와 상관없이 8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때 성립한다. 이에 비하면 인수적인 D유형의 기업 재편에서는 5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 지배권이 확립된 것으로 간주된다⁷⁰⁰⁾.

D유형의 기업 분할로서 면세를 받으려면 내국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368(a)(1)(D)항에서는 D유형에 포함되는 자산 양도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355조는 교환받은 주식 등 자산의 배분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355조에 따라 분할되는 기업이 다른 피지배 기업에게 자산을 양도하지 않아도 교환받은 주식을 분할되는 기업 주주에게 배분할 때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기업 재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D유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산 이전과 355조상의 자산 양도가 기업 재편에 따른 동일한 거래이어야 한다.

D유형으로 기업을 분할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자산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첫 번째 방식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 일부를 피지배기업에게 양도하는 대신 주식, 현금, 채권 혹은 예외자산(boot)을 제공받는다. 이후 제공받은 피지배기업 주식을 기존 주주 전부 혹은 일부의 주식과 교환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주 사이의 분쟁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대신 일부 주식을 회수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split off).

두 번째로 주주 사이의 분쟁이 없어도 위험도가 높은 회사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기업을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자산 일부를 피지배기업에게 양도하는 대신

700) 이 밖에도 D유형의 기업 인수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자산이 양도되어야 하지만 기업 분할적 D유형에서는 그렇지 않다.

주식, 현금, 채권 혹은 예외자산(boot)을 제공받고 제공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지분별로 분배하지만 기존 주주는 보유한 주식을 포기하지 않는다(spin off). 마지막 방식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두 개의 피지배 기업에게 양도하는 대신 주식과 현금 등을 제공받는다. 이후 제공받은 주식을 주주가 보유한 기존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기업은 청산된다(split up).

이 과정에서 주식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방식이 335조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첫 번째 분할방식(split off)은 주주에 대한 주식상환으로 간주되고 두 번째 분할방식(spin off)은 배당소득으로, 세 번째 분할방식(split up)은 회사 청산에 따른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D유형의 기업 분할에서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제공받은 예외자산(boot property)을 배분하지 않고 사내에 보유하거나 부채를 피지배 기업에게 양도하고 전체 부채가액이 양도한 전체 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면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⁷⁰¹⁾. 피지배 기업 또한 주식 대신 제공받은 자산에 대하여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산의 보유기간과 공정가액은 자산을 양도한 기업으로부터 이월되며 다만 양도기업이 인정한 이익이 있으면 이를 장부가액에 추가한다.

한편 피지배 주식회사 주식과 채권을 주주에게 배분할 때에도 기업은 내국세법 361(c)(1)항에 따라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이 아닌 예외자산을 주주에게 배분하고 피지배기업의 부적격한 주식⁷⁰²⁾을 지급하면 이로 인한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이 때 손실은 인정할 수 없다. 주주들도 예외자산을 지급받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Sec. 366(a)). 제공받은 주식(채권)⁷⁰³⁾의 장부가액은 주식 배분 이전에 소유하였던 주식(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인정한 이익을 추가하고 그 대신 제공받은 현금과 예외자산의 공정가격을 제외한다. 주식 배분을 전후하여 한 종류 이상의 주식(채권)을 보유하면 공정가격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장부가액이 배정

701) Sec. 357(c)(1)(B), Sec. 361(a)

702) 주식 배분 직후 한 사람이 자산을 양도한 기업이나 피지배 기업의 부적격한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면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부적격한 주식이란 주식 배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 동안 매입된 두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703) Sec. 355(a): 기업 인수와 마찬가지로 장기 부채 즉, 채권의 경우 주주가 액면가액이 같은 채권을 반납하고 다른 채권을 받으면 비과세된다. 그러나 초과금액이 있으면 이는 예외자산(boot)으로 취급된다(Sec. 361(a)).

된다. 제공받은 주식 등의 보유기간은 주주가 포기한 주식 등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예외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격이며 보유기간도 배분시점부터 시작한다.

만약 예외자산⁷⁰⁴⁾을 지급받을 때 인정해야 하는 소득 혹은 이익의 금액과 성격은 주주가 주식과 채권을 반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주주가 주식을 반납하지 않은 기업분할방식(spin off)에서는 제공된 예외자산의 공정가격은 자산을 배분한 기업의 수익(E&P)에 대한 주주의 지분율만큼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 주주가 제공받은 채권도 주주가 다른 채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이외 분할방식에서는 주주가 주식 이외 예외자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교환으로 손실을 실현하면 주주는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반대로 주주가 이익을 실현하면 제공받은 예외자산의 공정가격 한도 내에서 이를 인정해야 한다. 특히 주식의 교환이 302조의 주식상환에 해당하면 자산을 배분하는 기업의 수익(E&P)에 대한 주주의 지분율만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양도)이익으로 취급된다(Sec. 356(a)(2)).

피지배기업의 주식을 주주에게 제공할 때 주주가 세금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국세법 355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배분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배분하는 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만을 지급하며 ② 배분의 주된 목적이 이들 기업의 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방도가 아니며⁷⁰⁵⁾ ③ 배분 이전에 최소 5년간 충실히 수행해 왔던 사업을 이들 기업 모두가 배분 이후에도 충실히 수행하고 ④ 배분 이전 보유한 피지배기업의 주식과 증권을 모두 배분하거나 지배권에 상당한 주식을 배분하며 ⑤ 주식 배분이 실질적인 사업상의 목적⁷⁰⁶⁾이 있고 ⑥ 배분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지분을 보유한 주주와 상당수 주주가 기업 분할 이후에도 최소한 한 기업에 지속적인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⁷⁰⁷⁾.

704) 355조에 따르면 예외자산은 현금성 자산, 단기부채, 피지배 주식회사의 주식과 채권이 아닌 자산, 이전 5년 이내에 과세대상 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피지배 주식회사 주식, 주주가 반납한 채권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피지배 주식회사의 채권 등을 말한다.

705) 이는 물론 사례별로 정황에 따라 다른데 주식 등의 배분 이후 기존 기업이나 피지배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면 주식 등의 배분이 수익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706) 주주 분쟁이나 반독점법에 따른 기업분할이 이에 해당한다(Reg. Sec. 1.355-2(b)(5)).

707) 주식 등의 배분이 지분율에 기준할 필요가 없다. 한 예로 주주 분쟁에 의한 기업분할에서는 주식 등을 배분하는 기업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피지배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Reg. Sec. 1.355-2(c)).

4) 재출자 등의 기업 재편

E유형은 기존 주식회사 구조를 변경하는 재출자(recapitalization)로서 선의의 사업 목적으로 채권을 주식과 교환함으로써 자본부채비율을 줄이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Sec. 368(a)(1)(E)). 혹은 친족회사에서 은퇴하는 지배주주 경영권 세습을 위하여 보통주를 우선주와 교환할 수 있다. E유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식과 주식, 주식과 채권, 채권 상호간의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자산이 변동하지 않는다.

기업 재편이 아니면 성격이 다른 주식의 교환은 원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Sec. 1036). 그러나 기업 재편에서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교환해도 주주가 이익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주가 예외자산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Sec. 354(a)). 또한 주식 교환에서 제공된 주식의 공정가격이 반환한 주식의 공정가격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상황에 따라 증여, 보수, 배당소득, 부채 상환 등으로 취급되어 과세될 수 있다. 채권과 주식 교환도 비과세되지만 이자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소득으로 취급된다. 부채 교환에서도 액면가액이 같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공받은 채권가액이 더 많으면 이 부분은 예외자산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그 주주가 손익을 인정하지 않고 기업의 명이나 형태 혹은 법인을 허가받은 주를 변경하기 위하여 F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변경하기 이전 주식회사의 자산과 채무는 새로운 주식회사의 주식과 채권으로 교환된다.

5) 기업 재편 신고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회사는 Form 8023⁷⁰⁸⁾을 작성하여 338조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자산 취득일이 속한 달로부터 9개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내용은 재무성 규정 1.338-1(d)에 명시되어 있다. 내국세법 361조의 자산 인수나 354조의 주식 인수에 따라 인수대상 기업이 손익 인정에서 면제받으려면 기업 재편제

708) Corporate Qualified Stock Purchase Election.

획의 일환으로 자산 등을 취득해야 한다. 즉, 기업 재편의 일원인 주식회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진행된 교환과 분배만이 비과세대상이다.

기업 재편을 서면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지만 재편계획이 없는 거래나 재편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교환 및 배분은 과세되므로 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 재편은 매우 복잡하므로 재편에 앞서 국세청에게 사전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 판정을 받으려면 국세청 내규(Rev. Proc. 77-37)에 부합되는 기업 재편이어야 한다. 내국세법을 비롯하여 각종 규정이나 판례에서 제기된 사례를 제외하면 국세청은 사전 판정을 하지 않는다.

다. 이중과세 방지제도

이중과세는 크게 경제적 개념의 이중과세와 법적 개념의 이중과세로 분류된다. 전자는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한 번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주식배당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즉, 과세항목은 동일하지만 과세대상자는 다르다. 법적 개념의 이중과세는 이와 달리 같은 과세대상자에게 동일 항목에 대하여 세금이 몇 번 부과되는 상황으로 국제조세와 같이 과세권을 가진 다수의 과세당국이 중복될 때 발생한다. 한 예로 자회사가 다른 국가의 모회사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과세하면 이들 회사가 독립된 개체이므로 법적으로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는 이중과세이다. 국제조세에서 이중과세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이 면세를 하는 방식 등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이외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분야의 이중과세 문제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이자소득세, 사회보장세 등이 있다⁷⁰⁹⁾.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려면 사업체 형태를 C 법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조직하거나 임금이나 이자 지급과 같은 형태로 이중과세를 일부 회피할 수 있다. 이외 배당소득 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세법에서 오류 등에 의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 규정이 있다.

709) 「Protecting Seniors from Double Taxation」, Daniel Mitchell, Heritage Foundation, 2003.

1) Sec. 1311~1314(Mitigation Provisions)

내국세법 1311조에 따라 불공평한 과세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 소나 법원 그리고 재무성 장관 등이 결정할 경우 조세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과세나 이중공제를 회피하기 위한 과세상의 조정을 할 수 있다.

1312조(circumstances of adjustment)에 의하면 납세자가 오류로 다른 연도에 특정 항목을 총소득에 포함하거나 관련 납세자⁷¹⁰⁾의 소득에 해당 항목을 잘못 포함하면 이에 대한 과세상의 조정이 가능하다(1항, double inclusion). 이는 일반공제 및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이다(2항, double allowance). 납세자가 이미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사실은 다른 과세연도에 포함되어야 했었거나 혹은 관련 납세자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의 경우 법원에서 이 항목을 해당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하면 이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double exclusion, 3항). 이외 유산기금이나 그 수증자 혹은 관련 납세자 사이의 소득이나 공제 항목의 수정 또는 계열그룹에 속하는 관련 회사와 관련된 공제를 허용 혹은 불허함에 따라서 다른 계열회사의 공제를 허용 혹은 불허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유산기금도 별도의 납세주체이므로 유산기금에 과세된 소득이 기금 수증자에게 지급될 때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1311조와 별도로 유산기금의 경우 특별히 수증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과 성격을 따로 결정하는 체계(DNI)⁷¹¹⁾를 도입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Sec. 643(a)).

2) 사업체 형태와 이중과세

C 법인의 이윤은 법인 차원에서 법인세로 과세되고 배당소득은 주주 차원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 하지만 C 법인이 아닌 다른 사업체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 주주 차원에서만 개인소득세가 납부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

710) 관련 납세자는 부부, 상속자와 피상속인, 유산 집행인과 피상속인, 파트너, 계열그룹 회사들을 의미한다(sec. 1313(c)).

711) Distributable net income: 유산기금이 수증자에게 소득 지급시 공제가 가능한 금액과 수증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다.

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체가 파트너십, S 법인, 유한책임회사(LLC) 등이며 미국에서 이들 기업은 대개 소규모 회사들이다. 전술한 대로 S 법인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로 간주되지만 과세상으로는 파트너십 대우를 받기 때문에 회사 이익 등이 주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며 회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익을 지주에게 지급한다(Subchapter S, IRC)⁷¹²⁾.

이외 주식회사들이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임금, 이자 지급금 등 공제 가능한 방식으로 이윤을 피용인인 주주에게 배분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피하는 데는 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임금은 피용인이 제공한 서비스를 대가로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⁷¹³⁾.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데 이는 주로 소유집중기업에 적용된다. 또한 성과급이 아닌 상장회사의 최고위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의 공제는 10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Sec. 162(m)).

두 번째로, 부가급부는 과세가 이연되거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자격이 있는 연금, 이윤공유 그리고 주식 보너스 플랜에 대한 회사의 기여금은 기여 당시가 아니라 수혜를 받을 때 과세된다. 또한 보험성 기여금은 개인 차원에서도 아예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부가급부는 가장된 의제배당(constructive dividend)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입증 책임도 기업에게 있다. 이 때 국세청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임금을 다시 돌려줄 것을 회사가 요구할 수 있는데 직원이 이를 돌려주면 돌려준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hedge agreement). 그러나 국세청은 이러한 합의 자체가 부적절한 보수로 볼 수 있다.

712) 단, S 법인은 주정부 법인세를 부과받는다.

713) Reg. Sec. 1.162-7(a).

Ⅲ. 국제조세

1. 서론

가. 국제조세 일반원칙

미국에서 과세권은 해당 납세주체(person)가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이거나 미국과 경제적 관계(economic relationship)를 맺고 있을 때 성립한다. 납세주체는 개인이거나 사업체일 수 있다. 시민 혹은 영주권은 개인의 경우 1년 이하의 거주 기업의 경우 미국 영토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경제적 관계는 납세주체가 미국 영토에서의 활동이나 미국 영토에 있는 자산을 통하여 소득을 창출할 때 성립한다. 문제는 납세주체가 어떤 국가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다른 출신 국가나 법인을 설립한 다른 국가에서 과세되는 상황이다.

미국 납세주체는 전 세계에서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영주권자 포함)이나 외국에서 영업하는 미국 사업체는 이중과세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해외소득에 대한 관할권을 일정 수준 포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액공제제도⁷¹⁴⁾와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해외소득(foreign source income)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이고 후자는 해외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어느 경우에도 대개 국내 소득세율이 외국 소득세율보다 높지 않으면 해외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내세율이 높으면 그 차이를 징수할 수 있다.

714)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해외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될 때 납부할 소득세로 한정되므로 외국 소득세율이 국내 소득세율보다 높으면 세액공제제도가 불리할 수 있다.

나. 미국정부의 과세권

미국에서는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미국인 납세주체(U.S. person)가 창출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이 있다. 미국인 납세주체는 미국 시민, 영주권자, 미국 파트너십, 미국 주식회사, 해외 유산을 제외한 유산, 기금 운영에 대하여 미국 법원이 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국인 납세주체가 거의 대부분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금을 포함한다(Sec. 7701(a)(30)). 미국 정부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와 면제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 국내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미국의 국제조세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납세자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해외소득을 지급받는 미국인(outbound taxation)과 미국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inbound taxation). 외국에서 창출된 소득을 미국인이 지급받으면 미국과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만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미국 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⁷¹⁵⁾은 미국 소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외국인이 해외소득을 지급받으면 이러한 소득이 미국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미국 과세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에 대한 국제협약은 납세주체가 외국에서 거래한 내용에 대한 과세 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미국에서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창출한 이자, 배당, 임대료, 임금과 미국에서 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30% 소득세율이 적용된다(Sec. 871(a)(1)). 그러나 미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상당수 국제협약에 따라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경감이 가능하다. 즉, 이자소득 등 일부 투자소득은 면세가 가능하며 대다수 협약에서 미국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자본소득도 미국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이외 상당수 협약에서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서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도 면세가 된다.

715) 외국 국민이라도 영주권이 있거나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과세 목적상 미국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3년 동안 간헐적으로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미국인으로 취급된다. 이때 이전 연도 1일은 3분의1, 2년 이전 1일은 6분의 1로 간주된다(substantial presence test).

현재 미국은 다른 국가와 55개의 국제조세협약을 맺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4조 2항에 따라 국제협약은 연방법과 동등한 권한이 있으며 만약 국제협약과 연방법이 충돌하면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이 효력을 갖는다. 미국이 자본소득에 대하여 그러하듯이 대부분 국가에서 다른 성격의 소득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부과한다. 또한 국제조세협약을 맺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 배당, 로열티 소득을 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일률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외국과 조세협정을 체결할 때 1996년 미국 소득세 모델협약⁷¹⁶⁾을 기준으로 협상을 진행한다. 1981년 협약을 개정한 1996년 동 협약에 따라 소득 유형별로 이를 과세하는 국가는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외국인이나 외국 업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때 기준은 첫째,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이고 둘째, 미국 국내거래 혹은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이어야 한다. 우선 미국 소득(U.S. Source income)인지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발생 장소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미국 국내사업이나 거래는 미국에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단, 중개인을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내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사업활동이나 자산 활용이 소득 실현에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어야 실질적 연관성이 성립한다.

716)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ation Convention of September 20, 1996.

〈표 III-1〉 1996년 미국 소득세 모델협약에 따른 과세국 결정

소득 성격	모델협약 내용
독립적 개인 서비스	자영업자나 파트너 등이 외국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자영업자 국가가 과세. 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에 고정된 장소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은 사업장이 존재하는 외국이 과세
이외 개인 서비스	피용인으로서 지급받은 임금 등은 피용인 국가가 과세. 단 고용이 외국에서 발생하고 과세연도가 종료 혹은 시작되는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피용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그러한 고용으로 인한 보수는 외국 정부가 과세 가능
이자소득	외국 시민이 소유하는 이자소득은 해당 외국 국민의 국가가 과세
배당소득	어떤 국가 시민 등이 외국 시민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양국이 과세 가능. 단, 배당을 지급하는 국가 세율은 최대 15%로 제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투표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회사에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최대 5% 세율 과세)
부동산 소득	임대료 등 부동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은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가 과세
부동산 이익	외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부동산이 위치한 외국이 과세
로열티 소득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 소득은 수혜자 국가가 과세
연금배당(pension)	연금배당 수혜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과세
사회보장연금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연금을 지급하는 국가가 과세
연금소득(annuities)	연금 수혜자의 국가가 과세
위자료	외국 시민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해당 외국이 과세
자녀부양금	양국에서 비과세
사업소득	사업체가 속한 국가가 과세. 단 외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이 수행되면 해당 사업장이 있는 국가가 과세
이사 보수	국내인이 외국회사 이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보수는 외국이 과세
공해 등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운영으로 인한 이윤	국제영공(해)에서 항공기나 선박을 운영하여 창출한 이윤은 해당 사업체의 국가가 과세

자료: Smith, Harmelink and Hasselback, *CCH Federal Taxation, Comprehensive Topics*, Wolters Kluwer Business, 2008.

2. 소득원천지 규정(sourcing rule)

가. 국내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의 개념

소득원천지 규정은 미국에 있는 소득원천과 그렇지 않은 소득원천 혹은 혼재된 경우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특히 미국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인 미국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그러나 소득원천과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미국인 납세주체에게는 중요하지 않다⁷¹⁷⁾.

소득원천지 규정은 소득 성격에 따라 분류되는데 이를 위하여 우선 대상 소득이 어느 법정 소득항목인지를 결정하고 난 후 해당 소득이 국내소득인지 아니면 해외소득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소득 형태는 실현된 소득의 성격 즉, 자산 매각으로 인한 소득과 자산 사용에 따른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다(Sec. 861). 소득은 구체적으로 개인 서비스 소득, 임대료와 로열티, 이자, 배당소득 그리고 기타 이익으로 구분된다. 미국 혹은 해외 원천소득 여부는 소득을 창출한 자산이나 소득활동이 소재한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미국 국내소득은 내국세법 7701(a)(9)항에 따라 미국 영토로 정의된 50개주와 워싱턴 D.C.에서 창출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미국회사 그리고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지급하면 미국에서 발생한 원천소득이다(income from US sources). 소득을 창출한 자산이 미국에 있거나 해당 서비스가 미국에서 제공되면 원칙적으로 이들도 미국 소득이다. 또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이전에 수수료가 지급되는 등 소득의 발생지가 불분명하면 일단 미국 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외 미국 소득인지 여부는 소득의 성격과 발생지에 관한 일련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Sec. 861).

717) 다만 이 규정은 미국인 납세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외국세액공제의 한도를 결정한다.

〈표 Ⅲ-2〉 소득 성격에 따른 원천지 규정

소득의 성격	미국이 원천지	외국이 원천지
개인 서비스 소득	미국 국내에서 제공된 서비스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
임대와 로열티소득	미국에 위치하거나 미국에서 사용된 자산	외국에 위치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된 자산
이자소득	채무자가 미국인이거나 미국기업	채무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기업
배당소득	지급하는 자가 미국 혹은 외국기업	지급하는 자가 외국기업(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 제외)
부동산과 개인자산	미국에 위치한 자산	해외에 위치한 자산
감가상각 개인자산	미국 감가상각 조정금액 ¹⁾ 에 해당하는 이윤과 미국에서 자산을 처분하면 잔여 이윤	미국 감가상각 조정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윤과 외국에서 자산을 처분하면 잔여 이윤
재판매용 재고자산 구입	미국에서 처분	해외에서 처분
납세자가 생산한 재고자산	국내 판매행위로 인한 소득(U.S. sales activity income)	해외 판매행위로 인한 소득(U.S. sales activity income 이외)
무형자산(영업권 제외)	감가상각 자산: 미국 감가상각 조정금액에 해당하는 이윤 불확정 지급금: 미국에 위치 혹은 사용한 자산, 확정 지급금: 판매자가 미국인	감가상각 자산: 미국 감가상각 조정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윤 불확정 지급금: 외국에 위치 혹은 사용한 자산, 확정 지급금: 판매자가 외국인
영업권	미국에서 창출된 영업권	해외에서 창출된 영업권
기타	판매자가 미국인	판매자가 외국인
국제통신	미국인 소득의 50%	미국인 소득의 50%, 외국인 소득
운송	미국에서 시작 종료되는 운송 해외에서 시작 혹은 종료되는 운송은 소득의 50%	해외에서 시작 혹은 종료되는 운송 소득의 50%

주: 1) U.S. depreciation adjustment.

자료: 〈표 Ⅲ-1〉과 동일.

나. 소득 유형별 원천지

1) 개인 서비스 소득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서비스가 제공된 국가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된다. 미국 국내에서 제공된 개인 서비스 등에 따른 보수는 지급장소나 지급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다(Sec. 862(a)(3)). 이에 비하면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해외소득이다. 여기서 보수는 임금, 수수료, 보너스, 커미션, 부가급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 규정에 예외가 되는 경우는 미국과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외국 교통수단의 외국인 직원으로 잠시 미국에 체류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이다, 두 번째로, 미국에 사업 목적으로 잠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 소득이 아닌 해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90일 이내로 체류하면서 제공한 서비스로서 보수가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외국인 혹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외국업체의 피용인으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이거나 혹은 미국업체가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신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보수가어야 한다(Sec. 861(a)(3)).

국경을 오가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이 허용된다⁷¹⁸⁾. 다만 부가급부의 경우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⁷¹⁹⁾. 우선 거주비용의 경우 피용인의 주된 업무장소를 기준으로 원천지가 판명되며 피용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비용과 교통비용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수당은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에 따라, 이사비용은 새로운 근무장소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 과거 직장을 기준으로 원천지를 결정할 수 있다. 수년에 걸쳐 한 번 지급되는 보수는 그러한 보수가 귀속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원천지가 결정된다. 주식 옵션의 경우 옵션 제공 시점과 옵션

718) 납세자가 소득 원천지 결정에 있어서 다른 기준이 더 적절하다고 국세청을 설득할 수 있으면 이러한 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719) Reg. Sec. 1.861-4(b).

행사를 위하여 고용 관련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귀속된다.

2) 이자 및 배당소득

이자소득의 경우 채무자의 거주지가 소득원천지이다. 즉, 지급장소나 방식과 관계 없이 미국인, 미국기업 그리고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한 외국기업이 지급한 이자는 미국 소득이다⁷²⁰⁾. 미국 이외 다른 장소에서 지급된 이자는 해외소득으로 간주되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는 예외조항이 있다. 우선 영주권자나 미국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로서 지급 이전 3년간 이들 미국업체(영주권자)의 총소득 중 80% 이상이 해외사업 소득(active foreign business income)⁷²¹⁾이면 해외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미국기업이나 파트너십이 외국에서 운영하는 상업은행(저축은행) 은행계좌에서 지급한 이자는 해외소득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외국 파트너십으로 미국 국내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득에 귀속되지 않는 파트너십의 이자 지급은 해외소득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외국 파트너십이 미국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해외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한편 미국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⁷²²⁾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된다(Sec. 861(a)(2)). 따라서 외국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은 해외소득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배당지급을 발표한 날 이전 3년간 총소득 가운데 25% 이상이 미국사업(거래)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외국 업체가 지급하는 배당소득 가운데 미국과 상관된 수입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국 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외국납부 세액공제 목적상 외국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이 배당수입공제가 가능한 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소득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내국세법 243(e)조에 따라 외국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이 국내기업의 누적된 이윤에서 지급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소득으로 취급된다.

720) Reg. Sec. 1.861-2(a).

721) 이는 미국 이외에서 창출된 소득(혹은 미국기업의 경우 자회사가 해외에서 창출한 소득)으로 해외사업에 귀속되는 소득을 말한다.

722) 회사가 936조상의 U.S. possession tax credit을 신청하면 그렇지 않다.

3) 임대와 로열티 소득

유형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임대소득과 로열티 소득은 자산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Sec. 861(a)(4)). 미국에 위치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이나 로열티는 미국 소득이다. 저작권, 복사권, 영업권, 상표권, 프랜차이즈료 등 무형자산의 임대나 사용에 따른 로열티는 자산의 사용 장소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된다. 즉, 미국에서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한 특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는 미국 소득이다⁷²³⁾.

부동산 소득도 국내 자산은 미국 소득이며 미국 이외 지역에 위치한 광산, 농장, 원유매장, 목재 등도 국내에서 판매되면 일부가 과세된다. 재고는 구매장소와 관계없이 판매장소에 따라 소득 발생지가 결정되지만 미국에서 생산, 해외에서 판매한 재고는 일부를 국내 소득으로 본다.

4) 각종 자산

가) 부동산 처분

미국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매각 등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미국 소득이다. 미국 부동산 지분은 미국과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한 부동산과 광산, 유정 등 천연자원을 말한다(Sec. 897(c)(1)). 이외 채권자로서 소유한 지분을 제외한 미국기업에 대한 지분도 이를 처분하기 이전 5년간 해당 기업이 미국 부동산 보유 기업(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이 아님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포함된다. 만약 기업이 소유한 국내외 부동산과 사업용 자산의 공정가격 50% 이상이 미국내 부동산으로 구성되면 미국 부동산 보유기업으로 간주된다.

만약 미국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지분을 처분하기 이전 5년간 만약 해당 기업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그 당시 손익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지

723) Reg. Sec. 1.861-5.

분을 처분하기 이전 5년간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납세자에 한하여 주식 보유가 미국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로 간주된다.

나) 개인자산

개인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거주지가 원천지를 결정한다. 즉, 미국인이 개인자산을 매각하면 그 이익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되며 영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의한 판매는 원칙적으로 해외소득으로 간주된다(Sec. 865). 그러나 외국인이 매각하는 감가상각되는 개인자산, 재고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의 경우 국내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자산이 재고 혹은 상각대상 자산이므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외국인 자산은 증권 관련 자산이다. 여기서 미국인이란 미국인과 외국에 납세지(tax home)⁷²⁴⁾를 두지 않은 영주권자, 미국이 납세지인 외국인 그리고 내국 세법 7701(a)(30)항에 따른 주식회사, 기금 혹은 유산을 포함한다.

감가상각되는 개인자산의 처분에 따른 이익은 상각금액의 한도 내에서 미국과 해외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상각금액(depreciation adjustment)을 초과하는 이익은 재고자산처럼 소득의 원천지가 결정된다(Sec. 865(c)). 즉, 상각금액에 해당되는 이익 중 미국에서 발생한 상각금액(U.S. depreciation adjustment)에 해당하는 비율은 미국 소득으로 처리된다. 상각금액이란 실제 허용 여부를 불문하고 감가상각공제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상각금액은 미국이 원천지인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감가상각공제에 귀속되는 장부가액 조정금액을 말한다⁷²⁵⁾.

재고자산은 재판매를 위하여 구입한 재고와 납세자가 직접 생산한 재고에 따라 소득의 원천지가 다르게 결정된다. 미국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처분한 재고자산으

724) 납세지는 가족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주된 사업 혹은 고용장소를 말한다. 주된 사업장이 없으면 가족의 거주지가 납세지이다.

725) 한 예로 미국 기업이 과거에 \$200,000에 구입한 기계에 대하여 \$120,000의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를 외국기업에게 \$220,000에 매각하였다면 미국 기업의 이익 \$140,000 (\$220,000 - (\$200,000 - \$120,000)) 중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120,000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20,000은 해외소득으로 처리된다.

로 인한 이익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구입하여 해외에서 처분한 재고로 인한 이익은 해외소득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미국에서 전부 혹은 일부 생산되어 해외에서 처분된 재고자산이나 외국에서 전부 혹은 일부 생산되어 국내에서 처분된 재고자산의 경우 이익을 국내외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Sec. 863(b) (2)).

즉, 이 경우 납세자가 생산한 재고자산 처분에 따른 총소득을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활동에 적용되는 원천지 규정을 이용하여 소득의 원천지를 결정한다⁷²⁶⁾. 소득을 생산 및 판매행위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은 50/50 방식, 독립 공장도 가격 방식(IFP) 그리고 장부기록방식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50/50 방식은 소득의 50%를 각각 생산활동과 판매활동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하며 장부기록방식은 국세청의 허가를 전제로 개별활동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수입과 경비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장도가격 기준은 총판매가격 중 공장도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산소득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금액은 판매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립된 유통업자나 여타 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품 일부를 판매하여 생산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면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행위에 따른 소득이 결정되면 개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지 규정이 적용된다⁷²⁷⁾. 특히 생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품을 생산하는 자산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소득의 원천지가 결정된다. 만약 생산 자산이 국내외에 혼재되어 있으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한다. 판매소득은 판매장소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된다. 즉, 미국에서 이루어진 판매로 인한 소득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미국인이 해외에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해외소득으로 간주된다.

세 번째로 저작권, 복사권, 영업권, 상표권, 프랜차이즈료, 영업기밀 등 무형자산을 매각 등 처분하여 얻은 이익은 무형자산 처분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무형자산의 처분, 사용, 생산에 따른 확정 지급금인지 여부와 이전에 감가상각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된다(Sec. 863(d)). 특히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이 상각조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분이윤 중에서 일정 비율은 미국 소득으로 간주된다.

726) Reg. Sec. 1.863-3.

727) Reg. Sec. 1.863-3(c).

여기서 일정 비율은 전체 상각조정금액 중 미국 상각금액(U.S. depreciation adjustment)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무형자산 처분에 따른 보수가 해당 자산의 처분, 사용 혹은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면 해당 보수는 로열티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지가 결정된다. 즉, 만약 자산이 미국에 소재하거나 국내에서 사용되면 미국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보수가 자산의 사용 등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확정 지급금인 경우 만약 판매자가 미국인이면 미국 소득으로 간주된다. 영업권의 처분에 있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즉, 영업권 처분에 따른 보수는 영업권이 창출된 국가의 소득으로 처리된다.

5) 기타

미국인의 경우 국제통신에서 창출된 소득 중 50%는 미국 소득이며 나머지 50%는 해외소득이다. 외국인이 국제통신에서 소득을 창출하면 이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는 한 해외소득으로 처리된다. 만약 사업장이 미국에 존재하면 이에 귀속되는 소득은 미국 소득이다. 국제통신 소득은 미국으로부터 외국으로 전달된 통신과 자료를 말하며 반대의 경우도 포함한다.

두 번째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이나 판매로 인한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따라 원천지가 결정된다⁷²⁸⁾. 소프트웨어의 양도는 복사권(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의 양도나 복사된 제품(복사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의 양도로 분류될 수 있다. 전자는 로열티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원천지가 결정되고 후자는 개인자산의 매각으로 간주되어 원천지가 결정된다.

세 번째로, 미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 도착하는 운송소득은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이다(Sec. 863(c)). 그러나 미국에서 출발하지만 외국에서 종료되는 운송소득은 해외 소득이다. 한편 미국을 경유하는 운송의 경우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종료되는 운송에 귀속되는 소득 중 50%는 미국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규정은 미국인과 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운송소득은 선박이나 항공기 사용 혹은 이와 관련된 소득이

728) Reg. Sec. 1.861-18.

나 선박 등 운송수단 사용과 직접 관련 있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운송이 미국에서 시작하여 종료되지 않으면 운송소득에는 납세자의 개인 서비스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운송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소득은 만약 서비스가 미국에서 제공되면 미국 소득이다. 그러나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이라도 운송소득에서 상대국이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적용하면 미국도 이들 국가의 운송소득은 면세한다(Sec. 883).

3. 외국인(외국업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 미국 사업(거래)과의 실질적 연관성(effective connection)

소득의 원천지가 미국인 소득에 대해서는 비록 외국인에게 지급되어도 소득세가 부과된다(Sec. 871). 그러나 과세방식은 미국 국내사업(거래)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여부⁷²⁹⁾에 따라 30% 일률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고 아니면 일반 미국인(기업) 소득처럼 과세될 수도 있다. 나아가 외국인이 지급받은 해외소득도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다. 이외 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시민(기업)일 경우 세율이 경감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기업)에 대한 과세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은 미국 사업(거래)과 실질적 연관성이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미국 사업(거래)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미국 소득을 창출하면 30%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끝난다. 즉, 원천징수가 외국인에 대한 세금 징수나 공제 그리고 세금신고를 대체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 소득, 연부금, 프리미엄 등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연간 혹은 주기적 소득(FDAP)⁷³⁰⁾이 이에 해당한다(Sec. 881(a)). 나아가 미국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는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으면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자본소득도 고정적이지 않거나 확정적인 주기적 소득이

729) income that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730) fixed, determinable and annual or periodic income.

아니며 외국인이 미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완전히 비과세된다(Sec. 871(a)(2)). 만약 외국인이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고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으면 소득세가 30% 원천징수된다.

한편 투자소득이 아닌 소득에 관하여 외국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외국인이 미국 사업을 영위하고 그러한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을 창출해야 한다(Sec. 6012, 6072(c)). 정기적이고 상당하며 계속적인 사업활동을 하면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창출한 주기적 소득(FDAP)과 자본소득 이외 미국 소득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 시민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 소득(FDAP)과 자본소득도 이러한 소득을 창출한 자산이 미국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소유하거나 사업활동이 그러한 소득 창출의 실질적 요인이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미국 사업 혹은 거래(U.S. Trade or Business)

우선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의 활동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소유 경영하는 사람이 재화 혹은 서비스를 매매하면 미국 사업으로 간주된다. 한편 외국인이 미국에서 잠시라도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미국 사업으로 간주된다(Sec. 864(b)). 그러나 외국인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른 외국인(외국업체)을 위하여 제공한 서비스나 외국인이 미국 시민(업체)이 외국에 유지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사업을 위하여 외국인이 제공한 개인 서비스는 미국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총 90일 이내로 미국에 거주하고 전체 보수가 3,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이 또한 미국 사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기서 거래 혹은 사업(trade or business)에는 소유주를 위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주식, 채권 혹은 선물 거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Sec. 864(b)(2)). F, J, M, Q 유형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등의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며 이들이 제공받은 장학금 등(소득원천이 미국)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만약 외국인이나 외국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되면 이들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도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2) 실질적 연관성(effective connection)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이나 거래를 영위하면서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 이익 혹은 손실을 실현하면 이들은 미국 사업(거래)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과세항목으로 간주된다(일부 투자소득은 제외). 원천지가 외국인 소득, 이익 혹은 손실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Sec. 864(c)).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결과 발생하고 미국이 원천지인 이익과 손실은 실질적 연관성이 있다. 한 예로 외국에서 구입한 재고 자산을 미국에서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연관성이 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도에 받은 개인 서비스 소득도 연관성이 있다. 만약 개인 서비스를 제공한 연도에 받았을 때 연관성이 있으면 서비스를 제공한 연도와 다른 연도에 받은 수입도 미국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나 자본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은 자산 소유와 개인 서비스 사업과 직접적이고 경제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다⁷³¹⁾.

세 번째로, 미국이 원천지이지만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투자소득에는 다음 항목이 있다⁷³²⁾. ① 이자, 배당, 임대, 로열티 소득, 프리미엄과 연금 등 고정적이고 확정된 소득(fixed and determinable income) ② 할인채권(original issue discount) 처분에 따라 인정되는 OID 소득 ③ 저작권, 복사권, 영업권, 상표권, 프랜차이즈료, 영업기밀 등 무형자산 혹은 무형자산 지분 처분에 따른 이익은 그러한 이익이 해당 자산의 처분, 사용 혹은 생산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인 경우 ④ 목재, 석탄 혹은 철광석 처분에 따른 이익(Sec. 631(b), (c)) ⑤ 자본소득과 손실.

원천지가 미국인 이들 투자소득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731) Reg. Sec. 1.864-4(c)(6).

732) Reg. Sec. 1.864-4(a).

하려면 두 가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Sec. 864(c)(2))⁷³³⁾. 만약 이 두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 관성이 없는 소득으로 간주되어 30%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 끝난다.

첫 번째 확인절차는 사업활동으로 직접 창출되지 않는 소득 즉,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로 적용된다(asset test). 만약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 등은 실질적 연관성이 있다. 여기서 사용 혹은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은 주된 목적이 미국 사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혹은 매출채권과 같이 일반적 상거래에서 취득하고 보유한 자산일 수 있다. 또는 예상된 미래 수요가 아닌 미국 사업에서 현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두 번째 검증은 미국 사업 활동으로 창출된 소득, 이익 혹은 손실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active business activities test). 만약 미국에서의 사업활동이 소득 실현의 중요한 원인(material factor)이면 그러한 소득은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준은 증권시장에서 중개인이 받은 배당이나 이자소득 혹은 서비스 회사가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연관성을 결정할 때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요건을 검증할 때 관련 소득이나 자산이 사업상 따로 장부 처리되는지가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미국 부동산(지분)의 처분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실제로 외국인(업체)이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Sec 897). 즉, 외국인 등이 미국 부동산(지분)을 처분하여 얻은 순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혹은 최저한세). 이 규정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이 부동산 지분 처분으로 실현한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지분을 양도받은 측은 외국인이 실현한 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Sec. 1445).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자산을 양도받는 측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산 양도 이후 20일 이내에 세금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Form 8288). 이 때 외국인이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은 사업손실, 이윤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혹은 손상도난손실로 제한된다. 그러나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비차별적 대우를 받을

733) Reg. Sec. 1.864-4(c).

수 있는 외국인인 미국 부동산 지분에 관한 한 국내기업, 즉 미국기업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Sec. 897(i)).

미국 부동산 지분은 미국과 버진 아일랜드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광산, 유정, 천연자원 포함)과 미국 주식회사 지분을 포함한다(채권자로서 지분은 제외). 다만 납세자가 지분을 처분하기 이전 5년간 단 한 번이라도 해당 미국회사가 미국 부동산 보유기업(U.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⁷³⁴⁾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897조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외국인과 외국기업은 미국에 위치하고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한 부동산으로부터 얻은 이익(혹은 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⁷³⁵⁾을 미국 사업과 연관이 있는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Sec. 871(d)).

이외 미국에서 제공한 개인 서비스에 귀속되는 연금은 그 수혜자가 미국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년 연금이 지급될 때마다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운송소득은 소득 창출을 위해 미국에 고정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의 90% 이상이 정기적 스케줄에 따른 운항이면 연관성이 있다(Sec. 887(b)(4)).

마지막으로 해외소득, 이익 혹은 손실은 대개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foreign source income). 그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유형의 해외소득은 비록 미국 소득이 아니어도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Sec. 864(c)(4)). 우선 일정 요건은 개인이 해외소득이 귀속될 수 있는 사무실이나 고정된 사업장을 미국에 가지고 있고 사업장이 해외소득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원인(material factor)이 되는 경우이다. 사업장이 소득 창출에 상당히 기여하고 기본적인 요인이면 실제 요인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해외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해외소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권, 복사권, 영업권, 상표권, 프랜차이즈료, 영업기밀 등을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지급되는 로열티나 임대소득으로 이러한 수입이 미국

734) 만약 기업이 소유한 국내외 부동산과 사업용 자산의 공정가격 50% 이상이 미국내 부동산으로 구성되면 미국 부동산 보유기업으로 간주된다.

735) 광산 혹은 목재 등 처분에 따른 이익과 천연자원 광산의 임대료나 로열티도 마찬가지이다(Sec. 882(d)).

에 소재한 고정된 사업장을 보유한 미국 사업에서 창출되는 경우 ② 미국에서 은행, 금융 혹은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창출한 이자 혹은 배당소득 혹은 주요 사업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기업이 받은 이자 혹은 배당소득 ③ 미국 사업장을 통하여 해외에서 진행된 일부 자산의 매각 등 처분에 따른 소득, 이익, 손실. 여기서 일부 자산은 주식, 재고자산 혹은 일반적 상거래 과정에서 판매용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사용, 소비 혹은 처분하기 위하여 처분한 자산으로 외국인 납세자의 사업장소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이러한 자산은 제외된다.

미국 소득세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각종 공제와 손실은 미국과 해외소득에 할당되어 과세소득을 결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이나 자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제는 해당 소득유형에 배정된다. 잔여 공제항목은 모든 유형의 소득에 소득규모에 따라 비율적으로 배정된다⁷³⁶⁾. 이자비용은 그러나 대출 용도와 상관없이 납세자의 모든 사업활동과 자산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자비용은 납세자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배정되어야 하며 이 가운데 특정 방식을 선택하면 이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외 연구개발비, 손실, 소득세 그리고 변호사비 등에 대해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나. 외국인에 대한 과세

1)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effective connection)이 없는 소득

미국 국내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 연관성이 없고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된다(Sec. 1441(a)). 즉, 미국에 영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gross income 기준)⁷³⁷⁾을 창출하면 세율 30%에 해당되는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이와 같이 원천징수되는 소득에는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 배당 및 이자소득(일부 할인채권(OID) 제외⁷³⁸⁾), 연부금⁷³⁹⁾, 위자료, 임대 및 로열티 소득, 과세되는 장학

736) Reg. Sec. 1.861-8.

737) 즉,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738) 할인채권(original issue discount)의 처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할인금액은 30% 원천징수된다. 할인채권 채무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도 그 금액이 외국인

금, 커미션 그리고 상금 등 주기적인 소득이나 고정 혹은 확정적 소득이 있다. 또한 저작권, 복사권, 영업권, 상표권, 프랜차이즈료, 영업기밀 등 무형자산이나 이러한 무형자산 지분의 경우 해당 자산의 사용, 처분이나 생산성(혹은 지분의 처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면 이러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이 과세된다. 이외 내국세법 631조에 따른 목재, 석탄, 철광의 처분에 의한 이익이 포함된다. 이들 소득은 미국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과세된다.

이외 외국인이 미국에서 해당 과세연도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미국이 원천지인 자본소득이 이에 귀속되는 자본손실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자본손익은 손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고려되며 미국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이 미국이 원천지인 운송소득을 창출하고 이러한 소득이 미국 사업 등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지 않으면 운송소득에 4% 세율이 부과된다 (Sec. 887).

30% 원천징수에서 배제되는 소득에는 871(h)조의 포트폴리오 이자소득(portfolio interest)⁷⁴⁰⁾, 미국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과 보험회사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소득(Sec. 871(i)), 80% 해외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회사가 지급한 배당 중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Sec. 861(c)(1))⁷⁴¹⁾,

이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할인에 대한 지급금이면 30% 원천징수된다. 다만 처음 발행 이후 183일 이내에 지급되는 채권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739) 사회보장 지급금은 금액의 85%가 확정적 소득으로 간주된다.

740) 포트폴리오 이자소득에는 외국인이 소유한 무기명에 가까운 지참인 채권(bearer obligation) 혹은 등록채권(registered obligation)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소득이나 채권할인(OID)이 있다. 지참인 채권은 외국인에게만 매각되도록 설정되고 해외에서 이자가 지급되며 채권 액면에 이를 소지한 미국인은 미국법에 따라 규제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등록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한편 등록된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미국인에게 외국인이 이자 지급의 수혜자라는 확인을 하는 채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포트폴리오 이자소득에는 다음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로서 주식회사 투표권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 주주가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파트너십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 채무자나 특수관계인의 수입, 판매, 이익이나 현금, 배당, 자산가격의 변동 등 다양한 상황을 기준으로 이자 지급이 결정되는 소득(contingent interest). 이외 국세청 판단으로 포트폴리오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면 소득세 납부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는 소득도 포트폴리오 이자소득에서 배제된다. 한 예로 은행이나 피지배 외국주식회사(CFC)가 지급 받은 이자소득도 포트폴리오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외국회사가 지급하는 배당 중 미국이 원천지로 간주되는 소득 그리고 규제받는 투자회사
사가 지급하는 일부 배당소득(Sec. 871(k))이 있다.

2)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

미국에서 사업이나 거래를 영위하는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일반 미국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Sec.
871(b)). 한편 공제는 일반적으로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득과 상관
있는 항목만이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아래 항목은 연관성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
다(Sec. 873(b)). ① 미국에 위치한 자산의 손상 및 절도손실 ② 자선기부금 ③ 납세자
가 멕시코인이나 캐나다인이 아니면 인적공제는 1명만 가능하다.

전술한 대로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지만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서는 원천징수가 필요하다(Sec. 1441(a)). 그러나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소득을 지급하고 이러한 소득이 해당 과세연도에 수혜자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면
원천징수가 필요없다(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는 원천징수)⁷⁴²⁾. 조세협약에 따라 원
천징수 면제를 요구하거나 경감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국세청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
(W-8BEN). 또한 미국 사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으로 원천징수를 받지 않으려면 신청
서(W-8ECI)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3) 외국인의 신고 납세의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연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Form 1040-NR)⁷⁴³⁾.
① 외국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외국인은
미국 사업으로 창출한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소득을 창출해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미국 사업과 연관이 있는 미국 임금을 받

741) 즉, 지난 3년간 총소득의 80% 이상이 해외소득으로 구성된 미국회사가 지급한 배당소득의
해당 비중은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비과세된다(Sec. 881(d)).

742) Sec. 1441(c).

743) Reg. Sec. 1.6012-1(b).

았지만 이러한 임금이 1인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② 미국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이 부족한 경우 ③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④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임금을 받은 피용인은 과세연도 종료 이후 4번째 달 15일까지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외 외국인은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 15일까지 신고한다(Sec. 6072(c)).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의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추후에 특정 소득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인은 이 경우 공제항목을 적용받기 위한 권리 신청을 미리 할 수가 있다(protection return)⁷⁴⁴⁾.

다. 외국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

외국 업체는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ec. 881). 과세 방식은 외국인 소득과 마찬가지로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국제조세협약에 따른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1)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소득

개인 외국인과 유사하게 미국이 원천지인 다음의 외국 주식회사 수입에 대해서는 3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 첫째, 서비스에 대한 보수, 배당 및 이자소득(OID 할 인채권 제외), 연금, 임대 및 로열티 소득 등 주기적인 소득이나 고정 혹은 확정적 소득, 둘째, 저작권, 복사권, 영업권, 상표권, 프랜차이즈료, 영업기밀 등 무형자산이나 이러한 무형자산 지분의 경우 해당 자산의 사용, 처분이나 생산성(혹은 지분의 처분)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면 이러한 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 셋째, 내국세법 631조에 따른 목재, 석탄, 광물의 처분에 의한 이익.

이들 소득은 미국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과세된다.

⁷⁴⁴⁾ Reg. Sec. 1.874-1(b)(6).

30% 원천징수에서 배제되는 소득에는 한 가지 항목을 제외하면 외국인 소득과 같다. 즉, 881(c)조에 의한 포트폴리오 이자소득(portfolio interest), 미국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보험회사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소득(Sec. 881(d)), 80% 해외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회사가 지급한 배당 중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부분(Sec. 861(c)(1)) 그리고 규제받는 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일부 배당소득(Sec. 881(e))은 원천징수 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운송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4%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2)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주식회사는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과세소득에 대하여 미국 회사처럼 과세된다(Sec. 882(a)(1)). 그리고 일부 공제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이 적용된다(Sec. 882(c)). 우선 자선기부금의 경우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없어도 공제가 허용된다. 두 번째로,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하는 외국기업은 이를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⁷⁴⁵⁾.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과세소득에 관한 소득세 이외 추가로 지점 이윤세(branch profit tax)나 지점 이자세(branch level interest tax)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Sec. 884). 이들 세금은 외국 회사가 미국에 자회사 주식회사를 운영할 때와 주식회사가 아닌 지점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세금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외국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운영하면 자회사 소득은 처음 소득세를 적용받고 배당을 모회사에 송금할 때 다시 30%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반면 지점은 송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받지 않았었다.

지점 이윤세는 해당 과세연도 배당소득에 상당한 금액(dividend equivalent)에 대

745)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업체의 주기적 소득(FDAP)과 자본소득도 이러한 소득을 창출한 자산이 미국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소유하지 않거나 사업활동이 그러한 소득 창출의 실질적 요인이 아니면 실질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여 3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미국 소득(소득세를 제외한 순익)⁷⁴⁶⁾에서 다음과 같이 미국에 투자한 자금을 조정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과세연도 연말 미국 순자산(미국 자산-미국 부채)⁷⁴⁷⁾이 이전 연도보다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하여 배당금액을 감액한다. 반대로 이전 연도에 비하여 미국 순자산이 감소하면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금액에 추가한다.

한편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에 할당될 수 있는 이자소득이 실제 이자소득보다 많으면 이는 연말에 외국회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차액에 대해서는 30%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다(Sec. 884(f)). 그러나 외국회사가 위치한 당사국과의 조세협약에 따라 세금이 경감될 수도 있다. 또한 지점 이윤세가 부과되면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된 배당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외국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소득의 경우 만약 그러한 소득이 수혜자의 총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면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공제를 감안하지 않은 회사의 총수입에 근거하여 산정된다(Sec. 1442(a)). 외국회사가 국제조약에 따라 경감세율이 적용되거나 원천징수에서 면제받으려면 국세청에 W-8BEN을 작성하여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실질적 연관성으로 원천징수 의무에서 제외되려면 W-8ECI를 제출한다.

3) 외국기업의 신고 납세의무

외국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이 적용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⁷⁴⁸⁾. ① 외국업체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외국업체는 미국 사업과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소득을 창출해도 신고해야 한다. ②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득, 이익,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

746) 해당 과세연도 수익(E&P)과 1986년 이후 축적된 수익을 말한다.

747) 순자산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미국 사업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과 금전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48) Reg. Sec. 1.6012-2(g).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이 있는 경우(비과세소득 포함) ④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나 미국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원천징수되어야 하는 금액이 모두 원천징수되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내국세법 881(d)조에 따라 미국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 혹은 이자소득만을 지급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외국기업은 국세청에 Form 1120-F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업도 Form 1120-F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 사무실이나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은 과세연도 종료 이후 6번째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 고정된 사업장이 유지하는 기업은 과세연도 종료 이후 3번째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⁷⁴⁹⁾. 이외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 주주가 투표권이 있는 주식이나 전체 주식가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국내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자료신고서(Form 5472)를 작성하여 소득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Sec. 6038)⁷⁵⁰⁾.

이 밖에도 외국 파트너십도 비록 모든 파트너가 외국인이어도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미국 이외 지역일지라도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소득이 있거나 미국이 원천지인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Form 1065)⁷⁵¹⁾. 다만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있는 소득이 없고 미국 소득이 20,000달러 이하이며 1% 이하의 소득, 손실·공제 등이 미국인 파트너에게 배당될 수 있고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외국 파트너십은 신고할 필요없다. 이외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있는 소득이 없고 미국인 파트너가 없으며 원천징수 의무를 충족한 외국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⁷⁵²⁾.

라. 외국기업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주주에 대한 과세

1) 피지배 외국 주식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창출된 소득이 배당 지급되면 납세자의 거주지국이 과세를 한

749) Reg. Sec. 1.6072-2(a).

750) 일부 특정 외국기업의 주주, 임원 혹은 이사인 미국인도 자료 신고(Form 5471)를 해야 한다.

751) Sec. 6031(e), Reg. Sec. 1.6031(a).

752) Reg. Sec. 1.1441-5(c)(2)(i).

다. 따라서 세금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가 창출한 소득을 최대한 배당 지급하지 않으면 세금을 이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해외 자회사 이윤이 국내로 배당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세금을 국내 주주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외국 자회사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규정이 필요하다.

해외 자회사가 창출한 해외 사업이윤은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으로 송환될 때까지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주식회사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피지배 외국주식회사(CFC)에 해당하면 과세연도 종료시점에 해당 회사의 주주인 미국인은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신의 지분(pro rata share)을 의제배당(deemed dividend)으로 간주하여 총소득에 배당소득으로 포함한다(Sec. 951(a)). ① 해당 기업의 subpart F 소득⁷⁵³⁾ ② subpart F 소득에서 제외된 소득으로 개발도상국 투자에서 인출된 소득 ③ subpart F 소득에서 제외된 소득으로 해외 선박경영에서 인출된 소득 ④ 피지배회사가 미국 자산에 투자된 소득의 증가분. 따라서 피지배회사의 모든 소득이 즉각 미국인 주주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subpart F 소득으로 간주해야 할 소득은 해당 주식회사가 한 과세연도에서 피지배 외국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된다.

피지배 외국주식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는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미국인 주주가 투표권이 있는 주식이나 전체 주식가액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constructively) 소유한 회사를 의미한다(Sec. 951, 957, 958). 미국인 주주는 투표권이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말한다. 외국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주식은 그 회사 주주, 파트너 등이 소유한 것으로 처리된다. 실질적 소유권은 내국세법 318(a)조에 제시된 정의에 따른다.

피지배 외국주식회사의 subpart F 소득은 다음과 같은 소득을 의미한다. ① 보험소득 ② 외국회사 소득(foreign base company income) ③ 피지배회사 소득⁷⁵⁴⁾을 국제

753) Sec. 951(a)(1)(A).

754) 951조에 따라 미국회사 총소득에 포함된 이윤 등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952(b)에 따라 subpart F에 포함되지 않는 미국 소득은 제외한다.

불매비율(international boycott factor)로 곱한 금액(Sec. 999) ④ 외국 공무원에게 지급된 불법 뇌물(Sec. 162(c), Foreign Corrupt Act of 1977). ⑤ 테러국가 등 내국 세법 950(j)에 따라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창출된 소득. subpart F 소득은 기본적으로 피지배주식회사가 설립된 국가와 경제적 연관성이 없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소득은 전체 수입에서 관련 소득에 할당되는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Sec. 954(b)(5)). 또한 보험소득과 외국회사 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의 5% 이하이거나 1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피지배회사의 총소득은 외국회사 소득 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954(b)(3)). 그러나 만약 외국회사 소득과 보험소득의 합계액이 피지배회사 총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총소득 전액이 외국회사 소득 등으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외국정부 실질세율이 미국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의 90%보다 높은 세율임을 국세청에 입증할 수 있으면 이러한 외국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은 외국회사 소득에서 제외된다(Sec. 954(b)(4)).

보험소득이란 보험이나 연금계약 발행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만약 소득이 국내보험회사 소득이라면 내국세법 801조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을 말한다(Sec. 953). 한편 외국회사 소득이란 외국 개인지주회사(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의 수동적 소득으로 배당, 이자, 로열티, 임대소득과 이러한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 처분에 따른 순이익, 상품이나 환율거래에 의한 순이익, 이자나 배당에 해당하는 지급금을 포함한다⁷⁵⁵⁾. 이외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개인자산 매매에 따른 이윤, 커미션 등의 소득(foreign base company sales income), 특수관계인을 위하거나 그 대신 제공한 서비스 소득(foreign base company services income)과 석유 관련 제품 소득이 있다(Sec. 954(g)).

subpart F 소득 이외에도 미국인 주주는 피지배회사가 미국자산에 투자된 소득에 대해서도 이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미국 자산은 부동산 이외 채권, 특수관계인 일부 미국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만약 피지배 외국주식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면 이

755) 그러나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임대 혹은 로열티 소득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외국 개인지주회사 소득(FPHCI)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2009년부터는 은행, 금융 혹은 보험 등 이와 유사한 실제 사업수행(active conduct)으로부터 창출된 소득도 포함하지 않는다(Sec. 954(h), (i)).

는 가장 먼저 이전에 과세되었던 미국자산 투자금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 다음으로 subpart F 소득 그리고 여타 수익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취급된다(Sec. 956).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피지배 외국주식회사 수익과 미국인 주주의 주식 장부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조정되어야 한다. 즉, 주주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subpart F 소득은 주식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자본 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총소득에 제외되는 배당은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에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던 소득으로부터 배당소득이 지급되면 장부가액은 하향 조정된다.

2) 국경간의 자산 양도

한편 국경간의 자산 양도를 통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미국인이 외국 주식회사에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양도하면 외국회사의 법인 성격과 관계없이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Sec. 367, outbound toll charge). 원칙적으로 국내거래에서는 주식과 자산을 교환하면 실현된 손익에 대한 소득 인정을 이연할 수 있지만 외국기업이 연루된 국경거래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인이 외국기업에게 주식을 받는 대신 자산을 양도하면 이는 과세대상 거래로 간주된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된 것처럼 과세된다. 따라서 마치 제3자에게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자본소득과 1250조 환수를 인정해야 한다면 외국회사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도 그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양도에는 많은 예외가 있지만 이 규정은 기업의 법인화, 재편 그리고 청산에 적용된다.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재고, 외국환,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일부 임대자산 등이 있다. Sec. 6038B(a)(1)(A)에 명시된 자산을 외국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미국 국민과 미국 주식회사는 국세청에 Form 926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파트너십이 자산을 양도하면 파트너가 신고한다. 이외 피지배 외국회사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은 자료신고(Form 5471)를 해야 한다(Sec. 6046).

두 번째로 2003년 5월 이후 미국 주식회사가 해외에서 법인화되어 외국 모기업이 다국적 그룹의 미국 모기업을 대체하면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corporate inversion). 이러한 주식회사 전환은 자산이나 주식 전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 미국 주식회사의 주주가 외국 주식회사 주식가액이나 투표권의 80% 이상을 소유하면 미국 소득세 과세 목적상 해외 주식회사는 미국회사로 간주된다(Sec. 7874). 또한 미국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60~80%이면 국적을 이탈한 업체의 과세소득은 전환에 의한 이익보다 적을 수 없다.

4.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 창출한 일부 근로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고 해외 거주비는 공제를 하거나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가. 해외근로소득

우선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받은 근로소득 중 85,700 달러(2007년 기준)⁷⁵⁶⁾를 총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Sec. 911).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연속적인 12개월간 최소한 330일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고 납세지(tax home)가 외국이어야 한다. 미국 시민의 경우 외국에서 사실상 영주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혜택이 가능하다⁷⁵⁷⁾. 납세지(tax home)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와 상관없이 납세자의 일반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사업 성격상 이러한 사업장소가 없으면 납세자의 거

756) 이 금액은 날짜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해당 국가의 실질적 영주인이 아니어서 면세받을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비율적으로 금액을 하향조정 해야 한다. 이외 이렇게 과세되지 않는 해외소득은 2008년 \$87,600로 인상된다.

757) Reg. Sec. 1.911-2(a).

주지역이 납세지가 된다.

해외근로소득은 임금, 전문 업종 수수료와 실제로 제공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다. 현금 이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된 보수의 공정가격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수익의 배당이나 연금 혹은 미국정부 공무원에게 지급된 금액은 제외된다. 또한 납세자가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 서비스와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는 실질적 요인이면 순이익의 30% 이상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다. 소득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정의되지만 보너스 등 지급이 지연된 보수도 서비스가 제공된 연도 다음 과세연도 종료시점까지 제공되면 해외소득으로 간주된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해외근로소득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거주비용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해외근로소득 ② 비과세금액(85,700달러)를 외국에서 거주한 날짜와 곱하고 이를 365일로 나눈 금액⁷⁵⁸⁾.

납세자는 Form 2555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신청해야 한다. 외국거주비용을 공제하지 않거나 자영업 소득이 없는 납세자는 간소화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 번 신고서를 작성하면 납세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이듬해에도 계속 유효하다. 다만 한 번 철회하면 국세청의 동의가 없는 한 이후 5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비과세되는 해외근로소득은 그러나 총소득에 포함된 소득과 관련하여 일반 소득세와 최저한세를 산정할 때에는 총소득에 포함된다.

나. 해외거주비용 공·면제

해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허용되는 납세자는 해외 거주비용(housing cost)에 대해서도 총소득에서 제외하거나 공제를 허용받을 수 있다(Sec. 911(a)). 특히 주택비용을 위한 임금이나 변제 등 고용주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총소득에서 제외되며 자영업자 소득에서 주택비용으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된다. 다만 해외근로소득 공제와 거주비용 공·면제는 납세자의 해외근로소득보다 많을 수 없다.

해외거주비용 공·면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미국 시민으로 과세연도에 지속적으로

⁷⁵⁸⁾ Reg. Sec. 1.911-3(d)(2).

해외에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이거나 연속적으로 12개월 동안 최소한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이어야 한다(Sec. 991(d)). 또한 이들의 납세지(tax home)가 외국이어야 한다. 해외거주비용은 임대료, 고용주가 제공한 주택의 공정가격, 공과금(전화료 제외), 부동산 보험료, 가구 임대료, 주차비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주택 구입비용과 기타 자본경비, 이사비용, TV 수신료, 가구 구입비, 가정부나 정원사 등 가사비용, 주택 대출금 원금 상환, 공제되는 이자비용, 납세자가 소유한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거주비용에서 제외된다⁷⁵⁹⁾.

공·면제가 가능한 해외거주비용은 실제 주택비용에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최대 \$85,700)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Sec. 911(c)(1)). 구체적으로 보면 공·면제되는 주택비용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30%와 365일에서 해외거주일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납세자가 일년 내내 외국에서 거주하면 최대 25,710달러($0.3 \times 85,700$ 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이 금액에서 해외에서 거주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과세되는 해외근로소득의 16%를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해외거주비용은 11,998달러($25,710 - 13,712$ 달러⁷⁶⁰⁾)이다. 다만 거주비용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공·면제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해외거주비용에 대한 공·면제 신청은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신청서(Form 2555)로 할 수 있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거주비용은 그러나 최저한세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총소득에는 포함된다.

고용주가 거주비용을 제공할 경우 납세자는 해외근로소득과 고용주가 제공한 대금으로 지불한 거주비용 중 적은 금액을 비과세받을 수 있다. 한편 자영업자는 거주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데 다만 해외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해외근로소득과 해외거주비용을 제외한 금액보다 공제금액이 많을 수 없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Sec. 911(c)(4)). 만약 자영업자 소득과 고용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면 주택비용을 나누어 각각 공·면제를 하는데 면제금액은 거주비용과 고용주가 지급한 대금을 곱하고 이를 해외근로소득으로 나눈 금액이 된다.

759) Reg. Sec. 1.911-4(b).

760) $0.16 \times \$85,700$.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납세자는 외국정부에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일반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Sec. 901(a)). 이러한 선택은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지만 만약 외국정부 소득세율이 더 높고 해외소득 비중이 크지 않으면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외국정부에게 소득세를 납부한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 미국에서 수행한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납부할) 비영주권자와 외국기업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⁷⁶¹⁾, 파트너십, S 법인, 유산기금이 외국 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한 파트너, 주주, 기금 수증자(자신에게 할당된 소득세 금액으로 한정).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세금은 납세자가 납부하거나 납부해야 할 소득세와 초과이윤세이다. 이들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한 세금도 공제가 가능하다(Sec. 903). 외국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세금이며 재무성 규정 1.901-2(a)의 의미에 따라 소득세 성격을 지녀야 한다. 소득세를 대신한 세금도 재무성 규정 1.903-1(a)에 따라 소득세를 대체하는 세금이어야 한다. 여기서 세금이란 외국정부 과세권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만약 과징금을 납부하는 대신 직간접적으로 외국정부로부터 구체적인 혜택을 받으면 세금이 아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실질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을 부과받는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혜택을 말한다.

한편 소득세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성격을 볼 때 순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⁷⁶²⁾. 미국 내국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의 실현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⁷⁶³⁾으로 총수입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총수입에서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총수입에 귀속되는 각종 비용

761) 그러나 외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단지 외국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소득에 과세되는 외국세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762) Reg. Sec. 1.901-2(b).

763) 혹은 소득 실현 이전이지만 이전에 공제된 금액을 환수하기 위한 사건의 발생에 따른 세금도 포함된다.

의 상당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한다. 소득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소득세를 대체한 과징금도 소득세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본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는다⁷⁶⁴⁾.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빌미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미국 정부 세수입이 줄어드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soak-up tax).

따라서 벌금, 이자, 관세, 경제적 혜택이 있는 지급금, 연금 납부금, 실업세 등은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해외근로소득이나 해외이주비용으로 총소득에서 배제된 해외소득에 해당하는 외국 소득세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911(d)(6)). 이외 국제적인 배척운동(international boycott)에 참여하거나 협조하면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공제금액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제적 배척이란 어떤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다른 국가와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거나 혹은 특정 국가, 종교 혹은 인종을 피용인으로 고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원래 공제가 가능한 금액에서 국제 배척비용⁷⁶⁵⁾을 곱한 금액이 된다(Sec. 908(a), 999)

미국회사가 외국지점을 통하여 납부한 외국세액은 직접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직접 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간접적인 공제가 허용된다. 즉, 외국회사 투표권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국내회사가 외국회사로부터 배당을 지급받으면 1986년 이후 납부한 외국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deemed tax payment). 의제 납부세액의 비율은 배당소득을 1986년 이후 배당하지 않은 외국회사 수익으로 나눈 수치가 된다(Sec. 902). 한편 피지배 외국회사의 일정 소득을 국내회사 총소득에 포함하면 피지배 외국회사의 수익에 귀속될 수 있는 금액은 피지배 주식회사가 국내회사에 지급한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 납부세액의 적용이 가능하다(Sec. 960).

그러나 미국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공제를 사용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총금액에는 한도가 있다. 구

764) Reg. Sec. 1.903-1(b).

765) 국제적 배척운동 관련 국가에서 수행된 납세자의 영업활동을 미국을 제외한 영업활동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 예로 불매활동에 따른 판매액(매입액)을 전체 해외 판매액(매입액)으로 나눈 비율이 기준비율이 될 수 있다.

체적으로 납세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과세소득에서 해외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미국 소득세(공제 이전)에 곱한 금액이다⁷⁶⁶⁾. 여기서 과세소득이란 각종 비용과 손실을 제외한 개념이다. 즉, 특정 소득유형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 등은 해당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렇지 않은 비용과 손실은 총소득에서 해당 해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 등을 해당 소득에서 공제한다⁷⁶⁷⁾.

또한 특정 소득유형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용하여 다른 유형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이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한도를 두는 조항이 있다(Sec. 904(d)). 특정 소득공제를 산정하려면 해외소득을 다음의 유형으로 분류해야 한다⁷⁶⁸⁾. ① 배당, 이자, 임대료, 로열티소득 등의 수동적 소득⁷⁶⁹⁾, ②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해외소득으로 간주되지만 내국세법에서는 미국 소득으로 처리되는 소득(Sec. 904(h)(10))⁷⁷⁰⁾, ③ 테러국가 등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로 귀속되는 소득(Sec. 901(j)), ④ 수동적 소득 이외 일반소득.

납세자가 개별 소득유형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소득유형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세액⁷⁷¹⁾과 총과세소득에서 해당 유형의 과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미국 소득세(공제 이전)에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연후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한 제한금액을 합하면 납세자가 공제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의 한도를 알 수 있다. 즉, 납세자는 실제로 납부한 외국세액, 전체적인 제한금액 그리고 개별 한도금

766) 일반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미국 소득세가 부과되는 해외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소득세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767) Reg. Sec. 1.861-8~1.861-14T.

768) 이전에는 소득유형을 10개로 분류하였으나 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로 2006년 이후에는 4개 유형으로 줄어들었다.

769) 이외 해외소득으로 취급되는 DISC(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배당소득이나 해외무역소득(foreign trade income)에 해당하는 과세소득 그리고 해외무역소득으로 귀속되는 FSC(Foreign Sales Corporation) 수익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금도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된다. 국제판매 미국회사(DISC)나 해외판매회사(FSC)에 대한 규정은 수출보조금으로 WTO의 제소에 따라 폐지되고 그 대신 미국 국내생산공제가 도입된 바 있다.

770) 이러한 소득에는 배당수입공제가 허용되는 배당(Sec. 245(a)(10)), 일부 이익(Sec. 865(h)),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회사의 특정 소득(Sec. 904(h)(10)) 등이 있다(Reg. Sec. 1.904-5(m)(7)).

771) 만약 납부한 외국세액이 여러 유형의 소득과 관련이 있으면 특정 소득유형에 포함되는 순소득을 외국세가 적용되는 전체 해외 순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소득의 외국세액을 결정한다(Reg. Sec. 1.904-6(a)).

액의 합계액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처럼 외국납부세액 사용이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우선 개인 납세자로서 해외소득이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동적 소득으로만 구성되면 공제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다. 여기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은 납세자가 Form-DIV나 1099-INT 등 소득통지서를 통하여 통지받은 이자·배당 등 수동적 소득을 말한다(Sec. 904(k)). 또한 세액공제가 300달러(부부합산 600달러) 이하이면 공제 제한이 없다. 이 밖에도 공제 한도로 인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전 1년 소급 그리고 이후 10년동안 이월될 수 있다(Sec. 904(c)). 특정 소득유형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외국세액은 해당 유형에 대해서만 이월 혹은 공제된다. 개인 납세자는 Form 1116, 주식회사는 Form 1118을 작성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한다.

5. 기타

가. 외국환 거래

해외 자회사나 지점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이는 환율이 끊임없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가 달러로 전환됨과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미국 납세자는 해외소득을 달러로 표시해야 한다(기준 화폐, functional currency). 그러나 자격을 갖춘 사업체(Qualified Business Unit)가 상당 부분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외국화폐를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유지할 수 있다(Sec. 985(b)). 자격을 갖춘 사업체(QBU)는 해외 자회사나 지점 등 별도의 사업을 유지하는 단위로서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화폐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할 때 발생주의 회계 사업자는 이를 과세연도 평균 환율을 기준으로 달러로 전환한다. 그러나 과세연도 종료 이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납부한 세금이나 해당 과세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한 세금 혹은 물가상승률이 높은 화폐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세금이 납부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한다(Sec. 986(a)).

달러 이외 기준 화폐를 사용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미국기업은 자회사 소득과 손실을

해당 국가화폐로 산정하고 이를 연간 평균 환율을 이용하여 달러로 전환한다. 납세자는 소득을 창출한 시점의 환율과 송금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현금뿐만 아니라 자산의 송금에 따른 환율평가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 1986년 이후 송금은 그 이후 수익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율 손익은 일반 소득 혹은 손실로 처리되며 이러한 수익을 창출한 소득 유형에 귀속된다(Sec. 987).

그러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내국세법 988조 거래에 해당되는 환율 손익은 별도로 산정되어 일반소득(손실)로 취급된다. 988조 거래는 기준화폐가 아닌 화폐의 처분과 있다. 또한 다음의 거래에 따라 납세자가 기준화폐가 아닌 화폐로 받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988조에 해당한다. ① 채권 취득 혹은 부채약정에 따른 채무자 ② subtitle A의 목적상 발생한 비용과 소득의 지급 혹은 수입 ③ 선물계약, 옵션, 보증 혹은 이와 유사한 약정을 취득 혹은 약속.

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1) 기본 개념

납세자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소득과 공제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즉, 동일한 사람이나 기업이 소유 혹은 지배하는 사업체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이들 사업체 사이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거나 채무관계를 형성하면 개별 기업의 과세소득을 왜곡하여 그룹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한 예로 세금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과세소득을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세법 482조에 따라 미국 국세청은 동일한 지분이 직·간접적으로 소유 혹은 지배하는 사업체들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공제, 장부가액 등 과세항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⁷⁷²⁾. 다른 세법규정과 달리 내국세법 482조에서 '지배'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고 다만 재무성 규정⁷⁷³⁾은 법

772) Reg. Sec. 1.482-1(a)(2): 소득 등의 재배정이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등 국세청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았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대개 국세청의 판정을 유지한다.

773) Reg. Sec. 1.482-1.

적 구속력이나 행사방식과 상관없이 직·간접적 통제는 지배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ontrol standard). 따라서 이전가격규정에서 지배는 형식보다는 실질적 관계에 따라 지배권을 정의한다. 한 예로 소득이나 공제가 자의적으로 이전되면 지배권의 존재를 가정할 수 있다. 국세청이 소득 등을 재배정하는 사태를 방지하려면 납세자는 거래가격이나 이윤이 독립된 거래에서 유사가격이나 이윤과 비슷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지배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그 후에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독립된 거래와 유사한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즉, 지배를 받는 업체의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원칙은 독립거래에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arms-length standard)⁷⁷⁴. 원칙적으로는 제3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결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동일한 성격의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무성 규정⁷⁷⁵은 유사거래를 기준으로 독립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납세자들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유사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유사거래와 특수관계인 거래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 조정은 임의가 아닌 확실한 근거로 조정되어야 한다.

유사성은 일반적으로 독립거래에서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되지만 재무성 규정⁷⁷⁶에서는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기능적 유사성 ② 계약조건 비교 ③ 위험도 비교 ④ 경제적 상황 비교 ⑤ 자산 혹은 서비스 비교. 실제 적용된 가격방식에 따라 이들 요인의 중요성이 가감될 수 있다. 다만 시장개척이나 지배력 향상을 위한 일반적 가격전략에 따라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이전가격에서 저축되지 않는다.

기능적 유사성은 지배그룹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예를 들면 연구개발, 상품 디자인, 제조, 판매, 경영활동 등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조건에서는 독립거래와 특수관계인 거래의 가격과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계약조건을 비교한다. 한편 거래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평가

774) Reg. Sec. 1.482-1(b)(1).

775) Reg. Sec. 1.482-2~1.482-6.

776) Reg. Sec. 1.482-1.

하여 비교해야 한다. 즉 신용도 위험이나 알려지지 않은 고객에 대한 판매를 비교하고 모기업과 자회사 중에서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시장 규모나 지배력 등 독립거래와 특수관계인 거래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상황도 비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무성 규정은 이에 대한 검토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⁷⁷⁷⁾. 마지막으로 거래 대상인 자산이나 서비스 성격을 비교해야 한다. 예컨대 유형자산 거래에 내재된 무형자산은 거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독립거래에서 어떤 가격이 적절한 기준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1996년부터는 기업이 국세청과 미리 협의하여 계열사 등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이전가격방식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다(APA)⁷⁷⁸⁾. 사전약정제도는 국세청과 납세자 사이의 약속으로 지배그룹 사이의 거래에 대한 특정의 가격결정방식을 미리 합의할 수 있다. 나아가 다국적기업의 경우 미국 국세청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운영되는 외국 과세당국도 이러한 약정제도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bilateral agreement). 2006년 말을 기준으로 미국은 324개의 국내약정제도와 356개의 양자간 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약정제도가 비록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법적 소송보다는 저비용의 과세행정방식이기는 하지만 사전약정에 합의하는 데 대개 3~5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만약 500만달러와 납세자 총수입의 10% 중 적은 금액보다 많은 이전가격 조정(국세청에 의한 이윤 배정 변경)이 발생하면 20%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6662). 또한 중대과실의 경우 벌금이 4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2) 거래유형별 가격책정방식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독립가격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은 거래 형태에 다르다. 내국세법 482조에서는 유형자산의 사용, 양도, 무형자산의 양도, 부채와 선급금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따라 가격결정 원칙을 분류하고 있다. 물론 자산의 양도와 함께 서비스가 같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가 상호 배제되지는 않는다.

777) Reg. Sec. 1.482(1)(d)(3)(iv).

778) Advanced Pricing Agreement.

미국에서는 특정 거래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에 따라 독립거래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⁷⁹⁾. 특히 내국세법이 특정 방식을 지명하고 있지 않지만 유사 독립가격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가) 유형자산 매각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자산의 판매에 있어서 재무성 규정은 여섯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⁷⁸⁰⁾. 이들 방식에는 유사독립가격, 재판매가격, 비용비교, 이윤비교, 이윤분할, 기타 방식이 있다. 유사독립가격이란 물론 독립된 거래에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유사거래의 정확성과 완전성, 거래의 유사성, 신뢰도를 증진할 수 있는 가격 조정 가능성 등이 중요하며 거래조건과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결정적 요소이다. 재판매가격 방식은 유사한 독립거래에서 발생한 총이윤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된 기능, 계약조건, 위험도 등 기능적 유사성이 중요한 판단 척도가 된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입자가 구입한 제품을 크데 변형하지 않고 판매할 때 주로 사용된다.

세 번째 방식은 비용비교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유사한 제조업자가 독립된 거래에서 실현한 이윤을 기준으로 하며 재판매가격방식과 차이는 판매기능이 아닌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한다⁷⁸¹⁾. 이 방식은 제조가공기능을 수행하는 특수관계인 거래에 주로 사용되며 이 때 총이윤보다는 제조비용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가정에 기반한다. 즉, 특수관계인 제조비용에 조정된 독립거래 이윤을 추가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한편 이윤비교방식⁷⁸²⁾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독립거래에서 창출한 이윤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유사성 이외에도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거래에 적용되며 무형자산 등이 연루된 거래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즉, 가장 복잡한 가격결정방식으로 관련 업체의 재무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779) Reg. Sec. 1.482-1(c).

780) Reg. Sec. 1.482-3.

781) Reg. Sec. 1.482-3(d).

782) Reg. Sec. 1.482-5.

이 밖에도 이윤분할방식은 개별 특수관계인 거래가 영업이윤 혹은 손익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개별 거래자가 수행한 기능, 위험성 그리고 고용된 자원을 참작하여 가장 세부적으로 영업활동을 조사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특히 동일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독립거래에서 실현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의 이윤을 배정한다. 이윤분할방식에서는 유사이윤과 잔여이윤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⁷⁸³⁾ 마지막으로 다른 방식이 독립가격을 가장 잘 반영하면 재무성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나) 유형자산 사용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독립가격 이하로 자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내국세법 482조에 따른 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⁷⁸⁴⁾. 이 경우 동일 혹은 유사자산을 유사한 상황의 독립된 거래에서 동일한 기간에 임대할 때 발생하는 가격이 기준이 된다. 자산 사용기간, 장소, 유지비용, 자산 소유자의 투자, 자산 유형과 상태 등이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자산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용하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 무형자산의 양도·면허

무형자산을 해외로 양도하면 국세청에 의한 가격 조정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개인 서비스와 별도로 특허권, 복사권, 상표권, 프랜차이즈, 기술 등 이와 유사한 자산에 대한 상업적 지분을 양도할 때 내국세법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⁷⁸⁵⁾. 무형자산 양도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유사독립거래, 유사이윤, 이윤분할 그리고 기타 방식을 사용한다.

783) Reg. Sec. 1.482-6(c).

784) Reg. Sec. 1.482-2(c).

785) Reg. Sec. 1.482-4.

라) 무형자산의 소유권

계열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같이 무형자산 개발에 참여하면 누가 개발업체이며 누가 지원업체인지를 판명해야 한다. 만약 무형자산의 개발업체가 지원업체를 포함한 다른 계열그룹 업체에게 무형자산을 제공하면 482조에 따른 소득과 공제 등의 재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자산 개발에 계열회사가 참여하면 이는 서비스나 자산을 공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서비스 등의 가격 결정이 필요하다⁷⁸⁶⁾.

그러나 만약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비용분담을 한 무형자산 개발은 국세청에 의한 가격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신의 성실에 기초한 비용분담이란 무형자산의 비용과 위험을 공유하고 무형자산 지분을 대신 받기로 한 계열사간 서면계약에 따라 지급된 비용을 말한다. 또한 이처럼 482조의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개발된 무형자산 이용으로 예상되는 혜택과 비용이 적절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즉, 무형자산의 지분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에 비하여 부담한 비용이 너무 적으면 로열티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⁷⁸⁷⁾.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자가 보호를 받지만 법적 소유권이 없으면 개발업체가 소유권자로 간주된다. 한편 하나의 무형자산 소유권은 분할될 수 있다. 한 예로 상표권의 소유권자가 다른 업체에게 상표권을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 소유권자와 사용자가 로열티 금액 산정에 있어서 소유권자로 간주될 수 있다. 무형자산 양도시 평가기준도 독립거래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계약조건이나 경제적 상황이 고려될 수 있다.

1986년 미국 의회는 무형자산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한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같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super-royalty). 이에 따라 1년 이상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가격 조정이 가해질 수 있다. 이외 2005년 미국 재무성은 사전 계약 없이 개발된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용을 공유하는 약정을 맺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과 공제를 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바 있다.

786) Reg. Sec. 1.482-4.

787) Reg. Sec. 1.482-7(b).

마) 서비스 제공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전가격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다른 계열사의 활동 수행과 연관이 있거나 다른 계열사 영업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면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기준 서비스 가격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독립거래에서 제공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 된다⁷⁸⁸⁾. 이 때 서비스 가격은 실제로 그러한 혜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도한 혜택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서비스를 제공한 계열사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이나 공제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때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자산의 판매, 양도 혹은 임대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즉, 초기 지원이나 작동지침 등 자산 양도에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독립적인 가격이 아닌 자산 양도와 관련된 가격 결정에서 서비스 가격을 정한다.

바) 부채와 선급금

지배그룹의 계열사가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다른 계열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혹은 채권자가 되면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 기준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대출이 발생할 때 유사한 부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독립 이자율이 된다⁷⁸⁹⁾. 원금 금액, 상환일자,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서면으로 작성된 대출이나 선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무관계 혹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관계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양식보다는 실질원칙에 따라 자본출자나 배당으로 간주되는 채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88) Reg. Sec. 1.482-2.

789) Reg. Sec. 1.482-2.

다. 국제조세협약

1) 개요

전술한 대로 외국인(기업)은 미국 소득에 대하여 일반 과세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30% 원천징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외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경우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면세될 수도 있다(Sec. 6114)⁷⁹⁰⁾. 한 예로 대부분 조세협약에서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 경감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미국은 2008년 현재 55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협약은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이 지급받은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 조세협약은 또한 협약국 국민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세협약은 체결국가의 거주인이 아닌 제3의 외국인이 협약을 이용하여 경감된 세율을 적용받는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⁷⁹¹⁾.

조세협약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에서 창출된 소득이 상대방 국가 국민에게 지급될 때 과세권을 누가 행사하는가에 대한 협약이다. 조세협약에서는 대개 자국 국민에 대한 과세권이 허용되지만 한 국가가 주된 과세권을 갖고 상대방 국가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한다. 과세권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거주지와 소득이 귀속되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다. 고정사업장은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실,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즉,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있는 소득은 미국업체와 마찬가지로 순이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된다. 하지만 조세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업체는 미국에 고정사업장을 유지해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고정사

790) 그러나 상대방 국가가 해당 외국인의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소득이고 미국 업체 등이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이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통하여 창출된 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의 언급이 없으면 파트너십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된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Sec. 894(c)).

791) 한 예로 미국의 조세협약에서는 만약 외국인(외국업체)이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을 창출하면 경감된 세율로 원천징수를 받을 수 없다. ① 상대 국가에서 외국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소득 ② 미국인(업체)이 외국인에게 지급하였지만 외국이 과세하지 않는 항목 ③ 파트너십이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항목

업장에 기인하는 소득만이 과세된다. 외국인 납세자는 Form 8233을 원천징수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세금신고에서 감면세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Form 8833을 동봉해야 한다. 만약 Form 8833을 작성하지 않고 혜택을 받으면 개인의 경우 1,000달러, 주식회사는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 1996년 미국 모델협약⁷⁹²⁾

1981년 협약을 개정한 1996년 미국 모델 조세협약은 미국이 외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할 때 표준모형으로 사용된다. 미국 모델협약은 OECD 모델협약과 유사하지만 이를 대체하지는 않으며 규정이 좀 더 자세하다.

OECD와 미국 모델협약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세협약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국내법에 따라 납세자가 향유하는 혜택을 제한할 수 없다(제1조, preservation clause) ② 지방정부 세금은 조세협약에서 제외된다(제2조) ③ 거주지국 국내법에는 없어도 부동산 소득의 경우 고정사업장에서의 순소득에 기초하여 과세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납세자가 갖는다(제6조) ④ 기업이 유형자산의 임대나 개인 서비스 제공으로 창출한 소득은 사업 이윤으로 간주하고 국가간 운송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체의 거주지국이 과세한다(제7,8조) ⑤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감면 요건을 25%의 주식 지분에서 10%로 인하한다(제10조).

이 밖에도 이자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며 특수관계인이 채권자가 연루된 조건부 이자소득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또한 개인 혹은 파트너십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발생지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한정된다(제14조). 상대국 국민의 세부담이 더 많지 않은 이상 같은 상황에 있는 상대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 대한 세법상 대우가 반드시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제24조). 마지막으로 은행 기밀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자료 등의 정보교환이 보장되어야 하고 상대국 납세자의 장부를 조사하거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26조).

792) United States Model Income Taxation Convention of September 20, 1996.

3) 조세협약 혜택의 적용

국제조세협약에 의한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 납세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혹은 단체(원천징수 대리인)에게 감면세 자격에 대한 정보를 담은 W-8BEN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일정 비율의 소유주가 미국이나 조약체결국 국민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을 수 있다.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제공한 개인 서비스로 인한 보수는 일부 요건이 충족되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고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표 Ⅲ-3〉 참조). 한편 개인 서비스 사업자⁷⁹³⁾와 회사에 고용된 피용인 여부에 따라 이러한 감면 내용이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라도 해당 외국인이 고정사업장을 미국에 유지하고 있는지 혹은 미국에서 얼마 동안 체류하였는가에 따라 감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요건은 협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개의 경우 외국인이 미국에서 183일 이내로 체류하거나 고정사업장을 유지하면 면세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개인 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발주자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고용 외국인의 경우 대개 고용회사가 외국기업이어야 면세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주가 미국회사라도 면세된다. 세 번째로, 면세금액은 대부분 제약이 없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한도가 있다. 한 예로 우리나라 개인 서비스 사업자가 미국에서 고정사업장이 없이 182일 이내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0달러 이내의 보수를 받으면 면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182일 이상 고정사업장을 유지하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 피용인으로 182일 이내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제공한 서비스로서 미국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면 3,000달러까지 면세가 허용된다. 이 밖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선박이나 비행기 운항직원의 보수도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793) Independent personal service: 자신의 책임 아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한 손실을 부담하는 서비스로 독립 자영업자나 파트너로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을 말한다.

〈표 III-3〉 미국에서 제공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소득세와 원천징수 면세 요건

	개인 서비스 사업자			피용인		
	최장 미국거주	계약/ 지급인	최대 면세액	최장 미국거주	고용주	최대 면세액
호주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오스트리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방글라데시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바바도스	89일	외국인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5,000
벨기에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벨기에인	제한 없음
캐나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제한없음	\$10,000
중국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사이프러스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외국인	제한 없음
체코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덴마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이집트	89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89일	이집트인	제한 없음
에스토니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핀란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프랑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독일	1)	1)	1)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그리스	183일	그리스인	제한 없음	183일	그리스인	제한 없음
헝가리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아이슬란드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아이슬란드인	제한 없음
인도	89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인도네시아	119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19일	외국인	제한 없음
아일랜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이스라엘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이스라엘인	제한 없음
이탈리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자마йка	89일	외국인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5,000
일본	1)	1)	1)	183일	일본인	제한 없음
카자스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한국	182일	제한 없음	\$3,000	182일	한국인	\$3,000
라트비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리투아니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룩셈부르크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멕시코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모로코	182일	제한 없음	\$5,000	182일	모로코인	제한 없음
네덜란드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뉴질랜드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노르웨이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노르웨이인	제한 없음
파키스탄	183일	파키스탄인	제한 없음	183일	파키스탄인	제한 없음
필리핀	89일	외국인	제한 없음	89일	필리핀인	제한 없음
폴란드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외국인	제한 없음
포르투갈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루마니아	182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2일	루마니아인	제한 없음
러시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슬로바키아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표 Ⅲ-3〉의 계속

	개인 서비스 사업자			피용인		
	최장 미국거주	계약/ 지급인	최대 면세액	최장 미국거주	고용주	최대면세액
슬로베니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남아공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스페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스리랑카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스웨덴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스위스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태국	89일	미국인	\$10,000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토바고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튀니시아	183일	미국인	\$7,500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터어키	183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우크라이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영국	1)	1)	1)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베네주엘라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83일	외국인	제한 없음

주: 1. 국가별로 면세요건에 추가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음.

1) 조세협약 7조에 따라 사업이윤으로 간주.

자료: *US Tax Treaties*, Pub 901, IRS.

교육 분야도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교육, 훈련 혹은 연구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체류하면서 교육, 의료, 자선, 종교, 과학 그리고 문학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생활비 그리고 상금 등은 금액 제한 없이 최대 5년간 면세가 가능하다. 이외 이러한 한국인이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는 보수도 2,0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 교육기관에서 최대 2년간 체류하면서 연구 혹은 강의하고 보수를 받으면 소득세 면세가 가능하다. 이외 외국기업의 피용인으로 미국 단체로부터 기술이나 전문직 지도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보수는 1년간 최대 5,000달러까지 면세된다(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0,000달러).

〈표 Ⅲ-4〉는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 있어서 조세협약상의 감면세율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득은 3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고 이에 해당한 세금을 납부하지만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는 감면된 세금을 납부한다.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

관성이 없는 이자를 지급받는 외국인이 미국 은행, 금융기관 예금계좌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비록 미국 소득이지만 원칙적으로 소득세로부터 면세된다. 이외 1984년 이후 발행된 일부 채권에 대한 투자소득도 면세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대개 12%의 감면세율을 적용받고 미국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소득과 산업체 로열티는 15%, 영화 등 로열티는 10% 그리고 자본 양도이익과 연부금은 0%를 적용받는다. 이에 비하면 일본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10% 그리고 산업체 로열티로 0%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많은 유럽 국가의 경우 배당과 부동산 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0%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III-4〉 개인 서비스를 제외한 미국 소득의 조세협약 (원천징수) 서울(2009년)

(단위: %)

납세자의 거주지국	일반 이자 소득	부동산 대출 이자	CFC에 지급한 이자	배당		자본 양도 이익	산업체 로열티	저작권		부동산 소득 (천연자원)	연부금 (사회보장금)
				미국 회사	직접배 당비율			영화, TV	기타		
호주	10	10	10	15	5	30	0	5	5	30	0(30)
오스트리아	0	0	0	15	5	0	0	10	0	30	0(30)
방글라데시	10	10	10	15	10	0	10	10	10	30	0(30)
바바도스	5	5	5	15	5	0	5	5	5	30	0(30)
벨기에	15	15	15	15	5	0	0	0	0	30	0(30)
캐나다	10	10	10	15	5	30	0	10	0	30	15(0)
중국	10	10	10	10	10	30	10	10	10	30	0(30)
사이프러스	10	10	10	15	5	0	0	0	0	30	0(30)
체코	0	0	0	15	5	0	10	0	0	30	0(30)
덴마크	0	0	0	15	5	0	0	0	0	30	30(30)
이집트	15	30	15	15	5	0	0	0	15	30	0(0)
에스토니아	10	10	10	15	5	0	5	10	10	30	0(30)
핀란드	0	0	0	15	5	0	0	0	0	30	0(30)
프랑스	0	0	0	15	5	0	5	0	0	30	30(30)
독일	0	0	0	15	5	0	0	0	0	30	0(0)
그리스	0	0	30	30	30	30	0	30	0	30	0(30)
헝가리	0	0	0	15	5	0	0	0	0	30	0(30)
아이슬란드	0	0	0	15	5	0	0	30	0	30	0(30)
인도	15	15	15	25	15	30	10	15	15	30	0(30)
인도네시아	10	10	10	15	10	0	10	10	10	30	15(30)
아일랜드	0	0	0	15	5	0	0	0	0	30	0(0)
이스라엘	17 ½	17 ½	17 ½	25	12 ½	0	15	10	10	30	0(0)
이탈리아	15	15	15	15	5	0	10	8	5	30	0(0)
자마йка	12 ½	12 ½	12 ½	15	10	0	10	10	10	30	0(30)
일본	10	10	10	10	5	0	0	0	0	30	0(0)
카자스탄	10	10	10	15	5	0	10	10	10	30	0(30)
한국	12	12	12	15	10	0	15	10	10	30	0(30)
라트비아	10	10	10	15	5	0	5	10	10	30	0(30)
리투아니아	10	10	10	15	5	0	5	10	10	30	0(30)
룩셈부르크	0	0	0	15	5	0	0	0	0	30	0(30)
멕시코	15	15	15	10	5	0	10	10	10	30	0(30)
모로코	15	15	15	15	10	0	10	10	10	30	0(30)
네덜란드	0	0	0	15	5	0	0	0	0	30	0(30)
뉴질랜드	10	10	10	15	15	0	10	10	10	30	0(30)
노르웨이	0	0	0	15	15	0	0	0	0	30	0(30)
파키스탄	30	30	30	30	15	30	0	30	0	30	0(30)
필리핀	15	15	15	25	20	0	15	15	15	30	30(30)
폴란드	0	0	0	15	5	0	10	10	10	30	30(30)
포르투갈	10	10	10	15	5	0	10	10	10	30	0(30)
루마니아	10	10	10	10	10	0	15	10	10	30	0(0)

〈표 III-4〉의 계속

(단위: %)

납세자의 거주지국	일반 이자 소득	부동산 대출 이자	CFC에 지급한 이자	배당		자본 양도 이익	산업체 로열티	로열티		부동산 소득(천연 자원)	연부금 (사회보장금)
				미국 회사	직접배 당비율			영화, TV	기타		
러시아	0	0	0	10	5	0	0	0	0	30	0(30)
슬로바키아	0	0	0	15	5	0	10	0	0	30	0(30)
슬로베니아	5	5	5	15	5	0	5	5	5	30	0(30)
남아공	0	0	0	15	5	0	0	0	0	30	15(30)
스페인	10	10	10	15	10	0	8	8	5	30	0(30)
스리랑카	10	10	10	15	15	0	0	10	10	30	0(30)
스웨덴	0	0	0	15	5	0	0	0	0	30	0(30)
스위스	0	0	0	15	5	0	0	0	0	30	0(15)
태국	15	15	15	15	10	30	8	5	15	30	0(30)
토바고	30	30	30	30	30	30	15	30	0	30	0(30)
튀니시아	15	15	15	20	14	0	10	15	15	30	0(30)
터어키	15	15	15	20	15	0	5	10	10	30	0(30)
우크라이나	0	0	0	15	5	0	10	10	10	30	0(30)
영국	0	0	0	15	5	0	0	0	0	30	0(0)
베네주엘라	10	10	10	15	5	0	5	10	10	30	0(30)
기타 국가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30)

주: 1. 미국 사업과 실질적 연관이 없는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은행 등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와 일부 보험회사가 소장한 계좌로부터 지급된 이자소득은 면세됨.

2. CFC: 피지배 외국주식회사.

자료: US Tax Treaties, Pub 901, IRS.

라.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 과세제도

주식회사의 경우 배당은 (이중) 과세되는 반면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로 인하여 부채를 이용한 자금 조달을 선호할 수 있다. 또한 배당과 이자소득이 다른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거나 면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국제간의 거래에서는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상의 차이를 이용하여 주주들이 자본이 아닌 부채를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숨겨진 자본화(thin capitalization)를 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부채비율이 존재하면 부채에 대한 이자가 자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독립된 제3자가 과연 같은 조건의 부채를 대여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도한 부채에 해당하는 이자를 채무자의 과세대상 이익으로 간주한다(arm's length approach). 물론 이러한 기준은 모호할 수 있으므로 여타 사실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채라고 지칭된 채무가 부채보다는 자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경우 국세청이 이를 주식으로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이자비용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자 및 원금 지급은 관련자(related parties)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된다(Sec. 385). 특히 사내에 유보된 이윤의 한도 내에서 이자비용이 배당으로 취급되고 추가 비용은 자본의 반환과 양도소득으로 처리된다.

이 밖에도 피지배 미국회사(controlled corporation)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미국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외국의 관련자가 제공 혹은 보장한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도 공제가 제한된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는 미국 회사의 부채-자본비율이 1.5 : 1을 초과하면 '과도한 이자비용'은 현재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되어 아래 50% 요건에서 공제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 그러나 그 이하의 부채비율에서는 현재 공제가 가능하다. 과도한 이자비용은 대략 조정된 과세소득의 50%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이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과소자본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형식보다는 각각의 상황과 사실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substance over form). 기존 판례에 의하면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명칭, 만기기간의 유무, 대여 조건, 이자지급 자금의 성격, 채권자의 경영 참여, 관련자들의 의도, 부채-자본비율, 채권자와 주주의 이해관계, 제3자로부터의 주식회사 부채확보 능력 등을 고려한다. 이 가운데 부채-자본비율의 경우 국세청이 일률적인 지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3~4 : 1의 비율이 용납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마. 역외소득에 대한 특혜규정

오랫 동안 미국정부는 미국산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한 바 있다. 즉, 1971년 국제 판매 미국회사(DISC,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에 대하여 과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세법조항을 도입하였고 GATT에서 이러한 제도가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있자 1984년 해외 판매회사(FSC, Foreign Sales Corporation) 조항을 신설하였다. 연후 2002년과 2004년 해외 판매회사와 역외소득 면제제도(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가 다시 WTO에서 수출보조금으로 판명되자 수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내 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국내생산 공제조항을 도입한 바 있다.

즉, 형식은 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미국 국내생산 공제(U.S. production activities deduction)가 있다. 이는 사업체 형태와 관계없이 미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하여 창출되는 순수입의 일정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법인세 공제에서 논의하였다.

1) 해외판매 주식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

외국에 설립된 미국기업의 해외거래 소득(foreign trade income) 중 일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Sec. 921~927).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000년 WTO의 보조금 협정(수출지원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정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일부 해외 거래소득에 해당하는 역외소득을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을 신설한 바 있으나 이 또한 위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총소득에서 배제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득은 배제될 경우 외국 거래소득의 15%, 외국 거래 총수입의 1.2% 그리고 외국 판매 및 임대수입의 30% 중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금액을 의미한다(Sec. 114).

한편 국제 판매 미국회사(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의 경우 법인세가 면세되고 주주 차원에서는 과세를 연기 받을 수 있다. 즉, 자격이 있는 수출품 대금 중 1천만달러나 그 이하의 금액에 기인하는 주주의 소득은 과세가 지연될 수 있는데 다만 연기된 세금의 이자는 일반 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Sec. 995(f)).

외국판매회사(FSC)는 외국에 설립된 회사로 주주가 25명 이하이고 기타 요건을 충

족하는 회사로서 이들 기업의 외국 거래소득은 면세된다. 해외 거래소득은 외국에서의 거래 수입에 기인하는 총소득을 의미한다(Sec. 923). 해외거래 수입에는 수출품⁷⁹⁴⁾ 매매나 처분,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사용을 위한 수출품 임대 그리고 해외에서의 엔지니어링과 건축 서비스 등이 있다.

이외 해외거래 수입으로 간주되려면 회사 경영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일정 부분의 거래 판촉과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져야 면세가 가능하다(Sec. 924(d))⁷⁹⁵⁾. 또한 외국 판매회사(FSC)가 외국에서 거래의 판매과정에 참여하고 해외에서 지출한 직접비용의 50%(85%) 이상을 외국 판매회사가 지급하여야 한다(foreign economic process rules).

2) 해외무역소득 면제(Extraterritorial Income exclusion)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사용되는 적격의 자산(qualified foreign trade property) 판매, 교환, 임대 혹은 처분 및 이로 인한 서비스나 미국 이외 지역에서 수행되는 건설용 엔지니어링 및 설계 서비스 그리고 관리 서비스 등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개인과 주식회사 그리고 파트너십 등을 포함하는데 단 외국판매회사(FSC)가 연루된 일부 거래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⁷⁹⁶⁾.

적격의 자산이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 혹은 소비되기 위하여 소지한 물품으로 50% 이상의 공정한 자산가치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50% 이상이 미국 내 직접 노동 비용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들 물품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데 만약 미국 국내 주식회사나 미국 시민 등이 생산한 제품이면 미국 내 생산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무역소득 면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거래의 주요한 과정이 외국에서 이루어져야

794) 수출품이란 외국판매회사가 아닌 제3자가 미국에서 생산하여 수출되고 수입된 부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이어야 한다(Sec. 927(a)(1)).

795) 해외거래 수입이 500만달러 이하인 소규모 해외판매회사(small FSC)에게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796) 이는 해외무역소득과 외국판매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 소득에 면·공제가 이중으로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다. 즉, 미국 이외 지역에서 납세자 혹은 그 직원 등이 광고 이외 제품 판매에 관여하고 해당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판매비용의 50% 이상이 해외비용이어야 한다. 단 해외무역으로 인한 총수입이 500만달러 이하면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무역소득은 전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되면 과세소득이 외국무역소득의 15%, 해외무역 총수입의 1.2% 혹은 외국 판매 및 임대소득의 30% 중에서 가장 많이 줄어드는 금액을 의미한다(qualifying foreign trade income, Form 8873).

IV. 파트너십과 S 법인 주식회사

1. 파트너십(Partnership)⁷⁹⁷⁾

가. 파트너십의 유형과 특성

파트너십은 군소업체부터 주요 증권시장에서 파트너 지분이 거래되는 파트너십까지 다양한 부류가 존재한다. 파트너십에 대한 내국세 규정은 Subchapter K(Sec. 701~777)에 있는데 일반 파트너십과 달리 대형 연합 파트너십(large syndicated partnership)의 경우 선택을 하면 다른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두 사람(혹은 사업단체) 이상이 이윤을 목적으로 함께 사업을 수행하고 이익을 공유하면 연방소득세 과세 목적상 파트너십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ec. 761(a)). 그러나 단순히 비용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자산을 공동 소유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공동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주식회사와 달리 파트너십은 법적 문서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파트너십 소득, 손실, 공제 등을 파트너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지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artnership distributive shares). 만약 배분율이 사전에 약정되지 않으면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파트너십 지분(partnership interest)에 따라 배분율이 결정된다. 또한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경제적 효과(substantial economic effect)가 있으면 파트너십 약정에 의한 배분이 무시되고 지분에 따라 과세항목이 할당될 수도 있다⁷⁹⁸⁾. 이는 납세자가 파트너십을 통한 자의적인 배분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왜곡하

797) 파트너십은 합명회사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동업 혹은 조합기업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합자회사는 미국 유한 파트너십에 해당한다.

798) Sec. 704(a), (b), (d), Reg. Sec. 1.706-1(c)(2)

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산, 유산기금이나 주식회사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될 수 없다⁷⁹⁹⁾. 이외 1996년 설립된 조직으로 법인단체,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정부가 소유한 기관, 보험회사, 일부 은행, 면세기관, 부동산 투자기금 등도 파트너십이 아니다. 내국세법에서는 파트너를 파트너십의 회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 관례와 법원 관례상 파트너는 개인, 유산, 기금, 주식회사도 될 수 있다. 파트너십은 반드시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데 대형 연합 파트너십의 파트너는 수천 명이 될 수 있다.

파트너십은 개별 주법에 따라 권리와 제약이 규정되는데 주법은 표준 파트너십법(Uniform Partnership Act)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법은 서로 유사하다. 파트너에는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와 유한 파트너(limited partner)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과세 차원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과 권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 파트너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 파트너들이 선정한 파트너에게 경영을 맡길 수도 있다. 그 대신 일반 파트너는 회사의 부채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유한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가 최소한 한 명이 있고 이외 유한 파트너가 최소한 한 명이 있어야 한다. 유한 파트너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파트너십이 파산해도 자신의 투자지분과 미리 출연하기로 약속한 금액 이외에는 책임이 없다. 유한 파트너십은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고 세금은 납부하는 데 유용하다. 한 예로 자본금이 적은 주식회사를 일반 파트너로 내세우면 파트너십의 이점을 살리는 대신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내국세법에서는 파트너십 지분이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대형 유한 파트너십을 과세 목적상 주식회사로 재분류하기도 한다.

각 파트너는 자신과 본인 감독 아래 있는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파트너십이 있다(LLP)⁸⁰⁰⁾. 과거 회계사나 법률 서비스 등 전문업체들은 유한책임회사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 파트너십으로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유한 책임 파트너십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는데 여기서는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나 다른 파트

799) 이외 비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회사나 일정 요건의 투자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800)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1991년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합법적 개체성을 인정하였다.

너가 감독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최근 약 20개 주에서 일반 파트너에게도 유한 책임을 허용하는 유한 파트너십을 도입한 바 있다(LLLP)⁸⁰¹⁾. 주지하다시피 유한 파트너십에서는 최소한 한 명의 일반 파트너가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데 유한 파트너십의 일반 파트너는 유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업형태는 개인 서비스회사에 대하여 유한책임회사(LLC)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100명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된 대형 파트너십이 선택을 하면 간소화된 세금신고 할 수 있는 대신 회사가 청산될 때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large partnership election). 다만 서비스 업체나 상품거래 업체는 대형 파트너십을 신청할 수 없다. 미국 의회는 납세자가 유한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우선 파트너십 지분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파트너십(PTP)⁸⁰²⁾의 경우 내국세법 7704조에 따라 일반 주식회사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총소득의 90% 이상이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인 경우 C 법인 주식회사가 아닌 파트너십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1987년 이전에 설립된 상장 파트너십은 1997년 이후부터 사업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파트너십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유한책임회사(LLC)⁸⁰³⁾는 원칙적으로 과세 목적상 파트너십으로 간주되지만 개별 소유주(member)는 유한 책임만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과거에는 지분의 양도 가능성, 유한책임, 중앙집권적 관리방식 등 회사의 조직이나 사업형태에 따라 연방소득세 목적상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로 과세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6년부터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로 과세될 수 있도록 되었다(check-the-box regulation)⁸⁰⁴⁾. 유한책임회사가 과세 목적상 파트너십으로 선택을 하면 회사 소득, 양도손익, 손실, 공제 등 다양한 과세항목이 주주에게 양도되어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이외 청산과 지분매각에 대한 규정도 파트너십과 동일하다.

801) Limited Liability Limited Partnership.

802) Publically Traded Partnership.

803) Limited Liability Companies: 1977년 와이오밍주에서 처음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합법적 개체성을 인정하였다.

804) 그러나 소유주가 1명인 유한회사는 연방소득세 과세 목적상 자영업자로 간주된다.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십의 장점과 S 법인의 장점을 결합한 사업형태로 볼 수 있다. 즉, 유한책임회사는 S 법인과 같이 주주의 수, 주식종류의 수 혹은 관련 업체의 투자 방식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주(member)는 유한 파트너와 달리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 704조에 따라 회사소득, 손실이나 공제를 소유주들에게 특별 할당(special allocation)할 수 있고 소유주의 회사 지분 장부가액은 회사 부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일반 파트너십의 수는 감소한 반면 유한책임회사의 수는 급증한 바 있다. 또한 손실이 예상되는 창업 초기에는 유한책임회사로 등록하여 손실은 소유주 차원에서 공제받고 추후에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나. 파트너십 결성

파트너십을 결성함에 있어서 자산을 파트너십 지분과 교환하는 경우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파트너십 지분을 제공받을 경우 과세상 대우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시장가격과 다를 수 있다. 파트너십은 이와 같은 내재적 손익(공정가격-장부가액)을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자산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⁸⁰⁵⁾. 또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일 경우 상각공제는 이러한 내재적 손익을 감안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1) 자산 출자

두 사람 이상이 법인화되지 않은 사업을 같이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파트너십이 결성된다. 이 때 파트너가 파트너십 지분(partner's basis of interest)을 대가로 파트너십에 자산을 출자하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파트너가 새로 소유하게 된 파트너십의 장부가액과 파트너십이 보유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동일하다(Sec.

805) Reg. Sec. 1.704-3.

721). 여기서 지분은 자본지분(capital interest)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식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⁸⁰⁶⁾.

이와 같은 손익 불인정은 자본지분과 자산의 교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산은 현금, 빌딩 등 유형자산과 상표권, 체인점 영업권, 임차권 등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그러나 서비스는 자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파트너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보답으로 지분을 제공받으면 일반소득으로 과세된다(Sec. 83). 만약 파트너가 제공받은 자본지분의 공정가액이 대신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격을 초과하면 그 차액은 파트너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수로 간주된다.

자산 출사에서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법인화된다면 투자회사로 간주되는 파트너십에 대한 출자 둘째, 자산 출자라기 보다는 판매로 간주될 수 있는 약정에 따라 자산을 제공하고 그 이후 현금 등(혹은 소득이나 이익의 할당)을 지급받는 경우 셋째, 파트너의 부채를 파트너십이 대신 책임지는 조건의 자산 출자가 이에 해당한다(Sec. 721(a)).

우선 투자회사로 간주될 수 있는 파트너십의 경우 자산을 양도한 파트너의 자산 지분이 다각화되는 효과가 있을 때만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Sec. 721(b)). 이 경우 파트너는 마치 주식을 매각한 경우처럼 투자 파트너십에 대한 자산 양도로 실현된 이익을 인정한다(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두 번째 경우는 파트너십을 위한 자산 교환이 아니라 위장된 자산 매각(disguised sales)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자산을 파트너십에 제공하여 파트너가 되고 난 직후 이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거래에 따른 이익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Sec. 707(a)(2)(A)).

자산 출자가 없었다면 배당도 없으며 파트너십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파트너의 배당 권리가 결정되면 위장된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관련 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위장된 거래를 결정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산 출자와 배당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지고 위장된 자산 매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위장된 거래로 간주된다. 반대로 2년 이상의 기간이 있으며 관련 사실에서 위장된 거래라는 증거가 없으면 일반출자로 간주된다. 파트너가 자산을 출자하고 출자 시점으로부터 2년을 전후하여 파트너십으

806) 물론 파트너 지분은 일반 자산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조건하에 거래될 수 있고 납세자는 처분 시점의 실현된 수입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로부터 현금이나 기타 보수를 제공받으면 관련 사실을 Form 8275에 기술하고 소득신고를 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⁸⁰⁷⁾.

한편 파트너의 부채를 파트너십이 대신 책임지는 경우는 다른 파트너들이 부담하는 부분만큼 현금배당으로 간주되고 반대로 파트너가 회사 부채를 책임지는 경우는 현금출자로 취급된다. 이러한 원칙은 파트너십의 형성, 청산, 지분 매각과 배당에 공히 적용된다. 우선 파트너십을 형성할 당시 자산을 제공하는 대신 파트너의 부채를 회사가 책임지면 파트너가 이익을 인정해야 할 수 있다(손실은 적용되지 않음). 개별 파트너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담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가 증감하는 것이 지분의 장부가액에 반영된다.

즉, 개별 파트너의 장부가액은 마치 현금을 출연한 것처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회사 부채의 증가액만큼 증가한다. 두 번째로 부채를 파트너십에 떠넘긴 파트너는 마치 회사가 현금을 배당한 것처럼 본인 지분의 장부가액이 부채금액만큼 감소한다. 만약 현금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파트너는 초과분을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결국 파트너십 형성에서 자산을 양도하는 파트너는 자산의 출자와 함께 기존 파트너십 채무(혹은 다른 파트너가 회사에 떠넘긴 부채)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만큼을 현금 출자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파트너 본인이 회사에 떠넘긴 부채가 있다면 다른 파트너가 대신 부담하는 금액만큼 현금배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파트너십이 대신 책임지는 파트너 부채는 현금배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파트너가 인정해야 하는 이익의 성격은 파트너십 배당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파트너 지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현금배당은 지분 매각에 따른 이익으로 간주되는데 지분은 일반적으로 자본자산으로 취급되므로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은 현금을 포함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과 같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이익을 인정하면 그만큼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이 증가해야 한다. 다만 파트너가 부채를 파트너십에 떠넘겨 인정한 이익에 대해서는 파트너의 장부가액이 변하지 않는다.

807) Reg. Sec. 1.707-3(c)(2).

한편 파트너에게 자산이 자본자산이거나 1231조 자산인 경우 파트너십 지분의 보유 기간은 자산을 양도한 파트너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⁸⁰⁸⁾. 그러나 재고와 같이 일반소득 자산인 경우 파트너십의 보유기간은 자산을 출자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이외 파트너십 입장에서 자산 출자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자받은 자산에 대한 파트너십의 장부가액은 자산을 양도한 파트너의 장부가액과 동일하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이익을 인정하면 그만큼 파트너십의 장부가액이 증액된다(Sec. 723). 다만 파트너가 부채를 파트너십에 떠넘겨 인정한 이익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의 장부가액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장부가액뿐만 아니라 일부 자산의 경우 추후 파트너십이 자산을 처분할 때 인정하는 손익의 성격이 애초 자산을 양도한 파트너에게 자산이 귀속되어 있을 때 자산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내국세법 724조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일반소득(자본손실)이 자본소득(일반손실)으로 변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파트너에게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unrealized gain)⁸⁰⁹⁾, 재고, 자본손실 자산인 자산이 파트너십에게 양도되고 그 이후 처분되면 그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Sec. 724(d)(1)). 한 예로 파트너 입장에서 재고자산이면 그러한 성격은 5년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5년 이내에 파트너십이 자산을 처분하면 비록 파트너십 입장에서 자본자산일 지라도 이는 일반소득으로 인정된다.

자산을 출자할 당시 성격으로 자산 성격이 고정되는 자산 중에는 자본손실 자산이 있다. 이러한 자산은 파트너가 파트너십에게 자산을 제공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면 자본손실이 발생하는 자산을 말한다. 출자 시점에서 5년 이내에 파트너십이 이를 매각하여 발생한 손실은 파트너가 자산을 출자한 시점에 이를 매각하였다면 발생하였을 손실만큼 자본손실로 간주되어야 한다. 만약 파트너십의 손실이 파트너가 자산을 출자한 시점에 인정했어야 할 손실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파트너십 입장에서 결정되는 해당 자산의 성격을 따른다. 즉, 파트너십이 보유한 결과 해당 자산이 일반소득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초과분은 일반손실로 취급된다.

808) Reg. Sec. 1.1223-1(a).

809) 한 예로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파트너가 보유한 매출채권을 파트너십이 추후 처분하여 얻은 손익은 보유기간이나 파트너십 입장에서 결정되는 자산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반손익으로 간주된다.

파트너십이 출자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자산을 양도한 파트너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이 규정은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었던 당시 자산의 성격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한편 내국세법 1245조와 1250조 감가상각 환수규정도 파트너가 자산을 양도할 당시 이익을 인정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환수 가능성은 파트너십으로 이월되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동 규정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파트너십이 형성된 이후 나중에 파트너가 자산과 파트너십 지분을 교환해도 지금까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대부분의 경우 세금 없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80% 지배 규정으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발족하고 난 이후 교환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외 파트너십 조직비용은 자본경비로 간주되어 사업 창립연도부터 180개월간 감가상각된다. 다만 경비 중 5,000달러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즉각 공제할 수 있는데 조직비용이 50,0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즉각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2004년 이전에 지출된 조직비용은 이러한 즉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으며 상각기간은 60개월이었다. 감가상각하지 못한 경비는 파트너십을 청산하거나 종료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조직비용은 각종 변호사와 회계사 비용 등을 포함하는데 지분 발행 및 매매비용은 조직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외국 파트너십에 자산을 출자하고 지분을 받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신고해야 할 수 있다(Form 8865). 자산 출자 직후 외국 파트너십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지난 12개월간 출자한 자산의 공정가격 합계액이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하다.

2) 서비스 출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파트너십 지분을 받은 파트너는 현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한이 없는 지분을 제공받은 파트너는 즉시 파트너십 지분의 공정가격에서 파트너가 회사에 제공한 여타 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한다(Sec. 83). 그러나 제한이 있는 지분을 제공받으면 이러한 조건이 해소되거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을 때까지 소득 인정을 연기할 수 있다.

파트너십 지분은 자본지분과 이윤(소득)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 파트너가 서비스

대가로 두 가지 지분을 동시에 받거나 이윤지분만을 받을 수 있다. 자본지분은 파트너십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분을 받은 시점에 청산된다면 파트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평가된다. 만약 파트너십 자산의 매각대금이나 자산 그 자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파트너가 자본지분(capital interest)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⁸¹⁰.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현재 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이 미래 소득을 배당받을 수 있으면 이윤지분(profit interest)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비스를 제공한 보답으로 자본지분을 제공받으면 파트너는 지분의 공정시장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과세연도에 신고해야 한다⁸¹¹. 그러나 이윤지분의 경우 미래에 파트너십이 소득을 창출하면 그 때 파트너 차원에서 과세하므로 이윤지분을 제공받을 때 이를 과세할지가 불명확하다. 미국 조세법원은 이윤지분을 제공받고 이를 매각하면 매각금액은 일반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해 바 있다. 이는 내국세법 61조에 따라 서비스 대가로 제공받은 모든 보수는 과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윤지분의 공정시장가격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과세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Rev. Proc. 93-27). 그 결과 확실한 채권이나 부동산 임대 등 안정적인 파트너 자산으로부터 상당히 확실하고 예상 가능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분이거나 지분을 제공받고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혹은 상장된 파트너십의 유한 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⁸¹². 이외의 경우 이윤지분의 공여는 파트너나 파트너십 차원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파트너십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한 지분에 대하여 일반 경비나 자본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비용으로 공제하는 연도는 파트너가 제공받은 지분을 소득에 포함하는 과세연도이다⁸¹³. 또한 파트너십은 서비스를 제공한 파트너를 제외한 다른 파트너들에게 일반경비 공제나 자본경비 상각공제를 배분한다. 이는 다른 파트너들이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는 형태로 경비를 지출하였기 때문이다.

810) Reg. Sec. 1.704-1(e)(1)(v): 원칙적으로 자산이 공정가격에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파트너십 종료에 따라 파트너에게 지급될 때 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본 지분이며 자본지분을 제외한 지분을 이윤지분이라고 한다.

811)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자본지분은 Restricted Property Rule 규정을 적용받는다(IRS Publication 525).

812) Rev. Proc. 93-27, 1993-2 C. B. 343.

813) Reg. Sec. 1.83-6(a)(1).

만약 서비스가 자본경비로 처리해야 할 성격이라면 파트너십은 서비스 파트너가 지분을 공정가격으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시점에 같은 금액을 관련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증액하고 그 이후 감가상각 처리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금이 아닌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면 자산의 공정가격과 장부가액 차이만큼을 손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파트너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을 제공하면 서비스를 제공한 파트너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비율에 대하여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파트너십이 손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 자산의 장부가액도 조정되어야 한다⁸¹⁴⁾.

예를 들면 20,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갑이 A 파트너십의 지분 50%를 제공받은 상황에서 파트너십 A가 보유한 자산들의 전체 공정가격은 40,000달러이고 장부가액이 10,000달러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갑은 20,0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으로 인정하고 지분의 장부가액도 그 만큼 인정한다. 파트너십은 갑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들에 대한 이익 15,000달러($0.5 \times (40,000 - 10,000)$ 달러))를 인정해야 하며 파트너십이 보유한 개별 자산의 손익을 환산하는데 손익의 성격은 개별 자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15,000달러의 이익은 파트너에게 분배되며 파트너십 자산의 장부가액은 15,000달러 증가한 25,000달러가 된다.

3) 가족 파트너십(family partnership)

파트너는 배분율(distributive share)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된 파트너십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족 사이에 소득을 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을 파트너로 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해당 가족의 파트너십 지분이 자본지분(capital interest)이며 해당 자본이 파트너십 사업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⁸¹⁵⁾이고 해당 가족이 자본지분의 진실한 소유주이어

814) Reg. Sec. 1.83-6(b).

815) material income producing factor: 사업소득의 상당 부분이 자본의 이용으로 창출되면 이 요건을 충족한다.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재고, 기계설비 투자가 필요하면 자본이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주된 소득이 파트너십 피용인 등이 수행한 개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나 보수라면 자본이 실질적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 아니다.

야 한다⁸¹⁶⁾. 만약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이 아니라면 신의 성실 원칙 아래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고 각자 자본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공유하기로 해야 한다.

자본 지분이란 소유주가 파트너십 활동을 정리하거나 파트너십이 청산할 때 자산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만약 해당 가족이 다른 가족 파트너로부터 시장가격에서 지분을 인수하면 소유권 논란이 없을 것이나 증여를 통하여 지분을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증여를 한 파트너가 지분을 상당 부분 통제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세금이 과세된다. 증여자가 지분을 대부분 통제하는 데 대한 기계적인 검증 기준은 없으나 증여자가 증여한 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통제하거나 피증여자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등이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⁸¹⁷⁾. 증여자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상당 부분 통제하지 않으면 피증여자는 파트너로서 자신에게 할당된 소득 등 과세항목을 신고할 수 있다⁸¹⁸⁾.

한편 기증으로 이루어진 지분에 있어서는 파트너십 소득이 적절하게 증여자와 피증여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⁸¹⁹⁾. 특히 증여자가 파트너십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가 결정되고 난 이후 파트너십 소득은 상대적인 자본지분에 따라 증여자와 피증여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Sec. 704(e)(2)). 이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이 파트너들 임의의 합의에 의한 특별 배당(special allocation)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무시된다.

다. 파트너십 지분의 장부가액(Tax basis)

파트너십 지분은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타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매각하여 실현된 수입과 지분 장부가액의 차이에 대하여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장부가액의 조정은 파트너십 소득이 한번만 과세되도록 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세 목적상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이 청산될 때 자산을

816) 서비스에 있어서는 자본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17) Reg. Sec. 1.704-1(e)(2)(ii).

818) 일반 소득세 규정에서 보듯이 14세 이하 자녀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부모의 한계세율로 과세된다(kiddie tax).

819) 여기서 다른 파트너의 배분율은 문제가 아니며 증여자와 피증여자 사이의 분배가 대상이다.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기록하는 자산배당의 장부가액(capital account)과 다르게 산정된다.

과세 목적상의 지분 장부가액(tax basis for partnership interest)은 파트너 출자금과 파트너십의 부채, 손익, 채무 그리고 배당에 대한 일람표이다. 따라서 파트너십 운영에 따른 결과는 장부가액의 조정을 유발하며 파트너십에 추가로 출자를 하거나 반대로 파트너십이 배당을 지급하면 장부가액에서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 예로 지분의 장부가액은 파트너의 배분율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과거에 배정되어 파트너 차원에서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파트너십 운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장부가액의 증대로 반영되어 나중에 파트너십이 청산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1) 초기 장부가액

파트너십 지분의 초기 장부가액(beginning basis)을 산정하는 방식은 지분을 취득한 방식에 따라 다르다. 즉, 지분을 매입, 기증 혹은 유산으로 받은 상황에 따라 평가방식이 다르다.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파트너십 지분을 받을 때 지분의 초기 장부가액(beginning basis)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이미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파트너의 지분을 매수하면 새로운 파트너의 장부가액은 구입가격으로 평가된다(부채를 인수할 경우 이를 반영)⁸²⁰⁾. 유산으로 얻는 지분은 상속인 사망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되며 증여의 경우 증여를 한 사람의 장부가액이 그대로 이전된다. 이러한 경우 물론 기존 파트너가 할당받은 파트너십의 부채도 포함이 된다. 요약하면 매입방식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 파트너십 지분 장부가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장부가액과 부채

파트너십 부채가 장부가액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살펴보면 우선 파트너가 파트

820) 지분을 판 파트너는 판매가격과 지분의 차액을 양도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분의 처분으로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면 이 부분도 양도손익에 포함된다.

너십에 현금을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가 있다. 우선 파트너십 부채에 관한 파트너의 지분(partner's share of liability)이 증가하면 이는 파트너가 현금을 출연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는 파트너십의 부채가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고 혹은 파트너의 이윤지분(profit interest)이나 손실 지분(loss interest)이 증가하여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파트너십이 대출을 받으면 파트너의 장부가액이 증가한다. 두 번째로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책임을 떠맡은 경우에도 현금 출자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현금을 배당한 경우로 간주되어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이 감소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파트너 지분이 감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파트너십이 파트너의 부채를 대신 책임지는 경우이다.

〈표 IV-1〉 파트너십 지분 장부가액의 결정방식

	장부가액의 변화
취득방식	
자산출자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투자 파트너십 출자인 경우 인정한 양도이익)
서비스 제공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인정 소득
매입	비용
증여	기증자 장부가액+증여세
유산	사망시점의 공정가격 혹은 대체평가일 가격
부채효과	
장부가액 증액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파트너 지분 증가 파트너가 개인적으로 대신 책임지는 파트너십 부채
장부가액 감액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파트너 지분 감소 파트너십이 대신 책임지는 파트너의 개인 부채
운영실적효과	
장부가액 감액	파트너에게 할당된 일반 소득과 별도항목, 비과세항목 추가 출자 출자 이전 인정된 양도소득
장부가액 감액	파트너십으로부터의 배당 파트너에게 할당된 일반 손실과 별도 손실과 공제항목(과세목적상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 경비) 출자 이전 인정된 양도손실

파트너십 부채가 어떻게 파트너의 지분에 할당되는지는 부채와 파트너 성격에 따라 다르다(partner's share of liability). 일반 부채(recourse debt)의 경우 파트너십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파트너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채로 분류된다⁸²¹⁾. 이는 일반 부채의 경우 담보물을 팔아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잔액을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유한 책임성 부채(nonrecourse debt)⁸²²⁾는 담보물 이외 책임이 없다.

한편 유한 파트너는 자신이 애초에 출자한 금액(지분 장부가액)과 추가로 출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이외에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일반부채의 경우 유한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은 유한 파트너가 경제적 손실의 위험(economic loss risk)이 있는 한도에서 증가한다. 이에 비하면 유한 책임성 부채의 경우 유한 파트너의 장부가액은 이윤 지분율(profit interest)에 따라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일반 파트너도 유한 책임성 부채에 대해서는 이윤 지분율에 따라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그러나 일반 부채의 경우 유한 파트너가 할당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부채를 갚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일반 파트너가 일반부채 금액만큼 지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다(Sec. 752). 한 예로 유한 파트너가 추가 출자를 약속하여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없으면 10,000달러의 일반부채에 대해서는 일반 파트너의 장부가액만 10,000달러 증가하지만 만약 유한 파트너가 5,000달러의 추가 출자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면 일반 파트너는 9,500달러만 장부가액에 반영한다. 만약 일반 파트너가 한 명 이상이면 가상의 경제적 손실에 따라 일반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을 조정한다.

(3) 파트너십의 운영실적

내국세법 705조에 의하면 부채의 변동 이외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파트너십의 과세소득(손실) 등에 대하여 지분의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특히

821) Reg. Sec. 1.752-1(a).

822) 유한 책임성 부채란 부채 담보물을 팔아도 대출금을 전부 회수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잔액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는 부채를 말한다.

파트너십의 과세소득(일반소득과 별도 항목)과 면세소득에 대하여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은 배분율(distributive share)만큼 증가한다. 그 대신 파트너십이 배당하거나 파트너십 손실(일반손실과 별도항목)이 발생한 경우와 과세 목적상 공제되지 않고 자본비용이 아닌 경비⁸²³⁾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파트너의 배분율만큼 감소한다. 다만 장부가액이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조정은 이전에 파트너 차원에서 배분율에 따라 할당되어 이미 과세된 파트너십 소득이 나중에 배당 즉 파트너에게 실제로 지급될 때 과세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면세소득이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나중에 배당되거나 지분을 처분할 때 과세될 수 있다.

내국세법 704(d)조는 파트너가 공제할 수 있는 손실금액은 손실 이전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이 충분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할당된 손실을 전부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추후에 파트너가 출자를 하거나 파트너십이 소득을 창출하거나 혹은 대출을 받아 장부가액이 증가하면 사용하지 못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한 예로 갑의 장부가액이 10,000달러이고 현금 2,000달러를 배당받은 상황에서 갑에게 할당된 자본소득이 3,000달러인 반면 일반손실은 20,000달러라면 갑이 이번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은 12,000달러(10,000+3,000-1,000달러)로 제한된다.

(4) 파트너십 장부가액의 조정

일반적으로 파트너가 지분을 매각 등 처분하거나 파트너 사망으로 지분이 양도되거나 파트너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파트너십이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국세법 754조에 따라 파트너십이 선택하여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고 또는 의무적으로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자산을 배당하면 잔여 자산의 장부가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지만 754조가 적용되면 파트너가 인정한 손익이나 조정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파트너십 자산의 장부가액

823) \$25,000을 한도로 공제 가능한 자본경비(Sec. 197)의 전액을 파트너가 공제하지 못하여도 지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 상향 혹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우선 새로운 파트너가 기존 파트너 지분을 매입하면 장부가액은 매입비용과 파트너십 부채의 배분율로 정해지는데 이 경우 파트너 지분율의 장부가액이 파트너십 자산의 장부가액과 달라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이 선택을 하면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Sec. 743). 이는 새로운 파트너가 지분 매입 당시 공정가격을 지불한 결과 나중에 파트너십이 해당 자산을 매각하여 배당을 하면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동일한 이익에 대하여 두 번 과세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⁸²⁴⁾. 따라서 파트너십이 자산 매각에 따른 배당을 할 때 지분과 자산 장부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새로운 파트너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4년 10월 이후 파트너십 지분을 처분하고 파트너십에게 상당한 내재적 손실(substantial built-in loss)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당한 내재적 손실이란 파트너십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격을 25만 달러 이상 초과할 때 발생한다. 이는 지분을 매각한 양 당사자가 이중으로 손실을 공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특히 지분을 매입한 파트너의 자산 장부가액이 하향 조정되어 추후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손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파트너십의 자산이 현금 이외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선택적 혹은 의무적 장부가액 조정은 내국세법 755조에 따라 각각의 자산에 대하여 복잡한 방식으로 할당되어 이루어진다.

라. 파트너십 소득과세방식

1) 과세원칙

파트너십은 납세주체가 아니며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에게 수익을 분배

824) 즉, 지분을 매각한 파트너가 이미 이러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물론 이후 파트너십이 청산배당을 하게 되면 장부가액의 상향 조정으로 새로운 파트너는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flow-through entity). 그 대신 각 파트너가 자신에게 할당된 파트너십의 소득, 양도이익, 손실, 공제 등을 개인소득(혹은 법인 소득)으로 신고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은 사업결과와 소득 배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며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소득산정을 위하여 과세연도와 회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Form 1065)⁸²⁵⁾.

개별 파트너는 파트너십으로부터 자신에게 할당한 소득의 성격과 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받는다(Schedule K-1). 파트너가 개인, 유산, 기금인 경우 자신에게 배분된 소득과 손실 등을 여타 소득과 손실과 합하여 신고하고 파트너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에는 물론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일반 주식회사와 파트너십 사이에 큰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순영업손실을 즉각 공제하지 못하고 소급 혹은 이월하는 데 비하여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손실은 일정한 제한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파트너 개인 차원에서 다른 소득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분 처분에 따른 손익 결정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소득 과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파트너가 자산을 출연하거나 파트너십 지분을 매입할 때 초기 장부가액을 결정한다.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 자신에게 할당된 부채비율에 따라 지분의 장부가액이 증가한다⁸²⁶⁾. 즉, 지분의 장부가액은 대출금과 매입채무의 변동에 따라 출렁거릴 수 있다. 또한 파트너에게 할당한 파트너십 소득만큼 장부가액이 증가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이 감소한다. 추후 파트너십이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분을 처분할 때 혹은 파트너십이 청산할 때 이러한 장부가액 조정은 이중과세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 한편 장부가액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파트너십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이 된다. 즉, 만약 파트너에게 배당된 손실이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해당 파트너가 이후 충분한 지분을 재취득해야 장부가액에서 공제된다.

파트너십이 소득을 배분하면 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파트너의 장부가액이 지

825) U. S. Partnership Return of Income.

826) 한 예로 갑이 A 파트너십의 50% 지분을 \$10,000에 매입할 당시 \$4,000의 부채가 있었다면 갑이 소유한 지분의 장부가액은 \$12,000이 된다. 이후 파트너십이 \$5,000 손실을 내었으면 갑의 장부가액은 \$9,500로 감소한다.

금액만큼 감소한다(current distribution). 이는 파트너 차원에서 이미 과세를 하였고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이 증가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 배당이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파트너는 초과분에 대한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파트너십이 폐업을 하거나 파트너가 지분을 정리하면 파트너십은 파트너에게 청산배당(liquidating distribution)을 한다. 이 경우에도 배당 지급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해야 파트너가 이익을 인정한다. 파트너는 자신을 지분을 완전히 정리할 때 현금, 재고자산과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만을 받으면 손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연도

파트너십의 과세연도는 개별 파트너가 소득을 신고하는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특히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세법에서는 파트너십 이윤과 자본지분 합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파트너들(majority partners)의 과세연도와 동일한 과세연도를 파트너십이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Sec. 706). 이러한 규정은 과반수 지분 이상을 차지하는 파트너들의 과세연도가 동일할 때 적용된다. 만약 과반수 파트너의 과세연도를 사용할 수 없다면 이윤 혹은 자본지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파트너들(principal partners)의 과세연도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주요 파트너들의 과세연도가 동일하지 않으면 파트너들의 소득을 가장 적게 이연할 수 있는 과세연도를 선택해야 한다. 재무성 규정은 개별 파트너들의 소유지분과 소득을 이연할 수 있는 월수를 기준하여 과세연도의 선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⁸²⁷⁾.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트너십은 일반 역년을 과세연도로 한다. 그러나 사업상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국세청의 승인 아래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도 있다(Rev. Procedure 2002-39). 한 예로 성수기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성수기가 끝나는 시점이 자연적인 사업연도로 이를 과세연도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외 법 제 444조에서 허용된 여타 과세연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앞서 논의한 바 있는 법적으로 요구된 과세연도보다 3개월 이상 늦은 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파트

827) Reg. Sec. 1.706-1.

너십은 내국세법 7519조에 따른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파트너십의 이연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에 1%포인트를 합한 세율을 부과하는 효과가 있다.

과세연도 이외에도 파트너십 차원에서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회계원칙, 감가(모)상각방식 그리고 재고산정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파트너십 차원이 아닌 파트너 개인 차원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세 가지가 있는데 외국세액공제와 채무 소멸에 따른 소득, 광산 탐사경비 환수에 대한 규정으로 각각의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Sec. 703(b)). 한 예로 파트너십 차원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 유정에 대한 감모상각을 수행하지 않고 그 대신 개별 파트너가 상각방식을 결정한다.

3) 과세소득

파트너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도관업체이지만 파트너의 소득신고를 위하여 업체 차원의 과세소득(손실) 등을 산정해야 한다. 파트너십 과세소득은 소득, 이익, 손실 혹은 공제 등 따로 산정, 신고해야 할 항목과 일반소득(손실)로 구분된다. 연후 파트너십은 이렇게 산정된 소득과 공제에 대한 파트너 사이의 배분율을 신고해야 한다. 한편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일반소득, 손실 그리고 별도 항목에 대하여 자신이 할당받은 비율만큼을 소득신고한다. 그 대신 파트너십이 실제로 배당하는 이익은 투자의 환수로 간주되어 비과세되는데 다만 파트너 지분은 조정되어야 한다.

(a) 파트너십의 소득신고

파트너십은 납세주체는 아니지만 파트너십 지분에 대한 파트너 장부가액 조정 등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트너십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Form 1065). 대형 파트너십 신고(large partnership election)를 선택한 업체를 제외한 파트너십의 과세소득은 몇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면 개인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다만 개인에게 허용된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 자선기부금 공제 혹은 운영업손실 이월(소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 파트너십 과세소득은 별도의 항목과 모든 항목을 통합한 일반소득(손실)로 구분되어 작성된다. 내국세법 703(a)조는 파트너십 차원에서 공제가 금지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세액공제, 기부금, 원유가스 감모상각 그리고 운영업손실 이월(소급)금이다. 처음 세 가지 항목은 과세소득 신고에서 따로 기재되어 파트너 차원에서 공제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 운영업손실의 경우에도 파트너 차원에서 공제되므로 파트너십은 운영업손실을 이월할 수 없다. 그 대신 파트너의 손실 지분이 여타 사업소득보다 많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파트너십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별도로 기재해야 할 항목은 702(a)조에 명기되어 있다. 파트너십 소득은 파트너 차원에서 과세되지만 파트너십 차원에서 성립된 과세 성격이 파트너 차원에서도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이들 항목을 따로 명기하는 것이다. 즉, 이들 항목은 주식회사가 아닌 주주가 주식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실현하였거나 혹은 지출한 항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득, 이익, 공제, 손실 혹은 세액공제항목이 주식회사에서 주주로 양도된다고 하여 이들 항목의 과세 성격이 변질되지 않는다. 이들 항목은 배분율에 따라 개별 파트너에게 할당되어 마치 파트너들이 이들 항목을 개인적으로 실현한 것처럼 개인소득세 차원에서 신고하며 과세된다.

Form 1065 Schedule K에 별도로 기재되어야 할 항목에는 ① 단기 자본(양도) 순이익 혹은 손실 ② 장기 자본(양도) 순이익 혹은 손실 ③ Sec. 1231 손익 ④ 자선기부금 ⑤ 배당수입공제 대상인 배당 ⑥ 외국 납부세액 ⑦ 재무부 규정 Reg. Sec. 1.702-1(a)(8)에 명기된 항목: 감·면세 이자소득과 특별 항목(special allocation)⁸²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항목을 파트너십 일반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한 파트너의 납세의무액이 이를 별도로 취급하였을 때 발생하는 납세의무액과 다르면 해당 항목은 별도로 명기되어야 한다.

파트너십이 상기 항목들을 신고서 K에 별도로 기재하고 이를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율(distributive share)에 따라 할당하면 파트너는 이들 항목을 마치 파트너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즉, 직접 취득한 항목으로 간주하고 신고한다. 즉, 파트너는 자신에게 할당된 몫을 개인 차원의 동일한 소득 혹은 공제항목과 합하여 신고한다. 한 예

828) 특별 항목은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아래 배분율(distributive share)에서 논의한다.

로 파트너십의 장기 순양도소득(손실)을 파트너 개인 차원의 장기 순양도소득(손실)과 합하여 계산하고 이는 개인소득세 규정에 따라 신고한다.

한편 별도로 기재해야 할 항목이 없는 소득, 이익, 손실 혹은 공제항목⁸²⁹⁾은 모두 합쳐져서 파트너십 일반소득 혹은 손실(partnership ordinary income or loss)을 구성하는데 일반소득은 신고서 1065의 22항에 기재한다. 이러한 일반소득과 상기한 바 별도로 기재된 항목을 합하면 파트너십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 된다. 일반소득에는 총판매이윤, 운영비용, 피용인 보수 등이 있다. 이들 항목은 예외가 없는 일반소득 혹은 경비이다. 이외 1245조상의 감가상각 환수금도 특별대우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파트너십은 일반소득(손실)을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율에 따라 할당하고 이를 신고서 1065 Schedule K와 K-1에 신고한다⁸³⁰⁾. 그러면 개별 파트너는 자신에게 할당된 소득(손실)을 소득세 신고서 Schedule E에 신고한다. Schedule E는 개인 납세자가 임대와 로열티소득 이외에도 유산, 기금, 파트너십 그리고 S 법인의 소득을 신고하는데 이용된다. 주식회사가 파트너인 경우 법인세 신고서 1120에 기타 소득(Other Income)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다.

(b) 파트너의 소득신고

전술한 대로 일단 파트너십이 별도로 기재할 소득, 이익, 손실, 공제 및 세액공제를 결정하고 일반 소득(손실)을 산정하면 이를 파트너의 배분율(distributive share)에 따라 개별 파트너에게 할당한다. 연후 파트너는 자신에게 배분된 몫을 개인소득세(법인세) 차원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또한 일부 파트너는 파트너 소득에 대하여 추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술한 대로 내국세법 704(d)조에 따라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할당을 받아 공

829) 주식회사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미국 국내생산 공제가 있는데 파트너십의 경우 이를 파트너 차원에서 공제한다.

830) Schedule K와 K-1에는 일반소득, 별도 기재 항목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유형과 세액공제, Sec. 179 경비(당해연도에 공제 가능한 자본경비), 보장성 지급금 등 다양한 항목이 신고된다.

제한할 수 있는 손실금액은 지분의 장부가액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파트너가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은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는데 이는 위험성 규정(at risk rule)과 수동적 손실(passive loss)에 대한 규정이다. 우선 위험성 규정은 파트너가 유한 책임성 부채(nonrecourse debt)를 통하여 장부가액을 늘리고 파트너십 손실로 장부가액을 상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구체적으로 파트너가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은 위험성이 있는 지분의 장부가액(at risk basis)으로 제한된다⁸³¹⁾. 이러한 장부가액은 기본적으로 파트너십의 장부가액인데 다만 파트너십의 부채는 파트너가 실제로 부채에 대하여 위험성에 노출될 때만 장부가액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파트너십이 가치를 상실할 때 파트너가 손실을 볼 금액이면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유한 책임성 부채⁸³²⁾의 경우 파트너에게 상환 책임이 없으므로 위험성이 있는 장부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성 규정으로 인하여 파트너는 704(d)조가 허용하는 자신의 장부가액보다 훨씬 적은 손실만 공제받을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록 유한 책임성 부채일지라도 위험성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Sec. 465(b)(6)).

두 번째로 수동적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개인 납세자의 손실(passive loss)⁸³³⁾은 일반 반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부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469). 여기서 투자소득(portfolio income)은 배당, 이자소득과 수동적 소득을 제외한 자본소득을 말하며 일반 반소득(active income)은 임금, 보너스 혹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소득 등을 의미한다. 다만 수동적 손실은 이월이 가능하며 추후 수동적 소득과 상쇄될 수 있고 만약 납세자가 수동적 사업에 대한 지분을 완전히 정리해도 사용이 가능하다(Sec. 469). 이를 위해 파트너십은 수동적 손실을 따로 보고해야 한다.

유한 파트너십에 지분을 소유한 파트너는 실질적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

831) 이 규정은 개인과 소유가 집중된 주식회사(closely held corporation)에 적용되며 일반 주식회사 파트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832) 유한 책임성 부채란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아 담보채권을 팔아도 부채금액이 전부 회수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잔액에 대하여 책임질 의무가 없는 부채를 말한다.

833) 수동적 활동(passive activities)이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 조세피난처(tax shelter)나 부동산 임대를 제외한 임대로 얻은 소득이 수동적 소득에 해당하며 수동적 소득이나 손실은 다른 손익과 달리 상호간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에 유한 파트너십의 손실은 수동적 소득을 공제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다(Sec. 469(h)(2)). 다만 수동적 임대사업에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매년 25,000달러를 한도로 수동적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의 조정된 소득이 100,0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제가 되지 않는 수동적 손실은 물론 수동적 소득과 상쇄될 수 있다.

(c) 대형 파트너십 신고(large partnership election)

자격이 있는 대형 파트너십은 보다 간소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Sec. 775). 이러한 파트너십은 서비스 업체가 아니며 상품거래에 종사하지 않고 파트너 수가 최소한 1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파트너십이 선택을 하면 일반 파트너십과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신고하며 국세청 감사에서나 업체가 종식될 때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형 파트너십의 소득신고도 일반 파트너십과 같이 과세소득을 별도 소득항목과 통합된 일반소득항목으로 나누어 신고하지만 별도 항목의 수가 적고 많은 항목이 일반소득항목에 포함되는 등 큰 차이가 있다. 의회가 이러한 규정을 도입한 이유는 다수의 파트너에게 다양한 소득, 손실 그리고 공제에 있어서 복잡한 별도 항목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일반 파트너십과 같이 대형 파트너십이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개인소득세와 유사하다. 즉, 인적공제, 운영업손실을 비롯하여 의료비나 위자료 등 대부분 항목별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타 항목별 공제의 산정방식은 개인이나 일반 파트너십과 다르게 결정된다. 대형 파트너십의 경우 기타 공제는 파트너십 차원에서 통합되어 70%까지 업체 차원에서 공제된다. 나머지 30%는 다른 소득과 합해져서 파트너에게 양도된다. 즉, 개인에게 적용되는 2% 제한규정이 대형 파트너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일반 파트너십에서는 자선 기부금이 별도로 명기되어 파트너에게 이전되지만 대형 파트너십의 경우 주식회사처럼 파트너십 차원에서 과세소득의 10%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되고 파트너에게 양도되지 않는다(Sec. 773(b)(2)). 세 번째 차이점은 내국세법 179조 경비공제도 업체 차원에서 공제되고 나면 별도로 기재되어

파트너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물론 일반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대형 파트너십도 Schedule K에 별도로 기재하여 파트너 차원에서 파트너십 성격을 유지하면서 과세되는 항목들이 있다(Sec. 772). 이들 항목에는 ① 수동적 손실 제한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손실)과 자본 순이익(순손실) ② 기타 파트너십의 과세소득(손실)과 자본 순이익(순손실) ③ 비과세소득 ④ 수동적 손실제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최저한세 조정 ⑤ 일반 세액공제 ⑥ 저소득층 주택, 비채래식 연료생산 세액공제 ⑦ 외국 납부세액 ⑧ 재무부 규정 Reg. Sec. 1.702-1(a)(8)에 명기된 항목 등이 있다.

일반 파트너십과 비교할 때 대형 파트너십에서는 업체 차원에서 자본소득과 손실이 합쳐져서 순소득(손실)로 파트너에게 이전되며 만약 통합 결과 그 성격이 단기 자본소득이면 일반소득에 포함되어 신고된다. Sec. 1231조 자본소득과 손실이 합쳐져서 순손실이 발생하면 일반소득에 포함되며 순이익이 발생하면 장기 자본소득으로 처리된다. 이외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도 ⑥을 제외하면 파트너십 차원에서 통합된다. 그러나 수동적 손실과 관련된 소득이나 자본소득은 별도로 기재된다. 또한 배당소득처럼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경비는 사업소득이 아닌 본래 그 성격을 유지한다.

대형 파트너십에서 기부금이나 179조 공제와 같이 대부분의 공제 제한은 개인 파트너가 아닌 파트너십 차원에서 적용된다. 다만 항목별 공제에 대한 68조, 경제적 손실 위험 그리고 수동적 손실에 대한 제한규정은 개인 차원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 공제되기 위하여 이들 세 항목은 별도로 신고된다. 대형 파트너십은 개별 파트너에게 파트너십 과세연도 종료 후 3월 15일까지 Schedule K-1을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Sec. 6031). 대형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과 달리 파트너십 자본이나 이윤 지분 50% 이상을 처분해도 파트너십이 종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사업활동을 멈추어야 종식된 것으로 본다(termination).

4) 파트너의 배분율(partner's distributive share)

파트너십의 소득, 손익 그리고 공제 등 과세항목을 파트너들 사이에 배정하는 문제 즉, 파트너의 배분율은 내국세법 704(b)조에 따라 파트너십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이

러한 약정이 없으면 지분 등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파트너들의 전체적인 이해관계⁸³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분율은 세금 신고의 목적으로 파트너들이 합의된 것으로 이러한 배분율과 다르게 파트너십 소득을 실제로 분배해도 상관이 없다. 즉, 파트너들은 파트너십 소득 등을 임의로 배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파트너십 약정에서 배분율은 파트너십 소득과 손실에 대하여 각각 다른 비율을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파트너가 소득 지분율(profit interest)은 10%이지만 손실이 발생할 때 지분율(loss interest)은 30%가 될 수 있다. 만약 소득과 손실 지분율이 다르면 파트너십은 우선 해당 과세연도에 소득과 손실 중 어느 쪽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다른 지분율을 적용한다. 과세연도 중간에 지분을 추가로 매매하여 배분율이 변경되면 소유기간별로 반영하여 배분율을 결정할 수 있다(Sec. 706(d)(1)).

한편 파트너십에게 허용된 임의적 배분방식은 일부 항목의 경우 만약 실질적 경제적 효과가 없으면 파트너가 정한 배분방식이 무시되고 개별 파트너의 출자 혹은 지분 등 다른 기준에 의하여 배분율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를 특별할당(special allocatio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출자자산에 따른 할당과 기타 할당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특별 규정을 통하여 파트너는 특정 항목에 대한 배분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기도 한다.

우선 파트너가 자산을 출자하면 파트너십은 이를 그대로 이월받기 때문에 출자 이전에 해당 자산에 발생한 손익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내국세법 704(c)조는 자산이 출자되기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해당 자산을 출자한 파트너에게 할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출자 이후 발생한 가격 상승분은 개별 파트너에게 안분될 수 있다. 또한 법은 출자된 자산에 대한 소득과 공제는 출자 당시 자산의 공정가격과 장부가액 차이를 고려하여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갑과 을이 각각 현금 20,000달러와 공정가격이 20,000달러(장부가액 10,000달러)인 자산을 출자한 이후 회사가 해당 자산을 25,000달러에 매각한 경우 양도차익 15,000달러 중 10,000달러(20,000-10,000달러)는 을에게 할당된다. 이외 남은 5,000달러는 갑과 을이 절반씩 배분받는다. 만약

834) partner's overall interest in partnership: 파트너십 지분은 파트너들의 상대적 출자금, 손실과 현금흐름에 대한 파트너들의 지분 그리고 청산시 자본에 대한 권리로 결정된다.

이 자산이 감가상각 자산이라면 상각공제도 같은 방식에 의하여 배분된다.

이처럼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출자하면 출자 시점에 파트너와 파트너십 모두 실현된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신 자산을 출자한 파트너의 장부가액이 파트너십의 장부가액이 된다. 장부가액을 이와 같이 대체하면 궁극적으로 파트너십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파트너가 지분을 매각할 때 내재된 이익이 과세될 수 있다(built in gain). 특히 일반자산이 아닌 출자받은 자산을 매각하고 남은 손익 중 이렇게 자산출자로 이연된 손익은 해당 파트너에게 안분되고 나머지 손익이 파트너 사이에서 배분된다.

두 번째로 출자된 자산이 아닌 경우에도 분배방식이 단지 과세상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substantial economic effect test)가 있어야 하며 이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파트너십이 정한 방식이 아닌 파트너 지분에 따라 배정된다(Sec. 704). 재무성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검증은 해당 거래가 단지 세금만이 아니고 파트너의 경제적 처지에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효과가 실질적인지를 검토한다. 우선 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재무성 규정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배분방식과 파트너의 자본계정에 관한 것으로 파트너십 청산시 파트너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파트너십 부채를 상환하거나 양(+)의 자본계정이 갖는 파트너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요건이다⁸³⁵⁾.

한편 실질적 효과란 과세상의 결과와 무관하게 배분방식이 파트너 지분의 소득(손실)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⁸³⁶⁾. 또한 특별 배분방식을 사용할 때 파트너들의 전체 납세의무액이 일반 배분방식보다 적고 파트너들의 자본계정 변화가 동일하면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shifting). 이러한 뜻에서 유한 책임성 부채(nonrecourse debt)에 근거한 각종 배분율의 결정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규정은 복잡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배정방식이 현금 흐름과 일치하고 파트너 사이에 과세항목 배분이 실제 사업적 목적과 상관없이 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835) Reg. Sec. 1.704-(1)(b)(2)(ii).

836) Reg. Sec. 1.704-(1)(b)(2)(iii)(a).

5) 파트너와 파트너십 사이의 거래

일반적으로 파트너와 파트너십 사이의 거래는 독립적인 거래로 간주된다. 즉,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서비스나 자산을 제공해도 이와 관련된 현금이나 자산의 이전이 있고 전체적인 거래가 자산의 매각이나 파트너가 아닌 제3자로서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면 독립된 거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부 자산매각에 있어서는 손실을 제한하고 자본소득을 일반소득으로 간주하는 제약이 가해지기도 한다(Sec. 707(b)). 이 밖에도 파트너 배분율과 별도로 파트너가 자본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파트너십이 보장성 금액(guaranteed payment)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ec. 707(c)).

우선, 과거에는 지배 파트너(controlling partner)⁸³⁷⁾가 파트너십에 자산을 매각하면서 파트너 지분을 통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해도 매각에 따른 손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특수관계인 거래(Sec. 267)와 마찬가지로 지배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손실은 더 이상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십이 지배 파트너에게 자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동일한 사람이 지배 파트너인 두 파트너십 사이의 자산 거래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추후에 매입자가 해당 자산이 매각할 때 허용되지 않은 손실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배 파트너와 파트너십 사이에 자본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만약 해당 자산이 더 이상 새로운 소유주에게 자본자산이 아니면 자본소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Sec. 707(b)(2)). 따라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양도 차익을 인정 신고하는 대신 자산 장부가액의 증액으로 미래에 창출될 일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한편 파트너가 파트너십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다른 피용인처럼 보수를 지급받는다. 또한 파트너십은 투자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대가로 파트너에게 일정 금액을 이자처럼 지급할 수 있다. 내국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보장성 지급금(guaranteed payment)이라고 하며 파트너 배분율과 다르게 간주한다(Sec. 707(c)). 특히 파트너십

837) 지배 파트너란 직·간접적으로 파트너십의 이윤 지분이나 자본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파트너를 말한다. 간접적 소유권은 가족 등 관련자가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파트너십이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보장성 보수는 제3자의 서비스에 대한 경비처럼 간주되어 파트너는 일반 소득으로 신고하고 파트너십은 공제 혹은 자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Sec. 707(c))⁸³⁸⁾. 한 예로 파트너가 자신이 소유한 빌딩을 파트너십에게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이러한 보장성 지급금에 해당한다.

만약 파트너십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면 보장성 보수를 파악하기 쉽지만 상당 경우 파트너십은 일정 금액을 정하고 파트너의 배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전에 약속한 일정금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보장하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guarantee minimum)⁸³⁹⁾. 제공된 서비스가 자본경비의 성격이면 파트너십은 보장성 지급금을 감가상각하고 만약 내국세법 162조상의 공제 가능한 경비면 이를 일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보장금이 파트너십의 일반 소득보다 많으면 일반 손실이 발생하며 파트너 사이에서 손실이 할당된다. 이처럼 보장성 지급금은 일반소득에 대하여 공제되며 자본소득과 상쇄할 수는 없다.

마. 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

파트너십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은 회사 이윤에 대한 배당과 지분 처분에 따른 배당이 있을 수 있다(지분 매각은 아님). 이 중 지분 처분에 의한 배당은 파트너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는 청산배당과 그렇지 않은 배당으로 구분되어 과세된다.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배당받은 금전과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감소한다(단 장부가액이 영(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파트너가 금전이 아닌 자산을 배당받으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적 배당(money distribution)의 경우 이 금액이 파트너 지분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배당 시점의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금전적 배당이란 현금 이외 매매되는 증권을 포함한다.

반면 파트너십은 배당에 대하여 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잔여 자산의 장부가액

838) 참고로 주식회사의 경우 과세 목적상 주주가 회사의 피용인이 될 수 있지만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아 대부분 부가급부에 대한 과세상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839) Reg. Sec. 1.707-(1)(c), 1.706-1(a).

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예외적으로 파트너십이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unrealized receivable)이나 가격이 상승한 재고자산을 현금을 포함한 파트너의 지분과 교환하면 이에 대한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을 출자한 파트너에 대한 자산 배당이나 은퇴나 상속에 따라 파트너 지분율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불완전 청산배당(non-liquidating distribution)

지분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는 배당 즉, 현재 배당(current distribution)에서 내국 세법 751조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에 대해서는 파트너와 파트너십 양자 모두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751조 자산을 제외하면 현재 배당에 대하여 파트너십은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파트너 지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전적 배당(money distribution)을 받으면 파트너는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금전적 배당이란 현금과 현금처럼 간주되는 파트너 부채지분의 감소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공정시장 가격을 말한다(Sec. 731).

금전적 배당 이외에도 파트너십이 자산을 배당하면 파트너가 이익을 인정해야 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우선 자산을 파트너십에 출자하고 난 이후 7년 이내에 다른 파트너에게 해당 자산을 배당하면 원래 자산을 출자한 파트너는 출자 이전에 인정하지 않은 이익 또는 손실(출자시점 공정시장가격-장부가액)을 인정해야 한다(precontribution gain recognition). 이 경우 출자 파트너의 지분 장부가액과 파트너십의 배당 이전 장부가액은 인정한 이익만큼 증가한다(반대로 손실을 인정하면 장부가액은 감소한다).

두 번째로, 자산을 배당받은 파트너는 만약 배당받은 자산의 공정가격이 (배당 이전) 파트너십 지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출자한 자산의 (출자 이전) 잔여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Sec. 737). 그러나 자산을 배당받은 파트너가 원래 해당 자산을 출자한 파트너이면 737조가 적용되지 않고 731조가 적용된다. 737조에 따라 인정해야 하는 이익은 출자한 자산의 배당 이전 잔여이익과 배당받은 자산의 공정가격이 파트너십 지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적은 금액이다(금전적 배당이 같이 지급되면 이는 장부가액에서 제외). 여기서 잔여이익(remaining precontribution gain)이란 자산을

출자하고 7년간 다른 자산을 배당하기까지 인정되지 않은 출자자산의 이익 혹은 손실을 의미한다. 737조에 따라 이익을 인정하면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은 인정 이익만큼 증가하고 파트너가 출자한 자산의 파트너십 장부가액도 그만큼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으로부터 제공받은 파트너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대로 이월되어 파트너십이 보유할 때 장부가액과 같다. 그러나 파트너의 파트너십 지분은 지급받은 금전적 배당과 배당받은 자산의 파트너 지분만큼 감소한다. 파트너가 제공받은 자산의 총지분은 배당 이전 파트너 지분과 737조에 따라 인정한 이익의 합으로 제한된다(Sec. 737(a)(2)). 만약 상기한 합계금액이 지급받은 현금과 자산의 이월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보다 복잡한 공식에 따라 장부가액이 할당되는 순서가 결정된다. 특히 자산을 배당받은 순서는 현금, 매입채권과 재고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파트너가 인정해야 할 이익과 개별 자산의 장부가액이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파트너가 배당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파트너십이 보유했던 기간을 포함한다(Sec. 735(b)). 여기서 파트너가 해당 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한 기간은 의미가 없다. 그 이후 파트너가 배당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결정되는 이익(손실)의 성격은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자산을 출자할 때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하다. 특히 자산의 출자나 배당이 파트너십 혹은 파트너가 보유한 자산 이익(손실)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 파트너십이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 성격의 자산(unrealized receivable)을 매각하면 파트너가 보유한 당시 자산의 성격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일반 소득(손실)으로 신고해야 한다(Sec. 735(a)(1)). 또한 파트너십이 재고적 성격의 자산(inventories)을 배당하고 이를 파트너가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반 소득(손실)으로 인정한다. 5년 이후 처분된 자산은 파트너가 보유할 때 자산 성격에 따라 이익을 인정한다.

2) 751조 배당

지분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는 현재 배당 중 매각하면 일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자산에는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 성격의 자산(unrealized receivable)과 재고적 성격의 자산(inventories)이 있다. 첫 번째 자산의 좋은 예에는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는 파트너십이 아직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매출채권이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일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산⁸⁴⁰⁾을 포함하여 1245조와 1250조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있는 감가상각 자산도 이에 해당한다. 한 예로 파트너십이 보유한 자산의 공정가격이 10,000달러이고 장부가액이 7,000달러인 상황에서 감가상각은 4,000달러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해당 자산을 매각하면 실현된 이익 3,000달러는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적 자산으로 분류된다.

한편 재고적 성격의 자산(inventories)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파트너십이 판매를 위하여 소유한 자산항목과 파트너십이 매각하면 자본자산이나 1231조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자산을 포함한다. 파트너가 매각한다면 이러한 성격을 갖는 파트너십 자산도 재고로 간주된다. 따라서 현금, 자본자산과 1231조 자산만이 재고적 성격의 자산이 아니다. 다만 751조가 발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해야 한다. 이들 자산의 공정가격이 파트너십 장부가액의 120%를 초과하면 실질적 가치 상승으로 간주된다.

751조가 발동하려면 파트너십이 751조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파트너와 751조가 아닌 자산, 예를 들면 현금과 교환해야 한다. 혹은 반대의 경우에도 751조가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751조에 따라 해당 자산교환은 배당이 아닌 자산 매각으로 간주되어 매각으로 실현된 이익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이익(손실)의 성격은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751조 자산의 판매자로 간주되는 측은 이익을 일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751조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 교환은 물론 지금까지 논의된 청산하지 않는 배당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익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3) 지분청산배당(liquidating distribution)

파트너는 파트너십 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적 방식은 청산배당과 지분 매각이다. 이외에도 지분을 상속 혹은 증여하거나 주식과 교

840) 내국세법 617(d)조의 광산, 1252조 농지, 1254조 원유, 1278조 시장할인채권과 1283조 단기채권도 만약 파트너십이 이를 매각하면 일반 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면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적 성격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이들 자산의 장부가액은 영(0)으로 간주된다.

환할 수도 있다. 내국세법 761(d)조에 의하면 청산배당이란 파트너십에서 파트너 지분을 완전히 종료하는 배당을 말한다. 파트너가 대부분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완전히 종식하지 않으면 그러한 배당은 현재 배당(current distribution)으로 간주된다. 청산배당은 파트너십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부 파트너가 지분을 정리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파트너십 전체가 운영을 종료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청산배당이 발생할 때 이익을 인정하는 규정은 현재 배당과 동일하다. 파트너는 금전적 배당이 배당 이전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때만 이익을 인정한다(Sec. 731(a)(1)). 비록 현금배당의 경우 파트너가 손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청산배당에서는 손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손실 인정은 청산배당이 금전적 배당, 실현되지 않은 매출채권적 성격이나 재고적 성격의 자산만으로 구성되고 파트너의 장부가액이 지급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을 초과해야 가능하다⁸⁴¹⁾. 손실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파트너의 장부가액에서 지급받은 금전, 매출채권, 재고적 성격의 자산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파트너가 청산배당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현금배당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다. 파트너가 소유하게 된 매출채권과 재고적 성격의 자산의 장부가액은 파트너십의 장부가액과 같다. 그러나 금전적 배당을 지분 장부가액에서 제외하고 난 이후 파트너 지분 장부가액이 이들 자산의 파트너십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잔여 지분의 장부가액을 이들 자산에 대하여 할당한다(Sec. 732(c)). 따라서 이들 자산의 장부가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추후 파트너가 자산을 처분할 때 인정해야 하는 일반 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전술한 대로 금전적, 매출채권적 혹은 재고적 성격의 자산이 아니면 다른 자산의 배당에 대해서는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대신 이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액이나 원래 장부가액과 상관없이 잔여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으로 대체된다. 만약 이러한 성격의 자산이 두 항목 이상이면 이들 자산의 공정가격과 장부가액에 따라 잔여 지분의 장부가액이 배분된다. 이러한 일련의 손실 규정은 결국 파트너가 배당으로 제공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손실 인정을 연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파트너가 자산을

841) 한 예로 갑이 파트너십 지분의 장부가액이 \$40,000인 상황에서 청산 배당으로 \$10,000의 현금 그리고 파트너십에게 장부가액이 \$12,000인 매출채권적 성격의 자산을 제공받으면 갑은 \$18,000을 손실로 인정할 수 있고 갑에게 매출채권 자산의 장부가액은 \$12,000이 된다.

보유하면서 손실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청산배당에서는 금전배당과 다른 자산배당의 장부가액이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과 같다. 전술한 대로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공받은 금전배당이 지분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익으로 인정하고 만약 금전적 성격의 자산 등을 제공받고 이들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지분 장부가액이 많으면 손실을 인정한다. 이외 청산배당에서는 파트너가 손실이나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지분의 장부가액이 지급받은 현금과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이월된다.

이외 파트너가 청산배당으로 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파트너십의 보유기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자산을 처음에 출자할 때 파트너가 보유한 기간이 다시 배당받은 파트너의 보유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다. 청산배당을 받고 파트너가 자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손익규정은 현재 배당과 동일하다. 청산배당에도 751조가 똑같이 적용되어 파트너가 751조 자산을 여타 성격의 자산과 교환하면 일반적인 배당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를 파트너십과 파트너 사이의 매각으로 간주하여 과세된다. 한편 파트너십은 파트너에게 지급된 청산배당에 대하여 손익을 인정하지 않는데 다만 751조 자산의 경우 파트너에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정해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 자산의 장부가액은 의무적으로나 선택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

4) 지분 매각 등

파트너가 지분을 완전히 종식하게 되는 두 번째 방식은 지분 매각이다. 내국세법 741조에 따라 파트너 지분은 자본자산이므로 지분 매각은 원칙적으로 자본소득(손실)의 발생을 야기한다. 다만 751조 자산에 해당하는 이익은 일반 소득(손실)이나 1250조 이익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다. 지분 매각에 있어서는 청산배당과 달리 해당 자산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지 않아도 751조 자산으로 간주된다(Reg. 751(a)). 이외에도 지분 매각에 따라서 일반 소득으로 인정하는 이익은 재무성 규정에 따라 파트너십이 공정시장가격에 모든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된다⁸⁴²⁾.

842) Reg. Sec. 1.751-1(a)(2).

이외 개별 파트너는 자신에게 할당된 파트너십의 부채비율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지분을 매각하면 상환의무에서 면제가 된다. 따라서 지분 매각으로 실현된 매각대금은 제공받은 금전과 다른 자산의 공정가격 그리고 지분 매입자가 대신 책임지는 부채 비중을 합한 금액이 된다. 실제 상황에서 보면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은 부채비율을 포함하므로 매각대금에 포함된 부채비율과 장부가액에 포함된 부채비율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파트너 지분 매매는 주식회사 주식 매매와 같은 내용으로 파트너십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만 매각된 지분이 상당한 경우 708조에 따라 지분 매각이 과세 목적상 파트너십의 종식과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파트너가 사망하거나 은퇴하여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논의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파트너의 지분을 매입하면 추가로 고려할 요인이 있다. 우선 은퇴하는 파트너나 피상속인이 파트너 자산 지분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청산 배당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이에 대하여 공제를 할 수 없다(Sec. 736(b)). 다만 파트너 자산 지분을 초과하는 지급금은 일반 배당이나 보장성 지급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초과 지급금이 파트너십 소득의 함수로 정해지면 파트너는 이를 일반 배당으로 취급하여 실제로 이를 지급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파트너십 차원에서 결정된 소득의 성격이 그대로 파트너에게 이전되며 여타 파트너는 잔여 파트너십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한편 파트너십 소득과 연관이 없는 초과 지급금은 보장성 지급금으로 간주되어 파트너는 이를 일반 소득으로 신고하고 파트너십은 공제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파트너 지분을 기존 혹은 새로운 주식회사 주식과 교환하면 351조가 적용될 수 있다. 351조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이러한 교환은 비과세되고 주식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은 각각 파트너 지분의 장부가액과 보유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파트너십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서 배분율에 기초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51조가 적용될 수 없는 지분 교환은 매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파트너는 자본소득(손실)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파트너십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 법인으로 탈바꿈하는 방식에 따라 351조가 적용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 파트너십의 종료(partnership termination)

과세 목적상 다음의 상황이 발생하면 파트너십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파트너 어느 누구도 파트너십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십 자본과 이윤 지분의 50% 이상을 제3자나 다른 파트너에게 매각 혹은 교환하는 경우(Sec. 708(b))⁸⁴³⁾. 12개월 요건은 과세연도와 상관없이 연속적인 12개월로서 이 안에 처분된 지분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파트너십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파트너십은 잔여 파트너들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청산배당을 한 것으로 처리되어 파트너는 청산배당 규정에 의거한 손익을 인정해야 한다. 파트너십이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으면 내국세법에서는 기존의 파트너십이 정리되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즉, 기존 파트너십이 모든 자산과 부채를 새로운 파트너십에 출자하고 그 대신 지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바. 소득신고

대형 파트너십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트너십은 과세연도의 종료 후 네 번째 달의 15일까지 Form 1065⁸⁴⁴⁾를 제출하여 과세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이 신고기한까지 Form 7004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6개월간 자동적인 신고 연장이 가능하다. 파트너십은 도관업체이기 때문에 Form 1065는 자료신고에 불과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2007년부터는 전체 자산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총수입이 3,500만달러를 초과하는 파트너십은 Schedule M-3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형 파트너십⁸⁴⁵⁾을 제외한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세금담당 파트너를 지정하여 국세청과 협의해야 한다(Sec. 6231(a)(7)).

843) 다만 대형 파트너십은 지분 50% 이상을 매각해도 파트너십이 종식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844) Form 1065는 자료신고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수입이 없거나 비용을 지급 혹은 유발하지 않은 파트너십은 영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845) 소형 파트너십은 파트너의 수가 10명 이하인 업체를 말한다. 여기서 파트너는 자연인, 일반 주식회사와 유산기금을 포함한다.

파트너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444조에 근거하여 지정된 과세연도가 아닌 다른 과세연도를 사용하는 파트너십은 매년 일정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Sec. 7519). 예탁금은 소득신고가 이연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에 1%를 더한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예탁금은 5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과거에 납부한 예탁금이 현 과세연도의 예탁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허용된다(Form 8752). 예탁금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급 대상 공탁금에 해당한다.

파트너십은 Form 1065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일반 소득, 손익과 손실 및 공제항목을 기재하고 Schedule K에는 일반 소득의 요약과 함께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명기한다. 또한 개별 파트너를 위하여 작성하는 Schedule K-1에는 각 파트너에게 할당된 소득 등의 항목과 특별배분 항목을 기재하고 파트너들은 Schedule K-1에 제시된 항목과 금액에 근거하여 소득세와 자영업자 소득세⁸⁴⁶⁾를 납부한다. 이외 파트너는 자신에게 할당된 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전체 소득에 대하여 추정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파트너는 파트너십이 Schedule K-1에 신고한 항목과 일관되게 파트너십 항목들을 신고해야 한다(Sec. 6222).

2. S 법인 주식회사

가. S 법인의 특성과 설립

1) S 법인의 특성

S 법인은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과세 목적상 주식회사의 단점, 특히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특히 소규모 회사에 적용된다. 의회가 1954년 S 법인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을 때 주된 목적은 사실상 파트너십에 해당

846) 파트너십은 파트너 입장에서 자영업 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을 따로 신고해야 한다. 자영업 소득은 파트너십 일반 소득과 손실, 일부 별도 기재항목과 파트너십이 보증하는 수익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자본손익, Sec. 1231 손익,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트너는 자신에게 할당된 배분율에 따라 자영업자세를 납부한다.

하는 소규모 주식회사가 이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주식회사로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S 법인 소득은 회사 차원이 아닌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고 사업 손실을 주주 차원에서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다. 이후 1958년 의회는 정식으로 내국세법 1조에 Subchapter S를 도입하여 연방소득세가 기업의 조직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과거 유한책임회사는 파트너십의 대우를 받으면서 S 법인처럼 여러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어 S 법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최근 S 법인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유한책임회사와 S 법인의 차이가 줄어들 바 있다.

S 법인은 법적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주식회사로 간주되지만 과세 목적상으로는 파트너십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손실 등이 주주에게 양도되어 과세되고 이전에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 이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⁸⁴⁷⁾. 또한 S 법인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며 S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최저한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비록 S 법인이 파트너십처럼 과세되기는 하지만 회사 설립과 청산 등은 Subchapter S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규정을 따라야 한다.

전술한 대로 S 법인 사업이윤은 회사 차원이 아닌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고 사업 손실을 주주 차원에서 다른 소득과 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창업 당시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 일단 S 법인으로 활동하고 그 이후 C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배당하지 않은 사업소득이 배당금액이 주식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나중에 주주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또한 S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개인주회사세나 이윤적립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⁸⁴⁸⁾. 주주들은 큰 비용 없이 손쉽게 S 법인을 취소하거나 종식할 수 있다.

일반 주식회사의 자본소득 등은 사업이윤과 합쳐져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S 법인의 자본(양도)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비과세소득은 주주에게 양도될 때 별도로 명기되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여 과세된다. 마찬가지로 공제, 손실과 세액 공제항목도 성격의 변화 없이 주주에게 양도되는데 다만 주주 차원에서 다양한 제약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S 법인을 통하여 가족간의 소득 분할이 가능한데 다만 이 경우

847) 단, S 법인은 주정부 법인세를 부과받는다.

848) 다만 수동적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상황에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본과 서비스를 제공한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요건에 따라 소득 분할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외 파트너십과 달리 개인 주주들은 자영업자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한편 S 법인에게도 단점이 있다. S 법인 소득은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주주에게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파트너십과 달리 S 법인은 초과 수동적 소득세(excess net passive income tax)와 내재적 이익에 대한 세금(built-in gains tax)이 부과될 수 있다⁸⁴⁹⁾. 그리고 주주가 회사로부터 받은 부가급부에 대하여 과세될 수 있다. 이외 S 법인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배당수입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회사 소득과 손실 그리고 별도로 명기하는 항목에 대한 주주 사이의 배분은 주식 소유지분에 따라 결정되며 파트너십처럼 일정 항목에 관한 특별 할당(special allocation)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채에 대한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S 법인 주주가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의 한도가 파트너십 파트너보다 적을 수 있다. 특히 파트너는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배분율만큼 손실한도를 증액할 수 있지만 주주는 회사가 자신이 대여한 자산의 장부가액만큼만 손실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이외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S 법인과 주주는 수동적 활동과 위험성 규정(at-risk rule)에 따른 제약이 있다. 한편 S 법인은 주주의 수나 유형 혹은 이용할 수 있는 자본구조에서 제약이 있는 반면 일반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은 제약이 없다. 마지막으로 S 법인은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일반 역년을 과세연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적 목적을 증명하거나 특별히 신청하면 다른 과세연도도 이용할 수 있다.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S 법인을 통하여 가족 사이에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높은 세율을 피할 수 있다(income splitting). 그러나 부모가 자식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실제로 그로 인한 혜택과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 법원은 주식 양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일원이 다른 가족으로부터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면 문제가 크게 없다. 한편 국세청은 가족 사이에 배정된 S 법인 소득, 손실, 공제 등에 대하여 S 법인에 제공된 서비스와 자산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849) 이외 이전에 C 법인이었던 기업이 S 법인으로 전환하면 LIFO 환수세가 적용될 수 있다.

(Sec. 1366(e)). 즉, 국세청은 주주나 비주주가 제공한 자산이나 개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목적상 보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S 법인의 설립 요건

S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차원의 요건이 있고 회사 차원의 요건이 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소규모 사업 주식회사(small business corporation)라고 하는데 이들 업체들만 S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우선 주주와 관련된 요건에서는 모든 주주의 동의를 구하되, 첫째, 주주가 100명 이하⁸⁵⁰⁾이고 둘째, 주주가 개인, 유산(기금), 자선단체 등 일부 면세기관이나 일부 기금으로 구성되며(C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주주가 될 수 없음) 셋째, 주주 가운데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이 없어야 한다.

일반 주식회사나 파트너십이 S 법인 주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다수의 일반 주식회사 주주가 회사를 통하여 S 법인 주식을 매입하여 100명 요건을 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Sec. 1361(b)). S 법인은 일반 혹은 S 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일반 C 법인은 S 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또한 일반 주식회사 주식을 보유한 S 법인은 연결납세신고에 참여할 수 없다.

한편 회사 차원에서는 S 법인이 첫째, 국내 주식회사이며 둘째, 내국세법상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셋째,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해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혹은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면세를 신청한 기업은 S 법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만약 발행된 주식이 배당 혹은 청산금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⁸⁵¹⁾를 보유하고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주식(second class of stock)이라고 할 수 있는 약속, 채무 혹은 증권⁸⁵²⁾을 S 법인이 발행하지 않았으면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두 가지 주식의 차이가 투표권에만 있다면 이는 두 번째 종류의 주식이 존재하지 않는

850) 가족이 주주인 경우 모두 합하여 1명의 주주로 취급된다.

851) 주주 사망, 이혼, 고용 종료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는 약정, 주주간의 배당 시점의 차이 혹은 과세연도 동안에 주식 지분 변화에 기초한 배당 등의 경우 동일한 권리를 결정할 때 무시할 수 있다(Reg. Sec. 1.1361-1(l)(2)).

852) 회사 부채나 이연된 보수약정은 이러한 계약이 한 종류의 주식발행 규정을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두 번째 종류의 주식으로 간주될 수 없다(Reg. Sec. 1.1361-1(l)(4)).

것으로 간주된다(Sec. 1361(c)(4)).

S 법인의 채무를 두 번째 종류의 주식⁸⁵³⁾이 아닌 부채로 간주하기 위한 안전조항이 다수 존재한다(safe harbor). 우선 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주의 선급금이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면 둘 사이의 부채로 간주된다. 두 번째로 일반법으로는 자본으로 간주되는 채무이지만 기존에 발행된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주주들만 소유한 채무는 부채로 간주된다.

이외 S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⁸⁵³⁾이 아닌 일반 부채(straight debt)로 간주된다(Sec. 1361(c)(5)). 첫째, 채무가 요구시 혹은 특정 일자에 무조건 일정금액을 지급할 약속으로 둘째, 이자율이나 이자 지급기일이 이윤이나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조건부로 결정되지 않고 셋째, 채무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으며 마지막으로 채권자가 S 법인 주주가 될 수 있는 개인, 유산, 기금이거나 금전 대출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비록 다른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종류의 주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부채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⁸⁵³⁾이 아닌 부채로 취급된다. 또는 원래 일반 부채로 간주된 채권도 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자격이 있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되면 두 번째 종류의 부채로 간주될 수도 있다.

3) S 법인으로의 전환

소규모 주식회사가 S 법인으로 신고하려면 모든 주주⁸⁵³⁾가 이에 동의하고 적시에 신청해야 한다(Form 2553). 기존의 주식회사가 S 법인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과세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이나 S 법인 신고가 적용되는 연도의 세 번째 달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규 주식회사는 첫 과세연도의 세 번째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첫 과세연도는 S 법인 주주를 갖거나 자산을 보유하거나 혹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세청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한 이후에 신청도 인정될 수 있으며 만약 주식회사가 부주의하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회사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이를 정정하면 S 법인 신청을 받아들인다.

853) S 법인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도 해당 연도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동의를 해야 하며 공동으로 보유한 주식이라면 공동 소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한다.

4) S 법인 신고의 종식

일단 S 법인 신고를 선택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혹은 소규모 기업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효과가 지속된다. 우선 투표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회사 주식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동의하고 해당 과세연도 세 번째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S 법인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일단 S 법인 신고자격을 상실하면 일정 자격⁸⁵⁴⁾을 갖추고 국세청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후 5년간은 S 법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 다만 주주 인원 수의 증대나 수동적 소득 등의 사유로 S 법인 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하게 된 경우 5년 조건이 면제될 수 있다.

한편 S 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한 날로부터 S 법인 신청이 무효화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주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거나 자격이 없는 납세자(일반 주식회사, 파트너십과 외국인)가 주식을 보유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주식(second class of stock)을 발행하거나 혹은 잘못된 과세연도를 선택하는 등이 있다⁸⁵⁵⁾. 이외에도 3년 연속 수동적 투자소득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도 더 이상 S 법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

수동적 소득에 대한 검증은 매년 진행되는데 만약 3년 연속으로 주식회사 총수입의 2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며 3년간 매년 C 법인의 이윤(E&P)을 소유하면 네 번째 과세연도부터는 S 법인으로 신고할 수 없다. 수동적 소득은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이 아닌 투자소득으로 배당, 이자, 연금, 임대 그리고 로열티 소득과 주식 등 증권 매각 등으로 얻은 이익을 말한다. C 법인 이윤은 기업이 S 법인 신고를 선택하기 이전에 일반 주식회사로 과세된 이윤을 말한다. 또한 해당 기업이 일반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면 수동적 소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간에 S 법인의 자격을 상실하면 S 법인 기간과 C 법인 기간으로 나누어 과세항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내국세법에서는 S 법인으로 존재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과세항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daily allocation). 그러나 만약 모든 주주가 동

854) Reg. sec. 1.1362-5(a).

855) 따라서 S 법인은 주주들과 주식매입약정을 맺어 주식 양도를 제한하거나 주식 매입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의하면 기업이 사용하던 회계방식에 따라 신고할 수도 있고 또한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기간별 배분이 아닌 회계방식에 따른 배분이 필요하다(Sec. 1362(e)).

나. 과세소득 신고

1) 총칙

S 법인으로 신고하면 내국세법 1절(1~1399조)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음의 세가지 특별세 항목을 제외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374조의 내재 이익에 대한 세금(built-in gains tax), 1375조의 초과 수동적 소득세(excess net passive income tax), 1363(d)조의 후입선출 환수세(LIFO recapture tax). 따라서 S 법인에는 법인세와 누적 이윤세 그리고 개인지주회사세 이외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S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같은 방식의 회계연도와 회계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외 S 법인은 일반소득과 손실 그리고 별도로 기재되는 과세항목을 산출하여 국세청과 주주에게 통보해야 한다(Form 1120S). 그 대신 S 법인의 주주는 S 법인의 일반 소득과 손실 그리고 별도로 기재된 항목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율만큼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배당은 주식 투자에 대한 환수로 간주되어 비과세된다. 또한 개별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지분율에 따라 할당된 일반 소득과 손실 그리고 별도 항목만큼 조정되어야 한다.

S 법인의 과세연도는 대개 일반 역년(calendar year)이지만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선택한 재무연도를 과세연도로 사용할 수 있다(permitted year, Sec. 1378(a)). 한 예로 계절성이 있으면 해당 기업의 자연적인 사업연도를 과세연도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매달 균일한 수입이 창출되는 기업은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즉, 과세연도 선택이 소득신고를 이연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된다(Sec. 1378(b)).

한편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과세연도와 동일한 연도도 허용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국세청과의 합의하에 결정해도 된다. 이밖에 내국세법 444조에 따라 여타 과세연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앞에서 법적으로 요구된 과세연도보다 3개월

이상 낮은 연도를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과세연도 이연에 따라 납부가 연기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해야 한다(Sec. 7519). 이후 더 이상 S 법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예탁금액은 반환된다. 이외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S 법인은 주주의 회계방식과 다른 회계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

2) S 법인 과세소득 신고

S 법인은 파트너십처럼 취급되어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 소득(혹은 손실)과 별도의 일련 항목(separately stated items)들을 구분하여 신고한다. 일반 소득(손실)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소득과 공제를 합한 순소득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배당이 주주로 양도되기 때문에 S 법인은 배당수입공제를 할 수 없으며 같은 이유로 미국 국내생산 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 파트너십 차원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자선 기부금과 순영업손실 등도 S 법인 차원에서 공제되지 않는다(Sec. 1371(b)). 또한 개인에게 허용된 인적공제, 항목별 공제, 자선기부금 공제 혹은 순영업손실 이월(소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창업조직비용은 5,000달러까지 즉시 공제하고 나머지는 감가상각할 수 있다⁸⁵⁶⁾.

S 법인이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과세항목은 파트너십에 대한 내국세법 702(a)조와 동일하다(Sec. 1366(a)). 즉, ① 단기 자본(양도) 순이익 혹은 손실 ② 장기 자본(양도) 순이익 혹은 손실 ③ Sec. 1231 손익 ④ 자선기부금 ⑤ 15% 최대세율이 적용되거나 투자소득으로 간주되는 배당소득 ⑥ 외국 납부세액 ⑦ 재무부 규정 Reg. Sec. 1.702-1(a)(8)에 명기된 항목: 감·면세 이자소득과 특별 항목. ⑤의 경우 파트너십에서는 배당수입공제 대상인 배당이 별도 항목에 포함되지만 S 법인은 파트너십과 달리 일반 주식회사를 주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성 규정에 따라 별도로 명기되는 특별 항목은 Schedule K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상기 감면세 이자소득 이외 광산개발, 자원절약 경비, 수동적 손익(passive income or loss)과 배당과 이자 등의 투자소득이 있다. 이외 702조에는 없기 때문에

856) 이외 해당 기업이 과거 3년간 일반 주식회사였으면 291조에 따른 20% 세금우대항목의 적용도 가능하다.

파트너십에서는 없는 별도 항목이 있다. 이들 별도 항목은 주식회사가 아닌 주주가 주식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직접 실현하였거나 혹은 지출한 항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소득, 이익, 공제, 손실 혹은 세액공제항목이 주식회사에서 주주로 양도된다고 하여 이들 항목의 과세 성격이 변질되지 않는다. 이들 항목은 지분율에 따라 개별 파트너에게 할당되어 마치 파트너들이 이들 항목을 개인적으로 실현한 것처럼 개인소득세 차원에서 신고하며 과세된다.

일반 주식회사로 신고하다가 S 법인으로 전환하면 일반 주식회사로 영업할 당시 발생한 순영업손실은 이월 혹은 소급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손실은 내재적 이윤세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S 법인으로 영업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C 법인으로 이월 혹은 소급할 수 없다. S 법인 영업손실은 주주로 양도되며 주주의 소득보다 많은 순영업손실은 주주 차원에서 소급 혹은 이월된다(Sec. 1371(b)).

이외 2004년 도입된 미국 국내생산 공제⁸⁵⁷⁾는 주주 차원에서 공제된다. 공제금액 산출을 위하여 S 법인은 개별 주주에게 할당된 자격이 있는 국내생산소득을 통보하고 주주는 주식회사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별도의 조정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Schedule K-1). 한편 국내생산 공제는 총임금(W-2 wages)의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개별 주주는 자신에게 할당된 S 법인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금액을 산정한다.

857) 2007년의 경우 일반 주식회사는 자격이 있는 미국 국내생산 소득과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의 6%를 공제할 수 있다.

〈표 IV-2〉 S 법인 별도 기재항목 및 사유(목적)

별도 명기항목	사유(목적)
순단기 자본손익 순장기 자본손익 수집품 매각 손익 환수하지 않은 1250조 이익 1231조 순손익	차등세율이 적용되는 자본소득 산정
과세 및 비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투자비용(이자소득 이외)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투자이자비용 한도 산정
순부동산 임대소득(손실) 기타 자산 임대손익 로열티 소득	수동적 손실에 대한 공제한도 산정
세제상 혜택 환수 공제: 179조 비용 자산기부금 투자이자비용 연구개발비와 탐사비 1986년 이후 감가상각 조정 등 사업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인한 납세자 혜택 여부 규명 과세소득 한도 적용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한도비율 적용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한도 산정 최저한세 산정에 사용되는 과세우대항목 개인소득 최저한세 산정에 필요한 과세상 조정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일반사업 세액공제 한도 산정 외국세액공제 산정방식의 적용

자료: CCH, 2009 Federal Tax Course, 2009.

3) S 법인 특별세

전술한 대로 S 법인의 소득은 주주 차원에서 과세되지만 세 가지 특별세가 S 법인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세금은 주로 C 법인이 S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세상의 차이를 이용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우선 초과 수동적 소득세(excess net passive income tax)는 S 법인이 총수입의 25%를 초과하는 수동적인 투자소득을 올리고 과세연도 종료시 C 법인의 이윤(E&P)을 가질 때 부과된다(Sec. 1375 tax). 특히 이 세금은 다음의 공식에 따라 결정되는 초과 순 수동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 세율(35%)이 과세된다. 여기서 순수동적 소득이

란 수동적 투자소득에서 수동적 소득 창출과 직접 관련된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수동적 투자소득은 사업활동을 통한 소득을 제외한 투자소득을 말한다. 초과 순수동적 소득은 주식회사의 과세소득(순영업손실과 배당수입 공제 이전)보다 많을 수 없다⁸⁵⁸⁾.

$$\text{초과 순수동적 소득} = \text{순수동적 소득} \times \frac{\text{수동적 투자소득} - \text{총수입의 25\%}}{\text{수동적 투자소득}}$$

두 번째로 이전에 C 법인이었던 기업이 S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인정하는 이윤에 대하여 내재적 이윤세(built-in gain tax)가 부과될 수 있다(Sec. 1374 tax). 의회는 C 법인이 청산 혹은 자산을 배당이나 매각하기 이전에 S 법인으로 신고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규정을 도입하였다. 동 조항은 일반 주식회사이었던 기업이 1986년 12월 이후 S 법인으로 신고할 때 발동하며 전환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적용된다(10 year recognition period).

내재적 이윤이란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사용하였다면 일반 주식회사로서 총소득에 포함되었을 소득 혹은 이익으로 S 법인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10년간 소득으로 인정하여 신고해야 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내재적 소득은 S 법인으로 전환할 때 보유한 자산의 공정가격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한다. 내재적 손실도 마찬가지로 일반 주식회사라면 공제할 수 있는 공제와 손실을 의미하며 내재적 손실은 내재적 이윤에서 공제된다.

내재적 이윤을 산정하려면 먼저 해당 과세연도의 순내재적 이윤(net built-in gain)을 결정해야 한다. 이후 이전에 일반 주식회사로 영업할 때 발생한 순영업손실과 자본

858) 한 예로 S 법인 소득이 각각 사업소득 \$50,000, 배당소득 \$30,000, 로열티 소득 \$20,000로 구성되어 있고 수동적 소득과 관련된 경비가 \$10,000이라고 하자. 또한 이 회사가 과거 일반 주식회사로 영업하던 당시 이윤이 이번 과세연도에도 일정 금액 발생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수동적 투자소득은 배당과 로열티 소득을 합한 \$50,000이 되고 총수입은 \$100,000이다. 또한 순수동적 소득은 경비를 제외한 \$40,000이다. 따라서 아래 공식을 사용하면 초과 순수동적 소득은 \$20,000이 되며 이에 대한 35%(\$7,000)가 초과 순수동적세에 해당한다.

$$(\$50,000 - \$10,000) \times \frac{\$50,000 - (0.25 \times \$100,000)}{\$50,000}$$

손실을 이월하여 순이윤으로부터 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된 순이윤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 세율(2007년 35%)을 곱하면 잠정세액이 되는데 여기서 일반 주식회사 시절로부터 이월한 일반 사업공제와 최저한세 등을 제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내재적 이윤세가 된다.

S 법인을 선택한 시점에 소유하였던 자산을 그 후 10년간 처분하여 얻은 손익은 내재적 이윤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내재적 이윤으로 인정되는 이윤은 10년 인정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 자산의 공정가격에서 장부가액을 제외한 금액보다 많을 수 없다. 자산의 처분은 자산 매각과 교환 이외에도 현금주의를 사용하는 기업의 매출채권 수입과 분할 납부금 수입 등을 포함한다. 한편 내재적 손실은 자산 처분에 따른 손실 이외에도 S 법인 신고를 선택하기 이전 시기에 발생한 공제면 S 법인을 선택한 시점부터 10년간 공제할 수 있다. 내재적 손실로 인정되는 손실도 10년 인정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자산의 장부가액이 공정가격을 초과하는 금액보다 많을 수 없다. 또한 10년 인정기간 이전 혹은 그 동안에 취득한 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실이나 공제 등은 자산 취득 목적이 내재적 이윤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내재적 이윤은 실현되지 않은 순 내재적 이윤(즉, S 법인으로 신고하는 첫 과세연도 당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그당시 자산의 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0년간의 인정기간 동안 인정된 총내재적 이윤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이러한 금액은 S 법인이 일반 주식회사라면 신고해야 하는 과세소득(배당수입 공제와 순영업손실 공제 이전)보다 많을 수 없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내재적 이윤이 과세소득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내재적 이윤세는 손실처럼 취급되어 주주들에게 양도된다.

마지막으로 재고 산정에서 후입선출방식(LIFO)을 사용하는 일반 주식회사가 S 법인으로 전환하면 일반 주식회사로 신고하는 마지막 연도에 LIFO 환수금을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LIFO recapture tax).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마지막 연도에 선입선출법(FIFO)에 따라 산정된 재고의 장부가액이 후입선출법(LIFO)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증액된 세금은 일반 주식회사로 신고하는 마지막 연도와 그 후 3년간 분할 납부해야 한다(Sec. 1363(d)(3)). S 법인 재고의 장부가액은 그 대신 총

소득에 포함된 환수금만큼 증액된다. LIFO 세금은 물가상승률이 상당한 시기에 일반 주식회사가 S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그대로 재고자산을 물려받으면 비용공제는 많은 대신 재고자산의 장부가액은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재적 이윤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여 부과된다.

4) S 법인 주주의 소득신고

S 법인 주주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S 법인의 일반 소득(혹은 손실)과 별도 기재 항목을 신고해야 한다(Sec. 1366(a)). 개별 주주에게 할당되는 비율은 파트너십과 유사하게 날짜별로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pro rata share). 특히 각 과세항목은 S 법인 과세연도 날짜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날짜별로 유효한 주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된다(per day/per share method). 주주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항목별 지분율을 결정받는다. 다만 704(b)조에 따라 파트너십에서 허용되는 소득, 손실 혹은 별도 기재항목에 대한 임의적 특별 할당(special allocation)은 S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주주의 지분이 종료되거나 상당히 감소하는 경우 주주들이 동의하면 이러한 날짜별 배분이 아니라 S 법인이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따라 소득 등을 배분할 수 있다(Sec. 1377(a)(2)).

S 법인의 일반 손실과 별도로 기재된 손실 및 공제는 주주에게 양도되고 주주는 이를 S 법인의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주주의 과세연도에 신고한다. 주주가 배정받은 손실과 공제가 주주의 소득을 초과하면 주주 입장에서 순영업손실이 발생하며 주주는 이를 이월 혹은 소급할 수 있다. 다만 주주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해당 주주의 주식 장부가액과 S 법인이 해당 주주에게 직접 빌린 부채의 장부가액(indebtedness basis)⁸⁵⁹⁾을 합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파트너십과 달리 S 법인 주주는 회사 부채에 대하여 자신에게 할당된 비율만큼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액할 수 없다(Sec. 1366(d)(1)).

손실 공제의 제한선이 되는 주식 장부가액은 자본 증자가 발생한 연도에 증액 조정되며 S 법인의 일반 소득과 별도로 기재된 소득 혹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액되어야 한

859) 주주가 소유주이거나 수혜자인 도관업체에게 S 법인이 빌린 부채는 주주의 손실 공제에 포함될 수 없다.

다. 반대로 주주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배당에 대해서는 주식 장부가액이 감액 조정된다. 또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자본비용이 아닌 경비에 대해서도 주식 장부가액이 감소한다⁸⁶⁰⁾. S 법인이 주주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도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빌린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가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이 손실 제한액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

주주에게 양도된 S 법인 손실과 공제는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각 주주에게 할당되며 주주는 할당된 금액만큼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해야 한다. 만약 이를 통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이 영(0)이 되면 S 법인이 주주에게 빌린 부채의 장부가액이 양도된 손실과 공제만큼 감소한다⁸⁶¹⁾. 주식과 부채 장부가액에 대한 제한규정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손실과 공제는 주식 장부가액이 영(0)보다 많아질 때까지 시간의 제한없이 이연되어 그 후 사용할 수 있다⁸⁶²⁾. 주식 장부가액은 S 법인이 추후 이윤을 창출하거나 주주가 추가로 출자하거나 혹은 회사에 대여하면 증액될 수 있다. 한편 S 법인이 종식한 이후에도 주주는 이연된 손실과 공제를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Sec. 1366 (d)(3)). 물론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제한되며 이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손실은 폐기된다.

지금까지 일반적 제약규정 이외에도 S 법인 주주는 세 가지 특별규정에 따라 손실을 공제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주는 자선기부금, 자본손실, 투자 경비 등에 대하여 다양한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비하면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이들 항목에 대한 제약이 없다. 우선 내국세법 465조에 따른 위험성 투자 규정이 주주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다(at-risk rule). 즉 주주는 특정 S 법인 사업행위로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주주가 실질적으로 위험을 부담하였을 때만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동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과 세액공제는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

860) Sec. 1366(d)와 Reg. Sec. 1.1366-2(a)(3).

861) 주주가 할당받은 손실과 공제는 우선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이고 장부가액이 영(0)이 되면 부채의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추후 발생하는 S 법인 소득과 기타 이익은 먼저 부채의 장부가액을 이전에 감액된 금액만큼 회복하고 그 이후 주식의 장부가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862) 만약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면 사용되지 못한 손실 공제는 새로운 주주에게 이전되어 사용될 수 없다. 다만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배우자는 장부가액이 증가한 후 손실 공제를 할 수 있다.

하다. 이러한 제약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주주 개인이 해당 사업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material participation). S 법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주가 수동적 손실을 다른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취미활동으로 발생한 S 법인 손실은 회사가 이윤 창출을 위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Sec. 183, hobby loss rule).

5) 기타 규정

S 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과세되는 기타 항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S 법인은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 대신 내국세법 57(a)조 항목을 환산하여 이를 주주에게 양도하고 주주는 이를 자산의 개인소득세 최저한세에 포함한다. 특히 56(a)에 의한 과세항목 조정이 S 법인 주주에게 이전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항목을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은 전술한 대로 낱자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S 법인이 선택하면 기업의 회계원칙에 따라 배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S 법인이 주식을 2% 이상 보유한 주주⁸⁶³⁾에게 제공한 일부 부가급부에 대하여 일반 주식회사처럼 취급하지 않고 파트너십처럼 취급될 수 있다. 그 결과 회사가 고용한 2% 주주는 파트너로 간주되며 해당 주주가 지급받은 부가급부는 보수로서 소득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다. S 법인은 2% 주주에게 제공한 부가급부를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이하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일반 피용인으로 간주되어 이들에게 제공된 부가급부는 비과세된다.

이러한 규정은 법정 부가급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체생명 보험료(Sec. 79), 사고 및 건강보험료(Sec. 105, 106), 음식숙박비(Sec. 119), 선택적 복지(cafeteria plan, Sec. 125), 주차비(Sec. 132) 등의 부가급부에 대하여 2% 주주는 이를 보수로 인정해야 한다. 이외 상해 위로금(Sec. 104), 교육 지원비(Sec. 127), 부양가족 지원비(Sec.

863) 2% shareholder: 기존 주식이나 투표권이 있는 주식 2% 이상을 실제로 혹은 의제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Sec. 1372(b)).

129), 피용인 할인, 미소 부가급부, 체육시설 지원(Sec. 132) 등 부가급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 특수관계인 거래에 있어서 회계기준의 차이로 소득과 경비항목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Sec. 267(a)(2)). 이러한 상황은 동일한 주주가 두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한 예로 발생주의를 채택한 기업이 현금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지급한 경비는 후자가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연도에 공제해야 한다. S 법인은 도관 업체이므로 이러한 규정은 S 법인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반대로 회사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S 법인에 지급하는 경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Sec. 267(e)). 이외 특수관계인 사이의 직간접적인 자산 매매로 발생한 손실도 공제가 즉각 허용되지 않으며 매입자가 추후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실현한 이익과 상쇄할 수 있다(Sec. 267(a)(1)).

다. 장부가액 조정과 배당

1) 주식과 부채 장부가액의 조정

S 법인 주식 장부가액은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와 한도 그리고 주주가 공제받을 수 있는 손실 한도를 결정한다. 또한 주식 처분에 따른 이익의 한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S 법인 주주는 매년 주식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한다. 한 예로 S 법인이 주주로부터 부채를 지면 해당 주주의 부채 장부가액은 양도받은 손실과 공제에 대하여 감액되고 이와 반대로 회사가 추후에 이윤을 창출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될 수 있다.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다음의 순서로 조정된다. 우선 특정 과세연도 초기 투자액(혹은 초기 장부가액)은 해당 연도에 추가로 출자한 자본금과 주주가 할당받은 S 법인의 일반소득과 별도로 기재된 소득(이익) 만큼 증가한다(Sec. 1367(a)). 이후 주주의 총소득에서 제외된 배당, 주주에게 할당된 경비로서 일반 소득(손실) 산정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자본경비도 아닌 경비, 주주에게 할당된 일반 손실과 별도로 기

재된 손실과 공제항목에 대하여 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다. 다만 이렇게 조정된 장부가액은 영(0)보다 적을 수는 없다.

주주가 소유한 S 법인의 주식의 초기 장부가액은 취득방식에 따라 다르다(initial basis). 주식회사나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 설립 당시 받은 주식은 그 대신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대체한다. 증여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은 증여를 한 사람의 장부가액(증여세 조정)과 공정가격 중 낮은 금액이 장부가액이 된다. 사망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은 고인 사망시점의 공정가격이나 대체평가일의 공정가격이다. S 법인으로 전환한 시점에는 장부가액이 조정되지 않는다.

S 법인의 장부가액 조정은 파트너십 지분의 조정과 유사하다. S 법인의 소득 혹은 이익은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주주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고 손실 등은 반대의 효과가 있다. 이러한 장부가액 조정방식은 주식을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S 법인의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에 조정내용이 확정된다. 따라서 S 법인 주식 매각에 따른 손익은 S 법인의 소득과 손실 등이 결정될 때까지 확정될 수 없다.

한편 주주가 주식지분에 따라 배정받은 손실과 공제는 가장 먼저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이고 주식 장부가액이 영(0)이 되면 주주가 S 법인에 직접 대여한 부채의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⁸⁶⁴). 반면 그 이후에 발생하여 주주에게 배정되는 S 법인 일반 소득과 별도 기재 소득 및 이익은 먼저 부채의 장부가액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그 이후 주식의 장부가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즉, 주주에게 할당된 소득 등은 그 이전에 발생한 손실 등으로 줄어든 부채의 장부가액을 원래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채의 장부가액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고 남은 소득 등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데 사용된다(Sec. 1367(b)(2)(B)).

또한 S 법인이 주주에게 부채를 갚았는데 상환금액이 부채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 부채가 어음으로 확보된 채무면 그러한 이익은 자본(양도)이익이며 어음이나 다른 방식으로 확보되지 않는 부채면 일반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864) Reg. Sec. 1.1367-2(d)(1). 주주가 대여한 부채가 다수이면 개별 부채의 상대적 장부가액에 따라 배정된다.

2) 배당(distribution)

S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누적된 이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누적된 이윤(E&P)이란 S 법인이 일반 주식회사일 때 축적한 소득과 이윤을 의미한다.

먼저 누적된 이윤이 없는 S 법인의 배당은 과세되지 않으며 다만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⁸⁶⁵⁾. 만약 배당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주식 매각에 따른 이익으로 간주해야 한다. 초과 배당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배정받은 일반 소득 등에 대한 장부가액 증액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손실 등에 대한 감액을 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Sec. 1368(b), (d)).

한편 가격이 인상된 자산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S 법인은 마치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Sec. 311(b)). 그러나 가치가 하락한 자산을 주주에게 양도하면 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가격이 상승한 자산 배당으로 인정하는 이익은 회사 차원에서 S 법인의 내재적 이윤이나 초과 수동적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이익은 양도된 자산과 이익의 성격에 따라 주주에게 양도되는 S 법인의 일반 소득이나 이익 등에 포함되어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배당받은 금전과 금전이 아닌 자산의 공정가액 합계액이 주식의 장부가액⁸⁶⁶⁾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이익 인정 이후에는 더 이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식의 장부가액은 배당된 자산의 공정시장가격만큼 감소하며 주주 입장에서 볼 때 배당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이 된다⁸⁶⁷⁾.

한편 이전에 일반 주식회사였던 기업이 1982년 이후 S 법인으로 신고하고 C 법인으로

865) 비과세되는 배당은 주식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부채의 장부가액과는 상관이 없다. 물론 공제가 허용되는 손실은 주주가 대여한 부채의 장부가액만큼 증가한다.

866) 주주에게 양도한 소득과 자산 배당이 반영된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867) 한 예로 갑이 100% 소유한 S 법인(주식 장부가액 \$10,000)으로부터 갑이 일반소득 \$20,000 그리고 공정가액이 \$50,000(매입비용 \$20,000)인 자본자산을 배당받으면 S 법인은 \$30,000 (\$50,000-\$20,000)을 자본이익으로 인정하고 갑은 \$20,000 일반소득과 \$30,000 자본소득을 신고한다. 이러한 배당은 주식의 장부가액 \$60,000(\$10,000+\$20,000+\$30,000)이 배당받은 자산의 공정가액 \$50,000을 초과하므로 면세가 허용된다. 과세연도 종료시점 갑의 장부가액은 다시 \$10,000 (\$60,000-\$50,000)이 되며 갑이 보유하게 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50,000이 된다.

로 신고할 당시 내부에 유보한 소득과 이윤이 존재하면 S 법인의 배당이 이러한 유보이윤으로부터 지급될 수 있다(Sec. 1368(e)). 이 경우 S 법인 배당은 두 가지 부류로 분류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유보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은 일반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주주 차원에서 과세된다. 이외 배당금은 주식 장부가액이 영(0)이 아닌 이상 비과세되며 만약 장부가액보다 많은 배당금이 지급되면 초과분은 자본(양도)이익으로 취급되어 과세된다. 여기서 금전이 아닌 배당금은 전술한 대로 공정시장 가격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S 법인 배당이 과세되지 않으려면 누적된 이윤으로부터의 배당이 아니며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잡한 방식의 과세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전적 배당의 경우 먼저 배당이 누적조정계정(AAA)⁸⁶⁸⁾으로부터 지급되면 이는 비과세된다. 누적조정계정이 소진되고 나면 그 다음에 S 법인 배당은 유보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된다⁸⁶⁹⁾. 이와 같은 두 가지 계정이 소진된 이후에도 잔여 배당이 있으면 이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장부가액보다 많은 초과배당은 자본이익으로 처리된다. 한편 C 법인의 누적이윤을 가진 S 법인이 금전을 제외한 자산을 배당하면 상기한 바 누적이윤이 없는 S 법인처럼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 이외 S 법인이 종식된 이후 지급되는 배당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 세금신고와 과세행정

S 법인으로 신고하기를 원하는 기업은 Form 2553을 작성, 주주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Sec. 1362(b)(5)).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기한 이후 제출한 신청서도 용인될 수 있다. 이 밖에 내국세법 444조에 따라 다른 과세연도를 선택하는 기업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⁸⁷⁰⁾. S 법인은 S 법인에만 적용되는 특별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

868) Accumulated Adjustments Account: S 법인으로 있는 동안 발생한 기업 일반 소득(손실)과 별도 기재항목을 통합한 계정으로 면세소득과 이와 관련된 비용은 제외된다. 물론 이 계정으로부터 지급된 배당도 제외된다(Reg. Sec. 1.1367-1(f), 1.1368-2(a)(5)).

869) S 법인은 이러한 순서를 무시하고 배당이 유보이윤으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신고할 수 있다.

870) Temp. Sec. 1.444-3T(b)(1).

이 과세연도 종료 후 3개월 15일 이내에 S 법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Form 1120S). Form 7004를 제출하면 6개월 자동적으로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S 법인은 주주들에게도 신고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Schedule K-1).

또한 1374조(built-in tax)나 1375조(excess net passive income tax)에 의한 특별세 추정세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면 C 법인과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추정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Sec. 6655). 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S 법인 주주들은 S 법인이 보고한 항목과 일관되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실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6037(c)).

V. 연결납세제도

1. 개요

가. 연결납세제도 연혁

일부 계열회사(즉, 모기업과 8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는 연결납세제도를 통한 소득신고가 허용된다(consolidated tax return). 연결납세신고란 계열회사 그룹의 납세의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회사들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는 시각에 따라 계열회사의 소득이 아닌 그룹 전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물론 연결납세신고가 단순히 개별 회사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재무성 규정에 따라 자본소득 등 일부 항목은 통합하여 신고하고 계열회사간 거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한다.

연결납세신고는 원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기업이 이윤을 자의적으로 다른 기업에 배정함으로써 초과이윤세(excess profit tax)를 기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무성 규정으로 도입되었다. 1917년 국세청은 동 규정에 따라 계열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1918년 의회는 초과이윤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를 위하여 연결납세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전쟁 종료 이후 초과이윤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연결납세신고제도도 1921년 선택 사항으로 전환되었지만 내국세법 482조에 따라 여전히 국세청이 정확한 소득신고를 위하여 관련 회사 사이의 거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21년 이후 연결납세신고는 선택 사항이지만 이러한 특혜를 받으려면 1%의 추가세금을 납부해야 하였고 대공황이 한참이던 1934년에는 동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결납세신고제가 부활하였는데 다만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기업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2% 추가세금을 1964년까지 납부해야 하였다. 1969년 조세개혁법으로 별도의 소득신고에 따른

혜택이 많이 줄었고 계열회사는 비록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여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식회사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연결납세신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법인세 신고 중 3% 이하가 연결납세신고지만 전체 과세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재무성에게 연결납세신고에 대한 규정을 공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Sec. 1502)⁸⁷¹⁾. 이에 따라 재무성 규정은 입법 규정으로서 법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 198년과 1954년 두 번 의회는 연결납세규정을 법으로 조문화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재무성 규정이 내국세법보다 더 탄력적이어서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을 포기하였다. 이후 재무성 규정은 1966년과 1990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1990년 규정에서는 계열그룹을 별도의 기업이 모인 집합체가 아닌 단일한 개체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나.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연결납세 신고를 하면 계열회사의 초과 손실(일반 및 자본손실)과 초과 공제를 이월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의 과세소득과 상쇄할 수 있어 즉시 세제상 혜택을 보는 장점이 있다. 계열회사 사이의 자산과 서비스 매각에 따른 이익에 대한 신고를 나중에 신고할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과 투자세액공제 환수 등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계열회사 사이의 배당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 다양한 공제나 세액공제가 그룹 전체 차원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별 회사 차원에서 적용되는 제한규정을 피할 수 있다.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동안에 유보된 소득은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에 반영된다. 따라서 모기업이 자회사를 처분할 때 인정해야 하는 이익이 줄어들거나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한편 일단 연결납세신고를 하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열그룹을 해체하거나

871) 2001년 연방순회법원은 계열그룹의 회사가 별도로 신고한 경우와 연결납세신고를 한 경우 과세상 차이가 나는 재무성 규정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적이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2004년에 내국세법 1502조를 개정하여 다른 신고방식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다(Rite Aid Corporation v. United States).

국세청이 허가할 때까지 계속 연결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자회사는 모기업과 동일한 과세연도를 사용해야 하며 계열사회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손실 그리고 공제가 이연된다. 계열회사의 손실을 이용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납세의무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하여 자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과세 장부가액이 감소하므로 나중에 회사를 처분할 때 인정해야 하는 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회사 주식 매각에 따른 손실을 공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loss disallowance rule). 마지막으로 소액 주주에 대한 권리가 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열그룹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 연결납세신고 자격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규정은 내국세법 1501~1504조에 제시되어 있다. 연결납세신고를 하려면 같은 계열그룹(affiliated group)에 속한 모든 회사가 이에 동의하고 같이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계열회사가 과세연도 중에 그룹 일원으로 합류하면 그룹에 속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포함한다. 여기서 계열그룹이란 주식 소유를 통하여 동일한 모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고리를 말한다(Sec. 1504). 모회사와 여타 자회사로 구성되는 계열그룹은 회사 각자가 별도의 법인세 신고⁸⁷²⁾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계열사간의 거래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계열회사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포함 가능한 주식회사와 주식 소유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회사 성격에 따라 계열 그룹에 포함될 수 없는 주식회사가 있다. 이러한 회사들에는 비영리법인 등 과세되지 않는 주식회사(Sec. 501), 일부 생명보험 혹은 상호보험회사⁸⁷³⁾, 외국 주식회사⁸⁷⁴⁾, 국내의 국제판매회사(DISC), S 법인,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회사나 부동산 투자기금 등은 계열그룹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C 법인으로

872) 별도로 신고를 할 경우 특별규정은 없는데 다만 계열회사 사이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 배당수입공제가 가능하다.

873) 1981년부터는 내국세법 802조나 821조에 따라 과세되는 보험회사도 1504(c)(2)항의 제약 조건 아래서 연결납세신고가 허용된다.

874) 국내기업이 100% 소유한 캐나다나 멕시코 회사는 연결납세신고에 포함될 수 있다.

과세되기로 선택한 파트너십이나 유한책임회사는 계열그룹에 속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을 제외한 주식회사는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주식 소유와 관련해서는 모기업이 최소한 한 개의 자회사 전체 주식⁸⁷⁵⁾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권 있는 주식과 80% 이상의 주식가액을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기업 혹은 다른 계열회사가 개별 자회사의 전체 주식 가운데 80%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투표권이 없는 주식은 80% 이상의 주식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Sec. 1504(a)). 계열그룹과 내국세법 1563조에 규정된 지배그룹(controlled group)은 하나의 과세 개체로 간주되지만 지배그룹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없을 수 있다. 지배그룹에서 정의된 모자회사 관계는 대부분 계열회사 그룹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그 차이는 직접적 소유권에 있다⁸⁷⁶⁾. 즉 계열그룹과 달리 지배그룹에서 모자회사 관계는 직접적 소유가 전제되지 않는다.

라. 연결납세신고 신청

연결납세신고를 하려면 계열그룹에 속한 모든 회사가 동의를 하고 신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 자회사는 동의서(Form 1122)를 최초 연결납세신고서(Form 1120)에 동봉해야 하며 또한 자회사 주식 소유에 대한 내역을 담은 신고서(Form 851)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연결납세신고 신청은 모기업의 납세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세기한 연장일 이전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계열그룹이 해체될 때까지 모든 자회사는 연결납세신고에 동참해야 한다. 자회사가 더 이상 계열그룹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이 회사는 그 후 60개월간 국세청의 허가 없이는 다시 동일한 계열그룹에 포함되어 연결납세신고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모기업이 청산되면 계열그룹이 해체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로 인하여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계열그룹은 국세청에게 납세기한 90일 이전까지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합리적 사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 연

875) 이러한 기준 산정에서 다른 주식으로 전환될 수 없는 투표권이 없는 우선주는 제외된다.

876) 즉 지배그룹의 경우 주식귀속규정(stock attribution rule)이 적용되는데 계열그룹은 그렇지 않다. 이외에도 계열그룹 정의는 과세연도 내내 적용되지만 지배그룹에 대한 정의는 12월 31일만 충족하면 된다.

결납세신고에서 불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 등이다⁸⁷⁷⁾. 이 밖에도 국세청은 법개정으로 일부 부류의 납세자가 불리한 과세 상황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연결납세신고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⁸⁷⁸⁾.

연결납세제도에서는 모기업의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⁸⁷⁹⁾. 따라서 모기업과 과세연도가 다른 자회사는 이를 모기업과 맞춰야 한다. 또한 자회사는 계열그룹에 속한 기간 소득만을 연결납세신고에 포함하고 이외 기간 소득은 별도로 신고한다(short year). 따라서 이러한 자회사는 연결납세신고와 별도신고에 배정될 소득과 공제를 개별 자회사가 사용하는 회계방식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데 법에서는 영구적인 회사장부에 기초한 소득과 공제 구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회계장부의 결산이 필요하다.

만약 과세소득 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면 그룹에 속한 날짜를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반드시 회계방식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자산, 재고, 1231조 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 영업손실 이월(소급) 등이 포함된다(extraordinary items)⁸⁸⁰⁾. 이외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계열회사들이 사용하는 회계방식은 서로 다를 수 있다⁸⁸¹⁾.

2. 연결납세 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

가. 과세소득 산정방식

연결납세신고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액이 계열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3자와의 거래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연결납세제도에서 계열그룹 과세소득(consolidated taxable income)은 원칙적으로 개별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합

877) 더 이상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라 소득신고가 이연된 항목은 소득이 인정되어야 하고 순영업손실, 자본손실과 이월 기부금 등 통합신고항목도 계열사간에 배분되어야 한다.

878) Reg. Sec. 1.1502-75(a)(2).

879) Reg. Sec. 1.1502-76(a)(1).

880) Reg. Sec. 1.1502-76(b)(2).

881) Reg. Sec. 1.1502-17(a).

한 금액에서 같은 그룹 계열회사 거래로 인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결납세신고에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특히 내국세법에 따르면 과세소득은 별도로 산정된 계열그룹 회사 과세소득과 이렇게 별도로 산정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신 통합 산정되는 소득과 공제항목을 합한 금액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과세소득이 결정된다⁸⁸²⁾. 우선 각 계열사가 마치 독립된 소득신고를 하듯이 과세소득을 산정한다. 연후 독립적으로 산정된 소득에서 계열사 사이의 거래와 그룹 차원에서 통합되는 과세항목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 과세소득은 별도 과세소득(separate taxable income)이라고 하는데 계열사의 별도 과세소득을 합하면 통합 과세소득(combined taxable income)이 되고 이를 통합신고 과세항목과 합하면 일반적인 연결납세 과세소득이 된다.

별도 과세소득은 개별 회원사가 마치 독립적으로 신고하듯이 결정된 과세소득에서 두 가지 조정과정을 거친 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조정과정과 관계없이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결정된다.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전술한 대로 계열사 사이의 거래(separate company transaction)와 통합신고 과세항목(items on consolidated basis)이다.

우선 법령에 따라 일정 방식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는 다음의 일곱 개 항목이 있다⁸⁸³⁾. ① 계열사간 거래 ② 계열사 주식에 대한 배당과 계열사 주식, 채권 혹은 기타 채무 상환 ③ 내재적 공제(built-in deductions) ④ 광산 탐사비 제한규정(Sec. 617(h)) ⑤ 회계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득과 손실 ⑥ 초기 재고조정 ⑦ 초과손실 환수 계정. 두 번째로 마치 한 기업에서 발생한 것처럼 통합 신고해야 하는 항목에는 ① 운영업손실 ② 순자본소득과 자본손실 ③ 1231조 소득과 손실 ④ 자선 기부금 ⑤ 배당수입공제와 배당지급공제가 있다.

882) Reg. Sec. 1.1502-76(b)(1).

883) Reg. Sec. 1.1502-13~19.

〈표 V-1〉 연결납세신고를 위한 과세소득 산정방식

주내용	방식
1. 계열사 과세소득 산정	각 회사의 회계방식에 기초한 독립적 신고와 같이 산정
2. 계열사 과세소득 조정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손익 제외(이연) 재고조정 다른 계열사로부터의 배당소득 제외 초과손실(negative investment basis) 조정 내재적 공제(built-in deduction) 이연
3. 계열사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통합신고항목	순영업손실, 자본(양도)소득과 손실, 자선기부금 Sec. 1231 손익(부동산과 감가상각자산), 상해소득 배당수입, % 감모상각, 미국 국내생산 공제
4. 계열사 과세소득 통합	이와 같이 조정된 계열사의 별도 과세소득을 합산
5. 통합된 그룹 과세소득에서 다음의 통합신고 항목 조정	공제: Sec 1231 순손실, 상해 순손실 포함: 순양도(자본)소득 (소급 혹은 이월된 손실 감안) 공제: 자선기부금, % 감모상각 공제: 순영업손실 공제(소급 혹은 이월손실 감안) 공제: 배당수입공제 공제: 미국국내생산 공제
6. 최종 결과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 혹은 손실

자료: *Federal Taxation 2007, Comprehensive*, Prentice Hall, 2007.

이들 다섯 가지 항목은 그룹 차원에서 통합이 된다. 즉, 한 계열회사의 자본소득은 다른 계열회사의 자본손실과 상쇄가 가능하다. 또한 이들 항목은 그룹 전체 차원에서 통합되고 제한규정도 그룹 차원에서 적용된다. 따라서 한 회사의 영업손실을 이용하여 다른 회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계열사별 별도 과세소득과 통합신고 항목을 합하면 연결납세 과세소득이 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소득에 내국세법 11조의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계열그룹의 법인세 납세의무액이 결정된다. 연후 그룹 차원의 최저한세나 세액공제 환수금은 합하고 세액공제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세액이 결정된다.

전술한 대로 법인세는 연결납세 과세소득에 대하여 부과된다. 또한 최저한세도 그룹차원에서 결정되는데 통합 과세소득(combined taxable income)을 기준으로 내국

세법 55~59조를 적용하여 연결납세 최저한세를 구한다. 즉, 연결납세 최저한 과세소득(AMTI)은 조정전 최저한 과세소득에서 조정된 당해연도 소득(CE)과 조정전 최저한 과세소득의 차액 75%를 추가 혹은 감액한 다음 최저한세 순영업손실을 제외한 금액이다⁸⁸⁴⁾. 이들 과세항목은 물론 통합된 금액을 말한다.

연결납세신고에서 최저한세는 잠정 최저한세가 일반 법인세를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저한 과세소득(AMTI)에서 법정 면세액을 제외하고 0.2로 곱한 금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잠정 최저한세가 산정된다. 최저한세는 계열그룹이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 최저한세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저한세 세액공제는 연결납세신고에서의 최저한세 세액공제에 과거 별도 신고할 때 허용되었던 최저한세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이 된다. 물론 계열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제는 당해연도에 조정된 일반 법인세⁸⁸⁵⁾가 잠정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외 별도 신고와 마찬가지로 계열그룹에 대해서도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최저한세 면제가 가능하다. 즉, 총수입이 500만달러(750만달러) 이하인 계열그룹은 최저한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계열그룹의 연결납세신고에서도 허용된다. 이 가운데 일반사업공제는 계열사의 공제를 통합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계열그룹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공제금액은 계열그룹의 순소득세⁸⁸⁶⁾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Sec. 38(c)). 여기서 일정 금액은 잠정 최저한세와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액에서 25,0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25% 가운데 더 많은 금액을 말한다. 이용되지 않은 일반사업공제는 1년까지 소급되거나 20년까지 이월될 수 있다.

연결납세액을 기준으로 일반사업공제를 결정함에 따라서 이윤을 창출한 계열회사는 다른 회사의 손실로 인하여 그룹 전체의 납세의무액이 감소한 결과 자신의 사업공제가 줄어들고 반대로 손실을 본 계열회사는 이월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업공제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그룹 차원에서 결정되므로 그룹 차원의 소득과 최저한세에 따라 공제한도가 결정된다.

884) Reg. Sec. 1.1502-55(b).

885) 조정된 일반 법인세란 법인세에서 최저한세에서 허용되는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86) 순 소득세는 일반 법인세에서 최저한세를 합하고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계열사 사이의 거래(Intercompany transactions)

1) 일반원칙

계열사간 거래는 거래 직후 동일한 계열그룹에 속하는 회원사 사이의 거래를 말한다⁸⁸⁷⁾. 한 예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계열그룹 회사 사이의 자산 매각, 교환, 출자나 기타 양도, 서비스 제공과 이에 대한 경비 지급(발생), 자산 임대, 기술 면허, 용자와 이에 대한 경비 지급(발생) 그리고 모기업 보유주식에 대한 자회사의 배당소득 지급을 포함한다.

계열사 사이의 거래는 실현된 이익을 언제 인정하고 개별 회사가 인정할 이익은 얼마이며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유발한다. 계열그룹의 과세소득이 자의적으로 줄어들거나 이연되지 않고 정확히 산정되기 위하여 재무성 규정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하여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회사의 다른 부서가 서로 거래한 내부거래로 간주된다(single entity approach). 따라서 계열사 사이의 매매는 계열그룹 외부로 해당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손익 인정이 이연된다⁸⁸⁸⁾. 해당 자산이 매각되면 그룹 차원에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데 다만 실제 소득신고와 소득금액 배정은 두 계열사가 별도로 신고하는 것처럼 처리된다(separate companies approach). 1995년 미국 국세청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정하였다. 특히 계열사 거래에서 어려운 점은 언제 동일 개체와 별도 회사로 간주할지인데 일반적으로 계열회사 사이의 손익, 공제, 소득은 별도 회사로 보아 개별 회사에 배정되고 인정 시점은 동일 개체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갑이라는 계열회사(판매자)가 을이라는 계열회사(매입자)에게 100달러(장부가액 70달러)에 상당한 자산을 매각하고 이후 을은 해

887) Reg. Sec. 1.1502-13(b)(1).

888) Reg. Sec. 1.1502-13(e)(3). 다만 국세청이 허용할 경우 모든 계열사간 거래를 이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손익을 인정한다. 일단 국세청이 허가하면 추후 연결납세신고에서 소득인정을 이연할 수 없다.

당 자산을 120달러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로 인한 갑의 소득, 손익과 공제는 (계열회사) 거래항목(intercompany item)⁸⁸⁹⁾으로 규정된다. 즉 앞의 예에서 갑은 이익 30달러의 거래항목이 발생하며 이에 해당하는 을의 대응항목(corresponding item)은 추후 결정된다.

한편 재환산된 대응항목(recomputed corresponding item)이란 만약 갑과 을이 한 회사의 부서였다면 을이 인정해야 하는 대응항목을 말한다. 즉 이 경우 재환산된 대응항목은 50달러이며 을은 20달러를 이익으로 인정한다. 을이 20달러를 과세소득으로 신고하므로 갑은 30달러의 이연된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한다. 손익의 인정 시점은 매입자가 대응항목을 인정하는 시점에 판매자도 거래항목을 인정한다.

실제로 재무성 규정에서는 (계열회사) 거래항목은 을이 동일한 회사 내부에서 거래되었을 때 인정해야 할 재환산된 대응항목에서 을이 산정하는 대응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규정된다⁸⁹⁰⁾.

$$\begin{aligned} & \text{계열회사 거래항목 (인정해야 할 잔존소득(손실))} = \\ & \text{재환산된 대응항목 (단일개체 기준)} - \text{대응항목 (별도회사 기준)} \end{aligned}$$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를 신고할 때 동일한 개체의 거래(single entity approach)로 간주하기 위하여 두 가지 원칙이 이용된다. 우선 계열사간 거래는 동일한 회사의 두 부서가 자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로 취급하고 추후에 제 3자에게 매각할 때 과세상황이 발생한다는 원칙이 있다(matching rule)⁸⁹¹⁾. 한편 거래 당사자가 계열그룹에서 이탈하는 등 더 이상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는 규칙이 있다(acceleration rule). 이러한 두 원칙은 일반회계방식에 우선

889) 거래항목에는 자산 매각이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판매자의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다(Reg. Sec. 1.1502-13(b)(2)(ii)). 따라서 균일 자본화 규정(Sec. 263A)이 판매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임금과 관련비용 그리고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적용된다.

890) Reg. sec. 1.1502-13(b)(2).

891) Reg. Sec. 1.1502-13(c)(1)(ii): 회사 내부거래로 보는 동일개체 거래원칙에서는 손익의 성격과 손익 인정 시점이 결정된다. 특히 과세성격은 거래 당사자들의 사업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한 예로 판매회사가 일반적 상거래를 위하여 보유한 자산을 다른 계열사에게 매각하면 판매자와 매입자 양자에게 이는 일반자산으로 간주된다.

하여 적용된다.

2) 자산 거래

자산 거래에서 거래항목(intercompany item)⁸⁹²⁾에는 자산 매각이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판매 계열사의 직간접 비용을 포함한다. 이에 비하면 대응항목(corresponding item)은 계열사간 거래에 의한 매입 계열사의 소득, 손익과 공제항목을 말한다. 한 예로 매각 계열사로부터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나중에 제3자에게 판매할 때 발생하는 손익이 대응항목이다. 이외 취득한 상각자산을 매입사가 감가상각 공제를 하게 되면 이 또한 대응항목이 된다. 이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손실, 비용 혹은 비과세소득도 대응항목이다.

일반적으로 계열사 사이의 자산 처분에 따른 손익(거래항목)은 개별 회원사가 별도로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인정된다⁸⁹³⁾. 다만 연결납세신고의 과세소득에는 이러한 손익이 즉시 포함되지 않고 이연되어 일정 사건(corresponding event)이 발생하여 매입자가 소득, 손익 혹은 공제를 인정해야 하는 시점에 소득신고에 포함된다. 한 예로 해당 자산을 계열그룹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점에 손익이 인정하거나 또는 해당 자산을 감가(감모) 상각될 때에도 인정한다. 또는 계열회사간 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서비스 등을 자본 처리하고 상각할 때 인정한다. 이외 계열그룹으로부터의 분리나 모회사가 독립신고를 하는 시점도 이러한 사건에 속한다.

전술한 대로 계열사 사이의 거래에서 판매자와 매입자는 독립된 개체로 취급되어 마치 제3자와의 매매가 발생한 것처럼 일반적 규정에 따라 회사 장부에 기록된다. 계열회사 사이의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 금액과 그 성격은 거래 시점에 별도 신고를 하는 것처럼 산정한다. 즉, 현금과 채권을 지급하고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비용이며 보유기간도 취득 시점부터 시작한다. 다만 거래를 통하여 실현된 이익은 연결납세

892) 따라서 균일 자본화 규정(Sec. 263A)이 판매된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임금과 관련비용 그리고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적용된다(Reg. Sec. 1.1502-13(b)(2)(ii)).

893) 그러나 주식회사 창업(Sec. 351)과 유사물품 교환(Sec. 1031)는 이러한 원칙에서 제외되어 전체 혹은 일부 손익이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에서 인정, 즉 포함되지 않고 대응 상황(corresponding event)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된다⁸⁹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갑이 몇 년 전 매입한 자산(장부가액 8,000달러)을 2008년 을에게 10,000달러에 매각하면 갑은 별도 신고를 하는 것처럼 2,000달러의 이익을 기록하되 연결납세신고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연한다. 을의 장부가액은 10,000달러이며 보유기간도 이 때부터 시작한다. 이후 2010년 을이 자산을 15,000달러에 매각하면 5,000달러가 대응항목으로 일반회계방식에 따라 신고하고 갑도 거래항목으로 이전에 이연된 이익 2,000달러를 인정한다. 이처럼 갑과 을이 별도 과세소득(separate return taxable income)을 산정할 때는 계열사간의 거래를 마치 제3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기록하고 나중에 대응항목을 신고할 때 계열그룹의 손익을 재산정한다. 손익을 재산정할 때 매입 계열사인 을은 취득비용이 아닌 매각 계열사인 갑의 장부가액을 활용한다⁸⁹⁵⁾.

만약 해당 자산이 을의 입장에서 볼 때 자본자산이면 연결납세신고에서도 자본소득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을의 입장에서 해당 자산이 재고자산이라면 신고되는 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간주한다. 또한 을이 할부 판매를 하면 이연된 이익도 즉시 인정되지 않고 할부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순차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만약 매입자의 장부가액이 판매자의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판매자의 감가상각 기간과 방식이 거래 후에도 계속 적용된다(Sec. 168(i)(7)).

한편 감가상각도 동일개체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즉, 매입 계열사는 매입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비용으로 결정하지만 이러한 장부가액에서 판매 계열사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치 판매사가 자산을 매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전과 동일한 방식⁸⁹⁶⁾으로 감가상각하고 판매자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입자가 새로 자산을 구입한 것처럼 감가상각한다⁸⁹⁷⁾. 이 때 자산 매각으로 판매자가 매년 인정 신고해야 하는

894) Reg. Sec. 1.1502-13(c)(3).

895) 2007년 당시 갑의 과세소득에는 \$2,000의 이익이 기록되지만 조항목에서 이를 이연된 이익으로 간주하여 삭제되고 연결납세신고에는 갑의 이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2010년 신고에서는 을의 과세소득에 \$5,000의 이익이 기록되고 갑이 이연된 이익 \$2,000을 인정함으로써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에 \$7,000이 포함된다.

896) 즉 판매자의 상각방식과 상각기간을 매입자가 그대로 인용하여 상각한다(Sec. 168(i)(7), Anti-churning rule).

이익(매입사 장부가액의 증액분)⁸⁹⁸⁾은 매입 계열사가 장부가액 증액으로 인하여 새로운 자산으로 간주하여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과 같다. 따라서 연결납세신고에서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은 자산을 매각한 계열사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감가상각 공제하는 금액과 같다. 이는 초과 상각금액이 계열사 사이의 거래로 인정해야 하는 이연된 이익의 일부와 같기 때문이다.

만약 매각 계열사가 더 이상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우 잔존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손익은 해당 계열사가 그룹에서 이탈하기 직전에 연결납세신고에 반영해야 한다(acceleration rule). 이 때 매입 계열사는 이월받은 장부가액을 일반 회계방식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이 밖에도 내국세법 1033조에 따른 비자발적인 자산 전환이나 비과세 양도 등의 상황에서도 손익을 이연하지 못하고 인정해야 할 수 있다.

3) 자산 이외 거래

거래대상이 자산이 아닌 경우 계열회사 사이에 발생한 거래로 인한 소득, 손익 그리고 공제항목은 통상적으로 그러한 거래를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과 비용으로 분류되어 각 계열회사가 신고하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⁸⁹⁹⁾. 만약 두 회사가 동일한 회계방식을 사용한다면 연결납세신고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두 항목이 상쇄되고 영(0)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므로 내국세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계열사와 이를 소득으로 제공받는 계열사 사이에 과세항목 인정이 일치해야 한다(Sec. 267(a)(2)). 즉, 원래 각자가 사용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각각 다른 과세연도에 신고할 과세항목이 상대방 계열사가 소득으로 처리할 때까지 매입 계열사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한 예로 두 계열사 모두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갑이 을에게 대출을 하고 이자는 내년에 받기로 하면 이자소득과 이자비용은 개별 회사가 각자 금년 신

897) Reg. Sec. 1.1502-13(c)(7).

898) 이와 같은 이익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국세법 1239조에 따라 일반소득으로 간주된다.

899) Reg. Sec. 1.1502-13(b).

고에 기록하되 연결납세신고에서는 상쇄된다. 그러나 갑이 현금주의를 사용하면 을이 발생주의에 기준하여 비용을 신고하더라도 내년까지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자본경비로 처리되는 서비스를 다른 계열사에게 매각하면 이 또한 계열사 간 거래로 간주된다. 따라서 매입한 계열사가 취득비용을 자본으로 취급하여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대응 항목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한 계열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회계방식과 상관없이 이에 따른 소득을 상각기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계열사 사이의 배당을 소득으로 인정해야 할지 여부는 배당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수익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은 연결납세신고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수입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⁹⁰⁰⁾. 배당소득이 아닌 자본의 회수에 해당하는 배당은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을 감액하는 효과가 있다(Sec. 301(c)(2)). 그러나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 달리 연결납세신고에서는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배당에 대하여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 이후 자회사 주식 매각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에 포함된다. 만약 자산을 배당하는 회사가 손익을 인정해야 하면 그러한 손익도 계열사 간 거래로 간주된다. 자산을 제공받은 측의 장부가액은 자산을 제공한 측의 장부가액에 인정된 손익을 포함한 금액이 된다.

4) 연결납세신고 항목

(a) 계열사 배당수입

같은 계열그룹에 속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dividend)은 계열사 거래로 취급되어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며 그렇지 않은 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일반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70, 80, 100% 배당수입공제가 허용된다. 계열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배당소득이 아닌 분배 즉, 기업 수익을 초과하는 배당은 배당하는 회사 주식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만약 배당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900) Reg. Sec. 1.1502-13(f).

은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에 포함된다⁹⁰¹⁾. 따라서 일반 신고와 연결납세 신고에서 다른 점은 이러한 초과분이 원래 자본소득으로 처리되지만 연결납세신고에서는 배당한 주식회사 장부가액이 마이너스 값을 갖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은 금전적 성격의 자산(money)과 이외 자산의 장부가액 그리고 배당을 하는 계열사가 인정한 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내국세법 311(b)조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제공하면 이익을 인정해야 하므로 배당자산의 공정가격이 배당금액이 된다. 이 때 인정 이익은 계열사간 거래항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배당하는 회사는 배당 시점에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제공받은 계열사가 감가상각할 때(즉, 대응항목을 신고할 때) 그 이익을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연결납세신고에서 배당수입공제에 대한 규정은 일반 신고와 같다. 계열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별도로 산정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합쳐져서 2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배당소득의 70%가 공제된다. 만약 지분이 20% 이상이면 배당소득의 80%가 공제된다. 그리고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였지만 계열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로부터의 배당은 100%가 공제된다. 한편 일반 신고와 마찬가지로 배당수입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에 따라 한도가 있다. 우선 80% 공제금액이 연결납세 과세소득⁹⁰²⁾의 8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연후 70% 공제 금액이 연결납세 과세소득의 70%를 초과하면 초과분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그러나 전체 배당수입공제 금액이 순영업손실을 유발하거나 혹은 이를 증액하는 효과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⁹⁰³⁾.

(b) 순영업손실(NOLs)

연결납세신고를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계열회사의 순영업손실을 이월하지 않고 다른 계열회사의 소득과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계열그룹 차원의 순영업손실은 물론 소급 혹은 이월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연결납세신고 차원의 순영업손실이 일부 혹은

901) Reg. Sec. 1.1502-13(f).

902) 이 때 기준이 되는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은 배당수입공제, 순영업손실과 자본손실 이월금을 제외한 조정된 과세소득이다.

903) Reg. Sec. 1.1502-26(a)(1).

전부 계열 자회사의 별도 신고로 이월 혹은 소급될 수도 있다. 반대로 별도신고 당시 개별 자회사의 순영업손실도 일정 제약조건 아래 연결납세신고로 이월(소급)되어 사용될 수 있다. 이외 순영업손실과 자본손실 그리고 손실기업(loss corporation)의 초과 세액공제(excess credit)에는 연결납세신고 382~384조의 제약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연결납세 순영업손실을 산정하려면 먼저 개별 회사의 과세소득 혹은 손실을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이월 혹은 소급되는 순영업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연후 계열사별로 따로 산정한 과세소득 혹은 순영업손실을 합하여 연결납세 순영업손실을 결정한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어떤 자회사 손실이 다른 자회사 소득과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자회사는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별도 신고 시점의 소득과 상쇄할 수 없으며 계열그룹 차원의 손실만 이월 혹은 소급된다.

연결납세 순영업손실에 대한 규정은 내국세법 172조상의 별도 신고와 유사하다⁹⁰⁴⁾. 특히 개별 자회사의 과세소득에 연결납세신고 순자본소득을 합하고 연결납세신고 배당수입공제, 자선기부금 공제와 1231조 순손실⁹⁰⁵⁾을 제외하면 그룹 차원의 순영업손실이 결정된다. 연결납세 순영업손실은 이전 2년간 소급 혹은 이후 20년간 이월될 수 있다. 모기업이 원하면 소급을 하지 않고 이월만 할 수도 있다.

만약 계열사가 과거에 별도 신고를 하였으면 연결납세 차원의 손실은 계열사별로 배정되어 이전 2년간 소급할 수 있다. 이 때 과세소득을 상쇄하기 위한 손실의 배정방식은 아래 공식과 같다. 이 공식에서 보듯이 연결납세 차원의 손실을 산정할 때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자회사는 소급된 손실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상쇄할 수 없고 손실이 발생한 기업(loss corporation)이 사용한다.

각 계열사에 소급 배정되는 연결납세 순영업손실=

$$\frac{\text{개별 계열사의 순영업손실}}{\text{손실이 발생한 계열사의 순영업손실의 합}} \times \text{연결납세 차원의 순영업손실}$$

새로운 자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급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연결납세 차원의

904) Reg. Sec. 1.1502-21(e).

905) 이들 항목은 계열사별 과세소득 등을 산정할 때 제외된 항목이었다.

손실 중 계열그룹에 나중에 속하게 된 자회사의 손실은 이전 2개 연도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과 공제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손실이 소급되는 회계연도에 해당 자회사가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규 기업이어야 한다.

한편 과세연도 중간에 자회사가 그룹에서 이탈하면 연결납세 손실 중 해당 자회사에게 배정되는 손실을 자회사가 별도 신고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자회사가 이월받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그룹에서 이탈하는 과세연도 연결납세신고에서 공제되고 남은 금액에 한정된다.

계열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손실공제는 두 가지 제약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우선 별도신고연도 제한규정(SRLY rule)⁹⁰⁶⁾은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loss corporation)을 이용할 목적으로 이 기업을 계열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에 별도로 신고된 영업손실 중에서 연결납세신고로 소급 혹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손실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손실은 해당 계열회사가 그룹에 기여한 연결납세 과세소득으로 한정된다.

즉, 별도신고를 할 때 영업손실이 발생한 자회사로서 이러한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별도신고연도로 지정되면⁹⁰⁷⁾ 손실이 연결납세신고로 이월 혹은 소급될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우선 손실 이월에 있어서는 별도신고연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손실은 다음 중 적은 금액이 이월될 수 있다. 손실기업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동안 계열그룹에 기여한 소득 혹은 손실의 누적액⁹⁰⁸⁾에서 이전에 사용된 순영업손실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 해당 과세연도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 혹은 순영업손실 이월금⁹⁰⁹⁾. 이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그룹에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순영업손실이 사용될 수 없으며 추후 과세연도로 이월된다. 즉, 순영업손실을 창출한 자회사의 과세소득을 상쇄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한편 손실 소급에 있어서는 자회사가 계열그룹에서 이탈하여 별도신고를 하면서 받

906) separate return limitation rule(Reg. Sec. 1.1502-21(b)).

907)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순영업손실을 그룹이 취득하지 않은 연도는 별도신고연도에서 제외된다.

908) 구체적으로는 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자회사(들)의 소득, 이익, 공제와 손실을 고려하여 결정된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909) Reg. Sec. 1.1502-21(b)(1).

생한 손실을 이전에 연결납세신고연도로 소급하여 공제를 할 때 공제금액이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제 가능한 금액은 자회사가 연결납세신고를 하였던 모든 과세연도에 그룹에 기여한 소득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도 내재적 공제(built-in-deduction)도 별도신고연도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내재적 공제는 한 예로 연결납세신고를 할 때 자산을 매각하여 손실을 보지만 가격 하락이 별도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가상각이나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이다. 즉, 어떤 회사가 별도신고를 할 때 10,000달러에 구입한 자산이 해당 회사가 계열그룹에 속하게 되기 이전에 자산가격이 5,000달러로 하락하였으면 자회사가 해당 자산을 연결납세신고를 하면서 공제할 수 있는 손실은 별도신고 제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⁹¹⁰⁾. 이와 같은 규정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취득하여 나중에 손실을 인정함으로써 별도신고연도 제한규정을 우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별도신고에도 적용되는 손실제한 규정(382조)이 연결납세신고에도 적용된다. 즉, 비과세되는 기업 재편이나 매입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 변경 이후 계열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순영업손실에는 제한이 가해진다. 구체적으로 382조는 매입가격의 상당 부분이 해당 업체의 과세상 특성⁹¹¹⁾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382조가 발동하려면 최소한 주식 50%포인트가 변경되어야 한다. 만약 영업손실이 발생한 계열그룹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되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⁹¹²⁾이 적용된다.

소유권 변동 이후 이전 연도 순영업손실이 이월되어 사용될 수 있는 금액은 손실이 발생한 기업(들) 주식 장부가액에 3개월 연방면세채권 이자율(소유권 변동 시점)을 곱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이 때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하며 손실이 발생한 계열그룹의 소유권 변동에서는 다른 회원사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된다. 만약 이 금액이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보다 많으면 초과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⁹¹³⁾.

910) Reg. Sec. 1,1502-15(a).

911) 382조 제약규정은 내국세법 382~384조에서 제한되는 과세특성 항목(순영업손실, 자본손실, 외국납부세액, 일반사업공제, 최저한세 공제, 내재적 손익)에 적용된다.

912) Reg. Sec. 1,1502-91(c).

913) Reg. Sec. 1,1502-91(a).

(c) 연결납세 자선 기부금 공제

그룹 차원에서의 자선 기부금 규정은 일반 법인세 신고에서 적용되는 규정과 같다. 그룹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한도를 무시하고 각 계열사의 기부금과 연결납세 혹은 별도신고할 때 이월된 기부금을 합하면 이 금액이 통합 기부금이다. 공제가 허용되는 기부금은 조정된 연결납세신고 과세소득⁹¹⁴⁾의 10%로 제한된다.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초과 기부금은 향후 5년간 이월된다. 계열사가 그룹에서 이탈하면 초과 기부금은 전체 기부금에서 해당 기업이 기부한 금액의 비율 대로 배분된다.

(d) 미국 국내생산 공제

2004년부터 연결납세 차원에서 미국 국내생산 공제가 허용된다. 계열그룹 공제는 연결납세 국내생산 소득과 국내생산 공제 이전 과세소득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국내생산공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그룹은 80%가 아닌 50% 주식 소유를 기준으로 정의되며 보험회사도 계열그룹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내생산 공제를 산정할 때 계열그룹에 속하지 않는 회사까지 포함하여 공제금액을 정하고 개별 회사가 창출한 소득에 따라 공제액을 배분한다⁹¹⁵⁾.

(e) 연결납세 자본(양도)소득(손실)

계열회사가 자신의 별도 과세소득(separable taxable income)을 산정할 때 자본(양도)손익, Sec. 1231 자본(양도)손익과 상해손익 등은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한다. 이들 소득은 그 대신 그룹 차원에서 연결납세신고에 모두 포함된다. 즉, 자회사의 자본손익⁹¹⁶⁾과 Sec. 1231의 이익 그리고 이월(소급)된 순양도손실은 연결납세신고에서 순양도이익이나 손실이 된다⁹¹⁷⁾. 이렇게 합산된 순자본소득은 과세소득으로 일반 법

914) 즉, 과세소득에서 배당수입공제, 운영업손실, 이월된 양도손실과 자선기부금 공제를 무시하고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Reg. Sec. 1.1502-24(a)).

915) Treasury Regulation 199.

916) 자회사의 자본손익은 1231조 거래나 이월(소급)된 순자본손실을 무시하고 모두 합산된다.

인세 세율로 과세되며 합산된 순양도손실은 단기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이전 3년간 그리고 이후 5년간 이월된다.

계열사간의 거래로 발생한 부동산 등 1231조 자본손익은 매입한 회사가 해당 자산을 계열그룹 이외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일정한 사건(corresponding event)이 발생할 때까지 신고가 이연된다. 따라서 연결납세신고상의 1231조 순이익은 이를 제외한 자회사의 이익 혹은 손실을 합한 금액이다. 만약 그룹 전체 차원의 이익⁹¹⁸⁾이 손실보다 많으면 순이익은 연결납세신고상의 1231조의 이익으로 장기보유 자본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 이전의 1231조 순손실로 인하여 일반소득으로 환수되지 않아야 한다. 반대로 그룹 차원에서 1231조 거래로 순손실이 발생하면(혹은 손상도난 손실) 이는 일반 손실로 처리되어 소득에서 공제된다.

한편 계열사 자본소득과 손실에는 계열사간 거래로 인한 자본손익이 제외된다. 계열사간 거래에 따른 자본손익은 대응 항목이 발생해야 손익으로 인정된다. 각 계열사의 자본손익이 결정되면 개별 자회사의 장기와 단기 자본손익⁹¹⁹⁾이 합산되어 별도의 순소득 혹은 손실이 결정된다. 연후 이들 손익이 합산되어 그룹 차원의 장기와 단기 자본 손익이 결정되며 나아가 이를 합한 금액이 연결납세신고서상의 순자본소득이 환산되어 법인세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연결납세신고에서 자본손실의 소급(혹은 이월)은 순영업손실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⁹²⁰⁾. 연결납세신고에서 이월되는 자본손실은 단기 자본손실로 간주되어 순이익 혹은 손실을 결정하는 일부가 된다. 연결납세신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손실 이월(소급)금액은 그룹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은 이월(소급)과 자회사가 별도 신고를 할 때 이월(소급)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한편 연결납세신고 차원에서 발생한 자본손실에 대하여 자회사는 자신에게 배당되는 자본손실과 과거 별도신고를 할 때 발생한 자본소득을 상쇄해야 한다. 계열사간의 자본손실 배당은 순영업손실 배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⁹²¹⁾.

917) Reg. Sec. 1.1502- 22(a)(1).

918) 1231조 자산과 일부 자본자산에 대한 손상이나 도난에 따른 순이익을 포함한다.

919)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1231조 순이익도 함께 포함하여 산정한다.

920) Reg. Sec. 1.1502- 22(b).

921) 자회사가 계열그룹에서 이탈하면 자신에게 배당되는 자본손실 이월금과 별도 신고 당시 이

별도 신고를 할 때 발생한 자본손실을 연결납세신고에 이월 혹은 소급할 수 있는 금액은 SRLY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자본손실이 발생한 자회사가 연결납세신고 순 자본소득에 기여한 금액과 연결납세신고 총순자본소득 중 적은 금액만 연결납세신고로 소급 혹은 이월할 수 있다. 또한 382조상의 손실 제한규정이 연결납세신고와 별도 신고의 자본손실 이월과 순영업손실에도 적용된다(Sec. 383(b)). 세 번째로 이러한 특별 규정 이외에도 내국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자본손실의 이월(소급)과 이월에 따른 순영업손실의 발생 등에 대한 일반적 제한규정이 있다(Sec. 1212(a)(1)(A)(ii)).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은 매년 자회사 소득과 손실 그리고 모기업과 상위 자회사에게 지급된 배당을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한 규정은 파트너십과 S 법인에 적용되는 규정과 유사하다. 이러한 장부가액 조정은 모기업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자회사 소득이 이중과세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을 취득한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모회사의 장부가액부터 시작하여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조정된다. 우선 주식 장부가액은 연결납세신고에서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자회사 소득과 이익에 따라 상향조정되고 손실과 공제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된다. 이러한 조정에서 순영업손실을 포함하지만 이연된 이익과 손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자본손실은 제외된다. 면세이자 소득 등 비과세소득도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 다른 하위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제공받는 상위 자회사 장부가액도 상향 조정된다.

한편 이전 연도로 소급되거나 다른 회원사 과세소득과 공제되는 당해연도 순영업손실은 주식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월된 순영업손실은 손실 공제가 사용되는 연도에 장부가액을 줄인다. 또한 순영업손실이나 자본손실이 기한이 지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면 해당 연도에 장부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접대비 50%, 비과세소득 관련 경비, 267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손실 등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비자본 경비도 장부가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자회사를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순영업손실이나 자본손실이 취득 후 다른 자회사 소득과 상쇄 공제되면 장부가액이 하향 조정된다. 또한 취득 이전 손실이 시한 만료로 사용할 수 없으면 해당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월된 자본손실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

줄어든다. 이외 기업 수익과 관계없는 배당에 대해서도 장부가액이 하향 조정된다. 손실 등에 따른 조정으로 주식 장부가액이 영(0)이 되면 추가 손실은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에 기록된다. 추후 자회사가 소득을 창출하거나 추가 출자가 발생하면 이를 초과손실과 상쇄될 수 있다.

다. 신고 및 납부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는 계열그룹은 모든 계열회사의 소득과 경비 등 과세항목을 기록한 연결납세신고서(Form 1120)를 과세연도 종료 후 2.5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모기업이 Form 7004를 작성하고 연결납세신고 납세의무액을 추정 예납하면 6개월 신고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연결납세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계열사 신고기한은 연결납세신고가 계열사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⁹²²⁾.

연결납세신고 여부에 대한 결정은 모기업의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⁹²³⁾. 계열그룹이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면 국세청이 독립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한⁹²⁴⁾ 계속 이러한 신고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첫 과세연도에 모든 계열사는 연결납세신고에 동의한다는 의향을 담은 Form 1122를 제출하며 그 후에는 새로 계열그룹에 속하게 된 회사만 Form 1122를 제출한다. 매년 연결납세신고를 할 때 계열그룹은 Form 851(Affiliation schedule)을 작성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예납세액, 주식 보유현황과 변경 상황을 신고한다.

연결납세신고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계열그룹이 단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연결납세 과세소득과 관련 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대형 그룹의 경우 개별 계열사의 영업실적을 각자 따로 Form 1120에 작성하고 그룹의 전체 영업 결과를 최종 Form 1120에 반영하여 제출한다.

모회사는 과세 목적상 개별 계열회사와 그룹을 대표하는 대리인이다. 따라서 연결

922) Reg. Sec. 1.1502- 76(c).

923) Reg. Sec. 1.1502- 75(a)(1).

924) 국세청이 허용할 경우 신고기한 이전에 연결납세신고에서 독립 신고로 변경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나면 변경할 수 없다. 독립 신고에서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할 때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납세신고를 하는 동안 계열회사의 세금과 관련하여 모회사 이름으로 대리하며 자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연결납세신고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다⁹²⁵⁾. 따라서 계열 자회사는 별도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사용한 방식을 변경할 수 없고 연결납세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과 교신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결납세신고를 하면 모회사와 개별 자회사가 계열그룹 전체의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⁹²⁶⁾. 따라서 계열사가 자신에게 배당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다른 계열사에 연대 책임이 있다. 며칠이라도 계열회사이었던 회사는 해당 과세연도 그룹 전체의 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도 있다(several liability). 그러나 연결납세에 대한 과소납세액이 부과되기 이전에 주식 매각이나 교환으로 어떤 자회사가 더 이상 계열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그룹 세금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도 있다. 국세청이 다른 계열사로부터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그룹에서 이탈한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에 배당되는 과소납부액만 징수할 수도 있다.

계열그룹이 해체되는 경우 더 이상 연결납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때는 신고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전술한 대로 연결납세신고를 하는 계열회사들은 모회사의 과세연도를 사용해야 하지만 회계방식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내국세법 448조에서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같은 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들은 통상적으로 같은 회계방식을 사용한다.

연결납세신고를 선택하고 처음 2년간은 그룹 차원이나 혹은 개별 자회사 차원에서 추정세액을 예납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과세연도부터는 그룹 차원에서, 즉 연결납세신고 기준으로 추정세액을 예납해야 한다⁹²⁷⁾. 세액 예납과 관련하여 계열그룹은 하나의 주식회사로 간주되어 계열회사 수와 관계없이 금년도와 이전 연도 그룹 소득을 기준으로 예납세액이 결정된다. 또한 내국세법 6655(d)(2)항의 대기업에 대한 과소납부규정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전 3년간 과세소득 100만달러)도 계열회사 전체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925) Reg. Sec. 1.1502- 77(a).

926) Reg. Sec. 1.1502-6(a).

927) Reg. Sec. 1.1502- 5(a).

제3편 소비세제

I. 개별소비세

1. 서론

가. 연방소비세 규정

연방정부 소비세는 ‘미국 국내에서 소비, 판매 혹은 제조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혹은 수입세’⁹²⁸⁾로서 일부 스포츠, 교환거래 그리고 업종에도 면허세의 형태로 부과된다. 연방소비세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목으로 1965년 소비세 감세법(Excise Tax Reduction Act)에서 상당수의 소비세를 폐지한 바 있으나 1990년과 1997년 일부 소비세가 다시 부활한 바 있다⁹²⁹⁾. 이후 2004년과 2005년 일련의 법을 통하여 소비세가 다시 정비되었다⁹³⁰⁾.

연방소비세는 내국세법에 기초하여 부과되지만 1990년대 말 수출품에 대한 차별이라는 위헌성 여부로 법원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즉, 헌법 제1조 9항 5절은 수출품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고 있는데 외국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는 수출품 보험료에 대하여 소비세를 과세하자 대법원은 1996년 이를 위헌으로 판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항만유지료 그리고 1999년 석탄 수출에 대한 석탄세도 위법 판정을 받았다⁹³¹⁾.

연방소비세는 특정 상품의 구입이나 특정 행위 발생시 부과되어 물품과 서비스, 초

928) a duty or impost levied upon the manufacture, sale or consumption of commodities within the country (Code Sec. 4001~5000).

929) The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0 and the Taxpayer Relief Act of 1997.

930)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and the Energy Tax Incentives of 2005.

931) US Masters Excise Tax Guide(2005).

과이득, 직업 등의 다양한 과세대상이 있다. 크게 보면 소비자나 판매자에 의한 물품 구입시 부과되는 소매세와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제조업자세가 있고 이 밖에도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부담금, 외국 보험상품세, 직업세가 포함되는 도박세, 환경세 그리고 등록의무 채권 부담금 등이 있다⁹³²⁾.

또는 내국세법 Subtitle D에 의하여 각종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과 Subtitle E에 근거한 총기, 주류, 담배세로 구분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소비세는 미국 국세청(IRS)에 연방소비세 신고서(Form 720)로 신고하지만 이 가운데 총기류와 주류 및 담배는 수입 혹은 국산 여부에 따라 관세청과 알코올·담배세와 거래청(TTB)이 징수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Gas Guzzler Tax(자동차 연비세, Form 6197)과 트럭/버스 도로사용세(Form 290) 등은 Form 720을 사용하지 않는다.

932) Melissa Laine(2007).

〈표 1-1〉 연방정부 소비세 분류 및 관련 법규정

연방소비세 분류	연방소비세 세목	IRS Code and Reg.
소매세(Retail taxes)	사치품 특정 유류 자동차(중형 트럭, 트레일러, 트랙터)	Sec. 4001,2 Sec. 4041,2, 4081, §48.4041 Sec. 4051,2 §48.4051
제조업자세 (Manufacturers taxes)	자동차 관련 유류 타이어 항공유 Gas Guzzler세(연비 미달 자동차세) 석탄 스포츠 낚시용구 활화살 부품 총기류 백신세(vaccines Tax)	Sec. 4081,2 §48.0 Sec. 4071, §48.4071 Sec. 4091, §48.4091 Sec. 4064 Sec. 4121, §48.4121 Sec. 4161,2 Sec. 4161, §48.4161 Sec. 4181, 5811, CFR § 53.91 Sec. 4131
시설 및 서비스 (Facilities and Services)	통신서비스 항공운송 수상운송(승객) 항구유지세	Sec. 4251,2,3 Sec. 4261,2,3 §49.4261 Sec. 4271,2(재화) Sec. 4471,2, §43.4472 Sec. 4461,2, 4293
외국 보험상품	Foreign insurance policies	Sec. 4371 §46.4371
도박 및 게임세 (Taxes on wagering and games)	도박세(excise tax on wagers) 도박업세(wagering occupational tax)	Sec. 4401,21 §44.4401 Sec. 4411,2 §44.4412
트럭/버스 도로사용세	Truck and bus highway use tax	Sec. 4481,2,3 §41.4481,2
미등록채권세	Obligations not in registered form	Sec. 4701, 163(f)
주류 및 담배세 (Alcohol and Tobacco Taxes)	담배세 주세	Sec. 5701~5 Sec. 5001, 5051, 5041 Sec. 5091, 5121,5111
총기류(Firearms)		Sec. 4181,5812,5845,5801
환경세 (Environmental taxes)	오존파괴물질세 위험물질기금(폐지)	Sec. 4681,2 Superfund Revenue Act

연방소비세는 현재 유류, 항공운송, 총기, 담배, 주류, 정보통신 등의 재화와 일부 연금과 건강보험, 면세기관의 일부 행위 등의 서비스 등에 부과된다.고가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는 2002년 12월에 폐지되었다. 많은 소비세가 목적세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신탁기금(Black Lung Disability Trust Fund)에 사용된다. 한 예로 국내에서 채

굴된 석탄에 부과되는 석탄세는 폐병으로 고생하는 광부의 폐병장애신탁기금에 적립되어 사용되고 유류세와 타이어세는 도로기금(Highway Trust Fund)에 적립되어 연방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나. 주요 연방소비세와 세율

관세를 제외한 연방소비세는 국내에서 소비 혹은 제조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으로 일부 서비스와 시설 및 직업 등에도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에는 유류, 항공연료, 타이어, 총기, 담배, 주류, 트럭 등의 대형 자동차, 연비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자동차(gas guzzler), 스포츠 낚시기구, 활과 화살대, 백신, 화학제품 그리고 석탄 등이 있고 통신, 외국보험, 도박, 채권등록 등의 서비스 그리고 항공 및 수상시설에 시설세로 부과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총기와 주류 그리고 담배는 알코올·담배거래청(TTB)⁹³³⁾이 징수를 담당한다.

연방소비세 중 일부는 목적세로서 특정한 목적을 위한 기금에 예치되어 사용되고 환경세로 부과되기도 된다. 한 예로 국내 석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폐병장애신탁기금에 적립되어 사용되고 유류세는 연방 고속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하여 사용된다. 사치세는 1996년까지 고급 자동차 가격의 9%가 과세되었으나 2002년 말 폐지되었다.

주로 재화에 부과되는 제조업자세에서 추가 공정 물품, 직·간접적으로 판매되는 수출품, 운송용품 그리고 비영리 교육단체용 물품은 면세된다. 유류, 항공유, 백신, 수송운송시설 이용, 주류, 담배, 오존파괴 화학품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보험 등에는 종량세로 세금이 부과되며 대형 트럭 등에는 도로사용세로 매년 종량세가 부과된다. 이 밖의 연방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업 제품, 통신 서비스(3%) 항만 유지(화물가액의 0.125%), 도박(0.25%) 등에는 종가세가 부과되며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권 가격에 7.5%, 비행편에 3달러의 종량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류, 담배 그리고 도박업에 종사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도 일정 금액의 영업세가 적용된다.

933)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표 1-2〉 연방정부 소비세 연도별 세율의 변화

	1944	1964	1990	1995	2003	2007
주세¹⁾						
증류주(proof 갤런) still wine(와인 갤런)	\$9	\$10.5	\$12.5	\$13.5	\$13.5	\$13.5
14도 이하	15 ¢	17 ¢	17 ¢	\$1.07	\$1.07	\$1.07
14~21도	60 ¢	67 ¢	67 ¢	\$1.57	\$1.57	\$1.57
21~24도	\$2	\$2.25	\$2.25	\$3.15	\$3.15	\$3.15
맥주(31 갤런 배럴)	\$8	\$9	\$9	\$18	\$18	\$18
담배세						
3 bs 이하 작은 시가(천개당)	75 ¢	75 ¢	75 ¢	\$1.125	\$1.828	\$1.828
3 bs 이상 큰 시가(천개당) ⁴⁾	\$2.5~20	\$2.5~20	\$8.5~20 ¹⁾	\$30	20.8%(\$48.75)	20.8%(\$48.75)
3 bs 이하 작은 담배(천개당)	\$3.5	\$4	\$8	\$12	\$19.5~40.95	\$19.5~40.95
파이프 담배(파운드)	10 ¢	10 ¢	—	—	\$1.1	\$1.1
제조업자세						
휘발유(갤런) ⁶⁾	1.5 ¢	2 ¢	9.1 ¢	18.4 ¢	18.4 ¢	18.4 ¢
도로 타이어(파운드) ³⁾	5 ¢	10 ¢	15~50 ¢	15~50 ¢	15~50 ¢	15~50 ¢
트럭(판매가격)	7%	10%	12%	12%	12%	12%
총기·탄약(판매가격)	11%	11%	11%	11%	11%	11%
권총(판매가격)	11%	10%	10%	10%	10%	10%
화살(판매가격)	—	—	11%	11%	11%	11%
낙시용구(판매가격)	—	10%	10%	10%	10%	10%
Gas Guzzler세(연비세) (\$1,000~7,700 기준연비 이하)	—	—	—	—	다양	다양
기타 세						
일반 전화 서비스(지급액)	15%	10%	3%	3%	3%	3%
돌 전화 서비스(지급액)	25%	10%	3%	3%	3%	폐지
항공여객운송(지급액) ²⁾	15%	5%	8%	10%	혼합세 ³⁾	혼합세 ³⁾
국제선	—	—	\$6	\$6	\$13.4	\$14.5
항공운송(국내화물)	—	—	5%	6.25%	6.25%	6.25%
도박(도박금) ⁴⁾	10%	10%	2%	0.25%	0.25%	0.25%
도박업자(1년) ⁴⁾	—	\$50	\$50	\$50	\$50	\$50
외국보험상품(보험료)						
생명보험	1%	1%	1%	1%	1%	1%
기타보험	4%	4%	4%	4%	4%	4%
석탄 판매(톤) ⁵⁾	—	—	\$1.1, 55 ¢	\$1.1, 55 ¢	\$1.1, 55 ¢	\$1.1, 55 ¢
환경세(superfund)	—	—	—	—	—	—
원유(배럴)	—	—	9.7 ¢	9.7 ¢	—	5 ¢
화학제품·물질(톤)	—	—	22 ¢~\$4.9	다양	다양	다양

〈표 1-2〉의 계속

	1944	1964	1990	1995	2003	2007
판매단계						
보석(판매가격)	20%	10%	10%	-	-	-
모피(판매가격)	20%	10%	10%	-	-	-
고급자동차(판매가격)	-	-	10%	10%	2%	-
등유: 도로 차량용(갤론) ⁶⁾	-	-	15.1¢	24.4¢	24.4¢	24.4¢
휘발유 대체원료(고속도로)	-	-	9.1¢	-	-	18.4¢
비상업용 항공 휘발유 이외 유류(갤론) ⁷⁾	-	-	14.1¢	21.9¢	21.9¢	21.9¢
내륙수로용 연료(갤론)	-	-	11.1¢	24.4¢	24.4¢	22.4¢
개스홀(갤론) ⁸⁾	-	-	3.1¢	12.4~18.4¢	13.2~15.4¢	18.4¢

주: 1. () 안은 과표 기준.

- 1) 주류업자 영업세는 2005년 폐지.
- 2) 2002년 7.5%+\$3.0/국내편.
- 3) 타이어세는 3,500 파운드 이상의 타이어에 10 파운드당 9.45¢를 부과.
- 4) 불법 도박은 각각 2%, \$500.
- 5) 시가의 경우 세금의 한도가 \$48.75, 석탄의 경우 최대 판매가격의 4.4% 이하.
- 6) 2007년 기준으로 갤런당 휘발유 18.4¢, 경유 연료는 24.4¢(기차용은 면세), 액화천연가스 11.9¢, 액화석유가스 13.6¢.
- 7) 2007년 기준으로 휘발유를 제외한 상업용 항공유는 4.4¢.
- 8) 2005년부터 알코올연료(개스홀)에 대해서는 감면세율 대신 사용될 알코올 등에 대한 공제 적용.
- 9) 유류는 2011년 폐지 예정인 LUST(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Trust Fund) 기금 포함.

자료: *Tax Foundation, Fact and Figures on Government Finance*, 38th(eds).

다. 지방정부 소비세

미국 소비세는 연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는데 세수의 대부분은 지방정부 소비세이다. 지방소비세는 일반판매세와 주류, 담배, 유류에 대한 개별판매세 그리고 유흥세, 경마세, 숙박세, 보험료세, 공공서비스세(public utilities) 등이 있다. 지방정부 소비세는 각 지방의 전통과 특성에 따라 부과되므로 지방별로 세부담의 편차나 비과세 범위의 차이가 크다.

주로 주정부 차원에서 과세되는 일반 판매세는 소매단계에서 재화 및 특정 서비스를

구입 혹은 사용하는 데 대하여 일률과세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재판매용 제품 구입이나 부품 매입 혹은 사업용 기계·설비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사용세는 역내에서 구입하였다면 과세대상인 제품 혹은 재판매용 제품을 사용(임대)할 때 등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판매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 판매세에서 문제가 되는 거래는 우편주문 등의 역외 사업자가 역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과 실질적 연관성(substantial nexus)이 있는 거래, 예를 들면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면 해당 지역의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서비스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유지, 보수, 보관, 청소, 임대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전문·개인 서비스는 대개 비과세한다. 자동차, 숙박 그리고 유형자산의 임대도 과세되며 개인이 사용하던 구형제품을 판매하면 일정 금액 이하 등을 조건으로 면세한다.

진단서가 있는 의약품, 가정용 식품은 대부분 면세되고 일부 주에서는 의류나 신발, 특히 유아용 제품을 면세하기도 하고 컴퓨터로 전송되는 소프트웨어도 주에 따라 서비스로 취급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르다. 나아가 각 지방은 산업 유치나 농업보호 등을 위하여 세율 감면을 하기도 하며 일부 주에서는 조세 수출(tax exporting)을 위하여 혹은 비가치재 소비를 지양하기 위하여 고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일반 판매세 세율은 주에 따라 2.9~7%까지 부과되지만 대개 5% 혹은 6%가 일반적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도 일반 판매세를 부과하는데 이를 합치면 평균세율은 7.2%가 된다. 판매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사업비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자의 납세순응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주는 일정 한도 내에서 판매세 일부를 환급해주기도 한다.

미국 주정부들은 협약을 통하여 조세경쟁을 지양하고 과세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SSTP)⁹³⁴⁾을 개시한 바 있다. 판매세 간소화를 위한 협약(SSUTA)⁹³⁵⁾은 조세법의 균일한 정의, 세율 간소화, 표준화된 면세 및 과세행정, 균일한 원천지 규칙과 세무조사 등을 지향한다. 특히 동 협정은 이중세율을 지양하고 다만 식료품과 의약품

934) Streamlined Sales Tax Project.

935) Streamlined Sales and Use Tax Agreement.

등 극히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차등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정부는 특정 제품에 대한 개별판매세를 부과한다. 개별판매세 세수는 일반 판매세의 약 절반에 이르고 이 가운데 유류세의 비중이 가장 크며 보험료, 공공 서비스, 담배, 유흥 및 주세의 순으로 세수 비중이 큰 편이다. 주류는 모든 주가 과세를 하거나 정부가 직접 주류를 독점 판매한다. 주류는 증류주와 포도주 그리고 맥주로 구분되어 종량세가 부과된다. 맥주는 병맥주·생맥주, 증류주는 알코올도수 그리고 포도주는 종류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주류, 유류 그리고 담배는 비가치 재로서 혹은 주요 세목으로서 과세행정상 특별 관리를 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외 지방에 따라 도로사용세, 역외 지역에서 구입한 유류에 대한 사용세, 도박세 혹은 연예나 스포츠 공연에 대하여 따로 과세가 되기도 한다. 서비스의 경우 호텔 숙박 또는 전화 등의 통신을 이용한 정보 혹은 유흥 서비스가 과세된다.

2. 과세행정

가. 세금 신고 및 납부

대부분의 연방소비세는 4월 30일을 기점으로 분기별로 미국 국세청(일반적으로 신시내티 국세청)에 Form 720을 작성, 신고한다(수정신고는 Form 720X). 그러나 월별 신고가 원칙인 도박세(Form 730), 연별 신고의 도로사용세(Form 2290), 과세대상 유류의 장치장과 운송자(월별 기준, Form 720-TO, CS)는 다른 양식을 사용하고 Gas Guzzler(Form 6197), 환경세(Form 6627)의 경우 Form 720과 함께 다른 신고서를 작성한다. Form 720의 신고 마감일은 매 분기 익월 말일이며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 간 세금 신고가 연기될 수 있다(Sec. 6081).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해당 업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미리 세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일부 유류의 경우 1개월 혹은 ½개월을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Form 720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소비세는 납세액의 사전 예탁이 필요한 세목과 그렇지 않은 세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환경세, 통신 및 항공교통세, 유류세, 소매세, 선박여객세, 기타 소비세, 사치세, 제조업자세와 해외보험세가 있고 후자는 남

시용품, 선외엔진, 활·화살, 내륙운하용 연료, 재고세(floor stock tax, 조세 변경시 재고에 대한 세금 조정) 그리고 연료용으로 판매되었으나 연료로 사용되지 않은 알코올, 바이오 디젤 등이다. 이들은 납세신고와 함께 세금을 납부한다.

연방소비세의 경우 은행 등 지정된 기관에 납부의무가 있는 세액의 95%⁹³⁶⁾를 사전에 예약하여야 한다(Reg. §40.6302(c)-(f)). 다만 납부할 금액이 분기 평균 2,500달러 이하면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분기별로 하지만 세금 예약은 1개월에 두 번씩 하여야 한다. 만약 연간 총예약금이 20만달러를 초과하면 전자이체(EFT)를 이용하여 예약해야 하는데 소득세 등 다른 세금 때문에 반드시 전자적으로 이체해야 하는 납세자도 소비세를 전자예약해야 한다(Electronic Fund Transfer). 이외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도 가능하다(EFTPS,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월별 혹은 1개월에 두 번씩 신고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95%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네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세금 예약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Safe Harbor Rule, §40.6302(c)-1(b)(2)(i)). ① 현 분기에 납부한 각 예약금(each semimonthly deposit)이 이전 분기('look back quarter') 납부의무세액의 6분의 1 보다 많고 ② 적시에 예약되었으며 ③ 현 분기에 부족한 금액이 세금신고일까지 제때 납부되며 ④ 현 분기 세금이 이전 분기에 부과된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현 납세주기(semimonthly period)의 납부액을 확정하지 못한 업체가 예약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준다.

총기류와 주류 및 담배의 수입자와 제조자 혹은 판매자는 수입 혹은 국산 여부에 따라 관세청과 알코올·담배거래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⁹³⁷⁾이 과세행정을 담당한다. 주류와 담배제품의 세금납부는 TTB Forms F 5630.5, 총기류는 Form 5630.7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주류와 맥주 그리고 포도주 생산자와 판매자, 증류주 생산자와 수입자 그리고 판매자, 알코올을 이용하여 주류 이

936) 납부의무세액이란 해당 주기의 납세액과 환불이나 할인 등에 따라 조정된 세액을 의미한다. 납부의무가 발생한 주기의 실제 세액을 계산하여 예약할 수도 있고 해당 주기가 속한 달의 총납부의무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예약할 수도 있다. 통신 및 운송 연방소비세의 경우 실제 징수한 세금이 아니라 구매자에게 청구한 세금 혹은 통행권에 기초한 세금을 예약할 수 있다(alternative method, §40.6302(c)-3(b)(1)).

937) 2003년 국토안보법에 따라 행정업무가 알코올·담배·총기청(ATF, Federal Bureau of Alcohol, Tobacco and Firearms)에서 알코올·담배거래청(TTB)으로 이관되었다.

외 제품을 생산하는 자, 담배제품과 껴런 종이를 생산하는 자, 수출보세창고 경영자가 Forms F 5630.5의 신고대상이다. Form 5630.7의 신고대상은 총기류의 생산, 수입 그리고 판매자이다.

나. 공제·환급 및 감면

소매 및 제조업자세는 과세대상 제품이 판매 혹은 임대된 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보험, 운송, 배달, 설치료 등 제품 배송과 관련되어 실제 발생한 비용은 제외된다(Reg. §48.4216(a)-2(b)). 제품의 반환, 매입자에게 제공된 할인이나 공제에 따른 가격 조정(일부는 지역 광고비도 포함)도 가능하다. 이외 농업, 비도로, 수출, 교육용 운송, 지역 공공버스용 유류는 비과세된다.

유류를 제외한 여타 항목의 가격조정은 신고시 미리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실제 판매된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혹은 원래 가격과 조정에 따른 공제 혹은 환급을 신청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Sec. 6316(b)91)(A)). 이 밖에 지방판매세도 과표에서 제외된다. 추가 공정을 위하여 면세된 부품을 매입한 생산자는 판매가격 혹은 해당제품의 첫 생산자에게 지불한 금액 즉,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Sec. 4223(b)(2)). 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중개인에게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환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제품 반환을 제외하면 가격조정을 할 수 없다.

이전 세금신고에서 과다납부된 세금은 Form 720을 통하여 이자와 함께 추후 신고에서 공제를 받거나 Form 8849 혹은 Form 843을 통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나 환급은 세금 신고 후 3년 혹은 세금 납부 후 2년 중 늦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Sec. 6511(a)). 세금의 공제나 환급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만약 3년 기한 이내에 신청할 경우 환급을 신청하기 이전 3년간 납부한 세금으로 제한된다(이외는 2년간 납부세액). 과다세금이 제3자로부터 징수한 것이라면 해당 세금을 환불해준 사실이 서약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매업자의 경우 할인 등의 가격조정, 반품 등의 사유로 인한 세금 공제나 환급도 가능하다(Sec. 6416(b)(1)(A)).

소매세나 제조업자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 대신 다음 신고에서 공제를 신

청할 수 있다(Sec. 6416(d)). 다만 제조업자세가 부과되는 연료의 경우 그렇지 않다. 또한 최종 구매자(도매업자, 유통업자나 소매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거나 혹은 최종 구매자에게 세금을 돌려주었다든지 혹은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과다 징수로 인한 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은 대체연료 사용, 가격조정에 따른 환급, 일부 제조업자세 대상 물품과 타이어가 있다. 가격 조정에서 반품이나 할인과 지역방송에 따른 환불 등이 발생하면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돌려준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Sec. 6416(b)). 그러나 신품 교체(trade-in)는 환급대상이 아니다.

연방정부 소비세가 면제되는 대상 혹은 용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우선 대체연료세, 트럭 등에 대한 소매세 그리고 제조업자세는 다음의 용도로 판매되면 면세되며 따라서 공제나 환급이 허용된다. 수출품, 선박과 항공기 공급품, 지방정부 용품 그리고 면세 교육기관에 판매된 제품(Sec. 4221(a)). 이외 버스용 타이어세와 4041조상의 특정연료 생산에 사용된 휘발유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수출용을 제외하면 LUST 기금은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4041(a)조, 4081조, 4121조가 적용되는 경유, 등유, 항공유, 석탄과 4064조상의 Gas Guzzler세도 면세대상이 아니다. 백신세(4131조)도 선박, 항공기,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면세단체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에 따른 환급 혹은 공제는 제조업자가 신청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조업자는 제품이 면세용으로 사용될지 모른다. 따라서 최종 구입자가 최종 판매자에게 면세 증명서를 제공하면 이를 제조업자가 받아 면세를 신청하고 나중에 최종 구매자에게 환급한다.

제조업자세가 부과된 제품이 다른 과세대상 제품이나 자동차를 생산, 제조 혹은 부품으로 사용될 경우 이는 과다납부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하다(Sec. 6416(b)(3))⁹³⁸⁾.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를 제외하면 여기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시험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추가 제조에 따른 면세는 그러나 석탄세(4121조)과 4081조(제조업자세)가 적용되는 연료용 유류(Sec. 6416(b)(3), 비연료용 유류는 면세)은 제외된다.

938) 단 LUST기금(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 Trust Fund)은 면세대상이 아니다(Sec. 6430). 2005년 이후 에너지세 지원법에 따라 LUST 기금은 연방소비세가 면세되어도 환급되지 않는다.

타이어세(4071조)도 버스, 수출품, 지방정부 용품, 비영리교육단체 용품, 선박이나 항공기에 공급되는 제품의 일부로서 판매되면 면세가 가능하다. 소매세(4051조)가 적용되는 트럭이나 트레일러 등도 마찬가지이다(Sec. 6416(b)(6)). 이와 같은 연방소비세 면세는 중고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 매입자가 부채를 갚지 못해도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다(bad debt).

연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세를 납부한 뒤 비과세 목적으로 사용하면 추후 신고에서 환급이 아닌 공제가 이루어지고⁹³⁹⁾ 정부기관과 면세기관에 대해서만 환급이 허용된다. 비도로용, 항공기, 버스용 휘발유에 부과되는 제조업자세(내국세법 4081조)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면세가 되는 소비세가 분기별로 750달러 이상이면 간략한 절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Sec. 6427(i)(2)). 면세대상은 유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대개 농어업, 버스, 교육,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그리고 수출용 유류 등이다. 이외 도로교통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동기구도 면세된다.

유류의 경우 환급 혹은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다소 복잡한데 휘발유 등과 경유와 증유, 두 가지 사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휘발유, 알코올연료, 바이오디젤 그리고 대체연료 혼합물⁹⁴⁰⁾의 경우 다음의 경우 면제된다. 농어업용, 비도로용, 상업 항공용, 선박용, 수출용, 지방정부와 비영리교육단체용, 학교, 지역, 도시간 버스용, 휘발유 생산용이 아닌 재고(blendstock). 농업용은 환급이 아닌 공제가 허용되며 정부용과 비영리단체도 마찬가지이다(Sec. 6420(a)).

비과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유와 증유는 면세용임을 표시하는 염색요건을 충족하면 backup tax⁹⁴¹⁾를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Reg. §48.4082-4(c)). 연료세가 면제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 ② 기본적인 정부

939) Sec. 6427(k).

940) 2004년 고용창출법(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에 따라 원래 저세율이 적용되던 알코올연료, 바이오디젤과 대체연료는 세금 납부 후 세액공제된다.

941) 면세용 연료가 자동차나 기차에 사용되어 과세될 때 이를 백업세라고 하며 자동차 등의 운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데 판매자도 연료가 과세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공동책임이 있다. 세율은 24.4¢/갤런이지만 경유용 기차의 경우 세율이 2005년 3.3¢/갤런에서 점차 인하여 2007년 무세화된다.

기능을 위한 지방정부와 도로용이 아닌 연방정부 차 ③ 학교버스 ④ 지역버스(도시간 버스는 17센트/갤런 환급, 2011년 4.3센트/갤런으로 인하) ⑤ 비영리교육단체 ⑥ 수출(경유) ⑦ 경유차 이외의 용도(가정난방용) ⑧ 경유기관차(백업세 적용)⁹⁴²⁾.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의 경우 최종 판매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제조업자세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연료는 최종 매입자가 환급 신청할 수 있다(Sec. 6427(1)(6)).

대체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알코올연료, 바이오디젤 그리고 재생 디젤연료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소득세 세액공제가 허용된다(Sec. 40(a), (e)(1)). 우선 알코올연료의 경우 내국세법 38조상의 일반사업공제로 제공되기 때문에 38조의 제한규정과 39조상의 소급 및 이월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Form 6478). 석유, 천연가스나 석탄 등 으로부터 생산된 알코올연료와 에탄올에서 에틸셀룰로스를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알코올 혼합연료 생산에 사용된 알코올 갤런당 60센트 그리고 가스나 특정 유류와 혼합되지 않은 순수 알코올연료(알코올 최소 10% 함유)에도 같은 금액이 공제된다(Sec. 40(b)(3), 40(d)(3)(B)). 알코올 혼합물의 경우 동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연료용으로 판매할 때 공제를 신청하고 순수 알코올연료는 자동차에 알코올연료를 투입하는 소매업자가 신청할 자격이 있다. 이 밖에 에탄올 연료의 경우 연간 6천만 갤런 이하의 알코올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자에게 1,500만 갤런의 에탄올까지 갤런당 10센트의 소득세 공제가 허용된다(Sec. 40(b)(4)).

2005년부터 일부 바이오디젤 연료에도 소득세 공제가 허용되었다(Sec. 40A). 이에 추가하여 2005년 에너지세 지원법⁹⁴³⁾에서는 소규모 농산물 바이오디젤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다. 또한 동법에 따라 재생 디젤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바이오디젤 혼합연료⁹⁴⁴⁾ 생산에 사용된 바이오디젤 갤런당 50센트가 공제된다(Sec. 40(A)(b)(1)(A)). 디젤연료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바이오디젤연료도 같은 금액의 공제가 허용되는데 다만 난방용은 공제가 안되고 자동차 연료만 공제된다. 공제 신청을 위하여 납세자는 바이오디젤 생산자나 수입자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942) 항공유의 면세대상도 이와 유사하다.

943) The Energy Tax Incentives Act of 2005.

944) 바이오디젤과 디젤연료의 혼합물로 디젤연료가 부피기준으로 최소 0.1%를 함유해야 하며 부피 측정에서 등유는 제외된다.

2005년 에너지세 지원법에 따라 콩이나 옥수수 등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업체에게는 1,500만갤런을 한도로 갤런당 10센트의 소득세 공제가 추가로 허용된다. 다만 이 제품이 공제를 받으려면 바이오디젤 혼합연료 생산에 사용되거나 사업상 연료로 이용되거나 혹은 소매단계에서 판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폐기 자원(biomass)으로부터 생산된 재생 디젤연료는 재생 디젤 혼합연료의 생산에 사용되면 갤런당/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Sec. 40A(f)(1), 40A(b)(1)(A)). 또한 디젤연료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재생 디젤도 사업용 연료로 사용되거나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되면 같은 금액의 공제가 허용된다. 바이오디젤이나 재생 디젤을 생산하는 자는 국세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Sec. 4101(a)(1)). 또한 추후에 알코올연료나 바이오 디젤 등을 혼합물에서 분리하거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제가 취소된다.

다. 세금 징수 및 조사

연방소비세는 세금신고서를 기초한 과세를 통하여 징수된다. 납세자는 사전에 정해진 신고서에 납부세액과 부과세액이 결정된 사실관계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납세고지하면서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 세금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30-days letter, Sec. 6331(d)).

신고의 결함, 체납, 벌금, 이자 등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assessment)는 일단 적정 과세(prima facie correct)로 간주되며 사실과 다름을 증명할 부담은 납세자에게 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년간 신고 오류를 적발, 정정 과세할 수 있다. 단, 신고해야 할 세금을 누락하고 그 금액이 신고세액의 25%를 초과하면 기소시효는 6년으로 늘어난다(Sec. 6501(a),(c),(e)). 어떤 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정부에 납부할 때 해당 세금은 ‘미국정부의 특별 위탁기금’(special fund in trust for United States)으로 간주되어 세금과 같이 법적으로 취급된다(Sec. 7501(a)).

미국 지방 국세청(Regional Service Center)은 세금 신고서를 심사하여 서면조사 혹은 현장조사를 결정한다. 연방정부 관료는 직간접적으로 국세청에게 특정 납세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 혹은 종료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Sec. 7217(a)). 일반적으로 서신왕래 등의 교신을 통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드물게는 납세자 사무실에서 장부 등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납세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소 혹은 과다 납부가 발생하면 심사관은 잠정적인 결정에 대한 고지(30-days letter)를 통보한다. 고지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납세자는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0일까지 납세자로부터 응답이 없으면 결손 고지가 통보된다. 이의절차는 관련 세액에 따라 정식 서면항의(세금과 벌금을 포함한 10,000달러 이상), 약식 서면이의(2,500~10,000달러) 그리고 구두이의(2,500달러 이하)로 나뉜다. 국세청을 통한 이의 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이차고지(90-days letter)를 받고 조세심판소에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다.

또한 국세청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과세와 징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이 고지되면 즉시 납부해야 한다(Jeopardy assessment, Sec. 6862(a)). 납세자는 그 대신 납세의무액에 상당한 담보(bond)를 제출하면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납세자가 세금 납부나 담보금 제출을 거부하면 국세청은 압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levy, Sec. 6331(b)). 이와 관련하여 세금부담 의무가 있는 구매자가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판매자 등 납세자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이 구매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이 납부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장부 등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⁹⁴⁵⁾. 이러한 기록은 부과제척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과세대상 물품을 추가 공정을 위하여 여타 제조업자에게 세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납세자는 구입자로부터 추가 공정과 면세 증명서 등 모든 관련 서류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Sec. 6001).

945) 이들 기록은 주된 영업장소, 신고서 복사본, 과세대상거래, 수출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라. 처벌과 과징금

세금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25%를 한도로 납부할 세액의 5%가 매월 벌금으로 가산된다(Sec. 6651(a)). 단,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고의적인 신고 기피의 경우 벌금은 5%가 아니라 75%를 한도로 매월 15%가 된다(fraudulent failure).

이자는 과세 결정이나 통지 없이도 붙기 시작한다(Sec. 6601(a)). 과소납부에 의한 체납액에 대한 이자는 3개월 정부채권(TB)의 이자율에 3%가 합산된 이자율과 같다. 주식회사의 체납액이 상당할 때에는 이자율이 연방 단기이자율(short term rate)에 5%의 금리를 합한 것과 같다(Sec. 6621(c)). 이자 이외에도 합리적 사유가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 체납세금의 0.5%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총 25%를 한도로 매월 체납세금의 0.5%가 벌금으로 가산된다(Sec. 6651(a)). 납세자가 제때 신고하고 세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국세청과 합의하면 벌금은 0.5%에서 0.25%로 인하될 수 있다.

세금 예탁을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은 예탁을 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 기간이 5일을 넘지 않으면 세금의 2%, 5~15일은 5% 그리고 15일 이상은 10%이다(Sec. 6656(b)). 그러나 체납통지서 날짜로부터 10일이 경과하거나 혹은 지체없는 납부(jeopardy)를 요구한 날이 경과한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은 15%로 증가한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고의적인 태만이 아니라면 세금 예탁을 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세금을 (제3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책임지지 않거나 혹은 납부하지 않는 자는 해당 세금의 10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Sec. 6672(a)). 여기서 의도적(willfully)란 자발적, 의식적 그리고 고의적임을 의미한다. 벌금이 부과된 자가 고지 후 30일 이내에 벌금의 150%에 상당한 담보금(bond)을 제공하고 다음의 행동을 취하면 벌금이 유예된다. 환불소송을 제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며 환불 요청이 거부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외 과실이나 법에 대한 경시로 인한 부정확한 신고에 대해서는 납세 부족액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Sec. 6662(a)). 유류 관련 세금에서는 업체들의 등록

요건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1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4101(a)).

한편 소비세의 형사처벌 조항을 보면 우선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자는 중죄(felony)로 간주되어 여타 벌금과 함께 유죄 판정시 소송비용 이외 최대 10만달러(주식회사는 50만달러) 혹은/그리고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Sec. 7201). 또한 고의적으로 제3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그 책임을 무시하는 자는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Sec. 7202). 이 밖에 고의적으로 잘못된 세금신고를 하거나 이를 도운 자, 담보와 문서를 가장한 자, 과세대상 물품을 국세청으로부터 은폐한 자 그리고 납세자의 재산을 은폐한 자도 소송비용 이외 10만달러(주식회사는 50만달러) 혹은/그리고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Sec. 7206).

3. 소매세(Retail taxes)

소매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2002년 자동차를 마지막으로 폐지된 사치세 이외 대체 연료, 항공유, 내륙수상연료 등 특정 유류세와 트럭과 트레일러 등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다.

가. 사치세(Luxury Taxes)

원래 사치세는 1990년 당시 고급 승용차, 보트, 비행기 그리고 귀금속과 모피 판매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처음에는 일정 한도의 초과 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부과되었다⁹⁴⁶⁾. 세금부과 한도는 자동차 3만달러, 보트 10만달러, 비행기 25만달러, 귀금속과 모피는 1만달러 이상의 제품으로 정부가 구입한 자동차와 보트 그리고 영업용 비행기는 면제되었다. 원래 과세기한은 1991년부터 1999년까지였으나 1993년 당시 승용차를 제외한 다른 제품에 대한 사치세는 소비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구입을 지연하는 등 기업의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고급 승용차는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2002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다⁹⁴⁷⁾.

946) The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0.

947) The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of 1996.

〈표 1-3〉 미국 사치세(Luxury Taxes) 연도별 과세액

(단위: 백만달러)

세목	1991~1998	1991~1993	1994~1998
총합	2,948.7	887.2	2061.6
고급승용차 (2003년 폐지)	2,872.9	807.1	2,065.7
보트 (1993년 폐지)	34.2	35.9	-1.7
비행기 (1993년 폐지)	0.9	0.9	-0.02
귀금속 (1993년 폐지)	39.4	41.6	-2.2
모피 (1993년 폐지)	1.5	1.7	-0.2

주: 마이너스 값을 갖는 과세액은 정산후 환급액을 의미함.

자료: ECO/WKP(2001)39, OECD.

승용차를 제외한 사치품목 중 1993년에 폐지되기까지 세수실적을 보면 1991년부터 3년간 총 8억 9천만달러 중 승용차가 약 8억 1천만달러로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트 3,600만달러, 귀금속 4,200만달러에 달하였다. 그 후 승용차에 대한 세수는 연간 약 3억~4억달러에 이르렀다.

1993년 이후 2002년까지 유지된 고가 승용차 사치세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일정 금액 이상의 자동차 판매가격에 부과되며 임대도 판매로 간주된다(Sec. 4001(a)). 과세대상은 6,000파운드 이하의 4륜 승용차나 트럭, 밴이며 리무진은 중량과 관계없이 사치세가 부과된다(Sec. 4001(b)(2)). 그러나 사업용이나 택시와 같은 운송용으로만 쓰이는 승용차, 경찰, 화재예방, 공공 안전 등 정부 구입 자동차와 구급용 자동차는 면제되며 장애자를 위한 부품도 면제된다. 이외 다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승용차도 면제대상이다.

사치세는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판매자는 소비세 신고서(Form 720)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 과표는 일반적 상거래에서의 소매가격으로 승용차 사용을 위하여 부과되는 수수료는 모두 포함되며 그 대신 지방정부의 일반 판매세는 면제된다. 또한 중고차의 물물교환(trade-in)은 과세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사치세 세율은 1990~1995년까지 10%였으나 1996년부터 매년 1%포인트씩 하향 조정되고 2002년 12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과세대상 자동차는 1990년 당시 3만달러 이

상의 자동차로서 그 후 누적된 물가상승률에 따라 2,000달러 단위로 인상되어 종료 예정인 2002년에는 4만달러 이상의 차에 대하여 3%가 과세되었다.

청정연료나 전기자동차의 경우 환경 혜택을 유발하는 자동차 생산비용이 4만달러 기준에서 공제된다(Sec. 4001(a)(2)(B)). 환급대상 구입자는 판매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신 판매자는 Form 843을 작성, 신고함으로써 환급받는데 그 신고기간은 세금 납부일로부터 2년 혹은 신고일로부터 3년 중 더 늦은 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Sec. 6416).

나. 특정 유류세(Special Fuels Tax)

연방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위하여 6개의 소비세(Highway Trust Fund Excise Taxes)가 부과되는데 이 중 하나가 특정 유류세이다. 이외 3개 소비세는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며 나머지는 대형 운송차 및 타이어에 부과되는 사용세이다. 이들 세금은 2004년 법 개정을 통하여 세율이 인하되고 공제가 허용되는 등 대폭 개편된 바 있다⁹⁴⁸⁾.

자동차나 항공기에 사용되는 연료(휘발유, 등유, 경유)는 내국세법 4081조에 따라 비축 터미널이나 정제공장에서 반출될 때 혹은 미국으로 유입될 때 제조업자 단계에서 과세된다. 그러나 법 4041조에 따라 소매단계에서 일부 유류가 과세되기도 한다. 이는 첫째,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법 4081조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유류(special 혹은 alternative fuel)를 과세하고 둘째, 제조업자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널리 유통되는 유류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다(backup tax). 따라서 소매세인 특정 유류세와 제조업자세의 유류 과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IRS Code 4041조에 따라 다음의 유제품에는 연방소매세가 적용된다. 경유 및 등유, 휘발유 대체연료를 포함한 특정 자동차 연료, 압축 천연가스, 비상업용 항공유, 일부 유류 혼합제 그리고 내륙수로 상업용 운송 연료. 과세 시점은 차이가 있지만 대개 저

948) 2004년 고용창출법(The 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과 2006년 안전 등에 관한 교통법(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Of 2006)

장소나 정제공장에서 반출될 때 혹은 미국으로 유입될 때 과세된다.

적정한 과세를 위하여 국세청에 등록이 필요한 업자는 ① 휘발유 이외 항공연료의 제조자, 수입자, 도매업자 ② 상업용 항공연료 구매자 ③ 유제품 비축장소(terminal) 이외 장소에서 유제품을 혼합하는 자 ④ 유제품 정제업자, 비축업자, 휘발유 구매 산업 ⑤ 경유용 버스, 기차 운영자 ⑥ 정부 및 농업용 비염색(undyed) 경유나 등유의 최종 판매자 ⑦ 대규모 등유 최종 판매자 ⑧ 바이오 경유나 알코올 생산 및 수입업자 등.

이들 유제품은 판매자가 자동차나 항공기 탱크에 공급될 당시 과세대상 판매로 간주된다. 대량 저장소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구매자가 과세대상 유류라는 사실을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면 해당 제품은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Reg. §48.4041-5 (a)(2)). 만약 구매자가 이를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판매자는 면세 판매, 구입자 이름과 구입날짜, 구입량 등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 특정 자동차 연료(special motor fuels)와 휘발유, 항공유, 내륙수로용 연료와 경유에는 지하저장탱크 누출기금(LUST, Leaking Underground Storage Tank)으로 갤런당 0.1센트의 세금이 유류세에 추가하여 부과된다(Super Fund Act of 1986). 이 기금은 지하 저장탱크 밖으로 유출되었지만 소유주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유제품을 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Sec. 4041). 이 기금은 원래 2005년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연장되어 2011년 10월에 폐지된다.

다음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제품은 특정 유류세가 면제된다. ① 비도로 상업용⁹⁴⁹⁾ ② 농업용 ③ 선박이나 항공기용 ④ 수출용 ⑤ 정부 및 비영리 교육단체용 ⑥ 묘목이나 응급의료용 항공연료 등. 수출용의 경우 재무성 규정 §48.4082-1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증명서가 구입자로부터 제시되어야 한다. 수출용을 제외하면 LUST 기금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면세가 허용되려면 구입자로부터 면세를 입증하는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2004년 이전에는 경유, 등유, 휘발유 대체품, 비휘발유 항공유에 최소한 알코올 10%를 혼합하면 소비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Sec. 4041(k)). 그러나 2004년 일자리 창

949) 비도로용 상업용이란 사업 활동을 하는 자가 도로용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Sec. 4041(b)(1)(C)). 따라서 모터보트나 경유기차를 제외한 어업용과 상업적 목적의 운송용 경유를 포함한다.

출법에 따라 감면조항은 폐지하고 그 대신 법 4081조에 따라 제조업자세를 공제하기로 하였다. 공제규모는 납세자가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알코올량(겔린)과 51센트(에탄올이 없으면 60센트)를 곱하여 산정된다. 여기서 알코올은 재생산되는 원료(예, biomass)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아닌 알코올에서 채취된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을 의미한다.

1) 경유 및 등유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유용 자동차의 소유주, 임차인 혹은 운영자에게 판매 혹은 사용되는 등유와 경유에는 겔린당 24.3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물론 제조단계에서 제조업자세가 부과된 제품에는 특정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기차의 경우 과거 경감된 유류세가 부과되었지만 2007년부터는 LUST 기금만 적용된다. 이외 승객 20명 이상의 시내버스는 겔린당 7.4센트(2011년 4.3센트)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2005년부터는 경감된 세율로 구입하지 않고 그 차이를 공제 혹은 환급받는다. 대중교통용 도시간 버스와 학교용 버스는 유류세가 면제되며 바이오 디젤은 면제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혼합물은 소득세나 소비세를 세액공제받는다.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특정 유류세는 유제품 비축장소(terminal)나 정제공장에서 반출될 때 혹은 수입 당시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유는 운송용 연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유용 자동차의 소유주, 임차인 혹은 운영자에게 판매되는 등유와 휘발유를 제외한 모든 액체물질로 정의된다(Sec. 4041(a)(1)(A)(i)).

2) 대체연료(Alternative fuels)

액화 석유가스, 천연가스, 액화수소 혹은 석탄에서 채취된 액화연료와 생물자원(biomass)으로부터 얻은 액화수소 등 대체유류 혹은 벤젠, 벤졸, 나프타, 자연 휘발유 등 특수유류가 연료용으로 자동차나 모터보트의 소유주 등에게 판매 혹은 사용되면 겔린당 18.3센트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2006년 10월 이전에는 액화석유가스와 액화천연가스의 세율은 각각 겔린당 13.6센트, 11.9센트였다.

대체연료세는 이전에 과세되지 않은 제품이 처음 사용 혹은 판매될 때 부과된다. 따라서 과거 휘발유나 경유 등으로 과세된 제품에는 공제나 환급이 없는 한 특정 연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품 구입시 얼마만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지 모르면 판매자는 이를 과세제품으로 판매하는 대신 구매자가 나중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구매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것임을 구입 이전에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전량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연료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2004년 법 개정⁹⁵⁰⁾으로 대체연료나 대체연료 혼합물을 사용하면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하였다. 이는 알코올연료나 바이오디젤에 대한 우대와 유사한데 다만 이들 제품과 달리 소득세 공제는 없다. 우선 대체연료를 자동차나 모터보트 연료로 사용 혹은 판매하면 법 4041조에 따른 특정(소매) 유류세를 대체연료 갤런당 50센트를 세액공제하고 혼합물의 경우는 납세자가 혼합물은 판매 혹은 사용하면 법 4081조에 따른 제조업자 유류세를 사용된 대체연료 갤런당 50센트를 공제해준다. 한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우대조항은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액화수소를 사용하면 2014년까지 혜택을 본다(Sec. 6426(a)(1)).

3) 압축 천연가스(CNG)

1993년 이후 압축 천연가스도 자동차나 모터보트에 공급될 때 유류세가 부과되며 판매용이 아니면 해당 자동차의 운영자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있다. 하지만 자동차 등에 공급되지 않은 대량 판매는 구입자가 연료용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판매자가 인지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시할 때 판매자에게 유류세가 부과된다(Bulk sales, Reg. § 48.4081-21(b)). 비도로용, 농어업, 버스, 교육기관,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압축천연가스세가 면세되는데 판매시 구입자로부터 면세증을 받아야 한다.

압축용 가스에 대한 세율은 이전에는 1천 큐빅피트(MCF)당 48.54센트이었으나 2006년 10월부터는 18.3센트/유효 갤런⁹⁵¹⁾으로 변경되었다. 납세의무는 이전에 비교

950) 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951) 휘발유 1갤론에 해당하는 에너지량(1 gallon gasoline energy equivalent).

세된 연료의 판매 혹은 사용시 발생한다. 따라서 이전에 휘발유, 경유 혹은 항공용 연료로 세금을 납부한 가스는 압축 천연가스세가 면제된다. 시내운송 및 학교버스용 가스는 면세된다. 이외 상업용 어선의 연료로 이용되는 가스도 면세되는데 면세를 위해서는 구입자가 면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항공유

2005년 이전에는 Sec. 4091⁹⁵²⁾에 의하여 항공용 연료로 과세되지 않은 연료가 비상업용 비행⁹⁵³⁾을 위하여 항공기 소유주 등에게 판매되면 갤런당 21.8센트의 항공연료세가 부과되었다(제조업자세가 부과되는 항공용 휘발유 제외, Sec. 4041(c)1)). 만약 다른 용도로 과세된 이후 비상업용 비행 연료로 사용되고 과세 당시 세금이 갤런당 21.8센트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이 납부되어야 했다(Sec. 4041(e)).

원래 2007년 이후 폐지될 예정이었던 동 세금은 2004년 미국 고용창출법에 따라 2005년부터 제조업자세의 항공유류와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 즉, 비상업용 비행에는 LUST 기금을 포함하여 갤런당 21.9센트 그리고 상업용 비행에는 갤런당 4.4센트가 부과된다(Sec. 4041(c)(3)). 다만 이는 저장소나 정제장소에서 직접 비행기 유류 저장소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이외의 경우 항공유(등유)는 갤런당 24.4센트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 세율이 적용된 항공유가 비상업용으로 사용되면 최종 판매자는 그 차이(갤런당 2.5센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차액을 제외하고 판매가격이 설정되었거나, 구입자에게 환불해주었거나 혹은 구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면제대상은 특정 유류세 면제대상과 동일하다.

952) 항공유에 대한 과세조항인 4091조(4092, 4093조 포함)는 the 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에 의하여 폐지되고 휘발유와 등유는 4081조(제조업자세)에 그리고 여타 항공유류는 4041조(특정 유류세)로 편입되었다.

953) 비상업용 항공이란 운송을 위하여 고용된 경우(hired transportation)를 제외한 비행기 사용으로 어떤 업체가 농부에게 고용되어 비행기로 비료를 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내륙 수상연료

상업용 수로운항을 위해 사용되는 선박의 액체연료에는 소매세가 적용된다(Sec. 4042(a))⁹⁵⁴⁾. 납세의무는 특정 수상항로에서 연료를 소비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자에게 있다(Reg. §48.4042-1(c)). 동 세금은 선박연료가 공급될 때가 아닌 실제 사용되었을 때 즉, 선박이 움직일 때⁹⁵⁵⁾ 부과되기 때문에 선박 소유주가 아닌 운영자가 신고한다. (§48-4042-1(e)). 과세대상인 특정 수로와 그렇지 않은 수로를 오가는 선박은 특정 수로의 운행시간에 비례하여 과세한다. 여기서 상업용이란 재물을 운반하는 행위로서 승객 운반용 선박⁹⁵⁶⁾과 어업용, 대양운행용, 낚시용 그리고 지방정부 소속 선박에는 유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내륙이란 내륙수로와 연안을 포함한다.

이들 선박에 적용되는 세율은 내륙 수상연료세 갤런당 20센트와 전술한 대로 2011년 폐지될 예정인 LUST 기금 갤런당 0.1센트이다. 2007년 이전에는 적자재정을 감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원래 갤런당 5.3센트였던 과징금은 2005년부터 1센트씩 줄어들어 2007년 폐지되었다(Sec. 4042(b)(2)(C)). 선박연료세가 부과되는 특정 수로에는 약 27개의 강과 연안이 있다(Reg. §48.4042-1(g)). 연료를 소비할 때 과세되므로 다른 소비세와 달리 선박 운영자는 세금을 사전 예약할 필요가 없지만 그 대신 과세대상 선박의 운영자는 사용된 연료량과 구입날짜, 항해일정과 항로 등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 대형 자동차, 트레일러, 트랙터(Heavy Trucks, Trailers and Tractors)

대형 트럭, 트레일러와 트랙터를 제조 혹은 수입되어 처음 판매할 때 판매가격의 12%가 소매세로 부과된다(Sec. 4051(a))⁹⁵⁷⁾. 그 대상은 완전 적재를 기준으로 중량이

954) 선박의 액체연료에는 경유, B-C유, 특정 유류, 휘발유 등을 포함한다.

955) 만약 연료가 엔진에서 소비되어도 선박이 움직이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료가 펌프 등 다른 기관의 작동을 위하여 엔진에 소비되고 선박이 움직이면 과세대상이다.

956) 주로 승객을 운반하기 위한 선박은 비록 재물을 일부 운반하더라도 비과세된다(Sec. 4042(c)(2)).

957) 판매 당시 함께 구입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도 마찬가지로 소매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운전이나 외형에 필수적인 부품이 결여된 판매는 청구방식이나 배달 시점과 관계없이 이들

33,000파운드 이상인 트럭, 26,000파운드 이상의 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트레일러 그리고 트레일러와 함께 도로운송에 주로 이용되는 트랙터.

〈표 1-4〉 거래유형별 대형 자동차, 트레일러, 트랙터의 과표

거래유형	과표산정방식
제조업자, 수입자, 관계인에 의한 판매	판매가격+추정 중개수수료(판매가격의 일정비율)
중개인 판매	사용을 위한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보수
제조업자와 수입자 등에 의한 장기임대	구성판매가격+추정 중개수수료(구성판매가격의 일정비율)
제조업자와 수입자 등에 의한 단기임대	유사제품 판매에 기초한 구성판매가격
이외 업체에 의한 단기임대	임차가격+부품비+추정 중개 수수료
독립된 거래로 판매되는 단기 임대	판매 당시 확립된 최소 소매가격

판매자는 동 세금을 Form 720으로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추가하여 부품이나 악세사리를 설치하는 업자도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Sec. 4051(b)(3)). 즉,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자동차 등이 소유주에게 이전된 후 6개월 이내에 교체품이 아닌 부품이나 부속품(accessories)이 설치되면 부품비용과 설치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Sec. 4051(b)(1)). 단, 6개월간 총 부품 설치비용이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으면 소매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형 트럭 등에 대한 소매세는 2011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다(Sec. 4051(c)).

중고품의 판매나 임대는 물론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제품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Sec. 4052(a)). 거주용 혹은 캠핑용 객차(camper coaches), 승용차나 트럭에 부착되는 가정용 트레일러, 비료 등 농업용 기구, 응급차, 콘크리트 배합차, 쓰레기 컨테이너, 비도로용, 철도용 트레일러, 19,500파운드 이하의 트랙터 등은 소매세가 면제된다(Sec. 4053). 이외 정부용과 비영리교육단체용도 마찬가지이다.

부품의 소매판매에 세금이 적용된다(\$48-4061(a)-4(b)). 그러나 교체부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4071조에 따라 부과되는 타이어세는 공제가 가능하다.

자동차 중개업자가 제품을 판매하면 과표는 단순히 판매가격이다. 그러나 제조업자나 수입자 혹은 이들과의 관계인(related person)이 판매하는 트럭 등의 과표는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의 추정된 (중개)수수료(mark-up)를 합친 금액이다(presumed retail sales price). 적용되는 추정 수수료는 트럭과 트랙터 판매가격의 4%이며 트레일러와 재제조된 트럭 등에는 추정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Sec. 4052(b)(3)(A)). 장기임대는 구성판매가격(constructive sales price)에 추정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 과표가 된다(Temporary Reg. §145.4052-1(b)(1), (3)). 그러나 단기임대의 경우 구성가격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판매되는 유사제품의 가격이 된다. 만약 임대인이 정기적으로 이들 제품을 독립된 거래(arm's-length transaction)로서 판매하면 가장 낮은 소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전술한 대로 중개업자가 판매할 때에는 과표가 소매가격이다. 단, 추정 가산금 이상의 가산금으로 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거나 중개업자가 판매한 이유가 세금 회피 목적인 경우 혹은 중개업자가 특별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가격과 가산금이 합친 금액이 과표가 된다. 또한 과표에는 현금 이외 트럭 등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서비스나 반대급부도 포함한다.

4. 제조업자세 (Manufacturers taxes)

제조업자세는 휘발유를 위시한 각종 연료, 타이어, 항공유류, 연비를 기준으로 한 Gas Guzzler tax(자동차 연비세), 석탄, 낚시도구, 화살, 총기 그리고 백신 등에 부과된다.

가. 과세대상과 과표

1) 납세의무

과세대상 물품을 직접 판매, 사용 혹은 임대⁹⁵⁸⁾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판매, 사용 혹은 임대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제조업자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완성

품으로 조립 가능한 부품들을 따로 파는 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는 제조업자로 간주된다(Knockdown condition, Reg. §48.0-2(a)(4)). 이들 부품을 구매한 자의 경우 조립을 위해 투입한 시간, 재료, 간접비용 그리고 판매용인지 아니면 개인용인지 등 조립 목적에 따라 제조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Reg. §48.4218-2). 또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품으로 구매하여 추가 공정을 거쳐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자도 제조업자로 간주된다(Sec. 4223).

제조업자세는 생산 혹은 수입시기와 관계없이 판매 혹은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구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나 제조업자가 물품을 사용할 때인데 일반적으로 물품이 구매자에게 양도 혹은 배달될 때를 의미한다(Reg. §48.0-2(b)(1)). 수입업자의 경우 판매에 앞서서 수입 당시 세금을 사전에 납부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 첫째, 도매가격이 과표가 되며 둘째, 사전 납부방식을 수입하는 모든 과세 물품에 적용하며 셋째, 정확한 장부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분기별로 Form 720(Quarterly Federal Excise Tax Return)을 작성, 신고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0.5개월마다 지정된 기관에 Form 8109(Federal Tax Deposit Coupon)와 함께 예탁하지만 납부세액이 크면 전자전송방식(EFTPS)을 이용하여야 한다.

2) 면세대상

다음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세가 면제된다(Sec. 4221(a)). ① 추가적인 제조 혹은 판매를 위해 직·간접적으로⁹⁵⁹⁾ 판매되는 물품(further manufacture) ② 직·간접적으로 판매되는 수출용 물품 ③ 선박이나 항공기 공급품 ④ 정부용품 ⑤ 비영리 교육단체 물품 ⑥ 외교관용 물품 ⑦ 도로교통수단이 아닌 이동기구와 공중교통 버스의

958) 임대, 분할납부 또는 조건부 판매 등의 경우 세금은 개별 임대료 등 지급금에 세금을 비율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한다(Sec. 4216(c)), Reg. §48.0-2(b)(5)). 따라서 제조업자는 첫 임대시 모든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일정 기간 총납세액이 납부의무세액을 넘지 않을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납부의무세액은 첫 임대 당시 같은 물품이 소매단계에서 판매될 경우 부과되는 세액을 의미한다(Sec. 4217(b)).

959) 1차 구입자가 제조생산에 직접 사용한 경우나 재구매자의 제조 생산에 사용할 물품을 1차 구입자(중개업자)가 구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타이어 구입. 단, 이러한 예외가 모든 제조업자세의 대상물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단체나 용도에 따라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다(〈표 I-5〉 참조).

〈표 I-5〉 연방정부 소비세 면세단체·용도 및 면세 제외 품목

면세단체·용도	면세 제외 품목
비영리교육단체 (2011년 10월 시한)	Gas Guzzler(Sec. 4064), 석탄(Sec. 4121), 유류제품(Sec. 4081) 백신(Sec. 4131), 트럭, 트레일러 등의 소매세(Sec. 4051) 타이어(Sec. 4071)
추가적인 제조생산	석탄(Sec. 4121), 유류제품(Sec. 4081) 트럭, 트레일러 등의 소매세(Sec. 4051)
수출	유류제품(Sec. 4081), 석탄(Sec. 4121)
선박, 항공기	유류제품(Sec. 4081), 백신(Sec. 4131) 트럭, 트레일러 등의 소매세(Sec. 4051)

주: 교통수단이 아닌 이동기구, 시내버스, 도시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와 학교버스가 구입한 타이어는 제조세가 면세(Sec. 4053(8)). 시내버스는 승객 20인 이상으로 정기적인 운행을 하는 버스를 의미함.

해외 구매자와 정부 등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면세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와 해당 면세 구입자가 Form 637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Sec. 4222(a)). 이들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세를 신고, 예탁, 납부하고 관련 장부를 보존해야 한다. 등록 요건에서 면제되는 자는 정부기관, 해외 수출업자 그리고 선박이나 비행기 공급물품의 매입자로서 면세증명서를 매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합리적인 노력으로 해당 물품이 면세품임을 확인하여야 한다(reasonable diligence)⁹⁶⁰⁾. 즉, 구입자가 IRS에 등록하였다는 사실이나 면세 증명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Reg. §48.4221-1(b)(3)).

추가적인 제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면세품⁹⁶¹⁾은 또 다른 과세대상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부분품을 의미하며 생산시 소비되어 물리적인 부품을 구성하지 않을 경우

960) 한 예로 수출품이나 재제조의 경우 판매 혹은 배송 이후 6개월 이내에 생산자는 구입자로부터 수출 증명서나 재제조를 위한 판매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961) 석탄과 타이어에 부과되는 세금은 면세 대상이 아님

에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4221(d)(6)). 원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단 한 번의 중개인을 거쳐 판매할 때만 면세된다. 과표는 대개 판매가격이지만 납세의무가 물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면 일반적 상거래에서 동일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 과표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된 물품은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생산 용도임을 증명하는 서한이 원제조업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제조업자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부과된다(Sec. 4221(b)). 그러나 구매자가 면세품을 과세대상의 목적으로 나중에 사용 혹은 판매하면 구매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Sec. 4223).

제조, 재판매 혹은 수출 용도에 따른 면세는 6개월간 세금 납부가 유예된 것을 의미한다. 즉, 6개월 이내에 면세품이 수출되었거나 재생산을 위해 판매되었음을 확인하는 서한을 제조업자가 받지 못하면 납부유예가 정지되고 제조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이외 구입자가 비영리단체 등인 경우 제조업자가 판매시 구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면세가 허용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증명서를 받는 것으로 제조업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1차 구매자인 중개업자가 2차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송장에 추가 제조용임을 확인하고 쌍방의 등록번호를 명시하면 추가 제조를 위한 재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

수출용 면세는 수출 목적으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중개인을 2번 이상 거쳐 수출되는 재판매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세금이 이미 납부된 수출품의 경우 원제조업자가 공제 혹은 환급받거나 또는 적법한 방식으로 수출할 때 제조업자가 납부한 세금을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다. 수출면장, 수출 운송사나 혹은 수입국 세관의 증빙서류 등으로 수출 사실을 증빙하면 된다.

제조업자가 선박 혹은 항공기 공급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물품은 면세된다⁹⁶²⁾. 따라서 중개인에게 판매되는 물품은 비록 선박 혹은 항공기 공급품으로 재판매될지라도 면세되지 않는다. 그 대신 제조업자는 중개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 공급품으로 판매된 물품의 이미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공제 혹은 환급받을 수 있다(Sec. 6416(b)(2)(B)). 제조업자가 선박/항공기 소유주 등으로부터 판매 이전에 면세 증명서를 입수해야 면세된다(Reg. §48.4221-4(d)(2)).

962) 따라서 구입자가 나중에 선박에 공급할 목적으로 저장하는 물품도 면세되지 않는다.

선박의 공급물품이란 군용, 어업용, 외국과의 무역용 선박과 대서양과 태평양 미국 항구 사이를 오가는 상업용 선박에 공급되는 유류와 저장품 그리고 정당한 장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내륙용 혹은 태평양 미국 항구 사이만을 오가는 선박은 면세대상이 아니다(대서양과 걸프만 포함). 승객과 승무원에게 판매되는 물품, 항해 이외에 사용되는 물품, 타인의 사용을 위해 운반되는 물품 등 당해 목적 이외로 이용되는 물품은 면세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면세가 허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물품도 선박과 동일하다. 여기서 해외 무역용이란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에 승객을 나르는 것을 포함한다(Sec. 4221(d)(3)). 또한 해외무역을 위해 고용된 민간 외국항공기에 공급되는 물품과 장비 그리고 수선과 유지를 위한 물품도 수출품으로 간주되어 면세된다. 다만 상대방 국가도 미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이에 준하는 면세를 상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3) 과표(tax basis)

제조업자세의 과표는 양도 혹은 판매 시점의 총실제판매가격으로서 대가로 지불된 현금, 서비스와 기타 항목을 포함한다(Reg. §48.0-2(a)(5) and 48.4216(a)-1(a)). 소매단계에서 판매되거나 위탁 판매된 물품 혹은 공정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된 물품(arm's length 즉, 독립관계 제외)에 대해서는 구성판매가격(constructive sales price)이 적용된다. 구성가격은 일반적 거래에서 제조업자가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한 예로 소매로 직접 판매된 물품의 경우 실제 판매가격과 제조업자의 정상거래에서 도매 유통업자에게 판매된 가격 가운데 최고 가격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과표로 간주된다(Sec. 4216(b)(1))⁹⁶³⁾.

보증 수수료의 경우 제조업자가 물품 구입을 위하여 요구하는 일반적 보증 수수료는 과표에 포함되지만 구매자가 옵션으로 요청한 보증 수수료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Reg. §48.4216(a)). 도매단계 판매에서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물품과 똑같은 물품을 보너스로 제공하면 이는 선물(gift)이 아닌 가격할인으로 간주되어 전체 거래에 대한

963) 제조업자가 정기적으로 소매나 도매로 물품을 팔 때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이 정한 구성가격 규정에 따라 과표가 결정된다(Sec. 4216(b)(2)).

실제 청구금액이 과표가 된다. 중개상인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물품에 대하여 세금이 납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급 혹은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보너스 상품 등 과세 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하나의 단위로 판매되면 판매가격에서 비과세물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한다. 이 때 두 물품이 따로 판매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전체 비용 중에서 비과세물품이 차지하는 비용을 비율로 하여 과표를 결정한다.

수입업자가 과세대상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지불한 관세, 해양 운송비, 통관료 그리고 기타 비용은 과표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수입장소에서 구매자에게 제품을 배달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지급한 운송료, 설치료와 보험료는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4216(a)). 할부 판매로 발생하는 이자 수수료는 대금 지연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임을 입증하면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탁판매를 위해 제조업자로부터 중개인에게 물품을 운송하면서 발생한 비용도 과표에서 제외된다.

임대, 할부 판매나 조건부 판매 등 보증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 시점에 전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할부금이 지급되는 시점의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 세금이 납세액이 된다(partial payment, Sec. 4216(c)). 따라서 제조업자는 처음 임대할 때 모든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할부금 수령시 납부한 세금을 모아서 해당 물품에 대한 최대 납세액(maximum liability)이 될 때까지 할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최대 납부액은 처음 임대하는 시점의 소매가격을 과표로 산정되는데 실제 소매가격보다 낮은 구성가격을 과표로 이용할 수 있다(Sec. 4217(b)). 납세의무액을 다 납부하기 전에 임대물품이 판매되면 전체 납세의무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과 판매 당시 세율을 판매가격에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Sec. 4217(d)(2)).

물품의 용기, 포장, 덮개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포장의 경우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적인 포장비용도 과표에 포함된다. 다만 구매자가 용기를 반납하면 제조업자가 사전에 정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 제조업자가 이 부분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배달을 위하여 지급한 운송과 보험료 등은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4216(a)).

할인, 수당과 보너스와 같은 판매가격 조정은 과표에서 제외되지만 그 금액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다(Reg. §48.4216(a)-3(c)). 따라서 정상가격에 기초하여 납부한 세금은 다음 신고에서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자가 아닌 중개인 등 제3자에게 지급한 커미션, 수당, 가격할인은 어떤 경우에도 공제되지 않는다(Reg. 48.4216(a)-2(c)). 납세자가 확실하고 일관된 관례에 따라 가격할인을 하지 않아 국세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면 과표는 공제 없는 목록가격이 된다(trade discount). 현금 구입에 따른 할인은 실제로 제조업자가 받은 금액이 과표가 되며 만약 추후에 할인금액을 지급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이 가능하다.

물품이 반품되었을 때 전액을 구매자에게 돌려주면 이미 납부한 세금도 공제가 가능하며 일부만 돌려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공제된다. 또한 판매 당시 지역광고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구매자(도소매업자)로부터 받은 광고료를 나중에 제조업자가 환급해 줄 경우 그 비용이 판매가격의 5%를 넘지 않는 한 과표에서 제외된다(Sec. 4216(e)(1)).

나. 자동차 관련 품목

제조업자세가 부과되는 품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품목은 연료로서 첫째, 정제공장이나 최종 저장소(terminal)⁹⁶⁴⁾에서 반출되거나 둘째, 수입되거나 셋째, Sec. 4101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업자⁹⁶⁵⁾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 연료는 경유, 등유, 휘발유와 그 혼합품(면제대상인 에탄올과 메탄올 제외) 및 휘발유 첨가제이다(Sec. 4083(a)). 휘발유는 옥탄가가 75도 이상으로 자동차 연료로 적합하며 일반적으로 가솔린으로 알려진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Reg. §48.4081-1(b)). 전술한 대로 제조업자세가 부과되지 않는 연료(휘발유 제외)는 법 4041조에 따라 특정 유류세가 과세된다.

유류와 관련된 다음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국세청에 Form 637로 등록을 해야 한다. 유류 배합업체, 수입업체, 파이프라인, 선박, 터미널 운영자, 포지션 홀더(유류 비축업체), 정제업체, 염색경유를 사용하는 기차 운영업체, 알코올, 바이오디젤, 재생 디

964) 터미널은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에 의해서 공급되는 과세대상 연료의 저장소이자 유통시설로서 유조트럭으로 연료를 이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세금을 납부한 유류를 저장한 시설은 터미널로 정의되지 않는다.

965) 단, 이전에 연료를 이전 혹은 수입하면서 세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젤 등의 생산자 혹은 수입자. 합리적 이유가 아니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1만달러 벌금과 함께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연료가 정제공장이나 최종 저장소(terminal)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유입)되는 시점에 제조업자세가 부과되지만 예외적으로 선박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량 운송의 경우 선박 운전자 등이 내국세법 4101조에 따라 등록된 업자이면 terminal rack⁹⁶⁶⁾에서 반출될 때 과세된다. 부과기준은 실제 깔린 분량이나 화씨 60도에서의 깔린 분량이며 납세자는 이 기준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Reg. §48.4081-8(a)). 국세청은 소비세 징수행정을 위하여 휘발유를 포함한 과세대상 연료가 저장 혹은 생산되는 장소에 진입하여 장부와 현물조사를 할 수 있다(Sec. 4083(d)(1)).

〈표 1-6〉 제조업자세 과세대상 연료, 세율 및 특성

(단위: 갤런)

과세대상 연료	세율	비고
휘발유	18.3센트	특수연료 생산용은 면세
알코올연료(개스홀)	18.3센트	2005년 이후 알코올 51센트 세액공제
경유	24.3센트	기차용(면제), 시내버스용(7.4센트)
등유	24.3센트	1998년 이후 과세
항공유	비상업용: 19.4센트(휘발유), 21.9센트(이외) 상업용: 4.4센트(휘발유 이외)	2005년 이후 알코올 혼합물은 세액공제

- 주: 1. 0.1센트/갤런의 지하저장유출기금(LUST)이 2011년까지 추가로 부과됨.
 2. 이들 연료의 2011년 기본세율은 4.3센트로 인하 예정.
 3. 기차용 경유는 2005년 3.3센트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7년 면제, 시내버스용 경유는 24.3센트 납부후 17센트 환급.
 4. 알코올연료, 재생연료, 바이오 디젤 등은 2005년 이후 다양한 세액공제 허용.

966) 터미널 랙은 정제공장이나 터미널로부터 과세대상 연료를 선박과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운송수단(예: 유조트럭)으로 전달하는 장치를 의미하며 대개 휘발유 유통구조에서 최종 소비자로부터 2단계 떨어져 있는 지점을 말한다.

1) 휘발유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유류 비축기지인 터미널⁹⁶⁷⁾ 운영자의 장부에 비축 계약을 한 자, 즉 포지션 홀더(position holder)⁹⁶⁸⁾인데 일정 조건 아래서는 터미널 운영자에게도 세금 납부에 공동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등록된 포지션 홀더 사이에 운송 비용 절약 등의 이유로 계약에 따른 연료 교환이 발생하면 연료를 배달하는 포지션 홀더는 납세의무가 없고 이를 전달받는 포지션 홀더에게 책임이 있다.

세금은 여타 유류 제품과 마찬가지로 Form 720으로 신고하는데 일반적으로 ½개월마다 Form 8109를 사용하여 납부할 세금을 예탁하거나 전자 예탁한다. 이외에도 터미널 운영자와 운송업자는 매달 모든 연료의 수입과 지급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ExSTARS). 휘발유 세율은 갤런당 18.4센트(2011년까지 0.1센트 LUST 기금 포함)이며 2011년 9월부터는 기본세율이 갤런당 4.3센트로 인하될 예정이다(Sec. 4081(d)(1)).

납세의무는 정제공장이나 터미널로부터 휘발유를 이전할 때 그리고 휘발유나 특수 연료 생산을 위한 재료 이외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한다. 터미널 랙에서 옮겨지는 모든 가솔린은 과세되는데 전술한 대로 포지션 홀더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된다. 만약 포지션 홀더가 터미널 운영자가 아니며 또한 국세청의 과세연료 등록자⁹⁶⁹⁾가 아니면 터미널 운영자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다만 터미널 운영자는 과세대상 연료의 등록자로서 포지션 홀더로부터 등록 고지서(notification certificate)를 받고 동 면허증의 내용이 허위임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면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Reg. §48.4081-2(c)(2)).

또한 정제공장에서 휘발유를 반출할 때 다음의 경우 정제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967) 선박과 파이프라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저장하고 유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러나 정제공장이나 터미널로부터 옮길 때 세금을 납부하고 유류가 다시 저장된 설비는 터미널이 아니다.

968) 유류 저장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운영자와 계약을 맺은 자로서 터미널에 비축된 유류를 소유한 터미널 운영자도 포지션 홀더이다.

969) 법 4101조에 따라 휘발유 정제업자, 터미널, 선박, 파이프라인 운영자, 외국으로부터 휘발유를 수입하는 자, 휘발유 혼합자 등은 휘발유 제조업자세를 위하여 국세청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Reg. §48.4101).

선박 혹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전(bulk transfer)으로 정제공장 운영자와 연료 취급자가 4101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자인 경우(2005년 이후에는 파이프라인 혹은 선박 운영자가 미등록자인 경우도 포함)와 터미널 랙으로의 이전. 그러나 승인된 정제공장과 터미널 사이에 기차로 운송되는 경우, 정제공장과 터미널 운영자가 동일하고 과세 대상으로 등록한 업체 혹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정제공장으로 대량 이전이 불가능하면 납세의무가 없다.

수입 휘발유의 경우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에 의한 대량 유입으로 휘발유를 유입하는 자가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거나 대량 이전이 아닌 국내 유입은 유입자(enterer)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입업체는 수입자이지만 만약 수입자가 유입자가 아니며 유입자가 등록업체가 아니면 수입자와 유입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다.

〈표 1-7〉 휘발유 소비세 세수와 세율(1933~2007년)

(단위: 백만달러)

	세수	세액/갤런		세수	세액/갤런
1933	125	1.0	1988	9,167	9.1
1941	343	1.5	1991	14,469	14.1
1952	713	2.0	1994	19,794	18.4
1957	1,458	3.0	2002	20,942	18.4
1960	2,016	4.0	2006	25,518	18.4
1984	9,022	9.0	2007	25,772	18.4

자료: Brian Francis, *Gasoline Excise Taxes 1933~2000*, SOI, IRS 및 *U.S. Master Excise Tax Guide*(2008).

이 밖에 등록되지 않은 포지션 홀더가 대량으로 휘발유를 옮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터미널 운영자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업체)의 관리자, 종업원과 중개인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고 고의적으로 세금 회피를 유발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터미널 등으로부터 휘발유를 판매하는데 전술한 여러 경우

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세금 납부의무가 있다(Reg. §48.4081-3(f)). 그러나 판매자가 과세대상 연료의 등록자로 구매자로부터 등록 고지서를 받고 동 고지서가 허위임을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납세의무에서 면제되고 구매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가 이러한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구매자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수출 제외).

다음의 경우 휘발유 판매자나 사용자는 휘발유 제조업자세의 환급이나 공제가 허용된다. 지방정부, 비영리교육단체에게 판매되거나 특수자동차연료 혹은 대체연료 생산에 사용된 휘발유, 선박과 항공기 공급품, 해외무역에 사용된 휘발유와 수출용 휘발유,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의 경우 최종 판매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최종 판매자가 법 4101조에 따라 등록업체가 아니면 실제 세금을 납부한 자가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세금이 납부된 연료(휘발유, 등유, 경유)에 대하여 세금을 다시 납부하는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환급되는 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Sec. 4081(e)). 이중과세의 환급은 두 번째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 즉 2차 납세자(second tax)에게 환급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데 다만 1차 납세자가 연방소비세 신고서(Form 720)에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고 2차 납세자인 구매자에게도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First Taxpayer's Report).

휘발유 소비세는 여타 연료에 대한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연방도로기금으로 투입되어 도로와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건설 및 유지보수에 이용된다. 또한 1990년대에는 일부 세수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산으로 쓰이기도 하였다(Omnibus Budget Revenue Reconciliation Act of 1990, Omnibus Reconciliation Act of 1993)⁹⁷⁰⁾. 1933년 처음 도입된 이래 세율은 약 18배, 세수는 170배 증가한 바 있고 휘발유 소비세는 2002년 당시 총세수가 약 209억달러로 연방도로기금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970) 1990년에는 2.5센트/갤런, 1993년에는 6.8센트/갤런이 적자재정에 충당되었으나 1997년 법개정으로 모든 휘발유 세수는 다시 연방도로기금에 투입된다(Taxpayer Relief act of 1997).

2) 알코올연료

일반적으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과세방식과 세율이 개스홀로 알려진 알코올연료에도 적용된다. 알코올연료는 휘발유와 석유, 석탄이나 가스로 생산되지 않은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의 알코올을 휘발유와 혼합하여 알코올규정에 맞춘 연료로 대개 알코올 농도가 190도(proof content) 이상이어야 한다(Sec. 6426(b)(4)).

원래 화석연료의 절약을 위하여 알코올연료에는 낮은 세율⁹⁷¹⁾이 적용되었지만 2004년 고용창출법에 따라 저세율은 폐지되고 그 대신 알코올연료와 바이오디젤에 대한 제조업자세 공제가 신설되었고 2006년에는 대체혼합연료에 대한 공제가 추가되었다(Sec. 6426(a)).⁹⁷²⁾ 이러한 공제가 분기별로 법 4081조에 의한 납세의무액을 초과하면 생산자에게 소득세 세액공제 혹은 법 6427(e)(대체연료)에 의한 변제가 허용된다⁹⁷³⁾.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 혹은 환급을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게는 초과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 금액의 2배 혹은 10달러를 벌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Sec. 6206, 6675).

알코올연료에 대한 공제는 납세자가 알코올연료 혼합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투입된 알코올 1갤런당 51센트이다(알코올 혼합물에 에탄올이 전혀 없으면 60센트). 동 공제는 2010년 말까지 적용된다. 여기서 알코올 혼합물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혹은 등유에 알코올을 혼합한 연료를 의미한다(Sec. 4083(a)(1)). 납세자는 내국 세법 40조에 따른 알코올연료 소득세 공제와 소비세 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고 소비세 공제만큼 소득세 공제를 조정해야 한다. 공제를 신청하고 혼합물로부터 알코올을 분리하거나 알코올 혼합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이 다시 적용된다(Sec.

971)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세율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알코올 10% 이상 13.2센트/갤런, 알코올 7.7% 이상 14.396센트/갤런 그리고 알코올 5.7% 이상은 15.436센트/갤런이 적용되었다. 또한 알코올연료 생산에 투입되는 휘발유에는 생산된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각각 14.667, 15.579, 16.369센트/갤런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감면세율은 원래 2007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다.

972) 2004년 고용창출법(The American Job Creation Act of 2004)과 2006년 안전 등에 관한 교통법(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Of 2006)

973) 대상 바이오디젤이 콩, 옥수수 등 농작물로부터 생산되면 공제율이 더 높다(Sec. 40A(b)(3)).

6326(f)).

2005년 이후에는 법 4101조에 따른 등록요건이 알코올과 바이오디젤의 생산자나 수입자에게 적용된다. 2006년 이후에는 대체연료 공제를 신청하는 납세자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법 4041(b)(2)(에탄올과 메탄올 규정)에 따른 알코올연료 공제 그리고 법 6426조나 법 6427(e)에 의한 알코올연료 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국세청에 지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자료신고를 해야 한다(Sec. 4104).

3) 경유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터미널이나 정제공장에서 경유⁹⁷⁴를 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혹은 법 4101조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자에게 경유를 판매하면 갤런당 24.4센트의 세금(LUST 기금 포함)이 부과된다(Sec. 4081(a)(2)(A)(iii)). 2011년 10월 이후에는 세율이 갤런당 4.3센트로 인하될 예정이다. 납세의무자도 포인트 홀더이며 터미널 운영자는 공동책임이 있다. 납세의무자는 분기별로 Form 720을 신고하며 매월 2차례 세금을 예탁해야 한다.

일부 차량에 소비되는 경유에는 감면세율이 적용된다. 기차용 경유에 적용되던 갤런당 4.3센트의 세율은 2005~2006년 사이에 2.3센트로 인하되고 난 후 2007년에는 무세화된다(갤런당 0.1센트의 LUST 기금은 유지). 일부 갤런당 7.4센트의 감면세율이 적용되는 도시간 버스(intercity bus)의 경우 일단 갤런당 24.4센트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후 그 차액을 환급받는다. 버스 운영자가 환급 권리를 포기하면 최종 판매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 물을 첨가한 경유 유화연료(emulsion)는 2006년부터 갤런당 19.7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다(Sec. 4081(a)(2)(D)).

바이오디젤은 4% 이하의 파라핀(석랍)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유로 분류되지 않고 그 대신 법 4041조에 따른 특정 유류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연료 사용을 위하여 과세대상인 혼합물(바이오디젤 20%, 디젤 80%)에 투입되면 그 혼합연료는 과세된다(Sec. 4081(b)(1)). 앞에서 지적한 대로 2004년 고용창출법으로 바이오디젤 혼합연료에 대

974) 여기서 경유란 휘발유를 제외한 액체연료로 추가 혼합 없이 경유차나 경유기차에 연료로 사용될 수 있는 액체유류를 말한다.

한 소비세 공제(Sec. 6426)와 일반 사업공제에 해당하는 소득세 공제(Sec. 40A)가 도입되었다. 한편 이중으로 부과된 경유세는 두 번째로 부과된 세금이 환급된다.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경유도 저장소 등에서 외부로 유출될 때 혹은 외국에서 유입될 때 과세된다. 다만 휘발유와 달리 면세용으로 사용할 목적인 경유를 지워지지 않게 염색하여 면세 표시를 하고 반출하면 비과세된다(indelibly dyed diesel).

일반적으로 포인트 홀더에게 납세의무가 있지만 터미널 운영자도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다만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포지션 홀더가 제시한 등록 고지서가 의심스럽지 않으면 납세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Reg. §48.4081-2(c)(2)). 염색하지 않은 경유를 정제공장에서 대량 반출할 때 다음의 경우 과세한다. 첫째, 등록하지 않은 정제업자나 경유 소유주 혹은 선박의 대량 반출, 파이프라인 운영자 둘째, 터미널 랙에서의 대량 반출. 이 경우 정제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Reg. §48.4081-3(b)(1)). 경유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 휘발유처럼 이를 유입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이외 경우 혼합연료의 경우 혼합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고 이전에 과세되지 않은 혼합연료(겔론당)가 과표가 된다.

납세자가 바이오디젤 혼합연료를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투입된 바이오디젤 1갤론당 50센트가 공제된다(농산물을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은 1달러). 동 공제는 2008년까지 적용된다(Sec. 6426(c)(6)). 여기서 바이오디젤 혼합물은 등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바이오디젤과 최소한 0.1%의 경유를 혼합한 연료를 말한다. 알코올연료 공제와 바이오디젤 공제를 합한 금액이 법 4081조에 의한 소비세를 초과하면 소득세 공제나 법 6427(e)에 의한 변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허용된 공제금액 이상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초과금액을 과세할 수 있고(Sec. 6206) 또한 초과금액의 2배나 1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Sec. 6675). 공제를 신청하고 혼합물로부터 바이오디젤을 분리하거나 혼합물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이 다시 적용된다.

법 4101조에 따라 2005년까지 바이오디젤의 생산자나 수입자는 등록해야 한다. 또한 법 6426조나 법 6427(e)에 의하여 바이오디젤 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자료신고를 해야 한다(Sec. 4104).

면세가 허용되는 경유 용도는 많다. 적색으로 염색된 경유는 면세용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출된 경유임을 의미한다. 만약 투명한 색으로 반출되어 세금을 납부하

였지만 면세용으로 사용되면 환급이나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2005년 에너지세 지원법(Energy Tax Incentives Act of 2005)에서는 대다수 LUST 기금의 면제항목을 삭제하였으므로 동 기금에 관한 세금은 여전히 납부하여야 한다.

비과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유와 등유는 염색요건을 충족하면 backup tax⁹⁷⁵⁾를 포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Reg. §48.4082-4(c)). 연료세가 면제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 ② 기본적인 정부기능을 위한 지방정부와 도로용이 아닌 연방정부 차 ③ 학교버스 ④ 지역버스(도시간 버스는 갤런당 17센트, 2011년 갤런당 4.3센트로 인하) ⑤ 비영리교육단체 ⑥ 수출(경유) ⑦ 경유차 이외의 용도(가정난방용) ⑧ 경유기관차(백업세 적용).

과세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구히 염색된 경유와 등유는 사전 허가된 터미널 등에서 반출되고 염색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⁹⁷⁶⁾. 2005년부터 염색은 수동이 아닌 국세청이 지정한 염색분출기계 시스템을 사용하여 염색해야 한다(Sec. 4082(a)(2)). 염색된 연료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염색 경유, 비과세용으로만 사용, 과세용 사용시 벌금”이라는 표어를 소매장소에 붙여야 한다. 만약 염색된 연료가 과세용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된 것을 알았거나 알만한 자 혹은 염색 강도를 화학적으로 변경하는 자에게는 추정세금 이외 벌금이 부과된다(Sec. 6715(a)). 벌금은 1,000달러와 갤런당 10달러 중 더 많은 금액이며 초범이 아니면 1,000달러를 지난 위법행위의 빈도와 곱한 금액이 벌금이다(Sec. 6715(b)(2)).

4) 등유

등유도 경유와 같은 방식과 세율로 과세되며 비과세 용도도 같다⁹⁷⁷⁾. 2011년 10월 이후에는 세율이 갤런당 4.3센트로 하향 조정되는데 이 때 LUST 기금은 폐지된다

975) 면세용 연료가 자동차나 기차에 사용되어 과세될 때 이를 백업세라고 하며 자동차 등의 운 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데 판매자도 연료가 과세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인지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공동책임이 있다. 세율은 24.4센트/갤런이지만 경유용 기차의 경우 세율이 2005년 3.3센트/갤런에서 점차 인하되어 2007년 무세화된다.

976)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으로부터 면제된 터미널 등(알래스카)은 염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48.4082-5(c)).

977) 1997년 Taxpayer Relief Act에 근거하여 등유도 1998년 이후 과세대상 유류에 포함되었다.

(Sec. 4081(d)(1)). 등유도 경유와 마찬가지로 염색(dyed)되어 반출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항공용 등유와 등록된 산업체가 파이프라인이나 선박으로 공급받는 등유도 염색할 필요가 없다(Feedstock kerosene)⁹⁷⁸⁾.

세금이 면제되는 등유의 용도는 경유와 같다. 이 밖에도 자동차 등의 연료용이 아닌 펌프(block pump)에서 판매된 등유나 난방용 기름과 혼합되어 사용된 등유에 대한 세금은 등록된 최종 판매자가 신청하면 환급된다(Sec. 6427(1)(6)(B)). 2005년 이후에는 수출용을 제외하면 모든 연료에 부과된 LUST 기금은 환급되지 않는다(Sec. 6430).

5) 타이어

전부 혹은 일부 고무로 만들고 도로용으로 표시된 타이어를 제조자,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판매하면 2011년 10월까지 제조업자세가 부과된다(재생품은 제외, Sec. 4071(a)). 세율은 과거 중량⁹⁷⁹⁾에 따라 부과되었으나 2004년 고용창출법에 따라 적하용량(load capacity)이 3,500파운드를 초과할 때 초과분 10파운드당 9.45센트가 적용된다. 슈퍼싱글 혹은 코드(biasply) 타이어의 세율은 4.725센트이다.

타이어는 판매 당시가 아닌 소매상에 배달할 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Sec. 4071(b)). 수출용, 시내버스와 학교버스용, 추가 제조용, 선박과 항공기 공급품,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용 타이어는 면세된다. 이전에 세금을 납부한 재생 타이어도 면세된다. 면세를 위해서는 제조업자와 판매자가 모두 등록을 하고 송장에 등록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978) Feedstock kerosene은 휘발유, 경유, 특정연료와 대체연료(4041조의 소매세가 적용)를 제외한 물질을 자체 사용용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반출하는 등유를 말한다.

979) 이전에는 세율이 중량 40파운드 이하 무세, 40~70파운드 15센트/파운드, 70~90파운드 \$4.5+30센트/파운드(70파운드 초과분), 90파운드 이상은 \$10.5+50센트/파운드(90파운드 초과분)였다.

6) 항공연료(Aviation fuels)⁹⁸⁰⁾

항공용으로 사용된 등유와 휘발유는 터미널이나 정제공장에서 반출되거나 국내로 유입될 때 과세된다(Sec. 4081, 4083). 터미널 랙에서 반출되는 경우 비록 그 이전에 터미널로부터 이송될 때 세금을 납부했어도 다시 세금을 내고 환급받는다(Reg. §48.4081-7). 항공용으로 사용되는 알코올, 바이오디젤 혼합연료 그리고 대체연료에도 전술한 바의 특별 공제가 허용된다(알코올 혼합연료 2010년, 바이오디젤 2008년 기한). 또한 수출용, 농업용, 지방정부용, 비영리교육단체용, 군용 항공유는 면세되며 이에 추가하여 항공용 연료로 사용되지 않은 유류와 외국을 오가는 국내 및 외국 항공기도 면세된다. 항공유는 다른 유류와 달리 면세용으로 염색을 하지 않는다(Sec. 4082(b)).

이전에는 항공용 등유에 대하여 낮은 세율⁹⁸¹⁾이 부과되었지만 2005년 9월 이후에는 모든 등유에 대하여 갤런당 24.4센트의 세금이 적용된다(LUST 기금 포함). 다만 터미널⁹⁸²⁾에서 직접 비행기로 급유되는 등유의 경우 상업용은 갤런당 4.3센트⁹⁸³⁾, 비상업용은 갤런당 21.9센트의 경감세율이 적용된다(Sec. 4081(a)(2)(C)). 비상업용 연료 세율도 2007년 9월 이후에는 갤런당 4.4센트로 인하된다(Sec. 4081(d)(2)). 항공용 휘발유에는 갤런당 19.4센트의 세율이 부과된다. 감면 대상자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하며 항공유를 공급받을 때 감면 증명서를 포지션 홀더에게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포지션 홀더(position holder)⁹⁸⁴⁾가 납세의무자이다. 다만 항공유가 상업용 비행기 급유탱크로 직접 투입되고 등록된 납세의무자이고 등록 고지서가 허위임을 믿을만한 사유가 없으면 포지션 홀더에게 납세의무가 없다. 즉, 상업용 항공유의 경우 연료를 사용하는 비행사에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납세를 확인할 의무가 있

980) 제조업자세(4081조)가 부과되지 않은 항공유를 위하여 소매세(4041조)가 존재하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981) 상업용(4.3센트/갤런)을 제외하면 21.8센트/갤런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알코올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세율은 8.6센트/갤런이었다(Sec. 4092(b)).

982) 공항에 있는 급유차나 급유탱커도 항공기에만 유류를 공급하면 터미널로 간주될 수 있다.

983) 비행기의 승객과 화물에 대하여 연방소비세(ticket tax)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업용 항공유의 세율이 낮다(Sec. 4261).

984) 포지션 홀더는 터미널 운용자의 장부에 해당 연료의 재고 보유자로 기록된 자를 말한다.

는 임원, 종업원 혹은 중개인이 고의적으로 이를 방지할 때 이들도 공동 책임이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세금 납부를 하지 않도록 원인 제공한 자도 마찬가지이다(Sec. 4103).

7) Gas Guzzler Tax(자동차 연비세)

환경 안전청(EPA)의 연비기준(연비가 갤런당 22.5마일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생산자나 수입업자가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Sec. 4064(a), (b)(5)). 사업용이나 개인용으로 수입한 자동차에도 동 세금이 적용된다. 여기서 자동차(automobile)란 아무 것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도로용 휘발유 혹은 경유 사륜차를 의미한다(Sec. 4064(b)(1)(A)).

〈표 1-8〉 Gas Guzzler Tax 세율(Sec. 4064)

(단위: 마일/갤런, 달러)

연비	세율	연비	세율
~22.5	0	16.5~17.5	3,000
21.5~22.5	1,000	15.5~16.5	3,700
20.5~21.5	1,300	14.5~15.5	4,500
19.5~20.5	1,700	13.5~14.5	5,400
18.5~19.5	2,100	12.5~13.5	6,400
17.5~18.5	2,600	~12.5	7,700

납세자는 Form 720에 부착된 Form 6197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Gas Guzzler Tax는 다른 연방세와 달리 정부와 비영리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면세가 허용되는 경우는 해당 제품이 자동차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서 6,000파운드 이상의 리무진, 기차선로에서 운영되는 차, 응급차, 경찰, 화재 예방차 그리고 승객용이 아닌 자동차이다(Sec. 4064(b)(1)(B)).

과세 목적상 자동차를 처음 임대하면 이를 판매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그 후 임대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Sec. 4217(e)). 이 때 제조업자는 임대료를 받을 때마다 전체 임대료에서 각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세금과 곱한 금액을 납부한다. 임대된 자동차가 세금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에 판매되거나 임대가 취소되면 그 차액은 제조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제조업자세 품목

1) 석탄(Coal)

생산자가 국내 지하 혹은 지표상의 탄광에서 채굴한 석탄이 판매될 때 과세된다(Sec. 4121(a)). 이로 인한 세수는 폐장애기금(Black Lung Disability Benefit Trust)에 적립되어 광부를 위하여 사용된다. 탄광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장애에 대비한 기금을 설립하면 석탄세가 면제될 수 있다(Sec. 501(c)(21)). 석탄세는 2014년 1월 혹은 1981년 부로 폐장애기금에 납부할 예치금이 없으면 부과 종료된다.

수입석탄에는 석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세가 면세되는 경우 - 정부용, 면세교육기관, 선박용 등 - 도 석탄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미국 법원 판정에 따라 수출되는 석탄은 미국 헌법 1조 9항 5(수출품에 대한 면세규정)에 의하여 면세가 허용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석탄 생산자나 수출업자는 Form 720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혹은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석탄세 세율은 채굴장소에 따라 다른데 지하탄광 석탄은 톤당 1.1달러와 판매가격(f.o.b.)의 4.4%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지표면 채굴 석탄은 톤당 0.55달러와 판매가격의 4.4% 가운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Sec. 4121(b)). 단, 지하탄광 석탄 톤당 25달러 이하 그리고 지표면 석탄은 톤당 12.5달러 이하로 판매되면 종가세(4.4%)가 적용된다. 또한 세율과 관계없이 톤당 세금이 석탄가격의 4.4%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면제된다(Sec. 4121(a)(2)). 이는 석탄가격이 하락했을 때 종량세로 인한 세금 부담이 비율적으로 많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기나 철강회사 등 채광자가 자체적으로 석탄을 소비해도 석탄세가 부과되며 유사 석탄 판매를 기준으로 한 구성가격이

과표가 된다.

2) 스포츠 낚시기구(Sport Fishing Equipment)

제조업자,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스포츠 낚시도구에는 판매가격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Sec. 4161(a)(1)). 낚시용구와 함께 판매되는 부품이나 부속품(액세서리)도 해당 제품의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부품이면 같은 세금이 적용된다(Reg. §48.4161(a)). 2005년 이후 낚시대에 대한 세금은 10달러로 제한되었다. 이 밖에 전기보트 모터(outboard motor)와 관련 부품도 판매가격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Sec. 4161(a)). 세금은 사전에 예약할 필요가 없으나 연방소비세 신고서인 Form 720을 작성할 때 납부한다. 즉, 매 4분기 이후 첫 달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3) 활 및 화살 부품(Bows and Arrow Components)

제조업자,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30파운드 이상의 활과 그 부품 및 부속품 그리고 과세대상인 화살과 함께 사용되는 화살통 등 화살부품에는 판매가격의 1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Sec. 4161(b)). 한편 2004년 이전에는 18인치 이상의 화살을 구성하는 화살대, 축, 날개 등 4개 부품에 대하여 12.4%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broadhead가 제외되었고 2005년에는 화살대에 대한 개당 39센트(2008년 개당 43센트)를 제외하고 다른 화살 부품에 대한 세금은 철폐되었다(Sec. 4161(b)(1)). 세금은 낚시도구와 마찬가지로 기한으로 Form 720을 작성하여 신고한다.

4) 총기류(Firearms)

제조업자, 생산자 혹은 수입업자가 판매하는 권총에는 판매가격의 10% 그리고 탄약과 탄창 및 장총 등 기타 총기류에 11%의 세금이 적용된다(Sec. 4181). 보증이나 포장 수수료 그리고 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 등 판매에 따른 금전적 보상과 서비스가 과

세가격에 포함되며 단, 배송료, 보험료나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해 세금은 총기류를 판매하는 제작자나 수입업자 혹은 생산자에게 부과된다. 1990년 이후 과세행정은 알코올, 담배 및 총기청(ATF)이 관장하였으나 2003년 국토 안보법에 따라 알코올·담배 거래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이 재무부 산하에 신설됨에 따라서 과세행정이 다시 이관되었다. 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총기류는 연방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National Firearms registration and Transfer Record). 또한 총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총기류 세금은 분기별로 Form 5300.27을 작성하여 신고한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분기별로 2,000달러를 초과하면 Form 5300.27과 함께 세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국방부와 수출품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추가 가공을 위한 총기류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 50정 이하의 총기를 제작 혹은 수입하는 자는 연방소비세가 면제된다(Sec. 4182(c)(1)).

5) 백신세(Vaccines Tax)

일정 부류의 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투약되는 백신이 판매 혹은 소비되면 1회 분량에 대하여 75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Sec. 4132(a)(2)). 백신세는 백신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기금(Vaccine Trust Fund)으로 사용된다. 만약 백신이 다수의 과세대상인 병 종류에 동시에 속하게 되면 세금은 총량으로 부과된다. 백신세는 Form 720을 작성하여 신고하며 세금을 납부한 자가 반송하거나 손상되고 6개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5. 시설 및 서비스(Facilities and Services)

시설과 서비스 관련 세금에는 전화 등에 대한 통신세, 비행승객과 화물, 선박승객세 그리고 항만유지료가 있다. 내국세법은 재무성 장관에게 연방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ec. 4293). 이에 따라 재무성 장관은 미국 정부, 비영리 교육단체, 육아소, 장애인 훈련센터 등 다수의 기관에 대하여 통신세를 면제하고 있는

데 항공 관련 소비세는 지방의 군소 공항과 소규모 유람항공 등을 제외하면 면세하지 않는다(Sec. 4253(j), 4281).

가. 통신(communications)

통신 관련 세금은 1898년 미·스페인 사이의 전쟁재정법(War Revenue Act)에서 처음 부과되어 사치세의 역할을 하였고 1901년에 폐지된 후 1917년 부활하였다가 1932년 재정법(Revenue Act of 1932)으로 영구히 도입되었다.

시내전화(local service)와 전신타자 통신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지불한 현금과 서비스 등 지급대금에는 3%의 세금이 부과된다(Sec. 4251(b)(1))⁹⁸⁵⁾. 1997년부터 제3자가 전화카드 매입시 통신서비스 업체에게 제공하는 금액(prepaid telephone card)에도 시내전화용이면 세금이 적용된다(Sec. 4251(d)). 전화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설비나 서비스도 과표에 포함된다. 통신세는 전화 서비스에 한 번 부과되므로 여러 전화선을 이용하여 내용이 다수에게 전달되더라도 과세는 한번만 한다(Reg. §49.4253-5).

다만 일부 서비스는 과표에서 제외된다. 우선 설치료와 응답서비스는 과세되지 않고 전화기와 전화를 이용한 보안시스템 서비스도 면제된다. 언론기관의 뉴스 및 스포츠 중계 서비스는 언론기관이 면세를 확인하면 전신타자 통신서비스 세금이 면제된다(Sec. 4253(b)). 그러나 잡지, 정기간행물이나 전문출판물 등 특정 집단을 위한 특정 정보 제공 서비스는 면제대상이 아니다. 운송업체, 전화회사 그리고 라디오업체 등이 사업상 사용하는 WAT 서비스도 비과세된다. 국제기관과 정부기관, 소득세가 면제되는 비영리병원과 비영리교육단체도 면세 증명서를 제출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납세의무자는 서비스 구입자이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통신세를 징수하여 Form 720으로 신고한다(Reg. §49.4251-2(c)). 만약 납세의무자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면 서비스 업자는 납세를 거부하는 자의 이름과 세금 등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서비스업자가 고의적으로 세금 징수를 망기하면 100%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비스업자는 분기의 첫 2개월 중 한 달 납부 의무액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이를 예탁

985) 장거리 전화와 장거리와 시내전화가 혼합된 서비스는 수수료에 따로 표기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야 하며 3개월째 세금은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면 된다. 이외 세금을 납부한 서비스 제공자가 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나. 항공운송(Air Transportation)⁹⁸⁶⁾

항공운송에 부과되는 연방소비세는 국내 상업용 승객운송⁹⁸⁷⁾과 국제승객 운송 그리고 화물운송을 위한 세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 세금은 서비스 구입자에게 부과되며 운송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납부한다. 세수는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공항 및 항공기금(Airport and Airway Trust Fund)⁹⁸⁸⁾을 위하여 사용된다. 2007년 폐지될 예정인 동 세금은 비행기 종류나 공공 혹은 민간공항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Sec. 4261(j)).

상업용 국내 승객운송⁹⁸⁹⁾의 경우 항공권 판매가격의 7.5%에 해당하는 정률세와 정액의 국내편세(domestic segment tax)⁹⁹⁰⁾가 함께 부과된다(Sec. 4261(b)(1))⁹⁹¹⁾. 종량세인 국내편세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되는데 2000년에는 2.5달러, 그리고 2006년 당시 3.3달러(2008년 3.5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신용카드회사, 전화회사, 음식점과 호텔 등 기업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를 위하여 이들 업체가 항공사에게

986) 항공 관련 세금의 변화는 Eric Henry(2003) 참고.

987) 개인 항공기의 경우 만약 회사가 소유한 항공기 운영을 항공회사에 위탁했어도 회사가 승무원을 통제하여 운영비를 지불하는 등 소유와 통제를 완전하게 하면 비과세된다.

988) 1970년 처음 설립된 동 기금은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 각종 항공운송과 항공기 유류세로 충당되고 있다.

989) 미국 48개주 내의 항공과 알래스카, 하와이는 주영토 내부의 항공 그리고 국제운항은 국내편에만 적용된다. 미국 대륙과 하와이(알래스카) 사이의 운항 중 미국 영토 바깥의 운항은 국제운항으로 처리된다.

990) 국내편은 한 차례의 이륙과 착륙으로 구성된 운송을 의미하며 따라서 중간 기착은 2번의 비행편으로 간주된다(Sec. 4261(b)(2)). 그러나 기체 결함이나 날씨로 인한 기착은 제외된다.

991) 1997년 이전에는 법 4261(b)조에 따라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좌석이나 숙박시설을 제공하면 10%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1997년 납세자 지원법 이후에 명백하게 법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동 세금은 아직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급하는 금액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⁹⁹²⁾.

미국에서 출발하여 종료되는 항공편은 해외에서 지급해도 과세되며 국제운항은 미국에서 출발하여 미국에서 종료되지 않으면 미국을 경유해도 비과세된다. 항공권 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미국 국내에서 처음 출발 혹은 도착편 교통을 제공하는 항공사에게 책임이 있다. 항공 보안을 위하여 항공 및 교통 안보법⁹⁹³⁾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외 일부 농업지역 공항에서의 출발이나 도착에는 정액의 국내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Sec. 4261(e)(1)).

과세대상이 되는 운송은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 접경의 225마일 구역(225 mile zone)에서 시작하여 이들 지역에서 종료되는 운송이다(Sec. 4262(a)(1))⁹⁹⁴⁾. 항공권 구입시 구매자가 항공료에 포함한 세금을 낼 의무가 있으며 비행사가 이를 징수하며 ½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할 세금을 예약한다. 외국에서 항공권을 발급하면 발급권자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이 밖에 ICC에 등록된 여행사가 비행기를 빌려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단순히 비행사의 중개인 역할을 하지 않는 한 세금을 징수,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승객에게 있지만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항공사에게 이차 책임이 부여된다(Sec. 4263(c)).

과표는 운송을 위하여 승객이 지불한 전체 금액이므로 지방정부의 판매세 등도 포함한다(Reg. §49.4261-2(a)). 기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결 서비스, 수화물 수수료, 음식과 호텔 서비스 등 운송과 관련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수료는 항공권 수수료와 구분될 수 있어야 과표에서 제외된다(Reg. §49.4261-2). 항공권 만료 연장이나 도착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도 과표에 포함된다. 항공권을 환급해주는 경우 세금도 승객에게 반려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출발 혹은 종료되는 국제 여객항공에 대해서는 승객 1인당 14.5달러(2008년 15.4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Sec. 4261(c)(1)). 2007년 9월 폐지 예

992) 무료 보너스 항공권을 받는 소비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993) Aviation and Transportation Security Act. 개별 공항은 편도당 최대 \$5를 한도로 승객이 탑승할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된다(Passenger Facility Charge). 그러나 동 수수료를 부과하는 공항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공항개선을 위한 지원금이 감소한다.

994) 단, 재무성 장관은 캐나다나 멕시코와 협의하여 225 마일 구역에서 운행하는 항공에 대한 항공세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Sec. 4262(e)).

정인 동 세금은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되어 변한다. 동 세금은 국내편 승객운송에 적용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국제 운송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 접경의 225마일 구역 그리고 하와이, 알래스카 사이의 운행은 일부는 국내 그리고 일부는 국제운송으로 간주된다. 특히 출발 당시에 감면세율 7.3달러(2008년 7.7달러)를 적용받는다(Sec. 4261(c)).

세 번째로,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사업(waybill)에 대하여 그 운송료의 6.25%를 연방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air freight tax, Sec. 4271(a)). 2007년 폐지 예정인 동 세금은 민간 혹은 공립공항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송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국내에서 출발하여 종료되는 운송에만 적용되며 외국행 혹은 외국발 운송은 비과세된다.

총중량이 6,000파운드 이하인 소형 비행기가 비정기적으로 하는 수송은 세금이 면제되며 2005년부터 이러한 소형 비행기에 의한 관광유람도 비과세된다(Sec. 4281). 즉, 두 지점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면 소형 비행기도 과세된다. 항공운송에만 의존하는 수출입 물품도 미국에서 시작 혹은 종료되지 않으므로 면제된다(Reg. §49.4271-1(c)(1)). 또한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도 비과세되는데 수입화물은 그렇지 않다(Sec. 4272(b)(2)). 화재, 건설, 농업용 살포 등의 항공 서비스와 긴급의료 서비스 헬리콥터 그리고 수상용 비행기의 (수상) 이착륙에는 항공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를 지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세금을 징수하고 Form 720으로 납부한다. 화물과 승객을 동시에 운반하면서 수수료는 한 번만 받으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분배해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지급된 항공료에 세금이 포함되지 않으면 미국 국내에서 화물을 배달받는 자로부터 화물을 마지막으로 운송한 자가 세금을 징수한다. 비행기만이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는 과표에 포함되지만 운송 주선업체 등이 제공하며 따로 명기되는 서비스의 수수료는 과표에서 제외된다.

다. 수상운송(Water Transportation)

미국 국내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승객 1인당 3달러의 세금이

출발 혹은 도착시 부과된다(Sec. 4471, 4472). 따라서 외국에서 출발, 미국을 경유하여 다시 외국으로 가는 여객선은 제외된다. 수상 운송세는 첫째, 1박(24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업용 여객선으로 16인 이상의 침실을 갖춘 선박이거나 둘째, 항해시간과 관계없이 도박장을 갖추고 미국 영해를 넘나드는 상업용 여객선이 미국 영내를 도착 혹은 출발할 때 적용된다. 12시간 이내에 미국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라. 항만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

특정 미국 항만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 대부분 상업용 화물은 전체 화물 가치의 0.125%를 소비세(HMT)로 납부한다(Sec. 4461(b)). 여기서 화물은 승객을 포함한다. 여객에 대한 과표는 탑승료 이외 선박에서 제공된 여러 서비스를 포함한다(Sec. 4462(a)(3)(A)). 항만세는 항만유지기금(Harbor Maintenance Trust Fund)에 적립되어 연방정부의 항만과 수로사업에 사용된다. 항만세는 내국세법에 따라 부과되지만 관세청이 이를 관리한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화물의 수입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외에는 화주(shipper)가 납세의무자이다. 미국 대법원은 수출품에 대한 항만세가 정당한 사용료가 아닌 수출품에 대한 과세로서 수출품에 대한 과세를 금지하는 헌법 제1조 5항 5절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즉, 항만세가 화물 부피나 무게가 아닌 가격에 비례하여 항만 이용에 따른 비용과 합리적인 관계가 없고 항만을 직접 이용하는 자가 아닌 수출업자가 부담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법 개정을 통하여 수출품에 대한 항만세가 폐지되었다(Sec. 4462(d)).

항만세는 화물을 하역할 때 부과된다. 관세 부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행정이 운영된다. 즉, 따로 명기되지 않는 한 관세법이 정한 규정이 항만세에도 적용된다(Sec. 4462(f)(1)). 그러나 대체환급제도는 항만세에 적용되지 않는다(19 U.S.C. §1313(j)(2)). 항만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개인 소유물 ② 알래스카, 하와이와 미국 본토 사이의 화물⁹⁹⁵⁾ 그리고 알래스카와 하와이 이내에 오가는 화물 ③ 육지로 도착한 적이 없는 수산물 ④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ferries) ⑤ 내륙 수상 연료세

(inland waterway tax)가 부과되는 선박의 화물이다.

미국 관세청은 과세대상 항구와 세금 납부에 대한 규정을 공포한 바 있다(19 CFR §24.24). 선박운영보고서에 명시된 하주는 분기별로 Customs Form 349를 작성, 항만세를 신고하고 분기 익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과다납부에 대한 환급은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6. 주류 및 담배세(Alcohol and Tobacco taxes)

담배와 주류에는 일련의 연방소비세가 부과된다. 이들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수입자 그리고 주류와 담배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도구의 제작자가 이들 소비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다. 생산업체 등은 TTB F 5630.5를 이용하여 영업장소를 등록하고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한다(Sec. 7011(a)). 등록 대상 업자는 다음과 같다. ① 증류주, 포도주 그리고 맥주의 생산자와 중개인 ② 증류주의 생산자, 수입자, 도소매업자 ③ 음료수가 아닌 제품에 알코올을 사용하는 제조업자 ④ 담배제품, 담배용지나 튜브의 제조업자 ⑤ 수출 창고 영업자.

1990년 재무성은 주세와 담배세 관련 행정을 알코올·담배·총기청(ATF)으로 이관한 바 있다(Treasury order 120-03). 그러나 2003년 국토안보법의 일환으로 알코올·담배세와 거래청(TTB)이 설립되면서 알코올과 담배 과세와 관련된 행정(내국세법 51, 52장)이 재무성 소속의 TTB로 다시 이관되었다.

가. 주세

주류에 대한 연방세는 재정수입적 측면과 규제적 측면이 있다. 주류에 대한 세금은 증류주와 포도주 그리고 맥주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있다. 또한 2005년 이전에는 주류 생산자와 도소매 판매자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하였었다. 세금징수와 법 이행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주류업자들은 보증금(bond)을 예치해야

995) 단, 해당 지역에서 소비 혹은 사용되어야 하며 외국으로 수출되서는 안된다.

한다.

주류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재무성에 이름과 영업장소 그리고 거주지를 등록해야 한다(Sec. 7011(a)). 특히 증류주 제조업자는 증류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영수증, 생산된 주류의 종류와 양, 재고 관련 자료, 밀봉 혹은 포장된 주류의 종류와 양 등 생산과 저장, 처리,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Sec. 5207(c))⁹⁹⁶⁾.

주세는 종량세로서 납세의무는 주류가 생산되거나 수입될 때 발생하지만 현재 보세 제조장 체제에서는 세금 납부는 생산된 제조장에서 주류가 출고될 때 이루어진다. 수입품은 미국내 창고에서 처음 출고될 때 과세되지만 미국내에서 병으로 밀봉 즉, 보틀링이 이루어지면 국산품처럼 과세가 이루어진다. 과실증류주의 경우 세금 감면으로 실질세율이 포도주 세율 수준과 유사하다. 포도주는 특정 과일로부터 생산되어야 한 다거나 색깔과 맛에 대한 제한은 없다⁹⁹⁷⁾. 이외 증류주에 일정한 맛이 첨부된 경우 증류주 세율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포장하지 않고 대량 수입된 자연산 포도주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세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의무는 수입업자가 아닌 보세장에게 있다(Sec. 5364). 한편 증류주 등 주류를 수출하면 주세의 환급이 허용된다(Sec. 5062(b)).

996) 주류 관련 내국세법 위반에 따른 형벌은 내국세법 Sec. 5601~5690 참조.

997) 25만갤런 이하의 국내 포도주 생산자는 샴페인과 스파클링 포도주를 제외한 제품의 출하 시 첫 10만갤런의 와인에 대하여 90센트/갤런의 세금이 면세되며 추가 생산시에는 1천갤런당 1센트가 감세되어 25만갤런까지 혜택이 부여된다(Sec 5041(c)(1)). 이로 인하여 실질 세금은 0.17달러까지 인하된다. 같은 규모의 국내 사과주 생산자도 생산된 1갤런당 5.6센트가 면세된다.

〈표 1-9〉 미국 연방소비세 주세율

과세대상	세율	세법 규정
증류주	\$13.50/proof gallon ¹⁾	5001(a)(1)
포도주(alcohol)		
~14%	\$1.07/wine gallon ¹⁾	5041(b)(1)
14~21%	\$1.57/wine gallon	5041(b)(2)
21~24%	\$3.15/wine gallon	5041(b)(3)
24%~	\$13.5/proof gallon	5001(a)(3)
사과주(0.5~7%)	\$0.226/wine gallon	5041(b)(6)
삼페인과 자연산 스파클링 포도주	\$3.40/wine gallon	5041(b)(4)
인공 카본 포도주	\$3.30/wine gallon	5041(b)(5)
맥주	\$18/배럴(31 gallons) ²⁾	5051(a)(1)

주: 1) a proof gallon은 50% 알코올을 함유한 1 US 갤런을 의미하며 a wine gallon은 알코올 함유량과 관계없는 1 US 갤런임.

2) \$18/배럴은 대략 갤런당 58센트인데 매년 200만 배럴 이하를 생산하는 국내업체에는 처음 6만배럴에는 \$7/배럴이 적용됨(5051(a)(2)). 이러한 감면규정은 GATT에서 이의대상임.

2006년부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증류주, 포도주와 맥주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한 달에 두 번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기별로 할 수 있다(Sec. 5061(d)(4)). 첫째, 후불채권제(defered payment bond)에 따라 이전 혹은 유입되는 증류주, 포도주와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 둘째, 이전 과세연도 총납세의무액이 50,000달러 이하이며 셋째, 당해 합리적으로 볼 때 연도 납부세액이 50,000달러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이러한 소규모 업자는 분기별로 신고하는데 구체적으로는 3월 31일 등 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을 납부한 증류주의 재고에 대해서는 일반사업공제(Sec. 38(b))로 간주되어 소득세 공제가 적용된다(Sec. 5011(a)). 적용 대상은 5005조가 적용되는 제조업자와 수입자 그리고 자격이 있는 도매업자⁹⁹⁸⁾의 두 부류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허용되는 공

998) 지방정부 소속이 아닌 도매업자로서 연방알코올운영법(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면허를 받은 도매업자를 말한다(미국에서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류 판매를 직접 혹은 위탁하여 하기도 한다).

제는 미국에서 병에 밀봉되고 밀봉업자로부터 직접 도매업자가 구입한 증류주 1박스
와 과세연도 이전연도에 적용되는 1박스당 평균 ‘조세금융비용’ (average tax-
financing cost per case)⁹⁹⁹⁾을 곱한 수치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자의 경우 평균 조세
금융비용과 지방정부 등이 운영하는 창고에 반입한 증류주 박스를 곱한 수치이다.

과거에는 주류 제조자, 도소매업자, 맥주 수입업자, 증류주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업체 그리고 보세장치소 등에 대하여 매년 영업세(occupational taxes)가 부과되었
다. 그러나 2004년 고용창출법에 따라 3년간 납부가 유예된 동 세금은 2008년 7월 마
침내 영구히 폐지되었다(Sec. 5148(b)). 따라서 주류에 대한 영업세는 더 이상 적용되
지 않지만 참고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0〉 주류 관련 영업세(2005년 7월 이전)

(단위: 달러)

과세대상	세율(연간)	세법규정
증류주 생산자, 포도주 보세장, 밀봉업자 총수입이 50만달러 이상 맥주 제조업자	1,000 ¹⁾	5081(a) 5091(a)
총수입이 50만달러 이하 맥주, 증류주 제조업자 증류주, 맥주 도매업자	500	5081(b), 5091(b) 5111(a), (b)
맥주 소매업자와 산업용으로 사용한 증류주	250	5121(a), (b), 5276(a)

주: 1) 2005년 7월부터 고용창출법에 따라 3년간 납부 유예 후 2008년 7월 폐지(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주류업체 이외에도 세금을 납부한 증류주를 이용하여 의약품, 약품원료, 음식, 향료
나 향수 등을 생산하는 업체는 500달러의 영업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Sec. 5131(b)).
환급 신청은 월 혹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류주를 사용한 분기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외 매년 1만 proof 갤런 이하의 증류주를 생산하여 이를 연
료로 사용하는 업체에는 직업세가 면제된다(Sec. 5181(c)(4)).

999) 이는 1박스당 간주 연방소비세 \$25.68 (deemed federal excise tax per case, Sec.
5011(c)(3))에 간주 이자율을 곱한 수치로서 간주 이자율은 법 6621(a)(1)항에 근거한 분기
별 평균 주식회사 이자율(corporate overpayment rate)을 말한다(Sec. 5011(c)(1)).

주류 관련 직업세를 납부해야 할 업체가 의도적으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5,000달러 이하의 세금 혹은/그리고 2년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Sec. 5191(a)). 이외 세금 회피나 유기 등에 대한 처벌은 다른 연방소득세와 유사하다.

나. 담배세¹⁰⁰⁰⁾

담배와 시가 등의 담배제품과 담배용지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자 등에게 연방소비세가 부과된다(Sec. 5701). 그러나 이들 제품이 다른 제조업자나 수출을 위해 보세장으로 이동될 때에는 이를 인도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이다(Sec. 5703(a)). 이들 제품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세 상태로 이전할 수 있고 수입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에서 환수되거나 화재 등으로 파기된 담배는 해당 조치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고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상태의 제품이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Sec. 5705(b)). 연간 세금이 500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는 익년에 사전 지정된 은행 등으로 세금을 전자예탁해야 한다(Sec. 5703(b)(3)).

담배세와 관련한 국세청 규정을 행하지 않거나 금지된 행위를 하면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5761(a)). 수출용 담배를 국내로 유입하거나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받거나 이를 돕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상기 벌금과 함께 세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위법대상인 담배제품을 국내로 유입하거나 이전하는 데 사용된 차량이나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이외 법이 정한 표지 등을 부착하지 않은 담배제품도 몰수대상이다(Sec. 5763(a)).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세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세금신고와 장부기록을 포함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불법적으로 과세대상 담배제품을 옮기거나 매매하거나 혹은 매입하는 경우 그리고 담배에 부착한 표지 등을 파괴하는 경우 1만달러 혹은/그리고 5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1000) 2005년 이전에는 주류와 마찬가지로 담배와 담배용지 등의 생산자와 수출업자도 영업장당 연간 \$1,000의 세금을 영업세로 납부하였다(Sec. 5731). 단, 전년도 총수입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체에는 연 \$500의 영업세가 적용되었다.

〈표 1-11〉 각종 담배 관련 제품 연방소비세 세율

(단위: 개)

과세대상	세율	세법규정
담배:		
작은 담배 ¹⁾	\$19.5/1,000 ²⁾	Sec. 5701(b)(1)
큰 담배	\$40.95/1,000	Sec. 5701(b)(2)
시가:		
작은 시가 ³⁾	\$1.828/1,000	Sec. 5701(a)(1)
큰 시가	20.719% (단, \$48.75/1,000 이하)	Sec. 5701(a)(2)
연기없는 담배제품		
코담배(snuff)	\$0.585/파운드	Sec. 5701(e)(1)
씹는 담배	\$0.195/파운드	Sec. 5701(e)(2)
파이프 담배와 말아 피는 담배	\$1.0969/파운드	Sec. 5701(f), (g)
담배용 제지 ⁴⁾	1.22센트/50장 or 부분품	Sec. 5701(c)
담배 튜브 ⁴⁾	2.44센트/50개 or 부분품	Sec. 5701(d)

주: 1) 작은 일반담배는 1000개비당 3파운드 이하의 담배를 의미하며 큰 담배는 3파운드 이상을 의미하는데 길이 6.5인치 이상의 담배는 2.75인치(혹은 그 일부)를 작은 담배 1개비로 간주, 작은 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적용됨.

2) 20개비당 39센트에 해당.

3) 시가도 3파운드 중량으로 구분됨.

4) 길이 6과 1/2 인치 이상의 담배용 제지와 튜브는 2와 3/4 인치의 제지가 각각 따로 포장된 것으로 간주.

7. 환경세(Environmental taxes)

환경세에는 천연자원의 생산자나 수입자 혹은 사용자가 유발하는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관리하기 위한 유해물질기금과 오존파괴 화학품세가 있다. 전자는 1995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중의 일부인 원유 유출책임기금이 2006년에 다시 도입되어 근해에서의 원유 유출을 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등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유해물질기금을 부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 유해물질기금(Hazardous Substance Superfund)

1980년 설립된 유해물질대응기금의 후신으로 1986년 유출된 유해물질과 화학물질 저장소를 정화하기 위하여 유해물질기금이 설립되었다¹⁰⁰¹⁾. 동 기금은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갤런당 14.7센트의 석유세, 대상 화학제품에 따라 세율이 다른 화학원료세와 수입 화학물질세로 충당되었다. 유해물질기금은 1990년 재정법에 의하여 1995년까지 연장되었다가 이후 폐지되었다. 이들 세금은 Form 6627을 작성하여 신고한다.

석유세는 1996년 철폐된 갤런당 9.7센트의 유해물질기금과 1995년에 폐지되었다가 2006년 다시 도입된 갤런당 5센트의 원유 유출책임기금(Oil Spill Liability Trust Fund)으로 구성된다(Sec. 4611(e), 4611(f)). 원유 유출기금은 27억달러가 적립될 때까지 지속되며 그 이후에는 적립기금이 20억달러로 줄어들었다고 국세청이 결정하는 분기말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다시 작동한다. 그러나 2014년에는 기금 금액과 관계없이 폐지될 예정이다.

석유세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석유제품과 미국 정제공장으로 투입되는 원유에 부과된다(Sec. 4611(a)). 미국에서 사용되거나 수출되는 국산원유에도 석유세가 적용된다. 국산원유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정제공장으로 반입될 때 정제공장 운영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유를 사용 혹은 수출하는 자가 납부한다. 원유를 포함한 수입 석유제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1995년 폐지된 화학원료세는 과세대상 화학물질을 생산자나 수입자가 판매할 때 부과된다(Sec. 4661(a)). 과세대상 화학원료는 내국법 4661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품목에 따라 톤당 0.22~4.87달러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의 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공제 혹은 환급된다. 자동차와 항공연료나 경유용, 비료용, 수출용과 수출용 제품의 원료 그리고 여타 과세대상 화학제품의 원료.

한편 수입 화학물질세는 화학원료세를 보완하는 세금이다(Sec. 4671). 즉, 화학원료세가 적용되는 화학원료에 재료로 투입된 화학물질에 대한 세금으로 수입업자가 사용 혹은 판매할 때 품목에 따라 1.27~10.12달러의 세금이 과세된다(Sec. 4672(a)(2)). 국

1001) Superfund Revenue Act of 1986.

세청과 환경청 그리고 관세청이 과세대상 화학원료가 화학물질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판단하면 화학물질세가 적용되는 품목에 포함된다. 일부 화학물질이 비료용, 연료용, 자동차연료 제조용 혹은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면 면세된다.

나. 오존파괴 화학품세(Ozone-depleting chemicals excise tax)

제조사, 생산자나 수입자가 오존파괴물질(ODC)을 판매 혹은 사용할 때 그리고 과세대상인 제품생산에 있어서 오존파괴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면 해당 수입품에 대하여 과세한다(Sec. 4681). 오존 파괴물질이 거래 및 상업행위나 소득 창출에 이용되거나 혹은 제품 생산에 투입, 변환, 대기에 누출되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 52.4681-1(c)(7)). 오존파괴물질의 손실, 파괴, 포장이나 저장은 제외된다. 오존파괴물질에 대한 세금(ODC세)도 Form 720과 Form 6627을 작성하여 신고한다.

혼합물 생산도 오존파괴물질의 화학적 내용이 변동이 없으면 과세되는 사용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혼합물이 제조될 때 부과되는데 다만 수입품의 경우 미국에서 처음 사용 혹은 판매 당시 세금을 적용한다. 과세대상인 오존파괴물질은 내국세법 4682(a)(2)항에 명기되어 있다. 세금은 오존파괴물질의 중량에 판매연도의 기본세액과 오존파괴계수를 곱한 것과 같다(Reg. §52.4281-1(a)(1)). 기본세액은 1995년 5.35달러에서 매년 파운드당 45센트가 증가하여 2007년 당시 파운드당 10.75달러에 달한다. 오존파괴계수(0.1~10.0)는 1kg의 CFC-11이 잠정적으로 파괴하는 오존량 대비 여타 제품의 오존 파괴량으로 산출된다. 2004년 기준으로 대상물질에 따라 파운드당 1.03달러에서 107.5달러까지 부과되었다.

오존파괴물질을 재생하여 활용하거나 일정 조건 아래서 원료(feedstock)로서 추가 공정에 이용하면 면세가 가능하다(Sec. 4682(d)(1)). 몬트리올협정 체약국으로부터 수입된 할론, 공기여과기나 비료용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마찬가지이다.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매매자는 매입자로부터 등록 면허서를 받아야 한다. 수출품의 경우 생산자와 매입자가 등록을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산자가 일정 한도로 면세받을 수 있다(Sec. 4682(d)(3)). 소량의 오존파괴물질(de minimis amount)을 이용하여 생산된 수입품은 냉장고, 에어컨디션 그리고 전자부품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수입품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Sec. 4682(c)(2)).

만약 수입업자가 과세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으면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질 가액의 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Sec. 4682(b)(2)(B)). 다만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조방식으로 생산된 동일 물질의 과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이 국세청에게 있다. 과세대상 수입품의 명세서는 재무성 규정에 수록되어 있다(Reg. §52.4682-3 (f)(6)). 이 밖에도 생산자나 수입자가 아닌 자가 수출용이나 혼합물 상태를 제외한 판매용이나 추가 가공용으로 일정량 이상의 오존파괴물질을 1월 1일부로 보유하고 있으면 재고세(floor stocks tax)가 부과된다.

8. 기타 소비세

가. 외국 보험상품

내국세법 4371조에 따라 외국 보험회사¹⁰⁰²⁾로부터 구입, 연장 혹은 갱신하는 상해 보험과 변상, 보증채권 그리고 생명, 의료, 사고보험, 연금계약 및 개인에게 발급된 재 보험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가 부과된다(Reg. §46.4371-2)¹⁰⁰³⁾. 단 이들 보험은 미국 국내에서 일부 혹은 전부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하여 국내회사(공공단체 포함)나 거주 민이 피보험자(혹은 수혜자)이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회사가 피보험자(혹은 수혜자)이어야 한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업체를 위해 제공하는 고위험 손해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박의 경우 보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상호협회의 회원 가입도 일정 제약조건 아래 보험으로 간주된다.

대법원은 수출품을 위하여 매입한 보험은 수출에 대한 차별적 과세를 금지한 헌법 제1조 9항의 5에 따라 위헌임을 판정한 바 있다(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 Corporation vs US). 이외 국세청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보험이 화물의 하역 즉시 만료되면 미국 영토 안에서의 보험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을 외국 영토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료는 과

1002) 그러나 만약 국내회사가 (연대) 보증을 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1003) 수출품에 대한 보험은 면세된다.

세대상이 된다.

이 세금은 보험 양식의 형태와 관계없이 국내업체가 보증하지 않는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 세율은 상해보험과 보증 및 변상채권 등에는 보험료 1달러(혹은 나머지)당 4센트, 생명보험, 의료, 사고보험, 연금계약 등과 재보험에는 1센트가 적용된다. 한 예로 204달러 보험료에 대한 세금은 8.16달러이다. 납세의무자는 개별 보험계약과 관련된 장부를 세금을 납부한 날이나 세금납부기한이 도달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3년간 영업장소에 보존해야 한다.

세금은 보험료를 외국회사에게 지급하는 당사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Form 720을 작성하여 신고한다(Reg. §46.4374-1). 여기서 당사자란 보험계약을 한 자나 보험 수혜자를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을 판매한 자에게도 납부 책임이 부여된다. 다만 미국 정부나 관련 단체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면제가 아님). 보험이 취소되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이 가능하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자는 세금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sec. 7270). 이 밖에도 조세 협약에 따른 세금 면제가 가능한 국가의 보험사는 면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소비세가 면제되는 보험료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Sec. 6114, Form 8833).

나. 도박 및 게임세(Tax on Wagering and Games)

주법에 따른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도박행위에 대하여 두 종류의 세금이 부과된다. 우선 도박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Sec. 4401)과 동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도박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직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도박금을 받는 행위를 하는 도박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Sec. 4411)이 있다. 도박금을 미국 국내에서 수령하거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도박을 하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도박자의 국적이나 영주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내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면 모두 과세되고 미국시민이 도박 당시 미국 역내에 있었으면 도박금을 해외에서 수령해도 과세된다(Sec. 4404).

도박에 적용되는 세율은 주법이 허가한 도박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허가된 도박에는 과세대상 도박금의 0.25%, 허가되지 않은 도박에는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자의 경우 스포츠나 경기의 결과에 따른 도박금을 받는 도박업자와 관련된 도박과 이들 경

기와 관련하여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의 도박방식 그리고 로터리 등 이윤 목적의 복권 도박금에 적용된다(Sec. 4421). 도박자로부터 도박금을 받을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만약 도박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에 종료되기 이전에 도박이 취소되면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로터리 중 모든 게임 참여자 앞에서 내기가 성립하고 결과가 결정되며 상금이 수여되는 성격의 도박은 세금이 면제된다(Sec. 4421(2)). 빙고, 카드게임, 주사위게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자선단체의 도박도 추첨에 의하고 주주에게 상금 등의 혜택이 가지 않으면 면제된다. 비영리사교단체의 로터리도 회원들에게만 제공되고 이익이 단체경비에 활용되면 비과세된다. 또한 주법에서 허가된 경마(pari-mutuel wagering), 동전용 도박과 로터리도 면제된다. 이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추첨 등을 통하여 사은품을 주는 행위는 만약 판매제품 가격을 올리는 등 추첨권을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박대금을 받고 경기결과에 따라 손익의 위험을 입는 사람은 사교행위와 관계없이 도박업자로서 등록을 하고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Form 11-C). 직접 도박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며 제3자나 종업원을 통한 도박금 수령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도박금을 수령한 제3자도 등록해야 한다(Reg. §44.4401-2(a)(2)). 납세의무는 신용으로 도박금을 지불한 것과 관계없이 도박금을 수령할 때 발생한다(Reg. §44.4401-3). 제3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수령한 도박금은 그 이후 도박을 취소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내국세법 4401조에 따른 세금은 도박에서 이겼을 때 상금이 아니라 도박에 건 금액의 0.25%이다(Reg. §44.4401-1(b)(2)(i)). 도박하기 위해 지급한 경비나 수수료도 포함된다. 도박세 신고는 다른 소비세와 달리 매월 신시내티 국세청에 세금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Form 730, Monthly Tax Return for Wagers). 도박세 신고는 납세의무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도 마찬가지이다.

납세자는 영업장소(영업장소가 없으면 거주지)에 매일 수령한 도박금과 개별 도박에 있어서 유형별 도박금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종업원이나 대리인의 이름, 주소, 고용기간 등을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장부

를 유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합리적 방법으로 납세자의 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할 수 있다.

도박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도박업자와 납세의무가 있는 도박업자를 대리하여 도박금을 수령하는 자는 매년 50달러를 도박업세(Wagering Occupational Tax)로 납부해야 한다(Sec. 4411(a)). 주법에서 허가되지 않은 도박업을 하는 자에는 500달러가 부과된다¹⁰⁰⁴⁾. 도박업자는 사업개시 전 IRS에 등록을 하고 그 대리인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과세대상인 기존의 종업원 대신에 새로 고용된 종업원에게도 직업세가 적용된다. 납세자는 Form 11-C(special tax stamp)를 이용하여 신시내티 국세청에 등록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연중에 취업한 자는 월별로 세금을 환산하여 납부한다.

체납 신고(delinquent return)나 사기 신고(fraudulent return)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 밖에도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장부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산세 혹은/그리고 구속형이 부과된다. 또한 내국세법에 의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형사처벌 이외에도 도박에 사용되는 기구 등을 납세의무자로부터 압류 혹은 몰수할 수 있다(Sec. 7302).

다. 트럭/버스 도로사용세(Truck and Bus Highway¹⁰⁰⁵⁾ Use Tax)

중량이 55,000파운드 이상인 대형 트럭, 트럭 트랙터와 버스 등에는 매년 도로 사용세(HUVT)¹⁰⁰⁶⁾가 부과된다(Sec. 4481, 밴과 업 트럭은 제외). 트레일러는 그 자체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트럭 등과 연결되어 사용되면 트레일러도 과세된다. 주법에 따로 등록된 재목벌채 트럭은 벌채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세율이 25% 감면된다. 캐나다나 멕시코에 등록하고 미국으로 진입하는 트럭 등도 마찬가지로 감면되었으나

1004) 도박업세 납부를 위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고 납부한다고 연방법이나 주법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사실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즉, Form 11-C(special tax stamp)가 도박 면허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특히 도박행위가 연방법과 주법을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의 법에 따라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double jeopardy).

1005) Highway motor vehicle은 민간도로를 제외한 연방과 지방정부의 공공도로에서 짐을 싣어 나르는 차를 말한다(Sec. 4482(a)).

1006) Heavy Vehicle Use Tax.

2005년 고용창출법으로 감면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미국 영내로 진입할 때 납세기록을 보여주어야 진입이 허용된다(Reg. §41.6001-3). 당해 세금은 2011년 10월에 폐지될 예정이다(Sec. 4481(f)).

도로사용세는 과세대상 용도로 처음 자동차를 사용할 당시 그 이름을 등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정부는 자동차 등록 당시 세금 납부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Reg. §41.6001-2(b)). 일반적으로 운송차 등록자는 Form 2290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동시에 세금을 납부한다. 세금신고는 자동차가 처음 과세대상 용도로 사용된 날이 속한 달의 익월까지 신고해야 한다(Reg. §41.6156-1).

〈표 1-12〉 트럭 및 버스 도로사용세

(단위: 파운드)

과세대상 총중량	세율
~55,000	무세
55,000~75,000	100달러+22달러/1,000파운드(55,000 파운드 초과분)
75,000~	550달러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혹은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세되며 공공 성격의 대중교통기관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환승버스도 비과세된다(Sec. 4483(c)). 그러나 교육청의 위탁으로 학교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공도로를 연간 5,000마일 이하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가 신청하면 납세가 유예되고 추후 5,000마일 이상 사용하면 세금을 납부한다(Sec. 4483(d)(2)). 농작물을 농장으로 부터 운반하는 자동차나 농작물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는 7,500마일까지 면세된다.

라. 미등록채권세(obligation not in registered form)

등록된 양식이 아닌 형태로 등록이 요구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자는 채권금액(원금

기준)의 1%를 만기 기간(연 단위)으로 곱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Sec. 4701(a)). 등록이 요구되는 채권이란 자연인이 발행한 채권,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지 않는 채권, 1년 이하의 만기 채권 혹은 외국인에게만 발부되는 채권¹⁰⁰⁷⁾ 혹은 비과세 채권을 제외한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채권을 제외한 채권을 발행할 때 등록된 양식으로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즉, 동 세금은 무기명 채권의 발급자나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제재조치 중에 하나이다. 한 예로 무기명 채권의 발급자는 이자경비를 공제하지 못한다(Reg. §1.165-12).

9. 폐지된 연방소비세

〈표 I-13〉은 1933년 당시 연방소비세의 주요 세목과 세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휘발유가 전체 세수의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주요한 세목이기는 하지만 이 밖에도 전기(11.5%), 윤활유(6.5%), 타이어(6.1%)와 자동차(5.1%) 등에 대한 세금도 상당하다. 특히 그 당시에는 화장실 변기용품, 모피, 귀금속, 성냥, 라디오, 냉장고, 카메라, 캔디, 탄산음료수 등의 사치용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여 이들 세목으로부터의 세입이 전체 세수의 약 14.5%에 달하는 등 연방소비세가 사치세의 성격이 강하였다. 1993년 폐지되기 이전 사치세는 기준가격 이상의 자동차, 보트, 비행기, 모피와 보석에 대하여 10%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이 밖에 1998년에 폐지되었지만 원유 초과이득세(Windfall Profit Tax)는 Crude Oil Windfall Profit Tax Act of 1980에 근거하여 국제 원유가격의 인상과 국내 원유 가격 통제의 폐지에 따른 원유회사의 초과이윤을 과세하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 원유의 분류(tier)에 따라 초과이득의 30~70%까지 과세한 바 있다. 여기서 초과이윤은 판매가격 대비 통제가격의 차이를 의미하였다.

1007) 이자가 미국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되어야 등록이 요구되지 않는 채권으로 간주된다.

〈표 1-13〉 연방소비세 세수(1993년)와 2001년 당시 존폐 여부

(단위: 백만달러)

세목	세수	2001년 존폐 여부
총세수	247.8	
휘발유	124.9	존속
전기	28.6	폐지
윤활유	16.2	폐지
타이어	15.0	존속 ¹⁾
자동차 등 ¹⁾	12.6	존속 ²⁾
화장실 변기용구	9.6	폐지
모피	7.5	폐지
맥주 맥아정, 포도주스 원액 등	5.7	폐지
탄산 음료수	4.2	폐지
사탕, 껌	4.2	폐지
자동차 액세서리 등	3.6	폐지
귀금속	3.1	폐지
성냥	2.9	폐지
스포츠용품 ²⁾	2.7	존속 ³⁾
라디오 등	2.2	폐지
냉장고	2.1	폐지
트럭 ³⁾	1.7	존속 ⁴⁾
총기류제품	0.9	존속
카메라 및 렌즈	0.2	폐지

주: 1) 사치용 자동차.

2) 화살 및 화살대, 낚시도구.

3) 중형 트럭 및 트레일러.

제4편 재산세제

I. 유산·증여세

1. 서론

가. 연방 이전세제(transfer tax)의 연혁

연방 이전세제는 유산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 세대 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로 구성되어 있다. 1916년 재정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된 유산세는 내국세법 2001조에 명기되어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망에 따른 자산의 이전 혹은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 수수료 혹은 인지세 형식으로 유산세가 부과되기도 하였다(death tax). 즉, 1797~1802년 사이에 프랑스와의 전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고인의 자산(10센트), 유언장의 검인(50센트) 혹은 미망인과 자손 이외 사람에 관한 재산 유증(상속)에 대하여 유산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이 세금으로 부과되었다.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1862년 미국 의회는 유증(상속)세와 유산에 대한 인지세를 강화하였다. 개인자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유증세(legacy tax)는 유산규모가 아닌 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직계존속 0.75%, 친척 5%)이 달랐으며 배우자와 1,000달러 이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었다. 이외 인지세는 유산규모에 따라 정액세(50센트~10달러)로 부과되었다. 1864년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가 추가되었고 고인이 살아있을 때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전쟁 종료로 1870년 유증세 그리고 1872년 인지세가 폐지되었다가 1898년 스페인 전쟁으로 유산세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때 명칭은 유증세(legacy tax)라고 불렀지만 유산의 수증자가 아닌 유산 자체에 대한 과세로서 유산규

모와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0.75~15%의 세율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10,000달러 이하의 소규모 유산과 배우자에게는 동 세금이 면제되었다. 한편 1901년부터 자선, 종교, 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는 면세가 허용되었다. 동 세금은 1902년 폐지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유산세는 16차 수정헌법이 통과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도입되었다. 이 당시 자산의 수증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상속세가 아닌 자산에 대한 유산세로 법이 도입되었고 전체 유산에서 공제를 제외한 순유산에 1~10%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또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5만달러까지 유산세가 면제되었다. 이후 약 90년간 면세액과 세율(구간)에 대한 주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1948년을 중심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1916년 유산세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1932년 생존기간 동안 자녀 등에서 자산을 증여함으로써 유산세를 기피하려는 동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가 도입된 것이다¹⁰⁰⁸⁾. 이에 따라 납세자가 생존할 당시 증여할 경우 유산세 세율의 4분의 3을 증여세로 납부하되 5만달러를 한도로 매년 수증인(donee)에게 연간 5,000달러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었다. 1929년 대공황으로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1935년에는 고인의 사망시점이 아닌 사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산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대체 평가일: alternative valuation date). 1948년에는 배우자에게 상속 혹은 증여를 이유로 제공되는 자산에 대하여 절반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6년까지 이전 관련 세제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6년 조세개혁법에서는 생애 증여와 유언에 의한 자산 처분에 대하여 단일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체제를 도입하여 증여세와 유산세를 일원화하였다(통합세액공제, unified transfer tax credit). 그 이전에는 증여에 적용되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속보다는 증여가 유리하였다. 이에 따라 1976년 증여와 유산의 면세조항을 통합하여 기증자의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증여공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증자의 사망 이후 유산세를 줄일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단일의 통합된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연간 수증인 1인당 3,000달러의 증여세 면세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외 면세금액도 6만달러에서 12만달러로 증액하였고 매년 이를 상향 조정하였다.

1008) 1924년 증여세가 도입되었다가 1926년 폐지되었고 1932년 증여세가 성공적으로 입법되었다.

〈표 1-1〉 유산세 면세액과 세율의 변천 추이

(단위: 달러, %)

	면세액	최저 세율	최고 세율	최고액 과세구간
1916	50,000	1	10	5,000,000
1917	50,000	2	25	10,000,000
1918	50,000	1	25	10,000,000
1924	50,000	1	40	10,000,000
1926	100,000	1	20	10,000,000
1932	50,000	1	45	10,000,000
1934	50,000	1	60	10,000,000
1935	40,000	2	70	50,000,000
1940 ¹⁾	40,000	2	70	50,000,000
1941	40,000	3	70	10,000,000
1942	60,000	3	70	10,000,000
1977 ²⁾	120,000	18	70	5,000,000
1978	134,000	18	70	5,000,000
1979	147,000	18	70	5,000,000
1980	161,000	18	70	5,000,000
1981	175,000	18	70	5,000,000
1982	225,000	18	65	4,000,000
1983	275,000	18	60	3,500,000
1984	325,000	18	60	3,000,000
1985	400,000	18	55	3,000,000
1986	500,000	18	55	3,000,000
1987	600,000	18	55	3,000,000
1998	625,000	18	55	3,000,000
1999	650,000	18	55	3,000,000
2000	67,5000	18	55	3,000,000
2002	1,000,000	18	50	3,000,000
2003	1,000,000	18	49	3,000,000
2004	1,500,000	18	48	3,000,000
2005	1,500,000	18	47	3,000,000
2006	2,000,000	18	46	3,000,000
2007	2,000,000	18	45	3,000,000
2008	2,000,000	18	45	3,000,000
2009	3,500,000	18	45	3,000,000

주: 1) 10% 추가세 부과.

2) 통합공제(unified credit)가 면세액을 대체.

자료: Darien Jacobson, Brian Raub and Barry Johnson(2007).

이 밖에도 1976년 세대 생략세(GST)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유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유산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자녀의 생존기간 동안 유산으로 창출되는 소득을 자녀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유산인의 손자녀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고인의 사망 당시 과세되고 손자녀가 사망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자녀는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었다. 이에 의회는 자녀의 지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과세할 수 있도록 세대 생략세를 신설하였다. 특히 100만달러까지는 손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증여세의 면세를 포함하여 부부는 200만달러를 면세받았다.

1981년에는 다수의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배우자 공제의 한도가 철폐되어 생존 배우자가 받는 유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세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생존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 유산의 수증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만 배우자 공제가 허용되었다(*terminal interest*). 그러나 법 개정으로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자산을 원하는 특정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도 매년 그로 인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공제를 허용하였다(*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 QTIP*).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자산이 생존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1981년에는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의 규모를 47,000달러에서 6년간 192,800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면세금액을 175,625달러에서 60만달러로 증액하였다. 연간 면세되는 증여도 10,000달러로 증가하였고 수증인의 학비나 의료비를 위한 증여는 금액에 제한없이 면세되었다. 또한 모든 이전 관련 세제의 최고 세율이 70%에서 50%로 인하되었는데 그 이후 순연되면서 1993년 최고 세율이 55%로 상향 조정되었다. 1997년에는 통합세액공제를 345,800달러로 증액하여 면세액이 100만달러로 증가하였고 각종 면세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였다. 이외 전체 유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업의 상속에 대한 공제도 추가되었다.

2001년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¹⁰⁰⁹⁾으로 이전세제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의회는 2010년에 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산세와 세대 생략세를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1009)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EGTRRA) of 2001.

을 도입하였고 면세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증여세는 존속). 즉, 면세액은 2001년 675,000달러에서 2002년 100만달러, 2009년 350만달러로 증가하며 2010년 사망하는 납세자의 유산에는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생략세의 최고 세율은 2001년 55%에서 2007~2009년에는 45%로 하락하였다. 세대 생략세에서 자산의 양도자가 평생 면세받을 수 있는 금액도 100만달러에서 2004년에 유산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증가하였다.

1987년 이후 2001년까지 유산세의 면세금액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되어 유산세 신고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 법개정으로 유산세 신고는 2001~2005년 사이에 약 10만 8천건에서 4만 5천건으로 58% 감소하였다. 이는 면세금액의 주기적 인상과 함께 신고건수도 같이 단계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고건수에서 유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비율은 2001년 약 44.9%에서 2005년 48.2%로 큰 변화가 없다. 또한 같은 기간에 납세의무액도 235억달러에서 217억달러로 큰 차이가 없다.

이외 증여세의 경우 최대 세율이 2001년 5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2010년에는 개인소득세 세율과 같은 35%로 인하되고 평생 면제가 가능한 금액이 2001년 675,000달러에서 2002년 100만달러로 증가하여 의회가 이를 폐지하지 않는 한 증여세의 면세범위가 100만달러로 영구히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일몰규정을 도입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후 의회가 이러한 각종 감면과 일시적 폐지를 영구화하지 않으면 이들 감면조항이 모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그 결과 2011년부터는 면세액이 다시 100만달러로 줄어들고 최고 세율도 2009년 45%에서 55%로 상승한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 상속세가 1862~1870년 사이에, 유산세는 1898~1902년 사이에 세수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으나 항구적인 세금은 아니었고 현재의 유산세는 1916년 도입되었다. 증여세는 1924~1925년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고 1932년에 영구적으로 부과되었다. 그 이후 큰 변화가 없다가 1976년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세와 유산세의 세율과 면세범위가 통일되었다(Tax Reform Act of 1976). 이후 1981년에 최고 세율이 7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면제 범위도 확대되었다. 2001년 부시 행정부는 점진적으로 유산과 세대 생략세 면세한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2010년에는 유산세를 잠정적으로 폐지할 예정인데 일몰규정으로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1년부터는 2001년 당시 조항이 부활하게 되어 있

다¹⁰¹⁰).

나. 연방 이전세제의 주요 내용

유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며 재산의 취득에 따른 상속세도 아니며 양도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 처분에 대한 세금이다. 즉, 유산세는 사망 당시 부의 이전에 대한 세금(tax on transfer)으로 재산 자체(not on property)에 대한 세금이 아니다. 이에 비하면 상속세는 자산을 고인으로부터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한편 증여세는 생존 당시 이루어지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고 세대 생략세는 각 세대별로 부의 세습이 과세될 수 있도록 한다. 즉, 고인의 자녀 대신 그 다음 세대에 자산을 양도할 경우 세대 생략세가 부과된다.

주정부 차원에서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과세하는 상속세(inheritance tax)가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증여세도 부과한다. 1976년 이후 유산세는 증여세와 세대 생략세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전반적인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통합된 방식으로 과세하는 데 비하여 상속세는 개별 상속에 대하여 과세하는 차이가 있다. 연방유산세와 주정부 상속세의 공통점은 대개 누진세 성격을 갖는다. 이외 상속세는 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인데 가까운 친족일수록 세율이 낮다.

증여세(gift tax)는 개인 사이에 무상 혹은 시장가액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시장가액을 과표로 부과된다(Sec. 2501). 증여자가 증여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수증자(beneficiaries)는 소득세나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¹⁰¹¹). 또한 수증자 1인당 매년 일정 금액 이하(2007년 12,000달러)의 재산을 양도하면 사망할 때까지 증여에 대한 납세를 연기할 수 있다(inter vivos). 하지만 생존기간 동안 누적된 증여세가 제한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외 누적된 과세대상 증여는 총유산(gross estate)에 포함되고 그 대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된다.

1010) 이러한 단서조항은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때문에 일몰 규정을 둔 것이다.

1011) 내국세법 102조는 수증자의 소득에서 증여나 상속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은 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한편 세대 생략세(GST)는 세대를 뛰어넘어 상속되는 유산신탁기금(trust)¹⁰¹²⁾에 대하여 권리나 지분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다음 세대에게 재산을 양도하지 않고 차차기 세대에게 이전할 때 일종의 통과료(toll charge)로 부과된다. 세대 생략세는 유산세 등 상속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하여 유산기금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즉, 세대 생략세는 중간 세대를 생략한 상속에 대하여 최고 세율로 과세하고 소득배당을 과세함으로써 기금을 이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유산세는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의 공정한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¹⁰¹³⁾을 기준으로 부과된다(Sec. 2001). 유산세의 과표 기준인 총유산(gross estate)은 사망 당시 유산의 가액과 1976년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 증여(lifetime taxable gift)를 합한 금액이다(면세금액을 초과하는 증여의 경우에 해당한다)¹⁰¹⁴⁾. 총유산은 유·무형, 부동산과 개인자산과 상관없이 유산인의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자산과 생존 당시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고 이전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외 공동자산, 수증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생명보험 지급액, 고인이 소유자를 지명할 권한(power of appointment)을 보유한 자산이 포함된다. 이전에 양도하였지만 고인이 권리나 지분을 유지한 자산도 총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유산의 관리에 따른 경비와 손실은 공제된다. 이외 장례비, 고인의 부채, 자선단체 기부금이 유산세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는 금액 제한이 없으므로 유산이 배우자에게 양도되면 실질적으로 유산세가 면세된다(marital deduction).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지분이 인정되는 자산도 공제될 수 있다(life interest). 또한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도 공제되며 적용 가능한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¹⁰¹⁵⁾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2007~2008년을 기준으로 유산은

1012) 유산신탁기금은 수증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제 3자(trustee)가 보유하는 대리인 관계로서 서면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며 유산이나 유산기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inter vivos trust는 유산기금을 설립하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진 유산기금이며 사후유지에 의하여 설립된 유산기금은 testamentary trust라고 한다.

1013) 공정시장가격이란 자산매매의 양 당사자가 관련 사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한다(Reg. Sec. 20.2031-1(b)).

1014) 비영주 외국인도 유산이 \$60,000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1015)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는 고인의 사망 당시 적용가능한 면세액에 대하여 산정

200만달러까지 면세 되며 세율은 18~45%에 이른다(2009년 350만달러). 이 때 과거 증여한 금액이 유산에 포함되는 대신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유산세는 고인의 사망연도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즉, 총유산의 과세가액은 유산의 집행인이나 관리인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인의 사망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Sec. 2032). 이외 다른 날짜를 선택하려면 고인의 사망시점과 그러한 대체 평가일 사이에 유산세뿐만 아니라 유산¹⁰¹⁶의 가치가 감소해야만 이를 선택할 수 있다. 유산세 신고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6개월간 신고를 연장할 수 있다(Form 706). 한편 고인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자산의 양도로 세대를 생략한 이전에 대해서도 유산세와 함께 세대 생략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자산을 상속받는 자는 재산 자체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자산이 분배될 때까지 발생하는 유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자산 관리인(fiduciaries)¹⁰¹⁷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증여세에서는 납세자가 매년 자산을 증여받는 사람 1인당 12,000달러까지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같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부부는 매년 1인당 24,000달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제한이 없는 다수의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다(Sec 2503). 면세금액은 1999년 이후 물가에 연동되어 있다. 학자금과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 목적의 증여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생일, 졸업, 결혼이나 금혼식 선물 등도 면세된다. 다만 주정부 세금

된 유산세와 같다. 이는 고인이 평생 동안 증여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상쇄하거나 사망 당시 유산세를 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008년의 경우 통합공제가 허용된 금액은 \$780,800이며 2009년에는 \$1,455,800으로 증가한다.

1016) 유산(estate)은 고인의 사망 당시 발생한다. 보통 고인의 유서를 통하여 유산 관리인과 유산을 배분받는 수증자(피상속인)가 지정된다. 유산에는 고인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며 자산이 상속 배분될 때까지만 존재한다. 유산 관리인이 세금을 포함한 고인의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수증자에게 배분하면 유산은 종료된다.

1017) 유산 관리인(fiduciary)은 유산이나 신탁기금의 자산을 보유, 투자 혹은 분배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의미한다. 신탁기금의 관리인은 trustee라고 부르며 유산의 관리인은 executor 혹은 administrator라고 한다. 관리인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은행 등의 단체일 수도 있다. 이들은 자산을 관리하고 자산의 배분을 포함한 모든 거래가 법과 유서 등에 일치되는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관리인은 유산의 소득과 공제 그리고 유산의 수증자를 신고하고 유산소득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다(Form 1041).

에 대한 세액공제는 없다.

이 밖에도 면세금액을 초과한 과세대상 증여를 할 때 납세자는 증여세 납부를 연기하기 위하여 통합세액공제제도(unified transfers credit)를 이용할 수 있다(Sec. 2505). 통합공제는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납세자가 평생 동안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와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1977년 당시 세액공제 한도는 30,000달러였으나 그 후 점차 증가하여 2001년 220,550달러, 2002년 345,8000달러 그리고 2006년부터 780,8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다. 그 결과 면세가 허용되는 유산은 1977년 120,666달러에서 2001년 675,000달러 그리고 2007년 200만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표 1-2〉 양도연도에 따른 연방 이전세 최고 세율과 면세액(2001~2011년)

(단위: 달러, %)

양도연도	유산세 면세금액	세대 생략세 면세금액	유산세와 세대 생략세 최고 세율	증여세 면세금액	증여세 최고 세율
2001	675,000	1,000,000	55	675,000	55 ²⁾
2002	1,000,000	1,000,000	50	1,000,000	50
2003	1,000,000	1,000,000	49	1,000,000	49
2004	1,500,000	1,500,000	48	1,000,000	48
2005	1,500,000	1,500,000	47	1,000,000	47
2006	2,000,000	2,000,000	46	1,000,000	46
2007	2,000,000	2,000,000	45	1,000,000	45
2008	2,000,000	2,000,000	45	1,000,000	45
2009	3,500,000	3,500,000	45	1,000,000	45
2010	폐지	폐지	n.a.	1,000,000	35 ¹⁾
2011	1,000,000	1,000,000	55	1,000,000	35

주: 1) 2010년과 2011년 최고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과 같음.

2) 1999~2000년 \$650,000 55% 최고 세율.

자료: Martha Britton Eller(2005).

유산의 경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장부가액(adjusted basis)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혹은 대체평가일)의 공정시장가격이 된다. 대개 자산 가치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

하기 때문에 유산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장부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효과가 있다(step-up). 따라서 가치가 상승한 자산에는 유산세가 부과되고 유산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시작한다. 이에 비하면 증여자산의 경우 증여 당시 자산의 공정가격이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자산을 양도한 사람의 장부가액이 자산을 양도받은 사람, 즉 수증자의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이월된다. 따라서 증여자산은 이를 양도받은 사람이 매각할 때 증여 이전의 가격 상승분이 자본이득세로 과세된다. 그러나 반대로 장부가액이 공정가격보다 많으면 산정 목적이 이익을 환산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손실을 환산하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 다르다.

다. 통합세액공제제도(Unified Tax Credit)

1976년 미국 의회는 유산세와 증여세를 하나의 이전세제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이들 세금은 별도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상 이전세제의 일부에 불과하다. 즉, 유산과 증여세 세율을 통일하였고 과세대상인 증여는 유산세 과표에 포함되며 이들 세금에는 통합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그 당시 세대 생략세가 신설된 바 있다. 이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6년 이전에는 증여세 세율이 유산세의 75%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발생하는 증여나 사망에 따른 유산에 대한 세율이 단일화되었다. 한 예로 2007~2009년의 경우 유산과 증여세 최고 세율은 45%로 동일하다. 다만 2010년 유산세는 잠정 폐지되는 대신 증여세 세율은 일반 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35%로 인하된다. 한편 이전에는 증여를 통하여 고율의 유산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7년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인 증여(adjusted taxable gift)는 유산세 과표에 포함이 된다. 다만 이렇게 이전에 양도된 자산가격의 평가는 고인의 사망시점이 아닌 증여 당시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대신 이들 증여에 대하여 현재 세율로 환산하여 증여세를 제외함으로써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¹⁰¹⁸⁾. 이외 유산세 과표에 적용된 잠정세액에서 일정 금액은 공제가 가능하다(unified credit). 세액공제 금액은 연도별로 변해 왔는데 2002~

1018) 즉, 사망 당시 과세대상인 유산과 증여를 합한 금액에 통일된 세율이 적용되어 잠정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서 현재 세율을 환산한 증여세를 제외한다.

2009년의 경우 345,800달러가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생존한 동안 제공하는 증여나 사망 시점의 유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 유산세(Estate Tax)

가. 유산세의 산정방식

유산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양도자의 사망에 따른 자산의 처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유산세의 과표는 총유산(gross estate)에서 유산 관련 경비와 손실, 고인의 부채, 부부 혹은 기부공제 등의 각종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1976년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 증여¹⁰¹⁹⁾를 합한 금액이 된다. 과세대상 유산을 기준으로 잠정 유산세를 산출한 후 기납부한 증여세와 통합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하면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유산세를 구할 수 있다.

유산세는 유언에 의한 자산 처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사망 시점에 자산에 대한 고인의 통제나 향유가 종료되면 이를 유언적 성격의 자산 이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총유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단지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권을 보유한 자산 이외에도 비록 고인이 생존 당시 소유권을 양도하였어도 만약 고인이 양도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지배 통제권을 행사하였으면 이러한 증여 자산은 총유산에 포함된다.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유산에서 다음의 항목을 제외해야 한다. ① 유산 관련 경비와 부채 ② 손상/도난 손실 ③ 배우자로의 자산이전(부부공제) ④ 기부 ⑤ 주정부 사망 관련 세금. 공제가 허용되는 경비에는 장례비와 자산관리를 위한 비용이 있다.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고인의 자산에는 유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통합세액공제가 허용하는 금액(200만달러)을 다른 피상속인에게 양도하고 남은 자산을 배우자가 소유해도 유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부금도 금액의 제한없이 유산세가 면제된다.

1019) 다만 과세대상 증여자산은 유산 평가시점이 아닌 증여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된다.

과세대상 유산에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¹⁰²⁰⁾를 합해야 유산세 과표(estate tax base)를 구할 수 있다. 조정된 증여는 총유산에 포함된 증여 이외 1976년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 증여를 의미한다(Sec. 2001(b)). 유산세 과표에 포함되는 1976년 이후 증여는 증여 시점의 자산가격으로 평가되어 포함된다. 따라서 증여 시점 이후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해당 자산의 증여에 따른 공면제도 적용될 수 있다. 유산세 과표에 통일된 이전세율(unified transfer tax rate)을 적용하면 잠정 유산세(tentative tax)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전세율은 증여와 유산에 공히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잠정 유산세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제외해야 유산세 납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우선 1976년 이후 제공된 증여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시 증여세 세율과 현재 유산세 세율이 다를 경우 현재 세율이 적용된다¹⁰²¹⁾. 따라서 사망 시점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증여 당시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는 그 차액만큼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리하다. 두 번째로 잠정 유산세에서 통합 세액공제를 제외해야 한다(unified tax credit). 통합세액공제의 한도는 780,800달러(2006~2008년)로 이에 해당하는 유산의 면세금액은 200만달러이다.

유산세가 한시적으로 폐지되기 1년 전인 2009년 세액공제는 1,455,800달러(면세액 3,500,000달러)이다. 고인의 생존 당시 증여 목적으로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잠정 유산세에서 증여세를 공제할 때 해당 통합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증여의 경우 통합세액공제만 허용되지만 유산의 경우 통합공제 이외 이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한 세 가지 세액공제가 더 허용된다. 다만 2005년 이후에는 지방정부의 사망 관련 세금을 공제할 수 없다.

1020) 즉 증여세가 면제되는 \$12,000 한도의 증여는 비과세 증여이므로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021) Sec. 2001(b)(2).

나. 유산세 과세대상

1) 총유산(gross estate)

총 유산(gross estate)은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권리의 한도 내에서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한다(Sec. 2033)¹⁰²²⁾. 즉, 소득세에서 소득의 정의(Sec. 61)와 같이 포괄적으로 유산도 정의된다.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자산 이외에도 비록 고인이 생존 당시 양도하였지만 그러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고인이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였거나 지배 통제권을 행사하였으면 이러한 증여성 자산은 총유산에 포함된다. 외국에 있는 자산도 총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표 1-3〉 유산에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

내국세 조항	주요 자산과 거래 항목
2033	고인이 지분을 소유한 자산
2035	사망 3년 이전 이내에 고인이 기증한 자산의 증여세와 일부 자산(생명보험)
2036	고인이 생존 당시 양도한 자산 중 고인이 경제적 이득이나 통제권을 계속 유지한 자산
2037	고인이 생존 당시 양도한 자산 중 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한 자산 (reversionary interest)
2038	고인이 생존 당시 양도한 자산 중 고인이 지분을 취소, 변경, 수정 혹은 종료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자산
2039	연부금
2040	공동소유자산
2041	고인이 지명권한(power of appointment)을 소유한 자산
2042	고인 생명에 대한 생명보험
2044	생존 배우자가 부부공제를 신청한 QITP 기금

1022) the value of all property to the extent of the interest therein of the decedent at time of death(catch-all provision).

따라서 총유산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미국내의 물적, 인적, 유·무형 재산과 공유 및 공동자산(joint and community property)과 연부금, 일부 보험 수혜까지 포함한다¹⁰²³⁾. 과세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재산의 이전(transfer)에 적용되므로 면세대상인 재산도 유산세 과표에 포함된다. 단 유산신탁기금(trust)¹⁰²⁴⁾에 신탁된 자산은 포함되지 않고 1976년 12월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 증여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자산이 공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되면 실제 가격에서 매각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유산에 포함된다(Sec. 2043).

2) 자산 성격에 따른 유산의 범위

(a) 고인 소유 자산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수익성 자산은 총유산에 포함된다. 이는 자택, 예금, 자동차, 주식과 고인 명의의 기타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Sec. 2035). 법은 수익적 소유권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 유산의 지분(remainder interest)¹⁰²⁵⁾도 유산으로 간주된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생존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의 소유권¹⁰²⁶⁾을 인정해주는데 이 경우에도 유산은 생존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환산되며 다만 이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가족 사이의 권리 양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될 수 있다. 한 예로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배우자에게 유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종신물권, life estate)이 주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잔여 유산(remainder)을 자녀에게 제공하

1023) 결혼 후 부부가 취득한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communitary property)으로 간주된다. 단 증여나 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각각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한다. 결혼 이후에도 각자의 소득이나 유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취급한다.

1024) 전술한 대로 기금(trust)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양도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기금은 양도받은 자산을 관리하고 이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수증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며 기금이 종료되면 주된 수증자(principal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한다. 기금은 일정 기간 혹은 개인의 생존기간 동안 설립될 수 있다.

1025) 갑이 유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받고 갑의 사망 이후에 남은 자산을 양도받으면 이를 잔여 지분이라고 한다.

1026) 미망인의 경우 생존 배우자의 지분을 Dower 그리고 홀아비는 Curtesy라고 한다.

도록 유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신물권과 잔여 지분은 재무성 기준표(Unisex Treasury Tables)를 이용한 실제 가치로 평가된다(Sec. 7520). 권리 양도의 형태에 따라 유산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이 을에게 종신물권(life estate)을 제공하고 난 이후 을이 병에게 이 권리를 매각 하면 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병이 종신물권을 향유한다. 그 이후 을이 사망하면 그 자산은 갑이나 갑의 상속자에게 다시 회수된다(reversion). 이 경우 을의 사망으로 권리(즉,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므로 을에게 유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이 을보다 먼저 사망하면 해당 자산에서 종신물권의 실제 가치를 제외한 금액이 갑의 유산으로 처리된다. 두 번째로, 갑이 을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이번에는 거꾸로 갑이 살아있는 동안 그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갑이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면 갑이 종신물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을은 잔여유산(remainder)을 갖는다. 이 경우 갑이 먼저 사망하면 전체 자산이 갑의 유산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을이 갑보다 먼저 사망하면 잔여유산(remainder)이 과세된다.

갑이 을이 생존할 동안에는 을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그 이후에는 병이 그 자산을 소유하도록 하면 병이 잔여유산을 갖는다. 이 경우 갑의 유산에는 해당 자산이 포함되지 않고 병이 을보다 먼저 사망하는지 여부에 따라 잔여유산(vested remainder)을 갖거나 소유한 것으로 처리된다. 즉, 병이 을보다 먼저 사망하면 병의 유산 상속자가 소유권을 받게 된다. 단, 갑이 자산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병이 을보다 오래 살면 병에게 자산을 양도된다. 이 경우 을은 종신물권을 가지며 병은 조건부 잔여유산(contingent remainder)을 갖는다.

(b) 양도자 규정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직접 증여한 자산(outright gift)은 총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Sec. 2035(d)(1)). 그 대신 면세금액을 초과한 증여 즉, 과세대상인 증여만이 유산세 과표에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로 포함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인이 생존 당시 내국세법에 규정된 자산을 기증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내국세법 2035~20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자산은 고인

의 사망 시점이나 대체 평가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유산에 포함된다.

우선,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3년 동안 증여된 일부 자산은 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에는 내국세법 2042조에 따라 증여되지 않았으면 과세대상인 고인 생명에 대한 생명보험증권¹⁰²⁷⁾이 있다. 두 번째로, 3년 기간과 상관없이 증여하지 않았다면 내국세법 2036~2038조¹⁰²⁸⁾에 따라 과세되었을 조건부 자산의 지분이 포함된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경우로 고인의 생명에 대한 생명보험 소유권을 양도하고 3년이 되기 이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3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보험증권을 기증하였다면 충유산에는 생명보험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망하기 3년 전 이내에 보험증권이 양도되고 피보험자(insured)인 고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혜택이 유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종 3년간 보험료를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불하면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 혜택이 유산에 포함된다. 또한 3년 기간 동안 고인 혹은 그 배우자가 증여한 자산에 대하여 고인이나 고인의 유산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면 증여세가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5(b)).

만약 고인이 자산을 양도해도 평생 동안 자산의 소득이나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면 해당 자산은 유산에 포함된다(종신물권, retained life estate). 이는 자산의 소유, 사용 혹은 소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Sec. 2036). 또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 직간접적으로 통제 주식회사(controlled corporation)¹⁰²⁹⁾의 주식에 대하여 투표권을 유지한 경우에도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5(b)(1)).

종신물권에 대한 합의는 고인과 양도받은 사람 사이의 암묵적 합의나 이해로 성립할 수 있고 법적 소유권은 의미가 없다¹⁰³⁰⁾. 한편 양도한 자산의 일부만을 소유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산가치만 유산에 포함된다. 물론 자산의 양도는 증여에 해당하며 따

1027) 유산이나 그 관리인이 받는 생명보험 지급금(proceeds)을 말한다.

1028) 종신물권을 유지한 채 양도되는 자산(2036조), 사망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양도(2037조)와 취소 가능한 자산(revocable transfer 2038조).

1029) 통제 주식회사란 직간접적으로 투표권의 20% 이상을 고인이 소유한 회사를 말한다.

1030) 종신물권의 보유는 첫째, 양도한 자산을 고인이 이용, 점유, 향유하거나 그로부터의 소득을 소유하거나 둘째, 고인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고인이 생존하고 있을 동안 그 자산을 이용 혹은 보유할 사람을 지정할 권리를 유지한 상황으로 증명된다(Reg. §20.2036-1(a)).

라서 증여 당시 자산의 적정한 시장가격에서 종신물권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가족 파트너십은 소득 등을 다른 가족에게 이전하는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제재를 받는다(Sec. 704(e)).

일정 상황이 발생하면 양도조건에 따라 자산을 고인이나 고인의 유산으로 회수되는 증여가 있을 수 있다(자산 양도의 회수, reversionary transfer). 다음의 조건이 충족하면 이러한 성격의 자산은 충유산에 포함된다(Sec. 2037). 우선, 양도받은 사람이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도 생존하여 자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로, 회수물권의 가치가 양도한 자산가치의 5%를 초과해야 한다. 만약 회수물권의 가치가 5% 이하이면 203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인이 양도를 취소할 수 있는 신탁기금이나 사망 시점에 고인의 의지에 따라 취소, 종료, 수정, 변경할 수 있는 양도자산은 충유산에 포함된다(revocable transfer, Sec. 2038). 이는 고인이나 제3자에 의하여 어느 정도 혹은 어느 때 권리가 행사되는가와 상관없다. 이와 같은 양도자산이 충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유산신탁기금을 종료 또는 수정할 권한이 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1997년 8월 5일 이후 사망한 자의 유산과 관련하여 고인의 취소 가능한 유산신탁기금에서 고인 사망 이전 3년 동안 양도된 자산이나 사망하기 3년 이전 이내에 취소할 권리를 포기한 자산은 충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c) 연부금(annuities)

연금 대상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사망하면 종식되는 연금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성립된 연금으로 고인의 사망 이후 생존을 이유로 수증자에게 지급되는 연금(survivor feature)은 유사한 연금의 구입비용만큼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9(b)). 유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또한 고인이 살아 있는 동안이나 고인의 사망을 참작하지 않고는 확실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고인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지급받는 연금이어야 한다. 사회보장연금은 배우자가 계속 지급받아도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과 관련 없이 고인이 연금을 구입하고 생존자를 지명하면 이는 부의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연금은 다양한 형태의 연금이 존재하므로 연금 구입시 생존자가 지불한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연금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산에 포함되는 연금은 유사 연금 구입비용과 매입가격 중 고인이 부담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20,000달러의 가치가 있는 연금 구입을 위하여 고인이 생전에 절반을 기여하였으면 10,000달러가 유산에 포함된다. 고용과 관련된 연금은 고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후 지급되는 연금 전체가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9(b)). 종업원 주식 플랜이나 IRA나 Keogh 플랜 등 개인은퇴연금 등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가족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어느 한 쪽이 지급하는 사적 연금(private annuity)에서도 생존자 조항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의 현재 가치가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9(b)). 현재 가치는 수증자의 기대생명 연수와 고인의 연금 불입액을 곱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인 갑과 을에게 채권을 매각하고 생존 배우자에게 연간 3,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만약 갑이 채권금액의 80%를 지급하였고 갑이 사망하였다면 연금 가치는 을의 나이에 기초한 국세청 기대생명표(Sec. 7520)에 따라 연간 1달러 연금의 현재가치는 10.54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앞으로 을에게 지급될 연금의 현재 가치는 25,290달러가 된다($3000\text{달러} \times 10.54 \times 0.8$).

(d) 공동 소유자산

생존 배우자 조항에 따라 공동 소유한 자산(married joint tenancies)¹⁰³¹이나 완전하게 공동 소유자산(tenancy by the entirety)인 경우 공동 소유자의 사망시 고인의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간다(Sec. 2040). 이 경우 자산구입비용의 부담 당사자 여부와 상관없이 자산가액의 50%가 무조건 유산에 포함되며 생존한 배우자가 그 자산의 단독 소유자로서 간주된다(qualified joint interest).

한편 배우자 이외 다른 사람과 공동 소유한 재산(unmarried joint tenancies)은 한 쪽 소유권자가 사망할 때 생존한 소유권자가 자산 매입을 위하여 기여한 금액을 증빙

1031) 캘리포니아 등 8개 주가 도입하고 있는 공동재산(communitary property)의 개념은 주정부가 부부간의 평등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부부가 취득한 자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산의 2분의 1이 처음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이 된다.

할 수 없으면 자산의 전부가 유산에 포함되고 증빙이 되면 고인이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는 자산비중이 유산에 포함된다(Sec. 2040(a)). 한 예로 갑과 을이 각각 2만달러, 4만달러를 내고 구입한 자산의 가치가 12만달러로 상승한 상황에서 갑이 사망하면 갑의 유산에는 12만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만달러가 포함된다. 만약 모두가 증여나 상속 등으로 자산의 공동 소유자가 되었다면 고인의 사망 당시 자산가액에서 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유산에 포함된다.

(e) 생명보험

고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증권은 만약 보험금을 유산/유산 집행인이 받을 수 있거나 혹은 사망 당시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부수적으로 갖고 있을 경우 고인 생명에 대한 보험가액이 유산에 포함된다(incident of ownership). 재무성은 부수적 소유권을 다음의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수증자를 변경하거나 보험을 취소하거나 반납할 권리 혹은 보험을 담보로 부채를 빌릴 수 있는 권리 등¹⁰³²⁾.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험으로 유산 이외 다른 사람을 수증자로 하고 이러한 부수 소유권이 없으면 보험 지급금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042조 이외에도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 3년 사이에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험증권을 기증하면 보험 액면가액이 유산에 포함된다(Sec. 2035(a)(2)). 물론 고인이 보험증권을 증여한 이후 3년 이상 살면 총유산에 보험증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 증권을 고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2033조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보험의 지급금이 아닌 그 가격이 고인의 유산에 포함되는데 보험가격은 고인 사망 당시 유사보험의 구입비용을 의미한다.

(f) 소유권 지명 권한(power of appointment)

내국세법 2041조는 고인이 법적으로 소유한 자산이 아니지만 그 지분을 유산에 포

1032) Reg. § 20.2042-1(c)(2)

함해야 하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고인이 궁극적으로 누가 자산을 소유할지를 지명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유자 지명권한은 일반적일 수 있고 혹은 제한된 특수한 권한일 수 있는데 일반 지명권한만이 유산에 포함된다. 1942년 이전에 제공된 지명권한은 이를 행사해야 유산에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는 권한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산에 포함된다. 일반 지명권한은 본인, 본인 유산,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존재한다(Sec. 2041(b)(1)). 고인이 생존한 당시 지명권을 행사, 포기 혹은 소멸(lapse, 조건 없는 양도)하면 과세대상 증여가 된다(Sec. 2514).

일반 지명권에서 고인이나 고인의 유산 등을 위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자산을 소유하게 될 사람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미리 지정된 목적이나 사람을 위하여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유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special power).

고인이 자산을 유산 신탁기금에 양도하면 이들 자산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신탁기금의 수증자는 다음의 권리와 권한을 갖는다(Sec. 2041(b)(1)). 유산의 소멸까지 유산에서 창출되는 모든 소득을 받을 권리 ② 수증자의 건강, 교육, 부양 등을 이유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한도 내에서 유산 신탁기금을 인출할 권한 ③ 매년 자산가치의 5% 혹은 5,000달러 중 큰 금액을 인출할 권한 ④ 본인과 유산 혹은 양쪽의 채권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고인의 생존 당시 혹은 유언으로 자산의 전부(일부)를 지명할 권한 ⑤ 신탁기금의 운영자(trustee)가 될 수 있는 권한. 이러한 권한 행사로 유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세대 생략세(GST)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고인이 증여를 통하여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회수나 취소 등 통제 권한을 유지하면 그 자산은 유산에 포함된다.

(g) 기타

일부 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고 이들 자산이 유산에 포함되면 그 대가를 유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은 내국세법 2041조와 2035~2038조가 적용되는 자산이다(Sec. 2043). 2043조는 고인이 자산을 양도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유산에서 상쇄, 즉 제외되는 금액은 지

급받은 현금으로 제한된다. 즉, 고인이 적정한 대가를 받았다면 양도한 자산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은 자산이 이중으로 유산에 포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consideration offset).

배우자가 생존한 동안 자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잔여 자산의 소유자를 지정할 수 없는 자산(QTIP)¹⁰³³⁾이 있는데 이러한 성격의 자산은 증여세나 유산세에서 부부공제를 신청하여 세금을 면제받을 선택권이 있다. 기증인이나 유산 집행인이 부부공제를 신청하면 그 대신 해당 자산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사람의 유산에 포함되며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생존 배우자 사망시점 혹은 대체 평가일 당시 공정시장가격으로 된다(Sec. 2044). 물론 부부공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생존 배우자가 아닌 기증자의 증여나 유산에 해당 자산이 포함된다. 이외 자산의 일부를 선택하여 부부공제를 할 수도 있다. 한편 부부공제를 선택한 후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이들 자산을 처분하면 이들 자산은 생존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 대신 증여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2519조에 따라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이외 다른 모든 지분의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 총유산공제

1) 일반공제

총유산에서 ① 장례비용과 유산관리경비 ② 고인의 부채와 미납세금 ③ 손상/도난 손실 ④ 자선 기부금 ⑤ 주정부 사망 관련 세금을 제외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 유산금액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생존 배우자를 위하여 금액의 제한 없이 유산에서 배제할 수 있는 부부공제(marital deduction)를 선택하고 나면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이 된다¹⁰³⁴⁾. 2004년 이후 사망하는 사람의 유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정부의 사망 관련 세금은 공제가 허용된다. 2004년 이전에는 이들 지방세에 대하여

1033)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 Terminal은 시간의 경과나 일정 사건이 발생하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한다.

1034) 이외 자격을 갖춘 가족 소유사업 권리도 특별 공제될 수 있다.

세액공제가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일반공제되는 대신 금액의 한도가 없다.

장례비용은 지방정부가 법으로 허용하는 합리적 수준의 장례비용은 비석, 장지 이외 장래 관리비용까지 포함하여 공제가 허용된다¹⁰³⁵⁾. 유산 집행인 수수료, 법원비용, 유산의 배분과 유지 등 유산관리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이들 비용은 관할 법에서 허용하는 비용으로 유산 수집, 부채 정리 및 자산 배분 등 고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실제 지불한 비용이어야 한다¹⁰³⁶⁾. 그러나 유산 수증자의 편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한 예로 주택 매각비용은 원래 매각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해도 되었으므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유산 집행인은 이들 비용을 유산 신고서(Form 706)에서 공제할지 아니면 유산의 소득신고서(Form 1041)에서 공제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고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부채는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한 계약에 따라 적절하고 완전한 금전적 혹은 이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성립하였다는 전제 아래 공제가 허용된다. 친구 혹은 친척에게 선물로 제공된 차용증(IOU)은 구속력이 있고 실제 지불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소득세에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개인 채무도 유산세에서는 공제가 가능하다¹⁰³⁷⁾. 부채 이외에도 고인에게 지불 의무가 있는 이자, 지방정부 세금 그리고 고인 사망 시점에 발생한 각종 사업경비도 고인의 부채로 간주하여 유산에서 제외하거나 유산소득세에서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부부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유산의 경우 이들 경비를 유산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산 관련 비용과 부채는 지불 시기와 관련 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즉,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확인 가능하고 지불될 예정이면 공제된다. 또한 공제 한도가 없고 추정 금액을 공제해도 된다. 다만 유산세 신고가 만료되기 이전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공제 금액이 유언상의 검인된 자산보다 많을 수 없다¹⁰³⁸⁾. 검인되지 않은 유산 즉, 단지 과세를 위하여 총유산에 포함된 자산과 관련된 비용 공제는 공소기한 이내(유산세 신고 일로부터 3년)에 지불되면 공제가 가능하다.

1035) Reg. Sec. 20.2053-2.

1036) Reg. Sec. 20.2053-3(a).

1037) 친구 혹은 친척에게 선물로 제공된 차용증(IOU)은 구속력이 있고 실제 지불하였어도 공제되지 않는다.

1038) probate estate: Reg. Sec. 20.2053-1(b)(3).

화재나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절도 등 급작스런 손상으로 인한 손실도 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Sec. 2054). 소득세 공제와 달리 유산세 손실 공제는 한도의 제한 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대체 평가일을 선택하면 손실을 대체평가가격을 줄이는 데 사용하고 다시 공제에 이용할 수 없다. 유산관리비용과 마찬가지로 이들 손실을 유산과 유산 소득세 중 한 신고서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자선단체에 양도한 기부자산도 금액 제한 없이 공제가 허용된다(Sec. 2055). 해당 되는 자선단체는 증여세에서 정의된 단체와 동일하다. 만약 유산세를 납부하기 싫다면 납세자는 2007년을 기준으로 200만달러에 달하는 면세액만큼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생존 배우자에게 남기거나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살아 있는 동안 기부를 하면 소득세 공제를 추가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이전에 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납세자가 현재 기부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그로 인한 소득과 지배통제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며 사후 배우자 혹은 자녀가 유산을 일부 소유하기를 원하면 잔여 유산의 기부가 가능하다(split interest transfer). 기부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잔여 자산(remainder interest)의 가치를 현재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이를 유산에 포함한다는 전제하에 유산세 공제도 가능하다. 이 때 공제 가능한 금액은 자산가액에서 사망률 표(mortality table)에 근거하여 산정된 존속된 권리의 현재가치를 제외한 금액이다. 존속된 권리는 본인이나 배우자/자녀의 종신물권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혹은 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Sec. 2055(e)(2)(A)). 기부된 자산에서 본인이나 피상속인이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일정액이나 일정 비율¹⁰³⁹⁾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수준에는 제한이 있다(Sec. 642(c)(5))¹⁰⁴⁰⁾.

2) 부부공제(marital deduction)

고인의 유산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되었거나 혹은 이전되면 해당 자산을 유산에

1039) pooled income fund와 charitable remainder annuity (un)trust: 증여세 참조.

1040) 자선기부에 있어서 문제점은 주식을 투표권이 있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으로 나누어 전자는 가족이 보유하고 후자는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은 포기하지 않는 대신 자산으로부터의 소득은 포기할 수 있다.

서 제외할 수 있다(Sec. 2056). 부부공제가 적용되려면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되거나 혹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기증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자산을 소진해야 유산세를 회피할 수 있다. 단, 배우자는 고인의 사망 당시 합법적인 부부이어야 한다(이혼하지 않은 별거 상태 포함).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부부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국내 신탁기금에 자산을 양도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부부공제가 허용되는 자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당 자산이 고인의 유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합법적 방식으로 배우자에게 자산이 이전되며 셋째, 자산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시한부 권리(*terminal interest*)가 아니어야 한다. 합법적 방식의 자산 이전은 유언에 의한 유품이나 유증자산, 법정 상속권(*Dower or Curtesy*), 고인의 증여, 생존자 권리조항, 일반 지명권한, 고인의 생명보험 수증자로 지정된 사실 등에 의한 자산 양도를 의미한다. 은퇴연금도 연금지급금이 유산에 포함되는 가정 아래 생존 배우자의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간주된다(Sec. 2056(c)).

부부공제가 되려면 양도된 권리가 일시적이거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권리가 종료되는 권리가 아니어야 한다(*non-deductible terminal interest*). 다만 일부 시한부 권리도 부부공제가 가능할 수 있다. 공제가 되지 않는 시한부 권리는 고인으로부터 생존 배우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자산의 지분이 이전되었거나 이전되고 그 사람이 적정한 금전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생존 배우자의 지분이 소멸되고 난 이후 자산의 일부를 소유 혹은 향유할 수 있는 성격의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산에는 종신물권, 조건부 권리나 일부 연부금이 있을 수 있다(Sec. 2056(b)(1)). 예를 들어 갑이 어떤 자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배우자가 살아 있을 동안 받도록 하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자산이 다른 가족에게 양도하도록 하면 소득에 대한 배우자 권리는 부부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공제를 위하여 생존 배우자가 반드시 유산의 소유권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다. 즉, 위의 예에서 배우자가 일반 지명권한을 가지면 부부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생존 배우자가 궁극적인 자산의 소유자를 결정할 수 없어도 예외적으로 부부공제를 허용받는 시한부 권리(QTIP)¹⁰⁴¹⁾가 있다(Sec. 2056(b)(7)). 공제가 허용되는 시

1041) qualified terminal property interest.

한부 권리는 첫째, 생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모든 소득을 최소한 매년 혹은 이보다 더 자주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둘째,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지분을 양도하려면 생존 배우자 본인 이외 자산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Sec. 2523(t)). 동 조항은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종신물권을 양도하고 배우자 사망시 잔여 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는 시한부 권리를 선택하면 생존 배우자는 2044조에 따라 본인의 사망 당시 공정가격으로 유산에 포함하거나 생존 당시 처분하면 2519조에 따라 증여에 포함해야 한다.

3) 가족회사 등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business)

소규모 기업의 소유주(경영자)가 사망할 경우 유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업 운영이나 소유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산 집행인은 5년간 유산세를 유예하고 그 후 최대 10년간 유산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Sec. 6166)¹⁰⁴²⁾. 이에 대한 자격요건은 총유산이 소유가 집중된 폐쇄적 기업(closely held business)의 지분을 포함하고 기업 가치가 조정된 총유산 가액의 35%를 초과해야 한다. 소유가 집중된 기업이란 소유주가 45명 이하인 개인업체,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를 말한다(Sec. 6166(b)(1)). 소유주가 45명 이상인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에서도 고인의 유산이 전체 투표권이 있는 주식(파트너십은 자본지분)의 20% 이상이면 동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조정된 총유산은 총유산에서 유산관리비용(2053조)과 손상손실(2054조)을 제외한 유산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기일에 맞추어 유산세 신고를 하고 이자를 제외한 유산세를 5년간 유예하고 그 후 10년간 정기적인 분할불입 방식으로 납부한다. 유산세에 대한 이자는 첫 5년간에도 매년 납부해야 한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폐쇄적 기업 지분가액

1042) 이외에도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10년간 유산세 납부가 연기될 수 있다(Sec. 6161(a)(2)). 다만 이 경우 과소납부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붙는다. 또한 조건부(reversionary)나 잔여 유산(remainder interest)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유산세의 연기가 가능하다(Sec. 6163).

을 조정된 총유산으로 나눈 비율을 유산세로 곱한 금액이다. 분할 납부하는 금액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2%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다. 즉, 125만달러¹⁰⁴³⁾에 면세가 가능한 유산(2007년 200만달러)을 합한 금액에 대한 유산세에서 통합세액공제 금액(780,800달러)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 이자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 금액은 분할 납부하는 유산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유예된 세금에 대해서는 과소납부에 따른 이자율의 45%가 적용된다. 이러한 이자는 유산소득세 등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6601(i)). 한편 과세대상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납세기한도 빨라질 수 있다(Sec. 6166(g)).

라. 과세방식 및 세율

1) 유산세 과세방식

[그림 I -1]에서 보듯이 연방정부 유산세는 다음의 방식과 순서로 산출된다. ① 총유산 ② 조정된 총유산: 총유산에서 공제(부채, 장례 및 관리비용) ③ 과세대상 유산: 조정된 총유산에서 부부공제와 자선기부금 공제 ④ 유산세 과표(estate tax base): 과세대상유산+조정된 과세대상 증여(1976년 이후 기증) ⑤ 잠정 유산세(tentative tax): 세율표 ⑥ 과세액: 잠정 유산세-증여세 납부액-통합세액공제 ⑦ 순과세액: 과세액-기타 세액공제(사전 양도와 해외세액공제) ⑧ 납세액=순과세액+세대 생략세(GST).

유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세 과표는 과세대상 유산과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를 합한 금액이다(Sec. 2001(b)).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란 1976년 이후 납세자가 기증한 모든 과세대상 증여(즉, 면세점 이상의 증여)로서 총유산에 포함된 증여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¹⁰⁴⁴⁾. 증여를 포함하여 유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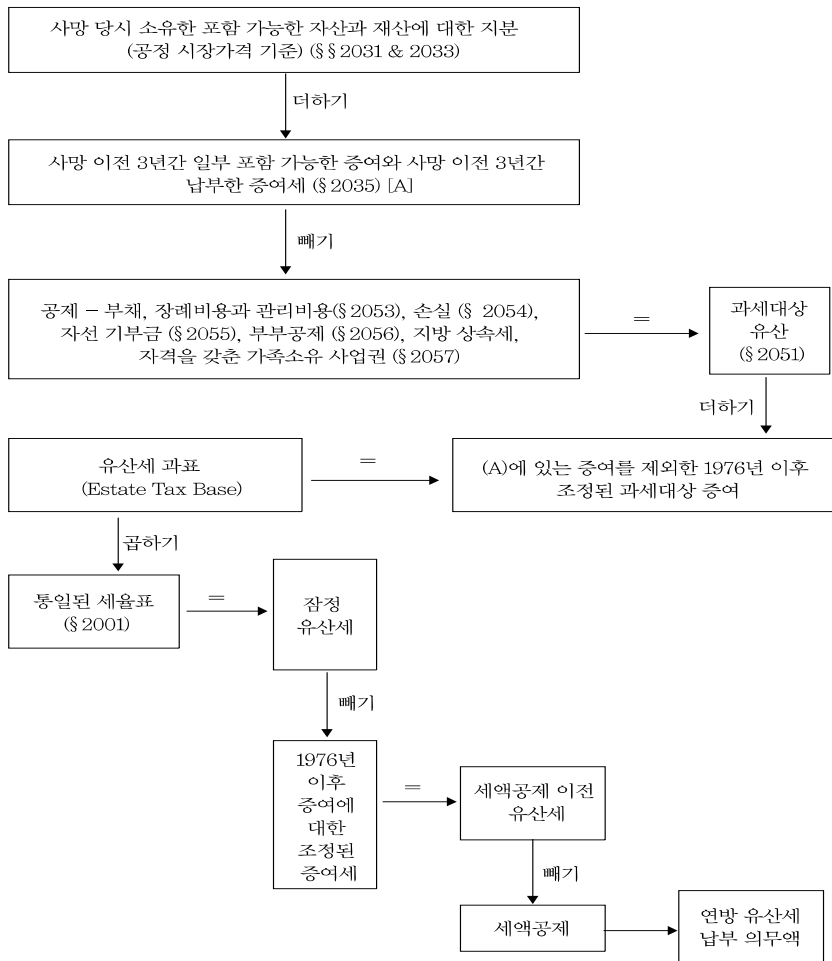
1043)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있다.

1044) 납세자가 제공하는 증여가 연간 면세가 허용된 증여한도를 넘지 않으면 이 금액은 총유산이나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만약 과세대상 증여가 발생하면 기증인은 증여 이후 자산가액 상승분을 총유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증자가 증여 이후 3년간 생존하면 납부한 증여세를 총유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사망 시점까지 자산을 보유하여 장부가액의 상승(step up)을 포기함으로써 소득세상 불리한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황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자신이 한 증여를 배우자가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증여의 분할, gift splitting).

유산에 포함되는 증여자산의 가치는 증여 시점 당시 금액으로 결정되며 그 이후 가격 상승은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산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잠정 유산세(tentative tax)를 구하고 나면 여기서 1976년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 증여세와 통합세액공제(Sec. 2010(c))를 제외해야 과세액이 된다(Sec. 2001(c)). 물론 과세액에서 기타 세액공제와 세대 생략세(존재하는 경우)를 합해야 실제 유산세 납부액이 된다.

[그림 1-1] 유산세 산출방식



과세대상 증여세는 증여 분할(gift splitting)을 한 것으로 간주한 상황에서의 증여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유산세는 증여세와 연계되어 전체 부의 이전에 대한 일관된 과세를 하게 된다. 그러나 증여 당시와 사망 당시 적용세율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되는데 공제되는 증여세는 사망 당시 증여세 세율을 증여금액에 곱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사망할 당시보다 더 높은 한계세율로 증여세를 사전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이 방식이 불리하다.

2) 유산세 및 증여세 세율

1976년 이후 제공된 증여와 그 이후 사망한 납세자의 유산 즉, 유산세 과표에 대해서는 공통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표 I -4>는 2001년 법 개정 이전 통합 세율을 제시하고 있는데 0~300만달러의 유산세 과표에 따라 17개 구간에 걸쳐서 18~55% 세율이 적용되었다. 이러한 세율이 과표에 적용됨으로써 산출된 잠정 유산세에는 통합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유산세가 산정되므로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표 I -4> 미국 유산·증여세 통합 세율구조(1984~2001년 이전자산)

(단위: 달러, %)

최소 과세표준액(A)	최대 과세표준액	A에 대한 세금	A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
0	10,000	0	18
10,000	20,000	1,800	20
20,000	40,000	3,800	22
40,000	60,000	8,200	24
60,000	80,000	13,000	26
80,000	100,000	18,200	28
100,000	150,000	23,800	30
150,000	250,000	38,800	32
250,000	500,000	70,800	34
500,000	750,000	155,800	37
750,000	1,000,000	248,300	39
1,000,000	1,250,000	345,800	41
1,250,000	1,500,000	448,300	43
1,500,000	2,000,000	555,800	45
2,000,000	2,500,000	780,800	49
2,500,000	3,000,000	1,025,800	53
3,000,000		1,025,800	55

주: 과세표준액은 Form 706의 column 5: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에서 조정된 증여를 포함하며 잠정세는 세액공제를 하기 이전의 유산세로 실제 납부세액이 아님.

자료: Instructions for Form 706, 709, IRS, 2007.

2001년 경제성장과 조세감면법(EGTRRA) 개정으로 이전과세의 최고 세율은 2003년부터 1%포인트씩 매년 인하되어 2007년에 45%로 하향 조정되었다(〈표 I-5〉). 그러나 전술한 대로 의회가 새로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2010년에 일시적으로 폐지된 유산세는 2011년 이후 2001년 당시 유효하였던 법이 다시 적용된다. 다만 증여세 최고 세율은 2010년 이후 개인소득세 세율과 같은 35%가 적용된다.

환언하면 〈표 I-4〉에서 과세표준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유산세 세율은 2007~2009년 사이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150만달러 이상의 유산에 대해서는 555,800달러와 1,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5% 세율이 적용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유산세가 된다.

〈표 I-5〉 미국 유산·증여세 최고 세율(2001년 이후 양도자산)

(단위: 달러, %)

양도연도	기준	잠정세율
2002	2,500,000~	\$1,025,800+50%×\$2,500,000 초과금액
2003	2,000,000~	\$780,800+49%×\$2,000,000 초과금액
2004	2,000,000~	\$780,800+48%×\$2,000,000 초과금액
2005	2,000,000~	\$780,800+47%×\$2,000,000 초과금액
2006	2,000,000~	\$780,800+46%×\$2,000,000 초과금액
2007~2009	1,500,000~	\$555,800+45%×\$1,500,000 초과금액
2010	500,000~	\$155,800+35%×\$500,000 초과금액 ¹⁾

주: 1) 증여세에만 적용되며 유산세는 2010년 폐지되고 2011년에 2001년 기준으로 복귀.

3) 세액공제

(a) 통합이전 세액공제(applicable unified transfer tax credit)

유산세와 증여세에서는 통일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Sec. 2010, 2505). 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산 및 증여로서 1976년 처음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그 동안 연도별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2007년 공제 금액은 780,800달러(증여분 345,800달러)이며 이 금액이 납세자의 유산 및 증여세에서 제외된다. 이 금액을 기준하면 2007년의 경우 200만달러에 상당하는 유산이 면세된다. 특히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액이 나중에 유산 과표에 포함되므로 증여세에서 사용된 세액 공제는 유산세에서도 세액공제로 이용될 수 있다.

사망 당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는 비록 일부가 사망 이전에 증여세를 상쇄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어도 감소하지 않는다. 한 예로 2007년에 사망한 납세자가 그 이전에 100만달러까지 증여한 사람은 345,800달러의 증여세액공제로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후 사망 당시 아무런 재산을 남기지 않으면 100만달러가 유산세 과표가 되며 이에 따라 잠정 유산세도 345,800달러지만 세액공제를 받아 유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물론 납세자가 100만달러까지 유산을 남겨도 유산세가 없다. 이처럼 2007년의 경우 200만달러 이하의 유산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할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유산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편이며 유산세가 있다 하더라도 결혼공제로 배우자가 생존하는 한 세금 납부가 대부분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기된다.

〈표 1-6〉 미국 유산·증여세의 연도별 통합세액공제 및 면세액

(단위: 달러)

	통합세액공제 금액	실질 유산·증여 면세액
1977 6월 이전	30,000 (6,000)	120,666 (30,000)
1977 7월 이후	30,000	120,666
1978	34,000	134,000
1979	38,000	147,333
1980	42,500	161,563
1981	47,000	175,625
1982	62,800	225,000
1983	79,300	275,000
1984	96,300	325,000
1985	121,800	400,000
1986	155,800	500,000
1987~1997	192,800	600,000
1998	202,050	625,000
1999	211,300	650,000
2000~2001	220,550	675,000
2002~2003	345,800	1,000,000
2004~2005	555,800 (345,800)	1,500,000 (1,000,000)
2006~2008	780,800 (345,800)	2,000,000 (1,000,000)
2009	1,455,800 (345,800)	3,500,000 (1,000,000)
2010	폐지 (330,800) ¹⁾	폐지 (1,000,000)
2011	345,800 (345,800)	1,000,000 (1,000,000)

주: 1. () 안은 증여세에 적용되는 공·면제를 의미.

1)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35%)로 감소.

자료: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2007*, Thomas R. Pope eds, NJ 2007.

통합세액공제로 인하여 유산이 많은 납세자는 2007년을 기준하면 최대 200만달러를 배우자에게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에게 이자산을 넘기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 200만달러에 대한 유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부부의 경우 최대 400만달러까지 자녀에게 유산을 넘길 수 있다. 물론 면세되는 증여를 감안하면 이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유산은 이보다 더 많다. 이와 같은 유산세 규정에 따라 유산 내역과 이에 따른 세액 결정을 한 예로 살펴보면 다음 <표 I-7>과 같다.

<표 I-7> 유산 내역과 유산세 결정의 한 예

(단위: 달러)

내역 ¹⁰⁴⁵⁾	금액	내역	금액
예금	94,250	연금	240,000
공동토지자산($0.5 \times 400,000$)	200,000	기부금	10,000
생명보험	200,000	총공제(B)	1,176,700
자가주택	325,000	과세대상 유산($C=A-B$)	1,770,450
주식	1,600,000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D):	
연금	240,000	1978년 증여 ¹⁾	200,000
2004년 증여세	287,900	2004년 증여 ¹⁾	1,500,000
총유산(A)	2,947,150	유산세 과표($C+D$)	3,470,450
부채	31,700		
장례비	15,000	잠정 유산세(E)	1,457,207
관리비	70,000	기납부 증여세(F) ²⁾	315,900
부부공제:		표준세액공제(G)	780,800
주택	325,000		
예금	85,000		
QTIP Trust	200,000		
토지	200,000	유산세 납부의무액($E-F-G$)	360,507

주: 1) 증여 당시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

2) $\$28,000(1978\text{년}) + \$287,900(2004\text{년})$.

자료: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2007).

1045) 2006년 갑이 사망하기 이전에 1974년 아들에게 현금 \$103,000을 증여하고 \$30,000 면제를 신청하였고 그 당시 비과세 금액은 \$3,000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 과세대상 증여는 \$70,000이다. 1978년 갑은 딸에게 현금 \$20,300을 증여하고 역시 \$3,000을 비과세 받았다. 갑은 \$200,000에 대하여 \$34,000의 통합세액공제를 신청하고 \$28,000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004년에는 아들에게 \$1,511,000의 주식을 증여하고 \$1,1000의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따라서 과세대상 증여는 \$1,500,000이다. 연후 갑은 갑에게 남은 통합세액공제 \$311,800($345,800 - 34,000$)을 적용받고 \$287,900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2006년 주식가액은 \$1,750,000으로 증가하였다. 갑은 \$200,000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소유권(incidents of ownership)이 있고 딸을 수증자로 지명하였다. 한편 갑은 부모로부터 종신물권을 받은 기금이 있지만 잔존 유산에 대한 지명권은 손자녀로 한정한다는 부모 유언으로 해당 기금은 갑의 유산에서 제외되었다. 1974년 증여는 갑의 유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갑의 유산세에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b) 기타 세액공제

통합 세액공제 이외에도 세 종류의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우선 외국에 존재하지만 유산에 포함된 자산으로 외국정부에 납부한 사망 관련 세금은 이중과세 문제로 전부 혹은 일부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공제가 허용되는 최대 금액은 해당 외국자산에 부과되는 연방유산세와 외국정부 상속세 중 적은 금액이다. 이외 2005년 이전에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사망세는 세액공제가 되었지만 지금은 일반공제가 허용된다. 한편 1977년 이전에 증여를 하고 납부한 세금은 그러한 자산이 유산에 포함된다면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공제한도가 있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납부한 증여세보다 적을 수 있다(Sec. 2012(a)).

마지막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빈번한 자산 양도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유산세 공제가 있다. 이 조항은 단기간에 걸쳐서 똑같은 유산에 과도한 유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자산을 처음 양도한 납세자가 2차 양도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전 이내에 사망하였거나 혹은 2차 양도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 후 이내에 사망하면 적용된다(Sec. 2013). 공제가 허용되는 잠정 금액은 처음 양도자가 이전한 자산에 대한 유산세와 2차 양도자가 이전한 자산의 유산세 중에서 적은 금액이다. 연후 최종 공제금액은 잠정 금액을 양도자들의 사망간격에 역비례하는 비율로 곱한 금액이 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율은 2년마다 20%씩 감소한다¹⁰⁴⁶⁾. 증여세에는 이러한 공제가 없다.

4) 세대 생략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

1976년 처음 도입된 세대 생략세는 1986년 개정되어 1985년 9월 25일 이후 생존한 사람 사이의 자산 양도(inter vivos transfer)와 1986년 10월 22일 이후 유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세대 생략세는 납세자가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종신물권(life estate)을 자녀에게 제공하고 잔여 지분(remainder interest)을 손자녀에게 상속함으로써 유산

1046) 즉, 사망 간격이 2년 이내이면 100% 적용되며 2~4년은 80% 등이다.

세나 증여세를 기피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세대 생략세는 단일세율로서 유산세 최고 세율이 부과되며 유산 관리인이 이를 납부한다(Sec. 2641). 세대 생략세는 세대를 생략한 직접적인 증여나 유산(direct skip) 혹은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세대상 배당이나 과세대상 지분 이전의 종식(termination)에 대하여 부과된다.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전(generation skipping transfer)은 양도인보다 1세대 이상 젊은 수증자에게 지분을 제공하거나 양도인보다 2세대 이상 젊은 수증자에게만 지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수령자는 양도인보다 2세대 이상 젊어야 한다(skip person). 이를 보다 쉽게 설명하면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 직접적인 세대 생략이 된다(direct skip). 또는 할아버지가 신탁기금의 소득을 아버지에게 제공하고 아버지 사망시 잔존 유산을 손자에게 양도하면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전이 된다. 아버지의 사망은 세대를 생략한 지분 이전이 종식되는 시점이다(termination of interest).

지분 종료에 따른 세대 생략세는 유산 관리인이 납부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세대 생략 증여(direct skip)의 경우 만약 생존자 사이의 증여(inter vivos)라면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며 과표는 수령자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격이 된다(Sec. 2623). 또한 양도인이 납부한 증여세도 증여세 과표에 포함된다(Sec. 2515). 납세자는 증여세에 추가하여 세대 생략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들 세금이 증여자산 가액보다 많을 수 있다. 특히 세대 생략세가 유산세의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유산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세대 생략세에도 2007년을 기준할 때 200만달러의 면세가 적용된다(Sec. 2631(a)).

마. 자산의 평가

1) 일반규칙

유산으로 남은 자산은 고인의 사망 시점이나 대체평가일(alternate valuation date) 당시 공정한 시장가격(FMV)¹⁰⁴⁷⁾ 중 하나를 선택하여 평가해야 한다(Sec.

2031). 특히 특정 날짜를 선택하면 모든 유산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자산이나 유산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다른 방식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보험 대상자(insured)가 사망하면 보험은 액면가격으로 평가되지만 그렇지 않고 생존한 상황에서는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다¹⁰⁴⁸⁾. 일부 자산의 경우 재무성이 평가방식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예외적인 경우 사용가치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special use valuation).

2) 자산별 평가방식

부동산은 각각 특색이 있으므로 재무성은 특정한 평가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Reg. §20.2031-1(b)).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 방식 즉, 자발적인 거래에 따른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에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유사 매매가격, 재건축비용 그리고 자본화된 소득추정방식(capitalization of earnings)이 있을 수 있다. 물론 토지의 경우 재건축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소득추정방식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자주 이용된다. 물론 이외에도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 시장가격(market assessment) 혹은 최근 주택저당 대부금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상장된 주식 등 증권의 경우 고인의 주식과 채권은 유산에 포함되며 사망한 날짜나 혹은 6개월 후 평가된다(Sec. 2033). 후자의 경우 그 이전에 만약 증권이 배분되면 배분이 이루어진 날짜가 평가일이 된다¹⁰⁴⁹⁾. 마찬가지로 해당 자산을 6개월이 되기 이전에 팔면 매매일이 평가일이 된다. 과표에 포함되는 증권의 공정시장가격은 만약 고인의 사망날짜 등 유산 평가일에 주식시장에서 매매되었다면 그 날 인용된 매매가격의 최고와 최저가격을 단순 평균하여 결정하면 된다¹⁰⁵⁰⁾.

1047) 공정시장가격이란 전술한 대로 자산매매의 양 당사자가 관련 사실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지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가격을 말한다(Reg. Sec. 20.2031-1(b)). 자산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공정가격은 해당 자산이나 유사한 자산이 특정 지역에서 매매될 때의 가격이다.

1048) 유사한 보험의 구입비용 등으로 평가될 수 있다.

1049) Reg. §20.2032-1(c)(2).

1050) Reg. §20.2031-2(b).

그러나 그 날짜에 거래가 없었다면 평가일을 전후한 합리적인 기간에 발생한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공정가격을 결정한다. 즉, ① 평가일에서 가장 근접한 이전 거래날짜의 최고/최저 매매가격의 평균과 ② 평가일에서 가장 근접한 이후 거래날짜의 최고/최저 매매가격의 평균을 또 다시 가중평균하여 공정가격으로 한다. 이 때 가중치는 고인이 사망한 날짜와 주식 매매가 이루어진 날짜 사이의 거래일수(trading days)¹⁰⁵¹⁾를 거꾸로 적용한다¹⁰⁵²⁾. 예를 들어 포항제철 주식을 보유한 갑이 11월 5일 사망하고 그 날짜에 포항제철 주식이 거래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2일 이전(11월 2일)에 평균가격 50원으로 매매되었고 거래일수 3일 이전(11월 10일)에 평균가격 40원으로 매매되었다면 유산과표에 적용되는 공정가격은 $((3 \times 50) + (2 \times 40)) / 5 = 46$ 원이다.

한편 납세자가 상당 규모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로 인하여 매각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blockage sales). 이 경우 고인의 사망 당시 거래가 있었어도 공정가격은 대규모 거래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를 감안하여 평가해야 한다¹⁰⁵³⁾. 특히 재무성은 시장가격의 하락을 유발하지 않고 합리적 기간에 처분할 수 없으면 증권 인수업자(underwriter) 등 일반시장 이외에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재무성이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장부가액과 소득 창출능력 등 적절한 고려 요인에 대해서 국세청이 자세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Rev. Rul. 59-60)¹⁰⁵⁴⁾.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business)에서 소수 지분을 소유한 경우 법원은 소수 지분에 대한 할인을 허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들 업체 주식(closely held stock)은 시장에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 시점의 가격은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유산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대개 평가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에 발생한 주식거래가 주식가치에 대한 훌륭한 지표가 된다¹⁰⁵⁵⁾. 단 공정가격은 강요된 매매가격이나 일상적으로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시장 이외의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되면 안 된다¹⁰⁵⁶⁾. 만약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

1051) 거래일수에서 주말은 제외된다.

1052) Reg. §20.2031-2(b), Reg. §25.2512-2(b).

1053) Reg. §20.2031-2(e), Reg. §25.2512-2(e), Rev. Rul. 59-60, 1959-1 CB237.

1054) 1959-1 C.B. 237.

1055) Reg. §20.2031-2.

면 독립적인 감정사에게 자문해야 한다.

매매, 입찰 혹은 요청가격을 기초로 결정할 수 없는 주식과 채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증권)가격과 함께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Sec. 2031(b)). 채권의 경우 건전성, 이자수익률, 만료일 등이 고려된다.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의 순자산, 예상 수익, 배당 지불능력과 함께 유·무형 자산의 공정가격과 증명된 사업수익 창출 능력 등 기타 적절한 요인을 고려한다¹⁰⁵⁷⁾.

유용한 금융정보 이외에도 국세청은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¹⁰⁵⁸⁾.

- ① 사업성격과 연혁 ② 경제 일반 전망과 산업 조건과 전망 ③ 주식 book value와 사업 재무조건 ④ 회사의 수익능력 ⑤ 배당 지불능력 ⑥ 무형자산과 영업권 보유 여부 ⑦ 주식매매와 평가대상 주식 유산규모 ⑧ 동일 혹은 유사분야의 주식가격.

세 번째로, 연금 이외 각종 조건부 자산¹⁰⁵⁹⁾이 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¹⁰⁶⁰⁾. 조건부 자산은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치를 갖는 제한된 권리를 의미한다. 이 경우 증여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보험표를 이용하여 조건부 자산을 평가한다. 보험평가 산정체제(actuarial valuation system)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달의 연방정부 이자율(federal midterm rate, AFR)에서 산출된 이자율을 사용하여 제한된 권리의 가치를 평가한다¹⁰⁶¹⁾. 특히 매년 복리로 산출된 AFR의 120%를 이자율로 한다.

생명보험은 보험의 지급금이나 대체가격으로 평가된다. 즉, 보험기일이 만료되고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되어야 하면 유산에 포함된 생명보험의 과표는 지급금액이 된다. 그러나 생명보험이 보험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산으로 과세되면 보험기일이 만료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과표는 액면가격이 아닌 대체비용이다¹⁰⁶²⁾. 개인 소장

1056) Reg. §20.2031-1(b).

1057) Reg. §20.2031-2(f), 20.2031-3, 20.2031-6(b).

1058) Rev. Rul. 59-60, 1959-1 CB237.

1059) 한 예로 납세자가 10년을 기한으로 신탁기금 자산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갑에게 기증하고 10년이 되면 해당 자산을 납세자나 납세자 유산에 포함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일정 기간 동안 지분을 소유하므로 term certain interest가 발생하고 다시 자산의 향유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전환되므로 reversionary interest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가 사망하면 해당 자산의 일부가 reversionary interests로 유산에 포함된다.

1060) interests for life or a term of years, remainder, reversionary interests.

1061) Sec. 7520에 의하면 이자율은 매달 변경될 수 있다. Reg. §20.7520-1(a)(2)에 이자율표가 제공되고 있다.

품(personal effect)은 구매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공정가격이다¹⁰⁶³⁾. 만약 소장품의 전체 가치가 3,000달러를 초과하면 유산 신고서에 감정서(appraisal)와 귀금속, 모피, 그림, 동전이나 우표수집 등의 상세한 명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투자신탁회사(mutual fund) 지분은 연방법에 따라 지분 소유자가 신탁을 발행한 사람에게만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다. 이 가격을 환매 혹은 입찰가격¹⁰⁶⁴⁾이라고 하며 특정 날짜에 신탁이 보유한 자산의 순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고인이 소유한 투자신탁 지분은 고인이 사망한 날 혹은 대체 평가일의 환매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판정한 바 있다¹⁰⁶⁵⁾. 이외 매매약정¹⁰⁶⁶⁾의 경우 사업주(파트너, 주주)의 사망, 은퇴 혹은 장애가 발생하면 다른 사업주에게 권리를¹⁰⁶⁷⁾ 팔거나 환매계약으로 사업체에 권리를¹⁰⁶⁸⁾ 팔도록 약정되었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양측에게 구속력이 있고 가격이 공정하면, 유산 평가에 참고할 수 있다.

3) 사용가치 평가방식(Special use valuation)

1976년 의회는 농장이나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business)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공정시장가격이 아니라 농장용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할 때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Sec. 2032A). 2008년을 기준할 때 사용가치방식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평가액을 줄일 수 있는 최대 한도(공정가격과 사용가치의 차액)는 96만달러이다¹⁰⁶⁹⁾. 이 방식을 사용하려면 최소한 조정된 총유산의 50% 이상이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농장(사업용) 개인자산과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농장(사업용) 부동산이 조정된 총유산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1062) Reg. §20.2031-8.

1063) Reg. §20.2031-6(a).

1064) redemption or bid price.

1065) D.B. Cartwright, 73-1 USTC ¶12,926, 411 U.S. 546, 93 S.Ct. 1713(1973), Reg. §20.2031-8(b).

1066) buy-sell agreement.

1067) cross-purchase agreement.

1068) redemption agreement.

1069) 원래 \$750,000이었으나 1998년부터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었다.

이 밖에도 이러한 혜택을 입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실제 이용 가치가 최선의 이용가치(best use value)보다 낮고 둘째, 실제 이용은 고인이나 그 가족이 고인의 사망한 날짜부터 이전 8년 중 최소 5년간 소유자로서 농장(사업)용으로 사용하며 셋째,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고인의 가족이어야 한다. 만약 고인의 사망 이후 10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더 이상 농장(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용가치방식으로 절약한 유산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농장용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현금 임대방식이다(annual gross cash rental method). 이는 동일한 지방에서 유사한 농장 토지가 독립된 거래관계에서 사용될 때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말한다. 여기서 유사한 농장이란 토양과 토지의 경사도,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유사성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면 유사한 농장의 임대인이 임대한 농장으로부터 생산된 농축산물 수입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net share rental).

이와 같은 방식이 활용될 수 없다면 농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집중기업의 평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용으로 이용되었을 때 합리적 기간에 창출될 수 있는 소득의 현재가치를 사용한다. 혹은 공정한 임대가격의 현재가치나 인근 지역의 유사한 부동산 매매가격을 이용할 수도 있다.

4) 대체평가일(alternate valuation date)

내국세법에서는 일정 조건 아래 유산 집행인이 모든 유산을 대체평가일의 공정시장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Sec. 2032). 이는 1929년 대공황으로 도입된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대체평가일은 납세자 사망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짜가 되지만 6개월 사이에 자산이 배분, 매각, 교환 등으로 자산이 처분되면 처분한 날짜에 평가될 수 있다. 단 모든 자산이 같은 방식(혹은 날짜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고인의 사망 이전에 양도된 조건부 자산도 유산에 포함된다면 다른 유산과 함께 같은 방식(날짜)으로 평가된다.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든지 대부분의 경우 유산세 과표가 소득세 과표가 된다(Sec. 1014(a)).

대체 평가일을 선택할 경우 총유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또한 유산세와 세대 생략세의

납세액이 감소해야만 대체 평가일을 선택하여 유산을 평가할 수 있다(Sec. 2032(c)). 이는 생존 배우자 공제로 모든 자산을 물려받고 자산가치가 6개월 사이에 상승하여 대체 평가일을 선택하면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Sec. 1014(a)). 이 규정이 없으면 납세의무액을 추가하지 않으면서 유산의 장부가액을 증대하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step-up basis).

바. 유산의 장부가액

고인 사망으로 물려받은 유산의 장부가액은 일반적으로 고인 사망 시점의 공정가격으로 조정(이월)되어야 한다(step-up or down). 자산을 양도받은 수증자의 장부가액은 유산세 신고서에 신고한 자산의 평가액 즉, 고인 사망 시점이나 대체 평가일 당시 자산의 공정가격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산가치는 상승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만약 자산가치가 하락하였다면 장부가액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조건이 성립하면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가치가 상승한 자산을 증여로 기증받고 이후 이 사람이 사망하여 다시 해당 자산이 원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나 그 배우자에게 이전되면 장부가액이 증가하지 않는다(Sec. 1014(e)). 이는 병약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다음 배우자 사망에 따라 유산을 인상된 장부가액으로 돌려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배우자 사이의 자산 이전은 증여세나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10년 유산세의 일시적 폐지와 함께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인의 조정된 장부가액과 고인 사망 시점 자산의 공정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사. 신고와 납부

유산 집행인(executor)은 총유산과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가 통합세액공제를 감안한 실질 면세액(2007년 200만달러)을 초과하면 유산신고를 해야 한다(Form 706). 만약

고인이 1976년 이후 과세대상 증여를 하였다면 총유산이 면세액에서 과세대상 증여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면 유산신고를 해야 한다. 유산 집행인은 유언에 따라 지명된 사람 혹은 은행 등 단체로서 유산을 평가하고 관리하며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산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Sec. 2002). 만약 집행인 혹은 관리인(유언이 없을 때)이 없으면 고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유산신고 기한은 고인의 사망 이후 9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Sec. 6075(a)). 재무성 장관은 최대 6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유산세 납부는 연장되지 않는다(Sec. 6081(a)).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유산신고나 유산세 납부를 기한보다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된다(Sec. 6651). 또한 신고된 유산가액이 실제 공정가격의 65% 이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2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만약 신고금액이 실제 가격의 40% 이하로 과중한 과소평가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과소납부액이 5,000달러 이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Sec. 6652).

재무성 장관은 유산세 납부기한을 합리적 기간(12개월 이내) 동안 연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산세 전부 혹은 일부를 납부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재무성 장관은 최대 10년간 유산세 납부가 연기할 수 있다(Sec. 6161(a)(2)). 다만 이 경우 6621조에 따라 과소납부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기된 유산세에도 적용된다. 이 이자율은 단기 재무성 채권 이자율과 연동되어 분기별로 변한다. 두 번째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유집중기업(closely held business)의 지분에 대한 유산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간 납부를 유예하고 그 후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다(Sec. 6166).

또한 회수 가능한 유산(reversionary interest)나 잔존 유산(remainder interest)이 총유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유산세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종신 물권이 받은 유산의 수증자가 젊을 경우 유산이 다시 자산을 돌려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경우 유산의 집행인은 잔존 유산에 해당하는 유산세를 해당 수증자가 사망하고 난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유산세를 연기할 수 있다(Sec. 6163). 또한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추가로 3년 동안 더 연장해줄 수 있다(Sec. 6621). 유산세와 증여세 조세행정 규정은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밖의 신고납부 규정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참고하면 된다.

3. 증여세(Gift Tax)

1976년 이후 증여세와 유산세는 하나의 이전과세로 통합되었다. 다만 연방 증여세는 유산세보다 면제범위가 약간 더 복잡하고 납세의무액이 누적적 성격을 띤다¹⁰⁷⁰⁾. 즉 증여세 세율은 현 과세연도 과세대상 증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증한 과세대상 증여의 합수이다. 다만 증여세에서 고려해야 할 증여금액은 증여세가 도입된 1932년 이후 제공된 전체 증여인 반면 1976년 통합 이전세제 도입 이후 고인의 유산세 산정에서 감안해야 할 증여는 1976년 이후 제공된 증여금액이다. 1976년 이전에는 증여세 세율이 유산세의 4분의 3에 불과하여 납세자가 생존하였을 때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다.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제공된 증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부의 경우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부부가 반반씩 증여한 것으로 처리된다(gift splitting). 증여세와 유산세의 중요한 차이점은 납세자가 매년 피증여자(donee) 1인당 12,000달러 이하 금액을 제공하면 이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영원히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이전세제 체제에서는 1976년 이후 제공된 과세대상 증여가 유산의 규모에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증여는 증여 시점에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되며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고인의 사망 시점 증여세율로 환산된 증여세가 유산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

2001년 세법개정으로 2009년까지 세율(최고 세율 45%)의 점진적 인하가 유산세뿐만 아니라 증여세에도 같이 적용되지만 2010년이 되면 유산세와 세대 생략세는 1년간 일시적으로 폐지되는 반면 증여세는 소득세 최고 세율과 같은 35%(50만달러 이상의 증여)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며 만약 의회가 다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다시 2001년의 세법이 적용된다.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의 경우 2003년까지 유산세와 증여세에 동일한 345,800달러가 적용되었지만 그 후 유산세의 통합공제는 2009년까지 1,455,800달러(면세액 350만달러)으로 점차 증가한다. 하지만 증여세에 적용되는 통합공제는 345,800달러(면세액 100만달러)로 변화가 없다.

유산세와 비교할 때 증여세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물론 2007년을 기준으로 증

1070) 현재 25개 주에서 유산 혹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하여 증여세는 코네티컷, 루지애나, 노스 타코다 그리고 테네시 4개주에서만 부과한다.

여세에서 허용되는 통합세액공제는 345,800달러이고 유산의 경우 세액공제가 780,800달러까지 허용되는 차이점이 있고 특히 2001년 세법개정으로 유산세는 2010년에 일시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유산세와 달리 증여세에서는 피증여자 1인당 연간 12,000달러(부부 24,000달러)이 비과세되며 자산을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면 증여 시점 이후 자산가치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유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납세자가 사망하기 이전 3년 동안 납세자가 증여를 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면 납세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나 유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양도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15% 이하로 인하되었지만 수증자의 소득세 세율이 증여자의 세율보다 낮으면 증여가 소득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외 자선단체 기부금은 유산과 증여에서 똑같이 공제되지만 생존 당시 기부하면 소득세에서도 일정 조건 아래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장부가액의 상향 조정(step up)을 할 수 없다. 물론 양도받은 자산을 판매할 의사가 없거나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자산이면 이러한 단점이 문제되지 않는다.

가. 증여세 산정방식

1) 증여세 과세방식 요약

증여가 이루어진 연도(calendar year)에 납세자는 증여세를 환산해야 한다. 증여세 산정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산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고 1932년 이후 제공된 증여를 합해야 한다. 이 때 증여자산은 기증 시점의 공정가격으로 평가된다. 연후 총증여금액에서 공면제 항목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율을 산정한다.

전술한 대로 증여세는 누적적인 성격으로 세율이 현 과세연도 과세대상 증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증한 과세대상 증여의 함수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제공한 증여를 모두 합하여 현행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누적 증여에 대한 증여세(현행 세율 기준)를 제외한 금액이 금년도 과세대상 증여의 세금이 된다. 여기서 345,800달러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통합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증여세 납세의

무액이 된다.

통합세액공제 이외에도 납세자는 2007년을 기준으로 매년 피증여자 1인당 12,000달러¹⁰⁷¹⁾를 기증하고 이를 증여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Sec. 2503(b)). 납세자가 자산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납세자는 배우자나 자선단체에 금액의 제한없이 증여하고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주에 따라 결혼 이후 창출된 자산을 부부 공동자산으로 간주할지 여부가 달라 문제가 될 수 있어 의회는 증여의 배분에 대한 특별공제를 도입하였다(Sec. 2513).

일반적으로 공동자산 주에서는 증여와 상속자산을 제외하고 결혼 이후 쌓은 자산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하는 반면 일반법을 채택하고 있는 주에서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배우자가 그 자산을 소유한다. 전자의 경우 부부가 24,000달러를 한 사람에게 기증하고 부부가 각각 증여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대부분 자산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면 12,000달러만 면세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내국세법 2513조에서는 부부가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부는 실질적으로 매년 제3자 한 명당 24,000달러를 기증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 증여의 개념

증여세는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완전하고 적절한 보상¹⁰⁷²⁾보다 낮은 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권리에 대하여 증여 당시 공정한 시장가격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증여세는 자산 자체가 아닌 증여 목적의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다(transfer of property by gift). 즉, 보상 없이 이루어진 서비스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Sec. 2501(a)(1)). 또한 미국시민과 영주권자의 경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에게 있지만(Sec. 2502(d)), 증여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Sec.

1071) 원래 \$10,000이었던 면세금액이 1998년 이후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1,000을 단위로 조정된다.

1072) full and adequate consideration.

6324(b)).

증여세는 직·간접적으로 혹은 신탁기금의 형식이나 다른 방법으로 수증자에게 증여된 물적, 인적 그리고 유·무형 재산에 부과된다(Sec. 2511(a)). 이는 자산의 무상 양도뿐만 아니라 반드시 호의적인 동기는 아니지만 실제 매매·교환가치보다 낮은 가격에서 진행된, 일반적인 상업 활동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매매와 교환에도 해당된다. 즉, 이 경우 제공한 자산 가치와 제공받은 대가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한 예로 가족 사이에 할인된 금액으로 자산이 교환되면 그 차액이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폐업 할인과 같이 ‘일반적 상거래’¹⁰⁷³⁾에서 적절한 보상 없이 이루어진 자산 취득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가 발생하려면 자산 양도가 완전해야 하며 그 시점에서 증여자 자산의 가치가 평가된다. 자산의 이전이 완전하려면 증여하는 사람이 자산의 지배권과 통제권을 포기함으로써 증여자 본인이나 제3자의 혜택을 위하여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해야 한다¹⁰⁷⁴⁾. 만약 증여자가 이전된 자산으로부터 혜택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러한 통제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증여자가 수증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취소가 가능한 신탁기금(revocable trust)에 자산을 이전하면 완전한 증여가 아니다. 더욱이 이 기금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을 요구할 수 있으면 지배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그 대신 기금의 집행인이 기금 소득을 수증자에게 지급할 때 이러한 소득에 대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Rev. Rul. 67-396). 나아가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기금의 설립에 있어서도 설립자가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산의 처분, 대상 수증자, 수혜 지분 등에 대한 설립자 통제가 있으면 특정 상황에 따라 증여의 불완전성과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¹⁰⁷⁵⁾.

결론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자산의 이전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증여자가 통제권을 갖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를 한다. 그러나 취소가 가능한

1073) 이는 신의 성실 원칙 아래 이루어진 독립적 거래로서 증여의 의사가 없음을 말한다(Reg. Sec. 2512-8).

1074) Reg. Sec. 25.2511-2(b).

1075) Reg. Sec. 25.2511-2(c).

신탁기금으로 자산을 양도하거나 취소가 불가능한 기금에 자산을 이전한 후 기금의 소득과 잔여 지분(remainder interest)에 대하여 설립자가 임의 재량권을 가지면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다만 이 경우 기금 소득에 대해서만 재량권이 있고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으면 부분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취급된다. 즉,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신물권(life estate)과 잔여 지분(remainder)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후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다¹⁰⁷⁶⁾.

납세자가 현재의 권리(present interest)를 증여하면 매년 피증여자 1인당 12,000 달러를 한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현재의 권리는 수증자가 자산과 이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용, 소유,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¹⁰⁷⁷⁾. 이에 비하면 미래의 권리(future interest)¹⁰⁷⁸⁾를 이전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면제가 허용되지 않는 미래의 권리는 그러한 사용이나 소유권리가 미래의 한 시점 이전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조건부 증여(reversion)나 잔여분 증여(remainders) 혹은 이와 유사한 권리나 유산을 포함한다. 그러나 채권이나 생명보험 등 미래에 지급되는 이자 등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권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자산 이전의 유형에 따른 증여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이 매입 당시 더 많은 자금을 기여하였으면 그 차이가 증여로 간주된다. 한 예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은행계좌에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도 불완전한 증여에 해당한다. 만약 자신이 불입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계좌에서 찾으면 초과금액은 증여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입하여 공동소유(joint tenancy)¹⁰⁷⁹⁾로 하면 소유주들이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한

1076)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자가 모든 자산을 신탁기금에 이전한 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기금 소득을 받고 사망 후 잔여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1077) Reg. Sec. 25.2503-3(b).

1078) Reg. Sec. 25.2503-3(a). 미래의 권리가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증여의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1079) 공동소유(joint tenancy)는 대개 소유권자 중 일부가 제3자에게 권리를 이양함으로써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완전한 공동소유(tenancy by entirety)는 부부의 소유권과 같이 생존시 두 사람의 합의하에서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공동재산

당사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생존 소유자가 권리를 이전받는다. 만약 값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배우자나 자녀와 공동 소유하면 이들 수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¹⁰⁸⁰⁾.

자신의 생명에 대한 보험상품을 매입하여 다른 사람을 수증자로 지명하면 언제라도 수증자를 바꿀 수 있으므로 불완전한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취소할 수 없는 조건으로 모든 생명보험 상품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증여에 해당한다. 소유권이란 수증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 생명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 혹은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면 그 사람에 대한 증여가 성립된다. 증여로 간주되는 생명보험의 평가액(즉, 증여액)은 액면금액이 아니라 증여 시점에 유사한 보험상품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다(Reg. Sec. 25.2512-6). 그러나 보험상품을 구입하고 상당 기간이 경과되면 구입비용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보험상품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interpolated terminal reserve). 보험회사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증여자가 유동성이 부족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자산을 양도하는 대신 증여세는 자산을 받는 수증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금액은 자산가격에서 증여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대법원은 이 때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자본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판정한 바 있다. 이는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이 자산 처분에 따른 이익의 실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이 특히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궁극적으로 자산을 소유할지 결정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power of appointment). 이러한 지명권한은 부분적 소유권과 같은 혜택이 있다. 일반적 지명권한은 지명권을 보유한 사람이 자신이나 자신의 유산 혹은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실제로 유산에 양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지명권자가 생존 당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거나 지명권을 양도하면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community property)는 부부가 같이 소유한 재산으로 이로부터의 소득을 각각 똑같이 공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1080) Reg. §25.2511-1(h).

간주된다(Sec. 2514). 다만 지명권자 본인에게 행사하면 이는 증여로 취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약 조건이 있는 특별 지명권(special power)의 행사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별 지명권은 자녀나 후손 등으로 자산의 수증자가 한정된 권한을 의미한다¹⁰⁸¹⁾.

한편 시장금리 이하로 자금을 대여하면 채권자는 증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자소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Sec. 7872). 따라서 채권자는 감면해준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채무자는 그 대신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이자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에서 비용 공제를 할 수 있다. 만약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채(demand loan)라면 부채가 존재하는 동안 채권자가 매년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며 내국세법 1274(d)상의 연방 단기채권 이자율과 감면된 이자율의 차이가 증여금액이 된다. 또한 채권자는 이러한 증여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 대신 채무자는 이를 이자경비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10,000달러 이하의 부채가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의 구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증여 혹은 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de minimis rule). 또한 10만달러 이하 부채의 경우 증여세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채권자의 귀속소득(imputed income)을 채무자의 순투자소득으로 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채권자의 투자소득이 1,000달러 이하이면 귀속소득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세금 납부를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가 발생하면 이러한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10만달러 이상의 채무관계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자산의 평가와 장부가액

증여자산의 평가는 증여가 완전히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FMV)으로 평가된다. 즉, 적정한 정보를 가진 매매자와 매입자가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산

1081) 이외 수증자의 건강, 교육, 부양 등 확실한 조건으로 제약된 권한이나 매년 자산가치의 5% 혹은 \$5,000 이내에서 수증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2514(c)(1), (3)). 이외 제3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지명권도 그러한 지명권의 행사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을 기꺼이 거래할 때 성립되는 가격이다. 또한 일반 대중에게 매매되는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의 매매가격이 될 수 없다. 한 예로 주식이나 채권은 증여가 발생한 날짜에 거래된 최고 및 최저 가격의 평균으로 평가된다¹⁰⁸²⁾. 다만 유산세와 달리 증여에는 대체평가방식이나 사용가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되지 않은 주식회사나 휴면주식의 경우 기업의 순가치, 이익, 배당능력 등 기타 적절한 요인을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한다.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가 시점이나 그 이전에 독립된 거래에서 지급된 가격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부동산 판매가격으로 평가하는데 이 때 매각날짜, 부동산 규모, 조건, 부동산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조정한다. 기증인이 주식회사 자본 지분이나 신탁기금 지분을 양도할 경우 내국세법 2701~2702조에 따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에 있어서 평가방식은 유산세와 차이가 없다. 예외적인 경우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가치가 낮은 생명보험증권이다. 한편 종신물권과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전술한 대로 증여자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신탁기금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받고 사망 후 잔여 자산을 타인에게 인도하면 잔여 자산에 대해서만 된다. 다만 증여가 가족에 제공되며 예외적으로 취급된다(estate freeze). 한편 설립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기금의 소득을 타인 즉, 수증자에게 제공하고 시간이 되면 잔여 자산을 설립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기금도 있다(reversionary interest). 이 경우 수증자가 가족이 아니면 수증자의 소득만이 한시적 지분으로 증여에 해당한다(term certain interest). 1986년 이후 설립된 이러한 성격의 기금은 소득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종신물권, 연금과 잔여지분, 한시적 지분 등은 내국세법 7520조에 따른 이자율을 고려한 보험표(actuarial table)에 의하여 증여 시점의 현재가격으로 평가된다. 보험표는 최소 10년에 한 번씩 추정된 평균수명을 감안하여 수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부 지분의 경우 실제 소득(지분가치)과 관계없이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평가된다. 종신물권과 한시적 지분의 환산을 위한 보험표에서는 1에서 잔여 약수(remainder factor)를 제외한 수치가 약수로서 작용한다. 잔여 약수란 어떤 사람의 사망 시점에

1082) Reg. Sec. 25.2512-1.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혹은 잔여 약수는 한시적 지분(term certain interest)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현재가치를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1은 종신물권과 잔여지분을 합한 자산의 공정가격을 대표한다.

이러한 잔여 약수를 자산 가격에 곱한 금액이 잔여지분(remainder interest)에 대한 평가액이 된다. 한 예로 15년 이후 잔여지분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약수는 만약 이자율이 10%라면 0.239392로서 증여자산의 공정가격이 10만달러라고 가정하면 239,392달러에 상당한 금액이 잔여 지분 증여가 된다. 물론 종신물권은 60,608달러($=100,000\text{달러} \times (1 - 0.239392)$)로 평가된다. 한편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하여 이들 약수를 7520조에 따른 이자율로 나눈 수치에 주기적으로 제공되는 연금가액에 곱한 금액으로 종신물권과 잔여지분이 평가된다. 7520조 이자율은 자산 이전이 발생한 달의 연방 중기채권 이자율에 1.2를 곱한 지수로서 매월 조정된다.

과거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기업에 대한 가족 사이의 권리 이전 혹은 권리 소멸이 이용되기도 한다. 즉, 일반주를 일반주와 우선주로 교환하고 일반주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등 주식회사의 자본을 재편하는 방식이 사용된 적이 있다(estate freeze). 1990년 의회는 증여가 저평가되지 않도록 일련의 법 개정을 진행한 바 있다(Sec. 2701~2704). 법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설명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100% 소유한 주식회사의 일반주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부모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소유한 우선주 배당에 대한 권리를 영(0)으로 평가하고 일반주를 고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부모가 일부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 부모의 권리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신탁기금(annuity trust)이나 신탁자산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신탁기금(uni-trust)이 아니면 부모의 지분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증여자산의 장부가액

한편 증여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장부가액(adjusted basis) 보다 크다는 전제 아래 자산을 양도한 사람의 장부가액이 자산을 양도받은 사람 즉 수증자의 장부가액으로 그

대로 이월된다. 또한 1977년 이전에 증여된 자산의 경우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가 모두 자산의 장부가액에 포함되지만 1977년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조정 비율은 자산취득 시점에서 증여 시점까지 발생한 자산가격 상승분을 증여 시점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에서 공·면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된다(Sec. 2503(b))¹⁰⁸³⁾. 다만 어떤 경우에도 증여세를 포함한 장부가액이 증여 시점 자산의 공정시장가격보다 높을 수는 없다¹⁰⁸⁴⁾.

만약 증여 시점에 자산의 공정가격이 기증자의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수증자의 장부가액은 보다 복잡하게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는 증여자의 조정된 장부가액이 수증자의 장부가액이 된다. 그러나 손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수증자의 장부가액은 증여 시점 자산의 공정시장가격이 된다. 또한 수증자가 증여 시점 공정시장가격과 증여자의 장부가액 사이의 가격으로 증여자산을 매각하면 수증자는 아무런 이익과 손실을 실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기증자의 장부가액이 공정가격보다 높으면 수증자의 장부가액에 증여세를 포함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 경우 납세자는 자산을 증여하기 보다는 매각해야 한다. 즉, 장부가액이 30만달러인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10만달러가 되었다면 납세자는 이를 매각하고 자본손실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증여를 하면 손실 산정을 위한 장부가액은 10만달러이며 이익 산정을 위한 장부가액은 30만달러가 된다. 한편 이를 유산으로 남기면 공정가격 10만달러가 유산에 포함된다. 어느 경우에도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자는 손실에 의한 소득세 공제를 할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1083) 한 예로 갑이 1980년 \$100,000에 구입한 토지가 2007년 \$200,000로 상승하였고 이 때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38,800의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면 을이 양도받은 토지의 장부가액은 갑의 장부가액 \$100,000에 조정된 증여세 $\$20,683 = (\$200,000 - \$100,000) / (\$200,000 - \$12,000) \times \$38,800$ 을 합한 \$120,683이다.

1084) Reg. Sec. 1.1015-5(c).

라. 공·면제 항목

1) 일반공제

1982년 이후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자산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증여를 할 수 있다((marital deduction, Sec. 2523(a)).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무제한으로 기증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로부터 제공받은 자산에서 면세금액(12,000달러)을 제외한 금액이 부부공제로 간주된다(Sec. 2524).

부부공제는 1948년 처음 도입되었다. 부부공제가 없었다면 부부자산에 대하여 공동자산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일반법(common law)에 따라 해당 자산을 소유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취급하는 주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었다. 한 예로 일반법을 채택한 주에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상대 배우자에게 자산을 제공할 수 있었다¹⁰⁸⁵⁾.

그러나 시한부 자산의 지분(terminal interest)¹⁰⁸⁶⁾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일부 사례에서 부부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자산을 물려받은 배우자가 나중에 자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사망한 시점에 해당 자산을 배우자 유산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서면합의에 따라 재산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나 자녀부양 등을 위해 양도되는 자산은 한시적인 권리의 양도일지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Sec. 2516).

한 예로 자산을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이 사망 등 일정 기한 이내에 종료되고 자산이 원래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이전되거나 적절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은 제3자(자녀 등)에게 이전되면 부부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자산의 이전 직후 증여를 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있고 자산을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이 종식되면 그 사람이 해당 자산을 소유할 수 있으면 부부공제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자산을 받은 배우자가 종신물권을 행사한 이후 자산을 물려받을 사람을 지명할 수 있으면 부부공제가 가능하다(general power of

1085) 소득세법상으로도 부부간의 자산 이전은 손익이 인정되지 않고 손실도 그대로 이월된다.

1086) 시간의 경과나 어떤 상황 발생시 지분이 종료 혹은 종식되는 것을 말한다.

appointment).

예외적으로 시한부 자산 지분 중 부부공제가 허용되는 자산이 있다(QTIP, Sec. 2523(c))¹⁰⁸⁷⁾. 한 예로 배우자에게 종신물권과 지명권한만으로 구성된 시한부 자산을 제공하면 공제가 허용된다. 특히 생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유산으로부터 창출되는 모든 소득을 최소한 매년 혹은 이보다 더 자주 생존 배우자에게 지급되고 둘째, 생존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지분을 양도하려면 본인 이외 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Sec. 2523(t)).

이 때 만약 자산을 양도하는 배우자가 지명권한을 계속 보유하면 부부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동 조항은 납세자가 배우자에게 종신물권을 양도하고 배우자 사망시 잔여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자산에 대하여 부부공제를 선택한 이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당시 가격으로 배우자의 유산에 포함된다¹⁰⁸⁸⁾. 따라서 배우자 사이의 자산 이전에 대한 과세는 생존 배우자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지연된다.

두 번째로, 자선단체에게 기증한 자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자선단체의 정의는 소득세와 비슷한데 ① 공익적 목적의 미국 정부에 대한 기부 ② 종교, 자선, 과학, 교육, 예술 혹은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를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자선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고 운영의 상당 부분이 선전이나 정치활동에 이용되지 않는 단체) ③ 증여 자산을 종교, 자선, 교육, 예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목, 연합단체 ④ 퇴역군인단체(단체의 소득이 개인이나 주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단체)¹⁰⁸⁹⁾.

자산을 개인과 기부단체에 공동으로 이전하면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split interest transfer). 이 경우 잔여 자산지분(remainder interest)이 주택, 농장, 연금기금(remainder annuity trust)이나 공동소득기금(pooled income fund) 등의 형태가 아니면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¹⁰⁹⁰⁾. 또한 잔여 지분이 아니라 현재 지분을 기부

1087) 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

1088) 부부공제금액은 양도금액에서 면세되는 증여 \$12,000을 제외한 금액이다(includible gift).

1089) Reg. §25.2522(a)-1(a).

1090) remainder annuity trust는 개인이 매년 기금자산의 5% 이상을 배분받는 기금으로 전체

해도 보장된 연금기금 등을 받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들 지분에 대한 평가는 보험표(actuarial table)에 의하여 산정된다.

2) 면제 항목

1년에 수증자 1명당 현재의 권리로서 12,000달러 이하(부부 사이에 증여를 분할하면 24,000달러)로 증여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Sec. 2503(b)). 그러나 전술한 대로 미래의 권리(future interest)를 이전한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금을 통하여 증여를 하면 기금의 수증자가 수증자(donee)이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12,000달러 비과세 항목은 유산세에는 없는 규정으로서 납세자가 소액을 선물하는데 대하여 의회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1932년에 도입되었다. 즉, 납세자가 특정 개인에게 매년 12,000달러 이하로 증여를 하는 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증여금은 유산세 산정을 위한 유산세 과표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제한금액을 초과하는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만이 유산에 포함된다. 이를 통하여 두 자녀에게 20년간 12,000달러씩 증여하면 과세가 되는 유산을 48만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

한편 미래의 권리(future interest)이지만 미성년자를 위한 신탁기금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Sec. 2530(c)). 일반적으로 신탁기금은 매년 기금의 모든 소득을 수증자에게 배당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21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위하여 신탁기금을 설치하면 소득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21세가 된 시점에 지급하면 기금에 제공되는 증여는 면세가 가능하다. 물론 21세 이전에도 기금 소득의 일부를 수증자인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규정이 아니더라도 납세자가 임의의 신탁기금(discretionary trust)¹⁰⁹¹⁾을 설립하고 기금에 제공하는 증여를 공제받을 수 있다(Crummey Trust). 이를

배당액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잔여지분이 10% 이상은 되어야 한다. pooled income fund은 mutual fund와 유사한 개념으로 개인이 매년 기금 지분을 배당받는다.
1091) 증여자가 수혜자 나이와 상관없이 신탁기금의 존속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위해서는 기금의 약정상 수증자가 현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예로 납세자가 기금 약정에 매년 기금에 양도된 자산과 면세 증여금액(2007년 12,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수증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된다. 이 경우 기금에 제공된 증여자산에 대하여 12,000달러를 한도로 면세가 허용된다. 물론 납세자는 수증자인 자녀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본인은 면세를 받는 상황을 선호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개념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법적으로 면제가 허용되는 항목들이 있다. 우선 제3자를 위하여 교육단체에 직접 지불한 등록금이 그 대상이며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Sec. 2503(e)). 여타 교육비용은 면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 개인에게 60,000달러를 등록금으로 제공한 후 이를 5년에 걸쳐서 매년 12,000달러를 기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다(Qualified Tuition Program: 529 Plans).

어떤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의료단체에 직접 지불한 의료경비도 금액의 제한없이 면제된다¹⁰⁹²⁾. 증여에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특수 관계가 없어도 이러한 면세가 허용된다¹⁰⁹³⁾. 이 밖에도 정치단체에 대한 증여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¹⁰⁹⁴⁾. 또한 이혼으로 인한 서면합의에 따라 재산권을 배분할 때에도 이를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혼에 의한 미성년자 자녀의 부양을 위해 양도되는 자산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에서 면제된다(Sec. 2516).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자산을 양도받을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Sec. 2518). 이 경우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려면 번복이 불가능한 서면에 의한 거절이어야 한다. 또한 자산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거절 의사를 증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미성년자는 21세가 된 시점으로부터 9개월). 또한 양도자산으로부터 어떤 이득도 취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자산을 양도하도록 할 수 없다.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자산은 부부가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다(gift splitting, Sec. 2513)¹⁰⁹⁵⁾. 이를 통하여 부부는 특정 개인에게 합계 24,000달러를 기증하고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면세액을 초과하는 증여는 유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소유자산의 차이가 있

1092) Sec. 213(d)(소득세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규정)에 면제 가능한 의료비가 명시되어 있다.

1093) Reg. §25.2503-6.

1094) Sec. 2501(a)(5).

1095) 부부가 한 신고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봉투에 각자의 신고서를 동봉한다.

으면 증여 분할을 통하여 유산세를 절약할 수 있다. 증여의 분할이 가능하려면 증여 시점에 부부가 미국 시민(영주권자)이고 부부로서 이를 동의해야 한다. 또한 증여 분할을 선택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기증한 모든 자산에 분할이 적용되지만 이로 인하여 다른 과세연도에도 증여를 부부 사이에 분할할 필요는 없다.

3) 통합세액공제(unified credit)

1976년 이전에는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30,000달러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산세와 통합된 1977년 이후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345,800달러(2002~2009년)¹⁰⁹⁶⁾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준의 세액공제는 면세가 허용되는 증여금액이 100만달러임을 의미한다(applicable exclusion amount). 2010년에는 증여세 세율이 35%로 인하됨에 따라서 세액공제금액이 330,800달러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이후 다시 345,800달러로 돌아간다. 실제로 납세자가 세액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345,800달러에서 그 이전까지 납세자가 사용한 통합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1998년에 딸에게 100,000달러를 증여하였다고 하면 증여세는 23,800달러가 된다. 갑이 이에 대하여 통합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후 갑이 2000년에 다시 150,000달러를 증여하면 순증여세는 누적된 증여금액의 합인 250,000달러에 대하여 2000년 세율 34%를 적용한 70,800달러에서 1998년 증여 100,000달러에 2000년 세율을 적용한 23,800달러를 제외한 금액 47,000달러(70,800-23,800달러)가 된다. 2000년 당시 통합공제는 220,550달러이므로 갑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149,750달러(220,550-70,800달러)에 상당한 통합공제를 추후 사용할 수 있다. 이후 2007년에 갑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275,000달러(345,800-70,800달러)이다.

1096) 유산세의 경우 통합세액공제는 2006~2008년을 기준으로 \$780,800이다.

마. 증여세 과세방식 및 세율

1) 과세방식

증여세는 누적적인 과세방식으로 부과된다. 즉, 증여자가 1932년 양도한 모든 과세 대상 증여(taxable gift)¹⁰⁹⁷⁾와 현 과세연도에 이루어진 증여가 현재 적용될 증여세 과세 표준액과 증여세율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증여세 산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⁹⁸⁾. 첫째, 배우자에게 제공된 완전하고 영구적 지분 양도를 제외한 모든 증여금액에 부부분할과 수증자 1인당 12,000달러 증여를 제외한 금액에서 기부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면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adjusted taxable gift)가 된다. 이 금액을 이전 연도까지 납세자가 기증한 과세 대상 증여를 합하면 납세자가 현 과세연도까지 평생 기증한 과세대상 증여가 된다(lifetime taxable gift).

증여세에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평생의 과세대상 증여에 대하여 현 과세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총납세의무액(A)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연후 이전 연도까지 기증한 증여(preceding cumulative taxable gift)에 대해서도 현 과세연도 세율을 다시 적용하여 산출한 가상의 납세액을 총납세의무액(A)에서 제외하면 통합세액공제 이전 납세자가 납부할 (순)잠정증여세가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납세자가 평생 동안 양도한 증여에 관하여 누진적 세율이 적용된다. 비록 납세자가 이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그 당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했을지라도 이전 증여세가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증여세 납부액이 아니라 이전 증여에 대하여 현재 세율이 적용된 가상의 납부액이다. 물론 현재의 납세의무액도 누적된 총증여에 대하여 현재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잠정 증여세에 대하여 납세자는 2007년 기준으로 345,800달러의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를 평생 동안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납세자가 이전에 145,800달러의 증여세 세액공제를 사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제 20만달러를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통합세액공제로 인하여 납세자는 일생 동안

1097) 즉 \$12,000 이하 비과세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다.

1098) 여기서 각종 면제나 한도액은 물가와 연동되어 매년 조정된다.

100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증여하고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는 고인의 사후 유산에 포함되며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통합세액공제는 증여세나 유산세의 면제 이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증여하는 납세자에게 사망할 때까지 자산 양도에 따른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효과가 있다.

2) 증여세 세율

유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76년 이후에 제공된 증여와 유산에 대해서는 공통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개별 납세자가 평생 동안 제공한 증여와 사망 시점의 유산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과세된다. <표 I-8>은 2001년 당시 과세대상 증여에 관한 누진적 세율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과세표준액 300만달러까지 17개 구간의 증여에 관하여 18~5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통합세액공제 이외에도 1인당 연 12,000달러의 비과세 증여와 부부공제 등으로 실질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매우 낮다.

〈표 1-8〉 미국 유산·증여세 통합 세율구조(1984~2001년 이전자산)

(단위: 달러, %)

최소 과세표준액(A)	최대 과세표준액 ¹⁾	A에 대한 세금	A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
0	10,000	0	18
10,000	20,000	1,800	20
20,000	40,000	3,800	22
40,000	60,000	8,200	24
60,000	80,000	13,000	26
80,000	100,000	18,200	28
100,000	150,000	23,800	30
150,000	250,000	38,800	32
250,000	500,000	70,800	34
500,000	750,000	155,800	37
750,000	1,000,000	248,300	39
1,000,000	1,250,000	345,800	41
1,250,000	1,500,000	448,300	43
1,500,000	2,000,000	555,800	45
2,000,000	2,500,000	780,800	49
2,500,000	3,000,000	1,025,800	53
3,000,000		1,025,800	55

주: 1) 과세표준액은 Form 706의 column 5: 과세대상 유산(taxable estate)에서 조정된 증여를 포함하며 잠정세는 세액공제를 하기 이전의 유산세로 실제 납부세액이 아님.

자료: Instructions for Form 706, 709, IRS, 2007.

한편 2001년 법 개정으로 증여세 최고 세율은 유산세와 마찬가지로 2001년 55%에서 매년 1%포인트씩 인하되어 2008년을 기준할 때 최고 세율이 45%로 150만달러 이상의 증여에 대하여 이 세율이 적용된다. 2010년이 되면 증여세 최고 세율은 소득세와 같은 35%로 인하된다. 이에 비하면 유산세는 2009년 통합세액공제가 1,455,800달러로 증가하여 면세금액이 350만달러까지 증가하고 2010년에 일시적으로 폐지된다. 이후 의회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다시 2001년의 규정이 적용되어 55%의 최고 세율과 100만달러의 면세금액이 부활할 예정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2011년에 100만달러의 면세액(통합공제 345,800달러)과 50만달러 초과 증여금액에 대한

35% 최고 세율이 유지된다.

〈표 1-9〉 양도연도에 따른 연방 이전세 최고 세율과 면세액(2001~2011년)

(단위: 달러, %)

양도연도	유산세 면세금액	세대 생략세 면세금액	유산세와 세대 생략세 최고 세율	증여세 면세금액	증여세 최고 세율
2001	675,000	1,000,000	55	675,000	55
2002	1,000,000	1,000,000	50	1,000,000	50
2003	1,000,000	1,000,000	49	1,000,000	49
2004	1,500,000	1,500,000	48	1,000,000	48
2005	1,500,000	1,500,000	47	1,000,000	47
2006	2,000,000	2,000,000	46	1,000,000	46
2007	2,000,000	2,000,000	45	1,000,000	45
2008	2,000,000	2,000,000	45	1,000,000	45
2009	3,500,000	3,500,000	45	1,000,000	45
2010	폐지	폐지	n.a.	1,000,000	35 ¹⁾
2011	1,000,000	1,000,000	55	1,000,000	35 ²⁾

주: 1) 2010년과 2011년 최고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과 같음.

2) 최대 \$500,000 증여에 대하여 적용.

자료: Martha Britton Eller(2005)와 Instructions for Form 706, 709, IRS, 2007.

바. 증여세 신고 납부

증여세 신고에 대한 규정은 내국세법 6019조에 명시되어 있다(Form 709). 증여세에 대한 신고와 벌금규정은 대부분 유산세에도 적용된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의무액이 없어도 증여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른다.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는 상황은 부부공제가 허용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경우¹⁰⁹⁹⁾, 면세금액인 1인당 12,000달러 이하로 현재 지분¹¹⁰⁰⁾을 증여한 경우 혹은 자선단체에 증여자가 자산 지분을 모두 증여

1099) 공제가 허용되는 부부증여에서도 지분 종식이 가능한 자산(QITP) 증여의 경우 납세자가 이를 선택을 해야 하므로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며 배우자 증여가 \$128,000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1100) 미래 지분을 증여한 경우 면세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하는 경우가 있다¹¹⁰¹⁾. 또한 공동자산을 기증하거나 증여를 배우자와 분할하는 납세자는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 영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에 소재한 유형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무형자산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Sec. 2501(a)). 만약 외국인이 미래 지분 혹은 12,000달러 이상의 자산을 기증하거나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에게 128,000달러 이상을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를 한 과세연도가 종료된 이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Sec. 6075(b)). 납세자가 연방소득세 신고를 연기 신청하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자동적으로 6개월간 신고가 연장될 수 있다. 연방소득세 신고를 연장하지 않으면 Form 8892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만약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세 신고는 유산세 신고기일(고인의 사망 이후 9개월)에 마감된다. 물론 소득세처럼 신고 연장이 증여세 납부 연장을 의미하지 않고 4월 15일에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에 대하여 이자가 가산될 수 있다¹¹⁰²⁾. 증여를 분할하는 부부는 이를 신고서에서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gift splitting).

증여세는 자산을 기증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Sec. 2502(d)). 만약 증여 분할을 하였다면 배우자도 전체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드물지만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수증자에게도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Sec. 6324(b)). 증여세 신고는 개인밖에 할 수가 없으며 이에 따라서 신탁기금이나 파트너십 혹은 주식회사 등 단체가 제공한 증여는 개별 수증자나 파트너, 주주가 증여자(grantor)로 간주되어 증여세나 세대 생략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은 신고 시점과 신고기한 중 늦은 날로부터 3년이다. 만약 증여자가 신고서에서 신고한 증여금액의 25%를 초과하는 증여를 빠트리면 시효는 6년으로 증가한다. 또한 증여를 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 증여세는 이전에 기증한 증여가 현재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효가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세금을 이전에 납부한 상황에서는 이전 증여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증여세를 상향

1101) 잔여유산 등 미래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1102) Reg. § 25.6161-1.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1997년 이후 증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이전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제공된 증여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잠재적 증여 성격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적절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증여자가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은 증여에 대해서는 조세시효가 없기 때문이다(Sec. 6501(c)(9)).

4. 세대 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ax)

가. 개요

1976년 이전에는 납세자가 신탁기금을 설립하여 자녀에게 종신물권(life estate)을 제공하고 잔여 지분(remainder interest)을 손자녀에게 상속함으로써 신탁기금으로부터 자녀는 소득을 받아 생활을 한 이후 자녀가 사망할 때 유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다(Sec. 2641). 이에 따라 의회는 세대별로 순차적으로 자산이 세습되거나 아니면 신탁기금을 통하여 한 세대¹¹⁰³⁾를 건너서 자산이 세습되든지 양쪽이 모두 유사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1976년 세대 생략세(GST tax)를 도입한 바 있다(Sec. 2613(a)). 1986년 개정된 내국세법에서는 1985년 9월 25일 이후 생존하고 있는 사람 사이의 자산 양도 즉, 증여(inter vivos transfer)와 1986년 10월 22일 이후 유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세대 생략세는 증여와 양도에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이다.

누가 자산을 양도받든지 상관없이 과세대상 유산에 부과되는 유산세와 달리 세대 생략세는 고인 세대보다 2세대 이상 젊은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신탁기금에게 이전되는 자산의 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skip person). 즉,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자산 양도는 세대 생략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유산세 혹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지분(interest in property)의 양도가 발생해야 세대 생략세가 부과된다. 세대 생략세는 단일세율로서 유산세의 최고 세율이 부과된다. 세대 생략세를

1103) 직계존속의 경우 고인과 고인 할아버지 세대 수를 수증자와 고인 할아버지 세대 수에서 제외한 세대 수로 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자의 생일로부터 매 25년이 경과하면 한 세대가 된다(Sec. 2651(d)).

납부하는 사람은 해당 자산의 성격에 따라 유산/기금 관리인(trustee), 증여자 혹은 세대를 생략한 피상속인(skip person distributee)이 납부한다(Form 706).

나. 세대 생략세의 과세

1) 과세대상

세대 생략세가 부과하려면 세대가 생략된 사람에게 유산(증여)세가 적용되는 자산 지분의 양도가 발생해야 한다. 세대가 생략된 사람(skip person)은 자연인일 수 있고 아니면 신탁기금이나 명시적인 기금은 아니더라도 보험이나 연금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계약¹¹⁰⁴⁾이 될 수 있다¹¹⁰⁵⁾. 유산, 신탁기금,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가 자산을 양도받으면 이들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수증로 간주된다.

만약 자연인에게 자산 양도가 발생하면 세대 생략세 목적상 모든 양도자산이 그 대상이 된다. 한편 신탁기금(GST trust)에게 자산이 양도되면 기금의 수증자가 신탁기금의 소득이나 원금(corpus)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권리(present right)가 있어야 한다. 이외 일반 지명권한을 보유하는 등 기금 소득이나 원금에 대하여 현재의 수증자이면 이러한 기금에 대한 자산이전도 세대 생략세의 대상이 된다(permissible current recipient).

세대가 생략되려면 수증자가 자산을 양도해주는 사람보다 2세대 이상 젊거나 혹은 이와 같은 사람이 신탁기금의 지분¹¹⁰⁶⁾을 모두 보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1세대 젊은 사람이 자산의 일부를 소유하면 세대 생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면 직접적인 세대 생략이 된다. 또는 할아버지가 신탁기금의 소득을 아버지에게 제공하고 아버지 사망시 잔여 자산을 손자에게 양도하면 세대

1104) 잔여지분과 종신물권, 시한부 계약, 혹은 일정 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 양도도 기금으로의 자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1105) 다만 수증자가 생존한 동안 이 수증자에게만 기금의 소득이나 원금이 지급되고 수증자가 사망하면 기금 자산이 수증자의 유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대 생략세 대상이 아니다.

1106) 즉, 자산을 양도받은 기금의 경우 만약 기금으로 이전된 자산의 지분을 모두 2세대 이상 젊은 수증자가 소유하거나 현재 지분을 아무도 보유하지 않고 미래의 배당이나 기금 종료에 따른 권리를 2세대 이상 젊은 사람이 소유하면 세대 생략으로 간주된다.

를 생략한 자산 이전이 된다. 아버지의 사망은 세대를 생략한 지분 이전이 종식되는 시점으로 간주된다(termination of interest). 예외적으로 부모가 사망한 손·자녀에 대한 양도는 세대 생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ec. 2612(c)(2)). 1997년 이후에는 직계 자손이 없는 사람의 방계 피상속인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법에서 세대 생략세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세대를 생략한 직접적인 증여(inter vivos direct skip) 둘째, 세대를 생략한 자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기금의 과세대상 소득(원금) 배당 마지막으로, 과세대상 기금자산 지분의 종식. 직접적인 증여를 제외한 다른 두 가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 시점에 증여세만 부과하고 그 이후 소득(원금) 배당이나 지분 종식이 발생할 때 세대 생략세가 부과된다(indirect skip).

우선 신탁기금으로부터 세대를 생략한 원금이나 소득의 배분이 발생하면 세대 생략세가 부과된다(Sec. 2612(b)). 임의적인 소득배분으로 인한 세대 생략세는 수증자의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Sec. 164(a)(5)). 두 번째로,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지분¹¹⁰⁷⁾ 권리가 사망, 시간 경과, 권리 이양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세대 생략세가 적용된다(taxable termination)¹¹⁰⁸⁾. 다만 권리의 종식 직후 지분을 세대를 생략하지 않은 사람(non-skip person)이 보유하거나 종료 이후 기금으로부터 세대를 생략한 사람(skip person)에게 소득 등이 배당되지 않으면 세대 생략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예로 기금 자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면 손·자녀가 그 권리를 이양받는 상황이면 세대 생략세가 부과된다(Sec. 2612(a)(1)). 물론 다음 세대에게 이전되는 자산이 유산세나 증여세 과세대상이면 과세대상 종료가 아니다. 또한 지분 종료가 적용되는 자산 모두가 배분되어 의료비나 등록금으로 사용되면 이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직접 증여로 간주되어 세대 생략세가 적용되지 않는다(Sec. 2611(b)(1)).

1107) 지분이란 원금이나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권리나 일반지명권한과 같이 실질적 권리(permissible current recipient)를 말한다.

1108) 명시적이지 않은 기금의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관리인으로 세대 생략세를 신고해야 한다.

2) 과세산정방식과 납세의무자

세대 생략세에 있어서 과세산정 방식은 유산세 등과 같은데 과세대상인 소득(원금) 배분이 있는지 아니면 기금 자산지분의 종료가 발생한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과세대상 소득(원금) 분배에 있어서 세대 생략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수증자가 배당받은 금액에서 세대 생략세의 결정, 징수와 환급과 관련된 비용¹¹⁰⁹⁾을 제외한 금액을 세율(산입비율 감안)로 곱한 금액을 수증자가 세대 생략세로 납부한다. 이때 배당금액은 지급 시점의 공정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¹¹¹⁰⁾. 유산 신탁기금 집행인이 생략세를 납부하면 이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배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기금 자산지분 종료(termination of interest)의 경우 권리가 종료된 시점에 평가된 자산 가액이 과세대상이며 기금 경비¹¹¹¹⁾, 해당 자산 부채 그리고 종료와 관련된 부동산세와 매각비용 등 직접비용이 공제된다(Sec. 2604, 2622(b)). 이 경우에는 기금 집행인이 세금을 납부한다. 직접적인 세대 생략 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 가액이 과세대상이며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자가 살아 있는 동안 직접 이전된 자산의 경우 증여세는 증여금액과 세대 생략세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세대를 생략하고 양도되는 자산에 대해서도 유산 혹은 증여와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대 생략세가 면제된다. 자산 양도자는 평생 동안 200만달러를 이전하고 이에 대하여 세대 생략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Sec. 2631)¹¹¹²⁾. 이러한 기본 면세는 일단 선택하면 취소될 수 없다(Sec. 2362). 특히 면세금액은 매년 증가해 왔는데 증액된 면세액은 증액이 된 연도 이후 제공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세대를 생략한 증여에서는 기금을 통한 증여가 아닌 직접적인 증여에 대해서만 피증여자 1인당 연간 12,000달러가 면제된다.

1109) 실제로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이 확실한 비용은 공제가 허용된다. 산입비율이 다른 여러 자산의 경우 개별 자산가액을 가중한 산입비율을 기준으로 경비를 배분한다.

1110) 소득이나 원금을 배당받은 사람이 대가로 지급하는 보수는 제외되어야 한다.

1111) 전체 기금 경비를 종료 시점의 해당 자산가액을 전체 기금가액으로 나눈 비율과 종료일수를 36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112) 1998년 \$1,000,000에서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1,500,000 그리고 2006년 \$2,000,00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사용되지 않은 면제액은 우선 기증자 생존 당시 직접적으로 세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증여(*inter vivos transfer*), 유언에 의한 세대 생략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증자 사후 세대를 생략한 신탁기금으로부터의 자산 양도에 차례대로 적용된다(Sec. 2362).

다. 세대 생략세 세율

세대 생략세는 유산세 최고 세율을 산입비율(*inclusion ratio*)로 곱한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이 때 적용되는 유산세 세율은 세대를 생략한 자산 이전이 발생한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한 예로 2003년 유산세 최고 세율은 49%이지만 2007~2009년 최고 세율은 45%이다. 따라서 신탁기금의 관리자는 장래 소득(원금) 배분과 지분 종식에 대비하여 산입비율을 알아야 한다.

산입비율은 1-적용비율(*applicable ratio*)과 같다. 적용비율은 신탁기금과 직접적인 세대 생략 양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다음의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분자는 직접적인 세대 생략 증여로 양도된 자산이나 유산 신탁기금에 배당된 세대 생략세 면제액이다. 한편 분모는 직접적인 증여나 신탁기금으로 양도된 자산 가액¹¹¹³⁾에서 동 자산에 해당하는 유산세와 Sec. 2055(2522)에 따라 공제된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러한 공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면제액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세대 생략세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Sec. 2641, 2642).

$$\text{적용비율} = \frac{(\text{기금}) \text{ 해당 자산에 배분된 세대 생략세 면제액}}{\text{해당(기금) 자산가액} - \text{해당 자산의(연방 및 주정부 유산세 + 기부금 공제)}}$$

예를 들어 갑이 신탁기금을 통하여 자녀인 을에게 그 당시 400만달러의 자산을 양도하고 잔여 유산은 손녀인 병에게 양도하였다. 2007년을 기준할 때 법정 면제액은 200만달러인데 을의 사망 당시 기금의 자산이 800달러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유산세나 기부공제가 없다면 적용비율은 $2/4=0.5$ 이며 산입비율은 $1-0.5=0.5$ 이다. 따라서

1113) 직접적인 증여(*inter vivos transfer*)에서는 증여세 부과를 위한 자산 평가액이 그리고 이외의 경우 유산세 부과를 위한 자산 평가액이다.

$0.5 \times 0.45 = 0.225$ 가 세대 생략세의 세율이며 납세액은 180만달러(0.225×800)이다.

지분 종료에 따른 세대 생략세는 유산 관리인이 4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세대 생략 증여(direct skip)의 경우 만약 생존자 사이의 증여(inter vivos)라면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며 과표는 수령자가 받은 자산의 공정가격이 된다(Sec. 2623). 또한 양도인이 납부한 증여세도 증여세 과표에 포함된다(Sec. 2515). 납세자는 증여세에 추가하여 세대 생략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들 세금이 증여 자산 가액보다 많을 수 있다. 특히 세대 생략세가 유산세의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세대 생략세에 대한 신고납부와 벌금규정은 증여세와 동일하다.

5. 유산과 신탁기금 소득세(Estate and Trust Income Tax)

가. 개요

유산(estate) 혹은 신탁기금(trust)은 수탁인(Fiduciary)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기관 명의로 소득신고를 하고 과세소득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Fiduciary Income Tax Return, Form 1041).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살아 있는 동안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 신탁기금이나 그 수증자가 아니고 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grantor trust). 유산/기금의 소득세 세율은 일반 소득세 세율에 비하여 축약되어 있으며 장기 보유 자본소득도 다른 납세주체와 마찬가지로 15%를 적용받는다.

한편 신탁기금이 자산을 분배하면 수탁인의 장부가액과 자산의 공정시장가격 중 낮은 금액을 배당공제받을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한 자산의 경우 기금 관리인은 배분 시점의 장부가액과 공정가격의 차이를 양도차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 경우 소득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자산의 공정가격이 되고 수증자는 기금의 장부가액과 기금이 인정한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을 자신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 관리인은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기금 차원에서 납부할지 아니면 수증자 차원에서 납부할지를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여타 자본손실을 이용한 차익상쇄가 고려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산/기금이 수증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탁자로서 소득을 신고할 때 공제가 허용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유산/기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schedule B). 그 대신 유산/기금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수증자는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pass through entity). 특히 유산/기금에 대한 과세는 내국세법 641~692조(Sub-chapter J)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개인소득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한 예로 수탁인 소득신고(fiduciary return)에 있어서 허용되는 인적공제는 내국세법 642(b)조에 명시되어 있다.

납세자는 이전과세나 자산유지 목적으로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기금에 이전할 수 있다.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transferor)가 지정하는 신탁기금의 관리인(trustee)은 개인이거나 은행 등 단체로서 수증자를 위하여 자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자산의 양도자(grantor)가 생존하는 동안 자산을 이전하면 이러한 기금은 inter vivos trust(기금)라고 하며 양도자가 사망한 후 고인의 유언에 따라 설립된 기금은 유언기금(testamentary trust)이라고 한다.

신탁기금¹¹¹⁴⁾은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법적 실체로서 관리인은 기금 설립 당시 기금 약정에 따라 운영된다. 기금은 기본적으로 자산 양도자와 관리인 사이의 계약으로 관리인이 수증자를 위하여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다. 수증자는 신탁기금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향유할 권리가 있거나 혹은/그리고 미래 한 시점에 기금 자산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life interest or remainder interest). 만약 자산을 기금에 양도한 사람 본인이 기금소득을 받거나 기금소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양도자가 통제할 수 있거나 고인 사망 시점에 기금 자산을 양도받을 사람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기금 자산을 유산에 포함해야 한다. 즉, 거꾸로 자산을 양도한 사람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어야 신탁기금 자산을 유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¹¹¹⁵⁾. 소득세나 유산세상으로 우대를 받으려면 양도자가 신탁기금 자산을 자신에게 돌려주도록 요구

1114) 유산신탁기금은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법적 실체로서 관리인은 유언이나 증여자의 생존시 일반 규정과 기금 합의서에 따라 기금의 수증자를 위하여 재산을 운영한다. A trust is an arrangement created either by will or by an *inter vivos* declaration by which trustees take title to property for purpose of protecting or conserving it for the beneficiaries under the ordinary rules applied in chancery or probate court.

1115) Sec. 2036~2038.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야 한다(irrevocable trust).

한편 고인 사망시 자동적으로 설립되는 유산의 경우 유산 집행인(executor)이 고인의 자산을 수집 정리하고 부채와 세금을 납부하며 자산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유산은 별도의 납세주체로서 인적공제를 받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을 받는 사람 즉, 피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유산에 소득을 남겨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유산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간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유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유산의 소득을 이를 받을 수 있는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¹¹¹⁶⁾.

신탁기금은 미성년자와 같이 자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립되기도 하고 또는 신탁기금을 통하여 자산을 양도한 사람이 자산의 투자와 운영에 대하여 사후에도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탁기금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금은 별개의 납세주체이므로 소득세의 누진과세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기금 혹은 그 수증자에게 자산의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이 제대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즉, 자산의 양도자가 신탁기금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연방소득세 규정상 자산의 양도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다(grantor trust).

총소득이 600달러 이상인 유산 혹은 신탁기금은 유산소득세 신고(Form 1041, U.S. Fiduciary Income Tax Return)를 해야 한다. 유산에 있어서 인적공제는 600달러이며 마지막 소득세 신고에서는 인적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Sec. 642(b)). 그러나 만약 그 수증자가 비영주 외국인이거나 납세대상인 소득이 있으면 총소득이 600달러를 넘지 않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Sec. 6012(a)). 유산/기금의 관리인은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원칙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나 선택된 회계방식을 다음 연도 신고에서도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

1116) Reg. Sec. 1.641(b)-3(a).

나. 과세방식과 대상

1) 신탁기금 소득과 원금

유산/신탁기금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항목이 유산/신탁기금 소득(income)이며 어느 항목이 원금(principle)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예로 자본소득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총소득에 포함되지만 수탁 관리인 회계(fiduciary accounting)에서는 원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만약 기금 약정에서 신탁기금의 소득만을 수증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로 인하여 기금의 수증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신탁기금의 종신물권과 잔여지분 수증자가 서로 다르면 원금과 소득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신탁기금의 지급액뿐만 아니라 신탁기금과 수증자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자본소득이 원금으로 분류되고 기금에서는 소득만을 배당할 수 있으면 자본소득은 수증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기금에 보관되므로 이에 관한 소득세는 신탁기금이 납부한다. 이처럼 신탁회계소득(accounting income)과 일반과세소득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금 약정에 따라 소득과 원금이 구분되며 만약 약정에 이에 대한 구분이 없으면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1962년에 도입하여 수정된 원금과 소득 기준법(Uniform Principle and Income Act)에 따라 소득과 원금이 분류된다. 그러나 1997년 법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기금의 관리인이 필요한 대로 소득과 원금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소득은 신탁회계적 의미의 총소득에서 이러한 소득에 귀속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1962년 법에서는 신탁소득을 원금의 사용으로부터 창출되는 자산이나 금전적 이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 예로는 임대, 이자소득, 주식회사 배당소득, 규제되는 투자회사가 일반소득에서 지급하는 배당금, 사업체의 순이익이 될 수 있다. 천연자원의 처분에 따른 수입에는 좀 더 복잡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로열티 소득의 일부(27.5%)는 감모상각으로 간주되어 원금에 포함되며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처리된다.

원금은 그 소유주나 법적 권한을 지닌 사람이 기금에 따로 보관하여 나중에 잔여지

분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산을 말하며 소득은 자산의 이익이나 사용이 수증자에게 허용된 것을 말한다. 원금에 포함되는 수입으로는 원금 매각이나 이전에 대한 보수, 대출금 수입, 주식배당(stock dividend), 주식회사 증권 처분수입, 천연자원 로열티 수입의 27.5% 등이 있다. 이들 수입은 원금으로 간주되어 수증자에게 배분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세는 유산/기금이 납부한다.

한편 소득경비에는 재산세, 보험료, 이자경비, 보수 등의 일반 경비, 감가상각비, 소득으로 구분되는 수입에 부과되어 관리인이 납부하는 세금이 포함된다. 그러나 부채 원금상환, 원금에 할당되는 수입이나 이득에 관한 세금, 자본지출에 해당하는 보수는 원금에 대한 경비로 간주된다. 1962년 법에서는 감가상각비는 소득에서 공제되어 원금 지급에 대한 기금약정이 없으면 수증자에게 지급되는 순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주에서는 감가상각을 소득이 아닌 원금에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증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이 감가상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과세방식

(a) 과세방식의 원칙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유산/신탁기금의 과세대상 소득은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산출된다. 한 예로 유산/기금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수증자에게 분배되더라도 비과세된다. 유산/기금 소득과 일반소득이 다른 측면은 우선 일반소득세와 달리 유산/기금 소득세는 사전 혹은 사후공제 없이 모든 공제항목이 과세 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산/기금 신고에는 표준 공제가 없는 대신 수증자에게 지급된 소득은 유산/기금에서 공제가 허용되고 그 대신 수증자가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다.

유산/기금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소득에서 다양한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배당에 대한 공제와 면제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소득이 된다. 여기에 유산/기금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출하고 난 뒤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유산/기금에 대한 납세의무액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수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은

법정 배당 순소득(distributable net income, DNI)의 제한을 받는다. 또한 기금 약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 경비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이외 최저한세(AMT)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데 다만 일정 금액은 면세가 허용된다(Sec. 59(c))¹¹¹⁷⁾.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산/기금의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개인소득세상의 총소득 항목과 동일하다. 다만 과세와 회계 목적상 소득 분류는 다를 수 있다. 한 예로 자본소득은 회계 목적상 원금에 해당하지만 과세 목적의 총소득에 속한다. 한편 지방 정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회계 목적상 소득이지만 과세 목적의 총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개인과 마찬가지로 유산 관리인은 이자경비, 지방세, 투자 자문비, 소득 창출을 위한 경비나 사업경비를 지불하며 이를 공제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에서는 기타공제가 조정된 총소득(AGI)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유산/기금 소득세에서는 명시적으로 조정된 총소득이 없고 내국세법 67(e)조에서 이를 위한 가공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은 2%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조정된 총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직접 공제된다. ① 자산이 유산/신탁 기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유산 관리비 ② 인적 면제 ③ 소득배당. 또한 유산/기금이 제공하는 자선 기부금은 개인소득세와 달리 금액 제한없이 공제가 가능하지만 기금 약정이 이러한 기부를 허용해야 공제할 수 있다(Sec. 642(c)(1)).

감가상각 경비는 세법 167(d)조나 611(b)조에 따라 수증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유산/기금이 공제할 수 있다. 167(d)조에 의하면 신탁기금의 약정에 따라 감가상각비가 기금과 수증자에게 배분된다. 만약 약정에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기금과 수증자에게 할당되는 소득비율 대로 감가상각비가 배분된다¹¹¹⁸⁾. 그러나 유산의 경우 항상 기금과 수증자에게 할당되는 소득비율 대로 감가상각 경비도 배분된다. 이와 유사한 규정이 감모상각에도 적용된다(Sec. 611(b)).

유산/기금의 수증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에 대한 공제 여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약

1117) 유산/신탁기금의 경우 최저한세(AMT) 과세소득에서 \$22,500의 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75,000 이상의 과세소득이 있으면 \$1당 75센트로 면제금액이 줄어든다(Sec. 55(d)(10)(C)(ii)).

1118) Reg. § 1.167(h)-1(c), 1.611-1(c)(5), 1.167(h)-(1)(b), 1.611-1(e).

간 다르다. 우선 단순 신탁기금(simple trust)¹¹¹⁹⁾은 모든 현재소득(current income)을 해당 과세연도에 배분해야 하고 기부금을 제공할 권한이 없는 기금을 말한다(accounting net income). 이들 기금은 현 과세연도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 즉, 기금소득 전체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받는다(Sec. 651(a)). 그러나 만약 지급되어야 할 소득¹¹²⁰⁾이 법정 배당 순소득(DNI)¹¹²¹⁾보다 많으면 소득배당 공제는 이 금액(DNI)을 초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신탁기금 차원에서 공제가 허용된 금액은 수증자 차원에서 과세되는데 실제로 배당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 차원에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다.

복합 신탁기금(complex trust)은¹¹²²⁾ 모든 소득을 해당 연도에 배분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에 기금에 유보한 누적소득을 지급해도 되는 기금을 말한다. 복합 기금과 유산(estate)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지급금은 분배해야 할 소득 이외 임의적인 배당금과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적절히 지급한 기타 금액을 포함한다. 단순 기금과 마찬가지로 배당공제는 법정 배당 순소득(DNI)을 초과할 수 없다. 유산/기금의 수증자는 소득배당 공제에 해당하는 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탁 관리인도 인적면제를 받지만 금액은 차이가 난다(Sec. 642(a)). 유산의 경우 인적면제액은 600달러이다. 그러나 기금의 경우 약정에 따라 모든 소득을 매년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면 인적공제가 300달러지만 그렇지 않으면 100달러이다. 소득배분요건을 충족하면 기금이 단순하건 혹은 복잡하건 상관없이 인적공제는 300달러이다. 물론 모든 소득을 배당 지급하는 기금에게는 인적면제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원금에 포함되는 자본소득이 있으면 인적공제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인적공제는 개인과 달리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있지 않다. 이외 세액공제(credit)에 있어서도 개인소득세와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다만 외국세액공제의 경우 수증자에게 할당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19) 이 밖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원금(corpus)을 분배하지 않아야 단순 신탁기금으로 정의된다.

1120) income required to be distributed: 그러나 실제로 분배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유언과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1121) 비과세소득과 이에 해당하는 공제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122) Reg. Sec. 1.661(a)-1.

(b) 법정 배당 순소득(DNI)

유산/신탁기금의 소득 지급에 따라 허용되는 기금의 소득공제와 수증자가 신고해야 하는 총소득(이에 따른 소득세)은 법정 배당 순소득¹¹²³⁾으로 제한되며 지급된 소득의 성격도 법정 순소득이 결정한다. 유산과 신탁기금은 소득세를 납세하는 실체이므로 이들에게 과세된 소득이 수증자에게 지급될 때 또 다시 과세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산/신탁기금과 그 수증자 중 누가 유산/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배당이 가능한 순소득(distributable net income, DNI)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특히 기금의 수증자는 본인이 실제로 배당받는 기금 소득과 법정 배당 순소득(법정 순소득에 포함된 비과세소득은 제외) 중 적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정 배당 순소득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배당소득 세금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은 기금 소득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당소득과 같기 때문에 법정 배당 순소득은 수증자에 대한 최대 과세액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탁기금 차원에서 공제가 가능한 최대 금액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신탁기금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수증자에게 지급된 소득과 법정 배당 순소득 중 적은 금액이다. 이 밖에도 법정 배당 순소득은 수증자에게 지급된 소득의 성격을 결정한다. 즉, 개별 수증자의 소득은 전체 법정 배당 순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의 비율 대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정 순소득에 포함된 개별 경비의 구성비 또한 같은 비율로 수증자의 순소득을 구성한다.

법정 배당 순소득(DNI)은 신탁기금의 과세소득¹¹²⁴⁾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한 금액으로 정의된다(Sec. 643(a)). 법정 순소득은 우선 배당소득 공제와 인적 면제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이며 비과세 이자소득이 포함되어야 한다(이에 수반하는 경비는 제외). 또한 자본손익이 원금 대신 회계 목적의 소득에 할당되지 않으면 자본소득은 법정 배

1123) 즉, DNI는 수증자에게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유산/기금이 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금액과 그 대신 수증자의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금액을 결정한다.

1124) 과세소득은 전술한 대로 배당, 과세대상 이자, 임대소득과 자본소득 등을 포함하는 총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경비와 인적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본손실도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즉, 과세소득에서 배제된 자본손실을 법정 배당소득에 다시 포함). 또한 원금에 할당된 과세대상 주식배당과 비정기적인 배당도 법정 배당 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 배당 순소득이 유산/기금이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하므로 법정 순소득을 결정할 때 배당공제는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금에 포함되는 자본소득과 특별 배당도 과세 목적을 위해서는 소득에 포함되지만 수증자에게 분배될 수 없으므로 법정 배당 순소득에서 배제된다. 이와 반대로 비과세 이자소득은 과세 목적의 총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계상의 소득으로 수증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은 법정 순소득에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다만 이 금액에 해당하는 수증자 지급금에 대해서는 과세 목적을 위한 공제가 가능하지 않다. 법정 배당 순소득과 회계 목적의 순소득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는데 다만 회계적 순소득과 달리 법정 순소득을 산정할 때 원금에 배정된 일부 경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c) 과세소득: 단순신탁기금(simple trust)

전술한 대로 단순신탁기금은 기금 약정에 따라 현재 소득(current income)을 수증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하며 기부를 할 의무가 없고 신탁기금의 원금(corpus)은 분배할 수 없는 기금을 말한다(Sec. 651(a)(1)). 이에 비하면 복합신탁기금(complex trust)은 단순신탁기금이 아닌 기금으로 원금이나 누적된 소득을 분배하고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신탁기금은 회계 목적의 순소득을 모두 지급하므로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회계상의 순소득이다. 다만 소득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정 배당 순소득(DNI)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비과세소득은 기금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소득공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비과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정 소득과 관련이 없는 간접경비는 법정 배당소득에 할당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비의 일정 비율은 비과세소득에 배정되어야 한다. 이 때 비과세소득(관련 직접경비 제외)을 회계소득(직접경비를 제외)으로 나눈 비율을 간접경비에 곱한 금액이 비과세소득에 배정된다¹²⁵⁾. 영업손실은 기금의 종료연도가 아니면 수증자에게 이전될 수 없고 기

금 차원에서 소급 혹은 이월공제해야 한다. 기금의 종료 시점에는 남은 자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영업손실이 이전될 수 있다. 자본손실도 순자본손실과 3,000달러 중 적은 금액을 유산/기금이 공제할 수 있다. 단순신탁기금의 경우 모든 소득을 지급하므로 과세소득이 영(0)으로 손실 공제에 따른 혜택이 없을 수 있다. 자본손실은 이월이 가능하며 영업손실과 마찬가지로 기금 종료연도에 수증자에게 이전된다.

수증자가 신고하는 소득은 기금의 회계소득이 법정 배당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한 회계소득과 같다. 만약 다수의 수증자가 있으면 개별 수증자의 소득은 해당 수증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득¹¹²⁶⁾을 기금이 지급해야 할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법정 배당소득으로 곱한 금액이 된다. 이처럼 단순신탁기금은 현재 소득 전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각 수증자는 법정 배당소득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¹¹²⁷⁾. 결국 단순신탁기금 차원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원금에 배정되는 자본소득에 불과하다. 개별 수증자가 받은 소득의 성격은 분배 이전 기금 차원의 소득 성격을 계속 유지한다. 특정 수증자가 특정 소득을 지급받도록 약정되어 있지 않으면 각 수증자에게 제공된 소득의 구성은 법정 배당소득의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d) 과세소득: 복합신탁기금(complex trust)과 유산

유산(estate)과 복합신탁기금에 대한 과세방식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¹¹²⁸⁾. 복합신탁기금은 해당 과세연도에 원금을 지급하거나 현재 소득을 분배하지 않고 기금에 보관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이외 기금 약정에 근거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금도 복합신탁기금으로 분류된다.

복합신탁기금도 단순신탁기금과 같은 방식¹¹²⁹⁾으로 과세되지만 내용이 더 복잡하고

1125) Reg. Sec. 1.652(b)-3.

1126) income required to be distributed: 그러나 실제로 분배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라 유언과 주법에 따라 결정된다.

1127) Reg. Sec. 1.652(a)-2.

1128) Sec. 661~664.

1129) 한 예로 영업손실과 자본손실에 대한 공제규정도 단순신탁기금과 동일하다.

소득배당 공제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 그러나 유산의 소득배당 공제규정은 복합신탁 기금과 동일하다. 유산에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600달러이며 복합신탁기금은 현재 소득을 모두 지급하면 인적공제가 300달러이며 그렇지 않으면 100달러이다.

유산과 복합신탁기금의 소득배당 공제는 지급되어야 하는 현재 소득(의무적 배당금)¹¹³⁰⁾과 수증자에게 해당 연도에 적절하게 지급되거나 혹은 배분되도록 규정된 금액(임의적 배당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순신탁기금과 마찬가지로 법정 배당소득(DNI)과 실제 배당금액 중 적은 금액이 소득배당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만약 자선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법정 배당소득은 수증자에 대한 소득배당이 의무적인지 아니면 임의적인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특히 의무적 배당지급에 있어서 법정 배당소득은 기부금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임의적인 배당지급이면 법정 배당소득은 기부금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실제 배당이 법정 배당소득보다 많더라도 기금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정 배당소득에서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수증자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현재 소득과 수증자에게 해당 연도에 적절하게 지급되거나 혹은 배분되도록 규정된 금액(임의적 배당금)을 합한 금액이다 (Sec. 662(a))¹¹³¹⁾. 원금의 배분이 없어도 의무적 배당금이 법정 배당소득을 초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수증자는 자신에게 현재 지급되어야 할 소득을 현재 배분되어야 할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법정 배당소득(DNI)에 곱한 금액을 신고한다.

원금과 현재 소득이 동시에 배분되면 회계소득과 법정 배당소득이 동일해도 배분된 지급금은 현재 소득을 초과한다. 만약 지급되어야 할 소득과 여타 배당금을 합한 금액이 법정 배당소득을 초과하면 개별 수증자에 대한 과세 여부는 수증자에 따라 다르다 (beneficiary tier system). 우선 소득 배당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증자(tier 1)가 가장 먼저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총의무배당금과 법정 배당소득 중 적은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가 부과된다. 한편 여타 수증자(tier 2)에게 과세 목적상 배분되는 소득은 법정 배당소득에서 지급되어야 할 현재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히 개별 수증자는 자신이

1130) current income required to be paid: 만약 기금 관리인이 소득이나 원금계정 중 한 곳에서 수증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금이 소득계정에서 지급하면 이를 지급되어야 할 현재소득으로 분류된다.

1131) 수증자가 받은 비과세소득은 물론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받은 임의적 배당금을 총 임의적 배당금으로 나눈 비율을 잔여 법정 배당소득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한다(Sec. 662(a)(2)).

일반적으로 수증자는 신탁기금의 법정 배당소득을 한도로 임의적 지급금에 대하여 과세된다. 따라서 원금을 지급받아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산에 있어서 특정 금액이나 자산을 한 번 혹은 3번 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하면 이를 수증자가 배당받은 소득으로 취급하지 않고 유산도 배당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Sec. 663(a)(1)). 만약 유산의 한계세율이 수증자의 한계세율 보다 낮으면 유산 단계에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수증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gift of corpus).

다. 유산/신탁기금 소득세 세율

유산/신탁기금 소득세 세율은 <표 I-10>에 제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만약 최저한세(AMT)가 일반 소득세보다 더 많으면 그 차액은 유산 혹은 신탁기금의 소득세에 추가된다. 유산/기금소득 2,200~10,700달러 이상의 5개 구간에 대하여 15~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비하면 개인소득세는 가장 낮은 세율 10%(0~8,025달러)에서 가장 높은 세율 35%(178,850달러)까지 있다.

개인소득세 세율구조와 비교하면 유산소득세는 우선 10% 세율구간이 없으며 이 밖에는 세율이 동일하다. 다만 35%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소득은 10,700달러인데 비하여 일반소득에서는 178,850달러에서 35% 세율이 적용되어 유산소득은 매우 낮은 소득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유산/신탁기금의 소득이 수증자에게 배분되면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수증자의 개인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유산소득세 세율구조는 소득배당을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표 1-10〉 유산/신탁기금 소득세 세율구조(2008년)

(단위: 달러, %)

과세대상소득	소득세= A+한계세율×B 초과금액		B
	A	한계세율	
유산/신탁기금 소득세			
0~2,200	0	15	0
2,200~5,150	333	25	2,200
5,150~7,850	1,067.5	28	5,150
7,850~10,700	1,823.5	33	7,850
10,700 이상	2,764.0	35	10,700
개인소득세: 부부별도신고			
0~8,025	0	10	0
8,025~32,550	802.50	15	8,025
32,550~65,725	4,481.25	25	32,550
65,725~100,150	12,775.0	28	65,725
100,150~178,850	22,414.0	33	100,150
178,850 이상	48,385.0	35	178,850

주: 1991년 이후 세율로 유산/신탁기금은 개인소득세 세율표를 사용할 수 없음.

라. 유산과 조건부 신탁기금

1) 유산과세(estate taxation)¹¹³²⁾

개인이 사망하면 고인의 유산은 자동적으로 별개의 과세실체로 간주된다. 고인의 과세연도는 사망날짜에 종료되고 그 다음 날로부터 유산의 과세연도가 시작되며 유산이 완전히 배분될 때까지 존속한다¹¹³³⁾. 유산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인 유산의 관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다.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자산을 피상속인에게 배분할 의무가 있는 유산의 수탁자(fiduciary)는 집행인(executor)이라고도 한다¹¹³⁴⁾. 집행인은 연소득 600달러 이

1132) 개인이 사망하면 고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에게 배분할 때까지 유산이 존속하며 이후 법에 의하여 유산이 해체된다.

1133) Reg. § 1.691(b)-1.

상인 유산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Form 1041). 다만 집행인이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고 세금은 유산으로부터 지불된다(Sec. 6903). 전술한 대로 인적공제는 600달러가 허용된다.

생존시 고인이 이용하던 회계원칙이 고인의 소득과 공제비용을 결정한다. 즉 과세목적상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이 사용되었다면 사망한 날짜까지 발생한 소득과 비용이 고인의 마지막 소득신고(Form 1040)에 포함되며 단지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과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Sec. 451(b)). 반면 대개 그러하듯이 고인이 평소에 현금주의 원칙을 이용하였다면 사망한 날까지 실제로 입금된 소득과 비용이 고인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며 이전에 발생하였어도 그 후에 (유산/신탁기금이) 받은 소득과 지불한 비용은 유산에 포함된다(Sec. 691(a)).

예외적으로 고인이 사망한 다음 1년 안에 유산으로 지불한 고인의 의료비용은 고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Sec. 213(c)). 또한 생존한 배우자가 이를 지불하면 지불한 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유산 집행인이 사망 후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의료비는 유산에서 공제하거나 고인의 소득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 금액의 제한이 없는 반면 후자는 소득의 7.5%라는 제한이 적용된다.

고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창출한 소득이지만 현금주의 원칙 때문에 고인의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수입은 고인 관련 소득(IRD)¹¹³⁵⁾으로 정의된다. 고인 관련 소득은 소득이지만 사망 이전에 실제로 지급받거나 의제 지급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소득이 고인 관련 소득이다. ① 고인의 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 ② 이자가 발생하였지만 지급되지 않은 이자소득 ③ 사망 이전 발표된 그러나 지급되지 않은 주식배당 ④ 사망한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고인의 유산은 고인의 사망 시점에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따라서 일부 소득은 고인의 소득신고에서 한 번 과세되고 나중에 유산에 포함되어 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1134) 수탁인(fiduciary)은 유산신탁기금이나 유산의 관리인(trustee, executor)으로 법적 함의에 따라 유산의 수증자를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유언에 의한 사람은 집행인(executor), 법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은 관리인(administrator)라고 한다.

1135) income in respect of the decedent: 일반적으로 유산으로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사망 시점 장부가액으로 변경되는 데 비하여 고인 관련 소득으로 분류된 자산의 장부가액은 고인의 장부가액이다(Sec. 1014(c)).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 관련 소득(IRD)에 대한 소득세는 유산에서 부채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하다. 혹은 수증자가 자신의 소득신고에 포함되는 고인 관련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 유산세를 공제할 수 있다(Sec. 691(c)). 특히 납세자는 고인의 실제 유산세에서 고인 관련 순소득이 제외되었다면 납부해야 하는 유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는데 여기서 순소득이란 고인 관련 소득(IRD)에서 고인 관련 경비공제(DRD)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한편 사업비용, 소득창출비용, 이자, 세금, 감모상각비 등 고인 생존 당시 발생하였지만 현금주의 회계방식으로 고인의 최종 소득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고인 관련 공제(DRD)¹¹³⁶⁾라고 한다(Sec. 691(b)). 고인의 사망 이전에 이들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유산에서 부채로 취급되어 공제가 허용된다(Form 706). 이에 추가하여 유산이 이들 비용을 지불하면 유산의 소득세 신고에서도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Form 1041). 따라서 고인 관련 공제는 두 번 공제가 가능하다. 유산이 아닌 수증자가 경비를 지급하면 해당 연도에 자신의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인 사망 이전에 발생한 사업과 자본손실은 고인의 마지막 소득신고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후로 신고가 연기될 수 없다.

2) 조건부 신탁기금

기증인 신탁기금(grantor trust)은 설립자가 기금 자산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포기하지 않거나 자산 소득에 대한 권리를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는 기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유산과 신탁기금의 소득은 수증자에게 지급되면 수증자를 통하여 과세되고 유산/기금에 축적된 소득은 수탁인에게 과세한다. 그러나 기증인 신탁기금의 경우 비록 소득을 수증자에게 지급하더라도 소득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금 설립자(기증인)에게 과세한다(Sec. 671~691). 또한 1986년 이후에는 기금자산이 설립자나 그 배우자에게 궁극적으로 반환되면 기금소득에 대하여 설립자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외 한 일부 상황에서는 기증인이나 수증자가 아닌 제3자에게 신탁기금의 소득에 대하여

1136) deduction respect of the decedent: Reg. §1.691(b)-1.

과세하기도 한다.

내국세법 671조에 따라 기금 자산의 소유주(owner)로 간주되는 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공제 등은 기금 소득세 신고가 아닌 기증인의 소득세 신고에 직접 포함해야 한다. 기금의 신고에는 기증인이 소유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한다. 증여나 유산의 양도가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과 기증인 규정은 상이하다. 그 결과 증여를 하고 난 이후에도 기증인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한 예로 5년을 시한으로 기금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5년 이후 자산을 반환받는 상황에서는 증여를 한 기금 설립자가 5년간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고 또한 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수증자 신원 등 기금약정을 변경할 수 있거나 기금으로부터 자산을 철수할 수 있는 신탁기금(revocable trust)은 불완전한 자산 양도로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내국세법 676조에 따라 기금의 설립자가 기금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86년 3월 이후 양도된 기금자산에 대하여 기증인 혹은 그 배우자나 원금이나 소득에 대한 회수 가능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금소득에 대하여 기증인이 세금을 납부하도록 1986년 조세개혁법에서 법을 개정한 바 있다(Sec. 673(a)). 다만 예외적으로 회수 가능한 지분(reversionary interest)이 전체 기금의 5%를 넘지 않거나 직계존속이 21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여 지분 회수가 발생하면 소득세에 대한 책임이 기증인에게 없다.

세 번째로, 유산기금의 관리권을 기증인(배우자)이 행사하면 기금소득과 자본차익에 대해서도 기증인에게 책임이 있다(Sec. 675).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관리권은 적절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산을 매입 혹은 교환할 수 있는 권리, 적절한 담보 없이 기금으로부터 부채를 빌릴 수 있는 권리¹¹³⁷⁾, 혹은 주식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사한 가격의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는 대신 기금자산을 재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에 있다.

한편 기금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기증인(배우자)에게 지급되거나 나중에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에 적립되면 이에 대한 세금은 기증인이 납부해야 한다(Sec. 677). 자녀

1137) 기금 관리인이 담보 없이 대여해줄 수 있는 일반 권리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등 기증인이 법적으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기금소득이 지급되면 이에 대한 납세 책임은 기증자에게 있다. 만약 기증인이나 수증자가 아닌 제3자가 기금 약정에 따라 기금 원금이나 소득을 자신에게 귀속할 수 있는 권한을 자신만 보유하고 있으면 기금소득에 대한 신고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Sec. 678).

마. 신고 및 납부

과세연도 총소득이 600달러 이상인 유산과 신탁기금은 국내 유산/기금의 관리인 즉, 수탁자(fiduciary)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Form 1041)¹¹³⁸. 이외 수증자가 외국인인 유산이나 신탁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다. 다만 회계연도가 일반 역년(calendar year)과 다른 유산은 과세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4.5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탁기금의 경우 역년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다. 기한 연장이 필요한 납세자가 Form 7004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소득세는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소득세에 적용되는 추정세액을 같은 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유산의 경우 처음 2년간은 추정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Form 1041-ES). 즉, 2009년의 경우 예상되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금과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보다 1,000달러 이상 많고 또한 원천징수 세금과 세액공제가 2009년 세금의 90%와 2008년 세금 100% 중 적은 금액보다 적으면 추정세액 납부가 필요하다.

유산/신탁기금 관리인은 유산소득을 지급한 각각의 수증자에 대하여 Schedule K-1을 작성하여 Form 1041과 함께 제출하고 복사본을 수증자에게 제공한다. 수증자는 그 대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Form 1040으로 소득을 신고할 때 Schedule E를 작성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한다. 유산과 신탁기금은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해체된다. 유

1138) U.S. Fiduciary Income Tax Return(Sec. 6012(a)(3)). 미국 국내 사업이나 거래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외국에서 창출된 소득으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해외소득의 경우 외국유산(foreign estate)으로 만약 외국유산의 관리인은 Form 1041 대신에 Form 1040NR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산/기금이 해체되는 과세연도에는 운영업손실, 자본손실이나 초과공제를 수증자가 넘겨받아 자신의 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실 혹은 사기행위, 과소납부나 자산의 중대한 저평가 등에 대해서는 내국세법 6621조에 따라 결정되는 이자가 가산된다. 이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25%를 한도로 매월 납세의무액의 5%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60일 이상 신고가 늦으면 100달러와 납세의무액 중 적은 금액이 최소한의 벌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가 합리적이면 벌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매월 해당 금액 1%의 $\frac{1}{2}$ (최대 25%)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벌금은 이자에 추가하여 적용된다. 또한 각 수증자에게 Schedule K-1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 건당 50달러(최대 100,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고의적으로 이를 무시하면 벌금은 건당 100달러로 인상되며 만약 이보다 신고해야 할 금액의 10%가 더 많으면 이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바. 유산과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한 세금 회피

신탁기금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우선 한 개인이 같은 수증자나 여러 수증자들을 위하여 다중유산 신탁기금(multiple trust)을 설립하여 다수의 인적공제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① 각각의 유산 신탁기금을 설립하는 독립적인 목적이 없고 ② 기금의 설립자가 같으며 수증자들은 유사하며 ③ 누진과세나 최저한세(AMT)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중 유산 신탁기금이 설립된 것으로 보이면 이들 신탁기금은 하나의 기금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Sec. 643(e)). 마지막으로 유산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자산/소득의 실제 소유자를 숨기고 위장거래를 할 수 있다. 기금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개인 비용을 공제 받거나 거래 및 소유권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유산 신탁기금 남용(abusive trust)에 연관된 자는 민사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Notice 97-24, 1997-1 C.B. 409).

참고문헌

- Brian Francis, *Federal Excise Taxes, Including the Slow Death of Expired Taxes*,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Pub. 1136, Spring, 2000.
- _____, *Telephone Excise Tax*, IRS,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Pub. 1136, Summer, 1999.
- Brian G. Raub, *Federal Estate Tax Returns Filed for 2004 Decedents*, SOI Bulletin, IRS, Summer 2008.
- CCH, *2007 U.S. Master Sales and Use Tax Guide*, Fred Conklin eds., CCH Incorporated, Chicago, 2008.
- _____, *2009 Federal Tax Course*, Linda M. Johnson eds., CCH Incorporated, Chicago, 2008.
- _____, *CCH Federal Taxation: Comprehensive Topics*, CCH Incorporated, Chicago, 2009.
- _____, *U.S. Master Excise Tax Guide*, K. Heslop and D. Wagner eds., 3rd edition, CCH Incorporated, Chicago, 2008.
- CIA, “The World Fact Book: United States,” (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print/us)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ffective Federal Tax Rates Under Current Law, 2001 to 2014,” CBO Paper, 2004, (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Historical Effective Tax Rates: 1979 to 2005,” 2007, (www.cbo.gov/publications/collections).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axing Capital Income: Effective Rates and Approaches to Reform,” CBO Paper, 2005, (www.cbo.gov/publications)

/collections).

Darien Jacobson and Melissa Laine, *Wealth Transfers, 2005 Gifts*, SOI Bulletin, IRS, Summer 2008.

Darien Jacobson, Brian Raub and Barry Johnson, *The Estate Tax: Ninety Years and Counting*, SOI Bulletin, IRS, Summer 2007.

Department of Treasury, *Tax Relief in 2001 through 2011*, May, 2008.

Eric Henry, *Excise Taxes and the Airport and Airway Trust Fund, 1970~2002*, IRS SOI Bulletin, winter 2004.

Faith Russel, *Individual Income Tax Provision in the States*, State of Wisconsin, Legislative Fiscal Bureau, 2001.

Hollenbeck S and Kahr M.K., *Ninety Years of Individual Income and Tax Statistics 1916~2005*, IRS, SOI Bulletin, winter 2007.

Hugh J. Ault and Brian J. Arnold, *Comparative Income Taxation: A Structural Analysis*, Second Edi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International Business Publication, *United States Tax Guide: Business Taxation*, Washington DC, 2002.

IRS, "2007 1040 Instructions," 2008(www.irs.gov).

_____, *Accounting Periods and Methods*, Publication 538, 2008.

_____, *Business Expenses*, Publication 535, 2008.

_____, *Bankruptcy Tax Guide*, Publication 908, 2008.

_____, *Certification for reduced Rates in Tax Treaty Countries*, Publication 686, 2008.

_____, *Corporations, For use in preparing 2003 Returns*, Publication 542, 2008.

_____,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s, 2005 Statistics of Income*, IRS, 2006.

_____, *(Circular E), Employer's Tax Guide*, Publication 15, 2008.

- ____, *Examination of returns, Appeal Rights and Claims for Refund*, Publication 556, 2008.
- ____, *Employer's Tax Guide to Fringe Benefits*, Publication 15-B, 2008.
- ____, *Excise Taxes for 2008*, Publication 510, 2008.
- ____, *Filing Information Returns Electronically*, Publication 3609, 2008.
- ____, *Foreign Tax Credit for Individuals*, Publication 514, 2008.
- ____, *Highlights of 2007 Tax Changes*, Publication 553, 2008.
- ____, *How to Depreciate Property*, Publication 946, 2008.
- ____, *Instruction for Forms 1120 and 1120-AS*, 2008.
- ____, *Instruction for Forms 8615, Tax for Children Under Age 14 With Investment Income of More Than \$1,500*, 2008.
- ____,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Publication 550, 2008.
- ____, *Introduction to Estate and Gift Taxes*, Publication 950, 2008.
- ____, *Partnerships, For use in preparing 2003 Returns*, Publication 541, 2008.
- ____, *Recordkeeping for Individuals*, Publication 552, 2008.
- ____, *Reporting Cash Payments of over \$10,000*, Publication 1544, 2008.
- ____, *Self-Employment Tax*, Publication 533, 2008.
- ____, *Selling Your Home*, Publication 523, 2008.
- ____,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Publication 583, 2008.
- ____, *Taxable and Nontaxable Income*, Publication 525, 2008.
- ____, *Tax Guide for Small Business*, Publication 334, 2008.
- ____, *Tax Rules for Children and Dependents*, Publication 929, 2008.
- ____,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es*, Publication 505, 2008.
- ____, "The ABCs of FTDs: Resource Guide for Understanding Federal Tax Deposits," 2008.
- ____, *The Examination process*, Publication 3498, 2008.
- ____, *The IRS Collection Process*, Publication 594, 2008.

- _____, *Understanding Federal Tax Deposit, Resource Guide*, Miemo, 2008.
- _____, *US Tax Treaties*, Publication 901, 2008.
- _____,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Entities*, Publication 515, 2008.
- _____,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 Publication 17, 2008.
- _____, *Your Rights as a Taxpayer*, Publication 1, 2008.
- Jack Taylor, *Corporation Income Tax Brackets and Rates, 1909~2002*,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IRS, Fall 2003.
- James W. Pratt and William N. Kulsrud, *Corporate, Partnership, Estate and Gift Taxation*, Turbo Tax Included, 2007
- Joel Slemrod and Jon Bakija, *Taxing Ourselves: a Citizen's Guide to the Greatest Debate over Tax Reform*, MIT, 1996.
- Joseph A. Pechman, *Federal Tax Policy*, 5th Edition, Brookings Institute, Washington DC, 1987.
- Martha Britton Eller, *Which Estates Are Affected by the Federal Estate Tax?: An Examination of the Filing Population for Year-of-Death 2001*, SOI Bulletin, IRS, Summer 2005.
- Mellissa Laine, *What's New in Federal Excise Taxation. Fiscal Years 1992 ~2006*, IRS SOI, summer 2007.
- Mitchell, Daniel J., *Protecting Seniors from Double Taxation*, The Heritage Foundation March 2003.
- Mudry K. and Bryan J., *Individual Income Tax Rates and Shares, 2005*, IRS SOI Bulletin, Winter, 2007
- Prentice Hall, *Federal Taxation 2007 Comprehensive*, Thomas P Pope eds., Prentice Hall, NJ, 2008.
- Phillip F. Postlewaite, *International Taxation: Case, Materials, and Problem*, Anderson Publishing Company, Cincinnati, 1999.
- Robert A. Wilson, *Personal Exemptions and Individual Income Tax Rates*

- 1913~2002, SOI Bulletin, IRS, 2003, pp. 216~225.
- Robert K. Miller Jr, and Stephen J. McNamee eds., *Inheritance and Wealth in America*, Plenum Press, New York, 1998.
- Roy Rohatgi, *Basic International Tax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New York, 2002.
- 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Final Report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Nov. 2005(www.taxreformpanel.gov/final-report/).
- Tim Wheeler and Nina Schumofsky, *Partnership Return, 2006*, Statistics of Income Bulletin, IRS, Fall 2008.
- Tom Petska, Mike Strudler and Ryan Petska, *New Estimates of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Income and Taxes*, Miemo, IRS, 2003.
-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USA Economy in brief," 2008.
- US Census of Bureau, *Government Finances 1999~2000*, Jan. 2007.
- _____, *Statistical Abstract of United States*, 각 연도.
- US Congres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ummary of Provisions Contained in the Conference Agreement for H.R. 1836, 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JCX-50-01," May, 2001.
- US Congress Joint Committee on Taxation, "Summary of Provisions Contained in the Conference Agreement for H.R. 2, the Job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JCX-54-03," May. 2003.
- US Department of Treasury, *IRS Data Book*, 각 연도.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2008.
- _____, *Study of the Overall State of the Federal Tax System and Recommendations for Simplification*, Prepared by the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2001.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istorical Table*, US Printing Office, 2008.

William G. Gale and Peter R. Orszag, “Bush Administration Tax Policy: Introduction and Background,” *Tax Notes*, September 13, 2004, pp. 216~225.

http://en.wikipedia.org/wiki/Financial_crisis_of_2007%E2%80%932009

http://en.wikipedia.org/wiki/Taxation_in_the_United_States#History

<http://www.barackobama.com/taxes>

<http://www.bea.gov/>

<http://www.census.gov/govs/www/statetax.html>

<http://www.heritage.org/research/taxes>

<http://www.irs.gov/formspubs/index.html/>

<http://www.socialsecurity.gov>

<http://www.streamlinedsalestax.org/>

<http://www.taxadmin.org/fta/rate>

<http://www.tax.cchgroup.com>

http://www.taxpolicycenter.org/taxtopics/conference_EITC.cfm

<http://www.taxesites.com/state.html>

<http://www.tax.state.ny.us>

<http://www.treasury.gov/education/fact-sheets/taxes/ustax.shtml>

<http://www.ustaxnetwork.com/>

http://www.whitehouse.gov/omb/assets/fy2010_new_era/A_New_Era_of_Responsibility2.pdf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I) -

2009년 10월 20일 인쇄
2009년 10월 27일 발행

저 자 장근호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1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상 일 인 쇄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9

ISBN 978-89-8191-437-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23,000원